

2008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08년도

조정중재·시정권고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서 문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954건의 조정청구사건을 접수 처리하여 72.9%의 피해구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설립 이래로 가장 높은 기록이며 2007년도 64.8%보다 8.1%p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언론보도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분쟁을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해 임한 결과이며,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손해배상청구도 조정중재대상이 됨으로써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등 다양한 해결방식이 가능하게 된 점도 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접수 처리한 954건을 청구권별로 보면, 정정보도청구 481건(50.4%), 손해배상청구 324건(34.0%), 반론보도청구 127건(13.3%)으로 나타나 손해배상이 주요 조정청구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율도 높아 우리 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터넷 포털과 언론사닷컴에 대해서도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분쟁해결 역시 우리 위원회의 중요 업무가 될 것 입니다.

아울러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총 754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82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하였으며, 일반 독자가 신청한 26건의 보도 중 7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하여 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는 물론 올바른 언론보도 문화 창달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책자와 CD-ROM을 매년 “연차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발간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름을 바꾸어 “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해 접수 처리한 954건의 조정신청사건 사례와 10건의 중재신청사건 사례, 289건의 시정권고 사례, 사건처리 현황 및 각종 통계 등을 담았습니다.

이 책이 언론분쟁 조정절차 및 처리과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자와 단체 등 모두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3월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차 례

2008년도 조정 · 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59

조정신청사례

2008대전조정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장 진동균) 대 대전시티저널 (정정 · 손배청구) 유성구청장이 술에 취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예산 의결이 늦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93
2008서울조정1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위원장 박승균) 대 한겨레 (정정 · 손배청구) 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장 퇴진을 조건으로 한나라당과 수신료 인상안을 물밑협상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94
2008서울조정2	· 금천패션발전협의회 (회장 서○○)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서울디지털밸리 단지에 불법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는 '가짜 공장' 등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96
2008서울조정3	· 박○○ 대 MBC-TV (손배청구) 시중에서 판매되는 닭꼬치에 비둘기 고기를 사용한다는 제보에 대한 취재 보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7
2008경기조정1	· 천○○ 대 무카스뉴스 (정정청구) 단기간 내에 단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신청인 체육관의 광고가 태권도 단증의 가치를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수정	97
2008서울조정4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청구) 신청인이 교회 교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후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98
2008서울조정5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고소 · 고발을 일삼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유학중인 자녀들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99
2008서울조정6	· 조○○ 대 함께걸음 (정정 · 손배청구) 성림재단 전 이사장 아들인 신청인이 국가에 채납하기로 한 재단 산하 시설을 되찾아오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00
2008서울조정7	· 김○○ 대 식품환경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의 두부제품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101
2008서울조정8	· 김○○ 대 이종앙닷컴 (정정청구) 신청인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의 두부제품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103
2008서울조정9	· 김○○ 대 MBC-TV (손배청구) 대학 총학생회의 비리에 대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동의 없이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103
2008전북조정1	· 박○○ 대 전북연합신문 (반론·손배청구) 경찰공무원인 신청인이 경매를 통해 집을 매입한 것이 공직자로서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104
2008경남조정1	· 김○○ 대 마산MBC-R (정정청구) 신청인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의 두부제품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105
2008서울조정10	· 최○○ 대 SBS-TV (정정청구) 푸드마켓에서 자원봉사 중인 신청인의 어머니를 공짜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106
2008경기조정2	· 김○○ 대 경기신문 (손배청구) 신청인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륜을 저질렀다고 잘못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107
2008서울조정11	· 고○○ 대 머니투데이 (손배청구)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107
2008서울조정12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반론·손배청구) 기독교노조가 출범 이후 재정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노조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통장을 관리하여 재정도 불투명하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108
2008경기조정3	· 김○○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교회 신축공사로 인해 신청인 집의 내부는 균열이 생겼지만, 외부는 멀쩡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09
2008대전조정2	· 김○○ 외 17인 대 아산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국악협회 아산지부의 각종 대회 행사비를 회장도 모르게 임의로 집행하는 등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110
2008충북조정1	· 전국한우협회 보은군지부 (지부장 조○○) 대 동양일보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보은한우축제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한우를 혼용 판매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추후보도	112
2008서울조정13	· 김○○ 대 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필수과목인 생물학을 이수하지 않고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	115
2008전북조정2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대 새전북신문 (정정청구) 전주 모악산 정상에 있는 방송 송신탑 이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KBS가 광주 무등산에 있던 송신탑을 이미 이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16
2008서울조정14	· 주호영 대 이데일리 (정정청구) 주호영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명단이 붙은 좌석이 배정되지 않아 신경전을 벌이고 좌석을 급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18
2008서울조정15	· 조○○ 대 경향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의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로 인해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지연되어 국가적 손실이 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19
2008서울조정16	· 조○○ 대 동아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의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로 인해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지연되어	

	국가적 손실이 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122
2008강원조정1	· 신○○ 대 GTB-TV (반론 · 손해청구) 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의 임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 음성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123
2008서울조정17	· 방위사업청 (청장 이선희)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지정 권한이 없는데도 임의로 방산물자를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127
2008경기조정4	· 광주시 (시장 조억동) 대 중부일보 (정정청구) 광주시가 지난해 말 단행한 대규모 인사가 정실 인사였으며, 승진인사 대부분이 광주지역 출신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28
2008전북조정3	· 전주 완산경찰서 (서장 나유인) 대 JTV (정정 · 손해청구) 전주 완산경찰서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미온적이며, 소속 경찰관이 게임장 업주와 유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30
2008부산조정1	· 김○○ 대 국제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의 두부제품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131
2008서울조정18	· 윤○○ 대 SBS-TV (손배청구) 눈길 교통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 버스 운전기사인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132
2008부산조정2	· 고○○ 대 부산KBS-1TV (추후 · 손해청구) 교수인 신청인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기단과 동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2
2008전북조정4	· 강○○ 외 5인 대 JTV (손배청구)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33
2008경남조정2	· 김○○ 대 경남여성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칼럼을 신청인 이름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133
2008서울조정19	· 김○○ 대 MBC-TV (손배청구) 마포구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134
2008서울조정20	· 한국자동차유해환경개선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원○○) 대 환경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과거 본인이 지회장을 역임했던 단체의 소속 조합원들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134
2008서울조정21	· 황○○ 대 환경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과거 본인이 지회장을 역임했던 단체의 소속 조합원들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135
2008서울조정22	·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최○○)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신청인의 기부금 요구가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36
2008서울조정23	· 이○○ 대 경향신문 (손배청구)	

	과중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 신청인의 집안 형편과 사진 및 실명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137
2008전북조정5	· (주)디앤디전자 (대표이사 서○○) 대 전주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판매하는 손 세정제에 신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38
2008전북조정6	· 임○○ 대 전주MBC-TV (반론청구) 신청인이 개최하지도 않은 개인전시회를 업적 평가 자료로 활용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39
2008서울조정24	· 최○○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은 상호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상호회 직원으로서 화장장을 사재기 예약하여 웃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사과	141
2008서울조정25	· 주식회사 크린나라 (대표이사 임○○) 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불 완료하였다 I - 정정보도	142
2008경남조정3	· 진주시 (시장 정영석) 대 경남일보 (반론청구) 진주시가 일선 병원의 투석 비닐백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면서도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사용한 투석 비닐백은 분리수거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143
2008경남조정4	· 주식회사 좋은세상 (대표이사 전○○, 박○○) 대 창원KBS-1TV (추후청구) 학교 급식업체인 신청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중국산 명태를 한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추후보도	144
2008서울조정26	· 윤○○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145
2008서울조정27	· 윤○○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146
2008서울조정28	· 윤○○ 대 한국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147
2008서울조정29	· 윤○○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반론보도	147
2008서울조정30	· 윤○○ 대 한국경제 (반론청구)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148
2008서울조정31	· 윤○○ 대 연합뉴스 (반론청구)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 반론보도	148
2008서울조정32	·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 김○○)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의 이사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단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49
2008제주조정1	·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축구연합회 (회장 이○○) 대 제주타임스 (정정청구) 제주도축구연합회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 당시 시축구연합회 대의원을 배제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50
2008경기조정5	· 박○○ 대 경인일보 (정정·손배청구) 인천 영종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책임감리자인 신청인이 현장이탈이 잦고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52
2008부산조정3	· 공○○ 대 경상일보 (정정·손배청구) 살인사건 피의자인 신청인이 유치장에서 불을 지른 이유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53
2008서울조정33	· 김○○ 대 금천뉴스 (손배청구) 신청인이 돈에 매수되어 금천구청장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직을 맡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54
2008서울조정34	· 노무현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하면서 측근들은 예외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55
2008서울조정35	· 이○○ 대 일간스포츠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남편을 비방하는 악성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57
2008서울조정36	· 김충환 대 시민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시·구의원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자들에게 공동 선거비용을 강제로 거두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59
2008부산조정4	· 노승중 외 6인 대 괴정신문 (정정청구)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이 신청인들이 밀실공천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60
2008서울조정37	· 김태기 대 헤럴드경제 (정정청구) 신청인 본인의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아내의 공천신청 또한 만류하고 있으나, 신청인을 대신해 아내가 출마하도록 공천신청을 도왔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162
2008서울조정38	· 박○○ 대 서울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진입로도 없는 곳에 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163
2008서울조정39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KBS가 2006년 현충일 <미디어포커스>프로그램에서 마오쩌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64
2008서울조정40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고소한 사람이 기독교노조의 부위원장이자 노조창설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65
2008서울조정41	·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 (위원장 김○○) 대 뉴시스 (정정청구) 신청인 위원회에서 2008 한국대중음악상 후보를 발표하면서 표절문제로 제외된 후보가 있다고 하자 이를 인기 남자그룹 '빅뱅' 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 및 PR보도	166
2008경남조정5	· 최○○ 대 진주MBC-TV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한국전쟁 중 체포되어 전향한 이후 빨치산 전향공작에 이용당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67
2008경남조정6	· 진주시 (시장 정영석) 대 경남일보 (반론청구) 진주시가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68
2008경남조정7	· 진주시 (시장 정영석) 대 경남일보 (반론청구) 진주시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70
2008경남조정8	· 진주시 (시장 정영석) 대 경남일보 (반론청구) 진주시 시장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여 도와 인사교류가 단절되는 등 폐쇄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71
2008서울조정42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72
2008서울조정43	· 지○○ 외 2인 대 한국일보 (손배청구) 신청인의 부친이 태안 유류 유출 피해 관련 행사에서 분신하는 모습을 모자이크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 손해배상	173
2008서울조정44	· 지○○ 외 2인 대 뉴시스 (손배청구) 신청인의 부친이 태안 유류 유출 피해 관련 행사에서 분신하는 모습을 모자이크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174
2008경기조정6	· (가칭)원미10구역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민○○) 대 부천포커스 (정정청구) (가칭)조합추진위비대위가 주민들과의 마찰과 위원장 교체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74
2008서울조정45	· 주식회사 크린나라 (대표이사 임○○) 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불완료하였다 II - 정정보도	175
2008서울조정46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직무대리 이봉화) 대 문화일보 (반론청구)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교재안을 교육시작 닷새 전에 발표하고 교육 장소와 강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176
2008서울조정47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안정숙) 대 동아일보 (정정·반론청구) 영화진흥위가 정치권력과 결탁한 몇몇 영화인에 의해 장악되고, 국고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78
2008서울조정48	· 신○○ 대 KBS-1TV (손배청구) 인천공항 사설 주차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제보한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180
2008서울조정49	· 김○○ 대 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필수과목인 생물학을 이수하지 않고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I - 손해배상	181
2008서울조정50	· 김○○ 대 MBC-R (손배청구) 신청인이 필수과목인 생물학을 이수하지 않고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II - 손해배상	181
2008대전조정3	· 전○○ 외 4인 대 충청신문 (정정청구) 한마음고 학부모 대책위가 일부 교사들의 학교발전기금 불법 조성에 대해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82
2008대전조정4	· 장○○ 외 4인 대 충청신문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불법으로 조성하였으며, 관련 감사 당시 협조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183
2008경기조정7	· 서○○ 대 농업인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선진화국민회의에 참여하여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84
2008서울조정51	· 김○○ 대 Q채널 (손배청구) 이혼소송중인 신청인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185
2008서울조정52	· 이○○ 대 Q채널 (손배청구) 신청인이 이혼소송중인 남자를 만나 간통을 저질렀다고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186
2008서울조정53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KBS가 승례문 화재 발생 사실을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186
2008서울조정54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대 디지털타임스 (정정청구) KBS가 승례문 화재 발생 사실을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188
2008대전조정5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전○○) 대 충청신문 (정정청구) 한국인삼공사가 지역을 외면하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본사가 대전이 아닌 서울에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88
2008광주조정1	· 곡성군 (군수 조형래) 대 호남신문 (정정청구) 곡성군이 공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진입로 확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수탁업체를 감싸고 일부 공무원이 과도하게 진입로 확보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90
2008광주조정2	· 두메푸드시스템 (대표이사 김○○) 대 광주드림 (정정·손배청구) 전남대학병원 식당 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고용승계과정에서 직원 중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3명을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2
2008서울조정55	·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워 세금으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192
2008서울조정56	· 주식회사 화이트텍스트 (대표이사 조○○)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운영중인 영어체험시설인 엘리스파크가 서초구에서 만든 시설로 하루 이용자가 당초 예상의 10%선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194
2008서울조정57	· 이광철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소속 정당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천탈락예정자로 분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보도	195
2008서울조정58	· 최○○ 대 KBS-1R (정정·손배청구) 대학 강사인 신청인이 재임용 탈락 후 이의신청하면서 허위로 논문게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 추후보도	196

2008서울조정59	· 최○○ 대 연합뉴스 (정정·손배청구) 대학 강사인 신청인이 재임용 탈락 후 이의신청하면서 허위로 논문게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 추후보도	197
2008경남조정9	· 진주시 (시장 정영석) 대 경남일보 (반론청구) 진주시가 경남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7
2008경남조정10	· 진주시 (시장 정영석) 대 경남일보 (반론청구) 경남일보 절독 파문과 관련, 진주시공무원들이 경상남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8
2008경남조정11	· 진주시 (시장 정영석) 대 경남일보 (반론청구) 진주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경상남도로부터 특별 복무기강 점검을 받게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199
2008서울조정60	· 이○○ 대 일간스포츠 (정정청구) 신청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정정보도	200
2008서울조정61	· 송영선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공천에서 탈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01
2008서울조정62	· 정○○ 대 MBC-TV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갈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받았다 - 추후보도	202
2008서울조정63	· 강릉영동대학 (학장 김○○) 대 KBS-1TV (반론청구) 강릉영동대학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도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사를 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3
2008서울조정64	· 선한목자재단 (이사장 한○○) 대 한겨레 (반론청구) 신청인 재단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04
2008서울조정65	· 수원남부소방서 (서장 정광석) 대 시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소방서가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에 대해 형식적인 소방점검을 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6
2008광주조정3	· 주○○ 대 호남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장흥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07
2008서울조정66	· 칼로스엠에이대학 (총장 이○○) 대 중앙일보 (반론청구) 필리핀에 설립된 신청인 학교가 등록금을 더 챙기려고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낙제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08
2008서울조정67	· 칼로스엠에이대학 (총장 이○○) 대 노컷뉴스 (반론청구) 필리핀에 설립된 신청인 학교가 등록금을 더 챙기려고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낙제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09
2008서울조정68	· (주)미소래산후조리원 (대표이사 이○○) 대 MBC-TV (손배청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을 상대로 각종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조리원의 내부전경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209

2008서울조정69	· 이○○ 대 MBC-TV (손배청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을 상대로 각종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보험사 원인 신청인이 자산관리 컨설팅 강의를 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211	211
2008서울조정70	· 경찰청 (청장 어청수)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원조폭주족이 경찰의 단속을 돕겠다며 경찰청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11	211
2008서울조정71	· 전주서부신시가지아이파크입주자카페 (대표 이○○)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학부모들이 인근 보육원생의 전학을 거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이므로 정정보도하라 I - 정정보도 212	212
2008서울조정72	· 전주서부신시가지아이파크입주자카페 (대표 이○○)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학부모들이 인근 보육원생의 전학을 거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이므로 정정보도하라 II 213	213
2008광주조정4	· 나주축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전○○) 대 무등일보 (정정청구) 나주축협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하지 않고, 흑자였던 하나로 마트를 적자로 운영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14	214
2008전북조정7	· 전주서부신시가지아이파크입주자카페 (대표 이○○) 대 새전북신문 (정정청구) 학부모들이 인근 보육원생의 전학을 거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이므로 정정보도하라 III - 반론보도 214	214
2008대전조정6	· 김○○ 외 16인 대 대전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국악협회 아산지부의 각종 대회 행사비를 회장도 모르게 집행하는 등 비리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215	215
2008부산조정5	· 박상원 대 UBC (정정 · 반론청구) 신청인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남구갑 지역에서 지지도가 0.4%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16	216
2008서울조정73	·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이봉화) 대 MBC-TV (정정청구) 태안기름유출피해지역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던 주민이 원유의 휘발성분에 노출되어 실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17	217
2008서울조정74	· 주식회사 화이트넥스트 (대표이사 조○○) 대 내일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어체험공원인 엘리스파크가 개점폐업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218	218
2008경기조정8	· 사단법인 청소년복지마을 (소장 김○○) 대 중부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가 입소 절차가 없고 내부 규율이 엄격하지 않아 가출 청소년들의 각종 탈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19	219
2008서울조정75	· 아이파크분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 대 한겨레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입주자에게 터무니없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0	220
2008대구조정1	· 이○○ 대 경북도민일보 (정정 · 손배청구) 울릉중고 교장이 학교 졸업식에 불참한 이유가 설 연휴를 육지에서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222	222
2008경기조정9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윤○○) 대 하나로신문 (정정 · 손배청구) 이천축협이 농정보조금을 본래의 사업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해	

	사용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원들을 해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3
2008전북조정8	· (주)전주방송 (대표이사 김○○) 대 전주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주최하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의 관람료가 타당한 이유없이 비싸기만 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4
2008경기조정10	· (주)서경종합개발 (대표이사 박○○) 대 수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폐슬러지를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25
2008경기조정11	· 흥사광 대 경인일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외국의 비인가대학으로부터 학위를 취득했으며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와 무관한 장소에서 교통캠페인 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26
2008광주조정5	· (주)해림바이오 (대표이사 이○○) 대 완도신문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의 건강 기능성 물질 추출사업이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27
2008서울조정76	· 최○○ 대 연합뉴스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채무자의 실질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등기촉탁을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 정당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230
2008서울조정77	· 강○○ 외 1인 대 KBS-2TV (정정·손배청구) 일부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치료비 등에 대해 불법 신용대출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신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내부를 공개하고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231
2008서울조정78	· 성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대 한국경제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최근 두산그룹에 인수될 당시 자금난과 부도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32
2008경기조정12	· 세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민○○) 대 용인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고, 주변 환경이 열악함에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33
2008서울조정79	· 안양평강교회 (담임목사 임○○) 대 MBC-TV (정정청구) 안양 초등학교 살해사건 피의자가 피해 학생들과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34
2008서울조정80	· (주)쓰리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최○○)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자동차 연료절감장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고 자동차 고장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235
2008광주조정6	· (주)테크세움 (대표이사 김○○) 대 호남인터넷뉴스 (정정청구) 고흥군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237
2008광주조정7	· 나주축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전○○) 대 나주투데이 (정정청구) 나주축협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하지 않고, 흑자였던 하나로 마트를 적자로 운영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238
2008서울조정81	· 주식회사 프리첼 (대표이사 손○○) 대 스포츠월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이벤트 행사를 후원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39
2008서울조정82	· 여주대학 (학장 이○○)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이 학점교류가 불가능한 교육기관으로 학생을 연수 보내고, 연수비용을 개인 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41
2008서울조정83	· 유○○ 대 국민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고3 연합학력평가와 관련, 출제 교사로부터 사전에 문제를 입수했으며, 교육청 자체 조사에서 이를 시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43
2008서울조정84	·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회장 신○○) 대 쿠키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협회의 협회명, 회장의 성명과 나이 등을 잘못 기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244
2008경기조정13	· 주식회사 그린투 (대표이사 강○○) 대 평안신문 (정정 · 손배청구) 관광버스 회사인 신청인이 개별적 운임수령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승차료를 받고 통학버스를 불법 운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45
2008서울조정85	· 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성○○) 대 한겨레 (정정청구) 신청인 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보내온 조직검사 결과만을 믿고 유방암 진단을 하여 멀쩡한 사람에게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246
2008서울조정86	· 주식회사 태글리쉬 (대표이사 김○○) 대 태권도신문 (반론청구) 신청인이 개발한 태권도와 영어회화를 동시에 가르치는 “태글리쉬”가 태권도 동작을 영어로 번역하여 가르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247
2008서울조정87	· 전○○ 외 13인 대 MBC-TV (정정청구) 이탈리아에서 건축분야 학사학위인 도또레 학위를 받은 신청인들이 박사과정도 밟지 않고 박사행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49
2008경남조정12	· 진주시 (시장 정영석) 대 경남일보 (반론청구)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인근 시에 차량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250
2008서울조정88	· 이○○ 대 연합뉴스 (손배청구) 탈북자인 신청인의 성명이 공개되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사가 위협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252
2008서울조정89	· 주식회사 구돌택 (대표이사 성○○) 대 환경일보 (추후청구) 신청인 회사가 농경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53
2008서울조정90	· 사단법인 한국샘물협회 (회장 장○○) 대 서울신문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샘물협회가 회원사에 병마개를 직접 공급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 사과	254
2008서울조정91	· 홍사광 대 프리존뉴스 (정정청구) 경기 화성에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한 신청인이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55
2008부산조정6	· 김○○ 대 사하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부산 감천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등 거짓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57
2008광주조정8	· 양○○ 대 광주일보 (손배청구) 소매치기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258
2008서울조정92	· 주식회사 화이트텍스트 (대표이사 조○○) 대 SBS-TV (반론 · 손배청구) 지자체의 ‘문지마식 영어마을건립’의 부실운영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민영영어 체험시설을 사례로 들어 피해를 입었다 - PR보도	258
2008광주조정9	· 박○○ 외 2인 대 예향진도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들이 국고보조로 지어진 진도군 서망항의 서망어촌계 냉동창고를 어촌계원들 모르게 매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59
2008전북조정9	· 우석대학교 (총장 라○○) 대 전주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이 총학생회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등록금 인상반대운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61
2008서울조정93	· 황○○ 대 e뉴조 (정정청구) 국회의원 100명을 당선시키겠다고 공언한 특정 목사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	262
2008서울조정94	· 황○○ 대 e뉴조 (정정청구) 국회의원 100명을 당선시키겠다고 공언한 특정 목사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I	265
2008대구조정2	· 학교법인 도개학원 (이사장 조○○) 대 영남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구미 D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딸을 교사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65
2008서울조정95	· 대상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대 한국일보 (정정·손배청구) 김천시 삼애원(한센인 집단시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투자자금도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김천시로부터 사업중단을 권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66
2008전북조정10	· 하○○ 대 전주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입소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67
2008전북조정11	· 권○○ 외 4인 대 새전북신문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모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268
2008전북조정12	· 권○○ 외 4인 대 전주MBC-TV (정정청구) 신청인들이 모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270
2008대전조정7	· 광○○ 대 대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농협회관 신축용지 매입 당시 실제 매입가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해 차액을 챙기는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보도	270
2008대전조정8	· 광○○ 대 아산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농협회관 신축용지 매입 당시 실제 매입가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해 차액을 챙기는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271
2008경남조정13	· 안상원 대 함안신문 (반론청구) 함안군의회 의장이 축구장 안에 건립될 궁도장에 대해 설계변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72
2008서울조정96	· 오○○ 대 조선일보 (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실시한 학습법 특강이 대학에서 학점 잘 따는 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특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273

2008서울조정97	· 김○○ 대 TVN (손배청구) 청소년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을 밀착취재,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274
2008전북조정13	· 강봉균 대 전북매일신문 (손배청구) 신청인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5
2008서울조정98	· 수도약품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김○○) 대 헬스코리아뉴스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기업이 '우리들병원그룹'에 사실상 공짜로 인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76
2008제주조정2	· 고○○ 대 제민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교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중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가해학생을 '처벌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하는 등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77
2008광주조정10	· 유한회사 완도신문 (대표이사 황○○) 대 청해진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79
2008서울조정99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임○○) 대 MBC-TV (정정청구) 가출 청소년을 돌보던 목사의 성추행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신청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279
2008서울조정100	·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 대 한국경제 (정정·반론청구) 국립현대미술관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실거래가보다 10배 비싸게 구입하는 등 구매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81
2008충북조정2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조○○) 대 충청매일 (정정청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 우선 적으로 포함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82
2008서울조정101	· 강○○ 대 MBC-TV (손배청구) 충남 여론조사 관련 방송시 여론조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286
2008서울조정102	· 김○○ 대 전자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소변분석기 월빙단터를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타업체에서 개발하였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287
2008서울조정103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하○○) 대 한겨레 (정정청구)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하지 않고도 편법적으로 의무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활동 의무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88
2008대구조정3	· 1. (주)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이종승) 2 유○○ 대 김천인터넷뉴스 (정정·손배청구) 김천의 한센인 거주지역인 삼애원 개발사업에 관한 한국일보의 기사가 허위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288
2008서울조정104	· 박○○ 대 서울신문 (정정·손배청구)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경기도지사와 하남시장 양자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는데도 마치 하남시장을 옹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90
2008서울조정105	· 수원서부경찰서 (서장 이동수) 대 고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경찰서가 안양 초등생의 시신 발견 당시 사산아 2구를 발견했는데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91
2008서울조정106	· 다나의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대 데일리팜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회사가 보훈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고, 예전에 부도난 업체가 새로 설립한 회사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92
2008서울조정107	· 김○○ 대 MBC-TV (손배청구) 용인대학교 신입생 사망사건에 대한 구타의혹을 보도하며, 학과선배인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293
2008서울조정108	· 박○○ 대 MBC-TV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상가 관리인인 신청인이 점포주들에게 상가운영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후 점포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주차장 수익까지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손해배상	294
2008서울조정109	· 한국무역협회노동조합 (위원장 안○○) 대 문화일보 (정정청구) 한국무역협회가 무사안일, 편의주의 타파를 위해 임원실을 없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296
2008서울조정110	· 델리팜상사(주) (대표이사 안○○) 대 SBS-TV (정정청구) 신청인 기업이 수입, 판매하는 사탕에서 발암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297
2008서울조정111	· 이회창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2002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 중 잔금 56억원을 측근 변호사에게 맡겨 현재까지 보관하여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98
2008서울조정112	· 박○○ 대 연합뉴스 (정정 · 손해청구) 경찰관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299
2008서울조정113	·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유○○ 외 3인) 대 SBS-TV (정정 · 손해청구)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가 조작되었으며, 이에 소환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01
2008광주조정11	· 김○○ 대 함평신문 (정정 · 손해청구)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신청인에 대해 평소 언행과 행실이 좋지 못한 자라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302
2008부산조정7	· (주)울산광역뉴스 (대표이사 이○○) 대 울산신문 (정정청구) 2007년 창간한 신청인 신문사가 옛 광역일보의 제호와 신문발행호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303
2008부산조정8	· (주)울산광역뉴스 (대표이사 이○○) 대 울산제일일보 (정정청구) 2007년 창간한 신청인 신문사가 옛 광역일보의 제호화 신문발행호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304
2008서울조정114	· 맥섬석지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곽○○) 대 MBC-TV (정정 · 반론청구) 맥섬석 제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인증서 등을 돈으로 샀으며 제품의 효과도 미미하 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05
2008충북조정3	·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안○○) 대 충청타임즈 (정정청구) 신청인 위원회가 재개발을 추진중인 지역은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재개발이 불필요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08
2008서울조정115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대표 임○○) 대 YTN (정정 · 손배청구) 운전면허시험장 출신자의 사고율보다 운전전문학원 수강자의 자동차 사고율이 2배 이상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08
2008서울조정116	· 이○○ 대 데일리팜 (정정 · 손배청구)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병의원이 성업중인 상가 3층 점포를 매입한 신청인이 1층 약국 약사에게 매입가의 2배 가격으로 점포를 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310
2008경기조정14	· 우제창 대 뉴스리더 (반론 · 손배청구)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결과, 신청인이 현역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서 여타 정당 후보들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311
2008서울조정117	· 1. 김○○ 2. 이○○ 대 한겨레 (반론청구)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1980년 4월에 발생한 사복사태를 '사복사건'으로 규정했음에도 '사복항쟁'으로 표현해 당시 광부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315
2008서울조정118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표이사 김○○) 대 월간조선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와 정부 측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16
2008서울조정119	· 김○○ 대 국민일보 (정정 · 손배청구) 지방대 겸임교수인 신청인이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2개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2008서울조정120	· 이○○ 대 약사공론 (정정 · 손배청구)	319
	양국을 개설하기 위해 병의원이 성업중인 상가 3층 점포를 매입한 신청인이 1층 약국 약사에게 매입가의 2배 가격으로 점포를 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320
2008서울조정121	· 전○○ 대 연합뉴스 (추후 · 손배청구)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등 불법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 추후보도	320
2008광주조정12	· 전○○ 대 광남일보 (추후 · 손배청구)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등 불법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 추후보도	321
2008서울조정122	· 인천전문대학 (학장 민○○) 대 서울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대학 관계자가 재임용 대상 교수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재임용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23
2008서울조정123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대 MBC-TV (정정 · 반론청구)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으며,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24
2008서울조정124	·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대 한겨레 (정정청구) 서울시장이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거짓공약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28

2008서울조정125	· (주)코엔비아 (대표이사 김○○) 대 이데일리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 및 손해배상	329
2008경기조정15	· (주)코엔비아 (대표이사 김○○) 대 경기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330
2008경남조정14	· 사회복지법인 삼원(대표이사 민○○) 대 마산MBC-TV (반론 · 손해청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 단체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노인들을 무단 입소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31
2008서울조정126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도연)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여 지자체 단체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32
2008서울조정127	· 이○○ 대 YTN (정정 · 손해청구) 인터넷 쇼핑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된 쇼핑몰의 웹주소를 명기하지 않아 신청인이 운영하는 동명의 쇼핑몰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333
2008경기조정16	· 박○○ 대 경인일보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신청인이 주유소 허가장소와 다른 장소에 주유소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34
2008서울조정128	· 유○○ 외 3인 대 SBS-TV (정정 · 손해청구)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가 조작되었으며, 이에 소환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35
2008서울조정129	· 민○○ 대 서울신문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학장 선거 당시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36
2008광주조정13	· 박○○ 대 아침신문 (정정청구) 순천만에서 탐사선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직원채용과정에서 성상납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37
2008서울조정130	· 박○○ 대 월간조선 (정정청구) 신청인이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와 정부 측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38
2008부산조정9	· 최대수 대 부산KBS-1TV (정정 · 손해청구) 부도난 택시회사의 실소유자인 신청인이 기사의 임금을 체불하고 난 후에도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40
2008서울조정131	· 주식회사 코엔비아 (대표이사 김○○) 대 한겨레 (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손해배상	341
2008서울조정132	· 박○○ 대 서울신문 (정정 · 손해청구) 대학 교무과장이었던 신청인이 소속 대학의 재임용 대상 교수에게 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41
2008서울조정133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박○○) 대 한국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대학 총학생회가 졸업앨범 제작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42
2008서울조정134	· 이○○ 대 tN (손배청구)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신청인의 음성과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및 사과	343
2008대구조정4	· 1.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이○○) 2. 유○○ 대 김천신문 (정정 · 손배청구) 김천의 한센인 거주지역인 삼애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일보의 기사가 허위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345
2008서울조정135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백용호) 대 아시아투데이 (정정청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권조사하지 않는 등 감시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46
2008서울조정136	· 심재철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이 광우병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348
2008경기조정17	· 인제군 (군수 박삼래) 대 전국매일 (정정 · 손배청구) 인제군수가 7급 공무원에게 전직군수의 개인 비서노릇을 하도록 지시하여 비난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49
2008서울조정137	· 전여옥 대 뉴스앤뉴스 (정정 · 손배청구) “노숙인이 정치해야 국민이 만족하겠냐”는 취지의 네티즌 의견을 마치 신청인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349
2008서울조정138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 경향신문 (정정 · 반론청구) 문화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국정홍보회의에서 쇠고기 파문보도에 대한 언론들의 논조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351
2008서울조정139	· 민○○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전문대 학장인 신청인이 학교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352
2008강원조정2	· 이○○ 대 춘천시보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본인의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춘천 더샵아파트 도로용 땅을 춘천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53
2008부산조정10	· 사천기업도시(주) (대표이사 남○○) 대 부산일보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경남 사천시에 추진되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의 사업추진 중단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355
2008경기조정18	· 주○○ 대 경인일보 (정정청구) 경찰관인 신청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신을 시도하다 배란단에 매달렸던 사람을 주거침입미수혐의로 입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356
2008경기조정19	· 백○○ 대 경인일보 (정정청구) 경찰관인 신청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신을 시도하다 배란단에 매달렸던 사람을 주거침입미수혐의로 입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357
2008경기조정20	· 1. 박○○ 2. 이○○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경찰관인 신청인이 오토바이 헬멧 착용 단속을 벌이던 중 시민에게 주먹을 휘둘러 온몸에 상처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57
2008경남조정15	· 사천기업도시(주) (대표이사 남○○) 대 경남신문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경남 사천시에 추진되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의 사업추진 중단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358
2008강원조정3	· 이○○ 대 춘천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어린이들을 차량에 탑승시키고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PR보도	361
2008강원조정4	·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안○○) 대 춘천시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춘천시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62
2008서울조정140	· 사회복지법인 민재경주푸른마을 (원장 문○○)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약물을 과다 투여하여 숨지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63
2008서울조정141	· 교과서포럼 (대표 박○○, 이○○)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저술한 대안교과서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일본 우익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후속보도	365
2008서울조정142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 강문일)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인체감염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신청인이 인체감염사례가 없다면서 고의로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69
2008서울조정143	· 이○○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탑승인원을 초과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하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 통학버스 및 신청인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371
2008서울조정144	· 권○○ 대 기독교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기독교신문 이사장을 상대로 승소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이사장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372
2008서울조정145	· (주)녹채원푸드시스템 (대표이사 이○○)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국내산 김치를 생산하는 신청인 회사의 제품이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374
2008경기조정21	· 안산주공그린빌9단지 제5기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대 안산제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조성된 단체가 아니며,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75
2008서울조정146	· 조○○ 대 KBS-1TV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자녀납치를 미끼로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 추후보도	378
2008서울조정147	· 조○○ 대 SBS-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자녀납치를 미끼로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 정정보도	379
2008서울조정148	· 조○○ 대 연합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자녀납치를 미끼로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I - 정정보도	379
2008전북조정14	· 권○○ 대 전북일보 (정정청구)	

	정읍화신공원묘원이 신청인 문중 땅에 묘지를 불법 조성했음에도 그 이유를 공원묘원 허가 당시 측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381
2008서울조정149	· 이○○ 대 조선일보 (반론 · 손해청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신청인을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여 피해를 입었다	382
2008서울조정150	· 진○○ 외 3인 대 연합뉴스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고려대 조형학부가 신입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응시자의 점수를 축소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83
2008서울조정151	· 아시아종묘(주) (대표이사 류○○) 대 한국농어민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중 · 만생종 고추 씨앗을 조생종으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385
2008서울조정152	· 아시아종묘(주) (대표이사 류○○)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중 · 만생종 고추 씨앗을 조생종으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386
2008서울조정153	· 류○○ 대 한국농어민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중 · 만생종 고추 씨앗을 조생종으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387
2008서울조정154	· 류○○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중 · 만생종 고추 씨앗을 조생종으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387
2008광주조정14	· 나주시 (시장 신정훈) 대 나주뉴스 (정정청구) 나주시장 측근들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87
2008광주조정15	· 나주시 (시장 신정훈) 대 전남저널 (정정청구) 나주시장이 공업용지를 매입하려는 친구를 대신해 토지소유자에게 땅을 팔 것을 종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388
2008광주조정16	· 보성군 (군수 정종해) 대 남도일보 (정정청구) 보성군이 수해복구를 위장해 사유지를 국가예산으로 복구해 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389
2008서울조정155	· 정○○ 대 노컷뉴스 (손해청구) '이한열 열사 추모제'에 참석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 기사사진삭제	391
2008서울조정156	·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수호) 대 KBS-1TV (정정청구) 녹용이 소아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91
2008강원조정5	· 이○○ 대 강릉KBS-1TV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명퇴를 신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393
2008서울조정157	·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영호) 대 디앤디포커스 (정정 · 손해청구) 군인공제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군화 납품을 독식하고 있어 병사들이 성능미달의 군화를 사용하는 등 특혜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394
2008서울조정158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종구) 대 수산신문 (정정청구) 수협중앙회가 예산을 남용하고 회계를 편법으로 운용하며 회장이 감사위원장 선출에 간여하는 등 독재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96

2008서울조정159	· 보성군 (군수 정종해) 대 해동일보 (정정청구) 보성군이 2006년에 발주한 수해복구공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군수의 유세를 도와준 지주에 대한 보은성 특혜 공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398
2008서울조정160	· 전○○ 대 연합뉴스 (정정 · 손해청구) 서울 시청광장에서 전사자 위령제를 지낸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과 촛불집회 참가자의 충돌에 관해 보도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399
2008충북조정4	· 김○○ 대 충청매일 (정정 · 손해청구)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미용실 여사장인 유부녀와 불륜관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400
2008경기조정22	· 이익성 대 인천신문 (정정청구)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할 수 있음에도 구의원인 신청인의 겸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02
2008대구조정5	· 안○○ 대 계명대신문 (손배청구) 대학 내 나홀로죽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학교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402
2008서울조정161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를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	403
2008서울조정162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를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I	404
2008서울조정163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를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II - 반론보도	404
2008서울조정164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매일경제 (정정청구)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를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V - 후속보도	405
2008서울조정165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를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V - 후속보도	406
2008대구조정6	· 강○○ 대 경북조은뉴스 (추후청구) 신청인이 경북조은뉴스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탈취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후속보도	406
2008서울조정166	· 전국민주화학생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상진) 대 동아일보 (정정 · 손해청구) 화학섬유노조연맹 소속 15개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408

2008서울조정167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상진) 대 서울경제 (정정 · 손배청구) 화학섬유노동조합 소속 15개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409
2008서울조정168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상진) 대 한국경제 (정정 · 손배청구) 화학섬유노동조합 소속 15개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정정보도	411
2008서울조정169	· 김○○ 외 1인 대 동아일보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촛불집회 참석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11
2008서울조정170	· 이○○ 대 굿뉴스강남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12
2008경기조정23	· 1. 송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김○○) 2. 김○○ 3. 김○○ 대 의정부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알뜰장터와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보증금을 누락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13
2008서울조정171	· 최○○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주택재개발조합장의 친동생인 신청인이 조합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금정구청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414
2008서울조정172	· 이○○ 대 민중의 소리 (정정 · 손배청구) 여경기동대 소속 순경인 신청인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성 장애인의 머리를 붙잡고 연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15
2008서울조정173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전○○) 대 뉴시스 (정정청구) 서울대 총학생회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목적 이외의 촛불집회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학생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자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17
2008서울조정174	· 이명박 대 오마이뉴스 (정정 · 손배청구) 대통령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촛불시위 배후세력은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친북세력' 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18
2008서울조정175	· 보위덕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정○○)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신청인 노조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20
2008부산조정11	· 윤○○ 대 부산MBC-TV (추후청구) 건설회사 간부인 신청인이 부산 민락매립지 주상복합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경찰에서 내사중지로 처리되었다	420
2008대구조정7	· 박○○ 대 울진타임즈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생산하는 벌꿀이 가짜이며, 벌꿀의 진위여부를 문제 삼은 민원인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22
2008서울조정176	· 박○○ 대 tvN (손배청구) 동성애 잡지에 표지모델로 등장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423
2008경기조정24	· 송○○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창고 신축현장에 방치해 놓은 토사가 흘러내려 농가의	

	담벼락을 무너뜨려 논을 훼손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23
2008부산조정12	· 최○○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주택재개발조합장의 친동생인 신청인이 조합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금정구청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424
2008서울조정177	·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허상만)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정부가 BK21 지원기준을 갑자기 바꾸고 특정대학만을 지원하여 국내 MBA스쿨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25
2008전북조정15	·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회장 김○○) 대 전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이벤트의 예산집행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27
2008서울조정178	· 시민권리연대 (대표 최○○) 대 메디컬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병·의원 의료기기 업체들을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28
2008충북조정5	· 김○○ 대 동양일보 (정정·손배청구)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충청북도의 사퇴요구를 거절하고 임기를 채울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직책은 임기가 없다	429
2008서울조정179	· 배○○ 대 서울일보 (정정·손배청구) 교단을 탈퇴한 신청인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430
2008대전조정9	· 홍성군 (군수 이종건) 대 충남일보 (정정·손배청구) 홍성군에서 인사청탁 관련 금품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관매직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31
2008서울조정180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동아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이 산하 노조를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파업에 동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32
2008서울조정181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매일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현대차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파업을 강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35
2008서울조정182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조선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소속 현대차지부 홈페이지에 조합원들의 파업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고 지부 내 온건노선조직인 ‘현장연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36
2008서울조정183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한국경제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소속 현대차지부의 집행부와 조합원들간 갈등뿐 아니라 신청인 조합과 현대차 지부간 마찰 등 파업강행을 두고 ‘勞勞 갈등’ 양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38
2008서울조정184	· 1. 나주시 (시장 신정훈) 2. 신정훈 대 아시아일보 (정정청구)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고 나주시장 측근 소유의 토지가 계속적으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지역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41

2008서울조정185	· 남경필 대 일요서울 (정정청구) 신청인이 제기한 보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언론사가 이를 위반하고 재판결과를 모르는 것처럼 후속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443
2008전북조정16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 류영하) 대 전라일보 (정정청구) 대형차 전용선박을 운용하고 있는 파크로드사가 군산항을 기항지로 삼을 계획을 세웠으나 군산해양항만청이 항만운영세칙을 변경하지 않아 이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46
2008전북조정17	· 전주시 (시장 송하진) 대 JTV (정정 · 손배청구) 전주시가 유수율 제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회가 확정결하여 공개한 결과를 반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무모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447
2008광주조정17	· (주)공연마루 (대표이사 황○○) 대 남도일보 (정정청구) 공연기획사인 신청인이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일반단체 대관일정 절반 이상을 독차지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48
2008경기조정25	· 배○○ 대 한국교회신보 (정정 · 손배청구) 교단을 탈퇴한 신청인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449
2008경기조정26	· 배○○ 대 CDN크리스천데일리뉴스 (정정 · 손배청구) 교단을 탈퇴한 신청인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정정보도	450
2008서울조정186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 대 중앙일보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많은 노조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정치파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51
2008서울조정187	· 배○○ 대 장로교연합신문 (정정 · 손배청구) 교단을 탈퇴한 신청인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454
2008서울조정188	· 고○○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정정청구) 신청인의 훗불시위 현장 제보가 거짓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55
2008서울조정189	· 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박○○)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 병원이 진료비용을 과잉청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56
2008대구조정8	· 경주온정마을 (대표 손○○) 대 일간 경북신문 (정정 · 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시설에서 상습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은폐 · 묵인되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457
2008대구조정9	· 경주온정마을 (대표 손○○) 대 경상매일신문 (정정 · 반론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시설에서 상습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은폐 · 묵인되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459
2008서울조정190	· 조○○ 대 조선일보 (추후 · 손배청구)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로 밝혀졌다 I - 추후보도	460
2008서울조정191	· 조○○ 대 아파트관리신문 (추후 · 손배청구)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로 밝혀졌다 II - 추후보도	461
2008서울조정192	· 사천시민참여연대 (대표 박○○) 대 SBS-TV (반론청구) 광포만 매립과 산업단지조성이 사천만과 광포만을 황폐화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462
2008서울조정193	· 이○○ 대 KBS-1TV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소매치기 피해자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주며 범인을 직접 잡아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 및 손해배상	465
2008서울조정194	· 김○○ 대 일요신문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알고 지내 온 여성의 소송사건 해결에 도움을 요청받고, 이를 빌미로 그녀를 농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466
2008서울조정195	· 박○○ 대 경향신문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469
2008서울조정196	· 박○○ 대 국민일보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470
2008서울조정197	· 박○○ 대 동아일보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470
2008서울조정198	· 박○○ 대 세계일보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471
2008서울조정199	· 박○○ 대 조선일보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471
2008서울조정200	· 박○○ 대 한국일보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472
2008서울조정201	· 박○○ 대 일요시사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I - 정정보도	472
2008서울조정202	· 박○○ 대 스포츠칸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 정정보도	475
2008서울조정203	· 박○○ 대 뉴시스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 정정 및 손해배상	475
2008서울조정204	· 박○○ 대 MBN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 기사삭제	476
2008서울조정205	· 박○○ 대 SBS-TV (정정 · 손해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 - 반론보도	476
2008서울조정206	· 드림리츠 (주) (대표이사 장○○) 대 KBS-1, 2TV (반론청구)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현행법상 불법인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도로계획을 홍보하는 등 분양률 상승을 위해 허위 과장광고 등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 - 반론보도	477
2008서울조정207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지부장 윤해모)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의 불법 정치파업으로 현대차가 300억이 넘는 생산 손실을 보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79
2008서울조정208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지부장 윤해모)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작업화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청인 노조가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80
2008서울조정209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지부장 윤해모)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신청인이 금속노조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81
2008서울조정210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지부장 윤해모) 대 한국경제 (정정청구) 신청인이 민주노총의 '들러리 파업'에 나서 소속 조합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82
2008경기조정27	· (주) 옥전비료 (대표이사 강○○) 대 오늘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음식폐기물을 노지에 쌓아두었고, 수십여 차례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만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83
2008서울조정211	· 주식회사 쓰리씨스포츠 (대표이사 차○○) 대 한겨레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업체를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구두해명	485
2008대전조정10	· 서산시 (시장 유상곤) 대 서해안신문 (정정·손배청구) 서산시의 쓰레기처리 업무가 엉망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486
2008대전조정11	· 이○○ 대 대전KBS-1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488
2008대전조정12	· 이○○ 대 TJB-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488
2008서울조정212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 재판국 (국장 김○○) 대 목회자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재판국이 모 교회 사건을 재판하면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을 '정직' 판결해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89
2008서울조정213	· 엠비케이파트너스 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 윤○○) 대 머니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이 국민유선방송투자에 지원한 C&M 경영권 인수 자금을 다른 회사가 지원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492
2008서울조정214	· (주)프리존미디어 (대표이사 강○○) 대 MBC-TV (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영상물을 무단 도용해 보도함으로써 동영상의 취지가 왜곡되어 피해를 입었다	493
2008서울조정215	· 손○○ 대 한겨레 (반론청구)	

	신청인이 유명 작가를 인터뷰하면서 원래 취재목적과 상관없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계속 질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494
2008서울조정216	· 김인규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前 대통령 실장에게 KBS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496
2008서울조정217	· 김○○ 대 KBS-1TV (반론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치안센터 근처의 신고자 집도 찾지 못해 그냥 돌아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후속보도	497
2008서울조정218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협회장 이○○) 대 KBS-1TV (정정청구) 신청인 협회가 국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499
2008부산조정13	· 조○○ 대 사하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피신청인 언론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00
2008서울조정219	· 1. 주식회사 동인개발 (대표이사 원○○) 2. 월드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3. 원○○ 4. 김○○ 대 시사HN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들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택지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편법으로 조깅고, 지자체가 특혜성 밀어주기를 하여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01
2008경남조정16	· 진주시 (시장 정영석) 대 경남일보 (반론청구) 진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의 사기혐의 구속 사건과 관련, 회장이 진주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진주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505
2008서울조정220	· 안병만 대 국민일보 (정정청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인 신청인이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직 당시 발생했던 편입학 시험 부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07
2008서울조정221	· 손○○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조선일보 인터넷자의 메모리카드를 빼앗고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08
2008경기조정28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협회장 이○○) 대 OBS경인TV (정정청구) 신청인 협회가 국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510
2008서울조정222	· 1.유○○ 2. 박○○ 3. 마○○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손배청구)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이 협박성 전화를 받는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얼굴 사진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11
2008서울조정223	· 문국현 대 한겨레 (정정청구) 창조한국당 대표가 이한정 의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며 공천현금 수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11
2008서울조정224	· 이○○ 대 국민방송 (손배청구) 신청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에 개입되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512
2008서울조정225	· 1. 최규엽 2.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대 세계일보 (반론청구) 신청인이 금강산관광객 총격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글을 발췌하여 민노당원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근거로 친북세력이라고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 반론보도	514
2008서울조정226	· 김○○ 대 레디앙 (정정·손배청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보좌진이 측근의 친·인척들로 인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 및 반론보도	515
2008서울조정227	· 김○○ 대 레디앙 (정정·손배청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보좌진이 측근의 친·인척들로 인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 및 반론보도	518
2008서울조정228	· 김○○ 대 경향신문 (정정·손배청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보좌진이 측근의 친·인척들로 인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정정보도	519
2008서울조정229	· 김○○ 대 시사IN (정정·반론·손배청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보좌진이 측근의 친·인척들로 인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정정보도	519
2008충북조정6	· 1. 청주광역시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박○○) 2.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마을회 (회장 이○○) 대 청주KBS-1TV (정정·손배청구) 청주 광역소각시설 유치 지역에 지급된 마을발전기금이 불법 집행되고, 무자격자가 협의체 전문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협의체 위원장이 타 지역에 없는 활동수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21
2008경기조정29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청장 이병주)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포스코 창고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포스코가 투입한 건축비를 항만시설 사용료로 삭감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보도하였으나 적법하게 국가귀속후 관리하고 있다 - 정정보도	523
2008서울조정230	· 홍희덕 외 6인 대 시사IN (정정·반론청구)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최측근의 친·인척 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여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24
2008전북조정18	· 김제경찰서 (서장 이승길) 대 전북일보 (정정청구) 김제경찰서가 계장급에 대해 직위공모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모 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 계장급으로 발령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24
2008충북조정7	· 박○○ 대 청주MBC-TV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이웃의 정신지체 장애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료를 실제보다 비싸게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추후보도	526
2008서울조정231	· 박○○ 대 MBC-TV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옥션 해킹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27
2008서울조정232	· (재)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이사장 최○○)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모르문교' 라고 불리는 신청인 종교가 일부다처제의 교리를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29
2008서울조정233	· 중앙일보 엔아이이연구소 (대표이사 백성기) 대 미디어오늘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집단폭행을 당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으며,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530
2008서울조정234	· 중앙일보 엔아이이연구소 (대표이사 백성기) 대 미디어오늘 (반론청구) 신청인 회사가 집단폭행을 당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으며,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531
2008서울조정235	· 전○○ 대 한겨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경찰에 고발한 뒤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 및 손해배상	532
2008대전조정13	· 김○○ 대 굿모닝논산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농업용 병충해 무인방제시설이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533
2008대전조정14	· 김○○ 대 충청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농업용 병충해 무인방제시설이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534
2008대전조정15	· 김○○ 대 해동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회사의 농업용 병충해 무인방제시설이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I	534
2008서울조정236	· 길○○ 대 한국경제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지회장으로 있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회사가 파산에 처하게 됐고 신청인도 노조 설립을 후회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35
2008경기조정30	· 김○○ 대 전국매일 (정정·손배청구) 논산지역 농업용 병충해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한 신청인이 부품규격화와 AS가 보장되지 않는 무허가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37
2008경기조정31	· 이화여대예정부지강제매입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심○○) 대 파주타임스 (정정·손배청구) 이대 파주캠퍼스 설립 예정부지의 소유자와 부지면적을 잘못 보도 하였으며, 부지강제매입반대 대책위원 중 일부가 부재지주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38
2008경기조정32	· 황○○ 대 파주타임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파주시 홈페이지에 파주시 현안문제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 한차례 게재하였으나, 마치 여러차례 시리즈로 게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539
2008강원조정6	· 김○○ 대 춘천MBC-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비타민 통증주사' 부작용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40
2008서울조정237	· 드림리츠(주) (대표이사 장○○) 대 노컷뉴스 (반론청구)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현행법상 불법인 '아파트 단지내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도로계획을 홍보하는 등 분양률 상승을 위해 허위 과장광고 등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I - 반론보도	541
2008서울조정238	· 여○○ 대 tvN (손배청구) 카지노 여성 앵벌이의 성매매 관련 보도에서 몰래카메라를 통해 신청인의 얼굴과 음성이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42
2008서울조정239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대 동아일보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언론사가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정부가 요청한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행사 중계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544
2008서울조정240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언론사가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정부가 요청한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행사 중계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547
2008서울조정241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연주) 대 세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언론사가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정부가 요청한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행사 중계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548
2008서울조정242	·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정○○) 대 KBS-1TV (반론 · 손해청구)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가 국보 건축물인 '세병관' 에서 동창회 행사를 개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I	550
2008서울조정243	· (주)스마트텔 (대표이사 고○○) 대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정정 · 반론청구) 유학생에게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청인 업체가 고의적으로 요금 명세서를 늦게 발송하고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51
2008경남조정17	·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정○○) 대 창원KBS-1TV (반론 · 손해청구)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가 국보 건축물인 '세병관' 에서 동창회 행사를 개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II	552
2008대구조정10	· (주)웰컴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최○○) 대 매일신문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대구시의 브랜드택시(한마음콜) 사업자 선정과 관련, 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맡았던 신청인 회사가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3
2008대구조정11	· (주)웰컴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최○○) 대 매일신문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대구시의 브랜드택시(한마음콜) 사업자 경쟁입찰 당시, KTF측과 통신망 이용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신청인 회사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554
2008대구조정12	· (주)인테고소프트 (대표이사 권○○) 대 매일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특허를 갖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고기재 서비스' 를 타 회사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555
2008경기조정33	· 채○○ 대 인천일보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동료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계약해지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최종판결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6
2008전북조정19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 이재욱) 대 소통뉴스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익산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와 사전내정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57
2008서울조정244	· 현대환경산업(주) (대표이사 김○○) 대 종합법률신문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회사가 건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59
2008서울조정245	·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 서울신문 (정정청구)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기획재정부에 의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61
2008경남조정18	· 양산시 (시장 오근섭) 대 경남매일신문 양산시가 특별회계를 정기에금으로 예치하면서 제안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아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관공공사를 몰아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61
2008서울조정246	· 민주당 (대표 정세균) 대 조선일보 (정정 · 손해청구) 임실군수가 검찰의 수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수억 원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63
2008서울조정247	· 한국방송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원균)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가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에게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했으며, 정부 전복투쟁에 나섰다는 등의 사실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64
2008경남조정19	· 외동동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강○○) 대 경남매일신문 (정정청구) 외동동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들과 상의 없이 초등학교로 통하는 아파트 후문을 폐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66
2008서울조정248	· 한국방송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원근)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미디어포커스에서 중도 보수 언론 단체의 토론회 및 좌파신문이나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을 단 한번도 방영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	567
2008서울조정249	· 김용근 대 MBC-TV (정정 · 손배청구)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해 인천 시내 학교 36곳에 수익계약을 따내 10억 원 이상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569
2008경기조정34	· 이한대 대 중부일보 (정정 · 손배청구) 廣州 부시장이 터무니없이 많은 회의를 주재하여 민원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70
2008전북조정20	· 완주군 (군수 임정엽) 대 새전북신문 (반론청구) 완주군이 봉동2지구 미술장식품 설치작품 선정과 관련 전국공모전 1등 당선작을 석연찮은 이유로 부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71
2008서울조정250	· 21세기컨설팅(주) (대표이사 양○○) 대 머니위크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은 적법한 부동산 개발업체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73
2008서울조정251	· (주)쓰리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최○○) 대 KBS-1TV (정정 · 반론청구) 신청인의 자동차 연료절감기 제품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제품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575
2008광주조정18	· 신안군 (군수 박우량) 대 인터넷전남뉴스 (정정청구) 신안군이 군수의 허락 하에 일부 출입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83
2008서울조정252	· (주)지아이씨케이 (대표이사 유○○) 대 KBS-1TV (정정청구) 미국 간병인 취업이민을 대행하는 신청인 회사가 병원이 아닌 인력 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있고, 이민수속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미 변호사협회에 등록도 되지 않은 등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584
2008서울조정253	· 김○○ 대 머니투데이 (반론청구) 신청인이 두산주류가 생산하는 '처음처럼' 소주에 사용되는 용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내용을 유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86
2008서울조정254	·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대통령의 조카 · 측근 등이 근무하고 있는 맥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인수 주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87
2008서울조정255	·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 한겨레21 (정정청구) 정부가 맥쿼리 그룹에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영평가점수를 낮게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88
2008서울조정256	· 조○○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의 단식으로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연되어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91
2008서울조정257	· 최○○ 대 오마이뉴스 (정정 · 손배청구)	

	정보과 형사인 신청인이 승진을 위해 특정 종교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92
2008서울조정258	·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재개발조합이 자신들이 소유한 땅의 가치는 높게 평가한 반면, 시행사에 땅을 팔지 않은 조합원 소유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94
2008서울조정259	·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 대 한국경제 (반론청구) 신청인 조합이 일산 덕이지구 개발과정에서 고양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595
2008서울조정260	·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 대 SBS-TV (정정청구) 법원이 조합원 총회 의결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덕이지구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597
2008경기조정35	· 심재철 대 창작과비평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자신의 집무실 IP로 닉네임을 이용하여 자신을 옹호하는 발언을 게재 하였으며, 다음 아고라에 5월 한달동안 8백여개의 글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598
2008부산조정14	· 신○○ 대 부산KBS-1TV (손배청구) 경찰의 방향지시등 집중 단속에 관해 보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신청인의 초상과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599
2008전북조정21	· 박○○ 대 전주KBS-1TV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국제결혼을 알선하면서 신랑측의 개인정보를 외국인 신부에게 잘못 제공하여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599
2008서울조정261	· 박○○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KBS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집단구타를 당했음에도 보수단체회원과 서로 주먹다툼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갔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601
2008서울조정262	· 부산대학교 (총장 김인세) 대 연합뉴스 (정정청구) 부산대학교가 면허가 없거나 자격 미달 업체에 첨단강의실 구축사업을 발주하고 주요 장비를 최고 3배나 비싸게 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02
2008대전조정16	· 채○○ 대 대전KBS-1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이 건강보조제품을 잘못 가공하여 변질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과보도	605
2008서울조정263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이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해당 교회의 채무승계계약에 관여하는 등 교회를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06
2008서울조정264	· 김○○ 대 일간스포츠 (정정 · 손해청구) 국악인인 신청인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사과보도	607
2008서울조정265	· 반○○ 대 아임닥터뉴스 (정정 · 손해청구) 성형외과 의료사고와 관련된 기사에 언급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터뷰 내용을 임의로 각색하고 병원과 신청인의 실명을 언급하여 피해를 입었다 - 기사삭제	608
2008서울조정266	· 박○○ 대 KBS-2TV (손배청구) 가발 관련 인터뷰에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609

2008경기조정36	· 이○○ 대 NBS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자동차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정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10
2008경기조정37	· 박○○ 대 의정부버락시장 (정정·손배청구) 학교 운영위원장인 신청인이 '신설 중·고등학교가 개교계획을 맞추지 못해 학생들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611
2008전북조정22	· 송○○ 대 전북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 부안군수의 측근이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12
2008광주조정19	· 보성군 (군수 정종해) 대 보성군민신문 (정정청구) 보성군이 동원 F&B를 보성녹차 가공유통센터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협약체결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업체에 녹차가공공장을 기부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613
2008전북조정23	· (사)전라북도월남참전전우회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 대 전일신문 (정정·반론청구) 신청인이 추진한 월남참전기념탑 건립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614
2008서울조정267	· 1. 조○○ 2. 이○○○ 대 한국일보 (손배청구)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신청인들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616
2008서울조정268	· (주)위더스아이티 (대표이사 김○○) 대 가스신문 (정정청구) 신청인 업체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부실 시공하여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617
2008강원조정7	· 김○○ 대 GTB-TV (정정청구) 어촌계장인 신청인이 어구보관장을 회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어민소득증대사업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을 따내 사업을 독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18
2008경기조정38	· 1. 송의5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양○○) 2. 양○○ 대 경기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정비사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2
2008강원조정8	· 이○○ 대 강원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대학학장의 면담을 방해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623
2008강원조정9	· 이○○ 대 강릉MBC-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대학학장의 면담을 방해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624
2008서울조정269	· 김○○ 대 경향신문 (정정·손배청구)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다른 교사 및 학부모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이 600여 건이나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625
2008서울조정270	· 경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최○○) 대 YTN (추후청구) 경산축협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취소하게 하여, 억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27
2008광주조정20	· 오○○ 대 호남신문 (정정청구) 경찰인 신청인이 특정지역 출신이어서 지역 주민과 건설회사 직원간 폭행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8
2008광주조정21	· 박○○ 대 남도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신안군에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지원한 선박건조 사업비 수천만 원을 착복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29
2008서울조정271	· 1. 양○○, 2. 천○○ 대 YTN (추후청구) 축협 직원인 신청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취소하게 하여 억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30
2008서울조정272	· 보람상조개발 (대표 최○○) 대 상조뉴스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상조회사가 자금악화로 인해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신규회원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31
2008서울조정273	· 충남광역푸드뱅크 (대표 권○○) 대 KBS-1TV (추후청구) 부여기초푸드뱅크가 기부식품을 빼돌려 교회나 일반 상점 등에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32
2008서울조정274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대 뉴시스 (반론청구)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635
2008서울조정275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대 연합뉴스 (반론청구)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636
2008서울조정276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대 노컷뉴스 (반론청구)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637
2008서울조정277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대 민중의소리 (반론청구)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기사삭제	637
2008서울조정278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대 쿠키뉴스 (반론청구)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638
2008광주조정22	· 보성군 (군수 정중해) 대 보성군민신문 (정정·손배청구) 보성군이 선심성 사업비가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누장 제출하여 공무원들의 휴가를 방해하였고, 특정인의 자녀들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38
2008서울조정279	· 21세기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대 머니워크 (반론청구) 신청인 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40
2008경기조정39	· 골든정보시스템 (대표 권○○) 대 광명일보 (정정청구) 광명시 사무용품 공급업체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가 유령업체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42
2008경기조정40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교회목사직과 기독교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노조재정업무에 간여하고 모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44
2008경기조정41	· 논현휴먼시아1단지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대 경인일보 (반론청구) 일부 주민이 택지지구내 학교신설계획이 취소·변경된 것을 항의한 것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가 전문계高 이전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반론보도	645
2008서울조정280	· 디에스디엘(주) (대표이사 김○○) 대 소비자만드는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호텔이 투숙객의 세탁물 분실사건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처하고 손님을 강제체크아웃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삭제	646
2008경기조정42	· 엘○○○○○○ 도○○ 대 부천포커스 (손배청구)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화하여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 손해배상	648
2008서울조정281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대 조선일보 (반론청구)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I - 반론보도	649
2008서울조정282	· 보람상조개발 (대표 최○○) 대 상조뉴스 (정정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조 광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광고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기사삭제	650
2008경기조정43	· 이○○ 대 경기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사설구급차로 사체를 운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51
2008경기조정44	· 김○○ 외 294명 대 경기방송 (정정·손배청구) 평택시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점심시간 이전부터 식사를 하고, 출창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으며, 빈 사무실에 에어컨을 가동하여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52
2008서울조정283	· 조○○ 대 신동아 (정정·손배청구) 2004년 일본에서 해당 배우들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 없이 한류스타 사진집이 출간된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54
2008서울조정284	· 서울강남경찰서 (서장 정영호) 대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여청수 경찰청장이 추석 연휴기간 중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 간부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60
2008강원조정10	· 인제군 (군수 박상재) 대 강원신문 (정정청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인제군청 담당공무원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실시공을 목인한 채 준공허가를 내주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61
2008서울조정285	· 전북지방경찰청 (청장 김철주) 대 뉴시스 (정정청구)	

	전북경찰 내부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62
2008광주조정23	· 김○○ 대 광주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신고한 나무도난 사건의 경찰수사 결과, 신청인의 가족들이 나무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64
2008광주조정24	· 이○○ 대 데일리안 광주전라 (반론청구) 복지시설 지도원인 신청인이 시설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목인 · 방조하였으며, 임신사실을 숨기고 생활지도원으로 재입사하여 출산 후에는 아이와 함께 근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65
2008광주조정25	·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지부장 정○○) 대 전남도민일보 (정정 · 손배청구) 예총 해남지부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국악협회 지부장을 제명해 과장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66
2008광주조정26	·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지부장 정○○) 대 해남타임즈 (정정 · 손배청구) 예총 해남지부가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보조비를 유용하는 등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항의하는 국악협회 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668
2008서울조정286	·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지부장 정○○) 대 글로벌타임즈 (정정 · 손배청구) 예총 해남지부가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보조비를 유용하는 등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항의하는 국악협회 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 및 반론보도	670
2008서울조정287	·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지부장 정○○) 대 아시아일보 (정정 · 손배청구) 예총 해남지부가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보조비를 유용하는 등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항의하는 국악협회 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 정정보도	672
2008서울조정288	· 김○○ 외 27명 대 조선일보 (정정 · 손배청구) 기류전자 노조원인 신청인들의 파업으로 회사의 적자가 급증하였고, 보상금 문제로 노사합의가 결렬되었으며, 노조위원장은 타 업체에 있을 때도 위로금을 받기 위해 과격한 농성을 한 경력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673
2008서울조정289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이○○) 대 한국교육신문 (정정 · 손배청구)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급여금 제도의 급여율이 급락하였고, 대출금리가 시중 은행 금리보다 더 높거나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75
2008서울조정290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최○○) 대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학부모단체 핵심 임원들의 자녀가 일기 대회 등에서 대통령상 등을 몰아 받아 대학 특별전형 입학 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으며, 단체 대표가 대입전형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참여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79
2008충북조정8	· 강○○ 대 충청매일 (정정 · 손배청구) 충주시의원인 신청인이 수준 이하의 시정질문을 하여 빈축을 샀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680
2008서울조정291	· 1. 잠실2동종합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조○○) 2. 조○○ 대 도시개발신문 (정정 · 손배청구) 잠실2동상가재건축추진위가 잠실 2단지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저해하는	

	불법단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후속보도	680
2008경기조정45	· 이○○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사용자 신분임에도 위조한 허위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685
2008서울조정292	· 금융감독원 (원장 김종창) 대 한국경제TV (정정청구) 금감원이 스피드가 떨어지는 조직문화 때문에 각종 악성 루머 및 공매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금융위기가 확산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86
2008서울조정293	·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제집행위원회 (위원장 이○○) 대 한국일보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제17회 전국무용제가 예산을 낭비하고 관객이 없어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 및 반론보도	687
2008서울조정294	· (주)스테이트월서 (대표이사 김○○, 이○○) 대 한겨레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골프장 사업승인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지 주변의 미술관과 주택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689
2008서울조정295	· (주)스테이트월서 (대표이사 김○○, 이○○) 대 KBS-1TV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골프장 사업승인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지 주변의 미술관과 주택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691
2008광주조정27	· 나○○ 대 무등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찍어달라며 측근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692
2008광주조정28	·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제집행위원회 (위원장 이○○) 대 전남일보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제17회 전국무용제가 예산을 낭비하고 관객이 없어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694
2008광주조정29	·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제집행위원회 (위원장 이○○) 대 목포MBC-TV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제17회 전국무용제가 예산을 낭비하고 관객이 없어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696
2008서울조정296	· 김○○ 대 서울일보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696
2008서울조정297	· 지○○ 대 오마이뉴스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의 부모에게 서울대 음대 진학을 빌미로 접대를 요구하여 3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697
2008충북조정9	· (주)경원실업 (대표이사 홍○○) 외 1인 대 충청리뷰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으며 대검이 이를 내사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 및 반론보도	700
2008충북조정10	· (주)경원실업 (대표이사 홍○○) 외 1인 대 충북인뉴스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으며 대검이 이를 내사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 및 반론보도	703
2008서울조정298	· 한국교회SBS사태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대 SBS-TV (정정청구)	

	SBS 4부작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프로그램이 이슬람교를 홍보하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진리를 부정하여 피해를 입었다	703
2008서울조정299	·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회장 최○○) 대 MBC-TV (정정청구) 다이어트 후 탈모 및 요요현상을 겪고 있는 여성의 사례를 방송하면서 한의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환약’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709
2008서울조정300	· 유○○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촛불시위 참석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폭행이 없었다는 가담자의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711
2008서울조정301	· 오○○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교사인 신청인이 학교측의 교육부 고시 위반을 이유로 학생성적 공개를 반대했음에도 전교조의 정책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713
2008서울조정302	·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 신동아 (정정청구) 국토해양부가 우호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의 직원을 지리정보 소관부처에 파견근무하게 하고, 정보시스템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용역을 주도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15
2008서울조정303	· 서울강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정○○) 대 교통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단체의 이사장 선거에서 전 이사장이 연임되었으나,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선거가 부정하게 치루어진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17
2008경기조정46	· 김용근 대 우리일보 (정정·손배청구) 인천시의원인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718
2008경기조정47	· 김용근 대 인천일보 (정정·손배청구) 인천시의원인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보도	719
2008경기조정48	· 김용근 대 인천신문 (정정·손배청구) 인천시의원인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720
2008경기조정49	· 김용근 대 중부일보 (정정·손배청구) 인천시의원인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 정정보도	720
2008서울조정304	· 박○○, 박○○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손배청구) 촛불집회에 일명 ‘유모차부대’로 참여한 신청인들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721
2008전북조정24	· 임정엽 대 완주신문 (정정·손배청구) 완주군수가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21
2008서울조정305	· 장○○, 권○○ 대 M.NET (손배청구) 팬들이 연예인에게 고가의 명품선물을 한다고 보도하면서 연예인을 보려고 줄서 있는 신청인들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723
2008서울조정306	· 민주공무원노동조합신안군지부 (지부장 윤○○)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 군청과 맺은 단체협약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는 조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25
2008서울조정307	· 강○○ 대 MBC ESPN (손배청구) 방송 촬영장(사직구장)에서 경호 수행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방송에 내보내며, 야구장 관중들의 착석을 막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726
2008서울조정308	· 오폐신현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 대 YTN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신청인 조합이 광주시로부터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26
2008서울조정309	· 최○○ 대 이데일리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프로야구 LG구단의 단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파벌을 조성하고 팀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28
2008서울조정310	· 권○○, 김○○ 대 기독교신문 (정정 · 손배청구) 기독교신문의 전 사장인 신청인이 신문사 발전기금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승진인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729
2008서울조정311	· 기륭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대 오마이뉴스 (정정청구) 기륭전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통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기사수정	731
2008서울조정312	· 황우석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황우석 박사가 10개국에 복제배아줄기세포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한 6개국에서 이미 거절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32
2008서울조정313	·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 서울지점 (대표 송○○) 대 경향신문 (정정청구) 맥쿼리 관련 인사가 이명박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어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33
2008경기조정50	· 유○○ 대 경기방송 (정정 · 손배청구) 경찰관인 신청인이 자신 소유의 낚시터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임차인들이 개최한 사행성 낚시대회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734
2008경기조정51	· 유○○ 대 뉴스리더 (정정 · 손배청구) 경찰관인 신청인이 자신 소유의 낚시터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임차인들이 개최한 사행성 낚시대회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36
2008서울조정314	· 권형례 대 데일리안 (추후 · 손배청구) 대전시의원인 신청인이 남편 명의의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36
2008서울조정315	· 권형례 대 데일리안 (정정 · 손배청구) 대전시의원인 신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호화별장을 신축하였고, 인접 임야를 불법으로 대지로 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38
2008서울조정316	· 1.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이사장 김○○) 2.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김○○) 3. 김○○ 대 KBS-1TV (정정 · 손배청구) 법화종 총무원장이 개인 소유 사찰인 교현사를 종단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및 사과	739
2008서울조정317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이사장 박○○)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황우석 박사가 10개국에 복제배아줄기세포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한 6개국에서 이미 거절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41
2008서울조정318	· 환경부 (장관 이만익) 대 KBS-1TV (정정청구) AI 가금류들을 매몰한 지역의 지하수에서 각종 세균과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주민들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42
2008대전조정17	· 권형례 대 데일리안 대전충남 (추후 · 손배청구) 신청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수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추후보도	743
2008대전조정18	· 권형례 대 데일리안 대전충남 (추후 · 손배청구) 신청인이 불법으로 임야를 전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추후보도	745
2008대구조정13	· 옥○○ 대 영남일보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PR보도	746
2008서울조정319	· 여○○ 대 경향신문 (정정 · 손배청구)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I - 정정 및 반론보도	748
2008서울조정320	· (주)세쿼이아그룹 (대표이사 박○○)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심리적성검사인 '유학적합성검사'를 경쟁업체가 개발하였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749
2008서울조정321	· 권택기 대 매일경제 (반론청구) 신청인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기관 소관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엉뚱한 질의로 눈총을 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50
2008서울조정322	· 주식회사 전주방송 (사장 김○○) 대 미디어오늘 (정정청구) 신청인 전주방송이 강성 노조원을 부당 전직시키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방송위원회의 조건부 재허가 추천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의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52
2008서울조정323	· 1. 손○○, 2 김○○ 대 중앙일보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직원인 신청인들이 납품 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도와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및 사과	756
2008서울조정324	· 황○○ 대 장수황씨대중회소식 (정정 · 손배청구) 대중회 소식지의 편집위원장인 신청인이 쓴 칼럼을 종회 회장이 임의로 삭제하고 보도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757
2008부산조정15	· 김○○ 대 울산매일 (정정청구)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생산녹지인데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뒤 대규모 정원을 꾸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후속보도	758
2008서울조정325	· 최○○ 대 세이프코리아뉴스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폐기물재활용허가를 받아 이를 구실로 각종 폐기물을	

	불법 반입·매립하고 있으나 시청에서 이를 봐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60
2008서울조정326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지○○) 대 시사저널 (정정청구) 신청인 협회가 회원들에게 분배해야할 저작권료 및 공탁금 이자 등을 횡령하고, 분배를 조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761
2008서울조정327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 대 SBS-TV (정정청구) 치과 병원의 80%가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하였다는 보도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0개 병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이므로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64
2008서울조정328	· 고양경량전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홍○○, 이○○)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대화-식사지구'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66
2008광주조정30	·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임○○) 대 광남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가 영세가구 집수리 등에 사용되어야 할 39억여 원의 지원금을 부당 집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767
2008서울조정329	· 중앙복스(주) (대표이사 김○○)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출판사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직원 대부분을 내보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69
2008경기조정52	· 수원시 (시장 김용서) 대 중부일보 (정정청구) 수원시가 매각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도유지를 대상으로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 경기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70
2008서울조정330	· 이○○ 대 스포츠동아 (손배청구)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9,900원짜리 정장을 산 후 상품후기와 함께 올린 신청인의 양복 착용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저작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 사과	771
2008대전조정19	· 황○○ 대 충청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인상하고 비리로 주민과 마찰을 빚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772
2008경기조정53	· 조○○대 중부일보 (반론청구) 광명시 공무원인 신청인이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농협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4
2008부산조정16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회장 백○○) 대 국제신문 (정정청구) 부경고사태로 인해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들이 부산소재 초중고 축구팀 경기를 보이콧하고 부산시의 전국대회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4
2008서울조정331	· 벽산건설(주) (대표이사 김○○) 대 스포츠서울닷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건설사가 베트남 사업에 대한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지급하고 아파트 내부 옵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7
2008서울조정332	· 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 (회장 유○○) 외 2인 대 볼링코리아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연합회 사무처장이 불링코리아 발행인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78
2008서울조정333	· (주)알마레이저스아시아 (대표이사 최○○) 대 아임닥터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레이저 미용기의 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779
2008서울조정334	· (주)알마레이저스아시아 (대표이사 최○○) 대 메디컬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레이저 미용기의 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81
2008서울조정335	· 여○○ 대 국민일보 (정정 · 손해청구)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782
2008서울조정336	· 여○○ 대 동아일보 (정정 · 손해청구)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III - 반론보도	783
2008서울조정337	· 여○○ 대 세계일보 (정정 · 손해청구)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IV - 정정 및 반론보도	783
2008서울조정338	· 여○○ 대 조선일보 (정정 · 손해청구)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V - 반론보도	784
2008서울조정339	· 여○○ 대 서울일보 (정정 · 손해청구)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VI	785
2008서울조정340	· 여○○ 대 매일경제 (정정 · 손해청구)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VII - 후속보도	786
2008서울조정341	· (주)콜텍 (대표이사 박○○) 대 KBS-2TV (반론청구) 신청인 기업이 순이익을 냈으면서도 위장 폐업하고 새로 공장을 열어 비정규직을 뽑으려 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인해 폐업한 것이고 새로 공장을 가동할 계획도 없다 - 반론보도	787
2008경기조정54	· 강○○ 대 김포신문 (정정 · 손해청구) 김포문화원장 선거에서 신청인이 금전 및 향응을 제공해 표를 매수했고, 당선되면 1천만 원을 내놓겠으며, 김포 언론이 모두 썩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89
2008서울조정342	· 김○○ 대 MBC-TV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역술인들이 성형을 권한다는 보도에서 특정 병원을 소개하는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반론 및 손해배상	791
2008경기조정55	· 1. 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 (회장 유○○) 2. 유○○ 3. 지○○ 대 볼링코리아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연합회 집행부가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볼링코리아 발행인에게 음주폭행과 막말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92
2008서울조정343	· 한라상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대 상조뉴스 (정정청구) 신청인 회사가 고객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법인을 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광고 등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또한 확정되었다고 잘못 보도되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794
2008전북조정25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전주교회 (당회장 백○○) 대 전북일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교회가 담임목사의 전횡으로 인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회 신축을 강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후속보도	796
2008서울조정344	· 구립 로아어린이집 (원장 허○○) 대 MBC-TV (정정청구) 신청인 어린이집 교사들의 회식비 영수증을 아이들의 간식비로 지출한 것처럼 부정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797
2008경기조정56	· 김○○ 외 5인 대 인천신문 (정정청구) 노인복지시설 간호사인 신청인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798
2008서울조정345	·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서○○) 대 한겨레 (정정청구) 서울예고가 일부 지원자의 지도강사를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위촉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으나, 문제가 된 강사의 채점결과를 제외하는 등 입시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 반론보도	799
2008서울조정346	· 여○○ 대 서울신문 (정정·손배청구)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에 투신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 정정보도	801
2008서울조정347	· 육○○ 대 한국일보 (정정·반론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I - 정정보도 및 사과	802
2008서울조정348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 대 SBS-TV (정정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하루 4시간에 불과하다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및 사과	803
2008경기조정57	·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소장 정경환) 대 현대일보 (정정청구) 포천등기소가 법인인감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규정에도 없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수 년 동안 요구해 왔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07
2008부산조정17	· 울산지방경찰청 (청장 윤시영) 대 울산신문 (정정청구) 울산지방경찰청 직원간담회가 청장의 일방적인 훈사와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09
2008경남조정20	· 거창신문사 (대표 민○○) 외 4인 대 한국시사정보신문 (정정·손배청구) 한국시사정보신문 창간 3주년을 기념하는 발행인의 인사말에서 기존 지역신문사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협박을 극복하였다고 표현하여 거창지역 신문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 사과보도	810
2008경기조정58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강○○) 대 경기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회관 신축공사와 관련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채 대의원 대회를 열고, 특정업체와 결탁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11
2008서울조정349	· 여○○ 대 연합뉴스 (정정·손배청구)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에 투신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IX - 후속보도	813
2008서울조정350	· 여○○ 대 YTN (정정 · 손배청구)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에 투신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X - 후속보도	813
2008서울조정351	· 여○○ 대 뉴스엔뉴스 (정정 · 손배청구)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에 투신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XI - 반론보도.....	814
2008서울조정352	· 김○○ 외 5인 대 서울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들이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용의자의 말을 듣고 강력사건을 단순 음주사건으로 축소 처리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정정보도.....	815
2008서울조정353	·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락기지회 (지회장 방○○) 대 동아일보 (정정 · 손배청구) 콜트락기사가 신청인 노조의 파업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공장을 폐업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	817
2008서울조정354	·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락기지회 (지회장 방○○) 대 한국경제 (정정 · 손배청구) 콜트락기사가 신청인 노조의 파업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공장을 폐업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I - 반론보도	819
2008전북조정26	· 최○○ 대 전주MBC-TV (추후 · 손배청구) 신청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추후보도	819
2008서울조정355	·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이사장 신○○) 대 기독교타임즈 (정정청구) 신청인이 교역자 퇴직연금을 운용할 보험사를 독단적으로 선정하는데다 손실까지 보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820
2008서울조정356	· 판교LIG 건영예비입주자협의회 (회장 김○○) 대 경향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아파트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공해 및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400m이상 떨어져 있다 - PR보도	823
2008경기조정59	· 1. 유○○ 2. 박○○ 대 수도권일보 (반론청구) 교사인 신청인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항의하러 온 학부모에게 무성의하게 답변해 주고, 학부모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	825
2008경기조정60	· 1. 유○○ 2. 박○○ 대 중부일보 (반론청구) 교사인 신청인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항의하러 온 학부모에게 무성의하게 답변해 주고, 학부모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I	826
2008제주조정3	· 강○○ 대 제주프레스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 · 고발을 일삼아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공공운영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26
2008서울조정357	· 1. 테크온팜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2. 백○○ 대 아시아경제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K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T사를 설립하면서 K사의 사업제안서를 빼돌렸다고 보도되었으나, T사의 사업안은 K사의 사업제안서와 무관하다 - 반론보도	828
2008서울조정358	· 이○○ 대 농민신문 (정정·손배청구) 신청인이 GMO 표시제 확대를 막기 위해 GMO 수입가공업체 가동율과 근로자 해고위기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 및 사과보도	829
2008서울조정359	· 강○○ 대 CNBNEWS (정정청구)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신청인이 컴퓨터를 훔쳐서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절도물품인지 모르고 구입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다 - 기사삭제	831
2008서울조정360	· 사단법인 한국컴퓨터판매인협회 (회장 정○○) 대 MBC-TV (정정·손배청구) 일부 컴퓨터 출장수리점들이 서비스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고 보도하면서 '사기' 라고 표현해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831
2008서울조정361	· (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김○○) 대 고뉴스 (정정청구) 교통카드 운영사인 신청인 업체가 국감 자료에서 교통카드 과·오납 환불현황을 실제보다 축소 보고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832
2008충북조정11	· 충주대학교 제5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정○○) 대 충북넷 (정정청구) 충주대 차기 총장선거 주요 이슈를 보도하면서 특정후보의 사진과 이력만을 상세히 적시해 타후보들이 피해를 입었다 - 정정보도	834
2008서울조정362	· 엔프라니(주) (대표이사 유○○) 대 메디컬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업체의 주름개선 화장품을 치료제로 인식시키기 위해 의사처방하에 연구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치료보조제로 판매할 뿐 의약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	836
2008부산조정18	· 최○○ 대 경상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 '요석궁' 이 유적지인데도 식사를 하지 않는 관광객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유적지도 아니고 사유지에 대한 출입통제이므로 정당하다 - 정정보도	837
2008강원조정11	·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안○○) 대 춘천시보 (반론청구) 춘천시가 건설도시국장을 춘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38
2008서울조정363	· 박○○ 대 서울신문 (손배청구) 주가 폭등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이 증권사 객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및 사과	840
2008광주조정31	· 조○○ 대 영광신문 (정정·손배청구) 영광문화원 창립자인 신청인이 36년간 1인 독재체제를 유지, 전횡을 일삼았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	840
2008경기조정61	· 광명시 (시장 이효선) 대 수도일보 (정정청구) 광명시장이 철망산 공영주차장을 대형마트에 매각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목변경을 미루어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42
2008서울조정364	· 서울굴삭기연합회 (회장 김○○) 대 한국건설기계신문 (정정청구) 지방과는 달리 서울 및 수도권에서 1일 8시간 굴삭기 장비임대가	

	정착되지 않은 것은 신청인 연합회 때문이라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44
2008서울조정365	· 오○○ 대 MBC-TV (손배청구) 한국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인도네시아의 혼혈 아동들에 대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사례가 언급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 - 기사삭제 및 사과	845
2008경기조정62	· 서○○ 대 양주동두천신문 (반론 · 추후청구) 임대아파트 통장인 신청인이 '업무상 불법행위'로 고발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것이고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다 - 정정보도	846
2008서울조정366	· 엄○○ 대 오마이뉴스 (정정 · 손배청구) 서울 음대 강사가 과외학생의 부모인 신청인으로부터 립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에 대해 '접대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가 나갔으나 이 정정보도문은 사실이 아니다	848
2008경기조정63	· 한○○ 대 과천문화신문 (정정청구) 공식인준이 안된 단체는 (가칭)이라는 명칭을 써야함에도 표기 없이 보도되어 일부 단체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정을 구함 - 정정보도	849
2008서울조정367	· 최○○ 대 한국건설기계신문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워크샵 비용을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50
2008서울조정368	· (주)북코스모스 (대표이사 최○○) 대 뉴시스 (손배청구) 신청인 회사가 제공 중인 2,500여 권의 도서요약서비스 중 단 3권만 문제되어 별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마치 모든 서비스가 불법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851
2008서울조정369	·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 (회장 박○○) 대 KBS-1TV (정정청구) 수입한약재 검사기관들이 시험결과를 조작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와 무관한 서울약령시 아치문을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 PR보도	852
2008경기조정64	· 주식회사 엔에스아이 (대표이사 안○○) 대 성남투데이 (손배청구) 신청인 개발업체가 성남시와 사전에 결탁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53
2008경기조정65	· 1. 오산중앙재래시장 상인회 (회장 유○○) 2. 유○○ 대 위클리와이 (정정 · 손배청구) 오산중앙재래시장 상인회장이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중복 실시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정된 사업구역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후속보도	856
2008서울조정370	· 육○○ 대 경향신문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II - 정정보도	858
2008서울조정371	· 육○○ 대 매일경제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III - 정정보도 및 사과	859
2008서울조정372	· 육○○ 대 고뉴스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IV - 정정보도	861
2008서울조정373	· 육○○ 대 네이션코리아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V - 정정 및 사과보도	862
2008광주조정32	· 나비골농협 (조합장 윤○○) 대 호남매일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농협이 군납대금 90여억 원을 편취했으며, 납품 식자재와 관련된 말썽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62
2008대구조정14	· (재)대구애락원 (이사장 이○○) 대 대구MBC-TV (반론청구) 한센인 보호시설인 신청인 단체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이사회 결정으로 임대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64
2008대구조정15	· 강○○ 대 일간 대구경북 (정정 · 손배청구) 도시개발 조합장인 신청인이 수억 원의 경비를 로비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조합원의 동의없이 사업시행사를 선정 · 계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66
2008서울조정374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시온교회 2. 이○○ 외 8인 대 에클레시아뉴스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 교회 교인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고발을 접수한 노회가 이를 불기소 처리하여 고소인이 기탁한 재판비용을 노회 재산으로 귀속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67
2008광주조정33	· (재)5.18기념재단 (이사장 윤○○) 대 남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금을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68
2008서울조정375	· 임○○ 대 한국수산업경제신문 (정정 · 손배청구) 군산수협 조합장인 신청인이 친척을 조합 상임이사에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70
2008경기조정66	· (사)한국물사랑연합회 (회장 염○○, 이○○) 대 DBS-TV (정정청구) 물사랑연합회가 불법으로 남양호에 양어장 및 농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71
2008서울조정376	·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사장 이○○) 대 CTS-TV (정정청구) 이슬람교의 한국진출과 관련된 토론 내용 중 이슬람교가 폭력적인 종교라고 표현해 신자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872
2008서울조정37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 대 동아일보 (정정청구) 신청인 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부정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징계 또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현재 이의신청 및 소명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874
2008경기조정67	· 1.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가평지부 (회장 정○○) 2. 정○○ 대 경기매일 (반론 · 손배청구) 신청인이 협의되지 않은 예술제 기획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축제위원들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된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875
2008서울조정378	· 정○○ 대 YTN (반론청구) 신청인이 군부대에 납품하는 국산 양파를 중국산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877
2008전북조정27	· 이○○ 대 새전북신문 (손배청구) 탈북자인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및 사과	877
2008경남조정21	· 양산시 (시장 오근섭) 대 경남도민일보 (정정청구)	

	양산시가 특정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78
2008서울조정379	· 김○○ 대 SBS-TV (손배청구) 신청인이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및 사과	880
2008서울조정380	· 이○○ 대 iDBN (정정·손배청구)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이 유령단체이며, 신청인이 자격증 없이 수화통역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정정 및 반론보도	880
2008서울조정381	· 이○○ 대 에이블뉴스 (정정·손배청구)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이 유령단체이며, 신청인이 자격증 없이 수화통역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 및 반론보도	883
2008서울조정382	· 김○○ 대 미디어오늘 (정정청구) 신청인이 썰 직불급 부당수령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883
2008서울조정383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송○○) 대 메디컬투데이 (정정청구) 신청인 약사회의 관계자가 '종근당처럼 타 제약사들도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884
2008서울조정384	· 육○○ 대 국민일보 (정정·반론·손배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VI - 정정보도	885
2008서울조정385	· 육○○ 대 연합뉴스 (정정·반론·손배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VII - 후속보도	886
2008서울조정386	· 육○○ 대 브레이크뉴스 (정정·반론·손배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VIII	887
2008서울조정387	· 육○○ 대 유에프오뉴스 (정정·반론·손배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IX - 정정보도	887
2008서울조정388	· 한○○ 대 데일리메디 (정정청구) 동료의사가 개발한 심장질환 관련 수술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신청인이 부작용의 원인은 주입기구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88
2008서울조정389	· 모○○ 대 KBS-1TV (손배청구) 신청인이 촬영한 자연 다큐멘터리 영상을 동의없이 방송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891
2008서울조정390	· 송○○ 대 코메디닷컴 (정정청구) 신청인이 개발한 심장판막성형술(CARVAR)의 안전성에 관해 의료계의 비판이 있고, 관련 수술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891
2008서울조정391	· 하남시 (시장 김황식) 대 MBC-TV (정정청구) 하남시가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사전고지도 없이 건축물 철거를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반론보도 및 사과	895
2008서울조정392	· (주)코리아메디케어 (대표이사 이○○) 대 메디컬투데이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의료포털사이트가 실시중인 의사평가-찾기 프로그램이 제약사의 주도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 - 반론보도	897
2008서울조정393	· (주)코리아메디케어 (대표이사 이○○) 대 아임닥터뉴스 (정정 · 손해청구) 신청인 의료포털사이트가 실시중인 의사평가-찾기 프로그램이 제약사의 주도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I	899
2008서울조정394	· 박○○ 대 Q채널 (손배청구)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짜짓기’ 산행의 폐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00
2008서울조정395	· 육○○ 대 서울신문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 - 정정보도	901
2008서울조정396	· 육○○ 대 세계일보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I - 정정보도	902
2008서울조정397	· 육○○ 대 민주신문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II - 후속보도	902
2008서울조정398	· 육○○ 대 주간현대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III	904
2008서울조정399	· 육○○ 대 한국재경신문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IV - 정정보도	904
2008경기조정68	· 1. 인천연구회의회 (의장 박종배) 2. 박종배 대 연수신문 (반론청구) 연구회의 동 축제장이 정치인 유세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구의회 의장이 행사장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반론보도	905
2008경기조정69	· 1. 박종배 2. 이창환 대 연수신문 (정정청구) 신청인이 동료의원에게 욕설 및 인격적 모독을 주고,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정정보도	906
2008전북조정28	· 송○○ 대 전주MBC-TV (정정청구) 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과 후원금 횡령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908
2008서울조정400	· 최철국 대 조선일보 (정정청구) 신청인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수 억의 불법자금을 절달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반론보도	909

중재신청사례

2008서울중재1	· 박○○ 대 MBC-TV (손배청구) 시중에서 판매되는 닭꼬치에 비둘기 고기를 사용한다는 제보에 대한 취재 보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913

2008서울중재2	· 윤○○ 대 SBS-TV (손배청구) 눈길 교통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 버스 운전기사인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14
2008서울중재3	· 김○○ 대 KBS-2TV (손배청구) 일부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치료비 등에 대해 불법 신용대출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내부를 공개하고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17
2008서울중재4	· (주)코엔비아 대 한겨레 (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 손해배상	919
2008서울중재5	· (주)코엔비아 대 이데일리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 정정 및 손해배상	921
2008서울중재6	· 이○○ 대 MBC-TV (손배청구)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탑승인원을 초과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하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 통학버스 및 신청인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22
2008서울중재7	· 유○○ 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손배청구)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이 협박성 전화를 받는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얼굴사진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24
2008서울중재8	· 1. 조○○, 2. 이○○○ 대 한국일보 (손배청구)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신청인들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26
2008서울중재9	· 강○○ 대 MBC-ESPN (손배청구) 방송 촬영장(사직구장)에서 경호 수행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방송에 내보내며, 야구장 관중들의 착석을 막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 손해배상	927
시정권고사례		931
언론조정신청사례 색인		971

2008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2008년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조정청구사건 954건 처리

위원회는 2008년 한 해 총 954건의 조정청구를 접수·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청구건수는 1,000건대를 넘어선 2006년과 2007년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청구건수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비중 꾸준히 증가

이를 청구권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50.4%로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청구가 34.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반론보도청구는 1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도입 첫째 16%(141건)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기관의 조정청구건수 대폭 감소

신청인 유형별로는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단체 18.8%, 회사 14.8%,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5.5%, 국가기관 3.4% 등의 순서를 보였다. 신청인 유형 중 국가기관의 청구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국가기관 청구건수는 32건에 머물렀는데 이는 2006년의 151건에 비해서는 119건, 2007년의 101건에 비해서는 69건이 감소한 것이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청구 비중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2008년 전체 청구건수 대비 각 매체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신문이 가장 높은 58.1%(554건)로 나타났고 방송과 인터넷신문이 각각 19.8%(189건)와 16.5%(157건)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비중이 확인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청구건수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대비 9.4%p, 2007년 대비 5.7%p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접수 방문접수보다 근소하게 앞서

2008년 청구사건을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37.5%(358건)를 나타내 통상 가장 많은 접수유형을 차지해왔던 방문접수(37.1%, 354건)를 넘어섰다. 인터넷접수는 언론중재법 시행 첫째인 2005년에

15.5%를 나타낸 후 2006년 22.9%, 2007년 29.8%를 차지해 해마다 7~8%p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구제율 72.9%로 위원회 설립이후 가장 높아

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여 피해가 구제된 비율은 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피해구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구제율은 2007년의 64.8%보다 8.1%p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954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42.1%(402건), 직권조정결정 5.5%(52건), 조정불성립결정 13.1%(125건), 기각 2.2%(21건), 각하 0.4%(4건), 취하가 36.7%(350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리결과 중 조정성립률의 경우 전년(34.4%)보다 7.7%p 높아진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피해구제율 72.0%, 손해배상액 평균 약 333만원

손해배상청구 324건 중 115건(35.5%)이 조정성립되었으며, 18건(5.6%)이 직권조정결정, 51건(15.7%)이 불성립결정, 134건(41.4%)이 취하, 6건(1.8%)이 기각·각하되었다.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이 약 333만 원, 최대액은 1천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 중간액은 275만 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액과 중간액의 경우, 전년에 비해 20~70여만 원 상승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사건 324건의 67.3%인 218건의 경우, 개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해유형별로는 명예훼손이 287건(88.6%)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등 기타 인격권 침해사례는 34건(10.5%)이었다.

중재사건 10건 처리

한편, 위원회는 조정사건 외 쌍방 당사자가 위원회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한 10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9건은 손해배상청구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정정청구였다. 중재사건 10건 중 5건의 경우,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며, 4건은 명예훼손, 나머지 1건은 음성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이다.

시정권고 282건, 사회적 법익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큰 폭 증가

또한 위원회의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754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82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으며, 제3자가 신청한 26건의 보도 중 7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자체심의건 중 사회적 법익 침해로 인한 시정권고 건수는 192(68.1%)건으로 개인적 법익침해 건수 90(31.9%)건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전년도에 82건으로 41% 였던 것에 비하면 사회적 법익침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제1장 조정신청 현황

1. 청구건수

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954건의 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러한 청구건수는 2007년의 1,043건에 비해 89건이 감소한 것으로 1,000건대를 넘어선 2006년과 2007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전히 많은 청구건수이다. 다만 청구건수는 언론중재법이 시행 2년째를 맞이했던 2006년의 1,087건을 정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데는 국가기관의 조정청구가 감소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한 해 국가기관의 조정청구는 32건에 그쳐 2006년의 151건에 비해 119건, 2007년의 101건에 비해 69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9건의 국가기관 청구건수 감소분은 2007년 대비 2008년의 전체 청구건수 감소분 89건의 77.5%를 차지한다.

〈표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청구건수

구 분 \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청구건수	759	883	1,087	1,043	954
전년대비 증감	35	124	204	△44	△89

2. 중재부별 청구건수

〈표 1-2〉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청구건수

중재부 \ 연 도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서 울	709	65.2	644	61.7	607	63.6
부 산	42	3.9	25	2.4	24	2.5
대 구	31	2.9	32	3.1	30	3.1
광 주	55	5.1	63	6.0	46	4.8
대 전	29	2.7	41	3.9	32	3.4
경 기	113	10.4	84	8.1	108	11.3
강 원	14	1.3	14	1.3	15	1.6
충 북	13	1.2	23	2.2	19	2.0
전 북	50	4.6	65	6.2	39	4.1
경 남	20	1.8	37	3.5	27	2.8
제 주	11	1.0	15	1.4	7	0.7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중재부별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63.6%, 지역중재부가 36.4%로 나타나 주요 매체를 대부분 관할하고 있는 서울중재부의 사건처리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08년 한 해 동안 서울 1개 중재부의 처리건수는 평균 101건으로 이는 지역 1개 중재부의 평균 처리건수 34.7건에 비해 약 2.9배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중재부 중 경기중재부의 경우에는 2008년 한 해 108건의 청구사건을 처리해 서울중재부 평균 청구건수보다 오히려 많았다.

경기중재부에 이어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광주중재부와 전북중재부가 각각 46건과 39건을 처리해 비교적 높은 청구건수를 보였다.

3. 청구권별 청구건수

각 청구권별 청구건수를 보면, 정정보도청구 50.4%, 손해배상청구 34.0%, 반론보도청구 13.3%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정정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소폭(2.4%p) 줄어든 반면 반론청구는 약간(2.3%p) 늘어났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정청구나 반론청구 혹은 추후청구를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해서 제기한 사건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가폭은 2007년 대비 0.5%p의 증가에 머물렀는데 이는 2006년 대비 2007년의 손해배상청구 증가폭 4.2%p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표 1-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청구건수

연도 청구명	2006		2007		2008		합 계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정 정	546	50.2	551	52.8	481	50.4	1,578	51.2
반 론	211	19.4	115	11.0	127	13.3	453	14.7
추 후	12	1.1	28	2.7	22	2.3	62	2.0
손 배	318	29.3	349	33.5	324	34.0	991	32.1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3,084	100.0

〈표 1-4〉 최근 3년간 병합청구사건 건수

연 도 청구명	2006		2007		200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정정·손배	198	65.6	232	83.8	211	72.8
정정·반론	57	18.9	19	6.9	17	5.9
반론·추후					1	0.3
반론·손배	16	5.3	12	4.3	12	4.1
추후·손배	10	3.3	5	1.8	13	4.5
정정·반론·손배	20	6.6	9	3.2	35	12.1
정정·추후·손배	1	0.3			1	0.3
계	302	100.0	277	100.0	290	100.0

2008년 병합청구된 사건은 모두 290건이었는데, 이중 정정과 손해배상을 병합청구한 것이 7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정·반론·손배 청구사건이 12.1%를 차지, 뒤를 이었다. 이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정정과 손해배상이 병합청구된 비율은 11.0%p 감소한 반면, 정정·반론·손배 병합청구된 비율은 오히려 8.9%p 증가했다.

4.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2008년 청구된 954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단체 18.8%, 회사 14.8%,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5.5%, 국가기관 3.4%, 교육기관 1.5%, 종교단체 1.2%의 순서를 나타냈다.

신청인 유형 중 국가기관의 청구건수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국가기관 청구건수는 32건에 머물렀는데 이는 2006년의 151건에 비해서는 119건, 2007년의 101건에 비해서는 69건이 감소한 것이다.

한편, 신청인 유형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일반단체의 청구건수 비중이 회사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2007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표 1-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신청인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개 인	529	48.7	525	50.3	523	54.8
국가기관	151	13.9	101	9.7	32	3.4
지자체·공공단체	46	4.2	62	5.9	52	5.5
일반단체	172	15.8	145	13.9	180	18.8
종교단체	9	0.8	10	1.0	11	1.2
회 사	145	13.3	176	16.9	142	14.8
교육기관	35	3.2	24	2.3	14	1.5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5.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2008년 전체 청구건수 대비 각 매체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신문이 가장 높은 58.1%로 나타났고 방송과 인터넷신문이 각각 19.8%와 16.5%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기존의 조정대상의 60~70%를 차지하던 신문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온 반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 비율은 확연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적인 청구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청구사건의 비율은 2006년 대비 9.4%p, 2007년 대비 5.7%p의 증가폭을 나타내 조정청구 대상매체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2008년 인터넷신문 대상 청구건수인 157건은 방송 대상 청구건수인 189건의 83.1%에 육박하는 것

으로 인터넷신문이 이미 주요 조정청구대상으로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표 1-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매체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신 문	752	69.2	634	60.8	554	58.1
방 송	216	19.9	250	24.0	189	19.8
잡 지	25	2.3	10	1.0	12	1.3
뉴스통신	17	1.6	30	2.9	33	3.5
인터넷신문	77	7.1	113	10.8	157	16.5
기 타		0.0	6	0.6	9	0.9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이를 매체 세부유형을 통해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의 청구건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즉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청구건수는 지상파TV(158건)와 비교해 볼 때 1건밖에 적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뉴스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인터넷매체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4.6%와 19.8%로 매체 세부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지만 전년에 비해 그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다. 언론중재법의 개정에 따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에 대한 조정청구가 가능해져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7〉 매체 세부유형별 청구건수

매체유형 청구건수	신 문			방 송			잡 지	뉴 스 통 신	인터넷 신 문	기 타
	중 앙 일간지	지 방 일간지	주 간 신 문	TV	라디오	종합유선 방송				
954	235	189	130	158	4	27	12	33	157	9
100.0(%)	24.6	19.8	13.6	16.6	0.4	2.8	1.3	3.5	16.5	0.9

6. 주된 침해유형

조정대상 보도의 침해유형은 몇 가지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침해사항 하나만을 주된 침해로 분류하면 명예훼손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 이외의 인격권 침해 비율은 전체 대비 4.8%에 그쳐 2007년의 7.7%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2006년 5.5%에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다시 감소한 것이다. 명예 이외의 인격권 침해 청구건 46건 중에서 초상권 침해가 63.0%(29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성권 침해가 많았다.

〈표 1-8〉 최근 3년간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주된 침해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명예훼손	1,004	92.4	953	91.4	899	94.2
신용훼손	17	1.6	2	0.2	6	0.6
초상권침해	48	4.4	53	5.1	29	3.0
음성권침해	7	0.6	12	1.2	10	1.0
성명권침해	1	0.1	3	0.3	4	0.4
프라이버시침해	4	0.4	11	1.1	3	0.3
기 타	6	0.6	9	0.9	3	0.3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7.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이 침해된 46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상이나 음성 또는 성명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표해 문제가 된 것이 대다수(40건, 86.9%)였다. 그밖에 동의는 있었지만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표함으로써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가 4건, 보도내용과 무관함에도 자료화면으로 초상등이 공표된 사례도 2건 있었다.

〈표 1-9〉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기타 인격권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비율(%)
동의 없이 무단공표	40	86.9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4	8.7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2	4.3
계	46	100.0

8. 조정대상기사의 분야

2008년 조정대상기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건사고나 고발 등을 다룬 사회기사 비중이 70.5%에 이르렀으며, 정치·선거 관련기사 6.3%, 스포츠·연예기사 4.3%, 경제·산업기사 3.7%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연예 관련기사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3.1%p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10〉 조정대상기사의 분야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 수	비 율(%)
정치·선거	60	6.3
국방·외교	1	0.1

조정대상기사 분야	건 수	비 율(%)
경제·산업	35	3.7
사회(사건/사고/고발)	673	70.5
보건·복지	28	2.9
스포츠·연예	41	4.3
레저·생활	7	0.7
환 경	4	0.4
종 교	33	3.5
노 조	28	2.9
교 육	16	1.7
미 디 어	12	1.3
기 타	16	1.7
계	954	100.0

9. 조정대상 기사의 유형

방송매체를 제외한 신문·잡지 등의 조정대상기사를 기사의 형식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81.2%로 가장 많았고, 탐사·심층·기획보도 8.0%, 논단 및 칼럼기사 2.6%, 비평기사 2.5%, 사설기사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견성 기사라 할 수 있는 사설이나 논단 및 칼럼 또는 비평기사를 모두 더하면 7.2%(55건)로 그 비중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유형 기사들의 경우 주로 의견의 전제사실이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표 1-11〉 조정대상 기사(방송 외) 유형별 청구건수

조정대상기사 유형별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621	81.2
사 설	16	2.1
논단 및 칼럼	20	2.6
인 터 뷰	5	0.7
외부필자 기고	9	1.2
비 평	19	2.5
탐사·심층·기획보도	61	8.0
사 진	6	0.8
가 십	2	0.3
기 타	6	0.8
계	765	100.0

방송을 상대로 조정청구된 189건을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별로 살펴보면, 뉴스가 68.3%로 가장 많고,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16.4%, 교양 프로그램이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는 적지만 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조정청구도 7건 있었다.

〈표 1-12〉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청구건수

방송 장르별	건수	비율(%)
뉴 스	129	68.3
시사고발	31	16.4
토 론	1	0.5
교양정보	16	8.5
연예, 스포츠	3	1.6
다큐멘터리	7	3.7
기 타	2	1.0
계	189	100.0

10. 접수유형

2008년 청구된 954건을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통한 접수(358건, 37.5%)가 가장 많았다. 이는 그동안 가장 많은 접수유형을 차지해왔던 방문접수(37.1%)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2005년 7월 언론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접수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터넷접수는 언론중재법 시행 첫째인 2005년에 15.5%를 나타낸 후 2006년 22.9%, 2007년 29.8%를 차지해 해마다 7~8%p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용자 중심의 웹2.0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13〉 최근 3년간 접수유형별 청구건수

연 도 접수유형	2006		2007		2008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청구건수	비율(%)
방 문	580	53.4	454	43.5	354	37.1
우 편	245	22.5	251	24.1	233	24.4
인 터 넷	249	22.9	311	29.8	358	37.5
구 술	13	1.2	27	2.6	9	0.9
계	1,087	100.0	1,043	100.0	954	100.0

제2장 조정처리결과 현황

1. 처리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42.1%, 직권조정결정 5.5%, 조정불성립결정 13.1%, 취하 36.7%, 기각 2.2%, 각하 0.4%로 각각 집계되었다. 조정성립률은 전년에 비해 7.7%p 높아진 반면 불성립결정률은 5.5%p 낮아졌다. 조정성립률은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권 조정결정의 경우 동의율이 2007년은 40.7%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는 67.3%에 이르러 직권조정결정 10건 중 6~7건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최근 3년간 처리결과

구분 연도	청구건수 (%)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100.0(%)	32.8	2.7	2.6	20.8	2.0	1.2	38.0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350(237)
	100.0(%)	42.1	3.7	1.8	13.1	2.2	0.4	36.7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2. 피해구제율

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여 피해가 구제된 비율은 7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피해구제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구제율은 2007년의 64.8% 보다 8.1%p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 2-2〉 피해구제율

청구건수 [A]	기각·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954	25	929	677	72.9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조정건수 = 청구건수 - 기각·각하건수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건수+조정결정 중 동의건수+(불성립결정건 또는 직권조정결정 중 이의신청건 또는 취하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건수

3. 청구권별 처리결과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을 보면, 반론청구가 75.8%, 정정청구 72.8%, 손해청구 72.0%, 추후청구 70.0%로 각각 나타나 청구권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70.0%를 넘는 고른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이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정정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구제율이 각각 9.1%p와 8.9%p 상승했다. 정정청구의 피해구제율이 70.0%대를 넘어선 것은 최근 10년 내 처음 있는 일이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성립률은 2007년의 22.1%에 비해 13.4%p 상승한 35.5%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밖에 통상 80~90%대의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이던 추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전년대비 10.8%p 낮아진 점은 다소 특이하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청구명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계 속								
2006	정 정	546	220	13	10			108	(1)	14	12	169	(90)	62.3
	반 론	211	79	6	8			37	(1)	2		79	(42)	61.2
	추 후	12	8					1				3	(3)	91.7
	손 배	318	49	10	10			80		6	1	162	(115)	55.9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정 정	551	223	12	17	(1)		103	(5)	22	3	171	(94)	63.7
	반 론	115	52	2	1			22		4	1	33	(25)	71.8
	추 후	28	7					2		2		17	(14)	80.8
	손 배	349	77	8	14	(1)		67		14	2	167	(124)	63.1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정 정	481	220	18	9			60	(1)	8	2	164	(104)	72.8
		100.0(%)	45.7	3.7	1.9			12.5		1.7	0.4	34.1		
	반 론	127	56	6	1			12		7		45	(29)	75.8
		100.0(%)	44.1	4.7	0.8			9.4		5.5		35.4		
	추 후	22	11					2		2		7	(3)	70.0
		100.0(%)	50.0					9.1		9.1		31.8		
	손 배	324	115	11	7			51	(2)	4	2	134	(101)	72.0
		100.0(%)	35.5	3.4	2.2			15.7		1.2	0.6	41.4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90.9%로 가장 높고, 국가기관 78.1%, 개인 75.7%, 회사 69.9%, 일반단체 69.7%,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66.7%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차지하는 개인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이 2007년의 63.8% 대비 1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들의 청구가 전체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청구사건의 피해구제율 상승도 눈에 띈다. 이 유형 신청인의 피해구제율은 66.7%로 전년의 53.2%보다 13.5%p 높아졌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6	개 인		529	163	20	15		93		16	2	220	(128)	60.9
	단 체	국가기관	151	66	3	7		30		1		44	(35)	69.3
		지자체·공공단체	46	17	4	1		10		1		13	(8)	64.4
		일반단체	172	55	2	5		34		3	11	62	(36)	58.9
		종교단체	9	1				8						11.1
		회사	145	35				49	(2)	1		60	(34)	49.3
		교육기관	35	19				2				14	(9)	80.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개 인		525	165	15	19	(2)	90	(3)	27	3	206	(131)	63.8
	단 체	국가기관	101	44	1	2		15	(1)	3		36	(27)	74.5
		지자체·공공단체	62	21		1		20				20	(12)	53.2
		일반단체	145	48	3	1		31		7	3	52	(40)	67.4
		종교단체	10	6								4	(4)	100.0
		회사	176	65	3	7		38	(1)	4		59	(37)	61.6
		교육기관	24	10		2				1		11	(6)	69.6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개 인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단 체	국가기관	32	13	3	2		2				12	(9)	78.1
		지자체·공공단체	52	28	1			10		1		12	(5)	66.7
		일반단체	180	70	5	8		19		5		73	(47)	69.7
		종교단체	11	5								6	(5)	90.9
		회사	142	60	6	1		22		2	4	47	(29)	69.9
		교육기관	14	5				3				6		35.7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인, 조합대표 및 협회장, 학생 등이 90.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고, 시민활동가, 교육자, 개인사업가 등도 평균보다 높은 75.0% 이상의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한편, 넓게 보아 공직자로 묶을 수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 군인·경찰, 기초·광역 단체장 또는 의원의 경우, 평균 피해구제율이 66.1%에 머물러 전체 피해구제율 72.9%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개인사업가의 피해구제율 75.0%와 비교할 경우, 8.9%p 가까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조정결과와는 우리 법원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인과 사인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신청인 개인 직업별 조정신청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 분 직 업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국회의원	22	8	1		6				7	(6)	72.7
법조인	2				2						0.0
공무원	23	7	3		5				8	(4)	60.9
군인/경찰	38	9	2	2	4				21	(16)	71.1
기초광역단체장/의원	35	13	2		9				11	(7)	62.9
정당정치인	7	3							4	(2)	71.4
의료인	14	5			2				7	(5)	71.4
문화예술인	9	6							3	(3)	100.0
종교인	26	12		2	6		1		5	(5)	68.0
회사원	24	9	2	1	5				7	(5)	66.7
언론인	11	4			4		1		2	(1)	50.0
교육자	47	25	4		3				15	(8)	78.7
개인사업가	68	28	4		7				29	(19)	75.0
금융업종사자	1								1		0.0
학 생	11	7							4	(3)	90.9
시민활동가	15	12							3	(1)	86.7
조합대표협회장	25	14					3		8	(7)	95.5
기타	145	59	2	1	16	(2)	8		59	(50)	82.5
계	523	221	20	6	69	(3)	13		194	(142)	75.7
%	100.0	42.3	3.8	1.1	13.2		2.5		37.1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뉴스통신이 93.9%의 피해구제율을 보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신문 80.4%, 신문 74.9%, 방송 58.9%, 잡지 50.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피해구제율 72.9%와 비교해 본 결과, 뉴스통신과 인터넷신문은 전체 피해구제율보다 각각 21.0%p와 7.5%p 높은 반면, 방송매체와 잡지는 전체 피해구제율보다 각각 14.0%p와 22.9%p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 유형에 따라 피해구제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를 2007년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과 비교해보면 뉴스통신의 경우 28.4%p, 인터넷신문의 경우 15.4%p 각각 높아졌다. 2008년 인터넷신문의 청구건수가 전체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5%에 달하고 이 비율이 전년(10.8%)대비 5.7%p가 늘어난 것임을 감안해본다면 인터넷신문의 피해구제율 상승은 2008년 전체 피해구제율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6	신 문	752	242	20	16		144		13	7	310	(193)	62.2
	방 송	216	57	8	9		66	(2)	2	5	69	(30)	46.4
	잡 지	25	17	1	1		2				4	(2)	80.0
	뉴스통신	17	6				1		2	1	7	(7)	92.9
	인터넷신문	77	34		2		13		5		23	(18)	72.2
	기 타	0											0.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신 문	634	226	12	15	(1)	112	(3)	25		244	(172)	68.0
	방 송	250	71	7	17	(1)	52	(1)	11	1	91	(53)	55.9
	잡 지	10	4	2			2				2	(2)	80.0
	뉴스통신	30	10	1			6	(1)	1		12	(7)	65.5
	인터넷신문	113	44				22		5	5	37	(23)	65.0
	기 타	6	4								2		66.7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신 문	554	241	22	7		69	(3)	5		210	(145)	74.9
	방 송	189	77	2	5		35		9		61	(27)	58.9
	잡 지	12	5		1		2				4	(1)	50.0
	뉴스통신	33	15	1	2						15	(15)	93.9
	인터넷신문	157	62	8	2		17		5	4	59	(49)	80.4
	기 타	9	2	2			2		2		1		57.1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음성권이나 성명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유형에서 90.0% 이상의 대단히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유형의 경우 전체 피해구제율 72.9%에 근접하는 72.4%의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초상권 침해유형은 그보다 약간 높은 75.0%로 나타났다. 그밖에 신용훼손의 경우, 66.7%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6	명예훼손	1,004	318	20	25		213		20	13	395	(238)	59.3
	신용훼손	17	5	2			5	(2)			5	(4)	76.5
	초상권	48	27	6	3		5				7	(3)	75.0
	음성권	7	4	1							2	(1)	85.7
	성명권	1					1						0.0
	프라이버시	4	1				1				2	(2)	75.0
	기 타	6	1				1		2		2	(2)	75.0
	계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명예훼손	953	331	18	29	(1)	185	(5)	38	4	348	(233)	64.5
	신용훼손	2					2						0.0
	초상권	53	21	3	2	(1)	2				25	(18)	81.1
	음성권	12	1	1	1		3				6	(3)	41.7
	성명권	3									3	(1)	33.3
	프라이버시	11	4				1			1	5	(2)	60.0
	기 타	9	2				1		4	1	1		50.0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명예훼손	899	375	35	16		122	(3)	18	4	329	(222)	72.4
	신용훼손	6	3								3	(1)	66.7
	초상권	29	11		1		3		1		13	(10)	75.0
	음성권	10	5								5	(4)	90.0
	성명권	4	4										100.0
	프라이버시	3	3										100.0
	기 타	3	1						2				100.0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별 처리결과

〈표 2-8〉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조정성립	직 조 결	권 정 결	조 불 성 립 결	기 각	각 하	취 하
중 앙 일 간 지	경향신문	26	25					1		11	4	2	1			8
	국민일보	13	13							3						10
	내일신문	1		1												1
	동아일보	23	23							3	6	9				5
	문화일보	4	4							2		1				1
	서울신문	23	22		1					10	2	4				7
	세계일보	10	10							4						6
	조선일보	29	27				2			14	2	4	1			8
	중앙일보	13	12	1						8						5
	한겨레	19	19							11		4				4
	한국일보	14	12		2					8						6
	글로벌타임즈	2	2							2						
	소 계	177	169	2	3		2	1		76	14	24	2			61
지 방 일 간 지	서 울	시민일보	3	3							1	1				1
		아시아일보	3	3						1						2
		서울일보	8	8						2		4	2			
		아시아투데이	1	1												1
		해동일보	3	3						1						2
	부 산	국제신문	2	2							1					1
		부산일보	3	3								3				
		경상일보	1	1						1						
		울산신문	2	2						2						
		울산제일일보	1	1								1				
	대 구 · 경 북	매일신문	7	7						7						
		영남일보	6	6												6
		경상매일신문	2	2						2						
		경북도민일보	2	2												2
		울진타임즈	2	2												2
	광 주 · 전 남	일간경북신문	4	4						4						
		광주일보	2	2						1						1
		무등일보	2	2						1						1
		전남일보	2	2												2
		호남매일	2	2												2
		호남신문	4	4						3						1
		광남일보	3	3						2						1
		전남도민일보	2	2						1						1
		남도일보	5	5						2		2				1
		아침일간신문	1	1								1				
	대전	대전일보	2	2						1						1

매제 유형	구 분		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제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조정성립	직 조결	권 정정	조 정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방 일 간 지	대전·충남	충남일보	2	2												2	
		충청신문	5	5						3						2	
		대전투데이	1	1						1							
		충청투데이	2	2												2	
	인 천·경 기	경기매일	2	2						1							1
		경기신문	2	2						1							1
		경기일보	9	9						3			2				4
		경인일보	10	10						3			3				4
		수도권일보	1	1													1
		우리일보	2	2													2
		인천일보	4	4						2							2
		중부일보	9	9						4							5
		전국매일	4	4													4
		현대일보	1	1						1							
		수도일보	3	3						1			2				
		인천신문	4	4													4
		오늘신문	2	2						1							1
		광명일보	1	1													1
	강원 충북	강원일보	1	1						1							
		동양일보	4	4						1							3
		한빛일보	5	5						3							2
		충청타임즈	1	1													1
	전 북	새전북신문	5	4					1	3							2
		전라일보	1	1													1
		전북일보	5	5						3							2
		전북매일	1	1						1							
		전북연합신문	2	2							1						1
		전일신문	4	4						2	2						
		경남도민일보	1	1													1
	경 남	경남매일	2	2						1							1
		경남신문	3	3							3						
		경남일보	9	9						5			3	1			
		경상일보	2	2									2				
		울산매일	1	1													1
		제민일보	3	3						3							
	제주	제주타임스	1	1						1							
		소 계	190	189					1		76	8	24	3			79
경 제 지	매일경제	9	9							8						1	
	서울경제	5	5							3			1			1	
	한국경제	18	17	1						11						7	
	헤럴드경제	1	1							1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조정성립	직 조결	권 정정	조 불성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경 제 지	머니투데이	3	3							1							2
	아시아경제	2	2							2							
	소 계	38	37	1						26			1				11
스 포 츠 지	일간스포츠	5	5							2							3
	스포츠칸	2	2														2
	스포츠월드	2	2							2							
	스포츠동아	1			1					1							
	소 계	10	9		1					5							5
특 수 일 간 지	농민신문	2	2							2							
	디지털타임스	1	1														1
	전자신문	1	1														1
	환경일보	4	4							1							3
	소 계	8	8							3							5
무 료 일 간 지	광주드림	2	2														2
	소 계	2	2														2
중 앙 방 송	KBS-TV	30	24		3	1			2	8	2	5	4				11
	MBC-TV	49	39		4	6				21	5	11					12
	SBS-TV	21	16	1	3				1	10		4	2				5
	KBS-R	2	2							2							
	MBC-R	1	1							1							
	소 계	103	82	1	10	7			3	42	7	20	6				28
지 방 방 송	부산KBS-TV	5	4		1							2					3
	강릉KBS-TV	2	2							2							
	청주KBS-TV	2	2							2							
	대전KBS-TV	3	3														3
	창원KBS-TV	3	3											2			1
	전주KBS-TV	5	5							4							1
	부산MBC-TV	1	1											1			
	강릉MBC-TV	1	1							1							
	춘천MBC-TV	3	3							2		1					
	청주MBC-TV	2	2							2							
	대구MBC-TV	1	1														1
	마산MBC-TV	2	2							1							1
	진주MBC-TV	2	2							2							
	전주MBC-TV	7	7							3		3					1
	목포MBC-TV	2	2									2					
	마산MBC-R	1	1									1					
	소 계	42	41		1					19		9	3				11
지 역 민 방	GTB-TV	3	1			2				2							1
	TJB-TV	2	2														2
	J-TV	5	5							1							4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조정성립	직 조 결	조 정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지 역 민 방	UBC	2	2												2
	경기방송®	4	4									4			
	OBS-TV	1	1												1
	소 계	17	15			2				3		4			10
케 이 블 T V	YTN	12	12							6					6
	기독교TV	1	1												1
	MBN	2	2												2
	한국경제TV	3	1	2						1					2
	TVN	4	2		1	1				4					
	Q채널	3	2					1		1		2			
	Mnet	1			1					1					
	mbc espn	1			1										1
	소 계	27	20	2	3	1		1		13		2			12
뉴 스 통 신	연합뉴스	25	22		2		1			12	2				11
	뉴스시스	8	7		1					3	1				4
	소 계	33	29		3		1			15	3				15
시 사 주 간 지	시사저널	1	1							1					
	한겨레21	1	1							1					
	시사IN	8	8							6					2
	머니위크	3	3							2					1
	소 계	13	13							10					3
시 사 주 간 신 문	민주시민	3	3												3
	일요서울	1	1							1					
	일요시사	2	2												2
	일요신문	2	2							2					
	주간현대	3	3												3
	소 계	11	11							3					8
지 역 주 간 신 문	금천뉴스	1	1									1			
	주간사하신문	2	2							1		1			
	괴정신문	1	1							1					
	김천신문	2	2							2					
	나주투데이	1	1												1
	완도신문	1	1							1					
	나주뉴스	1	1									1			
	예향진도신문	2	2							1					1
	청해진신문	1	1									1			
	함평신문	2	2								1	1			
	전남저널	1	1								1				
	보성군민신문	3	3							1		2			
	영광신문	2	2									2			
	서해안신문	2	2									2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조정성립	직 조결	권 정정	조 불성립결	기 각	각 하	취 하
지 역 주 간 신 문	아산투데이	3	3							2						1
	하나로신문	2	2								1					1
	용인신문	1	1													1
	뉴스리더	4	4							1			2			1
	부천포커스	2	1		1					1			1			
	평안신문	2	2										2			
	안산제일신문	2	2							2						
	의정부신문	2	2							1						1
	파주타임즈	4	4													4
	김포신문	2	2							1						1
	양주신문	2	2													2
	과천문화신문	1	1							1						
	위클리 와이	2	2													2
	인천연수신문	2	2							1	1					
	충청리뷰	2	2							1						1
	완주신문	2	2										2			
	함안신문	1	1								1					
	경남여성신문	1			1											1
	한국시사정보신문	2	2													2
	제주프레스	3	3							3						
	소 계	64	62		2					21	5		18			20
특 수 주 간 신 문	수산신문	1	1													1
	교통신문	2	2													2
	태권도신문	1	1							1						
	한국교육신문	2	2							2						
	미디어오늘	4	4							3			1			
	목회자신문	1	1							1						
	식품환경신문	1	1													1
	농업인신문	1	1													1
	약사공론	2	2							2						
	기독교보	4	4							4						
	한국농어민신문	2	2										1			1
	한국교회신보	2	2													2
	CDN크리스천 데일리뉴스	2	2													2
	장로교연합신문	2	2								2					
	아파트관리신문	2	2							1						1
	종합법률신문	2	2							2						
	가스신문	1	1							1						
	도시개발신문	2	2													2
	기독교타임스	1	1							1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조정성립	직 조 결	권 정 결	조 정 불 성 립 결	기 각	각 하	취 하
특 수 주 간 신 문	한국건설기계신문	3	3							3						
	한국수산업경제신문	2	2													2
	의정부버룩시장	2	2													2
	소 계	42	42							21	2	2				17
잡 지	신동아	3	3							2						1
	월간조선	3	3							1	1					1
	함께 걸음	2	2									2				
	월간디앤디포커스	2	2							2						
	볼링코리아	4	4									2				2
	소 계	14	14							5	1	4				4
인 터 넷 신 문	노컷뉴스	6	5		1					2		2				2
	오마이뉴스	10	10							2	2	5				1
	쿠키뉴스	2	2													2
	CNBNEWS	1	1													1
	프리존뉴스	1	1							1						
	고뉴스	5	5							1						4
	뷰스앤뉴스	4	4							4						
	민중의소리	3	1		2					2						1
	레디앙	4	4							4						
	네이션코리아	3	3													3
	DBS동아방송	1					1			1						
	유에프오뉴스	3	3													3
	한국재경신문	3	3													3
	데일리안	4	4							2		2				
	데일리팝	4	4							3						1
	브레이크뉴스	3	3													3
	이데일리	5	5							1		2				2
	데일리서프라이즈	5	3		2					1						4
	e뉴조	2	2											2		
	메디컬투데이	7	7								2					5
	인터넷환경일보	1	1													1
	에클레시아뉴스	19	19							10		3	3			3
	무카스뉴스	1	1													1
	이중앙닷컴	1	1							1						
	소비자가만드는신문	6	6							1						5
	헬스코리아뉴스	3	3							3						
	국민방송	1	1							1						
	상조뉴스	4	4							4						
	세이프코리아뉴스	2	2							2						
	에이블뉴스	2	2								2					
	데일리메디	1	1													1

매체 유형	구 분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매체명	청구건수	명 예	신 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 타	조정성립	직 조 결	권 정 정	조 불 성 립 결	기 각	각 하 취 하
인 터 넷 신 문	코메디닷컴	1	1										1		
	소통뉴스	2	2							2					
	광주전남데일리안	1	1												1
	대전시티저널	4	4							2					2
	호남인터넷뉴스	1	1												1
	김천인터넷뉴스	2	2							2					
	경북e-조은뉴스	1	1							1					
	굿뉴스강남	2	2							1					1
	굿모닝논산	2	2												2
	인터넷전남뉴스	1	1							1					
	NBS뉴스	2	2							1					1
	인터넷강원신문	1	1							1					
	해남타임즈	2	2								2				
	데일리안대전충남	4	4							4					
	충북넷	1	1												1
	성남투데이	1	1							1					
	스포츠서울닷컴	2	2											2	
	아임닥터뉴스	5	5											2	3
	LDBN(한국농아방송)	2	2								2				
	소 계	154	148		5		1			62	10	15	5	4	58
기 타	춘천시보	4	4							2	2				
	계명대신문	1			1										1
	창작과비평	2	2									2			
	강수형씨대중희소식	2	2										2		
	소 계	9	8		1					2	2	2	2		1
총 계		954	899	6	29	10	4	3	3	402	52	125	21	4	350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서울중재부와 지역중재부의 평균 피해구제율을 각각 살펴보면, 서울중재부의 경우 평균 76.8%, 지역중재부의 경우 평균 66.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10.6%였다. 이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중재부의 경우, 전년대비 12.5%p의 피해구제율 상승이 있었으나 지역중재부는 0.6%p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08년 피해구제율 상승이 대부분 서울중재부의 피해구제율 상승에 의존했음을 드러낸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중재부의 경우 서울제3중재부가 87.2%로 가장 높았고, 서울제4중재부와 서울제5중재부도 80.0%에 육박하는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지역중재부의 경우,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는데 제주중재부와 강원중재부의 경우 청구건수는 적지만 90.0% 이상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반면 부산 등은 피해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9〉 최근 2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구분 연도	중 재 부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2007	서 울1	115	29	14	3		20	(1)	17		32	(24)	69.4
	서 울2	101	30		9	(1)	21		10	1	30	(22)	58.9
	서 울3	104	42	1	1		9	(1)	3		48	(42)	85.1
	서 울4	98	60	2	4		11				21	(13)	76.5
	서 울5	111	32				42	(1)			37	(17)	45.0
	서 울6	115	31	3	11	(1)	18		3	5	44	(22)	53.3
	소 계	644	224	20	28	(2)	121	(3)	33	6	212	(140)	64.3
	부 산	25	10	1			1	(1)	2		11	(5)	73.9
	대 구	32	13				7	(1)	2		10	(5)	63.3
	광 주	63	21		4		11				27	(19)	63.5
	대 전	41	16				9				16	(11)	65.9
	경 기	84	20	1			24		4		35	(23)	55.0
	강 원	14	8				2				4	(1)	64.3
	충 북	23	11				1				11	(7)	78.3
	전 북	65	19				5				41	(31)	76.9
	경 남	37	13				11		1		12	(9)	61.1
	제 주	15	4				2				9	(6)	66.7
소 계	399	135	2	4		73	(2)	9		176	(117)	65.6	
계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	100.0	34.4	2.1	3.1		18.6		4.0	0.6	37.2			
2008	서 울1	103	31	15	3		20		3	4	27	(17)	65.6
	서 울2	95	47	4			20	(1)	4		20	(14)	72.5
	서 울3	112	51				2		3		56	(44)	87.2
	서 울4	104	46	5	3		5		4		41	(28)	79.0
	서 울5	101	48		2		12	(1)	2		37	(30)	79.8
	서 울6	92	45		4		9		1		33	(23)	74.7
	소 계	607	268	24	12		68	(2)	17	4	214	(156)	76.8
	부 산	24	5		1		10	(1)	1		7	(2)	34.8
	대 구	30	18								12	(5)	76.7
	광 주	46	14	1	3		12				16	(10)	54.3
	대 전	32	12				2				18	(10)	68.8
	경 기	108	29	1	1		23				54	(39)	63.9
	강 원	15	11	2			1				1	(1)	93.3
	충 북	19	10								9	(4)	73.7
	전 북	39	19	3			5				12	(5)	69.2
	경 남	27	9	4			4		3		7	(5)	75.0
	제 주	7	7										100.0
소 계	347	134	11	5		57	(1)	4		136	(81)	66.2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	100.0	42.1	3.7	1.8		13.1		2.2	0.4	36.7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10.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08년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액의 평균은 약 333만 원, 최고액은 1,000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 중간액은 275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평균액만 보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중간액을 비교해 보면 2007년에 비해서는 75만 원, 2006년에 비해서는 125만 원이 증가했다. 소폭이나마 손해배상조정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권리구제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이다. 참고로, 조정액 평균 333만 원은 2008년 중재사건의 중재액 평균인 232만 원보다 약 100만 원이 많다.

〈표 2-10〉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구 분 연 도	청 구 액				조 정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6	10,000	3,000,000,000	109,545,629	25,000,000	300,000	15,000,000	3,229,750	1,500,000
2007	1	100,000,000,000	400,663,571	20,000,000	490,000	10,000,000	3,133,462	2,000,000
2008	110,000	10,000,000,000	185,920,574	20,000,000	300,000	10,000,000	3,331,250	2,750,000

11.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조정액을 살펴보면,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 10건 중 6건 꼴로 100~500만 원 사이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200~500만 원 사이의 분포율이 34.4%로 가장 높았고, 100~200만 원 사이가 28.1%로 그 다음이었다. 그밖에 500~1,000만 원 사이는 18.8%, 1,000만 원 이상과 100만 원 미만이 각각 11.3%를 나타냈다.

2008년 조정액의 경우 2006년이나 2007년과 달리 200~500만 원 사이의 분포비율이 100~200만 원 사이의 분포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조정액이 소폭이나마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구 분 연 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계
2006	7	15	11	1	6	40
%	17.5	37.5	27.5	2.5	15.0	100.0
2007	4	19	15	9	5	52
%	7.7	36.5	28.8	17.3	9.6	100.0
2008	3	9	11	6	3	32
%	9.4	28.1	34.4	18.8	9.4	100.0
계	14	43	37	16	14	124
%	11.3	34.7	29.8	12.9	11.3	100.0

제3장 중재신청 처리결과 현황

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조정사건과 별도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중재신청한 건수는 10건으로 전년의 14건보다 4건 줄었다. 이를 주된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초상권 침해가 5건, 명예훼손이 4건, 음성권 침해가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재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2008년까지 접수·처리된 31건의 주된 침해유형을 보면, 초상권이 64.5%(20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초상권 침해가 다른 경우보다 인격권 침해여부를 가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1〉 주된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구 분 연 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6	7	3		3	1			
2007	14			12			2	
2008	10	4		5		1		
계	31	7		20	1	1	2	
%	100.0	22.6		64.5	3.2	3.2	6.5	

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2008년 중재사건을 청구권별로 보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대부분(90.0%)이다. 중재사건을 3년간으로 묶어볼 경우 전체 중재사건 31건 중 26건인 83.9%가 손해배상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의 배상이 비교적 명백하게 필요해 보이는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가 위자료 산정을 중재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2〉 청구권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구 분 연 도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정 정	1	1					
	반 론	1	1					
	손 배	5	5					
	계	7	7					
2007	정 정	2	2					
	반 론							
	손 배	12	12					
	계	14	14					
2008	정 정	1	1					
	반 론							
	손 배	9	9					
	계	10	10					

3. 손해배상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2008년 손해배상 중재사건의 중재액 평균은 약 232만 원으로 중재사건의 청구액 평균 약 1,589만 원의 14.6% 수준이다. 중재 최고액은 4백만 원, 최저액은 90만 원이었고 중간액은 200만 원이었다. 이러한 액수는 2007년의 평균액 등과 비교해 볼 때 약 70~1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한편, 2008년 중재액 평균은 2008년 조정액 평균인 333만 원보다 약 100만 원 적은 것이다.

〈표 3-3〉 손해배상 중재신청사건 청구액 및 중재액 현황

구 분 연 도	청구건수	청 구 액				중 재 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간액
2006	5	10,000,000	30,000,000	22,000,000	20,000,000	700,000	7,500,000	4,240,000	5,000,000
2007	12	1,000,000	30,000,000	7,383,333	5,000,000	300,000	3,000,000	1,750,000	1,350,000
2008	9	5,000,000	30,000,000	15,888,889	15,000,000	900,000	4,000,000	2,322,222	2,000,000

제4장 자동소제기 현황

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12건(청구건수 17건)이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것은 3건, 양당사자 모두가 이의신청한 것은 1건이었다. 이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 결과는 인용이 5건, 취하와 기각이 각 1건, 계속이 5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거쳐 법원에 자동 소제기된 사건의 1심 결과는 2007년의 경우, 인용률(인용건수/소취하 제외 소송건수)이 92.9%에 이르렀다.

〈표 4-1〉 연도별 자동소제기현황 및 법원 1심 판결결과

연 도	구 분 건수	청 구 명					이 의 신 청			1심결과			
		정 정	반 론	손 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 용	취 하	기 각 각 하	계 속
2006	24	6	6	8	2	2	4	20		16	4	4	
2007	21	6		4	10	1	1	17	3	13	7	1	
2008	12	4		3	4	1	3	8	1	5	1	1	5
계	57	16	6	15	16	4	8	45	4	34	12	6	5

※ 1심 결과에 나타난 인용건수 합계 34건에는 화해권고결정 8건과 강제조정결정 4건이 포함되어 있음

〈표 4-2〉 2008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 현황

매체명	구 분 건수	청 구 명					이 의 신 청			1심결과			
		정 정	반 론	손 배	정정·손배	정정·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피신청인	인 용	취 하	기 각 각 하	계 속
국제신문	1	1						1					1
동아일보	1				1		1						1
연합뉴스	1				1		1					1	
월간조선	1	1						1					1
장로교연합신문	1				1			1					1
하나로신문	1	1						1					1
함평신문	1			1					1	1			
해남타임즈	1				1		1			1			
MBC	4	1		2		1		4		3	1		
계	12	4		3	4	1	3	8	1	5	1	1	5

연도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 조 정

1981. 3. 31 ~ 2008. 12. 31.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 권 조 정 결 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	(5)	1	2	20	(2)	39.0%
1982	50	19				19	(5)		2	10	(4)	58.3%
1983	71	21				22	(7)	1	1	26	(8)	52.2%
1984	54	12				29	(8)	3		10	(5)	49.0%
1985	59	12				28	(5)	4		15	(7)	43.6%
1986	49	14				10	(2)	1		24	(11)	56.3%
1987	47	10				9	(4)	1		27	(2)	34.8%
1988	55	16				12	(5)		1	26	(13)	63.0%
1989	121	29				35	(10)		6	51	(21)	52.2%
1990	159	42				43	(10)	1	2	71	(40)	59.0%
1991	220	52				48	(9)	3	1	116	(43)	48.1%
1992	381	81				79	(12)	19		202	(107)	55.2%
1993	423	132				96	(16)	8	2	185	(84)	56.2%
1994	541	162				127	(10)	7		245	(128)	56.2%
1995	528	111				150	(25)	26	3	238	(124)	52.1%
1996	556	129	2	7	(1)	169	(21)	9	1	239	(137)	53.1%
1997	490	161	10	5	(1)	79	(13)	8	4	223	(108)	61.3%
1998	602	226	14	10	(2)	97	(8)	5		250	(106)	59.6%
1999	641	244	11	18	(2)	102	(17)	24	5	237	(92)	59.8%
2000	607	198	10	15	(2)	66	(10)	14	2	302	(156)	63.6%
2001	659	229	6	23	(3)	132	(27)	18	2	249	(133)	62.3%
2002	511	182	18	17	(3)	62	(9)	8	1	223	(101)	62.4%
2003	724	287	15	15	(1)	101	(11)	27	3	276	(158)	68.0%
2004	759	283	46	22	(6)	140	(12)	13		255	(148)	66.4%
2005	883	334	31	20	(4)	181	(1)	19	15	283	(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	(2)	22	13	413	(250)	60.6%
2007	1,043	359	22	32	(2)	194	(5)	42	6	388	(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계	12,318	4,112	249	229	(27)	2,393	(272)	305	76	4,954	(2,642)	61.2%
	100.0%	33.4%	2.0%	1.9%		19.4%		2.5%	0.6%	40.2%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 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 / 조정건수

※ 피해구제건수 = 조정성립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 조정불성립결정· 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이루어진 건수

■ 중 재

구 분 연 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조정성립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계	31	31					

◇ 시정권고현황 ◇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08년 한 해 동안 총 754개 매체를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282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으며, 제3자가 신청한 26건의 보도 중 7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표 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08. 12. 31.

연도	구분 권고 건수	침해 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 신문	주간 신문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문공개	정신 질환자 신문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문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문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음량 ·용법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0																
1985	0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2007	202	1	2	80	21	14	30	44	10		127	11	1	20	43		
2008	289	4		48	8	30	27	97	75		124	19	1	31	112	2	
계	5,477	717	133	1,826	1,033	289	1,004	325	150		4,936	97	16	251	174	3	
	100%	13.1%	2.4%	33.3%	18.9%	5.3%	18.3%	5.9%	2.7%		90.1%	1.8%	0.3%	4.6%	3.2%	0.1%	

가.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분석

2008년에는 사회적 법익침해로 인한 시정권고건수가 192건(68.1%)으로 개인적 법익침해건수(90건 31.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전년도에 82건으로 41%였던 것에 비하면 사회적 법익 침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

음을 알 수 있다. 침해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상세 묘사 92건(32.6%),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범죄수법 상세 묘사 및 성 관련 선정정보도) 73건(25.9%),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공개 48건(17.0%), 사생활 침해 30건(10.6%),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27건(9.6%),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공개 8건(2.8%),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나.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분석

2008년 한 해 동안 자체심의를 통해 시정권고 결정한 282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일간지가 121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신문 111건(39.4%), 뉴스통신 30건(10.6%), 주간지 19건(6.7%), 월간지 1건(0.4%) 순이었다. 일간지 121건 가운데서는 지역일간지가 90건(74.4%)으로 집계돼 전년도(126건 중 105건, 83.3%)와 마찬가지로 중앙일간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 인터넷신문이 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된 이후 2006년 16건, 2007년 43건, 2008년 111건으로 해마다 시정권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년도에는 43건으로 일간지(126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111건으로 크게 늘어 일간지(121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 2008년도 자체심의 의결현황

2008. 1. 1. ~ 2008. 12. 31.

구 분 간 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성 폭 력 피 해 자 신원공개	정 신 질 환 자 신원공개	피 의 자 피 고 인 신원공개	목 격 자 신 고 자 피 해 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 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 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 타	
일간지	중앙	31	2		2		4	1	13	9	
	지역	90	1		27	5	6	11	26	14	
주간지	종합	10						5	2	3	
	지역	9	1		3		1	4			
월간지		1								1	
뉴스통신		30			10	2		3	8	7	
인터넷신문		111			6	1	19	3	43	39	
총 계		282	4	0	48	8	30	27	92	73	
		100%	1.4%	0.0%	17.0%	2.8%	10.6%	9.6%	32.6%	25.9%	

다. 신청심의 현황

2008년 한 해 동안 시정권고 신청은 총 26건이 접수되어 2007년도 39건에 비해 13건이 감소했다. 매체별로는 방송 11건(42.3%), 일간지 6건(23.1%), 인터넷신문 4건(15.4%), 뉴스통신 3건(11.5%), 기타매체 2건(7.7%) 순이었으며, 침해법익 유형별로는 개인적 법익 관련 18건(69.2%), 사회적 법익 관련 8건(30.8%)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26건 중 7건에 대해서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져 시정권고율은 26.9%를 기록했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7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일간신문 3건(42.8%), 방송 2건(28.6%),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각 1건(14.3%)이었다.

〈표 3〉 2008년도 신청심의 의결현황

2008. 1. 1. ~ 2008. 12. 31.

구 분 간 별 계			신 청 유 형				처 리 결 과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기 타	시정권고	기 각	각 하	취 하	기 타
일간지	중 앙	6	5	1			3			3	
	지 역	0									
주간지	중 합	0									
	지 역	0									
방 송		11	8	3			2	8			1
월간지		0									
뉴스통신		3	1	2			1	1		1	
인터넷신문		4	2	2			1			3	
기 타		2	2							2	
총 계		26 100%	18 69.2%	8 30.8%	0 0.0%	0 0.0%	7 26.9%	9 34.6%	0 0.0%	9 34.6%	1 3.8%

언론조정신청사례

언론조정신청사례

지면 관계상 신청사례 원문의 일부가 수정 또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유성구청장이 술에 취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예산 의결이 늦어졌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청장 진 동 규)

피신청인 : 대전시티저널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를 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후략)

보도내용

대전시티저널 : 『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2일자 중
합면)

내 용 : 유성구 2008년도 본 예산안 의결이 법적기일인 회계연도 10일 전인 21일을 넘겨 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21일 2008년도 예산안을 제5차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한 긴축예산편성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 본 예산안을 예결위로 제심의 결정해 법적기일을 넘기는 초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언론사는 지난 2007년 12월 22일 18:35에 게재된 메인화면에 『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이라는 부제목 제하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 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

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구청장이 본회의에 만취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아 산회되어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산회한 것이 아니라 정회한 것이고 예산안 의결은 구청장 참석 유무와 관계없이 의결이 가능한 일로 법적인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책임이 구청장에게는 전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9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대전시티저널이 지난 2007년 12월 22일 18:35 메인화면에 게재한 『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유성구의회는 지난 3일부터 146회 정례회를 열고 2008년도 유성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21일 제5차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장에 구청장이 불참해 구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술을 먹고 만취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하는 등 사실상 본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회되어 2008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유성구 의원들은 “구의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총책임자인

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 의결하는데 술에 취해 참석하지 않아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누가 보아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성구 집행부는 만일 사태에 대비하여 준 예산안을 준비해야 되어 유성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처지에 놓였으며, 유성구청장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예산안 의결에 구청장이 꼭 참석하여야 하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취재의도와는 다릅니다.

또한 유성구청장은 2007년 12월 21일 예산안 의결일에 만취한 사실이 없고 구청장이 불참한 관계로 예산안 의결기한이 도과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전시티저널 2008년 1월 9일자 09:00부터 1월 23일자 08:00까지 메인화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유성구 의원들 분노 집행부 초긴장)로,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시티저널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9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장 퇴진을 조건으로 한나라당과 수신료 인상안을 물밑협상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위원장 박 승 규)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방송계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8일자 28면)

내 용 : 최근 방송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현안을 꼽는다면 수신료 인상안, 중간광고 허용안, 아이피티브이(IPTV) 법제화 등이다. 이 안들은 하반기에 본격적 논의가 집중되면서 올 안에 처리될 것이냐를 두고 주목을 끌었다. 결국 아이피티브이 도입 특별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론될 수도 있지만 나머지 두 안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인상안=국회에서 2달 넘게 표류하던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이 지난 2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은 되었으나 23일 폐회된 이번 회기에선 통과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계에는 12월 대통령선거 이후 정연주 사장 퇴진 등과 교환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준다는 물밑 협상을 한나라당과 한국방송 노조가 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 이런 맥락에서 인상안을 상정만 해놓고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것으로 서로의 이해를 절충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수신료 인상안은 대선 결과에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 2월 국회에서 생색내듯 통과시켜줄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또 한번 고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 의견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당사의 한나라당과 한국방송 노조 간의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한 물밑 협상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해 11월 28일자 28면 『방송계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라는 제목 아래 “방송계에는 12월 대통령 선거 이후, 정연주 사장 퇴진 등과 교환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준다는 물밑 협상을 한나라당과 한국방송 노조가 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다”고 기사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근거 없는 기사로 한국방송 노조 및 조합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론직필의 정신을 되새기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내 용 : 2007년 11월 28일자 28면 『방송계 3대 현안 어떻게 돼가나』 기사관련 정정보도=본지는 한국방송 노조가 대선 이후 사장 퇴진 등을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하여 한나라당과 물밑 협상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한국방송 노조는 수신료 인상 문제로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도에 대하여 한국방송 노조에 사과드립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월 17일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울디지털밸리 단지에 불법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는 ‘가짜 공장’들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금천패션발전협의회 (회장 서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매일경제 : 『서울디지털밸리의 두 얼굴』 제하의 칼럼
(2007년 12월 28일자 A7면)

내 용 : (전략)

무엇보다 심각한 난제는 단지 한복판 공장용지에서 백화점식 불법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는 ‘가짜 공장’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제조업을 내모는 산업단지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염려다. 심지어 산업단지를 해제시켜 의류타운으로 만들자는 일부 지자체와 국회의원들 주장까지 가세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명 브랜드 옷을 싸게 판다’며 시민들을 볼모로 한 불법 아울렛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동양 최대 실리콘밸리를 눈앞에 둔 소중한 그지없는 시점에 산업단지 정체성이 훼손되는 황당한 격변의 시절을 맞은 요즘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서울디지털밸리의 두 얼굴』 (조○○ 한 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당 신문은 2007년 11월 28일자 A7면 매 경광장에 〈서울디지털밸리의 두 얼굴〉이라는 제 하의 기고문을 통해 “단지 한복판 공장용지에서 백화점식 불법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는 ‘가짜공

장’들이 버젓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제조업을 내모는 산업단지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염려다”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고위 관계자의 주장을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에서 제조공장 및 의류판매장을 운영 중인 금천패션발전협의회에서는 당 협의회 소속사를 대표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고위 관계자가 ‘가짜공장’ 운운하는 것은 공단 측의 자가당착적인 억지 주장으로서 이는 당 협의회 소속사인 (주)마리오의 「마리오 2」에 대한 부당한 입주계약 해지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불합리한 논리를 대변하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산단공은 2004년 9월 「마리오2」 입주 당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주 승인 시에는 현장방문 등 업체별 정밀실사를 거쳐서 입주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주)마리오는 산업단지 내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합법적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의 면적(전체면적의 30%)내에서 공단이 요구하는 대로 봉제공장 등을 입주시켜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류, 봉제 등 산업단지 내 제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바, 해당문안은 지역내 일부 특정업체들을 표적으로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주계약해지처분취소 소송, 관리기본계획변경거부 처분취소 소송,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의 본질을 왜곡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 독자들의 생각을 오도할 소지가 있다면서 당 신문사에 반론 보도를 요청하였으므로, 당 신문사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반론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구 수용불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닭꼬치에 비둘기 고기를 사용한다는 제보에 대한 취재 보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2008서울중재1 참조)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12월 27일 18:50)

내 용 : ▷방송 : 그런데 취재도중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녹화방송분 (TV화면)

저는 일년 쯤 요리를 배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요리교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요. 선생님 남편이 “닭꼬치”에 관한 석사논문을 쓰셨다 합니다. 그런데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닭꼬치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된 비둘기 고기라고 하

네요. 그래서 제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닭꼬치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가끔 닭꼬치도 있어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번 조사해서 방송해주세요.

▷학생(A)씨 : 알아봤더니 닭꼬치가 90%이상이 비둘기 고기라고... 근데 그러니깐 사람들이 비둘기 양식하는 그런게 우리나라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깐 중국산 비둘기 고기겠다고...

▷방송 : 비둘기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요리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한 얘기이니 만큼 뭔가 근거가 있을터 직접 당사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런데~

▷PD : 진짜 비둘기 고기가 있나요?

▷강사 : 드릴 말씀 없다고 했어요.

▷강사 : 저는 저희 신랑이 지금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거였고 저희 신랑은 또 교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단기간 내에 단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신청인 체육관의 광고가 태권도 단증의 가치를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천 ○ ○
피신청인 : 무카스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무카스뉴스 : 『태권도 단증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광고』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짧은 시일 내에 단증을 따줍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태권도장의 출입문 옆 광고된 내용이다. 군입대 예정자 경찰 공무원 응시생, 태권도 관련 대학 수험생 등을 주 대상으로 한 광고문이다. 특별반을 통해 태권도 단증을 최대한 빨리 승단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광고가 여러 곳에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소수 도장에서는 소위 '서류심사' 또는 '대리 심사' 등 편법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 단증은 현재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인정된다. 또한 군 입대를 할 경우에는 유단자가 무단자에 비해 생활이 편하다. 특히 태권도 관련학과가 늘어나면서 지망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단증은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식 없는 태권도장들이 태권도 대외 이미지를 간과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기사는 2007년 12월 11일자(무카스 뉴스) 『태

권도 단증의 가치를 추락시킨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내용 중 '빠른 시일 내에 단증을 승단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여기서 빠른 시일은 1-2개월 또는 2-3개월이 아니라, 최소 9-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권도의 승단규정을 보면 1단부터 9단까지는 승단연한 및 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단에서 2단을 승단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어야 승단할 수가 있으며, 반면 1단(초단)은 청소년 및 성인 대상으로 일주일에 4-5일 정도 수련을 했을 경우 빠르면 9-10개월 정도면 1단(초단)을 승단할 수 있고, 1단 승단 시 평균 1년 정도 통상적으로 경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 체육관은 태권도의 정통성을 갖고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태권도 저변확대에 힘쓰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교회 교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후 반환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

보도내용

에클레시안뉴스 : 『이 노조위원장, 도립교회 교인으로부터 2백만 원 받아』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3일자 종합면)

내 용 : 이 노조위원장, 도립교회 교인으로부터 2백만 원 받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할 것

도립교회 일부 성도들이 이○○ 목사에게 2백만 원을 주었다고 본사에 알려졌다. 이들은 이 목사가 아직도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자, 에클레시안

뉴스에 제보를 접수해왔다. 자신들은 교회개혁 차원에서 후원을 했는데 교회개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금 반환요청을 한다는 것이다. 당시 제 3자를 통해서 후원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여지껏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2007년 도립교회가 유○○ 목사 사태로 한창 혼란스러울 때, 기독교노조위원장이○○ 목사가 자신의 일과 상관없이 유○○ 목사를 영등포노회에 고발하여서 기독교노조 차원에서 개혁적인 일을 함으로 기탁금이라도 내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이○○ 목사에게 2,000,000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목사는 총회까지 가서라도 재판을 하겠다고 개혁적인 의지를 피력하였기 때문에 후원을 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노조위원장 돈 수수 관련 정정보도
- 소제목 : 제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도한 "후원금 반환요청서"는 황○○ 본지 대표가 쓴 것으로

밝혀져, 이 위원장 금품수수 관련 기사는 허위 조작된 것.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3일자 초기화면 상단에 “이 노조위원장, 도림교회 교인으로부터 2백만 원 받아”라는 제목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노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기독교노조 이○○ 위원장은 도림교회 교인으로부터 2백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후원금 반환요청서를 기사에 첨부하여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리할 것과 이목사 소속한 해당노회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제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도한 “후원금 반환요청서”는 본 신문 황○○ 대표가 쓴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적처리는 물론 이목사 해당노회에 고발한 일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이○○ 목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내 용 : 에클레시안 뉴스는 작년 10월 3일자 「이 노조위원장, 도림교회 교인으로부터 2백만 원 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이○○ 목사가 교회개혁 명분으로 도림교회 교인들로부터 후원금 성격으로 2백만 원을 받았으며 반환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 목사는 도림교회 교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목사가 받은 반환요청서는 교인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워드문서로서 보도에 첨부된 사진 속의 요청서와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자 「서대문경찰서, 이○○ 목사 와 이○○ 목사 대질신문」 제하의 기사에서 이 목사의 두 자녀가 미국에서 해외유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보도 당시 이 목사의 두 자녀는 모두 귀국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덧붙여, 이 목사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당당뉴스> 이○○ 목사를 고소한 것은, <크리티앙>이 유니온뉴스에 게재된 이 목사의 기사를 동의없이 전재하면서 담당기자 명의를 잘못 기재한 데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며, 이 목사에게 납부책임이 있다고 보도된 상회비 수백만 원은 이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경인교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일 뿐, 이 목사의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월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안뉴스> 초기화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위 보도문도 함께 나오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클레시안뉴스 : 『이○○ 목사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4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고소·고발을 일삼고, 취하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 유학중인 자녀들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서대문경찰서, 이○○ 목사와 이○○ 목사 대질신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일자 종합면)

내 용 : 도용혐의 및 저작권위반 혐의로 필자와 이○○ 목사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이○○ 목사와 이○○ 목사가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당시 크리티앙이 유니온뉴스를 비롯하여 여러 인터넷 뉴스를 링크하는 형식으로 인터넷 신문 기사를 링크하였으며, 당시 이○○ 목사가 자기의 기사를 가져간다고 불평하여 크리티앙에 자신의 기사를 가져가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당당뉴스가 당시 크리티앙 편집진이 이○○ 목사의 기사를 착오하여 황○○ 목사라고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목사의 기사가 황○○의 이름으로 실린 것에 대해 이○○ 목사가 당당뉴스 이○○ 목사와 필자를 도용 및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이 목사는 이처럼 받아낼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면서 노회에 내는 상회비는 수백만 원이 밀린 상태이며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25만 원이 밀렸다는 것은 지난 10년 이상 한번도 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대문경찰서, 이○○ 목사 대질 심문

관련 정정

• 내 용 : 본 지는 지난 1월 1일자 상단에 “서대문경찰서, 이○○ 목사와 이○○ 목사 대질심문”이라는 제목으로 “두 자녀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 상습적 고소·고발은 계속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목사의 두 자녀는 유학하고 있지 아니하며, 상습적인 고소, 고발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당시 크리티앙이 유니온뉴스를 비롯하여 여러 인터넷뉴스를 링크하는 형식으로 인터넷 신문 기사를 링크하였으며, 당시 이○○ 목사가 자기의 기사를 가져간다고 불평하며 기사를 가져가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유니온뉴스는 링크를 허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기사를 가져가는 것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저작권의 행사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도립교회 교인의 2백만 원 반환요청에 대해서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2백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이하 2008서울조정4 참조〉



성림재단 전 이사장 아들인 신청인이 국가에 채납하기로 한 재단 산하 시설을 되찾아오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함께걸음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함께결음 : 『투쟁 통한 시설 시립화, 잊지 말아야』

제하의 기사 (2007년 8월 2일자)

내 용 :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다. 폭우와 폭염 속에서 성람공투단이 종로구청 앞에서 장기적인 농성을 시작하며 “시설 비리척결, 비리 이사진 해임, 공익이사제 도입!”을 외쳤던 때가 말이다.

2003년부터 폭로되기 시작한 성람재단의 비리는 연간 105억 원을 지원받는 복지재벌이 한 기당 1천원에 불과한 장애인의 주·부식비를 횡령해, 자기 아들을 유학 보내고 주식놀음을 했기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중략)

그러나 결국, 성람재단 스스로 자신들이 운영하던 철원지역의 시설들을 국가에 채납하기로 하면서 ‘1단계’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현재는 서울시의 회의 승인을 거쳐, 시립화 이후에 이 시설들을 운영할 주체를 공모하고 있다.

즉, 시설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있어 전자는 법인은 그대로 있지만 법인의 사적소유구조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후자는 시설자체의 국공립화로 공공성이 확보된 셈인 것이다.

물론 성람재단이 자신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석고대죄 하며 국가에 채납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조○○의 아들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억울하며, 반드시 되찾으러 오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성람재단의 핵심관계자 역시 “시립화는 됐지만, 성람

재단이 다시 위탁할 것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거나 “앞으로 ○○법인이 맡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쫓겨나지 않고 그래도 남을 것이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람재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언론은 지난 2007년 8월 2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월간지 ‘함께결음’에 “투쟁 통한 시설 시립화, 잊지 말아야 - 성람재단 산하 장애인시설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지켜보면서”라는 제목으로 “전 이사장의 아들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자신들이 쫓겨 가는 것은 억울하며, 반드시 되찾으러 오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전 이사장의 아들과 성람재단이 기부채납을 방해한다는 요지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 이사장 아들은 성람재단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위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성람재단에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집행으로 조속한 기부채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반론만 수용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의 두부제품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식품환경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식품환경신문 : 『식재료 납품 강요 시의원 본분 망각』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지
역소식면)

내 용 : “식재료 납품 강요 시의원 본분 망각”
김해 사회단체, 특정업체 위한 로비 규정 시의회
대책 촉구

김해시 지역 사회단체 대표단이 학교 식재료 납
품에 대해 물의를 빚고 있는 시의회 김모 의원을
성토했으며 제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 = (본보 10월 30일 보도) 김해시의원의 학
교급식 식재료 납품 관련 물의를 불러일으킨데 대
해 6일 김해지역 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
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는 시의원으로서 본분
을 망각한 행위’로 규정, 제발방지를 위한 김해시
의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YMCA와 김해YWCA, 참교육학부모 김해지
회, 김해여성의 전화 등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0여 곳의 학교를 방
문하고 10여 곳의 학교에 특정업체 두부를 납품토
록 했다고 시인한 시의원을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것은 분명히 시민을 대표
하는 시의원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특정업체를
위한 로비”라고 규정했다.

이들 사회단체 대표단은 또 “지난 9월에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치 않고, 자리를 비워
가면서 까지 학교 식재료 납품과 관련해 학교 관
계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실한
의정 활동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마당에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특정업체 제품 로비 활동
에 나선 의원을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고 규
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식재료 납품 강요 시의원 본분 망각』

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식품환경신문 2007년 11월 12일자 지역
소식면 기사내용 “지난 9월에 열린 시의회 상임위
원회에 출석치 않고 자리를 비워 가면서까지 학교
식재료 납품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다녔
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실한 의정활동을 상식적으
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
으로 논란이 되는 마당에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특정업체제품 로비활동에 나선 의원을 더 이상 용
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지난 해 9월에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날 단 1분도 자리를 비우거나 이탈한 사실이 없고,
급식재료 납품과 관련하여 모 학교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정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
고, 특정업체 제품에 로비활동이 없었으므로 정정
합니다.

신청 후 보도문

식품환경신문 : 『시민단체 성명 ‘식재료 납품 강요
시의원 본분 망각’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1일자 13면)

내 용 : 식품환경신문은 2007년 11월 12일자
지역소식면 기사내용에서 김해시의회 김모 의원
이 “‘지난 9월에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참
석치 않고 자리를 비워가면서까지 학교 식재료
납품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를 만나고 다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실한 의정활동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으
로 논란이 되는 마당에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특정업체제품 로비활동에 나선 의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김해시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해 9월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날
단 1분도 자리를 비우거나 이탈한 사실이 없고,
급식재료 납품과 관련하여 모 학교 관계자를 만
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의정활동도 게을리 하
지 않았고, 특정업체 제품에 로비활동이 없었습
니다. 이 보도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
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에 정정보도 합니
다. □

신청인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의 두부제품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이중앙닷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이중앙닷컴 : 『식자재 납품 물의 재발 방지를』 제하
의 기사 (2007년 11월 9일자 종합면)
내 용 : <2008서울조정7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7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식자재 납품 물의 재발 방지를』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11월 9일자 『식자재 납품 물의 재
발 방지를』 제하 기사에서 “‘지난 9월 열린 시의
회 상임위원회에서 2시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급식
재료 납품과 관련해 모 학교 관계자를 만났다고

하니 이러한 의정활동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
겠느냐’며 ‘의정비 인상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
는 마당에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특정업체 로비에
나선 의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김해 시
민단체에서 규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 A모 의원은 지난
해 9월 김해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날 단 1분
도 자리를 비우거나 이탈한 사실이 없고, 급식재료
납품에 관련하여 모 학교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전
혀 없으며, 의정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특정업
체 제품에 로비활동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이중앙닷컴 (<http://www.ejungang.com>)의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008년 1월 22일까지
위 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
면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
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
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
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
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이중앙닷컴 : 『‘식자재 납품 물의 재발방지를’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3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대학 총학생회의 비리에 대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인터뷰를 동의 없이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8년 12월 18일 23:10)
내 용 : <▷화면 : 우석대 총학생 회장실이 나오

고 본인 인터뷰 내용이 나온다.)

▷성우 : 소문의 진위에 대해 증언해 준 것은 총학생회 간부 출신인 ‘박씨’였다.

▷신청인 : 집애기 까지는 모르겠고 중형차 한 대 정도는 뺄수 있어요. 총학 안에 관리하는 식구들이 40명이에요. 그 40명 동생들한테 안풀고 자기가 최대한 조잔하게 해서 챙기면 소위 말해서 에쿠스 한 대는 사갔고 나간다고 봐도 돼요. 집은 오바고.

(▷화면 : 우석대 학생복지팀 팀장 인터뷰)

▷성우 : 박씨가 주요 수입원으로 꼽은 것은 다양한 학내 사업이었다. 총학생회의 이름을 걸고 오간 협찬금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신청인 : 자판기 이게 하루라도 청소를 안하면 진짜 드러워요. 사장님을 불러다가 안에 한 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완전 개판이었어요. 학교 자판기 업자 바꿔 주라고 그 사진 다 찍어서 공문에다 뒤에 다 붙여서 학교에다 공문 내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500만 원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와요.

▷신청인 : 내가 이사람들한테 뭘 허락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식으로 돈을 줘요. 명절 잘 쇠시라고, 한 100만 원씩 와서 갖다주고 총학생 회장은 그거보다 완전 많다고 보시면 돼요.

▷PD : 가장 덩치가 컸던 게 어떤 거예요?

▷신청인 : 그게 거의 졸업앨범이에요. 졸업앨범은 그냥 하나 주면 그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싸줘버리니까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월 31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

경찰공무원인 신청인이 경매를 통해 집을 매입한 것이 공직자로서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전북연합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전북연합신문 : 『목민심서』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7일자 13면)

내 용 : 공직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

서 국민이 사는 집을 경매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이 생겨 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합법적인 경매 절차에 따라 서민의 집을 경락 받은 공직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행동 때문에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을 길거리로 내 모는 일은 국민의 공복이라면 삼가 해야 마땅한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자 정신적 지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직자는 언행(言行)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이런 공직자는 모두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노모를 모시고 살다 집을 경매당한 A씨는 “입찰한 공직자가 입찰보증금과 비용을 주면 낙찰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지금은 변

제할 돈을 마련할 수가 없고 노모를 모시고 이사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목민심서 관련 반론보도문(또는 목민심서 관련 공무원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007년 12월 27일자 전북사람면에 『(기자수첩)목민심서』라는 제목으로 공직자가 집을 경매 받아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게 하여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부재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집을 경매 받은 공무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이었음이 확인되었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사과하며 이에 반론보도 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 전북연합신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64-18

대표이사 강 춘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북연합신문 13면 우측상단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목민심서)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2.

<별 지>

- 제 목 : 기자수첩 『목민심서』 보도 관련 반론
- 본 문 : 본지는 2007년 12월 27일자 13면 기자수첩을 통해 “공직자가 집을 경매받아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게 하여 도덕성 부재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공직자는 “고창으로의 전출이 예정됨에 따라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용도로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친분이 있는 특정업체의 두부제품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마산MBC-R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내 용 : <2008서울조정7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상임위 도중 자리를 비운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는 일부 수용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할 사안은 아님. □

보도내용

마산MBC-R : 「라디오 광장」 프로그램 (2007년 11월 16일 18:30)

푸드마켓에서 자원봉사 중인 신청인의 어머니를 공짜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SBS-TV :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그램 (2008년 1월 4일 18:30)

내 용 : 〈공짜슈퍼 있다 없다〉 편에서 자원봉사 중인 신청인의 어머니 모습을 방송.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짜슈퍼” 코너의 무리한 편성과 자원봉사자들이 파렴치범으로 매도됨에 대한 SBS의 사과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8년 1월 4일자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그램 중 “공짜슈퍼 있다 없다” 편에서 특정대상인으로만 제한된 조건부 공짜슈퍼를 사회 통상적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슈퍼로 각인 시킴으로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이해를 요구하는 무리한 편성을 하여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우를 범하였고 결과적으로 시청자를 우롱한 결과가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

서울 양천구 목1동 920 SBS방송센터

대표이사 하 금 열, 김 수 웅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TV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그램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되, 그 내용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8년 1월 4일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그램의 ‘공짜슈퍼 있다 없다’ 편에서 구청이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푸드마켓을 ‘공짜슈퍼’로 표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 어머니가 물건을 사려는 구매자인 것처럼 인터뷰하여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해당 슈퍼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에 의해서도 보도에 언급된 사람은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어머니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을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7.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륜을 저질렀다고 잘못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시내 호텔에서 정부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밝혀
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7년 7월 10일자 6면 『고위 공무원 행태 가관이네!』 제하의 기사에서 “9일 도 감사관실과 오산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오산시청 모 과장이 근무시간에 …”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근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8년 1월 18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 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사무관이 여직원·여고생 성추행…)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상에서 위 원문 기사를 2008년 1월 17일자로 삭제한다.

보도내용

경기신문 : 『고위 공무원 행태 가관이네!』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0일자 6면)

내 용 : 사무관이 여직원·여고생 성추행 이어
이번엔 과장이 불륜…

고위 공무원 행태 가관이네!

오산시청 모 과장 근무시간에 정부와 성관계
도 기동조사팀 적발… 사표 제출 수리 예정

양주시 모 사무관의 여직원 성추행과 도 2청 모
사무관의 여고생 성추행이 잇따르며 도내 고위 공
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엔 오산 시청의 모 과장이 근무 시간에 정부
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
다.

이로써 김문수 지사의 공직 비리 및 불미스런 사
건의 엄단 의지가 또 다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9일 도 감사관실과 오산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오산시청 모 과장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해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8일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신청인이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투기꾼도 자문위원?』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8일 23면)

내 용 :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용’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에서도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동산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새 정부의 조직과 기능,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은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인수위는 이유야 어찌됐건 문제가 있는 정책은 바로잡고, 중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인수위 경제2분과가 담당한

다. 소속 위원에 대해선 적절한 인물이 배치됐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일부 의외의 인물도 포함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물론 의외의 인물이더라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반을 잘 이해하고 그 나름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해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자문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의심될 정도의 인선도 있다. 일부는 그동안 참여정부 내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자기 뱃속 채우기’에 혈안이 됐던 인물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인사도 있다. 그 때문에 관련 학계와 연구계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에서조차 해당 인사의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기독교노조가 출범 이후 재정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노조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통장을 관리하여 재정도 불투명하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0.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기독교노조,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미약』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7일자 종합면)

내 용 : 기독교노조는 교회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세인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2004년도에 힘찬 출발을 하였지만 노조위원장의 불투명한 금품수수행위와 상습적 고소행위, 사용자로서의 자격여부와 더불어 노조자체의 방향성을 잃어 거의 절명위기에 몰

렸으며, 교회개혁보다는 금품수수행위성 일인대행시위, 교회와 대형교회 목회자 약점잡기 등으로 인해 원래의 노조취지와 의미를 상실하고 탈선을 하였다.

사찰집사를 해고한 교회에 물려가 피켓시위를 하는 등 하여 노조사무실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재정감사도 하지 않고 통장도 노조위원장 개인이 관리함에 따라 재정도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 목 : 기독교노조 재정감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7일자 초기 상단에 『기독교노조, 시작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미약』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재정감사도 하지 않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결과, 기독교노조 이○○ 감사가 2007년 12월 6일 감사를 했으며, 2006년 6월

에 김○○ 감사가, 2005년 4월 21일엔 유○○ 감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감사를 한
것은 물론 각각 총회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통장도 노조위원장이 관리함에 따라 재정도
불투명하게 운영되 온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
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통장은 노조사무실
에 보관된 것이고, 재정도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노조위원장의 불투명한 금품수수 행위와 상
습적인 고소행위, 사용자로서 자격여부와 더불어 노
조자체의 방향성을 잃어 거의 정명위기에 몰렸으며,
교회개혁보다는 금품수수행위성 일인대행시위, 교회
와 대형교회 목회자 약점잡기 등으로 인해 원래의
노조취지와 의미를 상실하고 탈선하였다.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노조 이길원위원장은 정
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단체교섭을 통한 최소 규모의 노조사무실
및 전임자 임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의
단체교섭권의 행사였으며, 노조의 취지와 의미를 잃
은 일은 없었으며, 절명위기, 대형교회 목회자 약점잡
기, 상습적 고소행위, 금품수수성 1인시위 등 금품수
수행위 및 방향성을 잃은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 4동

발행인 황 규 학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 에클레시아(<http://www.ecclesian.com/>)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의 정
정 및 반론 보도문 제목을 3일(첫째날은 첫째줄,
둘째날은 둘째줄, 셋째날은 셋째줄)동안 게재하되,
제목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 신청인에게 금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
유 없음이 명백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4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6.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

교회 신축공사로 인해 신청인 집의 내부는 균열이 생겼지만, 외부는 멀쩡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일보 : 『“밖은 멀쩡한데 ... 안이 찌꺼” 공사장
인접건물 민원 제기』 제하의 기사 (2007
년 12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성남시 수정구청에 ‘공사현장과 인접한
건물이 외부는 균열이 없는데 반해 내부는 곳곳에
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눈길.

3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신흥 2동 104 D
종합건설이 시행중인 모 교회 신축공사로 인해 바
로 인접한 108-2 K씨(63)의 2층 집 안방과 침실 벽

에 0.4mm 두께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

이 민원에는 또 같은 건물 101호는 화장실 틈과 벽, 102호 거실과 안방 벽이, 옆 건물인 108-1 지층 2호는 안방과 작은방의 기둥역할을 하는 벽면이 당초 0.1mm에서 0.5mm로 벌어지는 등 양 벽면이 똑 같은 위치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기록.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재림교회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에 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12월 4일자 사회면에 『“밖은 멀쩡한데... 안이 짹짹” 공사장 인접 건물 민원 제기』 제목으로 성남시 수정구청에 ‘공사현장과 인접한 건물이 외부는 균열이 없는데 반해 내부는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재림교회 신축 공사로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바닥, 옹벽, 담장 등에 심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들이 국악협회 아산지부의 각종 대회 행사비를 회장도 모르게 임의로 집행하는 등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7인

피신청인 : 아산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아산투데이 : 1) 『국악대회 결산회계 ‘영망’, 특혜사비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9일자 4면)

내 용 : 아산시가 지난해 설화예술제와 함께 개최한 제5회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제2회 아산시 풍물경연대회의 대회 운영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수박 겉핥기 식의 감사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아산예총에 가입한 많은 예술단체에 비해 국악협회에 많은 행사진행비를 지원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함께 제기돼 타 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7일 아산시 국악협회 남상덕 회장이 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결산내역서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전국국악경연대회에 2000여 만 원과 아산

시 풍물 경연대회에 31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박태순 부회장은 “하지만 행사비의 집행내역을 회장도 모르는 채 사용됐고 결산내역서 곳곳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결산내역서엔 행사가 끝난 후인 지난해 10월 2일 내역에는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식대 170만 원, 숙박비로 30만 원, 예식장 사용료 70만 원, 과일값으로 29만 9000원과 아산시 풍물경연대회에 식대 471만 원이 행사 후 9월 23일자 식대로 지출된 것으로 영수증이 첨부돼 있다. 또 풍물대회 내역 가운데 대표자회의 식대의 내역으로 1인당 1만 원의 정식 80인분 80만 원과 식음료 값 15만 원 등 95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두 국악협회 회원이 연관된 농원의 식당 영수증이 첨부돼 있지만 행사 당일과 이 후에도 이런 식사 등을 한 일이 없다는 게 국악협회의 주장이다.

또 양 행사에 꽃사지 값으로 21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지만 동일 영수증이 사용한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 (후략)

2) 『아산예총 각종 파행... 앞날 걱정된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6일자 5면)

내 용 : 사무국장 부정 의혹 사건·국악협회 회계 의혹 등 악재 꼬리 물어

온양온천문화예술제 결산 물의로 윤홍섭 추진위

원장 징계 요구도

다수 “정확한 감사를 통해 새로 태어나는 기회 삼아야 한다” 자정의 목소리

한국예총 아산시지부(아산예총)가 각종 파행을 겪으며 앞날을 걱정시키고 있다.

이모 전 지부장이 중앙본부로부터 지부장 인준을 받지 못해 자진 사퇴, 지부장 공석 사태를 야기한 것을 비롯해 이후 사무국장 불인정 및 부정의혹 사건 발생, 국악협회의 국악대회 결산회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2007년 11월 29일자 4면 『국악대회 결산회계 엉망 특혜시비도』, 『회장도 모르는채 사용』 주장, 그리고 2007년 12월 6일자 5면에 『아산예총 각종파행... 앞날 걱정된다』 각각의 제하 기사에서 아산시 국악협회 남상덕회장이 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결산 내역서 자료에 따르면 시가 국악경연 대회에 2000여 만 원과 아산시 풍물경연 대회 3100여 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행사비의 집행내역이 회장도 모르는 채 사용됐고 결산내역 곳곳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는 관련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하였고, 결산내역서엔 전국경연대회에서 식대, 숙박비, 과일값 등과 풍물경연대회에 식대 471만 원 등이 사용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런 식사 등을 한 일이 없다는 국악협회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전 지부장이 일부 회원들과 협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국악협회의 이름을 내걸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 지부장이 이사회를 직접 개최하고 그 결의로 집행과 행사, 정산보고를 한 바 있어 집행내역을 모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실무자들을 현지부장이 사기 및 업무 상형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무혐의 또는 기각 처리 되었고, 시의 보조금은 직접 지부장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지부장의 승인없이 지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전 지부장 등이 임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

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아산투데이 지난 2007년 11월 29일자 4면 『국악대회 결산회계 ‘엉망’, 특혜시비도』, 『회장도 모르는 채 사용했다』, 2007년 12월 6일자 5면 『아산예총 각종 파행... 앞날 걱정된다』 각 제하의 기사에서 아산시 국악협회 남상덕 회장이 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결산 내역서 자료에 따르면 시가 국악경연 대회에 2,000여만 원과 아산시 풍물경연대회에 3,100여만 원을 지원했다...“하지만 행사비의 집행내역이 회장도 모르는 채 사용됐고 결산내역 곳곳에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는 관련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하였고, 결산내역서엔 전국경연대회에서 식대, 숙박비, 과일값 등과 풍물경연대회에 식대 471만 원 등이 사용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런 식사 등을 한 일이 없다는 국악협회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전 지부장이 일부 회원들과 협회의 동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국악협회의 이름을 내걸고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현 지부장이 이사회를 직접 개최하고 그 결의로 집행과 행사, 정산보고를 한 바 있어 집행내역을 모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시의 보조금은 직접 지부장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지부장의 승인 없이는 지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전 지부장 등이 임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위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현 지부장이 실무자들을 사기 및 업무상 형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나 무혐의 또는 각하 등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산투데이 2008년 1월 31일자 4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회장도 모르는 채 사용했다”주장)의 굵은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게재한 위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합의서 내용 이외의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산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1일 4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보은한우축제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저가 한우를 혼용 판매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1

청 구 명 : 추후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한우협회 보은군지부
(지부장 조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증재부

접 수 일 : 2008. 1.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동양일보 : 『보은 황토타운 일반육 혼용판매 말썽』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9일자 3면)

내 용 : 충북 보은군에서 얼마 전 개최된 ‘속리산 황토타운 조랑우랑 브랜드육 행사(한우축제)’에서 행사 목적과 달리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가 소비자들에게 다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행사 주최측에서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를 대형마트나 일반 정육점 등에서 구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철저한 경찰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올 초 ‘가짜보은대추’ 파문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지역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은경찰서와 한우협회 보은군지부, 보은축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보은군 일원에서 열린 한우축제에서 협회에서 생산

된 한우(조랑우랑)의 양이 크게 부족해 일반 정육점이나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구입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판매했다. 이들 단체가 행사기간 동안 판매한 소고기는 1억 2,000만 원에 달하며 이중 한우조합에서 판매금은 2,000만 원, 정육점 등 현지 소매상에서 구입·판매한 매출은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보은 한우축제를 보기 위해 찾은 소비자들이 행사장에서 사먹고 구입한 소고기 대부분이 조랑우랑이 아닌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인 셈인 것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소고기 600g을 등급에 따라 3만 9,000원에서 1만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출처불명의 저가 소고기 외에 수입산 소고기와 불법도살·가공된 소고기 등도 이날 행사기간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관계자는 “이날 행사기간 동안 소고기 물량이 부족해 축협, 롯데마트 등에서 자신들이 납품한 소고기를 다시 매입해 판매했다”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는 판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략)

(2) 『보은한우축제 혼합육 판매 의혹 확산』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3면)

내 용 : 축협 출처 비공개·말바꾸기 등 ‘의혹덩어리’

지역경찰 수사 한계... 사건이첩 불가피 여론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보은한우축제’에서의 저가 소고기 대량판매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소고기판매를 주관한 축협측이 정확한 매입·판매량

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데다 매입처마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유무를 가릴 수 있는 경찰수사도 수사진행 내용이 유출되고, 사건관련자 사이에서는 ‘내사 종결설’ 까지 돌고 있어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선 상급부서인 충북지방경찰청으로의 사건이첩이 불가피하다는게 경찰 안팎에서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출처불분명 소고기 판매의혹 확산

전국한우협회 보은군지부(보은한우협회)와 보은축협 등에 따르면 보은한우협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3회 보은한우축제에서 보은황토한우(조랑우랑) 판매를 보은축협에 위임했다. 보은축협은 판매를 위해 보은축가에서 황토한우를 사들여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의 가공을 거쳐 참가자들에게 600g당 3만 9,000원에 판매했고, 비축해놓은 한우도 1만 2,000원에 판매했다.

보은축협은 당초 예상과 달리 소고기가 동이 나자 농협청주물류센터를 통해 추가로 한우 100여 kg(296만 원 상당)을 구입했다. 축협은 행사기간 동안 1억 2,000여만 원(황토한우 9,000·한우4,000)의 매출을 올렸다. 문제는 축협이 행사 전 비축해놓은 한우가 출처불명이라는 점이다. 축협은 비축해놓은 한우 1,400kg도 농협청주물류센터에서 구입했다고 밝혔으나 본보 취재 결과 물류센터에서 보은축협으로 공급된 한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협측이 한우 매입처를 속인 대목이다.(후략)

(3) 『수입육 포함 여부 주목』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3일자 사회면)

내 용 : 충북 보은한우축제에서의 출처불명 소고기 판매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입소고기 등이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찰도 수입소고기가 판매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랑우랑 한우’에 대한 상품의 질과 무관하게 3년째 열린 보은한우축제의 신뢰추락은 물론 보은군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한우협회 보은군지부(지부장 조○○)와 보은축협 등에 따르면 보은한우협회는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3회 보은한우축제에서 부대행사로 보은황토한우 판매를 보은축협에 위임했다.

보은한우협회는 또 행사장 내 한우먹거리장터를 음식점협회중앙회 보은군지부(보은음식협회)와 협의, 운영토록 했다.

보은축협은 행사를 위해 보은축산농가로부터 조랑우랑 15마리를 사들인 뒤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의 가공을 거쳐 부위별로 나눠 냉동차량에서 현지 판매했다. (후략)

(4) 『보은황토한우 품질은 ‘최고’ 한우협 군지부 상도덕 ‘최저’』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4일 1면)
내 용 : 보은군과 보은축협이 한우 명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속리산 ‘황토조랑우랑한우’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전국한우협회 보은군지부와 보은축협이 지난 9월 개최된 보은한우축제에서 황토한우가 부족하자 일반 한우는 물론 2등급 이하의 혼합육을 판매해 파문을 일으킨 것은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특화에 성공한 보은한우의 이미지 손상과 사업확대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사태의 조기수습과 선의의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위해선 관계자들의 도덕적 책임과 사과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후략)

한우 이미지 손상과 사업 확대 찬물
관계자 도덕적 책임·사과 뒤따라야

(5) 『“보은축협 원산지 표시 위반”』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0일자 3면)

내 용 : 경찰, 보은군에 축협 과태료 처분 의뢰
축제시 9200여만 원 타지역 한우 판매

충북 보은한우축제에서 한우를 판매했던 보은축협이 전국 5개 지역에서 사들인 한우를 보은한우인양 판매한데다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원산지 및 부위·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수사의 핵심이었던 수입소고기 포함

여부는 수사 결과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3월 보은농협이 경북 경산 대추를 사들여 보은대추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보은가짜대추’ 사건과 매입·판매행위는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대상이라는 점이 다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후략)

(6) 『“한우협 군지부 발전 기회 삼겠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2일자 2면)

내 용 : 경찰수사결과 수입육은 유통 안된 것으로 확인

보은군, 한우·황토대추 명품화사업 지속 지원
충북 보은한우축제 혼합육 판매 파문과 관련, 전국한우협회 보은군지부 (보은한우협회)는 이번 사건을 자정의 계기로 삼고 향후 행사의 내실화 등에 주력키로 했다.

이번 보은한우축제 혼합육 파문은 경찰 수사 결과 수입소고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타지역 한우를 대량 매입,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은경찰서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9,200만 원 상당의 타지역 한우를 축제 참가자들에게 판매한 보은축협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보은군에 통보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가짜 보은한우 및 수입소고기 판매 의혹 관계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밝혀졌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종합면과 사회면, 지역면에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보은읍 이평리 뱃들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한우축제시 유통된 보은한우의 가짜 보은한우와 수입소고기의 유통의혹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은경찰서에서는 수입소고기 저가판매에 대해서 2007년 11월 15일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로 원산지의 미표시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여 제3회 한우축제에서 유통된 한우의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을 입증 받았으므로 동양일보의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의

보도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내용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가짜 보은한우 및 수입소고기 판매 의혹 혐의 없어』

• 본 문 : 동양일보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종합면과 사회면, 지역면에 지난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보은읍 이평리 뱃들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한우축제에서 유통된 가짜 보은한우와 수입소고기 유통 의혹에 대해 일련의 보도를 하면서 ‘수입육 포함 여부 주목’, ‘보은축협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제목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보은 경찰서의 조사 결과, 수입 소고기 저가판매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지난해 11월 15일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출장소로 원산지의 미표시 부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에서도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양일보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수입육에 대한 의혹 부분을 다른 기사 내용이 마치 위법한 것처럼 보도되어 한우농가에 피해를 주었을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한편, 보은군 한우협회측에서도 향후 축제를 개최할 시에는 소비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혀왔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양일보 2008년 1월 18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할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11월 9일자 보은 황토한우 일반육...)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양일보 : 『가짜 보은한우·수입소고기 판매 의혹 혐의 없어』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8일

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필수과목인 생물학을 이수하지 않고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월 13일 21:00)

내 용 : ▷앵커 : 어머니가 딸의 편입학시험 심사위원이라면 과연 공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를 계기로 검찰이 대학 편입학비리 수사에 나섰는데 곳곳에서 비리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연세대 간호학과와 편입학 시험을 본 김모 양은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선 만점을 받았고, 면접도 만점에 가까워 다른 응시생들을 따돌렸습니다.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결과 김양의 어머니는 바로 이 대학 간호학과 교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부학장이던 이 교수는 딸이 응시한 편입학 시험 서류 전형 심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시험을 치면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공문을 통해 알렸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연대 입학처 관계자 : “(어머니가)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되죠. (이 경우에 왜 들어간 거에

요?) 지금 내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구요...” 평가가 불공평했을 거란 의혹이 불거지자 연대측은 채점은 다른 교수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 입학처 관계자 : “그 분이 문제가 됐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그 분이 직접 자기 자녀를 채점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검찰은 학교측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들의 ‘사정 회의’에 참여했는지, 다른 교수들에게 딸을 부탁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연창은 편입학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김모 씨는 필수 과목인 생물학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독교와 세계문화’라는 종교학과 교양과목을 생물학 유사 과목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이나 생명에 대한 종교적 이해 등을 다룬 강의 내용이 생물학과 비슷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연대 치과 대학 관계자 : “해당 교수의 재량이 크더라고요. 천지창조도 이게 생물쪽이다 또는 물리쪽이다 하면, 해당 교수의 확인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담당 교수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연대 신과 대학 관계자 : “내가 확인서를 해 준거는 배운거를 확인해 준 거고 대체를 해줄거나 말거나는 확인서와 강의 내용을 보고 그 분들이 결정을 했겠죠” 검찰은 또, 지난 2005년 연대 치과대학 편입생 가운데 두 명이 합격 직후 각각 3천만 원과 5천만 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낸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학 대가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연대 편입학 심사위원 세명의 은행 계좌

에서 수천만 원대의 의심스런 뭉치 돈을 확인하고 편입학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전주 모악산 정상에 있는 방송 송신탑 이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KBS가 광주 무등산에 있던 송신탑을 이미 이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사장 정 연 주)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1)『정수리 깃누른 송신탑 전북의 어머니
되가 아프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일자 20면)

내 용 : 모악이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있다. 바로 방송·통신용 송신탑 때문이다.

모악산 송신탑은 30년 동안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서있다. 때문에 모악산은 마치 사람으로 치면 정수리 백회혈에 침을 맞은 채 무거운 돌덩이를 이고 있는 모습이다. 백회혈이 무엇인가. 바로 정수리의 숨구멍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숨통이 이처럼 짓눌리고 있으니 제마무리 모악이 천하의 영산(靈山)이라 해도 제대로 기를 펴리 만무하다. (중략)

오늘날 전과와 송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또 기술적으로도 모악산 송신탑 외의 다른 선택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단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시설의 주체가 편하자고 이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또 하나의 군림이자 특권이다. 하물며 모악산의 제한된 공간과 만인의 소유인 자연을 소유주나 관리자만 독점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소유욕의 극치이거나 전근대적인 독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옮겨야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송신탑 관리자 측의 태도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전을 위한 협의와 추구를 거듭했다. 정상 부지 소유자인 금산사 측과 시설운영주체인 한국방송공사 측에서는 여러차례 사용만료에 따른 이전 내지는 철수결정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구체적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일종의 ‘만만디’ 전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중략)

길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광주 무등산과 대전 계룡산의 방송 통신시설 이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된다. 발달된 현대 전파 송신기술로 기술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평가돼있다. 다른 산이나 봉우리에 옮기는 방안도 이미 검토돼 실행하려 했던 적도 있다.

문제는 하고자 하는 의지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굳이 논란이 필요 없다. 어떤 일정에 따라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가를 차분하게 정리하면 된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동안 주요 이슈를 놓고 전북공동체가 여러 번 보여 왔던 갈등과 분열상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따지고 보면 모악의 송신탑 이전은 논란거리도 못 된다. 단지 관리자 측의 의지와 결심만 있으면 그만인 단순한 과제다.

해법은 나와있다. 그럼에도 실천 방안만큼은 당사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뜻을 모아 찾아보고자 한다.

(2) 『“송신탑 이전, 방송사도 약속한 사항… 로드맵 공개해야”』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9일자 16면)

내 용 : △사회=이 좌담회는 송신탑 이전에 합리

적인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지 투쟁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번 좌담회는 순수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전 실행을 촉구하자는 뜻으로 마련 됐다. 또 KBS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좌담회를 통해 시민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 달라. (중략)

△신○○ 사무총장=모악산 송신탑은 전라북도 전체의 문화적 가치도 많이 손상시키는 것이다. 송신탑 하나로 인해 모악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저해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가치가 역시 저하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KBS 측에서 송신탑을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다. KBS는 우선 정상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순차적으로 복원한 뒤 2002년 송신탑을 완전히 철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그 당시 금산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나, 결국 많은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 일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사회=모악산 정상회복 도민연대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KBS측에 요구할 계획이며 향후 운동 방향은 무엇인가.

△신○○ 사무총장=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KBS측에서도 송신탑의 효율성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송신탑을 옮기는데 암묵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철거비용 등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겠나. 일단 KBS측이 송신탑 철거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을 해 도민에게 공개 발표하라고 요구할 생각이다. 또 등산객이 정상에 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철거를 하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직은 가칭이지만 ‘모악산 정상회복 범도민회의’를 구상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실 확인 없는 ‘모악산 송신탑을 옮기자’ 기획 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일자와 9일자 기획 16면에 『모악산 송신탑을 없애자』는 기획으로

2차례 걸쳐 확인없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일자 『정수리 짓누른 송신탑 전북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프롤로그 기사 내용 가운데, “광주 무등산과 대전 계룡산의 방송 통신시설 이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된다”는 내용과 9일자 『송신탑 이전, 방송사도 약속한 사항...로드맵 공개해야』라는 제목의 사회자 멘트, 토론자 신○○ 모악산 정상회복 도민연대 사무총장의 토론내용은 마치 광주 무등산 송신탑 이전을 위해 광주 시민 전체가 일어나 송신탑을 옮긴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광주 무등산 송신탑은 이전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일자 프롤로그 기사, 해당 좌담회 사회자 발언 내용 모두 자신의 기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내용을 확인 없이 기사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9일자 모악산 정상회복 도민연대 사무총장인 신○○ 씨 또한 확인 없이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모악산 송신탑 이전’ 보도 관련 정정
- 내 용 : 본 신문의 1월 2일자 20면 및 9일자 16면 『모악산 송신탑을 옮기자』는 제목의 기획보도 중 “광주 무등산과 대전 계룡산의 방송통신시설 이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된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 결과, “무등산과 계룡산 송신탑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새전북신문 2008년 1월 25일까지 16면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모악산 송신탑 이전’ 보도 관련 정정”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 중 2008년 1월 2일자 20면 기사의 부제목 ‘전파-송신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전북신문 : 『모악산 송신탑 이전 관련』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5일자 2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주호영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명단이 붙은 좌석이 배정되지 않아 신경전을 벌이고 좌석을 급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호 영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5.

처리결과 : 조정성립

이 대변인은 주 대변인 좌석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원래 비서실은 뒤에 가는 거예요”라고 한마디. 주 대변인 자리는 전제회 한나라당 최고위원 뒤편에 급조됐고, 결국 이날 당선자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대변인들 좌석 배치는 주호영,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김인규(당선자 비서실 공보팀장), 이동관 대변인 순으로 조정됐다. (후략)

보도내용

이데일리 : 『잘못하다 자리 뺏기겠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4일자 경제면)

내 용 : (전략)

○...이날 회견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 국민들에게 면면을 드러낸 첫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특히 비서실이 마련한 참석자 좌석 배치도를 보면 인수위 내 권력 지형을 가늠할 수 있었다는 후문.

이 당선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주요 멤버가, 왼쪽으로는 이경숙 위원장을 포함한 인수위 인사가 자리를 잡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수위원들도 각 분과 간사급 이상 위원들.

간사급 이하 인수위원 중에서는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광승준 위원과 이동관 대변인석이 마련돼 있어, 인수위 내 이들의 ‘파워’를 실감하게 했다.

○...기자회견 직전엔 자리 배치를 두고 대변인들간에 미묘한 ‘신경전’도 연출됐다.

회견장에 뒤늦게 도착한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자신의 명단이 붙은 좌석이 없어 다른 좌석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 비서실에서 급하게 자리를 만드느라 부산한 가운데,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자신의 좌석 위치를 가르키며 “대변인 자리를 저기 갔다 놓으면 어떡해요!”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 자리배치 두고 대변인들간 신경전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1월 14일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신년기자회견장에서 좌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어리둥절해 하고, 주 대변인의 좌석을 급조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 대변인은 기자회견의 사회자로서 별도의 사회자석이 있기 때문에 좌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거나 좌석명단이 없어 어리둥절해하지 않았으며, 좌석 또한 급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주호영 대변인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4일 『(이모저모) 잘못하다 자리 뺏기겠네』 제하의 기사에서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자신의 명단이 붙은 좌석이 없어 다른 좌석을 훑어보며 어리둥절해 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주 대변인은 당선인이 앞 좌석에 앉은 사람까지만 악수한 뒤 단상에 오르기로 계획되어 있어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좌석을 훑어본 것이라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이데일리의 경제섹션 초기화

면에 상기 정정보도문을 목록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이데일리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5일자 경제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로 인해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지연되어 국가적 손실이 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4.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경향신문 : 『“환경평가 등 기본절차만 4년 걸릴 것”』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17일자 8면)

내 용 :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사업’이라는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논란 중의 하나는 공사기간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한반도 대운하를 대통령 임기인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이에 토목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댐 하나 짓는 데도 10년이 걸린다”면서 “모르긴 해도 이 전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5년 임기 동안 계획만 검토하다 끝나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토목엔지니어링 회사 임원은 “공사기간은 얼마나 많은 인원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4년 내 대운하 완공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그러면

서도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다른 건설사업을 제쳐놓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만 매달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형 국책사업의 전철(前轍) 뱀나=대운하 반대론자들은 대운하 건설이 새만금사업의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만금, 경부고속철도, 신공항건설, 경인운하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척된 전례가 없고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당시만 해도 총 사업비를 8,200억 원, 공사 마무리 시기는 2012년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작 시행과정에선 사업중지, 공사중지 가치분 등에 의한 두 번의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어업보상비로 4,400억 원이 추가되고 방조제 유실로 77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경부고속철도 또한 91년 5조 8천 4백억 원의 공사비를 예상했으나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그 세 배가 넘는 18조 4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마저도 2010년 대구~부산 구간 완공 때까지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다. 경기 연천의 한탄강 댐건설 계획은 8년여간 중단된 뒤 올해 2월 착공했다. 2000년 만해도 예상 사업비는 9,700억 원이었으나 지금은 사업비가 1조956억 원으로 늘어났다.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工期) 연장 및 예산증가는 대운하 건설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와 보상을 둘러싼 주민갈등, 사회갈등을 반드시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소해야 함을 뜻한다. 환경훼손 문제로 수 년간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의 경우 그 사이 치른 사회적 손실이 5,7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지난해 7월 17일 경향신문은 대운하 문제를 다루면서 <경부고속철도 또한 91년 5조 8천 4백억 원의 공사비를 예상했으나 천성산 터널고사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그 세배가 넘는 18조 4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마저도 2010년 대구~부산 구간 완공 때까지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다>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위 기사는 천성산 문제의 시비를 논하는 기사는 아니지만,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의 사회적 손실 문제가 관성적으로 굳어져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로, 인용된 18조 400억 이라는 금액은 천성산 문제가 발발하기 4년 전인 1998년 2단계 수정안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후 2006년 8월, 공사금은 1조 4,900억 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는 19조 9,227억 원(2단계 7조 1,9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증가된 금액은 천성산 문제 때문이 아니라 1998년 예산에 없었던 오송, 구미, 김천, 울산, 신경주역 등의 추가 사업비 때문입니다. 또한 우려하였던 공기는 오히려 예상 공기를 최소 7개월 이상 앞당기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중지되었던 천성산 구간의 공사가 공기지연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5년 2월 5일 공동조사 합의 직후 경향신문은 『표류하는 국책사업』이라는 표제의 기획기사에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도 피할 수 없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118.3km)중 천성산 구간인 13-3공구(8.83km)와 13-4공구(4.8km)는 SK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시공을 맡고 있다. 건설사측은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면 하루 5억~10억 원의 인

건비를 포함해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관성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2조5천억 원의 비용문제로 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용한 5,000억 원이라는 숫자는 현대와 SK 두 회사의 천성산 공사 발주금을 합산한 금액의(169,261백만 원/139,033백만 원) 배에 가까운 숫자였고 2조5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동아일보의 비유처럼 국민 일인당 4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큰 액수였으나 확인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지난 9월 언론중재위의 조사위에서 밝힌 천성산 공사로 인한 실 피해는 시공사인 현대와 SK의 손실부분으로 150억 정도로 밝혀졌지만 그 수치도 고속철도 공단의 추정자료일 뿐이며 감리단의 일지에는 손실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천성산 문제가 대두 된 지난 7년 동안 천성산 습지 발견을 첫 기사로 X파일 등 100회 이상 천성산 문제를 조망하고 독려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롱뇽 소송 패소 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천성산 대책위가 제기했던 문제와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는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나 천성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아랑곳없이,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조원의 손실 문제가 정치적 이유로 재론되면서 천문학적 손실, 막대한 국고 낭비, 무모한 정치실험, 개발사업의 제동을 걸었던 사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경련 조석래 회장의 10조 손실 발언, 이회범 무역 협회회장,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 등).

천성산 대책위는 천성산 손실 문제에 대한 반론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9월에는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 요청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된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으로 인한 공사 중지 기간은 6개월이며, 직접적인 손실금은 145억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그 내용은 동아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하였던 수 년 간의 공사 중지, 2조 손실 운운의 기사와 상이합니다.

경향신문 역시 그동안 “천성산 반대운동=2조 손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7회에 걸쳐 기사화한 일이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16일자 기사에 실렸던

대선주자 정책공약, 허와실 (6) '이명박의 대운하' 4년 완공 가능성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工期) 연장 및 예산증가의 예시로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그 3배가 넘는 18조 400억 원으로 증가>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조 400억 원이라는 예산은 천성산 터널 문제가 발발되기 전인 1998년 고속철도 건설계획 2단계 수정안에서 책정되었던 예산이었으며, 직접적으로 천성산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나, 기사에는 천성산 문제의 손익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기사는 천성산 문제의 시비를 논하는 기사는 아니지만,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의 사회적 손실 문제가 관성적으로 굳어져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로 이로 인해 과정과 결과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제동을 거는 일이 마치 불편부당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관성적으로 인용되었던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 손실 문제에 대하여 경향신문에서 다루었던 기사에 대하여 반론(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대표이사 고 영 제

주 문 :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경향신문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별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7년 7월 17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앙일간지인 경향신문 8면에 『환경평가 등 기

본절차만 4년 걸릴』 제하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 바, 이명박 당시 전 서울시장의 내용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란을 보도하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도한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로 인해 경부고속철도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가 당초 예상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이 들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1월 16일 반론보도청구 언론조정신청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판 단

먼저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지에 관해 먼저 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반론보도청구)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를 입은 자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이면서 명예 등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에서 직접 거명된 사실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와 신청인이 해당 공사 반대를 주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대해 신청인이 당연히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사와 신청인과 사이에 어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언론매체의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기사 중 "대형 국책 사업의 공기 연장과 예산 증가는 대운하 건

설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와 보상을 둘러싼 주민갈등, 사회갈등을 반드시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소해야 함을 뜻한다”는 부분을 보면 기사 내용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신청인의 명예 등 인격적 법익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어서 이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의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 힘들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의 기사 전체의 취지와 신청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과의 비교를 해보면, 우선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과 임기 내 달성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대형 건설사업들의 전철을 볼 때 준비과정에만 수년이 걸리고 예산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다투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부분은 이 사건 기사에서 예로 든 6개 사업(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신공항 건설, 경인운하 건설, 서울외곽순환도로, 한탄강 댐 건설) 중 하나의 사업으로 전체 기사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사의 전체 취지 및 주된 비판

대상에 비하면 중요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엽말단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달성함으로 인해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별지 참조)을 보건대 신청인이 다투고 있는 기사의 해당 부분에 비해 대략 10배 정도 분량이 많아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보면 신청인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4항 제1호(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중재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의 천성산 터널 공사 반대로 인해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지연되어 국가적 손실이 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시민단체 개입하면 분쟁 長期化 한다”』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5일자 39면)
내 용 : 우리 사회가 다원화 민주화하면서 사회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빠져나간 빈 자리를 시민단체들이 비집고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분쟁 해결에 걸리는 기간이 현저하게 길어졌다. 단국대 임재형 연구교수의 분석 결과 1990~2005년 정부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된 공공분쟁 215건을 해결하는 데는 평균 623일이 걸렸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가 개입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평균 1014일이 걸렸다. 시민단체가 분쟁 당사자인 경우는 평균 1152일이나 끌었다.

시민단체가 공론(公論)을 거쳐 진행되던 국책 사업을 뒤늦게 문제 삼아 중단시킨 데 따른 경제적 사회적 낭비도 막대하다. 그 비용은 모두 국민 부담이다. '환경 근본주의'로 무장한 일부 환경운동단체 앞에서 과학적 경제적 논리는 설 자리를 잃기 십상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에도 시민단체가 개입해 국민 부담을 키웠다. 소요(騷擾) 탓에 전북 부안군에서 밀려난 방폐장은 경북 경주시로 옮겨 갔지만 대형 국책사업에서 주민 달래기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하는 악례(惡例)가 됐다.

'도롱뇽 소송'으로 불린 경부고속전철 천성산 터널 분쟁은 10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시켜 2조5000

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낳았다. 한 스님이 단식 투쟁을 벌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1990년 확정돼 진행 중이던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졌다. 27일 완전 개통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역시 환경단체의 공사 방해로 공권력이 방치하는 바람에 1년 반이나 개통이 지연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1,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구 수용불가.

□

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의 임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 음성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1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GTB-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GTB-TV : 「시사터치 현장E」 프로그램 (2007년 12월 12일 23:05)

내 용 : 도내 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한 장애인 3명이 월급을 못 받고 그만둔 일이 생겼다. 재활학교를 통해 직업 교육을 받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회사에 취업했으나 4월까지 월급을 받지 못한 것. 업주는 각서까지 쓰고 체불임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에 와서는 ①줄 수 없다고 나서는데, 피해 장애인은 지난 10월 비장애인

과 결혼하여 가장이 됐으나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사회인으로 자리잡지 못하는 게 그 이유다. ②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은 시청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 그것도 12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데....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통계에 따르면 취업률 34%수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질 낮은 고용이 대부분인 상황,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둔 민간 기업에선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으나 벌금을 물면서 취업·고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몇몇한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장애인 임금체불 사건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사회 : 춘천의 한 애니메이션회사에서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6개월간 돈을 받지 못한 직원은 자그마치 6명. 그중의 3명은 장애인이었습니다. ③회사가 관리비를 못 내 건물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게 지난 1월.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장애인고용촉

진센터를 통해 이곳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현장이가 취재했습니다.

▷자막 : 강원도 장애인 재활협회 춘천시 중앙로 3가.

▷사회 :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장애인 재활 협회 웹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등 IT분야에 관심많은 장애인 12명이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다.

자막 및 인터뷰

▷이○○(강원도 장애인 재활협회) : 제가 3년동안 졸업한지 동원학교 다니다가 3년 동안 집에서 음 지내다가 하도 답답하길래.

▷PD : 왜 직장을 구할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강원도 장애인 재활협회) :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백○○(강원도 장애인 재활협회) : 제가 공부를 한 것이 이거(웹디자인)고요 하고 싶은 것도 이거예요. 또, 다른 직업보다 저희한테는 이 분야가 적성에 맞고 그래서(배우고 있어요)

자막 : 포커스 현장 외면당한 장애인 고용

▷사회 : 재활 직업인 센터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웹디자인 지체 장애인 이재훈씨. 1년 도안 웹디자인을 공부하고 한 애니메이션회사에 취직했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PD : 언제부터 ○○회사에 다녔어요?

▷이재훈(가명) : 1월달 부터요.

▷PD : 그럼 언제 끝났어요 일이?

▷이재훈(가명) : 4월 28일이요.

▷PD : 아~ 왜 그때 일을 그만두었어요?

▷이재훈(가명) : 월급을 안줘서요.

▷사회 : 6명의 직원 중 3명이 장애인 신영수씨 또한 월급을 못 받은 상태다.

▷PD : 업무가 어떤 것이었죠?

▷신영수(가명) : 만화, 스토리, 그림 같은 것 짜고... 주로 그림만 그리는 거였어요. 업무는 많지 않았는데요. 내 힘으로 혼자 알아서 그리라고 그래서 그 점이 불편했어요.

▷PD : ○○사에서 일하면서 얼마 정도 못 받았어요?

▷신영수(가명) : 3백 20만 원 정도요.

▷PD : 3백 20만 원정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어요?

자막 (작년)12월부터 5월달까지.

▷신영수(가명) : 12월부터 5월달까지.

▷PD : 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회사를 계속 다녔던 이유는

▷신영수(가명) : 아 그때 사장님께서 일을 하면서 너희가 이제 ~ 한달 후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셨는데. 그 지점마다 안줄 때마다 이번 달에는 힘들고 또 다음 달까지 줄테니까 또 다음 달까지 기다려 봐라 계속 하시면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자막 :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춘천시 강변로

▷사회 : 여섯 명 모두 월급을 못 받은 채 회사를 그만둔 상태.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다. 회사가 있던 자리에 다른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다.

▷PD : GTB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라는 회사 아니예요?

▷회사원 : 나갔는데(왜 나갔는지는) 그거야 모르죠. 저희야... 공실로 돼 있으니까요(우리는) 저쪽의 애니동 쪽에 있다가 원래 우리가 이리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방을 안 빼줘서(애니동에 있었죠) 자금 끈 것도 못 갖고 그러니까 ④은행에서 회사로 들어왔을 거 아니예요. 못 갚으니까 정리하고... 그래서 아마 통장거래도 안 될걸요. 그 회사로는 ⑤우리회사에도 피해 끼쳤죠.

▷PD : 왜요?

▷회사원 : 결재된 200만 원 안주고 그냥 ⑥도망갔죠.

▷사회 : ⑦회사가 없어진 건 이미 한달 전.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위해 관리사무실을 찾아가봤다.

▷강원정보영상진흥원 담당자 : ○○사가 강제퇴거 당했어요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작년 12월부터 한 번도 안냈죠. 그래서 강제퇴거는 올 해 7월달에. 7월 26일에 그때(강제퇴거당했어요)

▷사회 : ⑧월 달 이상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지 않은데다 재작년부터 실적이 없어 지난 1월 이미 퇴거명령이 떨어진것. 그런데 이시기에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다.

▷강원정보영상진흥원 담당자 : ⑨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조건부였는데. 계속 실적이 없어서 ⑩퇴거 명령이 올해 1월에 났었는데 ⑪계속 안 나가고 있다가 퇴거가 안 되고 해서 ⑫저희가(사무실) 집기랑해서 강제 퇴거를 한 상태예요.

▷사회 : 원래 재훈씨는 직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재훈(가명) : (좋아하는 것은) 웹디자인이에요.

▷PD : 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재훈(가명) : 네. 제가 또 ㉓○○제지라고 거기에 영업사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니면서 이 회사를 알게 돼서 ○○제지를 그만두고 여기를 온 거였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장 말하고 전혀 다른거예요. 매일 나오게 해준다고 했는데 ㉔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라고 그러고...

▷이재훈(가명) 아버지 : 이걸(돈) 꼭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첫 발을 내딛는 꿈을 갖고 시작했던 일인데 그리고 또 일반인들 같으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장애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직장이라고 ㉕처음 나간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대하면 세상이 힘든 세상인데(이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겠나... 이런 염려도 많이 돼요.

▷사회 : 재훈씨는 ㉕일주일에 한 번 회사에 나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재택 근무를 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날까지 업무일지를 작성했다. 일을 한 네 달 동안 그가 받은 건 월급 지금 각서가 전부. 7월까지 받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기다리면 주겠거니 생각했지만 최근들어 점점 마음이 조급해진다.

▷자막 (무엇 때문에 가장)돈을 받으려는 건가요?

▷PD :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거 때문에 그래요?

▷이재훈(가명) : 제가 이제 결혼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적 가정형편도 그렇고 다 상황이 안좋아서 받으려고 그래.

▷사회 : 지난 10월 비장애인과 결혼한 재훈씨. 한창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지만 한편으론 집안의 가장으로 몇몇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재훈씨는 회사 사장과 통화를 시도했다.

▷이재훈(가명) : 여보세요 사장님

▷사장 : 응

▷이재훈(가명) : 월급은요. 언제쯤 주실 수 있는 세요?

▷사장 : 아 우리가 못줘 지금. 지금은 확답을 못해.

▷이재훈(가명) :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여보세요.... 편집

▷사회 : 사장의 무성의한 태도. 직접 사장을 만나보기로 했다. 계단을 오르기 불편한 재훈씨를 대신해 제작진이 사장을 만나 임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 봤다.

▷PD :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사장 : 예예.. 들어오세요.

▷사장아내 : ㉖우리한테 집을 내가 집이 아홉 채가 있고 또 한 채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경매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딱 한 번 와보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로만 가끔 통화해요. 이게 보채가지고 될 일이 아니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끝까지나 돈 언제 돈을 줄거냐는 거예요.

▷PD : 재훈(가명)이가 답답하니까 그런거죠. 몇 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요.

▷사장 : ㉗아니 그럼. 그럼 배를 갈르라고 그래요 와서 배를 가르라고

▷사장아내 : ㉘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아진짜. 공문하나 써보라고 주면 맞춤형까지 틀리니까~

▷사장 : 녹음 하셔도 좋은데, ㉙안 만나. 만나지 말자 앞으로. 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들에 대한 생각도 다 접었어요.

▷자막 :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강원지사 원주시 우산동

▷사회 : 재훈씨는 직업 박람회에서도 또 다른 장애인들은 또 다른 장애인 고용 촉진을 통해 이 회사를 소개 받았던 것. 장애인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말하기 전 까지 회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PD : 회사 상황 같은 것도 다 알아보고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나요?

▷이○○ 팀장(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강원지사) :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할 때 당시에, 그 기업체가 굉장히 열악하다거나 안 좋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사업주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저희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략)

▷사회 : 한편 재훈씨는 동료 영수씨와 함께 노동청을 찾았다. 그동안 밀린 월급을 받기위해 회사 직원들과 상의해 진정서를 내기로 한 것 회사 사장으로부터 더 이상 월급을 줄 의지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문턱을 넘어서면서 호된 수업료를 낸 재훈씨 하지만 이 수업만큼은 자신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재훈(가명) : 직장을 갖는다면 개인적인 사업장보다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잘되는 회사에 취직하길 바라고요. 저희처럼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랍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2월 12일자 시사터치E 프로그램에서 「현장 포커스」 코너에 『장애인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으로 '장애인 임금 체불 사건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도 중 도내 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재활학교를 통해 직업 교육을 받은 장애인 3명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회사에 취업하여 부당대우를 받으며 근무했으나 애니메이션 업주는 월급을 체불하였다. 이에 업주는 각서까지 쓰며 체불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미루고 있어 장애우의 생활이 힘들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애니메이션 업주는 장애우라고 부당대우를 한 일이 전혀 없으며, 1주일에 한번 출근은 오히려 업주가 장애우의 편의를 봐 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우에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진흥원과의 관계악화로 투자가 미뤄지고 있어서 이에 임금체불이 되고 있으며 장애우의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장애인 임금체불'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외면당한 장애인고용』 코너에서 장애인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는 장애우에 대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며 장애우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켰고 부당 대우를 한 일이 없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오셨습니다. 아울러 현재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정상화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오셨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항과 같은 반론보도문을 2008년 2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의 「GTB 시사터치 현장E」 프로그램 중 2007년 12월 12일자 해당 방송의 소요 시간 이내(단 스태프 스크롤 이전에 하여야 한다)에서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에는 '반론보도' (글자의 크기는 통상의 보도시 사용되는 오른쪽 상단 자막과 같은 크기)라고 표시하고, 화면 하단에는 아래 제목을 계속 표시(글자의 크기는 통상의 보도시 사용되는 자막과 같은 크기)하면서 위 방송의 진행자로 하여금 다른 보도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2월 1일까지 강원민방 홈페이지의 조정대상방송 다시보기 중 신청인이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들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감을 표시한다.

• 내 용 : 지난 12월 12일자 방송과 관련하여 신○○ 사장님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GTB 시사터치 현장E>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에 대한 일 자리 제공이 정말 소중하다는 취지에서 본 코너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신○○ 사장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음성이 노출되어 고통을 드린 데 대해 본 프로그램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PD에

대한 별도의 청구 또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GTB-TV : 「시사터치 현장E」 프로그램 (2008년 2월 13일 23:05)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방위사업청이 방산물자 지정 권한이 없는데도 임의로 방산물자를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방위사업청 (청장 이 선 희)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일보 : (1) 『軍 야간표적지시기 사업 특혜의혹, ‘마일즈’ 납품비리 업체와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1일자 10면)

내 용 : 대대급 마일즈(MILES·다중 통합 레이저 훈련체계) 장비 납품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R사가 300억 원대에 달하는 육군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PAQ-04K·사진 원내) 도입 사업도 수의 계약으로 독점 공급권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 군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개발한 기술인데도 관련 규정과 달리 기술 특허를 모 재벌 그룹 오너 3세인 A(40)씨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03년 국방부는 1991년 채택한 야간표적지시기(PAQ-91K)를 대체할 새로운 야간표적지시기를 도입키로 결정한 뒤 R사와 연구개발 승인 협약을 맺었다. R사는 2006년 4월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지정 신청을 했고, 방사청은 국방부 등과 별도의 협의 없이 같은 해 6월 R사 제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했다.

공 의원은 “방산물자 지정은 방사청이 업체의 승인 신청을 받으면 국방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방사청이 임의로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수의 계약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구형 야간표적지시기가 이미 방산물자로 지정됐고, 개량형도 넓은 의미로 같은 범주에 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개량야간표적지시기 개발을 ‘새 무기 체계로 신규 개발’ 하는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어 방사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 의원은 “당연히 방산물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5년 전 모델과 신형 모델을 같은 무기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의 계약을 했다”며 “R사가 대대급 마일즈 장비 납품 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납품 계약을 하는 등 미심쩍은 점이 많다”고 밝혔다.

(2) 『방위사업청의 오만』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6일자 2면)

내 용 : “글쎄요, 우리가 왜 합참 회의 결과를 참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통보해 준 적도 없고요.”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담당자의 말이다. 방사청은 300억 원대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PAQ-04K)를 도입하면서 방산물자 지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마음대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본보 보도(1월 11일자)를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PAQ-04K가 1993년부터 사용해 온 구형 야간표적지시기(PAQ-91K)와 ‘같은 범주’에 드는 만큼, PAQ-91K를 방산물자로 지정한 상태에서 굳이 따로 PAQ-04K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2002년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는 PAQ-91K와 PAQ-04K는 “다른 무기 체계”라고 결정했다. 합참은 회의에서 PAQ-04K에 대해 ‘성능 개량’을 통한 ‘소요 결정’을 내렸다. “PAQ-04K는

별도 무기 체계이고 당연히 새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합참 관계자의 말이다. 방산물자지정 등 모든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방사청 설립 전에 합참이 내린 결정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3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 하기로 덜커덕 결정했다. 더구나 방사청은 지난해 수의 계약한 업체가 납품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4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경찰청은 이 업체가 방사청에 로비를 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것이 개청 이래 단 한 건의 부정이나 비리가 없었다는 방사청의 모습이다.

현 정부는 무기 관련 계약·납품 과정의 비리 등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방사청을 만들었고 수조원이 넘는 공간 열쇠를 넘겼다. 하지만 국민 혈세 수백억 원을 절차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쓴다면 공간 열쇠는 다시 회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는 2008년 1월 11일자 10면 『軍 야간표적지시기 사업 특혜 의혹』 및 2008년 1월 16일자 2면 『방위사업청의 오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방위사업청이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사업’ 과정에서 임의로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방산물자 지정은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이며,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방산물자로 지정된 개량형 야간표적지시기사업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방위사업청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방산물자 지정권한이 있고, 방위사업청의 야간표적지시기(PAQ-04K) 수의계약 체결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지난 1월 11일자와 16일자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야간 표적지시기사업(PAQ-04K)에 대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2월 5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300억대 규모...특허도 국방부 아닌 ‘재벌 3세’가 보유”)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軍 야간표적지시기 사업특혜 의혹(2008년 1월 11일자 10면)」 제하의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광주시가 지난해 말 단행한 대규모 인사가 정실 인사였으며, 승진인사 대부분이 광주지역 출신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주시 (시장 조 역 동)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부일보 : (1)『공무원들 “대규모 정실인사” 불만 고조』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일자 6면)

내 용 : “시장·인사 부서장 눈도장 받아야” 불신 팽배

○…지난해 말 광주시의 대규모 인사가 정실인사라는 의구심이 제기된 가운데 승진하거나 노른 자위로 옮기려면 조역동 사장이나 인사 부서장 주변에 머물러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엔 인사 숨통을 트고 전보를 통해 사기를 올리기 위한 목적이 정실인사로 희석돼 오히려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불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 조 시장이 어떻게 수습할지 관건.

일각에서는 주사(6급) 승진에도 시장과 인사부서장의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처럼 유비통신으로 떠돌고 있어 그동안 주사급 승진 만큼은 대과 없으면 임용이나 승급연수에 따라 승진한다는 관례가 깨져 앞으로 인사때만 되면 조 시장과 인사부서장 주변에 사람이 모일 전망이다.

이에 인사 관계자는 “고과평점과 다면평가에 의해 승진자가 결정됐다”며 “정실인사란 말은 억측”이라고 반박하지만 이번 주사급 승진에 조 시장 내·외근 비서가 승급한지 4년에 불과함에도 10여년 되는 선배들(?)을 제치고 나란히 승진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불만이 팽배. (후략)

(2)『광주시장, 동네사람 사무관 진급 사전의결 ‘구설수’』 제하의 기사 (2008월 1월 16일자 7면)

내 용 :〈속보〉 광주시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J모 씨를 사무관 진급자로 사전 의결한 가운데 J씨가 조역동 사장과 같은 마을에 사는 것으로 확인돼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사무관과 주사 진급자 대부분이 광주지역 공직자들로 나타나 타 지역 공직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말 서기관 1명, 사무관 4명, 주사 13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은 광주지역 출신들로 확인됐다.

주사급의 경우 13명 가운데 8명이 광주 출신인데다 대부분 근무 연수나 승급 연수가 타 지역 출신들 보다 현저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타 지역 출신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조역동 시장과 인사부서장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팽배해지면서 조 시장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1)

•제 목 : 광주시 공무원 대규모 정실인사 관련 정정 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일자 6면에 『공무원들 대규모 정실인사 불만고조 광주시』라는 제목으로 광주시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대규모 인사가 정실인사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였으며, 인사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단행된 인사임이 확인되어 광주시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2)

•제 목 : 광주시장, 동네사람 사무관 진급 사전의결 구설수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6일자 7면에 『광주시장, 동네사람 사무관 진급 사전의결 구설수』라는 제목으로 광주시가 지역연고를 위주로 정실인사 및 승진인사를 하였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주시는 인사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승진임용을 하고 있고, 지역연고를 위주로 정실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무성의하게 왜곡보도 하였음을 광주시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

전주완산경찰서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미온적이며, 소속 경찰관이 게임장 업주와 유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주 완산경찰서 (서장 나 유 인)
피신청인 : J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JTV : 「뉴스&뉴스」 프로그램 (2008년 1월 16일 20:25)

내용 : 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한동안 사라졌는데요.

최근들어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피씨 게임물로 범망을 교묘히 피해 다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피씨방. 안으로 들어가자 신종 바다이야기 게임이 한창입니다. 37번 다이 돌리시는 분. 37번 다이 돌리시는 분. 설새없이 돌아가는 오락기. 사람들은 게임기 앞을 떠날 줄 모릅니다.

▷불법 게임장 손님 : 하루종일 풀가동이라니까요. 기계가 쉬는 기계가 없어요.

▷불법 게임장 종업원 : (얼마까지 나와요?) 250만 원까지 나와요.

사실상 사행성 게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종업원은 무료로 인터넷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피씨방이라고 말합니다.

▷불법 게임장 종업원 : 게임만 즐기시는 거예요. 무료쿠폰으로 환전이라는 것은 없고 환전하게 되면 불법이니까.

과연 그럴까. 취재결과 이 곳은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피씨방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종 바다이야기 게임은 외국에 서버를 둔 미등급 게임물로 확인됐습니다. 환전을 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게임장 안에 손님으로 가정한 환전상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불법 게임장 손님 : 어차피 (돈으로 바꿀때) 10% 떼잖아요. 손님들한테 11장에 팔아요. (10만 원 주면 11장 줘요? 대개 다 줘요.

이 곳의 하루 매출은 2천만 원 정도. 투자비 일억 원은 이미 회수했습니다.

▷불법 게임장 손님 : 1시간에 14만 원 들어가요. 옛날에는 8만 원 들어갔잖아요. 1시간에 14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잃었어요. 상품권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기계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루에) 적게 잡아도 천만 원 벌어요. 그 기계가 지금 빨리 뽑아야 값으니까. 하루에 천3백에서 5백만 원 벌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사라졌던 사행성 게임장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관할 경찰 담당자 : 아 영장요. 어제 신청을 했는데 검사님이 다시 정밀하게 재수사하라고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업주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할 경찰 담당자 : 실질적인 업주는 모르죠.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업주는 모르죠.

Q : 우리도 알고 옆 동네도 다 아는데.

A : 옆 동네는 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단지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 등 관계기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불상자(방송화면이 정지된 상태에서 음성이 흘러

나옴)

(단속 경찰) 걸로는 통화는 안하고 (업주)가 대포폰 하나 사 줘 가지고 그걸로 서로 대포폰으로만 둘이만 연락 할 수 있게.

문제의 불법 게임장 업주는 최근 다른 곳에 똑같은 게임장을 또 하나 차렸습니다. 경찰의 느슨한 단속속에 한동안 사라졌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또다시 독버섯처럼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행성 게임장,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철퇴(또는 본 건 보도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16일자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G-마트 게임장이 경찰관의 비호아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관과 유착이 의심되는 방송을 하였으나, 확인 결과 경찰관과의 유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담당 부서 경찰관들은 본 게임장을 단속키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거확보와 사전영장신청 등 수사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1월 16일 저희 방송이 나가기 전, 이미 본 게임장에 대하여 단속을 완료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방송으로 인하여 명예훼손등 피해를 당한 경찰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경찰, 사행성 게임장 비호’ 보도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JTV가 1월 16일 「뉴스&뉴스」 시간에 방영한 『경찰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비호 의심』 보도에 대해 경찰은 “문제의 G마트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자료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방송이 나가기 전 단속을 완료하였으며, 불법 게임장을 비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속 경찰이 업주가 사준 대포폰으로 서로 통화를 한다”는 인터뷰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JTV 뉴스&뉴스」 2008년 1월 31일자 프로그램 말미에 위 보도문을 제목과 본문은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JTV : 「뉴스&뉴스」 프로그램 (2008년 1월 31일 20: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의정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의 두부제품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8.

처리결과 : 취 하

국제신문 : 『선관위 ‘학교장 집에 두부배달’ 김해시 의원 조사』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일자 8면)

내 용 : <2008서울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눈길 교통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 버스 운전기사인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1.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2008서울중재2참조)

보도내용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2008년 1월 11일
20:00)

내 용 : ▷앵 커:오늘(11일) 간만에 차이로 아슬
아슬하게 사고를 면한 분들은 아마 이제 전해드릴
눈길 교통사고 소식,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실 겁니

다. (중략)

▷기 자:오늘 오후 3시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평 나들목 부근에서 강릉으로 가던 버스가 눈길
에 미끄러진 승용차에 받히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탔던
19살 박모 양 등 9명이 다쳤지만 교회 수련회를 가
던 나머지 승객 25명은 안전벨트를 착용해 큰 부상
을 입지는 않았습니.

▷윤○○/버스 운전기사 : 한바퀴 핑 돌더니 와
서 팍 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놀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끄러워
서.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교수인 신청인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기단과 동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2
청 구 명 : 추후 ·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부산KBS-1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부산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9월 10일
21:30)

내 용 : ▷앵 커 : 최근 교수익을 미끼로 투
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활개치고 있
습니다만, 부산의 한 대학교수가 유령회사를 설립

한 뒤 수백억 원 대 금융사기단과 동업했다는 의
혹이 일고 있습니다.

▷기 자 : 지난 1999년 11월 교수익을 보장한다
는 말에 피해자들은 한 벤처회사에 거액을 투자
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40억 원
까지... 확인된 투자금만 백 30억 원을 훌쩍 넘었
습니다. 현직 대학교수가 설립했다던 벤처회사였
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
다.

▷인터뷰>박○○/금융사기 피해자 : “튼튼한 유
력한 분들이 밀어주고 있어서 금융사고가 일어나
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기자 : 실제로, 당시 벤처회사 사업자등록증에
는 ‘닥터 콜 정보 시스템’이라는 의료기 판매회사
의 대표가 부산 모 대학교 산업공학과 48살 K 교

수로 등록돼 있습니다. K 교수는 금융 사기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48살 권모 씨와 함께 의료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며 벤처회사를 설립했으며 권씨의 펀드 사기에도 관여했거나 이용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이모 씨/ 당시 회사 직원 : “교수가 가끔 와서 사장이랑 얘기하고 가는 거지. 의료기 개발도 전혀 안했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전혀 안했고...”

▷기자 : K 교수는 자신의 사업자 명의가 동용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부산 K 대학교 K 교수 : “그 친구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이용했는지, 꿈에도 몰랐고요, 동용됐죠...”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유령회사가 설립, 운영될 당시 K 교수의 은행 계좌에 권씨로부터 천 5백만 원이 입금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K 교수의 사기사건 개입 여부와 돈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〇〇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K 교수 금융사기 등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2007년 9월 10일 『교수가 금융사기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모 대학 산업공학과 K 교수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수백억 원대 금융사기단과 동업했다는 혐의로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에서, K 교수는 위 내용에 대해 2008년 1월 9일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확인 없이 『교수가 금융사기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K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전주완산경찰서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강 ○ ○ 외 5인

피신청인 : J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2.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8전북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JTV : 「뉴스&뉴스」 프로그램 (2008년 1월 31일 20:40)

내 용 : <2008전북조정3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JTV : 「뉴스&뉴스」 프로그램 (2008년 1월 16일 20:25)

신청인이 작성하지도 않은 칼럼을 신청인 이름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남여성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남여성신문 : 『대운하가 동네 하천인가?』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2일 7면)

내 용 : (전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말 많은 공약, 대운하 프로젝트가 실현될 태세다. 이재오 씨는 “당선자가 취임하면 바로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인수위는 대운하 프로젝트를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이같은 인수위의 행보에 아연해 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8년 1월 12일자 7면에 게재한 『대운하가 동네 하천인가?』 제하의 칼럼은 ○○전자 김○○ 대표가 작성하지 않은 것이며, 대운하건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대운하를 강행한다면 생각지 못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칼럼 전체의 내용은 김○○ 대표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바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이 칼럼과 관련하여 김○○ 대표와 독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남여성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1일 1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 조> ☐

마포구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는 원망스러운 날씨가 아닐 수 없다. 잘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안되는 걸까. 한 종목이 더 남았는데... 실수한 응시자들 중에서는 시험을 포기한 채 쓸쓸히 돌아가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무거운 짐이 어깨를 누르고 반환점을 도는 스텝도 꼬이지만 현실에 돌파구를 향하는 마음으로 응시자들은 열심히 뛰고 또 뛴다.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 화제집중」 프로그램 (2007년 11월 21일 18:00)

내 용 :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날 아침. 운동장도 얼고, 몸도 얼어버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 상황인데... 긴장한 응시자들에게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촬영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과거 본인이 지회장을 역임했던 단체의 소속 조합원들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한국자동차유해환경개선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원 ○ ○)

피신청인 : 환경일보
종 재 부 : 서울제5종재부
접 수 일 : 2008. 1. 2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환경일보 : 『경기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말썽』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일자 9면)

내 용 : 자동차부분 정비조합 전임 오산시지회장을 (약8년) 역임한 황모 씨는 지회장을 지내며 조합원들에게 전장품 및 부품을 판매해오다 2007년 11월 지회장선거에 떨어지자 한국자동차유해환경개선국민운동본부 오산시지부를 설립하여 자동차부분 정비조합원들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중단속 하겠다며 우리단체는 사법권도 있다고 협박을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현 회원인 윤모 씨는 전임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조합원들 중 자기부품을 팔아 주지 않는 회원사에는 협회에 보고하여 지명단속 및 협박을 일삼았던 사람이라며 경찰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기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3일자 사회지방면에 『경기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특정단체 일원이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오산시지회 지회장을 역임하다 지회장 선거에 떨어져 특정단체 오산시지부를 설립하여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의 회원을 협박하였다고, 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회원인 윤모 씨가 경찰에게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선거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에 일어난 것이었고, 황모 씨는 타 단체 회원에게 협박하며 사법권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현 회원 윤모 씨의 말대로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협박을 일삼았던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인이 과거 본인이 지회장을 역임했던 단체의 소속 조합원들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황 ○ ○
피신청인 : 환경일보
종 재 부 : 서울제5종재부
접 수 일 : 2008. 1. 2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환경일보 : 『경기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말썽』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일자 9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기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2008년 1월 3일자 환경일보 사회지방면에 『경기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윤모 씨의 증언으로 경기도자동차부분 정비조합의 전 지회장인 황모 씨가 조합원

들에게 자동차부품을 팔아주지 않는 회원업소는 협회에 보고하여 지명단속을 하겠다며 협박 및 강매를 하였고 2007년 11월에 지회장선거에 떨어지자 한국자동차유해환경개선국민운동본부 오산지부를 설립하여 전 조합원들에게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집중단속 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음. 또한 사법권이 있다고 협박하였다고 함.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마치 경찰조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음.

하지만 선거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에 일어난 것이었고, 황모 씨는 타 단체 회원에게 협박하며 사법권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현 회원 윤모 씨의 말대로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명단속 및 협박을 하면서 강매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경기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8년 1월 3일 사회지방면 『경기

도 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말썽』 제하의 기사에서 전임 오산지회장을 지낸 황모 씨가 조합원들에게 부품을 판매해왔으며, 지회장 선거에 떨어진 이후 타 단체 지부를 설립하여 해당 단체에 가입할 것을 협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에 일어난 것으로 바로잡고, 황모 씨는 타 단체 회원에게 협박하며 사법권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현 회원 윤모씨의 말대로 황모 씨가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명단속 및 협박을 하여 강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환경일보 9면 좌측하단에 상자기사로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8년 2월 1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문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환경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5일자 9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신청인의 기부금 요구가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최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문화일보 : 『“교복업체에 수십억 원 기부금 요구” 본보 기사에 소송낸 ‘학사모’ 패소』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4일자 9면)
내 용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학사모)이 교복업체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문화일보 기사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학사모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학사모가 문화일보와 교복업체 3곳을 상대로 “25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사모의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문화일보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2월 학사모가 교복 3사에 사회환원 명목으로 교복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요청한 공문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학사모가 사용처 등에 대한 명시 없이 수차례 전화 및 공문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추가 취재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과 24일, 3월 5일자 신문에 “학사모가 교복업체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학사모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문화일보 2008년 1월 24일 사회9면 하단부 『교복업체에서 수십억 원 기부금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교복업체에서 수십억 원 기부금을 요구한 적 없어”로 정정 보도.

• 내 용 : 기사 내용 중 오른쪽 6째 줄에서 ‘문화일보는 지난해 2월 학사모가 교복 3사에 사회환원 명목으로 교복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요청한 공문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학사모가 사용처 등에 대한 명시 없이 수차례 전화 및 공문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사모는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요청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고 수차례 전화한 사실도 없으며 공문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사실이 아닌 이러한 내용의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법원에서 기각 판결까지 났으므로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과중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인터뷰 기사에서 신청인의 집안 형편과 사진 및 실명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집팔고 월세 살아도 교육은 포기 못해요”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2일자 5면)

내 용 : 1997년 외환위기는 이○○ 씨(46·서울상계3동·사진)의 평범했던 가정을 뒤흔들었다.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던 남편 김모 씨는 퇴직 후

손든 사업이 경기불황으로 실패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난해 말에는 15년간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 남은 9,000만 원 남짓한 빚을 갚고 보증금 3000만 원에 40만 원짜리 월세집으로 옮겼다. 그래도 두 아들의 교육은 포기할수 없었다.

“첫째 아이가 2007년 사대 약학과에 입학했어요. 등록금이 525만 2,000원이더군요. ‘넌 지금부터 8학기 동안 정부지원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아들이 ‘별써 내가 빚쟁이인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졸업할 때면 빚이 4,000만 원이 넘겠죠. 따져보니 나중에 이자만 월 21만 원이 넘게 내야 하고요. 올해는 연이자가 7%가 넘는다던데요.”

이씨는 스스로 ‘마이너스 인생’으로 치부하고 있다. 주 수입은 그가 어린이 독서지도를 하거나

고등학생 논술강사로 일하며 버는 130만 원 남짓한 돈이다. 월세에 관리비 20만 원을 내면 60만 원 정도 남는다. 생활비는 카드 4개를 돌려막아 해결한다. 요즘 또 속절없이 빚이 쌓이고 있다.

이씨는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는 고된 생활을 하는 걸 보면 늘 가슴이 아프다. 이씨는 “아들이 음식 서빙하고 한 달에 25만 원을 받는다”며 “어쩌면 이렇게 임금이 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통비로 8만~9만 원을 내고나면 한끼 2,500원짜리 밥 사먹기도 겁날 정도라고 했다.

더 큰 걱정은 대학 졸업 후다. “너희들 장가 늦게 가야 된다”는 엄마의 농담이 결혼자금 때문이라는 것을 아들들도 잘 안다. 학자금 상환도 큰 걱정거리다. 이씨는 “정부가 부채조건을 완화하든지 이자부담을 깎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2월 29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판매하는 손 세정제에 신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디앤디전자 (대표이사 서 ○ ○)

피신청인 : 전주MBC-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월 24일 21:30)

내 용 : ▷김○○ 앵커 : 지난 주 집중취재에서는 도교육청이 특정업체와 유착해 수십억 원의 손소독기에 예산을 쓰려한다는 의혹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발 빠르게 몇몇 시·군 교육청은 이미 손소독기를 사들였는데 이 납득할 수 없는 구입 과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정○○ 기자 : 고창지역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 학생들이 점심식사 전에 손을 씻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이 13명에 불과한 초미니 학교지만 이 학교가 구입한 손소독기 가격은 천만 원에 달합니다.

▷학교 관계자 : 저게 좀 고액입니다. 저 기계가 1대에 천만 원 입니다.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준 거예요.

▷정○○ 기자 : 이 손소독기의 소독 방식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명 ‘락스 성분’입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소방방재청에서 위험물로 분류 할 만큼 농도에 따라서는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식약청에서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조리장비 등을 살균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지정했을 뿐 손소독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식약청 담당자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뭐 식판이라던지 용기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살균소독 하거나 용기포장 그런데 살균소독 하는데 인정해주는 범위는 거기까지죠. 손소독이라는 말은 없고요.

▷정〇〇 기자 : 예, 손소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식약청 담당자 : 예.

▷정〇〇 기자 : 하지만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손소독세정용 장치로 광고하고 있는 전단지에는 식약청의 인증이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손소독 효과는 있는 것일까? 업체 스스로도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말합니다. 락스를 희석시켜 가지고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업체 관계자 : 별 차이 없겠죠. 수돗물보다야 낫겠죠. 조금이라도.

▷정〇〇 기자 :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업체 관계자 : 그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〇〇 기자 : 사정이 이런데도 고창 교육청은 지난 해 9월 직접 나서 1억 원을 주고 똑같은 제품 10대를 구입해 일선 학교에 나눠줬습니다. 계약 관련법에는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한 구매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교육청의 구매기준은 어이없게도 먼저 찾아온 업체순이었습니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집중기획취재 『전해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이용한 손 세정기 위험성 없고 손 소독효과 탁월』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24일자 9시 뉴스데스크 집중기획취재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이용한 손 소독기는 락스 성분으로 농도에 따라 독성이 강한 위험한 화학물질로서 이를 식약청에서도 손 소독제로 거론한 적이 없고 교육청에 로비를 통하여 각급 학교에 판매 공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방식의 손 세정기에 사용하는 전해차아염소산나트륨수는 농도가 극히 낮은 상태에서 식품 살균소독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위험성이 없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도 살균소독제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식품첨가물로 허가를 받았고,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해차아염소산나트륨수를 이용한 손세정기는 이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회사에 의해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홍보를 통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되었으며, 살균 효과 또한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하여 높고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아 정정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개최하지도 않은 개인전시회를 업적 평가 자료로 활용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전주MBC-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7년 10월 25일 21:30)

내 용 : ▷뉴스진행자 : 실체가 불분명한 개인 전시회 자료를 가지고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 문제로 도내 한 사립대학이 내용을 거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측은 조사할 제도적 장치도 없다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 도내 한 사립대학교 미대 L모 교수는 지난 이천 오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해마다 산업디자인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는 대학측의 업적평가 자료로도 활용됐는데 연구비로 지원된 금액만 모두 이천 육백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1회와 2회 팜플렛에 게재된 작품들은 대학이 아닌 대전의 한 디자인 사무실이 상업용으로 제작한 작품이었습니다.

(인터뷰)

▷임○○ : 저희 처 이름으로 대전에 그 디자인 업소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 사무실에서 인제 제가 제 제자들을 데리고 작업을 켜

▷정○○ : 이 부분이 교수님 연구실적으로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임○○ : 아 그거는 인제 일반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정○○ :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회와 5회 팜플렛에는 버젓이 오래 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그대로 실려있습니다. 전기주전자와 시계 등 대다수의 작품은 아예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과 이미지까지 똑같습니다. 해당 교수는 유명작품을 변형하는 것 역시 디자인의 한 분야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 : 이 작품들의 디자인에 참여를 하셨었나요?

▷임○○ : 아닙니다. 산업디자인에서는요 변이방법이 있어요.

▷정○○ : 네.

▷임○○ : 변이를 시킬 수 있는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한 걸 넣어놓고 이거를

▷정○○ :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동료 교수조차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동료교수 : 지적재산권의 문제라든지 상표권 또 산업재산권의 문제가 인제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 : 더 큰 문제는 전시회가 과연 진짜로 열렸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팜플렛에 적힌 전시장소는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디자인센터 이층에 있는 서라벌 갤러리, 하지만 중앙대학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정○○ : 디자인센터라고 있습니까?

▷중앙대학교 안내직원 : 디자인센터요?

▷정○○ : 예

▷중앙대학교 안내직원 : 디자인 그렇게 명칭이 된 게 없습니다.

▷정○○ : 아 그러면 갤러리 서라벌은요?

▷중앙대학교 안내직원 : 아니 없습니다.

▷정○○ : 취재팀이 재차 확인해 보니 디자인 센터와 서라벌 갤러리는 서울이 아닌 안성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디자인센터 이층에 있다는 서라벌 갤러리는 전혀 별개의 장소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전시회가 열렸다는 기간에 갤러리에서는 다른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관계자 :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정○○ : 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관계자 : 보시다시피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저기 학생들 전시회를 했죠.

▷정○○ : 이에 대해서도 해당교수는 전시장소가 변경된 탓이라며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5년동안 똑같은 실수가 반복됐을까?

(인터뷰)

▷정○○ : 변경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5년동안 반복이 됐다는 뜻인데

▷임○○ : 예 그렇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어요 안 썼어요 사실은.

▷정○○ :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 계속된 개

인 전시회에 가본 사람은 대학내 아무도 없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도내 모대학 L교수 실체 없는 전시』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7년 10월 25일 9시 뉴스 심층취재에서 약 4분간에 걸쳐 심층취재 형식으로 『손 놓은 검증』이라는 제목으로 도내 모대학 교수가 실체 없는 전시를 하였다고 하여 학교의 연구비를 수천만 원 편취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L모 교수는 “동료교수의 고향으로 인한 고발로 인해 사건화가 된 해당 사건은 수사를 통해 해당 전시회는 다섯 번 모두 실제로 개최한 것이 판명되었으며, 전시회의 내용 문제에 대한 약식명령은 수사기관과의 이해부족에 기인된 것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4회와 5회의 전시회에 대해 동료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지적재산권이라 산업재산권의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전주MBC가 2007년 10월 25일 9시 뉴스에서 보도한 『도내 모 사립대 L모 교수의 연구비 편취 의혹』 보도와 관련해, L교수는 “법원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자신이 전시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료교수가 제기한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의 문제는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주 MBC-TV 뉴스데스크」 2008년 2월 15일자 프로그램 주제는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2월 15일 21: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은 상조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상조회 직원으로서 화장장을 사재기 예약하여
 웃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최 ○ ○
 피신청인 : MBC-TV
 중재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 2008. 2. 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월 17일

21:00)

내 용 : ▷엄기영 앵커 : 매장에서 화장으로, 우리 장례문화가 아주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화장시설, 그러다 보니 기막히게도 화장장에도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벽제 화장시설입니다. 어두컴컴한 저녁 7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아직도 화장로 10기 가운데 9기를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화장을 하는 건 과거에는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중략)

오늘 상을 당한 사람은 언제쯤 화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한 화장 시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예약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3일장 발인을 하는 토요일엔 예약이 이미 완전히 끝나있고 일요일까지도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예약이 힘든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화장로를 송두리째 미리 예약해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같은 시각 화장로 2, 3, 4, 5번을 모두 최모 씨가 예약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작년에만 백 번 넘게 화장장을 예약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상조회가 화장로를 독차지하고 있다가 유족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고 있는 겁니다.

▷유가족 : “오전 시간대에 확보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수수료를...” 갑자기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족으로선 상조회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 :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쪽(상조회)에서 예약을 해줬습니다.” 취재진이 한 상조회에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상조회 직원 : “상조 회사니까 순서를 바꾸고 그러거든요, 우리 고객 것끼리.” 이처럼 화장로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는 건 기본적으로 화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저승길도 웃돈, 화장장 대란 최모 씨와 관계없음』

• 내 용 : 신청인은 상조회 직원도 아니고 허위로 유가족에게 웃돈을 받기 위해 화장장 화로를 예약

한 것도 아닙니다. 이에 신청인은 “저승길도 웃돈, 화장장 대란”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8년 2월 21일까지 MBC 보도국장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서신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내 용 : 뉴스데스크는 지난 1월 17일 「현장출동」 코너에서 상조회 등이 웃돈을 받을 목적으로 화장장 화로를 사재기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본 방송은 화장장의 변칙적인 예약 실태를 고발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과정에서 연세대 의료원 시신기증 업무를 맡은 최○○ 선생님께서 화장장 화로를 사재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데 대해 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불완료 하였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그린나라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깨끗한 청소나라’는 ‘사기나라’... 하청업체도 돈 뜯겨』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9일자 종합면)

내 용 : ‘깨끗한 청소나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마저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수지 소재 청소 인력업체인 D사는 지난해 12월 깨끗한 청소나라 논산지점에서 청소용역을 3건 의뢰받았다. 하청대금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입금해주겠다”는 말에 청소를 시작했다. 3곳 중 2곳은 당일 처리했지만 1곳은 그날 물이 나오지 않아 청소를 하지 못했다.

청소비는 한 곳당 16만 원씩 32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전화로 독촉하면 “담당자가 바쁘니 메모를 남겨라”라며 계속 접촉을 회피했다.

D업체 직원 김모 씨는 “같은 번호로 2번 이상 전화하면 받지도 않는다. 직원이 돌아가면서 전화해봤지만 늘 같은 대답뿐이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가 벌써 한 달을 넘겼다”며 “청소업체 입장에서든 ‘1년12회 무료서비스’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이 돈을 챙기고 정작 일 나간 하청업체에 돈

은 꿀꺽하는 거냐”고 울화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깨끗한 청소나라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오늘 중으로 입금하겠다. 관련 책임자는 지금 통화중이라 전화를 돌려줄 수 없다”며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또 “잠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후로 묵묵부답이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깨끗한 청소나라’는 ‘사기나라’... 하청업체도 돈 뜯겨

• 내 용 : 1월 29일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종합뉴스 면에 『깨끗한 청소나라는 사기나라. 하청업체도 돈 뜯겨』라는 제목으로 깨끗한 청소나라가 마치 하청업체에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 하였습니다. 업체 내부 사정으로 임금이 많이 늦어졌고 기사 나간 이후 입금완료했으므로 기사 제목을 바로잡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깨끗한 청소나라, 하청대금도 체불』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9일자 종합면)

내 용 : 본지의 지난 1월 29일자 『‘깨끗한 청소나라’는 ‘사기나라’...하청업체도 돈 뜯겨』 기사와 관련, ‘깨끗한 청소나라’는 내부사정으로 대금 지불이 지연되었으나 보도 후 D사에게 청소용역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

진주시가 일선 병원의 투석 비닐백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면서도 만성 신부전증 환자들이 사용한 투석 비닐백은 분리수거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진주시 (시장 정 영 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남일보 : 『진주시, 장애인 감염자 취급 물의』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7일자 6면)

내 용 : 진주시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이해하기 힘든 쓰레기 수거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신장(콩팥)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평생 복막투석에 의지해 살아야하는 박모(54·진주시 가좌동) 씨는 본인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낭패를 당했다. 박씨에 따르면 진주시로부터 투석 후 버리는 PVC 비닐주머니를 재활용 창고에 버리지 못하게 제지당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투석 비닐백은 '분리배출'이란 재활용 표시와 함께 시 조례상 PVC 재활용 규정에 적용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진주시에 여러차례 말했음에도 수거를 계속 거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억지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가 재활용으로 분류됨에도 진주시 측이 지속적으로 수거를 거부하자 '장애인 차별을 부추기는 무지한 행정'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투석 비닐백은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와 함께 정부에서 개인투석환자가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 측은 "비닐백 속 잔여 물질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다"며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일선병원에서 배출하는 같은 종류의 복막투석 비닐백은 재활용 품목으로 수거하고 있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진주시, 장애인 감염자 취급 물의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7일자 사회면에 『진주시, 장애인 감염자 취급 물의』라는 제목으로 하고, 부제목으로 '신부전증 투석 비닐 백 수거 거

부', '같은 제품 일선병원에선 허용해'라며 진주시의 재활용 수거 시책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주사바늘과 연결 줄을 제외한 비닐 백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수거 하고 있으며, 복막투석 환자도 이에 따라 비닐 백을 버리는 데 지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7일자 6면 『진주시, 장애인 감염자 취급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진주시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쓰레기 수거행정을 펼쳤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신부전증 환자의 투석 비닐백 수거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투석 비닐백은 재활용 대상으로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수거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8년 2월 1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6면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통상 사용되는 제목의 활자크기로 게재하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동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8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학교 급식업체인 신청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중국산 명태를 한국산으로 속여 납품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4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좋은세상

(대표이사 전 ○○, 박 ○○)

피신청인 : 창원KBS-1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창원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7년 6월 25일 21:40)

내 용 :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학교급식 수산물 7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8일부터 각 학교급식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조사한 결과, 모두 7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중국산 명태를 한국산으로 속여 급식한 통영시 용남면 ‘좋은 세상’과 통영 고등학교 관계자 등을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가 올 들어 적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112건으로 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추후보도문
- 내 용 : 지난 해 6월 25일 9시 뉴스 시간에 경상남도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중국산 명태를 한국산으로 속여 급식한 학교 급식업체인 통영시 용

남면 ‘좋은 세상’을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지난 12월 좋은 세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중국산 명태를 한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창원KBS-1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2월 12일 19:00)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2월 12일 21:00)

내 용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6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된 통영시 용남면 “좋은 세상”에 대해 수입한 중국산 동태를 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자와 포장재에 명백히 중국산임을 밝혔고 다만, 학교급식 납품서에만 원양산으로 기재한 것은 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학교 급식 납품서에 원양산으로 기재한 것도 재산상 차익을 남길 의도가 없었고 학교 급식 현장에서 관행상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일보 : 『‘신기술 사기극’ 플래닛82 대표 구속』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0일자 9면)

내 용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강찬우 부장검사)는 허위로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 주가를 끌어올린 뒤 3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등록기업 ‘플래닛82’ 윤모(48) 대표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래닛82는 2005년 말부터 ‘나노기술’을 테마로 코스닥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폭등, 한때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사실상 ‘사기극’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4년 12월 빛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플래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고감도 나노이미지센서를 개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시하고 제품이 곧 생산될 것처럼 언론들과 인터뷰한 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5년 11월 공개 시연회를 열고 500배 이상 감도의 나노이미지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 3개월 내 양산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가 발표한 기술은 세계적인 신기술도 아니었으며 시연회 당시 비교 대상 카메라와는 달리 해당 카메라에 적외선 차단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채 속임수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연회 결과, 플래닛82는 주가가 1,600원대에서 4만 9,000원으로 치솟으면서, 코스닥기업 중 시가총액 200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윤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22개 차명계좌를 이용, 주식 427만주를 매도해 35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플래닛82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난해 7월 “나노이미지센서 의혹 조사 완료”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지난주까지도 이미지센서 신기술 입증 등을 홍보, 주가가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플래닛82가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은 2008년 1월 11일 연구진실성 검증조사위원회의 공식조사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라고 검증된 바 있고, 2004년 12월 6일자 플래닛82의 공정 공시 중 2005년 매출전망은 예측 정보임을 명시한 것으로 허위공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5년 시연회는 산자부와 전자부품연구원이 개최한 것으로서 타사 제품에만 적외선 차단필터

를 장착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진실성검증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SMPD이미지센서는 0.06LUX에서도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청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개인적으로 35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도 없으며, 2007년 7월 19일 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검증조사가 완료되어 동 사실을 알렸을 뿐이며, 2008년 1월 11일 ‘조사결과에 대한 플래닛82의 입장’에서는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플래닛82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플래닛82 반론보도문
- 내 용 : 1월 30일자 사회면 기사에 대해 (주)플래닛82에서는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나노이미지센서기술은 지난 1월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의 공식조사결과 새로운 기술이라고 검증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회사측은 “04년 공정 공시 중 05년 매출전망은 예측 정보임을 명시했으며 05년 시연회는 부정행위가 없었고, 주가를 조작해 35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2월 27일까지 문화일보 2면 또는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문화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2일자 1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2008서울조정2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중앙일보 : 『가짜 나노기술로 358억 챙겨』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1일자 12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6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2
월 23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한국일보 : 『신기원 아닌 신기루로 막내린 ‘나노혁
명’』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1일자
12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6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7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참조>

보도내용

매일경제 : 『신기술 허위공시 350억대 쟁겨』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1일자 A39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검찰, 플레닛82 대표 등 기소 플레닛82
“신기술 검증됐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2일자 A3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한국경제 : 『“산자부가 100억 지원한 기술이 사기라
니...”』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1일자
2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6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허위사실 공시’ 대표 기소에 플레닛82
“검증된 신기술”』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2일자 12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여 주가를 조작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참조>

보도내용

연합뉴스 : 『‘신기술개발 허위 유포’ 플래닛82 대표
구속』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0일
12:06)

내 용 : <2008서울조정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2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검찰, 플래닛82 대표 등 기소 플래닛82
“나노 이미지센서기술 신기술 검증됐다”』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1일 12: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의 이사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단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이사장 김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종재부

접 수 일 : 2008. 2.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일보 : 『100억 지원 복지재단에 서울시 ‘봉변’』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4일자 14면)

내 용 : 성람재단, 약속 어기고 시설 기부 채납 꺼
려 소송 사태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100억 원대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가 도리어 소송사태에 휘말리는 등 봉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가 앞뒤 상황 판단 없이 기부채납을 섣뚱 받아들여, 재판중인 이사장의 선처를 노린 복지재단에 놀아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서울시 등으로부터 100억 원을 보조받는 성람재단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강원 철원의 문혜, 은혜요양원과

문혜보호작업장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뒤늦게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워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성람재단의 문제는 위탁운영을 맡긴 성공회측과 시설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람재단이 뒤늦게 소유권 이전등기 조건으로 직원 고용승계와 체불 임금 해결 등을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대부분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을 일부러 내건 것으로 보여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가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사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애꿎은 수용 장애인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성람재단은 원생 폭행 등 인권유린과 공금 횡령으로 이사장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자 선처를 노리고 3개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키로 전격 발표, 동기가 불순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판단 없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재단 노조 관계자는 “성람재단 이사장은 건물, 토지 평가액만 140억 원에 달하는 시설을 서울시 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지난해 8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서 “누가 봐도 기부의사가 불순했는데 서울시가 담보조건도 없이 이를 넘죽

받아들여 망신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람재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언론은 2008년 1월 13일자 인터넷 사회면에 『100억 지원 복지재단에 놀아난 서울시 - 성람재단 약속어기고 시설 기부채납 꺼려 소송사태』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2008년 1월 14일 일간신문에는 『100억 지원 복지재단에 서울시 ‘봉변’ - 성람재단 약속 어기고 시설 기부채납 꺼려 소송사태』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위 보도는 서울시가 성람재단의 기부채납을 받아들이며 “재판중인 이사장의 선처를 노린 복지재단에 놀아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당시 성람재단은 원생 폭행 등 인권유린과 공금횡령으로 이사장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자 (이사장)의 선처를 노리고 3개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키로 전격 발표, 동기가 불순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판단 없이 수용했다”고 설명하고, 재단 노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성람재단 이사장은 건물, 토지 평가액만 140억 원에 달하는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후 지난해 8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누가 봐도 기부자가 불순했는데 서울시가 담보조건도 없이 이를 넘죽 받아들여 망신을 자초했다”며, 이는 재단이 약속을 어기고 시설 기부채납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성람재단의 철원시설의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현 이사장은 구속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성람재단 철원시설은 2006년 10월 기부채납이 결정되었고, 2006년 5월에 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한 전 이사장은 기부채납 결정이전인 2006년 9월에 1심에서 집행유

예를 선고받았으므로 기부채납의 결정과 전 이사장의 구속 및 집행유예 판결과는 무관하며, 성람재단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종사자들과 생활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부채납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성람재단 관련 조정합의문
- 내 용 : 지난 1월 14일자 성람재단 시설 기부채납 기사와 관련하여 확인 결과, 현 이사장은 구속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없고, 성람재단의 기부채납 의사는 전 이사장의 집행유예 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한국일보 수도권면 좌측하단에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통상의 정정기사 활자크기로 하여 2008년 2월 29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ankooki.com>)에 게재된 원 조정대상 기사를 찾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나오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6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제주도축구연합회가 새로운 집행부 구성 당시 시축구연합회
대의원을 배제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제주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축구연합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제주타임스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제주타임스 : 『“생활체육 축구조직 정상화 하라”』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0일자 5면)
내 용 : 도내 국민생활체육 축구조직의 이원화로 축구 동호인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장년층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9일 도내 축구동호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도축구연합회간 알력이 빚어지면서 생활체육 축구조직이 사실상 이원화됐다는 것.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통합된 제주시축구연합회 및 서귀포시축구연합회와 이들의 상위기구격인 도축구연합회가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회원 등록을 따로 받는 등 서로 제 갈길을 가고 있다.

종전까지는 축구 동호인팀이 시연합회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도연합회에 등록되는 시스템이었다.

이 같은 갈등은 도축구연합회가 지난 1월초 새로운 집행부 구성 때 시축구연합회 대표원을 배제하면서 비롯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각 축구연합회별로 자신들이 인정하는 대회에만 단위 클럽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직의 화합을 위해 도축구연합회 집행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축구 동호인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도연합회 등록 16개 단체 50·60대 축구동호인 대표는 최근 도연합회 등에 보낸 결의문을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축구조직의 정상화를 기다려 왔으나 오히려 시·도연합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그 책임은 도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도연합회의 2006년도 결산보고서 및 회장선출에 관한 규정의 적합성과 시·도연합회 이원화의 원인을 밝혀달라”며 “우리들의 이 같은 뜻이 관철되지 않고, 도연합회의 정상화가 이뤄지

지 않을 경우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집행부가 가시적인 조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5~16일 예정인 도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불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재 국민생활체육 제주특별자치도 축구연합회는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단체이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12월 10일자 사회면에 『생활체육 축구조직 정상화 하라』라는 제목으로 본 연합회 관계자에게 보도내용에 관련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보도해 정상적인 도 축구연합회를 마치 불법을 초래하는 연합회인 양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도 축구연합에 대하여는 몇몇 회원의 담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보도내용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축구연합회는 상위 기관인 전국축구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회에 본 축구연합회 대의원 구성은 시, 읍, 면, 동 생활체육 축구단위로 대의원을 구성할 것을 공문으로 공지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하여 2007년도 정기총회를 정상적으로 대의원 구성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제주도 축구연합회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는 2007년 12월 10일자 5면 『“생활체육 축구조직 정상화 하라”』 제하의 기사에서 도내 생활체육 축구조직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작년 초 도축구연합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시축구연합회 대표원을 배제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라고 결의문을 토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축구연합회는 상위기관인 전국축구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시, 읍, 면, 동 생활체육 축구단위로 대의원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승인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2월 22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제주 타임스> 2면에 1단으로 보도하되, 제목은 1단 제목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주타임스 : 『제주도축구연합회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인천 영종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책임감리자인 신청인이 현장이탈이 잦고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인일보 : 『운서지구 토지정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9일자 19면)

내 용 : 인천 영종도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감리 업체의 업무 소홀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감리단을 선정한 후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관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1년이 넘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는 지난 2002년부터 운서동 86의1 일원 30만 6천580㎡ 규모의 토지정리를 진행중이며 당초 예정된 공정률은 70%이지만 현재 48%에 그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기가 늦어지는데 대해선 공정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감리단의 방만한 업무 처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도화중합기술단과 성우엔지니어링이 각각 70%,

30% 비율로 감리를 맡은 이번 사업에는 2005년 9월 P씨가 책임 감리원으로 투입됐다. 당초 계약에서 책임원은 발주청, 즉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후 현장을 벗어나도록 했다.

그러나 P씨는 2006년부터 잦은 현장 이탈 행동을 보였고 시공사측과 심한 이견에 다툼까지 벌였다는 게 중구 관계자의 설명, 이 관계자에 따르면 P씨는 특정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매주 토요일엔 근무를 하지 않았고 공사 직원들과 평소 감정싸움이 격해져 경찰까지 동원된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기가 늦어졌고 중구는 최근 책임감리원을 교체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구는 P씨에 대한 민원이 현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전달됐으나 1년 가량 방관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확대시켰다. 행정기관은 지원업무수행자 명목으로 감리단을 견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구 관계자는 “구청 담당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도로 공사를 진행해 공정률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운서지구토지정리 『감리업체 업무소홀

등』 관련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감리업체(도화종합기술공사) 책임감리원 P씨가 ‘현장이탈·다툼… 업무소홀’로 『운서지구토지정리사업』의 공정이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2007년 11월 29일자 사회면(19면)에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공정(지지)부진 원인은 시공사 현장대리인에 있었고, 중구관계자가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구 담당공무원이 ‘공기가 늦어지는데 대하여 공정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감리단의 방만한 업무처리를 지적했다’는 보도는 업무분장에서 공정관리의 주체가 시공사인데 관계공무원이 담당업무의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중구관계자가 설명했다는 ‘책임감리원 P씨의 잦은 현장이탈, 특정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매주 토요일엔 근무를 하지 않았고’는 이 관계자가 자신의 행적과오(착오)를 P씨에게 전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P씨는 시공사 직원과의 감정싸움이 격해져 경찰동원 경험이 있다’라는 내용은 현장대리인이 정상적인 감리업무를 방해하여 발생되었으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중구의 행정처리 잘못이 크며 이 건 등으로 인해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2007년 10월 교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7년 11월 29일자 19면 『운서지구토지정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에서 감리업체(도화종합기술공사) 책임감리원 P씨가 ‘현장이탈·다툼…업무소홀’로 『운서지구토지정리사업』의 공정이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감리원 P씨는 공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감리단이 아닌 시공사나 발주처에 책임이 있으며, 현장이탈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규정을 지킨 것으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일보 2008년 2월 21일 19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현공정률 48%…목표치 70% 못미쳐, 관리의무 행정관청 중구 방관도 ‘한몫’)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1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살인사건 피의자인 신청인이 유치장에서 불을 지른 이유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공 ○ ○

피신청인 : 경상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상일보 : 『경찰서 유치장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9일자 5면)

내 용 : “살인혐의 50대 라이터로 방화 2도 화상” “중부서, 상부 보고않고 축소·은폐의혹”

울산시 중구 학성동의 용역사무실 살인사건 피의

자가 유치장에 라이터를 숨기고 들어가 화장실에서 불을 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의 유치장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울산경찰청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밤 학성동 용역사무실에서 공사대금 관계로 업체 사장을 흥기로 살해한 공모(55) 씨는 경찰에 검거된지 닷새째인 26일 밤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휴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중략)

공씨는 교도소에서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 라이터를 숨겼으며 유치장에서 자신의 견제함을 과시하기 위해 불을 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경찰청장은 8일 울산지역 각 경찰서 유치장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찰서 유치장 방화 관련 보도내용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11월 9일자 사회면에 『경찰서 유치장 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에서 살인사건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신의 견제함을 과시하기 위해 숨겨둔 라이터로 불을 내 소란을 피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피의자는 압수당한 전세계약서와 인감도장을 경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인격적 무시를 당하여 화를 참지 못해 방화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은 물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돈에 매수되어 금천구청장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직을 맡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금천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금천뉴스 : (1)『한인수 구청장, 18대 총선 부당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1일자 1면)

내 용 : “노예로 만들어버린 (A국회의원과 한인수 구청장의)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통탄의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K씨가 나의 사무국장으로서 일한다면 실체

로는 A국회의원의 예비 보좌관(국회 4급 공무원)으로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한인수 구청장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금천구의 짝은 정치모리 잡배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자신이 후보에서 사퇴를 한 것도 아닌데 ‘선거를 제대로 못 하도록 수족을 자른 것’이라고 했다.

장영호 후보는, K씨가 A국회의원 예비보좌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영호 후보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일원도 받지 못했다. 무보수 사무장으로 일해 생활이 어려워 말이 아니더라고 해 타인으로부터 자신(장영호 후보)이 파렴치한으로 몰려있는 점을 참을 수 없다. 세상에 돈이 좋다지만 나를 이렇게 매도해 너무나 짜증난다고 했다. 금천구 관내 조직력이 약하자 한인수 구청장이 도와 K씨를 빼내 나의 조직까지 포섭하여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짓”이라고 규정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한 것은 친한 지인으로부터 들었다. K씨가 A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놀랐다. K씨가 나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두 사무실을 오가면서 일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어떤 매수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사건에 구청장이란 자가 개입했다는 것이 웃기는 일 아니냐. 장영호를 죽이려고 선거를 방해한 것이다. 국회의원이란 자가 인력이 없어 남의 사무장을 뺏어가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시점에선 조직을 강화하려고 K를 매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호 측의 한 선거운동원은 “K씨에게 17일 이후 상의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장영호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K씨가 아직도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며 불과 3일전쯤에 구두로 ‘여기를 정리하고 A국회의원 선거를 도울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K씨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한다. 지난 17일 금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장영호 후보의 선거사무실 사무장으로 K씨가 여전히 등록되어있는 상태였다. A국회의원은 “장영호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며 K씨는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K는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력서를 보니 관내 지역신문 경력도 있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보좌관이 공석이어서 지켜보고 있던 중”이라고 했다. 한인수 구청장은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17일 오후에 돌아왔다. (후략)

(2) 『거액과 직위 미끼로, 조직선거 이용하려 K씨 매수』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8일자 1면)
내 용 : (구청장)가 “이런 짓거리를 기획하고도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전화를 걸어 왔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그러나 한인수 구청장의 주장은 장영호 후보와 달랐다. 중동의 두바이에서 돌아온 한인수 구청장을 취재차 만났다. 한 구청장은 “K씨를 A후보에게 소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장영호 후보의 주장과 다르다”고 했다. 한 구청장은 “연말에 K씨로부터 문자가 왔었다. 전화번호를 보니까 K씨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바뀐 것 같더라. 전화번호를 찾아 비교해보니까 정말 달랐다. 그래서 ‘잘 있느냐’고 K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자 K씨가 ‘잘 있다’고 하며 ‘인사차 들리겠다’고 해 ‘그러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 구청장에 의하면 “지난 1월 2일, K씨가 나를 찾아 왔기에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장영호 사무장으로 있는데 먹고 살기가 어렵다’며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보니 걱정이 되어 그렇게 하지 말고 A후보가 보좌관을 뽑고 하니 가서 한번 해 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장영호 후보가 이 사건을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기에 전화를 했지만 장 후보의 가족과 연락이 되어 전화로 장 후보의 ‘가족에게 이해를 시켰다’고 했다. 직접 장영호 후보와 연락이 닿다. K씨가 왔을 때 장영호 후보의 사무장이란 것은 듣지도 못했다. 전혀 몰랐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손배는 수용불가.

□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하면서 측근들은 예외라고 발언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노 무 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盧 정권 역주행 5년』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2일자 A1면)

내 용 :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지 열흘 후인 12월 29일, 노 당선자는 명륜동 자택으로 자신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측근들을 부부동반으로 불러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명(후원회장), 이강철(전 시민사회수석), 안희정, 이광재(현 의원), 서갑원(현 의원), 황이수(전 행사기획비서관), 백원우(현 의원), 여택수(전 부속실장), 문용욱(현 부속실장) 씨 등 핵심 측근들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다. 이기명, 이강철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386이었다.

측근들에게 ▲ 주변관리를 잘할 것 ▲ 역대정권의 인사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당시 당선자측은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그 사흘 전인 12월 26일 “인사나 이권 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러나 명륜동 만찬 자리에선 당선자 측 설명에선 빠진,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다. 노 당선자는 “내가 ‘패가망신’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예외”라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니 인사추천을 마음껏 하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얘기 이기는 했으나 참석자들은 지금도 그 얘기를 기억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 인사 파행의 씨앗은 바로 이날 뿌려졌다. 측근 몇 사람에게 사실상 인사에 개입할 권한을 쥐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는 자제했으나 소수에 불과했다. 한자리 바라는 사람들이 소수의 핵심 측근들에게 몰렸던 것은 당연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내에 비서실장이 위원장, 주요 수석이 위원인 ‘인사추천위

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광재·안희정 씨, 이호철 민정수석을 비롯한 핵심 측근그룹이 참여하는 외부의 ‘비밀 회의체’에서 합의제 형태로 주요 인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전 민정수석, 박남춘 전 인사수석 등도 부분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노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치개혁연구실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최근 EAI(동아시아연구원)가 주관한 간담회 자리에서 “다면(多面)평가를 중심으로 한 철저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얘기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이뤄졌으나 사실상의 인사는 386 실세 중심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안희정파’ ‘이광재파’... 청와대도 정부도 줄서기 경쟁』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2일자 A6면)

내 용 : 노무현 사단의 386 중 핵심은 안희정, 이광재 두 사람이다. 이들은 나이를 떠나 모든 참모 중 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었다. 다른 측근들과는 격이 달랐다. 인사 청탁이 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 것은 당연했다. 성공률도 가장 높아 관가에서는 이들에게 선을 대기 위해 총력전이 벌어졌다.

이 두 사람 중에서도 이광재의 영향력이 훨씬 컸다. 안희정이 나라중급 사건에 연루되면서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반면, 이광재는 핵심 중의 핵심인 국정상황실장을 꿰찬 때문이었다. 이광재는 정부 민정 홍보 인사 부속 등 청와대 주요 라인의 핵심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이광재의 작은 청와대’라고 불렀다. 안희정계는 상대적으로 요직에서 밀렸으나 그래도 주요 수석실에 끈을 뒀다.

두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 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한 386이라고 해도 요직에서 밀렸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선대위에서 일했던 강모 씨가 청와대 경내 관람안내 담당 행정관으로 밀렸던 게 대표적 사례다. 김대중 청와대 때부터 일했던 한 국장은 똑같은 일을 했지만 직급이 강등됐다. 이 외에도 안·이 두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

아 손해를 본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청와대 비서실 내에 ‘이광재 파’ ‘안희정 파’가 생겨나 갈등을 벌이기까지 했다. 한 전직 수석은 “행정관 하나를 문책하려고 했더니 우르르 들고 일어나 결국 못했다”고 했다. 이 얘기를 들은 당시 비서실장이 “이 X들이 정말...”이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한다. 이 파벌은 임기 말인 지금까지 존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보는 2008년 1월 22일자 A1면, A6면 『노(盧) 정권 역주행 5년』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나 여러분들은 예외”라는 발언을 하였고, 한편 주요 인사는 핵심 측근 그룹인 ‘비밀회의체’에서 결정하였으며, 노 대통령은 개각 및 비서실 개편시마다 안희정 씨와 상의하였고, 청와대 내부에서 이광재 파와 안희정 파가 갈등하였는바, 김만복 국정원장은 청와대 386을 잘 관리하여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장관 및 청와대 수석의 임명 판단 기준은 선거 출마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노 대통령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핵심 측근 그룹이라는 ‘비밀회의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 대통령이 개각 및 비서실 개편 당시 안희정 씨와 상의하였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안희정 씨와 이광재 의원의 인사개입과 갈등 의혹 및 김만복 국정원장의 임명과정 등을 보도한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개각 및 비서실 개편시 ‘참여정부 인사원칙’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근거하여 인사를 단행하였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

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월 22일자 A1, 6면 『盧정권 역주행 5년』 제하의 기사와 관련, 노무현 前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측근들에게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나 여러분은 예외”라고 발언한 일이 없고, 개각 및 비서실 개편시 ‘참여정부 인사원칙’에 근거하여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안희정 씨와 의논하거나 선거 출마 여부를 개각 등의 기준으로 한 적도 없고, 아울러 이광재·안희정 씨의 갈등 의혹과 김만복 국정원장의 임명과정에 대한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A2면에 2008년 2월 29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상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9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남편을 비방하는 악성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일간스포츠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일간스포츠 : 『“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 올려”』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5일자 24면)
내 용 : 이찬, 수사의뢰...“폭행관련 여론조작”
주장

“퍼나르기 해서 유포하라” 글도 올라와 있어
텔런트 이찬이 이○○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해
조직적인 악성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흔적을 포착
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이○○이 자신을 비방한 댓글을 올린 네티
즌 2명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
욕죄로 고소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이찬도 악성 댓글에 대해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이다. 이○○과 이찬 사이의 해묵은 진실 공방이
악성 댓글을 매개로 해를 넘기며 재현될 조짐이
다.

이찬은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악성 댓글
을 검토한 결과 4~5개의 아이디와 IP주소가
비슷한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며 “또 이○○의 팬클럽 게시판 등에 이를 ‘퍼나
르기 해서 널리 유포하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
등 조직적인 댓글 조작의 가능성을 감지했다. 이
에 뒤늦게라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
다.

그는 이어 “이번 수사의뢰가 네티즌을 처벌하겠
다는 의도는 결코 아니다. 수사 결과 일반 네티즌
으로 밝혀지면 절대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의 측근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이 유포된 것으로 밝혀지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특히 해당 아이디 중엔 낯익은
아이디도 있어 누군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이○○이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을 올렸
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12월 15일자 연
예면에 『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 올려』라는
제목으로 이○○이 이○○의 팬클럽 게시판 등에
이를 퍼나르기 해서 유포하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
등 이○○이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을 올린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이 비방 댓글을 올린 사실이 없고,
팬클럽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은 이○○이나 이○
○ 가족이 올린 것이 아니며, 이○○이 게시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조직적
으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이
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제 목 : 이○○, 악성댓글 조작 증거 없어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7년 12월 15일자 24면
『“이○○, 조직적으로 비방 댓글 올려”』 제하의 기
사에서 텔런트 이○○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였다는 이찬 씨의 주장
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에
서 해당 네티즌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 씨가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였다는
증거가 밝혀진 바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이○○ 씨 측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스포츠>
엔터테인먼트면에 2008년 3월 7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이○, 수사 의뢰...
“폭행관련 여론조작” 주장>의 활자와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
자크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일간스포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

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일간스포츠 : 『이○○, 악성댓글 조작 증거 없어』 제
하의 기사 (2008년 3월 7일자 1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시·구의원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자들에게 공동 선거비용을 강제로 거두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충 환

피신청인 : 시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2.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손배)

보도내용

시민일보 : 『檢, 강동구 국회의원 내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1일자 1면)

내 용 : 현직 국회의원 측이 지난 5월 31일 지방
선거 당시 시구의원 공천자를 대상으로 공동선거
비용 명목의 거액을 일괄 거둔 사실과 관련, 해당
국회의원 부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알려
져 파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국회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구
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
다는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주
목된다.

10일 <시민일보>가 확인한 수사요청서에 따르면
김모 의원과 부인 최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초
순경 서울 강동구 소재 국회의원 연락사무소 사무
실에서 서울시의원 및 강동구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을 모아 놓고 “시의원 후보자는 일인당
5,000만 원, 구의원 후보자는 일인당 2,500만 원을
모두 송금해라. 송금계좌 명의로는 국회의원 연락사
무소 여직원 김○○에게 보내라. 보낸 돈으로 홍보
물 제작비, 차량대금, 명함제작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고 일괄해서 의뢰하면 경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비용 송금을 강요했다.

특히 시의원, 구의회의원 후보자들 중 일부가 이
에 반발하자 “왜 그렇게 협조하지 않느냐, 말을 듣
지 않으면 (공천을) 바꿀 수도 있다”고 겁을 주었
다는 것.

이에 따라 김○○씨 명의 계좌로 선거비용 명목
으로 후보자들이 함께 3억여 원의 돈이 송금됐고
일방적인 선거비 집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특정 업체에 선거용역을 일괄 의뢰한 대
가로 김모 의원은 해당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태
로 의정보고서를 무료로 제작했다는 점보도 있다
는 주장이다. (중략)

한편 올 1월 동부지원에 제출된 수사요청서에는
한나라당 강동갑 김모 의원과 그 부인 최모 씨를
횡령과 배임수재 죄명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고
수사요청자의 인적사항은 단지 한나라당 서울 강
동갑 당원협의회 소속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구의원 출마자로 기재돼 있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받고 싶으면 선
거비용 내라 3억 꼴격”, “검, 강동구 국회의원 내사
착수” 기사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1일자 1면에 “지방
선거 후보자, 공천받고 싶으면 선거비용 내라 3억 꼴
격”, “검, 강동구 국회의원 내사착수”라는 제목으로
강동갑 김충환 의원이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
시구의원 공천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을 공동집행한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작성 과정에서 기사제목을 마치 김
의원이 거액을 강제로 착복한 것처럼 오인되도록

작성했습니다. 또 검찰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제보자가 제시한 사적인 문서를 마치 검찰이 보유중인 공적인 문서의 내용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보도하였고, 이를 근거로 선거홍보물의 통일적인 기획을 위해 선거비용 일부를 공동집행한 것이 불법이 아닌데도 마치 김 의원과 부인이 불법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협박해 강제로 모금했으며, 모금한 돈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대가를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김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기사작성에 참고한 문건은 검찰이 보유중인 공식 수사요청서가 아니고, 기사작성 과정에서 검찰을 통해 공식적인 수사요청서 접수 사실 및 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기사의 내용도 단순히 제보사실을 옮긴 것에 불과해 실제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충 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충호빌딩 601호

대표이사 최 정 호

조정대리인 고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8년 3월

12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시민일보> 1면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8.

<별 지>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1일자 1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받고 싶으면 선거비용 내라 3억 꿀꺽』 부제목 제하의 보도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김모 의원이 시·구의원 공천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선거비용 3억 원을 모금하여 횡령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상기 보도의 부제목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2억 5천 공동비용 조성』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모 의원은 선거구역 대가로 의정보고서를 리베이트 형태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횡령과 배임수재 죄명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검찰의 공식 발표자료가 아니라 익명의 수사요청서에 불과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시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7일자 1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인 신청인들이 밀실공천을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노승중 외 6인

피신청인 : 과정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괴정신문 : 『한나라당에 바란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일자 3면)

내 용 : 한나라당은 스스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의 명철한 여소야대의 견제심리가 발동될 것이다. 밀실공천 돈과 인맥이 통하는 공천이 아닌 시스템 공천, 원칙이 바로 서는 공천이어야 한나라당을 지지해 줄 것이다. 우리 사하지역만 해도 그렇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수영구에 공천 탈락한 후보가 사하구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낙하산식 철재정치, 밀실공천으로 지역구민의 원성을 샀고, 그에 반발한 민심의 이탈로 열린 우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었다. 아직도 협의회 회장은 지금도 지난 19일 시의원 재선거에서 미리 시의원 후보를 내정시켜 놓고 다른 시의원 후보들에 입당원서 경쟁을 유도하여 입당원서 실적에 따라 공천을 결정하는데 참고 하겠다고 하며 어떤 후보는 2700장, 어떤 후보는 전라도, 제주도까지 2000장의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하고 해당 당원협의회장은 중앙당의 입당원서 실적이 전국에서 1위의 영광을 안고, 여타 시의원 후보들은 들러리로 우물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그 결과는 절대 장담할 수 없다.

2004년 당시 인근 지역의 공천후보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전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공천반대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하고, 결국 중앙당에서조차 사고지구당으로 지목한 지역구에서 문제의 사고지구당위원장이 또 다시 밀실공천으로 당선되어 이 지역민의 민심은 초토화되어 구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당원생활 경력도 없는 사람들, 비리의혹으로 점철된 사람을 시의원 공천을 주는 혐오스러운 형태로 지역에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언론지면상에서 공천물같이 대상에서 영순위로 꼽히는 지역구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월 1일자 3면 『한나라당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사하갑 지구당이 ‘사고지구당으로 지목되고, 밀실공천으로 당선 운운하며, 지역민들의 민심은 초토화 되고, 구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 그리고 공천 물같이 영순위 지역이다.’ 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

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과 엄격한 공천심사로 밀실공천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과 공천 물같이 영순위 지역이라는 것이 허위로 밝혀져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월 1일자 3면 “한나라당에 바란다”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 사하갑은 지구당 위원장이 밀실공천으로 당선되어 구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으며, 당원생활 경력도 없는 사람과 비리의혹으로 점철된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등 공천 물같이 대상에서 영순위로 꼽히는 지역구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과 엄격한 공천심사로 밀실공천을 하지 않았으며, 구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고 공천 물같이 영순위 지역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2월 25일까지 괴정신문 3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한나라당에 바란다”)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괴정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5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본인의 18대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아내의 공천신청 또한 만류하고 있으나, 신청인을 대신해 아내가 출마하도록 공천신청을 도왔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태 기
피신청인 : 헤럴드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5일자 5면)

내 용 : 한나라당 김태기 위원장 대신 아내 권혜경씨 성동갑서 출마

성동갑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에 권혜경(48) 씨가 남편인 김태기(52) 성동갑 위원장을 대신해 출사표를 던졌다. 김 위원장이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어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아내인 권씨를 도와 진수희 의원과의 당내 공천에서 승리하고 현역 의원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재천 의원을 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관련 정정 및 사과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정치면에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 부창부수』라는 제목으로 김태기 위원장이 불출마를 하는 대신 아내 권혜경씨의 공천신청을 돕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태기 위원장은 권혜경씨가 공천을 신청하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공천신청을 강력하게 만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바람

난 가족’으로 선정적으로 표현하고 ‘부창부수’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김태기 위원장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정치면에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 부창부수』라는 제목으로 김태기 위원장이 불출마를 하는 대신 아내 권혜경씨의 공천신청을 돕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태기 위원장은 권혜경씨가 공천을 신청하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공천신청을 강력하게 만류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바람난 가족’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부창부수’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김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2월 28일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헤럴드경제 5면 원보도 게재부분에 1단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헤럴드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2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진입로도 없는 곳에 창고 건축허가를 받아 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일보 : (1) 『진입로 없는 곳에 창고 인허가』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9일자 19면)

내 용 : 경기도 광주시, 대형차 들어올 여건 안 돼 ‘특혜 의혹’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해 말 대형 창고(3동·초월읍 용수리)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현장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25일 주민들에 따르면 창고부지에 대해 실제 맹지로서 그 기능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으로부터 인허가가 났으며,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대상인 창고의 진입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4미터 농로를 통해 들어와 구거를 복개하여 진입하는 형태로 설계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는 허가기준 6미터를 맞추기 위해 구거를 기준으로 양쪽을 2미터씩 관계당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인정받았다는 것.

하지만 주민들은 창고입구에서 90도로 꺾여진 도로를 이용해 대형차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특히 구거의 중심으로 사용허가된 2미터 중 한쪽은 하우스를 운영하는 관리사가 이미 들어서 있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주민 여론에 대해 사실상 그 무게 중심이 한층 더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 건축 관련 담당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인허가가 이뤄졌으며 타당성의 논리를 말하자면 타 부서의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상황이라며 안일한 언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2) 『의혹 귀막고 공사마감 ‘급급’』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일자)

내 용 : 〈속보〉 경기도 광주시가 초월면 창고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는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대형 창고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상 맹지에 대해 농로와 구거를 통해 진출입로를 승인해 준 것은 현장 여건상 무리하게 추진 됐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기도 초월면 용수리 창고허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9일과 2월 2일자 사회면에 진입로 없는 곳에 창고 인허가, 그리고 의혹 귀막고 공사 마감 급급이라는 제목으로 건축허가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창고 허가는 2005년 허가 당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편집국장장의 사과공문을 신청인에

게 2008년 2월 29일까지 발송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KBS가 2006년 현충일 〈미디어포커스〉 프로그램에서 마오쩌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코드 장단 맞추던 방송, 정권바꾸자 ‘오만한 권력’ 타령』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5일자 A5면)

내 용 : 김대중-노무현 정부 반면교사 10년 〈6〉 ‘정권확성기’ 자임한 공영방송

정연주 KBS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이라는 말로 차기 정권을 겨냥한 듯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 2003년 4월 취임 이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말이었다. 그런 정 사장이 정권 교체 시기에 ‘권력 비판’을 주문하는 듯한 모습은 현 정권에서 공영방송 KBS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중략)

KBS의 코드 방송은 2004년 탄핵방송 때 최고조에 달했다. KBS는 탄핵 당일 14시간의 생방송을 통해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방영했다. 한국언론학회가 방송위원회의 의뢰로 탄핵방송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으나, 정권의 눈치를 본 방송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2005년 KBS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평택 미군기지 반대 시위를 보도하면서 시위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해 방송위원회로부터 객관성 위반 사례로 꼽혔다. 〈미디어포커스〉는 2004년 북한 혁명가인 ‘적기가(赤旗歌)’를 배경음악으로 내보내고 2006년 현충일에 6·25전쟁 때 북한을 도운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장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다.

KBS의 한 간부는 “정 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편파 방송을 한 끝에 수신료 현실화는 말도 못 꺼낼 정도가 됐다”며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반면교사 10년 〈6〉 ‘정권확성기’ 자임한 공영방송』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5일자 A5면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반면교사 10년 〈6〉 ‘정권확성기’ 자임한 공영방송』이라는 기사에서 KBS의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는 2004년 북한 혁명가인 적기가를 배경음악으로 내보내고, 2006년 현충일에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운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 〈미디어포커스〉는 2006년 현충일에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동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7일자 6면)

내 용 : 본보 1월 5일자 A5면의 『김대중-노무현 반면교사 10년-정권 확성기 자임한 공영방송』에서 KBS <미디어포커스>가 2006년 현충일에 6·25전

쟁 때 북한을 도운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고 했으나 2006년 현충일에 ‘마오쩌둥 대장정’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곳은 <미디어 포커스>가 아니라 KBS 특집 <세계 걸작 다큐멘터리>입니다. □

신청인이 고소한 사람이 기독교조의 부위원장이자 노조창설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기독교조위원장, 이제는 부노조위원장까지 고소』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5일자 종합면)

내 용 : 고소중독자인 이○○ 목사는 기독교조부위원장(강○○)까지 고소해 기독교조의 와해를 자초하고 있다. 사용자인 이목사는 부위원장이 기독교조의 불투명성을 외부에 알렸다고 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동료 다음은 가족고소?

이 목사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해서 견제하는 사람들이라면 동료회원까지 고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고소중독증에 걸린 자가 결국 가족까지 고소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기독교조는 이렇게 해서 초심을 잃고 점점 몰락하고 있다. 최근 기독교조회원인 이○○ 회원은 경찰서까지 따라와서 필자가 경찰서 안에서 폭행했다고 허위진단서까지 발급받아 필자를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했다. 노조위원장을 비롯, 일부 기독교조 회원들의 거짓되고 몰상식적인 행동이 기독교

조의 쇠퇴를 부채질하고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기독교조위원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2월 15일 에클레시아뉴스 초기화면 상단에 『기독교조위원장, 이제는 부노조위원장까지 고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보도에 언급된 강○○ 씨가 “부노조위원장” 및 “노조창설자”라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모 씨는 부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은 있으나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출마하지 않아 현재 부위원장이 아니며, 노조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노조 창설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부조리와 부패에 대해서 견제하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고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 위원장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만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부노조위원장 고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지는 지난 2월 15일자 『기독교노조위원장, 이제는 부노조위원장까지 고소』 제하의 기사에서 강○○ 씨가 “부노조위원장”이며 “노조창설자”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강모 씨는 부위원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으나, 현직이 아니며, 노조창설자도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2월 28일부터 3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아뉴스> 초기화면 상단(첫째 날은 첫 번째 위치, 둘째 날은 두 번째 위치, 셋째 날은 세 번째 위치)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 본문이 표시

되게 하며,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신청의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클레시아뉴스 : 『“부노조위원장 고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7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위원회에서 2008 한국대중음악상 후보를 발표하면서 표절문제로 제외된 후보가 있다고 하자 이를 인기 남자그룹 ‘빅뱅’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 및 PR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시스 : 『한국대중음악상, 표절시비 가요 후보제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2일 16:02)

내 용 : ‘2008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이 12일 수상후보를 발표했다.

에픽하이 이상은(38) 이승열(38) 이적(34) 할로우젠 허클베리핀 등이 올해의 음반 후보, 팬(에픽하이) 텔미(원더걸스) 다행이다(이적) 거위의 꿈(인순이) 낯선 두 형제(허클베리핀) 등이 올해의 노래 후보로 선정됐다.

남·녀 그룹을 통틀어 에픽하이, 웅산(35), 이상은, 이승열, 이적이 올해의 음악인 후보 자격을 갖

췌다. 그림자궁전, 원더걸스, 윤하(20), 정민아(29), 할로우젠 등이 올해의 신인 후보로 뽑혔다.

그러나 여느 가요시상식에서 주요상을 독식한 빅뱅과 FT 아일랜드 등은 후보에서조차 제외됐다. 음악 표절논란에 휘말렸던 이들이다.

후보 선정위원회(위원장 김○○)는 “표절논란도 심사기준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표절여부가 판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표절논란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가 심사위원이 분과별 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어떤 후보는 예심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표절논란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최종 회의에서 후보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한국대중음악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올해로 5년째 이어온 한국대중음악상은 음악을 단순 오락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음악인들의 진지한 창작의 결과물로 평가한다. 표절곡이 발붙일 수 없다는 의미다.

시상식은 3월 5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린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한국대중음악상 기자회견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통신사는 지난 2월 12일자 연예>음악면에 『한국대중음악상, 표절시비 가요 후보제외』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사 상단에 가수 '빅뱅'의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은 가수 '빅뱅'과 관련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뉴스 :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축하공연, 3월 5일 성균관대 새천년홀』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7일 20:20)

내 용 : '제5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이 3월 5일 오후 7시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린다.

가수 김현철이 사회를 보는 이날 행사에는 이적, YB, 박선주, 웅산, 할로우젠, 못(MOT), 로맨틱카우치,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등의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은 상업성으로 얼룩진 한국 대중음악의 현실을 극복코자 시작됐다. 대중음악평론가, 음악 전문기자, 라디오 PD,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대중음악 전문가들이 선정위원으로 참

여해 대중과 예술 사이에서 고민하며 수여한다.

상업적 인기도로만 집중되다시피 하는 여느 가요 시상식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초대 시상식에서는 더더, 러브홀릭, 이상은, 휘성 등이 상을 받았다. 이후 마이엔트메리(2회), 두 번째달(3회), 스왈로우(4회) 등 음악성을 인정받는 아티스트들이 수상하며 한국대중음악상의 가치를 높였다.

금년도 시상식에는 에픽하이, 이상은, 이승렬, 이적, 할로우젠, 허클베리핀 등이 올해의 음반 후보에 올라 있다. 이적, 이상은, 에픽하이, 이승렬, 웅산 등은 올해의 음악인 후보들이다.

한편, 지난 12일 수상 후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표절을 포함한 여러 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가 후보 심사 과정에서 있었다"는 취지로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 언급했다.

그러나 선정위원회는 "특정 가수의 특정 곡이 표절로 제외됐다고 발표한 적은 없으며, 언론에서 보도된 모 가수 역시 후보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최우수 알앤비&솔 노래 부문' 및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음악인-댄스&일렉트로닉 부문'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다"고 밝혔다.

2008년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자와 수상작들은 당일 현장에서 발표한다. □

신청인이 한국전쟁 중 체포되어 전향한 이후 빨치산 전향공작에 이용당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5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진주MBC-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진주MBC-TV : 「특집 다큐 빨치산 2부」 프로그램(2007년 12월 14일 18:50분경)

내 용 : 1950년 전쟁이 한창이던 지리산 상공. 수천장의 종이터미가 살포된다. 빨치산의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은 우호적이다.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한 것이다. 북한출신 최고의 오페라 가수였던 남부군 최○○. 1951년 군경에 의한 1차 공세 전 체포된 그녀는 전향 공작에 이용당한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2007년 그녀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이 노래는 인터뷰 대신 그녀가 들려준 육성이다.

(노래가사-피아골 바람 속에 연하천 가슴속에 아직도 맺힌 한을 풀길 없어 헤메누나 아 아 그 옛날 꿈을 안고 희망 안고 한마디 말없이 스러져

간 푸른 님아)

합의사항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특집 다큐 빨치산’ 내용 중 최○○ 씨 방송 분 사실과 달라(또는 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해 12월 14일 특집다큐 빨치산 2부에서 ‘1951년 군경에 의한 1차 공세 때 체포된 그녀는 전향공작에 이용당한다’라고 방송해 최○○ 씨가 마치 전향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전향 의사도 없었고, 전향한 사실이 없는 만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 중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 가운데 나레이터의 진술 “북한출신 최고의 오페라 가수였던 남부군 최○○”를 “북한 출신 여성 빨치산”으로 수정하고, 방송화면에 사용한 뼈라에서 ‘최○○’ 실명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조정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영하거나 계열사 및 본사에서 방영하는 경우 위 항을 이행한 수정된 방송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방송프로그램 다시보기에 게재된 프로그램도 위 항을 이행한 수정된 방송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 방송과 관련하여 반론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

진주시가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진주시 (시장 정영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남일보 : 『‘먼 산만 바라본’ 진주시 유치활동』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9일자 3면)

내 용 : 2003년 처음 거론 지지부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고봉우 진주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본보에 전국체전을 진주에 유치하자는 기고문을 보내 이를 게재한 바 있다.

전국체전을 진주에 유치하자는 기사는 2003년 2월 28일자 경남일보를 통해 처음 나왔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도내출신의원 전원과 김혁규 도지사

가 참석한 당정회의의 현안사업 협의과정에서 하순봉 의원의 의견으로 처음 거론됐다.

그후 별다른 추진계획이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김혁규 지사는 2003년 12월 경남을 떠났다. 그리고 하 의원도 정치권을 떠났다. 결국 전국체전 진주유치 주장은 일과성에 그쳐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수면 하로 가라앉았다.

-(진현철 전국체전 준비단장의 28일자 모 일간지 독자투고에 밝힌 “2004년 1월 경남도 체육회에 유치계획을 보고했다”는 것은 체전유치에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도지사가 부재 중이었던 시점이며 김태호 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2004년 6월 7일 제32대 도지사 취임했다)

다음 회에 거론하겠지만 경남일보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배경에는 김태호 도지사의 취임이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경남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체육 인프라 조성은 중요한 것이었다.

1면 보도후 유치운동 불붙어

다시 전국체전이 부상한 것은 본지를 통해서이다.

창주전국체전이 끝난 뒤 2004년 11월 29일 경남 일보가 진주시 초전동 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관련 ‘진주에 전국체전을 유치하자’는 기사를 1면에 처음으로 내보내면서부터 체전 유치 운동에 불이 붙었다.

경남일보는 첫 보도이후 “전국체전 진주유치 환영” “전국체전을 유치하려면” “유치효과와 방향” “체전 중소도시에 개최해야” “유치 적극지원” “전국체전유치기대” 2004년 연말까지 2차례의 특집과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다.

이 시기는 김혁규 지사가 경남을 떠나고 김태호 지사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취임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본보의 시리즈 보도물이 나가자 경남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체전 유치 노력이 본격화 됐다.

경남일보의 본격적인 여론조성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주시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권영민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이 적극 나서겠다. 한번해보자”는 것이었다. 그의 언변과 리더십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하물며 그는 경남체육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수장이 아닌가.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었다.

권영민 사무처장 가장 열성

전국체전 유치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권영민 처장과 경남일보의 만남은 이후 전국체전을 진주에 유치하는데 또 한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권 사무처장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태호 지사를 찾아가 전국체전을 경남에 유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추진하라”는 확답을 받았다.

경남일보가 전국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명분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따라서 김태호 지사가 소외된 서부 경남지역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2004년 6·5 재보선에서 ‘최연소 민선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됐다. 신임 지사는 의욕에 넘쳐 있었다. 이날 취재진은 김태호 도지사의 진주유치 의사를 확인하기도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전국체전유치 정영석 시장 역할 했나) ‘먼 산만 바라본’ 진주시 유치활동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9일자 3면에 『‘먼 산만 바라본’ 진주시 유치활동』 제목으로 “2004년 경남일보가 전국체전 진주유치를 집중보도할 때까지 진주시가 자료 없이 방관자 자세를 취했다.”라고 진주시의 전국체전 유치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른 것으로서, 진주시는 경남일보가 전국체전을 집중 보도하기 이전인 2002년 7월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 전국체전에 대비하였으며 2003년 12월 19일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 표명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1월, 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반영 하여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시 자체 사전준비가 진행 중이었고,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쳐 2004년 1월 18일 진주시 체육회를 거쳐 경상남도 체육회에 전국체육대회 유치계획을 보고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제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국체전 유치계획을 언급하는 등 체전 유치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결과이며 이는 결국 진주시를 중심으로 시체육회, 경남도, 도체육회 간의 유기적 협조와 35만 시민의 유치 열망이 일궈낸 성과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진주시의 전국체전 유치 활동 관련 반론 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29일자 3면 『‘먼 산만 바라본’ 진주시 유치활동』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일보가 전국체전 진주유치를 집중보도할 때까지 진주시가 제대로 된 자료 준비 없이 방관자 자세를 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2003년 진주시의회에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진주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시민의 유치열망이 일궈낸 성과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8년 3월 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3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통상 사용되는 제목의 활자크기로 게재하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동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4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진주시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진주시 (시장 정영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의 경우 셋째아에게 고작 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그쳐 턱없이 적은 액수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보도내용

경남일보 : 『진주시 출산대책 실효성 없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9일자 6면)

내 용 : 저출산을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남도내 각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셋째이상 출산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지원금액이 적어 실효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인구 늘리기를 위해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할 경우 장려금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시지역의 경우 마산시가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이상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통영시는 셋째아 이상시 300만 원, 진해시도 둘째 30만 원, 셋째이상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또 밀양시도 셋째에게 100만 원, 창원시는 셋째이상에게 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지역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의 경우도 합천군과 함안군이 셋째아 이상에게는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해군과 의령군도 셋째아에게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

• 제 목 : 『진주시 출산대책 실효성 없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9일자 6면에 『진주시 출산대책 실효성 없다』와 30일자 사설에서 『안이한 진주시 저출산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진주시의 출산장려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이는 맞지 않다면, 기사내용은 출산장려금액만 단순 비교한 내용으로서 현재 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진주와 사천, 김해, 거제 양산지역으로서 모두 시 단위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지역 모두 인구 유입의 요건을 갖춘 도시들로 볼 수 있으며 진주시는 출산장려 대책으로 불임부부 기초 검진비를 부부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출생자 뇌수막염 무료 쿠폰제 3장을 발급하고 있고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풍진항체 무료접종, 임신부 건강교실, 기체조, 모유수유 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 등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원책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확인과 지역적 여건 고려 없이 실효성 없는 시책으로 지적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진주시 출산대책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29일자 6면 『진주시 출산대책 실효성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진주시가 셋째 이상 출산시 지원하는 20만 원의 장려금은 타시군에 비해 적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출산장려 대책으로 불임부부 기초 검진비 지원을 비롯해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풍진항체 무료접종, 임신부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출산장려금 지급 외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역적 여건의 고려 없이 진주시 출산 대책이 실효성 없다고 지적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8년 3월 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6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진주시 출산대책 관련 반론보도문)은 통상 사용되는 제목의 활자크기로 게재하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동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4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진주시 시장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여 도와 인사교류가 단절되는 등 폐쇄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진주시 (시장 정영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남일보 : 『인사교류 단절 ‘우물안 개구리’』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일자 1면)

내 용 : 서부경남은 물론 충청 이남지역의 남부권 중심도시를 추구하는 진주시가 최근 몇 년 사이 경남도와의 순환 인사교류가 사실상 단절됐다. 이에 따라 상급기관과 현안사업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폐쇄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영석 시장체제 출범 이후 심화된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들과 지역출신 도의원들 사이에는 정 시장의 독선적인 행정스타일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와의 인사교류에 있어 진주시는 지난 2001년 이후 부단체장을 제외하고는 국장급인 서기관 인사교류

가 전무하다. 정영석 시장이 ‘제식구 챙겨주기’에 눈이 멀어 ‘우물안 개구리식’의 폐쇄적인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시와 김해시, 마산시 등 도내 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해마다 도와 시간 서기관급 인사교류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의 경우 개방적인 인사교류에 대한 시장의 마인드가 부족한데다 공무원 노조까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이후 서기관급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정영석 시장체제가 출범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서기관급 인사교류는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진주시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극히 한정된 서기관 자리를 놓고 경쟁에 의한 승진보다는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 따라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눈밖에 나면 승진을 못한다’는 위기감에 단체장의 비위맞추기에 열을 올린다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도내 주요 시단위 자치단체들의 2006년 이후 도·시·군간의 인사교류 현황은 창원시의 경우 서기관 8명, 사무관 2명, 6급 이하 7명이다. 마산시는 서기관 3명, 사무관 2명, 6급이하 7명이며 진해시는

사무관 8명, 6급이하 9명으로 나타났으며, 김해시는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6급이하 5명이다.

반면 진주시의 경우 서기관은 한명도 없으며 사무관이 1명에 불과하며 6급 이하만 9명으로 타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진주시는 지방행정고시 출신 등 도와 교류되는 주요인재를 본청에 배치하지 않고 대부분 읍면동사무소 등에 보직을 내려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정영석 시장의 독선과 오만 『인사교류 단절, 우물 안 개구리』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일자 1면에 『인사교류 단절, 우물 안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진주시의 인사업무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에서는 “이는 사건과 다르다며, 인사 관련 법규상 인사교류는 본인들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교류가 저조한 것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진주시 행정의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이 좋아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원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을 시장의 독선과 오만이라고 보도한 것은 개인을 폄훼한 것이며 인사교류가 안된다고 해서 상급기관과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것 또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서 진주시는 2007년 한 해 동안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인근의 다른 시에 비해 훨씬 많은 3,746억 원을 확보한 것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관련 법규와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정상적인 인사업무를 ‘정영석 시장의 인사스타일’이라며 부정적으로

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진주시 인사교류 단절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일자 1면 『인사교류 단절, 우물 안 개구리』 제하의 기사에서 진주시가 개방적인 인사교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여 최근 경남도와의 순환 인사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폐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인사관련 법규상 인사교류는 본인들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이 좋아 타지역으로의 전출 희망자가 적어 나타난 현상을 시장의 행정스타일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인사교류가 안된다고 해서 상급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진주시는 2007년 한 해 동안 인근 다른 시에 비해 훨씬 많은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확보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8년 3월 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2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진주시 인사교류 단절 관련 반론보도문)은 통상 사용되는 제목의 활자크기로 게재하되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동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종 재 부 : 서울제1종재부

접 수 일 : 2008. 2.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기독교노조위원장, 이제는 부노조위원장 까지 고소』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5일자 종합면)

내 용 : 〈2008서울조정4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허위진단서 발급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5일자 초기 상단에 『기독교노조위원장, 동료 노조원까지 고소』이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까지 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에서 거론한 이씨는 허위진단서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부노조위원장 고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지는 지난 2월 15일자 『기독교노조위원장, 이제는 부노조위원장까지 고소』 제하의 기사에서 이○○씨가 폭행당했다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모 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정당하게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2월 28일부터 3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아뉴스〉 초기화면 상단 (첫째 날은 두 번째 위치, 둘째 날은 세 번째 위치, 셋째 날은 네 번째 위치)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신청의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클레시아뉴스 : 『“허위진단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2월 29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부친이 태안 유류 유출 피해 관련 행사에서 분신하는 모습을 모자이크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지 ○ ○ 외 2인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일보 : 『“생계막막” 태안주민 집회중 분신 ‘중태’』 제하의 사진 (2008년 2월 19일자 1면)

내 용 : 18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서 서

해 유류사고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대회가 열리던 도중 지○○(56·횃집운영) 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 자살을 시도하자 주변 동료들이 불을 끄기 위해 급히 달려들고 있다. 지씨는 천안 순천향대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신청 후 손해배상

1,000,000원 지급

□

신청인의 부친이 태안 유류 유출 피해 관련 행사에서 분신하는 모습을 모자이크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지 ○ ○ 외 2인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9.
처리결과 : 취 하

뉴시스 : 『태안주민 분신』 제하의 사진 (2008년 2월
18일 뉴시스)
내 용 : <2008서울조정4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신청 후 손해배상

1,000,000원 지급



보도내용

(가칭)조합추진위비대위가 주민들과의 마찰과 위원장 교체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가칭)원미10구역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민 ○ ○)
피신청인 : 부천포커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부천포커스 : 『뉴타운 주민 갈등 '점화'』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1일자 3면)

내 용 : 뉴타운 촉진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
내면서 각 사업구역에 내분이 일고 있다.

원미뉴타운 S구역은 지난 25일 밤 8시 운영진 회
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나타난 (가칭)
조합추진위비대위가 주민들과 충돌하는 바람에 회
의가 무산됐다.

이들은 일부 비대위에 동조하는 주민들을 동원

해 1시간 30분여 동안 회의 개최를 막았다.

정비업체 역시 비대위의 출현을 알아채고 사무
실을 폐쇄해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밖에서 대
기해야 했다.

S구역의 (가칭)추진위 임원 일부가 떨어져 나가
세운 비대위는 현재의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일처리
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위원장을 교체한 후 촉진계획 수립과정
에 있는 부천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미뉴타운대책연합회 장○○ 사무국장은 “문제
는 뉴타운 지구내 다른 구역들도 앞으로 이러한
분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S구역의 경우 기존 도정법에 따라 계획됐던 구
역에서 큰 변동이 없으나 그 외 대부분의 뉴타운
구역이 통합 또는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장 사무국장은 “구역이 변경되면 새로운 구역에서
새로운 주민들과 (가칭)추진위를 새로 만들어야 한
다”며 “이 과정에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전

투구를 벌일 것은 볼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뉴타운 주민 갈등 ‘점화’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31일자 종합면에 『뉴타운 주민 갈등 점화』이라는 제목으로 1) (가칭) 조합추진비대위가 주민들과 충돌하는 바람에 회의가 무산됐다. 2) 일부 비대위에 동조하는 주민들을 동원해 회의 개최를 막았다. 3) 정비업체 역시 비대위의 출현을 알아채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4) S구역의 (가칭)추진위 임원 일부가 떨어져 나가 세운 비대위가 현재의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5) 원미뉴타운대책연합회 장○○ 사무국장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일 것은 볼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가칭) 조합추진위원들이 현재의 구역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추진위 임원진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소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 개인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며, 현재 장○○ 씨는 정당한 절차의 추진회의에서 위원장

직위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대책연합회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장○○ 씨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역내 주민 및 조합원 대다수는 추진위 임원진의 주장에 대하여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정정 또는 반론도 수용할 수 없다.

조정 불성립 후 보도문

부천포커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6일자 3면)

내 용 : 본지 1월31일자 3면 <뉴타운 주민갈등 ‘점화’> 제하의 기사 중 원미뉴타운 S구역의 (가칭)조합추진비대위는 비대위가 아닌 정상적으로 구성된 (가칭)조합추진위원회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불완료하였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크린나라 (대표이사 임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깨끗한 청소나라’는 ‘사기나라’...하청업체도 돈 뜯겨』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9일

합의사항

•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깨끗한 청소나라’는 ‘사기나라’...하청업체도 돈 뜯겨』)을 2008년 3월 3일까지 『‘깨끗한 청소나라’, 하청대금도 체불』로 수

정하고, 아래의 보도문을 게재한다.

- 제 목 : ‘청소나라’ 관련 속보
- 내 용 : 본지의 지난 1월 29일자 『‘깨끗한 청소나라’는 ‘사기나라’...하청업체도 돈 뜯겨』 기사와 관련, ‘깨끗한 청소나라’는 내부사정으로 대금 지불이 지연되었으나 보도 후 D사에게 청소용역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3월 3일 오전 9시부터 2008년 3월 4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종합뉴스섹션 ‘주요뉴스’ 목록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며,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같은 페이지에 나오도록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3일부터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같은 페이지에 나오도록 링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속보』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3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교재안을 교육시작 닷새 전에 발표하고 교육 장소와 강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무대리 이 봉 화)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문화일보 : 『요양보호사 양성 시작부터 ‘졸속’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4일자 9면)

내 용 : 7월 시작되는 요양보호사 양성 수업 개강을 준비하던 서울 J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담당 조미연(여·40) 씨는 당초 11일 시작하려던 수업을 18일로 늦췄다. 정부의 표준교재안이 지난달 30일에서야 나왔기 때문이다. 조씨는 “정부의 표준교재

안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강사들이 교재를 연구할 시간이 없어 개강일을 일주일 늦췄다”고 말했다.

◆개강 5일 전에야 부실한 교재 내용은 정부=오는 7월부터 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 공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전국 노인복지시설에는 3만4,00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신규로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4일부터 전국에서 차례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 지침을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교육 시작 닷새 전에야 표준교재안을 내놓는 등 주먹구구식 준비를 하고 있어 교육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4일부터 교육원 수업을 시작하라고 해놓고 교재는 며칠 전

에야 내놓았다”며 “교재 검토를 못해 개강을 못하거나 교육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교육지침이 지난해 11월부터 세 번이나 바뀌는 바람에 교육원들이 우왕좌왕했다”며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요양보호사 교육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까지 신고된 109곳의 교육원 중 4일부터는 개강하는 곳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1곳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정부가 내놓은 표준교재안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의 J교육원 원장은 “정부 교재는 내용도 부실하고 피상적이어서 다른 교재를 추가로 준비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껏 정부 교재를 기다려 왔는데 이런 교재를 내놓으면 교재 때문에 수업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습교육할 곳도, 강사도 부족해=교육에 필수적인 실습 시간(80시간)을 채우기도 힘들 지경이다. 부산의 K교육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의 필수 과정인 실습을 나갈 실습기관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한 요양원에서 수십명씩 실습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 80시간 실습을 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서울의 I교육원 관계자는 “실습도 문제지만 수강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한 강사를 구하는 것도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장○○(49) 상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교재가 이제야 나오는 바람에 교육원에서 강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업이 지속될 수 있고 이 경우 능력미달의 수료생이 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교재를 잘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린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지침 역시 여러 건의사항을 받아 보완을 하느라 고쳐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2008년 2월 4일 9면에 보도한 『요양보호사 양성 시작부터 졸속』 제목의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첫째, 문화일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개강일이 2월 4일인데 개강 5일전에 교재가 나와서 개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2월 4일은 요양보호사 양성이 가능한 노인복지법령의 시행일이지 교육 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오보입니다.

둘째, 실존하지 않는 협회(요양보호사협회)와 교육기관이 아닌 자(상명대 장○○ 교수)의 의견을 마치 교육 당사자들의 절박한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여 국민들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오해토록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실습기관 및 강사가 부족하여 교육기관설립이 어렵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시 약 300개의 교육기관이 이미 실습기관과 강사를 갖추고 설치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육기관 설립에 차질을 빚는 것처럼 보도하여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번 문화일보의 보도가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일으키고 정부의 신뢰에 손상을 준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지난 2월 4일 9면 『요양보호사 양성 시작부터 졸속』 제하의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요양보호사 자격증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해왔고 현재 500여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설립돼 1만 2,000여 명이 수강 중에 있어 3월 중순에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3월 14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사회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7월부터 노인시설에 신규 3만 4,000명 필요”)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용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반론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3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영화진흥위가 정치권력과 결탁한 몇몇 영화인에 의해 장악되고, 국고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안 정 숙)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영진위, 국고지원금 전횡… 해체하라』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5일자 12면)

내 용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영화 진흥 정책을 집행해온 영화진흥위원회를 둘러싼 영화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정인엽(사진) 영화감독협회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정치권력과 결탁한 몇몇 영화인이 장악한 영화진흥위원회가 국고로 지원된 영화 자금을 전횡했다”며 “영진위는 해체되어야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영화감독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남산동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협회의 회원은 270여 명이다.

정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영화진흥공사 대신 만든 영진위가 8년 동안 2,980억 원의 돈을 썼는데 영화 진흥과 상관없이 정치적 색깔에 따라 각 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며 “공사 시절 14개였던 지원 단체가 현재는 157개”라고 말

했다.

문성근 씨가 초대 이사장을 지낸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이 8년간 13억 원을 썼는데 이는 정부 돈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한 셈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문 씨는 영진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도 영진위에서 남북영화교류추진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영진위의 상당수 위원들과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소수의 ‘친노 세력’으로 채워지고 그들이 영화계를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 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출신이자 원혜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부인인 안정숙 씨가 맡고 있다. 이현승(영화감독) 부위원장과 김동원(한국 독립영화협회 이사) 위원은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노문모)’ 회원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2) 『학진-영진-문예위 자금 ‘코드배분’ 실상 밝혀야』 제하의 사실 (2008년 1월 26일자 31면)

내 용 : 영화감독협회는 노무현 정권 5년간 권력과 결탁한 영화인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장악하고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고 어제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이로 인해 거액의 국민 세금이 ‘한국 영화진흥’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좌파 운동권을 지원하는 데 흘러들었고,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가치와 인식을 뒤집는 데 동원됐으며, 스크린쿼터 수호는 반미(反美) 선동의 명분이 됐다는 것이다.

영화감독협회의 이 같은 지적은 노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문화 예술계를 정권코드에 맞게 개편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노 정부가 집권 초기 영진위와 당시 문예진흥원이었던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를 서둘러 '접수'했던 것도 좌파 예술인들로 하여금 직접 예산을 주무르게 함으로써 문화 예술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였다.

영진위와 문예위는 문화계의 '돈줄'이다. 영진위는 세금으로 조성된 2,800억 원의 자체 기금을 운용해 각종 사업에 돈을 낸다. 문예위도 연간 1,100억 원의 세금을 예술인들에게 지원한다. 그동안 두 위원회의 지원금이 편파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 정부와 코드가 같은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소속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계속 늘어난 반면, 상대적 보수 성향의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예총) 및 산하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그에 못치는 수준으로 줄었다. 예총 소속 예술인은 120만 명이고 민예총 소속은 10만 명이다. 덩치가 12배나 큰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오히려 적었으니 차별의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다.

학계 일각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9,000억 원의 연구지원금을 배분하는 학술진흥재단(학진)이 좌파 성향이거나 노 정권 창출에 협조한 학자와 연구소에 연구비를 상대적으로 더 줬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을 집중 지원받는 단체와 기구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정권과 결탁해 특정 이념과 코드의 선전기관 노릇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욱이 권력 강화와 반미 선동을 위해 일했다니 기가 막힌다. 최근 한국 영화는 급전직하의 추락현상을 보이고 있고 순수예술은 고사(枯死) 위기다. 이는 영진위와 문예위의 파행적 운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새 정부는 진상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얼마나 편파 지원이 이뤄졌는지 밝혀내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 2008년 1월 26일자 『映振 자금 '코드배분' 실상 밝혀야』 제하의 사실(A31면)은 “노무현 정권 5년간 권력과 결탁한 영화인들이 영진위를 장악하고 총 3천억 원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 이로 인해 거액의 국민세금이 한국영화진흥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좌파 운동권을 지원하는데 흘러들었다”라는 영화감독협회의 주장을 전제하고 “이 같은 지적은 노 정부가 얼마나 집요하게 문화예술계를 정권코드에 맞게 개편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노 정부가 집권 초기 영진위를 서둘러 접수했던 것도 좌파 예술인들이 직접 예산을 주무르게 함으로써 문화예술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을 집중 지원받는 단체와 기구들이 (...) 권력 강화와 반미선동을 위해 일했다니 기가 막힌다”라고 하면서 “새 정부의 진상조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산하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승인 과정은 물론 국회의 예산·결산 의결과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한 객관적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어 영진위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에는, 영화진흥위원회 2기 위원회가 2002년 5월 28일부터 3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이미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노 정부가 집권 초기에 영진위를 서둘러 접수했고, 그런 작업을 통해(문화예술계의 일부인) 영화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동아일보 2008년 1월 25일자 A12면 『영진위 국고지원금 전횡』 기사는 “영진위가 8년 동안 2980억 원의 돈을 영화진흥과 상관없이 정치적 색깔에 따라 각 단체에 돈을 지원했다”는 영화감독협회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또 “영진위 상당수의 인사들과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소수의 ‘친노 세력’으로 채워지고 그들이 영화계를 장악했다”는 주장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진위는 8년 동안 제작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학술연구, 해외진출 등 한국영화 진흥에 필수적인 사업을 통해 모두 2,692억 원을 집행하였다. 영화감독협회가 언급한 단체 대상 지원은 95억 9천만 원 규모로, 그 중 64.8%는 영화감독협회(5억 7,500만 원) 등 1999년 영진위 출범 이전부터 지원을 받아온 14개 단체에 지원되고, 나머지 35.2%만 영진위 출범 이후 새로 지원 대상이 된 다른 71개 단체에 지원되었는데, 각 단체가 낸 사업계획의 적절성 여부가 평가기준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와 과거의 부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 차치단체장의 임명을 받아 경기영상위원회,

고양어린이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거나 맡았던 데서 보듯이 영진위 주요 인사들은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위촉된 것도 아니고 영진위는 특정 코드의 선전기관 노릇을 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논설은 언론사 의견표명이므로 정정 수용불가하고 조정대상기사는 기사에 이미 반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론보도 할 수 없다. □

인천공항 시설 주차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제보한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9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2월 4일 21:00)
내 용 : 해외로 나갈 때 인천공항 근처의 시설 주차업소에 차를 맡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엔 차량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불법업체가 상당수 있어 차를 믿고 맡긴 운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포트 : 새벽부터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차가 출국장 쪽으로 다가가자 푹말을 내보이며 주차대행을 권합니다. 시설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입니다. 공항이 지정한 공식 업체보다 서비스가 더 낫다며 손님을 끌어모읍니

다.

▷녹취 : “(주차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각자 주차타워가 다 서있어요. 다 보험되는 거고..”

실제로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말한 주차건물이 아닌, 공항 인근 주차장으로 옮겨줍니다. 말이 주차장이지, 버려진 공터나 다름없습니다. 관리인도 없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될리 없습니다.

▷주차장 업자 : “키(차열쇠)를 다섯 개인이 잃어버렸대요. 열쇠통을 누가 주워서 차를 툰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고는 많아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손해배상

1,500,000원 지급

□

신청인이 필수과목인 생물학을 이수하지 않고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9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1월 13일 21:00)
내 용 : ▷앵커 : 어머니가 딸의 편입학시험 심사위원이라면 과연 공정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를 계기로 검찰이 대학 편입학비리 수사에 나섰는데 곳곳에서 비리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략)

석연치 않은 편입학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년 전 연대 치과대학에 편입한 이 대 졸업생 김 모 씨는 필수과목인 생물학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독교와 세계문화라는 종교학과 교양과목을 생물학 유사과목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이나 생명에 대한 종교적 이해 등을 다룬 강의내용이 생물학과 이유입니다.

▷인터뷰 : 해당 교수의 재량이 크더라고요. 천지창조도 이게 생물쪽이다 또는 물리쪽이다 하면

해당교수의 확인서가 중요한 거예요.

▷기자 : 그러나 담당교수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뷰 : 내가 확인서를 해 준 거는 배운 거를 확인해 준 거고, 대체를 해 줄거나 말 거냐는 확인서와 강의내용을 보고 그분들이 결정을 했겠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3월 28일까지 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

신청인이 필수과목인 생물학을 이수하지 않고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I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R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2008서울조정49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MBC-R :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 (2008년
1월 14일 18:15)
내 용 : 〈2008서울조정49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4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금 지급〉



한마음고 학부모 대책위가 일부 교사들의 학교발전기금 불법 조성에 대해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 ○ ○ 외 4인
피신청인 : 충청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신문 : 『파행으로 치닫는 천안 한마음고』 제하
의 기사 (2008년 2월 11일자 1면)
내 용 : 충남 천안 한마음 고등학교가 최근 교
장 임면(任免)과 일부 교사들의 불법학교발전기금을
둘러싸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충남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지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새 학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도 교육청
이 교장 임면과 관련 뚜렷한 정상화 대안을 찾지
않을 경우, 학생·교사·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
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음고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8월 한마음고
재단(이하 재단)이 회계질서 문란과 감사결과에
따른 교사 징계지시를 거부한 전(前)이모 교장 직
무대리를 직위해제하면서부터다.

당시 한마음고 학부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
대위)는 전 이모 교장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었다.

재단은 이후 교장의 공석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
학교정상화를 위해 충남도 교육청, 천안교육청, 학
교홈페이지에 교장 공개 모집을 거쳐 현재의 김모
교장을 직무대리에 임명하고 충남도 교육청에 보
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충남도 교육청이 재단 측에서 공
개 선발한 김모 교장이 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규
정을 위반하고 채용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히면서 사태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강환승 학
사담당관은 “신임 김모 교장은 직무대리 자격은
있으나 공개 모집을 하지 않았고, 규정과 법률에는
없지만 충남도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한마음 고등학교 교직원만 교장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교육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공대위 측
은 “지난 2006년 6월 당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도덕적 결함이 있는 전 이모 교장 직무대리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자 도교육청은 2007년 3월 이모 교장
재임용을 받아들인 반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
된 신임 김모 교장의 직무대리 임명 보고는 반려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에서는 충남도 교육청이 한마음고 일부 교사의 불법기금 조성에 대한 감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지난해 3월 도 교육청 종합감사시 한마음고 일부 교사의 불법기금 조성에 대해 감사를 의뢰했지만 정확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 교육청에서는 불법기금 조성에 관련된 교사에게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어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공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 교육청 이동주 감사관은 “재단에서 현재 불법기금 조성과 관련해 해당 교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공대위가 일부 언론에 공개한 충남도 교육청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재단측이 고발해 주기를 바라며 불법기금 조성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서 교사의 비리를 밝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마음고 사태와 관련 주민 이모(46·천안시) 씨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한마음고의 파행적 사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건 절대 안된다”며 “도교육청과 재단, 공대위 측에서는 학교정상화를 위한 원활한 타협점을 찾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마음고 파행 사실과 달라(또는 한마음고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1일자 1면에 『교장 임면, 일부 교사들 불법학교발전기금 파행으로

치닫는 천안 한마음고』라는 제목으로 공대위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대위측 주장들은 모두 재단의 주장이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대위측에 사실확인 취재 없이 재단의 주장만을 듣고 마치 공대위측의 주장인양 기사화 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공대위측에 취재나 사실확인 없이 일방적인 기사가 나가게 되어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한마음고 파행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1일자 1면에 『교장 임면, 일부 교사들 불법학교 발전기금 파행으로 치닫는 천안 한마음고』라는 제목으로 공대위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대위측 주장들은 모두 재단의 주장이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대위 측에 사실확인 결과 취재 없이 재단의 주장만을 듣고 마치 공대위 측의 주장인양 기사화 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신문 2008년 3월 11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충남도교육청 사태해결 ‘지지부진’)의 굵은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학교발전기금을 불법으로 조성하였으며, 관련 감사 당시 협조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장 ○ ○ 외 4인
피신청인 : 충청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신문 : 『파행으로 치닫는 천안 한마음고』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1일자 1면)

내 용 : 〈2008대전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대전조정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일부 교사들 불법학교발전기금 조성 사
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1일자 1면에 『교장
임면, 일부 교사들 불법학교 발전기금 파행으로 치
닫는 천안 한마음고』라는 제목으로 한마음 고등학
교 일부 교사들이 마치 불법적으로 학교발전기금
을 조성하였고 이에 대해 공대위가 감사를 요구하
고 문제를 제기한 양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도가 나가기 전 한마음 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에게 불법학교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사
실확인 절차 없이 재단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
로 사실인 양 보도하였으며 2005년 교사들이 재단
에서 불법모금을 조성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
나 도교육청 감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
하는 충청신문 2008년 3월 11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
상기사의 소제목(충남도교육청 사태해결 ‘수수
방관’)의 굵은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
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선진화국민회의에 참여하여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농업인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농업인신문 : 『‘줄서기’ 나선 농업계 인사 ‘배신자’』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8일자 3면)

내 용 : 전국 350만 농민을 비롯해 농업에 종
사하는 모든 이들, 시민단체들까지 농촌진흥청을
존치시키고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한겨울 길바다
에서 충혈된 눈에 목청껏 울부짖었다. 현대 이를
‘포폴리즘이 난무하는 농업계’로 치부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략)

농민단체가 선진화국민회의를 이렇게 정치적 색
채의 단체로 판단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발기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창립한
선진화국민회의는 소위 ‘이명박캠프 라인’으로 암
암리에 알려진 단체다. 정권 인수단계에서 이들이
나선 것은 진실과 거리가 먼 정치권에서 즐겨 사
용하는 ‘희석 작전’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 공작으로 해석하기엔 왠지 배신감
이 느껴진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농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서다. ‘친정집’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서○○ 전 농진청장을 비롯해 이범섭 전
축협부회장, 서정의 전 한농연회장, 맹원재 전 건국
대 총장, 유동준 단미사료협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슬프지만 우리나라에 정치는 진리보다 우선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서○○ 전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 내 용 : 서○○ 전 농촌진흥청장은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면 일정 부분 상업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기초·기간연구사업 등 모든 사업이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국가경쟁력이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의 폐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농업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3일자 7면)

내 용 : 본지 2월 18일자 3면 『출서기 나선 농업계 인사 ‘배신자’』 제하의 〈초점〉 기사에 대해, 서○○ 전 농진청장이 반론보도를 요청했기에 원안대로 게재합니다.

〈반론보도문〉 서○○ 전 농촌진흥청장은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면 일정 부분 상업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기초·기간연구사업 등 모든 사업이 반드시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 국가경쟁력이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의 폐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혼소송중인 신청인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Q채널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Q채널 : 「리얼다큐 천일야화」 프로그램 (2007년 10월 22일 24:00)

내 용 : 모텔 이미지

나의 아내.. 혹은 남편의 은밀한 연애이자 아찔한 잠자리, 간통..

현장음

▷누구세요? 프론트예요.

▷야, 이 나쁜년아

▷너 지금 뭐하는 거야? 건들지마.. 악~~

지난 9월, 한 현직 판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내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간통죄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중략)

갑작스런 지영 씨의 등장에 남편도 몹시 흥분한

듯 보였다.

현장음

▷김○ : 너 이혼도장 찍는다며?

▷김○ : 너 카메라 내놔.. 차 값 왜 안 내놔?

▷김○ : 차 값을 내가 왜 줘? 너 옷도 훔쳐갔더냐?

▷내연녀에게 가는

현장음

▷김○ : 고소장 다 있으니까 연행하세요.

▷경○ : 알겠습니다.

▷김○ : 당신 흥신소야?

▷김○ : 지금 얘기할 필요 없구요, 연행하시구요

▷김○ : 여기 흥신소 와 있어요, 흥신소라고..

▷김○ : 흥신소? 체.. 데려가시라고..

▷김○ : 너 몇 달 전에 집 나갔어.. 이혼..

▷김○ : 여보세요.. 그런 얘기는 나가서 하시구요. (중략)

▷간통죄 자체가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나, 이 정도일 줄은 취재진도 윤○○ 씨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 인터뷰 : 그 정도 봤을 때에는 경찰로써 현행범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인을 안했죠? 사정을 한 상태.. 그것을 잡

지 않으면 간통이 성립이 안되요. 그게 가장 애매한 부분이에요. 음모가 떨어졌다.. 여자의 질에서 정액이 나왔다.. 남자의 사정물이 있다.. 그럼 왜 나왔나.. 시인할 거, 변명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편과 내연녀 : 간통죄 성립이 불분명해진 지금..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건 지영씨 남편이었다. 현장을

▷김○ : 결혼해 놓고서 나한테 구라치고서.. 세게 나가야 돼

▷이○ : 내가 내일 검사한테 말해줄게. 제일 잘하는 검사.. 500이면 돼

▷김○ : 아니, 제 사기 결혼했어. 완전 박살내

버릴거야. 재네 가족까지 짝 다 박살내 버릴거야.

▷나오는 아내 : 남편과 내연녀가 모텔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실제로 간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지영씨는 분명한 증거물을 확보해야만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 방송에서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이혼소송중인 남자를 만나 간통을 저질렀다고 방송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Q채널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월 22일 24:00)

내 용 : <2008서울조정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특정됐다 하기 어렵고 비중도 적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보도내용

Q채널 : 「리얼다큐 천일야화」 프로그램 (2007년 10

KBS가 승려문 화재 발생 사실을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KBS ‘승례문 화재 극장 보도’ 항의 빗발”』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2일자 25면)

내 용 : 전소 위기에도 특선영화 계속 방영

“무책임·실망” 홈페이지 비난글 쏟아져

KBS가 10일 밤 승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극장 보도로 시청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밤부터 현재까지 KBS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국보 1호가 타고 있는데 공영방송이 영화나 틀고 있다니 실망이다’ ‘국가 재난 방송사가 뒷북 보도로 일관해 무책임하다’는 등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10일 자정을 넘어 승례문이 전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시각, KBS 1·2 TV 모두 정규 편성대로 설날특선 영화를 방송하고 있었다. MBC, SBS 등 타 방송사에서는 중계차를 연결한 뉴스속보 방송이 나가고 있었다.

KBS 뉴스속보 방송의 풀 편성은 영화가 모두 끝난 밤 12시 57분부터 이뤄졌다. 그 이전에는 영화가 방송되고 있던 12시 12분에 속보 자막, 12시 35분 3분 현장 중계차 연결, 12시 42분 다시 자막 한 번을 띄웠다. 반면 MBC와 SBS는 각각 그보다 이른 밤 12시40분, 50분부터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현장 중계차를 연결, 뉴스속보 방송을 풀로 내보냈다. 화재 발생 시각은 10일 오후 8시 50분쯤이다. KBS1 TV와 MBC TV는 각각 오후 9시 37분과 27분, 메인 뉴스 말미에 첫 현장 속보를 내보냈다. SBS는 이미 8시 메인 뉴스를 마친터라 9시 54분쯤 첫 현장 속보를 내보냈다.

KBS 측은 “우리는 화재 첫 발생 보도를 오후 9시 37분쯤 내보내고, 이후에도 10시 31분, 11시 33분에 3분씩 현장 연결 속보를 내보내는 등 시시각각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보도했다. ‘늦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다만 정규 방송을 끊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KBS 승례문 화재 극장 보도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2일자 문화면에 『KBS 승례문 화재 극장 보도 항의 빗발』이라는 제목으로 MBC, SBS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뉴스속보 방송을 풀로 내보낸 것에 반하여 KBS는 정규 프로그램을 모두 방송한 이후에야 현장 중계차 연결 뉴스속보 방송을 내보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9시 메인 뉴스 말미에 속보를 내보낸 이후 22:31, 23:33, 24:35에 각 현장 중계차 연결 뉴스속보를 방송하고 MBC, SBS와 마찬가지로 24:57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뉴스속보 방송을 풀로 내보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내 용 : 본지는 2월 12일자 25면 『KBS ‘승례문 화재 극장 보도’ 항의 빗발』 제하의 기사에서 KBS가 정규 편성대로 특선영화를 방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KBS는 0시 57분부터 정규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뉴스속보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3월 14일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경향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KBS가 승례문 화재 발생 사실을 타 방송사에 비해 늦게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피신청인 : 디지털타임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취 하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디지털타임스 : 『‘KBS 승례문 화재보도’ 바로잡습
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5일자
3면)

내 용 : 본지는 2월 12일자 3면 『국보 1호보
다 영화가 중요하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MBC,
SBS는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승례문 화재 현장을
중계한 반면 KBS는 자정 넘어서까지도 정규방송
을 중단하지 않은 채 자막으로만 화재 소식을 알
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KBS는 자
정 전 2회의 스팟보도 후 자정을 넘긴 후 24시 35
분 한차례 자막과 화면을 내보냈고, 이후 24시 57
분부터는 정규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뉴스속보 방송
을 풀로 내보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

디지털타임스 : 『“국보1호 보다 영화가 중요하냐?”』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2일자 3면)

내 용 : <2008서울조정5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5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국인삼공사가 지역을 외면하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본사가 대전이 아닌 서울에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사장 전 ○ ○)

피신청인 : 충청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기사 (2008년 1월 25일자 1면)

내 용 : 한국인삼공사(사장 전○○, 이하 인삼공
사)가 대전과 서울 두 곳에 본사를 두는 등 납득
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역민들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본사는 명목상 본사일 뿐이고 실질적인 본사는 서
울이라는 지적이다.

즉, 대전에 있는 본사는 건물만 본사인 껍데기라
는 것이다.

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담배인삼공사(현 KT&G)

보도내용

충청신문 : (1) 『지역 우롱 ‘한국인삼공사’』 제하의

에서 분리해 별도의 기업으로 설립됐다.

대전 둔산동에 사옥을 마련한 인삼공사는 설립 당시부터 주요 부서인 마케팅 부문을 대전에서 두지 않고 서울에 영업소 형태로 만들어 그 당시에도 지역민들로부터 ‘대전은 빈깡통’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때 서울은 영업소라는 명칭을 썼지만 언젠가부터는 서울도 본사가 돼버렸다.

이에 대해 인삼공사 관계자는 “언제부터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전도 서울도 다 본사”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사무소에는 해외파트와 마케팅 등 영업의 핵심부서가 자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사란 그 회사의 중심이 되는 사업체가 있는 곳으로 각 회사당 1곳이 정상이다.

누군가 ‘인삼공사 본사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인삼공사의 경우에는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다’는 다소 상식밖의 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의 경우에 홈페이지(posco.co.kr)를 보면 본사는 포항(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으로 돼 있고 서울은 본사가 아닌 포스코센터(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2)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인삼공사 홈페이지에서 위치 및 연락처를 검색해 보면 본사가 대전 둔산동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코스모타워 두 곳이라고 나온다.

회사 필요에 따라서 본사가 여러 곳이 존재하는 이상한 구조가 된 셈이다.

인삼공사의 모 회사인 KT&G 홈페이지에도 계열회사를 소개하는 곳에 인삼공사 본사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6번지’로 돼 있고 서울은 본사가 아닌 그냥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15층’이라고만 돼 있다.

시민 김모 씨(45·대전 서구 둔산동)는 “인삼공사가 본사를 대전과 서울 두 곳에 두고 있는 것은 지역민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 짓”이라며 “대전이 본사라면 포스코처럼 서울은 서울센터가 돼야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실상 서울로 본사를 옮기고 싶겠지만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지 못해 대전 둔산동 건물을 본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며 “중요 핵심부서가 서울에 있고 또 지

역에서 하는 역할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차라리 본사를 서울로 옮겨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가 본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상대 사장을 만나러 둔산동 5층 임원실을 방문했지만 전 사장은 자리에 없었다.

“사장님은 대전에 몇 번이나 오시냐”고 묻자 비서는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오신다”고 답했다. 인터뷰를 하고 싶으니 정확히 오시는 날짜를 말해 달라고 하자 “오시기는 하는데 정확히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님 인터뷰를 하고 싶으면 서울 마케팅실로 연락을 하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서울 홍보실에 본사에 대해 묻자 그 관계자는 “본사가 어디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대전도 본사고 서울도 본사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스런 목소리로 답했다.

지역 주민들이 울분을 토할 만 한 일이다.

(2) 『‘인삼공사’ 지역외면 도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8일자 1면)

내 용 : 속보>한국인삼공사(사장 전○○, 이하 인삼공사)가 대전과 서울 두 곳에 본사를 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지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을 위한 기여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인삼공사가 그동안 마케팅을 위해 펼쳤던 다양한 행사들이 본사가 있는 이곳 대전지역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도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삼공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펼쳤던 ‘정관장 Beauty & Health 페스티벌’은 대전소재 백화점이 아닌 서울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10층 문화홀에서 열렸다.

또 정관장을 알리기 위한 ‘제3회 정관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도 대전에 있는 유성CC는 배제한 채 경기도 이천 지산CC를 비롯해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지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개최됐다.

특히 정관장과 함께하는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면서도 접수처가 대전이 아닌 서울로 정해 역시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올해 초 제2기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하면서 정작 본사가 있는 대전은 쏙 빼 놓은채 서울 수도권과 부산 경남지역에서만 선발했다는 것이다.

인삼공사는 주부모니터단을 모집, 10만 원 상당의 정관장 제품을 비롯해 7만 원이라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하면서 시장성이 적다는 이유로 지역을 외면하고 있어 대전충청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역 우롱 ‘한국인삼공사’ (1월 25일)』 『인삼공사 지역외면 도 넘었다(1월 28일)』는 기사는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5일자 1면에 『지역 우롱 ‘한국인삼공사’』 또한 1월 28일자 1면에 『인삼공사 지역외면 도 넘었다』라는 제목으로 (주)한국인삼공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주)한국인삼공사는 대전, 충남 지역에 본사와 공장(충남 부여 소재)을 두고 고용

창출과 세금납부를 해 대전에 실질적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태안 기름 유출 피해 지역 봉사활동, 대전 지역 내 독거노인 가정과 불우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2008년 1월 25일자 『지역 우롱 ‘한국인삼공사’』, 1월 28일자 『인삼공사 지역외면 도 넘었다』 기사 중 위 표현은 취재기자의 평가가 가미된 기사였으며 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신문 2008년 3월 10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대전 본사있는데도...)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의 굵은체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판(www.dailycc.co.kr) 2008년 1월 25일자, 1월 28일자에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게시된 위 보도내용 전부를 2008년 3월 10일 15시부터 삭제한다. □

곡성군이 공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진입로 확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수탁업체를 감싸고 일부 공무원이 과도하게 진입로 확보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곡성군(군수 조 형 래)

피신청인 : 호남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호남신문 : (1) 『곡성군 ‘무모한 배짱 행정’』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2일자 1면)

내 용 : 곡성군이 ‘공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아직 확보되지도 않은 진입도로에 대해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을 용역중이어서 ‘무모한 배짱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군은 노인병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 S의료재단’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지나친 수탁업체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노인병원 건립 입찰공고를 통해 기본 설계 및 실시계획을 용역 발주하면서 수탁기관은 수탁 신청시 제출한 부지를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지체 없이 매입해 기부채납을 하고 이같은 사항을 미이행시 선정을 취소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군은 그러나 수탁기관인 S의료법인이 아직까지 21일 현재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곡성군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수탁업체가 나서야 함에도 군청 직원들이 토지 주인을 수차례 만나는가 하면 해당 면장까지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탁기관인 S의료법인은 진입도로 매입을 위해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토지 주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S의료원은 당초 진입로 폭 3~4m를 6~8m로 확장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진입로 확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후략)

(2) 『수탁업체 미동도 않는데 공무원들 호들갑 ‘왜?’』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5일자 1면)
내 용 : 〈속보〉 곡성군이 검면에 추진중인 ‘공립 노인전문병원’ 건립(본보 2월 22일자 1면)과 관련해 수탁기관인 S의료재단이 토지주인을 한번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면장과 일부 공무원들이 토지 주인에게 땅을 팔 것을 종용해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곡성군 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2일자 1면에 곡성군 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 보도를 하면서 수탁자인 ‘S의료법인’이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탁신청서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탁법인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진입로 기부채납은 이행협약서에 정한 바와 같이 곡성군의 병원신축공사 완료시까지 이행하면 되며, 현재 진입로 토지매입 중에 있고 건축일정에 지장이 없는 현재로서는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탁업체 감싸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매입을 “S의료재단”이 할 일을 공무원이 나서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과 관련한 2월 25일자 1면 기사에서 해당면장과 일부공무원이 토지 주인에게 땅을 팔 것을 과도하게 종용했다고 한 데 대하여는 사실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22일자 1면 『곡성군 ‘무모한 배짱 행정’』, 2월 25일자 1면 『수탁업체 미동도 않는데 공무원들 호들갑 ‘왜?’』 제하의 기사에서 곡성군의 ‘공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S재단이 아직까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진입로 기부채납은 이행협약서에 정한 바와 같이 곡성군의 병원신축공사 완료시까지 이행하면 되고, 현재 진입로 부지를 매입 중에 있어 건축일정에도 지장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호남신문 2008년 3월 16일까지 1면에 상가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37억여 원 예산들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호남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4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전남대학병원 식당 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고용승계과정에서 직원 중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13명을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두메푸드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광주드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광주드림 : 『고용승계서 조합원만 배제?』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2일자 4면)
내 용 : 화순 전남대병원 식당에서 일했던 직원 13명이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집단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고된 13명이 모두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조합원이기 때문. 또 하청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로 갈등이 잦았던 전남대병

원도 이번 갈등으로 또 다시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화순전남대병원 식당운영업체 직원 13명 해고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월 11일자 사회면에 ‘고용승계서 조합원만 배제?’라는 제목 밑에 ‘화순전남대병원 식당운영업체 직원 13명 해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화순전남대병원 식당운영업체는 직원 13명을 채용 및 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워 세금으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오 세 훈)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세금으로 골프 배우는 서울시』 제하의 기

사 (2008년 2월 27일자 10면)

내 용 : ‘체력단련’ 명목 1인 33만 원 골프연습장 계약

시민단체 “서민 박탈감” ...市 “지원대상 아니다”
서울시가 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워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인근 ㄱ피트니스클럽과 계약을 맺고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골프연습장 이용자를 모집중이다.

서울시는 이곳 골프연습장 3개월 이용료를 5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34% 할인해 이중 20만 원을 상·하반기 2차례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 선착순으로 30명의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는 체력단련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내세워 올해 처음으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시비 지원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헬스·수영·요가 등 3개 종목에 체력단련비를 지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경향신문은 2008년 2월 27일자 『세금으로 골프 배우는 서울시』란 제목으로 서울시가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직원 체력지원비 지원 항목에 포함시켰으며, 이를 위해 골프연습장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여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정정 보도를 하며,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서울시 체력단련 알립니다
- 내 용 : 경향신문 2월 27일 및 28일자 10면 서울시 기사와 관련,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체력단련비는 수영 헬스 등 기초체력 증진분야만 해당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청사 건립으로 체력 단련시설이 부족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실이 잘못 알려졌다면서 골프연습장은 개인부담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3월 20일까지 경향신문 2면 내지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지우개 표시)'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기일까지 2월 27일자 <세금으로 골프 배우는 서울시> 및 2월 28일자 <‘세금

골프’ 서울시 이번엔 거짓말 해명> 기사를 경향닷컴 및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란에서 삭제한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향후 3개월간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인터넷 웹사이트(타 매체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요청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삭제하도록 노력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27일 및 28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오세훈 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에게 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건전한 감시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보도한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서울시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특히 서울시 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분들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15일까지 서울시 행정국 또는 행정국 소속 인력정책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각종 행사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국 또는 인력정책과의 계획 등을 취재·보도하되, 행정국장 또는 인력정책과장의 코멘트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협조 및 협의토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모든 사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2월 27일 및 28일 10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운영중인 영어체험시설인 엘리스파크가 서초구에서 만든 시설로 하루 이용자가 당초 예상의 10%선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화이트넥스트

(대표이사 조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2.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서울시 자치구들의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자치구 운영의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예를 <엘리스파크>를 언급하며, 서초구가 만든 <엘리스파크>가 유명무실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스파크>는 “서초구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조성, 운영하는 <엘리스파크>이며, 고객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 『서울 자치구들 영어교육 몰입』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7일자 10면)

내 용 : 차기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과 맞물려 서울의 자치구들에도 영어교육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관내 학교의 원어민 교사 충원을 위한 교육 예산 배정이나 구민회관 문화교실 내 영어 강좌 개설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지원해 오던 자치구들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자치구들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이 영어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오히려 영어 사교육 바람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양질의 원어민 교사 공급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없이 일회성 사업에 그칠 우려도 높다.

실제 2005년 11월 서초구가 양재동 시민의 숲에 만든 영어체험 시설인 엘리스파크는 하루 이용자가 당초 예상의 10%선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지자체 영어몰입교육의 문제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국민일보 지난 2월 17일자 국민일보기사와 쿠키뉴스 지난 2월 17일자 쿠키뉴스 사회면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보도를 하되, 엘리스파크의 설립취지, 설립시기, 현재 운영중인 주된 프로그램, 이용안내 및 화이트넥스트측의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국민일보에 위 항의 보도를 함과 아울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쿠키뉴스(www.kukinews.com)에도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아울러 쿠키뉴스가 기사를 제공하는 각종 인터넷포털에도 같은 기사를 표출한다.

• 피신청인은 국민일보 및 쿠키뉴스 제공으로 네이버 등 각종 인터넷포털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서울 자치구들 영어교육 몰입”)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사항을 2008년 3월 31일까지, 삭제사항을 3월 10일 정오까지 이행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모든사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영어캠프로 발길 물린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4일자 10면)

내 용 : 영어 공교육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어마을 단체입소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단위 방문객 수도 늘어나는 등 영어체험시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중략)

이는 재미와 학습을 겸비한 영어마을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시스템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병정과 하얀 토끼와 시계, 소녀 엘리스 등 마치 동화속 세상을 살아있는 학습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엘리스파크’에는 주말이면 수백 명의 가족단위 체험객이 몰리고 있다.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스태프의 인

솔 아래 100% 영어로 진행된다. 체험과 놀이를 바탕으로 한바탕 신나게 놀다 보면 아이들은 영어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득을 하게 된다. 어색해하던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외국인을 스스럼없이 대하게 된다.

지난 22일 김윤섭(10)·준섭(5) 형제와 함께 엘리스파크를 찾은 이명주(37) 씨는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해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 『잇단 영어 공교육 강화 발언에 영어마을 인기』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3일자 17:37)

내 용 : <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소속 정당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천탈락예정자로 분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광 철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세계일보 : 『낙선명단 윤곽...호남의원 ‘발칵’』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3일자 6면)

내 용 : 통합민주당 공천 뇌관인 ‘호남권 의원 30% 낙천’ 대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민주당의 호남지역 의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의원 중 지병문(광주남), 김태홍(광주북을), 김홍업 의원(전남 무안 신안)이, 전북지역의 장영달(전주 완산갑), 이광철(전주 완산을), 한병도 의원(익산갑)이 낙천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하나(전남 해남 진도 완도)

로 통합됨에 따라 이영호(강진 완도), 채일병 의원(해남 진도) 등 한 명도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통합민주당 이광철 의원 공천탈락 예정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3일자 6면에 “민주, 낙천명단 윤곽...호남의원 ‘발칵’”이라는 제목으로 이광철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통합민주당의 낙천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이 기사에 언급된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세계일보 : 『사과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2일자 2면)

내 용 : 본지는 2008년 3월 3일자 6면 “민주, 낙천명단 윤곽… 호남의원 ‘발각’” 제하의 기사에서 본지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공천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호남지역 공천탈락 예상의원 명단을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호남의원 평가기초자료가 공천심

사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이 공식 발표한 자료가 아니었음에도 ‘지역구 의원 평가결과 도표’를 게재하고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당이 발표한 공식 자료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 김태홍 의원 등 관계된 후보예정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

대학 강사인 신청인이 재임용 탈락 후 이의신청하면서 허위로 논문게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KBS-1R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R : 「뉴스」 프로그램 (2008년 1월 11일 12:30)

내 용 : 허위 논문게재 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한 대학 강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지방경찰청은 연구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이의 신청과정에 허위 논문 게재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인천 모 대학 강사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재임용심사에서 떨어진 뒤 모 학회 출판이사인 같은 대학 이모 교수를 통해 허위로 논문게재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논문게재증명서 허위 아닌 것으로 밝혀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에 “허위 논문게재증명 낸 대학 강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인천 모 대학 최모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이의 신청과정에 허위

논문게재증명서를 제출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 모 대학 최모 교수가 제출한 논문게재증명서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대학측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최모 교수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월 11일자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연구업적 역시 2년간 논문 총6편, 학술대회 발표 논문 총6편으로 모두 12편의 실적이 있었으며, 이는 대학이 요구하는 2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써 실적 역시 충분했으나, 대학측의 조직적인 심사평 조작에 의한 재임용탈락 등의 부당한 행정 과정이 오히려 현재 인천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인천 모 대학 교수 ‘허위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혐의 벗어
- 내 용 : 인천지검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허위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대학 측에 의해 고발된 인천 모 대학 최모 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 교수가 제출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가 재임용 심사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교수는 관련 학회에서 발급받은 정식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으며, 임용기간에 발표한 연구논문 편수도 대학 측의 요구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신청인은 KBS 홈페이지(<http://www.kbs.co.kr>) 뉴스 사회면에 2008년 3월 21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

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 B S : 『인천 모 대학 교수 ‘허위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 혐의 벗어』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8일자 KBS 홈페이지)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대학 강사인 신청인이 재임용 탈락 후 이의신청하면서 허위로 논문게재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5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2008서울조정5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58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인천 A대학 교수 ‘허위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혐의 벗어』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4일자 17:1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연합뉴스 : 『허위 논문증명서 제출한 전 대학강사 입건』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5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진주시가 경남일보의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진주시 (시장 정영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

보도내용

경남일보 : 『이번엔 광고주 탄압』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0일자 1면)

내 용 : ‘정영석 진주시장의 독선적 전횡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정영석 진주시장의 공권력을 동원한 경남일보 탄압이 40여일 째 계속되면서 경남일보 절독 강요와 음해성 선전·선동에 이어 이번에는 광고주에 대한 협박성 광고중단 요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광고주 탄압은 진주시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기업체나 업소는 물론 진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을 동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광고주를 대상으로 협박성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서는 신규 광고가 게재되면 당일 즉시 관련 부서나 환경·위생 부서의 공무원이 광고주를 방문, 광고게재 경위 파악과 함께 광고 중단을 은근히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광고중단 요구가 목살될 경우에 대비해 주민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예고없이 환경시설이나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수법을 동원하는 등 전형적인 조폭적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마치 위생검사나 환경시설 단속을 실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징벌조치를 내릴 듯한 태도를 취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본보에 3~10년 이상 장기간 영업광고를 하고 있는 기업체와 음식점, 자영업체를 파악, 노골적인 광고중단을 요구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손해를 입힐 것 같은 언행으로 더 이상 광고를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경남일보는 지난 2월 20일자 1면에 “이번엔 광고주 탄압”이란 제목과 “게재 중단요구 목살때 ‘위생점검’ 협박 일삼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진주시 공무원이 음식점 등에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마치 위생검사를 실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징벌조치를 내릴 듯한 조폭적 협박태도를 취해 노골적으로 광고를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진주시청 공무원들이 기업체나 업소를 다니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협박성 경남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을 한 적이 없으며, 특히, 환경·위생부서 담당공무원들은 환경관련법과 위생관련법령에 의거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환경 및 위생시설을 찾아다니면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 하였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예고없이 환경시설 단속이나 위생점검을 통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취하거나 광고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 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진주시 공무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반론 수용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여론을 오토할 가능성이 있어 반론을 수용할 수 없음. □

경남일보 절독 파문과 관련, 진주시공무원들이 경상남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진주시 (시장 정 영 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남일보 : 『道, ‘본지 절독보고’ 공무원 경고』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5일자 1면)

내 용 : 경남도가 진주시의 ‘경남일보 절독’ 압력 행사 등 본지 탄압 ‘1일 활동 상황 보고서’ 파문과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공무원으로서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규정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경남도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무를 벗어난 신문 절독 등 언론탄압 행위를 계속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법률적 검토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강력한 문책과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道, ‘본지절독보고’ 공무원경고
- 내 용 : 본 신문은 08년 2월 15일자 1면에 “道, ‘본지절독보고’ 공무원경고” 제하의 기사에서 내부문건(1일활동상황) 경남일보 유출과 관련 경남도가 관련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진주시가 언론탄압 보고서작성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 엄중 경고를 하고 진주시에 주의 조치했다 라는 취지로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내부문건(1일 활동상황)은 작성 명의인이나 결재자가 없고 내용상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행정내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문건으로 진주시를 비방할 목적으로 경남일보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입수하여 그 내용상 모순과 오류가 많아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내부문건에 적시된 내용을 과장하여 “언론탄압”이라는 허위 존재를 조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보도이며, 또한 진주시의 경우 유출된 내부문건의 내용과 같은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경남일보 절독관련 활동은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한 내부문건에 대하여 경남도가 실태조사나 확인을 하였거나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고와 진주시에 대한 주의조치를 한 사실은 없으며, 이러한 경남일보의 내부문건에 대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수경위를 밝히기 위해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요청을 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본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남일보의 보도 내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게재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경남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사화한 것으로써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므로 반론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진주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경상남도로부터 특별 복무기강 점검을 받게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청인 : 진주시 (시장 정영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재부 : 경남중재부

접수일 : 2008. 3. 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남일보 : 『전환기 공직기강 해이 다잡는다』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7일 1면)

내 용 : 道, 진주시청 공무원 특별점검·관리강화 복무기강 점검단 구성 총선개입 등 차단
행정자치부와 경남도는 새정부 출범과 4. 9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도는 김태호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복무기강 확립반 등 5개반 27명의 ‘복무기강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경남도는 최근 공직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각종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하고 있는 진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무기강을 점검, 확립하는 동시에 특정 간부공무원들의 총선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전환기 공직기강 해이 다잡는다
- 내 용 : 본 신문은 08년 2월 27일자 1면 부제목에 “道, 진주시청 공무원 특별점검·관리강화”라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 “특히 경남도는 진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복무기강을 점검·확립하는 동시에 특정 간부공무원들의 총선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

라고 보도 하였는데, 이는 다가오는 4.9총선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와 도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불특정다수 공무원들의 선거중립견지와 선거개입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치루기 위한 조치인데도 마치 진주시 공무원들이 4.9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 공직자로서 기강해이 및 불미스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어 경남도에서 진주시 공무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복무기강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그릇된 사실을 부각시킨 것으로 이는 자칫 독자들에게 진주시 공무원들의 나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올바르지 않은 보도내용입니다.

이러한 경남일보의 구체적 정황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왜곡보도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자 반론을 보도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경남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가지고 기사화한 것으로써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므로 반론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신청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일간스포츠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간스포츠 : 『이○○ vs 네티즌 ‘비방댓글 2R’』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12일자 21면)

내 용 : 이○○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네티

즌과 법정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은 지난 7월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해당 네티즌이 댓글의 진실 여부를 직접 입증하며 맞대응에 나서 연예인과 네티즌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초유의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측에 고소당한 네티즌은 40대 박모 씨와 50대 유모 씨다. 이들은 올해 초 인터넷에 폭행사건과 관련한 이○○ 측 주장 중 의문점을 지적하는 댓글을 올렸고, 이○○ 측은 경찰 진정을 거쳐 이들을 각각 23개와 22개 항목에 대해 고소했다. 그러나 박씨와 유씨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아 검찰에 제출하며 맞대응해 유씨는 모두, 박씨는 22

개 항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욕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씨는 “지난 1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을 당시 이○○ 측에 댓글을 올린 취지가 비방이 아님을 해명했다. 그러나 이○○ 측이 고소를 진행해 나 역시 자기방어 차원에서 댓글의 진실을 입증해 상당 부분 무혐의를 인정받았다. 네티즌이 아무런 생각없이 비방이나 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을 올렸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7년 12월 12일자 제 21면에 『이○○ vs 네티즌 ‘비방댓글 2R’』라는 제목으로 이○○ 측에 고소당한 네티즌은 40대 박모 씨와 50대 유모 씨다. 그러나 “박씨와 유씨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아 검찰에 제출하며 맞대응해 유씨는 모두, 박씨는 22개 항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댓글의 진실을 입증해 상당부분 무혐의를 인정받았다.”는 박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씨에 대해 비방댓글을 올린 유씨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며, 또 다른 비방댓글을 올린 박씨는 5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

으므로 이 점이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2007년 12월 12일자 21면 「이○○ vs 네티즌 ‘비방댓글 2R’」 제하의 기사에서 네티즌 박모 씨와 유모 씨가 텔런트 이○○ 씨에 대한 비방댓글을 올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유모 씨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욕죄로 기소되었으며, 박모 씨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스포츠〉 엔터테인먼트면에 2008년 3월 14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일간스포츠〉 2008년 3월 7일자 12면 ‘이○○, 악성댓글 조작 증거 없어’ 제하의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일간스포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간스포츠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4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공천에서 탈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0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송 영 선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집 수 일 : 2008. 3.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테스크」 프로그램 (2008년 3월 1일 21:00)

내 용 : ▷김주하 앵커 : 한나라당 공천심사가 중반전을 지나면서 현역의원들이 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비례대표 의원들이지만, 다음 주에는 지역구 의원들의 탈락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기자입니다.

어제 세 명의 현역의원이 탈락한 데 이어 오늘은 송영선 의원이 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계파 별로는 박근혜계가 세 명, 이명박계 한명입니다. 탈락한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희 의원 (비례대표) : “정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희망에 부풀어 있고 주변에서 축하전화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사악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당내에서는 73세의 고령인 이상득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됐으니, 다른 지역 물갈이를 통해서라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공천자를 확정하는 충청, 영남권 심사에서는 지역구 중진 의원들의 탈락이 본격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보류된 수도권과 강원도 경합지역은 통합민주당 예상후보와의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까지 본 뒤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와 중구, 또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은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공천 신청자와 상관없이 외부 영입을 통한 공천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나라당 물갈이 시작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1일자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한나라당 물갈이 시작”이라는 제

목으로 한나라당 공천심사 과정중 송영선 의원이 탈락 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 하였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한나라당 공천과 4·9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송영선 의원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가중한 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회에 사실 확인 결과 “안양동안(갑)지역의 경우 공천을 신청한 송 의원은 다른 예비후보와 함께 추가여론조사를 거쳐 공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 번, 부정확한 사실을 보도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MBC-TV : 「MBC 뉴스와 경제」 프로그램 (2008년 3월 7일 12:00)

「5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3월 7일 17:00)

내 용 : ▷앵커 : 저희 문화방송은 지난 1일 뉴스데스크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구는 한나라당이 추가 여론조사를 통한 최종 후보 선정지역으로 결정한 곳으로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이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갈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받았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2

청 구 명 : 추후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4.

처리결과 : 조정성립(추후)

조정불성립결정(손배)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2008년 1월

16일 08:30)

내 용 : 십대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군고구마 통을 빌려줘서 학생들에게 폭행과 협박으로 상납금을 받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이 무서워서 40여 일동안 신고도 못하고 이일을 계속 해왔는지 만나봤습니다.

방학때면 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학생들 범죄에 표적이 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청소년을 울리는 공갈폭행등 각종 범죄 실체를 고발합니다. 지난 14일 청소년에게 군고구마장사를 시켜 돈을 뜯어낸 피해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전과 13범 20대 초반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피해자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군고구마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모 군 일행에게 군고구마통 6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자릿세며 보호비 명목으로 통 한개당 매일 5만 원씩 현금을 갈취해 온 것입니다. 피해청소년을 만나 당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한달이 넘도록 앵벌이와 다름없도록 장사를 해야했다는 김군. 김군일행은 하루도 빠짐없이 상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정모 씨의 폭력 공갈 상해 부분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8년 1월 16일 아침 『생방송 오늘 아침』에, 군고구마 노예생활 폭력 갈취 공갈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남부 경찰서가 정모 씨를 공갈, 폭력,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동부검찰청에서 수사결과 정모 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2

월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군고구마 앵벌이” 갈취 무혐의 처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16일 “충격 10대 청소년에게 군고구마 앵벌이를”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남부 경찰서가 정모 씨를 공갈, 협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결과 정모 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21일자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시간에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 내용은 방송 진행자가 낭독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2008년 3월 21일 08: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손해할 수 없다. ☐

강릉영동대학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도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지사를 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강릉영동대학 (학장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9시 뉴스」 프로그램 (2008년 2월 14일 21:00)

내 용 : 〈앵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1년 가까이 해외 도피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이 설립한 대학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학교 운영에도 여전히 개입하고 있습니다. 엄〇〇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천 2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4년째 고액 체납자 부동의 2위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정 씨는 지난해 자신이 설립한 강릉영동대학의 교비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병을 치료한다며 해외로 나가 1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 씨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정태수 씨 카자흐스탄 현지 통역 담당 : (정 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나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건강해 보이셨어요.” 정 씨의 며느리가 학장으로 있는 강릉영동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지난해 가을 정 씨의 도피처인 카자흐스탄에 뜬금없이 해외지사를 만들었습니다.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게 겉으로 내세운 이유지만 현지에 사무실도 없고 지사를 통해 유학생을 유치한 적도 없습니다. 더욱이 해외지사에 파견된 직원 2명 가운데 한 명은 정 씨의 오랜 측근이고, 나머지 1명은 유치업무와 관련 없는 정 씨의 전속 간호사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정태수 씨 카자흐스탄 현지 통역 담당 : (정씨와 간호사들이 항상 같이 계셨나요?) “예, 약도 드리고 필요한 거 챙겨 드리고...” 지사 운영비와 인건비는 전액 대학에서 지불됐습니다. 대학 측은 정 씨에게 간호사를 파견한 것은 인정했지만 해외지사는 정 씨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강릉영동대 기획실 관계자 : (유치지사하고 정 전 회장하고 관련성이 있습니까?) “관련성이 전혀 없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내 용 : KBS-TV는 2008년 2월 14일 저녁 9시 『KBS 뉴스』에서 “정태수 전 회장, 교비로 해외 도피 생활”이란 제목으로 강릉영동대학은 대학 설립자인 정태수씨를 위하여 정씨의 해외 도피처인 카자흐스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지사를 설립하고 비용을 들여 직원을 파견해서 정씨를 돌보게 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자인 정씨의 생활비로 지난 5년간 매년 20억 내지 30억 원의 교비를 무단으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릉영동대학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반론내용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강릉영동대학은 2006년부터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중국, 베트남, 중앙아시아권 학교와 협정을 체결하고 학생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데 그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에 대학의 해외유학생유치지사를 설치하고 대학소개 및 모집요강을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1명의 직원을 파견한 바는 있으나 정태수씨의 활동과 간호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교비 20억 내지 30억 원을 정태수 전회장의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의 예산 결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 그 집행결과를 매년 공개, 비치하고 있고, 작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에 대한 회계감사 때 지난 3년간의 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지 아니하여 부당한 교비지출 사실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영동대학의 반론내용을 방송하여 드렸습니다. □

신청인 재단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선한목자재단 (이사장 한 ○ ○)

피신청인 : 한겨레

종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장애수당·국고보조금은 재단 ‘쌔깃돈’』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4일자 13면)

내 용 : 장애인, 노인 등 오갈 데 없는 소외계층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리와 인권 침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재단은 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장애수당마저 빼돌려 배를 불린 사실이 적발됐다. (중략)

국고보조금 맘대로 쓰고=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의 사례는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이 어떻게 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재단은 2006년 7월 경기 가평군에 중증장애인 시설인 가평 루디아의 집을 신축하면서 주방시설 등을 구입한다며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을 신청했고, 관할구청인 서울 송파구청은 신청한 액수 그대로 지원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미 구입한 주방장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렸다.

또 같은 해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후원받은 8천만 원 가량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산 점자장비를 다시 산 것처럼 속인 뒤 가평 루디아의 집 건축비로 쓴 것이다.

재단 산하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동원해 수익 사업을 하면서, 정작 발생한 수입은 재단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송파구청은 “복지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약손지압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2천만 원 가량을 재단이 가로챘다”고 밝혔다. 약손지압 사업에 참여한 한 시각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것도 비참하지만, 우리 몸이 재단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몸서리쳐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석 재단 상임이사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선한목자재단 재정비리 혐의 사실과 달라(또는 선한목자재단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4일자 사회면에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 장애수당·국고보조금은 재단 ‘쌔깃돈’”이라는 제목으로 선한목자재단이 대단한 횡령을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으나, 재단은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합니다.

첫째, “재단은 이미 구입한 주방장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렸다”라고 하여 지원금을 횡령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가평 루디아의 집 조기 개원을 앞두고, 물품장비의 선 구입 후 지원금 요청 방법을 취한 사항으로 횡령과는 거리가 먼 사항을 알려왔습니다.

둘째, “또 같은 해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후원받은 8천만 원 가량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산 점자장비를 다시 산 것처럼 속인 뒤 가평 루디아의 집 건축비로 쓴 것이다.”라고 하여 후원금에 관하여 사기와 횡령을 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후원금은 후원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바, 라이온스클럽 후원금은 애초부터 후원자의 후원목적인 가평 루디아의 집 건축비용으로 지원한 것임을 후원자가 확인한 바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셋째, “송파구청은 “복지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약손지압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2천만 원 가량을 재단이 가로챘다”고 밝혔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재단의 유일한 수익사업용인 송파구 삼전동 109번지 건물 1층에 대해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의 약손지압 프로그램을 위하여 임대해 준 것이며, 2년간 수익금의 50%인 8백 8십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송파구청은 보도내용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신 사실이 없으며, 또한 수익금은 정상적인 임대 수입임을 밝혀왔습니다.

넷째, “서울시와 송파구는 뒤늦게 다시 감사에 나서 대부분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서울시 송파구가 혐의 내용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2008년 2월 4일 사회면 “장애수당 국고 보조금은 재단 ‘쌈짓돈’” 기사 관련 = 본지는 선한목자재단이 중증장애인 시설인 루디아의 집을 신축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점자장비 구입을 위한 후원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재단 산하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금도 가로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한목자재단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후원금은 본연의 후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의 수익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수입의 50%를 임대료로 받은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3월 27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한겨레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 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소방서가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에 대해 형식적인 소방점검을 하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남부소방서 (서장 정 광 석)

피신청인 : 시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시민일보 : 『수원남부소방서-갤러리아 百 유착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5일자 19면)

내 용 : 수원남부소방서의 이같은 행태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연말연시와 세일행사때 마다 피난통로의 일부 구간을 막고 창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주고 있어 유착의혹을 질게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남부소방서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경기도로부터 “갤러리아 백화점으로부터 일

부 선물세트를 제공 받아” 중징계까지 받아왔음에도 남부소방서의 이같은 행태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난 2월 소방방재청장이 갤러리아 백화점을 방문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때 갤러리아 백화점은 4, 5, 6층 건물의 비상구를 모조리 치워 났으나 일주일만 채 지나기도 전에 전과 같이 백화점 내의 물건들을 다시 적재했다.

그럼에도 남부소방서가 이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다. 특히 백화점내의 1층 방연시설은 방연 시설물이 천장으로부터 일정높이 만큼 내려오게 되어 있으나 지난해 연말부터 이에 관한 지적이나 단속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층 무빙워크 옆의 방연시설문은 아예 광고판으로 도배되어 작동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며 시민들은 그 문의 용도가 광고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정도이나 관할 남부소방서가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 단속된 사항을 소방관련 업체로부터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고 만 할뿐 실제적인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피난통로 일부구간 창고로 둔갑한 것 “목인” 수원남부소방서-갤러리아백화점 유착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3월 5일자 사회면(19

면)에 피난통로 일부구간 창고로 둔갑한 것 “목인” 수원남부소방서-갤러리아백화점 유착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수원남부소방서가 수원소재 갤러리아백화점과 유착관계 의혹이 있고 형식적인 점검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2월 28일 (목) 및 3월 5일 현지 확인 결과 1층 방연시설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3층 무빙워크와 방연시설문 광고판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지난 2월 소방방재청장이 갤러리아를 방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장흥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 ○ ○

피신청인 : 호남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호남신문 : 『특정후보 겨냥 비방 난무 과열·혼탁 양상으로 번져』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2일자 1면)

내 용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간 공방이 고소사태로 까지 번져 과열 혼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비방전은 건전한 선거문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는 6일 선거를 치르는 정남진 장흥농협의 경우 현 조합장 고모 씨(52)가 자신을 비방한 혐의로 특정 신문사 간부 주모 씨(50)를 1일 장흥경찰에 고소했다.

고 조합장은 고소장에서 광주의 한 일간지 간부로 재직중인 주씨가 6일 치러지는 정남진 장흥농협 조합장 선거에 개입,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고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6년 호남일보 4월 21일자, 전광일보 7월 6일자가 주씨 명의로 기사화, 현 조합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조합원들의 표심을 자극해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명예를 심하게 훼손 당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조합장에 따르면 주씨 자신이 기사화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잘 알고 있으면서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 또다시 ‘기사화한 의도는 공익성을 현저하게 상실, 비방하여 낙선시킬 목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고 조합장은 유치농협 본관신축과 표고버섯 집하장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결의서에 명시된 대로 장흥지역 건설사에 수의계약 하도록 한 사실까지 주씨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3번째 보도를 한 이유는 선거 개입의 증거라고 거듭 주장했다.

더구나 주씨는 지난달 31일 장흥군 관내에 모 일간지가 배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로 지목 되고 있는 장흥읍 소재 모 다방에 오후 3시께 신문 200부를 전달한 사실까지 확

인돼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고 조합장이 지난 추석때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했는지 여부를 주씨가 직접 조사까지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조합장 부인이 사채놀이를 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조합장은 고향의 젊은 사람들이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해 부인이 돈을 차용해 주고 이자 한푼 받지 않았는데 사채놀이를 한 것처럼 주씨가 매도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한편 주씨는 보도와 관련 “호남일보에 근무하면서 조합장이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서 악감정이 남아 있어서 보도를 한 것이며 현 조합장은 상대 후보자 측의 사주를 받는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2007년 11월 2일자 1면 ‘특정후보 겨냥 비방 난무’ 제하의 기사에서 정남진 장흥농협 조합장 고○○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을 담은 고소장을 인용, 보도하여 전 대한일보 편집국장 주○○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취재를 목적으로 주○○ 씨와 전화통화나 직접적인 대화를 한 사실이 없으나 마치 대면 취재하여 멘트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언론인으로서 한없는 자부심으로 바른 길만을 고집해 온 주○○ 씨의 명예와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한 점을 인정하며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의 조정결과에 따라 11월 2일자 1면 ‘특정후보 겨냥 비방 난무’ 제하의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지난 2007년 11월 2일자 1면 “특정 후보 겨냥 비방 난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 대한일보 편집국장 주○○ 씨는 정남진 장흥농협의 고 조합장이 자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취하되었고, 고 조합장을 상대로 한 자신의 무고 등 고소사건은 현재 일부 기소 의견, 일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호남신문 1면에 상자기사로 2008년 3월 24일까지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오는 6일 치러지는...)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청인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후속보도를 즉시 게재하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호남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1일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필리핀에 설립된 신청인 학교가 등록금을 더 챙기려고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낙제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칼로스엠에이대학 (총장 이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학비 더 챙기려 학생들 고의 낙제”』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5일자 12면)

내 용 : 지난해 허위 졸업장 발급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필리핀의 바기오 예술신학대학이 이번엔 재학생들로부터 고소당했다. 학생들은 의도적으로 낙제시켜 등록금을 더 내게 하고, 2주 만에 끝나는 과정을 개설하는 등 부실한 학교 운영을 문제 삼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바이오 예술신학대학의 후신인 칼로스 엠에이대학 재학생 최모(28) 씨 등이 한국인 이사장 이모 씨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소한 학생들은 “4년제 대학을 2년 만에 조기 졸업시켜 주겠다며 3개월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

송했고, 낙제시키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수차례 더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2006년 입학한 신모(22) 군은 2학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만 세 번 받았다. 성적표가 조작돼 8개 과목 중 7개 과목이 낙제 처리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학비 더 챙기려 학생들 고의 낙제”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중앙일보는 어제 2008년 3월 5일 사회면 12Page 중앙부분에 “학비 더 챙기려 학생들 고의 낙제”라는 제목으로 칼로스엠에이대학(구 바기오 예술신학대)이 의도적으로 낙제를 시켜 등록금을 더 내게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로스엠에이대학(구 바기오 예술신학대)은 학비를 챙기려 고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낙제 시킨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필리핀에 설립된 신청인 학교가 등록금을 더 챙기려고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낙제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칼로스엠에이대학 (총장 이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노컷뉴스 : 『허위 졸업장 발급 학교, 이번엔 학비 더 챙기다 고소』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5일자)

내 용 : <2008서울조정6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66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을 상대로 각종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조리원의 내부전경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미소래산후조리원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MBC-TV

종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8년 1월 24일 23:05)

내 용 : >나레이터 : “프로그램들은 어떨까?..... 월요일엔 아기성장 마사지 시간, 한의사 선생님도 공짜로 진료를 해주시고 체형관리 마사지 시간도 있다.

>맛사지사 : “마사지 받으세요”

>나레이터 : “산후조리원이 자랑하는 마사지 시간 젊은 산모들을 위한 심심한 배려라고 한다. 그런데!”

자막 : 무료로 운영한다고 소개한 마사지

>맛사지사 : “색소는 아기 가졌을때 많이 생기거든요 서서히 없어지려고 할때 방치하면 안돼요. 만 원이면 수분도 공급해 주고 진정시켜주고 관리까지...”

자막 : 산후조리원 설명과 달리 비용요구

>나레이터 : “돈을 더 내란다.”

>맛사지사 : “헤드릴까요?”

>산 모 : “네, 바로 드려야 되죠?”

>맛사지사 : “네 여기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막 : 무료 프로그램인줄 알았다가 비용발생

>나레이터 : “공짜인 줄 알았다가 만 원을 냈다. 그래두 화장품은 사지 않았다.”

>제보자 : “방문 판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화장품을 홍보하면서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막 나오라 그래서 설명 들어야 되고 잔다고 해도 나오라 그러고...”

자막 : 프로젝터 까지 준비한 철저한 강의

>나레이터 : “또 다른 산후조리원 화요일 2시만 되면 양복입은 남자가 나타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한다. 도대체 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일까?”

>양복 남 : 자녀보험 태아 때 가입하시면 예방접종 해드리고, 1년에 한번씩 여행 가실 때 여행자보험 우선 가입해드리고, 주택화재 보험도 해드리고 저희가 101호에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자막 : 산후조리원에 입주한 보험회사 직원

>나레이터 : “산후조리원에 방을 잡았다는 보험회사 직원”

“산후조리원에 프로그램 상술, 한의사 선생님도 동참했다.”

>한의사 : 체질을 보는 과정은 맥을 보고 침을 맞고 상담하는 과정이 (이곳은)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되기 때문에 이후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확실히 진맥 받으시고....

자막 : 내원 권유로 고객확보

자막 : 검증된 강의 대신 판매목적 프로그램 많아

>산후조리원내 영업시설운영자 : “산모들은 프로그램이라 다 들어야 하는 줄 알고 다 듣고 있는거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산모들은 여기 쉬러 왔지 상품 설명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운영자 : “자릿세 비싸요 이거”

>질문 : 자릿세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자 : 처음엔(월급) 준다더니 지금은 주객이 전도돼서 하하하 (자릿세) 내래요. 산모들이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돈을 주고 시키다가 이제는 산모들은 기본으로 해주고 내가 얼마 먹는거에 몇 퍼센트 달래요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미소래산후조리원

대표이사 이 ○ ○

조정대리인 양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조정대리인 임 ○ ○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3월 31일까지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
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8. 3. 14.

□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을 상대로 각종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보험사 직원인 신청인이 자산관리 컨설팅 강의를 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조정대리인 임 ○ ○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8년 1월 24일
23:05)
내 용 : <2008서울조정68의 보도내용 참조>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3월 31일
까지 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
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2008. 3. 14.

□

원조폭주족이 경찰의 단속을 돕겠다며 경찰청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경찰청 (청장 어 청 수)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취 하

매일경제 : 『국경일 폭주 더욱 짜릿했지만 그건 빛나
간 애국심이었을 뿐』 제하의 기사 (2008
년 3월 1일자 8면)

내 용 : “민족 경축일인 삼일절이 왔습니다. 올해
도 안전한 폭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삼일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한 청소년 대상 인터넷 카
페에 올라온 공지 글이다. ‘폭주족의 국경일’인 삼
일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경
찰이 폭주족을 엄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도 경

보도내용

찰과 폭주족 간 한판 승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년 전 폭주족을 이끌었던 원조 폭주족 이수하 씨(26·건축업)가 삼일절을 앞두고 폭주족 단속에 나서는 경찰을 돕겠다며 경찰청장에게 메일을 보내 화제다. (중략)

이씨는 삼일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TV에 폭주족이 나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결국 이씨는 후배들의 어긋난 애국심을 바로 잡기 위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폭주족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으로 시작하는 이메일은 경찰이 폭주족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이륜차문화개선본부를 비롯한 건전한 바이크 동호회가 식별띠 제작과 합동 선도등을 통해 적극 돕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청에서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껌연쩍은 웃음을 지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2008년 3월 1일자 8면 『국경일 폭주 더욱

짜릿했지만 그건 빗나간 애국심이었울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조 폭주족이 단속을 돕겠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으나 하루전날인 지난달 29일까지 경찰청에서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사실 확인 결과, 원조 폭주족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 홈페이지나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도 폭주족 단속에 나서는 경찰을 돕겠다는 글을 올린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청장과 전국 경찰관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여 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정정보도합니다.

신청 후 보도문

매일경제 : 『고침』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8일자 9면)

내 용 : 일부 지역에 배달된 본지 3월 1일자 A8면 ‘국경일 폭주, 빗나간 애국심이었을 뿐’ 기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경찰청은 “자체 확인을 해봤으나 이메일을 수신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인근 보육원생의 전학을 거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파트입주예정자 모임이므로 정정보도하라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주정기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주서부신시가지아이파크입주자카페
(대표 이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재부: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 2008. 3. 7.

처리결과 : 취 하

경향신문 : 『‘명품 아파트’ 주민들 利己 투합』 제하
의 기사 (2007년 12월 7일자 호남판 사회면)

내 용 : 전북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에 신축돼 연
말부터 입주 예정인 ㅎ 아파트 단지. 전주에서 최
고 분양가를 기록하며 이른바 ‘명품 아파트’로 불
리는 곳이다. 지방에선 드물게 271㎡(80평)~132㎡
(40평형) 규모의 대형 평수로만 채워져있다.

이 아파트 660여 가구 주민들이 최근 뿔뿔 뿜쳤다.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게 될 단지 앞 신설 초등학교에 인근 보육원생 43명이 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결손가족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보낼 수 없

보도내용

나주축협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하지 않고, 흑자였던 하나로 마트를 적자로 운영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주축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전 ○ ○)

피신청인 : 무등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무등일보 : (1)『퇴직금 셈도 못하는 축협』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1일자 6면)

내 용 : 나주지역 한 축협조합장이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자체감사에서 문제가 일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A축협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조합장 J씨가 나주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비상근 조합장으로 전환, 4월 1일부터 비상근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후략)

(2)『나주축협 부실경영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5일자 6면)

내 용 : 나주축협이 조합장의 ‘퇴직금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부실채권 14억 원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흑자경영을 해 온 하나로

마트를 적자로 운영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중략)

여기에 나주축협이 운영중인 영산포 하나로마트가 지난 2005년 2억 2천 800만 원의 순이익에서 지난해는 2억 1천 600만 원의 적자로 돌아서는 총체적 경영부실을 보이고 있다.

나주축협 관계자는 “퇴직금 문제는 처리되지 않은 식비와 상여금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부실채권 사안은 현재 진행중”이라며 “전반적으로 축협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나주축협 부실경영 논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1일자 및 3월 5일자 사회면에 “나주축협 부실경영 논란”에서 흑자였던 하나로마트 적자내고 부실채권 책임규명도 “나몰라라”이라는 제목으로 부실경영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나주축협 하나로마트 적자는 2억1천6백만 원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부실채권 책임규명 또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었음에도 정확한 취재 없이 제보자의 제보만으로 보도한 부분이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학부모들이 인근 보육원생의 전학을 거부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파트입주예정자 모임이므로 정정보도하라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주서부신시가지아이파크입주자카페
(대표 이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보육원생 탄 학교 보내라』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7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보 2007년 12월 6일자 사회면 『보육원
생 탄 학교 보내라』 제목의 기사 중 “모 아파트

일부 입주자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 개설하
여 주변 보육원생들이 아파트 인근 학교로의 전학
거부 분위기 조성”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카페는
“카페는 일부 입주민의 전학거부운동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개설된 바 전학거부운동과 관계가 없
고, 대다수 카페 회원들의 의견 또한 보육원생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 받아주자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새전북신문
2008년 3월 21일자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새전북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1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국악협회 아산지부의 각종 대회 행사비를 회장도 모르게 집행하는 등 비리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6인
피신청인 : 대전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대전투데이 : 『아산국악협회 또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8일자 사회면)

내 용 : 풍물 경연대회 ‘유령 식대비 지급’ 집행
부조리 제기

설화예술제 이어 2번째

충남 아산시 국악 협회 박○○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개최한 설화예술제에 이어 풍물 경연대회에서
또 유령 식대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
집행 부조리의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박부회장에 따르면 아산시가 설화예술제와 풍물 경
연대회를 시기와 장소만 같을 뿐 성격이 다른 행사로
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같은 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된 설화·풍물 경연대회비 3천1백
여만 원 중 풍물대회대표자 회의의 식대비 지급
내역으로 1인당 1만 원의 정식 80인분 8십만 원과
식음료비 1십5만 원 등 총 95만 원이 허위로 지급
됐다고 덧붙였다.

박부회장은 설화축제를 통해 드러났듯이 풍물대
회에서도 제명된 국악협회 회원이 운영하는 음식
점 영수증이 첨부됐고, 행사 후 연회(宴會)의 시간
을 가진 사실이 전무한데도 예산이 집행됐다고 부
조리를 제기했다.

또 두 행사에 사용된 꽃사지의 구입비용으로 2
십1만 원이 지출된 영수증 가운데 일부는 동일한
영수증이 이중 첨부된 사실과 서로 다른 영수증
및 결산내역도 드러났다.

박부회장은 “두 행사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 유
령 식대 등 예산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조리의 형

태는 결산보고 당시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시의 행정부재 탓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불거진 예산 집행 부조리에 대한 의혹과 시와는 아무런 이해상관이 없고, 민관유착설 또한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다면 이를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가려 사범당국에 고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아산국악협회 또 의혹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8일자 사회면에 “아산국악협회 또 의혹” “풍물 경연대회 ‘유령 식대비 지급’ 집행 부조리 제기”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풍물경연대회 대표자 회의의 식대비가 허위로 지급됐다 했는데,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고, 풍물경연대회 후 연회했다는 내용이 정산보고서에 없는데 허위로 정산했다는 보도는 오보이며, 2006년 9월 23일은 풍물경연대회를 했고, 같은 해 9월 24일은 전국국악경연대회와 국악한마당 잔치 행사를, 이틀에 걸쳐 두 번 행사 하느라고 2회에 걸쳐 꽃사지를 주문, 지출된 영수증임이 사실이며, 또 보도 내용 중 두 행사란 설화예술제와 풍물경연대회를 일컬음인데, 전자는 아산예총 지부에서 주체한 행사고, 후자는 아산국악협회가 주관한 행사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아산국악협회 또 의혹”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가 지난 1월 18일자 사회면에 “아

산국악협회 또 의혹” “풍물 경연대회 ‘유령 식대비 지급’ 집행 부조리 제기”라는 제목과 지난 1월 17일자 인터넷판에 “아산 풍물경연대회서도 예산 집행 부조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풍물경연대회 대표자 회의의 식대비가 허위로 지급됐다는 보도내용과 풍물경연대회 후 연회를 한 사실이 없는데 허위로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 등은 사실과 다르고, 2006년 9월 23일은 풍물경연대회를 했고 같은 해 9월 24일은 전국 국악경연대회와 국악한마당 잔치행사를 이틀에 걸쳐 세가지 행사를 하면서 2회에 걸쳐 꽃사지를 주문한 것도 사실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행사는 설화예술제의 풍물경연대회, 전국국악한마당잔치,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일컫는 행사임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투데이 2008년 3월 20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풍물경연대회…)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판(www.daejeontoday.com)에 위 정정보도문을 2008년 3월 19일 09시부터 4월 18일 24시까지 1개월간 메인화면에 제목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뜨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투데이 : 『‘아산국악협회 또 의혹’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남구갑 지역에서 지지도가 0.4%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5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상 원

피신청인 : UBC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U B C : 「프라임 뉴스」 프로그램 (2008년 3월 3일 20:00)

내 용 :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천확정을 앞두고 UBC울산방송이 세 개 공천경합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한나라당 현역의원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도전자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막 : 남구 갑 가상대결 지지도1 - 無 박상원 0.4%〉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울산시민 여론조사보고서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3일자 8시 뉴스에서 “ubc울산방송 3개 공천경합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이○○ 기자가 「지지도 조사에서 현

역 최병국 의원은 44.2%,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4.8%, 무응답이 48.2%고 ‘無 박상원 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변호사는 42.8%의 지지로 현역의원과의 불과 1.4%포인트차를 보이며, ‘無 박상원 0.4%’ 다른 정당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김현득 전 시의원은 40.6%의 지지로 현역의원과의 3.6%포인트차를 보이며, ‘無 박상원 0.4%’ 다른 정당 후보들을 앞섰습니다.」라고 자막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는 조사의 표본오차, 신뢰구간, 특정결과를 유도한 지문(질문유형)작성, 응답자 선정의 문제점과 17.6%의 응답률이어서 결과가 정확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정상적인 응답률일 경우에는 무소속 박상원 후보의 지지율은 2% 이상 더욱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추후로는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태안기름유출피해지역에서 기름제거 작업을 하던 주민이 원유의 휘발성분에 노출되어 실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이 봉 화)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2월 19일 21:00)

내 용 : ▷앵커 : 그런데 발암물질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걸으로 드러나는 증상들도 심각합니다.

두통에 어지럼, 피부질환, 특히 눈에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유○○ 기자입니다. 70일 전 충남 태안 해변.

▷이○○(77세) : “어지럽고 골도 아파, 기름 냄새 맡으니깐, 저기는 막 퍼 부었어, 저쪽에. 어떻게 우린, 어떻게 살아..” 두 달이 넘은 지금 태안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루 7시간씩 거의 매일 기름 제거 작업을 했던 문○○ 할머니. 언제부터인가 멀쩡하던 두 눈이 따끔거리더니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얼마 전 한 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문○○(77세) : “여기(작업장) 다닌 후부터 아주 까마득 하지, 아주 안 보여 여기(작업장) 다닌 후부터” 문 할머니는 지금까지 400 시간이 넘도록

원유의 강한 휘발 성분은 눈이 그대로 노출돼 왔습니다.

▷문○○(77세) : “가렵고, 시리고, 따끔거리고..” 이 지역 안과는 두 달 동안 문 할머니 같은 눈 질환 환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제작업 참여 태안주민 실명은 사실과 달라(또는 태안주민 건강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MBC는 2008년 2월 19일 뉴스데스크에서 “신음하는 주민들, 두통·구토·실명” 제목으로 주민 1명이 방제작업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실명한 주민은 이미 2005년 4월에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으로 인하여 왼쪽 눈을 실명하여 방제작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19일 “신음하는 주민, 두통 등”이라는 제목으로 태안 기름유출지역에서 장시간 방제작업을 하던 주민이 원유 휘발성분에 노출되어 실명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학조사 결과 주민의 실명은 기름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27일 아침 <뉴스 투데이> 시간(오전 7시 30분대)에 위 보도문을 방송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화면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 내용은 뉴스 진행자가 낭독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보도와 링크시켜 조정대상보도를 검색하면 함께 보이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8년 3월 27일 07:34)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어체험공원인 엘리스파크가 개점폐업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화이트넥스트
(대표이사 조 ○ ○)

피신청인 : 내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내일신문 : 『서울시·자치구·교육청 ‘영어전쟁’』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14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략)

문제는 제각각 따로국밥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가 초등학교에 설치한 영어체험센터처럼 구청에서 기획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양천구 주말 영어체험시설처럼 교육부 사업에 구청이 응모해 외부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시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구는 교육부 프로젝트와 구청 별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별 초·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이나 대학과 자치구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영어체험캠프도 있다.

시설 투자를 넘어서 지자체에서 아예 교과 과정까지 손을 뻗친다. 중구는 웹사이트에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오픈했다.

서초구는 4개 권역별로 영어몰입교육센터를 설립해 원어민 강사와 함께 미국 교과과정 학점을 딸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005년 말 민간 기업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구에서 토지를 제공해 양재시민의 숲 일부를 영어체험공원인 엘리스파크로 개발하기도 했다. 현재는 개점폐업상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하려 해도 수준높은 원어민 교사 공급이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지자체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단체장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즉각 진행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주도권을 쥐려고만 하지 실질적인 역량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의 영어전쟁에 대한 반론

• 내 용 :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의 영어전쟁이란 제목으로 서울시·자치구들에서 만든 영어마을의 문제점과 영어 교육에 치중되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으면서 민간기업이 만든 <엘리스파크>가 개점폐업이라는 예를 들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스파크는 서초구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조성·운영하는 edutainment theme park이며 현재는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을 진행중이고 활발히 이용되어지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가 입소 절차가 없고 내부 규율이 엄격하지 않아 가출 청소년들의 각종 탈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청소년복지마을 (소장 김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부일보 : 『가출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전락』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8일자 14면)

내 용 :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과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재활을 돕기 위한 취지로 개설된 청소년쉼터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7일 수원지역 청소년 쉼터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청소년쉼터 ‘바나나하우스’는 현재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6년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을 시작한 이

곳 청소년쉼터는 지난해 구조 변경을 해 현재 2층 구조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바나나하우스는 입소절차 없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숙식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의 범죄 및 성관계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본보 확인결과, 바나나하우스는 남성 청소년 전용쉼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5~6명의 여성 청소년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특히 이곳 쉼터는 하루 수용인원이 제한되고 있어 가출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순번까지 정해 집단으로 하룻밤 묵어가는 장소로 전락한 실정이다. 또한 바나나하우스는 국비로 운영되는 일반 쉼터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율이 엄격하지 않아 청소년 흡연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시설 내 노트북과 자동차,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일도 반복되고 있었다. (중략)

이와 관련, 바나나하우스 김○○ 소장은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을 한 청소년들인 만큼 탈선행위가 일어나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돌려보내기도 어렵다”며 “앞

으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나나하우스 청소년쉼터에 관한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중부일보)은 지난 2008년 3월 8일자 사회1면 14쪽과 본사 홈페이지 메인 상단 중앙에 큰 활자로 “수원 청소년쉼터 ‘바나나하우스’ 탈선 장소 전락”(인터넷기사제목중 소제목에 ‘女 청소년 수시로 드나들며 성관계 장소 악용도’)이라는 제목으로 사단법인 청소년 복지마을이 운영중인 바나나하우스 청소년쉼터에서 하루에 5-6의 여자 청소년들이 드나들며 성관계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번까지 정해 가출 청소년들이 하룻밤 묵어간다는 장소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하우스 청소년 쉼터가 규율이 엄격하지 않아 청소년 흡연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보 사실확인 결과 바나나하우스 청소년 쉼터는 사단법인 청소년 복지마을에서 운영중인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청소년쉼터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MBC방송국, 기독교신문에 많이 소개되었을 뿐 아니라 2008년 촬영될 보람영화사의 한 영화의 모델이 되어질 정도로 감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입한 모든 청소년들의 입소, 퇴사 절차가 철저히 기록 통제되고 있으며 본 기관은 남자 쉼터이기 때문에 전혀 여자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여자청소년들은 1388 임시보호소로 보낸다). 성관계 장소, 범죄의 장소로 전락한다는 말은 본보기자의 주관적

인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보 기자의 성관계 장소 발언과 범죄의 장소라는 말로 큰 상처를 입고 눈물 흘리고 있는 바나나하우스 청소년 쉼터 청소년들과 사단법인 청소년복지마을 직원분들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 2008년 3월 8일자 14면 『가출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전락』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바나나하우스는 그 동안 출입한 모든 청소년들의 입소, 퇴소 절차가 철저히 기록 통제되고 있으며 남자 쉼터이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니다. 성관계장소, 범죄의 장소로 전락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8년 3월 29일자 14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수원 장안구 남성 청소년 쉼터 ‘바나나 하우스’)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인터넷상에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본문기사와 관련 인터넷상에 게재된 모든 기사를 삭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9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입주자에게 터무니 없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아이파크분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5개월 목욕비 3450만 원 ‘황당 아파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8일자 사회면)

내 용 : 2007년 10월 90만 원, 11월 810만 원, 12월 870만 원, 2008년 1월 840만 원, 2월 840만 원, 합계 3,450만 원.

경기 성남 분당 새도시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스씨가 지난 5개월 동안 관리사무소에 낸 ‘목욕탕 이용료’다.

스씨는 지난해 7월 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관리비에서 다달이 쓰는 4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인출 절차와 사용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표회의 측은 “업무추진비 사용은 전혀 하자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스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같은 요구를 했고, 대표회의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표회의 업무를 공연히 방해해 입주민들까지 피해를 입혔다’며 징계를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회의는 스씨의 이름과 아파트 동·호수까지 단지 안 게시판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스씨는 지난해 8월 대표회의 임원들을 배임·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자 임원들은 “주민 대표기구를 무시하고 업무 추진에 훼방을 놓았다”며 “(스씨와 가족 등) 전 세대원의 단지 안 스포츠센터 사용을 금지하고 무단사용 때는 1회당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스씨는 입주민의 권리를 이른바 ‘집단 따돌림’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시설 안의 목욕탕을 계속 이용했고, 대표회의 측은 스씨의 목욕탕 출입 횟수 등을 계산해 다달이 과태료를 물렸다. 스씨는 과태료가 관리비에 딸려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천만 원이나 되는 과태료를 고스란히 물고 있다.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5개월 목욕비 3450만 원 ‘황당아파트’ 사

실과 달라(또는 목욕비 3,450만 원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8일자 사회면에 “5개월 목욕비 3,450만 원 ‘황당아파트’라는 제목으로 허위 과장 왜곡, 전말이 오도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4개월에 걸친 87회의 고의적 규칙 위반의 과태료 2,610만 원을 한 주민에게 부과하였으나, 이를 기회로 삼아 스씨는 대표회의를 형사처벌할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고 부풀려 문제화 시킨 것으로, 다른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이를 자진 납부 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규칙위반에 대한 과태료인 것을 목욕탕 이용료라 하여 왜곡 자극적 보도를 하였다. (3) 5명의 임원이 1인당 20~30만 원 정도로 월 총합계 150만 원 이내의 금액인 것을 400만 원의 엄청난 금액으로 부풀려 왜곡보도했습니다. (4)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씨는 3건의 고소를 하였고 모두 무혐의 결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사진행 중이라 하는 등, 일방적인 스씨의 주장을 정당한 주장인 것처럼 보도하여 왜곡시켰다. (5)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문제화시켜 언론플레이를 하는 스씨의 의도에 편승하면서 웃음거리로 비하하여 본 건의 실체적 진실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추진비의 증빙 공개 없이 고액사용, 절세, 탈세 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표회가 마치 부정과 불법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의문 오도 되도록 하였다. (6) 관리비를 연체하면 신용불량이 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이러한 스씨의 주장은 허황된 괴변임에도 불구하고 진실 보도를 외면한 채, 허위·과장·왜곡하고, 전말이 호도된 일방적인 기사로 일관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95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이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

울릉중고 교장이 학교 졸업식에 불참한 이유가 설 연휴를 육지에서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북도민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경북도민일보 : 『울릉중高, 학교장 없이 졸업식을?』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6일자 9면)

내 용 : 울릉도 유일의 울릉중합고등학교 졸업식이 학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울릉중고는 지난 14일 50명의 졸업생의 졸업식이 지난 14일 열렸으나 지난달 22-27일까지 서울, 경남 밀양, 구미 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 등의 이유로 육지로 출장갔다는 것.

그러나 출장공무가 끝난 지난 1월 29일 울릉도로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자전거 하이킹에서 상대방 자전거와 부딪혀 광대뼈를 다쳐 1월 30일 병원에 입원, 지난 11일 퇴원해 졸업식 당일인 14일 오후 울릉도로 돌아왔다는 것.

이에 대해 학부모 및 일부주민들은 “3년이란 교육과정을 마치고 인생의 새출발을 하는 의미있는 날에 학교장이 뜻깊은 졸업장을 전달해야하는 마땅한 자리에 교장이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교장부임후 5월까지 60여 일동안 출장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를 비워 교내 구타사건과 현금갈취 등으로 바른 인성교육에 허점을 보여 빈축을 받아온 교장이 끝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격분했다.

이 학교 동창회 관계자는 “긴 구정 연휴를 이용 장기간 육지에서 보내려다 제때 울릉도로 돌아오지 못해 자전거 사고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최소한의 도의·양심적 책임을 져야된다”고 강조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울릉중高, 학교장 없이 졸업식을?’은 사실과 달라 (또는 울릉중高 졸업식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6일자 9면에 ‘울릉중高, 학교장 없이 졸업식을?’이라는 제목으로 울릉중고 교장이 출장 기간을 넘겨 설 연휴를 육지에서 보내려다가 사고를 당하여 고의적으로 졸업식에 불참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장기간은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였으며, 출장기간 중인 1월 27일 광대뼈가 함몰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중에서도 1월 28일 출장임무를 수행하고, 1월 29일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입원·수술을 통보 받아 1월 30일 입원하여 1월 31일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하다가 2월 14일 거행되는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2월 11일 퇴원하였으나, 12, 13일 동해상의 기상 악화로 배가 출항하지 않아 14일 10시에 출항하는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갈 수 있게 되어, 같은 날 10시에 거행되는 졸업식에 불가항력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교장의 졸업식 불참에 대하여 졸업식 당일 학생, 학부모, 내빈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구했으며, 2월 21일 울릉군 기관장 회의에서도 교장이 간곡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 및 동창회 관계자의 강력한 비난 운운도 사실과 거리가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경북도민일보 : 『“해양지도자를 꿈꾸며 바다로!”』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9일자 7면)
내 용 : 울릉·구룡포중고 수산과 학생 34명
러 블라디보스톡 해외체험 원양실습

“해양대국의 후예들로서 건문을 넓힐 수 있는
해외체험 원양실습에 건강하게 잘다녀오겠습니다.”

울릉도 유일의 울릉종합고등학교 해양수산과 학
생들이 원양항해 실습을 통해 수산해양 지도자의
꿈을 키운다.

울릉종합고등학교(교장 이○○)는 해양수산과 2

학년 9명(남7, 여2)과 구룡포 중고 2학년 25명과
함께 28일 포항항에서 원양승선실습 환송식을 갖
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외체험 원양실습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 울릉중고 교장이 단장으로 원양실습에 오
른 이들은 540마일이라는 먼거리에 위치해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30일 오전 8시에 도착, 입항 수속
후 블라디보스톡 기차 역사와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과 주정부청사를 도보로 견학하게 된다. (후략) □

이천축협이 농정보조금을 본래의 사업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해 사용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원들을 해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윤 ○ ○)

피신청인 : 하나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3.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하나로신문 : 『이천축협 농정보조금 ‘꿀꺽’』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3일자 1면)

내 용 : 농정사업 보조금 타용도 전환 물의기사
(본보 1월 16일 제 61호 참조)와 관련, 이천축협이
본래의 사업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은 2004년 선택
형 맞춤형 농정사업에 대한 5억 4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된다는 지역주민
들의 여론이 팽배하게 조성되고 있다.

이 보조금은 이천축협농가에게 우량 송아지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
책의 일환으로 이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천시
가 지급했으나 축협이 타 용도로 전환하여 당해연
도 수익결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
구하고 시와 시의회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 말썽이 되고 있다.

12일 이천축협 전 김모 이사 및 축협농가들에
따르면 이천시는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
표로 번식우를 잘 키워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여
시중가격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이천 축산농
가에 보급하기 위해 2004년 선택형 맞춤형 농정 지역
특화 사업으로 5억 4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이천축
협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천축협은 한우농가의 수익증대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핑계를 삼아 문제의 보조금
을 무이자 입식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당초 목적대
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수익결
산으로 처리하여 축산농가 보다는 축협의 자산 늘
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천축협의 농정보조금 타용도전환 사
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13일자 1면 머리기
사에서 “이천축협 농정보조금 ‘꿀꺽’”이란 제목으
로 이천축협이 농정보조금을 본래의 사업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 사용하였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
며 해당 보조금은 당초 목적대로 전액 송아지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천축협은 보
도된 기사와는 다르게 비영리법인이고 해임된 임원

들도 농정보조금의 타용도 전환을 은폐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해임된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에 본지는 이천축협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36,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윤 ○ ○

조정대리인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하나로신문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502-5번지

대표이사 정 봉 영

중재대리인 임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하나로신문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

대상기사의 부제목(5억4백여만 원 전액 회수 주장... 시와 시의회 수수방관해 비난)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3.

<별 첨>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8년 2월 13일자 1면 『이천축협 농정보조금 ‘꿀꺽’』이란 제목으로 이천축협이 농정보조금을 본래의 사업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전환 사용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천축협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보조금은 목적대로 송아지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해임된 임원들도 농정보조금의 타용도 전환을 은폐하기 위하여 해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청인이 주최하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의 관람료가 타당한 이유없이 비싸기만 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전주방송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2월 29일 21:30)

내 용 : 어린이 뮤지컬 왜 비싼가 했더니
<멘트>

모처럼 공연장을 찾은 도민 분들, 관람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관객들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관람료 책정이 원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높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어린이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좌석수가 가장 많은 로얄석의 관람료는 어른 어린이 구분 없이 5만 원입니다. 4인 가족이 관람하려면 20만 원이나 듭니다. 최근 공연이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의 관람료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녹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직원(음성변조) : “전반적으로 공연의 가격들이 약간 비싸지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어요.”

관람료는 제작사에 돈을 주고 작품을 넘겨받은 기획사가 책정합니다. 지방 공연은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객석점유율의 30에서 50퍼센트로 잡아놓고 관람료를 정한다는게 기획사의 얘기입니다.

▷〈전화녹취〉 A기획사 대표(음성변조) : “객석 점유율이 50% 정도 됐을 때 적절한 가격선이 책정되는 거죠. (객석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50% 이하가 되면 적자를 보는 꼴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뮤지컬마다 제작비가 천차만별인데도 관람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에서는 여차피 관객층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과 상관없이 관람료를 비싸게 책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화녹취〉 B기획사 공연팀장(음성변조) : “아무리 작품이 좋고, 정말 우리 아이가 봐도 교육적으로 좋은 뮤지컬이지만은, 관람하는 관객수는 똑같다 이거죠. 3천명 내외”

지방자치단체나 대형 병원, 기업체 등에 홍보용 무료 초대권을 남발하는 것도 관람료가 비싸지는 원인입니다. 그 비용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관람

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녹취〉한국소리문화의전당 직원 : “일정 부분 초대권을 주고 홍보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규모 큰 사업장이나 학습지 회사나... 도청이나 도의회도 나가고, 어디나 그런 공연장은 마찬가지로 같아요.

타당한 이유 없이 비싸기만 한 어린이 뮤지컬 관람료. 이런 문화를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또다시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29일자 아홉시 뉴스 전북권 소식에서 어린이 뮤지컬의 관람료 부담이 만만치 않으며, 이는 관객들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관람료 책정이 원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어린이 뮤지컬의 관람료를 투입 제작비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폐슬러지를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0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서경종합개발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수도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수도일보 : 『화성 부적합 폐슬러지 매립 ‘말뚝’』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1일자 15면)

내 용 : S레미콘, 수천톤 불량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매립

뿌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S레미콘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별도의 관리없이 주변에 매립하고 있어 말뚝을 빚고 있다.

10일 업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S레미콘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산 88-1번지 일대에 성분검사도 받지않은 수천톤의 폐슬러지를 오랫동안 야적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파른 길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을 살수차도 없이 뿌연 비산먼지를 날리며 하루종일 수십 여 대의 대형레미콘과 트럭이 쉴 새 없이 통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화성 부적합 폐슬러지 매립 ‘말뚝’ S레

미콘 수천톤 불량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매립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3월 11일 사회,
경제면에 “화성 부적합 폐슬러지 매립 ‘말썽’ S레
미콘 수천톤 불량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매립”
이라는 제목으로 S레미콘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S레미콘
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2,8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측이 손해청구를 취하지 않으면 정정보
도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외국의 비인가대학으로부터 학위를 취득했으며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와 무관한 장소에서 교통캠페인 활동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1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홍 사 광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반론)

단’에 유인대학이 포함.

하지만 이같은 논란에도 홍씨의 공천신청은 하자
가 없는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인가
대학이나 정식대학이 아닌 곳의 학위는 ‘경력’란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홍보용으로 게재할 수
있고 ‘학력’란에 게재하는 것만 안되기 때문에 홍
씨는 화성시 선관위에 예비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나라당에만 공천 신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

보도내용

경인일보 : (1)『화성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외국 비인
가대학 학위취득 논란』 제하의 기사 (2008
년 2월 20일자 4면)

내 용 : 한나라당 총선 공천 경쟁이 뜨겁게 달
아오른 가운데 화성지역 한 공천 신청자가 외국
비인가대학 학위 취득 논란으로 말썽. 이달 초 화
성에 공천신청을 한 홍모(54·(사)한국사회문화연구
원 이사장) 씨는 공천서류를 작성하면서 미국
유인대학(yuin university)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
은 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기재.

그러나 유인대학의 경우 지난해 신정아 씨 사태
당시 언론에서 ‘유령대학’이라고 보도하는 등 비
인가대학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

실제 지난해 8월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서
미국 의회 산하 감시국(G.A.O) 자료를 인용해 발
표한 ‘미국 731개 비인증(non-accredited) 학교 명

(2)『홍사광 ‘화성 토박이론’ 앞세워 지역 표발
다지기』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7일자 4면)

내 용 : 이달초 한나라당 화성시 선거구에 공천 신청
을 한 바 있는 홍사광(54·남북이산가종교류협의회
공동의장·사진 오른쪽 두 번째) 씨가 최근 ‘화성 토
박이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지역 행보에 나서 눈길.
(중략)

“특히 일각에서 일고 있는 ‘비인가대학 학위 취
득’ 설은 엄연한 ‘깎아내리기’로, 언제든지 그에 부
합하는 실력과 노하우를 발휘해 보일 용의가 있
다”고 역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화성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홍사광
((사)한국사회문화연구원 이사장) 비인가 대학에
서 학위취득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1 : 본 신문은 1차로 지난 2월 20일자 4면

종합 면에 “화성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외국 비 인가대학 학위취득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유인대학(YUIN UNIVERSITY)이 비인가 대학, 유령대학, 으로 엉터리 보도를 하였고, 유인대학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마친 홍사광은 비인가대학에서 학위를 받아 ‘학력’란에는 기재할 못하고 ‘경력’란에만 기재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기사를 게재하였고, 미국 교육부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인대학교(YUIN UNIVERSITY)는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정부교육국 확인결과 적법하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 하는 학교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내 용2 : 홍사광 한나라당 화성시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는 홍사광(54.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공동의장)은 병점역 등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정지선 지키기 교통캠페인 활동을 한 바 없음으로 이에 바로 정정 보도합니다.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내 용 : 본지 2008년 2월 20일자 4면 『화성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외국 비 인가대학 학위취득 논란』 기사와 관련 (사)한국사회문화연구원 홍사광씨가 학위 취득한 미국 유인대학교(YUIN UNIVERSITY)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교육국 확인결과 적법하게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밝혀졌다.

2월 27일자 『홍사광 ‘화성 토박이론’ 앞세워 지역 표발다지기』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은 서울 파고다공원 앞에서 가수 협회와 캠페인 한 사진으로 홍사광(54) 남북이산가족 교류협의회 공동의장은 병점역 등 지역곳곳을 누비며 정지선 지키기 교통 캠페인 활동을 한 바 없어 정정합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일보 2008년 3월 26일 5면 이내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3월 20일자 3면 ‘바로잡습니다’와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인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6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의 건강 기능성 물질 추출사업이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해림바이오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완도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완도신문 : (1)『“후코이단은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

업이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2일자 6면)

내 용 : 지난 90년부터 8년간 금일수협조합장을 역임했던 서○○(62) 씨는 완도에 처음 후코이단을 소개한 사람으로 통한다. (중략)

서 씨는 현재 일부 사람들이 후코이단을 추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후코이단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 후코이단을 가장 많이 추출할 수 있는 해조류는 ‘모주꾸’ 라는 갈조류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나지 않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모주꾸에는 후코이단이 22%나 들어있지만 미역이나 다시마에는 0.04%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오키나와’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완도에서 모주꾸 배양과 양식을 해야 한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서 씨는 “미역귀 수출 어려움도 일본에서 인기가 좋은 모주꾸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 오키나와 현이 장수마을로 대부분의 주민이 90세에서 100세까지 사는 이유도 어려서부터 모주꾸를 많이 먹어 후코이단을 섭취하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씨는 “후코이단 사업으로 보조금 30억을 지원받은 완도의 H회사는 지금 후코이단을 추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할 가치도 없는 사업”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H회사 대표가 일본의 후코이단 회사에서 폐기 반품한 제품을 5톤 차 3대 분량 약 30톤을 작년에 일본에서 가져와 제품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서 씨는 “후코이단 사업은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업이고, 완도군의 완벽한 예산낭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완도군이 수산분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경로당 준공이나 건설에만 관심이 많다고 꼬집었다.

다시마와 미역귀에서 나오는 후코이단을 추출하고 대량생산을 통해 어민들 소득증대가 주목적이었던 후코이단 판매는 전라남도와 완도군의 재정 지원을 받은 H회사가 유통을 하다가 2006년 12월 초 식약청으로부터 상품에 후코이단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2) 『보조사업 총체적인 문제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9일자 14면)

내 용 : (전략)

완도군이 지원한 푸코이단 사업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푸코이단은 분자구조가 독특하여 인체흡수가 어렵고 미역귀나 다시마는 함유량이 너무 적어 원가가 비싸고 기타 갈조류는 희귀해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푸코이단 산지가공사업 또한 30억 원의 거액을 지원하면서 사업자선정 과정이 일관적이지 못하는

등 불투명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기술로 푸코이단을 생산·판매해 온 완도 금일과 제주 서귀포 소재 업체는 여러 이유를 들어 탈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지난 2년간 실제로 푸코이단을 생산·판매했는가 하는 점이다. 푸코이단은 유백색 분말 형태다. 이를 활용하여 건강 기능성 식품이나 기타 의약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려면 상품의 겉포장에 푸코이단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당연히 식품이나 의약품은 일정량 이상의 푸코이단을 포함해야 식품 의약품 안전청의 인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미역귀나 다시마를 흑염소 고아내듯이 달여 그 물을 병에 담아 푸코이단이라고 한다면 누구로부터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완도군과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푸코이단 생산기술 보유 여부,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가의 여부, 미역귀나 다시마를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 사들여 얼마만큼의 푸코이단이나 기타 푸코이단 관련 상품을 생산·판매하였는가를 밝혀야 한다. (후략)

(3) 『푸코이단의 선두주자 유○○ 씨 “무한한 가능성 있는 엄청난 시장이다”』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6일자 7면)

내 용 : 푸코이단 생산 명목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진짜 푸코이단을 내놔야...

“푸코이단 시장은 넓고 무궁무진하다. 푸코이단을 생산한다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진짜 푸코이단을 내놔야 한다”

금일에서 (주)해원바이오텍을 운영하고 있는 유○○(49세) 씨의 주장이다.

“푸코이단이란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능력이 모두 다르듯이 푸코이단 역시 모주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미역귀나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다. 특히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푸코이단을 이 정도 만드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유 사장은 푸코이단 분말샘플을 보여주며 “H회사는 정제된 가루로 못 만들고 단지 엑기스만을 뽑는 정도다. 푸코이단은 어느 정도 순

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푸코이단이다”라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9일까지 신청인측의 반론 인터뷰 기사를 완도신문 7면 인터넷판에 게재하되, 보도크기는 2008년 2월 26일자 유○○ 씨 인터뷰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의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데로 수사결과 내용을 즉시 보도하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완도신문 : 『본지의 서○○ 씨·해원 유○○ 대표 인터뷰에 대한 (주)해림바이오의 반론 인터뷰』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4일자 7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635호 6면 후코이단을 완도에 처음 소개한 서○○ 씨와 639호 7면 해림바이오 대표 유○○ 씨를 인터뷰 했다. 이에 해림바이오 측이 인터뷰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완도경찰에서 서○○ 씨와 유○○ 씨를 고소하면서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림바이오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내용을 지난 1일, 본지 사무실에서 배○○ 공장장(사진)을 만나 들어보기로 했다.

배 공장장은 먼저 보조금 30억 지원받은 H 회사는 후코이단을 추출 못한다. 해림바이오 대표가 일본의 후코이단 회사에서 폐기 반품한 제품을 5톤차 3대 분량 30톤을 작년에 일본에서 가져와 제품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후코이단 사업은 경쟁력이 전혀 없는 사업이라는 서○○, 유○○ 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배 공장장은 (주)해림바이오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순수 자사 기술로 후코이단을 추출 제조하고 있으며, 색소 물질인 후코잔틴의 분리 및 해조취를 없애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해림바이오는 일본에서 수입한 적이 없다. 푸코이단 생산을 위해 2006년, 2007년 완도 금일에서 건조 미역 포자염을 구매했으며, 인터뷰한 서성현씨에게서도 구매했다고 말했다.

배 공장장은 이어 2008년 1월 29일자 시민연대 한용현 대표 인터뷰 내용 중 30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지난 2년간 실제로 후코이단을 생산, 판매했는가. 미역귀나 다시마를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 사들여 얼마만큼의 후코이단이나 기타 후코이단 관련 상품을 생산, 판매했는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주) 해림바이오에서 추출된 후코이단은 인체에 흡수가 가능하도록 저분자로 만들어졌고, (주)해림바이오에서 추출하는 후코이단의 함량은 85%이상의 순도를 함유하고 있다는게 배 공장장의 설명했다.

(주) 해림바이오는 2007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게 해림 측의 주장이다. 액상인 제품과 유백색의 건조 분말 제품도 생산하고 있고, 해림후코이단 제품을 식품으로 유통하는데에는 이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배 공장장은 또, 지난 2월 26일 유○○ 씨 인터뷰 내용 중 후코이단은 해원 밖에 없다는 주장과 H 회사는 정제 된 가루로 못 만들고 단지 액기스만을 뽑는 정도이다. 일본의 모주꾸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 H 회사가 제품을 다단계 네트워크로 팔았다. H회사가 푸코이단 시장을 흐린다. 미역귀나 다시마를 액상에서 최종적으로 분말로 한 것이 진짜 푸코이단이다. H회사는 푸코이단을 만들지 못하고 액기스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내 후코이단을 만드는 회사는 ST bio와 상장회사인 MSC등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으며, 다 액상 제품을 건조하여 분말제품을 만들어 판다. 외국에서 후코이단 제품은 액상 제품이 주류이다. 분말제품이라 하더라도 액상제품을 건조하지 아니하고 바로 건조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없다는 것이다.

(주)해림바이오는 분말제품을 만드는 동결건조기도 확보하고 있다. 동결건조기로 건조한 제품이려야 품질이 좋다. 또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자사의

기술력으로 품질좋은 후코이단을 액상이나 분말제 품 등 필요에 따라 잘 만들고 있는데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해림바이오의 판매 시스템은 회원제 직판과 총판, 대리점 형태이지 네트워크(다단계)

판매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네트워크 판매로 시장을 흐린 것은 해림바이오가 아니라 (주)해원바이오텍 유성국 사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해원바이오텍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청인이 채무자의 실질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등기촉탁을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 정당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6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합뉴스 : 『법원, '사법테러' 협박 민원인에 전전금금』 제하의 기사 (2007년 9월 27일자)

내 용 : 민사조정위 참석하며 흥기도 들고 나와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한 민원인 때문에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재산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8년째 소송을 해오고 있는 최모 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이날 오후 민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을 위해 법원이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판사 4명과 법원 직원 6명이 최씨의 주장을 들었다.

최씨의 주장은 친척인 강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려 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만기일이 지나서도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강씨가 사실상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다.

채무자 명의와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같을 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해당 부동산 명의

가 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있자 최씨는 사실상 강씨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명령을 넘겨받은 등기관은 채무자 명의와 부동산 명의가 다르자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각하’했다. 법원 판결시 제출됐던 문서가 등기소에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명령문만을 받아든 등기관으로서 당연한 조치였다.

그 사이 강씨는 문제의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뒤 제3자에게 넘겨버렸고, 김씨는 3억 원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쳐 버렸다.

김씨는 이후 법원이 가압류 등기가 되게끔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재산을 잃었다며 국가와 등기관을 상대로 8년간의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했다.

당사자가 필요 문서를 갖고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씨는 지난 7월에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수십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자신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근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김모 판사를 비롯한 다른 판사들에게 테러를 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최씨를 달래기 위해 2시간30분동안 조정위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법원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최근 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하고 최씨를 협박죄

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씨는 이날 15cm정도 크기의 흉기를 가방안에 갖고 들어오다 법원 검색대에 걸려 압수당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법원 협박 민원인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2007년 9월 27일경 '법원, 사법테러 협박 민원인에 전전공공'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인 최씨 관련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지만 그 당시 이미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일치했음이 밝혀져 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법원 협박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호소
• 내 용 :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2007년 9월 27일경 '법원, 사법테러 협박 민원인에 전전공공'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인 최씨 관련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최씨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첫째, 등기관이 각하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촉탁은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기사에 나온 것처럼 당사자가 직접 가압류등기를 신청했어야 했다면 법원에서는 불필요한 촉탁신청을 한 꼴이 됩니다. 둘째,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에 신청 당시 최씨가 제출한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건인 인낙조서를 누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건이 누락되고 안 되고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셋째, 이 사건의 본질이 국민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법원이 사법소극주의로 일관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등한시하고 법원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전달한 언론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두로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9월 27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저희 연합뉴스에서는 법원 판결문 및 조정위원회 개최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었습니다만, 최○○ 선생님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재위 조정 신청 사건을 통해 사법부도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 언론도 열린 마음과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 부당한 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연합뉴스가 활동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법원 계류 중인 최선생님 사건이 종결되면 최선생님의 반론이 적절히 반영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의 내용대로 유감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일부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치료비 등에 대해 불법 신용대출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신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내부를 공개하고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강 ○ ○

2.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7.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합의, 2008서울중재3 참조)

보도내용

KBS-2TV : 「VJ특공대」 프로그램 (2008년 3월 7일 21:55)

내 용 : <내레이션> 비단 성형외과에서 뿐만 아니라 치과에서도 치아성형비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몰래카메라 인터뷰>

▷신청인 2 : 안녕하세요...(음성변조 처리하지 않음)

▷피신청인 : 안녕하세요.

-편집-

▷신청인 2 : 치아가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오셨어요?

▷피신청인 : 취업해야 되는데...

-편집-

▷신청인 2 : 이 해보세요, 아, 앞니가 브이자...

-편집-

▷피신청인 : 제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대출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신청인 2 : 신용카드. 신용카드.

▷피신청인 : 신용카드요?

▷신청인 2 :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거지

▷피신청인 :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신청인 2 : 우리가 보증서면 아마 해줄 거예요. 천만 원까지도 나와요.

-편집-

▷신청인 2 : 직업 있죠?

▷피신청인 :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신청인 2 : 직업 없으면 신용카드 안 만들어 주는데, 그럼 ○○치과 직원이라고 그럴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위험천만, 성형대출의 덫’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7일, 일부 성형외과에서 불법대출을 알선하여 환자를 유인한다는 내용을 ‘위험천만, 성형대출의 덫’이란 제목으로 방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치아성형대출의 예시로 인터뷰한 서울시 강남구의 ‘ㅎ치과’는 대출알선 등의 불법적인 영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방송은 앞으로 시청자에게 정확한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 회사가 최근 두산그룹에 인수될 당시 자금난과 부도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성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 ○)

피신청인 : 한국경제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경제TV : 「부동산투데이」 프로그램 (2008년 3월 12일 17:30)

내 용 : <앵커> 앞서 보신대로 건설업계 역시 줄도산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을 옥죄고 있는 돈가뭄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자> 이 달 중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준비중인 중견 건설사 K. 신용등급이 ‘BBB’

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3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중입니다. 회사채 발행은 그 동안 그룹사 계열의 대형건설사나 신용등급이 A급인 우량 건설사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돈가뭄에 시달리는 건설업계에서 회사채 발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녹취 : 증권사 관계자〉 “돈을 뺄 수 있을 때 미리 뺄겠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단기성 차입금을 장기성으로 돌리겠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주택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회사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주택사업비중이 높은 중소건설사의 경우 회사채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설업은 타업종에 비해 신용등급에 대한 기준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기관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한 건설사들 가운데 일부는 부도 대신 차라리 피인수를 택했습니다. 얼마전 효성에 인수된 진흥기업과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인수한 성지건설, 두 회사 모두 자금 유동성에 허덕이다 비교적 싼 값

에 새주인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부도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지건설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12일 “건설사, 자금 오아시스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전 두산그룹 박용오 회장에 의해 인수된 성지건설은 인수당시 자금 유동성에 허덕였으며, 부도위기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성지건설은 평균 건설사 신용등급보다 높은 기업어음 신용등급 AAA-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로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으며, 앞으로 저희 한국경제TV는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고, 주변 환경이 열악함에도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세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민 ○ ○)

피신청인 : 용인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용인신문 : 『미분양 넘쳐도 고분양가 고수』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0일자 7면)

내 용 : 용인지역 곳곳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있는 가운데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분양한 기흥구 상하동 ‘임광 그대가’에 이어 비교적 수지와 기흥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분양 중인 처인구 ‘세광 엔리치 타워’ 등이 청약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이들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의 원인이 고분양가로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분양가는 낮아지질 않고 있다. 특히 세광엔리치 타워의 경우 입지 여건 상 수지와 기흥에 비해 터무니 없게 떨어지는 것에 비해 분양가는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엔리치타워는 이동면 송전에 2010년 4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가 736만 원에 지하 1층~지상19층 13개동 99~152㎡(29~45평형)의 782가구의 분양에 나섰지만 현재 미분양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광엔리치 타워는 청약통장 순위와 상관없이 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으로 동과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내집 마련 예약 접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엔리치타워의 고분양가를 지적하고 있는 일부에서는 “송전의 경우 주변에 대규모 단지가 없고 도심과의 거리, 주변 교육 여건, 문화 시설 등 인프라가 없음에도 700만 원대의 분양 승인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송전 세광엔리치타워 저렴한 분양가에 주변 개발호재 겹쳐 분양률 쑥쑥...

(3월 10일자 사회면 미분양 넘쳐도 고분양가 고수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0일자 사회면(7면)에 “미분양 넘쳐도 고분양가 고수”라는 제목으로 송전 세광엔리치타워가 미분양이 많고, 주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책정하였다는 식의 근거없는 악의적 보도를 게재하여 사업주체인 세광종합건설에 대한 명예 및 권위를 실추시키고,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본 신문에 게재된 내용과 달리 분양가는 회사측의 요구대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용인시의 분양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여러 번 거친 끝에 합리적으로 책정되었으며, 본 신문에 내용과 달리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분위기에 속해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지가 속한 이동면 송전리와 인근 남사면 일대로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용인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명시되어 있어, 향후 사업지 인근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및 후광효과도 예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신문 내용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의자가 피해 학생들과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7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안양평강교회 (담임목사 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생방송 화제집중」 프로그램 (2008년 3월 17일 17:35)

내 용 : ▷김정근 : 안녕하세요, 생방송 화제집중 김정근입니다.

▷최현정 : 안녕하세요, 최현정입니다.

▷최현정 : 잇따르는 엽기 범죄, 강력 사건으로 요즘 세상이 무섭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걱정들 많습니다.

▷김정근 : 네, 지난 금요일, 혜진이의 시신이 발

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밤 9시경, 이혜진, 우예슬 양의 살인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긴급취재했습니다.

▷김정근 : 경찰에서는 일찌감치 정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도 1차조사에서 별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해 풀어줬다고 합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에 대한 비난과 함께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이 한층 더 높아져 걱정입니다.

▷최현정 : 범인은 예술양과 같은 교회에 다니고, 이혜진양의 집과는 불과 130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으로 밝혀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양 초등학생 살해 용의자, 혜진이 예술이와 같은 교회 다니지 않아 (또는 안양 초등학생 살해 용의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17일자 생방송 화제집중에서 “안양 초등학생 살해 용의자 정모 씨가

혜진이와 예술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었다”는 내용을 수 차례 반복해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용의자 정모 씨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며, 특히 혜진이와 예술이가 다니는 특정 교회를 다닌 적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전 보도문

MBC-TV : 「생방송 화제집중」 프로그램 (2008년 3월 18일자 17:35)

내 용 : ▷최현정 : (정정 방송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용의자 정모 씨가 우예슬양과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교회측에서 용의자 정모 씨가 교회에 다닌 바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김정근 : 앞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략) □

자동차 연료절감장치로 인한 자동차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고 자동차 고장을 불러일으킨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쓰리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2008년 2월 15일 06:00)

내 용 : (전략)

▷이○○ 리포터 : 예 그런데 이 유테크로 기름값 아끼려다 소중한 애마가 그만 애물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전수 : 차가 이래 가다가 시동이 툭 꺼져 버려요

▷이○○ 리포터 :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윤전수 :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조금만 가면 또 서고 또 서고 하는데

▷손○○ 아나운서 : 상당히 위험한데

▷제보자 :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시동이 다시 안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리포터 :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버리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가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피해자가 엄청나죠

▷손○○ 아나운서 : 네

▷이○○ 리포터 : 피해자들의 차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차에 주먹만한 기구 하나를 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이것을 판매하는 한 업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K업체 관계자 : 뭐 처음으로 개발된 거고 연료도 많이 절약되고 연료 공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손○○ 아나운서 : 말처럼 되면 정말 좋은 건데요

▷이○○ 리포터 : 네 그렇죠 불필요한 연료의 낭비를 막으면서 연비를 좋게 만드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한 대리점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는 한 유명인이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는 카 센터에서도 이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M카센터 관계자 : 49만 8천 원이 제일 기본 가격입니다. 대형차나 버스 이런 쪽으로 가면 89만 원 택시회사에도 이번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손○○ 아나운서 : 결코 싸지 않죠

▷이○○ 리포터 : 그런데 제품을 직접 써본 사람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김○○ 피해자 : 연료절감되고 매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달면 좋다고 하는 기라. 어이가 없어 죽겠어요

▷이○○ 리포터 : 40년간 운전을 해 왔다는 김씨는 연료절감이라는 말에 분통부터 터트립니다.

▷김억제 피해자 : 이걸 잘라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데 가서 해 봐야 돼. 지금 순 엉터리로

▷이○○ 리포터 :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귀가 솔깃할 연료절감장치 판매자와 운전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업체 측에서 말하는 연료 절감장치인데요, 과연 성능이 어떤지 직접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cc 휘발유 자동차를 준비해서 자동차가 똑 같은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략)

▷이○○ 리포터 : 기존 RPM을 올려놓고 확인해 보는 거죠. 똑같은 양의 기름을 저렇게 집어넣고요. 15분 동안 정상적인 상태에서 15분 동안 연료가 얼마만큼 소모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실험 자 : 네

▷이○○ 리포터 : 자, 각각 2리터의 휘발유를 주입했는데요, 연료절감장치를 쓴 쪽과 그렇지 않은 쪽과 어느 쪽의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는 걸까요? 이것은 연료절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입니다. 정확히 15분 동안 주행한 이 차는 기름을 얼마나 썼을까요? 정상적인 차에서 15분 동안 운행한 차량에서 남아있는 기름의 양 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남은 휘발유가 680cc 였습니다.

▷손○○ 아나운서 : 네

▷이○○ 리포터 : 자 보셨죠. 동일한 장치에 연료절감장치를 단 후 역시 15분 동안 주행을 했습니다. 이때 연료절감장치를 단 차량에 기름이 더 많이 남아있다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손○○ 아나운서 : 덜 썼다는 얘기인데

▷이○○ 리포터 : 예 보시다시피 똑같은 조건입니다. 8초 9초 15분 됐어요. 아까와 똑같은 조건에서 15분 동안 운행을 해 보았는데 연료가 얼마나 소모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똑같이 따라 보았는데 얼마만큼 남았을까요. 720cc가 남아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달렸을 때 연료절감장치를 단 차량이 확실히 기름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의 주장은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손○○ 아나운서 : 50cc는 절약이 되었어요 이게

▷이○○ 리포터 : 연료 절감이 된 건가요

▷박병일(신성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이게 연료 절감이 아니고요, 아 이 양으로 보면 연료절감이 된 것 같잖아요

▷이○○ 리포터 : 비밀은 바로 여기 속도 계기판에 있었습니다.

▷박○○(신성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아까 액셀을 밟은 양에서 먼저는 170km로 나갔는데 장차하고 나니까 120km밖에 안나갔다 그러면 한 50km가 안 나가잖아요. 50km가 안 나가면 안 나간 만큼 안 나간 거지 이게 연료를 차단한 거지 연료 절감이 아니죠

▷손○○ 아나운서 : 아 속도가 안 나가고

▷이○○ 리포터 : 연료 절감장치는 기름을 덜 사용하는 대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차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은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적게

▷박○○(신성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당연히 차에 무리를 주게 되죠 저렇게 되면 억지로 연소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엔진 자체에 점점 무리가 가서 엔진한테 연료 장치라든가 모든 장치들이 어떤 트러블이 생길수가있죠

▷이○○ 리포터 : 업체 측에서는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K업체 관계자 : 설치를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제품 자체 내에서는 결함이 있을 수가 없고

▷이○○ 리포터 : 그렇다면 이곳에서 직접 설치한 차량이 시동이 꺼져버리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K업체 관계자 :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죠

▷손○○ 아나운서 : 아니죠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되죠

▷이○○ 리포터 : 하지만 끝내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쓰리엔텍테크놀로지 “매직캡슐”연료
절감 및 매연감소 입증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월 15일자 출발 모닝
와이드 3부에 “꿈의 기름 값 절감장치의 비밀”을
방영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의 입증되지 않은 피해사
실만을 방영 하고 연료절감장치의 성능이 어떨지
직접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시험차량에 적합한 제
품과 위치를 선정하여 시험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제품 장착의 설명서와는 전혀 다른 곳에 설
치하고 공인되지 않은 시험기관과 실험자로 하여금
성능실험을 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주)쓰리엔텍테크놀로지의 자동
차 연료 압력 자동조절 장치인 “매직캡슐”은 국가
공인기관의 엄정한 실험을 거친 제품으로 그 성능
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품으로 인한 차량의
고장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본 방송은 마치 (주)쓰리엔텍테크놀로지의
제품으로 인해 자동차가 고장나고 효과가 전혀 나
타나지 않았다는 방송으로 인해 (주)쓰리엔텍테크
놀로지에 막대한 피해와 자동차 연료압력 자동 조
절장치인 “매직캡슐”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
뜨리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실
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자동차연료절감장치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 방송의 지난 2월 15일 「꿈의 기름값
절감장치의 비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K사는
방송된 소비자들의 피해는 매뉴얼대로 제품을 장
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제품 자체로 인한 고
장은 아니고, 방송 중 이뤄진 실험에서 제품이 매
뉴얼과 다른 위치에 장착된 채 진행됐으며, K사의
의뢰로 제품을 시험한 모 시험연구원은 해당 제품
이 연비개선의 대안으로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4월 25일까지
SBS-TV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말미(클로
징 멘트 전)에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
의 화면(방송된 제품사진 노출)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男)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
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정보도청
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8년 4월
18일 07: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고흥군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업체인 신청인 회사의 대표가 부실공사를 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테크세움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호남인터넷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호남인터넷뉴스 : 『고흥군 광역상수도 사업 부실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양심선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7일자)

내 용 : 광역상수도 급수 관로공사 하도급
공사업체 대표가 양심선언

고흥군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시설공사 시공회사
(주)송촌종합건설 1공구 하도급업체 (주)테크세움
홍모 씨가 지난 1월 22일자로 1차공사 준공이 끝난 공사
설계, 감독, 시공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양심
선언을 하고 나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흥군 광역상수도 급수 관로공사 하도

급 공사업체 대표의 양심선언이 아니라 현장 작업
관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양심선언

• 내 용 : 본 인터넷뉴스는 지난 3월 17일자 1면
“고흥군 광역상수도 사업 부실공사... 하청관계자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광역상수도 급수 관
로공사 하도급 공사업체 대표가 양심선언을 하였
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하도급 공사업체 대표가
아니라 현장 작업관리자인 홍모 씨가 사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양심선언을 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
로잡습니다. 아울러 2008년 3월 17일자 뉴스로 인
하여 (주)송촌종합건설과 (주)테크세움 등 관계자
들의 명예실추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사죄
드립니다. □

나주축협이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책임규명을 하지 않고, 흑자였던 하나로 마트를 적자로 운영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주축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전 ○ ○)

피신청인 : 나주투데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나주투데이 : 『나주축협 부실경영 축산농가 빈축 쏟아져』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0일자 7면)

내 용 : 나주축협이 조합장 퇴직금 부풀리기에
이어 하나로마트 적자운영, 해두루포크사업단 부실
운영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지역민과
축산농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축협은 지난해 6월 조합장에게 퇴직금 1억
50여만 원을 지급한 뒤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월
말 3천1백여 만 원을 환수했다가 최근 다시 1천5
백만 원을 지급해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나주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영산포 하
나로마트가 지난 2005년 2억 2천 800만 원의 순이
익에서 지난해는 2억 1천 6백만 원의 적자로 돌아
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경영을 보였다.

또한 조합장 재직 시 발생한 부실채권 27억 원
중 보증인이 없거나 제2순위 담보대출 등으로 발
생한 부실채권 14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나주축협 부실경영 축산농가 빈축 쏟아져」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0일자 사회면에 “나
주축협 부실경영 축산농가 빈축 쏟아져”라는 제목
으로 퇴직금 부풀리기, 마트적자운영, 부실채권 등
해두루 사업단 졸속추진 혈세낭비 지적도..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나주축협 영산포 하나로
마트가 2005년 2억 2천 8백만 원의 순이익에서 지난
해는 2억 1천 6백만 원의 적자로 돌아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경영을 보였다는 기사는 본 신문사 취재기자가 정확한 취재를 하지 않고 타 지방지의 잘못된 보도를 사실 확인 하지 않고 게재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조합장 재직당시 부실채권의 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없다는 부분은 나주축협이 이 부문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서를 냈음에도 정확한 취재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두루사업단” 관련하여 준비부족, 친환경 경사육으로 변경하는 줄속계획,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낭비 등등의 기사는 확인결과 무항생제와 친환경은 동일한 개념이며, 해두루 사업단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농가를 조직화 하고 고품질, 위생안정성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단으로 발돋움 중에 있으며, 친환경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농가는 단 한곳 밖에 없다고 게재한 기사도 확인결과 3곳으로 밝혀졌으며, 향후 참여농가의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중

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나주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31일자 4면)

내 용 : 본지 제294호(3월10일) 7면에 보도된 ‘나주축협 부실경영 축산농가 비난 쏟아져’라는 제하의 기사중 나주축협 하나로마트가 2005년 2억 2천 8백만 원의 순이익에서 지난해 2억 1천 6백만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는 부분은 적자가 아닌 전년 대비 매출이 일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장 재직 당시 부실채권의 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없다는 내용도 나주축협이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며 퇴직금 초과지급은 담당자의 실수에 의해 이뤄졌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진반납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이벤트 행사를 후원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어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프리첼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스포츠월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스포츠월드 : 『야해도 클릭수만 늘다면... 프리첼 선정성 전략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8일자 IT면)

내 용 : #장면1.

핫팬츠와 탱크톱만 착용한 레이싱걸들이 포켓볼을 즐긴다. 마치 각본을 짠 듯 이들은 자신의 가슴골을 과시하며 연신 허리를 굽힌다. 탱크톱 한 쪽에는 ‘FREECHAL’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방송을 중계하는 MC의 멘트는 적당히 야한

표현으로 귀를 자극한다(제2회 곰TV 프리첼배 레이싱모델 빌리어드 챔피언십)

#장면2.

서울 압구정동의 한 클럽. 싱가포르의 한 맥주회사 마련한 클럽 파티에는 호피무늬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프리첼이 후원하는 이 파티에는 호피 무늬만 입었다면 입장 1순위. 참가자 대부분이 성인이었지만 ‘놀이 마시’이 클럽 파티의 적나라한 모습은 UCC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의 눈과 귀에 흘러들어갔다(최고의 타이거걸을 찾아라)

지난해 동영상 전문 포털을 선언하면서 권토중래를 노렸던 프리첼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리첼은 동영상 포털 선언 이후 레이싱걸 포켓볼 대회를 비롯, 각종 클럽 행사를 후원하면서 UCC 콘텐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런데 이를 통해 제작된 동영상에 선정적인 장면이나 멘트가 무분별하게 등장한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레이싱걸 포켓볼 행사의 경우 탱크톱 한 켠에 ‘프리첼’ 로고를 새겨넣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리도록 유도하는 등 대형 포털로서 선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동영상은 여과없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타면서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검색포털과 경쟁에서 과도하게 뒤쳐진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힙합 마니아 출신 CEO를 영입한 터라 놀고 마시는 문화에 유독 프리첼은 자비로운 것 같다”면서 “눈요기거리나 클릭수 제고에 도움이 될 콘텐츠마다 늘 프리첼이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프리첼측은 문화의 한 코드라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후원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타이걸’ 클럽 행사의 주최측인 맥주회사가 제공한 홍보용 포스터를 보면 노출을 자극하는 문구가 여과없이 등장한다. 이 파티에는 싱가포르 여행권이 경품으로 등장한다는 소식 탓에 젊은 남녀들은 몸을 사리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근래 들어 프리첼은 곳곳에 무리수를 던지는 모습이다. 태동하는 UCC 기본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고 전문 영역을 구축한다는 거창한 포부만큼, 아찔한 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저 끌어모으기에만 집착, 선정성 문제 등 부작용의 파생 빈도도 잦아졌다. 그러나 프리첼은 트래픽을 높이려고 유저들이 몰려들면 인지도가 다소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었지만, 반짝 인기는 금세 트래픽 하락으로 이어졌다.

프리첼 역시 한편으로는 이를 인정하는 모습이 다. 레이싱걸 포켓볼 대회 관련, 프리첼 관계자는 “부작용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클럽 파티에 대해서는 “파티 참석 시 반드시 호피 무늬 의상을 입지 않아도 됐다”고 해명했다.

프리첼은 지난 2002년 마이홈피라는 개인화 서비스를 유료 모델로 전환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시행착오를 초래한 전제완 사장은 경질됐고, 후임자 고○○ 대표 역시 프리미엄 서비스인 ‘섬’으로 도약을 시도했으나 이른바 ‘다이아몬드 마케팅’ 등에 50억 원만 탕진한 채 사퇴를 택했다. 2005년 당시 30살이던 손○○ 씨가 대표직을 이어받았지만 하락세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철지난

FPS 장르로 온라인 게임에 도전, 결국 고배의 쓴 잔을 마셨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이후 업데이트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차트 순위에서도 100위권 밖으로 튕겨나갈 위기에 처했다.

포털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프리첼은 질을 담보하지 않고 오직 클릭수만을 높이려는 알박한 전술에만 집착하는게 문제”라면서 “네티즌을 위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상해야 네티즌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식회사 프리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3월 18일자 본 신문 IT 면에 “야해도 클릭수만 늘다면... 프리첼 선정성 전략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프리첼이 동영상 UCC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정적인 이벤트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이벤트는 선정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음과 주식회사 프리첼이 이러한 선정적인 이벤트를 집중 지원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아울러 해당 기사를 통해 보도한 대부분의 주식회사 프리첼 관련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관련 기사로 인해 주식회사 프리첼과 그 임직원 및 관련자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 내 용 : 지난 2008년 3월 18일자 IT 면 “야해도 클릭수만 늘다면... 프리첼 선정성 전략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주식회사 프리첼이 후원한 맥주행사의 주최측이 제공한 홍보용 포스터에 노출을 자극하는 문구가 여과 없이 등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는 행사안내를 위한 보

도자료에 삽입된 이미지로, 홍보용 포스터에는 선정적인 문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오프라인 스포츠월드 IT면에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8년 4월 1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스포츠월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portsworldi.com>) 초기화면 상단에 2008년 4월 14일까지 24시간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연결되도록 하며, 원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세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gye.com>)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며, 기사 제휴관계에 있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주식회사 프리첼이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각종 행사 및 사업과 관련하여 취재·보도하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에 협조 및 협의하도록 한다.

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3월 18일자 IT면 보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프리첼이 선정적인 이벤트를 집중 지원하는 전략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여 주식회사 프리첼에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동영상 전문 포털화를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여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프리첼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프리첼과 그 임직원 및 관련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월드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8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대학이 학점교류가 불가능한 교육기관으로 학생을 연수 보내고, 연수비용을 개인 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여주대학 (학장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3월 8일 21:00)

내 용 : <뉴스앵커>

수도권의 한 대학이 해외 연수 명목으로 학생들을 외국에 보내면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김○ 기자>

#화면 -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소재 CSMC 전경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지어진 시설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여주대학 학생들이 영어 등 학점 이수를 위해 사용합니다. 소유주는 여주대학의 재단 이사 홍모 씨. 홍 씨는 지난해 1학기부터 학생들의 연수비용 대부분을 뉴질랜드 현지 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자료화

면: 1차 2006년 1월 4일 어학연수 내부결재 및 홍 이사장 뉴질랜드 계좌서류 자료)

그런데 한국의 송금계좌는 보직 교수였던 김 모 씨 명의로 개설했습니다. 김씨는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만들어져 불법 송금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료화면 : 김○○ 하나은행 계좌 개설서류)

〈前 보직 교수 인터뷰 녹취〉

▷前 보직 교수 : “심지어는 도장도 안 찍혀있고 이름도 안 써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직원하고 뉴질랜드에 보내는 재단 이사하고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트 / 김○ 기자 :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2백4십만 원 정도, 모두 15억여 원이 홍씨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자료화면: 송금 여부서류) 올해는 25억 원 정도가 송금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홍씨가 세운 CSMC라는 시설은 학사 교류가 가능한 곳일까?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전화인터뷰 녹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 “뉴질랜드 제도를 아는 사람을 물색해봤더니 없어요. 호주는 좀 있는데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다. 뉴질랜드 가서 공부한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리포트 / 김○ 기자 : 하지만 NZQA, 즉 뉴질랜드 자격위원회 홈페이지만 읽어봐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NZQA 홈페이지) 홍 씨의 CSMC는 뉴질랜드 전역의 860개 사립 훈련시설 가운데 하나로 등록돼 있습니다.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일종의 학원이라는 말입니다.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승마나 골프 등 일부 과목은 전공과도 무관합니다.

#화면 자막

“CSMC등 뉴질랜드의 860개 사립학원은 스쿠버다이빙부터 비즈니스 관련 업무까지 다양한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CSMC는 정식 학교 아닌 일종의 학원”

〈CSMC 연수학생 전화인터뷰 녹취〉

▷CSMS 연수학생 : 돈이 “너무 비싼데, 차라리 다른데 가서 1년 유학하는게 더 나운데... 이 돈이면 다른 데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리포트 / 김○ 기자 : 이 시설에서는 고등학생

들도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홍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화성 소재의 중·고등학교입니다. CSMC의 연락사무소가 있는 곳인데 홍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

다. 〈CSMC 연락사무소 관계자 인터뷰 녹취〉

▷CSMC 연락사무소 관계자 : “전화를 계속하는데 안 돼 가지고 (다른 관계자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아마 어디 여행을 가셨는지, 가족들도 다...”

▷리포트 / 김○ 기자 : 여주대학 측도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6년 5월에 불법송금 등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됐다가 여주지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지난 5일(2008년 3월 5일)에야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복잡한데 다른 사건 처리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는 게 담당 검사의 설명입니다. 영어 교육 등을 위한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대학들이 늘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KBS는 2008년 3월 8일 KBS-1 〈9시 뉴스 현장추적〉 프로그램에서, 여주대학에서 학생들을 연수 보낸 뉴질랜드의 캔터베리 스포츠 매니지먼트 대학(Canterbury Sports Management College)이 정식교육관이 아닌 학원으로 학점교류가 불가능하고, 이 학교의 연수비용이 임의로 개설된 보직 교수의 통장을 통하여 불법으로 송금되었으며, 위 불법송금에 대한 수사가 마치 수사이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여주지청으로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여주대학이 KBS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만, 확인 결과 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캔터베리 스포츠 매니지먼트 대학(Canterbury Sports Management College)은 뉴질랜드 교육부가 인정한 전문대 이상의 정식교육기관으로 국내대학과 학점교류가 가능합니다.

한편, 위 뉴질랜드 대학의 연수에 있어 학생으로부터 수령한 연수비용이 임의로 개설된 여주대학

보직교수의 통장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송금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위 불법송금에 대한 수사는 여주시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계속 이송되어 현재에도 수사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여주대학은 KBS의 이사장에 대한 인터뷰 요청에 대하여 일정상의 이유로 이사장 대신에 대외협력처 처장이 대신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여주대학 관계자가 입은 고통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진실한 보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고3 연합학력평가와 관련, 출제 교사로부터 사전에 문제를 입수했으며, 교육청 자체 조사에서 이를 시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고3 연합평가 문제 출제교사 통해 입수”』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0일자 8면)

내 용 : 지난 12월 실시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험문제를 사전 입수해 배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강사 유모(43) 씨가 서울시교육청 자체 조사에서는 친분 있는 모 출제교사로부터 문제를 입수했다고 시인하고 사과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지목한 교사는 현재 학교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19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사건 경위서에 따르면 유씨는 애초 수리영역 출제를 맡았던 A교사로부터 전화를 통해 10개 이상의 문제를 전해들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경위서는 문제 유출 의혹을 교육 당국에 처음 알린 B교사가 작성한 것이다.

B교사는 지난 14일 문제 유출 의혹을 알게 된 뒤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B교사는 당일 오후 7시쯤 유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유씨로부터 어렵사리 ‘A교사가 전화로 열대여섯개 문제를 알려줬다. 죄송하다’는 자백을 얻어냈다. B교사가 ‘직접 A교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로 어떻게 세세하게 문제를 전해받았느냐’고 되묻자 유씨는 ‘A교사가 문제의 구체적 상황이나 표현을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10시쯤 시교육청으로 출석한 A교사는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 뒤 곧바로 조사실을 나와 두 차례 유씨와 전화 통화를 했다.

유씨는 A교사와 통화한 직후 ‘B 교사가 계속 질문을 해와 갑자기 A교사가 생각나 이름을 돌려줬다’고 말을 바꿨다.

시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A교사와 유씨가 단 둘이 통화하도록 방치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씨가 배포한 프린트물에 실린 19문제가 유씨의 저서 8권에 수록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씨 저서들이 학력평가 문제 출제 이전에 모두 출간됐지만 프린트물은 2월 8일 제작돼 17일 배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유씨가 사전에 문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고3 연합평가 문제 출제교사 통해 입수』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국민일보는 2008년 3월 20일자 사회면 8면에 고3 연합평가 문제 출제교사 통해 입수라는 제목으로 “유출의혹 학원강사 교육청 조사땀 시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원 강사 유○○은 고3 연합학력평가 문제는 유출된 것이 아니고, 기 발간된 문제집에서 35문항을 베끼거나, 베낀 것에 버금갈 정도로 인용된 것이고, 교육청 조사시에도 일관성 있게 유출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고3 문제 유출의혹 학원강사 서울시교육청에 손배소』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5일자 8면)

내 용 :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강사가 자신을 수사 의뢰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학원강사 유모(43) 씨는 24일 서울 대치동 한 학원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평가 모의고사 수리영역 45문제 중 35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베낀 것인데 시교육청이 자신들의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씨는 또 “관련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모의고사와 시중 문제집들을 비교한 ‘문항비교자료’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력평가 5번 문항은 모 수학문제집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문제와 숫자까지 같았으며 13번 문제는 2006년 10월 2학년 중앙모의고사에 출제된 것과 동일했다.

유씨는 “출제위원들이 1인당 15문항씩 출제했는데 5문항은 직접 만들고 10문항은 문제집을 인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며 ‘베끼기 출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문제 유출 의혹이 있다고 판단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씨가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가 적중됐다고 주장하던데 이제 와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베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출제위원들에게 학원 문제나 문제집의 문제를 참고하지 말도록 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청인 협회의 협회명, 회장의 성명과 나이 등을 잘못 기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회장 신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4.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전략)

어린이 통학차량안전협회 이○○(61) 회장은 “하루 빨리 어린이 차량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학원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벌조항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회장 이○○(61)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9일자 사회면에 “어린이통학차량...아슬아슬”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에 대해 보도 내용 중 협회회장을

보도내용

쿠키뉴스 : 『통학차량 ‘아슬아슬’...위험한 어린이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9일자 사회면)

“이○○(61)”로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회장 신○○(46)”로 바로 잡고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부회장 이○○(61)”로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쿠키뉴스 : 『통학차량 ‘아슬아슬’...위험한 어린이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략)

어린이통학차량 안전협회 이○○(61) 부회장은 “하루빨리 어린이 차량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학원장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벌조항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광버스 회사인 신청인이 개별적 운임수령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승차료를 받고 통학버스를 불법 운행하고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그린투 (대표이사 강 ○ ○)

피신청인 : 평안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평안신문 : 『“불법은 배불리고, 합법은 굶주리고”』 제하의 기사 (2007년 12월 25일자 사회면)

내 용 : 평택시 장안동 소재 A학교가 관광버스를 투입해 학생들에게 승차료를 받는 등 등록업종 외 불법 영업을 수개월째 지속하면서 마을버스 업체들이 강력 반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평택시와 마을버스업체 등에 따르면 A학교는 지난 8월 16일 B관광버스 5대를 투입, 하루 200~300명가량의 학생들에게 600원(회수권 포함)의 승차료를 받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는 전세버스는 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버스 등이 학생들로부터 승차료를 받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29일 B관광버스업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360만 원의 과징

금을 부과한데 이어 11월 19일에는 과징금 미부과에 따른 차량 압류조치까지 내렸다.

그러나 A학교와 ‘스쿨버스 운행계약’을 맺은 B관광버스는 현재까지 학생들로부터 현금과 회수권 등을 받아가며 버 것이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A학교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허가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송탄마을버스 등 3개 마을버스업체 등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불법은 배불리고, 합법은 굶주리고”는 사실과 달라(2007년 12월 27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27일자 사회면에 “불법은 배불리고, 합법은 굶주리고”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나, A학교는 당초에 학교 통학로를 개설하고 통학차량이 없을 때부터 교육정상화를 위해 스쿨버스를 운행하다가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몇 년 전부터 마을버스와 같이 학생수송을 하였으나 학교의 스쿨버스는 유상 허가를 받지 않아 중단(2007년 07월 19일)하였으며, 학부모 및 학교에서는 마을버스 증차 계획이 없음을 알고 많은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과 교통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 허가 받은 B전세버스업체와 계약하고 A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학교에서 발행한 1회용 회수권은 전세버스운송사업으

로 보아야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어 위법이 아니며, 특히 「A학교 지난 8월 16일 B관광버스 5대를 투입, 하루 200~300명가량의 학생들에게 600원(회수권 포함)의 승차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였으나 그 날은 여름방학기간 중으로서 특별히 운행했던 사실까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되었으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
용할 수 없다. □

신청인 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보내온 조직검사 결과만을 믿고 유방암 진단을 하여 멀쩡한 사람에게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성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제하
의 기사 (2008년 3월 3일자 8면)

내 용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한
테 유방암 진단을 내린 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
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아무개(42·서울 강남구 삼성동) 씨는 2005년
11월 초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
른쪽 유방에서 손톱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ㄱ 교수는 초음
파와 조직검사를 한 뒤 김씨에게 “오른쪽 유방의
혹은 암이며, 큰 수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좀
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자”는 주변의 권유
에 따라 김씨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가다. 서울대병
원의 ㄴ 교수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받은 조직검
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오른쪽 유방의 혹이 암 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4분의 1

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름쯤 지난 뒤 김씨는 어처구니없는 소
식을 들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로 떼어낸 조직
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김씨의 조직
검사 원본 슬라이드 등을 받아 다시 검토 했는데
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해보니, 세브
란스병원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
드 사진이 다른 환자의 것이었고, 서울대병원은
재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손가락조차 들지 못하는 등 수술 후유증
에 시달리면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적절
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보상 기준이 없
으니 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두 병원과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수술에 따른 손
해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고, 의사
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서울 해화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세브란스병원 ㄱ 교수를 업무상 과실
치장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서울대병원 ㄴ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병원과 같은 최중 의료기관의 진단은 권위가
있어, 이에 근거해 같은 급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경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ㄱ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
해 10월 국외연수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 최경

덕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은 “이전부터 준비해온 연수를 떠난 것일 뿐”이라며 “꼭 필요하다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ㄱ 교수의 해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측은 “ㄱ 교수가 머물고 있는 대학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며 “2009년 9월 귀국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ㄴ 교수는 홍보팀을 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ㄱ 교수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하고 지명수배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세브란스·서울대병원서 “유방암” 진단,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3월 3일자 사회면 8면에 “세브란스 서울대병원서 유방암 진단,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의 제목으로,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한테 유방암 진단을 내린 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잘못 전달된 ‘암이 확실하다’는 조직검사를 무턱대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당해 환자에 대하여 유방암 진단을 위한 검사(유방촬영, 초음파검사뿐 아니라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수술을 시행했으며, 수술후 시행된 조직검사서 ‘증식성이 강한 암 위험성 있는 병변으

로 적절하게 제거된 것임’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재검사 없이 멀쩡한 사람의 가슴을 절단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3월 3일자 8면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조직을 재검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해당 환자에게 유방조영술, 초음파, MRI 등 유방암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해당 환자에게서 증식성이 강하고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2008년 4월 10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와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개발한 태권도와 영어회화를 동시에 가르치는 “태글리쉬”가 태권도 동작을 영어로 번역하여 가르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태글리쉬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태권도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태권도신문 : 『태글리쉬, 영어와 태권도를 동시에?』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5일자 3면)

내 용 : 지난 2일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태권도로 배우는 영어회화’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곳은 ‘태글리쉬(대표 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단체다. ‘태글리쉬’라는 말은 ‘태권도’와 ‘잉글리쉬’를 합성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태권도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이번 세미나에는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른바 ‘영어몰입교육’ 바람과 함께 영어에 대한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도 ‘태글리쉬’를 통하면 영어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을까?

‘태글리쉬’측에서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통해서 일반태권도 지도자들도 영어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태글리쉬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몇 달 익히고 나서 영어로 태권도를 지도하는 시범이 있었다.

그러나 시범을 보니 그 가르치는 영어라는 것이 간단한 태권도 동작을 영어로 번역한 것과 기초적인 영어회화를 외워서 따라하는 수준의 것이었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영어를 가르친다기 보다는 영어를 외워서 흉내내는 수준의 것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태글리쉬, 영어와 태권도를 동시에』 제하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 내 용 : 태권도 신문은 지난 2월 15일자 태권뉴스 오피니언 기사수첨면에 “태글리쉬, 영어와 태권도를 동시에?”라는 제목으로 (주)태글리쉬 대표 김○○의 설명을 거론하며 마치 태글리쉬가 영어와 태권도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프로

그램인 것처럼 태글리쉬 전체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주)태글리쉬 대표는 “태글리쉬 세미나가 개최된 이날의 취지는 태글리쉬 프로그램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태권도 전문가 및 영어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 및 발표 시간이었으며 태글리쉬를 배우고 공부하고자 하는 일선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 전체의 근본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인 태글리쉬 흠짓내기 기사이며 태권도신문 기자 또한 세미나 처음 시작부터 참석하여 경청하지 않았고 세미나 후반부에 뒤늦게 참석하여 세미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씌어진 왜곡 보도”라고 밝혔다.

또한 태권도 신문은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것을 말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어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영어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 해야 할 필요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으나 김○○ 태글리쉬 대표는 태글리쉬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보도라고 밝혔다.

이날 태글리쉬 세미나는 태글리쉬(태권도와 영어회화 동시지도법)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방법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위한 자리였고 태권도 전문가 및 영어강사들 또한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영어만 잘하면 된다’라는 취지나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을 위한 ‘태권도와 한국어 동시교육방법’을 소개하였고 태권도를 통해 영어 또한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이며 참석자들 또한 스스로 태글리쉬 지도가 앞으로 가능 한지 대한 생각할 기회를 주는 취지였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은 전혀 다루어진바 없는 왜곡된 기사라고 김○○ 대표는 밝혔다.

또한 현재 태글리쉬 교수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영어동시통역사’ 출신 ‘해외 태권도 지도자’ 출신 ‘태권도 학과’ 졸업자등 태권도부문과 영어교육 부문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난 7~8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여 개발되어져 나온 프로그램이며 현재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글리쉬 지도자들 또한 태권도와 영어교

육의 전문가이며 앞으로 태글리쉬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태권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부문에 있어서 교육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도 설명했다.

끝으로 (주)태글리쉬 김○○ 대표는 현재 여러 태권도 단체등에서 문화센터 등의 태글리쉬 강좌 개설을 방해하고 견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데 태글리쉬 또한 새로운 태권도 교육방법이며 국내 태권도인들이 같이 풀어나가고 연구해야할 과제임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하고 격적스러운 마음을 접고 함께 더 나은 태권도와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합의사항

- 제 목 : “태글리쉬”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태권도 신문은 지난 2월 15일자 오피니언면 “태글리쉬, 영어와 태권도를 동시에?” 제목의 기사에서 태글리쉬가 “영어를 가르치기 보다는 영어를 외워서 흉내내는 수준”이라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글리쉬 김○○ 대표는 “태글리쉬가 태권도 동작을 몸으로 익히면서 동시에 영어단어와 회화체 문장을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외치게 하여 문장을 익히면서 영어말하기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태글리쉬는 태권도와 영어교육의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수준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18일자 오피니언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보도와 링크시켜 조정대상보도를 검색하면 함께 보이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태권도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4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이탈리아에서 건축분야 학사학위인 도또레 학위를 받은 신청인들이 박사과정도 밟지 않고 박사행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 ○ ○ 외 13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7.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8년 2월 26일 23:10)

내 용 : (전략)

▷프로듀서 : 우리 사회에 엉터리 박사들을 걸러낼 장치들은 없는 건가요?

▷아나운서 : 나름대로의 절차는 있습니다. 현행 법상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학진에서는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게 바로 신고필증의 한 부분인데요. 하단에 보시면요 ‘박사학위를 신고한 사실만을 증명할 뿐, 학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박사학위자는 교수직에 지원할 때 이 신고필증을 국내 대학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대학 측은 일반적으로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나면 다른 확인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한 신고필증을 마치 검증필증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임용되어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프로듀서 : PD! 엉터리 박사학위로 박사 행세를 해도 2년이 지나면 정계도 할 수 없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프로듀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에 보신 분들은 과정과 절차가 어쨌든 박사과정을 밟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을 밟지도 않고 박사 행세를 하며 강단에 선 경우도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설자 :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가 동료 교수를 고발했다. 석사학위임에도 이력서에 박사로 기재하는 등 계속해서 박사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

▷B대학교 건축학과 : 이건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의 진실성을 숨기는 것은 앞으로 내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중대 사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된 거죠.

▷해설자 : 조 교수가 고발한 사람은 같은 층의 이 교수. 교수실 팻말에는 'ph D' 즉, 박사학위자라고 적혀 있었다. 이 교수의 최종 학위는 이탈리아의 라우레아(LAUREA). 이 과정을 마치면 도또레(DOTTORE)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보통 학사나 박사를 칭하는 도또레(DOTTORE)가 학위에 쓰일 때에는 대학의 학부 졸업자, 즉, 학사를 의미한다고 한다.

▷해설자 : 현행 이탈리아 학제상 라우레아(Laurea), 즉, 도또레(Dottorato)는 학사를 의미하며, 박사의 경우 도또라토 디 리체르카(Dottorato di

Ricerca)라고 별도의 과정이 존재한다. 이탈리아 교육부의 홈페이지에도 라우레아, 즉 도또레는 대학 학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도또레가 Doctor라는 의미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학위를 논할 때 도또레를 Dottore를 'PH.D' 즉, 박사학위자로 오해하지 말라고 특별히 게시해 놓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8 신학기 엉터리 박사 리스트” 내용 중 이탈리아 건축학 학위관련 정정보도문(또는 이탈리아 건축학 분야 구학제 도또레 학위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2008년 2월 26일자 “2008 신학기 엉터리 박사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 건축학 분야 구학제 도또레 학위자들이 박사과정도 밟지 않고 박사행세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건축학 분야 구학제 도또레(dottore) 학위에 대한 평가는 이탈리아 국내와 관련 공기관에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고, 한국식 학제와는 다른 점들을 고려하여 보도되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2002 학년도에 도입된 이탈리아 대학의 신학제만을 기준으로 비교되어 불합리하게 방송되었다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인근 시에 차량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진주시 (시장 정 영 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남일보 : (1) 『“자동차 등록 어디가서 할까요?”』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9일자 2면)

내 용 : 진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차량등록을 거부당해 인근 사천시에서 차량등록을 하는 사례가 잦아 진주시민들의 불

만을 사고 있다.

특히 진주시 차량등록사무소 직원들은 부족한 서류를 친절하게 알려주기보다는 편찬에 가까운 말투로 민원인을 응대해 원성을 사고있다.

문산읍 소문리 한 사찰 주지스님 A씨는 지난 7일 진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을 문의했다가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사찰명의로 차량등록을 원했으나 법인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지난번 사천에서는 가능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진주에서는 왜 안되냐”라고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그러면 사천에서 하면 될 것 아니냐”라며 편찬을 들었기 때문.

화가 난 A씨는 자동차 영업사원과 함께 곧바로 사천시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 단번에 해당 민원을 해결했다. A씨는 “아무리 부족한 점이 있어도 진주에서 30년을 살았던 진주시민에게 사천에 가서 하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진주시 마경동에 사는 B씨도 3일을 기다리다 못해 진주시에서 자동차 등록을 포기했다.

개인사업자가 회사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려면 규약정관, 고유번호증사본, 차량구입매도결의서와 함께 책임보험영수증, 세금계산서, 위임장이 필요한데 진주시 사업등록소에서는 책임보험영수증, 위임장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만 했다는 게 B씨의 얘기다.

특히 B씨는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로부터의 위임장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 결국 이날은 등록을 못하고 말았다.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의 불친절한 업무태도에 화가난 B씨는 결국 추가서류를 가지고 사천으로 넘어가 등록을 하루만에 완료했다.

B씨는 “서류미비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시민들의 부족함을 알고 친절히 안내하기는커녕 ‘여건이 안되니까 받아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가 너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진주시 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 아니면 받아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내 자동차등록사업소 어디서든 등록은 가능하지만 특정서류가 빠져 등록이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천시 등록사업소 한 공무원은 “사천지역은 진주 뿐만 아니라 남해, 거제에서도 많이 등록하러 오고 있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실무자가 2명 밖에 없는 열악한 수준이지만 가급적이면 등록을 신청 당일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도의 올 2월 자동차현황에 따르면 진주시 자가 승용차대수는 7만98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02대 늘었으며 사천시는 2만6281대로 전년 동기기간에 비교해 2008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 『진주시 자동차등록민원 왜 이러나』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0일자 19면)

내 용 : (전략)

문제는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거절당한 민원인들이 사천시에서는 처리됐다면 어느 쪽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진주시 차량등록 사업소는 사천시와 달리 부족한 서류에 대한 친절한 안내보다 편찬에 가까운 원성을 샀다면 그런 공직자는 퇴출 대상이다. 차량등록을 문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면 평소 공직자의 민원처리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주시의 불친절로 차량등록민원이 인근 사천시로 간다면 행정서비스가 낮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느장 행정은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다. 시민위에 군림한 공직자의 말로는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섬긴 공직자는 두고두고 추앙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차적인 책임이 미비한 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에 있다 해도 진주시의 자동차등록민원 왜 이랬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경남일보는 지난 3월 19일자 2면에 진주시 “서류미비” 거부... 사천시 “그래도 민원인데”의 중제목과 ‘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 불친절에 시민들 인근 사천으로 발동’ 3월 20일자 19면 사설에 ‘진주시, 차량등록 왜 이러나’란 제하의 기사에서 ‘진주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서류미비 등을 이유

로 차량등록을 거부해 사천시에서 차량등록을 하는 사례가 잦아 진주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편찬에 가까운 말투로 민원인을 응대해 원성을 사고 있다' '민원인이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편찬을 들었다' 등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이 불친절은 물론 서류미비를 핑계로 차량등록 민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는 자동차 등록은 관할관청이 차량의 소유권을 공증하는 사무로 개인 및 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규사무로 법적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진주시의 경우 자동차관리법령 및 건설교통부지침(자동차팀-2482 '06.5.12)호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 민원인에게 관련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요건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해줄 것을 안내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에도 진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이 불친절하고 특정서류를 핑계로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구체적 정황과 사실근거 없이 특정부분을 왜곡하여 독자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경남일보 기사는 부적절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9일자 2면 "자동차 등록 어디 가서 할까요?" 제하의 기사에서 진주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차량등록을 거부당해 인근 시에서 차량등록을 하는 사례가 잦고, 부족한 서류를 친절하게 알려주기보다는 편찬에 가까운 말투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등 원성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법규정에 의거, 민원인에게 관련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요건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을 안내하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8년 4월 1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2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진주등록사업소 불친절에 시민들 인근 사천으로 발동려)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은 동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탈북자인 신청인의 성명이 공개되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생사가 위협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합뉴스 : 『탈북자 의료인 9명 배출.. 올해 4명 국가 시험 합격』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9일

자 정치색선)

내 용 :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1만 명을 넘어선 시대를 맞아 드물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하거나 관련 대학에 다닌 경력과 능력을 살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의사나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탈북자는 평양의대 출신의 고(故) 김○○ 씨와 석○○(43) 씨 등 5명이었으나 올해 4명이 잇따라 합격해 급증했다.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던 이○○(41) 씨와 최모 씨가 지난달 실시된 의사시험에 동시 합격한 데

이어 북한에서 치과의사로 일했던 이○○씨, 함북 청진대의 약학부를 나온 황모 씨가 각각 치과시험과 약사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19일까지 연합뉴스 대표이사 명의(자필서명 포함)로 된 서신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내용 : 연합뉴스는 지난 2월 9일 「탈북자 의료인 9명 배출... 올해 4명 국가시험 합격」 제하의 보도에서 실명을 기재하여 이○○ 선생님의 국가시험 합격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여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새터민들에 대한

현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도과정에서 이○○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실명을 공개한 것은 제작진의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선생님의 가족분들께서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향후 새터민 관련 기사 작성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 보도에 대해 제작진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

신청인 회사가 농경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9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구들택 (대표이사 성 ○ ○)
피신청인 : 환경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환경일보 : 『폐기물 만여 톤 농경지 불법매립』 제하의 기사 (2007년 7월 30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략)

이 업체는 P.C(기성품)를 생산하는 업체로 콘크리트에 강섬유(철사종류)를 혼합해 도로변이나 철도변 옹벽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금이 가거나 일부 파손된 폐콘크리트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적정처리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대충 파쇄해(매립규격 50~80cm 정도) 공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농경지에 매립했으며 이 업체는 폐기물을 매립한 곳에 자갈을 덮은 후 지금까지 주차장 및 폐기물 야적장과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한 것이 본보 취재진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P.C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유가 함유된 폐기물과 합성수지등 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분리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 전량을 수년 동안 농경지에 매립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발암물질로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 역시 아무 거리낌없이 대량 매립한 사실도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 문제로 공장 주변에 있는 농경지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인근 부락 주민들의 건강에

도 치명적인 피해가 돌출될 것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강원도 원주 소재 (주)구들택 폐기물 만여톤 농경지 불법매립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인터넷 환경일보는 지난 7월 30일자 환경 119 컬럼에 “폐기물 만여톤 농경지 불법매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구들택은 1997년 12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취득하여 조립식 웅벽생산시설을 위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농경지에 불법매립이라 잘못 보도 하였으며, 두 번째 회사 설립시 농지를 임대하여 조립식웅벽생산시설을 위한 연약지반 침하 방지와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부지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후 공장용지로 사용 하였고 현재는 본 공장의 야적장 부족으로 인하여 자재 야적장,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폐기물 매립 후 불법사용 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였으며, 세 번째 사실 확인 없이 폐기물 매립 물량을 만 여톤으로 과장되게 기사화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추측성 기사를 밝히며 2007년 7월 30일 보도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샘물협회가 회원사에 병마개를 직접 공급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공동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샘물협회 (회장 장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서울신문 : (1) 『이상한 ‘샘물협회’』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4일자 10면)

내 용 : 샘물 제조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샘물협회가 병마개 제조사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기존 병마개 제조업체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업계는 “협회가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병마개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기존 업체들을 고사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샘물 업계 전체 제조업체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선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00년 환경부의 비영리인가법인으로 설립

된 샘물협회는 현재 먹는 샘물 품질인증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샘물협회가 2006년부터 공동구매 형태로 병마개 판매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10여개 병마개 제조업체들과 갈등이 시작됐다. 통상 이들의 납품가격이 1.5~2l 페트병 기준 8~9원 정도(제세공과금 포함)지만 샘물협회는 7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샘물협회가 저가 경쟁력을 무기로 3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달 가동에 나선 자체 공장의 제품은 6원 이하 가격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 병마개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2) 『협회 “품질관리 요구 당면” 업계 “영세업체 고사 위기”』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4일자 12면)

내 용 : ‘먹는 샘물’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논쟁의 중심에는 ‘먹는샘물 인증제’와 ‘납세 증명 표시제’가 있다. 환경부와 샘물협회는 생수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생수 업계는 현행 관리체계는 생수품질 관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1995년 ‘먹는물 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판매가 시작된 생수시장은 해가 갈수록 급신장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수 시장규모는 지난해 39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10~25%가량 성장을 거듭해 올 해는 4500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로 양측 대립

최근 업계와 샘물협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첫 번째 사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 생수 제조업체의 원수, 공장환경, 제조과정, 제품, 관련법규 준수, 유통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제도의 시행과 관리는 모두 한국샘물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그동안 국내 생수시장은 품질 차별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단순 물량 위주의 성장만 이뤄져 온 게 사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샘물협회 회원사 제품 직접 공급으로 이익 챙긴 사실 없어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4일자 사회면에 “이상한 샘물협회”라는 제목으로 샘물협회가 공동구매 형태로 병마개 판매사업을 통하여 샘물협회가 병마개를 회원사들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샘물협회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샘물협회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제안받아 가장 가격이 낮은 업체로부터 병마개를 공급받아 이를 공급받기 원하는 회사에 한하여 공급받은 가격 그대로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있어, 병마개 공동구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저희 서울신문 3월 24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하여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으로 장덕연 회장님 이하 협회 임직원에게 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향후 더욱 충실한 취재를 통해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먹는 샘물 관리제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불편부당한 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서울신문이 활동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샘물협회와 관련해서 보도하는 경우 협회측 반론 및 입장이 적절히 반영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의 내용대로 유감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경기 화성에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한 신청인이 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홍 사 광

피신청인 : 프리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프리존뉴스 : 『[단독]한나라 공천 신청자 ‘허위학력’ 많다』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7일자 프리존뉴스 종합면)

내 용 : 한나라당 총선 공천 신청자 가운데 외국의 비인가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이를 공천서류에 기재한 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 외에 경남 양산 공천신청자 P씨도 비인가 대학인 미국 괌 파일론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이력서에 기재했으며, 경기 화성 H씨 역시 미국 유인대학(yuin university)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박사라고 소개했다.

유인대학의 경우 지난해 KBS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어떤 사이트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실상의 유명대학’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던 곳으로 비인가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경기조정1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학위 취득 관련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지난 2월 17일자 본지에서는 「[단독]한나라 공천신청자 ‘허위학력’ 많다」 제목으로 한나라당 공천신청자 중 일부가 공천서류에 비인가대학에서 받은 학위를 기재했으며, 이는 정식학위가 아니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하여 화성시 한나라당 공천신청자인 H씨가 이의를 제기해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교육국에 확인한 결과 H씨가 학위를 취득한 유인대학교(Yuin University)는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 박사를 포함한 학위를 적법하게 수여하는 학

교로 확인돼 원 보도문 중 해당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H씨는 동 대학교 학력은 정식학위로 공식적인 증빙서류에 게재할 수 있으며, 사설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지 못한(non-accredited) 대학을 비인가대학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미국 교육 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본보 보도에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프리존뉴스에서는 선출직 및 임명직 공직자들에 대한 학력 검증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내보냈으며 H박사님과 다른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프리존뉴스’(www.freezonnews.co.kr) 초기화면 하단에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한다. 아울러 프리존뉴스가 기사를 제공하는 네이버, 다음, 하나포스 등 포털사이트에도 같은 기사를 표출한다.

• 피신청인은 프리존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단독]한나라 공천신청자 ‘허위학력’ 많다”)의 본문 상단에 위 항의 보도문을 링크(제목(「학위 취득 관련 바로잡습니다.」)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시킨다. 프리존뉴스가 기사를 제공하는 네이버, 다음, 하나포스 등 포털사이트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을 2008년 4월 16일까지 이행한다.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각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 및 담당 기자 등 소속 임직원에게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프리존뉴스 : 『학위 취득 관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4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부산 감천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등 거짓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사하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3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사하신문 : 『어디까지 왔을까?』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9일자 4면)

내 용 : 2007년 5월 16일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 계획 중인 감천1동 감천2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조합원들 사이에서 첫째,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사업 포기를 했다는 내용과 둘째, 조합원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셋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중단된 시점까지 소요된 사업비를 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이 있어 조합원 중 K씨에게 사하신문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조합원 김○○ 씨로부터 지난 2008년 1월 9일 동석한 자리에서 그러한 세 가지 내용을 들은 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차 2008년 1월 10일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최○○ 조합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여 첫째,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사업포기를 했다는 내용과 둘째, 조합원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셋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중단된 시점까지 소요된 사업비를 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질문한 바 전부 거짓이라며 그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9일자 4면에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 어디까지 왔을까?』 제하의 기사에서 감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K씨가 김○○ 씨로부터 첫째,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사업 포기를 했다는 내용과 둘째, 조합원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셋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중단된 시점까지 소요된 사업비를 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김○○ 씨는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사하신문 : 『해명서』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4일자 1면)

내 용 : 감천 재개발 주민 여러분! 본인은 감천1동 재개발 구역에 살고있는 조합원 김○○입니다. 저는 사하신문이 2008년 1월 29일자로 보도한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 본인은 사하신문에 인터뷰한 적도 없습니다.
- 롯데건설 측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K씨의 말에 대한 삼자확인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 위의 사실을 신문사 측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감천2구역 조합원 여러분! 저는 조합 측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문건을 배포하는 진의를 알 수 없으며 이것이 또다른 의혹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 측에서 배포한 문건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를 신청인과의 합의하에 게재하였으며, 보도내용이 사실이므로 정정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소매치기 피해자인 신청인의 신원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8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양 ○ ○
피신청인 : 광주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광주일보 : 『광주 차량 ‘날치기 2인조’ 검거』 제하
의 기사 (2008년 3월 29일자 3면)
내 용 : 광주북부경찰은 28일 도심에서 차량을 타

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문모(25·북구
두암동) 씨 등 2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0시50
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H아파트 앞길에서 1t 화
물차를 타고 가다 양모(여·36) 씨의 40만 원 상
당의 지갑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수 차
례에 걸쳐 1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지자체의 ‘묻지마식 영어마을건립’의 부실운영 실태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민영영어 체험시설을 사례로 들어 피해를 입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2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화이트넥스트
(대표이사 조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3월 24일
20:00)
내 용 : ▷앵커 : 지금도 영어마을 대부분이 적자
에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전국의 지자체
들이 또 앞다퉈 묻지마식 영어마을 건립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서울 양재동 공원부지에 마련된 한 영

어체험공원. 지난 2005년 서초구가 4천 제곱미터 부
지를 대고 민간 업체가 시설을 지었지만 이용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56명 방
문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 평일에도 출입문이
잠겨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 운영되고 있어요. 무슨 말
씀을... 다른 영어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묻지마식 지자체의 영어마을 건립과 적
자운영의 양재동 영어체험공원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4일 8시뉴스에서
「방향 잃은 영어마을-묻지마식 건립」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양재동 공원부지에 마련된 영어체험공원을 지자
체의 묻지마식 건립과 부실운영의 모델로 보도하였습
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

이 아니며 민간기업이 기획에서부터 건립·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자운영의 문제점을 밝히는 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과, 현재 양재동 영어체험공원 엘리스 파크는 영어를 게임으로 체험하는 주말프로그램과 주중 유치원 및 단체 프로그램이 활성화 운영되는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PR보도
- 내 용 :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24일 <8시 뉴스>의 『문지마 건립 적자』 제하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후속보도 하되, 현재 운영 중인 '엘리스 파크'의 주된 프로그램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리포트물로 1분 20초 내지 1분 40초 분량으로 방송하고, 추가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대표이사(조○○)의 인터뷰를 포함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5월 16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SBS-TV 「뉴스퍼레이드」(전국송출시간)에 보도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2008년 4월 28일 17:37)

내 용 : ▷앵커 : 어린이들이 영어에 재미를 붙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동화처럼 꾸며진 야외공원에서 원어민과 함께 놀면서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생겼다면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답답한 교실이 아니라 탁 트인 야외공간, 그것도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다양한 건물, 그리고 다양한 조형물로 이뤄진 영어체험공원을 소개해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곳은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영어로 놀고, 말하고, 게임하는 영어전용 체험공원입니다. 총 4천제곱미터의 부지에 높이가 8미터의 중절모 모양의 건물, 큰 고양이 한마리가 지붕에 앉아있는 독특한 건물, 위·아래가 완전히 뒤바뀐 '거꾸로 집'까지 모두 9개의 영어체험 코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원을 한바퀴 돌면서 동화를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외국인 교사와 만나게 됩니다.

▷정○○/초등학교 5학년 : 영어 발음이랑 그런 걸 잘 들을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친해질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아요.

▷기자 : 단순한 영어 문장이 아니라 영어권 나라의 미술과 음악, 음식 등을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영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서울시 신사동 : 직접 원어민을 만나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영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도움됩니다.

▷기자 : 평일에는 주로 단체 입장객만 받는 이 체험공원은 영어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달 프로그램과 테마를 바꾸고 있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

신청인들이 국고보조로 지어진 진도군 서망항의 서망어촌계 냉동창고를 어촌계원들 모르게 매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외 2인

피신청인 : 예향진도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예향진도신문 : 『서망어촌계 냉동창고 불법 매매 주장』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1일자 1면)

내 용 : 서망어촌계는 지난 94년 어촌계 명의로 정부로부터 보조사업비를 받아 숙원이던 냉동창고를 건설해 어민들의 기대가 컸다. 진도 서망항은 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84년 진도대교 개통으로 국도 18호선이 본항까지 연장되었으며 86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망항은 꽃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잡혀 위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오징어와 조기 위판량도 크게 늘어나 진도수협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어선들이 대도시로 운반하기 위한 냉동시설과 얼음 등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 냉동창고업자의 수입도 크게 늘었으나 정작 서망어촌계는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구경꾼으로 전락, 한숨만 쉬고 있다.

이는 애초 서망어촌계로 나온 국고보조 냉동창고사업을 계속 운영하지 못한 채 전임 어촌계장(박○○)이 어촌계도 모르게 특정인과 일방적인 위탁운영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당시 어촌계장은 서망어촌계의 규약을 전혀 무시한 채 입회인도 없이 개인이 계약하면서 어촌계 직인까지도 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당사자는 계속 “문제가 없다”며 위탁경영자의 가족이 모 인터넷신문 기사임을 앞세워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줘 어촌계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중이다.

K모 광주방송국은 1월 25일 ‘지역기자들의 두 얼굴’이란 제목으로 사회고발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핵심내용은 진도지역 소수의 주재기자들이 이권개입과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개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뒤늦게 안 진도한전에서는 “농업용전기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냉동창고 전기세에 대한 추징금을 통보했으나 어쩔 일인지 추징금 중 절반에 가까운 1억 2백여만 원을

“고의가 아니었다”는 공색한 변명으로 감면해주고 나머지도 4회 분납이라는 혜택을 주어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이 “한전도 혹시 뒤가 구린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반 주민들이 이랬다면 과연 한전이 몇 푼이라도 감면해 주겠느냐”며 혀를 차기도 했다.

남동서망어촌계는 지난 2월 14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보전권리 원인무효에 의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어촌계장 하○○을 대표자로 신청이 된 상태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망 냉동창고 직인 도용 불법 매매’ 사실무근 허위보도

• 내 용 : 2000년 3월 11일 당시 서망 어촌계장 박○○ 씨와 박○○ 씨간에 서망 냉동실 매매계약은 보도와 달리 어촌계원 입회아래 체결된 공개된 계약으로 어촌계에 보고된 바 있으며, 당시 남동서망어촌계내 서망어촌계는 별도로 직인을 만들지 않아 계약시 어촌계 직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향진도신문은 3월 11일자 1면에 ‘어촌계 모르게 직인 도용 및 무단계약, 불법계약’이라고 사실 무근인 허위 보도를 함으로 박○○ 씨와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이에 바로잡습니다.

또 예향진도신문의 보도와 달리 박○○ 씨가 어촌계원들에게 수백만 원씩 전기세 추징금 분담금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냉동실 신축 당시부터 서망어촌계는 제3자의 위치에서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매매계약 이전에는 이익금을 받은 것처럼 왜곡보도를 하였으며, 매매계약을 위탁운영계약으로 체결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을 바로잡습니다.

특히 보도된 매매계약의 진위여부는 양측이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인데도 예향진도신문은 어촌계쪽 주장만을 보도한 점 사과하며 바로잡습니다.

예향진도신문이 매매계약자 박○○ 씨의 친형인 박○○ 씨(진도뉴스 대표)가 합법적으로 주도한 냉동실 매매계약을 이권개입으로 비화시켰으며, 사용하지 않은 직인을 ‘도용 사실이 드러나 무마’하려 했다는 허위보도로 언론인 박○○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음을 사과드리며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1일자 “서망어촌계 냉동창고 불법 매매 주장” 제하의 기사에서 전임 어촌계장 박○○ 씨가 어촌계도 모르게 특정인과 일방적인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고, 서망어촌계 규약을 무시한 채 어촌계 직인을 도용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계약당사자였던 박○○ 씨와 박○○ 씨는 냉동실 매매계약은 특정인과 일방적인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어촌계원이 입회한 아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어촌계 직인을 도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박○○ 씨가 서망어촌계 회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전기세 추징금 분담금을 통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냉동실 신축 당시부터 서망어촌계는 제3자의 위치에서 냉동실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진도뉴스 대표인 박○○ 씨는 냉동실 매매계약을 합법적으로 주도한 사실만 있을 뿐 이권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4월 2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예향진도신문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전 어촌계장 개인이…)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예향진도 : 『“서망어촌계 냉동창고 불법매매 주장”에 대해』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7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대학이 총학생회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등록금 인상반대운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우석대학교 (총장 라 ○ ○)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주KBS-1TV : 「TV PATROL」 프로그램 (2008년 3월 14일 19:30)

내 용 : ■ 맹○○ PD

▷지난해 부정선거의 혼란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학생회장이 당선이 됐지만 학교는 여전히 혼란에 싸여있다.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이 확정됐

고 ... (중략) ... 3후보는 부정투표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개표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하자는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기호 2번 현재의 총학생회 측이 16표 차이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선거시행 세칙은 학교측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결정하면 의결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지난 4년간 인상률은 최대 4%정도에 불과했지만 등록금 협상이 없었던 올해는 무려 8.3% 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맹○○ PD

▷부정선거가 있음이 밝혀지자 세 후보는 부정투표 용지를 제외하고 득표수가 가장 높은 후보가 당선된다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개

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6표차이로 현재의 총학생회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의결을 통해 이들을 당선을 인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 홍○○ 변호사

▷이 학교의 시행세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이하로 구성하고 의사정족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참석을 했고 그 중 4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의결은 유효하다고 할것입니다.

■ 맹○○ PD

▷당선의 정당성을 가져오라는 애매한 말을 반복합니다.

■ 김○○ PD

▷왜 걸렸나?

▷네 그렇죠. 왜 이런식으로 밖에 못하냐?

■ 홍○○ 변호사

▷많은 대학들에서 총학생회와 학교의 결탁은 마치 공공연한 비밀처럼 혹은 관행처럼 되어있는 듯합니다. 다시말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총학생회가 오히려 학교 측의 입장에 서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홍○○ 변호사

▷실제로 지난 2002년 이 학교의 이사장이 학교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와 결탁한 듯 보이는 일부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동료학생들을 무력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와 관련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14일자 <PATROL 무허가>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대학의 총학생회장 선출과정에는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맞지 않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고, 과거 이 대학교의 이사장에 관련된 보도내용은 현재 문제와 아무런 관련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TV PATROL>는 3월 14일 “도내 한 대학의 총학생회 불인정 논란”관련 방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총학생회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학생들의 주장처럼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주KBS-1TV, TV PATROL」 2008년 4월 18일자 프로그램 초반에 위 보도문을 제목과 본문은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KBS-1TV : 「TV PATROL」 프로그램 (2008년 4월 18일 19: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회의원 100명을 당선시키겠다고 공언한 특정 목사에 대해
인신공격적인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e뉴조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3.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e 뉴 조 : 『뽀스 목사님과 꼴뚜기 왕자님』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3일자 종합면)

내 용 :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다’는 말이 있다.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도 있다.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드는 신도들이랑 내가 화끈하게 밀어서 장로 대통령 하나 세웠는데, 그깟 국회의원 100명 정도야 못 만들겠나 싶었나보다.

목사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이번 총선 때 국회의원 100명을 당선시키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어떤 성령이 누구에게 어떤 예언을 해주셨나 싶어서 <뉴스앤조이>와 <뉴스파워>에 실린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았다. ‘아하, 뽀스 목사 얘기구나.’

‘청교도 영성훈련원’이라는 집단이 한국에 있다. ‘청교도’니 ‘영성’이니 ‘훈련’이니 하는 듣기 좋은 단어는 다 가져다가 붙였다. 규모도 제법 크다. 자기들 말로는 수백만 명이 영향권 안에 있다. 근데 이 집단의 원장이고 목사라고 하는 전○○ 씨는 엽기적인 설교나 강연을 자주 하는 바람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개신교 목사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전 씨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수많은 전○○ 어록 중에 히트작만 간단히 소개한다.

2005년 1월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 씨가 2000명이나 되는 목사 부부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인 나를 위해 죽으려는 자가 70% 이상이다. 내가 손가락 한 개 펴고 다섯 개라 하면 다 다섯 개라 한다. 자기 견해 없이 목사를 위해 열려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주’가 되어야 한다.” (중략)

전○○ 씨가 영화배우 송강호에게서 영감을 얻은 장면이라라. 사이버 집단 교주나 3류 조폭 두목이나, 그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백미는 그 다음이다.

“이 성도가 내 성도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

집사에게 뽀스(뽀티)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또 하나는 인감증명을 훔쳐 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가져오면 내 성도요, 어디 쓰려는지 물어보면 아니다.”

2006년 4월 천안 집회에서 한 말이다.

“우리 여자들, 교회 올 때에 너무 짧은 치마 입으면 돼? 안 돼? (사람들: 안 돼요.) 뽀스 다 보이는 치마 입으면 돼? 안 돼? 내가 그렇게 입고 오면 들춘다. 인터넷 들어가 봐. 전○○ 목사는 뽀스 입은 여자 들춘다고 나와 있어. 우리 교회도 보면, 당회장실에 나하고 상담하러 오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 입으면 뽀스가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럼 가려야 할 것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아멘 하는 년 하나도 없네. 아멘 해봐. (사람들: 아멘.) 한 여름철 큰 교회에 가 봐. 큰 교회는 강대상이 높아. 강대상에서 앞에 앉아 있는 년들 보면 젖꼭지 까만 것까지 다 보여. 그럼 돼? 안 돼? 대답해봐. (사람들: 안 돼요.)”

하나님이 전○○ 씨한테 300만 명 청교도 신도들 앞에서 뽀스 벗고 설교하면 진짜 목사고 뽀스 안 벗으면 똥개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것이 아쉽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이명박 동영상보다 인기 높았던 허경영 동영상을 한순간에 제치고도 남을 만한 명품 동영상이 탄생했을 텐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 목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에 대한 사과문
- 내 용 : 2008년 1월에 본 뉴스 사이트에서 기재된 글에 대해 전○○ 목사에 대해서 일방적인 내용의 신문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 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로서 발언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3

사 건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지앤커뮤니케이션 (e뉴조)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43-2

대표이사 방 인 성

주 문 : 이 사건 조정신청들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뉴스앤조이(<http://www.newsnojoy.co.kr>)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과 별지 2. 각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각각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2008년 1월 3일자 『뽀스 목사님과 풀두기 왕자님』 제하의 기사와 2008년 3월 21일자 『테스크시선』이젠 금배지로 교회를 수호하겠다고?』 제하의 기사에서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인 전○○ 목사의 설교내용을 비난하면서 그를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빗대어 묘사하고, 조용기 등 일부 교회 목사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기독사랑실천당’을 창당한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도함에 있어 특정 목사들의 실명을 적시하면서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신공격을 하였으므로 사과 내용을 포함한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이고,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위 기사들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위 기사들로 인해 신청인이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신청인이 위 기사들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 중재부가 2008년 3월 27일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보도 조정신청들은 모두 이

유 없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1.

〈별 지1〉

- 제 목 : 전○○목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에 대한 사과문
- 내 용 : 2008년 1월에 본 뉴스 사이트에서 기재된 글에 대해 전○○목사에 대해서 일방적인 내용의 신문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 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로서 발언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별 지2〉

- 제 목 : 기독사랑실천당과, 조광훈, 전○○ 목사에게 대해 일방적인 공격글에 대한 사과글
- 내 용 :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기독사랑실천당, 조광훈, 전○○ 목사에게 대해서 인신공격성의 글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글이 되길 바랍니다.

〈별 지3〉

-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 내 용 : 황○○ 님,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상담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양○○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21일 뉴스앤조이 신문사를 상대로 저희에게 조정신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 사건이 접수되지 못하고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기재하신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 메일을 확인하시는데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즉시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이라든가, 사무실 전화번호를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접수되지 못하고 대기상태로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도 해

당 기사와 선생님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시 말해 제3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요청하신 정정보도청구는 반드시 그 기사에 언급된 당사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100명을 당선시키겠다고 공언한 특정 목사에게 인신공격적인 기사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I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e뉴조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3.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e 뉴 조 : 『이젠 금배찌로 교회를 수호하겠다고?』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1일)
내 용 : 한국교회는 떨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통일교가 언제라도 교회를 죽이기 위해 나설지도 모른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돈도 좀 있는 목사들이 더 이상 떨지 말고 아예 이 참에 세속권력의 세계로 진출해보자고 나섰습니다. 명분은 교회주변에 두툼한 보호막을 쳐서 더 이상 외세의 침입 앞에 떨지 말자는 것이죠.
처음에는 청교도 영성훈련원 원장 전○○ 씨가

총대를 땀습니다. 그는 뻘스 발언과 이명박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발언 때문에 이미 언론으로부터 맞을 만큼 맞아서 그런지 상당한 멧집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힘 있는 목사들이 믿고 임무를 맡길 만큼 교회에 대한 충성심도 좋고 색깔도 확실합니다.

그가 장로 대통령 시대를 맞아 마냥 들떠있는 기독교 진영에 갑자기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끼리-목사들끼리가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금배지를 달고 정치권력을 잡아보자고 말이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9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결 정 문

〈2008서울조정93의 결정문 참조〉 □

구미 D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딸을 교사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학교법인 도개학원 (이사장 조 ○ ○)
피신청인 : 영남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영남일보 : 『이사장 자녀라면 대번에 교사?』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6일자 6면)
내 용 : 구미의 한 사립고교 학부모들이 교사 신규 채용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D고 학부모들은 4일 이 학교 생물교사 신규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경북도교육청에 제기했다.

학교운영위원장 L씨는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학교측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딸인 A씨를 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L씨는 또 “이 학교의 교사 채용 시험에는 총 17명의 지원자가 응시했으며, 대부분이 기간제 교사 경력을 가진 사범대 생물과 출신인 것과 달리, A씨는 전공과 다소 거리가 있는데다 올 2월에 졸업, 교직 경력도 전무해 최적격자라 볼 수 없다”고 공정성에 의의를 제기했다.

L씨는 이와 함께 공개채용 과정에서 생물 관련 비전공 교수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시험감독을 하는 등도 적절치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사장 자녀라면 대변에 교사?” 구미

D고 채용 잡음 ... 학부모들 강한 반발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6일자 사회면에 “이사장 자녀라면 대변에 교사?” 구미 D고 채용 잡음 ... 학부모들 강한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신규 교사 채용과정에서 학교측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딸인 A씨를 합격시켰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학교법인 도개학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한 것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

김천시 삼애원(한센인 집단시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투자자금도 없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김천시로부터 사업중단을 권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상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일보 :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 ‘잡음’』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6일자 14면)

내 용 : 경북 김천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삼애원 (한센인 집단거주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시행사가 투자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해 당초 주장과는 달리 사업추진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사업시행사측 임직원들마저 잇따라 회사를 떠나면서 불법의혹까지 제기, 파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주민들과 투자자들에 따르면 김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D사는 지난해 12월 김천시와 양해각서를 맺은 뒤 이달말까지 삼애원 토지 40여 만㎡에 대해 우선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등 늦어도 올 연말까지 대상토지 60여 만㎡를 매입해 사업인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업체는 투자금 없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초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한 삼애원부지 매매계약 약속시한이 불과 일주일

이 남은 지금까지 삼애원 지주들로부터 단 1㎡의 땅도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삼애원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해 온 이 업체 임직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회사 측이 이른바 ‘대포통장’을 보여주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회사에 임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사퇴한 A모 씨는 “대표가 투자금을 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말썽을 일으켜 이 과정에서 등기상 이사 2명 등 5명의 실질적인 임직원이 모두 자퇴하거나 강제 퇴직조치를 당해 현재는 직계 가족만 남은 상태다”며 “특히 수십억 원이 든 대포통장 등을 동원해 투자자와 지주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고액 배당금을 미끼로 내세우는 등 전형적인 사기행각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D사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회사측에서 투자자를 유치한 적이 없고 일부 브로커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삼애원측의 문제로 사업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으나 이달 말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문이 커지자 김천시는 최근 삼애원측에 “D사와의 사업추진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천 삼애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3월 26일자 사회면 14면에 제목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 ‘잡음’, 부제목 시행사, 거액 ‘대포통장’으로 투자자 현혹 파문 확대... 市, 사업투자 잠정중단 권고로 하여, 대상컨설팅 주식회사(대표이사 장○○)가 시행하고 있는 김천 삼애원 개발 사업에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상컨설팅 주식회사는 자금력이 있고 삼애원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김천 삼애원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천시도 대상컨설팅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업 중단을 권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3월 26일자 사회면 14면에 ‘김천 삼애원 도시개발사업 잡음’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김천시는 삼애원측에 “공문상으로 사업중단을 권고한 적이 없고 각별히 유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오프라인 한국일보 지역판 14면(지역면)에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8년 5월 16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대상컨설팅(주) 대표이사 장○○ 관련 수사결과가 나올 시에 한국일보에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보도 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충분히 협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0일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입소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 ○ ○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주KBS-1TV : 「9시 뉴스」 프로그램 (2008년 3월 28일 21:30)

내 용 : ▷멘트 :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사는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남은 밥을 가져다 얼려놓았다가 주는가 하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치매나 중풍을 앓고있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입니다. 주방에 들어가 냉창고 문을 열어보니, 밥을 비닐봉투에 담아 쪄놓아 놓았습니다. 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한 밥알이 있는가 하면 누렇게 말라버린 밥도 섞여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얼렸던 밥을 밥솥에 다시 찌 노인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녹취 : 노인가족 : “밥이 나왔는데, 밥이 안좋았어요. (밥이 노랗게 말랐던데) 네, 그 때도 그랬어요.”

요양원 원장은 동생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남은 밥을 가져다가 냉동 보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요양원 원장 : “(동생)식당이 생긴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서 양이 많으면 갖다가 드리고 남은 건 얼리고, 그걸 찌서 저도 같이 먹고.”

이 요양원에서는 노인 환자들의 관장을 하면서 위생 장갑 대신 주방용 고무장갑을 쓰기도 했습니다.

▷녹취 : 요양원 거주 노인 : “여기 앉아있는데 저기까지 문앞까지 끌고 나가잖아. (어딜잡고요?)

내 먹살 여기 뒷덜미를 붙잡고...”

▷녹취 : 요양원 원장(구타가 있었나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이곳은 노인 가족들로부터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아온 인가 요양시설이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3월 28일 “노인 학대 요양원” 제목의 보도에 대해 확인 결과 “노인들에게 얼린 밥을 제공하고, 관장시 주방용 고무장갑을 사용했으며, 노인 뒷덜미를 잡고 문앞까지 끌고 나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노인요양시설, “학대사실 없다”주장
- 내 용 : 3월 28일 「노인 학대 요양원」 보도와 관련, 해당 요양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관장약을 사용하여 관장하는 등 노인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5월 3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주KBS-1TV, 9시뉴스」 프로그램 시간에 위 보도문을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화면 하단에 제목을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5월 2일 21: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들이 모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권 ○ ○ 외 4인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종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기자에 ‘돈 봉투’ 전달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31일자 1면)

내 용 : 음식점 주인 신고에 선관위 조사...당사자들 부인

강원도 정선의 돈봉투 사건이 18대 총선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통합 민주당 소속 모 후보가 모 일간신문사 기자들에게 거액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 격전지로 부상한 전주의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A후보가 최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일간지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후보가 당시 같은사 소속 일간지 정치부 선거담당 기자 3명과 식사를 마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전주 인후동의 한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고자는 최근 자신의 음식점에서 기자들 3명과 식사를 하던 모 후보가 돈다발이 든 봉투를 기자들에게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실 관계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후보측과 기자들은 ‘밥값을 자신들이 나눠 계산하려던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돈을 뿌린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도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기자에 ‘돈 봉투’ 전달 의혹 잘못 보도
- 부제목 : 음식점 주인 신고 선관위 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새전북신문은 지난 3월 31일자 1면에 ‘기자에 돈봉투 전달 의혹, 음식점 주인 신고에 선관위 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10면 사설에 ‘돈봉투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모 신문기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음식점 주인이 전라북도 선관위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전북도 선관위에서도 이에 대해 신고·제보를 받거나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새전북신문은 전라북도 선관위와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선관위의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기사출처를 전라북도 선관위로 허위 인용해 1면과 10면 사설란에 잘못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보도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잘못된 보도내용에 대해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새전북신문 : 『선관위, ‘돈봉투 수수 기자회견’ 연 김 모 씨 고발』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8일자 6면)

내 용 : “허위사실 유포” 배후조사 요청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 위반)로 김모(여·48)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전주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덕진구 모 후보와 기자 간 돈봉투 수수가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경위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지난 2일 선관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돈봉투 수수 등과 같은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런 내용의 신고·제보도 없었음’을 밝혔고 김씨에게도 이 사실을 여러 차례 설명했으며 김씨의 주장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김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

신청인들이 모 국회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권 ○ ○ 외 4인

피신청인 : 전주MBC-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4.

처리결과 : 취 하

전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3월
28일자 21:30)

내 용 : <2008전북조정1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전북조정1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신청인이 농협회관 신축용지 매입 당시 실제 매입가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해 차액을 챙기는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곽 ○ ○

피신청인 : 대전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대전일보 : 『아산 모 농협 전직 조합장 비위 포착』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6일자 14면)

내 용 : [아산]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아
산지역 모 농협 전직 조합장의 비위를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아산 모 농협 전직 조합장의 비위를 포착 농협으
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농협 전 조합장 A씨 등 간부
3~4명은 농사를 짓지 않는 친인척 등 주변 사람

들에게 불법으로 저리의 농가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친인척 등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대
출금 중 일부를 탕감해 쥐 농협에 손실을 끼친 혐
의까지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신축용지를 매입하면서 실제 매
입가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억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아산의 전직 농협조합장
과 관련된 수사를 수사팀에 새로 배정한 상태”라
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비위내용이 사실이라면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해 경찰수사결과에 관
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해당농협 관계자는 “내부조사를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음해세력이 퍼트린 소문에 불과하다”고 말했
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아산 모 농협 전직 조합장 비위 포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26일자 14면에 “아산 모 농협 전직 조합장 비위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아산지역 모 농협 전직 조합장 A씨가 농협회관 신축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입가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익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아산지역 모 농협 전직 조합장 A씨는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원칙대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아산 모 농협 전직 조합장 비위 포착”
기사와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3월 26일자 14면에 ‘아산 모 농협 전직 조합장’에 관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지역 모 농협 전직 조합장 A씨는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원칙대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알려왔으며, 현재 결과가 밝혀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비위 포착’이라는 단정적 제목으로 표현한 데 대해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전일보 2008년 4월 17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충남경찰청, 친인척 불법대출등 혐의...)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추후 이 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등의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이를 즉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건 조정건과 동일한 지면 및 위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대전일보 : 『‘아산 모 농협 전직 조합장 비위포착’
기사와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농협회관 신축용지 매입 당시 실제 매입가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해 차액을 챙기는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광 ○ ○

피신청인 : 아산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아산투데이 : 『A농협, 비위 혐의로 곧 경찰 수사 받을
듯』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7일자 2
면)

내 용 : <2008대전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대전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2008대전조정7의 합의사항 참조〉

아산투데이 : 『‘A농협, 비위 혐의로 곧 경찰수사 받을듯’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함안군의회 의장이 축구장 안에 건립될 궁도장에 대해 설계변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안 상 원

피신청인 : 함안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7.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함안신문 : 『스포츠 타운 내 궁도장 건립-군의회 의장이 집행부 압력 의혹제기 ‘물의’』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9일자 2면)

내 용 : 함안군이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타운 조성을 두고 갑론을박의 궁지에 몰려 있다.(본지 3월 5일 3면 보도) 함안군은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해 가야읍 도항리 260-5번지 일원 91,521㎡에 축구장, 궁도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풋살 경기장, 주차장 370면,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취득 군의회 심의, 농업진흥지역해제, 2005-2006년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스포츠 타운 기본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8년 3월 82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공사 발주를 했다.

이에 따라 각 경기단체 회원들의 반응은 타 경기장 속에 궁도장이 설계되어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구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축구협회가 의회를 방문, 항의를 하자, 의회 의장은 실무자를 통해 설

계 변경은 절대 불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취재진이 실무자에게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더니 다른 곳을 물색중이나 여의치 않다, 화살이 체육인들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는 주장에 따라 수벽(樹壁, 나무 심는 것)을 설치해서라도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14일 함안군은 군청회의실에서 체육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단체들의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 경기단체는 입적도 못했는데 궁도장 건립에 10억 원의 예산 투입은 특정인의 억압이 아니냐며 형평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함안군수는 궁도장의 최적지를 찾아 설계변경을 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면 부득이 본 설계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양해를 구하자 계단으로 퇴장하는 경기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와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스포츠타운 내 궁도장 건립 - 군의회 의장이 집행부 압력 의혹제기 ‘물의’ →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9일자 제2면에 스포츠타운 내 궁도장 건립 군의회 의장이 집행부 압력 의혹제기 ‘물의’라는 제목과 의회의장은 실무자를 통해 설계변경은 절대 불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회 의장은 “집행부 압력 의혹을 제기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가 없으며 설계변경 불

가 주장에 대하여는 불가라는 주장을 거론한 사실
조차 없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한다.

2008. 4. 1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별 지〉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안 상 원

피신청인 : 함안신문

경남 함안군 말산리 487-1

발행인 이 학 규

조정대리인 주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함안신문 2면 우측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군의회 의장이 집행부 압력 의혹제기 ‘물 의’)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은 동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9일자 2면 “스포츠타운 내 궁도장 건립” 제하의 기사에서 함안군 스포츠타운 내 궁도장 건립과 관련, 함안군의회 의장이 실무자를 통해 설계변경은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는 등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의회 의장은 궁도장 건립과 관련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설계 변경 불가 방침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함안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8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이 실시한 학습법 특강이 대학에서 학점 잘 따는 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특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6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성적으로 졸업한 송○○(24·고교 교사) 씨. 이날 특강의 주제는 ‘나도 성적 우수 졸업생이 되고 싶다’였다.

90분간 이어진 강의에서 송씨는 또 다른 최우등 졸업생 김○○(24·회사원) 씨와 함께 재학 시절 시험 점수를 잘 받은 비법, 리포트 성적이 높게 나온 비법 등을 설명했다. (중략)

비슷한 시각, 서강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강의가 열렸다. 제목은 ‘중간고사 시험대비 학습법 특강’. 강사로 나선 서강대 교수학습센터의 한 교수가 나눠준 자료에는 “단답형 문제 대비를 위해 주요 단어는 철자를 꼭 확인할 것” “외울 땐 손으로 직접 써가며 암기할 것” “시험 공부를 철저히 하면 시험이 불안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 『대학마저 “성적 잘 받으려면...”』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3일 오후 5시, 이화여대 포스코관 강당에 150여 명의 학생들이 뻥뻥이 들어섰다. 단상에 선 사람은 올 2월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최우등

마치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의 행사를 방불케 하는 이날 행사는 취업과 학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련됐다. ‘학점 잘 따는 비법’까지 대학이 손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신문기사의 반론 : 서강대 학습법 특강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4일자 사회면에 “대학마저 학점 잘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에서 학점과 취업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학점 잘 따는 비법을 대학에서 손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서강대학교의 학습법 특강 자료의 일부 지엽적 내용을 발췌하여 보도한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서강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오○○ 연구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는 편입생, 새터민, 신입생 및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습법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단순히 학점을 잘받는 요령이나 비법이 아닌 인간의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원리 및 대학에서 더 깊이있게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하여 다루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4월 4일자 사회면 <대학마저 “성적 잘 받으려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오○○ 교수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일부 대학에서 입시학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학점 잘 받는 기술을 가르치는 특강이 늘고있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였으나, 그 과정에서 담당 교수의 실명이 게재되고 강의내용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대학 관련 보도에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오○○ 교수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서강대학교에서 신청인이 진행할 학습법 특강과 관련하여 향후 취재·보도할 경우, 신청인 및 서강대학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청소년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을 밀착취재,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TV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T V N :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 (2008년 3월 27일 23:00)
내 용 : 상록경찰서 강력 1팀에 심상치 않은 사건이 접수되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 한 명이 강력계를 찾

은 것이다. 아이는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는 하교길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는 아이의 친구와 잘 아는 사이라며 자신의 집에 놀러 가자고 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자 곧 본색을 드러낸 남자.

아이의 놀라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파렴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5월 8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 및 보도과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3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강 봉 균

피신청인 : 전북매일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북매일신문 : 『군산의 불운과 행운』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7일자 7면)

내 용 : 군산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불운한 지역사업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운 좋은 사업유치의 가시화 시기에 와 있다. 1994년 말부터 3년여에 걸친 투쟁 끝에 1997년 10월 정부의 허가를 가까스로 따 낸 ‘군산 F1그랑프리’는 우선 불운의 첨예한 예다.

F1그랑프리 같은 국제적 이벤트는 정부 허가 여부가 성패의 관건이다. 대회 허가를 받은 주관회사 세풍월드는 3년여 동안의 지루한 투쟁으로 김영삼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따 냈다. 줄기차게 미루어 오던 정부가 ‘호남푸대접과 전라도기업 방해공작을 그만두라’는 지역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준 게 대선 2개월 전이다.

허가 2개월 후 DJ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F1그랑프리 사업은 비약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듬해 98년 DJ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F1그랑프리는 허가 취소되어 버렸다. 때마침 불어 닥친 IMF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해야 할 정부가 정신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왔다. 그래도 그렇지 정신없을 곳이 따로 있지.

F1그랑프리처럼 허가까지 맡아놓고 되돌리는 바보행진도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도민이 들고 일어나 그랑프리를 ‘전남의 전북기업 약탈’로 몰았다면 누가 감히 그런 약탈을 꿈꾸겠는가. 새만금도 뚜렷이 지킬 의사가 없다면 지금 손드는 게 낫다. 새만금 반대자가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나서는 판이니 새만금도 어찌될지 보장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군산의 불운일지 전북의 불운일지 그 반대일지 불투명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매일신문 ‘오피니언 면’에 노○○ 주필 명의의 “새만금 개발”에 관련된 칼럼을 게재하되, 칼럼 내용에 ‘강봉균 의원이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군산경제자유구역 선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2008년 4월 7일자 칼럼(제목: 군산의 불운과 행운) 관련 유감표시 내용을 포함한다.

• 피신청인은 칼럼 작성시 반드시 신청인과 그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매일신문 2008년 5월 31일까지 7면에 위 칼럼을 게재한다. □

신청인 기업이 ‘우리들병원그룹’에 사실상 공짜로 인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수도약품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김○○)

피신청인 : 헬스코리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헬스코리아뉴스 : 『삼성제약 “우리들그룹에 먹힐순 없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8일자 종합면)

내 용 : 삼성제약의 오너인 김○○ 회장이 본격적인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김 회장은 8일 삼성제약공업 지분 1.38%(10만 3410주)를 추가매입, 개인 지분이 26.25%(202만 2,608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로서 특별관계자 6인을 포함한 김 회장의 전체 지분도 35.26%(242만 2,608주)로 증가했다.

김○○ 회장측의 지분 매입 공시는 최근 수도약품이 자사 지분을 대폭 확대한데 따른 경영권 방어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수도약품공업은 지난 4일 삼성제약의 지분 26.25%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약품과 우리들그룹의 인연

수도약품은 우리들병원그룹의 사실상의 계열회사로 우리들병원 이○○ 이사장의 부인인 김○○ 씨가 대표로 있다.

우리들병원은 수도약품을 사실상 공짜로 인수(?) 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지난 2004년 수도약품은 공정공시를 통해 자사주 400만주(1주당 5600원)를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해 22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당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김○○ 우리들그룹 회장(105만여주), 이○○ 우리들병원 원장(100여만주) 등 14명으로 대부분 우리들그룹 관련자들이었다.

그런데 수도약품은 이후 우리들그룹 계열인 닥터즈메디코아를 유상증자 자금 224억 원에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들그룹이 공짜로 수도약품을 먹은 꼴이 됐다.

우리들그룹은 당시 이같은 방식을 ‘소자본합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우리들그룹의 적대적 M&A에 맞서기 위해 김○○ 회장측이 향후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외양은 제약회사…수도약품 “시선집중”』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일자 종합면)

내 용 :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바이넥스 등 3개사가 지난해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한 반면 대한약품, 수도약품, 대한뉴팜 등 3개사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한약품(1억 원), 수도약품(4억 원), 대한뉴팜(5억 원), 삼성제약(6억 원), 파일약품(7억 원), 고려제약(8억 원), 서울제약(8억 원), 일성신약(9억 원) 등 8개사는 R&D비용이 10억 원에도 못미쳤다.

대한약품(0.38%), 수도약품(0.59%), 대한뉴팜(0.96%) 등 3개사는 R&D 비용이 매출액의 1%에도 못미쳤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삼성제약, 우리들그룹에 먹힐 순 없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1월 8일자 인터넷 보도자료로 [삼성제약 “우리들그룹에 먹힐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삼성제약의 주식을 수도약품이 추가 취득에 따른 삼성제약의 1대 주주인 김○○ 회장의 자사주 추가 지분 취득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사와 관련이 없는 수도약품의 대주주인 이○○ 및 김○○ 주주가 수도약품을 인수시 공짜로 인수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주주 및 금융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되게 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외양은 제약회사... 수도약품 “시선집중”』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4월 1일자 메인화면 보도자료로 [외양은 제약회사... 수도약품 “시선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상장 제약사 R&D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수도약품의 이름을 헤드타이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약품측은 본 보도 자료에 대해 수도약품이 투자한 계열사인 ‘수도정밀화학(주)’, ‘코스모지놈(주)’, ‘한스바이오메드(주)’의 계열사가 수도약품의 R&D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수도약품공업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8년 4월 1일자 [외양은 제약회사... 수도약품 “시선집중”] 제하의 상장 제약사 R&D 투자비용 분석기사와 관련, 수도약품공업(주) 측은 수도약품공업이 투자한 계열사인 ‘수도정밀화학(주)’, ‘코스모지놈(주)’, ‘한스바이오메드(주)’가 수도약품의 R&D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어 투자비용이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2008년 1월 8일자 [삼성제약 “우리들그룹에 먹힐 순 없다?”] 제하와 관련, 수도약품공업은 삼성제약의 지분 확대를 통한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헬스코리아뉴스> 사이트에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 본문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메인 화면의 우측 중앙에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250×40 픽셀 크기의 박스기사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게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헬스코리아뉴스 : 『수도약품공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1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교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중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가해학생을 ‘처벌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하는 등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제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피신청인 : 제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제민일보 : 『학교가 기가막혀』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4일자 사회면)

내 용 :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관심이 학교폭력 사태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대책을 세우기보다 학교측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하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이 집단 구타를 당했다.

A군은 방과후 영문도 모른 채 선배 3명에 의해 인근 초등학교로 끌려갔다.

A군은 전신을 폭행 당한 뒤 이날 저녁 제주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A군의 보호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틀 후에야 가해학생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해학생보다는 학교측의 태도에 격분, 고소했다는 게 A군 보호자의 주장이다.

A군 보호자는 “가해학생 부모가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사건을 덮어두려고 했지만 학교측의 태도가 기가 막혀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A군 보호자는 “해당학교에 보복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안을 요구했을 뿐인데 학교측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판례를 들먹이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특히 가해학생을 처벌하면 그만 아니냐는 교감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A군 보호자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는 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해당학교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은 10년만에 처음 생긴 일”이라며 “담임통제 능력에서도 벗어난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가해학생을 처벌하면 그만 아니냐”는 교감의 태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4일자 사회면에 “학교가 기가 막혀”라는 제목으로 교감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 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호자와 친지간 말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학교가 기가막혀”라는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4일자 사회면에 “학교가 기가 막혀”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가해학생을 처벌하면 그만 아니냐는 교감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 학교 교감은 “그런 언행을 한 적이 없으며, 해당 학부모 또한 그런 내용을 기자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4일자 사회면에 “학교가 기가 막혀” 제하의 보도에서 “가해학생을 처벌하면 그만 아니냐는 교감의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학교 교감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4월 21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제민일보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크기보다 0.5포인트 확대된 크기의 고딕체로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들에게 별도

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1일)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한회사 완도신문 (대표이사 황 ○ ○)

피신청인 : 청해진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해림바이오 완도신문 반론보도 청구 사실과 달라 (또는 해림바이오 완도신문 반론보도 청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청해진신문은 지난 4월 3일 2면에 후코 이단 가공공장인 (주)해림바이오가 완도신문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가 극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청구 한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완도신문에 게재토록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해림바이오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완도신문에 반론보도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림바이오의 반론보도 청구와 관련 완도신문에 어떻게 하라는 강제 권한도 없을뿐더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완도신문이 언론중재위 중재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완도신문이 언론중재위의 일방적인 결정에 어쩔수 없이 반론보도를 수용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보도내용

청해진신문 : 『언론중재위, 완도 B지역신문 반론보도 결정』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일자 2면)

내 용 : 언론중재위원회는 3월25일 허위보도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신청인 해림바이오의 반론청구를 받아들여 피신청인 완도 B지역신문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토록 결정했다.

이날 언론중재위원회는 피신청인 완도 B지역신문에 첫째, 오는 4월9일까지 반론 인터뷰 기사를 신문 및 인터넷판에 게재하되 보도크기를 지난 2월 26일자 유모 씨 인터뷰 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반론 인터뷰 기사를 게재토록 결정하고, 둘째, 완도 B지역신문에 본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사건의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데로 수사결과 내용을 즉시 보도하기로 중재합의 결정을 내렸다. (후략)

조정불성립결정 이유

피신청인 소재 불명으로 조정심리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조정불성립 결정. □

가출 청소년을 돌보던 목사의 성추행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신청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임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3월 28일 21:00)

내 용 : ▷앵 커 : 가출 청소년 등을 돌보는 유명 쉼터 대표가 이곳 청소년들을 성추행 했다는 주장 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 경기도에 있는 한 공동체, 미혼모와 혼혈아, 에이즈 감염자 등을 위해 지난 1990년 설립된 이 공동체에는 지금도 갈 곳 없는 청소년 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든 대표는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대표가 보호하던 청소년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후략)

(2)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2008년 3월 31일 08:30)

내 용 : ▷여자앵 커 : 자.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진실공방이네요.

▷남자기자 : 입에 담기도 뭐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친부모처럼 믿고 따랐던 목사!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돌변했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기도에 한 기독교 소속 쉼터에서 일어난 목사 성추행 의혹사건! 취재했습니다.

▷기 자 : 경기도에 위치한 한 기독교 단체의 쉼터! 성추행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쉼터 관계자들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관계자 1 : 집도 없이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정말 17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던 분인데... 그 분들이... 그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 제 목 : 청소년쉼터 성추행사건 (청소년 공동체

및 봉사자의 두얼굴)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8일자 9시 뉴스데스크에서 “봉사자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되면서, “가출청소년 등을 돌보는 유명 쉼터”라는 앵커의 방송 멘트가 지속적으로 방송, 마치 문제가 발생한 곳이 가출청소년쉼터인 것처럼 방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공동체의 경우 가출청소년쉼터가 아닌 청소년공동체(그룹홈 형태)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MBC 뉴스 홈페이지 다시보기 프로그램에서는 본 사건이 “청소년쉼터 성추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재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 제 목 : 두 얼굴의 인권목사! 성추행 의혹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31일자 오전 8시 30분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두 얼굴의 인권목사! 성추행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에서 가출청소년을 인터뷰하면서 “쉼터”라는 앵커의 방송 멘트가 지속적으로 나가, 마치 문제가 발생한 곳이 가출청소년쉼터인 것처럼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가출청소년쉼터가 아닌 청소년공동체(그룹홈 형태)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 방송의 지난 3월 28일자 <뉴스데스크> “청소년 쉼터 대표, 성추행 의혹”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 ‘한국 청소년 쉼터’와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5월 3일자 <TV 속의 TV> 시간에 방송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본문 내용은 뉴스진행자가 낭독한다.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iMBC>에 게재하되,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링크시키고 조정대상기사와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MBC-TV : 「TV속의 TV」 프로그램 (2008년 5월 3일
11:00)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립현대미술관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실거래가보다 10배 비싸게 구입하는 등 구매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4.

처리결과 : 각 취하

품성과 제작 시기에 따라 가격이 7개 등급 (A~G)으로 나뉘어 유통되고 있으며 A급은 점당 8억~12억 원, B급은 3억~6억 원, C~E급은 5,000만~1억 원대다.

감사원은 이 작품의 구입 경로를 비롯해 가격산정 근거, 위작 여부, 소장가와 의 뒷거래 의혹 등에 대해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략)

보도내용

한국경제 : 『작품 값 10배 부풀렸나, 감사원은 재감정 통보』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4일자 문화면)

내 용 :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이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 설치미술가 마르셀 뒤샹(1887~1968년) 작품 ‘여행용 가방’의 구입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10배 가까이 높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작품 구입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작품은 1941년 제작된 뒤샹의 설치 작품으로 39×34×7cm 크기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소장가로부터 62만달러(한화 약 6억 원·보험료·운송비 포함)를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술전문가들은 작품 가격이 6,000만~1억 원 수준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71년 이후 수집한 미술품 가운데 가장 비싸게 사들인 작품이다.

‘여행용 가방’은 뒤샹 생전에 총 50점을 제작했지만 사후 제작물까지 합하면 300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제 미술시장에서 작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 목 :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4일자 문화면에 “작품 값 10배 부풀렸나... 감사원은 재감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① 국립현대미술관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입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10배 가까이 높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감사원이 작품 구입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고, ② 국립현대미술관은 2005년 미국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소장가로부터 62만달러(한화 약 6억 원·보험료, 운송비 포함)를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술전문가들은 위 작품 가격이 6000만~1억 원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③ 미술평론가 조○○ 씨는 “이 작품은 공식적인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작품의 질도 가죽 가방이 없기 때문에 국제미술시장에서 6,000만 원에 살 수 있는 D급 수준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기사가 게재될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그 전이나 후에도 뒤상작품으로 인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②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은 2005년에 위 작품을 구입할 당시 세계적인 마르셀 뒤샹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프란시스 나우만 박사의 보증을 받았고, 그는 동 작품을 A시리즈와 B시리즈 사이의 작품으로 감정하고 보증서를 써주었으며, 2008년 2월 뒤상 작품의 공인 감정자격을 가진 재클린 마티스 모니어로부터 동 작품이 뒤상이 직접 만든 진품이며 A와 B시리즈 사이의 유니크한 작품이라는 내용의 재감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③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은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후략)

취하 후 보도문

한국경제 : 『국립현대미술관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9일 A36면)

내 용 : 1월 14일자 문화면 ‘작품 값 10배 부풀렸나, 감사원은 재감정 통보’ 제하의 기사와 관련,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은 2005년 마르셀 뒤

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 (1941년)을 구입할 당시 뒤샹 연구의 권위자인 프란시스 나우만 박사의 감정과 보증을 받았고, 2008년 2월에는 뒤상 작품에 관한 법적 상속권자이자 ‘마르셀 뒤샹 작품 보호관리협회’의 이사인 재클린 마티스모니어로부터도 A시리즈와 B시리즈 사이에 해당하는 독특한 작품이라는 감정을 받았다. 모니에에 의하면 이 작품에는 뒤상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A시리즈에서도 소실되어 보기 드문 글라이드(Glider)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미니어처 변기에는 드물게 ‘R. Mutt 1917’이라는 뒤상 친필 사인이 있다. 이 작품은 뒤상이 자신을 잡지 ‘뷰(View)’의 특집호(1945년 3월)로 내준 디미트리 페트로프에게 준 것으로 키슬러(F. Kiesler)가 특집을 기념해서 그려준 ‘3폭 접지’ 그림이 하나 더 들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한 뒤샹의 ‘여행용 가방’은 이처럼 뒤상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며, A시리즈와 같은 69개의 항목과 A시리즈에만 있는 작품들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A에 버금가는 가격가치로 보기에 충분하며, 구매과정에서도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작품구매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조 ○ ○)

피신청인 : 충청매일

중 재 부 : 충북증재부

접 수 일 : 2008. 4. 1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충청매일 : (1) 『지역신문 경영개선 취지 무색』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4일자 1면)

내 용 :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결여로 지역언론의 친(親)정부성향 조장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기금 운영 과정에서도 지역언론의 현실적 사정을 외면한 비합리적인 지원 조건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면서 지역신문발전법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신문사의 경영 구조를 비롯해 편집체계, 기자들의 개인적 자질 등 신문사 경영과 신문 제작에

관한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증방식은 신문사의 자율적 경영편집 방침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잣대를 충족해야 하며, 이에 편승한 친정부성향의 언론시민단체의 편협된 시각에도 부합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자체가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언론은 선정 기준과 자격에 미달되더라도 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와 보수적 성향을 지닌 신문사는 기준과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기금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재정적 구조나 편집권 독립 등 편집 체계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신문사보다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문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연유가 이에서 비롯된다.

충청지역 한 신문사는 지원대상 선정을 앞두고 지역신문발전위 고위관계자로부터 지역 시민언론단체와 관계 개선을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

언론사의 비리나 부정이 공론화됐거나, 언론사주 또는 간부의 불법행위로 기본적인 자격에 미달된 신문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문사는 탈락하는 예도 있다.

여러 심사 기준에서 볼 때 다른 신문사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시민언론 단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지역언론들은 지역신문발전위의 심사 기준 배점에서 의도적인 편차를 조성, 정부와 지역신문발전위 내부 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신문사를 배제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사 과정에서도 경영 구조나 편집 체계보다는 지역의 진보 성향 시민언론단체의 평판을 우선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대상 선정, 난립한 언론계 구조조정 등 필요』 제하의 기사(2008년 1월 15일자 1면)

내 용 : 지역신문발전법이 제정될 당시 지역언론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오히려 신문의 독립성과 자존심을 해치고, 신문 논조의 친정부친시민언론단체화, 신문들간의 갈등 증폭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

임직원의 불법비리 연루로 사법처리된 경우 기금 지원 대상 신청에서 배제되는 데다 기금 지원 선정 이후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취소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원칙은 서류상의 원칙으로만 존재한다.

사주나 기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법처리됐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는 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듯,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선정기준도 오락가락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심사기준은 경영구조개선 및 유료독자 확보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무게를 뒀다. 또 기존 지원 대상자와 신규 신청사를 나눠 평가하고 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동안 선정과정에서 경영구조개선 의지나 유료독자 확보 의지에 대한 심사가 미흡했으며,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좌우됐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실제실행 여부를 떠나 서류상으로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며, 로비 능력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로 둔갑할 수도 있다. 기금지원 대상 선정 때만 되면 언론계에선 누구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느냐에 따라 선정 여부가 좌우된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후략)

(3) 『지역신문발전법에 담긴 지역언론 길들이기』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5일자 12면)

내 용 : 차기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신문법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현행 지역신문발전법에 대한 존폐 논란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역신문발전법은 정부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이다. 열악한 지역신문의 경영 개선을 돕고, 지면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이 법 시행의 취지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법이 지역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고도의 술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역신문의 경영 개선을 도와 신문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신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지역신문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함은 물론 대정부 비판을 못하도록 지역신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기책(奇策)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역신문발전법 이대로 좋은가’ 사실과 달라

• 부제목 :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4일과 15일자에 “지역신문발전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컷 제목으로 상·하 두차례에 걸쳐 ‘존폐 논란의 배경’ ‘해결책’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 1면과 15일자 1면에 “지역신문 경영개선 취지 무색”라는 제목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결여되었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 자체가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진보적 성향의 언론은 선정기준과 자격에 미달되더라도 기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와 보수적 성향을 지닌 신문사는 기준과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기금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 발생되었으며, 지역신문발전위 고위관계자가 충청지역 한 신문사에 지원대상 선정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등의 요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또 15일자 12면에는 “지역신문발전법에 담긴 지역언론 길들이기”라는 제목의 사실을 게재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언론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고도의 술책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년 심사에 들어가기 전 평가기준을 일반에 공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준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4가지 조건과 시행령의 별표 조건을 근거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었거나 친정부 성향 조장을 통해 언론길들이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은 국회 추천 3인, 문화부장관 추천 3인, 기자협회, 신문협회, 언론학회 추천 각 1인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1인을 추천했으며 신문협회나 언론학회의 경우도 친정부 성향을 띠다고 볼 수 없어 위원회가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아온 1도1사 때의 신문(강원일보, 경남일보, 경인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들이 2007년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되어 진보적 성향의 신문사는 선정되고 비판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사가 탈락되었다는 보도도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사주 또는 간부의 불법행위로 우선지원대상사의 기본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에 명시된 대로 신문사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사주 또는 간부의 불법행위로 기본적인 자격에 미달함에도 선정된 신문사가 있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확인결과 지원대상 선정을 앞두고 지역신문발전위 고위관계자가 지역 시민언론단체와 관계개선을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한 충청지역 언론사에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 또한 바로잡습니다.

위원회는 법에 제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나타난 결과대로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한다는 방침 외에 별다른 내부방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위원회의 심사 기준 배점에서 의도적인 편차를 조성, 정부와 지역신문발전위 내부 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기사를 배제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금지원 선정 이후에 임직원의 불

법비리 연루가 발생했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취소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없으며 다만 다음 년도 선정을 위한 평가시 신문사 운영과 관련되어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지만 특별법에 명시된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점수에 반영하므로 어떤 법 위반이냐 혹은 어떤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았는가가 신청대상에서의 제외 여부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법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법 위반이 아닐 경우에도 선정될 수 있고 사법처리 안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점수가 좋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심사 기준 배점에서 의도적인 편차를 조성, 정부와 위원회 내부 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신문사를 배제했다는 보도는 잘못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올해 위원회는 신문사의 경영구조 개선 의지와 유료독자 확보 의지를 심사의 중점사항으로 두었던 것으로 심사기준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완하면서 진화해 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기존 지원 대상사와 신규 신청사를 나눠 평가하고 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한 것은 올해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6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내용으로 선정기준이 오락가락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특히 로비로 우선지원대상사가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로비능력에 따라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로 둔갑할 수 있다거나 기금 지원대상 선정때만 되면 언론계에선 누구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느냐에 따라 선정여부가 좌우된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지역신문발전기금”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1월 14일자 1면, 15일자 12면 ‘지역신문발전법 이대로 좋은가’ 기사 및 사실과 관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일부 내용이 부당하다며

반론을 요청했다.

지신위는 매년 심사에 들어가기 전 평가기준을 일반에 공지하고 있으며 평가기준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명시된 4가지 조건과 시행령의 별표 조건을 근거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됐거나 친정부 성향 조장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신위는 또 위원회 구성이 국회 추천 3명, 문화부장관 추천 3명, 기자협회, 신문협회, 언론학회 추천 각 1명 등으로 돼있고 국회의 경우 한나라당이 1명을 추천했으며 신문협회 등의 경우도 친정부 성향을 띤다고 볼 수 없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 받아온 1도1사 때의 신문이 2007년도 우선지원대상자로 다수 선정돼 진보적 성향의 신문사는 선정되고 비판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사가 탈락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사주 또는 간부의 불법행위로 우선지원대상사의 기본 자격미달이 되는 경우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6조에 명시된 대로 신문사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 사주 또는 간부의 불법행위로 기본적인 자격에 미달함에도 선정된 신문사가 있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원대상 선정을 앞두고 지역신문발전위 고위관계자가 지역 시민언론단체와 관계개선을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한 충청지역 언론사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에 제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평가기준에 따라 나타난 결과대로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한다는 방침 외에 별다른 내부방침이 없고 심사기준 배점에서 의도적인 편차를 조성, 정부와 지신위 내부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신문사를 배제했다는 보도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기금지원 선정 후 임직원의 불법비리 연루가 발생했을 때 선정대상에서 취소한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았고, 다만 다음연도 선정을 위한 평가 때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배제하지만 특별법에 명시된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점수에 반영되므로 어떤 법 위반이나 혹은 어떤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았는가가 신청대상에서의 제외여부가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법처리됐다고 하더라도 특별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법 위반이 아닐 경우 선정될 수 있고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전체 점수가 좋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어 기준배점에서 의도적인 편차를 조성, 정부와 위원회 내부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신문사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신문사의 경영구조 개선의지와 유료독자 확보 의지를 심사의 중점사항으로 두었던 것으로 심사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완하면서 진화해 나간 것이며, 기존 지원대상사와 신규 신청사를 나눠 평가하고 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한 것은 올해 새로 도입된 게 아니라 2005년도, 2006년도 이미 제시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로비로 우선지원대상사가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로비 능력에

따라 주관적인 평가가 객관적 평가로 둔갑할 수 있다거나 기금지원대상 선정때만 되면 언론계에선 누구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느냐에 따라 선정여부가 좌우된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매일 2008년 4월 23일자 2면 우측 상단에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2008년 1월 15일자 1면)의 큰제목(공정하고 투명한 지원대상 선정...)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충청매일 인터넷판(www.ccdn.co.kr) 메인화면에 게재하되 2008년 4월 23일 09:00~2008년 5월 22일 09:00까지 1개월간 유지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매일 : 『지신위 “지원사 선정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총선 여론조사 관련 방송시 여론조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6.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3월 30일 21:30)

내 용 : ▷앵커 :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브로커에게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참 특이하게도 여론조사에 무척 의존하는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문모 씨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측 으로부터 수백만 원씩을 받고 지역 구민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일반 여론조사와 다를 게 없었지만 정작 내용은 특정 후보의 경력은 강조하고 상대 후보의 약점은 부각하는 식이었습니다. 검찰은 문씨와 계약한 일부 예비후보의 여론조사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문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오늘 문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용주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여론조사는 선거뿐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고 있는 만큼 죄를 중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또, 여론조사의 기능이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다른 선거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8년 3월 31일 07:20)

내 용 : 〈위 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모습이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손배를 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소변분석기 웰빙닥터를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타업체에서 개발하였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전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6.

처리결과 : 취 하

환·신우신염·간질환 등 10가지 항목의 19가지 질병을 분석할 수 있다.

아남정보기술은 이를 계기로 SH 제약과 협력, 공공 의료 서비스 시장에 상반기 내 진출할 계획이다. 아남정보기술은 웰빙 닥터 솔루션을, SH제약은 웰빙 닥터 제조와 소변 분석용 키트(일반 의약품)를 각각 맡는다. 관공서·지방자치 단체 등의 공공 분야를 겨냥해 새로운 건강 서비스 시장 개척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보도내용

전자신문 : 『아남정보, 소변분석 의료서비스 실시』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8일자 12면)

내 용 :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 기업 아남정보기술이 소변 분석 관련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아남정보기술(대표 김○○ www.anamit.com)은 소변분석 자판기 ‘웰빙닥터(Wellbeing Dotor)’를 개발, 의료기기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웰빙닥터는 자판기 형태의 소변분석기로서 일반인들이 소변검사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자신의 건강을 미리 체크,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제품이다. 특히 웰빙닥터는 1분만에 당뇨병·신성당뇨·췌장염·방광염·용혈성 빈혈·신장질환·신우신염·간질환 등 10가지 항목의 19가지 질병을 분석할 수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아남정보, 소변분석 의료서비스 실시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8일자 12면 신성장 산업 면에 “아남정보, 소변분석 의료서비스 실시”라는 제목으로 아남정보기술에서 소변 분석기 웰빙닥터를 개발하고 SH제약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웰빙닥터는 아남정보기술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며 SH제약과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전자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4일자 12면)

내 용 : 본지는 2008년 4월 8일 12면 ‘아남정보,

소변분석 의료서비스 실시’ 제하의 기사에서 아남정보기술이 소변분석자판기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으나, 개발자는 자동소변분석시스템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자인 김○○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하지 않고도 편법적으로 의무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 ‘공익활동 의무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하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7.

처리결과 : 취 하

을 나눠 갖거나 돈을 받는 일까지 공익활동으로 끼워 넣어 의무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형로펌 변호사 공익활동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4일자 사회 8면에 “대형로펌 변호사 ‘무늬만 공익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변호사협회의 자료를 보면, 국내 법무법인(로펌) 대부분의 소속 변호사들이 2006년 공익활동을 이수하지 않고도 편법적으로 의무시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무제’가 파행·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국내 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은 2006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공익활동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

한겨레 : 『대형로펌 변호사 ‘무늬만 공익활동’』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4일자 8면)

내 용 : 변호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겠다며 2000년 도입한 ‘공익활동 의무제’가 파행·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서울변호사협회의 ‘2006년 공익활동 심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국내 법무법인(로펌) 대부분이 소속 변호사들끼리 실적

김천의 한센인 거주지역인 삼애원 개발사업에 관한 한국일보의 기사가 허위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주)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이 중 승)
2. 유 ○ ○

피신청인 : 김천인터넷뉴스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김천인터넷뉴스 :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 최근 잡음과 오보에 대한 설명회 개최』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8일자 종합면)

내 용 : 김천시의 큰 문제점이자 신 김천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삼애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H일보의 ‘대포통장’과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한 설명회가 있었다.

김천시의 도심에 위치한 삼애원 축산단지로 인해 신읍동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물론 혁신도시의 성공을 가름할 삼애원 부지 개발에 대해 H일보의 오보에 따른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대상컨설팅주식회사 장○○ 대표이사는 8일 오후 3시 본사에서 개발사업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삼애원 주민들과 지역기자들을 초청하여 ‘삼애원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자금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상컨설팅 장 대표는 “그동안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H일보에서는 악의적으로 ‘대포통장’ ‘시 관계자 금품로비 의혹’을 제기하여 이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언론사 오보에 따른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략)

또 H일보가 보도한 ‘시 관계자 등에 돈을 수차례 건넸다.’는 주장과 ‘삼애원 개발과 관련된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신문사와 기자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현재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피신청인은 김천인터넷뉴스 메인 상단에 아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의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의 크기로 해 1달간 게재한다.

• 제 목 : 한국일보 삼애원 관련 기사 ‘오보’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우리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8일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김천 ‘삼애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의 설명만을 믿고, 한국일보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것처럼 게재했습니다.

또 우리 인터넷 신문은 이를 ‘오보’라고 지적했으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지난해 12월부터 김천 삼애원 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에 대해 많은 불법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행사인 대상컨설팅(주)에서 불법투자유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임직원의 증언과 사실 확인을 토대로 이 사업의 문제점을 기사화 했기에 한국일보 기사내용은 ‘오보’가 아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한국일보 삼애원 관련기사 오보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4월 8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상단에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과 관련 한국일보가 오보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측은 “삼애원 도시 개발 사업 시행사인 대상컨설팅 측이 ‘대포통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시 관계자 등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지난 3월 26일자 4월 4일자)은 처음부터 사업추진을 함께 해오다 그만둔 임직원들의 증언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전혀 오보가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본보의 보도 중 ‘오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삼애원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를 진행중에 있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김천인터넷뉴스(<http://www.gcnews.com>)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2008년 4월 30일 18:00부터 위 보도문 제목을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 기사 서버에 보관한다.

• 피신청인은 김천인터넷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김천 ‘삼애원 개발사업’ 최근 잡음과 오보에 대한 설명회 개최) 본문 하단에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한국일보의 반론보도 링크 참조”라고 표기하고 위 항의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김천인터넷뉴스 : 『한국일보 삼애원 관련기사 오보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2008년 4월 30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경기도지사와 하남시장 양자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는데도 마치 하남시장을 옹호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18.
처리결과 : 각 취하

면서 “김 시장이 아니라 경기도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박 국장은 “이제보니 김 시장도, 주민들처럼 피해자였다.”면서 “광역화장장 문제를 떠나 김 시장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하남시 전체를 갖고 논 것”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경기도에 보상을 요구했다.

보도내용

서울신문 : 『하남시-경기도, 광역화장장 건립지원 백지화 싸고 정면충돌』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2일자 11면)

내 용 : 김시장 “김문수지사 사과·보상해야” 경기도 “서울과 빅딜 무산... 불가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하남 시민에게 공식사과하고 보상책을 마련하라.”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립계획이 ‘철회’라는 김 지사의 말 한마디에 무산되자 김황식 하남시장은 11일 울분을 토로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까지 당하면서 2년 이상 끌었던 문제이기에 그의 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본질이 정치적 속셈으로 퇴색되는 것을 우려하며 김 시장에 대한 동정론마저 나오고 있다. (중략)

• 화장장 반대 주민들도 허탈 심정

박○○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후에도 경기도가 줄곧 하남시에 인센티브를 약속했던 것으로 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역화장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4월 12일자 사회면의 기사내용 중 박○○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 후에도 경기도가 줄곧 하남시에 인센티브를 약속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김 시장이 아니라 경기도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박 국장은 “이제 보니 김 시장도, 주민들처럼 피해자였다.”면서 “광역화장장 문제를 떠나 김 시장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하남시 전체를 갖고 논 것”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경기도에 보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 씨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신청인 경찰서가 안양 초등생의 시신 발견 당시 사산아 2구를 발견했는데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서부경찰서 (서장 이 동 수)
피신청인 : 고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고뉴스 : 『안양 故 ○○ 양 발견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쉬쉬’』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7일자 종합면)

내 용 : 경찰, 병원 등 관계자 등에 ‘입막음’ 축소·은폐 의혹 일어

경찰이 안양 초등생 사건 수사 당시 故 이○○ 양 시신 발견지점 인근에서 암매장 상태의 사산아 2명을 발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산아는 현행법상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중앙병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양의 시신발견 이틀 뒤인 지난 달 9일 오후 5시께 수원시 호매실동 호매실 IC 주변 야산을 수색하던 중 ○○ 양의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에서 50m정도 떨어진 지점의 땅속 2곳에서 암매장된 사산아 2구를 발견했다.

당시에는 안양 초등생 사건이 실종에서 살해·암매장사건으로 번져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음에도 여론을 의식해 사산아 2구 추가발견 사실조차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검정 비닐봉지에 싸여 있던 사산아 2구는 탯줄이 감겨 있는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돼 수원중앙병원 영안실에 안치했으며, 이런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된 사산아 2구의 암매장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 임신 20주 정도 됐다는 내용과 함께 발견 4-5개월 전쯤 암매장됐을 것이라는 국과수의 감식결과를 통보받았다.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병원 등 관계자에게 사산아 발견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안양 故 ○○ 양 발견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쉬쉬’라는 기사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합니다.

•내 용 : 본 신문사에서 08년 4월 17일자 초기화면과 사회면에서 ‘안양 故 ○○ 양 발견 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쉬쉬’라는 제목으로 경찰에서 사산아 2구를 추가발견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병원 등 관계자에게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색 당시 사체를 발견하고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보고 후, 현재까지 관련사항을 수사중에 있고, 병원관계자에게 동 사건에 대해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사산아 2구 발견 관련 정정보도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7일에 「안양 故○○ 양 발견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쉬쉬’」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가 안양 ○○ 양의

시신 발견당시 사산아 2구를 발견했으나 여론을 의식해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시신을 안치한 병원관계자에게도 발견사실을 공개하지 말라는 ‘협조요청’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수원서부경찰서는 사산아 2구를 발견한 당일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보고하여 수사지휘를 받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병원에게도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고뉴스> 초기 화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고뉴스 : 『사산아 2구 발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6일 09: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보훈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고, 예전에 부도난 업체가 새로 설립한 회사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다나의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데일리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데일리팜 : 『보훈병원 저가낙찰 의약품 공급여부 촉각』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9일자 종합면)

내 용 : 심바스타틴을 2원에 낙찰시키는 등 저가 낙찰 파문을 낳고 있는 보훈병원 입찰과 관련 제약들의 의약품 공급여부에 업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보훈병원의 입찰결과 낙찰가가 1원에서 45원까지 경악할 만한 수치가 나와 제약회사 담당자와 유통가에서는 의약품 계약 성사여부를 놓고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황인 것.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은 다나의약. 지난 1차 입찰을 통해 61품목과 4개 그룹을 가져가면서 20억 원 상당을 낙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23일)안에 계약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다나의약은 적어도 22일까지는 제약회사들과 의약품 공급계약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저가낙찰과 덤핑공급 문제로 입찰질서 시장을 확립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상식이하의 가격에 출혈을 감수하고서 계약을 강행할 제약회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결과를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며 “이 같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할 제약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입찰위주 도매상 간부는 중국에는 재입찰이 진행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제약업체도 마찬가지로 반응이다. 보훈병원 담당 제약사 영업사원은 “원래 사용이 많고 대금 회전이 좋은 병원 특성 때문에 매번 가격이 하락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번 낙찰가는 제약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나의약이 품목입찰 외에도 4개 그룹을

낙찰했기 때문에 일부 제약사에서 공급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입찰에서 파란을 일으킨 다나의 약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 설립배경부터 배후의 인물 존재 여부까지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다나의약은 부도난 모 업체가 전신이며 3명이 공동투자를 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표자가 타 도매상 경리부서 출신인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배후에 또 다른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란 추측도나오고 있다.

한편 보훈병원은 나라장터를 통해 유찰된 40개 품목과 3개 그룹에 대한 재입찰을 오는 22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다나의약 주식회사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4월 20일경 '보훈병원 저가낙찰 의약품 공급여부 촉각'이라는 제목으로 다나의약 주식회사가 보훈병원 입찰에서 문제의 중심에 서있다고 주장하며 낙찰시킨 의약품 규모가 20억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는 보훈병원과 다나의약이 의약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 알수 없는 내용을 허위로 게재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설립배경부터 배후인물 존재한다는 등. 더불어 부도난 업체가 전신이며 3명이 공동투자를 해서 설립되었다고 보도 부분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보도함으로 사실과 다름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다나의약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9일에 「보훈병원 저가낙찰 의약품 공급여부 촉각」 제하의 기사에서 다나의약이 부도난 업체가 전신이며 3명이 공동투자하여 설립되었으며 배후에 또다른 업체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다나의약'은 현 대표이사 이명순이 작년 7월에 '내츨팜(2002년 설립)'을 단독으로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것이고, '내츨팜'과 '다나의약' 모두 부도난 사실이 없으며 '다나의약'의 배후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4월 30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게재하되,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4시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데일리팜> 초기화면 왼쪽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정대상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같은 페이지에 나오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팜 : 『보훈병원 정기입찰 다나의약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30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용인대학교 신입생 사망사건에 대한 구타의혹을 보도하며, 학과선배인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2월 15일자 21:30)

내 용 : ▷박해진 앵커 : 대학 신입생이 단체 훈련을 받다 머리를 크게 다쳐 혼수상태입니다. 이번에도 또 구타 연습 때문은 아닌지, 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벅지 뒷부분에 시퍼렇다 못해 시커멓게 변한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경기도 한 대학교 동양무예학과 입학 앞둔 19살 강모 군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난 구타흔적입니다. 강군은 어제 오후 학교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뇌출혈 증상으로 뇌가 크게 부어 지금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후방낙법훈련을 하다가 머리를 바닥에 세계 부딪쳐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군의 가족들은 구타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강군 어머니) : “원래 험한 운동이다. 지금까지 늘 경기 치렀지만 한 번도 이렇게 다친 적이 없다.”

강군은 아직 입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달 경기를 준비해야한다는 학교 측의 지시로 그제부터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강 군은 사고 당일 선배에게 훈련용 나무칼집으로 스무 대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군 과 선배 : (때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김○○ 교수 (용인대학교 동양무예학과) : (왜 구타를 막지 못했어요?) “안 보이는데서 때리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체육대학은 잇단 단체체벌과 구타사고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정결의를 했지만 뿌리 깊은 구타 연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상가 관리인인 신청인이 점포주들에게 상가운영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후 점포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주차장 수익까지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월 22일자 21:30)

내 용 : ▷앵커 : 노후를 대비해서 자그마한 상가 점포에 한 번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투자를 했다가 임대료 한 푼 못 받고 낭패를 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관리 사무소. 난데없이 고성어 오갑니다. 점포 주인들이 몰려와 상가 관리인에게 물러나라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상가관리인 :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 판결문 나고 했는데) 당신들 하고 할 말이 없다니까” 몸싸움까지 번지기 직전입니다.

▷점포주 : “가면 안돼! 가면 안돼! 때려? 어딜 때려! 니가 어딜 때려!” 점포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가 관리인에 속아 점포 임대료를 한 푼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겁니다.

▷점포주 : “91년도에 점포 분양 받아서 아직까지 한 푼도 임대료를 못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가 관리인 박모 씨는 점포 주인들에게 임대 수익을 늘려주겠다며 상가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뒤 농간을 부렸습니다. 박씨는 먼저 “20제곱미터 안팎의 작은 점포는 임대가 잘 안되니까 여러 점포의 벽을 터 큰 점포를 만든 다음 통합임대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레놓고 큰 점포의 한 달 임대 수익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임대 수익이 너무 적다고 핑계를 대면서 점포 주인들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점포 주인들에게 나눠줘야 할 주차장 수익까지 빼돌렸습니다. 이런 혐의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고도 상가 관리인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상가 관리인 : “횡령이라고 해서 벌금 맞아서 항소했다가 항소도 기각돼 내가 벌금 문다고 했어”

서울의 또 다른 복합상가. 여기 관리인은 점포주 동의도 얻지 않고 20개가 넘는 상가를 불법적으로 개조한 뒤 통합 임대를 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대료를 나눠 주지 않고 고스란히 착복했습니다.

▷점포주 : “밥도 못먹고 그냥 그야말로 하루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며칠을.. 진짜 너무..”

이런 피해자들은 주로 6, 70대 노인들입니다. 은퇴 후 생계에 도움이 될까 해서 평생 모은 돈을 점포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상가 관리인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은게 잘못이었습니다.

▷곽○○ (점포주) : “정년퇴직 해서 노후에 다만 얼마라도 받아서 살겠다고 한 것이..”

현행 법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고 구청의 관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이런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상가 관리인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엔 점포주들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 (변호사) : “벌칙 조항도 5만 원이 전

부다. 허술한 법망..”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상가 관리인의 자격을 정지시켜달라는 점포주들의 요청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이런 요청을 50건이나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상가투자의 함정’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22일자 사회면에 “상가투자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가. 점포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가 관리인에 속아 점포임대료를 한 푼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입니다. 나. 상가 관리인 박모 씨는 점포주인들에게 임대수익을 늘려주겠다며 상가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뒤 농간을 부렸습니다. 박모 씨는 먼저 “20제곱미터 안팎의 작은 점포는 임대가 잘 안되니까 여러 점포의 벽을 터 큰 점포를 만든 다음 통합임대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의했습니다. 다. 그레놓고 큰 점포의 한달 임대수익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임대수익이 너무 적다고 핑계를 대면서 점포 주인들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라. 심지어 점포 주인들에게 나눠줘야 할 주차장 수익까지 빼돌렸습니다. 이런 혐의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고도 상가관리인은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라는 내용의 방송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 위 가.항에 대하여는 상가관리인 박○○은 점포주들에게 상가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 위 나.항에 대하여는 ‘20제곱미터 안팎의 작은 점포는 임대가 잘 안되니까 여러 점포의 벽을 터 큰 점포를 만든 다음 통합임대를 하고 그 수익을 나누자.’는 제의는 위 상가관리인 박○○이 제의한 것이 아니라 그전(위 박○○이 상가관리인이 되기전)부터 이미 통합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위 박회남이 농간을 부린 사실이 전혀 없으며,

• 위 다.항에 대하여는 점포임대료에 관하여 점포주들에게 공개하였으며, 임대수익이 너무 적다고 핑계를 대면서 점포주들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나눠주지 않은 경우가 전혀 없었으며, • 위

라.항에 대하여는 상가관리인 박○○은 주차장 수익을 빼돌린 사실이 전혀 없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제일프라자의 상가관리자 박모 씨가 점포주들에게 점포분양수익을 제대로 분배해 주었으며, 주차장 수익을 빼돌린 사실이 없습니다.) • 즉, 위 방송의 요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제일프라자의 상가관리자 박모 씨가 점포주들에게 점포분양수익을 분배하지도 않고 심지어 주차장 수익까지 빼돌렸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위 보도는 소송반대당사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보도한 것으로 그 내용은 잘못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아 래

사실확인 결과 위 제일프라자상가는 재건축과 관련하여 점포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태로, 본 방송국에 사건 내용을 제보하고 취재에 응한 점포주들과 임차인들은 상가관리자 박모 씨와 반대 당사자의 입장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중인 자들입니다.

박모 씨와 반대당사자들간에 위 제일프라자 재건축과 관련하여 사인간에 법적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본 방송국이 일방당사자의 말만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 방영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상가투자의 함정’ 관련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월 22일자 뉴스데스크

“상가투자의 함정”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모 상가관리인인 박모씨가 점포주들에게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임대료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5월 30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MBC-TV 뉴스 프로그램(저녁 6시 30분 뉴스) 스텝 스크롤 자막 전에 위 보도문을 보도하되, 기존 보도내용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진행자가 위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상가투자의 함정’ 관련 조정합의문)을 시청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imbc.com)에 VOD(다시보기) 및 기사내용을 삭제하여, 향후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6월 10일까지 금 2,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해당 뉴스를 작성한 담당 기자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저녁뉴스」 프로그램 (2008년 5월 28일자 18: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국무역협회가 무사안일, 편의주의 타파를 위해 임원실을 없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무역협회노동조합(위원장 안 ○ ○)

피신청인 : 문화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문화일보 : 『무역協 임원실이 사라진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9일자 14면)

내 용 :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회범·사진)는 요즘 때아닌 이사로 공사가 한창이다. 조직 수장의 불호령에 따라 임원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실무 부서들이 임원실이 있던 고층으로 올라가는 대이동이 진행 중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무역협회는 그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의 전망좋은 49층에 모여있던 임원실들을 긴급 해체하고 본부장급 상무, 상무보 임원 7명을 실무 부서로 자리 이동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본부장과 본부장 산하의 실무자들이 따로 떨어져 일하다보니 신속성과 현장성이 심각하게 뒤쳐진다는 진단 때문이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점을 누차 지적해 온 이회범 회장이 참다못해 최근 임원회의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이회장은 회의 석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했던 뒤, “본부장은 실무자 결으로, 실무자들은 현장으로 보내야 수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장의 지적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편의주의를 질타했던 것을 연상시킨다는게 무역협회내의 목소리다. 이회장은 그동안 발로 뛰는 고객 중심 서비스를 누차 강조했지만 ‘회장 임기는 짧고 조직은 영원하다’는 협회 특

유의 심리적 장벽을 넘는데는 한계를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부서로 배치된 본부장은 안락한 임원실도 잃어버렸다. 실무 부서에 배치되면서 밀폐된 공간이 아닌 칸막이 방으로 배치된 것. (중략)

한편 무역협회는 오는 22일 경기 이천 도드람산에서 이회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등반대회를 개최, 수출지원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정신교육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무역協 임원실이 사라진 까닭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19일자 14면에 “무역協 임원실이 사라진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무역협회가 임원실을 해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무역협회의 조직문화가 무사안일과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등반대회를 개최, 수출지원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정신교육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무역협회 임원실은 현업 부서로 전진 배치됐을 뿐, 해체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편의주의를 질타했던 것을 연상시킨다는게 무역협회내의 목소리다.”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지원을 위한 정신교육행사라고 보도한 등반대회는 사내 순수동호회인 산악회의 정기행사를 잘못 보도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기업이 수입, 판매하는 사탕에서 발암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델리팜상사(주) (대표이사 안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8년 4월 22일 06:00)

내 용 : 중국산 사탕과 캐러멜에서 발암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공 감미료가 검출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초 학교앞 문구점과 문구도매상 등 4곳에서 사탕과 캐러멜 102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중국산 캔디류 9개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이클라메이트는 강한 단맛을 내지만 발암물질이라는 논란 때문에 지난 1970년부터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리콜은 없다?, 1%만 되돌아온 위험한 과자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2일자 3부 “리콜은 없다?, 1%만 되돌아온 위험한 과자!” 기획에서 투시팝미니어처 사탕에 발암의심물질이 들어있다고 제품사진과 함께 발암의심물질이라는 자막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투시팝미니어처 사탕은 중국산이 아닌 미국산 수입 사탕이며 발암의심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 성분도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획 보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8년 4월 23일 7:45)

내 용 : 지난 22일 방송된 <리콜은 없다, 1%만 되돌아온 과자> 편에서 중국산 제품에서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투시팝 캔디는 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며 발암의심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이번 보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업체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2002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대선자금 중 잔금 56억원을 측근 변호사에게 맡겨 현재까지 보관하여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회 창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대선잔금 56억 이회창 측 보관”』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1일자 10면)

내 용 :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현 자유선진당·사진) 측이 2002년 삼성그룹에서 받은 대선자금 중 잔금 56억 원을 현재까지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수사결과 때 발표하지 않

아 축소·은폐 의혹은 물론 ‘과주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이번 특검 수사에서 이전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상대로 ‘삼성대선잔금 56억 원 어치를 채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변호사는 채권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함구했으나 이 전 총재가 삼성 이견희 회장에게 채권을 받은 뒤 서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나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2005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한나라당에 전달된 삼성 채권 325억 원 중 242억 4,500만 원의 행방을 확인했지만 금융기관에 돌아오지 않은 82억 5,500만 원은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이 대선잔금을 찾기 위해 채권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사용한 13억 3,000만 원과 사채시장에서 돈세탁 과정을 거친 12억여 원(경향신문 3월5일자 1면 보도)의 실체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때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2005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이미 처벌받은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56억 500만 원의 채권은 아직 미입고(채권이 금융기관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며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이회창 전 총재)가 잔금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변호사가 56억 원 채권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긴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2008. 4. 21.자 A10면에서 「“대선잔금 56억 이회창 측 보관” 특검 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이회창 총재가 2002년 이견회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삼성채권을 받은 뒤 그 채권을 서정우 변호사에게 맡겼고, 서변호사는 그 채권중 56억 원 어치를 채권 형태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삼성특검은 서변호사로부터 그와 같은 진

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발표에서 이를 누락하여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회창 총재가 2002년 이견회 회장으로부터 삼성채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총재가 서정우 변호사에게 삼성채권을 보관하도록 맡긴 사실도 없습니다. 서변호사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사용하고 남은 대선잔금 138억 원 어치 채권 전부를 삼성그룹에 반환하였고, 그 사실은 이미 2004년 대검 중수부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며, 그 밖에 서 변호사가 현재까지 삼성채권 56억 원어치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와 서변호사가 삼성특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삼성특검이 이총재측의 대선잔금 보관 사실을 확인하고도 축소, 은폐하여 봐주기 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보도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법원에 따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청인이 취하한다면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용의 있으나, 신청인이 소송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도 법원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함. □

경찰관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장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박○○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8. 4. 2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연합뉴스 : 『성폭행 피해 여고생 자살기도 경찰수사 ‘엉망’』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6일자)

내 용 : 경찰이 상습 성폭행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한 여고생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누장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검거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거리를 확보해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는커녕 범죄자를 방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6일 일산경찰서와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모 지구대 소속 P경사는 비번인 지난달 23일 오전 11시께 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당직반인 폭력2팀에 일산에 사는 여고생 A양이 김모(33) 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 자살을 기도했다며 사건을 의뢰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A양 어머니로부터 들은 대로 P경사는 이 자리에서 담당 형사 B씨에게 김씨가 A양 자매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 행각과 자신이 8개월전부터 장물 취득 등의 범죄 정황을 잡고 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P경사는 당시 가해자인 김씨의 범죄 사실과 주소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지만 사건을 맡기로 한 당직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단순 첩보로 보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부경찰서의 미온적인 대응은 3일 뒤인 26일에도 이어졌다. 자살기도 등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사를 위해 피해 학생과 상담교사 등이 경찰의 요구대로 진술을 하기 위해 출석했지만 B형사는 상담청취만 진행한 채 A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 사건 내용을 소상히 정리해서 다시 방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A양 자매뿐 아니라 A양의 여동생 친구도 김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고 피해 가족들은 수사가 길어질 경우 김씨가 눈치를 쉰 수 있다면서 빠른 수사를 부탁했지만 묵살됐다.

그러나 29일에 다시 상담일지 등을 지참하고 방문했을 때 B형사는 사건 처리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일산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면서 진술받기를 거부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했다.

A양 자매와 어머니, 상담 교사 등은 결국 이날 오후 일산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받는 중 우려했던 대로 김씨가 눈치를 채고 A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요구했고 절도 등으로 김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왔던 P경사가 일산경찰서에 소재지를 알려주면서 김씨는 이날 오후 9시께 검거됐다.

서부경찰서의 미온적인 사건 처리로 피해자들에

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추가 범행 우려도 있는 김씨는 일주일이나 거리를 확보한 것이다.

B형사는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 빠른 사건 처리를 원했고 이를 위해 일산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해서 일산경찰서 담당자를 소개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폭행 여고생 자살기도 경찰수사 ‘엉망’ --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6일자 사회면에 “성폭행 피해 여고생 자살기도 경찰수사 ‘엉망’ -- 서울서부경찰서 사건제보 받고도 ‘늑장대처’”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상습 성폭행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한 여고생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등 늑장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직반인 폭력2팀에서는 단순 첩보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진술받기조차 거부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찰 내부 규정상 위와 같은 강력 사건은 강력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폭력팀에서는 P경사가 자세한 사건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26일경 피해자가 서부경찰서에 직접 방문한 후에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3일 뒤인 29일로 진술녹화 일정을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9일경 피해자가 메모해 놓은 사건개요들을 확인해 본 결과 관할권이 전혀 없어서 사건처리 지연 우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고, 보복우려가 있을 경우 파주경찰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일산 경찰서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중이고 조사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면서 본 관할이 있는 일산경찰서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담당형사는 일산경찰서에 미리 전화를 걸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면서 전후 사정을 설명한 후 인계해 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같이 결정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8. 5. 19.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대표이사 김 기 서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1일 이내로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면 사이트에 게재하고, 통상의 기사와 같이 송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별 지>

• 제 목 : “성폭행 사건 경찰수사 엉망” 관련 반론보도문

• 본 문 : 지난 4월 16일자 위 제목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서부경찰서 폭력 2팀 B경사는 “관할문제로 사건 지연 우려가 있고, 또한 이미 범인이 일산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일산경찰서로 사건을 인계하였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사건 제보를 받고도 누락대처하거나 빠른 수사요청을 묵살하지도 않았으며, 관할 문제로 진술받기를 거부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가 조작되었으며, 이에 소환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유 ○ ○ 외 3인)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기자>

지난해 10월 하남시 주민들은 시장이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습니다. 2만 7천여 명이 서명해 두달 뒤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서명한 적이 없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모 씨/하남시 주민 : 그 사람들이 썼지 나는 써본 적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 상관도 안하고.]

전체 서명부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30대 여성이나 90대 남성이나 한 페이지에 나온 여러 명의 필체가 비슷합니다. 같은 이름을 적으면서도 한 글자씩 틀리게 쓴 것도 있습니다. 석 달 앞서 추진도중 무산된 1차 소환투표 청구 당시 서명한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도 필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후략)

보도내용

SBS-TV : (1) 「8시 뉴스」 프로그램 (2008년 4월 20일 20:00)

내 용 : 경기도 하남 광역 화장장 추진을 놓고 주민과 지자체가 큰 갈등을 빚다 지난해 12월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의 서명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의 단독보도, 한○○ 기자입니다.

(2)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2008년 4월 21일

07:00)

내 용 : <앵커>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남에서 실시된 사상 첫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를 청구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투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하남시 주민 2만 7천여 명은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려는 시장을 소환하겠다고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서명이 다 달라야하지만 청구인 서명부를 살펴봤더니 마치 한 사람이 적은 것처럼 비슷한 글씨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의 이름인데도 석달 전 추진하다 무산된 1차 소환투표 청구 때 필체와 확연하게 다르기까지 합니다. 당시 투표를 관리했던 선관위 관계자와 함께 1차와 2차 투표 청구 때 모두 서명한 205명분을 골라 비교한 결과, 70%에 달하는 137명분의 서명에 필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하남시 주민소환서명 청구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0일자 8시 뉴스에서 “주민 청구로 실시된 소환투표, 알고보니 조작?” “하남시 선관위, ‘서명 조작’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남시에서 진행된 주민소환청구 서명이 조작되었고 선관위는 이를 알면서 투표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하남시에서 진행된 주민소환투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소환서명과 선거가 진행되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신청인에 대해 평소 언행과 행실이 좋지 못한 자라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함평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조정결정 (손배)(양 당사자 이의신청)

보도내용

함평신문 : 『함평군서 4·9 총선 선거법 위반 발생』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7일자 1면)

내 용 : 4·9 총선과 관련해 함평군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인쇄물 배부, 신문·

방송 등 부정이용, 호별 방문, 사이버 이용 등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중략)

특히 함평읍 내교리 공용터미널 옆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특정 후보가 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악의적 거짓말을 퍼뜨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읍 선관위 관계자는 “최초 조사요구에 김 씨가 겁을 먹고 지역을 떠나버려 조사에 큰 애로를 겪었다. 갖은 설득과 회유 끝에 선관위에 자진 출두한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함평군서 4·9 총선 선거법 위반 보도

사실과 달라(또는 선거법 위반 보도와 관련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보도문)

•내 용 : 함평신문은 지난 4월17일자 1면에 “함평군서 4·9 총선 선거법 위반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김○○)을 묵시적으로 거명하면서 동 사건과 무관하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부도덕한 인물이라고 보도하였다.

함평신문은 동 사건과 무관하게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사과를 하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제보 등 사실에 입각한 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

장을 수용할 수 없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유)함평신문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

대표이사 김 연 준

조정대리인 지 ○ ○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5월 30일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30.



2007년 창간한 신청인 신문사가 옛 광역일보의 제호와 신문발행호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울산광역시뉴스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울산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울산신문 : 『창간 10주년 행사 물의』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2일자 5면)

내 용 : 지난해 12월 창간한 (주)울산광역시뉴스가 법인승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옛 광역일보의 신문발행 호수를 사용하는가 하면 창간 10주년 행사까지 준비하며 기업체와 각 기관에 협찬의뢰를 하

는 등 지방신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울산광역시뉴스는 지난해 12월 26일 정기간행물 등록을 신고한 뒤 광역일보와 울산광역시일보로 제호를 변경하며 현재까지 4개월여 동안 주 5회로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일보 제호로 발행중인 (주)울산광역시뉴스는 옛 광역일보 법인인 (주)광역일보의 법인승계를 법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채권·채무관계가 얽혀 새로운 법인인 (주)울산광역시뉴스로 법인등록을 한 채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울산광역시뉴스는 당초 광역일보로 신문을 발행하며 제호를 자신의 신문발행호수가 아닌 광역일보 발행호수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호수를 사용하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없애고 옛 광역일보 발행호수와 합산해 발행호수를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주)울산광역시뉴스는 자신들의 법인과 별

개인 (주)광역일보의 창간 기념일을 마치 자신들의 창간기념일인 것처럼 밝히며 오는 25일 창간 10주년 기념행사를 벌인다고 울산지역 기업체와 기관에 창간기념 축하 광고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울산신문은 “지난해 12월 창간 (주)울산광역뉴스, 창간 10주년 행사 물의”라는 제하 4월 22일자 5면 머릿기사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물론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보도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아울러 본지가 임의로 작성해 보도한 기사로 인해 울산광역일보가 입은 극심한 좌절감과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울산광역일보의 어떠한 처분도 기꺼이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후 울산광역일보와 관련된 어떠한 비방이나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는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머 리숙여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2일자 5면 “창간 10주년 행사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12월 창간한 울산광역일보가 법인승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옛 광역일보의 신문발행 호수를 사용하는가 하면 창간 10주년 행사까지 준비하며 기업체와 각 기관에 협찬의뢰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일보는 이전 법인인 광역일보가 소유하던 제호와 신문발행호수를 소속 임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인계받아 사용하고 있어 무단 도용이 아니며, 창간 1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울산신문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법인승계 없이 옛 광역일보 발행호수 사용”)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울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0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2007년 창간한 신청인 신문사가 옛 광역일보의 제호와 신문발행호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울산광역뉴스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울산제일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울산제일일보 : 『창간 10주년 도용 협찬광고 물의』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2일자 1면), 『울산광역일보는 공개 사과하라』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3일자 15면)

내 용 : <2008부산조정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부산조정7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실을 수 있으나, 사실보도이므로 정
정보도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 □

맥섬석 제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인증서 등을 돈으로 샀으며 제품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4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맥섬석지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8년 3월 27일
23:05)

내 용 : ▷이재용 : 21세기 소비자들을 위한 권
리대장정 오천만 소비자의 힘 국내 최초의 소비자
솔루션 프로그램 불만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해설 : 제로맨 요즘 몸이 말이 아니다. 어깨위
엔 어느새 피로 곰이 착 달라붙었다. 지난 일 년
간 얼마나 많이 뛰고 놀라고 밤샘 잠복했던가... 아
슬픈 내 젊은 날이여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이것!
맥섬석? 그렇다. 맥섬석! 수화씨 어머니는 요즘 입
에 침이 마를 날이 없다. 의요기 홍보관에 구입한
의요기 맥섬석 매트 덕분에란다...(중략)

▷해설 : 수해도 전자파도 이 맥섬석 매트만 깔
면 만사 오케이란다. 정말 놀랍다. 대체 이안에 뭐
가 들었길래~그런걸까? 우린 매트 속사정이 궁금
했다. 매트 전문가에게 분해를 부탁했다. 한번 누
워보지도 못한 298만원짜리 매트 과감히 뜯었다.
찢었다 아깝다.

▷최○○(매트전문가) : 일반 매트 정도에서 조금
잘 만든 매트라고하면 다 들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매트만 놓고 본다면 맥
섬석 이라는 돌을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급의 매트 가격선은... 한 30~40만원 정
도...

▷해설 : 그럼 돌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비싼
걸까? 우린 전자파 차단기능도 실험해 봤다. 일단
전자파가 최대로 나오는 매트를 준비해서 전자파
를 측정하고 그 위에 맥섬석 수두룩 박혀있는 맥
섬석 덮개를 올려 봤다. 그런데 몸 값 귀하신 돌은
재 기능을 못했다. 전자파 수치 똑같았다.

▷최○○(매트전문가) : 매트에 전자파라는 것은
열선하고 차폐제가 잡는 것이지 무슨 돌이나 이런
게 전자파를 잡는게 아니에요.

▷해설 : 이렇게 되면 이 신비의 돌! 맥섬석의 정
체가 더욱 궁금해진다. 일찍이 이 업체에서 맥섬
석 이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북까지 줬다. 쓰이는
곳 너무 많았다. 술 커피 우유 간장등에 맥섬석
이 닿기만 해도 독한맛 짠맛이 순화 된다. 된두
부를 맥섬석 물에 하루정도 담궈 두면 먹을 수
있는 두부로 재생된다. 맥섬석을 어항에 넣어 두
면 물고기가 산소 없이도 오래 산다. 이것도 실
험을 안 해 볼 수가 없네.. 우리도 똑같이 해보기
로 했다. 두 개의 수조를 준비해 물고기 5마리씩
넣고 한쪽에만 우리가 구입한 맥섬석 돌을 넣었
다. 나머지 모든 조건은 같았다. 우리는 며칠동
안 지켜보기로 했다. 3일후 맥섬석이 든 어항에
서 물고기 한 마리가 물위로 떠올랐다. 이게 웬
일인가? 그리고 이틀 후 세 마리가 추가로 떠올
랐다. 유난히 맥섬석 어항에서만 줄초상이다. 업
체에선 원적외선 덕분에 맥섬석이 좋은거라 했
다.

▷○○홍보관 관계자 : 저희 치료가 원적외선 치료입니다. 인체의 파장은 9.37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맥반석이나 차돌이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는데 이런 돌들은 수치가 4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파장과 딱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맥섬석이 좋냐? 이 각섬석이 같이 포함이 되었다는 거 이게 같이 들어 있는 돌 우리 이 돌이 사람하고 파장이 같아요.

▷해설 : 맥섬석에서 나오는 파장과 인체의 파장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다. 제작진은 확인을 위해 본격적인 실험을 의뢰했다. 일반돌 2개, 맥섬석 2개, 맥반석, 맥섬석 가공석 이렇게 6개의 시료를 준비했다. 40도 열을 가했을때 암석에서 나오는 원적외선 방사율을 측정하는 실험. 업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맞았다. 맥섬석의 원적외선 파장은 8~11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따로 있었다. 맥섬석에서만 나온다는 파장의 수치가 그 수치 어김없이 나왔다.

▷서○○ 연구원(한국원적외선 협회) : 모든 제품을 측정해 보면 8~11 마이크로미터의 원적외선 파장이 에너지가 가장 큼니다.

▷제작진 : 그러면 꼭 맥섬석이나 맥반석만 그 파장대가 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서○○ 연구원 : 특정제품만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제품을 측정하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해설 : 더 놀라운건 이 원적외선의 효능이었다. 열에너지로 인해서 인체에 온열효과를 주고 온열효과를 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잘되는 효과 그게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교수(가톨릭 대학교 방사선 종양학과) : 만병통치용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원적외선은 표피에 표재성인 곳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혈관 확장 효과에 의한 통증완화가 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상진 : 아니 온열효과와 통증완화정도 가지고 만병통치라고 하는 거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어도 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제로맨 : 네 그래서 제가 맥섬석회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 낼 수 있었습니다.

▷해설 :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회사 정말 화려하다. 상장인증서 너무 많으시다. 이 많은 상들 정

체가 궁금했다. 우린 지부장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업체관계자 : 상이라도 저걸 해 놓아야지만. 고객들이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상하나 받는데 돈 백만원씩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접수하는 비용 이런 것만도 돈 백만원 들어갑니다. 한 장에 많이 들어간 것은 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해설 : 제로맨 자료를 다시 살폈다. 업체에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맥섬석에 암을 소멸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있다 했다. 우린 일본 도토 대학 공학부에 맥섬석 효능에 대해 묻고 싶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았다.

▷김○○(일본번역가) : 동도 대학은 지금 대학이 없어요.

▷해설 : 그런학교가 없단다. 기사에 오타가 난 걸까? 우린 발음은 같고 한자표기가 다른 또 다른 학교를 찾았다. 다행히 학교는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일어 문) : 이 학교에 공학부가 있습니까?

▷(일어 답) : 공학부는 없습니다만..

▷해설 : 미심쩍은 건 또 있다. 가는 체험관 마다 이것에 대해 입이 닳도록 자랑을 했다.

▷○○홍보관 관계자 : 우리가 저기 경주에 동양에서는 제일로 큰 우리가 이 맥섬석이 나는 광산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이예요. 필리핀에는 바다 속에 있는데 채취하기가 힘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영국 강대국에 우리가 수출을 한다.

▷해설 : 제작진은 광산 등록 여부를 확인해봤다.

▷광산지질연구원 : 광산등록번호 156161으로는.. 156161번 맞죠? 그런데 그건 존재하지 않는데요?

▷해설 : 백문이 불여일견!! 우린 지역 명 하나만 들고 광산을 찾으러 갔다. 묻고 또 물었다. 엄청나게 해맸다. 가고 싶어도 길이 없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로 참 며칠을 해맸다. 마침내 찾았다. 안내판에 적힌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일을 하시는분의 성함. 소개합니다. 동양최대의 광산 ~ (황~~)아~광산은 깊은데 일하는 사람 한 명 없네. 게다가 제작진은 동네 할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광산인근주민 : 장비가 와서 덤프가 하루에

몇 대씩 들어 왔어 계속 실어냈는데..

▷제작진 : 언제요?

▷광산인근주민 : 한 2년 전..

▷제작진 : 지금은 그러면 안해요?

▷광산인근주민 : 지금은 그거 뭐 가져가서 제대로 안되는지 안오더라고

▷해설 : 이 업체 안내책자에는 분명 FDA 승인 기업이라고 되어있었다. 그런데 뭔가 알면 알수록 부실하다. 우린 FDA에 확인을 부탁했다.

▷FDA : 그 업체와 관련되어 등록된 유일한 상품은 온열매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 업체의 모든 제품이 FDA에 의해 승인이 되었거나 적합관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해설 : 그렇다면 맥섬석 승인 아니죠~맥섬석 등록 맞습니다. 이쯤되면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 제로맨 맥섬석본사를 찾아갔다.

▷제작진 : FDA 승인 업체라고 제품들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FDA승인업체

▷김○○(부사장) : 승인업체라고 되어 있는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작진 : 지금 제품에 승인업체라고 표시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셨나요?

▷김재동(부사장) :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설 : 모르셨단다. 빨래비누에도 미용비누에도 심지어 부사장님께서 주신 명함에도 있는 걸 모르셨단다. 우린 광산에 대해서도 물어 봤다.

▷김○○(부사장) : 저희는 저희만 해서 쓰는거예요. 다른데 납품하시는게 아니고 우리가 쓰는거니까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으면 많이 생산 안하는거 아닙니까~~ 생산량은..

▷○○홍보관 관계자 : 우리나라에서 미국영국 강대국에 수출을 한다! 유럽일본!

▷김○○(부사장) : 광산 자체에 있는 광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생산하는데 천 톤을 쓰든 백 톤을 쓰든 그게 상관있는건 아니잖아요.

▷○○홍보관 관계자 : 저기 경주에... 동양에서는 제일 큰 우리가 맥섬석이라는 광산이 있다.

▷이재용 : 정확한 얘기를 들으려고, 정식 인터뷰 요청을 해서 갔는데 마지막까지 저렇게 진실된 얘기를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첫째 광산부분에서 MBC 불만제로가 취재과정에서는 광산번호가 없는 것으로 방영되었으나 실제 확인한 결과 실제광산번호는 제56166호(면적 223헥타르, 674,575평)로 확인하였으며, 규모가 왜소하게 비친 것은 채광 후 복구된 상태에서 촬영 방영한 것입니다.

둘째 전자파 관련하여 방송 의도는 맥섬석소재에 대한 전자파 차단 효과를 실험한 것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맥섬석매트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음으로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맥섬석매트를 해체했던 매트전문가도 <불만제로>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맥섬석매트에서는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의 글을 게재 한 바 맥섬석의료기는 전자파 기준에 적합함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첫째 금붕어 실험은 MBC 측에서 단 1회 자체실험 후 방영하였으나 제3의 전문기관에서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방송된 내용과 다르며 시청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제3의 기관에 실험 의뢰한 시험결과서를 게재합니다.

둘째 방송에서 맥섬석GM(주)가 수상, 보유하고 있는 각종 상과 인증서를 마치 돈으로 샀다고 방영한 부분은 각종 특허 및 인증서등을 신청할 시 수반되는 비용을 회사직원이 이야기 한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셋째 모든 방송에서 맥섬석의 원적외선 방사 파장대가 일반 돌과 같다 방영한 부분, 모든 제품을 측정하면 다 그렇게 나온다고 한국원적외선협회의 연구원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하였는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실험한 원적외선분광분포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소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피신청인 주장

각종 자료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도한 것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

신청인 위원회가 재개발을 추진중인 지역은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재개발이 불필요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안 ○ ○)

피신청인 : 충청타임즈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4.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유천동4구역 재개발 관련하여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3월 28일자 13면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마찰음” 제목의 기사 중 부제목에서 ‘재건축’은 ‘재개발’로, ‘2010 도시기본계획’은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지정’은 유천 2동 16통, 18통’이라고 되었으나 이는 ‘유천 1동 16통, 18통’으로, ‘주택재건축’은 ‘주택재개발’로, ‘이번 지구지정을 중구청장이 입안을 하면 평생 모아 온 사유재산에 신·증축·개보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4(행위 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정비구역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의거 적합하거나 허가를 득할 경우 가능한 행위’라는 취지로 되어있어 이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반대 주민들이 ‘지난 3년간 고통을 당했다’는 내용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한지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실과 다르고, ‘지구지정’이라고 한 표현도 ‘정비구역지정’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보도내용

충청타임즈 :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마찰음』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8일자 13면)

내 용 : 대전 중구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공람과 관련해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130여명을 대표한 주민들이 대전시 2010 도시기본계획 일부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27일 중구청에 제출했다.

이날 주택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은 중구 도시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천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지정은 유천 2동 16통, 18통은 도시기반 시설이 잘돼있어 주택재건축이 필요없다”고 밝혔다. (후략)

운전면허시험장 출신자의 사고율보다 운전전문학원 수강자의 자동차 사고율이 2배 이상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연합회
(대표 임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YTN : 「YTN뉴스」 프로그램 (2008년 4월 21일 08:24)

내 용 : ▷앵커 : 충분한 안전교육을 이유로 100만 원 가까운 수강료를 받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이 오히려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딴 운전자들이 면허시험장 출신보다 교통사고율이 오히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자체 면허시험을 치르는 운전 전문학원. 장내기능 교육 20시간에 도로주행교육은 15시간이나 받아야 합니다. 100만 원에 이르는 수강료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 서울 갈현동) : “전문학원은 너무 비싸고 일반 학원이 훨씬 싼 데다가 응시료까지 포함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세요.” 전문학원은 철저한 교육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안○○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연구부장) :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 돼야 되고 현재 우리나라 운전학원의 교육 시간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청 소속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면허자격을 얻고 6개월 안에 운전을 시작한 8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문학원의 장시간 교육이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 한 해 사고 건수는 전문학원 출신이 1,239건으로 면허시험장 출신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간 운전시간 대비 사고율 역시 전문학원 출신이 1.6배나 높았습니다. 일반 운전학원은 전문학원보다 교육시간이 15시간 짧은데도 교통 사고율은 오히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일반 운전학원에서 기본 교육을 받고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면 많게는 4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비싼 수강료의 원인인 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을 현실에 맞게 줄이면 백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운전전문학원 수강자 사고율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1일 뉴스에서 “운전전문학원 수강자 오히려 사고율 높아”라는 제목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출신자 보다 운전전문학원 출신자가 2배 이상 사고율이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운전면허시험장 출신자가 운전전문학원 출신자보다 사고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아 드리며 아울러 YTN은 운전전문학원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운전전문학원 수강자 사고율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YTN은 지난 4월 21일 “운전전문학원 수강자 오히려 사고율 높아” 제하의 보도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출신자보다 운전전문학원 출신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2배 이상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2007년 경찰청의 도로교통안전백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전문학원출신자의 사고율은 0.53인 반면, 운전전문학원출신자의 사고율은 0.27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5월 9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YTN24〉 프로그램에서 4회(08시, 12시, 18시, 21시)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YTN : 「YTN24」 프로그램 (2008년 5월 9일 08:00, 12:00, 18:00, 21: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병의원이 성업중인 상가 3층 점포를 매입한 신청인이 1층 약국 약사에게 매입가의 2배 가격으로 점포를 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데일리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데일리팜 : 『“3층 약국자리 매입, 1층 약사에 두배에
사라”』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6일자
종합면)

내 용 : 한 약사가 모친 명의로 구입한 2억 8천
만 원 짜리 3층 약국자리를 며칠만에 1층 약국
약사에게 5억 원에 재구입할 것을 제안하는 어처
구니 없는 일이 발생,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
다.

경기도 부천시 Y프라자 상가. 이 곳 3층에는 안
과와 내과, 비뇨기과, 한의원, 진단방사선과(공실)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한의원 자리가 지난 3월 31일자로 A약
사(익명)의 모친 B모(익명)씨에게 2억 8,000만 원
에 매매가 이뤄졌다.

한의원 원장 P모 씨는 1층 약국과의 관계를 고
려해 당초 A약사로부터 건강식품점 또는 서점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막상 한의
원 자리(약 25평)를 분할해 서점(6평) 및 약국(19
평)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

A약사측은 서점과 약국 개설을 위해 지난 12일
부터 공사에 착수해 현재는 내부수리 중에 있다.

하지만, 1층 Y약국에서 3층 약국 개설과 관련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약사측은
동문 선배를 통해 Y약국에 '5억 원에 3층 약국자

리를 매입하라'는 제안을 해왔다는 것.

3층 약국 개설로 1층 약국의 처방전 수요 등 조제료
수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고
리로 2억 2,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한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3층 약국자리 매입 1층 약국에 두배에
사라' 2008. 4. 16.기사 정정보도

• 내 용 : 본 데일리팜은 지난 4월 16일자 전면기
사에 '3층 약국자리 매입 1층 약사에 두배에 사
라'라는 제목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3층 점포주는 1층 약국에 약국
자리를 매입하라고 권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중 나와있는 5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보
도를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3층 약국자리 매입 제안한
바 없어”

• 본 문 : 지난 4월 16일자 본지 「“3층 약국자리
매입 1층 약사에 두배에 사라”」 제하의 기사와 관
련, 3층 점포주는 1층 약국에 약국자리를 매입하
고 권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점포주
는 원 매도인과 맺은 계약서에 약국을 포함한 근
린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록관청인

관할 보건소에서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본보 보도에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데일리팜에서는 의약분업이후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층약국 문제를 이슈화시켜 약사사회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내면서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의약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사를 내보냈으며, 특정 약사 또는 점포주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데일리팜’(www.dreamdrug.com) 초기화면 기사 중 탑 헤드라인 바로 밑 위치에 게시하는 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위 보도문을 고정하여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탑 헤드라인 아래 8번째 이내의 위치에 18시간 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보이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기사와 동일하게 함)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한다.

• 피신청인은 데일리팜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3층 약국자리 매입 1층 약사에 두배에 사라”」 중 사진을 사진 설명과 함께 모두 삭제하고,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삽입한다. 또한 신청인이 구체적인 인터넷 주소를 명기하여 요청할 경우 같은 기사가 게재된 각종 포털 블로그 및 개인 홈페이지 등 외부 홈페이지에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단,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5월 31일까지에 한한다.

• 피신청인은 위 사항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5월 15일 자정까지 이행하며, 제3항의

단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이행한다. 피신청인이 위 사항의 이행을 각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표이사는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저희 데일리팜 4월 16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다소 단정적인 제목과 사진으로 이○○ 약사님께 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데일리팜에서는 의약분업이후 계속 문제시되고 있는 층약국 문제를 제기해서 약사사회의 자정노력을 이끌어 내면서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인 의약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기사를 내보냈으며 이 약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불편부당한 국민 보건 공론의 장으로서 데일리팜이 활동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 및 담당 기자 등 소속 임직원에게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팜 : 『[반론] “3층 약국자리 매입 제안한 바 없어”』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4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결과, 신청인이 현역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서 여타 정당 후보들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4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우 제 창

피신청인 : 뉴스리더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9.

보도내용

뉴스리더 : (1) 『용인지역 18대 총선 ‘한나라당 압승 예상’』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4일자 1, 3, 4면)

내 용 : 4월 9일 치러질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용인시 처인, 기흥, 수지구 모두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사실상 확인된 셈이어서 향후 지역정가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 지지도 분석은 이번엔 실시된 ‘리더와 중부일보, 기념방송’ 등 3사의 공동 여론조사가 처음이다.

23일 지역언론 3사가 공동으로 용인시 거주자 968명을 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자체ARS시스템으로 전화 여론조사한 결과 처인, 기흥, 수지구에서 한나라당 또는 한나라당 후보 지지도가 통합민주당 또는 통합민주당 후보 지지도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도에 표본오차는 $\pm 3.1\%$ 이다.

처인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되든 통합신당 현역 의원인 우제창 의원을 큰 차이로 누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과 한나라당 이우현 후보와의 가상대결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38%가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줬으며 우 의원은 23%에 그쳤다. 잘 모름은 38%.

또 우 의원과 한나라당 배한진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도 배 후보(31%), 우 의원(24%), 잘모름(45%) 순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여유현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여후보가 32%로 우의원(21%)을 앞섰다. 한나라당 선호 후보 조사에서는 이우현(27%), 배한진(8%), 여유현(11%)로 각각 나타났다. (중략)

처인구는 예비후보가 많지 않아 직접 가상대결 형태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 세명의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현 우제창 통합신당 의원을 가볍게 누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나라당 후보 선호도에서는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우현 후보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배한진

후보와 기업인 출신의 여유현 후보를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후보가 10여년 이란 오랜 기간 시의원과 부의장, 의장 활동을 해 인지도에서 앞섰기 때문이지만 배 후보의 경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지와 조선일보 차원의 지원을 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불꽃 튀기는 공천 싸움이 예상된다.

먼저 한나라당 선호후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이 후보를 뽑았으며 11%가 여 후보, 8%가 배 후보를 뽑았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3%에 달해 향후 얼굴 알리기에 따라 지지후보가 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가상대결에서 한나라당의 우세는 압도적이다. 이 후보가 우 의원과 맞붙을 경우 38%가 이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 23%의 우 의원을 크게 앞섰다. 잘 모름도 38%에 그쳤다.

배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우 의원은 열세를 면치 못했다. 응답자의 31%가 배 후보를 택했고 우 의원은 24%에 그쳤다. 잘 모름은 45%로 부동층이 높게 나타났다.

여 후보와의 경쟁에서는 여 후보가 32%의 지지를 얻어 21%에 그친 우 의원을 역시 앞섰다. 잘 모름은 47%.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되든 현역 의원을 이긴다는 것은 그만큼 한나라당 지지도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향후 대통합민주당 쪽의 대응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략)

(2) 『여유현 29% VS 이우현 29%, 윤건영 31% VS 한선교 ‘초박빙’』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7일자 1, 3면)

내 용 : 한나라당이 제 살 깎기를 한 것일까. 한나라당의 파행 공천 논란이 4·9총선에서 지지도 하락을 불러온 반면 친박연대와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리더와 경기신문, 기념방송 등 지역언론 3사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용인시 처인구와 수지구, 성남시 수정구 등 3개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처인구는 친박연대의 이우현 후보, 수지구는 무소속의 한선교 후보가 각각 한나라당의 여유현, 윤건영 후보와 오차범위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후략)

(3) 『우제창 후보, ‘교수’ 아닌 ‘객원교수’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3일자 1, 3, 6면)

내 용 :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 우 후보측 “문제 없다”

한나라당 여유현 후보는 몽골사업자와 각종 의혹 ‘난타전’

4·9총선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초접전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선거구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통합민주당 우제창 후보는 허위 경력표기 논란에 휩싸였고, 한나라당 여유현 후보는 몽골 관련 사업자의 각종 의혹 폭로 등에 발목이 잡혀 선거판도가 더욱 혼전양상으로 빠져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용인 처인구의 통합민주당 우제창 후보가 연세대학교 객원교수(비전임교원)인데도 교수(전임교원)인 것처럼 홍보물 등의 경력란에 허위로 표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우 후보가 선관위와 각종 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에 기재한 경력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라고 못박고 있다. 근무기간은 2002년 3월~2004년 2월까지 약 2년여(4학기)가 전부다.

연세대측은 “우 후보의 경우 객원교수로 비전임교원이 분명하다”고 밝힌 뒤 “그러나 연세대는 다른 대학교의 객원교수와 차이가 있고, 우 교수는 연구실 배정은 물론, 급여도 받는 등 전임교원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측도 “우 후보의 교수 경력은 증명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제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정말 교수가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오겠는가. 선관위측에 이미 입장을 전달했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후략)

(4) 『우제창 교수 논란 유권자 혼란 가중』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0일자 1, 3, 7, 8면)

내 용 : 교수 경력 허위 기재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 처인구의 우제창 통합민주당 후보측은 “우 후보는 경력에 조금도 문제가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사실 관계가 입증됐다”면서 “모든 사실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우 후보의 이같은 경력을 두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우 후보가 객원교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밝혀진 이상 지금까지 진짜(?) 교수로만 알았던 유권자들로서는 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중략)

특히 우 후보는 지난 2004년 4월 총선에서도 같은 경력을 표기했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계속 전직 교수임을 내세워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이번 허위 경력 논란을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더욱 주목됐으나 결론은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우 후보는 그러나 지난 2004년 2월까지를 끝으로 연세대가 규정한 객원교수를 마감했다. 연세대 규정집의 객원교수 관련 임용에도 “(객원교수는) 한 학기 단위로 임용하되, 4학기(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우 후보의 근무기간 약 2년과 일치한다.

따라서 우 후보는 연세대 규정은 물론, 고등교육법 (대학)교원관련 규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비전임교원’인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용인지역 18대 총선 ‘한나라당 압승 예상’, 우제창 후보, ‘교수’ 아닌 ‘객원교수’ 논란, 우제창 교수 논란 유권자 혼란 가중, 연세대 교무처 “우제창은 객원교수가 맞다”, 대학·후보측 자료만 보고 ‘이상없음’, 처인구 선관위, 유권자 알권리 외면 본분 망각 논란, 용인시 처인구 선관위, 특정 후보 봐주기 의혹, “우제창의원 허위경력 논란 법정에서 가린다”, 우제창 ‘교수 허위경력 논란’ 지역 최대 관심사 부각, 우제창 교수경력 논란, 이참에 기준 정립을.... 등에 대한 반론

• 내 용 : 가. 용인지역 18대 총선 ‘한나라당 압승 예상’

뉴스리더는 2008년 1월 24일 발행된 제173호 1면 및 3, 4면에서 <용인지역 18대 총선 ‘한나라당 압승 예상’>이라는 제하(題下)의 기사에서 “처인구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되든 통합신당 현역의원인 우제창 의원을 큰 차이로 누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스리더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작위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뉴스리더가 발표한 가상대결 여론조사는 우제창 vs 이우현의 경우 324명을 대상으로 200명만이 응답했고, 우제창 vs 배한진의 경우 372명을 대상으로 168명만이 응답했고, 우제창 vs 여유현의 경우 296명을 대상으로 158명만이 응답했음에도 기사에서는 968명만을 거론해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검증할 여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유현(29%,한나라당) vs 이우현(29%,친박), 윤건영(31%,한나라당) vs 한선교(33%,친박) '초박빙'

뉴스리더는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선거운동 개시 첫날 신문 1면에 발표함으로써 통합민주당 우제창 후보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뉴스리더가 게재한 3사 공동 여론조사는 실상 뉴스리더가 자체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한나라당 여유현 29.77%, 친박 연대 이우현 후보 29.49%, 통합민주당 우제창 후보 23.05%라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했으나, 이는 2008년 3월 31일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 KBS-MBC 방송이 코리아리서치에 의해 조사한 여론조사결과(통합민주당 우제창: 28.8%, 한나라당 여유현: 21.4%, 친박연대 이우현: 16.7%)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물론, 우제창 후보측이 3월 27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통합민주당 우제창: 30.3%, 한나라당 여유현: 21.7%, 친박연대 이우현: 15.6%)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의적인 여론조사결과를 공식선거운동 개시 첫날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관도 인식을 왜곡시켜 본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불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 우제창 후보, '교수' 아닌 '객원교수' 논란

뉴스리더는 2008년 4월 3일 발행된 제 182호 1면에서 <우제창 후보, '교수' 아닌 '객원교수' 논란>이라는 제하(題下)의 기사에서 우제창 후보가 허위경력 표기 논란에 휩싸였고, 연세대학교 객원교수인데도 교수인 것처럼 홍보물 등의 경력란에 허위로 표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는 우제창 후보가 홍보물 등의 경력란에 교수를 표기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한 뉴스리더도 취재과정에서 선관위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뉴스리더가 선거법에 대한 최종 판단기관인 선관위의 해석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논란', '의혹' 등의 추측성 기사를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신문 1면을 비롯한 주요 지면에 집중적으로 게재한 것은 '알 권리 추구'라는 공익을 넘어 선거에 개입해 불순한 영향을 끼쳐 특정인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라. 우제창 교수 논란 유권자 혼란 가중

뉴스리더는 2008년 4월 3일 발행된 제182호 3면에서 <우제창 교수 논란 유권자 혼란 가중>이라는 제하(題下)의 기사에서 "이미 신정아 허위 학력 파문으로 확산된 정관학계의 허위학위와 같은 '허위성'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서는 명확한 구분을 원하고 있다. 직위나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공표할 경우 선거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므로 더욱 명확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리더는 본인의 경우와 무관한 신정아의 허위학위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본인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 인식을 유포시켰고 이미 선관위에서 '이상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뉴스리더도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공식선거운동기간 중 마치 우제창 후보가 선거법의 허위경력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도해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바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1980년 4월에
발생한 사북사태를 ‘사북사건’으로 규정했음에도 ‘사북항쟁’으로
표현해 당시 광부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김 ○ ○

2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80년 사북항쟁’ 명예회복 권고』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3일자 13면)

내 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
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가 1980년 ‘사북 노동항
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국가에 권고했
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1980년
사북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조사과정에서 시민들
을 폭행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
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당
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중략)

진실화해위는 “조사과정에서 광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부분이 참작됐고, 계엄
당국이 광원과 가족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
는 과정에서 심각한 가혹행위를 한 점이 드러났
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가
사건 당시 광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어용노
조 위원장의 부인 김○○(68) 씨를 위로할 수 있
는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항쟁 와
중에 어용노조 위원장으로 지목된 남편이 도망
가자, 일부 광원들과 가족들에게 집단폭행을 당

했다.

당시 항쟁지도부 협상대표로 활동했던 이○○
(68) 씨 등은 2006년 1월 과거사위에 ‘사북 노
동항쟁’의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을
들은 이씨는 “그동안 명예회복을 위해 뛰어나니
며 고생했는데 진상이 밝혀져 기쁘다”며 “26일
사북에서 사북항쟁 기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
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80년 사북사건’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사회면에 『80
년 사북항쟁 명예회복 권고』 기사와 관련해 진
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북사태를
‘사북사건’으로 규정했는데도 ‘사북항쟁’으로
보도하고 사북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당시 동원
탄좌 노조지부장 부인 김○○ 씨를 ‘어용노조 위
원장 부인’이란 표현을 사용해 보도한 바 있습
니다.

이에 대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회는 ‘사북항쟁’ 대신 ‘사북사건’을 공식명칭으
로 사용한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 잡고 김씨와 가
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겨레 : 『반론 실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3일자 2면)

내 용 : 4월 23일치 13면 ‘80년 사북항쟁 명예회복
권고’ 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사북항쟁’ 대신 ‘사북사건’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
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와 정부 측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월간조선
증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9.
처리결과 : 조정결정 (정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월간조선 :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도박」』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호 141~147쪽)

내 용 : 『관광공사 카지노 운영 자회사 비리에 청
와대·舊여권 개입 의혹』

• 감사원 감사 곧 종료... 朴丁三 GKL 사장 사
표 제출

• GKL 측, 『뜯구름 잡는 억지춘향식 네거티브
공세』

『GKL 비리규모 1,000억 원에 이른다』는 제보

최근 月刊朝鮮에 『한국관광공사가 설립한 카지노 관련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의 비리 의혹 범위가 당시 청와대와 정부 실세 및 舊여권 중진의원에게까지 뻗쳐 있었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현재 GKL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고, 임기가 올해 9월까지인 朴丁三(박정삼) 사장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를 제공한 이는 『GKL이 카지노를 설립하면서 저지른 비리 규모는 약 600억 원에 달한다』며 『설립 이후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매출까지 포함하면, 비리 규모는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리로 만들어진 자금은 대부분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으며, 관련 자료와 증언들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가 정권 바뀌니까 곧바로 감사원을 통해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는 이번 비리와 관련된 인사들의 설명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제시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고위급 인사가 거론됐다. 과연 사실일까. 일단 盧武鉉 정권이 들어선 후 지금까지 카지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점검해 봤다.

2004년 서울·부산에 카지노 3곳 허가

2004년 9월, 鄭東采(정동채)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서울과 부산에 카지노 3곳을 추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설립권은 모두 문화관광부 산하 공기법인 한국관광공사에 줬다. 관광공사는 자회사 GKL을 만들어 이듬해 서울 코엑스와 힐튼 호텔, 그리고 부산 롯데호텔에 「세븐럭(Seven Luck)」이라는 카지노를 개장했다. (중략)

국내 한 카지노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카지노들이 「기본적인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카지노와 같은 사업일수록 투명한 경영방식이 요구되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지노 전체에서 얼마를 벌고 잃었느냐에 대해 2시간에 한 번씩 보고해야 해요. 전 세계 3000여 개 카지노 중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와 「세븐럭」,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두 곳이지요. 이건 비리가 있다고 스스로 내세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고위인사들이 카지노 세력과 손을 잡고 있다고 증언했다.

『용도변경』에 최고위급 입김

『예전에 이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만 하면 핵심인

물 P씨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지위가 아니고서는 그런 정보를 캐낼 수 없을 겁니다.

또 한 명의 핵심인물인 K씨는 임기가 끝난 후 문광부 장관 자리를 넘봤다고 해요. 상부와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장관 자리까지 좌지우지하는 걸 보면 실세중의 실세일 겁니다」

—「상부」가 설마 대통령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대통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당시 한 청와대 수석비서관에게 물어봤는데, 상세히 알고 있던군요』

그는 청와대와 함께 舊여권 중진의원, 그리고 GKL의 某감사 등을 지켰다. 카지노 업계의 지위를 오래 전부터 받아 왔다는 이야기다.

『사행산업을 즐기치게 반대했던 某의원 있죠? 거기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세븐럭」에서 일하고 있어요』

카지노사업장 임대사업자 「한무컨벤션」은 삼성동 코엑스 내에 위치한 오크우드호텔 3층에 카지노를 설치하기 위한 오락시설 용도변경을 강남구청에 2006년 1월 두 차례 신청했다. 강남구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근거로 반려해 왔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무컨벤션은 오크우드호텔2층에 「세븐럭」 카지노를 운영 중이다.

맨 처음 GKL 비리를 제보한 이는 『한무컨벤션이 오크우드호텔 2층에 카지노를 설치할 때 「최고위급인사」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최고위급 인사」에 대해 여러 이름을 거론했다. 정권 실세였던 A씨와 L씨 등의 이름이 나왔다.

『이 모든 「우산」들이 정권 교체 후 모두 사라진 겁니다. 조용하던 감사원이 감사에 발동걸기 시작했고요. 아마 現 정권에서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한무컨벤션 측은 『고위급 인사 관여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하게 허가받은 2층만 운영하고 있다. 영업장을 늘리기 위해 3층의 장소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는 반론을 보내왔다.

朴丁三 GKL 사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제보자의 전언이다.

『지난주 GKL 내에 있는 낙하산 인사들이 모여 긴급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모두 책임지고 사표 쓰

자고. K모씨라고 문광부 출신이 있는데, 무슨 배짱인지 그 양반은 사표 안 쓴다고 했나 봐요』

GKL 측의 反論

GKL 측에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GKL 측은 『창립 이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해 왔고, 한 톨의 정치자금도 헌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GKL 측은 『朴丁三 사장의 사표 제출은 감사원의 감사와 무관하며, 새 정권들어 기관장 사의 표명은 GKL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600억~1,000억 원에 달하는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에서 허위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며 『뜬구름 잡는 억지춘양식 네거티브 공세』라고 했다.

P씨 선임 과정은 『공모를 통한 소모기일은 2개월』이라고 반박했다. 전산시스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 예산 132억 원 중 카지노 전산시스템(CMS) 개발 비용은 40억 원』이라며 『GKL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했다.

GKL 측은 또한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 적자는 GKL과 무관하다』고 했고, 「밸런스 보고」와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최종마감 시 비교·검토 및 정확한 수치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월간조선’ 2008년 5월호 141면부터 147면 사이에 게재된 추적기사 “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도박」” “『관광공사 카지노 운영 주 회사 비리에 청와대·舊여권 개입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으나, 노무현 정권에서 외국인전용카지노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와 위 회사 설립당시의 한국관광공사의 사장 김〇〇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 및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전(前) 사장 박〇〇이 매년 수 억 원에서 수 십억 원의 정치자금을 국회와 정부측 인사들에게 전하였는지 여부는 제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으며, 당사에서 달리 확인한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선임과정, 보안시스템, 전산시스템과 게임기 구매 과정에 관한 의혹, 카지노출입자에 원국적이 한국인인 사람이 많다는 것과 대한민국정부가 운영하는 두 개의 카지노업체가 경영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곧 월간조선에 후속보도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8

청 구 명 : 조정청구

신 청 인 :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조정대리인 박 ○ ○, 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김 현 호

조정대리인 배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조선> 2008년 7월호 200면 이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크기(“盧武鉉 정권의 「위험한 도박」”)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하며, <별지> 보도문의 제목을 목차에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은 2008년 6월 27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월간조선 홈페이지(<http://monthly.chosun.com>)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거나,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되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1.항 및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 익일부터 각 이행일까지 1월 1,000만 원(1.항의 경우), 1일 100만 원(2.항의 경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

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30.

<별 지>

• 제 목 : GKL ‘세븐럭’ 카지노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 지난 5월호 『[추적] 盧武鉉 정권의 위험한 도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는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1) GKL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거래업체선정의 전 과정이 투명합니다.

2) ‘밸런스보고’와 관련해서 GKL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손익이 모니터링되어 1일 단위의 매출보고가 이뤄지고 있고,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월 단위 매출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누락 등의 회계비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3) 제주지역의 상당수 카지노 업체는 1997년 이전부터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GKL개장과 제주지역 카지노업체적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4) GKL과 한무컨벤션이 임대차계약을 맺기 이전인 2002년 3월에 한무컨벤션이 호텔 2층에 대해 ‘위락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용승인 과정에 참여정부 정권 실세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5) GKL 박정삼 전 사장은 언론사 및 국정원 간부 등 과거 재임 기간 동안 어떠한 비리도 저지른 바 없고, 정치권에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지의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졌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1) ‘세븐럭’의 전산 운영을 위해 구입된 도스시스템은 성능이 미흡하여 활용되지 않았고, GKL이 자체 개발한 ‘E-SUIT 시스템’이 처음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2) ‘세븐럭’의 2006년도와 2007년도 입장객 중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비중은 각각 14.8%와 14.0%에 불과합니다.

3) GKL의 인사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할 때 유

일하게 “사표를 안 쓴다”고 했다고 보도된 문광부 출신 K씨는 다른 인사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으

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사표를 반려하여 현재 계속 재임 중입니다. □

지방대 겸임교수인 신청인이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논문을 2개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3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민일보 : 『무용계 판박이 논문 판친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8일자 1면, 3면)
내 용 : (전략) 모 지방대의 겸임교수인 K씨 역시 2005년 3월 한국무용기록학회지에 발표한 ‘초등무용교육을 위한 예술통합형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같은 해 12월 한국미래춤학회지에 실었다. 이 역시 논문에 쓰인 표의 색깔만 다를 뿐 동일한 논문이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무용계 판박이 논문 판친다-표절 극치...베낀 것 또 베끼기도] 논문 복사기? A씨→B씨→C씨 연쇄베끼기 기사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국민일보는 지난 2008년 4월 28일자 신문 제3면에 위와 같은 제목 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로 “모 지방대 겸임교수 K씨의 논문이 2005년 3월 한국무용기록학회지와 같은 해 12월 한국미래춤학회지에 이중게재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오류이므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중게재로 적시한 동 논문은 한국무용기록학회지에 이미 발표한 논문을 한국미래춤학회의 요청

에 따라 단순히 공개발표만을 목적으로 한 학술대회 발표문으로 학회지 후반부에 부록형식으로 편의상 합본한 것으로서 전혀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바, 본인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보도함으로 인해 K씨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림
- 내 용 : 본보 지난 4월 28일자 『무용계 판박이 논문 판친다』 제하의 기사 관련, 지방대 겸임교수 K씨는 해당 논문의 경우 2005년 3월 <한국무용기록학회지>에 발표된 것으로 ‘한국미래춤학회’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1월에 열린 ‘제9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공개발표를 한 것이 <한국미래춤학회 연구논문집>에 합본되었으며 ‘학술진흥재단’ 연구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5월 30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갈 데까지 간 무용계 논문 표절 실태”)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쿠키뉴스)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0만 원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30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병의원이 성업중인 상가 3층 점포를 매입한 신청인이 1층 약국 약사에게 매입가의 2배 가격으로 점포를 사라고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약사공론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3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2008서울조정11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116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약사공론 : 『층약국 권리금 장사, 약사가 약사를 울린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1일자 3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16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약사공론 : 『‘층약국 권리금 장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5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등 불법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1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광주 모 아파트 관리소장 비위 의혹 공방』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4일자 14:05)

내 용 :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의 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관리사무소의 갈등이 격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구 문흥동의 ○○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소장 전모(44.여) 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씨가 14년 간 관리소장을 맡아 오면서 관리소장 불신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보수 역시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전씨는 설계서 없이 아파트 주차장 포장공사를 벌인 데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공사 감독을 맡겨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주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팸플릿을 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데도 일부 주민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꾸렸다”고 주장하며 “시시비비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전모 소장 비위의혹 등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4일자 사회면에 ‘광주 모 아파트 관리소장 비위의혹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북부 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구 문흥동의 ○○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소장 전모(44, 여) 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전모 소장은 위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6일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더불어 광주지법은 4월 21일 전모 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연합뉴스 : 『광주 A 아파트 관리소장 비위의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3일자 10:41)

내 용 :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 A아파트 관리소장의 비위 의혹을 놓고 일부 입주민들이 제기했던 진정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A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보수도 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진정을 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지난 3월 6일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아파트 주차장 포장공사의 감독 업무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맡겨 주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 아파트의 한 입주자가 B씨를 상대로 낸 아파트 관리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신청인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지난달 21일 신청을 각하했다. □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는 등 불법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2

청 구 명 : 추후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광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광남일보 : 『아파트 관리소장 비위의혹 공방』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5일자 19면)

내 용 :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의 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관리사무소의 갈등이 격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구 문흥동의 대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관리소장 전모 씨(44·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씨가 13년간 관리소장을 맡아 오면서 관리소장 불신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보수 역시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전씨는 설계서 없이 아파트 주차장 포장공사를 벌인 데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공사 감독을 맡겨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주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팸플릿을 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데도 일부 주민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새로 꾸렸다”고 주장하며 “시시비비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전모 소장 공금횡령 등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5일자 사회면에 “공금 횡령했다”VS“사실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광주 북부 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구 문흥동의 대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아파

트 관리소장 전모(44·여) 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전모 소장은 위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6일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더불어 광주지법은 4월 21일 전모 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5일자 사회면 “아파트 관리소장 비위의혹 공방”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시 북구 문흥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보수 역시 부당하게 인상했으며, 아파트 주차장 포장공사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공사감독을 맡겨 주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비위의혹으로 인해 경찰수사를 의뢰당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의 진정·내사 사건 수사결과 지난 3월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의 내용을 수사의뢰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확인 결과 아파트 특정 주민의 진정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4월 21일 관리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이를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린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5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남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추후보도문) 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공금횡령했다...)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갈게 한다.

광남일보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6일자 23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대학 관계자가 재임용 대상 교수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재임용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인천전문대학 (학장 민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 『인천전문대 재임용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9일자 10면)

내 용 : 여교수 “뇌물요구 거절하자 탈락”

시립인천전문대가 재임용 대상 교수에게 임용과 관련해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교수 재임용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이 학교 중국어학과장이던 최모(34·여) 씨는 지난해 8월 재임용 심사에서 논문 한 편이 기준 미달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되자 민○○ 학장을 상대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는 “논문 심사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청구인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羈束)하므로 학교 측은 즉시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재임용 절차를 계속 미루다 지난달 논문심사를 벌인 뒤 “평가가 안 좋게 나왔다”며 또다시 최씨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씨는 “첫번째 재임용 탈락 직전인 지난해 8월

13일 박모 당시 교무과장이 내 연구실로 와 학장을 찾아가 돈을 아낌없이 줘라. 학장이 지시하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임용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뤄진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막상 이같은 요구를 받으니 어이가 없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은 “1994년 시립화 이후 재임용 탈락은 한 건밖에 없었다”면서 “최씨가 탈락된 배경에 학장의 개인적 감정이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지난 2008년 4월 29일자 서울신문 본지 사회면에 ‘인천전문대학 재임용비리 의혹’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시립)인천전문대학 중국어과 모 전임강사의 재임용 탈락과정 내용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채 사실무근의 기사를 보도한 것이 잘못되어 아래와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 2007년 8월 중국어과 전임강사 모씨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교육부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여 재임용 거부취소처분을 받았는데 대학 측이 즉시 재임용을 하지 않고 재심사를 통해 다시 탈락시켰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히는 바입니다.

- (시립)인천전문대학 민○○ 학장이 개인적 감정 (2007년 4월 18일 학장 선거에서 재임용 탈락된 중국어과 모씨가 반대편을 지지함으로)으로 재임용에서 탈락 시켰다는 내용 역시 사실 무근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민○○ 학장이 재임용 탈락된 모씨에게 P 교수를 통해 마치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그리고 학내에서 불만세력으로 상존하며 민○○ 학장을 고소했던 전력이 있는 정중태 교수의 개인적 사건(민○○ 학장이 사적 감정으로 최○○ 교수를 탈락시켰다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한 내용들은 모두 잘못된 기사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취재할 계획이며, 각종 비리에 대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반론이 가능하겠으나 정정은 할 수 없다. □

미국 여성 ‘아레스 빈슨’ 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으며,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3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 운 천)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6.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8년 4월 29일 23:10)

내 용 : ▷내레이션 :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축산농가, 한 남자가 전기충격기로 주저앉은 소를 찌르고 있다. 강한 충격을 줘서 일시적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다. 이른바 물대포로 충격을 주는 인 부도 보였다.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갔다.

▷마일크그래거 휴메인소사이어터 :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거예요. 사실 그 도축업체는 미국 농무부가 2002년, 2003년 우수 공급업체로 지

정한 곳이에요. 그것도 학교 급식 최우수 업체로 말이죠. (중략)

▷송○○ PD : 네, 김○○ PD.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 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스 썬 가요? 죽음도 아주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김○○ PD : 그렇습니다.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고요,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끓여먹거나 익혀먹어도 감염물질이 사라지지도 않고,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병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연구되거나 알려지지 않아서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송○○ PD :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의 시민단체가 우리에게 충고를 했듯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이상 우리도 같은 위험을 공유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간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사람들도 잘 먹는 쇠고기를 왜 우리 국민들만 난리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쇠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로빈 빈슨 故 아레스 빈슨의 어머니 : 여기가 아레스의 침실이에요. 이건 딸이 입던 잠옷인데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사줬어요. 매일 갈아입을 수

있게 사줬는데 한 벌밖에 못 입었네요. 쓰던 물건들은 그냥 그대로 뒀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으면...

▷내레이션 : 사흘 전, 딸 아레사의 장례식을 치룬 어머니 로빈 빈슨씨 지금도 딸의 방에 오면 살아 생전 딸의 온기가 느껴진다고 했다.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사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미국 WAVY TV : 인간 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한 포츠머스 여성의 일로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펔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광우병입니다. 인간 광우병은 잠복기가 길니다. 만일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펔트 야콥병이 맞다면 그 원인은 1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에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로빈빈슨 故 아레사빈슨의 어머니 : 사실은 내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레이션 : 2주전만 해도 아레사 빈슨은 올해 진학한 대학원 수업을 준비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

▷로빈빈슨 故 아레사빈슨의 어머니 : 아레사가 걷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먼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정상이 아니었어요.

▷내레이션 :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됐다. 아레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았고,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로빈 빈슨 故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 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레사를 위한) 치료법이 없다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듣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레이션 : 발병 후 일주일 만에 아레사는 사망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뇌 부검을 해야했다. 가족들은 부검에 동의했다. 보건당국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 광우병인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략)

▷송○○ PD : 김○○ PD.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젠데 우리 정부가 너무 아니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 문제가 뭐죠?

▷김○○ PD : 우선 협상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워낙 어려운 용어가 많고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할 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 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내레이션 : 지난 4월 18일 저녁, 전 국민의 관심이 모였던 이곳. 새벽까지 밤샘회의를 했다는 협상대표가 회견장에 들어섰다.

▷민○○ 농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 : 한미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평가받을 당시 국제수역사무국이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내레이션 : 분노보다 컸던 건 바로 불안이었다. 많은 이들이 협상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믿고 먹어도 좋은지 불안해했다. 그간 우리가 수입해왔던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뿐,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현행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 중 일부가 들어오게 된다. 무엇보다 우려를 사고 있는 건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 폐지다. 개월수가 높을수록 광우병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18만건 이상 발생했는데, 그 중에 99.5%이상은 30개월령 이상의 나이트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20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광우병이 발생한 건수는 100여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수입 위생조건을 정했던거고 (중략)

▷마이클 헨슨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 2년 전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했던 일은 광우병 위험 국가 기준을 간단하게 바꾸어서 결국 미국이 다른 나라로 쇠고기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

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 보자면 OIE(국제수역사무국)가 지켜오던 광우병 규정에 관해 새로운 제안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 미국은 당연히 지지를 보냈고, 그 제안이 OIE(국제수역사무국)회의에서 통과되어 OIE(국제수역사무국)의 방침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그대로의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세히 알아보면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 측의 예를 들면 식품의약청(FDA)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레이션 : 그런데 2005년 이전 광우병 관련 등급은 다섯 단계였다. 이때만 해도 광우병 의심사례가 단 한건만이라도 발생하면 해당국에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3년 미국이 광우병이 발생했고, 그 후 미국이 주도해 광우병 발생국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등급과 조건을 완화시켰다는 것이다. 미국이 위협통제국가 등급을 받던 지난해 5월, 일본은 등급결정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미국의 위협통제국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타가이 도시오 일본농림수산성 동물위생과 :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미국이 사료규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향후 실태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OIE 가맹국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의한 문제된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아직 무시할 수 있는 정도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에 위험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것이 어느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송○○ PD : 김○○ PD, 쪽 보면 말이지요, 그 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김○○ PD :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송○○ PD : 손○○ 아나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었다고요?

▷손○○ 아나운서 : 바로 한국인의 유전자 문제인데요, 먼저 화면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손○○ 아나운서 : 한국인 500여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 PD : 이○○ PD, 이런 상황인데 따지고 또 따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를 판인데 어떻게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결과가 나와 있는지, 또 그사이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요?

▷이○○ PD : 너무 급작스럽게 협상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4월 9일 있었던 총선 바로 다음날 4월 10일 협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날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저희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중략)

▷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FTA위원장 : 모든게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과정에 대한 공개 없이 그 결과가 이렇게 또 신속히 집행되는 정말 광우병 정책의 폭주라고 할까요?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연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까요?

▷송○○ PD : 이○○ PD, 과연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특히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이○○ PD : 그전에는 등뼈같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면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 차례나 등뼈가 나와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구요, 하지만 이번 협상

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협상의 결과를 알게 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략)

▷송○○ PD : 이○○PD, 쇠고기만 또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이○○ PD :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표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쇠고기 뿐만 아니라, 라면 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송○○ PD : 근데, 미국 쇠고기 수입, 우리 국민들은 그저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수밖에 없나요?

▷이○○ PD :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협상 내용은 농림부의 고시로 고시가 된 겁니다. 고시는 법률적으로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독소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상위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송○○ PD : 취재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손○○ 아나운서 : 역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넘어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자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97님의 글입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되지만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급식으로 나온다면 끔찍하다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216님. 미국인도 믿지 않는 미국을 우리나라님들은 너무 믿고 따른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969님의 글 볼까요? 썩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쇠고기를 먹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라는 글도 올려주셨네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PD : 오늘 친일 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명단 발표가 있었지요. 대통령은 공과를 같이 따져야 한다고 말했고, 일부에서는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29일 방송에서 동영상의 주저앉은 소들과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Aretha Vinson)의 사례를 다루면서 진행자가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고 이 여성도 인간 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단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여성도 지난 5월 5일 미국 농업부 발표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방송은 또한 SRM(특정위험물질)을 소 월령과 무관하게 7개 부위로 정의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에는 이 중 2가지만 제거한 나머지 SRM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30개월 미만의 경우 현재 국제적인 정의에 의하면 SRM은 2개 부위로서 이번 미국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이를 모두 제거한 후 수입되도록 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방송은 또한,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형(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의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영국인보다 2배, 미국인보다 3배 높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는 검증된 사실이 아니며,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본 방송은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B항)”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교역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방송은 또한, 라면스프, 알약캡슐, 그리고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SRM이 제거되며 특히,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

라틴이나 콜라겐은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없는 소가죽 등을 원료로 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본 방송은 또한 우리측 협상팀이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미국의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한 게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 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해 이번 수입 위생조건 체결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협의회를 열어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고 '07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두 개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사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 윤 천

조정대리인 주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조정대리인 조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MBC-TV 〈PD수첩〉 프로그램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15.

〈별 지〉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본 방송이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스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6, 7월에 두 개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

서울시장이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거짓공약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시장 오 세 훈)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겨레 : 『오세훈 '헛공약 모르쇠' 해명 못한 해명』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2일자 9면)

내 용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의 쟁점으로 번진 ‘뉴타운 추가·확대’ 문제를 두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총선의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오 시장이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을 잇달아 만났고, 이들의 거짓공약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현시점에서는 당분간 뉴타운 사업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 4차 뉴타운 지정도 1~3차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진척됐을 때 고려하겠다”며 기존 서울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서울시 방침이 지난 총선 기간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뉴타운에 대한 같은 취지의 설명을 두고 한 신문은 ‘추가 지정 없다’고 보도했고, 다른 신문은 ‘뉴타운 10곳 이하로 추가 지정’이라고 제목을 뽑았다”며 “일부 언론보도에서 강조점이 다른 것을 정치권이 악용하다 보니 오해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또 선거기간에 총선 후보들이 남발한 뉴타운 추가·확대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 해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이 남발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선거에 개입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오 시장의 해명은 지난 총선 기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이 되지 못한다. 먼저 오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한 경제신문과 인터뷰한 뒤 ‘뉴타운 10곳 이하로 추가 지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이를 정정하는 공식 해명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또 선거 기간 뉴타운 추가·확대 공약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는 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당 정몽준·신지호·김용태·안형환 등 한나라당 후보들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잇달아 만났다. 결국 이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에게서 뉴타운 추가지정을 약속받았다”는 등의 거짓주장을 펼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반면, 통합민주당 김근태 후보는 면담을 신청했다가 오 시장으로부터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만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거절당했다. 오 시장 자신이 속한 당의 후보들에게 유리한 행동을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은 채 회견문만 읽고 질의응답 없이 자리를 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한겨레신문사는 2008년 4월 22일자 9면에 『오세훈 ‘헛공약 모르쇠’ 해명 못한 해명』이란 제목으로, 오세훈 시장이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들을 만나서, 이들의 공약이 거짓임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들의 공약을 마치 선거에 유리하도록 묵인의 방법으로 협조하고, 그 후 이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여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하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코엔비아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7.

처리결과 : 각 취하(중재합의, 2008서울중재5 참조)

보도내용

이데일리 : 『아파트 영어마을 ‘불법’.. 건설업계 ‘당

혹』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5일자 사 회면)

내 용 : (전략)

광명시 철산동 D아파트의 단지에서 영어마을 운 영업체 ‘코엔비아’에 위탁해 영어교육시설을 운영 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달 광명교 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서 120여명의 유아 및 초· 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강습을 하면서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학원법에서는 ‘10명 이상에게 총 30일 이상 교습 활동을 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또 학원은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상가에만 설 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법에 저촉된다는 지적 도 광명시로부터 받았다. (후략)

• 제 목 : 아파트 영어마을 ‘불법’.. 건설업계 ‘당 혹’의 기사내용을 정정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5일자 건설업계동 향에 아파트 영어마을 ‘불법’..건설업계 ‘당혹’이라 는 제목으로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 동 D아파트의 단지내에서 영어마을 운영업체 ‘코엔 비아’가 운영하는 한 영어교육시설은 지난 달 광명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 업체는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서 120여 명의 유 아 및 초·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강습을 하면서도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의 영어마을 운영업체 ‘코엔비아’를 영어마을 운영자 ‘입주민 대 표회의’로 정정 하며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00,000원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안 : (주)코엔시아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기일보 : 『아파트서 불법 ‘학원영업’』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9일자 5면)

내 용 :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공용시설물에서 주 민들과의 합의를 얻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인가 도 받지 않고 교습행위를 벌인 업체가 교육당국에 고발됐다.

그러나 감사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업체는 단지 주 민들과의 사전협약인데다 영어마을 일환으로 진행돼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반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광명교육청 등에 따르면 900가구 규모의 광

명시 철산두산위브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는 지난해 말 아파트 교육 프로그램개발 업체인 (주)코엔시아와 상호 협약식을 갖고 올 1월부터 단지내 공용시설물에서 영어 교습행위를 벌이고 있다.

(주)코엔시아는 이에 따라 학원인가를 받을 수 없는 연면적 303.91㎡ 규모의 1, 2층 단지내 공용시 설물에서 단지내 자녀 중심으로 총 120여명을 모 집, 유·초·중등부 반으로 구분해 수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체는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로 설정, 주 민대표회로부터 소정의 강사 및 수업료를 받았다. (중략)

(주)코엔시아 관계자는 “이 아파트단지의 영어 수업은 운영자가 입주자대표회로 회사는 일정의 비용을 받고 강사와 수업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차원의 활동을 학원법으로 고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아파트서 불법 ‘학원운영’의 기사내용을
정정합니다.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9일자 사회면에 아
파트서 불법 ‘학원운영’ 이라는 제목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공용시설물에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얻어 과할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도 받지 않고 교습
행위를 벌인 업체가 교육당국에 고발됐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발된 것은 업체가 아니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로 정정합니다.

또한, “29일 광명교육청 등에 따르면 900가구 규
모의 광명시 철산두산위브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
표회는 지난해 말 아파트 교육 프로그램개발 업체
인 (주)코엔시아와 상호 협약식을 갖고 올 1월부터
단지내 공용시설물에서 영어 교습행위를 벌이

고 있다. (주)코엔시아는 이에 따라 학원인가를 받
을 수 없는 연면적 303.91㎡ 규모의 1, 2층 단지내
공용시설물에서 단지내 자녀 중심으로 총 120여명
을 모집, 유·초·중등부 반으로 구분해 수업을 진
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내 운영자는 (주)코엔시아가 아니라 입주
자 대표회의로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손해청구를 취하지 않는다면 정정보
도도 수용할 수 없다. □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 단체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노인들을 무단 입소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4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회복지법인 삼원 (대표이사 민 ○ ○)

피신청인 : 마산MBC-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마산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4월
29일 21:30)

내 용 : ▶ANC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순
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국고 보조금 타내
기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실태를
정○○ 기자가 고발합니다.

▶ VCR

창원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
모노인은 지난해 시설보호관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불편한데다가 자식들도 방임상태라며 이 시설에서
운영했던 노인학대예방센터로부터 학대사례로 판
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실이 아
니라고 합니다.

▶ SYN 무단 입소노인

상담자 : 어머니하고 아버님을 보살피지 않는
다 그래서 노인학대라고(적어놨는데~)

민모 노인 :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노인을 입소시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서
류를 과장해 작성한 겁니다. 특히 개원당시 이 시
설은 무려 14명이나 되는 노인들을 무단 입소시켰
다가 해당당국에 적발된 적도 있었습니다.

▶ INT 창원시 행복나눔과 관계자

개원당시 초기기 때문에 아무절차도 없이 입소
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라 했죠!...

사건의 한 노인시설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
습니다. 지난 2003년 개원당시 사천시로부터 새창
비 구입명목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
로는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 INT 장비납품업자

건물설계를 잘못해 추가로 들어간 예산을 세금으

로 지원된 장비구입비에서 임의로 전용한 겁니다.

▶ SYN 요양시설 관계자

건물설계를 잘못되다 보니 시설 확충하다 보니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노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시설이 일부 운영자들의 편법으로 보조금 타내기 수단으로 둔갑돼 국민혈세가 새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노인 무단 입소 사실과 달라
•내 용 : 지난 4월 29일 및 5월 1일 노인복지시설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중에 일부 노인요양시설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서류를 과장 작성하였고, 개원 당시 노인들을 무단 입소시켰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당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이었으며, 무단 입소되었다고 보도한 노인의 경우 도공무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학대사례관정위원회에서 방임상태로 판정되어 긴급보호 대상으로 관계 당국에 입소신고 확인 서류 등을 공문으로 발송한 후 입소 보호 중이었으며, 노인들을 무단 입소시킨 사실로 행정당국에 고발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제 목 : 반론보도문
•내 용 : 지난 4월 29일 노인복지시설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중에 일부 노인요양시설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서류를 과장 작성하였고, 개원 당시 노인들을 무단 입소시켰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삼원은 당시 노인학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이었으며, 무단 입소되었다고 보도한 노인의 경우 노인학대사례관정위원회에서 방임상태로 판정되어 긴급보호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소 보호 중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노인들을 무단 입소시킨 사실로 행정당국에 적발당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2008년 5월 2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마산MBC-TV 「뉴스데스크 경남」 프로그램에 보도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한다.

•신청인은 본 건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마산MBC-TV : 「뉴스데스크 경남」 프로그램 (2008년 5월 16일 21: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여 지자체 단체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 도 연)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추진』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30일자 1면)

내 용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고 센터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제 포기행위’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29일 본보가 교과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교육지원센터 도입 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민과 학생, 교사 등 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의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략)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의 하부 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은 지자체의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센터로 바뀐다. 신설되는 교육지원센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리하는 기존 지역교육청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모두 관장하게 된다.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던 학교 장학 및 연구 기능은 각각 교사와 민간에게 넘기고 보습학원의 감독이나 평생교육기관 운영 등은 지자체가 직접 관장하게 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추진’ 검토한 바 없어
- 내 용 : 본보는 지난 2008년 4월 30일자 1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교육청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하고 센터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하부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은 지자체의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센터로 바뀐다.” “신설되는 교육지원센터

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리하는 기존 지역교육청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모두 관장하게 되며,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던 학교장학 및 연구기능은 각각 교사와 민간에게 넘기고 보습학원의 감독이나 평생교육기관 운영 등은 지자체가 직접 관장하게 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 담당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지원센터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거나 “지역교육지원센터를 지자체의 산하기관으로 바꾸는 것”, “지역교육청이 담당하던 학교장학 및 연구기능은 각각 교사와 민간에게 넘기고 보습학원의 감독이나 평생교육기관 운영 등은 지자체가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개편되는 기관은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이 임명하게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자 여러분께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리며,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5일자 2면)

내 용 : 본보 4월 30일자 1면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추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4일 “교육지원센터를 지자체산하기관으로 바꾸고 센터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인터넷 쇼핑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문제가 된 쇼핑몰의 웹주소를 명기하지 않아 신청인이 운영하는 동명의 쇼핑몰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Y T N : 「YTN 경제」 프로그램 (2008년 4월 11일 12:37)

내 용 : ▷ 앵커 : 해외 유명 의류제품 구매대행사 이트와 관련된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오늘 ‘멀티-위즈’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지난 8일부터 4일간 무려 400건이 넘었고 피해액만 5,400만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조사결과 이 쇼핑몰 하단에 표시돼 있는 통신판매신고 번호와 사업자등록 번호 등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센터 측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멀티-위즈[www.multi-wiz.com]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YTN 경제」 프로그램에서 “의류 인터넷 쇼핑몰 피해 잇따라” 이라는 제목으로 멀티-위즈[www.multi-wiz.com] 구매대행 쇼핑몰 피해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방송으로 인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멀티위즈에서 마치 피해를 준 것처럼 보도하여 기존에 쇼핑몰 회원들과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멀티위즈는 2년전부터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멀티위즈닷컴’ 인터넷 쇼핑몰 사기와 무관

• 내 용 : YTN은 지난 4월 11일 “의류인터넷 쇼핑몰 피해 잇따라” 제하의 보도에서 소비자들 ‘멀티-위즈’ 쇼핑몰에서 대금을 지급한 뒤 물건을 받지 못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문제가 된 ‘멀티-위즈닷컴’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멀티위즈닷컴’ 쇼핑몰은 피해사례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5월 16일 12시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YTN24> 프로그램에서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화면에 신청인 홈페이지의 주소와 접속장면이 나타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와이티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Y T N : 「YTN24」 프로그램 (2008년 5월 16일 12:57)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주유소 허가장소와 다른 장소에 주유소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6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9.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인일보 : 『주유소 배짱영업 묵인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30일자 19면)

내 용 : 김포의 한 유류판매업체가 기존 식당 건물을 용도변경해 주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가 장소와 무관한 엉뚱한 땅에 각종 주유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허가받은 건물도 당초 허가도면과 다르게 무단으로 증축, 수년간 배짱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포시는 이같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단 한 차례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뒤 수년째 방치, 사실상 불법영업을 묵인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지역 유류·가스판매업체인 A사는 지난 2002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국도 48호선 인근의 식당건물을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용도로 증축해 주유소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측은 사장 B씨의 땅인 갈산리 381의5 1천400여㎡에 주유소 설립허가를 받은 뒤 허가면적을 초과해 사무실 건물을 차려놓고, 정작 주유기와 기름 탱크는 인접한 아버지의 또 다른 땅인 383의3 690여㎡에 무단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듬해인 지난 2003년 주유소의 이같은 불법사실을 적발, 1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으나, 이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5년여 동안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략)

주유소 관계자는 “허가가 이상하게 났다면 허가를 내준 시청이나 소방서가 문제인 거지, 주유소는

모두 적법하게 허가 받아 영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김포시, 주유소 배짱영업 사실과 달라 (또는 주유소 관련 정정보도)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달 4월 30일자 19면에 “김포시 주유소 배짱영업 묵인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김포시의 한 유류판매 업자가 주유소 허가장소와 다른 엉뚱한 장소에 각종주유시설을 설치하고, 5년여 동안 불법으로 배짱영업을 해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주유소는 허가받은 장소에, 허가당시의 도면설계대로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영업허가(석유판매업 등록)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정정보도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손해청구는 수 용할 수 없다. □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가 조작되었으며, 이에 소환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외 3인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9.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SBS-TV : (1) 「8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4월 20일 20:27)

내 용 : ▷앵커 : 경기도 하남 광역 화장장 추진을 놓고 주민과 지자체가 큰 갈등을 빚다 지난해 12월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의 서명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의 단독보도. 한○○ 기자입니다.

▷기자 : 지난해 10월 하남시 주민들은 시장이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습니다. 2만 7천여 명이 서명해 두달 뒤 투표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서명한 적이 없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 모 씨/하남시 주민 : 그 사람들이 썼지 나는 써본 적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 상관도 안하고

▷기자 : 전체 서명부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30대 여성이나 90대 남성이나 한 페이지에 나온 여러 명의 필체가 비슷합니다. 같은 이름을 적으면 서로 한 글자씩 틀리게 쓴 것도 있습니다. 석 달 앞서 추진 도중 무산된 1차 소환투표 청구 당시 서명한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도 필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중략)

▷선관위 관계자 : 70%가 조작 의심되는 것이 나오므로 이대로라면 청구요건을 채울 수가 없어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부를 제출한 주민 모임측은 조작 사실을 부인합니다.

▷김모 씨/하남시 주민 : 직접 하지 절대 다른 사람이 안 했어요. 본인들이 했지. 못쓰는 사람들은 써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소환투표 결과 하남시장은 투표율 미달로

시장직을 유지했지만, 시의원 2명은 소환돼 임기를 2년반 남기고 중도하차 해야만 했습니다. (후략)

(2) 「SBS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2008년 4월 21일 07:54)

내 용 : <보도내용(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하남시 주민소환서명 청구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20일자 8시 뉴스에서 “주민 청구로 실시된 소환투표, 알고보니 조작?” “하남시 선관위, ‘서명 조작’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남시에서 진행된 주민소환청구 서명이 조작되었고 선관위는 이를 알면서 투표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하남시에서 진행된 주민소환투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소환서명과 선거가 진행되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관한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므로 반론보도 이상은 고려할 수 없다. □

신청인이 확장 선거 당시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민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울신문 : 『인천전문대 이번엔 선거 비리』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7일자 14면)

내 용 : 민○○ 학장 작년 금품·향응 의혹

교수에게 5차례 고소·고발 당해

교수 재임용 비리 의혹(서울신문 4월 29일자 보도)을 받고 있는 시립인천전문대 민○○ 학장이 지난해 학장 선거와 관련해 각종 물의를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이 대학 교수들에 따르면 민 학장은 2006년 12월6일 교수회의에서 유모 교수 등 7명에게 표창과 함께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사들인 다섯 돈짜리 황금열쇠를 수여했다.

이에 유 교수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금열쇠를 반납하고, 교내 인터넷 사이트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유 교수는 “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금열쇠를 준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전문대 교수협의회는 민 학장이 학장 선거를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유홍업소 등에서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학교 교직원들은 민 학장이 학사 운영을 투명하게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구성원간에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학장이 취임 이래 교수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5건에 이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인천전문대 선거비리 오보(2008년 5월 6일자)

를 바로잡습니다.

2006년 12월 6일 인천전문대학 전체교수회의에서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교수 7명에게 부상과 행운의 열쇠를 수여한 것은 인천전문대학 포상 규정과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시행된 것임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민○○ 학장이 2007년 4월 학장 선거를 앞두고 교직원들에게 유홍업소 등에서 향응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의 허위이었음을 밝힙니다.

일부 학내 불만 인사들이 민철기 학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고발한 내용을 마치 민철기 학장이 학사행정을 불투명하게 함으로 야기된 것같이 보도한 것 역시 잘못된 것임을 바로 잡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를 빙자하여 민철기 학장이 개인적으로 학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은 물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 □

순천만에서 탐사선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직원채용과정에서 성상납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아침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아침신문 : 『순천만 불·탈법은 ‘상혼’』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7일자 1면)

내 용 : <속보> 본보 1월3일자 1면 TOP기사인 ‘순천만 체험선 불법운행 “말썽”’에 관한 보도와 함께 순천만을 아끼는 관광객들의 제보가 빗발쳤

다. 본보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제보에 따라서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지정된 순천만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취재본부를 가동, 순천만 가꾸기에 동참기로 했다. 세계 5대 연안습지로 지정된 자연환경보고인 순천만이 불·탈법으로 점철되고 있어 비난의 눈쌀을 받고 있다. 특히 순천만 탐사선 업자들의 이권다툼과 폭행사건, 성상납요구 등 업자들의 횡포로 심하게 얼룩지고 있다는 것.

잡음의 시발은 탐사선 이권다툼과 관련기관의 지도단속 미흡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당소 순천만 탐사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거 허가 받은 5대가 전부였다. 순천만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관광객이 넘쳐나자 이들 탐사선은 한 해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수익을 내게 됐다.

탐사선이 큰 수익을 내자 이에 편승 낚시어선 업자인 A모 씨가 낚시어선을 이용 체험탐사선 유사행위를 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탐사선 업자가 반발하자 낚시어선업자도 불법이 아니라며 맞서 영업권을 둘러싸고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객행위는 물론 상호비방을 해 순천만을 찾은 관광객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낚시어선 업자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성상납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 시민의 지탄을 받기

까지 이르러 순천시의 방만한 지도행정도 함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체험선 관광객 안내원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간 K모 씨(여)에게 낚시 체험선 관계자가 “성관계를 가지면 채용은 물론 급여를 올려주겠다”는 말로 해 취업을 그만 두었다는 것. 이어 취업을 포기한 K모씨에게 관계자가 채차 전화를 걸어와 “일손이 달려 그러니 근무를 해달라고 요구”해 근무를 하러 갔으나 이번에도 “성 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순천만 낚시어선, 구직자에게 성 상납 요구한 적 없다.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7일자 1면에 「순천만 불·탈법은 ‘상훈’」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순천만 낚시어선 업자가 직원채용과정에서 성상납을 요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는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요구가 지나치므로 정정보도를 받아들이 수 없다. □

신청인이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0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해 국회와 정부 측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월간조선 : 『관광공사 카지노 운영 자회사 비리에 청와대 구여권 개입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호 141면~147면)

내 용 : 〈서울조정1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1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월간조선을 대표해서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월간조선 5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박○○ 전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님에게 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향후 더욱 충실한 취재를 통해 국내 카지노 산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불편부당한 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활동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저희 월간조선에서 박○○ 전 사장님과 관련해서 보도하는 경우 박 전 사장님의 회사 재직시 활동, 현재 심경 및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 신청인은 위원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를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검찰 수사받는 박○○ 前 GKL 사장 “1원 한 푼 비리 저지른 적 없고 정치권에 개입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호 172면~175면)

내 용 : 月刊朝鮮은 2008년 5월호 ‘盧武鉉(노무현) 정권의 위험한 도박’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 GKL)의 총 비리 규모가 약 1000억 원에 이르고, 당시 청와대와 정부 실세 및 舊(구)여권 인사가 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에 개입됐다”고 보도했다.

月刊朝鮮에 보도가 나간 후 검찰은 GKL 임원에게 로비를 펼친 의혹을 받고 있는 前(전) 프리컴 시스템 대표 이모 씨와 GKL에 보안시스템을 납품한 대우정보시스템 전 영업팀장 홍모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GKL 사무실과 박○○(박○○)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 및 각종 비리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사장도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전 사장은 “투명한 경영을 시행해 온 GKL과 본인은 비리나 정치자금문제에 개입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비리 의혹 수사를 최초 보도한 月刊朝鮮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 전 사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계획서’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2004년 9월 3일, 문화관광부는 鄭東采(정동채) 장관 취임 두 달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발표하고 입찰공고를 낸 지 20일 만에 한무컨벤션 등 세 곳과 가계약을 체결했다. 참여정부는 왜 이렇게 카지노 사업을 서둘렀다고 보는가.

“우리나라는 카지노에 대한 편견이 많지만 ‘세계는 카지노 전쟁 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이 카지노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참여정부가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 것이다. 외국인 카지노 허가 과정은 내가 GKL 사장으로 선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1월 27일까지 카지노를 오픈한다는 조건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인 GKL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허가 조건에 의하면 오픈까지 시간이 불과 121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 박 전 대표는 언론사 출신으로 프로야구단 단장, 국정원 제2차장 등의 경력이 있다. 카지노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 어떻게 GKL의 사장에 선임됐나.

“건설회사 사장이 꼭 건설 엔지니어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카지노 회사도 반드시 카지노 전문가가 사장을 맡으라는 법은 없다고 본다.”

- GKL 임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씨와 홍모 씨가 지난 6월 12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일부 자금이 박 전 사장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그분들 성도,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GKL의 前 전산팀장에게 물어보니 홍 씨는 업무상으로만 만났고, 이 씨는 처음 듣는다고 한다. 구속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후략) □

부도난 택시회사의 실소유자인 신청인이 기사의 임금을 체불하고 난 후에도 재산이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대 수
피신청인 : 부산KBS-1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부산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4월 30일 21:00)

내 용 : ▷앵커 : 부산시의원이 실제 소유주인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체불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질때는 연 20%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OO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중략)

▷기자 : 신일교통의 실제 소유주는 올해 백 억 원대의 공직자 재산을 신고한 최대수 부산시의원입니다.

▷〈인터뷰〉 최대수 시의원 : ‘노조와 대리사장에 게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잘 안된 모양입니다. 저까 지 관련있다고 해서’

▷기자 : 재산이 백 억원이 넘는데도 1억 3천만 원에 불과한 체불임금 문제를 법정소송까지 끌고 간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2)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5월 2일 21:00)

내 용 :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받은 부도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부산 시의원이 해외에 수억원대의 저택을 구입하고 억대의 골프회원권도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대수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백 1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 2006년에 비해 88억원이 늘어나 부산지역 공

직자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해보다 1억 2천만 원 늘어난 백 2억 8천여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자신 소유의 신일교통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도 캐나다에 천 제곱미터 대지에 285 제곱미터 규모의 시가 3억 8천만 원짜리 저택을 구입했고 1억 3천만 원 짜리 골프 회원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2년 사이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정작 최의원이 실소유로 돼 있는 택시회사는 2천여만 원의 가스값을 갚지 못해 부도처리됐고 1억 3천여만 원의 체불임금을 발생시켜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3)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5월 5일 21:00)

내 용 : ▷앵커 : 택시 회사가 부도나고 종업원에 대한 임금까지 체불했는데도 실제 소유주인 시의원의 재산은 오히려 88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최대수 시의원 체불임금 및 재산증식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8년 4월 30일자, 같은 해 5월 2일자 및 같은 달 5일자 9시 뉴스 방송시간에 각 “체불임금 노조승소”, “시의원 회사부도 불구 재산증식”, “부도 불구 재산불려”라는 제목으로 시의원인 신청인 최대수가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회사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대수 시의원은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고, 재산증식문제 역시 회사 부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로인해 최대수 시의원에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1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코엔비아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3.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2008서울중재4 참조)

한겨레 : 『아파트단지 영어마을 대부분 불법』 제하
의 기사 (2008년 4월 24일자 3면 중
합면)
내 용 : 〈2008경기조정1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보도내용

30,000,000원

□

대학 교무과장이었던 신청인이 소속 대학의
재임용 대상 교수에게 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을 상대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
부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소청심사위는 “논문 심사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으므로 청구인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羈束)하므로 학교 측은 즉시 재
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재임용 절차를 계속 미루다 지
난달 논문심사를 벌인 뒤 “평가가 안 좋게 나왔
다”며 또다시 최씨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씨는 “첫번째 재임용 탈락 직전인 지난해 8월
13일 박모 당시 교무과장이 내 연구실로 와 ‘학
장을 찾아가 돈을 아낌없이 줘라. 학장이 지시하
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임용 과정에서 돈거래가 이뤄진다는 의혹
이 있었지만 막상 이같은 요구를 받으니 어이가 없

보도내용

서울신문 : 『인천전문대 재임용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9일자 10면)

내 용 : 여교수 “뇌물요구 거절하자 탈락”

시립인천전문대가 재임용 대상 교수에게 임용과
관련해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교수
재임용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이 학교 중국어학과장이던 최모(34·여) 씨는
지난해 8월 재임용심사에서 논문 한 편이 기준 미
달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되자 민철기 학장

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수협의회 회장은 “1994년 시립화 이후 재임용 탈락은 한 건밖에 없었다.”면서 “최씨가 탈락된 배경에 학장의 개인적 감정이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천전문대 재임용비리 의혹 잘못된 보도 정정

2008년 4월 28일에 보도된 중국어학과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최모(34여) 씨가 당시 박모 교무과장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적인 보도 및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로 인해 잘못된 보도임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노 진 환

조정대리인 정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8년 6월 27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 사회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여교수 “뇌물요구 거절하자 탈락”)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30.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4월 29일자 10면 「인천전문대 재임용 비리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 박모 당시 교무과장은 재임용 대상 교수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7일자 12면)
내 용 : <결정내용 참조> □

신청인 대학 총학생회가 졸업앨범 제작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박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일보 : 『“우리들만 봉이냐” 졸업예정자 반발』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3일자 8면)
내 용 : ‘대학 졸업앨범’ 아직도 수천만 원씩 댔거래
주요 대학이나 총학생회가 건당 평균 1억 5,000만 원대(졸업생 2,500~3,000명 기준)의 졸업앨범 제작

사업을 수익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뒷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졸업앨범 선정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대학은 고려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경희대 등이다. (중략)

한국외대는 일정 금액의 졸업앨범을 무료로 제공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 학교 총학은 지난해 M사와 2년간의 제작 계약을 맺으면서 매년 1,000만 원어치의 앨범을 총학 측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도 체결했다. 개당 6만 원 내외의 앨범을 3,000명 학생이 주문했다면, 업체에는 2,800명에 해당하는 비용만 주고 나머지 200명이 낸 1,000만 원 가량은 총학이 챙기는 식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우리들만 봉이나” 졸업예정자 반발 기사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3일자 사회면에 “우리들만 봉이나, 졸업예정자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졸업앨범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는 졸업 앨범 등 졸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위와 관련된 업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준비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가 졸업앨범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외대 총학생회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13일자 8면 「“우리들만 봉이나” 졸업예정자 반발」 제하의 보도에 대해 외대 총학생회에서는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 졸업앨범 업무는 총학 특별기구인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전담한 것이며 ‘총학 집행국’은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5월 30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일보〉 8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대학졸업앨범’ 아직도 수천만 원씩 뒷거래)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외대 총학생회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30일자 1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신청인의 음성과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손해배상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tN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t v N : 「리얼스토리 묘」 프로그램 (2008년 2월 17일 23:00)

내용 : # 프롤로그

- 바카라 자료그림 6

▷s : 도박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na : 도박에 돈과 가족, 그리고 몸까지 베풀하는 사람들이 있다!

- 노래방 여자

▷sov : 카지노에서 오빠, 앵벌이하는 아줌마들이 5만 원을 가지고 섹스를 한대요 얼마면 되겠니 5만 원 줘

▷노래 부르는 3 na :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는 앵벌이들!

- 다방 여자 & 찜질방

▷sov : 카지노에서 한 10억 잃어서 여기 붙들려서 일하잖아요 내가 놀러올 때는 기사 데리고 B차 끌고 왔으니까 한 20억 잃었어

- 통장내역 2 + 강원랜드 트래킹 2

▷s : 헤어날 수 없는 대박의 꿈, 도박

▷na :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없다는 그곳!

- 앵벌이 여자

▷sov : 도박을 하니까 사람취급을 안해서 집에 못가다 보니까 자꾸 못가게 되는 거예요

- 거리 & 기사 7 + 영화 자료 4

▷s : 도박 때문에 성매매까지 하는 여성들

▷na : 게다가 도박 때문에 성매매까지 하는 여성들까지 생겨났는데! 과연 사실일까? 카지노 안밖에서 벌어지는 여성 앵벌이들의 다양한 인생스토리 리얼스토리가 취재했다.

-타이틀 5

#트래킹 4

▷na : 제작진은 카지노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카지노를 알게 돼 결국 도박중독으로 빠지게 됐는데

- 사례자 만나는 7

- 사례자 int.

▷sov : 밖에서 사업 좀 해보려다가 빚이 생겨서 카지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 가보게 된 겁니다. 부채는 얼마? 그 당시 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잃으셨나요? 처음에는 남들도 판다고 하던데, 저도 천만 원을 따서 그만뒀었어요

▷얘기하는 3 na : 하지만 한 번 딴 기억은 계속해서 그를 붙들었다

- 사례자 int.

▷sov : 처음에는 회사 다녔었고요 영업도 했었고, 나중에는 술집을 차려서 큰 돈을 좀 벌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적을 때는 500만 원 정도 도박 외에는 일반사회에서는 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카지노에 빠져드는 이유?

그 이유가 사회에도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운동이나 취미같은 게 많은데 한 마디로 하면 그것보다 재미있으니까. 한 달에 이삼백 버는 사람이 한 번에 수천만 원, 1억 이상 딸 수도 있는 경험을 하니까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략)

- 남자 썬크

▷sov : 다섯시까지 있어야돼 출석부를 때까지 다섯 시 넘어야 팔 수 있어요 그래 토요일 같은 날은 30만 원이야 박스같은데는. 바깥에는 25만 원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20만 원이고. 토요일이 비싼거야 전에는 뭐하셨어요? 나는 세운상가에서 장사했어 전자 크게해서 내가 100억 번 사람이야 그런데 거지되서 있는 거야 지금

▷로비 6 na : 제작진은 함께 들어가보려고 했지만 입구에서의 엄격한 검열로 더 이상의 취재는 불가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6월 10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한다.

• 내 용 : 지난 2월 17일자 <충격포착! 카지노 여성 앵벌이의 성매매> 보도에서 동의 없이 이해성님을 촬영·보도하여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에 빠져 성매매까지 이르게 된 여성이 늘고 있는 현상을 공론화하여 우리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

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문제를 성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후 본인임이 특정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제작진의 미숙하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이해성님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를 통해 공익적인 사안의 보도에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며,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

김천의 한센인 거주지역인 삼애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일보의 기사가 허위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대표이사 이 ○ ○)

2 유 ○ ○

피신청인 : 김천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김천신문 : 『긴급진단 - 삼애원 도시개발사업 ‘이상 없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0일자 8면)

내 용 : 김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삼애원 개발이 한국일보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본지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한 대상건설팅(주)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대응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표명과 삼애원 주민들의 불만과 궁금증 등을 취재했다. (중략)

마른하늘에 날벼락 ‘한국일보 보도’

한국일보 3월 26일자에 ‘김천 삼애원 개발 사업 잡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고 부제로 ‘시행사 거역 대포통장으로 투자자 현혹’이라는 부제까지 붙었다. 또 기사중에는 ‘파문확대-시 사업투자 잠정중단 권고’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 보도로 인해 삼애원 주민들은 시행사인 (주)대상건설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개발할 자금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대상건설팅은 한국일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한국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주)대상건설팅은 지난 4월 2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대상건설팅에서는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잘못된 정보를 한국일보가 기사로 게재해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대상건설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상건설팅 관계자는 “한국일보의 기사를 작성한 유○○ 기사를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 기자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제보만 믿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마른하늘에 날벼락 ‘한국일보 보도’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우리 신문은 지난 4월 11일 본지 1면과 인터넷사이트에 김천 ‘삼애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관계자의 설명만을 믿고, 한국일보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것처럼 게재했습니다.

또 우리 신문은 한국일보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기사를 게재해 마치 한국일보의 기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기사화 했으나,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지난해 12월부터 김천 삼애원 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에 대해 많은 불법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행사인 대상컨설팅(주)에서 불법투자유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임직원의 증언과 사실을 근거로 보도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대제목 : 삼애원 개발 관련 한국일보 측 반론보도
- 부제목 : 한국일보 “삼애원 개발사업 관련 한국일보 보도 허위 아니다” 반박
- 본 문 : 본보는 지난 4월 10일자 8면 『긴급진단 - 삼애원 도시개발사업 ‘이상 없다’』 제하의 기사

에서 “삼애원 개발사업 시행사가 거액의 대포통장으로 투자자를 유혹했다”고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지난 3월 26일자)가 허위라는 대상컨설팅 측의 반박 기자회견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측은 “대상컨설팅 측이 대포통장으로 투자자를 유혹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사업추진을 함께 해오다 그만둔 임직원들의 증언을 포함한 다양한 취재자료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전혀 허위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 측은 “현재 경찰이 대상컨설팅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김천신문 8면에 2008년 5월 30일까지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김천 삼애원 신시가지개발 공사구역 전경)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김천신문 : 『삼애원 개발 관련 한국일보 측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9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권조사하지 않는 등 감시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백 응 호)

피신청인 : 아시아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 (1) 『‘경제검찰’ 공정위 직무유기』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9일자 1면)

내 용 : 삼성물산 ‘컨’ 담합의혹 인정불구 조

사회피

공정법상 담합 행위 혐의엔 직권조사 가능

이른바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관행이란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내세운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8일 공정위의 유희상 카르텔정책국장은 최근 제기된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 의혹 <본보 5월 5·6일자 보도>에 대해 “건설업체들의 담합 행위 의혹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건설업계의 관행화된 담합 행위를 공정위가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합은 구두 합의나 이에 관한 관련 문서가 있어야 규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포착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건설업체들의 이러한 담합 행위 혐의만 있더라도,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즉, 공정위가 사건을 인지하면 직권 조사→위원회 상정→위원회 심의의결·시정조치 등의 행정적,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정조치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이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번 재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아직 직권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공정위가 본연의 업무를 유야무야 방기(放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략)

(2) 『‘알고도 모른척’ 감시역할 손 놓나』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9일자 3면)

내 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에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시장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친(親)기업’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 포털 논란에도 솜방망이 과징금

공정위는 8일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NHN에 과징금 2억 원은 미미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네이버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소규모 업체들은 네이버가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포털의 콘텐츠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논란이 큰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너무 적게 부과돼 솜방망이 대응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략)

(3) 『이마트에 고개숙인 ‘경제검찰’』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3일자 7면)

내 용 :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기력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국내 할인점 시장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뽐내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앞에서 한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아예 ‘종이호랑이’로 전략한 꼴이다. (후략)

(4) 『대기업 조사에 ‘손놓은 공정위’』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4일자 1면)

내 용 :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결과물 없이 변죽만 무소불위의 ‘사장의 감시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조사를 질질 끌면서, 결과는 내놓지 않고 변죽만 울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김학현 국장은 과거 의혹이 있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와 관련해 “본인 소관이 아니라, 같은 국(局)내의 시장분석 정책관 서석희 국장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5월 9일자 1면, 3면, 5월 13일자 7면 5, 14일자 1면 공정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5월 9일자 1면 “‘경제검찰 공정위’ 직무유기”, 3면 “‘알고도 모른척’ 감시역할 손 놓나”, “사업자간 합의... 소비자 피해 키워”, 5월 13일자 7면 “이마트에 고개숙인 ‘경제검찰’” 및 5월 14일자 1면 “대기업 조사에 ‘손놓은 공정위’”라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5월 9일자 1면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있고 2008년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건설업체 담합 행위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3면에서 카르텔정책국장의 담합의혹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담합조사의 특성상 조사개시 여부, 조사시기 등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담합행위를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위의 눈감아주기가 있었기에 설탕 등의 장기 간 담합이 가능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문 가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5월 13일자 7면 이마트 불공정 거래여부에 대한 조사와 5월 14일자 1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열

사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는 2008년 5월 현재까 지 진행중인 사안이고 법 위반 여부는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결정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대기업 조사에 손 놓았다거나, 조사결과물 없이 변 죽만 올린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광우병 걸린 소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인터뷰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6

청 구 명 : 정정보구

신 청 인 : 심 재 철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8년 5월 13일 23:00)

내 용 : [청문회 장면]

정부와 여당은 심지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까 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 니까.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 안전합니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됩 니까.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 네 생이나 구이나 그건 안전하다고 봐야겠습니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 심스테이크를 만들어먹어도 절대 안전합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 심스테이크를 만들어먹어도 절대 안전합니다 (화 면 바뀌며 기자회견 장면) 절대라는 말을 붙이기 곤란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몇몇 신문들 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괴담, 선동으로 몰아부쳤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심재철 발언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14일자 방송에서 심 재철의원이 발언한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 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절대 안전합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심재철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나 머지 부분은 안전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5월 14일자 <PD수첩> 보 도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심재철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 다”고 발언한 것처럼 방송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 과 심재철 의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일지라도 특 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은 안전 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 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5월 27일 23시에 방송하는 MBC-TV <PD수첩> 프로그램 가장 첫 부분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 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을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8년 5월 27일 23: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인제군수가 7급 공무원에게 전직군수의 개인 비서노릇을 하도록 지시하여 비난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인제군 (군수 박 삼 래)
피신청인 : 전국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5.
처리결과 : 각 취하

비서 노릇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
임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또한 P씨가 근무시간에 운전기사로 공무를 미
루고 자리를 비우기 일쑤다라고 한 내용 역시 사
실 확인 결과 업무시간에 수행한 바가 없는 것으
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전국매일 : 『지자체장 진행 ‘비난 고조’』 제하의 기
사 (2008년 5월 13일자 14면)

내 용 : 현직 군수가 보은 차원에서 전직 군수에
게 공무원을 비서(운전기사)로 제공해 공사를 구
별못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박삼래 군수가 민선4기 인제군수
로 부임하면서 자신을 당선케한 민선1·2대 이승
호 전 군수를 위해 자치행정과 P씨(7급)를 행사때
마다 이씨의 비서(운전기사) 노릇을 하도록 지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P씨는 근무
시간에 이씨가 가야하는 각종 행사장은 물론 결혼
식장이나 상가에도 운전기사로서 공무를 미루고
자리를 비우기 일쑤다. (후략)

전국매일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
일자 14면)

내 용 : 본보는 5월 13일자 14면에서 “지자체장
전행 ‘비난 고조’ 제목으로 박삼래 군수가 민선4기
인제군수로 부임하면서 자신을 당선케한 민선1·2
대 이승호 전군수를 위해 P씨에게 비서노릇을 하
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박삼래 군수는 P씨에게
비서 노릇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
임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또한 P씨가 근무시간에 운전기사로 공무를 미루
고 자리를 비우기 일쑤다라고 한 내용 역시 사실
확인 결과 공적으로 수행한 바 없으며 공휴원과
퇴근후 개인적인 친분관계일 뿐이었으며 공무를
미뤘다고 볼 수 없음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공무를 망나니의 칼춤에 비유해
 지나치게 폄하됐음을 사과하고 본 신문의 뜻이 아
님을 밝힙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5월 13일자 14면에서 “지자체장
전행 ‘비난 고조’” 제목으로 박삼래 군수가 민선4
기 인제군수로 부임하면서 자신을 당선케한 민선
1·2대 이승호 전군수를 위해 P씨에게 비서노릇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박삼래 군수는 P씨에게

“노숙인이 정치해야 국민이 만족하겠나”는 취지의 네티즌 의견을
마치 신청인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여 옥
피신청인 : 뉴스엔뉴스
종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집 수 일 : 2008. 5. 1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스엔뉴스 : 『전여옥 “한국부자 95%, 절제로 돈 모았다”』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3일자 정치면)

내 용 :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부동산투기 축재 공직자 등 세칭 ‘강부자 내각’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있는자에 대한 없는자의 시기심으로 몰아가는 글을 올려 논란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또 총선때 노숙인 비하 발언 파문에 이어 또다시 “노숙인이 정치하면 국민이 만족하겠냐”는 폄하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여옥 “노숙인들이 정치하면 국민이 만족할까요?”

전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장 바람직한 정치인 상은?’이란 글을 통해 인터넷에서 한 네티즌이 쓴 ‘가장 바람직한 정치인상은?’이란 글을 인상적으로 봤다며 “일단은 세속적으로 실패해서 가난한 사람.(부자는 싫어 하니까) 그리고 공부 안해서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를 못다니 사람.(똑똑한 사람 싫어 하니까) 그리고 집안 대대로 궁색하게 살아서 온가문이 기울어 가는 사람(집안 배경 좋고 부자인 집안 싫어 하니까)”이라는 네티즌의 글 내용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러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노숙인뿐이네요. 물론 노숙인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스스로 관리에 실패해서 파산하고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친인척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로 나왔은 노숙인 뿐”이라며 “정말루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할까요?”라고 반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8년 5월 13일 뉴스엔뉴스) 전여옥 노숙인 발언은 사실과 달라

• 본 신문은 지난 5월 13일자 정치면에 전여옥 “한국부자 95%, 절제로 돈 모았다” “노숙인이 정치하면 만족하겠냐” “남 욕하며 성공하려 기 썬”라는 제목으로 전여옥 의원이 직접 노숙인에 대하여 발언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여옥의원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었으며 네티즌의 글을 인용한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13일자 정치면 「전여옥 “한국부자 95%, 절제로 돈 모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전여옥 의원이 직접 노숙인에 대하여 발언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여옥의원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네티즌의 글을 인용한 것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뉴스엔뉴스』 사이트에 2008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 본문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 보도의 부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메인 화면의 우측 중앙에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박스기사로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엔뉴스 : 『전여옥 노숙인 발언은 사실과 달라 네티즌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아』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6일자 정치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문화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국정홍보회의에서 쇠고기 파문보도에 대한 언론들의 논조와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1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쇠고기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
에 광고 줄 필요있다”』 제하의 기사 (2008
년 5월 17일자 2면)

내 용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문
에 대한 언론의 논조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조직
적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히
경향신문 등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
온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 광고 배
정 등에서 차별적 대응을 검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림수산물부가 MBC PD수첩 제작진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하는 등의 법적 대응과 맞물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비판 언론 탄압 논란을 확산
시킬 전망이다.

복수의 정부 부처 대변인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아침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부처 대변인·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
정홍보회의에서 쇠고기 파문 보도에 대한 언론들
의 논조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
에는 청와대에서 국내언론을 총괄하는 담당비서관
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당시 회의에서 신재민 제2차관이 “요즘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이 의외로 세계 쓰더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원래 논조가 그러니

까...”라면서 쇠고기 파문 관련 언론사별 보도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또 “국가적 사안에 대해 협조가 안되
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
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정부 광고 편성과 협
찬 등 업무 협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협찬과 관련,
당초 예정돼 있던 한겨레신문사와 문화부의 공동
사진전이 그런 맥락에서 뒤늦게 정부 협찬이 취소
된 사례도 시범 케이스로 소개되기도 했다”면서
당시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광우병 보도와 관련, “전통
언론은 사안을 잘 보도해주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
에 대해 좀 무관심했던 것 같다. 인터넷에도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인터넷 보도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한 부처 대변인이 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7일자 제2면 “쇠고기
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
있다”라는 제목으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관 주재 회의(5.9)에서 제2차관을 비롯한 국무총리
실장 등이 쇠고기 파문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온
일부 언론에 대해서 차별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지
시했다고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한
편 본지 5월 19일자 사설에서는 이를 ‘비판언론에
대한 광고 탄압 사태’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동기사 등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추가 보도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부처대변인회의에는 국무총리 실장(장관급)이 참석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한 참석자의 말을 인용한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신재민 제2차관은 동 회의에서 특정 언론 논조를 비판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한겨레신문과 문화부 공동 사진전은 경향신문의 보도와 달리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 광고 및 협찬문제, 기사실 문제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지침이나 가이드는 없으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지시나, 의견 제시도 한 바가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조정대리인 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고 영 제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1일 이내로 별지 기재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정부 홍보대책...)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6.

〈별 지〉 보도문

- 제 목 :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 지의 지난 5월 17일자 2면 “쇠고기과 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 있나” 제하의 기사 중 한겨레신문사의 공동 사진전에 대한 정부협찬이 취소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보도 당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또 이 보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은 5월 9일 ‘부처대변인회의’에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차별적 대응을 검토하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경향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5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내용 참조〉 □

전문대 학장인 신청인이 학교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민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울신문 : 『인천전문대학장 금품수수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3일자 14면)
내 용 : 교수 재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 ○ ○ 시립 인천전문대 학장이 인천 도화지구 개발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김모(37) 교수는 지난 2006년 10월 민 학장이 인하대 후문 앞으로 자신을 불러내 “SK건설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위커힐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이 담긴 봉투를 주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수는 “봉투 안에는 별도로 도화지구 사업과 관련된 인사말이 담긴, SK건설 명의의 서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숙박권(티켓번호 G003893)은 공연·식사·마사지 등 부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104만 원 짜리다. 위커힐호텔 측은 “해당 티켓은 2006년 8월 SK건설이 대량 구입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학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

서 “SK건설로부터 호텔 상품권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고, (SK건설이) 그냥 줬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년 5월 13일 서울신문 지방자치면에 보도된 인천전문대학장 금품수수 라는 제목하에 보도된 기사가 전후 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에게 마치 인천전문대학 민철기 학장이 도화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성 비리금품을 받은 것처럼 보도된 것이 잘못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본인의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춘천 더샵아파트 도로용 땅을 춘천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춘천시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1.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춘천시보 : 『춘천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없나』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3일자 3면)

내 용 : 한창 입주중인 후평동 춘천더샵 아파트가 요즘 수선스럽다. 이사로 바뀐 탓도 있겠지만 준공처리(인가)가 되지 않은 터라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없지 않다. 자기 소유 아파트임을 증명할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더샵 아파트 준공 인가가 나지 않은 이유

등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춘천시가 아파트 준공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 감사원이 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시가 준공처리를 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말 舊 향군회관 방향 출입구 (오른쪽 도면 참조) 방향 중 아파트제건축조합 소

유의 땅을 시에 무상으로 귀속(기부채납)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창 입주중인데 이제 와서 입주민의 재산을 시에 내놓으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강원도가 결정한 아파트 정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기 때문이다.

■ 아파트 출입구의 조합 땅 무상귀속 논란

아파트를 지을 땐 주변 도로를 닦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켜야 한다. 도로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이다.

기부채납해야 할 아파트 주변 도로의 폭과 길이는 강원도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 2004년 강원도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면서 시 소유 땅과 조합 소유의 땅을 합해 도로(오른쪽 위 도면 참조)로 사용하라고 결정했다. 이때 조합 소유의 땅을 무상귀속시키라는 내용은 없었다. 강원도의 의견에서 감사원이 조합 소유의 땅을 시에 무상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 경실련 “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 땅 내놔라”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

경실련은 아파트 출입구 도로는 법적으로 시에 귀속시켜야 하는데 더샵 아파트의 舊 향균회관 방향 출입구 일부 땅을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하상준 경실련 사무처장은 “조합 땅을 시에 도로로 귀속시키면 아파트 높이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수익이 줄어들 것이며 이것이 조합 땅을 무상 귀속시키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합 땅을 시에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파트조합 “조합 땅 내놓으면 입주민 재산손해”

그러나 조합 측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조합장은 “당초 시 소유의 땅만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고 조합 땅은 담장을 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쓰려고 했으나 강원도의 권유로 조합 땅을 시민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로 활용하게 했다”고 설명하며 “이제와서 입주가 시작된 지금 시에 내놓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경실련이 감사를 제기한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조합장은 “경실련의 주장은 아파트 부근에 사는 이 아무개 씨가 자신의 땅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수년 간 주장한 내용과 같다”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시보가 지난 2008년 5월 13일자 3면에 『춘천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 없다』 제목으로 춘천더샵 아파트의 준공승인 지연에 관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 중 이조합장의 “경실련 주장은 아파트 부근에 사는 이아무개씨가 자신의 땅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수년간 주장한 내용과 같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합땅을 내놓을 수 없는데다~”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모씨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춘천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아파트 부지 중 도로의 편입, 신설된 부지의 기부채납을 2006년 6월부터 춘천시청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춘천시(춘천시보)

시 장 이 광 준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8년 6월 25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춘천시보」 3면 좌측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30.

<별 지>

가. 제 목 : 「춘천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 없다」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보는 지난 2008년 5월 13일자 3면의 「춘천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 없다」 제하의 보도에서 춘천더샵아파트 재개발조합장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이아무개씨가 자신의 땅을 높은 가격에 팔려고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아무개씨는 국가기관에 감사를 요청한 바 없고, 2006년 6월부터 춘천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춘천시청에 기부채납을 건의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춘천시보 : 『「춘천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 없다」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6일자 3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경남 사천시에 추진되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의 사업추진 중단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천기업도시(주) (대표이사 남 ○ ○)
피신청인 : 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부산일보 : 『사천 레저형 도시 무산 위기』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6일자 13면)

내 용 : 시행사 사실상 추진 중단 ... 축동면 1천 320만㎡ 거래허가 해제불가피
3년 규제 받아온 주민 반발

경남 사천시 축동면 일대에 추진되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사인 (주)사천관광레저개발이 사업 추진의사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3년간 시한으로 축동면 일대 1천 320㎡에 대해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2005년 2월 사천시와 (주)사천관광레저개발은 사업비 2천 400억 원을 투입, 축동면 탑리·사다리 일대 660만㎡에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뒤 정부에 기업도시 시범 사업을 신청했지만 대상지역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듬해인 2006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2조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탑리·사다리·반용리 일대 1천51만여㎡에 첨단 산업, 주거복합단지 등 유·유희시설, 스포츠레저단지 등을 조성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사천시도 사업대상 부지 일대 1천320만㎡

를 올해 6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다른 개발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했다.

그런데 (주)사천관광레저개발은 지난해 관련 신청서류를 시에 제출했지만 사천시가 지난 1월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 첨부을 요구하며 반려하자 이후 아무런 답변이나 서류 보완을 하지 않아 현재 행정절차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시는 사업절차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시한이 불과 한달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야 하지만 남은 기간내에 사업신청 서류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천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면서 지난 3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천 레저형 도시 무산위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부산일보는 지난 5월 6일 13면에 『사천 레저형 도시 무산위기 시행사 사실상 추진중단...』이라는 제목으로 사천시 축동면 일대에 추진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으며, 사업시행사가 사업추진 의사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업시행사인 사천기업도시(주)는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약 2년에 걸쳐 준비하였고, 이를 지난 2007년 12월 27일 사천시에 접수하였으며 사천시는 이를 검토,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 등 보완서류를 첨부하라며 반려한 바 있으나 사업시행사는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지난 2008년 2월

사천시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11개 도시계획 전문설계사, PM·CM 사업 추진 전담 5개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컨소시엄 3개사와 이에 따른 개발·용역에 투자된 비용만도 60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1단계 사업비에 필요한 총 사업비 5,400억 원을 비롯한 2단계 사업비 1조 1천억에 대한 사업비 재원조달계약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어 사천시의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협약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체결되는 대로, 승인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인 사천기업도시(주)는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와 해외투자사, 그리고 국내금융사로 개발 컨소시엄을 추가로 구성하여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 이에 대해 시행사(사천기업도시(주))는 지난 2005년 4월 사천시와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 체결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방지 노력에 기초한 내용으로, 2010년 합의된 기간까지는 사천시에서 부동산 투기방지 및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필요·협조사항으로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마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천시는 오는 6월 6일로 되어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협약 당사자인 사천시가 합의 내용의 책임을 회피코저하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사안임을 시행사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로 인한 언론사에 대한 책임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

경찰관인 신청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신을 시도하다 베란다에 매달렸던 사람을 주거침입미수혐의로 입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인일보 : 『민중의 지팡이에 피멍드는 시민』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2일자 18면)

내 용 : 최근 경찰서 지구대들이 훈방이나 불기소가 뻔한 단순사건 관련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사례가 빈발, 경찰 내부에서조차 '실적 때문에 전과자만 양산시키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빌라에서 3층에 살던 임모(31) 씨가 투신을 하려고 베란다에 올라섰다 두려움을 느끼고 매달려 있던 중 이를 발견한 아랫집 주민이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놀라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은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하려했다는 임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미수혐의로 임씨를 불구속입건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찰 지구대단순사건 무조건 입건처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신문은 지난 2008년 5월 12일자 사회

2면에 『민중의 지팡이에 피멍드는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정확한 사실확인 절차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이를 기사화하여 마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형사입건 하여 처벌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8. 5. 5. 23:00경 A빌라 3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아래층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 마침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이를 발견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놀라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의 주거평온의 자유를 해하여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와 진술 및 정황으로 형법상의 주거침입미수에 따라 적법하게 의율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경찰관인 신청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신을 시도하다 베란다에 매달렸던 사람을 주거침입미수혐의로 입건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종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1.

처리결과 : 취 하

경인일보 : 『민중의 지팡이에 피멍드는 시민』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2일자 18면)

내 용 : <2008경기조정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경기조정1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경찰관인 신청인이 오토바이 헬멧 착용 단속을 벌이던 중 시민에게 주먹을 휘둘러 온몸에 상처를 입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박 ○ ○

2. 이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종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1.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오토바이 헬멧 착용여부를 두고 단속을 벌이던 경찰과 시민이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

9일 오후 3시께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파정지구대 P경위(56)와 L순경(33)은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 영생지하차도 앞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던 A씨(33)에게 헬멧 착용을 지시.

그러나 A씨가 이를 듣지 않고 도주했고 경찰은 곧바로 뒤쫓아가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30여분간 실랑이.

이 과정에서 단속에 불응하던 A씨와 경찰이 말다툼 끝에 주먹 등을 휘둘러 A씨는 온 몸에 상처를 입었고, P경위는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어.

보도내용

경기일보 : 『오토바이 헬멧단속... 경찰·시민 난투극?』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0일자 5면)

한편 A씨와 경찰은 폭행 여부를 두고 현재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찰, 시민 난투극 사실과 달라(또는 경찰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0일자 사회면에 “오토바이 헬멧단속, 경찰·시민 난투극?”이라는 제목으로 경찰관이 단속에 불응하던 시민과 난투

극을 벌였으며 경찰관이 주먹을 휘둘러 시민이 온 몸에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찰관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정당하게 단속하던중 상대방이 도주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을뿐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박○○ 경위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는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경남 사천시에 추진되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의 사업추진 중단으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5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천기업도시(주) (대표이사 남 ○ ○)
피신청인 : 경남신문
종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1.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경남신문 : 『사천관광레저개발 사업 무산될 듯』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일자 8면)

내 용 : 사천 탑리와 사다리, 반용리 일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정부에 신청할 서류를 아직 시에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이 사업을 위해 3년 전 이 일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조치가 해제될 전망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전망이다.

2일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개발의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는 농촌을 기업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께 (주)사천관광레저개발과 기업도시 시범사업 참여투자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주)사천관광레저개발은 같은 해 4월 사업비 2,400억 원을 들여 축동면 탑리와 사다리 일대 660만㎡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이듬해인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2조 9억 원을 들여 탑리와 사다리, 반용리 일대 1,051만 9,885㎡ 부지에 주거시설과 학교시설, 쇼핑파크, 호텔 등 상업업무용지, 첨단복합단지과 유흥시설, 스포츠레저단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시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5년 6월 7일부터 올해 6월 6일까지 3년 기한으로 이 일대 1,320만㎡의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를 규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못하도록 했다.

이후 (주)사천관광레저개발은 지난해 12월께 기업도시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를 첨부하라며 올 1월 반려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는 6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가피해지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도 사실상 무산될 상황이다.

주민들은 “기업도시가 안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다른 사업자들이 땅을 매입해 공장을 건립하는 등 개발이 이뤄져야 된다”며 “3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기업도시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바람에 반려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개발기대심리로 재산권행사를 못해도 참아왔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천관광레저개발사업 무산될 듯”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경남신문은 지난 5월 2일자 8면에 『사천관광레저개발사업 무산될 듯』이라는 제목으로 사천시 탐리, 사다리, 반용리 일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서류를 사천시에 제출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업시행사인 사천기업도시(주)는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약 2년에 걸쳐 준비하였고, 이를 지난 2007년 12월 27일 사천시에 접수하였으며 사천시는 이를 검토,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 등 보완서류를 첨부하라며 반려했던 바 있으나 사업시행사는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지난 2008년 2월 사천시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11개 도시계획 전문설계사, PM·CM 사업추진 전담 5개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컨소시엄 3개사와 이에 따른 개발·용역에 투자된 비용만도 60억 원이 소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비에 필요한 총 사업비 5,400억 원을 비롯한 2단계 사업비 1조 1천 억에 대한 사업비 재원조달계약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어 사천시의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협약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체결되는 대로, 승인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혀드립니다.

시행사인 사천기업도시(주)는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와 해외투자사, 그리고 국내금융사로 개발 컨소시엄을 추가로 구성하여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사천기업도시(주))는 지난

2005년 4월 사천시와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방지 노력에 기초한 내용으로, 2010년 합의된 기간까지는 사천시에서 부동산 투기방지 및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필요·협조사항으로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한을 연장해 주어야 마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천시는 오는 6월 6일로 되어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불가피 하다는 것은 협약 당사자인 사천시가 합의 내용의 책임을 회피코저하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사안임을 시행사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로 인한 언론사에 대한 책임도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사천 관광레저개발사업 무산될 듯”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1. : 경남신문은 지난 5월 2일자 8면에(기사 내용)

지난 2005년 2월 (주)사천관광레저개발과 시범사업 참여 투자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고 하였다.

- 이에 대해 사천시와 시행사는 지난 2005년 2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참여투자 합의서(MOU)를 체결하고 2005년 4월 13일 사천시와 시행사((주)아이비엔관광레저개발/ 현, 사천기업도시(주))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MOA)를 2005년~2010년까지 6년간 개발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지난 2005년 시범사업에서 지금까지 그동안 정부의 차별화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개발키위해 해외설계사와 국내 11개 전문도시설계사로 설계 및 PM, CM팀을 구성, 총 320만평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서를 작성·완료한 상태에서 지난 2007년 12월 27일 사천시 기업도시 개발사업 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 내 용2. : 경남신문은 지난 5월 2일자 8면에(기사 내용)

그러나 사업자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오는 6월 6일까지 토지허가구역 해제가 불가피해지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도 사실상

무산될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시행사(사천기업도시(주))는 지난 2005년 4월 사천시와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 체결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방지 노력에 기초한 내용으로, 2010년 합의된 기간까지는 사천시에서 부동산 투기방지 및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필요·협조사항으로 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마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천시는 오는 6월 6일로 되어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불가피 하다는 것은 협약 당사자인 사천시가 합의 내용의 책임을 회피코저하는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5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사천기업도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 ○

조정대리인 민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남신문사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5

대표이사 이 순 복

조정대리인 허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남신문> 8면 좌측 상단에 별지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부제목은 각각 이 건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 및 부제목과 같은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에게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별 지>

• 제 목 : 사천관광레저개발사업 계속 추진

• 부제목 : 시행사측 “사업 추진 의사 밝혀”

• 내 용 : 속보=사천기업도시(주)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과 관련, 지속적인 추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천시가 오는 6월 6일로 돼 있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이 만료되면 추가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시행사인 사천기업도시(주)는 지난 2005년 4월 사천시와 체결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의 부동산투기방지 노력에 관한 조항에 따라 2010년 합의된 기간까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기업도시개발에 따른 필요 협조사항으로 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구역 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천기업도시(주)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의 11개 도시계획전문설계사, PM·CM 사업추진 전담 5개사, 태양광 발전사업의 컨소시엄 3개사와 이에 따른 개발·용역 비용만도 60억 원이 소요됐고, 현재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5,400억 원을 비롯한 2단계 사업비 1조1천억 원에 대한 사업비 채원 조달계약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사천시의구역지정에 관한 협약안이 체결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천기업도시(주)는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와 해외투자사 그리고 국내 금융사로 개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천기업도시(주)는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약 2년에 걸쳐 준비하여 사천시에 제출했으나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재무제표를 첨부하라며 반려해 이에 대한 보완서류를 2008년 2월 사천시에 제출했으나 지난 3월 회송되었고,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결정에 따른 보도문

경남신문 : 『사천관광레저개발사업 계속 추진 시행사 측, 사업 추진 의사 밝혀』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0일자 8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신청인이 정원을 초과하여 어린이들을 차량에 탑승시키고 안전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PR보도)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춘천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춘천MBC-TV : 「뉴스데스크 강원」 프로그램 (2008년
5월 7일 21:30)

내 용 : 서너살된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위험천만하다고 합니다. 직접 따라가봤더니, 안전벨트도 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을 태운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12인승 차에 어린이가 몇 명 탔는지 세어봤습니다.

[미속] 1, 2, 3...15! 운전자와 인솔 교사까지 포함하면 무려 5명이나 정원을 초과한 것입니다.

[3D] 3명이 앉아야 할 자리에 네 다섯 명이 앉아 보니, 안전벨트를 맬 공간조차 없어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다닙니다.

▶SYN◀ 어린이집 원생

“안전벨트 한 번도 안 땀어요”

▶SYN◀ 어린이집 원장

“안전벨트매면 아이들이 불편해할까봐..”

또다른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CG) 어린이 보호 차량임을 알리는 지붕 위 표시등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 따로 설치해야 할 승강구 보조발판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노랗게 칠해져있어야 할 어린이 보호차량이 회색빛을 띠고 있는가 하면, 차량 옆면에 이벤트 회사라는 문구가 적힌 차도 있습니다. 모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지입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보

상 책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INT◀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S/U) “하지만, 표시등을 달지 않아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 건 고작 범칙금 3만 원을 내는 게 다입니다.”

최근 3년 간 통학버스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모두 56명, 다친 어린이는 천 7백 명에 이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5월 7일 오후 9시 35분 춘천MBC-TV의 「뉴스데스크 강원」에서 “12인승에 17명”이란 제목으로 위험천만한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대하여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보도된 어린이집 차량은 12인승이 아니라 15인승이며, 또 다른 한대는 35인승 어린이 전용차량으로 보도된 어린이집 차량은 안전벨트를 맬 공간조차 없어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 차량이 아닌 어린이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안전벨트를 맬 수 있고 보조발판이 설치되어있는 안전한 어린이 전용버스였으므로 방송된 내용과는 전혀 사실과 크게 다르므로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7일 뉴스데스크 강원 「12인승에 17명」 제하의 보도에서 소양로의 한 어린이집이 12인승 차량에 어린이를 포함하여 17명을 태우고 위험하게 운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보도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12인승이 아니라 성인 기준 15인승 차량이며, 35인승 차량 역시 개별 안전벨트가 설치된 어린이 전용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사용중인 차량은 임대 차량이 아니라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경찰서에 등록된 어린이 전용버스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6월 13일까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18시 30분 뉴스 프로그램의 말미에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화면에는 신청인이 보유한 2대의 어린이 전용버스의 내·외부 구조 및 보조발판과 경찰에 등록된 차량등록증을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각종 행사 및 사업과 관련하여 취재·보도하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에 협조 및 협의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춘천MBC-TV : (1) 「630뉴스(춘천)」 프로그램 (2008년 6월 10일 18: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2) 「뉴스데스크 강원」 프로그램 (2008년 6월 25일 21:30)

내 용 : 어린이 건강과 사고력을 높일수 있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도 여약사회는 춘천시 소양로 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영상과 퀴즈 등을 통해 아토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과 치료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에서는 과학적 이론과 수학적 원리에 기초해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법 잼스와 리듬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다양한 신체발달을 돕는 유리드믹스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

신청인이 춘천시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안 ○ ○)

피신청인 : 춘천시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춘천시보 : 『춘천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없나』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3일자 3면)

내 용 : <2008강원조정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춘천 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없나』에 대한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3일자 3면에 “춘천 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 없나”란 제목으로 “시는 감사원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감사원 『재심의 청구』가 각하되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본 신문은 “강원도가 결정한 아파트 정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짓는데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춘천시 후평동 재건축 사업 승인 관련 감사청구』에 의하면 ‘위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춘천시에 대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이 부정적’ 하였다고 시정 조치 하였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지정고시 업무 불철저’라고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청에 ‘관련 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엄중한 관계로 인사조치 시 반영 할 것을 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청 관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19채, 분양가 계 24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라는 것이 처분서의 주요 골자라고 합니다.

본 신문은 이○○ 조합장의 말을 인용하여 “강원도의 권유로 조합 땅을 시민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로 활용하게 했다.”라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감사원 처분서에의하면 ‘재건축 조합측은 문제가 된 7곳의 공공도로 중 4곳은 무상귀속 처리하고 3곳은 자신이 소유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춘천시 및 강원도 간 협의결과 춘천시가 사용 관리권만 가지는 것으로 결정하여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본 신문은 이○○ 조합장의 말을 인용하여 ‘춘천경실련의 감사청구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하였고, 내용은 “부근에 사는 이아무개 씨가 주장한 내용과 같다”라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포스코 재건축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위법행정, 특혜의혹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본 주장은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춘천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 없

나」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5월 13일 「춘천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 없나」 제하의 기사에서 춘천시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가 감사원에 제기한 재심의 청구는 현재 각하되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춘천경실련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의 내용을 통해 춘천시의 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법률적 미비사항이 있었고, 아파트 재개발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가 춘천시에 무상귀속되지 않은 것이 적절하지 못했으며, 춘천시 담당 공무원의 비위내용을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춘천경실련은 재건축 과정의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을 뿐, 입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6월 25일자 신청인이 발행하는 춘천시보 3면 좌측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춘천시보 : 『춘천더샵 아파트 불안한 입주, 해법 없나』
기사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6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약물을 과다 투여하여 숨지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회복지법인 민재경주푸른마을

(원장 문○○)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PD수첩」 프로그램 (2008년 5월 6일 23:40)

내 용 : 지난 2월, 경주의 한 생활시설에 있던 한 아이가 병원에서 죽었다. 사망의 원인은 ‘호흡 곤란’. 사망진단서에 적힌 이 말만이 아이의 죽음을 말 해줄 뿐, 왜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폐 1급의 자식을 생활시설에 보내야 했던 부모가 병원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원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빨리 죽는다”는 것이 전부였다.

“원래 이런 아이가 빨리 죽는다” - 자폐아동의 죽음 자폐 1급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비교적 건강했다는 재호.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시설에 보내고 난 뒤부터 눈에 띄게 건강이 나빠졌다고 한다. 작년 11월, 병원에 입원 할 당시 재호는 14살 남자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른 28kg 이었다. 재호의 허리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던 것도 이때 쯤이었다. 이 시설의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재호의 상태가 불과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재호의 허리가 심하게 뒤로 꺾이고 고통스러워하자 학교 선생님들은 재호를 병원에 보내서 제대로 치료를 해 볼 것을 요구했지만 시설에서 ‘괜찮다’란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재호의 허리는 더욱 심하게 꺾여 갔고, 자해증세도 날로 심해졌다. 2007년 11월 5일, 특수학교로 등교 하는 차 안에서 재호는 쓰러지고, 그 이후로 학교 선생님들은 재호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약물치료는 어쩔 수 없다? “자해가 심하고 날마다 징징거리며 운다” 재호의 자폐증세가 심해지자 시설에서는 약물치료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생활시설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호의 자해와 수면장애는 일시적으로는 잠잠해지긴 했지만 멍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변기물을 마시는등 행동장애는 더욱 악화됐

다고 한다. 35킬로그램이었던 몸무게는 28킬로그램까지 빠졌지만, 약물투여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교사들이 약을 줄여보자고 했지만, 자해가 심한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대답만 들어야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허리가 뒤로 심하게 젖혀져 걸을때도 매우 고통스러워했다는 재호. 그런데,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활처럼 몸이 휘어지는 재호의 증상은 항정신성 약물의 부작용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런 부작용이 지속됐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고 하는데.... 생활시설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이고, 행동장애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약물치료. 과연 그것은 불가피한 수단일까?

일상적인 폭행, 개선될 수 없는 의료환경 “선생님이 문을 닫고 몸을 여기저기 막 때려요” 재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 선생님 들이 시설의 ‘구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에게 체벌 이상의 폭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보니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약물치료의 부작용으로 더욱 심한 행동장애를 보이고, 결국은 다시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었다. 또 수십 명의 아이들을 축탁의 한 명이 돌보며, 주로 약물 처방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은 생활시설 장애아들이 약물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생활시설의 의료 환경의 내용은 실제와 다릅니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6일자 프로그램에서 “재호는 왜 죽었을까? - 한 시설아동의 죽음을 통해 본 생활시설의 의료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재호군의 죽음에 대해 과다한 약물투여와 방치, 폭력행위에 의해 사망한 것 같다는 내용을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생활시설에서는 교육적인 체벌이외에는 일체의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활시설에서는 재호군의 치료를 위해 병원진료 및 시설의 행정행위상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제호의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으나 호흡부전으로 자연사하였습니다.

자폐성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개개별적 특성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정당한 정신과적 치료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힌 점, 또한 몰래카메라라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가족과 임직원 및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가족과 임직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자원봉사자로 위장하여 1급의 중증장애인과 정신장애를 가진 생활인들에게 과대망상을 하게 하여 생활시설의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임직원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인터뷰에 대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를 괴롭혀 시설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서비스 사항 중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진 내용만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시설에서는 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시청자들에게 오인하게 하여 생활시설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상파 방송이라는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번의 허위사실에 의한 제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생활시설 및 병원의 관계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며, 위의 방송된 내용에서는 일반적인 생활시설 내의 의료환경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지 생활시설 및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며, 해당 생활시설과 병원에서는 방영된 내용과 달리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기관으로 밝혀져 정정보도를 하는 바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문제가 된 사실관계의 진위 확정이 어려워 신청인의 정정·손배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저술한 대안교과서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일본 우익의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교과서포럼 (대표 박 ○ ○,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뉴스 후」 프로그램 (2008년 3월 29일 22:50)

내 용 : (전략)

▷앵커 : 남○○ 기자. 제작년에 우리 뉴스후에서

이 뉴라이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역사학과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 일제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조는 끝내 유지된채, 이 교과서가 출간이 되었는데요, 이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 가운데 역사학자가 있긴 있습니까?

▷남○○ 기자 : 네, 집필진들은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등 인문사회과학분야 전공자들입니다. 직접 저술에 참여한 정통 역사학자들은 없었구요, 단지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들의 감수를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저자들이 쓴 이른바 대안교과서의 내용은 어떤지 일제시대를 서술한 3부의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내레이션 : 일본의 대표적인 만행인 종군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본문에 겨우 세문장으로 짧게 기술처리한 반면, 오히려 종군위안부가 일종의 취업사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막 : 일본인 대리업자가 “위안봉사”를 시킬 한국인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이 대리업자가 여인들에게 제시한 것은 큰 돈벌이, 가족의 빚 갚기, 쉬운 일,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삶 등이었다. 이러한 핑에 빠져 많은 여성이 해외취업에 지원하고, 몇백 엔의 전대금을 받았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93쪽)

▷내레이션 : 강제로 끌려간게 아니라 큰 돈벌이라는 말에 속아 종군위안부가 됐다는 겁니다. 강제로 납치돼 끌려 갔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살아 있는 증언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중략)

▷내레이션 : 대한교과서 107쪽 한글운동. 한글 보급으로 독립운동을 가름한 조선어학회가 조선총독부를 추종한 것처럼 서술했습니다.

▷자막 : 한글운동, 어문의 표준화와 <한글맞춤법통일안>, 1933년 조선어학회는 총독부는 제정한 표준에 따라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교과서, 신문, 성경 등의 근대적 미디어에 반영되거나 채택됨으로써 널리 정착되었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107쪽)

▷내레이션 : 탄압 받은 내용은 역시 조그맣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한글학회측은 어이없어 합니다.

▷김○○/한글학회장 : 우리학회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독자적으로 (한글운동)한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 총독부에 학무국이 있었지만 그때 맞춤법 통일안, 혹은 조선어 큰사전 만들 때는 전체 한글학회, 조선어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조선어학회 이름으로 다 발행을 했거든요. 이런걸 봐서도 한글학회가 상당히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내레이션 : 이 정도면 일본의 후쇼샤 교과서와 다르게 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교과서가 일본 후쇼샤 교과서보다 한 술 더 뜨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조선총독부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근거만 있으면 모두 다 토지를 나눠줬다는 식으로 조선총독부의 정당성을 더욱더, 한 발 더 나아가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일

본 후쇼샤의 위험한 교과서를 내용을 상당부분 우리 쪽으로 보강해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레이션 :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을 정리한 경지보다 두 배나 넓은 임야의 소유권이 총독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일본인에게 넘어 갔다는게 역사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뉴라이트 교과서는 이 임야가 누구에게 넘어 갔는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대안교과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책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검정을 받은 건 아니어서 당장 정식교과서로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부교재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2011년 새 교과서에 교과서포럼의 역사관이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 이런 교과서가 중고등학생들의 역사교과서로 채택이 된다면 독립운동을 했던 선조들이 참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은데요.

▷남○○ 기자 : 네, 일제시대를 한 번 헨젤과 그레텔 얘기에 빗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마녀가 아이들을 살찌워서 잡아먹기 위해서 기름진 식사를 제공했다는게 진실인데요,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아이들을 재워주고 먹여줬다는 사실들만 강조하면 이거는 진실을 희석하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맙니다. 매일 얼마나 살찐는지, 또 잡아먹을 때가 됐는지, 손목을 잡아봤다는 사실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뉴라이트 교과서가 실증된 사실 위주로 서술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책에 실린 사실속에서 이 진실이 희석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08년 3월 29일 「뉴스 후」를 통해 보도한 <뉴라이트 교과서 한국판 ‘후소사’?>라는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본 방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대안교과서가 역사와 관련이 없는 인문사회과학분야 전공자들이 집필한 책으로 역사책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습니다. 대안교과서를 쓴 저자들은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현대 정치사, 경제사, 국제관계사 등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들로서, 정치·경제·사

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방대한 사료를 수집·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현대사의 저술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겸비한 사계의 권위자들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교과서가 철저하게 일본의 극우단체의 입장을 추종해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보다 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대안교과서는 일제의 억압과 차별 하에서도 한국민족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끌어 온 변명과 발전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을 뿐 일본 극우단체의 입장을 추종하거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일방적으로 미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안교과서의 집필진은 자신들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기초로 우리의 근·현대사를 집필하였을 뿐 '후소샤' 교과서를 참고한 적이 없으며, '후소샤' 교과서가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본 방송은 이 프로그램에서, 대안교과서가 일제의 대표적인 만행인 중군위안부와 관련하여 일본의 우익보다 더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대안교과서는 일본군의 전쟁범죄 행위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군이 한국, 만주, 중국, 동남아, 남양군도에 이르는 전 주둔지에서 군 시절의 일부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출신의 여인들을 위안부로 노예처럼 수용하면서 일본군에 성적 위안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였으며, 일본의 우익 입장에 서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방송은 대안교과서에 기술된 조선총독부의 제정, 조선어학회의 활동,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등과 관련하여, 마치 대안교과서 집필진이 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실체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기술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그것은 비전문가의 통념일 뿐 국내외에 축적된 최근의 연구 성과와는 무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시대정신> 2008년 가을호가 발간된

후 1개월 이내에 <뉴스후>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인의 반론을 포함한 내용으로 10분 이상 후속보도 하되,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신청인과 사전 협의하여 반론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 후」 프로그램 (2008년 9월 20일 22:50)

내 용 : ▷앵커 : 학생들이 공부하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대표주자는 '뉴라이트교과서포럼'이라는 단체입니다. 일제식민지 지배로 우리나라가 근대화 됐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대안교과서를 만들기도 했는데 역사학계의 비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 기자, 대안교과서라는게 지난 3월에 나왔는데 이 책을 학생들의 교과서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 기자 : 네,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대안교과서의 내용이 일본의 우익역사학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따라서 학생들의 교과서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학계의 비판에 대해 교과서포럼은 이를 다시 반박하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다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뉴라이트교과서포럼의 이른바 대안교과서가 발간된 직후 역사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교과서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대안교과서가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일제의 토지수탈, 독립운동가인 김구선생에 대한 내용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안교과서 역시 당시 한국여성 출신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성적 위안을 제공하며 노예처럼 취급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아닌 주석에 실린 부분이 문제가 됐

습니다.

▷내레이션 : 한국여성들에 대한 취업사기, 인신 매매나 납치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부분이 취업사기를 당해 끌려간 것으로 서술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주○○ /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 취업사기가 아닌 강제동원, 강제연행으로 끌려간 케이스들에 대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중에 정말 조금 딱 따서 취업사기와 관련된 부분만 딱 올려놓고...

▷내레이션 : 저센 비판이 일자 교과서포럼 측은 최근 대안교과서 기술에 근거로 삼은 한 논문을 인용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내레이션 : 논문을 쓴 서울대 정○○ 교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정○○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연구결과를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제 책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이 교과서포럼 쪽에서 하셔서 당황스러웠는데요. 협박, 폭력은 보는 데서 이렇게 데려간 것이고 유괴, 납치는 업어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르게 했지만 이것도 좁은 의미에 폭력적 강제연행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면 89명이 소위 강제연행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취업사기가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레이션 : 이에 대해 교과서포럼 측은 대부분이 폭력을 동반한 취업사기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편으로 당시 가난한 집의 딸들을 위안부로 내몰았던 한국 사회 내부 모순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서술한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역사비평 2008 여름호 - 한양대 사학과 박○○ 교수 : 이 책 전반에 걸쳐 이승만은 곳곳에서 언급되고 있고 영웅시 되고 있다. 반면에 김구에 대해서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테러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는 '테러활동'이며 그들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내레이션 : 이에 대해 교과서포럼 측은 테러는 무장저항, 폭력저항을 묘사하기 위한 단어로 선택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항일테러활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게 이제 독립운동에 여러 가지 방략, 방략을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다른 교과서에서도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항일테러활동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내레이션 : 교과서포럼 측은 그러나 테러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어감을 고려해 적합한 새로운 단어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부분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사학자들은 일제의 토지조사 목적이 일제의 토지수탈에 있었다고 보는 반면 대안교과서는 근대적 토지제도의 확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99.5%의 토지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등 소유권이 정리되면서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됐다는 것입니다.

▷주○○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인들이 그렇게 토지를 빼앗길, 분명히 자기 소유의 토지를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구요. 우리 사회라는 게 그 토지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이런게 분명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내레이션 : 토지조사 이후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급증하고 소작료가 40~50%로 늘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도 엇갈립니다. 국사학계에선 소작료가 50%로 늘어나 결국 소작농이었던 대다수 농민들이 고통을 겪은 것은 일제의 수탈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 / 한양대 사학과 교수 : 당시 지주가 약 5할 정도의 소작료율을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소작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근대적인 의미의 지대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것을 수탈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교과서포럼 대표 : 대가 없는 수탈이지만 그러나 자유주의적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토지를 둘러싼 임대차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경제적 실력이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죠. 반드시 수탈관계로 봐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 차이일 뿐이고, 특별히 그 수탈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영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 나아가 대안교과서 측은 그동안

일제토지사업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기존에 교과서가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대안교과서의 본문 중 120개나 사실관계 오류가 발견됐다는 국사학계의 지적에 대해 교과서포럼은 21건의 오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99건은 공연한 트집이나 오독, 비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1933년 조선어학회가 총독부가 제정한 표준에 따라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내놓았다는 기술에 대해 교과서포럼측은 조선어학회가 총독부를 추종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과서포럼 측은 대안교과서가 후소사 교과서와 맥을 같이 하는 친일적 교과서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역사적 실체에 다가서려는 진지한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교과서포럼 대표 :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학문적인 기초에서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제기하는 운동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또 바람입니다.

▷내레이션 : 최근 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두환 정권을 비롯한 역대정권의 강압통치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지난 주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교과서를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끌고가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가 정식교과서로 채택될 경우 우리 사회가 커다란 이념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 고○○ 기자, 백범 김구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부분을 바꿔보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한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학생들의 역사교과서를 바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애깁니다.

▷고○○ 기자 : 이에 대해서 뉴라이트교과서포럼 측은 정권과는 상관없이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서 대안교과서를 만들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안교과서는 최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과서는 단순히 시험문제의 정답을 넘어서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됩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는 다음 세대의 역사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점에서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대상이 되는게 맞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볼 일입니다.

▷앵커 : 국방부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고쳐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전두환 정권이 강압통치를 했다는 내용을 빼고 그 대신 친북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한 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심지어 보수 신문들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바람에 일부를 철회했지만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혹시 우리 사회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곰씹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인체감염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신청인이 인체감염사례가 없다면서 고의로 축소 발표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 강 문 일)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3.

보도내용

서울신문 : (1) 『“을 AI 인체감염 치사율 높다”』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1일자 1면)

내 용 : ‘中 안후이형’ 확인... 16일 정부발표 축소 의혹

동남아 감염자 65% 사망

올해 전국을 휩쓴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인체 감염 가능성이 있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인체 감염 사례가 없고,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와는 종류가 다르다.’ 던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AI의 위험성을 감안해 백신개발과 방역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신문 취재팀이 이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김우주(39·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문위원, 김재홍(43·전 검역원 질병연구부장),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모인필(43·전 점역원 조류 질병과장),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등 국내 최고의 AI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전문가들은 “이번 AI는 인간에게 감염될 뿐 아니라 치사율도 높은 중국 안후이형 계통”이라고 밝혔다. 안후이형은 AI 바이러스 분류상 2, 3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유전자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AI가 2, 3, 2계통이라고 밝혔고, 2, 3, 2계통은 안후이형인 2, 3형의 변종에 해당된다. 검역원은 당시 2, 3, 2계통이라는 사실만 밝히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역원은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고만 밝혀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2,3형과 유전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2, 3, 2형의 경우 사람이 AI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에 노출될 경우 감염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팀이 입수한 임상의학 최고 권위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2008년 1월호에 실린 ‘AI바이러스가 인체 감염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안후이형은 2005년 중국 안후이성에서 발생한 뒤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지로 확

산됐다. 감염자 26명 중 17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65%다.

WHO로부터 입수한 ‘H5N1(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항원 및 유전적 특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 3, 2형은 인체 감염의 위험성에 대비한 예방백신 준비 권고대상이다. 전문가들은 “포유류가 AI에 감염된다는 것은 같은 종인 인간도 감염될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하루 빨리 위험성을 알리고 백신 확보 및 개발 등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석 검역원 역학조사위원장(50·경북대 수의과대 교수)은 “인간에게 감염된 예가 없다고 했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말한적 없다.”고 말했다.

(2) 『국민불안 우려 진실 왜곡?』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1일자 8면)

내 용 : ■검역원 AI 위험성 축소 의혹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던 정부의 발표로 한 풀 꺾이는 듯했던 AI 불안감은 20일 전문가들의 반박으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AI 관련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5월 21일자 001면에 “AI 인체감염 치사율 높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AI는 인간에게 감염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높은 안후이형 계통”이라고 밝혔다. 안후이형은 AI 바이러스 분류상 2,3형이다 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3계통은 2,3.1~2,3.4까지 4개의 계통으로 세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2,3.1~2,3.3은 지금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없고, 2,3.4계통만 인체 감염예가 보고된 바 있으며, WHO 보고자료(2008.2)에 의하면 2,3.2 계통은 중국남부, 홍콩, 베트남 등의 가금류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

따라서 인체감염의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하지 않았으며, 또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지

에 게재된 내용은 2.3.4 계통에 대한 사실로, 2.3.2 계통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님을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AI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5월 21일자 조류 인플루엔자(AI) 보도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인체 감염 사례가 없는 2.3.2 형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WHO도 국내 발생 유형이 중국남부, 베트남 등의 가금류에서만 발생되고 있고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6월 12일까지 서울신문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서울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반론보도문

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단, 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AI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탑승인원을 초과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하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 통학버스 및 신청인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6.

처리결과 : 각 취하 (중재합의, 2008서울중재6 참조)

보도내용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8년 5월 7일 06:45)

내 용 : ▷앵커 : 서너 살 된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 많으시죠? 그런데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위험천만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벨트도 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을 태우는가 하면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표시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허○○ 기자입니다.

▷기자 : 한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12인승 차에

어린이가 몇 명 탔는지 세어봤습니다. 운전자와 인솔교사까지 포함하면 무려 5명이나 정원을 초과한 겁니다. 3명이 앉아야 할 자리에 4, 5명이 앉다 보니 안전벨트를 맬 공간조차 없어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다닙니다.

▷어린이집 원생 : (안전벨트) 안 매요. (매고 다닌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어린이집 원장 : 땀다가 풀었다가 하기 어린이들이 불편하니까..

▷기자 : 또 다른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5월 7일 MBC-TV 오전 6시 45분에 방송하는 「뉴스투데이」에서 “12인승에 17명”이란 제목으로 위험천만한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대하여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보도된 어린이집 차량은

12인승이 아니라 15인승이며, 또 다른 한대는 35인승 어린이 전용차량으로 보도된 어린이집 차량은 안전벨트를 맬 공간조차 없어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 차량이 아닌 어린이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안전벨트를 맬 수 있고 보조발판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어린이 전용버스였으므로

로 방송된 내용과는 전혀 사실과 크게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신청인이 기독교신문 이사장을 상대로 승소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이사장의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4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기독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기독교신문 : (1)『기독교신문사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7일자 27면)

내 용 : 본사가 다시 또 어려움에 봉착했다. 권영식 장로가 신청한 사장 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권 장로는 자신의 사장직무수행을 오임종 사장대행과 조○○ 총무국장이 방해하니 이를 정지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조 국장의 방해는 이유 없다고 받지 않고 오 대행의 방해는 인정했다.

또다시 난관에 부딪친 신문사

권 장로는 4월 22일(화)부터 회사에 나오기 시작, 즉각 조 총무국장을 내려앉히고 김○○ 차장을 총무국장 대행으로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회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에는 이사회 감사 및 일부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 이사회 임원 및 실행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해임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편집국 기자들을 중심한 대부분의 직원들은 권 사장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아침예배에 후끈장 되창하고 있으며, 곧 직원들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권 장로는 이에 앞서 오 장로가 본사 이사장이 아니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승소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오 장로는 다시 이의를 제기, 법원의 인용을 끌어냈고 또 다시 권 장로가 가처분을 받아내는 공방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최근 권 장로는 황○○ 목사와 함께 총회장을 걸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오 장로 역시 권 장로가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인용판결에 곧바로 항고해 양자 간의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시 단독 후보로 사장이 된 권○○ 장로가 조○○ 국장을 해임하자 조 국장이 이의를 제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 다툼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 국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권 사장은 또 편집국장을 서울지사로 발령하고 기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것이 2007년 10월 5일 이사회 이전의 상황이었다.

일이 이쯤 이르자 2007년 9월 6일 제92회 총회 바로 직전 김○○ 이사장 대행이 소집한 이사회는 오○○ 장로를 이사장으로 확인하고 바통을 넘겼다. 권 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총회 기간에 양측은 수차례 회동했으나 타협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오○○ 이사장은 총회에 자신의 이사장직 확인을 위한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하였고, 총회는 이를 인정하는 결의를 해주었다. 하지만 총회

기간중에 모인 9월 23일의 정기이사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다. 따라서 현재 이 사건은 법의 판결과 총회의 결의가 상반된 상태다. (후략)

(2) 『본사의 난맥상 갈수록 안개속이다』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1일자 27면)

내 용 : (전략)

앞서 본사 이사장과 사장 관련 해묵은 분쟁문제를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세 거룩한 교회의 지도자들답게 우선 화해(和解)와 호용(互容)의 덕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사태는 갈수록 꼬여가고 안개 속을 헤매니 안타깝다.

권○○ 장로와 황○○ 목사는 본사의 사장과 이사회 부이사장이라는 전제 아래 2008년 4월 1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사장 직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오○○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첫 번째는 권○○ 장로가 인정받고 다음에는 오○○ 장로가 인정받음으로 권 장로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일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보 1674호와 1676호의 사실 기사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자와 5월 21일자 사실에서 “기독교신문사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및 “본사의 난맥상 갈수록 안개속이다”라는 제목으로 본사 분쟁의 화해를 제안하는 기사에서, 4월 22일자로 권 사장이 회사에 나오기 시작, 즉각 조 총무국장을 내려 앉히고 김○○ 총무국장 대행을 임명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 조 장로를 내려 앉힌게 아니고 2007. 10.1. 면직된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었으며, 오 장로가 이의신청한 사건의 기각을 두고, 인용을 끌어냈다고 잘못 보도하였으며, 권○○ 오○○ 양자 간의 소송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리 권○○ 사장이 낸 소송은 두 차례 이겼고, 오○○ 장로가 낸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이었으므로 바로 잡으며, 서울지방법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재원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심리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장 강등 후 3개월이 지나 조재원의 부장 직급이 확정되었으니 소를 취하하면 어떻겠느냐고 권면하여 취하한 것뿐이지 불리해서 취하하거나 더더욱 그들이 승소한 것이 아니다.

또한 7인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총무국장과 편집국장을 회복시켰다고 하나 7인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 사장 직무 정지, 오○○ 사장대행 등이 무효라고 했기에 그들이 취한 조치는 불법임을 바로 잡으며, 소위 7인위원회가 신문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나 그들은 일방적으로 권○○을 매도하고 오○○의 편을 드는데 그쳤다. 게다가 법원의 오○○의 이사장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 했다고 하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은 한결같이 권○○ 사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첫 번째는 권○○ 장로가 인정을 받고 다음에는 오○○ 장로가 인정을 받았다는 1676호의 사실은 잘못되었음을 바로 잡는다.

권○○ 사장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면의 본사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 사장 난에서 권○○을 삭제하고 신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편집인 사장 권○○을 표기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본사 권○○ 사장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7일자 「기독교신문사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및 21일자 「본사의 난맥상 갈수록 안개속이다」 제하의 사실과 관련하여, 권○○ 장로가 오○○ 장로를 상대로 제기하여 법원에서 인용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해 오 장로가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국장 해임 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노동위에서는 복직을 결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에서는 화해취지로 취하를 권유하였고 권 장로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와 관련 권 장로는 조 국장을 작년 10월 면직통

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권 장로는 “2007년 10월 이사회에서 구성된 ‘7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이사회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장 해임 등의 권한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6월 27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기독신문>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사설의 제목(기독신문사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사설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idok.com)에 게재된 조정대상사설(2008년 5월 7일자 27면 「기독신문사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의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독신문 : 『본사 권○○ 사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국내산 김치를 생산하는 신청인 회사의 제품이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녹채원푸드시스템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9.

처리결과 : 각 취하

가지고.” 취재진이 입수한, 부산지방식약청의 수입품 검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중국산 배추김치, ‘이물질 검출’과 함께 ‘기생충’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 온 김치 가운데 40개 제품에서 기생충이 발견됐습니다. 식약청은 이 기생충들이 사람 몸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사는 ‘선충류’의 일종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략)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4월 15일자 21:00)

내 용 : ▷박○○ 앵커 : 중국산 수입 김치에서 또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벌써 한 두 건이 아니라는데, 한동안 잠잠한 틈을 타 그동안 검사가 또 소홀해졌습니다. 보도에 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냉동 창고, 국내 수입을 앞둔 6톤 가량의 중국산 김치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쯤되어 나가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창고직원

은 털어 놓습니다.

▷창고직원 : “중국 김치에서 기생충이 검출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녹채원은 중국산 수입김치와는 아무상관 없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4월 15~16일 9시뉴스에서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기생충 알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주)녹채원의 상호가 표기된 김치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결과 자료화면의 (주)녹채원의 김치는 2년 전쯤 수입김치내에 기생충발견이 있었을 당시 (주)녹채원 제품은 아무 문제없는 제품이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소개하여 촬영했던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녹채원은 수입을

전혀 하지 않으며 전량 국산을 사용하여 국내에만 판매하고 있는 종합식품회사로 밝혀져 4월 15~16일 기사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원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조성된 단체가 아니며,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안산주공그린빌9단지

제5기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 ○ ○)

피신청인 : 안산제일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안산제일신문 : 『안산 그린빌 9단지 임의로 대표회 만들어』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7일자 12면)

내 용 : 사건의 요지는 지난 제3기 대표회의가 회의록을 위조 대표회의 대표 참석비(참석자 개인당 40,000원)지급하고, 지난해 추석을 맞아 입주민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1,685만 원을 지출하고 지금까지 정산이 되지 않아 4기에서는 수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등 몇가지의 의문사항이 발견되어 입주민들이 3기 대표회 회장 감사에게 영수증을 요청하였지만 해명커녕 영수증조차도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3기회의도 임기를 약 4개월 남기고 해산된 것이다.

또한 9단지 내 입주민 등 70.27%의 해산 찬성동의를 받음으로 인하여 임기를 남겨두고 2007년 11월 12일 해산이 되어 단지내 선관위에서 제4기 입주자대표 위원회를 2007년 11월 28일 구성 임명하여 관리규약 제43조 2항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4기가 선출된 후 인수.

인계를 요청하여도 3기 회장은 4기 대표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한 후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다. 4기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제4기 906동대표로 선출된 이○○ 씨와 합세하여 2007년 12월30일 비대위를 발족 이○○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4기 회장은 비대위에서 불시출석 등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대화거절 등을 이유로 해산되었다고 하고 게시판에 불법 홍보물부착, 야간에 관리소에 자물통을 부수고 소장 부재시 임의로 방송을 하여 민원이 발생한 바 있기도 하다 관리주체에서 제재를 가하자.

▶방송실 자물쇠 본인이 임의 교체하여 출입하고 비대위내 선관위 구성 선관위 위원장 역임

방송실 자물쇠를 본인이 임의 교체하여 출입하고 비대위내에서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관위 위원장을 하면서 연임제한과 해산된 제3기 대표 5명을 포함하여 가칭5기입주자대표위원회를 구성 자칭5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불법은 말 할 수 없으나 현재 인수인계를 하지 못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하루속히 적법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4기 회장은 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선출무효, 인수인계요청을 하였으며 계속적인 불법 행위로 민사건으로 업무배임, 손해배상, 형사건으로는 업무방해 등 여러 건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업무방해로 단원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제4기는 자칭 해산되었다고 유언비어 비대위에서 말해

제3기 인수. 인계 불이행. 인수인계를 기다리는 제

4기는 자청 해산되었다고 하고 비대위에서 말하고 있으며 제4기에서는 각 동대표를 추가로 선출 하고자 수시로 공고된 내용을 엘리베이터 각 동 출입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철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하다. 관리주체에서 입주민에게 홍보만하면 가칭 5기 대표라는 사람들이 하루 멀다하고 연일 게시물을 철거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산 그린빌 9단지 제5기입주자대표회의로 거듭나(또는 안산그린빌 9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7일자 12면에 “안산 그린빌 9단지 임의로 대표회 만들어, 적법절차를 밟은 대표회 무효다 말해”라는 제목으로 제5기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위/수탁계약 업체를 변경한 과정에 대하여 마치 적법하지 않고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안산그린빌 9단지 제5기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의 민주자치단체로 주민들의 그동안 숙원하던 위/수탁계약업체를 변경하고 비리에 연루된 관리소장과 일부 과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결행된 잘못들을 바로 시정하는 등 거듭나고 있음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안산주공그린빌 9단지의 전 관리소장이 몇몇 주민명의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새로 시작한지 3개월도 안된 3기입주자대표회의(이△△ 회장 체제)를 회의록 위조와 추석 상품권 미지급 및 미정산등의 이유로 기존의 비리와 연관된 회장(신△△ 회장)과 혼동되는 가운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밤에 관리소직원들을 대동하여 주민동의 2/3로 해산을 시키고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동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하였습니다.

4기입주자대표회의는 3기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인감만을 인수인계 해줄길 요구하기만 할 뿐 이런 제3기와 4기간의 공방으로 공과금이 연체되는 것을 막는데 일부 동대표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반대를 하면서 동대표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장과 동조하여 12개동에

서 동대표가 4명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례의 추가 보궐선거에도 충원이 되지 않자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동대표 충원 공고를 내고 동대표 한사람이 해외 출장관계로 1일만 회의를 연기하자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회의 정족수도 안 된 상태에서 3명의 동대표가 새로운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고 임시회장 체계에서 정식회장과 임원을 나눠 갖는 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불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도 임시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직접 주민자치단체의 회의를 주도하는 등의 주민자치의 방해와 적극적인 개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4기입주자대표회의의 906동 이호열 동대표가 이의를 제기하고 추운 겨울날 1인 시위까지 벌이고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동의 47명의 서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고 주민 605세대(총814세대 중) 동의로 정식 구성을 하여 안산시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3기와 4기간의 공방을 막기 위해 자진해산 동의를 유도하고 진정 주민을 위해서 봉사 할 수 있는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모든 입주민들에게 참여권한을 확대하고 이에 반대하는 4기 동대표 일부를 해당동의 동주민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해임을 하게 되었으며 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장 투명하게 각 동대표를 선출하여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전 관리소장 김△△은 주민자치를 방해하고자 주민 일부의 이름을 빌어 여러 가지 주민을 혼동하게 하는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여 관리소 직원을 시켜 게시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주민들 참여를 위한 APT내의 방송마져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시청 건축과의 담당계장이 방송과 자료 열람등의 협조를 조정해주고 갓으나 전 관리소장은 “방송내용이 너무 길고 시끄럽다,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 방송 문구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동대표 선출 당일 각 동 지하주차장과 외곽경비의 CCTV와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내의 방송실 문을 잠그고

퇴근하여 경찰입회하에 개방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관리소 직원의 열쇠가 없다는 등의 비협조로 결국은 만일을 대비한 주민안전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잠금 장치를 교체 한 후 문을 개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관리소직원들은 주민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또한 APT 주민들을 관리소장이 고소고발하는 등의 물의가 계속되자 그동안 과거 3기 입주자 대표회의 때부터 줄기차게 요청해온 알뜰시장 선정 과정 중에 생긴 돈봉투 사건으로 전 김△△ 관리소장 해임과 교체를 이행 할 것을 위/수탁관리업체인 현대△△△에 지속적으로 촉구 하고 결국 해임을 번복함에 따라 591세대 (총814세대 중)의 동의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수탁계약업체가 바뀌게 되자 결국은 회계관련 자료를 모두 없애고 심지어는 관리소장의 PC HDD내용까지 모두 삭제 훼손하고, 몇몇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의 CCTV Camera의 위치까지 조정하였으며, 관리사무소의 금고 열쇠가 없어 강제 개방하게 되자 관련 고용승계인원들까지 모두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고 안에서는 그동안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회의록 위조건에 관련된 위조를 위한 회의록과 추석 선물권 미지급권과 영수증 그리고 지급시 주민들에게 받았던 서명록 등이 모두 나왔으며, 관리소장 개인직인이 찍힌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된 통장 1개와 바로 전날 확인된 현금인출관련 영수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훼손된 김△△ 관리소장 PC의 HDD를 전문업체를 통해 복구한 결과 일부 주민명의로 진행되던 고소고발관련 법정문서와 주민명의로 주민들을 혼동하게 했던 문건들 그리고 전 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밀실 담합하는 내용등의 문건들이 상당수 나오게 됨에 따라 이 모든 일련의 일들에 김△△ 관리소장이 깊이 관여되고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소직원들의 PC에서도 본 안산 Weekly News(안산제일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의 사진들이 나왔으며 그동안 공개요청을 거부해 왔던 입주자 대표회의의 시

녹취된 내용들까지 모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 5기 입주자대표회의는 Clean선서식과 더불어 회계관련 감사와 법적공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 감사를 구성하고 최대한의 주민 혜택과 운영비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사비를 털어 지금껏 계속되는 법적 공방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민 피해를 가장 크게 입혔던 UPS사업(출입문 보안관련과 Network사업)의 문제점과 비리를 밝혀내어 입주민들에게 배포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 이 밖에도 전 위/수탁관리업체의 회계감사를 실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련의 법적공방의 최종 진행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배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껏 전 김△△관리소장의 고소고발의 남발에 따라 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김효선 회장과 이효열 특별감사가 정신적인 피해와 가정내의 불화를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힘들게 대응해왔고 이제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APT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한 단계 Upgrade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목표를 설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안산주공그린빌 9단지에는 더욱 민주적이고 주민자치가 확실한 살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안산제일신문(주) 기자 원용석은 2008. 6. 30까지 고잔 그린빌9단지아파트 3, 4, 5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면담하고, 그 동안의 분쟁상황에 관한 취재를 한 후 안산제일신문 2008. 7. 1자 12면 전면 보도로서 위 내용을 보도한다.

• 안산제일신문(주) 기자 원용석은 위 아파트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즉시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내용을 전면보도로서 보도한다.

• 위 사항이 이행될 경우 안산주공그린빌9단지 제 5기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김○○의 안산제일신문(주)와 기자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포기한다. □

신청인이 자녀납치를 미끼로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6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추후)
취 하 (손배)

보도내용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8년 4월 29일 07:00)

내 용 : 〈앵커 멘트〉

전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진천에서는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과 재치로 단돈 3백 50원으로 전화 납치 사기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오후 진천에 사는 44살 황모 씨는 자신의 아들이 납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협박 전화 중에도 침착하게 아내와 지인들을 통해 아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황 씨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 사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황○○ 씨(전화 사기 피해자) : “통화를 길게 해서 위치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

황 씨는 전화 사기 일당과 통화를 이어가면서 20분 넘게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대응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들이 요구한 천 만 원 대신 350원을 두 차례 입금해 경찰이 역으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24일 서울시 홍제동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을 하려던 전화 사기 용의자 53살 조모 씨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전화 사기의 대부분이 대포

폰과 대포통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용의자 특정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황씨의 기지 덕분에 범행의 달미가 잡힌 것입니다.

▷〈인터뷰〉이상헌(진천경찰서) :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형사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된 것이 경찰은 피의자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전화 사기 일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350원 전화사기범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저희 KBS는 지난 4월 29일 “단돈 350원으로 전화납치사기 용의자 검거”라는 제목으로 중국교포 조모(53,여) 씨가 자녀납치를 빌미로 전화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사자인 조모 여인은 사기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모 여인은 지난 5월 22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급한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350원 전화납치 사기 용의자 무혐의 석방
- 내 용 : 지난 4월 29일 전화납치 사기 용의자로 검거된 중국교포 53살 조모 씨가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청주지방법검찰청은 조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조씨가 가지고 있던 통장과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 아닌 친인척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KBS-1TV 뉴스 프로그램(뉴스광장 청주지역)에 위 보도문을 보도하되, 기존 보도내용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진행자가 위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350원 전화 사기범 관련 추후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 이후 비디오테이프 사본을 신청서 상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 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kbs.co.kr)

에 2008년 6월 13일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VOD(다시보기) 및 기사내용을 삭제하여 향후 해당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보도에 관한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8년 6월 9일 07:42)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자녀납치를 미끼로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2008서울조정14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14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2008년 6월 9일 12:1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SBS-TV :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2008년 4월 29일 12:00)

내 용 : <2008서울조정14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자녀납치를 미끼로 전화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I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3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합뉴스 : 『단돈 ‘350원’으로 자녀납치 전화사기범 잡아』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8일자 16:56)

내 용 : 자녀 납치를 미끼로 전화사기를 벌이려던 한 중국교포가 40대 남성의 재치 넘치는 역발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진천군 백곡면에 사는 황모(42)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한 남성으로부터 ‘당신의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순간 당황했지만 언론 등을 통해 최근 납치를 미끼로 한 전화사기가 기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황씨는 혹시 하는 마음에 침착히 자신의 아들(19)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안도했다.

그러나 황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떠올렸다.

황씨는 범인이 불러 준 계좌에 ‘350만 원’ 대신 ‘350원’을 이체시킨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 계좌를 역추적해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24일 낮 1시께 서울 홍제동의 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중국교포 조모(53,여) 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지와 재치로 범인을 검거한 보기 드문 경우”라며 “앞으로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 올 경우 꼭 자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납치한 것이 사실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사기 혐의로 조씨를 구속하고 조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일당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350원 전화사기범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저희 연합뉴스가 지난 4월 28일자 “단돈 350원으로 자녀납치 전화사기범 잡아”라는 제목으로

로 중국교포 조모(53,여) 씨가 자녀납치를 빌미로 전화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당사자인 조모 여인은 사기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모 여인은 지난 5월 22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급한 보도로 당사자의 명예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350원 전화납치 사기 용의자 무혐의 석방
- 내 용 : 청주지방법검찰청이 350원 전화납치 사기 용의자로 구속한 중국교포 조모(53,여) 씨 (연합뉴스 4월 28일자 “단돈 ‘350원’으로 자녀납치 전화사기범 잡아” 제하 보도)를 무혐의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청주지방법검찰청에 따르면, 조씨가 가지고 있던 통장과 계좌번호가 전화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아 지난 5월 2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피신청인은 2008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사이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 내용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원 조정대상 기사는 삭제한다. 이후에는 연합뉴스 기사 DB에 보관한다.

-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협조 요청하여 원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보도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350원 전화납치 사기 용의자 무혐의 석방』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9일자 12: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정읍화신공원묘원이 신청인 문중 땅에 묘지를 불법 조성했음에도 그 이유를 공원묘원 허가 당시 측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북일보 : 『‘측량잘못’ 47기 봉분 옮겨야』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6일자 6면)

내 용 : 정읍화신공원묘원 부지 중 일부에 개인
소유 땅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이미 매
장을 한 40여 기의 이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
다.

20여 년 전 공원묘원 허가 당시 측량이 잘못된
것이 최근 드러났지만 공원묘원과 토지 소유주가
부지 매입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

25일 정읍화신공원묘원 관리사무소와 정읍시청,
A씨(60)에 따르면 정읍시 용동면 용호리에 지난
1988년 허가가 난 공원묘원에 A씨의 형 B씨(70)
소유 땅 2,640여㎡이 묘지 부지와 도로 등으로 포
함돼 개설됐다. 묘지 부지에 포함된 B씨의 땅은
990여㎡이며 이곳에는 47기의 봉분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다.

공원묘원과 A씨 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읍
시청은 지난해 이곳에 들어선 봉분에 대해 1차 이
장명령을 내렸고 현재 2차 이장명령이 진행 중이
다. 이 기간 4기의 봉분이 자리를 옮긴 상태다.

공원묘원에 문중 소유의 땅 800여평이 포함된
것을 지난해 알게 됐다는 A씨(60)는 “공원묘원
허가가 날 때 분명 측량을 하고 설계도면이 있었
을 텐데 착오로 개인소유의 땅이 포함됐다는 것

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공원묘원측이 우리 땅을
매입하기 위해 고의로 일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중의 땅으로 문중에서 활용해야 하지만 20여
년 가량 불법으로 점유당했고 문제가 되자 지난해
B씨 명의로 땅 소유주를 옮긴 뒤 공원묘원 측과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그러나 공원묘원 측은 “측량이 부정확하던 당
시에 착오로 인해 개인 땅이 포함됐고 뒤늦게
이를 알고 매입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며 “지난해 증순께 땅을 사들인 A씨 등이 터무
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원묘원 잘못 50여기 불법분묘 이장해
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사회면에
『‘측량잘못’ 47기 봉분 옮겨야』라는 제목으로, 제
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이 사유지에 불법조성한
분묘가 마치 착오로 빚어진 결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묘지조성 당시 관련법령상 허가절차등
을 확인한 결과 ‘측량잘못’이라고 단정할 명백한
근거없이 잘못 표현한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
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공원묘원 잘못 50여 기 불법분묘 이장
해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사회면에
『‘측량 잘못’ 47기 봉분 옮겨야』라는 제목으로, 제
단법인 정읍화신공원묘원이 사유지에 불법 조성한

분묘가 착오로 빚어진 결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묘지조성 당시 관련법령상 허가절차 등을 확인한 결과 ‘측량잘못’이라고 단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이 잘못 표현한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일보 2008

년 6월 13일자 6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3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신청인을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49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3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전교조,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행동하라』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8일자 31면)

내 용 : 전교조 충북지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계기수업에 쓰라며 홈페이지에 ‘미국넌, 너나 먹어’라는 자료를 실었다. 거기엔 ‘광우병은 미국이 돈을 많이 벌려고 소를 우리에게 가둬 아주 비위생적으로 키우다 생긴 병’이라고 돼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광우병 관련 동영상과 노래CD도 있으니 가져다 쓰라는 안내도 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라면 알약 생리대 초코파이도 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는 글이 올라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전교조 충북 음성지회가 지난 5일 연 어린이날 행사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정말 싫어요’라는 풍선,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행사에선 어린이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스티커로 붙여 표시하라는 놀이가 있었다. ‘싫다’는 쪽이 수백명, ‘좋다’는 쪽은 4

명 뿐이었다고 한다.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던 초등학교 교사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며 며칠째 단식하면서 수업하고 있다. 무지(無知)하고 무모(無謀)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전교조,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행동하라. 사실에 대한 반론문

• 내 용 : 본지는 2008년 5월 8일자 사설<전교조,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행동하라>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냈던 초등학교 교사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며 며칠째 단식하면서 수업하고 있다. 무지(無智)하고 무모(無謀)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사실의 의견개진을 넘어선 욕설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정부가 광우병 의심 쇠고기와 유전자 조작식품을 수입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보고 반대의견을 가진 본인은 이런 식품에 문제점과 더불어 아이들 건강 문제를 사회가 관심 갖길 요구하며 6일 동안 단식 수업을 했을 뿐이다. 단식으로 수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무지 무모 무책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은 인격모독이고 지나친 명예훼손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

고려대 조형학부가 신임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응시자의 점수를 축소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진 ○ ○ 외 3인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고대 채용과정서 ‘연구업적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7일)

내 용 : 말썽일자 임용 전면 취소… “특정인 위한
문지마 전형” 비판

(서울=연합뉴스) = 고려대 조형학부(옛 미술학부)가 신임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응모자의 점수를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새 교수의 채용을 취소했으나 관련자 징계와 추후 임용 절차를 미루고 있어 학교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고려대 당국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조형학부는 지난해 8월 동양화 전공 이모 교수의 정년퇴임에 따라 지난 1월 새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고 서류 심사와 시범강의 등 절차를 거쳐 A씨를 신임 교수로 선발했다.

그러나 이번 채용에서 낙방한 상당수 응모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연구실적물 제출자료 사이에서 ‘전임교원 임용지원자 연구업적 총괄표’라는 제목의 서류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형학부가 채용 심사를 위해 작성한 이 서류에서 자신들의 전시회 개최 횟수가 터무니 없이 축소 기재돼 있었던 것.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B씨는 “개인전시회와 공동전시회를 합쳐 모두 106번을 했는데 표에는 개

인전 3번, 공동전 11번 등 14번만 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1차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학교에서는 실수였다고만 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탈락자 C씨는 “100회가 넘는 실적이 60개로 깎인 선생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60회가 만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했다고 한다. 최종 합격한 A씨는 전시회 횟수가 30~40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구업적 목록의 경우 심사위원장이 숫자가 맞게 기재돼 있는지 2번이나 확인한 다음 도장을 찍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의적 조작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탈락자들의 판단이다.

이번 교수 채용 과정에서는 연구실적 축소뿐 아니라 모집 공고와는 다른 방식의 평가를 하고 응모자격 조건을 갑자기 완화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판단이다.

동양화는 전공 특성상 외국어(영어) 강의가 필요하지 않아 모집 공고에 ‘영어강의 예외 학과로 함’이라고 공지해 놓고선 실제로는 영어 시범강의를 한 응모자에게만 가산점을 줬다는 것이 응모자들의 전언이다.

한 탈락자는 “조형학부장이 시범강의 며칠 전에 전화를 걸어 ‘영어로 강의하면 가산점이 있다’고 했다. 심지어 일부 응모자는 이런 전화조차 받지 못했다. 실제로 영어로 시범강의를 한 3명이 최종 1~3위로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영어강의 예외 학과’라는 공고 내용을 어기고 영어 시범강의에 가산점을 준 것은 영어권 국가에 거주했던 A씨를 1위로 뽑으려는 ‘꼼수’였다는 게 탈락자들의 주장이다.

또 지난해까지 ‘5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던 교수 응모자격이 올해 공모에서는 폐지된 것도 관련 경력이 3년 정도에 불

과한 A씨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탈락자의 정식 진정이 접수되자 고려대는 부랴부랴 A씨의 채용을 취소했다.

조형학부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느 한 케이스만 갖고 볼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와 묶여 있는 것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금만 있으면 입장을 밝히고 다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채용 과정에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져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정계를 하고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향후 인사는 본부에서 직접 공정하게 할 예정이다”라면서도 무엇이 문제점인지는 공개하기를 꺼렸다.

이와 관련, 관련자 정계와 동양화 전공 교수의 채용이 늦어지면서 졸업을 앞둔 4학년 재학생들은 졸업작품 지도와 진로상담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려대 교수채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사는 지난 2008년 5월 7일 “고대 교수 채용 과정서 ‘연구업적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고려대 조형학부(옛 미술학부)가 신입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업적 총괄표를 고의적으로 축소 조작하는 방법으로 응모자의 연구실적 점수를 조작하고, 동양화 전공은 전공 특성상 영어 강의가 필요 없는 학과인데도 일부 지원자들에게는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영어 시범 강의를 하게 하고, 5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던 교수 응모자격조건까지 폐지하였는데, 이는 모두 특정인을 뽑기 위한 조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 고려 대학교 관련 내규상 증빙자료가 제출된 미술전시회 경력만이 연구업적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당시 조형학부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조형학부 교수 일동은 위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자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숫자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연구업적 총괄표에 미술전시회 횟수를 기재하여, 이를 근거로 공정하게 지원자들을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연구업적을 축

소하거나 조작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 기사에 보도된 B후보의 경우도, B후보가 고려 대학교 교무처에 개인전 3회, 그룹전 11회 등 합계 14회 분의 미술전시회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에 연구업적 총괄표에 증빙자료가 제출된 14회의 미술전시회 경력만 기재된 것이지, 조형학부 교수들이 특정인을 뽑기 위하여 동양화 전공 신입 교수 채용 심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지원자들의 연구 실적을 축소, 조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3 기사의 보도 내용과는 달리 미술전시회 연구업적 경력은 미술전시회 60회가 아니라 개인전 3회, 그룹전 20회 합계 23회 이상이 만점이므로, 미술전시회 경력이 30~40회라면 당연히 연구업적 경력에서 만점을 받게 되므로, 조형학부 심사위원들이 미술전시회 경력이 30~40회인 특정인을 뽑기 위하여 연구업적 총괄표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4. 1차 서류 심사를 합격한 지원자들에게 2차 심사서에서 영어 시범강의를 하게 한 것은 고려대학교의 교육목표 및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 강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내규에 따라 조형학부 교수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모집공고 이전부터 결정한 사항이지 특정인을 뽑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시범강의 심사서에서 영어로 강의할지, 한국어로 강의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지원자들의 선택 사항에 맡겼으며, 조형학부 심사위원장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지원자들에게 전화로 이를 고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5. 응모자격 조건이 변경된 것 역시 두번이나 조형학부 신입교수 채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지원대상을 넓히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한 것이고 역시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0,000,000원



신청인 회사가 중·만생종 고추 씨앗을 조생종으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아시아종묘(주) (대표이사 류 ○ ○)
피신청인 : 한국농어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농어민신문 : (1) 『“오이맛 풋고추, 종자둔갑 피해 막심”』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9일자 2면)

내 용 : 진주, 산청, 합천의 시설하우스농가들이 딸기 후작으로 심은 아시아종묘의 오이 맛 풋고추(일명 아삭이 고추, 이하 오이고추)가 종자 둔갑 등으로 인해 제 때 결실을 보지 못하자 피해농가들이 기막힘을 호소하고 있다.

진주시 대평면 하○○(43) 씨는 딸기농사를 끝낸 비닐하우스 10동에 지난 3월 중순 오이고추 2만 2,000여주를 심었다.

이 중 지난해 거래했던 논산의 한 육묘장에서 3월 17일 가져와 정식한 6,000여 주에선 4월 하순부터 수확이 이뤄졌으나, 진주의 으뜸프리그육묘장에서 3월 10일부터 17일 경까지 3번에 걸쳐 가져와 정식한 1만 6,000여 주의 모종에선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략)

확인 결과 농가에 공급된 오이고추 모종의 종자는 조생종이 아니라 중·만생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으뜸육묘장에서는 지난해 농가들이 재미를 보았다고 하는 한 일본산 오이고추 종자와 비슷한 종자를 공급해줄 것을 중간상인인 고려농산종묘에 요청했다.

그러나 고려농산종묘는 아시아종묘로부터 ‘선착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종자를 으뜸육묘장에 공급했고, 이 종자는 ‘오추’라는 중국산 중·만생

종 품종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더구나 종자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일련번호(Lot No)조차 없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착순’은 12마디 전후에서 결가지가 나는 조생종이 확실하다고 ‘선착순’ 개발에 관여했다는 장○○ 아시아종묘 이사는 밝혔다. 반면 ‘오추’는 15마디 전후로 결가지가 나는 중·만생종이라고 백○○ 아시아종묘 영업본부장은 말했다.

유병천 국립종자원 종자심사관은 생산판매신고서류를 확인한 결과 ‘선착순’과 ‘오추’는 등록된 다른 품종이 확실하므로 ‘선착순’이라는 포장지에 ‘오추’라는 품종의 내용물이 담겨져 판매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결국 종자 불법 둔갑 판매가 이뤄져 육묘가 된 중·만생종의 오이고추 모종을 농가들은 조생종으로 잘못 알고 재배해 낭패를 본 것이다. (후략)

(2) 『“오이맛 고추 불량 원인 규명 “속타네”』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일자 4면)

내 용 : (전략) 아시아종묘 관계자는 중국에서 채종된 ‘오추’라는 품종이 중간상인인 고려농산종묘의 요청으로 ‘선착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으뜸육묘장에 제공됐는데, 육묘일수가 약 10일~20일 짧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대다수 농가가 작목반과 육묘장과의 공급계약서만 믿고 이 품종을 일본에서 채종된 사카다코리아의 ‘길상’ 품종으로 알고 재배해 결국 생식성장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후 현장을 방문해 ‘오추’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오추’가 중·만생종이므로 좀 더 기다려 보자고 제의했지만 흥분한 농민들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작황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시아종묘가 국립종자원에 제출한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서 등을 확인해보면 피해농가에 공급된 고추 품종과 이 같은 해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오추’의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는 1월 10일 이뤄져 14일 등록이 완료됐다. 고려농산종묘는 ‘선작순’으로 포장된 문제의 종자를 아시아종묘로부터 1월 2일과 4일 구매했으며, 으뜸육묘장은 1월 8일 첫 파종을 했다. 이는 ‘오추’가 원천적으로 판매될 수 없는 시점인 것이다.

또한 신고서의 품종특성 및 재배시 주의사항엔 ‘오추’가 조생종으로 분명히 명기가 돼 있어 중만생종이라는 아시아종묘의 설명은 거짓임이 최종적으로 드러났다.

‘선작순’을 육성한 장○○ 아시아종묘 이사가 ‘선작순’은 조생종이 확실하지만 ‘오추’의 숙기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대목도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신고서에는 ‘오추’육성자 역시 바로 장○○씨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고려농산종묘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품종 등록이 돼 있는 ‘선작순’ 포장재에 ‘오추’를 넣어 판매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 행위인 줄 과연 몰랐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피해농가 작목반인 한마음친환경연구회의 하○○ 회장은 “뒤늦게 왜소한 고추가 달리긴 했지만 매우 질기고 심이 두꺼우면서 씹으면 가지 맛이 나 도저히 아삭거리는 오이 맛 고추로는 볼 수 없다”며 “품종이 과연 무엇인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고 제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오이맛 고추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9일자(제2052호)와 6월 2일자(제2053호) 전국면에 “오이맛 풋고추, 종자둔갑 피해막심”, “오이맛 고추 불량원인 규명 ‘속타네’”라는 제목으로 아시아종묘에 대한 잘못된 기사를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묘장의 묘종 공급 사기사건을 종자 회사에서 종자를 잘못 공급해서 사기를 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첫째, ‘고추종자’ 사기판매가 아닌 ‘고추묘종’ 사기판매입니다. 농가에서는 사카다종묘(주) 길상고추묘종을 달라고 했는데 하○○(한마음친환경연구회대표)가 길상묘종을 구하기가 어렵자 아시아종묘 선작순(오추)품종을 길상묘종이라고 속여 판 사건인 것입니다.

둘째, 농민이 선호하는 조생종 품종은 길상이었고, 아시아종묘의 오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한마음친환경연구회대표)는 농가에게 묘종을 공급할 때 이 묘종은 길상이고 이 묘종은 선작순(오추)이다 했으면 어느 농가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묘종을 구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셋째, 한마음친환경연구회 임원과 육묘업자가 종자가 아닌 묘종사기 사건을 마치 종묘회사가 종자를 잘못 공급해 사기를 친 것처럼 잘못 보도된 내용을 긴급으로 정정해 사실확인 후 다시 보도합니다. □

신청인 회사가 중·만생종 고추 씨앗을 조생종으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아시아종묘(주) (대표이사 류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2008년 6월 3일 19:00)

내 용 : <2008서울조정1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5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신청인 회사가 중·만생종 고추 씨앗을 조생종으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류 ○ ○
피신청인 : 한국농어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월 29일자 2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5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한국농어민신문 : (1) 『“오이맛 풋고추, 종자둔갑 피
해 막심”』 제하의 기사 (2008년 5

피신청인 주장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불가능하다. ☐

신청인 회사가 중·만생종 고추 씨앗을 조생종으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류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19:00)

내 용 : <2008서울조정15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5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2008년 6월 3일

피신청인 주장

<2008서울조정153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나주시장 측근들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주시 (시장 신 정 훈)
피신청인 : 나주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나주뉴스 : 『신시장 측근 매입 토지 개발 불(?)』 제하
의 기사 (2008년 6월 2일자 7면)

내 용 : 구모 씨를 따라 땅을 사면 반드시 개발된다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에 따른 지역개발에 이어 노안농공단지, 미래산업단지 개발이 신시장 측근이 매입한 토지가 많은 이유에서 비롯된 풍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시장 측근으로 일컬어지는 이가 매입한 토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다른 해석과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이 관계설에서 비롯된다. (중략)

노안농공단지도 조성계획 발표와 함께 또다시 땅투기 현상이 발생했고 나주시 고위공무원들이 향우모임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매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미래 산단 예정지의 경우는 당초의 산단개발계획자가 아닌 지역을 편입예정지에 포함시켜 신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D씨의 토지와 측사, 선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D씨는 지난해 12월 말경에 임야 16,930㎡를 밭으로 형질 변경했으며, 신축된 측사에는 가축을 기른 흔적이 없고 2년에 걸쳐 어린 수목을 식재하는 등 막대한 보상금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또 그 땅은 국도 대체 도로 편입지로 익산청의 노선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했던 곳이기도 하다.

변경 편입된 627,000㎡ 부지에는 시장의 측근들의 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2005년경부터 측근들에 의해 꾸준히 땅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일 수 밖에 없다는 후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일자 7면에 ‘신시장 측근 매입토지 개발 불(?)’ 제목하의 기사에서 “구모 씨를 따라 땅을 사면 개발된다는 풍문인데 ... 신시장 측근으로 일컬어지는 이가 매입한 토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다른 해석과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신시장 측근들이 3개면에 걸쳐 수십만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미래산단 예정지의 경우는 ... 신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D씨의 토지와 측사, 선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변경 편입된 627,000㎡ 부지에는 시장의 측근들의 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2005년경부터 측근들에 의해 꾸준히 땅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땅을 구입한 사람들은 시장의 측근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 측근으로 거명된 구모 씨는 평소 시장과 특별한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시장친구로 거명된 이모 씨는 미래산단사업이 확정되기 2년전인 2005년 토지를 매입했고, 시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유모 씨도 3년 전에 한동네 땅을 농업용으로 매입한 것 이외에 미래산업단지 투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정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나주시장이 공업용지를 매입하려는 친구를 대신해 토지소유자에게 땅을 팔 것을 종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주시 (시장 신 정 훈)

피신청인 : 전남저널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0.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전남저널 : 『미래산업단지 첫삽도 뜨기 전 투기의혹 ‘후끈’』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2일자)

1면)

내 용 : <2008광주조정1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광주조정1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 주 시 (시장 신 정 훈)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전남저널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507-20

대표이사 김 종 우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전남저널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주민들...)의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6.

<별 지>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2일자 “미래산업단지 첫삽도 뜨기 전 투기의혹 ‘후끈’” 제하의 기사에서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나주미래일반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해 땅투기의혹이 일고 있으며, 주민 최모 씨에 따르면, 신 시장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 이모 씨에게 땅을 팔 것을 종용한 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신정훈 시장은 미래산단 지정과 관련해 최모 씨에게 이모 씨와의 개인간 토지거래를 종용한 사실은 없었고, 2005년 11월경 금천면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 해당부지가 광주전남혁신도시 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대토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6년 초 대토부지의 진입로 부지 소유자인 최모 씨 집을 방문해 기업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소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전남저널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6일자 1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보성군이 수해복구를 위장해 사유지를 국가예산으로 복구해 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성군 (군수 정 종 해)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남도일보 : (1) 『보성군 수해 빙자 사유지 복구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2일자 1면)

내 용 : 전남도 내 한 지자체가 수해복구를 빙자, 사유지인 공사현장에 국가 예산 1억 원을 들여 옹벽과 수로인 개거(開渠) 공사를 해 왔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마치 지난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피해를 본 것처럼 위장, 국비 1억 원을 투입해 2007년 1월 김모(64) 씨 부인 명의의 토석채취 현장인 회천면 화죽리 8천 65㎡에 대해 69m의 옹벽

(T자형)과 개거공사(V자형)를 해줬다.

이 일대는 지난 2005년 1월 울포 해수욕장 주차장 매립공사를 위해 3년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곳으로 무너진 옹벽 등은 수해와는 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의 토석채취장 사실상 소유주인 김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현 정종해 보성군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지역유지인 것으로 밝혀져 선거후 '보은성 특혜공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보성군이 이 일대의 토석채취 허가기간을 3년으로 내준 것과 관련, 일반적인 토석채취 허가 관행이나 현장 여건에 비해 허가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행정의 원칙과 투명성에도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후략)

(2) 『보성 '수해복구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3일자 1면)

내 용 : 〈속보〉 수해복구로 위장해 사유지인 공사현장에 국가 예산 1억 원을 들여 옹벽과 수로인 개거(開渠) 공사를 해 줬다는 의혹 〈본보 5월 22일자 1면 보도〉을 받고 있는 전남 보성군이 당초 토석채취 허가기간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관련 서류 감추기에 급급,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보성군 수해빙자 사유지 복구 의혹'은 사실과 달라(또는 '보성군 수해 빙자 사유지 복구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5월 22일자 및 같은 달 23자 정치면(1면)에, 각 "보성군 수해 빙자 사유지 복구 의혹", "보성 '수해복구의혹' 증폭"이라는 제하의 보도, 2008. 6. 9.자 3면에 "보성 수해복구 '특혜의혹' 증폭"이라는 제하의 각 보도가, 마치 현 보성군수가 선거 때 도운 사람의 토지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해주고 수해에 따른 피해가 없음에도 수해복구를 해준 보은성 특혜를 준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현 보성군수가 보은성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보성군은 문제가 된 토석채취허가는 전 군

수인 2005. 1.경 났고, 무너진 옹벽은 2006. 7. 9.부터 같은 달 10.까지 태풍 에위니아 때 내린 집중호우(219mm) 때 무너졌으며, 현군수는 토석채취허가나 수해복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조사결과 담당공무원들의 위법사실이 밝혀진다면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 하여 보성군 및 보성군수 정종해에게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22일자 "보성군 수해 빙자 사유지 복구 '의혹'", 5월 23일자 "보성군 '수해복구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에서 전남 보성군이 지난 수해복구를 빙자, 사유지인 공사현장에 국가예산 1억 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해 주었으며, 문제의 토석채취장의 실질적 소유자는 현 정○○ 군수의 선거 당시 적극적으로 도운 지역유지로 밝혀져 '보은성 특혜공사'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문제의 토석채취 허가는 2005년 1월에 이뤄져 현 정○○ 군수와는 무관한 사항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 한 점에 대해 보성군에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한편 보성군수가 보은성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정종해 군수는 수해복구 과정에서 보은성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6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도일보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국비 1억 투입 개인소유땅 보수...)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남도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0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이한열 열사 추모제’에 참석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기사사진 삭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노컷뉴스 : 『민주주의 지킬게요』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6.10 민주항쟁 2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故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제’에서 한 여학생이 헌화를 기다리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을 통해 제2의 6월항쟁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故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기획단은 같은 날 연세대 정문을 출발해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시청 앞 서울광장까지 이한열군의 영정을 들고 장례행렬을 재연하는 공동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8년 6월 27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노컷뉴스>에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진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4일까지 <네이버>, <다음>, <애플> 등 포털사이트에서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진이 삭제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사사진 삭제>



녹용이 소아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 수 호)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1.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8년 5월 26일 07:02, 08:03)

내 용 : 녹용, 어린이 비만에 효과

▷앵커 : 통상 이 녹용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비만 어린이들에게는 녹용이 살을 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 몸을 보하고 체력을 보강하는데 쓰이는 대표적인 보양제 녹용, 밥을 잘 먹지 않거나 허약한 어린이들에게 주로 처방됩니다. 때문에 녹용

이 살을 찌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아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병원에서 녹용을 복용한 12세 미만 소아 6만 명을 분석한 결과, 체중이 100명 중 상위 25명에 속하는 어린이들은 체중 백분위율이 평균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체중 하위 25명에 속하는 어린이들은 녹용 복용후 체중 백분위율이 6.1 늘었습니다. 비만한 어린이는 살이 빠지고, 마른 경우엔 살이 찌는 등 녹용이 체중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녹용을 복용했던 10살 서린이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김○○(서울시 서초동) : “어릴 적 통통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더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녹용이 신진대사를 향진시켜 비만 치료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한의사) : “녹용이 갖고 있는 대사기능 활성화 때문에 노폐물이 쌓여 있거나 살이 찐 사람들에게겐 노폐물이 빨리 제거되고 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소아과학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녹용이 어린이 비만에 효과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6일자 뉴스광장 등에서 “녹용, 어린이 비만에 효과”라는 제목으로 ‘세계소아과학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녹용이 어린이 비만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된 내용은 함소아 한방 클리닉에서 ‘세계소아과학회’가 아닌 ‘미국 소아 관련 종합 학술대회(Pediatric Academic Societies: PAS)’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소아 관련 종합 학술대회’는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미국 내 소아 관련 의사들의 학술대회로 이번에는 제4차 아시아 소아연구 학회(4th Congress of 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ASPR)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로 공식 명칭은 ‘Pediatric Academic Societies and 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2008 Joint Meeting’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제4차 아시아 소아연구 학회에 포스터 초록 제출 내용에서 발표자들이 비만으로 진단한 경우는 제외했다고 하였으며, 복합 한약이 포함된 녹용을 투여 받은 소아에게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조사한 것인데, ‘실제로 소아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또 어떤 약제의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단일 약제를 사용하여야 그 약제의 효과를 판정할 수 있는데 녹용을 포함하여 다른 한약이 들어있는 복합 한약을 사용한 결과를 마치 녹용의 효과로 보도한 것과 특히, 초록의 결론에서는 ‘녹용이 특히 과체중의 향상성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이 나지 않은 포스터의 내용을 마치 녹용이 소아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 방송 보도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함소아 클리닉에서 제출한 포스터 초록에는 ‘녹용’이 아닌 ‘복합 한약이 포함된 녹용’이라고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방법에서 몸무게를 가지고 퍼센타일을 비교하면서 발표하였는데 소아비만을 진단하기 위한 중요한 측정 기준은 몸무게가 아닌 체질량지수(BMI)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임에도 몸무게라는 기준만으로 소아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보도한 점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 수 호)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주 문 : 이 사건 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1TV <뉴스광장> 등의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5월 26일 KBS 뉴스광장 <녹용, 어린이 비만에 효과> 제하의 보도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녹용이 어린이 비만에 효과적이며 세계소아과학회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공표되었다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연구결과는 세계소아과학회가 아닌 미국 소아 관련 종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이며, 연구에서 사용된 약제가 녹용 단일약제가 아니라 녹용이 포함된 복합한약이므로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

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살펴보면, 신청인 한국의사협회가 보도에서 직접 언급된 바 없어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을 이 사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고, 한약제의 효능에 관한 사건 보도의 내용이 신청인의 인격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8. 6. 19.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명퇴를 신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강릉KBS-1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강릉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5월 28일 21:00)

내 용 : ▷앵커 : 한 소방서 간부급 공무원이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이자 돌연 명예퇴직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나섰던 소방당국은, 그동안의 공로를 감안해 명예롭게 퇴직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 도 소방본부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까지 실시한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보고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소방 대상 업체에게 술접대를 받은 사실까지 나타났습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 : (감사) 진행이 됐죠. 고위 간부로서 품위를 잃지 않았나..

본인은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대상 업체들도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업체 관계자 : 안다고 해도 말 못하는 거고, 봤다고 해도 못 봤다고 할 입장이지요.. 다 뭐 인맥 있다는 분들이 한다는데..

이 공무원은 부하 직원들에게조차도 부당하게 처신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서 관계자 :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 분 때문에 인사 이동을 원했었고 암튼 그 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방공무원은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부조리 의혹을 받

고 있는 이 모 과장은 현재 휴가를 내고 며칠 쉼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 소방본부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감사를 종료했고,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8일에 ‘비리의혹에도 제식구 감싸기’란 제목으로 소방서 간부급 공무원의 금품 수수의혹의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를 피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며 연가 또한 가정사로 인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감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소방대상업체에서 금품수수 및 보도화면과 같은 폭탄주 접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KBS 강릉 방송국은 지난 5월 28일자 “비리의혹에도 제식구 감싸기”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취재기자가 신청인 본인에게 제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 술 접대라고 하면서 폭탄주를 마시는 자료화면을 사용하여 다소 과장되게 한 점, 신청인의 명예퇴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관련 보도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군인공제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군화 납품을 독식하고 있어 병사들이 성능미달의 군화를 사용하는 등 특혜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군인공제회 (이사장 조 영 호)
피신청인 : 디앤디포커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디앤디포커스 : 『군인공제회 군화납품 독점에 병사들 받은 열고 있다』 제하 의 기사
(2008년 2월호 94~99면)

내 용 : (전략)
군인공제회 60% 점유 ‘초특혜 대우’
‘독점적 지위’ 제공, 비난 여론 높아

전투화에 대한 예비역 누리꾼들의 첫 번째 불만은 군인공제회에 대한 독점적 특혜다.

현재 국내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전투화는 군인공제회를 포함한 10개 업체에서 생산 및 납품하고 있다. 이중 군인공제회가 60%를, 나머지 민간 9개 업체가 40%를 나눠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다. 연간 소요는 입대 인원 및 보충량 등을 합쳐 약 60만족으로,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36만족을 납품해 160여 억 원의 매출성적을 올렸다.

하지만 예비역 누리꾼들은 군인공제회의 이 같은 높은 점유율에 대해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발 제조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군에 납품해야 품질면에서도 좋아지고, 국고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점적 특혜는 구조적인 비리의 위험성을 낳

을 수 있다”며 “실제 비리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독점적 지위는 투명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국민적 정서에 오해의 여지를 제공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반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80년 대말 수출 및 내수증가로 국내 제화업체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자 가격이 낮고 품질이 까다로운 전투화 등 군납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 있었다. 당시 군에서는 전·평시 군의 안정적인 공급선이 필요했고, 군인공제회에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많은 설비에산까지 들어가며 제화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면서 “당연히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한 군인공제회에 일정부분의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때는 군에 납품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하던 업체들이 이제 와서 독점적 특혜니 뭐니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다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반경쟁 체제로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또 다른 예비역 누리꾼도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나 휴가를 나온 군인들의 첫 마디는 전투화다. 행군 때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뒹꾸치가 까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한번 물이 들어가면 마를 생각을 하지 않는 전투화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말한다. 물론 기본적인 전투화의 재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라도 알아주는 신발 생산국이다. 당연히 기존에 문제가 되어 온 방수 및 투습효과는 물론 발바닥과 뒹꾸치 부분도 보완된 제품이 나와 있다”면서 “하늘을 주름잡는 최신 전투기, 바다를 호령하는 거대 함정의 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방·투습이 가능한 전투화로 개선해줘야 보병이 주축인 국군의 전투력도 향상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강하게 역설했다.

이러한 예비역 누리꾼들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한마디로 ‘예산의 한계’임을 토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투화는 1족당 3만 7,000원에서 4만 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국회에도 예산 반영을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사 1인당 지급하는 전투화는 2족이다. 방수를 강조하다 보면 투습이 안 되고, 투습을 강조하다 보면 방수가 안 된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나눠 각각 2족씩 제공하면 좋겠지만, 병사들의 복무기간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마당에 이 모든 것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4만 원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전투화를 올해부터는 5만 원 정도의 가격수준 대까지 끌어올려 더욱 향상된 전투화를 공급할 계획이다”며 “중기계획 예산에도 이미 반영해 놓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지(「디앤디 포커스」)는 2008년 2월호 “군인공제회 군화납품 독점에 병사들 받은 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군인공제회 대양산업에 확인한 결과 다음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첫째, 군인공제회 대양산업은 1987년 국방부 지시로 설립된 전투화 전문 군수업체로서 생산능력의 50% 이하인 40여만 족 납품을 통해 176명의 직원과 200여 억 원의 생산 설비를 유지해야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취지와 목적을 간과한 ‘초특혜 대우’, ‘독점적 지위’라고 보도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둘째, 비영리 사단법인인 군인공제회 대양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9개 민간제화사와는 다른 국방부 산하기관으로서, 가격이 낮고 품질이 까다로운 전투화 사업을 20년 동안 선도해 오는 등 전·평시 전투화의 안정적인 조달로 국방에 기여해 온 한편,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국방부 감사 및 본회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4중으로 검증받고 있어 “투명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국민적 정서에 오해 여지를 제공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셋째, 군인공제회가 납품하는 전투화는 국방부 규격을 통과한 품질로서 원·부자재 입고 시부터 마지막 공정 완제품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방부 품

질기술원의 감사와 입회하에 이뤄지고 있어 납품 전투화의 품질에 문제가 없으므로 군인공제회의 전투화 독점으로 “병사들 받은 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군인공제회 군화납품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월호 94~99면 『군인공제회 군화납품 독점에 병사들 받은 열고 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첫째, 국방부에 납품되는 전투화 중 군인공제회 생산 전투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에는 봉합식 전투화 기준 60%이나 전체 전투화(봉합식과 사출식) 기준으로는 47%입니다.

둘째, 기사 중 ‘어느 사단장의 일기’에 나온 전투화는 이후 2004년 10월부터 방·투습기능이 개선된 전투화로 납품되었으며, 2008년 현재 다시 개량된 전투화가 시험 단계를 완료하는 중으로 2009년에 전군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셋째, 기사 말미의 전방 헌병대장 얘기에서 나오는 전투화는 전방 부대에 지급되는 방한화로서, 군인공제회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하여 국방부에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공제회에서 납품하는 전투화는 국방부 규격을 통과한 품질로서 원·부자재 입고시부터 마지막 공정 완제품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방부 품질기술원의 감사와 입회하에 이뤄지고 있어 납품 전투화의 품질에 문제가 없으므로

군인공제회의 전투화 독점으로 “병사들 받은 열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이 군 기요품목의 특수성에 인하여 시행되던 전투화의 수의계약 제도를 2009년 이후부터 경쟁 입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전투화를 군에 보급함과 아울러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상기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피신청인은 월간 디앤디포커스(D&D Focus) 2008년 8월호의 95면 이내에 제1항의 보도문을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중 첫머리의 「이슈분석」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중 “국방부는 최근 ‘2008년도 달라지는 업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지급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짚어봤다.”단락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아울러 보도문 제목(‘군인공제회 군화납품 정정보도문’)을 목차에 표시한다. (단, 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등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디앤디포커스 : 『군인공제회 군화 납품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호 81면)

수협중앙회가 예산을 남용하고 회계를 편법으로 운용하며
회장이 감사위원장 선출에 간여하는 등 독재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 종 구)
피신청인 : 수산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 일 : 2008. 6.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수산신문 : (1) 『지배구조 용역비 낭비 아닌가』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8일자 1면)

내 용 : 해양수산부가 얼마전 용역을 준 제묵에 토씨 하나 안 틀리는 용역을 수협중앙회가 석달 여만에 다시 다른 용역팀에 고액을 주고 의뢰해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이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용역은 수협발전방안 등에 관한 용역도 아니고 회장권한 등 중앙회 지배구조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수협중앙회의 예산 집행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 용역은 다른 것에 비해 용역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용역비 과다 집행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정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한국수산회에 ‘수협·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4천 7백만 원을 들여 6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달 17일간 용역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지난 2월 고대 유○○ 교수팀에 이와 관련한 용역을 다시 줬다. 용역 과제는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회에 용역을 준 ‘수협 지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제목 그대로다. 토씨 하나 안 틀리는 내용이다.

석달 10여 일만에 똑 같은 내용의 용역을 수협중앙회가 다시 준 것이다. 용역비는 한국수산회가 4달 17일간 용역을 해 4천 7백만 원을 받은 반면 고대 연구 용역팀은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간 용역하고 5천만 원(최종보고서 4월 4일 제출)을 받았다.

다른 내용이라면 몰라도 토씨하나 안 틀리는 제목의 용역을 해양수산부는 4달 10여 일만에 4천 7백만 원을 준 반면 수협중앙회는 한 달간 용역비로 5천만 원이라는 고액을 지불한 것이다. (후략)

(2) 『중앙회 회계 편법에 회의절차도 ‘독재적’』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5일자 1면)

내 용 : 이회장 동의 안건 아님에도 표결 없이 처리
 농림수산물부 관계자 “수협법 위반” 유권 해석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중앙회 회의를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찬반 투표를 해야 하는데도 회장이 찬반 토론이나 의결 없이 독선적으로 안건을 처리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5일 임시총회에서 의안 제3호로 사업계획변경(안) 및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인 양식보험특별계획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2억 9천 6백 46만 3천 원을 마땅히 지도사업 회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곧바로 관리비 분담금 및 지도사업 분담금 비용으로 편성했다. 이른바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구회장은 일부 조합장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찬반 토론이나 표결 없이 일부 조합장의 동의와 제청을 얻어 이를 처리했다.

수협법 제162에는 중앙회는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으며 정관 제81조에는 회장은 소관부문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확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다. 따라서 안건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찬반투표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날 이종구 회장은 차석교 인천수협조합장과 김성원 보령수협 조합장 등 일부 조합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회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를 받지 않고 동의 여부를 묻고 또 다른 조합장의 제청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장들은 “회장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을 처리했다”며 “독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후략)

(3)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감사위원장 선출 기획(?)』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6일자 1면)

내 용 : “중앙회장이 함께 일하자 한다며 추천 부탁”

공적자금 받은 기관에서 감사까지 좌지우지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선출과 관련, 최근 강만
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종친의 청탁을 받고 낙점했
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감사위원장 선
출에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간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 (후략)

(4) 『수협 최악의 시나리오 전면 부상』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9일자 3면)

내 용 : (전략)

최근 전남지역 조합장 대부분은 이종구 회장의
지역 홀대가 극심한데다 중앙회가 조합원들의 이
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라리 농협
과 통합하는게 낫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더
이상 이종구 회장의 능력부재와 안하무인적인 행
태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건 발단은 외형적으로는 김홍철 경제
대표 연임에 대한 전남 지역 조합장들의 요구가
무산된데다 최근 경제상임이사에 대한 조합장들의
의견마저 무시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듯이 보
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의 바닥에는 이종구 회장의
평소 행동이 깔려 있다는게 조합장들의 시각이다.
조합장들은 “마치 조합장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의 독선적인 행동과 그의 투명하지 못한 모습들
이 결국 조합장들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
라며 “자기편들을 적으로 모는 그의 리더십이 앞으
로 더욱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협중앙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의 지난 4월 28일자 1면 ‘지배구
조 용역비 낭비 아닌가’, 5월 5일자 1면 ‘중앙회
회계 편법에 회의절차도 독재적’, 5월 26일자 1면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감사위원장 선출 기획(?)’,
6월 9일자 3면 ‘수협 최악의 시나리오 전면 부상’
등 수협중앙회 관련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바
로잡습니다.

4월 28일자 기사 관련, 한국수산회는 학술용역
전문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수산인의 권
익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로서 수협에서 법학에 권
위가 있는 고려대학교를 용역 대상으로 선정하고
용역기간이 짧아지면서 단시간에 많은 인력이 투
입될 수 밖에 없어 용역기간이 길 때보다 상승하
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월 5일자 기사 관련, 수협 총회 의사진행과 관
련해 총회의 의사진행 방법(안건 심의 포함), 표결
순서, 표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협법이나 정관
등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의장으로서의 반드
시 회원의 제청을 기다려 동의를 성립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당시 의사록을 살펴 보면 회원으
로부터 수정제의가 있긴 했지만 수정제의에 대한
별도의 재청도 없었으므로 총회진행이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5월 26일자 기사 관련, 수협 감사위원장 선출은
별도의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의 호선에 의해 결정
되므로 직접 간여할 수 없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 및 한 감사위원의 발언만을 가지고
확인도 없이 단순히 이회장이 감사위원장 선출에
직접 간여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6월 9일자 기사 관련, 따라서 본 신문이 언급한
‘수협 최악의 시나리오 전면 부상’의 보도기사 밑
에 실린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의 사진은 기사 내용
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보성군이 2006년에 발주한 수해복구공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군수의 유세를 도와준 지주에 대한 보은성 특혜 공사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성군 (군수 정 종 해)

피신청인 : 해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해동일보 : 『수해복구 빙자 공사 발주 ‘물의’』 제하
의 기사 (2008년 5월 13일자 17면)
내 용 : <2008광주조정1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광주조정1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8광주조정1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해동일보 : 『보성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1일자 1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울 시청광장에서 전사자 위령제를 지낸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과 촛불집회 참가자의 충돌에 관해 보도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합뉴스 : 『특수임무수행자회-촛불집회 참여자 충돌...10명 연행』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7일자)
내 용 : 6일 저녁 서울 시청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72시간 촛불집회 참석자들과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
코뼈 골절 등 중상 1명, 경상 3명
서울광장에서 전사자 위령제를 지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측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려던 시민 사이에 6일 충돌이 빚어져 시민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철수하던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 10여명에게

72시간 연속 촛불집회에 참여하려던 일부 시민들이 “왜 이제야 나오느냐”며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자 흥분한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이 시민 5~6명을 마구 때렸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8년 6월 6일자 연합뉴스 특수임무수행자회-촛불집회 참여자 충돌...10명 연행-이를 바로잡습니다(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
• 내 용 : 사진이 본 내용과 사실과는 무관하며 행사를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대치시 급박한 상황에 나온 동작일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이를 여과 없이 기사화 시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7월 4일까지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정보

도청구 및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미용실 여사장인 유부녀와 불륜 관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충청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3.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충청매일 : 『청주대 교수와 40대 유부녀 친구인가? 불륜인가?』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2일자 3면)

내 용 : 청주대학교가 요즘 중년의 대학교수와 학교 앞 미용실 여사장의 ‘불륜’ 관계의 진위 여부를 놓고 시끌벅적하다. 이들의 사이가 단순히 ‘절친한 친구’ 정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로맨스를 가장한 ‘불륜’ 인지를 놓고 학내가 시끄럽다. 국내에서 수년 전 상영됐던 영화 제목을 모방한 이른바 ‘대학교수의 은밀한 매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내에 퍼져 있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며느리가 청주대의 한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대학을 찾아가 문제의 ‘Q 교수’에게 울분을 토하는 광경이 학생들에게 목격되면서 발단이 됐다. Q 교수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처신을 학내에 알리겠다는 시어머니의 학교 방문은 이후에도 수차례 이어졌고 그때마다 교수들은 물론 학생들의 ‘카더라’ 통신은 꼬리에 꼬리를 물

고 퍼져갔다. 급기야 대학 측도 이런 소문을 알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바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편은 청주대 총장 앞으로 ‘Q 교수가 행복한 가정을 파탄 시켰다’는 내용의 사연까지 보내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교수와 미용실 여사장, 남편 등에 따르면 Q 교수는 1995년 청주대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당시 30대 유부녀를 만났다. 처음 손님과 사장으로 만난 이들은 일정 거리를 유지해 오다 유부녀의 대학논문 등을 도와주면서 급격하게 친밀한 사이로 발전해 갔다. 이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이어오다 2005년 10월 7일 밤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간통죄’로 신고한 남편과 경찰에 의해 현장이 잡혔다.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 가출을 하는 등 평소 보이지 않던 행동을 보이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의 미행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남편은 이날 현장에서 붙잡힌 교수와 아내가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용서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청주대 교수의 불륜 기사 사실과 달라 (또는 청주대 교수의 불륜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2일자 사회면에 “청주대 교수와 40대 유부녀는 친구인가? 불륜 관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2005년 10월 7일 청주대

교수와 미용실 여사장의 불륜현장이 잡힌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미용실 여사장 K씨의 남편 Y씨(46세, 제천세무서 공무원)는 수차례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기 사건 당일에도 K씨는 집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로 얼마동안 동생 집에 기거하다가 부득이 월세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주대 교수는 위 미용실 고객으로 K씨와 처음 알게 되어 K씨의 대학논문을 도와준 적이 있었을 뿐인데, 당일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던 K씨의 전화를 받고, 통화내용으로 보아 K씨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K씨를 설득하기 위해 월세 방을 잠시 방문했다가 뜻하지 않게 남편 Y씨와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으나, 불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K씨가 Y씨에게 이혼을 통보하자, 당황한 Y씨가 수차례 K씨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이에 K씨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당일 Y씨가 간통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Y씨는 본인이 내쫓은 K씨와 청주대 교수가 결백한 사이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본지에 제보하였고, 본지에서는 정확한 확인없이 이를 보도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청주대 교수의 불륜 기사 관련, 불륜이라는 확증은 없어
- 부 제 : 논문 관계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 본 문 : 본지가 지난 5월 22일자 3면에 “청주대 교수와 40대 유부녀는 친구인가? 불륜관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중 ‘처음 손님과 사장으로 만난 이들은...급격하게 친밀한 사이로 발전해 갔다’, ‘간통죄로 신고한 남편과 경찰에 의해 현장이 잡혔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며 ‘남편은 현장에서 불

잡힌 교수와 아내가 무릎을 꿇고 자신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용서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편이 “이후에도 지속됐던 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만한 사진등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한 내용도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아닌 자료임이 밝혀졌습니다.

청주대 교수는 ‘미용실 여사장 K씨의 남편 Y씨는 수차례 가정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기 사건 당일에도 K씨는 집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로 얼마동안 동생 집에 기거하다가 부득이 월세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으며, 청주대 교수는 위 미용실 고객으로 K씨와 처음 알게 되어 K씨의 대학논문을 도와준 적이 있었을 뿐인데, 당일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던 K씨의 전화를 받고, 통화내용으로 보아 K씨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K씨를 설득하기 위해 월세 방을 잠시 방문했다가 뜻하지 않게 남편 Y씨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당시 K씨가 Y씨에게 이혼을 통보하자, 당황한 Y씨가 수차례 K씨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해달라고 간청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일 Y씨가 간통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매일 2008년 6월 24일자 3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과 부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중간제목 (총장에게 진정서 전달...)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체로 한다.

• 이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손해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청매일 : 『청주대 교수의 불륜 기사 관련, 불륜이라는 확증 없어 논문관계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4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할 수 있음에도 구의원인 신청인의 겸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익 성

피신청인 : 인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신문 : 『현역 구의원 겸직 논란 의원 보좌관』 제
하의 기사 (2008년 6월 9일자 2면)

내 용 : 현직 구의원이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
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의 한
나라당 조진형(부평 갑) 국회의원 보좌진영 현황
에 따르면 이익성·이○○ 등 2명의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및 6·7·9급 비서 각각 1명 등 총 6명
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이익성 보좌관의 경우 현재 부평구 의
회 부의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구의원이 국가공무
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보좌관에 갈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35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국가공
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된 탓에 이 의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4급 보좌관에 등록하는 데
대해 지방의원의 직무 전념에 대한 의무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단,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됐지
만, 구의원 세비와 함께 보좌진 월급을 받는 등 이
중 급여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익성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구의
원과 보좌관의) 겸직이 가능하다”며 “입법보좌관
은 국회에 주로 근무하고, (자신은) 정부와 관련된
일을 주로 맡게 되는 정무보좌관으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은 지방의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역 구의원 의원 보좌관 겸직논란 사
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9일자 종합면에
‘현역 구의원 겸직논란 의원 보좌관’이라는 제목
으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으로 재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방의회 의원
이 법적 겸직이 가능한 직을 겸직할 수 없는 것으
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였고 법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겸직을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등 당사자
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보도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방의회 의원 등은 지
방의회 의원직 외에도 「지방자치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좌진으로 등
록하고 있는 등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이
를 바로잡습니다. □

대학 내 나홀로족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학교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안 ○ ○

피신청인 : 계명대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계명대신문 : 『新 철저한 시간관리 나홀로족 증가』
제하의 사진 및 기사 (2008년 6월 9일자)
내 용 : 신○○(경영학·3) 씨는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때가 없어 불편하지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고 말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강의실에 홀로 앉아 수업을 듣는 사람, 휴게실에 앉아 혼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는 사람, 노트북에 열중해 있는 사람, 교내 테이크아웃 커피숍에서 탁자 위에 커피 한잔을 올려놓고

책을 읽는 사람 등 혼자서 대학생활을 즐기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을 나홀로족이라 부른다.

나홀로족은 주위에 친구가 없거나 사교성이 부족한 왕따나 아웃사이더와는 다른 개념으로 바쁜 대학생들이 오로지 자신의 스케줄대로만 생활하기 위해 선택한 생활양식의 하나이다. 타인과 함께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어 공부, 취미생활, 쇼핑, 식사 등 일과의 대부분을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가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현대차 파업 21년만에 첫 부결 민노총 ‘정치파업’ 현장 냉기류』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1면)
내 용 : 법적 가결요건인 ‘조합원 과반 찬성’ 충족 못해
현대차노조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 가결” 주장
민노총 1차투표 조합원 대비 찬성률도 30%대
현대자동차 노조가 1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내세운 총파업 찬반투표를 했지만 찬성이 조합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총 산하인 현대차노조가 1987년 출범 이후 쟁의행위와 관련해 실시한 투표가 사실상 부결된 것은 21년 만에 처음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조합원 3만 8637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만 1618명, 반대 1만 6813명으로 투표자의 55.9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온 조합원이 4만 4566명(1월 10일 현재)이므로 실제 찬성률은 48.5%에 그친다. 회사가 파악한 조합원(4만 4700여명)을 근거로 환산하면 찬성률은 48.36%가 된다.

노동부는 쟁의행위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관계법 조항을 근거로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는 법적으로 부결됐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파업 강행을 결정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지부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이 전체 조합원 81%를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1차 찬반투표에서도 찬성표가 과반이 안 됐지만 민주노총은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81%(51만 1737명)를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1차 총파업 찬반투표를 10일~14일 실시한 결과 27만 1322명(53%)이 참여해 그 가운데 70.3%(16만 9138명)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차 투표 대상자 중 찬성표 비율은 30%에 불과해 법적 가결 요건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한 나머지 조합원(11만 8546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투표에서 찬성표가 100% 나와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안 된다. (후략)

(2) 『‘노조 출범후 첫 쟁의투표 부결’ 현대차 표정』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3면)

내 용 : “대다수 조합원의 정서를 무시하고 민주노총이 정치파업 투표를 강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등을 위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16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로 나오자 한 조합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투표 결과를 외면하고 노조가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내부 반대에 부딪쳐 내분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금속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가결

• 부 제 : 찬성 투표 57% 가결

• 내 용 : 본 신문은 6월 17일자 1면에 ‘현대차 파업 21년 만에 첫 부결 민주노총 ‘정치파업’ 현장 냉기류’라는 제목과 ‘법적 가결요건인 ‘조합원수 과반 찬성’ 충족 못해’라는 부제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파업찬반투표가 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기업별 노조였던 현대차노조는 없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현대차노조가 산별전환투표를 실시해 금속노조에 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차노조가 아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입니다. 둘째, 투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한 지부입니다.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금속노조가 실시한 것이며, 투표 결과도 금속노조의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6월 14일까지 실시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재적인원 143,619명 중 121,748명이 투표를 해서 81,867명 재적인원의 57%가 찬성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규약에 따라서 쟁의행위 가결 요건을 갖췄습니다. □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가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7.

처리결과 : 취 하

조선일보 : 『현대차 노조 총파업 부결』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1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가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일 : 2008. 6.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일보 : 『현대차노조 ‘쇠고기 파업’ 부결』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1면)
 내용 : 〈2008서울조정1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목 : 알려왔습니다
- 내용 : 6월 17일자 1면 〈현대차노조 ‘쇠고기 파업’ 부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

은 “현대차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정식 명칭이며,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한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파업권한이 없고, 금속노조의 이번 총투표는 57%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A2면에 2008년 7월 10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앙일보의 통상적인 반론 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20면)
 내용 : 〈합의사항 참조〉 □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가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IV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4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일 : 2008. 6.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매일경제 : 『한국 정치파업 시대 끝나나』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1면)
 내용 : 〈2008서울조정1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매일경제 : 『현대·기아차 이달 4번째 파업』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9일자 기업면)
 내용 : 현대·기아자동차가 18일 이달 들어 네 번째 부분파업을 단행해 공장 생산라인이 일시정지됐다.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이달 들어 현대·기아차 파업 손실액은 3,400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 GM대우와 쌍용자동차 생산라인은 정상 운영돼 이번 금속노조 파업도 현대·기아차 주도로 이뤄지게 됐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과 19일 주·야간조

가 각각 8시간씩(잔업 2시간씩 포함) 총 1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주·야간조 모두 2시간 정도만 근무한 뒤 파업에 들어가는 셈이어서 거의 전면파업에 가깝다.

현대차 사측은 이날 장시간 부분파업으로 5,676대 생산차질이 발생해 총 878억 원의 매출차질을 예상했다. 이달 들어 네 차례 부분파업으로 현대차는 총 1만 5,514대 차량생산 차질과 2,387억 원 생산손실을 입은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부분파업으로 총 3,000억 원 파업손실을 입었다.

현대차가 앞으로 한두 차례만 더 부분파업을 하더라도 파업손실액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도 이날 잔업을 포함해 주·야간 8시간씩 총 16시간 파업에 나서 2,800여 대(370억 원)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줬다. 이달 들어 파업에 따른 기아차 누적 생산차질액은 1,020억 원으로 치솟았다.

한편 향후 투쟁 일정과 관련해 금속노조가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 현대·기아차지부 부분파업 강도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금속노조는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부인 현대차노조의 투표가 부결된 것만을 부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V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현대차노조 ‘쇠고기 파업’ 부결』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1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6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6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한국경제 : 『현대차노조 지부장 “소환 불응”』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5일자 10면)

내 용 :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 당시 현대차 생산라인을 주야간 2시간씩 중단시킨 혐의(업무 방해 등)로 수사받고 있는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검찰과 경찰의 소환에 불응키로 해 검·경의 검거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대차지부 윤혜모 지부장(노조위원장)은 4일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일 중앙교섭쟁취와 2008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진행한 부분파업은 합법 파업인데도 검·경이 무조건적인 불법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윤 지부장은 또 “중앙교섭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강한 투쟁이 불가피하며 모든 투쟁 일정은 금속노조 방침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이 같은 소환 불응 방침에 대해 울산동부서는 이날 윤지부장 등 15명의 노조 간부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

신청인이 경북조은뉴스의 운영권과 재산권을 탈취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6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청인 : 강 ○ ○
 피신청인 : 경북조은뉴스
 중재부 : 대구중재부
 접수일 : 2008. 6.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북조은뉴스 : 『e조은뉴스 대표 강○○ 사기 및 갈취범으로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11일자)

내용 : 경북조은뉴스 발행인 윤학수 씨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지난 2월 11일 e조은뉴스 대표 강○○ 이를 상대로 사기 및 갈취,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략)

피고소인 강○○은 죽은 강○○ 이에게 구매한 경북e조은뉴스 운영권(일명 판매기)의 비밀번호를 바꿔 고소인의 재산권을 탈취함에도 모자라 고소인이 별도로 구입한 경북e조은뉴스 제호 한글도메인을 김천e조은뉴스라고 임의대로 바꾸고 약을 올리듯 지사모집 광고를 하고있음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인터넷 경북e조은뉴스 한글도메인(네티피아)과 지금사용 중인 연결고리인 www.kb.e-goodnews.co.kr 영문도메인(가비아) 모두는 윤○○ 씨가 돈을 주고 구입한 고유 주소로서 강○○이는 형이 팔아먹은 집까지 뺏다 못해 살림살이까지 뺏는 날강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중략)

또한 죽은 강○○이에게 2005년 5월 26일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경북 경산휴게소에서 현금 지급한 영수증 금액과 차후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갈취한 행위로 즉 집을 팔아 놓고 집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다하게 월 관리비를 챙기려는 행위에 투명성을 요구하며, 그동안 기본 관리비를 성실히 보태준 본인에게 집 열쇠(비밀번호 바꿈)를 갈취해 가고도 살림살이까지 뺏어간 경우로서 가장 정직하며 올바른 사고로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언론사주가 비윤리적 비인도적 행패로 여러 지사장으로부터 고소나 당하고 있음으로 해서 본인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故 강○○ 동생 강○○이를 사기 및 갈취,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e좋은뉴스 대표 고소사건 관련 추후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2월 11일 『e조은뉴스 대표 강두용 사기 및 갈취범으로 고소 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e좋은뉴스 대표인 강○○ 씨가 경북조은뉴스의 시설투자비를 횡령하고 운영권과 재산권을 탈취해오다 경북조은뉴스로부터 사기 및 갈취,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의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e조은뉴스 대표 고소사건 관련 추후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지난 2월 11일 『e조은뉴스 대표 강두용 사기 및 갈취범으로 고소 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e조은뉴스 대표인 강○○ 씨가 경북조은뉴스의 시설투자비를 횡령하고 운영권과 재산권을 탈취해오다 경북조은뉴스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의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29일자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경북조은뉴스(<http://www.kbgoodnews.co.kr>)의 초기화면 중앙상단 아래로 위 보도문의 제목을 2008년 7월 2일 09:00부터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e조은뉴스 대표 강○○ 사기 및 갈취범으로 고소 당해)의 제목 및 본문과 같게 하고,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는 자체 기사서버에 보관한다.

• 피신청인은 경북조은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e조은뉴스 대표 강○○ 사기 및 갈취범으로 고소 당해) 본문 하단에 단락을 구분하여 위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게 한다.

화학섬유노조연맹 소속 15개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상 진)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퇴의 성격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화섬연맹 굿바이 민주노총' 기사는 오
보
- 부 제 : 산별노조 전환 거부하며 사실상 민주노
총 탈퇴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6월 17일자 A4면에 '화섬연
맹 굿바이 민주노총'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
습니다.

본 신문은 보도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소
속 15개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사실상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화학섬유연맹 소
속 사업장 중 민주노총을 탈퇴한 조직은 없음이 확
인되었습니다. 또한 보도 제목에서 『화섬연맹 “굿바
이 민주노총”』으로 표현하여 화섬연맹 전체가 마치
민주노총과 결별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안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을 바로잡습니다.

둘째, 보도에서는 화섬연맹이 '산별노조 전환과
의무금 납부를 거부'해 온 것을 이유로 15개사에
제명 통보를 내렸다고 하였는데, 제명 이유 중 산
별전환 거부를 이유로 제명한 사실은 오보였습니
다. 화섬연맹은 지난 5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맹 의무금을 장기 미납하고
사업결합을 중지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제명한
것이지 산별전환을 거부했다고 제명한 것은 아니
었습니다.

셋째, 보도 내용 중 '화섬연맹은 LG화학(대산지
부), 호남석유 등 10여개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통보를 내릴 방침'으로 표현하였으나 이 역시 사

보도내용

동아일보 : 『화섬연맹 “굿바이 민주노총”』 제하의 기
사 (2008년 6월 18일자 A1면 및 A4면)

내 용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소속 15개 노조
가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사실상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별 상황이나 노사관계를 고려하지 않
은 산별노조 전환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
이 나온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연맹은 최
근 산별노조 전환과 의무금 납부를 거부해온 산하
노조 중 롯데대산유화 등 15개 노조에 제명 통보
를 내렸다.

화섬연맹은 또 LG화학(대산지부)과 호남석유화
학 등 10여 개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통보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연맹은 이미 제명 통보를 한 15개 노조에
대해 20일까지 미납한 의무금을 내면 조치를 철회
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노조들은 응하지 않겠다
는 방침이다.

노조들이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고 자발적인
의무금 납부를 거부해 제명된 것은 사실상 자진탈

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오보였습니다. 화섬연맹은 가맹조직에 대한 추가 징계방침을 정한 바도 없고 검토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같은 날짜 1면 좌측 상단 기사 내용 중 ‘화섬연맹 15개사 민노총 탈퇴’라는 소재목 역시 사실 확인이 안된 오보였습니다. 15개사는 징계 제명을 당한 사업장이며 이들 중 일부는 미납의무금을 납부하여 제명조치가 철회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6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상 진

조정대리인 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8년 7월 31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2008년 6월 17일자 A1면)의 중간제목(“화섬연맹 15개사 민노총 탈퇴”)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a.com)에 게재된 조정대

상기사(2008년 6월 17일자 A4면 「화섬연맹 “굿바이 민주노총”」)의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4.

<별 지>

• 제 목 : 화섬연맹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 6월 17일자 A1면 및 A4면 『화섬연맹 “굿바이 민주노총”』 기사에서 민주노총 화섬연맹 소속 15개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과 의무금 납부를 거부하여 사실상 민주노총을 탈퇴했으며, 화섬연맹은 다른 10여 개 노조에 대해서도 제명 통보를 내릴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화섬연맹은 민주노총과 결별할 의사가 없고, 15개 노조 중 10개 노조는 의무금을 납부하여 제명이 철회됐으며, 최종적으로 제명된 노조는 5개이며 해당 노조들 모두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다른 노조에 대한 추가 징계 방침은 없으며 실제로 추가 징계된 노조도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1일 2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화학섬유노조연맹 소속 15개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7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상 진)

피신청인 : 서울경제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1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경제 : 『화섬 30개社 민노총 사실상 탈퇴』 제하
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26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6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6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8년 6월 17일자 26면 「화섬 30개社 사실상 민노총 탈퇴」 제하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후속보도 하되 아래의 사항이 정정과 반론의 형식으로 포함되도록 한다.
- 화섬연맹이 지난 5월 21일자로 제명 통보한 16개사 노조들 중 11개 노조가 미납금 납부로 제명이 철회되었고 최종적으로 5개 노조만이 제명이 확정되었다는 사항
- 다른 노조에 대한 추가 징계방침이 없으며 실제로 추가 징계된 노조도 없다는 사항
- 제명이 확정된 5개사 노조들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견해차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항.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7월 21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사회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

제목활자크기보다 크게 하되 통상적인 2단 제목크기보다 작지 않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economy.hankooki.com/>)에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경제 : 『정식품 등 5개사 노조 화섬연맹서 제명』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8일자 26면)

내 용 : 6개월째 의무금 납부 거부

정식품 등 5개사 노조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에서 최종 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섬연맹은 최근 6개월째 의무금을 내지 않은 이유로 정식품·한국네슬레·롯데대산유화·아세아산업개발·서울의류업 등 5개 사업장을 제명하는 징계조치를 확정 지었다. 화섬연맹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21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롯데대산유화 등 16개사 노조에 제명조치를 통보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에 밀린 의무금을 납부하면 징계를 철회하도록 했지만 이들 5개사는 끝내 의무금 납부를 거부했다. 나머지 11개사는 의무금을 다시 납부함에 따라 제명조치가 철회돼 화섬연맹 소속으로 남게 됐다.

당초 화섬연맹은 다른 노조까지 추가로 제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5개사를 제외하면 실제 추가로 징계를 받은 노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섬연맹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5개사 노조가 제명된 것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

화학섬유노조연맹 소속 15개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 상 진)
피신청인 : 한국경제
종 재 부 : 서울제1종재부
접 수 일 : 2008. 6. 1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1) 『화섬 16社 사실상 민노총 탈퇴』 제하
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A1면), (2)
『화섬연맹 산하 30개 노조, 산별전환 거
부 왜?』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
자 A5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6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6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167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의무금 납부 거부 롯데대산유화 등 5개
社 민노총 화섬연맹서 최종 제명』 제하
의 기사 (2008년 7월 1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촛불집회 참석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6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1인
피신청인 : 동아일보
종 재 부 : 서울제2종재부
접 수 일 : 2008. 6.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외부세력이 정연주 사수 위해 촛불 악용”』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8일자 5면)
내 용 : KBS 노동조합이 17일 성명을 내고 정
연주 사장을 옹호하는 KBS 본관 앞 촛불집회에
개입하는 외부 세력을 강력 비판했다. KBS 노조는
11일부터 잇달아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를 동영상
촬영 등으로 분석한 뒤 통합민주당과 대표적인 친
노무현단체인 ‘국민참여1219’가 시위에 적극 개입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략)

특히 노조는 민주당과 ‘국민참여1219’가 KBS PD
협회와 KBS 기자협회 등 사내 일부 직원과 연계
돼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다.

노조에 따르면 양○○ PD협회장이나 기자협회 김○○(미디어포커스 진행자) KBS 지회장 등 협회 간부들이 거의 매일 집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술잔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노조관계자는 “6mm 카메라로 집회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했더니 촛불집회 참가자 300~400명 중 10%인 30~40명은 정 사장을 지지하는 KBS 직원”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PD협회가 11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촛불이 KBS를 지켜줄 것’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그날 밤부터 촛불집회가 열린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촛불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KBS앞 촛불집회 참가자들 술잔 기울인적 없어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8일자 5면에 “외부세력이 정연주 사수위해 촛불 악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양○○ KBS PD협회장과 김○○ KBS 기자협회장이 KBS앞 촛불집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술잔을 기울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들 협회장들은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며, 다른 참가자들 역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 집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굿뉴스강남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굿뉴스강남 : 『전교조 국장 “북한은 천국”』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4일자 정치면)

내 용 : 탈북자들이 1만 5,000여 명이나 있는 이남한 땅에서 북한의 거짓 선전을 그렇게 충실히 이행하는 자가 있으니...

최근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2001년 8. 15 때 평양을 다녀왔다는 ‘전교조 통일국장’ 이○○이라는 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북한은 천국입니다. 세금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학비가 있습니까? 정부가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주니 빈부격차도 없고 불평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라비틀어진 소린가. 탈북자들은 물론 북한주민들도 거짓말중의 거짓말이라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남한 주민이, 그것도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사가 앵무새처럼 읊고 있으니 말이다. 세금이 없고, 치료비가 없고, 학비가 없는 세상... 있을 법도 않은 이야기지만 북에서 생활할 때는 얼마나 귀 따갑게 들어온 말인가.

한때는 나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같은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해온 바 있다. 그것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노동당 대외사업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처럼 대외무역 같은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만날 때 반드시 위와 같은 ‘대외선전’을 해야 했고, 대외선전의 능수가 되지 않으면 무역은 고사하고 철직당할 위험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실을 북한을 드나들던 외국인들도 모를 리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우리도 알 것은 다 알고 있으니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하곤 했다. 그런데, 이제 사람 못살 인간 생지옥이라 저주하며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1만 5000여 명이나 있는 이 남한 땅에서 북한의 거짓 선전을 그렇게 충실히 이행하는 자가 있으니 세상을 개탄해야 할지, 인간의 죄를 따져야 할지가 혼돈스럽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교조 국장 “북한은 천국” 발언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 내 용 : 6월 14일 김○○(자유북한방송)이 작성하여 올린 [전교조 국장 “북한은 천국”]이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 씨가 “북한은 천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하여 굿뉴스강남은 전교조와 이○○ 씨에게 깊이 사과하며, 동 기사를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굿뉴스강남은 지난 6월 14일 김○○ 씨가 작성한 <전교조 국장 “북한은 천국”> 제하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이장원씨가 “북한은 천국”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씨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 전제시 사실관계의 확인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이○○ 씨와 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해당 기사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7월 14일부터 2008년 8월 14일까지 굿뉴스강남의 초기화면의 목록에 상기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굿뉴스강남 : 『“알려드립니다” 6. 14일 “북한은 천국” 발언 유무 확인미흡 유감』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4일자 정치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알뜰장터와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보증금을 누락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송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김 ○ ○)
2. 김 ○ ○
3. 김 ○ ○
피신청인 : 의정부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의정부신문 : 『송산주공2단지 알뜰장터 보증금 500만 원 어디로 갔나?』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9일자 1면)

내 용 : 의정부시 송산주공2단지아파트 구)임차

인대표회의가 투명하지 못한 회계결산(4월 26일 인터넷 보도)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임차인대표회의가 아파트 알뜰장터 보증금을 올려 받고도 계약서상에는 안 올려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송산주공2단지 알뜰장터는 6개팀(생선, 과일, 건어물, 먹거리, 공산품, 야채)이 매주 목요일 장을 열고 있다.

송산주공2단지아파트 구)임차인대표회의는 매주 아파트단지에 들어오는 알뜰장터와 관련해 2008년 1월경 알뜰장터팀과 소모성보증금 1,500만 원(2007년 동일금액)에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단지안에 알뜰장터를 허가했다. 본지 취재결과 2008년도 알뜰장터 보증금에 있어 각 업체가 부담한 금액은 총 2,000여만 원으로, 각 업체가 팀장에게 300~400여만 원을 현찰로 전달하고, 팀장은 이렇게 모인 보증금을 구)임차인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송산주공2단지 알뜰장터 보증금 500만 원 어디로 갔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9일자 제1면에 '송산주공2단지 알뜰장터 보증금 500만 원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으로, 송산주공2단지아파트 구)임차인대표회의가 2008년 1월경 알뜰장터팀과 소모성보증금 1,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지 취재 결과 총 2,000여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구)임차인대표회의는 2008년도 알뜰장터 보증금으로 계약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9일자 1면 『송산주공2단지 알뜰장터 보증금 500만 원 어디로 갔나?』라는 제목으로 송산주공 2단지아파트 구)임차인대표회의 2008년 1월경 알뜰장터팀과 소모성보증금 1,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지 취재 결과 총 2,000여만 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구)임차인대표회의는 2008년도 알뜰장터 보증금으로 계약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의정부신문 2008년 7월 3일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업체별로 받은 보증금 2,000여만 원, 구)임차인대표회의에게 전달한...)과 같게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합의사항을 2008년 6월 26일자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의정부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주택재개발조합장의 친동생인 신청인이 조합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금정구청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최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8. 6. 23.
처리결과 : 취 하

한편 조합원 ○씨는 “조합장의 친동생 ○씨가 조합에서 일을 하다 어느날 갑자기 금정구청장의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었다”며 “이것이 조합의 편의를 보기 위해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경향신문 : 『‘장전 1-2’ 재개발 강제철거 물의』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3일자 W3면)

내용 : 조합원들과 민·형사 소송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장전1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장전1-2 재개발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로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장전1-2 조합원에 따르면 장전1-2 재개발조합이 2007년 4월 5일 관리처분인가 이후 많은 수의 조합원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철거를 단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제 목 : 장전1-2 재개발 강제철거 물의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3일자 W3면에 “‘장전1-2’ 재개발 강제철거 물의”이라는 제목의 기사 말미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조합장의 친동생 ○씨가 조합에서 일을 하다 어느날 갑자기 금정구청장의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었다”며 “이것이 조합의 편의를 보기 위해 알박기 인사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삭제하여 정정 바로 잡습니다. □

여경기동대 소속 순경인 신청인이 쏫불시위에 참가한 여성 장애인의 머리를 붙잡고 연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2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이 ○ ○
피신청인 : 민중의 소리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8. 6. 2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하고 있다. 이 여성은 이 때 경찰이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당겼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 『장애인 폭행 논란...“경찰이 머리카락 잡아챘다” 경찰, 브리핑 열고 “그런 적 없다” 반박』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6일자 17:29)

내용 : 지난 25일 새벽, 여성장애인 강 아무개 씨, 강 씨는 이날 전동휠체어를 탄채로 머리카락을 잡혔다고 주장한다.

“쏫불문화제에 참석한 장애여성의 머리를 경찰이 잡아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26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민○○ 경비과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민중의 소리>가 25일 보도한 사진의 출력물을 들어 보이며(위 사진) “최근 한 인터넷 매체

보도내용

민중의 소리 : (1) 『쏫불참가자들 “청와대로...청와대로...”』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5일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

내용 : 경찰이 여성참가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연행하고 있다.

경찰이 휠체어에 탄 쏫불시위 참가 여성을 제압

에서 보도한 사진에서 장애여성의 머리를 잡아챘다고 보도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민 과장은 “자체 조사결과 이 사진은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여성을 인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경의 팔목을 물어서, 이 여경이 팔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라며 “사진 전문가의 판독까지 거쳐 확인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강 아무개(43세) 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씨는 <민중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머리카락을 분명히 잡혔고 심지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고 발끈했다.

그는 “평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팔에 보조기를 차고 있었는데 여경들이 심하게 팔을 비틀고 잡아서 놓으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들으니까 물기도 했다”면서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니까 한명이 머리카락을 잡아챘다”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찰이 여성참가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연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보도는 지난 5월 25일자 면에 「촛불 참가자들 “청와대로... 청와대로...”」라는 제목으로 시위대에 손 물린 여경이 손 빠는 장면을 (주)민중의 소리 인터넷 진보언론사 전○○ 기자가 촬영 후 동 인터넷 사이트에 “경찰이 여성참가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연행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붙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진의 당사자는 머리채를 잡아챈 것이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입을 막은 본인의 손가락을 물어 황급히 빼 내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머리채 잡는 경찰’ 정정보도문
- 본 문 : 지난 5월 25일자 본지 기사 중 경찰이

촛불시위에 참가한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연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진과 관련해, 사진에 나온 경찰이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사진과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경찰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는 국민축제로 승화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취재·보도하였으며, 전체 또는 특정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민중의 소리’(www.vop.co.kr)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날 정오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최소 24시간 이상 위 보도문을 고정하여 게재(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보이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기사와 동일하게 함)하되, 게재 위치는 답해드라인 아래 10번째 이내로 하고 이후에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한다.

• 피신청인은 민중의 소리에 보관되어 있는 첫 번째 조정대상기사(「촛불참가자들 “청와대로...청와대로...”」)중 조정 대상 사진을 사진 설명과 함께 삭제하고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 항의 제목과 본문을 삽입하며, 두 번째 조정대상기사(「장애인 폭행 논란...“경찰이 머리카락을 잡아챘다”」)를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각종 포털 사이트를 검색시 나오는 동일한 사진 및 기사에 대해서도 위 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신청인이 구체적인 인터넷 주소를 명기하여 민중의 소리 대표 메일주소로 요청할 경우 같은 사진 또는 기사가 게재된 각종 블로그 및 개인 홈페이지 등 외부 홈페이지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되, 신청인이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15일까지에 한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7월 8일 정오까지 이행하며, 위 항의 본문은 2008년 7월 25일까지 이행한다.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각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기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민중의 소리를 대표해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저희 민중의 소리 5월 25일자 사진 및 후속 보도와 관련하여 단정적인 사진 설명으로 이

현승 순경님께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는 국민축제로 승화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취재·보도하였으며, 전체 또는 특정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이순경님께 정신적으로 고통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중의 소리는 앞으로도 국민의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목소리가 잘 전달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모두 이행하

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고, 피신청인 및 담당 기자 등 소속 임직원에게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민중의 소리 : 『바로잡습니다』 ‘머리채 잡는 경찰’ 관련』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18:46)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울대 총학생회가 ‘미국산 쇠고기 반대’ 목적 이외의 촛불집회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학생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자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전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시스 : 『‘정치쟁점’ 촛불집회 총학생회 행보 엿갈려』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9일자 19:08)

내 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정치적 의제로 확대해 촛불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학 총학생회의 집회 참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19일 촛불집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전개될 경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동맹휴업에 동의한 사안은 쇠고기 수입 재협상 문제만 해당된다”며 “20일 이후 광우병 대운하, 의료 민영화 등 새로운 쟁점까지 포함된다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학 측은 이같은 입장이 왜곡, 전달되면서 학생들로부터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날 서울대 기자실에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에 대해서 총투표가 통과된 만큼 다른 정치 이슈를 다루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고려대와 숭실대 총학생회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대 총학, 기자실 방문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보도

• 내 용 : 지난 6월 19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는 “정치쟁점, 촛불집회 총학생회 행보 엿갈려”라는 제목으로 대학 총학생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에 보도된 학생회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① 전날(18일) 밝힌 입장이 과장, 왜곡되어서 진의를 다시 전달하고자 ② 또한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기자실에 직접 방문하여 간단한 브리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뉴

시스'는 학생들의 비판 여론에 의해 방문한 것으로 보도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언론 브리핑이,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등 떠밀리듯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서울대 총학생회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 지난 6월 19일자 「'정치 쟁점' 촛불집회 총학생회 행보 엇갈려」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대 총학생회가 촛불집회 불참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총학생회는 전날(18일) 밝힌 입장에 대한 보도가 과장·왜곡되어 진의를 다시 전달하고자 자발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일 뿐 학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6월 30일 09시부

터 6월 30일 18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뉴시스> 인터넷 홈페이지(www.newsis.com) 사회 섹션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상위 15번째 이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서울대 총학생회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30일자 08:4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대통령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촛불시위 배후세력은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친북세력' 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명 박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이 대통령 “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7일자)

내 용 : ▲이명박 대통령, 불교계 대표 초청 오찬 이명박 대통령이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등 난국을 타개하기위해 각계 지도층의 의견 청취에 들어간 첫날 청와대에서 불교계 대표들과 만나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것 같다. 한총련도 노무현 정부 때는 활동하지 않았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해 빈축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이 또 다시 촛불시위 배후세력론을 설파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또 청와대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브리핑에서 제외한 채 기

자들에게 전달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배후세력을 “주사파와 친북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불교계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모임의 한 참석자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얘기 듣기보다 자기 얘기 하기에 바빴다”

청와대의 공식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6·25 전사자 가족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 설명, 물가와 서민고통, 수도 민영화 루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현 정국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간담회 내용을 전달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불교계 지도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힘을 내라’고 덕담했고, 대통령은 ‘고맙다’고 화답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참가했던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우리 얘기를 듣겠다고 해서 갔지만 정작 대통령은 우리 얘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얘기를 하기에 바빴다”며 “스님들의 얘기에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쇠고기 재협상’과 ‘대운하 포기’ 같은 불교계의 뜻을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표실했다.

불교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정부 때는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 같다”며 “이 사람들이 뒤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쪽과 연계된 친북세력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총련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활동하지 않았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해 이들이 촛불시위 배후세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는 것.

이에 불교계 참석자들은 “국민들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와 대운하 문제로 민란 수준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쇠고기 재협상과 운하 중단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사과한 뒤 새로 국정운영을 시작하라고 충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하면 된다”며 “소나기 올 때는 언제나 피해야 한다”고 받아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석자가 “이건 소나기가 아니라 장마비”라며 “장마비를 쉽게 볼 일이 아니다. 빨리 재협상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일갈하는 장면도 있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 대통령 “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 발언은 사실이 아님』

• 내 용 : 본지는 2008. 6. 6. 『이 대통령 “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는 기사 중 이 대통령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 가진 오찬회동에서 “촛불시위 배후세력으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친북세력이나 한총련 학생들”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한총련 학생들이 가담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 빨리 경제를 살려서 서민도 살려야 하고 젊은 사람 일자리 만들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내용이고 현 시국을 걱정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 대통령이 “소나기는 올 때 피하면 된다. 소나기 올 때는 언제나 피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이 아니고, 그 참석자가 현 난관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그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이 대통령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오마이 뉴스는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참석자의 전언을 들었다는 제3자의 말을 토대로 부정확한 보도를 하게 되었음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

신청인 노조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위터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기업마다 다른 여건 외면” 민주노총 밀어
붙이기에 반기』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A5면)

내 용 : 화학섬유연맹 소속 30여개 노조의 민주노총 집단탈퇴 움직임은 민주노총이 산하노조의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산별노조전환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사태다. 화섬업계의 지불능력이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경영환경, 노사관계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산별체제로만 묶으려 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화섬연맹 제명(탈퇴) 노조 : 보위터코리아 145명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위터코리아 노조 “민주노총 화섬연맹 제명(탈퇴) 사실” 없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 종합(A5)면에 “화섬연맹 산하 30개 노조, 산별전환 거부 왜?” 라는 제목으로 보위터코리아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 또는 탈퇴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위터코리아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신청 후 보도문

한국경제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A18면)

내 용 : 보위터코리아 노조는 본지 6월 17일자 A5면에 화섬연맹에서 제명(탈퇴)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화섬연맹이 지난 5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의무금 6개월 이상 미납’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으나, 이는 화섬연맹 착오로 드러나 제명 자체가 무효가 됐으며 화섬연맹 소속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

건설회사 간부인 신청인이 부산 민락매립지 주상복합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경찰에서 내사중지로 처리되었다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부산MBC-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4.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부산MBC-TV : 「뉴스테스크」 프로그램 (2005년 3월 23일 21:00)

내 용 : 전격적인 허가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민락매립지 21층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최근 민락매립지 주상복합 아파트의 허가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 1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최근 이 관계자의 집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이는 등 일단 첩보내용처럼 금품이 제공된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부산시의 허가과정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전격적으로 이뤄진다는 뭔가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행사 관계자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경찰이 건축허가 관련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아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민락매립지 아파트 허가 의혹, 무혐의로 밝혀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05년 3월 23일, 24일, 25일자로 부산 민락매립지 주상복합아파트 허가과정에서 건설사 간부 윤모 씨가 부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결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단서가 없어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부산문화방송 (부산MBC-TV) 주식회사
부산 수영구 민락동 316-2
대표이사 전 용 성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부산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추후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 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5년 3월 23일, 24일, 25일 2회에 걸쳐 부산 민락매립지 주상복합아파트 허가과정에서 당시 건설사 간부인 신청인이 부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가 나왔다고 추후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에게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란 내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기소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와 기소 후의 단계에서는 무죄판결로 확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내사가 중지되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및 동법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30.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생산하는 벌꿀이 가짜이며, 벌꿀의 진위여부를 문제 삼은 민원인을 협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울진타임즈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울진타임즈 : 『불량벌꿀 갖고 ‘친환경’ 오리발』 제하
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1면)

내 용 : 친환경 농업엑스포를 개최하는 울진군
에서 구매한 벌꿀이 ‘백색의 작은 덩어리’ 형태로
변질되었다. 지난달 20일 울진산 벌꿀(아카시아)에
대한 진품 여부를 소비자가 울진군 친환경농정과에
의뢰했는데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가짜 벌꿀’로 의심받고 있는 벌
꿀이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한 증거품임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빈 꿀벌통만 돌려주어 말썽을 빚고 있
다. 이 벌꿀에는 울진산 청나빌레 상표가 찍혀있다.

울진군 친환경농정과 전 아무개 과장은 문제의
벌꿀을 한국양봉협회 측에 진품 여부를 가려달라
고 검사기관에 의뢰하였으나 폐기 처분되었다고
한다. 울진군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소비자가 맡긴 벌꿀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전
아무개 과장은 검사기관에 꿀을 의뢰하면 검사기
관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
여일이 지난 11일 빈 꿀벌통을 민원인에게 건네주
면서 한국양봉협회에서 문제의 꿀을 폐기처분하였
으며, 대신 정상적인 꿀 이라는 성적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울진산 벌꿀의 진위여부를 의뢰한 소비자는 지
난해 군내 한 양봉농가로부터 아카시아 꿀을 대량
구입했는데 약 20통의 벌꿀이 구입 당시와 다르게
백색의 작은 덩어리 형태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울진군의 한 양봉농가에서 구입당시 맑은 투명색
을 나타낸 아카시아 벌꿀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백색의 작은 덩어리 결정체’로 변해 이를 이상히
여겨 진품 여부가 의심된다고 제보한 것이다.

군 공무원 진품성적표로 오리발 내밀어..

민원인은 울진군의 행정처리 능력에 신빙성이 없
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련 부서에 벌꿀의 성분을
의뢰한 지 며칠후 벌꿀을 판매한 양봉농가의 대표
가 민원 의뢰인에게 곧 바로 전화로 협박하는 일
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관련 공무원은 신상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울진군 농정과 공무
원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안단 말인가. 상식적
으로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임의로 민원인 신상
정보를 유출시킨 것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물
어야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불량벌꿀 갖고 ‘친환경’ 오리발 기사 허위보도
에 사죄드립니다.

저희 울진타임즈는 지난 6월 12일자 인터넷신문
1면과 주간신문 6월 17일자 1면에 불량벌꿀 갖고
‘친환경’ 오리발 이라는 제목으로 울진군에서 운
영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에서 민우벌꿀이 생
산하여 납품 판매되고 있는 울진벌꿀에 대하여
불량꿀 가짜꿀이며 민원인을 협박했다 라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며 확인결과 민원인이 2년 전에
구입하여 보관 잘못으로 결정 된 것이며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불량꿀 가짜꿀이라고 볼 수 없으
며 보관 방법과 밀원에 따라 결정 될 수가 있다
는 것과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우벌꿀
대표에게 깊이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허위보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

동성애 잡지에 표지모델로 등장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t v N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5.

처리결과 : 조정성립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7월 25일까지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2008년 5월 19일자 해당 방송이 재방송 되거나 보도물이 일반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며, tvN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VOD화면 중 조정대상 화면을 모자이크처리하거나 삭제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내용

t v N : 「케이프로젝트 커밍아웃」 프로그램 (2008년 5월 19일자)

내 용 : 잡지 표지 화면 방송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창고 신축현장에 방치해 놓은 토사가 흘러내려 농가의 담벼락을 무너뜨려 논을 훼손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기일보 : 『인근농가 담장 붕괴 날벼락』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0일자 6면)

내 용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한 물류창고 신

축공사 현장이 토사 등을 수개월째 방치하다 장맛비에 흘러내려 인근 농가의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모를 심어 놓은 논을 뒤덮어 반밭을 사고 있다.

19일 시와 백암면 고안리 주민들에 따르면 병둔산업과 시행사 아스토리아물산은 지난해 7월 시로부터 백암면 고안리 산 40 일대 9천322㎡에 대규모 물류창고 신축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공사 초기 가림막과 안전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 진입로 인근의 국유지 620㎡를 무단 점용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병둔산업과 아스토리아물산은 6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사장 내 토사를

방치하다가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장맛비에 토사가 흘러내려 공사장 입구에 살고 있는 A씨(70) 소유의 집 담장이 무너지고 식수대가 흙으로 뒤덮였다. 또 A씨 소유의 논 1천320㎡의 경우도 공사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인해 모판 수백여 개가 훼손되기도 했다.

특히 수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 인근 Y양계장도 빗물에 쓸려내려온 토사 덩어리로 주변 곳곳이 심하게 어질러진 상태다.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날 현재까지도 사업주가 별다른 안전대책도 마련치 않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민 A씨는 “갑자기 흘러내린 토사로 담장이 무너져 가족 모두가 놀랐다”며 “장마철을 앞두고 대형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병둔산업 등이 배짱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둔산업 관계자는 “공사초기 소음 문제로 집단민원이 제기돼 중지명령을 받아 공사를 진행치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토사가 인근 농가로 유입된 것은 사고로 피해보상과 함께 곧바로 복구공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근농가 담장붕괴 날벼락 기사 정정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일자 6면 사회면 우측 상단에 ‘인근농가 담장붕괴 날벼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토사로 인해 담장이 무너진 적이 없으며,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근 양계농장의 소음 민원에 따라 용인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대형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병둔산업 등이

배짱으로 버티고 있다’는 기사내용과 달리 앞으로 어떤 조그만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 공사측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사보도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드리며 거듭 이번 기사와 관련 공사측에 사죄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공사중지 용인 물류창고 관련 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일자 6면 『인근농가 담장붕괴 날벼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아스토리아물산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없으며, 인근 양계농장의 소음 민원에 따라 용인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스토리아물산은 공사 과정에서 일부 토사유출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농가 담장이 무너지거나 모판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인근 양계장이 토사덩어리로 심하게 어질러졌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 2008년 7월 9일 사회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공사중지 용인 물류창고 수개월째 토사 방치)과 같게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공사중지 용인 물류창고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9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주택재개발조합장의 친동생인 신청인이 조합에서 일을 한 적이 있고,
금정구청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5.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7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경향신문 : 『‘장전 1-2’ 재개발 강제철거 물의』 제하
의 기사 (2008년 6월 13일자 W3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71의 보도내용 참조〉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
다. □

정부가 BK21 지원기준을 갑자기 바꾸고 특정대학만을 지원하여 국내 MBA스쿨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허 상 만)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정부의 특정대학 지원 MBA 발전 되레
걸림돌』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9일자
D2면)

내 용 : 정부가 한국형 경영전문대학원(MBA스쿨)
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특정 대학만을 지원해 오히려
국내 MBA스쿨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갑자기 BK21
지원 기준을 바꿔 형평성 논란마저 일으키는 등
대학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5일 ‘BK(두뇌한국)21’
의 고급서비스 분야 중 하나인 경영전문대학원
(MBA 스쿨) 2차연도 평가 제출 서류를 마감했다.
지난해 옛 교육인적자원부의 1차연도 BK21 MBA
스쿨 평가에선 고려대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하위를 기록한 연세대의
MBA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그 금액만큼을 고려대
에 ‘인센티브’로 줬다. 교과부는 올해도 두 달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다음 달 2차연도 BK21 MBA스
쿨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세대가 이번
평가에서도 4위를 기록할 경우 당초에는 예산 삭
감에 그치지 않고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이었다. 때문에 연세대는 그동안 2단계 BK21 평가
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올해 초 공청회를 통해 이 같
은 원칙을 뒤집고 4위를 한 대학이 새로 진입하게
될 대학과 또 다시 경쟁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만
들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연세대가 4위를 하더라
도 곧바로 탈락하지 않고 신규 진입을 원하는 대
학들과 한차례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 경쟁에서
연세대가 선택받을 경우 연세대는 정부 지원을 계
속 받게 되는 것이다.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올해 BK21 MBA사
업에 신규 진입을 원하는 대학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규 진입을
원하는 대학의 한 경영대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
의 지원을 받아왔던 학교가 아예 경쟁에서 배제되
지 않고 정부 지원을 못 받은 학교와 함께 동등한
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정당한 공청회

절차도 없이 특정 학교의 입맛에 맞게 지원 기준을 맞췄다.”며 음모설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확정 짓기로 했던 2차연도 BK21 평가 기준은 두 달가량 지체된 올해 2월 말에야 가까스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지원 학교의 최하위 대학이 무조건 탈락해야 한다는 당초 기준이 갑작스레 바뀌었다.

정부 BK21 평가의 또 다른 문제는 MBA스쿨의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보다는 BK21 사업단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2단계 BK21의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150점 중에서 교육부만이 차지하는 항목은 50점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교육과정 운영이 78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학원생의 취업률(21점), 정부연구과제 수주규모(9점), 산업체의 과제 수준(33점), 실무 중심의 인력양성 운영(39점) 등 MBA스쿨의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평가 항목들이 주를 이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지 BK21 MBA 보도(5월 9일) 사실과 달라 (또는 5월 9일 BK21 MBA 보도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5월 9일 본지에 게재된 “정부의 특정대학 지원, MBA 발전 되레 걸림돌” 기사 중 BK21 지원 기준 변경으로 대학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2차연도 BK21 평가 기준이 두 달 가량 지체된 올해 2월 말에 가까스로 확정됐으며, 평가 기준도 전체 150점 중 교육부만이 차지하는 항목이 50점에 불과하므로 MBA스쿨의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평가 항목이 주를 이룬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BK21 지원기준은 2006년 1월 공지된 「2단계 BK21 사업 공고」 및 2007년 7월 공포된 「사업관리운영 규정」대로 기준의 변경없이 BK21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둘째, 평가기준은 2007년 8월 공청회를 거쳐 2007년 11월에 확정 발표되었으며, 셋째, 2단계 BK21의 평가 기준(경영학 분야)은 300점 만점 중 교육영역이 총 144점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K21 지원기준은 특정 대학을 위해 줄속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라

’06년, ’07년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지원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BK21 국내 MBA스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5월 9일자 “정부의 특정대학 지원, MBA 발전 되레 걸림돌” 제하의 기사 중 평가기준 부분에서 전체 150점 중 교육부만이 차지하는 항목이 50점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전체 300점 중 ‘교육영역’이 144점, ‘교육과정 운영’은 75점인 것이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한편,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위 보도에서 올해 초 바뀌었다고 표현된 BK21 지원기준은 2006년 2단계 BK21사업 공고 당시 이미 정해진 기준이며, 특정대학을 위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오프라인 한국경제신문 본지에 상가 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8년 7월1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1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한국경제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kyung.com>)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원 조정대상기사 중 바로잡는 부분을 수정하고 하단에 반론보도 부분을 이어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바로잡습니다 5월 9일자 ‘정부의 특정대학 지원, MBA발전 되레 걸림돌’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1일자 한국경제 홈페이지)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이벤트의 예산집행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전일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의혹 없는 것으로 밝혀져 (또는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자 1면에 “콘텐츠 융합형 관광상품인 신관사또 부임행차 예산 운영 집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지출과목 중 홍보물 제작비의 경우 시중가보다 2~3배 높은 금액으로 지출되는 등 대부분의 예산집행이 짜 맞추기 식으로 이루어 졌다는게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오○○ 회장의 사퇴가 이번 의혹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가 발주 계약한 홍보물 6종은 조달청이 발행한 조달물가정보단가 및 조달청 인쇄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제작한 바, 시중가보다 2~3배 높은 금액으로 지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오 전임회장이 사퇴한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7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자 1면 『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의혹투성』 제목으로, “콘텐츠 융합형 관광상품인 신관사또 부임행차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시중가보다 2~3배 높은 금액으로 지출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

전일신문 : 『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의혹투성』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1면)

내 용 : 전북 남원시 콘텐츠 융합형 관광상품인 신관사또 부임행차에 쓰여진 예산과 집행과정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가 관람형에서 적극적 참여형 관광으로 전환 하겠다며 국비 8,600만 원 지방비 8,600만 원 총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콘텐츠 융합형 관광 상품인 신관사또 부임행차 이벤트를 남원관광발전협의회(회장 오○○)에 보조금을 지급해 운영해 왔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매주 토·일요일마다 춘향테마파크에서 광한루 원까지 신관사또 부임행차 이벤트를 10여 차례 연출 하면서, 그동안 시민 및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예산 운영 집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지출과목 중 홍보물제작비의 경우 시중가보다 2~3배 높은 금액으로 지출되는 등 대부분의 예산 집행이 짜 맞추기 식으로 이뤄졌다는게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이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자료 확인 중에 있던 당일 오전 오○○ 관광발전협의회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관사또 부임행차 행사 관련 홍보물 6종은 행사 주최자인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가 조달청이 발행한 조달물가정보단가 및 조달청 인쇄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발주, 계약하여 제작한 것으로 예산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협의회 전임회장인 오모씨가 사퇴한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일신문 2008년 7월 10일자 1면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상자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홍보물제작비 시중가보다 2~3배 높게 지출”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일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병·의원 및 의료기기 업체들을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시민권리연대 (대표 최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2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활개치는 ‘블랙 NGO’, 떨고있는 병원들』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3일자 사건사고면)

내 용 : 시민권리연대, 병원 부정행태 고발 전 일부 금품요구

불량식품을 찾아내 신고하고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을 ‘식파라치’(식품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라고 하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악덕 소비자를 ‘블랙 컨슈머’라고 한다. 식파라치나 블랙 컨슈머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를 드러내, 부정을 해소시켜주는 이른바 ‘민간 암행어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해 특정 기업에 해를 끼치거나 자신만의 배를 불리는 경우가 심심찮아 문제다. 더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악용해,

물의를 일으킨 병원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이슈거리를 만든 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병원 고발 전, 후원금 주면 고발 안해

올해 초 ‘시민권리연대’라는 시민단체는 진료비 할인행위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한 병·의원과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여 곳을 보건소에 고발 조치했다. 의료계는 이 시민단체로 인해 피해를 사전에 우려, 문제가 있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거나 수정을 당부했고 이같은 시민단체 활동은 의료계의 불법행위를 없애는 긍정적 효과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본지에 잇따른 병·의원들의 제보를 종합한 결과, 시민권리연대는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조건에서 후원금조로 일부 병의원들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방의 모 의원에 따르면, 제모시술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이유로 시민권리연대에서 환자유인행위라며 보건소에 고발할 것이라는 팩스가 왔다고 한다. 팩스를 보낸 이유는 “고발전에 소명할 기회를 줄테니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것이지만 병원 입장에서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다. 이처럼 이 시민단체는 암암리에 후원금조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불응한 의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보건당국의 처벌을 뉘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반면 이들 시민단체에 미리 돈을 챙겨준 곳은 고발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들은 ‘블랙 컨슈머’가 아닌 ‘블랙 NGO’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경기도 소재 모의원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시민단체의 고발팩스를 받은 후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후원금조로 수백만 원을 줬다”고 털어놨다. 이후 이 의원은 고발이 취해진 것은 당연지사. 의료계는 실제로 이 단체가 사전에 금품을 받고 고발을 취하한 병의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제보한 A원장은 “시민단체는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차라리 올바른 일을 한다면 후원금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약점을 잡아서 금품을 요구하는 것에 응할 수 없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민권리연대에 대한 본지의 보도는 잘

못된 것입니다. (또는 시민권리연대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공개 사과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3일자 사건사고면에 “활개치는 ‘블랙 NGO’ 떨고 있는 병원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민권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단체 활동을 빌미로 일부 의료기관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직접 수백만 원을 받았으며 이렇게 후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고발을 취하해 주는 등 공갈, 착취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시민권리연대는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시민단체 본연의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 시민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저해하고 단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합니다. 시민권리연대에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충청북도의 사퇴요구를 거절하고 임기를 채울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직책은 임기가 없다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동양일보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30.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동양일보 : (1) 『충북도 인사 윤곽 ... 도·시 합의 여부 주목』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30일자 2면)

내 용 : 충북도 고위직 인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도와 시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청주부시장 임명여부가 인사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단체장 인사를 둘러싸고 감정대립 양상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정우택 지사와 남상

우 시장간의 합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충북도가 용퇴를 권유하는 도 체육회 사무처장의 거취에 따라 인사 폭과 승진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중략)

이와 함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도 체육회 사무처장이 사퇴하면 경제투자본부가 실로 격상되는 것과 함께 이사관급 승진자리가 3개로 늘어나게 되지만 김○○ 처장이 도의 용퇴요구를 거부하며 임기 4년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사관급 승진자리가 2자리로 줄어들면서 누가 청주 부시장 임명될지 관심거리다. (후략)

(2) 『1국4과 감축으로 승진 경쟁 치열』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5일자 2면)

내 용 : (전략) 충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도가 지난 10일 1국 4과 70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 4급 이상에 대한 내정·발표를 하고 내달 1일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며, 그 이하는 4월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위직 인사는 도가 용퇴를 권유하는 도체육회 사무처장의 거취에 따라 인사 폭과 승진자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조직개편안에서 균형발전 본부와 건설방재 본부를 통합, 정부방침에 의거해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경제투자본부장)의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승격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돼 승격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이로 인해 현재로선 2급 승진요인이 없어진 셈이지만, 퇴직 등을 앞둔 도청 내 간부(이사관급)가 임명되는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용퇴를 결정하면 2~3급 인사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 임기만료가 없음에도 김웅기 처장이 정년 4년(2006년 1월 임명)을 고집하며 사퇴하지 않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사 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충청북도 인사 윤곽...도·시 합의 여

부 주목』 제하 기사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25일 등 2회에 걸쳐 『충청북도 인사 윤곽』이라는 제목과 『도체육회 사무처장 거취 변수』라는 부제목으로 충청북도 부단체장 인사와 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 윤곽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 내 간부(이사관)가 임용되는 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장이 체육인 등 여러 분야에서 적격자를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김○○ 처장이 도의 용퇴요구를 거부하며 임기 4년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 결과 충북도에서는 체육회 규약에 사무처장의 임기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 김○○ 사무처장 역시 임기 4년을 고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교단을 탈퇴한 신청인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7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3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울일보 : 『교단탈퇴 목사 양심선언 진위여부 ‘도마 위’』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1일자 19면)

내 용 : 한 교회를 23년간 섬긴 교역자가 돌연 교단을 탈퇴, 양심선언 한 배경에 대한 진위여부가 기독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대한예수교 침례회(이○○ 목사) 광주교회 소속 배모 목사(43)가 교단과 이○○ 목사의 이단성을 폭로한다며 열렸던 기자회견과 관련, 교단과 이○○ 목사측은 배 목사가 도덕적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사)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이○○ 목사)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사진)서 배 목사는 “2006년 몽골선교사로 파송 받아 활동하던 중 2008년 노부모의 중환으로 이○○ 목사에게 국내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이 목사가 냉정하게 거절

하는 모습에서 교단 신앙에 의심을 품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탈퇴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목사는 “몸담았던 소속 교단의 교리구원관 등이 기성교회와 다르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조만간 교단내의 각종 비리에 관한 정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대한예수교침례회는 배 목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몇 번에 걸쳐 용서하고 목회자로서 새 출발을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양심선언’이라는 최후 선택의 이유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한 일로서 덮으려 했으나, 거짓을 감추고 진실을 호도하는 배씨의 기자회견이 크게 잘못됐음을 알리고자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한 예수교 침례회 이○○ 목사 교단 측 교단 탈퇴 배목사 음해 공작 진실 밝혀져(정정문)
 • 내 용 : 2008년 6월 11일 서울일보 사회1면에 지난 5월 29일 (사)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이대복목사) 주최로 열린 배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배목사는 (중략) 1) 배목사에 대해 목회 생활이나 도덕성에 관해 약점을 잡을 수 없다보니 배목사의 사사로운 가정 이혼 문제를 들추어내어서 도덕적인 문제를 삼고 있으나 배목사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한 나머지 가정 생활에 소홀로 인해 이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변론의 여지가 없으나 법적인 참고 자료와 같이 다만 나의 부정이나 도덕성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배목사 결혼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서울 중앙 교회 목사 및 장로 일행이 몽골 현지를 방문 중 배목사의 딱한 생활과 몽골 환경의 실태를 보고 혼자서 선교 생활하

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국내에 여러 목사들의 중매와 협조로 2007년 4월 4일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총재 목사인 이○○ 목사의 주례(=침부자료 사진과 같이)로 교회 성도인 현재 처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목사에게 부적절한 행위 및 개인치부 감추기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김○○ 장로는 이렇게 결백한 배목사를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서울 중앙 교회 홍○○ 목사 역시 죄없는 배목사가 교회 앞에서 몇 번의 용서를 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또한 허위 사실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양심을 속이는 행위라고 배목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사실이 이러한데도 대한 예수교 침례회 교단측과 홍○○ 목사, 김○○ 장로는 해외 선교 비리 문제, 국내 교회 각종 비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 폭로될 것이 두려워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그 죄를 연약한 배목사에게 뒤집어 씌워 자기네 허물을 은폐하기 위한수단으로 지난 2008년 6월 11일 본보와 기독교 관련 신문사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허위 사실을 배포하여 보도케 한 것은 연약한 배목사를 중상 모략하고 음해하여 죽이려고 하는 파렴치한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인터뷰이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실었고, 보도에 신청인의 반론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후속보도에 응할 의향이 없다. □

홍성군에서 인사청탁 관련 금품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관매직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홍성군 (군수 이 종 건)
피신청인 : 충남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충남일보 : 『공직사회 매관매직 의혹 증폭』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4일자 11면)

내 용 : 홍성군이 내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의 매관매직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인사철마다 풍문으로 떠돌던 매관매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인사권자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홍성군 모 공직자는 지난해 자신의 인사와 관련, 청탁을 위해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다며 접근한 A 씨에게 6회에 걸쳐 총 4,1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홍성군의 인사와 관련한 루머들은 “몇 천 만 원이면 사무관 승진에 문제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하겠느냐”, “누구는 몇 천만 원 밖에 쓰지 않아 거절당하고 승진에서 누락됐으

며, 누구는 몇 천만 원을 더 써서 승진을 한 것 아니냐”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각종 무성환 루머들이 공직사회를 넘어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홍성군 인사관련 기사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4일자 사회/11면에 게재된 공직사회 매관매직 의혹 증폭 제목으로 마치 홍성군수가 금품을 받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오인토록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승진인사시 금품수수로 승진시킨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시중의 악성루머 등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어 홍성군 공직사회에 부정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왜곡 보도된 바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5,515,940원



신청인이 산하 노조를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파업에 동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국내 최대 노조의 ‘반기’』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3면)

내 용 : “대다수 조합원의 정서를 무시하고 민주노총이 정치파업 투표를 강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등을 위한 현대자동차 노조의 16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로 나오자 한 조합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투표 결과를 외면하고 노조가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에 동참할 겨우 내부 반대에 부닥쳐 내분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설립 이후 첫 부결=현대차 노조는 3만

8,637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2만 1,618명, 반대 1만 6,813명으로 투표자 대비 55.95%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투표자의 과반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파업을 할 수 있다. (후략)

(2) 『“산별교섭 도입, 파업만능주의로 이어질 수도”』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A4면)

내 용 : 상의 토론회 “시대흐름 역행”

한국의 노사문화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비춰볼 때 산별교섭은 한국 경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산별교섭, 과연 우리에게 적합하나’라는 주제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이재교 인하대 법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산별교섭 체계는 산업혁명의 태동지라는 사회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것으로 기업별 노조 및 교섭의 전통을 이어 온 우리 여건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19세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로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경쟁하던 환경에서 유럽 국가들이 산별교섭을 발전시켜 왔지만,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의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별 교섭이 확산되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국내 노동계의 산별 전환 요구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민주노총의 행태를 감안할 때 산별교섭 도입은 파업 만능주의와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속한 금속노조가 최근 ‘정치파업’을 주도하려고 하는 등 국내 산별교섭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노조 조직 및 교섭구조는 한 국가가 산업화 과정에서 경험했던 정치, 경제 등 문화적 환경에 따라 오랜 기간 형성 발전시켜 온 것”이라며 “현행 기업별 교섭체제를 단시일 내에 산별교섭 체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3) 『화섬연맹 “굿바이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A4면)

내 용 : 민주노총 화섬석유연맹 소속 15개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거부하며 사실상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별 상황이나 노사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산별노조 전환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연맹은 최근 산별노조 전환과 의무금 납부를 거부해온 산하 노조 중 롯데대산유화 등 15개 노조에 제명 통보를 내렸다.

화섬연맹은 또 LG화학(대산지부)과 호남석유화학 등 10여 개 노조에 대해서도 같은 통보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연맹은 이미 제명 통보를 한 15개 노조에 대해 20일까지 미납한 의무금을 내면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노조들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략)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 등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파업 등 정치파업에 동원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산별노조 전환이 노조원의 고용 안정이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섬연맹은 “징계를 받은 노조들은 의무금을 내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이지 산별노조(전환)에 대한 견해차 때문은 아니다”며 “(징계된) 15개 사업장 중 다수는 연맹에 남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미 몇 개 사업장은 미납된 의무금을 납부하고 조직관계를 정상화 하자고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화섬연맹 측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의 구제기간을 두어 미납금을 내면 징계 결정이 무효가 되도록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화섬연맹 소속 노조는 131개사로 이 가운데 68개사가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화섬석유 노조로 상급단체를 전환했지만 나머지 기업은 미루고 있다.

(4) 『현대車 노조 “파업 강행”에 조합원들 반발』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8일 A4면)

내 용 : “부결 명백한데… 찬반투표는 왜 했나”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는데도 정치파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노조)가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사실상 부결시켰으나 집행부가 파업을 강행키로 해 조합원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노조 홈페이지는 17일 파업 반대 의견이 폭주했다. 방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이날 하루 종일 접속이 제대로 안 될 정도였다.

하지만 집행부는 “찬반투표가 가결됐다”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조합원 반대 의견 잇달아=현대차노조 홈페이지에 ID를 ‘현장조합원’이라고 밝힌 조합원은 “민주노총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는데 파업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파업을 하려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산별노조도 탈퇴하라. 조합원 뜻을 무시하는 노조는 필요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현대차지부 규정에 따르면 부결된 것이 명백한데 왜 가결됐다고 하는지. 그러면 파업 찬반투표는 왜 한 거냐.”(ID 초롱이) “눈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이 정부나 노조 집행부나 마찬가지.”(ID 따라쟁이시러)라는 글도 나왔다.

노조 사무실에는 파업을 강행하려는 집행부를 규탄하려는 전화가 폭주했다.

울산의 1공장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현대차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파업에 반대한 셈이다. 집행부가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현장 조직은 파업 반대 대자보를 회사에 붙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일부 대의원과 현장 조직이 파업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20여건 붙였다.

19년차 영업사원이라는 한 조합원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홈페이지에 “투쟁에도 때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전 국민과 전세계 자동차업체가 고유가로 고통 받는 이때 제발 파업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앞의 식당 주인(56)은 “모든 것

이 어려운 올해 만큼은 제발 파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지도부는 파업 강행키로=집행부는 “민주노총의 찬반투표는 가결됐다”라며 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국내 최대 노조 ‘금속노조’ 파업찬성
- 부 제 : 금속노조 재적인원 57% 찬성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6월 17일자 3면 <‘노조 출범 후 첫 쟁의투표 부결’ 현대차 표정>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의 현대자동차지부의 투표결과에 대해 <국내 최대 노조의 ‘반기’>등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기업별 노조였던 현대차 노조는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2006년 6월에 현대차노조는 산별전환투표를 실시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했기에, 현대차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입니다.

둘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국내 최대 노조로서 6월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재적인원 143,619명 중 121,748명이 투표를 해서 81,867명 찬성으로 재적인원의 57%가 찬성했습니다.

이로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현대차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위를 실추시켰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현대차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파업을 강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경제 : (1) 『민노총 결국 억지파업 강행』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8일자 1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80의 보도내용 참조〉

(2) 『“지도부 각성안하면 민노총 탈퇴운동”』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8일자 2면)
내 용 : “민노총 등 상급 단체에서 파업지침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곤혹스럽다.”(현대자동차 노조집행부)

“현대차 노조가 민노총이나 금속노조 전위부대 노릇을 하는 게 싫다.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없는 정치파업은 대다수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점을 집행부가 깨달아야 한다.”(현대차 울산공장 현장 조합원)

현대차 노조 현장 조합원들이 정치파업을 거부한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민노총의 쇄기사태 파업 참여 여부를 찬반투표에 부친 현대차 지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물론 정치파업 거부를 산별노조 탈퇴로 연결시켜 나가자는 얘기마저 들린다. 사실 그동안 현대차 노조 현장 조합원들은 심정적으로는 정치파업을 반대해도 파업 찬반투표를 할 때 주변 시선 때문에 반대표를 쉽게 던지지 못했다. 형식은 비밀투표였지만 집행부가 선거통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선거용지를 나눠주고 열린 공간에서 찬성·반대를 결정해 투표하도록 하는 ‘통들이 투표’ 방식도 솔직한 현장 목소리를 담은 데 장애물이 돼 왔다. 1987년 현대차 노조가 생긴 이래 매년 관행적으로 행했던 임단협 파업과 5차례 정치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된 것도 이

같은 현장 분위기와 일맥상통한다.

때문에 이번 총파업 찬반 개표 결과, 쇄고기 파업 반대표가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총파업이 부결된 것은 하나의 선거혁명으로 기록될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조합원들이 ‘정치파업은 No’라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한 셈으로 아래로부터 현대차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해석이다. 고유가와 물류대란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점도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파업에 대한 불만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중략)

또 다른 조합원은 “민노총 등 상급 단체들이 정치적 문제 등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강요하면 안 된다”며 “민노총 지도부가 각성하지 않으면 산별 탈퇴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 상에서도 민노총과 현대차 지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면서 이날 오전 한때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후략)

(3) 『금속노조에 반기든 현대차노조』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0일 A13면)

내 용 : 금속노조와 금속노조의 근간을 이루는 현대차 지부 사이에 이상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금속노조 집행부와 현대차 지부 집행부는 지난 18일 현대차 사측과 8차 대각선 교섭을 갑작스레 취소했다. 교섭 방식을 놓고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집행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현대차 지부는 18일 저녁 교섭속보를 통해 “중앙 교섭과 대각선 교섭에 따른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간) 교섭 방식 이해 차이로 8차 대각선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금속노조 전환 후 현대차 지부의 기존 관례와 금속노조 조직 운영 방식이 상호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사측과 교섭 방식을 놓고 금속노조와 의견 차이가 있음을 조합원들이 챙겨 보는 교섭속보를 통해 솔직하게 밝힌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 제 목 : 6월 18일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대한 왜곡보도를 바로잡습니다.

• 부 제 : 현대차 노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입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6월 18일자, 1면, 2면, 15면, 31면, 39면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정의행위 찬반투표와 결과에 대해 오기와 편파보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정보도 합니다.

첫째, 6월 18일자 위 지면 해당기사에서 수차례 명기한 현대차노조, 쌍용차노조, GM대우자동차노조 등 기업별 노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금속노조 GM대우차 지부로 바로잡습니다.

둘째, 각 지면의 해당기사들의 내용 중에 조합원이 파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파업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의 의견만을 담은 편파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금속노조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약 15만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단일노조로서 현대차 지부 조합원만의 투표결과를 가지고 '현대차노조 부결'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보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 제 목 : 6월 20일자 금속노조에 대한 왜곡보도를 바로잡습니다.

• 본 기사는 금속노조에 2006년 대공장 노조가 대대적으로 산별전환을 해서 가입한 뒤 처음으로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용자들로 인해 지부별로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현대차 지부의 교섭을 열지 못한 이유는 절차상의 관행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이지, 제목에 표현하듯 '금속노조에 반기든 현대차노조가 아님'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6월 18일 및 20일 기사에 대해 금속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절차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현대차 사측의 생산물량 조정 요청에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근을 한 것이 아니라 울산1공장 대의원회의 결의로 특근을 결정하였으며, 금속노조 집행부와 현대차 지부 사이에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뿐 현대차 지부가 금속노조에 반기를 든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7월 24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매일경제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2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소속 현대차지부 홈페이지에 조합원들의 파업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고 지부 내 온건노선조직인 '현장연대'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종재부
 접 수 일 : 2008. 7. 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현대차 勞·勞충돌 조짐』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8일자 A3면)

내 용 : 파업을 강행하려는 현대자동차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집행부와 이에 반대하는 현장 조합원들간에 ‘노(勞)-노(勞)’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차원에서 파업을 결의한 만큼 지부인 현대차노조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7월2일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 참여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파업참여를 사실상 부결시킨 ‘노조역사 21년 만의 초유의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뜻을 무시하고 정치파업을 강행하면 노조 집행부 퇴진과 산별 금속노조 탈퇴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조합원 뜻 따르라” 불물

조합원들의 반발 여론은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도부는 더 이상 정치파업의 구렁텅이로 조합원을 내몰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조합원 뜻을 무시한 노조는 필요 없다. 정치파업 하려거든 노조 간부들은 총 사퇴하라”고도 했다. 한 조합원(ID 조합원)은 “더 이상 생떼쓰기를 시도한다면 노조 집행부 퇴진을 외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후략)

(2) 『울산시민 “현대車 정치파업 그만』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9일자 A4면)

내 용 :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의 ‘민주노총 쇠고기 정치파업’ 참여 거부 여론이 조직적 반대운동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또 “현대차노조를 파업 도구

로 이용하는 금속노조 탈퇴하자”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울산시민들이 ‘정치파업 자체’를 직접 촉구하겠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18일로 예정됐던 올 임금 교섭(제6차)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파업돌입 절차를 놓고 노조 내부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노조의 행보가 주목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현장조직인 현장연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전술에 대해 비판했으며,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위해 투쟁을 배치하자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금속노조 파업 결의
- 부 제 :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 찬반 팽팽
- 내 용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홈페이지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자유게시판을 달구고 있다.

현대차 지부 집행부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속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만큼 지부인 현대차 지부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며 “7월 2일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 참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16일 현대차 지부 조합원들은 87.84%가 참석해 55.95%가 찬성하고, 43.5%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전에 비하면 다소 낮은 찬성율이나, 금속노조 투표결과에 따라 가결됨에 따라 파업에 들어간다.

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래부터 반대의견을 실은 만큼 찬성의견을 제대로 실어줘서 사실을 그대로 담아줘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금속노조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6월 18일자 울산발 기사에 대해 금속노조는 그 소속 현대차 지부 게시판에 쟁의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과 비등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지부 내 현장조직인 「현장연대」에서 조합지도부의 구체적인 투쟁방식에 의견을 표했을 뿐이지 민주노총 총파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7월 17일까지 조선일보 2면 내지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단 제목의 글자 수를 줄일 수는 없음),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금속노조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1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소속 현대차지부의 집행부와 조합원들간 갈등뿐 아니라 신청인 조합과 현대차 지부간 마찰 등 파업강행을 두고 ‘勞勞갈등’ 양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3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경제 : (1) 『정치파업 역풍』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8일자 A1면)

내 용 : 현대차 노조집행부 투쟁 강행
조합원 “지도자부터 물러나야”

현대자동차 노조집행부가 ‘쇠고기 파업’ 강행 방침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집행부가 파업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정치파업’에 동참하려 하자 일선 조합원들이 집행부 사퇴론까지 거론하는 양상이다.

현대차 노조는 17일 ‘현자치부소식’(노보)을 통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현대차와의 대각선 교섭에서 회사 측이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쇠고기 파업이 조합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을 파업의 빌미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합류, 악화된 하투(夏鬪)동력을 살리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석행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도 이날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일 하루 동안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작업을 거부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3~5일 민주노총 간부를 중심으로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7월 한 달을 ‘총력투쟁의 달’로 정하고 각 산별노조 중심으로 파업을 전개키로 했다.

현대차와 민주노총의 파업강행 방침에 상당수 조합원들은 등을 돌린 상태이다. 조합원들은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재적조합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파업찬성률이 과반에도 못 미치는데 집행부가 민노총의 지시에 따라 억지 정치파업을 하려 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퇴진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은 조합원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어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민노총 자유게시판에도 파업방침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아이디 ‘길가던이’는 “야구타선 돌리듯 돌아가며 파업을 하겠다는 이석행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민노총은 이제 제발 무의미하고 건전치 못한 정치적 파업을 그만두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노총이 게임을 즐기듯 릴레이 파업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단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2) 『“부결을 가결이라니...자유당때 사사오입이냐”』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8일 A3면)

내 용 : 민주노총과 현대차 지부의 파업 강행 방침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7일 오전에는 노조 집행부를 규탄하려는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몰려 노조 인터넷 게시판이 4시간가량 다운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조합원들은 “부결을 어찌 가결이라고 주장하느냐”며 “지금도 자유당 시절도 아닌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을 사사오입식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중략)

하지만 이번 금속노조 파업도 사실상 현대차의 임금교섭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파업 성격이 강해 조합원들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 매달려 정작 조합원들의 복지와 직결되는 임금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노조지도부에 대한 원성이 높은 상태다.

“파업을 스포츠로 보다니...”

노동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합원들의 반파업 정서는 작년 금속노조의 FTA저지 정치파업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6월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민주노총의 FTA반대 파업을 결정한 이후 ‘현대차 불매 운동’ 등 반대 여론이 고조되자 당초 사흘 일정의 파업을 이들간의 부분파업으로 축소했

다. 당시 금속노조의 FTA 정치파업이 실패한 이유는 4만 4,000여 명의 현대차 지부 조합원들이 과거와 같은 파업동력을 실어주지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차 조합원들의 이 같은 변화가 지난 20년간 파업역사로 얼룩진 현대차 노조를 변화시키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이젠 무조건 조합원들에게 강요하는 식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먹혀들지 않는다”면서 “말없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상공회의소 김○○ 전무도 “앞으로 현대차 노사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치문제로 인한 노조의 파업은 힘들 것이고 이는 많은 시민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 『민노총은 조합원도 안중에 없나』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8일 A39면)

내 용 : (전략)

더구나 ‘쇠고기 파업’ 같은 정치파업은 그 자체가 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은 아예 무시한 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끝까지 파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노총이 법 위에 있다거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조직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서는 있기 힘든 일이다. 현대차노조의 경우는 더욱 한심하다.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찬반투표는 왜한 것인지, 조합원들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모를 노릇이다. (후략)

(4) 『현대차 노조 부장께』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3일 A38면)

내 용 : 장○○ 현대자동차 노조 공보부장께. 본지 5월 29일자 A1면 ‘고유가로 경영난 심각한데, 현대차 노조 웬 쇠고기파업’ 기사를 읽고 보내준 편지 잘 읽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기사 때문에 화가 났다니 미안합니다. 사실 나도 장 부장의 글을 읽고 노조집행부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후략)

(5) 『현대차 “파업총대 안메” 금속노조와 ‘勞勞

갈등』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4일 A5면)

내 용 : 7월 총파업 변수 부상

금속노조와 금속노조의 최대 세력인 현대차 지부 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만성적인 정치파업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당수 현대차 노조원들 사이에 반(反)금속노조 기류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와 산별노조의 최대 세력 간 갈등은 금속노조를 필두로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행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략)

(6) 『금속노조, 임단협투쟁 메뉴에 ‘쇠고기’ 추가』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30일 A4면)

내 용 : 현대차 14년째 파업 “5년간 생산차질 4조원...악몽 되풀이 되나”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 등 금속노조 산하 기업 지부들이 임단협 총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산업현장이 또 한번 파업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파업 투표는 임단협 투쟁을 위한 파업 결의라는 명분 속에 진행됐으나 실질적으론 동력이 떨어진 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에 힘을 빌려주는 ‘비밀밥식 총파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임금·단체협상에서 불리해진 금속노조가 쇠고기 파업을 끌어들이 사용자 측을 압박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적잖다.

◆완성차 4사 찬성을 평균 밀돌아

금속노조는 29일 파업 결정을 발표하면서 내달 2일 두 시간 부분파업이라는 다소 약한 카드를 꺼냈다. 과거 임단협 파업 때는 강경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는 최대 투쟁동력인 현대차 등 완성차 4사의 파업 찬성률이 예상외로 낮게 나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2008년 임단협 투쟁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인원 141만 1178명 가운데 12만 7,187명이 투표에 참석, 9만 6,036명이 찬성표를 던져 투표자 대비 75.1%, 재적 대비 68.02%의 찬성률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현대차(67.0%), 기아차(64.8%), 쌍용차(63.3%) GM대우차(65.2%) 등 핵심 사업장은 찬성률이 전체 평균을 밀돌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치파업 역풍에 대한 기사를 정정 보도합니다

•부 제 :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 찬반 논란

•내 용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대비 57%가 찬성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현대자동차 지부 집행부도 당연히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에는 찬반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쇠고기 투쟁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현대차 부결’이라는 잘못된 보도가 나가자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는 바람에 홈페이지가 한 때 마비되기도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제 목 : 현대차 지부는 파업 부결이 아닌 금속노조 가결로 정정합니다

•내 용 : 본지 6월 18일자 A3면에서는 “부결을 가결이라니...자유당때 사사오입이냐”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어 금속노조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현대차노조는 2006년 6월 산별전환투표를 거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금속노조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없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입니다. 파업권과 체결권은 금속노조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도 금속노조 차원에서 가결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대차 지부는 금속노조 19개 지부 중 하나로서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을 수행합니다.

“금속노조 파업도 사실상 현대차의 임금교섭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성격이 강해 ~ 높은 상태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에 임금요구를 비롯한 제반의 노동조건과 사회 정치적인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금이 많이 올라도 사회적 법이나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현재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중앙 교섭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며, 교섭에 나와야 중앙교섭 요

구인 임금요구를 다룰 수 있으나 이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3)

•내 용 : 본지 6월 18일 A39면 기사는 사실과 달리 민주노총 뿐아니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기에 지면을 통해 사과합니다.

특히 “현대차노조의 경우는 더욱 한심 ~ 참으로 모를 노릇이다”는 내용은 가결된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결로 왜곡했습니다. 금속노조는 5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으며 현대차 지부는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파업권 체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지부의 파업결과만을 두고 재적대비 찬성을 계산해서 부결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내 용 : 본지 6월 23일 기사는 장규호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공보부장이 다른 기자에게 보낸 메일을 도용해 현대차 즉 한국경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첫째 규약을 위반했다는 점, 둘째 금속노조가 현대차조합원과 상관없는 조직이며 파업이라는 점, 셋째 두 번씩 찬반투표를 하는 데는 현대차뿐이라는 점, 넷째 귀족노조라는 표현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반론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기사는 “무파업”을 대놓고 요구하는 기사이므로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 혼란을 초래하므로 금속노조에 사과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지 6월 24일 A05면 기사는 현대차 “파업총대 안메” 금속노조와 ‘노노갈등’의 기사는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간의 임단투 절차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작은 차이를 마치 확대해 노노분열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중 현대차 지부 대각선 교섭에서 일어난 일은 기존 금속노조의 관행과 현대차 지부의 관행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지, 파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갈등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확대 왜곡한 것으로 금속노조에 심히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3)

•내 용 : 본지 6월 30일 A04면 기사는 현대차 14년째 파업 “5년 간 생산차질 4조원”이란 기사를 실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고 나주시장 측근 소유의 토지가 계속적으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지역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나 주 시 (시장 신 정 훈)

2. 신 정 훈

피신청인 : 아시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 (1) 『산업단지 조성 계획 ‘땅투기 술령’』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4일자 18면)

내 용 : 나주시장, 수차례 개인토지 매각 중용 논란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와 동수동 일대 89만평 규모의 임대 산업단지 조성 위해 지난해 4월 5일 S 건설과 MOU를 체결했다. 나주시는 1994년부터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동수동 일원과 덕산리 일원에 100만평 규모로 사업을 계획하여 농공단지와 생물산단 그리고 미래임대산단과 지방산단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미래 임대산단의 부지를 확정하면서 덕산리 전체가 편입되고 동수동 일부는 문화재 구역이라 하여 제외하면서 그 지역에 땅 투기가 일어 마을이 술렁거리고 있다.

또한 땅 매입자들은 나주 최씨의 문중 땅과 그 마을의 최씨들의 땅을 거의 매입하여 그 과정에 사업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투기가 조장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인 '06년 2월~3월경 나주시장은 덕산리의 최모 씨(69세)를 찾아가 임야를 팔 것을 중용하였고 그 후 신 시장은 태양열 발전소 사업자를 대동하여 방문했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친구가 혁신도시로 편입된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혁신도시 지구 확정으로 불가피하게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며 토지매각을 중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시장은 최씨 개인 소유의 땅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나주 최씨 문중 땅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 확보차원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시장의 이러한 방문이 있고 난 후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자주 마을로 찾아와 주민들에게 땅을 팔 것을 중용했다는 것이다.

미래임대산단의 사업이 확정 발표되자 그 당시에 땅을 팔았던 주민들은 사업계획 정보가 의도적으로 유출되어 시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마을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덕산리의 최씨(69세)의 땅은 그 마을 이장의 인척간인 황씨(여)에게 팔았고 남편 전씨는 그 마을의 다른 소유자의 상당한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모 씨(45세)는 최씨의 덕산리 18번지 외 6건의 땅을 매입하면서 등록절차에서 각각의 지분으로 3명에게 분산 등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포함되었으며 이씨는 시장의 친구로 확인되었다. 한편 구 모 씨도 05년도부터 06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덕산, 행정, 화정 일대의 토지 2만여 평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그 금액규모가 수 억원 이른다고 한다. 구 모 씨는 2천평 정도의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꾼이고 이러한 토지를 매입 할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농민회간부와 시청의 고위층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구씨는 '04년과 '05년 종토세를 4~5만 원정도 납부하다가 갑자기 '06과 '07년에 수 십만 원에서 백 여 만 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모 씨는 덕산리 일대의 만 여 평의 땅을 부인과 친인척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전씨에게 땅을 팔았던 박모 씨(62세)는 밭 진입로에 축사를 지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고 한다. 또한 신 시장은 전씨의 축사 준공식에 참여하는 등 전씨와의 친분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확인하여주고 있다. 전씨 역시 종토세를 몇만 원 납부하다가 지난해 15만 원의 종토세를 납부하였으며 그 부인은 소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씨는 시장과 측근들이 나이 먹은 사람을 속였다고 너무 분하고 원통하여 부부 동반자살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였다. (후략)

(2) 『나주 시장 측근들 땅은 개발예정지?』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9일자 18면)

내 용 : 나주시는 혁신도시 유치와 더불어 산단 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예정지의 도시계획 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

예정지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력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지역주민들은 계획적인 투기꾼들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어 심한 고통에 휩싸여 있다.

문제의 시작은 사전에 개발계획이 유출되고 또한 시장측근들의 소유한 땅이 있는 곳이 계속적으로 개발예정지로 선정되면서 지역민들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심지어 나주 사회에서는 시장의 측근인 구 모 씨를 따라 땅을 사면 반드시 개발된다는 공식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5월 14일자 18면 ‘산업단지 조성계획 땅투기 술렁’ 제하의 기사에서 ▲나주시장이 개인들간의 토지매각에 관여하고 ▲미래임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시장이 아는 사람들에게 개발정보를 유출하거나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조장했다고 보도했다.

본 신문은 또 5월 29일자 18면 ‘나주시장 측근들 땅은 개발예정지? 투기꾼 극성 주민들 몸살’ 제하의 기사에서 ▲시장측근들의 땅이 개발예정지에 포함되거나, 투기꾼들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이 보도는 시장이 마치 측근들에게 개발정보를 알려주거나, 측근들의 땅을 산단개발지역에 포함시켜 땅투기를 조장했다는 내용으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시장은 광주전남혁신도시 지구에 편입된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6년초 대토부지의 진입로 부지 소유자인 최모 씨집을 방문, 기업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부지매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던 것으로 미래산단 지정과 관련해 개인간 토지거래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나주시장 땅투기 의혹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는 지난 5월 14일 및 5월 29일자 미래임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땅 투기 의혹 보도 관련 기사에서 신정훈 나주시장이 직접 땅주인을

찾아가 임야를 팔 것을 종용하고, 측근들에게 개발예정지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여 투기를 조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와 신 시장은 개인간 토지거래를 종용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기업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소 부지 매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던 것이며, 신 시장은 보도에 언급된 땅 매입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미래산단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유출하여 땅 투기를 조장했다는 의혹과 무관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7월 18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시아일보> 호남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나주시장, 수차례 개인토지 매각 종용 논란”)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일보 : 『나주시장 땅투기 의혹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5일자 호남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제기한 보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언론사가 이를 위반하고 재판결과를 모르는 것처럼 후속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5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남 경 필
 피신청인 : 일요서울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08. 7.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서울 :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보석 스캔들’ “부인 회사와 무관하다” 거짓말 들통』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4일자 6면)

내 용 : 한나라당 4선 남경필 의원은 부인이 동업한 보석 판매회사인 R사에 2005년 12월 15억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남 의원은 당시 R사 주식 15만주를 부인의 투자 증용으로 액면가 500원짜리를 1만 원을 주고 산 것으로 2006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서에 게재돼 있다. 그동안 남 의원은 부인인 A씨와 동업자 L씨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관련 회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회사가 남 의원 부인과 동업자가 경영권 관련 법정 다툼의 한 가운데 있는 회사로 무관하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L씨측에서는 남 의원 부인이 R사 인수 과정에 남 의원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남 의원 부인 동업자 L씨 측에 따르면 R사는 보석 판매 및 유통 법인이었던 R.K라는 회사의 후신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R.K사는 남 의원 부인인 A씨와 공동대표였던 L씨가 주식편취 의혹과 절도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만든 보석 판매회사다.

무엇보다 동업자 L씨 측에서는 남 의원 부인인 A씨가 R.K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편법으로 ‘주식편취’를 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장을 제출했다. 또한 중앙지검에서는 부인인 A씨가 지분 편취 관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특히 L씨 측에서는 “‘주식편취’를 통해 50대 50의 지분 비율이 깨지고 남 의원 부인 A씨가 커짐으로써 R.K 경영권을 빼앗긴 배경이 됐다”며 “이후 대주주가 된 A씨가 R.K사 자산을 R사로 일방적으로 매각하면서 R.K사를 중이회사로 만들고 R사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L씨 측은 “부인인 A씨가 경영권을 탈취하는 데 남 의원의 후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보내고 있다. 이에 L씨 측에서는 “남 의원의 2006년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R사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이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고 이번 소송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숨기질 않았다.

동업자 L씨 측, “남 의원 지분투자는 큰 건”

한편 동업자 L씨 측의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말까지 남 의원 부인의 변호를 담당했던 K 변호사는 “R사는 원래 회계사 한모 씨의 회사였는데 남 의원과 부인 A씨가 인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L씨 측의 ‘R.K 자산이 무자료로 R사에 건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남 의원 부인인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남 의원과 R사는 무관하다”면서도 “단지 투자 차원에서 한번만 봐달라고 남편에게 얘기해 15억 원을 투자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남편의 지분을 처분하는 게 낫다는 충고를 받아들여 3~4개월 후 전액 다시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인 A씨는 R사 설립과 관련해 “R사 대표로 있던 황모 씨가 투자 및 동업계약서를 가져와 임시방편적으로 보석관련 정관을 넣어 R사를 차리고 지분 15.7%를 보유 했다”며 “당시 주위에서 남편이 정치를 하니 부인이 보석 관련 사업을 하는 게 안 좋다고 해 빠지려 했지만 잃은 게 너무 많아 새 사람에 인수하는 동안 회사를 도왔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28일자 남 의원의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서에는 남 의원이 R사 주식 15만주, 부인 A씨는 11만4000주를 출자했다. 그러나 2007년도 3월 30일 재산공개 내역서를 보면 남 의원은 R사 주식 0주로 다 처분했고 부인 A씨는 기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 R사 지분 참여 사실이 밝혀지자 남 의원은 처음에는 ‘R사와 무관하다’, ‘부인 일과는 상관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에 본지는 지난주 남 의원 변호인측에 남 의원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남 의원이 R사의 지분 참여 배경에 대해 남 의원 측이 보낸 공식 답변에는 “R사가 2005년 신규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중 자금이 필요해 부인 A씨에게 말했고 이에 남 의원이 15억 원(20%)의 지분을 2005년 12월 21일 취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언제 왜 지분을 처분하게 됐느냐는 질의에 남 의원 측은 “R사의 신규사업진출이 무산되면서

부인인 A씨가 R사에 자금회수 요청을 해 R사의 대표 오모 씨가 남 의원의 지분을 2006년 4월 4일 날 매입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남 의원과 부인 A씨가 R사 설립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공식답변서에는 “R.K 사가 R사에 채고 재산을 매각한 것은 2005년 10월이며, 오 사장이 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시점이 2005년 12월 5일이고 이때는 남 의원 부인 A씨가 소액주주로 경영권은 없었다”며 “남 의원의 증자 참여는 같은 해 12월 21일로 함께 지분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남 의원, 보도정지 가처분신청...결과 주목

한편 남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지를 상대로 보도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보석 스캔들 비화 1탄’ (736호)에 이어 2탄을 준비 중인 본지에 대해 “실명 표시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갖고 있는 신청인의 인격권,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의 처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실명을 거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서울 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남 의원은 “신청인의 실명을 표시하거나 ‘남 모 의원’, 또는 ‘N모 의원’ 등의 표현이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본지는 소명서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며 “공직자의 재산 변동 상황과 관련된 보도는 공직자 윤리법에 당연시하고 있다”고 가처분 불인정 소명자료를 서부지법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법 민사21부는 금명간 남 의원의 ‘보도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낼 예정으로 결과가 어떻게 날지 주목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법원의 보도정지 가처분결정 위반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4일자 정치면에 “남경필 한나라당의원 부인 보석스캔들 2탄”이라는 제목하에 보도를 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은 ‘남경필의원이 부인 회사와 무관하다고 거짓말하였다가 들통

났다, 법원이 금명간 남 의원의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낼 예정으로 결과가 어떻게 날지 주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경필 의원은 부인 회사와 무관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일요서울의 질의에 있는 사실 그대로 해명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일요서울신문사는 2008년 6월 23일 법원의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가처분 결정의 내용은 ‘일요서울신문사는 일요서울 및 일요서울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남경필 의원 부인 보석스캔들 전모 제1탄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대한 추가보도를 함에 있어서 남경필의 실명을 표시하거나 남모 의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일요서울신문사는 가처분결정 내용을 6월 23일 알고 있었으므로 6월 24일 배포한 신문기사에 재판결과를 아직 모르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입니다. 일요서울신문 6월 24일자 남경필 의원 관련 보도는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되는 보도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남경필 의원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24일자 정치면에서 “남경필 한나라당의원 부인 보석스캔들 2탄”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금명간 남 의원의 보도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낼 예정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6월 23일 이전에 보도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7월 22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요서울> 정치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부인 ‘보석스캔들’”)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

머지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일요서울 : 『남경필 의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7일자 13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대형차 전용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파크로드사가 군산항을 기항지로 삼을 계획을 세웠으나 군산해양항만청이 항만운영세칙을 변경하지 않아 이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청장 류 영 하)

피신청인 : 전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라일보 : 『파크로드사, 대형차선박기항지 목포항
으로 이전 군산항 활성화 ‘찬물’』 제하
의 기사 (2008년 6월 5일자 8면)

내 용 : 군산항을 기점으로 중동 노선을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던 파크로드사의 대형차 전용 선박이
당초 계획을 수정해 목포항으로 기항지를 옮길 것
으로 알려져 군산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4일 군산항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형차 전용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파크로드사는 중국 안휘성
자동차회사에서 생산한 버스 300여 대를 지난 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군산항에서 환적하는 것을
시점으로 중동노선의 항로를 신설하기로 했으나
군산항의 항만 운영세칙 변경 불가로 인해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목포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파크로드사는 목포항을 기점으로 매월 1~2차례
중동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면서 타타대우상용차
에서 생산하는 대형트럭 등 대형차 300여 대를 우
선 운송하기로 하고 창원 대우버스와 중국 환적버
스도 단계적으로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군산항에서 환적할 중국 버스도
목포로 옮겨지게 됐으며 최근 현대상용차에서 생

산돼 중동으로 운송될 버스도 조만간 목포로 옮겨
져 선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파크로드사는 당초 군산항을 기점으로 중동
노선을 운항할 경우 중국 환적 화물은 물론 마산
까지 육로 운송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던 타타대우
상용차 비용 절감을 기대하면서 창원 대우버스도
같이 운송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일부 하역사들이 자동차 전
용부두에서만 취급이 가능하게 돼 있는 군산항 운
영세칙 변경 요구를 운영회사 선정 규정에 위배된
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항만 관계자들은 “군산항 활성화
화를 위해서는 운영세칙도 탄력적으로 운영, 적용
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이 개방돼야 하는데 아
쉬움이 있다”며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칙
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다양
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
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파크로드사, 대형차 선박 기항지 목포
항으로 이전” 군산항 활성화 「찬물」 관련 정정보
도문

• 내 용 : 지난 6월 5일자 본 신문에서 보도한 내
용에 대하여 파크로드사는 군산항을 기점으로 대
형차 선박 중동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 없었으며,
특히 군산항 항만운영세칙 변경 불가로 인해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목포항으로 기항지를 옮길 계획
도 전혀 사실과 다르며, 자동차 화물 처리 수요가
발생하면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함.

또한, 파크로드사는 목포항을 기점으로 매월 1-2차레 중동을 오가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도 없었고, 현대상용차에서 생산하여 중동으로 운송될 버스도

목포항으로 옮겨 선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 보도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오보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

전주시가 유수율 제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회가 확정의결하여 공개한 결과를 번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무모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주시 (시장 송 하 진)
피신청인 : J T 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J T V : 「뉴스&뉴스」 프로그램 (2008년 6월 19일 20:30)

내용 : 사업자가 뒤바뀌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시 유수율 제고사업. 전주시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공표된 사업자 선정 결과를 왜 번복했는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이 입수한 평가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포스코건설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약약을 문제 삼아 평가위원들에게 현대측의 감점 조치를 수십 차례 요구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급수과장은 전주시의 검토 내용에 따라 감점 사항까지 함께 의결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총점집계표에 감점이 없는 걸로 이미 반영이 되었고 감점사항을 반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 결과 감점이 없는 것으로 상정했다며 포스코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전주시의 의견을 수용하고 두 회사 모두 감점이 없는 것으로 결정해 현대건설을 적격자로 최종 평가점수를 의결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이 뒤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서류에 회사명과 직인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포스코

건설의 이의제기로 현대건설이 감점 처리된 것이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왜 업체에 대한 감점사항을 번복했을까? 당초 전주시는 평가위원회 이전에 이미 포스코와 현대가 제출한 입찰서류에 감점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정밀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포스코에게는 4개의 감점사항으로 최대 3점이, 현대에게는 문제의 약약서 1개의 감점사항으로 최대 2점의 감점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포스코의 전주시 로고 삽입 등 명백한 감점사항이 해당되는지 판단이 어려웠고 현대측의 성과보증 약약서는 직인을 찍어 사본을 기본설계보고서에 첨부하라고 지시한 사항이어서 감점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시는 현대와 포스코 모두 감점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당시 평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해 현대가 적격자로 선정됐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현대는 명백하고 포스코는 좀 불명확해 확실하게 이 것을 감점해라 그게 적용하기가 복잡하더라고.

하지만 전주시가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을 반영해 종합평가 점수를 확정 의결하고 이를 공개했는데도 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번복하면서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다시 조정한 감점과 평가위원회의 설계평가점수를 합쳐 최종 적격업체를 뒤바꾼 것은 이미 적격업체를 선정 공표한 평가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전주시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전화 인터뷰 : 감점사항은 집행부 소관이다. 행정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문제가 아니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주시 유수율 제고사업은 허술한 국가계약법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발주청인 전주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이의제기에 따른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가계약법령과 입찰안내서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시 고문 변호사 자문회의를 통해 감점 여부를 정했고 이 자문회의 결과를 갖고 사업자를 번복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규정이 없으니깐 당시에 법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따라서 처리한 것은 적절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요.

Q : 법률 변호사 자문회의라는 것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건데?

A : 법적 근거가 없어도 그냥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은 신뢰성이 있잖아요. 법으로는 없어요,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것은.

전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평가위원회가 의결 공표한 사항을 뒤바꾼 무모한 행정인지, 위법 부당행위를 피해가려는 변명인지 이제 재판부의 판단과 사정기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대측의 성과보증확약서에 직인을 찍어 사본을 기본설계보고서에 첨부하라고 지시한 사항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9일자 저녁 8시 뉴스에서 “사업자 번복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전주시가 현대측에 성과보증확약서에 직인을 찍어 사본을 기본설계보고서에 첨부하라고 지시하여 감점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대와 포스코 모두 감점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대가 적격자로 선정되었는데도 전주시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고문 변호사 자문회의를 통해 감점 여부를 정했고, 이 자문회의 결과를 갖고 사업자를 번복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주시에서는 현대측에 성과보증확약서에 직인을 찍어 사본을 기본설계보고서에 첨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현대측이 성과보증확약서에 직인을 찍어 사본을 기본설계보고서에 첨부한 사실이 감점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하다는 고문 변호사 자문회의 내용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보도 말미에 “법으로는 없어도 전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평가위원회가 의결 공표한 사항을 뒤바꾼 무모한 행정인지, 위법부당행위를 피해가려는 변명인지 이제 재판부의 판단과 사정기관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보도를 하여 전주시가 무모하고 부당하게 업체를 뒤바꾼 것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공연기획사인 신청인이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일반단체 대관일정 절반 이상을 독차지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공연마루 (대표이사 황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남도일보 : 『광주문예회관 하반기 대관 심사 ‘특정 업체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0일자 1면)

내 용 : 광주문화예술회관 하반기 대관 신청 심사에 있어 특정 기획사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 공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 실정에서 일부 기획사가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독차지 한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지역공연계에서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광주국제 정음성음악제, 광주비엔날레 등 굵직한 행사들로 인해 하반기 대극장 대관 신청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문예회관은 특정업체에게 대극장 사용을 한달여 동안 대여키로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19일 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무대정비에 이어 ▲20일부터 28일까지는 유네스코동아시아 어린이공연예술제, ▲9월 16일부터 19일, 27일부터 30일까지는 광주국제공연예술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임방울국악제 등 시에서 주최한 공연들이 줄줄이 대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하반기 일반 단체가 대관할 수 있는 날은 총 162일 중 시와 국가기관, 시립예술단체 공연예약 77일을 제외한 85일.

하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공연마루’는 오는 7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맘마미아’라는 공연으로 대관예약을 신청, 대극장 사용이 42일로 일반 단체의 예약이 가능한 날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주문예회관 하반기 대관 심사 ‘특정 업체 특혜’ 논란 사실과 달라(또는 공연마루 특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0일 사회면에 광주 문화예술회관 하반기 대관 심사 ‘특정 업체 특혜’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마루가 대관을 독차지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하반기 대관 심사 ‘특정업체 특혜’ 논란에 대한 정정보도

전문공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광주지역 실정에 일부기획사 ‘공연마루’가 오는 7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뮤지컬 <맘마미아>라는 공연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독차지 했다는 보도 되었으나 사실 이 기간의 대관은 ‘공연마루’의 대관이 아니다.

‘공연마루’는 <맘마미아> 공연을 공동주최하는 4개의 회사(전남일보, KBC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공연마루)중 하나일 뿐 ‘공연마루’로 대관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전남일보 측에서 대관을 승인받았다. 또한 2008년 문화예술회관 하반기 공연장 심의 결과를 회관측에 확인한 결과 9월 10일(1일간), 10월 5일(1일간), 12월 23일~25(3일간) 총 5일 대관승인을 받았다.

“공연마루”는 광주지역에서 지난 10여년간 지역 공연문화 발전과 공연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온 기획사이다. 이번 하반기 대관 심사에 있어 “특정 업체특혜”대한 논란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 되었다. □

교단을 탈퇴한 신청인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한국교회신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한국교회신보 : 『양의 탈쓴 양심선언 교계비상』 제하
의 기사 (2008년 6월 18일자 11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79의 보도내용 참조>

<2008서울조정17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00,000,000원



교단을 탈퇴한 신청인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CDN크리스천데일리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CDN크리스천데일리뉴스 : 『양심선언 배○○ 목사 부
적절한 관계 드러나, 한국교회 검증
절차 없이 받는 것 큰 문제』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5일자 2면)

내 용 : (전략)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을 한 배 목사가 자신
의 도덕적인 결함을 감추기 위한 ‘양심선언’으로
포장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자회견서 배 목사는 “2006년 몽골선교사로 파
송 받아 활동하던 중 2008년 노부모의 중환으로
교단측에 국내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냉정하게
거절하는 모습에서 교단 신앙에 의심을 품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탈퇴배경을 밝혔

다. 배 목사는 또 “몸담았던 소속 교단의 교리 구원
관 등이 기성교회와 다르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조만간 교단내의 각종 비리에 관한 정보를 발
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
협의회(대표 이사장 이○○ 목사) 주선으로 열렸

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A 교단측은 배씨의 부적
절한 행위를 몇 번에 걸쳐 용서하고 목회자로서
새 출발을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양심선
언’을 통해 교단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교단측은 이 모든게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한 일로서 덮으려 했으나,
거짓을 감추고 진실을 호도하는 배씨의 기자회견
이 크게 잘못됐음을 알리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배목사가 속해 있는 ○○교회 K장로는 “본처 K
씨와는 2006년 5월에 이혼하고 2007년 4월에는 J모
여인(교회성도)과 결혼한 후 몽골생활에 싫증이
난 J모 여인(처)이 국내에 머물기를 원해서 배씨
가 노부모의 노환을 핑계 삼아 교회를 공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15일자 2면 『양심선언 배○○
목사 부적절한 관계 드러나, 한국교회 검증 절차
없이 받는 것 문제』 제하의 기사에서 기자회견
을 통해 양심선언을 한 배 목사가 자신의 도덕
적인 결함을 감추기 위한 ‘양심선언’ 포장한 것
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
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 예수교 침
례회 측과 홍○○ 목사, 김○○ 장로는 교단 내에
비리와 해외 선교 부정의 실체가 폭로 될 것이
두려워 교단 측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연약한 배 목사를 음해 공작 했으며 또한 배 목
사의 허물을 찾지 못해 사사로운 가정 문제를

들추어내어 이를 빌미삼아 도덕적으로 불량한 사람으로 매도한 것으로, 배 목사는 대한 예수교 침례회 교단에서 약 14년여 동안 국내 및 몽골 해외 선교사로 심혈을 다해 목회자로 시무했으며, 지난 3월 23일 83세의 노부모가 생명이 위독하여 귀국 하였고, 전 처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2006년 5월 이혼, 가정이 파탄되자 교단 총재 목사인 이○○ 목사를 찾아가 부모 병고에 관한 딱한 사정과 자녀 교육에 관한 가정 문제를 말하고 국내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목사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고, 이에 이 목사의 1인 독재, 교단 측의 불법 부당함을 항의 하다 탈퇴 당한 배 목사는 대한 예수교 침례회의 이단성의 실체를 언론을 통해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CDN크리스천데일리뉴스 : 『배○○ 목사 기자회견 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15일 2면 「양심선언 배○○ 목사 부적절한 관계 드러나, 한국교회 검증 절차 없이 받는 것 큰 문제」제목의 기사내용 중 5월 29일 A교단 광주교회 소속 배○○ 목사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을 한 배 목사가 자신의 도덕적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으로 포장한 것으로 드러나”, “A교단측은 배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몇 번에 걸쳐 용서하고”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배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한게 아니고, 자신의 신앙적 양심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혼과 관련하여 배 목사의 부적절한 행위때문이거나 교단측이 용서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많은 노조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정치파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6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집 수 일 : 2008. 7. 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일보 : (1) 『‘경제숨통’ 죄졌다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1면)

내 용 : 민주노총이 2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말은 총파업이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금속

노조 중심의 114개 사업장에서 8만8000여 명(노동부 집계)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은 72만 명에 이른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에 들어가며 “생산에 타격을 주는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명분은 ▶미국 쇠고기 수입 저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폭등하는 물가 안정 ▶대운하 정책 폐기다. 근로조건과는 관계없는 것들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2006년 말 비정규직법 반대 파업 이후 1년 만이다.

검찰은 이를 ‘쇠고기 재협상 등 정치적 문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지도부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현대차는 이날 주·야간 2시간 부분파업으로 300

억 원이 넘는 생산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다. (후략)

(2) 『한 해 빼곤 21년째 매년 파업…현대차 ‘파업중독’ 왜』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3면)
내 용 :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일 파업했다. 1987년 노조가 생긴 이래 94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원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고 불법파업도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중독’은 왜 매년 반복되는 것일까.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 내 노동운동 계파인 ‘실천하는 노동자회(실노회)’ 소속이다. 그는 96~97년과 99~2000년 현대차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현대차 안에는 이런 노동조직이 10여 개나 된다. 이들 계파는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을 하며 권력투쟁을 벌인다. 현대차의 한 조합원은 “선거때만 되면 상대 조직을 누르기 위해 온갖 음해가 난무한다”며 “이러다 보니 계파별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게 되고, 파업은 그 부산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중략)

지난달 12~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묻는 총파업 투표, 현대차 노조원들은 48.5%만 찬성표를 던졌다. 처음으로 파업을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달 27일 실시한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는 67%가 파업을 하자고 했다. (후략)

(3) 『“왜 현대차가 앞장…우리가 민주노총 봉이냐”』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3면)

내 용 : 2일 오후 3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현대차 노조)가 ‘쇠고기 재협상, 임단투 승리’를 내건 금속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일제히 멈췄다. 울산공장에서 만난 노조원 A씨(47)는 “GM대우·쌍용차는 모두 빠졌는데 우리만 민주노총·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나선 건 집행부의 약속 위반이다. 우리가 봉이냐”며 집행부를 성토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과 윤해모 현대차 지부장은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현대차 지부만 내세우는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

인터넷에도 파업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현대차 지부 집행부가 속한 현장 조

직인 민투위의 자유게시판에는 “분명 지난번에 지부장이 전체가 아니면 파업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만 또 총대 메는데…”(ID조합원), 금속노조 자유게시판에는 “우리가 금속노조의 (파업)도구나 이럴거면 파업 깃발 내려라”(ID 현자조합원)고 비판했다. 현대차 지부 자유게시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외부에는 폐쇄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 지부의 장○○ 대변인은 “기아차도 참여했기 때문에 나홀로 투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략)

울산지검 관계자는 “현대차 지부는 산별노조의 파업과 연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쇠고기 재협상 등 정치적 문제를 주목적으로 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한 뒤 “핵심 주도세력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 처벌 절차를 밟는 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4) 『현대차는 민주노총 불법파업 도구인가』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26면)

내 용 : 민주노총이 기어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 단체 산하 금속노조는 어제 현대차 등 주요 사업장에서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였다. 오늘부터는 전국의 조합원들이 ‘상경 투쟁’을 하고, 촛불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기 끊고, 철도까지 세우는 파업’을 9월까지 이어갈 작정이라고 한다. (중략)

이번 파업은 조합원 내부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된 것이라 벌써부터 후유증을 낳고 있다. 총파업의 전초 부대로 나선 현대차의 경우 조합원들이 정치파업을 반대했는데도 강제 동원됐다. 단위사업장 노조는 산별노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위계 때문이다. 파업 이후 이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는 ‘아예 산별노조를 탈퇴하자’는 성토들이 쏟아지고 있다.

나라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에 타격을 주는 파업을 벌인다니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지난달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경제는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당장 어제 하루 파업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차질만 400억 원이 넘는 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쓴 7월 3일 1면 『‘경제 숨통’ 죄책다는 민주노총』 보도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민주노총은 2일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43개 지회 조합원 114,999명이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화학섬유연맹 등도 2부분파업을 전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6시경 서울에서는 시청광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고, 광주병 미쇠고기 재협상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2시간 부분파업은 모두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거친 파업이며, 노동자의 건강권에 직결한 것인 만큼 노동부와 검찰이 이 파업을 불법으로 내모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 조정에서 몇 개 지부에 대해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2001년, 2003년 대법원 판례에서 행정지도에 따른 쟁의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검찰 등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차가 이날 2시간 파업으로 300억 원이 넘는 생산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회사가 잡아놓은 생산계획에서 약간의 차질을 가져 온 것일 뿐, 손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지 7월 3일자 3면 『한해 빼곤 21년째 매년 파업…현대차 ‘파업중독’ 왜』 기사에서 현대차의 한 조합원은 “~파업은 그 부산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현대차 노조원들은 48.5%만 찬성표를 던졌다. 처음으로 파업을 거부한 것이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금속노조 현대차조합원은 금속노조의 민주노총 총파업투표에 참가했으며, 금속노조는 57%가 가결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기사 하단의 “연례행사 현대차 파업의 후유증에 대한 표와 손실액”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어졌지만 회사는 매년 급성장해서 수조원대의 순이익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본지 7월 3일자 3면 『“왜 현대차가 앞

장…우리가 민주노총 봉이나”』 기사에서 인터넷에도 파업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찬성해서 가결한 파업을 두고 파업에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마치 다수인양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조합원이 썼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썼는지 알 수 없는 인터넷에 올라온 익명의 글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해 객관적이지 못하고, 파업에 부정적인 목소리만을 담아 이번 파업이 정당성이 약한 듯한 인상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지 7월 3일자 26면 『현대차는 민주노총 불법파업 도구인가』 기사에서 “현대차는 민주노총 불법파업 도구인가”는 제목은 왜곡된 사실로 밝혀져 지면을 통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7월 3일자 ‘민주노총 파업’ 보도와 관련, 금속노조는 검찰이 불법정치파업이라고 규정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했고, 현대차 지부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세운다는 보도에 대해 작업화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세운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중앙일보 A2면에 2008년 8월 1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앙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1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oins.com>)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기

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교단을 탈퇴한 신청인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장로교연합신문

종 재 부 : 서울제5종재부

접 수 일 : 2008. 7. 4.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장로교연합신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대표이사 신 영 섭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8년 8월 1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장로교연합신문 1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2.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장로교연합신문 : 『개인치부 감추기 일환 기자회견 충격』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3일자 1면)

내 용 : <2008경기조정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경기조정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2008. 7. 25.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배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엔씨씨라이프방송

•제 목 : 배○○ 목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18일자 11면 『개인치부 감추기 일환 기자회견 충격』 제하의 기사 내용 중 배○○ 목사와의 통화부분은 타 신문 기자와 통화한 것으로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양심선언 한 것’이라 보도한 부분에 대하여 배○○ 목사는 본지에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에 의해 양심선언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의 쏫불시위 현장 제보가 거짓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 ○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27일 새벽, ‘광란의 태평로’는 있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8일자 사회면)

내 용 : (전략)

새벽 2시경 코리아나 호텔 앞에 50여명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원모양으로 모여들었다. 자연스럽게 기자도 사람들을 헤치고 다가갔다. 20대 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중앙에 있었다. 기자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 여자가 뉴라이트다” “우리한테 빨갱이라는등 폭도라는 등 욕을 한다” “조금전까지 남자가 옆에 있었는데 그 X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그녀에게 사실이라고 물었으나 아무 답없이 전화기를 꺼내 여기저기 눌러보기만 했다. (중략)

조선일보에 목격담을 제보한 고○○ 씨가 주장한 대로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 약간의 시차가 날 수도 있다. 만약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대로 고○○ 씨가 폭행을 당한게 사실이라면, 시위대는 고씨를 라이트코리아 봉 대표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말 폭행을 당했다면 유감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고씨의 입을 빌려 “시위대가 혼자 남겨진 그 여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사실은 완전한 날조라고 본다. 기사에서 특히 이 부분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코와 입을 수건으로 가리고 눈만 내놓고 모자를 쓴 건장한 남자 10여 명이 여자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듯하더니, 한 남자가 여자의 목을 팔뚝으로 감았다. 다른 남자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또 다른 남자는 여자 뒤에서 여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여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X 잡아 죽여!” “미친X”... 여자를 둘러싼 시위대는 더 크게 소리쳤다. 여자를 둘러싼 남자들 중 일부가 여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사색이 된 여자는 한 남자의 팔에 목이 감긴 채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도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왜 폭행 현장을 찍지 않았고,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왜 기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고 씨의 목격담에서 기자가 또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있다. 고 씨는 “상황이 종료된 후 30분 정도 지난 후 정신을 차려 코리아나 호텔 쪽으로 가니깐 호텔은 엉망이었다. 유리창이 깨진 상태였고, 시위대가 던진 쓰레기가 로비 안에까지 쌓여 있었다”고 말한 대목이다.

상황이 종료 됐을 때, 코리아나 호텔 주변은 전경 1개중대가 철통같이 둘러싸고 있었고 로비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27일 코리아나 호텔의 로비 유리창이 깨진 적이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굳게 닫힌 로비 안을 누구도 들여다 볼 수 없었다. 당연히 로비 안까지 쓰레기를 투척하는 건 불가능했다. 도대체 고 씨는 어떻게 철통같은 경비의 전경중대를 뚫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으며, 유리창이 깨졌다는데 전경들은 뭘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이미 전경이 둘러싸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는데, 만에 하나 유리창이 깨졌다는 치더라도 고 씨가 목격할 때까지 그 깨진 유리창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것일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데일리서프라이즈 김○○ 기자가 학사모 안전지

김이 단장 고〇〇이 시위대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고〇〇은 폭행을 당했고 얼굴에 할름을 당해서 치료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사에서는 코리아나호텔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확인 결과 고〇〇은 시위대에 폭행을 당한 후 코리아나호텔에 가보니 코리아나호텔 유리창이 깨어져 있고 7월 3일 현재도 깨져서 수리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일반인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일 01시 30분경 시위대 한명이 부상을 당하여 응급처치를 한 후 119구급대를 불러 실어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며 MBC 28일자 9시뉴스에 고〇〇 씨 활동 상황이 방송되었고, 조선일보에 목격담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인터넷 게시판을 본 뒤 취재를 요청해와 그에 응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 『27일 새벽, ‘광란의 태평로’는 있지 않았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공동대표 고〇〇 씨는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현재 치료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전후 경위를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여성에 대한 집단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데일리서프라이즈> 사이트의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2008년 7월 13일 18시부터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알려드립니다> 본문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 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

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서프라이즈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3일자 종합면)

내 용 : 본보는 지난 6월 28일자 『27일 새벽, 광란의 태평로는 없었다』와 관련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공동대표 고〇〇 씨로부터 관련 기사가 왜곡돼 있다는 이유로 삭제 및 공식사과를 본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보는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지 않다는 판단 아래 고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고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삭제 및 공식사과’를 요건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본보는 고〇〇 씨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공지를 본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쌍방간 합의를 봤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본보의 지난 6월 28일자 『27일 새벽 ‘광란의 태평로’는 없었다』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공동대표 고〇〇 씨는 시위 현장에서 폭행을 당해 현재 치료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전후 경위를 모두 목격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여성에 대해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인 병원이 진료비용을 과잉청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8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뉴스후」 프로그램 (2008년 6월 28일 21:45)

내 용 : (전략)

▷기자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병원의 진료비 청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기관입니다. 병원의 진료비를 감시하는 곳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믿음이 절대적인 곳입니다. 최근에 사퇴 분위기에 몰려 전임 심사평가 원장은 임기를 일 년 넘게 남겨 둔 채 사퇴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장종호 원장은, 그런데 강동가톨릭병원의 이사장입니다. 병원을 감시하는 기관에 병원 이사장이 낙점된 겁니다.

▷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위원장) : “심평원은 일단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내역을 가지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 이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는 결코려운 기관이죠.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심평원장으로 가 있다면 심평원의 신뢰에 금이 가죠.”

▷기자 : 장원장이 있던 병원도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3,200만 원을 과잉 청구했다가 심사평가원 심사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장원장은 또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료재단연합회 회장을 3년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장종호 심사평가 원장은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장종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심평원장으로서의 직책이나 직분이나 직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충실하지 어저께 제가 무슨 의사단체장이었다고 해서 의사단체를 대변할 것도 아니고 그럴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강동가톨릭병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28일자 「뉴스 후」에서 “임기 보장하자더니...” 이라는 제목으로 강동가톨릭병원이 “과잉청구로 걸렸다”(자막은 “적발”)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동가톨릭병원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행위 후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용에 대한 청구를 한 것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내역에 대하여 심사 후 청구분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고 삭감한 것으로, 강동가톨릭병원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추후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재심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청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강동가톨릭병원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시설에서 상습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은폐·묵인되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8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경주온정마을 (대표 손 ○ ○)
피신청인 : 일간 경북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간 경북신문 : 『장애시설 수용자 성추행 묵인』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15면)

내 용 : 경주시가 관내의 장애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탁상행정으로 끝내 시설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주시 사회복지과는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몇 달간 생활 지도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체장애인 민모(여,27) 씨가 온정마을에서 생활 지도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으나 철저히 은폐, 묵인 돼 온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체가 불편한 민씨는 여러 차례 생활지도원의 성추행에 거부 했으나 매번 묵살 당하자 자신이 성추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와 지인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위급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한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핸드폰을 사용하 자 생활 지도원들은 민씨의 핸드폰을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의 어머니는 즉시 시설 측에 항의하고 책임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온정마을측은 묵살했다.

시설관계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 했다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했다”며 “사건경위를 확인 해 보겠다”는 말을 했다. (중략)

온정마을은 시로부터 시설운영비 7억 원을 지원 받고 있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한 번도 감사에 적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장애시설 수용자 성추행에 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자 사회면에 “장애시설 수용자 성추행 묵인”이라는 제목으로 경주 온정마을에서 생활지도원들이 수용된 지체장애인 양모 씨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으며, 철저히 은폐·묵인 돼 온 것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양모씨의 어머니가 즉시 시설측에 항의하고 책임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온정마을측은 묵살했다고 보도했으며, 시로부터 지원받는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주시 사회복지과는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이 몇 달간 생활지도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당한다는 것을 알

면서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주온정마을에서는 성추행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양씨 어머니가 성추행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온정마을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운영비 사용내역은 국가 복지 정보시스템으로 매월 경주시로 정산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경주시 사회복지과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장애시설 수용자 성추행에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보는 지난 6월 17일자 15면에 『장애시설 수용자 성추행 묵인』 제하의 기사에서 경주온정마을에서 생활지도원이 수용된 지체장애인 양모 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고, 양씨가 이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주변에 알리려고 하자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방해했으며, 이에 대해 양씨의 어머니가 시설 측에 항의하고 책임자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으나 온정마을 측이 이를 묵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온정마을 측은 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생활지도원이 양씨의 핸드폰 사용을 방해하거나 온정마을 측이 양씨 어머니의 해명 및 사과 요구를 묵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본보는 온정마을에는 시로부터 지원받는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온정마을 측은 운영비 사용내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가복지 정보시스템에 의해 매월 경주시로 정산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 경북신문 15면에 2단 상자기사로 2008년 7월 18일까지 게재하되 제목(장애시설 수용자 성추행에 관련 반론보도)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경주시, 지도 감독 있으나마나)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간 경북신문 : 『장애시설 수용자 성추행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8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시설에서 상습 성추행이 발생했으나 은폐·묵인되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경주온정마을 (대표 손 ○ ○)
피신청인 : 경상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상매일신문 : 『“큰 문제 아닌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7일자 16면)
내 용 : <2008대구조정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대구조정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대구조정8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복지시설 수용자 성추행에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보는 지난 6월 17일자 16면에 『“큰 문제 아닌 것으로 확인”』 제하의 기사에서 경주온정마을에서 생활지도원이 수용된 중증장애인 양모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고, 양씨가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주변에 알리려고 하자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방해했으며, 이에 대해 양씨의 어머니가 시설 측에 항의하고 책임자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으나 온정마을 측이 이를 묵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온정마을 측은 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생활지도원이 양씨의 핸드폰 사용을 방해하거나 온정마을 측이 양씨 어머니의 해명 및 사과 요구를 묵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상매일신문 16면에 2단 상자기사로 2008년 7월 18일까지 게재하되 제목(복지시설 수용자 성추행에 관련 반론보도)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강동 온정마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작태 폭로)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상매일신문 : 『복지시설 수용자 성추행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5일자 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로 밝혀졌다 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0
청 구 명 : 추후 · 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동탄 신도시 인테리어업체 등에 ‘자릿세’, 아파트 관리소장들 역대 갈취』 제하의 기사 (2007년 10월 31일자 A14면)

내 용 : 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벌이는 인테리어 업체 등에게 각종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내다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입주 아파트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체 등을 상대로 행사비 및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갈취)로 조모(60) 씨 등 아파트 관리소장 3명과 박모(32) 씨 등 용역업체 대표 2명에 대해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S아파트 관리소장 조씨는 지난 9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인테리어 업자 신모(여·44) 씨 등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68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동탄신도시 S아파트 관리소장 인테리어업체 갈취 혐의”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7년 10월 31일자 A14면에 『동탄 신도시 인테리어 업체 등에 자릿세, 아파트 관리소장들 역대 갈취』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입주아파트에서 판촉행사를 하

는 인테리어 업체등을 상대로 행사비 및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갈취)로 조모(60) 씨 등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동탄신도시 S아파트관리소장 조씨는...업체를 대상으로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출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6천 8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조모(61세) 씨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29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추후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7년 10월 31일자 A14면 『동탄 신도시 인테리어 업체 등에 자릿세, 아파트 관리소장들 역대 갈취』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입주아파트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체 등을 상대로 행사비 및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갈취)로 동탄신도시 S아파트 관리소장 조모(60) 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으나, 조씨는 2008년 5월 2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추후보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7월 28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수도권 I 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선닷컴’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동일한 페

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조선일보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2일자 A14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되었으나 무혐의로 밝혀졌다 II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1

청 구 명 : 추후 · 손해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아파트관리신문

종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추후)

취 하 (손배)

〈2008서울조정190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7년 11월 12일자 1면 『관리소장 3명 구속영장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입주아파트에서 관촉행사를 하는 인테리어 업체 등을 상대로 행사비 및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갈취)로 동탄신도시 S아파트 관리소장 조모(60) 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으나, 조씨는 2008년 5월 2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추후보도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8월 11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파트관리신문〉 1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인테리어업자 협박해 금품갈취한 혐의로”)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파트관리신문 :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1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아파트관리신문 : 『관리소장 3명 구속영장 신청』 제하의 기사 (2007년 11월 12일자 1면)

내 용 : 입주가 진행중인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업자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관리소장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최근 입주중인 동탄지역 S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막을 쳐놓고 관촉행사를 하는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행사비용과 쓰레기 처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이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가 시작된 지난 9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관리·경비직원을 동원해 예치금을 내지 않으면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찾아가 행정기관 미신고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83개 업체로부터 6천 8백여 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광포만 매립과 산업단지조성이 사천만과 광포만을 황폐화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천시민참여연대 (대표 박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7.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SBS-TV :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 (2008년 6월
16일 16:20)

내 용 : 경남 사천시, 사천만 갯속이 곤양천 하구와 만나는 곳에 드넓은 갯벌을 품고 펼쳐져 있는 광포만이 또다시 매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부족을 이유로 전국에 수많은 방조제를 쌓고 강하구와 연안을 매립해 왔다. 시화호가 그랬고 새만금이 그랬다. (중략)

사천시의 지역주민들은 광포만이 매립되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1. 황금어장을 자랑하던 사천 일대의 바다가 계속되는 매립으로 어족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광포만마저 매립되면 그나마 잡히던 귀한 고기들을 구경하지 못하게 될 거라며 어장의 황폐화를 걱정하고 있다. 아직은 참가오리와 농어 등이 꽤 많이 올라오고 사천 다른 물고기들이 잡히는 등 다양한 어종을 길러내는 바다인데 광포만이 매립되면 산란을 하러 올라오는 고기들이 물길이 막혀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2. 곤양천이 광포만과 만나는 지점에는 기수역 특유의 고운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어 이런 지점에서 자라는 갯잔디 군락이 자라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갯잔디 군락은 어패류의 산란장이 되어주고 치어들의 은신처 구실을 하며

각종 수생동물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귀중한 바다 생태계의 보호막이다.

3. 환경을 생각하는 경남지역 교수들의 모임(환경교)에서 최근 이 지역의 생태조사를 하다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의 보호종인 대추귀고둥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수만 178개로 국내에서 발견된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다. 대추귀고둥은 담수의 영향이 미치는 갯벌에서도 가장 육지와 가까운 상층부에만 서식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광포만이 매립될 경우 쉽게 자취를 감출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4. 사천만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잘피군락 역시 가치 있는 바다 자원이다. 바닷물에 적응해 살고 있는 고등식물로 다른 해조류와는 달리 뿌리와 잎과 줄기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잘피는 많은 어족자원에게 서식지를 제공해 주고 어패류의 산란장이자 치어들의 양육장이 돼준다. 잘피는 스스로 먹이가 되고 먹이가 되는 동식물을 체 몸에 붙어살게 하며 뿌리는 육지에서 유입되는 영양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까지 한다. 많은 나라에서 사라졌거나 훼손된 잘피밭의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우리가 살펴본 광포만은 살아있었다. 수달을 비롯한 회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수리부엉이와 같은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광포만에서 관찰한 조류만 해도 117종에 이른다. 이렇게 풍요로운 생태계의 보고가 개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6. 또 하나 매립을 둘러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미 매립한 땅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멋대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중략) 이미 조선소가 들어와 있는 사천만의 다른 매립지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고 입주자 여의치 않자 조선소에 부지를 내주었다.

7. 조선소가 들어오고 나서 준설토가 쌓여서 인근의 바다와 갯벌이 오염되고 있다. 매립의 보상은

로 내준 갯벌의 굴양식장의 굴들이 다 썩어가고 있었다. 조선소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어서 조선소의 대형 부품이나 재료들을 적재할 장소가 없어서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조선소의 도로 점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한 해안권특별법은 연안 개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지자체에 넘겨주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더 많은 갯벌이 사라질 것이다. 갯벌은 한번 사라지고 나면 되돌릴 길이 없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생각하기에 앞서 미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물은 생명이다” (사천시 광포만 관련) 방영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13일자 오후 4시20분부터 4시50분까지 “물은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천시 광포만을 대상으로 방영하면서 광포만이 마치 황금어장으로 풍부한 어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치게 하였으며, 광포만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이 마치 어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것으로 방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정정 보도합니다.

1. ‘황금어장을 자랑하던 사천 일대의 바다가 계속되는 매립으로 어족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광포만마저 매립되면 그나마 잡히던 귀한 고기들을 구경하지 못하게 될 거라며 어장의 황폐화를 걱정하고 있다. 아직은 참가오리와 농어 등이 꽤 많이 올라오고 사철 다른 물고기들이 잡히는 등 다양한 어종을 길러내는 바다인데 광포만이 매립되면 산란을 하러 올라오는 고기들이 물길이 막혀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라는데 대하여

(반론)

• 사천만은 1969년 남강댐 인공방수로 개설이전에는 황금어장이었으나 폭우 시 매년 수십억㎡의 흙탕물을 수십년간 집중 방류함으로써 토사와 오물이 4~6cm 이상 퇴적되어 어장을 황폐화시킨 직접적인 이유인데도 마치 사천만을 매립하여 어자원이 줄어든 것처럼 검정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하여 시청자들을 오인케 하였으며,

• 아직은 참가오리와 농어 등 사철 다른 물고기들이 잡히는 등 다양한 어종을 길러내는 바다라고 하였으나 사천만의 해저오염으로 참가오리와 농어가 떠난지 오래고, 어종 또한 점차 줄고 있으며, 남강댐 토사 퇴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퇴적층을 준설해야만 산란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오염되었음에도 광포만 산업단지조성이 마치 고기들의 물길을 막는 것처럼 보도 된 것은 현실과 전혀 다른 잘 못된 보도입니다.

2. ‘곤양천이 광포만과 만나는 지점에는 기수역 특유의 고운 모래톱이 형성되어 이런 지점에서 자라는 갯잔디 군락이 자라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갯잔디 군락은 어패류의 산란장이 되어주고 치어들의 은신처 구실을 한다.’는데 대하여

(반론)

• 폭우 시 남강댐의 방류수와 곤양천이 합류하여 흙탕물과 모래가 빠지지 않아 생긴 것으로 남강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현재에도 계속 모래톱이 형성되고 있으며, 남해군 삼동면에는 이보다 더 큰 갯잔디 군락(사진 참조)이 있는데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갯잔디 군락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며, 모래톱에는 당연히 갯잔디가 서식하게 되는 것을 마치 자연 현상인 것처럼 비치게 하여 광포만산업단지조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하였으며, 광포만 모래톱은 만조 시 잠시 잠겼다가 물이 빠지게 되고 남강댐 방류시 바닷물이 민물로 변하게 되어 어패류의 산란장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3. ‘환경을 생각하는 경남지역 교사들의 모임(환경교)에서 최근 이지역의 생태조사를 하다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2급의 보호종인 대추귀고둥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수만 178개로 국내에서 발견된 최대 개체수를 기록했다.’는데 대하여

(반론)

• 대추귀고둥은 민물과 바닷물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서해안과 남해안 전역에 서식하는 것인데도 광포만의 넓은 바다에서 한줄밖에 되지 않는 미량(178개)의 개체수를 마치 국내에서 최대 개체수가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보도하여 광포만 생태계의 우수성을 부각시킨 것은 과장된 보도입니다.

4. ‘사천만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잘피군락 역시

가치 있는 바다 자원이다. 바닷물에 적응해 살고 있는 고등식물로 다른 해조류와는 달리 뿌리와 잎과 줄기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잘피는 많은 어족자원에게 서식지를 제공해 주고 어패류의 산란장이자 치어들의 양육장이 돼준다'는데 대하여

(반론)

• 잘피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사천만 하류의 수심이 깊은 지역은 다소 자라고 있으나, 광포만과 사천만 상류에는 토사가 퇴적되어 수심이 낮아 자랄 수 없는 식물로서 사천만 하류 지역과 광포만을 혼돈하여 잘못 보도되었습니다.

5. '우리가 살아있는 광포만은 살아 있다. 수달을 비롯한 희귀동물이 서식하고 수리부엉이와 같은 천연기념물을 포함해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광포만에 관찰한 조류만 해도 117종에 이른다. 이렇게 풍요로운 생태계의 보고가 개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대하여

(반론)

• 사천만은 십수년 전에는 철새도래지였고 황금어장이었으나 남강댐 방류에 따른 토사 퇴적으로 4~6m 아래의 썩은 갯벌로 인하여 어자원이 고갈되었고, 어패류는 중금속 농도가 다소 높더라도 서식함에도 마치 어자원이 풍부하여 희귀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광포만에 대한 보존 가치를 높이려는 방송은 잘못되었습니다.

6. '매립을 둘러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미 매립한 땅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멋대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는데 대하여

(반론)

• 산업단지를 조성한 2016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서포면장이 사천시장에게 산업단지 조성 건의(2007년 1월)를 하여 광포만을 중심으로 곤양면과 서포면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기본구상(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곤양면발전위원회와 서포발전위원회에서 주민 대부분이 광포만 공단조성건의서를 제출(2,700여 명)하는 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광포만산업단지조성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멋대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못된 보도입니다.

7. '조선소가 들어오고 나서 준설토가 쌓여서 인근의 바다와 갯벌이 오염되고 매립의 보상으로 내

준 갯벌의 굴양식자의 굴들이 다 썩어가고 있었다.'는데 대하여

(반론)

• 준설토가 쌓이게 된 원초적인 계기가 1969년 남강댐 조성 이후 매년 만톤의 흙탕물을 방류함으로 인하여 토사가 4~6m 퇴적된 것으로 조선소가 들어오고 나서 준설토가 쌓였다는 것은 잘 못된 보도된 것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조사 용역을 사천만 전지역에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사인 국립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에서 용역 완료 전 소견서에 의하면 1,000톤 방류시 연간 생산감소율 60%이상, 연간 어업피해율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어종별 수확량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업단지로 인하여 굴이 썩는 것이 아니라 남강댐 방류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2

사 건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천시민참여연대

대 표 박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0

대표이사 하 금 열

주 문 : 이 사건 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SBS-TV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와 같은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6월 13일 <물은 생명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광포만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사천시 광포만 부근의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광포만은 1969년 남강댐 방류 이후 환경이 악화되어 지금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의 보도 내용과는 달리 산업단지 조성되어도 광포

만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보도로 인하여 광포만 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보도

를 살펴보면 신청인 사천시민참여연대가 보도에서 직접 언급된 바 없어 신청인과 이 사건보도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보도 내용만으로는 신청인의 인격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소매치기 피해자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주며 범인을 직접 잡아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8.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5월 2일 21:37)

내 용 : 네, 이런 무책임한 경찰이 있을까요. 소매치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인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용의자 사진을 주며 범인을 잡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김○○ 씨는 지난 7일 집 근처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범인은 김씨가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를 엿본 듯 가까운 편의점을 돌며 세 차례에 걸쳐 7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김씨는 현금지급기 관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CCTV에 용의자의 얼굴이 또렷히 찍힌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경찰은 중요 단서가 되는 CCTV 녹화 장면은 아예 확보도 않고 얼굴만으로는 범인을 잡기 어렵다며 오히려 김씨 가족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주며 직접 잡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주면서요 이거 아들, 아들이 갖고 다니면서 사람 좀 보고 다니면서 이것 좀 잡아, 이 사람 좀잡어봐. 이렇게 하더라고”

실제로 김씨 가족은 경찰관이 건넨 사진 속 용의자를 직접 찾아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좀 더 빨리 해결하기 위해 용의자 사진을 건넸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주변에 어떤 사람이 혹시, 관련된 사람이 혹시 있을까 그래서 수사협조를 하는 식의...”

그러나 김씨 가족이 범인을 잡기 위해 2주가 넘게 이곳 저곳 발품을 파는 동안 경찰은 제대로 된 탐문수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은 지난 5월 22일 KBS 21:00 뉴스로서 “이런 무책임한 경찰이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천안경찰서 경찰관이 소매치기 신고를 받고도 범인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용의자 사진을

주며 범인을 잡아보라고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방송 보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갑을 도난 당한 것임에도 조사 경찰관에게 현금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 고소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취재 기자가 피해자의 제보만을 근거로 조사경찰관의 해명 사실은 묵살하고 왜곡 편파방송을 한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3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정 연 주

조정대리인 백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초로 방송되는 KBS 뉴스9 프로그램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보도문을 낭독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금액을 2008년 8월 14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2일 천안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소매치기 신고를 받고도 범인을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용의자 사진을 주며 범인을 잡아보라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5월 7일 지갑을 분실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다는 범죄수사규칙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 결정에 의한 보도문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7월 26일 21:00)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이 알고 지내 온 여성의 소송사건 해결에 도움을 요청받고, 이를 빌미로 그녀를 농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4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일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요신문 : 『‘농락’과 ‘모략’ 사이, 서로 “내가 피해자”』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5일자 12면)

내 용 :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시민전문가와 NGO 입장에서 처리하는 ‘시민○○○○공동체’의

김○○ 대표(55)가 불명예스런 구설수에 휘말렸다.

김 대표에게 최근 “철저히 농락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김 대표와 3년째 알고 지내온 K씨(여·46)다. K씨는 개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도움은 커녕 되레 자신을 농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정신이상자의 모략이다”며 오히려 “K 씨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한 상태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서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K 씨와 김 대표의 공방전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세간에 퍼져가고 있다. 과연 둘 사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두 사람이 알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초여름께. 당시 사정상 외국에 머물고 있던 K 씨는 개인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시민○○○○공동체의 문을 두드렸고 이때 김 대표와 알게 됐다고 한다. K 씨에 따르면 그녀는 90년대 말부터 한 경찰 간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해왔는데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찰 간부의 ‘해코지’를 견디다 못해 김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한다. K 씨의 하소연을 들은 김 대표는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K씨는 2007년 3월 귀국, 그해 여름께 김 대표를 만나게 됐다는 것. 그러나 김 대표는 처음부터 도와주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뉴질랜드 쇼펄몰에 투자하라’ ‘정부 웹사이트에 투자하라’라는 식으로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K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대표의 얘기는 다르다. 김 대표는 “정작 K 씨의 사연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 조사해보니 K 씨의 말은 신빙성이 없었다. 경찰 간부가 한 여인을 10년 넘게 쫓아다니며 해코지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나는 K 씨에게 피해망상증 기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도와주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여기까지는 양측의 입장이 다르긴 해도 고소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다. 문제는 K 씨가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경찰간부를 고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시켰다가 지난해 여름께(추석 전) 그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K 씨는 움부즈맨 대표로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김 대표에게 유능한 변호사를 구해줄 것을 부탁했고 김 대표는 S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중략)

결국 K 씨는 성공보수금 5,000만 원을 S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당시는 18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한 김 대표의 공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다급해진 K씨는 S 변호사를 소개해준 김 대표에게 ‘중재’를 요구했다지만 상황은 엉뚱하게 돌아갔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돈이 필요했던지 김 대표는 S 변호사에게서 돈을 받도록 해주고 성공보수금 5000만 원도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 K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K 씨는 이를 거절했고 그후 압류가 들어왔다고 한다.

K 씨는 S 변호사가 자신에게 압류조치를 취한 것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김 대표가 그를 부추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김 대표는 “K 씨가 먼저 ‘선거에 나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S 변호사로부터 그 돈을 받아주면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와서 내가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 중재를 사정하기에 S 변호사에게 500만 원이라도 주고 치우는데 어떻게 됐냐는 말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런데 K 씨는 정치자금을 안 빌려주니까 내가 변호사에게 압류하도록 시켰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K 씨는 김 대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김 대표는 ‘(내 사무실이 있는) 마포 ○오피스텔로 이사 와라’ ‘같은 건물이면 내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는 등의 말을 한 바 있고 그를 찾을 땐 주로 ‘저녁에 자신의 오피스텔로 오라’고 했으며 수시로 ‘결혼하자’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 K씨의 주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시민움부즈맨공동체 대표) 중상. 모략의 진상

- 알고 보니 고위 경찰간부를 10년 동안 인터넷에 20,000여 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15억대의 현금을 가진 K 여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6월 25일(제840호) 사회면(12) “농락과 모략사이 서로 내가 피해자 - 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악성루머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김○○와 민원인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K여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만을 인용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K여인은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 P모 경정을 10년 동안 인터넷 매체를 통해 20,000여 건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상, 모략을 하여 온 자로 건디다 못해 작년에 P모 경정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이력을 가진 피해망상증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K여인을 지금까지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있는 김○○ 대표를 변호사 수임료를 되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중상, 모략 극을 벌린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내 용 : 지난 6월 25일자 12면 보도와 관련하여 저희 일요신문에서는 K모 여인의 제보와 주장을 바탕으로 본 기사를 작성하였고, 시민단체의 대표이시긴 하나 실명과 단체명을 공개해서 김○○ 대표님께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을 통해 악성루머를 보도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같이 실음과 별도로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취재에 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대표님과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도 불편부당한 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일요신문이 활동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 또는 시민옴부즈맨공동체가 계획 중인 사업 또는 진행 중인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보도하되 구체적인 내용, 보도 형식(기고문, 칼럼, 인터뷰 등) 및 분량은 신청인과 협의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조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 및 각종 사법기관에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요신문 : 『‘시민옴부즈맨’ 아시나요』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4일자 사회면)

내 용 : 시민운동의 위기 중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시민사회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운동의 대부인 박원순 변호사가 몇 년 전 출범시킨 ‘희망제작소’ 같은 단체도 이런 자성 끝에 나온 하나의 대안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생긴 셈이다.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이같은 시민참여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시민옴부즈맨 공동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 대표가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참여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 시민운동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이 단체는 지난 2001년 8월에 출범해 벌써 8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해왔으나 다른 메이저 시민단체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새로운 대안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이 단체가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모바일 신문고다. 생활 주변의 갖가지 비리나 위험 시설물 현장 등이 있으면 폰카 등으로 촬영해 #0852로 전송하면 이 단체가 이를 접수해 정부나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시민옴부즈맨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시민들의 제보로 사회 곳곳의 여러 부정부패 현장들이 개선됐다고 김○○ 대표는 말한다. 그는 현재까지 1만2000여 회에 걸친 민원을 해결했다고 한다. 특히 옴부즈맨 공동체는 10여 명의 자문변호사들이 있어 제보되는 민원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12월 중에는 일산 호수공원이나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동안 모바일 신문고나 디카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된 현장들을 전시하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또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과는 반대로 각종 선행을 베푸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격려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는 ‘반크’나 대구지하

철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편 역무원들이 그 대상자들이었다.

한편 최근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민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과 함께 이 단체에 지원되던 예산도 끊겼다. 김○○ 대표는 “정파적 시민운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정치적 색깔이 전혀 없는 자신들과 같은 단체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성폭행 수사” 요청 “관할 아니다” 목살
- ‘자살시도 여고생’ 부모 분통』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6일자 14면)

내 용 : 상습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음독 자살을 기도했다. 여고생 가족은 이를 수사해달라고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서부서는 “관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반려했다. 서부서는 특히 “관할 지역에는 가해자가 살아서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피해 가족의 사정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여고 2학년 ㄱ양(17)은 지난달 중순쯤 자신의 집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자살 기도 이유는 자신을 상습 성폭행한 김모 씨(33)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다. ㄱ양은 여동생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ㄱ양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3일 뒤인 29일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

다. 그러나 서부서는 일산경찰서에 사건을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ㄱ양 어머니는 “김씨가 일산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서부서는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ㄱ양 어머니는 일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일산서는 지난 7일 김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폭행 수사” 요청에 경찰 “관할 아니다” 목살--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6일자 사회면에 “성폭행 수사” 요청에 경찰 “관할 아니다” 목살--‘자살시도 여고생’ 부모 분통 이라는 제목으로 여고생 가족이 이를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서부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서부서는 “관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반려했다. 서부서는 특히 “관할 지역에는 가해자가 살아서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피해 가족의 사정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성폭력 사건은 정식적인 고소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P경사가 수사 중에 인지한 첩보사건으로 고소를 반려한 것이 아니며 특히 “관할권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묵살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미 일산서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중이었던 것과 여타 피해자들의 제반사항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상담후에 위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관할서인 일산서 강력팀과 공조 수사 협조하기로 한 후 사건을 인계해 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경향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2일자 12면)

내 용 : 4월 16일자 14면 ‘성폭행 수사 요청 관할 아니다’ 기사와 관련, 서울 서부경찰청 담당 형사는 관할문제 뿐 아니라 신속한 검거 필요성 및 피해자 사정 등을 고려해 이미 다른 건으로 가해자를 수사 중이던 일산경찰서와 공조키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건을 인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6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9.
처리결과 : 각 취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보도내용

국민일보 : 『“가족 죽이겠다” 협박 시달리다 성폭행 피해 여고생 자살기도』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6일자 8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 후 보도문

국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1일자 2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Ⅳ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7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8.
처리결과 : 각 취하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동아일보 : 『성폭행 여고생, 같은 동네 범인 무서워
다른 곳서 신고 경찰 “관할 아니다” 돌
려보내』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6일
자 사회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8.
처리결과 : 각 취하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보도내용

세계일보 : 『성폭행 사건 경찰수사 엉망』 제하의 기
사 (2008년 4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세계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4일자 10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 후 보도문 참
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9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8.

처리결과 : 각 조정부성립결정

참조>

보도내용

조선일보 : 『성폭행 사건 경찰수사 엉망』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는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고,
조정대상 보도에 반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론
보도에 응할 수 없으며 신청인을 특정하지 않았으
므로 손해배상 할 수 없다. ☐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Ⅶ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9.
처리결과 : 각 취하

(2008년 4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한국일보 : 『‘아는 놈’이 더 무서웠다』 제하의 기사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Ⅷ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일요시사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일요시사 : 『성폭행에 울고 늑장 수사에 또 울고』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7일자 20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일요시사 : (1) 『늑장수사와 떠넘기기 수사? “억울하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3일자 21면)

내 용 : 한 경찰관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해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경찰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자신의 관할지역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못매를 맞은 뒤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려던 한 지구대 경사에게 양값을 당했다는 것. 성폭행전담형사가 되고 싶었던 꿈마저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인 이 경찰관을 만나 심경을 들어봤다.

“성폭행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독이는 형사가 되려고 하는 내가 단지 관할이 아니라는 말로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돌려보냈습니까?”

지난달 21일 취재기자를 만난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박○○(33·여) 경장은 수척한 얼굴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박 경장은 실적을 올려 승진하려는 동료 경찰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상황이 지금에 이르렀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경장에 따르면 사건의 시초가 된 것은 지난 3월 23일 아침이다. 이날 오전 박 경장은 자신을 찾아온 서울 모 지구대 소속 백모 경사를 만났다. 백 경사는 “8개월여 간 장물사건으로 추적중인 용의자가 있는데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내가 아는 여자의 딸’이 전 직장동료였던 이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다. 범인을 체포하면 특진할 수 있으니 피해자

조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고 한다.

지구대에 소속된 경찰은 체포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권한이 있고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을 할 수 있는 여경인 박 경장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것. 이와 함께 백 경사는 “그 범인을 체포할 때 내 이름을 넣어 달라”는 부탁도 덧붙였다고 한다.

규정에 맞지 않는 백 경사의 부탁이 꺼림칙했지만 박 경장은 성폭행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다음 근무일인 3월 26일 피해자를 만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26일 오후 1시경, 피해 여고생 A양과 여고생의 어머니, 피해자의 동생과 친구들, 쉼터선생님, 백 경사가 박 경사를 찾았다.

박 경장은 피해자 등을 진술실로 불렀고 피해사실을 물었다. 그러나 A양은 피해사실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족 앞에서는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길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박 경장은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제야 A양은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A양의 이야기는 백 경사의 말과는 틀렸다. 성폭행 가해자가 다른 아닌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 A양은 자신의 어머니와 살고 있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경장은 A양의 어머니를 불러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성폭행 가해자가 가족일 경우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경장의 물음에 A양의 어머니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대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박 경장은 계속해서 A양의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A양뿐만 아니라 A양의 동생과 친구들까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A양은 정확히 성폭행을 당한 날짜가 언제인지, 몇 번의 피해를 당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살을 시도했던 충격으로 피해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박 경장은 A양에게 달력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기억이 날 단서들을 떠올리게 했다.

약 2시간 가량의 상담 끝에 A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아는 언니에게 메일을 썼는데 그걸 보면 언제 피해를 당했는지 알 수 있다”며 1주일의 시간

을 달라고 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건을 해결하는데 불리할거라 생각한 박 경장은 3일 후인 3월 29일에 다시 만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자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A양의 어머니와 백 경사의 행동이 미심쩍었다고 한다. 박 경장에게 어머니는 “백 경사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한 것. 백 경사가 23일 부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포 보고서에 백 경사의 이름을 넣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었고 박 경장과 서부경찰서 강력팀의 형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백 경사는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고 한다.

또 박 경장은 추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을 29일까지라도 쉽터에 입소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속한 29일, 피해자들과 쉽터 선생님, 어머니 등이 박 경장을 찾았고 피해자 진술을 마친 박 경사는 고소를 일산 경찰서로 넘긴다는 말을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것도, 피해자의 주소지도 일산이기 때문에 관할권인 일산으로 사건을 넘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양의 어머니는 “범인이 일산에 살기 때문에 그 곳의 경찰서에는 신고를 할 수 없다”며 서부경찰서에서 범인을 체포할 것을 고집했다고 한다. 이에 박 경장은 “범인이 있는 관할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범인체포 등의 절차가 더 빠르다”고 설득을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몇 시간 후에 서부경찰서를 찾은 백 경사도 일산 경찰서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반대했다. 실랑이 끝에 결국 일산 경찰서로 넘겨졌고 그날 범인 김모 씨가 체포되면서 사건은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다. 4월 15일 모 언론사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늑장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박 경장은 기사가 나간 지 약 보름 만에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맞은 것. 이로 인해 박 경장은 지난 4월 28일부터 3개월간 경찰직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 경장은 “자신에게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백 경사의 말만을 듣고 쓴 기사로 인해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실

적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자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언론사에 잘못된 내용의 제보를 해 피해를 입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 경장은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었다. 박 경장의 징계는 감찰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또 박 경장이 징계위원회에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피해자 진술과정이 담긴 CCTV와 쉽터 선생님의 증언 등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했다고 한다.

박 경장은 “한창 경찰들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을 당시 일이 벌어져 ‘보여주기식 징계’를 단행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박 경장은 잘못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형사고소하고 해당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 상태다.

장애인들의 성폭력사건을 전담하는 형사가 되고 싶다는 박 경장. 진실이 밝혀져 성폭행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줄 유능한 형사가 되길 기대해본다.

(2)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3일자 21면)

내 용 : 〈일요시사신문〉은 지난 4월 16일 “성폭행에 울고 늑장 수사에 또 울고” 제하의 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았던 경찰이 자신의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사건을 처음 접수받았던 서울 서부경찰서 담당형사는 관할권 뿐만 아니라 일산경찰서에서 수사중이던 다른 사건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을 일산경찰서에 인계했습니다. 아울러 인계 당일 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및 범인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도록 일산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최대한 협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요시사〉는 사건 담당형사에 대해 확인취재하지 않아,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누락돼 담당 형사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향후 보다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박○○ 경장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X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스포츠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9.
처리결과 : 각 취하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보도내용

스포츠칸 : 『성폭행 신고에 “관할 아냐” 아직 정신 못
차렸나』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취하 후 보도문

스포츠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3일자 2면)

내 용 : 4월 17일자 2면 ‘성폭행 신고에 “관할 아
냐” 아직 정신 못차렸나’ 기사와 관련, 서울 서부
경찰서 담당형사는 “관할문제 뿐 아니라 신속한 검
거 필요성 및 피해자 사정 등을 고려해 이미 다른
건으로 가해자를 수사 중이던 일산경찰서와 공조키
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건을 인계한 것”이라
고 밝혀왔습니다. □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대 구속』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5일)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뉴시스 : 『직장에서 만난 동료 딸 수차례 성폭행 30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서부경찰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6일자 사회면 “직장에서 만난 동료 딸 수차례 성폭행 30대 구속”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 서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이 관할이 아니라며 일산경찰서로 재의뢰를 요구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용의자가 이미 일산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일산서에 사건을 인계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2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뉴스> 전국면 경기북부란 상단에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

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7월 23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 : 『서부경찰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1일 15:03)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9.
처리결과 : 각 취하

찰수사』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6일)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MBN : 『성폭행 피해 여고생 자살 기도...허술한 경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경찰인 신청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제보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늑장수사를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X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2008년 4월 16일 10:40)

내 용 : <2008서울조정19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9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4월 16일자 「성폭행범 ‘떠넘기기’」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사건을 처음 접

수받았던 서울 서부경찰서 담당 형사는 관할권 뿐만 아니라 일산서에서 수사중이던 다른 사건 등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사건을 일산경찰서에 인계하였고, 아울러 당일 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및 범인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7월 18일 10시 40분에 방송하는 SBS-TV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2008년 7월 18일 10:4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현행법상 불법인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도로계획을 홍보하는 등 분양률 상승을 위해 허위 과장광고 등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드림리츠 (주)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KBS-1, 2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2TV : (1)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2008년 4월 30일 24:00)

내 용 : ▷앵커 : 전국의 아파트 40여 곳이 난데없는 영어 광풍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단지 내 영어마을이 모두 불법으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입주주민들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자극하는 분양미끼를 동원해 입주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아파트 110동 101호, 초등학교 7명이 영어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원어민 강사.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분양 당시부터 건설업체가 제공한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입니다. (후략)

(2) KBS-1TV 「9시 뉴스」 프로그램 (2008년 6월 12

일 21:00)

내 용 : ▷앵커 : 아파트 분양 광고와 실제 시공이 달라 분양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곳이 있습니다. 못믿을 분양광고 사례를 오○○ 기자가 현장주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 안, 4,800세대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을 분양 받은 분양자 백 여명이 모델 하우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당초 분양 때 내세운 광고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배포한 전단지입니다. 제2자유로로 연결되는 나들목이 아파트 단지 옆으로 난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아예 계획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략)

▷기자 : 분양 당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물 구조도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른바 ‘L’자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운데 두 집의 안방이 서로 마주 보입니다. 안방거리는 3미터에 불과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시행사는 불투명 유리를 설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 시행사 대표) : “경미한 변경이라면 가능하지만 방이라든지 응접실 위치를 바꾸는 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단지 안에 영어 마을을 유치하겠다고 소비자들을 혹하게 했지만 두 달 전 교육청이 불법으로 해석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분양자들은 이럴 바엔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후략)

(3) KBS-2TV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2008년 6월 19일 24:15)

내 용 : ▷앵커 : 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9.4년이라고 합니다. 강산이 한번 바뀔 만큼 긴 시간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집을 마련하고도 눈물 흘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의 미끼분양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분양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 건설사 관계자들은 입주일까지 분양가가 오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도 원금을 보장한다며 분양을 유도

합니다. (중략)

▷앵커 : 분양초기 이 건설사는 인터체인지 건설과 단지 내 영어마을 등을 적극 광고했습니다. 또한 총 분양가가 6억 이상일 경우 분양가의 40%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DTI 적용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 : “전셋값도 계속 오르고, 이 집에 이사 올 때도 집 없는 설움 톡톡히 겪었거든요, 저는 정말 앞으로 몇 번을 그걸 겪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해약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계약자를 계약자로 보지 않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지어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임씨는 7년 동안 부어 온 청약통장이 사기분양으로 물거품이 된 데에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근의 다른 지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DTI 규제를 받지 않게 해 준다는 건설사의 말에 속아 아파트를 분양 받은 피해자는 한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중략)

▷건설사 관계자 : “저희가 불법으로 한 거는 없어요. 저희가 불법이 아니고 과장광고는..”, “그렇게 분양을 하시는 것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는 입주자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DTI적용 받기 때문에 요즘 6억 안 넘어가는 아파트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 드릴려고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일산 덕이지구 아파트 사기분양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9일에 걸쳐 방송된 「시사투나잇」, 「9시 뉴스」 등의 각 프로그램은 일산 덕이지구에서 아파트 사기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보도 내용에 관하여 시행사 측의 반론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일산 덕이지구에서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 분양 중인 시행사는 ① 아파트 건설예정지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지도를 비치해 놓기는 하였으나, 위 지도에는 본 계획도로가 변경, 취소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

자유로로 연결되는 나들목이 아파트 단지 옆으로 난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② 아울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단지는 ㄴ자 구조가 아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며, ③ 영어마을을 아파트 단지 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현행 주택법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하게 아파트 단지 내에 영어마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가) 보도문

- 제 목 : 일산 덕이지구 아파트 분양 반론
- 내 용 : 지난 6월 12일 9시 뉴스에서 방송된 「일산 덕이지구 아파트 단지 분양」 보도에 관하여 신동아 아파트를 분양 중인 시행사는 모델하우스에 있던 지도에는 계획된 도로가 변경, 취소될 수 있어 미확정 상태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영어마을은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단지는 ㄴ자의 사생활침해구조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 보도문

- 제 목 : 일산 덕이지구 아파트 분양 반론
- 내 용 : 본 프로그램에서 지난 6월 12일 방영된 「일산 덕이지구 아파트 단지 미끼분양」 보도에 관

하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단지 시행사는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규제와 관련하여 분양 당시 설명한 대로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가)보도문을 2008년 8월 4일까지 KBS-1TV 「뉴스 9」 프로그램 중(스포츠뉴스 전)에, (나)보도문을 2008년 8월 4일까지 KBS-2TV 「생방송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말미(클로징 멘트 전)에 보도하되, 화면은 진행자의 모습이 나오도록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女)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 9」 프로그램 (2008년 8월 2일21:00)

내 용 : 〈합의사항 (가) 보도문 참조〉

KBS-2TV :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2008년 7월 31일 24:15)

내 용 : 〈합의사항 (나)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의 불법 정치파업으로 현대차가 300억이 넘는 생산 손실을 보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지부장 윤 해 모)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경제 숨통」 죄책다는 민주노총』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1면)

내 용 : 민주노총이 2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말은 총파업이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를 포함한 금속노조 중심의 114개 사업장에서 8만 8,000여 명(노동부 집계)이 참가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파업에 들어가며 “생산에 타격을 주는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 명분은 ▶미국 쇠고기 수입 저지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폭등하는 물가 안정 ▶대운하 정책 폐기다. 근로 조건과는 관계없는 것들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2006년 말 비정규직법 반대 파업 이후 1년 만이다.

검찰은 이를 '쇠고기 재협상 등 정치적 문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지도부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있는 울산지검은 이른 시일 내에 금속노조와 현대차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도 3일 중으로 노조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진행된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날 한국은행은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이날 주·야간 2시간 부분 파업으로 300억원이 넘는 생산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은 "불황 때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며 "민주노총이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알고고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렇게 실력 행사만 고집하면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총파업에는 현대차 3만 5,000여 명, 기아차 2만 9,828명, 금호타이어 4,083명, 만도 2,248명이 참여했다. 파업에 참여한 사업장 중 100여 곳이 금속노조 소속이다. GM대우차, 쌍용차는 파업 대열에서 빠졌다. 파업 참여자의 73.6%가 현대·기아차 노조원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경제 숨통 죄겠다는 민주노총' 관련 정정 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3일자 A1면에서 『경제 숨통 죄겠다는 민주노총』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쇠고기 재협 등 정치적 문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불법 정치 파업...현대차는 주야간 2시간 부분 파업으로 300억이 넘는 생산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다...총파업에는 현대차 3만 5,000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대차 지부는 '2일 파업의 주 목적은 중앙교섭 쟁취와 08투쟁 승리가 주목적이었으며 이날 주·야간 2시간 부분파업으로 200억 원의 생산차질을 빚었고, 현대차 조합원 4만 5,000여 명이 부분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6일자 2면)

내 용 : 본지 7월 3일자 '민주노총 파업' 보도와 관련, 금속노조는 검찰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했고, 현대차 지부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세운다는 보도에 대해 작업화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세운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작업화를 지급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청인 노조가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지부장 윤 해 모)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한 해 빼곤 21년째 매년 파업...현대차 '파업중독' 왜』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3면)

내 용 :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일 파업했다. 1987년 노조가 생긴 이래 94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원들의

의견이 무시되기 일쑤고 불법파업도 적지 않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중독’은 왜 매년 반복되는 것일까. (중략)

현대차 노조의 한 대의원은 “작업화 하나를 바꿔도 회사에 요청하는 것보다 노조에 얘기하는게 더 빠르다”고 말했다. 작업반장에게 부탁하면 절차를 밟아 교체하게 된다. 대의원에게 얘기하면 곧장 새 작업화가 나온다. 회사가 즉시 지급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세워 버려 노조가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거의 수용한다”고 말했다. (후략)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3일자 A3면에서 ‘현대차 파업중독 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의원에게 얘기하면 곧장 새 작업화가 나온다. 회사가 즉시 지급하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세워버려 노조가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거의 수용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대차 지부는 ‘대의원들이 작업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생산라인을 세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 후 보도문

•제 목 : ‘현대차 ‘파업중독’ 왜’ 관련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207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신청인이 금속노조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0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지부장 윤 해 모)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현대차 노조 결국 ‘금속노조 거수기’ 전락』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일자 4면)

내 용 : (전략)

노조 지도부의 이 같은 파업 강행 방침과 관련, “현대차가 또 다시 불법파업의 악순환에 빠져 회사는 물론 조합원들의 정신적·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이미 민노총 쇄고기 총파업을 부결(금속노조 전체적으로는 가결) 시키는 등 정치파업에 심한 염증을 느낀 조합원들은 “이번 금속노조 파업에 67%의 지지를 보낸 것은 민노총

쇠고기 파업에 힘을 보태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매달려 단 한번도 갖지 못한 임금교섭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금속노조는 사용자 측이 중앙교섭에 대한 수용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민노총과 연계해 이달 말까지 하투동력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금속노조 최대 노동조직인 현대차노조가 사실상 금속노조의 정치파업 투쟁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과 금속노조의 이같은 릴레이 정치파업 전략이 계획대로 맞아 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대차 노조 지도부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임금협상에 대한 요구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현대차 노조 결국 금속노조 거수기’ 관련 정정 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일자 A1면에서

‘현대차 노조 결국 금속노조 거수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차 노조 결국 금속노조 거수기’라고 보도 하였고,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를 파업 찬성 가결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이며, 투쟁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주력 사업장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67.08%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로 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7월 3일자 『조합원들 ‘총대 안 멘다더니’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부분파업과 관련,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는 보도에서 인용한 민주현장투쟁위원회 웹사이트는 조합원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있

는 일부 반대 의견을 조합원의 여론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7월 31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경제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7일까지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중 ‘60.7%’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67%’로 수정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민주노총의 ‘들러리 파업’에 나서 소속 조합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지부장 윤 해 모)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조합원들 “총대 안 멘다더니” 반발』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일자 5면)

내 용 : 민주노총이 예고대로 2일 총파업을 강행했지만 현대·기아차를 뺀 대부분 사업장은 지도부만 참가, 사실상 ‘현대·기아차 나홀로 파업’이

라는 비난 여론이 높다. 윤해모 현대차지부장이 “현대차만 파업의 총대를 메지는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적으로 현대·기아차만 민주노총의 ‘들러리’ 파업에 나선데 대해 일반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쫓불시위에 편승해 하루 동력을 높이려던 민주노총의 전략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중략)

◆ “총대 안 메겠다더니” 비난 봇물

민주노총 총파업에 현대차만 나홀로 참가하는 형국이 되자 “15만 금속노조 사업장이 총파업을 하지 않으면 현대차도 파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던 현대차노조 간부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현대차 민주현장투쟁위원회 게시판에는 “또다시 우리만 정치파업의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아이디 ‘성난조합원’은 “위원장이나 지부장이나 매일 조합원을 상대로 ‘현대차만

하는 파업은 절대 없다'고 사기나 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조혁신투쟁노동자회 토론회에서도 "우리만 하는 파업은 안 하기로 해놓고 조합원을 우롱해도 되느냐" "정치파업에 신물이 난다" 등 노조 집행부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조합원들 "충대 안맨다더니" 반발'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3일자 A5면에서 '조합원들 "충대 안맨다더니"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상 현대.기아차 나홀로 파업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다, 현대차 민주현장투쟁위원회 게시판에는 "또다시 우리만 정치파업의 소용돌이에 빠

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금속노조는 12만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전개하여 현대.기아차 만의 파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민주현장투쟁위원회 게시판은 조합원 전용 게시판이 아니어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209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8서울조정209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신청인이 음식폐기물을 농지에 쌓아두었고, 수십여 차례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만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 옥전비료 (대표이사 강 ○ ○)

피신청인 : 오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오늘신문 : 『“단속 안했나 못했나”...』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4일자 1면)

내 용 : 경기도 평택시가 O비료측의 음식폐기물 불법투기 의혹과 관련, 숨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평택시와 화성시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이 '33소재 O비료 대표 K모 씨'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평택시 소재 부영토지를 비롯,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수만 톤의 음식폐기물

을 농지에 쌓아두거나 매립해 말썽이 되어왔다.

이와 함께 농지에 쌓여있는 음식 폐기물의 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자 화성시는 시료를 채취해 농진청에 의뢰하는 등 퇴비로서 부적합하다는 회시를 받아 평택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O비료측이 투기한 음식폐기물의 시료를 별도로 농진청에 의뢰했으나, 결과가 늦어진다 이유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택시는 O비료측이 지난 96년 영농법인 O○골(퇴비화 시설)을 설립, 2003년 11월 등록전환과 함께 2005년 10월 현 대표 K모 씨로 권리의무 승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수십여 차례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행정처분 내용은 보관기준위반 4건을 비롯, 시설관리 위반, 침출수 농수로 유출, 처리기간 경과, 건폐율 매립, 생활악취, 시설검사 불합격 등 30여회에 걸쳐 겨우 5,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관계자는 “시료 채취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당업체의 폐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모 씨는 “어느 시·군이던 민원발생요지가 있는 음식폐기물 업체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며 “평택시가 수십건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은 봐주기 행정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J씨는 “수차례에 걸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시가 과태료 몇푼으로 민원을 잠재워 왔다”며 “농진청이 부적합 퇴비로 결론을 낸 만큼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평택 O비료 음식폐기물 불법 투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8년 4월 14일자 1면에 『‘O비료’ 측 음식폐기물 불법 투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평택시 소재 O비료 대표 K모씨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평택시 소재 부영토지를 비롯,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수만톤의 음식폐기물을 농지에 쌓아두거나 매립해 말썽이 돼 왔다’, ‘평택시는 O비료측이 지난 96년 영농법인 ○○○(퇴비화시설)을 설립, 2003년 11월 등록전환과 함께 2005년 10월 현 대표 K모 씨로 권리의무 승계를 해오는 과정에서 수십여 차례의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용은... 30여 회에 걸쳐 겨우 5,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O비료’ 측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평택시 소재 부영토지 및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공급한 것은 부산물 퇴비이며, 농가와 공급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급을 한 것이지 음식물폐기물을 쌓아둔 것이 아니며, 함박골에서 K씨로 등록 전환된 시점은 2005년 10월이며, K씨 개인명에서 ‘O비료’로 법인 전환 한 시점은 2007년 8월 말이므로 법인전환 이후 행정처분을 30여 차례 받았다는 내용과 5,700여만 원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위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합니다.

또한 ‘O비료’와 관련하여 2008년 4월 14일자 1면에 『음식폐기물 45만t 불법 매립 의혹』, 4월 8일자 『‘음식폐기물’ 화성서도 매립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도 ‘O비료’가 음식 폐기물을 수집-분쇄-발효-생산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주)부영토지 및 화성시 일대 농지에도 음식폐기물 수천 톤을 불법매립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O비료’ 측이 정상적인 부산물 퇴비 공정을 거친 부산물 받아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장주가 농지에 농작물을 심기위해 퇴비작업을 한 것이므로 음식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농가에 공급한 퇴비가 ‘45만t’이라는 내용도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O비료’ 측은 지난 2008년 5월 29일자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합의사항

•제 목 : “단속 안했나 못했나” 기사 관련 정정 및 알립 보도문

•내 용 : 본지 지난 2008년 4월 14일자 1면에 “단속안했나 못했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결과, ‘O비료’ 측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평택시 소재 부영토지 및 화성시 우정읍 일대에 공급한 것은 토지 수요자들의 승낙을 받아 농가와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것이고, 함박골에서 K씨로 등록 전환된 시점은 2005년 10월이며, K씨 개인명에서 ‘O비료’로 법인전환 한 시점은 2007년 8월 말이고, 이 과정에서 20여차례 정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에 정정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008년 5월 29일자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오늘날신문 2008년 7월 25일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O비

료' 측 음식폐기물 불법 투기 의혹)과 함께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판 오늘신문(www.tonews.or.kr)의 메인화면 상단에 게시하되 기간은 2008년 7월 21일 오후 3시부터 2008년 7월 28일 3시까지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늘신문 : 『“단속 안했나 못했나”기사 관련 정정 및 알림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5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업체를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구두해명)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1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쓰리씨스포츠
(대표이사 차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쇼핑몰 소비자 피해 ‘마이엠엘비’ 최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18일자 23면)

내 용 : 인터넷 쇼핑몰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2007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1만 4,223건으로 전년 9,694건에 견줘 46.7%가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관련 상담건수는 2005년 5,602건, 2006년 9,694건, 지난해 1만 4,223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마켓(776건), 옥션(718건) 등 오픈마켓을 제외한 전문 몰 중에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마이엠엘비’ (350건)였고, 간스(123건), 패션스토리(1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마이엠엘비와 관련한 주요 소비자 피해 내용을 보면, 상품대금을 입금한 뒤 업체 쪽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132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 배송 지연(117건·33.4%), 상품대금 환급 지연(101건·28.9%)의 사례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 박아무개 씨는 마이엠엘비 사이

트에서 지난해 9월 점퍼값 14만 3천 원을 입금했으나 아직 옷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박씨는 업체 쪽에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연결이 안 되고 게시판에 문의를 해도 답변이 없었다.

상품대금을 입금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상품은 물론 환불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소비자 이아무개씨는 2006년 12월 옷값 16만 원을 입금했지만 옷을 배송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옷값도 돌려받지 못했다.

마이엠엘비의 경우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에 가입돼 있다고 사이트에 표시돼 있지만, ‘온라인입금안내’ 코너에 에스크로에 대한 안내 없이 회사 계좌로 몰품대금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이 에스크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가 가입한 에스크로업체 ‘올렛’ 측은 “마이엠엘비가 지난해 8월 말 에스크로에 가입한 뒤 지난해 말까지 소비자가 에스크로를 이용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이엠엘비 측은 “매출 형태 중 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예약배송 형태에서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자 예약배송 비중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쇼핑몰 소비자 피해 기사 관련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18일자 소비자면에

『쇼핑몰 소비자 피해 ‘마이엠엘비’ 최다』이라는 제목으로 쇼핑몰 중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사제목을 작성하였고, 실제 사례 중 박아무개 씨의 경우 연락이 안되고 문의를 해도답변이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엠엘비는 “국내 모든 쇼핑몰(온/오프) 중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전문몰 중 사례 접수가 많은 것이고, 또한 기사 내용 중 실제 사례자 박아무개 씨는 기사 작성일 이전인 2007년 12월에 이미 환급처리가 완료된 고객이라 이는 허위 사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에 다음 내용과 같이 해명한다.
- 내용 : 본 기사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을 하면서 배송지연이나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입은 사

례를 소개하여 개선시키려는 공익적인 취지로 취재 보도되었습니다. 보도내용으로 인해 신청인 회사에게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일부 불편함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며, 다만 이는 언론의 공익성과 국민의 알 권리에서 기인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이 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 않는 한 신청인 회사에 대한 취재시 상당히 주의하고 또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인 회사에서도 배송·환불지연이나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관련해 해외지사 설립 등 여러 가지 노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오며, 앞으로도 불편부당한 사회공론의 장으로서 한겨레가 활동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서산시의 쓰레기처리 업무가 엉망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산시(시장 유 상 곤)
피신청인 : 서해안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해안신문 : (1) 『시민은 ‘분리배출’ 업체는 ‘몽땅 매립’』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3일자 3면)
내 용 : 쓰레기처리가 원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이 대부분 성실하게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정작 수거하는 업체가 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수거하여 매립하는 현상이 이른 새벽 출동한 특별취재팀 카메라에 잡혔다.

취재팀이 18일 새벽 부춘동과 석남동 쓰레기수거차량을 뒤쫓았다. 이 차량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한 것,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를 구분 없이 한 차량에 다 싣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갔다.

쓰레기매립장까지 따라 들어가 ‘왜 이렇게 수거해 오느냐’고 질문하자 그 관계자는 “수거를 안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시청에서는 민원처리 때문에 그냥 수거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그 관계자는 “시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시청에서 처리하라고 하니깐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관계자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압축시켜서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도 결국 처리과정에서 대부분 분리되지 않고 처리되는 모순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청 환경보호과 과장에게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을 하자 “기자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대책도 없다”고 답변했다.

환경미화담당 계장에게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단속을 안 하나’고 묻자 “첫째는 행정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인력도 부족하다. 재활용수거차량은 현재 2대, 직원6명이며 차량 한대당 운전기사 포함 3명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력을 더 투입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행정상 더 쓸 수도 없다. 또 쓰레기매립장을 양대동 주민들로 구성된 위탁업체라서 집단 민원으로 마찰 때문에 더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더 이상 쓰레기매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서산 시내 쓰레기수거는 2곳 위탁업체에서 맡고 있는데 연간 40억 정도 지급이 되고 대산에 위탁한 곳은 가구, 소파 등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연간 6억 정도, 압축시킨 폐기물 운반비용으로 연간 4억7천 정도가 지불되고 있었다. 담당자는 이러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서산의 쓰레기처리비용이 연간 9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략)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매립장 안에 직원 복지혜택은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현재 분리수거는 공공 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 안에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하나로 사용하고 샤워시설은 없다”고 말했고 실제로 확인해보니 그랬다.

실제 쓰레기처리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여건은 매우 열악해보였다. 근무시간 8시간에 하루일당

3만 1천 원, 차비·중식비 명목으로 3천 원이 더 지급되었는데 공공근로자들에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면 건강상에도 문제가 되어 보였다. (후략)

(2) 『한해 92억, 담당자는 “돈 없어 못해”』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30일자 3면)

내 용 : (전략)

28일 밤에도 취재팀은 시내 곳곳에서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쉽게 발견했다. 담당공무원들은 수년째 검토에 검토한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사이에 우리고장은 쓰레기불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산시에서 한해 쓰는 쓰레기처리비용은 92억 원 정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담당자들은 “예산부족이다. 인력부족이다”라고 되풀이하고 있었다. (중략)

매립장 안에는 수십 명의 남녀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는 화장실이 전부였다. 또한, 작업장 안에 샤워장이 없어 위생적인 문제가 많았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4년 전에는 남자 직원만 근무해서 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 예산을 짜서 화장실과 샤워장 휴게실 등 시설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에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왔는데 왜 4년이 되도록 안하고 있었느냐고 묻자 “예산 부족으로 못했다”고 답변했다.

매립장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은 최악으로 나타났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사이 근무자들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실제로 근무자들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가스를 힘겹게 이겨내며 생계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서산시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23일자 3면 『시민은 분리 배출, 업체는 몽땅 매립』 제목으로 서산 시민이 분리·배출한 재활용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매립된다고 보도하였고,

4월 30일자 3면 『한해 92억, 담당자는 돈 없어 못해』 제목으로 서산시청 환경보호과가 많은 예산

을 사용하면서도 처리 실태 개선도 안하며,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동안 매립장 근무 환경은 최악으로 방치하여 근무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민이 분리·배출한 재활용쓰레기는 체계를 가지고 수거하여 재활용되고 있으며, 부득이 지정일 외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만 혼합 수거하고 있고, 매립장내 남녀 구분 화장실 및 샤워실은 없지만 작업장별 휴게실이 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동안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여 작성한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어떠한 청구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대전KBS-1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대전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8년 7월 11일 06:30)

내 용 : 아산경찰서는 손님들 몰래 정품 경유 대신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아산시 도고면의 한 주유소 업주인 52세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손님들을 상대로 정품이 아닌

다른 석유제품이 60% 혼합된 유사경유를 주유해 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이모 씨 자영주유소」 관련 정정보도
•내 용 : 본 방송 지난 08년 7월 11일자 “아산시 도고면 이모(52세) 씨 자영주유소 유사석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유사경유 판매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보도에 언급된 제품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6월에 실시된 검사에서 정상관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TJB-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7.

처리결과 : 각 취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TJB-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8년 7월 11일 07:30)

내 용 : <2008대전조정11의 보도내용 참조>

<2008대전조정11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인 재판국이 모 교회 사건을 재판하면서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을 ‘정직’ 판결해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 재판국
(국장 김 ○ ○)

피신청인 : 목회자신문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었으나, 재판국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하는 바람에
노회 권위도 실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 사건은 지난해 1월 열린 당회에서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해온 이 교회의 결식학생 돕기와
특별구제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담임목회자 등을
문제삼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사건이다.

(2) 『전주노회 재판국, 엉뚱한 사람 패썹죄로 ‘정
직’ 판결』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2일자 5면)

내 용 : (전략)

원고도 피고도 아닌데 징계

재판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직원 김모 집사를
‘정직’ 판결한 것과 관련 김○○ 재판국장은 “김
모 집사는 원고측 대리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원
고측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몰라서 대리인으
로 김모 집사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는 “불고불
리의 원칙을 알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의서 제출을 통해서 재판부를
모독했기 때문에 징계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국장은 한발 더 나아가서 “원래는 출
교판결을 하려고 했으나 국원들이 말려서 ‘정직’
으로 그쳤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김모 집사가
재판에 나와서는 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의서를 제출해서 재판국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판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당
사자인 김모 집사는 “재판국이 백지에 이름과 주

보도내용

목회자신문 : (1) 『엉뚱한 사람에게 ‘정직’ 판결, 전
주노회 재판국, 불고불리원칙 위반』 제
하의 기사 (2008년 7월 12일자 1면)

내 용 : 전주노회 재판국(국장 김○○ 장로)이
노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한 내용과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을 징계하는 재판을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재판국은 전주 ○○교회(김○○ 목사 시무)사건을
재판하면서 기소되지도 않은 이 교회의 직원 김모
씨를 ‘정직’ 판결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했
다.

동시에 고발인들에게 제기된 내용은 큰 지적없
이 판결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원고들이 충
회재판국에 상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이 사건은 지
난 제21회 정기노회에서는 이 문제를 수습위원회의
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결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

소 등을 쓰고 돌아가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엉뚱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거꾸로 재판국의 처사에 분개했다.

재판국이 기소내용을 변조했다는 의혹도

노회재판국의 이 재판은 기소내용이 변조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원래 기소위원회의 기소장에는 이런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허위 사실의 유인물을 보내어 담임목사를 그 장본인으로 칭하여 물질적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유포하며 목회자의 도덕성에 흠결을 내어 범죄자로 몰아 사임을 책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국의 판결문에 실린 기소내용은 이런 확인절차를 밟기로 결의했으나 “당회장 김○○ 목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마치 김목사가 확인절차를 밟는데 나서지 않고 있는 것처럼 내용이 뒤바뀌어 있다.

재판국이 피고들에게 문서감정비 요구해

노회재판국이 재판과정에서 재판국자의 주도로 피고들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져 의혹을 사고 있다. (중략)

재판국 직인이 두 개다?

노회재판국에는 공문에 각각 다른 직인이 사용되기도 하고 직인이 빠진 공문이 발송되거나, 국장 명의만 있고 서기는 명의가 빠진채 공문이 전달되기도 해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서기 대신에 일부 국원 명의가 올라가 있기도 해 노회 재판국이 정식으로 발송한 공문인지조차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목사가 이런 공문을 받으면서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를 하자 재판국은 각각 다른 공문들을 보낸 바 있다. 이와관련 김○○ 재판국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노회장의 허락없이 공문을 보냈더니 노회장이 허락도 없이 재판국 직인을 파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받고 직인허락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국이 사용하는 직인보다 노회직인이 더 작아서 노회직인보다 작게 봤다”고 밝혔다. (중략)

한편 이 재판과 관련해서 총회에서 법률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고나 피고가 아닌 사람을 판결할 수 없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재판부가 지키지 않고 감

정적으로 벌을 준다면 도대체 법의 질서는 누가 세울 수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문서감정비 100만 원건과 관련해서도 “교계 재판에서 문서감정비를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면서 문서를 감정할 일 뭐가 있으며 혹시 문서의 허위를 다투더라도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해당 비용을 내면 될 텐데 재판국장이 피고측에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노회재판국이 해당 근거자료나 법적 기준에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하면서 엉뚱한 사람을 징계하고 나서서 이번 재판이 어떤 의도성을 가진 감정적인 재판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재판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총회재판국에 상고되어 있어 총회재판국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2일자 1면에 『엉뚱한 사람에게 ‘정직’ 판결/ 전주노회 재판국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전주 ○○교회(김○○ 목사 시무) 사건관련 재판과정에서 ①전주노회재판국(국장 김○○ 장로, 이하 ‘재판국’)이 원고측 증인으로 나온 김 모 집사를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 징계할 수 없음에도 정직처분을 내렸고, ②김○○ 재판국장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알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의서 제출을 통해서 재판부를 모독하여 징계했으며, 원래는 출교판결을 하려고 했으나, 국원들이 말려서 ‘정직’으로 그쳤다”는 인터뷰내용을 게재했고, ③“재판국이 백지에 이름과 주소 등을 쓰고 돌아가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김모 집사의 주장을 보도했으며 ④재판국이 기소위원회의 기소내용을 변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마치 김 목사가 확인절차를 밟는데 나서지 않고 있는 것처럼 판결 내용이 바뀌어 있다”고 언급하여 김 목사가 재판과정에 협조적이었던 것처럼 보도했으며 ⑤재판국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장의 주도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가 일부 국원이 문제를 삼자 되돌려 줘 의혹을 사고 있으며 ⑥재판국의

직인관련 논란에 대해 김○○ 재판국장이 ‘노회장의 허락없이 공문을 보냈더니 노회장이 허락도 없이 재판국 직인을 파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받고 직인허락을 신청했다’고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⑦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재판국장이 피고측에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⑧‘이번 재판이 어떤 의도성을 가진 감정적인 재판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재판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①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헌법 권장 제45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증인이 거짓말이 있으면 책벌을 받기로 하고 선서를 하며,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책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국은 위 조항을 근거로 김 모 집사가 본 사건 관련 수입지출 장부를 메모지라고 허위진술 했으며, 영수증 처리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는 등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정직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②김○○ 재판국장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알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의서 제출을 통해서 재판부를 모독하여 징계했다”는 말을 기자에게 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은 “김모 집사가 허위진술 및 증언거부에 의해 정직을 당했으나 심지어 재판부를 능멸하고 모독했다는 내용이 원래의 인터뷰 내용이며, 또한, 원래는 재판국 회의에서 김모 집사를 출교판결하자고 결의했으나 재판국장이 이는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 있다며 재판국원들을 설득하여 정직으로 경감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③재판국은 “김 모 집사의 재판과정에서 수기로 작성된 증언내용원본을 본인에게 확인시키고 본인이 서명날인한 후, 용지 및 글자가 다소 지저분하니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할테니 사실확인서 공란에 김모 집사가 서명해 줄 것을 설명했으며 김모 집사 또한 이에 동의하여 서명 날인한 것으로 재판국이 일방적으로 김모 씨에게 백지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④김○○ 목사는 실제 사건 당사자인 관계로 재판국이 수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냈으나 전혀 출

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지극히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⑤전주노회 역사상 재판국이 설치된 유례가 없어 예산등의 지원이 전무한 관계로 재판진행 중 원고와 피고에게 문서검증, 감정 등을 위한 비용을 공탁하라고 고지하여, 피고측에서 100만 원을 회계담당자에게 입금시켰으나 재판국회의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자고 결정하여 반환한 것으로, 재판국장 주도로 돈을 받았다가 일부 국원의 문제제기에 의해 돌려준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⑥재판국이 처음 설치 운영되어 직인이 없어 재판국장이 임시로 직인을 조각하여 사용 중, 노회장에게 직인사용 허락을 구하는 공문을 냈으나, 다시 조각하라는 지시에 의해 노회의 문서공문 절차에 따라 다시 조각하여 이를 노회직인 사용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하고 있는 등 절차상 다소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재판국장이 직인을 임의로 공적 업무 이외에 사용한 사실도 없었고 재판국의 송달한 공문의 효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⑦재판국장은 문서감정등의 비용을 고려하여 재판국원과 원고, 피고가 모두 참석한 재판과정에서 소정금액을 공탁할 것을 언급한 바는 있으나 재판국장이 독단적으로 피고에게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⑧이번 재판은 피고들이 원고측 목사를 횡령으로 고발한 것에 대항하여 목사측 원고들이 피고들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의해 시작되었다. 검찰은 양측 고발내용을 조사하여 김 목사의 일부 횡령사실을 밝혔으나,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김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의 양심에 맡겨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고발자들에게도 무고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후, 목사측이 억울하다고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8명의 장로를 전주노회에 징계요구하여, 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하였고 재판국은 총회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바, 이번 재판이 어떤 의도성을 가진 감정적인 재판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재판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전주노회 재판국』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7월 21일자 1면 및 5면 기사와 관련, 전주노회 재판국은 본지 보도에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①재판국은 원고측 증인 신청에 의해서 선서를 한 증인이 재판국을 모독하였기에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책벌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것이며, 이를 불고불리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②김○○ 재판국장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알고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말을 기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 ③본지 보도 중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들이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는 기소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 ④재판국은 총회 헌법에 따라 확실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바, 이번

재판이 감정적, 정치적 재판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23일까지 목회자신문 1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7월 21일자 1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전주노회 재판국, 불고불리 원칙 위반)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목회자신문 : 『전주노회 재판국 관련 반론보도문』 제
하의 기사 (2008년 8월 16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국민유선방송투자에 지원한 C&M 경영권 인수 자금을 다른 회사가 지원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엠비케이파트너스 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 윤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종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굿모닝 신한증, ‘클럽 딜’로 사상최대
딜 성사』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1
일자 23면)
내 용 : 굿모닝신한증권이 주관한 C&M 인수

금융은 국내 PEF(사모투자펀드) 산업의 대형화를
통해 국내 PEF제도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굿모닝신한은 국민유선방송투자(KCI)가 수도권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
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금융을 지원했다.

인수규모는 2조 원 이상으로 KCI는 호주 최대
은행인 맥쿼리가 참여하는 맥쿼리 코리아 오피튜
니티 펀드(MKOF)와 국내 PEF인 MBK 파트너스
가 설립한 컨소시엄이다. 이번 인수완료로 외국계
자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PEF가 처음으로
200만 명의 케이블TV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MSO의 실질적 경영권을 갖게 됐다.

이번 딜은 인수자금의 80% 이상이 국내에서 조달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굿모닝신한이 인수금
융을 지원한 맥쿼리는 호주에 기반을 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했다.

국내 자본 조달은 결국 외국인의 국내 기간산업 인수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정통부 및 방송위의 승인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내 최초의 ‘클럽 딜’이란 점도 주목을 받았다. 대규모 인수자금의 소화를 위해 맥쿼리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MBK와 공동인수에 합의했고, 미래에셋 PEF까지 참여시켜 3개 PEF가 연합하는 국내 최초의 클럽 딜 형태를 기록했다.

사모펀드 자금조달원으로서 국내 은행이 부각되는 계기도 마련했다. 서브프라임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사모펀드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공격적인 전략으로 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서 주목받았다.

딜 이후 국내 3위 케이블TV 업체인 C&M의 가치도 재조명 받았다. 정통부 승인과정에서 투자 및 품질 향상,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됨에 따라 C&M 및 다른 경쟁사들의 투자 및 서비스 향상 경쟁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IB대상]. 굿모닝신한證, ‘클럽 딜’로 사상최대 딜 성사』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1일 위 제목으로

“굿모닝신한은 국민유선방송투자(KCI)가 수도권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금융을 지원했다”, “(굿모닝신한의) M&A 부문은 2조 230억 원 규모의 C&M 인수금융에 참여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굿모닝신한증권은 MBK 파트너스와 맥쿼리가 C&M 경영권 인수거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이전에 C&M 의 약 30% 지분인수를 추진하던 맥쿼리에게 약 5,800억 원의 인수금융 확약서(LOC)를 발급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인수금융 주선이나 대출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C&M의 경영권 인수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측 컨소시엄의 재무자문사는 모간스탠리와 맥쿼리증권이 담당하였으며, 인수금융 지원은 신한은행을 주간사로 하여 30개 이상의 국내금융기관이 신디케이션을 구성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은 국내 PEF인 MBK 파트너스, MBK 파트너스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한 미래에셋 PEF 및 대한전선, 맥쿼리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한 국내 연기금 등의 국내 자본에 의한 지분투자로 조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보도가 MBK 파트너스를 비롯하여 실제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 주간사 및 자문사 등의 사업성과가 잘못 평가되는 등 민감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정보도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의 영상물을 무단 도용해 보도함으로써 동영상의 취지가 왜곡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프리존미디어 (대표이사 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2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MBC-TV : 「PD 수첩」 프로그램 (2008년 6월 24일 23:05)

내 용 : ▷내레이션 : 우익인사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방송국으로 몰려든 시위대는 격앙돼 있었다. 이들은 취재하는 기자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 MBC 피디수첩이나 9시뉴스를 맨 정신 가진 사람들이 보면 우선화가 나서 건강에 상당히 자극을 받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속아 넘어가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MBC는 공영방송

보도내용

의 목적을 선동방송으로 뒤바꿨어요.

▷내레이션 : 대체 무슨 근거로 피디수첩을 선동방송이라고 규정한 것일까.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 : 있지도 않은 광우병을 스스로 만들어내 가지고 일종의 상상 광우병을 만들어내 가지고 한국 사회에 퍼뜨리고, 이렇게 해서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광화문 일대를 무법천지를 만든 그 출발점이 4월 29일자 MBC 피디(수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왜곡되고 조작되고 편파적으로 편집이 된 저는 불량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콜 해야 됩니다.

▷내레이션 : 이날 방송국 앞에서는 우익인사들의 언론사 공격을 비판하는 맞불시위도 벌어져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취재를 나왔던 진중권 교수도 폭행을 당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 발길질 당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막 찌르고 손으로 잡아서 꼬집는거. 그렇게 맞았죠. 얼굴도, 여기도 지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어서 어디를 맞았는지.

▷내레이션 : 우익인사들의 시위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 트집을 잡는거죠. 아주 사소한 사실들을 들어서 전체적 맥락을 뒤집으

려고 하는 그런 논리적 오류. 그 바탕에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이 플랜카드 들고 나온 것 봤더니, MBC로고를 복한 깃발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의 논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내레이션 : 냉전시대에 횡횡하던 색깔 덧씌우기가 21세기에 공공연히 시도되고 있었다.

▷진행자 : 오○○ PD. 가치가 없는데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거짓비난이 그럴 듯 하게 유포되는 것을 보고있을 순 없는 것 아니에요.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저작권 관련 내용은 조정대상이 아니며,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출처를 명시하였고 내용을 왜곡한 바 없다. □

신청인이 유명 작가를 인터뷰하면서 원래 취재목적과 상관없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계속 질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공○○의 아주 가벼운 것털 하나-아이들의 사교육에 ‘무책임한’ 엄마』 제하의 기

사 (2008년 7월 10일자 7면)

내 용 : 일전에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기자가 나한테 물었다.

“사교육을 안 시키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물론 나는 아이들의 사교육을 안 시키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썩 곳에서 한가지 내지 두 가지를 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이 아주 낮다. 작은 아이는 태권도 검은띠를 따고 제 뜻에 따라 이제는 검도에 도전하고 있다. 둘째는 초등학교 내내 합기도 검은띠를 딴 것 외에는 다른 학원에는 다니지 않다가 중학교에간 후 동네 수학학원 하나, 그리고 큰 아이

친구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다. 지금은 대학을 들어간 큰애도 방학 때는 학원을 하나, 그리고 학기 중에는 제가 아는 선배언니인 대학생에게 수학을 몇 달 배웠을 뿐이다. 만일 다른 엄마들처럼 대치동으로 강남 어디로 아이를 끌고 다니거나 고액과외를 했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랬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다니는 대학도 가지 못했을 것 같다. 제 뜻이 아닌 걸 강요하는 엄마와 싸우느라고 말이다. 그런데도 인터뷰어는 자꾸 물었다. (중략)

기자는 이런 사안으로 만난 인터뷰가 아닌데도 계속 물어왔다. 내가 무슨 ‘참교육 센터’에서 나오기라도 한 듯한 기분이 되었다.

“그래도 피아노 정도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온 국민이 피아노를 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아노 못 치는데, 사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영어는요? 영어는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해야...”

결국 이야기는 영어로 왔다. 영문학과를 나왔지만 문학을 전공했을 뿐이라고 우기는 나에게 말이다.

“저는 솔직히 왜 온 국민이 영어를 다 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중략)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운 사람이 아니다. 사교육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다. 오렌지를 ‘어린지’라고 말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의 발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 분에 대한 다른 평가는 차치하고 그 사람은 ‘꿈’과 ‘재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공부를 잘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다가는 명문 ‘청주’로 유학조차 가지 못했지만, ‘꿈’을 위해 노력했고 그 부모들은 그런 자식에게 오직 고마움과 믿음을 주었다고 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기자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는 일등이 아니면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었다. 밥 한 그릇조차 버거웠던 시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적어도 일등이 아니라도 ‘시민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인터뷰가 끝났는데 끈질긴 그 기자는 전화로 다시 물었다.

“아이들 우열반 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

요?”

나는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대답했다.

“모든 과목에는 아이들별로 분명 우열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함께 넣어놓으면 다들 힘들어요. 수학을 못한다는 게, 영어를 못한다는 게 열등하다는 것과 동일어가 되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김연아라면 어떨까요? 박태환이라면? 우리 아이는 수학은 아니지만 영어도 아니지만 피겨도 수영도 아니지만, 그 다가 아니라도 무언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아직도 나는 모르지만 저는 그걸 믿어주고 싶어요.”

기사가 나왔다. 기자는 나를 아직도 철없는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느 때처럼 생각했다. 하는 수 없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공〇〇씨 에세이 ‘아이들의 사교육에 무책임한 엄마’에 대한 반론

•내 용 : 작가 공〇〇씨는 본 신문 7월 10일자 별지 섹션 ‘esc 한겨레 매거진’ 7면 ‘아이들의 사교육에 무책임한 엄마’ 제하 에세이에서 자신을 인터뷰 했던 기자가 인터뷰 목적과 상관없이 사교육 문제에 관해 비상식적으로 집요하게 물었고,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에 비판적인 공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기사를 내보냈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이에 대해 공씨를 인터뷰한 기자는 “자녀 교육을 포함해 보통 사람으로서 공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터뷰 주요 목적의 하나였다”며 “특히 인터뷰 내용 중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견해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이야기 등은 인터뷰 때 없었던 것을 꾸며내는 등 상당 부분이 과장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제 목 : 공〇〇씨 에세이 ‘아이들의 사교육에 무책임한 엄마’에 대한 반론

•내 용 : 작가 공〇〇씨는 한겨레매거진 <esc> 7월 10일자 7면에 ‘아이들의 사교육에 무책임한 엄

마'라는 제하의 에세이를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는 특정 기자와의 인터뷰가 등장합니다. 공〇〇 작가를 인터뷰한 기자는 “자녀교육을 포함해 보통 사람으로서 공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터뷰 주요 목적의 하나였다”며 인터뷰 목적과 상관없이 사교육 문제를 비상식적으로 집요하게 묻거나 사교육에 비판적인 공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터뷰 내용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이야기는 나눈 적도 없고 영어조기교육 문제는 내용이 다르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한겨레 매거진 섹션 <esc> 2면 하단에 2008년 8월 21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21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i.co.kr>) 매거진 섹션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반론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공〇〇 씨 에세이 ‘아이들의 사교육에 무책임한 엄마’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前 대통령 실장에게 KBS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인 규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정연주 사장에 “사퇴” 유재천씨 최후통첩』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3일자 1면)

내 용 : 유재천 KBS 이사장이 최근 정연주 KBS 사장을 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에게 한나라당 의원을 보내 정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의 방송 장악 배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KBS의 한 이사는 22일 “유 이사장이 지난주 정 사장을 이사장실로 불러 ‘이제는 명예롭게 물러나달라’며 사퇴를 요청했으나 정 사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이사들에게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유 이사장이 KBS의 재정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라도 정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점과 함께 더 이상 자진 사퇴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이 지난 6월 23일 선출된 이후 정 사장을 만나 사퇴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유 이사장은 정 사장과의 회동 사실에 대한 경향신문의 확인 요청에 “지금 그것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 사장 사퇴 외압과 관련,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지난 4월 9일 김금수 당시 이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 사장 사퇴 요구를 거절하자 류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이모 의원을 김 이사장에게 특사로 보내 정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

다. 최 의원은 이어 “김 이사장은 ‘대통령실장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KBS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 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보실장이 요청한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나중에 KBS PD협 회장 등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김 이사장에게(정 사장 퇴진에 협조할 경우) 자리 제안을 했다는 증언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류우익 당시 대통령실장의 개입 등을 들어 “언론통제의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이며 이런 의혹을 공식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유재천, 정연주 사장에 “사퇴” 최후통첩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3일자 1면에서 『유재천, 정연주 사장에 ‘사퇴’ 최후통첩』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9일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연주 사장 사퇴 요구를 거절하자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이모 의원을 김금수 이사장에게 특사로 보내 정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제차 요구하게 된 이유는 김인규 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보실장이 요청한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국회 긴급현안 질의과정에서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인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는 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보실장이 아니라 전 대통령 당선인 언론보좌역으로 일했으며, 2월 22일 이후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김금수 이사장과의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경향신문 7월 23일자 1면 『유재천, 정연주 사장에 ‘사퇴’ 최후통첩』 제목으로,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이모 의원을 김금수 이사장에게 특사로 보내 정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제차 요구하게 된 이유는 김인규 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보실장이 요청한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민주당 최문순의원의 국회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인규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공보실장이 아니라 전 대통령 당선인 언론보좌역으로 일했으며, 2월 22일 이후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김금수 이사장과의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8월 7일까지 경향신문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단, 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경찰인 신청인이 치안센터 근처의 신고자 집도 찾지 못해 그냥 돌아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뉴스 9」 프로그램 (2008년 5월 23일 21:00)

내 용 : ▷앵커 : 괴한이 집에 들어와 혼자 있는 여성이 공포에 질려 신고했는데 경찰이 집을 찾지 못해 그냥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신혼집이 털렸는데 사건 배당을 받은 담당 형사는 한달여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근무 실태를 박○○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기자 : 경기도 광명의 한 가정집 지난 17일 술에 취한 괴한이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왔습니다. 당시 혼자 있던 20대 여성은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잡고 버티다 다급하게 112센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당시 112 신고내용) :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저희 개를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기자 : 이 괴한은 기물을 발로차고 소리를 지르며 40여분 간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녹취 (마지막 신고내용) :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지금 물려서 병원에 가고 우리는 지금 완전히 지옥 속에 40분 살았어요.”

▷기자 :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했지만 현장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대신 통화는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불통됐다고 말합니다.

▷녹취 (당시 출동 경찰 교신 내용) : “지도에 안 나와 있고 신고자도 계속 통화중으로 여전히 안되요”

▷기자 :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납득하기가 쉽습니다.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걸어서 불과 일분도 안되는 거리에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경찰은 이 주변만 맴돌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대처에 어이없어 합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얼빠진 경찰 보도에 대한 반론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23일자 9시 뉴스에서 “얼빠진 경찰 신고한 집도 못찾아”라는 제목으로 (괴한)이 집에 들어와 혼자 있는 여성이 공포에 질려 신고 하였는데도 경찰이 찾지 못해 그냥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도 하면서 “얼빠진 경찰”이라고 마치 전 경찰이 정신이 나간 것 마냥 과장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출동한 담당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112순찰차량에 비치된 지도상에 신고자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자 신고자를 찾기 위하여 112 지령실에 지도상의 위치를 찾아 줄 것을 무전하였고,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무려 40여분 간 동일 번지 부근에서 순찰하면서 11차례에 걸쳐 신고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신고자는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하고 다급한 나머지 전화를 잘못 올려놓아 위치를 찾지 못하여 처리 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보도 내용과 같이 얼이 빠져 신고를 묵살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정정 보도 요청합니다.

합의사항

•피신청인은 향후 경찰의 장비부족 및 업무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 음〉

① 5월 23일자 “얼빠진 경찰 신고한 집도 못 찾아” 보도 중 신청인과 관련된 사례 언급

② 신청인 ‘근무태만이나 주의소홀 때문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김○○ 반론내용 포함

③ 경찰의 순찰차량에 네비게이션 등 기본적인 장비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고,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바와 같은 위치추적권조차 없는 현재의 열악한 업무환경 관련 문제제기

④ 언론보도 이후, 업무장비 비치·교체 등 업무환경 개선상황 소개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12일까지 KBS-1TV 뉴스 프로그램에 위와 같은 취지의 후속 보도를 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kbs.co.kr)에 2008년 8월 12일까지 후속보도를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

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반론보도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8년 8월 7일 07:44)

내 용 : ▷앵커 :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도 신고자의 집을 찾지 못했다는 KBS 보도이후 해당 경찰서에서는 순찰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여건 개선을 통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경기도에 있는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에 나섭니다. 이 지구대 순찰차량 5대에는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 비좁고 복잡한 골목길도 손금 보듯 순찰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지구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도 신고자의 집을 찾지 못했다는 KBS 보도가 나간 뒤 순찰차에 내비

게이션을 달았습니다. 경기도방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결과 경찰관의 근무태만이나 주의소홀 탓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최근들어 각종 공사와 개발로 인해 경찰관들이 복잡한 지리를 꿰뚫기 어려워지면서 내비게이션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전국 경찰 순찰차량 3천 5백여 대 가운데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차량은 아직 극소수입니다. 내비게이션 등은 경찰청이 아니라 지구대의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구대원들의 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대 경찰관 : “경찰 3D업종에는 젊은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하고 지구대 등 현장 근무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기피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를 서로 하려고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기자 : 현장근무 경찰관들 사이에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면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비의 첨단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입니다. □

신청인 협회가 국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청인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협회장 이○○)
피신청인 : KBS-1TV
중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8. 7.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7월 14일 21:00)

내 용 : ▷앵커 : 밀렵 감시단체가 활동 실적을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빼돌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

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강원도 정선에서 밀렵감시 대원으로 활동해온 김모 씨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강원도지부가 대원들에게 쥐야 할 정부 지원금을 일부를 빼돌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2년 가까이 협회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던 돈을 협회가 다시 돈을 빼내갔고 입출금 횟수도 실제 활동 횟수와 크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전 밀렵감시대원) : “실제 12번 출동했는데 120번 입출금된 것으로 부풀려졌습니다.”

▷기자 : 강원도지부는 대원들 동의를 받아 공동경비로 쓴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강원도지부장) : “통장을 본인이 만든 거고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 : 활동 내역을 부풀린 의혹은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지난 2000년 경북 지부의 출동일지에는 수풀이 우거져 밀렵이 뜸한 7월에도 거의 매일 출동해 하루에 400에서 700km씩 이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야생동식물협회 ○○지부 현 회원 : (7월에는 몇 번이나 나갑니까?) “4~5번 나갑니다. 하루에 200km 정도 이동하고”

▷기자 : 협회가 제출한 활동 내역을 토대로 매년 4억에서 8억여 원씩 여비와 유류비 등을 지원해온 환경부는 오히려 지원금이 모자랐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김○○(환경부 팀장) : “기름값이 980원이 기준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 1,300~1,500원 하지 않았

습니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밀렵감시단체, 정부지원금 부풀려 횡령” 내용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14일 저녁 「9시 뉴스」에 “밀렵감시단체, 정부지원금 부풀려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지원금 일부를 빼돌려왔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수렵관리협회 강원지부에서 발생한 의혹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는 무관한 내용이며, 횡령 의혹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 언론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사하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사하신문 : 『사하지역엔 ‘사하신문’이 두개가 있다 결코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될 부적격자가 남의 신문제호를 무단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일자 1면)

내 용 : (전략)

현재 사하지역에서 ‘사하신문’이란 동일 제호를 무단도용,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조모 씨는 2001년경 본 사하신문에서 7개월 여 광고영업사원으로 근무 했었으며, 입사 당시엔 다대1동 동사무소 맞은편에서 국제신문 보급소를 운영해왔고, 현재는

장림동 입구 그랑프라자 건물(현재 사하중앙병원 건물) 지하에서 유흥업소 V6(한성 궁)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조모 씨는 본 지보다 오히려 2년 앞선 1994년 7월에 창간했다며, 또한 지난 6년여 동안 두세달에 한번 꼴로 실제 30여 호 밖에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두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발행해온 것처럼 130여 호를 발행했다며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제호 옆에 버젓이 거짓표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짓 주장들은 활자를 통해 사하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은 물론, 본 지를 가짜 사하신문으로 매도하고 다니는 조모 씨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양 호도하기 위한 위장이다.

조모 씨는 2006년 5월 16일자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6카합519)과 2006년 11월 21일자 부산언론중재위원회 합의문(2006부산조정25)에 따라 사하신문 제호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문화관광부가 아닌 부산시청 문화공보과에 등록되어 있는 사하신문 제호(부산 다-01157)를 즉각 자진말소하라.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일자 1면에 '사하신문' 발행인 조모 씨가 2001년경 본 사하신문에서 7개월여 광고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장림동 입구 그랑프라자 건물 지하에서 유홍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모 씨는 광고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유홍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1일자 1면에 사하신문 발행인 조모 씨가 본 신문사에서 광고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는 유홍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모 씨는 광고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유홍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주간 사하신문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취재현장에서 맞닥뜨린 인사들마다 “어느 사하신문이 진짜 사하신문이요?”)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사하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3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택지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편법으로 쪼갬고, 지자체가 특혜성 밀어주기를 하여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19

청 구 명 :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동인개발

(대표이사 원 ○ ○)

2. 월드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3. 원 ○ ○

4. 김 ○ ○

피신청인 : 시사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N : 『평택 민간 택지개발 수서 비리 다투었네』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3일자 41호 사회면)

내 용 : 평택 민간 택지개발 수서 비리 다투었네

원유철 의원 지역구인 평택시 지체역세권 70여만평 민간택지개발 사업을 두고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원 의원의 친척이 개발을 주도하고 평택시와 경기도가 적극 미는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송명호 평택시장이 행정 제안자로 경기도에 개발 승인을 신청한 민간 주도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택지개발 부지는 수도권 전철 지체역사 앞에 자리한 약 72만 평(약 238만㎡)에 이르는 광활한 곳이다. 현재 이곳은 전답과 야산 상태이지만 개발이 이뤄지면 줄잡아 수천억 원대 이권 창출이 가능한 평택 내의 노른자위 땅이다.

이른바 ‘지체역세권 민간 택지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내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곳이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 지역

구(평택갑)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원 의원은 경기도 정부부지사 시절부터 각종 평택 지역 개발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게다가 3선 의원으로 여당의 경기도당위원장까지 맡아 지역 정가의 거물로 자리 잡은 원 의원의 지역구 택지개발 사업에 송명호 평택시장도 적극 소매를 건어붙이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송 시장은 지체역세권 택지개발을 초고속으로 승인해준 뒤 자기가 행정 제안자가 되어 경기도청에 개발 승인을 요청했다.

여기에 사실상 지체역세권 택지개발을 주도하는 시행 대행사 대표는 원○○ 씨. 그는 원유철 의원의 친척이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원○○ 씨의 개발 시행 업체 임직원이 대거 원 후보의 선거 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 당시 선거 운동에 나섰던 개발 시행 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향 선배인 원 후보 선거를 돕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금도 많이 썼지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지체역세권.

시행 업체에서 원유철 의원 선거 운동 하기도

원○○ 씨는 이 지역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건설사 월드건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토지 매입에 나서는 등 사업을 주도한다. 월드건설에서 매월 억대의 사업비를 받은 원○○ 씨의 시행 대행사 동인개발과 월드도시개발에서는 다시 지체역세권 3개 지역 지주조합장 앞으로 매월 3,000여 만 원씩 ‘세금 없는’ 지원금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체역세권 민간 택지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당사자로 거론되는 원유철 의원 측은 “개발 업자 원○○ 씨가 우리 집안 6촌 형제이고, 내 지역구가 개발 부지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정치인으로서 이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 사업과 정치는 별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택지개발을 주도하는 시행사 임직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기의 선거 운동에 나선 사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정식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은 안 했지만 좁은 평택 바닥에서는 모두 선배로 지내는 사이라 자발적으로 나를 지지했을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 사업을

자신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로 보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평택시 지체역세권 민간 택지개발 사업을 뒤에서 주도하는 원유철 의원의 6촌 원○○ 동인개발 대표.

그러나 이 사업 추진 배경과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보면 개발 주체가 꿈수와 편법을 썼으며, 지자체가 특혜성 밀어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토이용계획법상 100만㎡(약 30만 평) 이상의 개발부지는 난개발을 막고 국토 이용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중앙정부(국토해양부)의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72만 평에 이르는 지체역세권 택지개발 부지는 당연히 국토해양부 승인 대상이다. 평택시가 내부적으로 마련해 대외비에 부친 ‘지체역세권 개발도면’을 입수한 결과 72만 평 전체를 단일 개발 권역으로 설정해둔 것으로 확인됐다(위 오른쪽 도면 참조).

그러나 실제 평택시와 원○○ 씨 등 개발 업자는 중앙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간 개발하는 편법을 택했다. 전체 한 단위의 부지를 쪼개 각각의 부지가 100만㎡가 넘지 않게끔 4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다. 동작 지구(16만㎡), 모산·영신 지구(70만㎡), 영신 지구(56만㎡), 지체·세교 지구(60만㎡) 등이다. 이렇게 해서 지체세교 지구를 제외하고 올 봄 초고속으로 평택시장의 사업 승인을 거친 3개 개발 부지는 현재 경기도로 넘어가 도지사 지구 지정 승인을 앞뒀다.

이에 대해 평택시청은 “각각의 지주조합이 구성돼 별도로 사업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다르다고 보고 개별 승인해 경기도에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승인 피하려고 개발 지역 쪼개기

이들 개발 제안자가 평택시에 낸 제안서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개발 대상 부지의 3분의 2 또는 전체 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개발 제안 신청이 가능한데 이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꿈수이며 편법이다. 우선 사업 주체로 평택시에 제안서를 낸 3개 지구(가칭)지주조합은 사실상 껍데기 지주조합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사업은 원유철 의원의 집안 형제인 원○○ 씨가 주도

하는 시행 대행업체 동인개발과 월드도시개발에서 애당초 지역을 쪼개 순차적으로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심하고, 각각의 지주조합도 이들이 주도해 급조했던 것이다. 현재 각 개발부지 위에는 지주조합 사무실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서 실제 움직이는 이들은 모산·영신 지구 지주조합장을 맡은 유천형 전직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시행 대행업체 직원이었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이들이 서류상 지주조합 명의로 접수한 내용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 승인을 내줬다는 주장을 폈다.

평택시가 비밀에 부치고 있는 지제역세권 개발도면, 전체를 개발하려면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편법으로 4권역으로 쪼개 평택시와 경기도 승인만 받아 개발을 추진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평택시가 승인해준 모산·영신 지구 개발부지에는 인근에 공해배출 업소 2개가 자리 잡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아파트 개발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인데도 승인을 내준 데 대해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불법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평택시에서는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서 지구 지정을 승인해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개발 돈줄은 월드건설이 쥐어

이 지역 개발 주체인 월드개발과 동인개발은 월드건설로부터 막대한 용역비 지원을 받아 지주를 설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땅을 개발하면 환지방식으로 큰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아 평택시에 제출한 것이다. 동의서를 써준 한 지주는 “시행 대행사 설명회에 참석했더니 자기네가 개발하지 않으면 평택시나 경기도에서 땅을 헐값에 수용해 공원부지로 쓸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용 동의서를 재촉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지상권을 월드개발과 동인개발에 넘긴 지주들이 땅을 보상받을 길은 환지방식밖에 없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일부 지주는 월드개발과 동인개발 등 시행업체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엄청난 이권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영신 지구 지주조합 사무실. 조합장은 원유철 의

원의 정치적 후견인으로 불리는 유천형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일부 마을 이장이 맡고, 이들의 활동자금은 원의원의 6촌인 원○○ 동인개발 대표가 낸다.

원유철 의원의 집안 형제로 지제역세권 민간 개발사업을 야심차게 주도하고 있는 원○○ 동인개발 대표는 수차례에 걸친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거듭 회피했다. 대신 그의 동업자인 김규엽 월드개발 대표가 “평택시는 전체 72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맨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쪽은 우리다. 원○○ 사장이 자연과 도시라는 시행대행사를 차려 첫 사업 부지인 동삭동 4만 7,000 평을 월드건설 아파트 건립 사업에 뛰어들면서 모산·영신 지구도 순차적으로 월드건설과 손잡고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월드건설에서 매월 내려오는 억대의 돈은 업무추진비라고 밝혔다. 또 원유철 의원과 송명호 평택시장의 지원하는 권력형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택 지역 내부에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가 원유철 의원을 잘 알고, 평택시장과 친하긴 하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보고 자금을 대주겠는가. 경기도청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우리의 사업수완과 방식을 신뢰해서 이만큼 올 수 있었다고 본다.”

평택시장 승인을 거친 지제역세권 지구지정 승인 요청서류는 현재 경기도로 넘어가 있다. 경기도청이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 사업은 본궤도에 오른다. 경기도청 도시개발 담당자는 “평택시장이 검토를 거쳐 승인하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가 없는지 서류 검토만 하고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수권 위임했다”라고 말했다. 사업의 배후 및 평택시청의 현장 확인 소홀 등 절차상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만일 실제로 한 건설회사가 배후에서 민간 개발을 조종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평택시장이 입안할 때 철저히 확인할 사항이라 경기도로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 문제의 소지가 발견되면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제역세권 민간 택지개발 추진에 권력

형 비리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이들이 나타났다. 개발 예정지 내에 토지를 소유한 진주유씨 하양공과 문중의 일부 인사이다. 이들은 지주조합이 받아간 택지개발 동의서 자체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편법으로 집안의 몇몇 인사가 낸 동의서는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당시 평택시와 추진 주체가 사업의 배후를 감췄고, 이로 인해 지주가 권력형 비리에 들러리를 서게 됐다면서 평택시에 동의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문중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 사업은 지주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새로 시작됐지만 알고 보니 지주조합은 허울뿐이고, 사업의 배후에 월드개발과 동인개발이라는 시행 대행사가 자리했다. 이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과거 수서 택지비리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택시와 사업 시행 주체는 이들의 동의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하루바삐 경기도 승인을 받아 개발에 박차를 가한 뒤 나중에 환지 정산 과정에서 불만 세력을 무마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현행 개발 반대론자들은 평택시와 개발 주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시사IN은 지난 2008년 6월 28일자 제41호 사회면에 “평택 민간 택지개발 수서 비리 다투았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평택시 수도권 전철 지체역사 앞 약 72만 평 부지에 월드도시개발과 동인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시사IN은 이 기사에서 월드도시개발과 동인개발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회피하고자 사업부지를 편법으로 쪼개고, 그 와중에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의 비호와 송명호 평택시장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탔으며, 사업부지 내 조합들은 월드도시개발과 동인개발이 내세운 껌테기 뿐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드도시개발과 동인개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① 사업부지는 수천억 원대의 이권창출이 가능한 토지가 아니고, ② 원유철 의원과 송명호 평택시장은 월드도시개발과 동인개발이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③ 월드도시개발과 동인개발의 관계자가 기자와 인터뷰하여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실을 밝힌 바도 없고, ④ 월드도시개발과 동인개발 임직원들 중 일부가 선거운동 참여한 것은 지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적 후원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⑤ 월드도시개발과 동인개발이 모산·영신조합 및 영신조합에 대여한 자금은 계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고, 월드건설은 동인개발과 무관하며, 월드건설로부터 역대 의용역비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⑥ 무엇보다도 이들 조합이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쪼개기를 하였다는 부분 및 이들 조합이 모두 사실상 껌테기지주조합이라고 보도한 부분은 이에 대한 역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⑦ 현재 단계에서 지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받지 않고 승인을 하여 주었다는 기사 내용은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였음이 확인되었고, ⑧ 지체역세권 사업부지 내 지주들이 ‘토지사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부분, 월드도시개발과 동인개발이 지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토지사용 동의서’의 작성을 재촉했다는 부분 및 지주들이 지상권을 넘겼다는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⑨ 동인개발의 대표 원○○은 인터뷰를 회피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⑩ 월드도시개발의 대표 김○○은 월드건설로부터 매월 역대의 업무추진비가 나온다고 밝힌 사실이 없다는 점, ⑪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엄청난 이권을 챙겼다는 것과 유령 지주조합에 탈세를 통한 불법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⑫ 지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반대론자들이 평택시와 개발 주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역시 확인되어 이와 어긋나는 기사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끝.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2008년 6월 28일자 제41호 사회면 「평택 민간택지개발 수서비리 다투었네」 기사 중 평택시 지체역세권 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동인개발과 월드도시개발이 의도적으로 사업부지를 4개 권역으로 쪼개고, 월드건설로부터 매월 억대의 돈을 받으면서 사실상 '껍데기 조합'인 3개 지주조합 조합장에게 매월 3,000만 원씩 '세금없는' 지원금을 내려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 반대론자들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행대행사들은 해당 사업지구를 지역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3개 지구로 나눠 개발을 추진했고, 각각의 지주조합은 실체를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월드도시개발이 월드건설로부터 받고 있는 자금 및 지주조합장에게 지원한 운영비는 계약에 따른 적법한 대여금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은 현재까지 제기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시행대행사 측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귀속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8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IN>「여기는 시사모」란에 구분선을 삽입하여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제목 양식에 따라 보도하되,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isain.co.kr)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의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건에 관한 후속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후속보도가 이뤄질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되,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IN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3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진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의 사기혐의 구속 사건과 관련, 회장이 진주시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진주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진주시 (시장 정영석)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5.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경남일보 : 『시장과 친분사청 거액 사업자금 빌려 가로첸 - 前 진주바르게살기 회장 구속』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6일자 4면)

내 용 : 진주시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진주지역 각종 봉사단체장을 맡으면서 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지역 유력인사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시청에 따르면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각종 봉사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시장과 친분을 내세워 아는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돈을 빌린 뒤 가로채 전 진주시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인 이모(59)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7월께 진주시 칠암동 소재 모사무실에서 “제주도에 대형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빌려 달라”며 “공사 기성금이 나오면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같은해 9월께 모 여성자원봉사단체의 총무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공무원인 B모 씨와 C모 씨에게도 각각 350만 원과 200만 원을 빌린뒤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진주시역을 벗어난 하동지역에 있는 요양원 원장에게도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건설회사와 진주시의 각종 관련단체 회장을 역임하면서 알게된 지인들로부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지인들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들의 진술과 대질신문 하는 등 이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4년께부터 2007년 6월까지 진주시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前진주바르게살기 회장 구속에 대한 반론보도문

•내 용 : 경남일보는 2008년 7월 16일자 4면에 『시장과 친분 사칭 거액 사업자금 빌려 가로채 전 진주바르게살기 회장 구속』 제하의 기사에서 “진주시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 거액을 가로채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진주시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시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인 것처럼 오보하여 독자들에게 마치 진주시장이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처럼 인식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기사의 내용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남일보는 지난 기사 내용으로 인해 그동안 진주시장의 명예와 진주시의 사회적 신뢰성이 심히 훼손된 점을 인정하고 진주시장 및 소속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 반론보도문은 진주시가 경남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반론 보도하는 것입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진주시

시장 정 영 석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남일보사

경남 진주시 상평동 237-4

대표이사 김 홍 치

주 문 : 이 사건 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4면 상단에 별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16일자 4면에 『시장과의 친분 사칭 거액 사업자금 빌려 가로채 前 진주바르게살기 회장 구속』 제하의 기사로 진주시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진주시역 각종 봉사단체장을 역임한 자가 진주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도는 진주시장이 마치 범죄 피의자와 깊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여 피의자와 진주시장과의 관계를 확대포장하고 진주시장이 범죄행위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나 진주시장은 범죄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진주시장 및 진주시의 사회적 신뢰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별지>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2. 판단

신청인 진주시는 위 보도내용에 의해 피해를 입

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가 신청인의 대표자인 시장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서 신청인 진주시가 보도에서 직접 언급된 바 없고, 신청인의 직무집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신청인이 법률상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 관한 보도로 신청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대표자 개인이지, 진주

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도내용과 신청인과는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시장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보도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에 연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이나 신청인 단체 대표자의 인격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0.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인 신청인이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직 당시 발생했던 편입학 시험 부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안 병 만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국민일보 : 『안병만 당시 총장이 협조 지시』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4일자 1면)

내 용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가 1997년 1월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직 당시 발생했던 편입학 시험 부정에 사전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안 내정자가 입시 부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옛 교육부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장관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72) 전 한국외대 영어과 교수는 지난 14일과 20일 본보와 두차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안 내정자가 편입학 시험을 한 달여 앞둔 96년 12월 출제위원장으로 내정된 나를 총장실로 부른 뒤 학교 발전을 위한 일이니 학교 발전 공로자 등을 위해 (편입학 시험 부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심 전 교수는 “안 총장 지시를 받은 이후 편입학 시험 진행본부의 요청에 따라 문제지와 정답지를 함께 제출했다”며 “본부에서 정답지를 보고 특정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했을 것이고, 나는 정답지를 건넨 일 때문에 검찰에 구속됐다”고 말했다.

심 전 교수의 새 증언은 98년 4~5월 실시된 옛 교육부의 한국외대 감사 결과 안 내정자가 입시 부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경고 처

분만 내렸다는 교과부의 최근 해명과 배치된다.

교육부 감사반은 당시 한국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교직원들이 9명의 학생을 부정 편입학시키고 정규입시 채점기록원부(OMR 카드) 1,439장을 분실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심 전 교수와 당시 한모 총무처장, 그리고 교무부처장에게는 해임, 입학주임에게엔 정직, 교직원 13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리도록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측에 통보했다. 사건 당시 총장이었던 안 내정자에게는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했다.

심 전 교수는 교육부 감사 당시 안 내정자의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직 교수로서 총장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었고 입을 다물어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안 내정자는 23일 “당시 동시통역대학원장이던 심 전 교수를 총장실로 불러 만난 적은 있지만 입시 부정에 대해 말을 나누진 않았다”면서 “97년 편입학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도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안병만 장관 내정자는 한국외대 편입학 부정과 무관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4일자 종합면 1면에 『1997년 한국외대 편입학부정 “안병만(교육부장관내정자) 당시 총장이 협조지시”』라는 제목으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가 1997년 1월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직 당시 발생했던 편입학 시험 부정에 사전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심○○ 전 외대 출제위원장과 인터뷰를 통해 “안 내정자가 편입학 시험을 한 달여 앞둔 96년 12월 출제위원장으로 내정된 나를 총장실로 부른 뒤 학

교 발전을 위한 일이니 학교 발전공로자 등을 위해 (편입학 시험 부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고, 종합면 제3면에 『시험 한달전 출제위원장 왜 불렀을까?』라는 제목으로 ‘일단 안 내정자도 심 전 교수를 총장실로 불러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 및 교육부 감사에서는 교무처 직원들이 교수들과 짜고 편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났으나 배후는 규명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교육부는 제보자로 알려진 안 내정자에 대해 총장으로서 감독소홀 책임만 물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하여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이하 ‘안 장관 내정자’라 합니다)가 심○○ 전 외대 출제위원장(이하 ‘심 전 교수’라 합니다)에게 1997년 발생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라 합니다)의 편입학 시험 부정을 직접 지시하고, 편입학 시험 부정 사건을 제보한 것처럼 보도하고, 또한 종합면 3면에 「OMR 카드 분실 사건도 배후?」라는 부제목 하에 당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A교수가 “입시 관련 문건을 보관 하던 창고의 열쇠 교체는 총장 지시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인용보도하여 안 장관 내정자가 외대의 편입학 시험 부정과 관련한 OMR 카드의 분실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안 장관 내정자가 심 전 교수를 편입학 부정 시험과 관련하여 총장실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시 동시통역대학원장이었던 심 전 교수를 학교 내 업무로 만났던 것이며, ② 안 장관 내정자는 외대 총장 재직 시절에 외대의 편입학 시험부정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③ 1997년 외대 편입학시험 부정과는 무관하며, ④ 편입학 시험 부정 사실을 (구)교육부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조선일보 인턴기자의 메모리카드를 빼앗고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8.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조선일보 : 『본사 사진부 인턴기자 시위대에 폭행당해』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2일자 사회면)

내 용 : 본사 사진부의 박모(23) 대학생 인턴기자가 19일 밤 서울 종로2가를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100여명에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 박 인턴기자는 당시 종로2가 옆 한 건물 5층 사무실에서 시위대가 행진하는 전체 모습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이를 발견한 시위대 5~6명이 이 건물로 올라와 박 인턴기자를 끌어내리자, 100여명이 그를 도로 한가운데 세워두고 둘러쌌다.

박 인턴기자가 “조선일보 인턴기자”라고 밝히자, 일부 시위대는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했다. 시위대는 박 인턴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담겨 있던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빼앗고 40여분 만에 그를 풀어줬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인턴기자 폭행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조선일보는 21일 사회면 『인턴기자 시위대에 폭행당했다』와 22일 조선닷컴 기사에서 『인턴기자 폭행 사실이다』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21일 보도내용중 시위대는 박 인턴기자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의 메모리를 빼앗고 40여분 만에 그를 풀어줬다 라는 내용과 22일 조선닷컴 보도내용중 박 인턴기자는 당시 종로2가 옆 한 건물 5층 사무실에서 시위대가 행진하는 전체 모습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이를 발견한 시위대 5~6명이 이 건물로 올라와 박 인턴기자를 끌어내리자, 일부 시위대가 폭행을 가한 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빼앗았다. 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시민기자는 시위대가 메모리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빼앗은 시점은 기사와 달리 시위대가 인턴기자를 발견한 직후가

아닌 30분이 경과한 후 였고, 그 와중에 인턴기자가 메모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인턴기자가 당황한 나머지 메모리 카드를 숨긴 상태에서 본인에게 메모리 카드를 훔쳐간 사람으로 모는 것은 물론 메모리 카드를 버렸다. 메모리 카드를 분실했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시위대가 제차 강력하게 추궁하며 메모리카드를 요구하는 와중에 인턴기자와 시위대가 메모리를 찾으러 건물로 들어가 메모리를 찾는 도중에 시위대 한 명이 렌즈통에 숨겨져 있던 메모리 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인턴기자를 폭행한 적이 없으며 메모리를 빼앗은 적도 없고 조선일보(닷컴) 기사로 인해 시민기자 본인이 폭행하고 메모리를 빼앗은 것처럼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손 ○ ○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2-4

대표이사 김 찬

주 문 : 1. 신청인의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신청인의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에 대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조선닷컴 사회면 22일 인턴기자 폭행 기사에 대해 해당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21일 다른 인터넷 언론에 본인 네티임까지 거론된 바 22일 조선닷컴 기사는 본인이 메모리를 빼앗고 폭행한 것처럼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21일 조선일보 기사나 22일 조선닷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오해 소지가 있어 별지의 내용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21일 조선일보 사회면의

「본사 사진부 인턴기자 시위대에 폭행당해」 제하의 기사(이하 ‘사건기사’라 한다)를 통해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자사 소속의 인턴기자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시민기자의 신분으로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신청인은 인턴기자를 폭행하고 메모리를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 사건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8년 7월 21일 게재된 「본지 대학생 인턴기자, “중아리 채이고, 뒤통수 맞고.... 폭행당한 것 사실”」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주식회사 조선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행사하는 권리인데,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어 인격적·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그런데 위 사건 기사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직접 언

급된 바 없어 신청인과 사건보도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기사내용만으로는 신청인의 인격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디지털 조선일보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 조선일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조정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7.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청인 협회가 국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8

청 구 명 : 정정보도

신 청 인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협회장 이 ○ ○)

피신청인 : OBS경인TV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OBS경인TV : 「OBS뉴스 755」 프로그램 (2008년 7월 14일 20:00)

내 용 : 〈2008서울조정2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218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취하 후 보도문

OBS경인TV : 「OBS뉴스 950」 프로그램 (2008년 8월 13일 09:50)

내 용 : 지난달 14일 OBS 8시 뉴스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전신인 대한수렵관리협회가

국가지원금 횡령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횡령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이 협박성 전화를 받겠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얼굴 사진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유 ○ ○

2. 박 ○ ○

3. 마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0.

처리결과 : 취 하(중재합의, 2008서울중재7 참조)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촛불시위 유모차부대 ‘아이납치’ 협박받았다』 제하의 사진
(2008년 6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기간 중
지난 6일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젊은 주부들

이 협박성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 유모차를 끌고나온 A씨는 “유모차 부대가 한 번만 더 보이면 아이를 납치하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여성 A씨는 한 인터넷 요리 사이트게시판에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아이를 납치하겠다”는 협박전화가 9일 하루 4차례 걸려왔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무슨 보수단체 소속인지 나이 지긋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며 “시위현장에서 유모차 부대가 한 번만 더 보이면 그 자리에서 제 아이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창조한국당 대표가 이한정 의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며 공천헌금 수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문 국 현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문국현 ‘공천헌금 개입’ 형사처벌 위기』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1일자 8면)

내 용 : 창조한국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한정 의원(구속 중)한테서 돈을 받는 과정에 문국현 대표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이 의원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천 헌금 6억 원을 낸 혐의(선거법 위반)로 17일 추가 기소된 이 의원의 공소장을 보면, 문 대표는 비례대표 등록 마감 이틀 전인 지난 3월24일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이아무개 당 재정

국장 등과 함께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자리를 떴고, 이 국장은 이 의원에게 “당의 대선 빚이 7억 원이다. 비례대표 3번이 5억 원을 냈으니 이 후보는 최소한 5억 5천만 원은 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부’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 다음날인 27일 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 재정이 어렵다. 이 후보께서 당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했고, 이 의원은 돈을 입금했다. 이를 보고 받은 문 대표는 29일 다시 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 사실을 들었다. 정말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다는 게 공소장의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 내용은 그동안 문 대표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대표는 그동안 ‘이한정씨가 수억 원의 당채를 매입한 사실을 몰랐나’는 질문에 “그렇다. 당 대표가 그런 것까지 알면 은평 선거 같은 건 치를 방법이 없다”며 부인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문 대표가 이한정 의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문국현 ‘공천헌금개입’ 형사처벌 위기 기사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1일 8면에 “문국현 ‘공천헌금개입’ 형사처벌 위기”라는 제목으로 마치 문국현의원이 공천헌금에 개입했고 형사처벌 받을 것인양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는 검찰공소장을 인용 보도한 것일뿐 창조한국당 당직자들의 소환조사 결과, 문국현 대표의 서면답변서 등의 내용은 이와 다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드립니다

• 내 용 : 2008년 7월 21일치 8면 공천헌금 개입 의혹 기사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업무는 총선승리본부의 공천심사위원회와 일부 실무국장들이 간여하고 있었던 사안으로서 본인이 ‘비례대표 2번을 주겠으니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문 대표는 또 “이와 관련한 해명을 바꾼 적이 없고, 검찰이 문대표의 공천헌금 개입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국경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8월 19일까지 한겨레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금 3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에 개입되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국민방송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국민방송 : (1) 『함평군 사업장 폐기물 관리 허술』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7일 건설·환경면)

내 용 : 전남 함평군 함평 농공단지 입니다. 이곳은 폐기물을 소각시켜 석회석을 생산하다 부도 처리되어 건물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산업 폐기물들이 산더미 같이 수 만 m^3 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 폐기물들은 여수 화학 단지, 광양 제철소등에서 반출된 석회 슬러지, 석탄재, 용광로 슬래그와 재 등의 사업장 폐기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폐 석회석과 재의 화학적 주성분은 CaO 로 물에 녹으면 PH(산성도)10 이상의 강한 알칼리성을 띄우며 PH 10이상에서는 물고기 뿐 만아니라 미생물까지도 전멸 할 정도로 독성이 심한데 우수시에는 인근의 하천이나 저수지로 그대로 흘러들러 갑니다. 폐수 처리장에서 황산이나 산성을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 석회석은 독성이나 오염은 훨씬 심합니다.

또한, 호흡기로 인체에 유입되는 비산먼지는 점막을 파괴하고 호흡기 계통을 손상시키며 피부에 노출 되면 피부가 갈라지는 유독성 물질입니다.

함평군 환경과 폐기물 담당 임 모 계장은 사업장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석회석 원석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면서 행정적으로도 사유재산이니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하며 환경 담당자로서 기본적인 환경 업무인 폐기물과 사유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폐기물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환경오염이나 독성에 대해서는 더 논할 필요가 없는 함평군의 폐기물 관리 행정부채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공장이 부도처리 전에도 폐기물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책 없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장마철에 오염이 가중되었습니다.

금년 3월 경에는 건물을 경락받은 박모 씨(무안군 망운면, 51세)가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과 현장7~8m 깊이 지하에 폐기물을 매립하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어 주민들의 집단 항의 시위로 있었습니다. 또한, 박모 씨는 무안군 현경면 해운 리에 약 5,000 m^2 (루베)이상의 많은 양을 농지에 불법 매립을 자행

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매립 과정에서 함평군 지역경제과 이모 계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비 축제 성공으로 청정 이미지, 푸른 함평을 내세우는 함평군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 『함평천지, 폐기물 침출수로 오염 천지??』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8일 건설·환경면)

내 용 :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 농공단지 입니다. 곳곳에 사업장에서 반출된 산업 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습니다. 반출처를 알 수 없는 산업 폐기물에는 독성과 각종 오염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까지 하였습니다. 불법 매립에는 함평군 지역 경제과 이모 계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로 호우주의보가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비가림이 되지 않은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는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밖으로 흘러 하천과 농경지와 저수지 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수 년 동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함평군 폐기물 담당 계장 (임모 씨)은 폐기물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관리 부재로 수 년째 폐기물을 방치하여 함평천지 푸른 함평이 오염천지로 오염을 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6월 27일 『함평군 사업장 폐기물 관리 허술』 및 6월 28일 『함평천지, 폐기물 침출수로 오염 천지??』 제하의 방송에서 산업 폐기물 불법 매립 과정에 함평군 지역 경제과 이모 계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모 계장은 불법 매립에 개입한 바 없으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정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진 것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12일까지(토

요일, 공휴일 제외) 게재하되,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4시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국민방송> 초기화면 중간의 '포커스 투데이' 목록 상단에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정대상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같은 페이지에 나오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검찰 수사 결과 허위보도로 밝혀진 경우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방송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일 16:02)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금강산관광객 총격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글을 발채하여 민노당원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근거로 친북세력이라고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최 규 엽

2. 민주노동당 (대표 강 기 갑)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세계일보 : 『민노당, 북한군 대변자로 나선건가』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6일자 31면)

내 용 :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한 사람인 최규엽 진보정치연구소장이 최근 '아고라'에서 발채한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 '참고용'이라며 "(초병의 경고나 명령에) 불응, 도주 시에는 발포 및 사살이 규칙"이라는 골자의 글을 띄운 것이다. 자기속내를 털어놓는 대신 네티즌 의견 형식을 빌려 간접적으로 북한군의 만행을 옹호한 셈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 정당이 국민 생명을 도외시하면서 북한을 추종하고 감싸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어제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러진 고 박○○ 씨의 영결식은 울음바다를 이뤘다. 50대 관광객을 조준 사격한 북한군의 처사가 비통한 결과를 빚은 일

차적 원인이지만, 민노당을 비롯한 일각의 몰지각한 반응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북한군 초병이 금강산관광지구법의 명문 규정도 어긴 채 불법 총격을 가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북한군 대변자라도 된 양 껀변을 늘어놓는 이유가 대체 뭐가.

민노당은 5·6월 촛불 시위에 적극 가세한 정당이다. 최소장도 천영세 대표 등과 함께 길거리에 나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데 앞장섰다. 입만 벌리면 '국민 생활과 건강'을 들먹이면서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다. 그런 이들이 정작 우리 국민이 비명에 숨졌고 북한이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는데도 대북 비난 성명 한 장 내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친북 노선을 따르다 보니 국민의 눈은 전혀 무섭지 않은 것인가.

민노당 지도부는 그제 조문에 앞서 박승흡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남북 공동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한다"면서 기본입장을 밝히기는 했다. "이 사건은 절대로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거나, 정치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남북의 책임공방 이전에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민간인 살해사건을 놓고 사과를 촉구하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이처럼 실없는 말만 일삼을 바에는 아예 중앙당 주소지를 평양으

로 옮기는 게 낫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금강산 사건 관련 사실에 대한 민노당 반론

•내 용 : 세계일보는 지난 7월 16일자 사실에 금강산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민노당, 북한군 대변자로 나선 건가’라는 제목으로 “최규엽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이 북한을 추종하고 감싸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규엽 소장이 간접적으로 북한군의 만행을 옹호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북한군 대변자라도 된 양 께변을 늘어놓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지적하면서 “사과를 촉구하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이처럼 실없는 말만 일삼을 바에는 아예 중앙당 주소지를 평양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에 대해 ‘길거리에 나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섰다’,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 일조’, ‘친북 노선을 따르다 보니 국민의 눈은 전혀 무섭지 않은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음 아고라에서 어느 네티즌이 쓴 글을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자료로서 당원들이 보는 게시판에 퍼 왔는데, 세계일보 측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도, 마치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가정하고, 본인과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는 사실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일보의 사실로 인해 본인의 주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왜곡하여 전달됐으며, 또한 본인에 대한 세계일보 사실의 비판이 도에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욕적이어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습니다. 특히 금강산 사건과 무관한 촛불집회의

참석을 거론하면서 본인과 민주노동당을 불법시위 세력으로 단정하고, 심지어 ‘당사를 평양으로 옮기라’는 식으로 비난하여 정치인과 정당으로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사망하신 분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본인과 민주노동당은 남북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처리할 남북 금강산공동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합의사항

•제 목 : 알려드립니다

•내 용 : 7월 16일자 「민노당, 북한군 대변자로 나선 건가」 사실과 관련, 민주노동당 최규엽 진보정치연구소장은 당원 게시판에 게재한 글은 북한군 초병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친북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일요일을 제외하고 2008년 8월 16일까지 세계일보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세계일보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보좌진이 측근의 친·인척들로 인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레디앙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레디앙 : 『특정인 부인-형-친구, 특정지역 출신 홍희덕 의원 보좌관 연고 인사 물의』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2일자 정치면)

내 용 : 홍희덕 의원실 보좌진이 홍의원이 속했던 민주연합노조의 부위원장이자 상급단체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김○○ 위원장의 인맥으로 채워져 논란을 빚고 있다고 <시사IN> 최근호(45호)가 보도했다. <시사IN>은 “홍 의원실 4급 보좌관 양○○ 씨와 5급 비서관 김○○ 씨가 김○○ 씨의 부인과 형”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취재 결과 양보좌관과 김보좌관 외에 김○○ 보좌관과 김○○ 보좌관도 김위원장의 후배,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동두천, 의정부 지역 출신이다. 김○○ 보좌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며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실은 “김○○ 보좌관은 수행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며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대부분 보좌관을 자신과 연관된 사람으로 채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 위원장은 노무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으로 노조 조직화에 앞장 서 민주연합노조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민주연합노조를 세운 뒤 위원장을 역임하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홍희덕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부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는 상급 단체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된 청소, 시설관리, 하수처리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동두천시당 황왕택 위원장은 최근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동두천 내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주노동당의 혈연 지연에 의한 보좌관 낙하산인사를 들었다”며 “지역 내 당원들과 지역의 단체 및 주민들로부터 사실 확인

전화가 빗발치고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황위원장은 “보좌관을 뽑는데서 노조간부의 친형과 부인, 옆 동네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당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모두들 이를 악물고, 당을 위해 헌신하는 이때 이러한 무분별한 인사기준은 세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보좌관 인선 논란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이병길 기획팀장은 “김○○ 보좌관의 경우 민주연합노조 사무국장 출신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 쪽에 전문성이 있어 추가선임을 통해 채용된 경우고, 양미경 보좌관은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팀장은 이어 “김○○ 보좌관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지역보좌관을 강력하게 원했던 분이고, 김○○ 보좌관은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정책기획실장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들이 환경노동위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환노위에 관련된 뚜렷한 경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덕 의원실 조○○ 보좌관은 “아직 <시사IN> 보도를 보지 못해 확인해 줄 것은 없다”며 “당에서 공채를 거쳐 뽑았기 때문에 관련 문의는 중앙당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 측은 <시사IN>에 “홍의원 측은 중앙당 공채를 거쳤기 때문에 보좌진 인선과정에 문제는 없으며 특정인의 가족을 한꺼번에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의 공채를 거쳐 뽑았다는 홍 의원실의 해명은 표면적인 것일 뿐 보좌관 인선의 대부분은 각 의원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원준비단장으로 공채를 주관한 최순영 전 의원도 보좌관 채용결과에 대해 “이번 의원 보좌관 명단 발표는 개원준비단이 아닌 의원들 각자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사IN> 보도에서도 최 전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원칙이 많이 어그러졌다. 너무 속상해서 의원들더러 알아서들 채용하시라며 중간에 단장을 그만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홍의원 보좌관 채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현정 부위원장과 홍의원 보좌관실 양○○, 김○○

○ 보좌관이 의정부 위원장 선거개표장에 몰려와 정상적인 투표함 봉인절차를 방해하는 등 당 지역위원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부위원장은 의정부 주민이 아닌데다 지난해 6월 5일 당기위를 통해 여성당원에 대한 성적 모독으로 제명 결정, 12월 중앙당기위에서는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민노당 의정부 지역 윤재호 대의원은 이와 관련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을 통해 “지난 17일 노조 일정을 마치고 밤 12시경 송정현 비대위원장과 임시로 당 사무실로 쓰고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갔는데 책상 위에 투표용지가 널려져 있고 그 자리에 라천봉 위원장 후보(민주연합노조 의정부지부장)와 노조 사무장, 그리고 민태호 부위원장 후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당 선관위에서는 최고위원만 개표하고 나머지는 봉인해서 18일 의정부 당직선거가 마감되면 개표하라고 했는데 라 후보와 노조 사무장이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던 중 김○○ 부위원장과 양○○, 김○○ 보좌관이 들어와 송정현 비대위원장이 도당선관위에서 시킨대로 봉인하려고 하는 것을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송정현 비대위원장이 김○○ 씨 보고 ‘양주당원이 왜 자꾸 의정부 선거에 개입을 하냐’고 했더니 ‘당을 내일 당장 의정부로 옮긴다’며 송 비대위원장에게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운동할 생각하지 말라’는 막말을 하며 협박을 해 내가 어이가 없어 막 따졌다”며 김 부위원장과 민주연합노조 측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민주연합노조 측은 “나중에 연락해 주겠다”며 끝내 김 위원장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7월 22일자 본지 기사 『특정인 부인-형-친구, 특정지역 출신 홍희덕의원 보좌관 연고 인사 물의』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결과 김현정은 의원실 인사와 관련이 없음을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 중 홍의원이 속했던 민주연합노조의 부위원장이자 상급단체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김○○ 위원장의 인맥으로 채워져 논란을 빚고 있다고 <시사IN> 최근호(45호)가 보도했고, 대부분 보좌관을 자신과 연관된 사람으로 채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 위원장은 이라는 기사는 사실근거에 의해 확인된 기사가 아니며, 또한 신청인 김현정은 전국시설관리연맹위원장도 아니며, 의원실인사와 연관하여 논란의 대상이 아님을 바로 잡습니다.

김위원장은 민주연합노조를 세운 뒤 위원장을 역임하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홍희덕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부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는 상급 단체인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도 사실 확인결과 민주연합노조를 세운 위원장은 홍희덕의원이며,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위원장도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홍 의원 보좌관 채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현정 부위원장과 홍 의원 보좌관실 양○○, 김○○ 보좌관이 의정부 위원장 선거개표장에 몰려와 정상적인 투표함 봉인절차를 방해하는 등 당 지역위원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라는 기사는 사실 확인결과 보좌관 채용과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의정부지역개표장 선거개입을 방해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었고, 봉인절차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송정현 비대위원장이 김○○ 씨 보고 ‘양주당원이 왜 자꾸 의정부 선거에 개입을 하냐’고 했더니 ‘당을 내일 당장 의정부로 옮긴다’며 송 비대위원장에게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운동할 생각하지 말라’는 막말을 하며 협박을 해 내가 어이가 없어 막 따졌다”며 김 부위원장과 민주연합노조 측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라는 기사는 사실 확인결과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인용한 내용으로서 사실이 아님을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7월 22일자 “특정인 부인-형-친구, 특정 지역 출신 홍희덕 의원 보좌관 연고 인사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김○○이 상급 단체인 전국시설관리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수정하며, 의원실 보좌관 인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22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레디앙(www.redian.org)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레디앙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보좌진이 측근의 친·인척들로 인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레디앙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또한 이번 보좌관 인사에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김○○ 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정실 인사 의혹 관련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후략)

보도내용

레디앙 : 『홍희덕 침묵 일관…김○○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4일자)

내 용 : 특정인맥을 중심으로 한 인선으로 당내 비판을 받고 있는 홍희덕 의원실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24일 2시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 입장 도중 <레디앙>과 만난 자리에서도 문제가 된 인사에 대한 시정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바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보좌관 인사 관련 기사가 <시사IN>, <레디앙>에 이어 <경향신문>에까지 보도되자 몇몇 당원들은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홍 의원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홍 의원실에서는 반박 보도자료는 물론 언론의 취재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등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7월 24일자 『홍희덕 침묵 일관…김○○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에서 “또한 이번 보좌관 인사에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김○○ 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정실 인사 의혹 관련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결과 신청인은 민주노동당의 의원실 보좌진 채용 또는 내부운영의 문제 등 이번 기사와는 관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226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2008서울조정226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보좌진이 측근의 친·인척들로 인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환경미화원 출신 민노당 홍희덕 의원 보좌진 ‘정실 인사’ 눈총』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4일자 10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2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22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7월 23일자 10면 “보좌진 ‘정실 인사’ 눈총” 제하의 기사와 관련, 시설관리노조의 위원장이라고 표현된 김○○ 씨는 시설관리노조와 관련이 없으며, 2006년 민주연합노조의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9월 4일까지 경향신문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단, 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의 보좌진이 측근의 친·인척들로 인선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2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시사H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7. 3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N : 『의원님 측근 밥그릇 챙기기 민노당도 똑같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6자 30면)

내 용 : 민주노동당 18대 국회의원 보좌진 인선 과정을 두고 안팎이 시끄럽다. 민노당은 지난 4월 25일 공고를 내 보좌진 일괄 공개채용을 실시했다. ‘자기 사람 심기’로 얼룩진 기존 보좌관 채용 관행을 따르지 않으려는 민노당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하지만 인맥 인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일었다. ‘조용히’ 자기 사람을 앉히는 다른 당보다 뒷말이 오히려 더 무성하다.

특히 홍희덕 의원실 보좌진 구성을 두고 말이 많았다. 4급 보좌관 양○○ 씨와 5급 비서관 김○○ 씨가, 홍 의원이 속한 전국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 김○○ 씨의 부인과 형이라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국민주연합노조의 전신인 경기도노조를 꾸려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조직화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가 경기도노조 위원장을 지낼 때 홍 의원은 사무국장을 맡았다.

보좌진 인맥 인선 논란에 휩싸인 민노당 홍희덕 의원 (자료사진)

특정인의 친인척이 한 의원실에서 일하게 된 사실을, 공채를 진행한 민노당 개원준비단은 뒤에 소문을 듣고 알았다고 했다. 실무를 담당했던 이○○ 기획팀장은 “만약 당시 알았다면 두 분에게 자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내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 측은 당 공채를 거쳤기 때문에 보좌진 인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인의 가족을 한꺼번에 채용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력을 적체적소에 배치했다”라고 밝혔다. 양 보좌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추천한 노동전문가이고, 김 비서관은 의정부 출신으로 법률·행정 자격증을 다수 갖고 있어 홍 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알맞다고 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 집행위원장은 “홍희덕 의원의 친인척도 아니고 충분한 자격도 갖췄는데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특정 정파가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사이가 좋지 않아 의도적으로 비트는 측면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의원님 측근 밥그릇챙기기 민노당도 똑같네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7월 26일자 사회정치면 전면에 “의원님 측근 밥그릇 챙기기 민노당도 똑같네”라는 제목으로 홍희덕 의원 보좌진 채용과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임이 밝혀졌습니다.

다 음

• 의원님 측근 밥그릇 챙기기 민노당도 똑같네 라는 제목은 사실확인 결과 의원님은 측근 밥그릇을 챙기는 사람이 아님이 확인되었으며, 측근으로 특정된 사람의 집에는 대부분 밥그릇이 많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습니다.

• 홍희덕 의원실의 보좌진은 의원 및 특정노조 간부의 형과 부인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일정한 기준의 자격을 가지고 채용된 보좌진입니다.

• 특정노조의 간부로 거명된 김○○ 씨는 이 기사 내용의 보좌진 채용에는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채용된 보좌관 8명 중 전문성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하는 대상인 양○○, 김○○ 씨는 전문성과 사회적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또한 양○○, 김○○ 씨의 집에도 밥그릇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집에 밥그릇이 없어 보좌진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기사에 게재된 홍희덕의원 사진은 08년 4월 30일 본지의 안○○ 기자가 촬영한 사진으로 위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는 홍희덕의원의 표정을 게재한 사진으로 이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내 용 : 본지 제45호 정치면 30쪽 “의원님 측근 밥그릇 챙기기 민노당도 똑같네”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기사의 제목이 내용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30일까지 <시사인>의 <여기는 시사모> 코너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사인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HN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30일자 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청주 광역소각시설 유치 지역에 지급된 마을발전기금이 불법 집행되고, 무자격자가 협의체 전문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협의체 위원장이 타 지역에 없는 활동수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청주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박 ○ ○)
2.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마을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청주KBS-1TV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청주KBS-1TV : 「시사플러스 충북」 프로그램 (2008년 6월 6일 19:30)

내 용 : (전략)

▷PD : 네,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사업은, 그 입지 선정을 놓고 무려 10년 가까이 진통을 겪어온 사안이었습니다. 그만큼 청주시의 주요 현안사업이자, 청소행정의 큰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유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을 극복하고, 지금의 청주시 휴암동에 착공됐습니다.

▷MC : 현재 소각 시설의 공정률은 5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완공될텐데 청주시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돈잔치, 무슨 얘기입니까?

▷PD : 현재,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은 총 7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59억 원이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해당 지역, 청주시 휴암동 주민들에게 지원기금으로 쓰여 지난해부터 지금 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청주시의 청소행정이 부조리를 일삼고 있다며 휴암동의 몇몇 주민들이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C : 결국,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청주시의 청소행정이 오랜 숙원사업인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대표인 협의체에 밀어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PD : 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소각시설이 휴암동으로 입지가 결정되던 당시, 누구보

다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 가운데 하납니다. 때문에, 행정상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한, 협의체의 요구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청주시 담당자들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MC : 그런데,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적했듯이 위원 구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소각시설은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위촉시, 더욱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인데요.

▷PD : 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9명 가운데는 교수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박모 교수 외에도, 또 한명의 교수 역시, 그 전문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략)

▷PD : 청주시는 지난해, 위원들의 자격 논란이 있는 해당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 모두 6천 5백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적게는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청소행정으로부터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마을발전기금 배분문제와 청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위원 선정 관련 및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활동비 지급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마을발전기금 59억 원이 불법 집행되었음에도 청주시는 이를 눈감아 주었고, 청주광역시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문위원으로 선임한 박○○ 교수가 전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협의체위원장 활동비가 청주시와 유착에 의해서 지급되었고 다른 지역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발전기금은 청주시 소각시설유치 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합법적으로 배분되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자문위원인 박○○ 교수는 환경관련 박사학위와 폐기물관리 국가기술자자격증을 소지하였고, 대학에서 10여 년간 관련분야에 대한 강의를 전담하면서 청주시민의 환경적 피해와 공해방지를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전문위원으로 봉

사해오던 학자로 법적자격과 인격을 고루 갖춘 분이며, 위원장 활동수당은 위원장으로 상근하며 활동하는 전국 협의체위원장에게 100만 원에서 350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취재과정에서도 분명히 밝혀진 바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6월 6일과 13일자 <시사플러스 충북> 프로그램 중 「실태고발, 청주시 청소행정」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청주광역시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휴암동 마을회에 대한 마을발전기금이 청주시의 조례와 배분약정서, 마을규약 등에 의거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배분되었음이 밝혀졌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전문위원은 환경 관련 자격증과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로서 관련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협의체위원장의 활동수당과 관련하여 전국 다른 지역협의체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8월 22일 19시 30분에 방송하는 청주KBS-1TV <시사플러스 충북>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청주KBS-1TV : 「시사플러스 충북」 프로그램 (2008년 8월 22일 19: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포스코 창고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포스코가 투입한 건축비를 항만시설 사용료로 삭감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보도하였으나 적법하게 국가귀속 후 관리하고 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29

청 구 머 : 정정청구

신 청 인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청장 이 병 주)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기일보 : 『평택항 포스코 창고시설 특혜 의혹』 제
하의 기사 (2008년 7월 18일자 6면)

내 용 :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에
따라 국가귀속이 불가능한 포스코의 창고시설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킨 뒤 포스코가 투입한 건축비
등 80억 원을 항만시설 사용료로 삭감해 줘 특혜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97년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임대
받은 평택항내 1번선석에 냉연코일 등을 보관하기
위해 건축비 80여억 원을 들여 1만1천여㎡ 규모의
창고 1동(2층)을 건축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같은해 포스코의 창고를 국가
에 귀속시키고 건축비 전액을 보전, 포스코에 대해
매월 부두사용료 등으로 삭감하고 있다. (중략)

특히 해수부는 포스코의 항만임대 기간이 만료
되는 30년 후에는 낡은 창고는 물론, 크레인 등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등 추가 비용지
출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항만업계에서는 “민간기업의 창고시설
을 국가에 귀속시키면서 건축비를 보전해 줘 부두
등 항만시설 사용기간을 늘여주는 것은 특혜”라며
“임대만료 시점엔 불용건축물로 변해 폐기처분해
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해수부가 이를 국가에 귀속
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은 “부
임전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
고 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해 위법이 드러날 경
우 법에 준하는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평택항 포스코 창고시설 특혜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8일자 사회면에
“평택항 포스코 창고시설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
로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국가귀속대상 시
설이 아닌 포스코의 창고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사용료를 삭감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 창고시설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및 준공 당시 항만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해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국가 귀속 후 관리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평택항 포스코 창고시설 특혜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18일자 6면에 『평택항
포스코 창고 시설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국토
해양부(구 해양수산부)가 국가 귀속대상 시설이
아닌 포스코의 창고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뒤 사
용료를 삭감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동 창고시설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및 준공 당시 항만법 시행령 제17
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국가 귀속 후 관리하

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일보 2008년 8월 12일 7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 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국가에 귀속...건축비 80억 사용료로 삭감)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일보 : 『평택항 포스코 창고시설 특혜의혹 보도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2일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최측근의 친·인척 등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여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0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홍희덕 외 6인

피신청인 : 시사H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4.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8서울조정22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29의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시사HN : 『의원님 밥그릇 챙기기 민노당도 똑같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6일자 45호 30쪽)

시사HN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30일자 9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29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

김제경찰서가 계장급에 대해 직위공모를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모 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 계장급으로 발령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제경찰서 (서장 이 승 길)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북일보 : (1) 『김제경찰 인사 ‘복마전’』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1일자 1면)

내 용 : 김제경찰서(서장 이승길)가 지난 7월 14

일자 단행한 인사와 관련, “계장급에 대해 직위공모를 실시한다고 해서 응모했는데 정작 직위공모에 응한 사람은 배제하고 특정 과장의 친구 등으로 배치했다”며 김제경찰 내부자가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 인사비리 의혹을 고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제경찰 A씨는 3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제경찰서는 이번 인사에서 경위급 계장 및 순찰팀장, 민원담당관, 초소장 등은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기존 근무자가 유임을 원할 경우 여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응모하도록 했다”며 “나의 경우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공모 대상이어서 응모했는데, 이번 직위 공모에 응모하지도 않았고,

또 경위에 임용된지 4개월밖에 안된 D모 씨를 계장에 발령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발령됐다.

이같은 경우는 B씨와 C씨도 마찬가지. 이들도 A씨와 마찬가지로 유임을 위해 직위공모에 응했지만, B씨는 다른 계장 보직을 받았고, C씨는 일선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발령됐다.

A씨는 “서장이 공모자격 및 요건에도 없이 현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시 유임할 수 없다고 규정을 정하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직위공모에서 탈락한 자리에는 E모 과장의 중·고교 친구와 선배가 배치됐다”며 “이번 계장급 인사는 E모 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지역 출신들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길 김제경찰서장은 “직위공모에서 단수 응모시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직위공모를 무시하고 인사를 할 수 있다”며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곳에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직위공모를 하는 목적은 투명한 인사를 하는 것이며, 단수응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직위공모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라며 “이번 인사에서 이동한 6명의 계장 가운데 3명이 유임을 원하며 직위공모에 응했지만, 3명 모두 유임되지 않은 것은 서장이 임의대로 인사 전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전북만평』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1일자 2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전북일보에서는 지난 7월 30일자 인터넷 신문 및 7월 31일자 1면과 2면에 김제경찰 인사 ‘복마전’이라는 큰 제목과 <말로만 계장급 직위공모, 실제로는 연고 인사에 파문>이라는 소제목, 2면에서는 이를 풍자한 전북 만평을 게재하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제경찰인사 ‘복마전’ 큰 제목과 <말로만 계장급 직위공모, 실제로는 연고 인사에 파문>이라는 소제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충실하지 못한 취재와 A씨의 인터뷰에 의존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었습니다.

A씨는 “서장이 공모자격 및 요건에도 없이 현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시 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으나, 2008년 7월 8일 경찰내부 전자게시판등에 직위공모 알림 내용에 현보직자 유임원할시 여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응모라고 명시하였고, A씨도 직위공모하여 경찰서장이 독단적으로 유임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직위공모에서 탈락한 자리에 E모 과장의 중, 고교 친구와 선배가 배치됐다”며 이번 계장급 인사는 E모 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지역 출신들 인사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번 인사는 직무중심의 인사로서 경위중 연령, 직무경험, 개인능력, 현부서 배치일, 해당계 직원여론, 주무과장의 의견, 청문감사관의 보임판단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각 7명으로 구성된 직위공모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 인사위원회, 지역경찰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시된 것으로 경찰서장이 임의대로 인사 전횡을 한 것이 아니었고, E모 과장과 같은 중학교 출신의 계장은 3명이 있으나, 같은 면(面) 출신의 계장은 단 1명도 없고 오히려 같은 중학교 출신의 계장급 3명은 지역경찰에 근무하고 있어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도 아니었으며, 단수 응모시에는 직위공모를 무시하고 서장이 임의대로 인사전횡을 한 것이라는 보도는 단수 응모 또는 응모자가 없을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인사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북경찰청의 경위급 계장(파출소장) 보직인사 지침에 따른 고유한 인사권 행사로 확인되었고, 특

히, A씨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E모 과장, 같은 학교 출신, 인사담당자에게 일체의 사실 확인 없이 비방의 목적으로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 또는 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을 뜻하는 “복마전”이라는 대제목을 달고

이에 더하여 만평까지 함으로써 김제경찰 및 김제경찰서장, E모 과장의 명예와 국가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보도를 하여 “공명정대, 정론직필”의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잘못된 보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이웃의 정신지체 장애인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료를 실제보다 비싸게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청주MBC-TV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청주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6월 27일자 21:00)

내 용 :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60대 정신지체 노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용암동에 사는 61살 김모 씨가 올 초 가입한 모 생명회사의 보험상품 계약서입니다.

20년 동안 매달 12만 5천 원씩을 내는 이 보험은 김씨가 90살이나 돼서야 만기 환급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는 김씨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니다.

김 모씨/보험피해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나는.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만난적도 없습니까?

-예, 안 만났어요.

게다가 김씨는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설계사에게 현금으로 매달 건네 줬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보험피해자

“28만 원씩 갖다주고, 26만 원씩 갖다주고 그랬지”

김씨에게 이 보험을 판매한 설계사는 바로 이웃에 사는 통장 박모 씨. 누가 봐도 정신지체자인 김씨에겐 전혀 맞지 않는 보험인데도, 이 통장은 김씨의 동의를 받아 한 일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립니다.

보험 설계사

“충분히 설명해줬다. 뭐가 문제냐”

정부 보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김씨는 20년간 낮모르는 사람의 보험료를 낼 뻔 했다면, 해약과 함께 이미 낸 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장애인 속여 보험 팔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6월 27일자 청주MBC 9시 뉴스데스크 “장애인 속여 보험 팔아”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을 속여 보험을 팔았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김씨는 K보험회사에 직접 찾아와 건강보험을 신청하였고 보험 수익자에 대하여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 하였는데 수익자는 김씨의 소재지 D교회의 P목사로서 김씨가 수익자인 P목사임을 김씨가 기억을 못했으며, 또한 보도에 의하면 실제 보험금 보다 더 많은 돈을 설계사에게 현금으로 매달 건내주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매달 수금을 한 것이 아니고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하여

본인이 미수금을 직접 수금하러 간 몇 차례뿐이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지난 6월 27일자 청주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중 「장애인 속여 보험 팔아」 제하의 보도와 관련, 박○○ 선생님께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였으나, 취재 과정에서 신청인의 입장을 충실히 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대학 관련 보도에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해당사건 관련 수사 결과 무혐의 처

분이 내려질 경우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주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수사결과를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9월 2일 21:00)

내 용 : 지난 6월27일 저희 청주MBC에서 보도한 ‘장애인 속인 보험’과 관련해 청주상당경찰서는 피고소인인 보험설계사 박 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이체 되는 보험료 외에 매달 26만 원씩 현금을 따로 박 씨에게 지급했다는 고소인 김 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횡령으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옥션 해킹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1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 후」 프로그램 (2008년 7월 26일 21:45)

내 용 : 지난 2월 초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물 사이트인 옥션이 해킹을 당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려 1081만 명의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옥션 피해자를 모으는 변호사들의 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임장을 보내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 주겠다는 변호사들의 배상 제안에 불과 1달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인터뷰

사람들이 1만 원 내서 내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내건 조건은 1만 원에서 3만원의 착수금에 성공보수로 10%에서 30%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가 너무 많은 돈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인터뷰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김○○ 변호사님이 1만 원 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만 명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1만 원씩만 벌써 8만 명이 모이게 되면 8억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3만 원에 30%라고 하면 너무나 엄청난 돈이 됩니다. 앉아서 150억 원 정도를 번다는 결론이 됩니다.

정말 그런 계산이 나올까.

3만 원에 성공보수 30%를 받겠다며 나선 박○○ 변호사, 모두 2만 2천명의 참가자를 모아 참가비만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시다.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전부 승소, 청구한 금액을 전부 받을 경우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는 132억 원입니다. 작년 11월 국민은행 소송처럼 20만 원만 받는다고 해도 13억 원이 넘습시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박 변호사는 결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보수에 비하여 턱없이 적고, 이 수만 명의 사람을 관리하고 인지대, 위임장의 도장 날인 비용, 질문에 답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소송참가비 1만 원에 성공보수 20% 조건을 걸었습니다. 10만 명 넘는 사람에게서 받은 소송참가비만 모두 10억 원. 김변호사의 성공보수는 무려 200억 원입니다.

인터뷰

예 그런 부분은 맞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 벌이로 뛰어 들 수도 있는데요.

옥선측의 해킹 피해 사실 발표 후 옥선소송에 뛰어든 변호사들은 줄잡아 20여 명, 피해자 모으기 경쟁이 치열해지자 착수금을 안 받고 하는 변호사도 생겨났습시다. 그러나 공짜로 소송을 해줘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어떻게 말하면 홍보효과도 있는 거예요. 계속 기획하고 이렇게 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이 알려지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광고비로 천 몇 백만 원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설 변호사 역시 전부 승소할 경우 5천여 명의 의뢰인으로부터 5억 원 정도의 성공보수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수십만 원을 받고 변호사는 수십, 수백억 원을 가져가는 소송.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

1인당 2만 원 정도 받아도 굉장한 이익이에요. 원고가 1백 명이든 1만 명이든 법률사무소의 일이 그렇게 종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만 명이면 명단에 1만 명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원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변호사 수익이 난다고 봐야죠. 설사 패소하더라도 변호사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구요.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 계산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자 뉴스후에서 “두 얼굴의 변호사들”이라는 제목으로 P 변호사의 옥선 상대로 한 소송의 “착수금 3만 원 × 2만 2천 명 = 6억 6천만 원, 성공보수 200만 원 × 2만 2천 명 × 30% = 132억 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실제로 착수금의 경우 인지대가 40~50% 정도 차지하여 위 착수금을 변호사가 전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금액 200만 원 전부를 인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성공보수 계산도 부풀려져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바로 잡습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집단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가 과다하는데 대한 반론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6일자 뉴스후에서 “두 얼굴의 변호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종이도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옥선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P 변호사

는 “수만 명을 대리하는 집단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다른 소송과 달리 수많은 입금자를 대조하여 신청인 명단을 작성하고, 위임장에 수만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2년여의 소송 과정 중에 소송 관련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수 많은 문의 전화를 처리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인력과 시간이 들므로 종이도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최변

호사의 발언은 집단소송을 진행해 본 적이 없는 무경험자의 말로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위원회에서 중국적 분쟁해결이 아닌 한 조정에 응할 수 없다. □

‘모르몬교’라고 불리는 신청인 종교가 일부다처제의 교리를 갖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이사장 최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289일간 돌아본 ‘또 다른 미국’』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6일자 17면)

내 용 : (전략)

미국 여행에 관한 책이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낭만적 여행기와는 분명 다르다. 우선 식사와 이동, 취침까지 미국 산 다지(Dodge) 미니밴 안에서 홀로 해결했다. 딱히 목적지도 없었다.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차를 몰았다. 저자는 세계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이나 대중문화의 총본산격인 할리우드 같은 ‘높은’ 미국 대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외딴 섬 오 크라코크나 앨라배마주의 한 흑인교회, 일부다처제의 모르몬 교도들이 모여 사는 유타주 힐데일 등 진짜 미국만을 찾아 다녔다. 책에 등장하는 인물도 정겹다. 노스다코타에선 로테오학과를 졸업한 젊은 카우보이 존 앤더슨을, 사우스다코타에선 수(Sioux)족 출신인 인디언 여인을 만났다. 기계 문명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야미시(Amish)나, 플로리다의 동성

애자, 웨스트 버지니아의 베테랑 광부, 흑인들 사이에서조차 따돌림을 받았던 진짜 흑인 걸라(Gullah) 등도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89일간 돌아본 ‘또 다른 미국’” 일부다처제 모르몬교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6일(토요일)자 사회면(17면)에 “289일간 돌아본 ‘또 다른 미국’”이라는 제하의 “길 위의 바람이 되다(김○○ 지음, 중앙북스)”라는 책 소개기사 중 “일부다처제의 모르몬 교도들이 모여 사는 유타주 힐데일”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모르몬교라는 별명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성도들은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신앙 생활로서 일부다처제를 일체 하지 아니하며, 유타주 힐데일의 일부다처주의자들은 은둔생활 하는 FLDS라는 명칭의 일부다처 종파일 뿐이며, 모르몬교도들과는 무관함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9일자 2면)

내 용 : ◆본지 7월 26일자 17면 ‘289일간 돌아본 또 다른 미국’이란 제목의 기사에는 “일부다처

제의 모르몬 교도들이 모여 사는 유타주 힐데일”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타주 힐데일의 일부다처주의자들은 FLDS라는 명칭의 일부 다처

종파 신자들로,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는 모르몬교(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집단폭행을 당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으며,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중앙일보 엔아이이연구소
(대표이사 백 성 기)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중앙NIE연구소, ‘집단폭행’ 피해자 해고』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3일자 4면)

내 용 : (주)중앙일보NIE연구소가 회식 자리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한 장아무개(37) 기사를 지난 21일 해고했다.

(주)중앙일보NIE연구소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 기자와 콘텐츠개발본부 ㄱ아무개 본부장을 징계 해고하고, ㄱ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에 무급 1개월, ㄱ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 기자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낸 고소장에 따르면, ㄱ본부장은 ㄱ씨가 장 기자를 폭행하고 소주병을 깨 목을 긁자 여직원들을 내보낸 뒤 발로 장 기자의 옆구리를 찼으며, ㄱ씨는 이 때 장 기자의 두 팔을 뒤로 결박한 것으로 돼 있다. 회사 측은 지난 21일 장 기자에게 문자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중앙일보의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 사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기자는 “회사 쪽의 결정을 징계 사유도 납득할 수 없고 그 과정도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여 지난 22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한편, 장 기자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며 지난 16일과 14일 각각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장 기자는 담당 경찰이 ㄱ자신의 진단기간은 축소하고 ㄱ본부장이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일이 지난 뒤 발급받은 진단서는 인정해 쌍방 과실로 사건을 몰아가려 했고 ㄱ주요 증인을 일몰 시간 이후에 불러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 심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6일 해당 경찰의 실수를 인정하고 담당 형사를 교체한 상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중앙NIE연구소 관련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미디어비평 전문매체인 미디어오늘은 2008년 7월 23일(수)자 4면 지면에 게재된 ‘중앙NIE연구소, ‘집단폭행’ 피해자 해고’란 기사에서 “장 기자는 담당 경찰이 ㄱ자신의 진단기간은 축소하고 ㄱ본부장이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일이 지난 뒤 발급받은 진단서는 인정해 쌍방과실로 사건을 몰아가려 했고 ㄱ주요 증인을 일몰 시간 이후에 불러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심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6일 해당 경찰의 실수를 인정하고 담당형사를 교체한 상태다”라고 보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건 담당 경찰을 교체한 것은 경찰이 위와 같은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장 기자가 경찰에 의한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경찰관을 검찰과 경찰 등에 고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맡은 마포경찰서 측은 “실제로 이와 같은 잘못을 인정했다면 담당형사의 교체로 그칠 일이 아니라 관련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것”이라며 “장 기자가 담당자를 고소, 고발해 담당 형사가 사건당사자의 신분이 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교체한 것 뿐”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오보를 낸 것에 중앙일보와 관계사인 중앙NIE연구소 등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23일자 “중앙NIE연구소, ‘집단폭행’ 피해자 해고” 기사에 대해 중앙일보 NIE연구소는 사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열었고, 그 결과 폭행사건에 연루된 다른 직원도 함께 해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8월 27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미디어오늘 2면에 게재하되, 미디어오늘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집단폭행을 당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으며,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중앙일보 엔아이이연구소
(대표이사 백 성 기)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3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2008서울조정233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중앙NIE연구소, ‘집단폭행’ 피해자 해고』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3일자 4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33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경찰에 고발한 뒤 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 : 『‘좌충우돌 학부모’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2일자 사회면)

내 용 :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광우병 비디오’를 빌미로 교장과 교사를 경찰에 고발한 뒤 합의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경찰과 교육청, 인천B초등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아무개(47) 씨는 지난달 16일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광우병 위험을 경고하는 영상물을 보여준 것에 항의하러 서아무개 교장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서 교장은 해당 교사를 경고한 문서를 보여줬고, 전씨가 이를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학교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씨는 이날 교장을 폭행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 이후 등교하지 않던 전씨의 딸(5학년)은 23일 한 인터넷 카페에 전씨 아이디로 “광우병 비디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이 글은 며칠 뒤 한 신문에 ‘소녀와 광우병 비디오’란 제목으로 크게 보도됐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 글이 아버지 전씨가 딸인 것으로 가장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담임교사인 최아무개(38) 씨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선생님한테 ‘바탕으로 따지다’, ‘어이가 없다’, ‘방방 뛰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고, 딸이 댓글을 단 시각과 동시에 전씨가 내게 ‘당신의 거짓과 뻔뻔함을 확인했다. 모든 것은 법으

로 합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학부모 전씨는 담임교사 최씨가 딸에게 “아버지가 나를 학습권 침해로 고소한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씨가 서교장한테 고소 취하를 대가로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씨는 2006년에도 딸을 체벌한 교사를 고소해 300여 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임교사 최씨는 “이 일 때문에 교장과 교사들이 경찰에 불려다니느라 어수선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한겨레신문은 2008년 7월 22일자 “좌충우돌 학부모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B” 초등학교 학부모가 광우병비디오 교육 교사와 교장을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인터넷 카페에 딸의 이름으로 광우병비디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간 내용이 뺏지를 나누어 준 사실에 항의하러 갔으며 폭행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선생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딸의 이름을 빌려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2008년 7월 22일 사회면 “좌충우돌 학부모 알고보니...” 기사 관련 = 본지는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가 광우병 비디오를 빌미로 학교를 찾아가 교장과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취하를 대가로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한 교사가 ‘미친 소 너나 먹어’ 배지를 나누어 준 사실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5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한겨레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

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12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의 농업용 병충해 무인방제시설이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굿모닝논산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굿모닝논산 : 『논산시 무지 농정에 멍드는 농심』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8일자 지역면)

내 용 : 충남 논산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점차 열악해지는 농업환경을 개선코자 병충해 방제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설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부재와 허술한 관리로 무허가 업체들의 부실시공으로 농가들의 피해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2007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0여 곳의 농가에 시설한 무인방제시설(안개자동분무시스템)은 지난 2005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한 결과 실패로 판명된 시

스템으로, 부품의 규격화와 A/S를 담보하지 못한 무허가 업체 ‘농○○’가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시설을 공급한 업체 농○○는 농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아닌 단순 판매업체로 A/S 시스템은 물론, 기술력마저 준비되지 못한 무자격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논산시의 묵인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략)

특히, 2005년 실패로 판명된 무인방제시설사업을 지난해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자격 업체가 시공토록 방치해 농가피해는 물론 농정당국이 올해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여론도 높아지는 추세는 물론 청정 딸기를 표방했던 논산시의 대표 농산물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청정딸기의 브랜드에 자칫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도 논산시가 이에 앞장섰다는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논산시 무지 농정에 멍드는 농심’ 제

하의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31일자 『무지 농정에 멎드는 농심』 제하의 기사에서 논산시가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무인방제시설이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으로 부품의 규격화와 A/S를 담보하지 못한 무허가 농〇〇가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무인방제시설(안개자동분무시스템) 시공사인 농〇〇(대표 김〇〇)는 엄격한 부품의 규격화와 고품격 A/S로 무인방제시설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농가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실제 방제작업이 2~3시간 단축되는 등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농〇〇는 농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라 판매 및 시공을 하는 업체로 특허를 가지고 A/S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A/S 시스템은 물론 기술력마저 준비되지 못한 무자격업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며 무인방제시설은 농기계가 아닌 농자재이므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논산시가 처음 도입·실시한 무인방제시설사업(안개자동분무시스템)은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것으로 타 시군으로 전파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병 극복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신청인 회사의 농업용 병충해 무인방제시설이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충청신문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7.

처리결과 : 각 취하

기사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대전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대전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충청신문 : 『‘무허가 시공’ 농가 피해 속출』 제하의

100,000,000원

□

신청인 회사의 농업용 병충해 무인방제시설이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III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해동일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해동일보 : 『무지 농정에 멍드는 농심』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1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대전조정13의 보도내용 참조>

<2008대전조정1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00,000,000원



신청인이 지회장으로 있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회사가 파산에 처하게 됐고 신청인도 노조 설립을 후회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길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1) 『“일터가 우선인데 노조 왜 만들었
는지...”』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4일
자 A1면)

내 용 :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민주노총에 가입
하지 않았을 텐데...”

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ASA 지회장
(43)은 지난 1일 충남 금산 ASA 공장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노조 결성 이전인 작년 이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ASA는 국내 최대 알루미늄(알루미늄합금 재질
휠) 수출업체였지만, 노사 갈등 끝에 지난달 18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270여 명
의 직원들은 직장을 잃은 뒤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거나 새 일터를 찾아 타지로 떠났다.

길 지회장은 “작년 10월 민주노총 지원으로 노
조를 설립한 뒤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며 “노조
활동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다”고 후회했다. 이
어 “다시 작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회사

측과 진지한 자세로 타협안을 도출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년 임금협상을 벌여온 ASA
는 작년 10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
부 소속 지회 형태로 노조를 결성한 뒤 상황이 급
변했다. ASA 지회는 적자 나는 회사에 노조전임
자를 두고 노조 사무실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협력
업체 고용보장 등 민주노총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잔업 거부→부분 파업→전
면 파업의 수순을 밟았다.

작년 11월 19일 전면 파업 돌입 직후 사측은 직
장폐쇄로 맞섰다. 2006년 6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는 노사 간 양보없는 대치 끝에 3개월 만에
부도를 냈다. 길 지회장은 “사측은 금속노조 차원
의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지회교섭을 마무
리해도 소용없다는 점을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회사 부도 이후 길 지회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법원에서 회
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사측에 무노동 무
임금으로 일할테니 연말까지 기계라도 돌려보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때는 기계
를 돌릴 운영자금조차 바닥이 난 상황이었다.

(2) 『“고용의 가치 빨리 깨달았다면 무리한 임
금요구 없었을 텐데”』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4
일자 A2면)

내 용 : 길○○ 지회장은 “대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모두 고용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빨리 깨
달았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일터가 우선인데 노조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4일 1면 <“일터가 우선인데 노조 왜 만들었는지…” ASA 노조 지회장의 후회> 제목의 기사에서 ASA 길OO 지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길 지회장은 “작년 10월 민주노총 지원으로 노조를 설립한 뒤~ 후회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길 지회장은 “민주노총에 가입해 후회한 적이 없고, 현재 ASA의 파산은 고의적인 것으로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면에는 “작년 9월 말까지 1억 원의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노사갈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며 2007년 10월 당시 회사가 흑자였는데 노사 교섭에서 결렬돼 회사가 부도가 나 청산됐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면에는 적자나는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해놓고 2면에서는 흑자났다고 하나의 사실을 두고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지난 2007년 10월 22일 ASA 문OO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 “2007년 10월까지 14억이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난 해 10월 흑자를 냈는데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2면에 “교섭은 결렬됐다~”는 내용은 ASA 지회가 설립되기 전 노사협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로 ASA지회가 한 일인 양 둔갑했습니다.

본지는 길 지회장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꼭필과 왜곡해 마치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ASA가 파산에 처하게 됐고, 노조 설립한 지회장도 후회를 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해 현재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길 지회장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ASA지회장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8월 4일자 민주노총 산하 ASA지회장 인터뷰 기사 관련, 길OO 지회장이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현 단계에서 고용이 중요하다고 했을 뿐, “일터가 우선인데 노조 왜 만들었는지…”, “고용의 가치 빨리 깨달았다면 무리한 임금 요구 없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을 텐데…”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길 지회장은 노사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사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을 뿐, 회사가 파산에 이른 것이 노조 결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9월 10일까지 한국경제 2면 중간 이상의 위치(광고를 제외한 보도면 세로 길이의 1/2이상에 보도문의 제목이 위치할 것)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는 고딕체로 하고 본문 활자크기보다 커야 하며(제목의 글자 수를 줄일 수는 없으며 제목과 본문은 단락이 구별되어야 하며 정정부분과 반론부분의 단락을 구별할 것),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을 이행하면서 일반인이 피신청인이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면에 ‘ASA 지회장’ 또는 ‘길OO’로 검색하는 경우 위 항의 기사를 포털 자체에서 또는 아웃링크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일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 저희 한국경제는 지난 8월 4일자 1면 및 2면 보도에서 길OO ASA 지회장님께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에서는 국내 최대 알로이휠 수출업체였던 ASA가 파산한 경위와 과정을 취재하여 勞와 社가 모두 상생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자는 공익적 취지에서 본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만 인터뷰 내용 중 직접 하지 않으신 말

을 인용 보도하여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길 지회장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경제전문지인 저희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이 국가경제의 초석임을 잘 인식하여 勞, 社, 그리고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목소리가 잘 전달되기 위한 공론의 場으로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ASA지회장 인터뷰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8일자 2면)
내 용 : 본지 8월 4일자 민노총 산하 ASA지회장 인터뷰 기사 관련, 길○○ 지회장이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현 단계에서 고용이 중요하다고 했을 뿐 “일터가 우선인데 노조 왜 만들었는지...” “고용의 가치 빨리 깨달았다면 무리한 임금 요구 없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길 지회장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사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을 뿐 회사가 파산에 이른 것이 노조 결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

논산지역 농업용 병충해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한 신청인이 부품규격화와 AS가 보장되지 않는 무허가 업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0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전국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국매일 : 『주요시책 탁상행정예 혈세 줄줄』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9일자 16면)

내 용 : 농민들의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농정 시책들이 관계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취지가 사장된채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 논산시(시장 임성규)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점차 열악해지는 농업환경을 개선코자 병충해 방제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설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재와 허술한 관리로 무허가 업체들의 부실시공이

만연돼 농가들의 피해사태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딸기 및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100여 곳의 농가에 시설한 무인방제시설(안개 자동분무시스템)은 지난 2005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한 결과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으로 이마저도 부품의 규격화와 A/S를 담보하지 못한 무허가 업체가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 시설을 공급한 업체는 농기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아닌 단순판매업체로 A/S 시스템은 물론 기술력마저 준비되지 못한 무자격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감독당국의 묵인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광석면 율리의 딸기농가와 부적면 신교리의 딸기농가 등에 설치된 대부분의 무인방제시설들이 시방서를 무시한 조잡한 구조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 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공급자의 자격 기준은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이하 농기계조합)에 등록된 인가업체 중 시와 사후봉사 이행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며 납품단가 또

한 농기계조합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요시책 탁상행정에 혈세 줄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9일자 “주요시책 탁상행정에 혈세 줄줄” 제하의 기사에서 논산시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무인방제시설이 실패로 판명된 시스템으로 부품의 규격화와 A/S를 담보하지 못한 무허가 N업체가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져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N업체의 대표인 K모 씨가 전 충남도위원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취재를 거부하고 농기구와도 무관한 동명이인일 뿐이라는 어이없는 해명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무인방제시설(안개자동분무시스템) 시공사인 농○○(대표 김○○)는 엄격한 부품의 규격화와 고품격 A/S로 무인방제시설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농가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실제 방제작업이 2~3시간 단축되는 등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농○○는 농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라 판매 및 시공을 하는 업체로 특허를 가지고 A/S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A/S 시스템은 물론 기술력마저 준비되지 못한 무자격업체라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며 무인방제시설은 농기계가 아닌 농자재이므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 대표 K모 씨는 충남도위원을 지낸 사실이 없으며 취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2007년부터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논산시가 처음 도입·실시한 무인방제시설사업(안개자동분무시스템)은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것으로 타 시군으로 전파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병 극복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이대 파주캠퍼스 설립 예정부지의 소유자와 부지면적을 잘못 보도 하였으며, 부지강제매입반대 대책위원 중 일부가 부재지주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화여대예정부지강제매입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심 ○ ○)

피신청인 : 파주타임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파주타임스 : 『“참담한 욕심”』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5일자 3면)

내 용 : (전략)

대학 편입지역 일부 땅소유자들의 반대

월릉면 영태리 일원 850,181㎡에 이화여대 교육·연구 복합단지로 건립한다는 발표로 이제야 파주시도 제대로 구색이 갖춰진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에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러나 어디 그냥 그저 지나가는 일이 있었던가. 신도시 때도, LG디스플레이 때도, 당동·선유 산업단지 때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데모와 시위로 점철되었던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혐오시설도 아닌 우리 자녀들을 위한 대학 시설이 들어온다는데도 반대를 하는 데는 모든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파주시민들의 기쁨과는 별개로 대학편입 공여지 주변 일부 당 소유주들은 신도시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대학 유치는 겨우 미니 상업도시 밖에 될 수 없으니 지역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금기야 230여 명의 예정부지 땅 소유주 중 70여 명이 소송을 제기 (파주인 49명, 외지인 24명) 주민의견 수렴이 누락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부지면적이 과다하다는 등 대학이 땅 투기를 하고 있으니 하려면 사유지를 제외하고 공유지만 사용 하라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는 신촌캠퍼스의 1.4배 정도로 이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교육환경을 위해 교육·복지·연구·국제교류센터로 활용하고 도심형 대학의 불편 및 한계점을 해소하여 친환경 전원형 캠퍼스로 조성하고자 한 취지이다.

또 교육단지로 결정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 수 없기 때문에 땅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대 대책위는 모르고 있다.

2006년 10월 양해각서 체결이후 개발행위 제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 여러번의 선행 행정절차 이행시 8차례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단계를 거쳤다는 것이 밝혀지므로써 대책위의 일방적인 주장임이 드러났다.

결국 반대 핵심요인은 땅 소유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땅값을 더 받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유지를 제외함으로써 대학유치에 따른 반사이

익을 톡톡히 보겠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있는 이유인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대예정부지 강제매입반대 대책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07월 15 ~ 07월 21일 동안의 소식을 담은 제156호의 지면 3면 행정란 “테스크칼럼”에 【참담한 욕심】이란 제목으로, · 이대 예정부지땅 소유자 230명 중 70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 이대 파주캠퍼스는 신촌캠퍼스의 1.4배 정도다. · 대책위 중에서 대부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땅만 월릉이지 사는 곳은 다른 지역인 부재지주들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사 결과 · 땅 소유자의 총 인원은 207명이며 · 이대 파주캠퍼스의 부지면적은 850,181㎡ 이고, 신촌캠퍼스 부지는 588,069㎡ 인데, 신촌캠퍼스 면적에는 부속 초·중·고와 대학병원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동일한 잣대인 순수 대학부지 만을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며, · 대책위를 이끌어가는 임원진과 위원 전원은 모두 파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신청인이 파주시 홈페이지에 파주시 현안문제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단 한차례 게재하였으나, 마치 여러차례 시리즈로 게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파주타임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파주타임스 : 『“참담한 욕심”』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5일자 3면)

내 용 : 〈2008경기조정31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대예정부지 강제매입반대 대책위 황모씨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07월 15일 ~ 07월 21일 동안의 소식을 담은 제 156호의 지면 3면 행정관 “데스크칼럼”에 【참담한 욕심】이란 제목으로, 파주시의 현안문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대책위의 황모 씨가 파주시 홈페이지 자유토크란에 해당내용을 여러 차례 시리즈로 도배하다시피 점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지의 명예를 실추시키

는 실수를 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사 결과, 파주시의 현안문제 여론조사와 파주타임스와 관련하여 황모씨가 자유토크에 올린 글은 2008년 07월 07일 단 한차례만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비타민 통증주사’ 부작용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춘천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춘천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8월 5일 21:30)

내 용 : 춘천의 한 병원에서 류머티즘 치료를 받던 70대가 비타민 통증 주사치료를 받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주사 5백 대를 한 번에 맞는 시술을 받다 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병원측은 문제가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 춘천의 한 요양병원에 70살 이순란 할머니가 누워 있습니다. 한달 전만해도 관절염 이외에는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가족들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혼수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새로운 통증 치료법이라는 비타민 통증 주사 치료를 받다 갑자기 이씨가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요양병원

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막내딸 : ‘천연물이라고 해서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맞아요. 한 500-600대씩 맞는 것 같아요 주사를 한 번 맞는데.. 4번째 맞고 나서 심장이 멎은거죠’

▷기자 : 하지만 해당 병원측은 미국 등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으로 당시 시술상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고, 주사를 맞을 때 희박한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쇼크 증세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병원 원장 : ‘약물쇼크죠.. 예 약물쇼크가 오면 먼저 심장마비가 오고 호흡마비가 오니까 거기다 해독제를 투여하고, 그다음 거기다 하면 대체로 회복이 빠르게 옵니다.’

▷기자 : 경찰은 피해자측의 고소에 따라 병원측에 의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현행법상 불법인 ‘아파트 단지내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확정되지 않은 도로계획을 홍보하는 등 분양률 상승을 위해 허위 과장광고 등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드림리츠(주) (대표이사 장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노컷뉴스 : 『일산 하이파크시티 계약해제 소송 ‘초읽기’』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3일자)
내 용 : 경기도 일산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계약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집단 계약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계약자들은 현실성이 없는 덕이 IC 건설, 영어마을 조성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했다며 이번달 8일쯤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비슷한 상황의 다른 단지에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산 덕이지구에서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이 분양한 하이파크시티는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사고 있다.
4,872가구에 달하는 하이파크시티는 지난 1월 3.3㎡당 1,500만 원을 넘는 가격에 분양돼 일산지역 최고가를 기록하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업체에서는 제2자유로와 연결되는 ‘덕이IC’가 단지와 인접해 건설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분양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델하우스 지도 등에 덕이IC를 표기해 놓고 이를 적극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자들은 “지금도 업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덕이IC가 ‘언젠가는 생길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고양시청 관계자는 “덕이IC 건설은 계획에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분양업체들은 “택지지구 지도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지도를 인용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난 2006년에 마련된 교통대책에는 덕이IC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분양업체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신동아건설이 제시한 ‘영어마을’도 현행법에 위반돼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측은 영어마을을 2블록에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고 당첨자들은 이를 믿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원은 상가에만 설치하고 10명 이상에게 총 30일 이상 교습하게 되면 학원으로 규정해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법 위반인 것을 뒤늦게 알았다. 상가 쪽에 공간을 마련해 영어교습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동문건설은 동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재설계에 들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모두 3가지인 설계 변경안 중 주민 투표를 통해 하나가 선정됐다”며 “여기에도 주민불만이 있으면 보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일산 하이파크시티 계약해제 소송 ‘초읽기’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8년 8월 3일 일산 하이파크시티

계약자들이 허위 과장광고를 이유로 집단 계약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관하여 시행사 측의 반론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산 덕이지구에서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 분양 중인 시행사는 「계약자들이 허위, 과장광고라고 주장하는 덕이 IC 건설, 영어마을 조성, ‘분양가 쪼개기’ 사안에 관하여, ① 덕이 IC 건설에 대하여 분양업체들이 아파트 주변에 추후 건설예정인 교통망을 알려주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표기해 놓고 적극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모델하우스에 지도를 비치해 놓기는 하였으나 비치된 지도에는 계획된 도로망이 변경, 취소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제2자유로로 연결되는 나들목이 아파트 단지 옆으로 난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② 영어마을을 아파트 단지 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현행 주택법 등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적법하게 아파트 단지내에 영어마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③ 아울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단지 건설사는 아파트 담보 대출 한도규제와 관련하여 분양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분양자도 이로 인한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일산 하이파크시티 분양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8월 3일 일산 하이파크시티 보도에 관하여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단지를 분양 중인 시행사에서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신동아 시행사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덕이

IC 건설을 표기해 놓고 적극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신동아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지도에는 계획된 도로망이 변경, 취소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허위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영어마을을 아파트 단지 내 ‘교육연구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이 아니므로 법에 부합하는 단지 내 시설에 영어마을을 설치할 예정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자의 선택권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노컷뉴스’ 초기화면 하단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한다.
- 피신청인은 노컷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기사(“일산 하이파크시티 계약 해제 소송 ‘조읽기’”)의 본문 하단에 위 항의 보도문(제목과 내용 포함)을 삽입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을 2008년 8월 26일까지 이행한다.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각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 및 담당 기자 등 소속 임직원에게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일산 하이파크시티 분양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7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카지노 여성 앵벌이의 성매매 관련 보도에서 몰래카메라를 통해 신청인의 얼굴과 음성이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tN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t v N : 「리얼스토리 묘」 프로그램 (2008년 1월 27일 23:00)

내 용 : # 프롤로그

- 바카라 자료그림 6

S- 도박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na/ 도박에 돈과 가족, 그리고 몸까지 베풀하는 사람들이 있다!

- 노래방 여자

sov/ 카지노에서 오빠, 앵벌이하는 아줌마들이 5만 원을 가지고 섹스를 한대요

얼마면 되겠니

5만 원만 줘

- 노래 부르는 3 na/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는 앵벌이들!

- 다방 여자 & 찜질방

sov/ 카지노에서 한 10억 잃어서 여기 붙들려서 일하잖아요 내가 놀러올 때는 기사 데리고 B차 끌고 왔으니까 한 20억 잃었어

- 통장내역 2 + 강원랜드 트래킹 2

S- 헤어날 수 없는 대박의 꿈, 도박

na/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없다는 그곳!

- 앵벌이 여자

sov/ 도박을 하니까 사람취급을 안해서 집에 못가다 보니까 자꾸 못가게 되는 거예요.

- 거리 & 기사 7 + 영화 자료 4

S- 도박 때문에 성매매까지 하는 여성들

na/ 게다가 도박 때문에 성매매까지 하는 여성들까지 생겨났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카지노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성 앵벌이들의 다양한 인생스토리 리얼스토리 묘가 취재했다. (중략)

다방 들어가는 6

na/ 사복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또다시 카지노에 올라간다는 것! 소위 앵벌이라는 사람들이다

- 다방 내부 10

외지인이 많이 출입한다는 다방에서 여성 앵벌이에 대한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카지노 주변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라고!

- 여자 썬크

sov/ 나도 처음에 그런 오해 진짜 많이 받았어요 카지노 갔다가 다 잃고 나와서 여기서 일하냐고 해서 아니라고 해도 성질을 내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런 것 같다'면서 노름 엄청 좋아할 것 같다고.

보도방 뛰는 아가씨 중에는 몇 명 있어요 개네들은 지금도 보도뛰다가 카지노 올라갈 생각 있으면 가서 하고

카지노에서 돈 잃고.. 여기 많아요 식당에서 배달하고 주방에서 일 잠깐 보다가 다시 카지노 가고 돈만 조금 있으면 도로 다 올라가고 돈 떨어지면 내려오고. 그리고 아저씨들한테 '나 대구 가야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돈 다 잃어서' 해서 '얼마면 가냐'고 하니까 '3만 원이면 된다'고 해서 쫓는데 몇시간 뒤에 보면 카지노에 또 있대요 그것도 다 잃은 거야 그나마 그것도 가지고 가서... 안간대요

택시타러 나온 2 na/ 카지노 주변의 소식통으로 통하는 택시기사에게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 택시 타는 4

- 기사 썬크

sov/ 카지노 생기고 그런 식으로 성매매하는 여자들이 40명 정도 있었대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 아닌데.. 거의 다 돈잃고 게임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몸 팔아서 게임하고 그런 여자들 많아요

거리 4

na/ 사복에 있는 카지노 앵벌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여성 앵벌이!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로 노래방!

- 노래방 들어가는 4

- 노래하는 8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간 제작진! 노래방 도우미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 도우미 여자 썬크

sov/ 여자랑 잠자리를 하면 돈을 따거나 여자 털을 뽑으면 돈을 따거나 이런게 머릿속에 있나봐요 카지노에서 돈 잃은 아줌마가 5만 원을 받고 섹

스를 한대요

- 스틸

S- 도박을 위해 성매매를 한다?! 4

na/ 도박을 위해 성매매를 한다?!

모텔 로비 10

na/ 노래방 도우미의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제작진은 모텔에 가봤다. 과연 여성 앵벌이는 존재하는 것일까?

- 엘리베이터 타는 14

뜻하지 않게 성매매 앵벌이로 의심되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다정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중년의 남녀! 카지노에서 돈을 따고는 기분 좋게 모텔에 왔다고 하는데!

- 남녀 썸크

sov/ 언제 오셨어요?

4시쯤

이 아저씨는 여기 사람이예요 애인도 아닌데 날 따라오는 거야 지금 팁이라도 얻을까 해서

왜 따라와

- 스틸 4

S- 성매매 앵벌이로 의심되는 그녀

na/ 그녀는 성매매를 하는 앵벌이 여성일까?

모텔 복도 4

na/ 좀더 가깝게 접근해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모텔로 들어간 제작진 여성 앵벌이로 의심되는 다방아가씨는 제작진에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 다방 여자 들어오고 9

- 여자 썸크

sov/ 저도 3일밖에 안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서울이요

돈을 다 탕진하셨나봐요

카지노에서 한 10억 잃어서 여기서 이렇게 일하잖아요

- 스틸 3

S- 10억?

na/ 그녀가 도박으로 잃은 돈은 무려 10억!

- 여자 썸크

sov/ 첫날 계속 울고 다녀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요

엇그제까지 잘났다고 외제차 끌고 다니다가 차

도 다 주고 이러니까 어제도 내가 몇천을 잡혀서 차 B사 잡히고, 시계 F사 잡히고 며칠씩 그러고 머리도 안감고 난리가 났어요 카드깡 다 하죠 카드 한도가 찰 때까지 제가 ○○에서 골프샷했고, 임시학원을 ○○에 벌렸고 J사 계열이거든요 또 수입명품하고 귀금속 장사를 벌려놓고 막 벌려는 있는데 한쪽에서 터지니까...

그래도 은행에 블랙은 안 걸렸어요 은행 신용거래는 좋아요

그런데 사채를... 사채업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2천 만 원을 열흘에 2백 만 원이에요 이자가.

급하니까 처음에 이쪽에서 열흘 정도면 되겠다고 하니까 나도 '주세요 열흘이면 돼요' 했는데 그게 두달, 세달이 되니까

- 여자 얘기하는 2

na/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sov/ 저는 지금 마흔 두 살이거든요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요

- 스틸 4

na/ 한 아이의 엄마가 모든 걸 잃고 선택한 길이 다방 종업원!

식당 종업원 구한다는 8

- 식당 들어가는 9

/na 유난히 숙식제공 구인광고가 많은 사복! 오갈 곳 없는 앵벌이들에게 숙식제공은 이곳을 떠날 수 없는 미끼와 같은 것! 식당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 역시 평범한 주부에서 앵벌이로 전락한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8월 29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신청인에게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

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

신청인 언론사가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정부가 요청한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행사 중계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정정)
조정결정 (반론)

보도내용

동아일보 : (1) 『14일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일자 1면)

내 용 : 정부가 14일 밤 열리는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제 행사의 생중계를 KBS, MBC에 잇달아 제안했으나 두 방송사가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민영방송인 SBS가 이를 생중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14일 오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20분 동안 지휘자 정명훈 씨 지휘로 열리는 서울광장 공연을 비롯해 독도함 선상 연주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전야제를 연결해 동시 생중계해야 하는 만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KBS에 생중계를 제안했으나 KBS는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MBC에도 같은 제안을 했으나 유사한 이유로 고사해 지역 민영방송인 SBS가 생중계를 맡게 됐다”며 “시청률도 중요하겠지만 건국 60주년 행사인 만큼 공영방송이 중계를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15일 열리는 건국 60주년 기념식 본행사는

KBS가 ‘키 스테이션’을 맡고 MBC, SBS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올림픽 방송도 있는 데다 ‘프라임 타임’이라 편성을 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14일 전야제 행사는 15일 0시 25분 전후에 녹화 중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략)

(2) 『KBS와 MBC의 ‘公營’ 거부하고 ‘言論’ 포기하기』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4일자 31면)

내 용 : 14일 밤 열리는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제를 수도권 민영방송인 SBS가 생중계하기로 했다. 생중계를 맡아달라는 정부의 제안을 양대 공영(公營)방송인 KBS와 MBC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KBS와 MBC는 비슷한 시간에 벌어지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중계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KBS는 KBS1과 KBS2 등 두 개의 지상파 TV 채널을 갖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중계할 수 있는데도 그렇다.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KBS나 MBC가 중계를 맡는 것이 중계의 질(質)이나 시청 편의(便宜) 면에서 효율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KBS의 이번 태도는 굳이 두 개의 채널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KBS뿐 아니라 MBC의 행태도 ‘다(多)공영, 일(一)민영’인 현행 지상파 방송 체제의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한다.

MBC는 PD수첩의 광우병 괴담 선동으로도 모자랐는지 ‘생방송 오늘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의경 부모들의 인터뷰를 왜곡 편집해 내보냈다. 전·의경의 인권을 조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겠다며 인터뷰를 한 뒤 시위 진압과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의경을 미화하는 내용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전·의경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위진압 거부를 선동하자는 것인가. 기본적인 취재윤리도 지키지 않은 행태다. 입맛에 맞는 내용만 짜깁기해 국민을 오도한 PD수첩의 행태가 MBC 프로그램 전반에 일상화돼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작진과 경영진 모두 반성해야 한다.

MBC는 PD수첩이 사실과 다른 왜곡 및 의도적인 편집으로 국민을 속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변명에 불과한 해명 방송이나 내보내면서 국민에게 사죄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KBS 정연주 사장은 편파방송과 적자경영으로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도 내년 11월 까지의 임기를 마저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다. 건국 60주년 전야제의 생중계 거부는 한국 공영방송의 일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국민이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목소리를 내야겠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2008년 8월 2일 『14일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일자 A01면에 『14일 건국 60주년 전야제 전국 생중계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가 대신 맡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KBS가 “올림픽 방송도 있는 데다 ‘프라임 타임’이라 편성을 조정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정부의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올림픽 방송과 프라임 타임대의 편성조정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8월 15일 방송 예정으로 건국 60주년 전야제와 유사한 성격의 ‘대한민국 60년 경축음악회’를 3개월 이상 일관되게 준비해 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8월 14일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 연속 동일한 시간대에 유사한 성격의 음악회를 생방송하게 되는 편성의 중복으로 공영방송의 역할 중 하나인 ‘다양한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제 목 : 2008년 8월 4일자 사설 『KBS와 MBC의 ‘공영’ 거부하고 ‘언론’ 포기하기』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4일자 A31면에 『KBS와 MBC의 ‘공영’ 거부하고 ‘언론’ 포기하기』라는 제목으로 KBS가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중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 요청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를 중계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미 8월 15일 방송 예정으로 건국 60주년 전야제와 유사한 성격의 ‘대한민국 60년 경축음악회’를 3개월 이상 일관되게 준비해 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8월 14일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들 연속 동일한 시간대에 유사한 성격의 음악회를 생방송하게 되는 편성의 중복으로 공영방송의 역할 중 하나인 ‘다양한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는 믿을만한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39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병 순

조정대리인 박 ○ ○, 김 ○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번지

대표이사 김 재 호

조정대리인 박 ○ ○, 박 ○ ○

주 문 : 1. 신청인의 반론청구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2008년 9월 26일까지(토요일, 공

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의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12.

가 대신 말아’ 제하의 기사와 8월 4일자 31면 “KBS와 MBC의 ‘公營’ 거부하고 ‘言論’ 포기하기” 제하의 사설에서 정부의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 요청을 KBS가 올림픽 경기 중계와 프라임 타임대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전야제와 유사한 내용의 ‘대한민국 60년 특별 기획 경축음악회’가 8월 15일 방송 예정이었기에 편성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전야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별 지>

8월 2일자 1면 ‘공영 KBS-MBC 난색, 민영 SBS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9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 언론사가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정부가 요청한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행사 중계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공영방송이길 거부하는 KBS와 MBC』 제하의 사설 (2008년 8월 4일자 31면)

내 용 : 오는 14일 오후 펼쳐질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제 행사를 SBS가 전국에 생중계하게 된 것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편성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시청률과 광고주들과의 계약이행을 우선시한 결정이겠지만 이는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로 운영되

는 국가 기간방송 등 공영방송이 취해야 할 자라는 아니라고 본다. 말로는 공영방송을 강조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공영방송이기를 거부하는 꼴이다.

건국 60주년 행사의 전야제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씨의 지휘로 열릴 서울광장 공연을 비롯해 독도함 선상 연주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 기간방송인 KBS 또는 공영방송인 MBC 등 둘 중 하나가 맡아야 할 규모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은 의미있는 국가행사를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화합을 이끄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능 중 하나이다.

KBS의 경우 경영성과 평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중이다. KBS 일부 직원들은 정연주 사장 재임 5년 동안 누적적자 1500억 원이라는 부실 경영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셈이다. MBC 역시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로 온 나라

를 혼란에 빠트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 부터라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의 본령에 충실 해야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영방송이길 거부하는 KBS와 MBC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4일자 31면에 '공영 방송이길 거부하는 KBS와 MBC' 라는 제목으로 KBS가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편성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의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 계 요청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올림픽 방송 등 을 이유로 편성조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 아 니라, 이미 8월 15일 방송 예정으로 건국 60주년 전야제와 유사한 성격의 '대한민국 60년 경축음악 회'를 3개월 이상 일관되게 준비해 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8월 14일 생중계 요청을 받 아 들이게 되면 이들 연속 동일한 시간대에 유사 한 성격의 음악회를 생방송하게 되는 편성의 중복 으로 공영방송의 역할 중 하나인 '다양한 방송 서 비스의 제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내 용 : 본지 8월 4일자 31면 '공영방송이길 거 부하는 KBS와 MBC' 제하 사실과 관련, KBS는 올림픽 방송 때문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60년 경축음악회'를 준비해오고 있어 편성 중복을 피하 기 위해 '건국 60주년 기념 전야제' 생중계를 하 지 못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서울신문 A2면에 2008년 9월 12일까 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서울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12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 하는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co.kr>)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가 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6 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언론사가 올림픽 방송 등을 이유로 정부가 요청한 건국 60주년 기념일 전야행사 중계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정 연 주)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세계일보 : 『공영방송 본분 상실한 KBS와 MBC』 제하의 사실 (2008년 8월 4일자 31면)

내 용 : KBS와 MBC 방송이 오는 14일의 '제63 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 경축식' 전야제 행사 생중계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정부는 KBS에 전야제 행사의 생중계를 요청했으나 올 립픽 중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MBC에도 요청했으나 역시 비슷한 이유로 생중계를 거절했 다는 것이다. 결국, 민영방송인 데다 수도권을 가

시청권으로 하는 SBS가 중계기로 했다.

공영방송인 KBS, MBC 두 방송이 무슨 이유에 서건 국가 중요행사의 생중계를 거부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KBS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방송이다. 이름이 시청료이지 세금이나 다름없다. 그런 연유에서 KBS가 태풍 등 재난 방송을 비롯해 국가의 기념행사 등을 일차적으로 중계할 의무를 지닌다. 국민 또한 알권리 차원에서 중계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공적 기능의 수행을 위해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광고까지 배제하는 것이 아닌가. 올림픽 중계는 광고료를 받는 제2TV로 충분하다. 시청률이 높았던 주말연속극 대왕세종 등을 제2TV로 옮기면서 방송의 공공성 내지는 공익성 제고를 강조한 것으로 기억한다. 직전 정권에서는 정부행사는 물론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선전물까지 중계했던 KBS가 새 정부 들어 중요한 정부행사까지 외면한다면 방송의 본분을 저버리고 반정부 투쟁이라도 벌이겠다는 속셈인지 궁금하다.

MBC 역시 법적으로 공영방송인 만큼 그 책임의 무거움이 KBS와 오십보백보다. 특히 MBC는 PD 수첩으로 법원으로부터 정정·반론 보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의경 부모들의 인터뷰를 탈영의경 기자회견에 짜깁기한 왜곡 방송 등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 방송 자율화에 역행하는 행태다.

두 방송사는 전파는 국민의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을 부르짖지만 행동은 전파가 방송사 경영진이나 종사자의 전유물인 양 남용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말하기에는 자격도, 엄치도 없는 모습이다. 양 방송은 하루빨리 정치적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언론 본연의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공영방송 본분 상실한 KBS와 MBC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4일자 31면에 ‘공영방송 본분 상실한 KBS와 MBC’라는 제목으로 KBS가 ‘올림픽 중계 등을 이유’로 정부의 건국 60주년 전야제 생중계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올림픽 중계 등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미 8월 15일 방송 예정으로 건국 60주년 전야제와 유사한 성격의 ‘대한민국 60년 경축음악회’를 3개월 이상 일관되게 준비해 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8월 14일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를 연속 동일한 시간대에 유사한 성격의 음악회를 생방송하게 되는 편성의 중복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중 하나인 ‘다양한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립니다
- 내 용 : 본지는 8월 4일자 31면 ‘공영방송 본분 상실한 KBS와 MBC’ 제하 사실에서 정부가 KBS에 ‘건국 60주년 전야제’ 행사 생중계를 요청했으나 올림픽 중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논평하였습니다. 그러나 KBS는 ‘대한민국 60년 경축 음악회’를 준비해 오고 있어 편성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방송 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세계일보 A2면에 2008년 9월 5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세계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5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세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gye.com>)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가 국보 건축물인 ‘세병관’에서 동창회 행사를 개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2

청 구 명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각 취하

재는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초, 승례문이 화마에 쓰러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부족은 여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보도내용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8년 7월 16일)

내 용 : ▷앵커 :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가 국보 건축물 ‘세병관’에서 총동창회 행사를 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정작 사용 승인을 해 준 통영시는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604년에 지어진 세병관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지휘했던 수군통제영의 중심 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2년 국보 305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통영초등학교 동창회가 동창회 행사를 세병관에서 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2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마당엔 의자와 기둥엔 현수막까지 설치해 놓고 동창회장 이취임식 등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허○○ 통영초등학교 개교 100주년기념사업회) : “세병관은 통영초등학교 동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국보인 이곳에서 초등학교 동창회 행사같은 사적인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병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국보에서 열린 동창회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인터뷰 (조○○ 관람객) : “국보로 소중한 문화재인데 동창회 행사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안되죠.”

하지만 통영시는 국보에서 동창회 행사를 하는 것이 문화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 통영시 총무사회국장) : “문화

세병관은 100년 전부터 통영초등학교 교사로 사용한 곳으로 통영초등학교출신 동문들의 추억과 애증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이번 동창회 행사는 동창회장 이취임이 주된 행사가 아니고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하는 추억의 소풍 출발지로서 세병관을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병관 뒤편에 있었던 통영초등학교 교사가 3년전 통제영지복원사업으로 철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BS 뉴스에서 지적인 사적인 행사로 볼 수 없는 세병관과 통영초등학교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또 뉴스의 전체적인 의미가 마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통영초등학교 동창회가 통영시의 무분별한 행정결정으로 세병관에 들어가서 심각히 훼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기자가 현장취재를 직접 하지 않은 잘못과 통영에 주재한지 불과 열흘 남짓한 시일로 인해 지역의 정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극히 단순하고 감정적인 생각으로 KBS 상급부서에 보고하여 상급부서마저도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통영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마치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집단으로 비춰지게끔 하여 경남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유학생에게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청인 업체가 고의적으로 요금 명세서를 늦게 발송하고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3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스마텔 (대표이사 고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공포의 스마텔 국제전화 “헉
~ 한달 500만 원!”』 제하의 기
사 (2008년 7월 14일자)

내 용 : 별정통신업체 ‘스마텔’이 소비
자가 사용한 요금의 명세서를 “고의적으로 늦게
발송” #1 하거나 “사용요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핑계로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2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이 회
사에서 휴대폰을 임대 받아 해외에서 사용한 유학
생의 부모들이 뒤늦게 청구된 거액의 전화요금에
놀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사례1 = 소비자 이모 씨는 지난 6월 20일에 일
본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국내에서 요금을 결제하
는 휴대폰을 선물했다. 문제는 아들이 쓴 4월 핸드
폰 요금이 200여만 원을 넘는다는 것. 이씨는 회사
를 찾아가 청구내역을 확인해 보았다. 요금이 적은
문자나 전화는 사용시간이 자세히 명시돼 있었지
만 웹, 인터넷 등과 같은 다른 부가적인 사용요금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국내 있을 땐 5만 원도 넘
지 않던 아들의 핸드폰 요금이 어떻게 보통 성인의
한달 급여만큼 청구되어 나오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이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아직 청구
되지 않은 5월, 6월 요금도 걱정된다며 황망해 했
다. 이씨는 현재 소비자보호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도 찾아가 민원을 접수한 상태고 또 다른 피해자
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지에 제보했다.

사례2 = 소비자 안모 씨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간 자녀를
위해 ‘스마텔’에 가입해 휴대폰을 임대했다. 그러
나 아이가 귀국한지 2개월이 지나서야 캐나다에서
사용한 요금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되어 왔다. 요금
을 확인하는 순간 안씨는 기절초풍했다. 청구금액
이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것이었다. 안씨는 업체
측에 전화해 “8개월이나 늦게 고지서를 보내면 어
떡하냐”며, “요금 고지서가 제때 나왔으면 어느 정
도 사용했는지 자녀에게 미리 알려 요금을 아껴
쓸 수 있게 하지 않았냐. 고지서를 발급해 요금을
알게 되면 전화를 덜 쓰게 될까봐 의도적으로 고
지서를 늦게 보낸 거 아니냐”며 분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공포의 스마텔 국제전화 “헉~한달에
500만 원!”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7월 14일자 종합뉴스에 “공
포의 스마텔 국제전화 ‘헉~한달 500만 원!’”이라
는 제목으로 국제전화 스마텔에서 고의적으로 요
금 명세서를 늦게 발송했고, 요금과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했
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의적’으로 요금 명세
서를 늦게 발송하지 않았으며, 고객에게 요금에 대
한 사용내역서 등의 데이터를 정확히 공지한 것으
로 밝혀졌습니다. 요금이 많이 부과된 사례는
web(인터넷)이나 3국 통화 등의 일부 몇몇 고객들
에 의해 잘못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전화 스마텔은 유학생 전문으로 10여
년 간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0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유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늘면서 2003년 3월부터 미국을 시
작으로 캐나다, 일본, 중국, 필리핀, 영국, 프랑스
등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의 유학생 휴대

폰 상품을 오픈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휴대폰 가입자만 1만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과다 요금이 청구되거나 발송이 늦어진 사례는 없었으나, 작년 7월부터 빌링이 늦게 발송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업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작년 7월부터 현지 제휴통신사의 빌링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언어상의 문제와 이에 따른 회사 자체 요금납부 시

스템의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요금 청구가 늦어진 것이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일 및 공지사항 뿐 아니라 청구시에도 사용 내역서와 함께 빌링지연에 대한 사과문과 분할납부, 요금할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님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가 국보 건축물인 ‘세병관’에서 동창회 행사를 개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II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7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창원KBS-1TV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각 기각

보도내용

창원KBS-1TV : 「뉴스9-창원」 프로그램 (2008년 7월 15일 21:40)

내 용 :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가 국보 건축물 ‘세병관’에서 총동창회 행사를 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정작 사용 승인을 해 준 통영시는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604년에 지어진 세병관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지휘했던 수군통제영의 중심 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2년 국보 305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통영초등학교 동창회가 동창회 행사를 세병관에서 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20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마당엔 의자와 기둥엔 현수막까지 설치해 놓고 동창회장 이취임식 등을 한 것입니다.

인터뷰 (허○○ / 통영초등학교 개교 100주년기념사업회) : “세병관은 통영초등학교 동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국보인 이곳에서 초등학교 동창회 행사같은 사적인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병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국보에서 열린 동창회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인터뷰 (조○○ / 관람객) : “국보로 소중한 문화제인데 동창회 행사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안 되죠.”

하지만 통영시는 국보에서 동창회 행사를 하는 것이 문화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 / 통영시 총무사회국장) : “문화재는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초, 승례문이 화마에 쓰러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문화재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부족은 여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세병관은 100년 전부터 통영초등학교 교사로 사용한 곳으로 통영초등학교출신 동문들의 추억과 애증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이번 동창회행사는 동창회장 이취임식이 주된 행사가 아니고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동문과 가족들이 참가하는 추억의 소풍 출발지로서 세병관을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병관 뒤편에 있었던 통영초등학교 교사가 3년전 통제영지복원사업으로 철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BS 뉴스에서 지적인 사적인 행사로 볼 수 없는 세병관과 통영초등학교는 따로 분리

해서 생각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또 뉴스의 전체적인 의미가 마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통영초등학교 동창회가 통영시의 무분별한 행정결정으로 세병관에 들어가서 심각히 훼손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기자가 현장취재를 직접 하지 않은 잘못과 통영에 주재한지 불과 열흘 남짓한 시일로 인해 지역의 정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극히 단순하고 감정적인 생각으로 KBS 상급부서에 보고하여 상급부서마저도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통영초등학교 동창생들이 마치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집단으로 비취지게끔 하여 경남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7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통영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1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 원 군

조정대리인 류 ○ ○

주 문 : 이 사건 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뉴스 9” 프로그램에 별지 보도문을 방송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이 사건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2.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대구시의 브랜드택시(한마음콜) 사업자 선정과 관련, 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맡았던 신청인 회사가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사업 포기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1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웰컴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신문 : 『브랜드 택시 ‘브레이크’』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대구시가 지난해 말 수십억 원을 들여 의욕적으로 도입한 ‘브랜드택시’ 사업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시는 브랜드택시인 ‘한마음콜’ 시스템 구축을 맡은 (주)웰컴이 지난 7일 콜정보센터의 문을 닫고 “기술력 한계에 부딪혀 사업 계속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20일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웰컴정보시스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0일자 사회면 “대구브랜드택시 브레이크”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브랜드택시 사업자 선정과 관련, 웰컴정보시스템이 “기술력 한계에 부딪혀 사업 계속이 어렵다”는 의사를 대구시에 전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웰컴정보시스템은 그런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웰컴정보시스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20일자 사회면 “대구브랜드택시 브레이크”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브랜드택시 사업자 선정과 관련, 웰컴정보시스템이 “기술력 한계에 부딪혀 사업계속이 어렵다는 의사를 대구시에 전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웰컴정보시스템은 대구시에 그 같은 의사를 전한 사실이 없으며, 자사의 기술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웰컴정보시스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대구시의 브랜드택시 사업 지연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마음콜 시스템구축을 맡았

던 웰컴정보시스템이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사업계속이 어렵다’는 의사를 대구시에 전해왔으며(3월 20일자)”, “웰컴이 3년간 KTF통신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바람에 SK에너지가 사업을 포기 했었다(7월 18일자)”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웰컴 측은 기술력의 한계를 이유로 대구시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통신망 계약은 KTF측과 브랜드 택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것으로 웰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사회1면에 2단 상자기사로 2008년 8월 22일까지 게재하되 제목(웰컴정보시스템 관련 정정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3월 20일자 사회면)의 부제목(부실 사업자 선정 콜센터 문닫아...수십억 날릴 판)과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매일신문 : 『웰컴정보시스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9일자 4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대구시의 브랜드택시(한마음콜) 사업자 경쟁입찰 당시, KTF측과 통신망 이용계약을 맺은 당사자를 신청인 회사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11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웰컴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신문 : 『대구 브랜드택시 사업자 재선정 ‘질질’』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8일자 10면)

내 용 : 대구브랜드 택시, 언제 다시 시동걸까?

운영업체의 부실로 좌초됐던 대구 브랜드택시(한마음콜) 사업이 재시동을 거는데 진땀을 빼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브랜드택시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운영 중단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사업자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와 대구브랜드택시사업 재추진위원회에 따르면 5월말 긴급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3개 업체 중 2순위였던 백산ITS와 계약을 하려 했으나, 한때 사업을 포기했던 1순위 SK에너지가 재계약 의사를

밝혀와 최종 선정이 미뤄졌다.

SK에너지 경우 자가통신망까지 가졌지만 앞서 대구브랜드택시를 운영했던 (주)웰컴측이 3년간 KTF 통신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바람에 사업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장을 번복한 것.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웰컴정보시스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8일자 사회면 “대구브랜드 택시 사업자 선정 질질”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시의 브랜드택시 사업자 재선정에 대해 보도하면서 “웰컴정보시스템이 3년간 KTF통신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바람에 SK에너지가 사업을 포기 했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TF통신망 계약은 브랜드 택시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웰컴정보시스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8일자 사회면 “대구브랜드 택시 사업자 선정 질질”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시의 브랜드택시 사업자 재선정에 대해 보도하면서 “웰컴정보시스템이 3년간 KTF통신망 이용 계약을 체결한 바람에 SK에너지가 사업을 포기 했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웰컴정보시스템은 “KTF통신망 계약은 브랜드 택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것이라며 자사는 이 사업의 지연과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2008대구조정10의 합의사항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신문 : 『웰컴정보시스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9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특허를 갖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고거래 서비스’를 타 회사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인테고소프트 (대표이사 권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신문 : 『“3년 내 음악사이트 석권…해외시장도 진출”』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9일자

22면)

내 용 : 음악 사이트 1위 도전

인터넷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자원 낭비도 심각한 수준이다. 게리슨의 큐팅은 소비자가 싫증을 느끼거나 사용하지 않는 음원 파일을 사이트에 내놓을 경우 이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이다. 사이트를 오픈한 지 6개월여가 지나면서 음원시장을 달구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중고 거래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응이 뜨겁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게리슨, 세계 최초 ‘음원 중고장터’ 지역 벤처가 열었다”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9일자 경제면에 “세계 최초 ‘음원 중고장터’ 지역 벤처가 열었다”이라는 제목으로 음악파일을 중고로 사용자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게리슨이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이 모든 기술을 (주)게리슨이 독자 개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기술과 시스템은 (주)인테고소프트로부터 특허 사용권 계약과 시스템 공급계약을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서 게리슨이 독자개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음악 중고 거래 시스템 및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은 (주)인테고소프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주)인테고소프트는 올해 초 이와 유사한 허위기사 논란이 있었고 계약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게리슨과 계약해지 상태라 밝혀왔으며, 따라서 게리슨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할 그 어떤 권리도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 보는 지난 7월 29일자 22면 『“3년 내 음악사이트 석권…해외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의 디지털콘텐츠재생서비스 업체인 (주)게리슨테크놀러지가 세계 최초로 순수 국내기술로 디지털 콘텐츠 중고 거래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음원 중고거래 시스템 및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은 (주)인테고소프트 측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경제면에 상자기사로 2008년 8월 22일까지 게재하되 제목(알려드립니다)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MP3파일·컬러링·영화 등 짤값에 구매가능)와 같게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신문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2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동료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계약해지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최종판결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인천일보 : 『“폭행·폭언 직원 계약해지 정당”』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9일자 19면)

내 용 : 동료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계

약해지를 당한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 (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전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문화과장 채모(54) 씨가 “피고의 조작으로 채용 기간이 해지됐다. 계약기간내 봉급과 위자료 1억 3천 78만 8천 814원을 달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폭행, 폭언 등 원고는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었고 시는 갈등구조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채용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 7조 제 4호에 따르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3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으로 경제청 관광문화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채 씨는 동료 직원 폭행 등의 이유로 지난 2004년 12월 시로부터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이에 채씨는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6년 4월 30일까지의 봉급과 위자료를 달라”고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제청 간부 패소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0일자 사회면에 “폭행·폭언 직원 계약해지 정당”이라는 제목으로 전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문화과장 채모(54) 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며 원고의 주장은 강동석 전 건설부장관 아들의 인사부정을 폭로한 원고를 해고시키기 위하여 사실 무근의 폭행·폭언을 조작하여 원고를 부당계약해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쌍방의 대립된 주장에 대한 최종 판결 내용이 아님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경제청 간부 패소사건 관련 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7월 10일자 19면에 “폭행·폭언 직원 계약해지 정당”이라는 제목으로 전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문화과장 채모(54) 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며 원고가 강동석 전 건설부장관 아들 등 2건의 인사부정을 폭로한 원고를 해고시키기 위하여 사실 무근의 폭행·폭언을 조작하여 원고를 부당계약해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의 대립된 주장에 대한 최종 판결 내용이 아님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 2008년 8월 19일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경제청 전 간부 패소)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14일부터 한달 이내(2008년 9월 13일까지)에 신청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박스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천일보 : 『경제청 간부 패소사건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익산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와 사전내정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 이 재 욱)

피신청인 : 소통뉴스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소통뉴스 : (1) 『영상센터 절차상하자, 특혜의혹』 제

하의 기사 (2008년 8월 6일)

내 용 : 익산시는 지난해 초 문화관광부에 추천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주체 선정 공모를 실시, 공모상 적격성여부 판단기준에 따른 평가심의를 거쳐 Y시민단체와 경합을 벌인 S회(신동 311-2번지, 285.7평)를 같은 해 4월 최종 운영주체로 선정했다. 그런데 익산시는 운영주체 선정이후 8개월 만에 핵심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해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를 초래한 것이다.

당초 공모상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은 영구 사용 가능한 220평에서 250평 정도의 시설공간 확보와, 운영주체의 10개 이상 사회단체와 단체협약 체결, 리모델링 된 운영주체 소유의 건물을 익산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익산시는 선정된 건물구조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구축하는데 부적합하다며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S회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S회 소유의 새로운 부지(신동 131-132)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당초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편성을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변경하기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공모와 운영주체 선정 평가심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절차상 하자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부적격한 시설을 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린 심의 결과는 원천무효이므로 재공모와 재평가심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확보한다.

게다가 익산시는 국비 10억을 비롯한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총 20억 원(장비 10억, 건물 10억)을 들여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하면서도 신축된 건물을 기부채납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특혜의혹을 초래했다.

장비 일체와 사업비 대부분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는 공공자산인데, 토지도 아닌 건물을 기부채납 받겠다는 것은 익산시가 사업주체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의혹에 크게 무게가 실린다. (후략)

(2) 『운영주체 선정 형평성 공공성 상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7일)

내 용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문화교육 서비스기관으로 그 존립이유는 공공성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집행방식은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익산시는 이 같은 공공자산을 운영주체로 선정된 S회로 하여금 S회의 부지에 신축케 하고 완공된 건물만 기부채납 받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S회는 스스로, 당초 운영주체 선정의 평가기준이 되었던 원대 정문 앞(신동 311-2번지)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기에 부적절하다며 평가심의 결과를 부정했다.

익산시는 이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제심의를 통해 바로잡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S회가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부지(신동 131-132)에 건물을 신축기로 결정하고, 당초 시설비 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18일 열릴 132차 임시회에 민간자본보조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자체가 엉터리로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부지에 신축을 결정하고, 국비 10억과 도비 3억, 시비 7억 등 정부 재원 20억 원으로 신축될 건물과 시설을 기부채납 받겠다는 어불성설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익산시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주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운영주체가 선정된 뒤에는 S회에 전폭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탈락한 Y시민단체에서 운영주체 선정 평가심의 대상으로 제시했던 '익산문화의집'이 공공성과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구축 면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인 진단은 이 같은 의혹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후략)

(3) 『익산시는 존치될 이유가 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8일)

내 용 : 익산시가 추진하는 청소년유스호스텔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 같은 행정기관이 계속 존치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행정절차법 제1조)해야 할 익산시청의 공무원들이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유스호스텔의 경우 사업비 94억 7천만 원 중 기부채납 받을 부지(30억 원)를 제외한 64억 7천만 원을 국비로 추진하겠다고 투융자심사에 임해놓고, 국비확보가 어렵게 되자 건축비와 설계비 64억 7천 만 원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중이다. (중략)

특히, 선정된 운영주체와 익산시가 공히 선정절차의 하자를 인정하는 마당에서 공모상의 평가항목 및 판단기준과는 무관한 제3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기로 임의 변경하고, 국민의 혈세로 신출될 건물은 마땅히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하는데도, 사업부지가 아닌 건물(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과 절차를 기본강령으로 삼아야 할 공무원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6일, 7일 자 특집기사에서 “영상센터 절차상하자, 특혜 의혹”, “운영주체 선정 형평성 공공성 상실”, 8일자 사설 “익산시는 존치될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주체 선정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와 특혜 의혹, 사전 내정 의혹에 대한 기사 및 선정주체가 선정절차의 하자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주체의 선정과 사업변경승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혜의혹, 사전 내정 의혹은 사실이 아닌 기자의 추측이었습

니다. 또한 선정주체가 선정절차의 하자를 인정한 적이 없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본 문 : 소통뉴스 8월 6일자 『영상센터 절차상하자, 특혜 의혹』 제목 등 3회에 걸친 기사에 대해 확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선정을 위해 제시한 평가 기준에는 건축물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S회는 익산시로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주체로 사전에 내정되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27일 09:00부터 2008년 8월 28일 09:00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소통뉴스(<http://www.sotongnews.com>)의 초기화면에 위 보도문을 제목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 본문내용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소통뉴스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7일자 문화/교육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건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4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현대환경산업(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종합법률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종합법률신문 :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시행사 속
여 부당이득 챙긴 환경업체를 고발한
다”』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1일자
13면)

내 용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P환경업
체는 지난 2007년 6월경 광주 광역시 동구 지산동
시행사 주택개발공사와 건축폐기물 처리계약을 맺
고 폐기물 운송과정에서 1,000여대(25T 덤프) 물량
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당시 근무하였던 K모
씨(45세)의 제보로 드러났다.

P환경업체는 회사부지의 토사를 외지로 반출하
고 그 자리에 건축폐기물로 되메인 것으로 제보자
는 증언하고 있으며, 인근 가구공장 신축현장 부지
에 석면질의 폐기물과 토사를 혼합하여 매립한 사
실도 주장하고 있다.

석면질의 폐기물은 토사와 수질오염의 방지차원
에서 특수처리하여야 하는데도 P환경사는 돈버는
것만 급급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P환경사는 운전기사의 퇴직금 및 잔업수당도 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P환경사의 행위는 법과 질서까지 오염시
키는 부도덕한 업체로서 철퇴를 받아야 마땅할 것
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건축폐기물 불법매립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6월 11일(수요일)자
호남권면(13면)에 “건축 폐기물 불법매립에 시행
사 속여 부당이득 챙긴 환경업체를 고발한다”제목
으로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P환경업체가 시행사와
의 계약내용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인근에 석
면질의 폐기물과 토사를 혼합하여 불법매립 했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P환경사는 운전기사의 퇴직금 및 잔업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 물량반입과정에서 계약내용을 속여 부당이
득을 챙기지 않았고, • 석면질과 폐기물을 불법 매
립하거나, • 운전기사의 잔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
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현대환경산업(주)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 2008년 6월 11일자 13면 “건축폐
기물 불법매립에 시행사 속여 부당이득 챙긴 환경
업체를 고발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전남 나주시
봉황면 P 환경업체가 폐기물 운송과정에서 부당이
득을 챙기고 회사부지에 폐기물을 묻었으며, 인근
가구공장 신축현장 부지에 석면질의 폐기물과 토
사를 혼합하여 매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해당 P업체는 폐기물 운송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고, 회사부지 및 인
근 신축현장 부지에 석면질의 폐기물 등을 불법 매
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12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종합
법률신문> 호남권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
은 1단 크기의 중고딕활자로 2줄 처리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
게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9월 30일까지 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
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매일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피
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종합법률신문 : 『현대환경산업(주)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3일자 1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기획재정부에 의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서울신문 : 『경인운하 예비타당성 용역 의뢰』 제하
의 기사 (2008년 8월 13일자 15면)
내 용 : 국토부, 연내 기본계획 고시 목표...건설
가시화

인천·서울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저지키로
한반도 대운하가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경인
운하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인운하 건설을 위
한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의뢰를 기획재정부에 요
청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토목사
업은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연내 경
인운하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용
역 의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가
운데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인천본부’가 서울지역

환경단체와 연대해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을
모색하고 있어 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인운하 예비타당성 용역 의뢰”는 사
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3일자 사회면에
“경인운하 예비타당성 용역 의뢰”라는 제목으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부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를 거치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용역 의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고 보
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국토해양부는 예비타당성
검토 의뢰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그렇게
밝힌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2일자 2면)

내 용 : 8월 13일자 15면에 보도된 ‘경인운하 예
비타당성 용역 의뢰’ 제목의 기사와 관련, 국토해
양부는 예비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양산시가 특별회계를 정기에금으로 예치하면서 제안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아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양산시 (시장 오 근 섭)

피신청인 : 경남매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남매일신문 : (1) 『양산시 ‘눈감고 경리업무’』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일자 1면)

내 용 : 양산시가 경남은행 금고에 수백억원의 특별회계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제안금리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본지가 입수한 ‘양산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양산시가 경남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한 금액은 270여억원이고 지급된 이자는 3억 1,118만 원이다.

이 기간 경남은행이 제안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4.6%이었지만 양산시는 4.4%에 해당하는 금리만 받았다.

5,000만 원 이상의 금리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결산 감사후 권고사항으로 지적됐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경리 담당 공무원들은 내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경리담당 등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논의도 없었고, 경남은행에 추가 이자 지급을 요청한 공무원도 없었다. (후략)

(2) 『양산시 공사 무더기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2일자 1면)

내 용 : “양산시가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1억 원이 넘는 관급공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업체와 단독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지난 6월 양산시 종합감사에 참여한 경남도 감사관실의 한 감사관은 이같이 지적했다.

양산시가 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한도를 초과해 맺은 수의계약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시장의 친인척과 동향 등을 동원..., 수의계약특혜 등 온갖 부정부패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최근 2년간 양산시 발주 관급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양산시가 수의 및 수의견적으로 계약한 관급공사는 일반회계만 1,022건에 291억 1,742만 원이다.

이 금액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와공단관리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를 제외한 액수다.

양산시는 이 기간 중 모 업체에 계약금액이 19억 4,100여만 원에 이르는 31건의 관급공사를 수의 및 수의견적으로 몰아주었고, 또 다른 업체는 40건의 공사를 11억 200만 원에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40건의 공사를 수의 및 수의견적으로 계약한 이 업체는 조경관련 업체로 대표자가 전 김해시청 모 간부의 친인척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업체는 2006년 7월 1억 6,410만 원이 계약금액인 ‘2006년 임도구조 개량공사’를 수의로 계약했다.

이 기간 중 양산시가 계약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의 및 수의견적으로 부당하게 발주한 관급 공사는 16건이며 이 가운데 2억 3,57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산시 계약부서 관계자는 “관련법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라서 수의로 발주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양산시 ‘눈감고 경리업무’』 사실과 달라

본지는 2008년 8월 1일(금)자 1면에 <양산시 ‘눈감고 경리업무’>라는 제목으로 “양산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시가 2007년도 경남은행 금고에 특별회계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서 경남은행이 제안한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4.6%이었지만 4.4%에 해당하는 금리만 받아 5,000만 원 이상의 금리손실이 발생하였다”라는 내용과

“결산검사 후 권고사항으로 지적받고도 담당공무원들은 대책논의 및 추가이자 지급요청도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남은행이 2006년 10월 양산시에 금고관련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는 제안금리(고시금리 4.1%+우대금리 0.5%)가 4.6%이었으나 고시금리의 연동으로 제안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금고 계약시점에는 고시금리 4.0%를 적용한 제안금리가 4.5%로써 금리 적용 잘못으로 인한 이자손실은 전혀 없었고, 관련 공무원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양산시 공사 무더기 수의계약』

본지는 2008년 8월 12일(화)자 1면에 <양산시 공사 무더기 수의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양산시가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1억 원이 넘는 관급공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업체와 단독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양산시가 특정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한도를 초과해 맺은 수의계약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시장의 친인척과 동향 등을 동원..., 수의계약특혜 등 온갖 부정부패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양산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과 산림사업 관련법에 의하여 산림조합과 산림법인과 수의계약이 타당하게 이루어 졌으며, 특정업체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산림조합, 산림법인)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혜를 준 듯한 내용과 한도를 초과한 수의계약이 수백 건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공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인용하여 시장의 친인척과 동향 등을 동원... 수의계약특혜 등 온갖 부정부패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확인 없이 보도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일자 1면 “양산시 ‘눈감고 경리 업무’” 제하의 기사에서 양산시가 경남은행에 수백억 원의 특별회계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제안금리 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이자를 받아 5,000만 원 이상의 금리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남은행이 2006년 10월 양산시에 금고관련 제안서를 제출한 당시 제안금리는 4.6%였으나, 2006년 12월 금고 선정 계약시 제안 금리는 4.5%로 금리연동 적용이며, 금리 적용 잘못으로 인한 이자 손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8월 12일자 “양산시 공사 무더기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 중 양산시가 법규를 무시하고 1억 원이 넘는 관급공사를 여러 차례 특정업체와 단독 수의 계약하여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양산시는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 체결을 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와 한도를 초과하여 수의계약한 사실로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40건의 수의계약한 업체대표가 전 김해시 모 간부에 친인척이라는 주장과 양산시와 김해시 관련 부서 친인척이 서로 양 시의 관내 공사를 독식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8월 2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매일> 2면 우측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8월 1일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은행금리차 파악못해 특별회계 이자 수천만 원 날려) 크기로 게재하고, 본문은 동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보도문을 게재한 경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기자들을 상대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매일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임실군수가 검찰의 수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수억 원을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6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민주당 (대표 정 세 군)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9.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검찰 “임실군수, 민주당 지도부에 역대 구명 로비”』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4일자 10면)

내 용 : 전주시방검찰청은 13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억(68) 임실군수가 구명 로비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야당 국회의원 등에게 역대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던 김 군수가 “수사를 막아달라”며 민주당 지도부 등에 수억 원을 제공한 정황과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 군수에 대해 관내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구속) 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 가운데 상당액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2005년 10월에도 건

설업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으나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임실군수, 민주당 지도부에 역대 구명 로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4일자 사회면에 「검찰 “임실군수, 민주당 지도부에 역대 구명 로비”」라는 제목으로 김진억 임실군수가 자신의 구명 로비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야당 국회의원 등에게 역대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임실군수가 민주당 지도부에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한국방송공사가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에게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했으며, 정부 전복투쟁에 나섰다 등의 사실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원 군)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KBS는 조선중앙TV의 서울출장소인가』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4일자 사설)

내 용 : KBS 1TV ‘시사기획 썸’은 1일 밤 ‘쫓 불, 대한민국을 태우다’를 내보냈다. 방송 시작 14분쯤 됐을 때 화면엔 갑자기 1987년 6월항쟁 시위 장면이 등장했다.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이 진압하는 모습에 이어 당시 연세대 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전 의원이 출연해 “죽기 아니면 살기,

전쟁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공감하면서 500여만 명이 참가해 군사정권이 항복했다”는 내레이션,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 이군의 장례식 때 서울시청 앞을 메운 100만 인파, 이군 어머니가 “요즘 옛날 생각이 난다”고 말하는 장면이 4분 가까이 계속됐다. 화면은 다시 촛불시위를 비추면서 “1987년 6월처럼 사람들은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는 내레이션이 나왔다.

KBS의 편집 의도는 쇠고기 촛불시위가 21년 전 군사정권에 대한 항거(抗拒)와 똑같은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다. KBS는 지금 이 나라엔 민주주의가 사라져 시위대가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했다. 불과 반 년 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군사독재자에 견준 것이다. 6월항쟁 때처럼 국민에게 반(反)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선동이다.

KBS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선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 방송 후 KBS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청자의 성난 목소리가 빗발쳤다. “KBS가 아니고 조선중앙TV 보는 느낌이다” “이명박 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해서 독재 중이냐?”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다. 숭고한 민주화운동을 더럽히지 말라.”

지난달 30일엔 한겨레신문이 ‘6·29 새벽에 5·18을 보다’라는 사설에서 “6월 29일 새벽 서울 한복판 태평로의 모습은 착검한 총만 없었을 뿐 1980년 ‘5·18’의 광주 모습 그대로다”라고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까지 포함해 추진한다는 ‘비상시국회의’ 구성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민중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모델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는 “6월항쟁이여 다시 한번”을 외치며 사실상 정부 전복투쟁 선동대의 맨 앞줄에 나선 셈이다. KBS가 국민의 전파(電波)로 국민을 거리로 나가라고 선동하는 걸 언제까지 두 고만 봐야 하는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KBS는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인가’

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4일자 사설에서 ‘KBS는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인가’라는 제목으로 KBS 7월 1일자 방송 <시사기획 ‘쌈-촛불, 대한민국을 태우다’ 프로그램(이하 ‘시사기획 쌈 촛불집회 편’)이 ‘국민에게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선동’을 했고, KBS가 ‘정부 전복투쟁 선봉대의 맨 앞줄’에 나섰으며, ‘KBS는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사기획 쌈 촛불집회 편은 촛불집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지만 촛불이 자신의 그림자를 밝히는데 소홀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으로 촛불집회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한 것으로 국민을 선동하지 않았으며, KBS 역시 정부 전복투쟁 역할을 한 적이 없고, 공영방송사에게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라고 강조한 것 역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7월 4일자 ‘KBS는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인가’ 제하의 사설과 관련하여 KBS는 시사기획 쌈 촛불집회편은 촛불집회의 성과와 한계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사설의 내용처럼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 역할을 하며 국민을 선동하거나 정부 전복투쟁 역할을 위한 내용과 편집의도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5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에 게재하되,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조선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3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외동동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들과 상의 없이 초등학교로 통하는 아파트 후문을 폐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외동동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강 ○ ○)

피신청인 : 경남매일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남매일신문 : 『아파트 후문 폐쇄 주민 마찰』 제하
의 기사 (2008년 8월 18일자 6면)

내 용 : 김해시 외동의 D아파트에서 인근 초
등학교로 통하는 후문의 사용을 놓고 주민들이 마
찰을 빚고 있다.

17일 D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평소 아이들
이 등굣길로 이용하던 아파트 단지 뒤쪽의 출입구
를 인근 동 대표와 아파트 대표가 주민들과 상의
없이 폐쇄해 학생들이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로
빙빙 돌아가거나 펜스를 넘고 있다.

후문 개방을 원하는 주민들은 후문을 폐쇄하자
어린이들이 2m 높이의 펜스를 넘어다니고 있다
며 후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문 출입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은 학생들이 다녀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
들고 출퇴근 시간에 사고발생의 위험을 주장하면
서 후문 개방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후문을 개방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
의 자녀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거주 학생들과
일대 초등학생들이 모두 이 출입문을 이용하게 돼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며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강
조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자 이날 경찰이 중
재를 위해 출동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후문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후문을 폐쇄한
다면 우리는 주출입로를 폐쇄하겠다고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 주출입구 일부를 막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후문 출입구를 개방해야 한다는 한 주민은 “아파
트 단지 뒤쪽 출입로 문을 열어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아 항의를 하고 있다”
며 “며칠 전에는 아이들이 뒤쪽 문이 잠겨 펜스를
넘다가 다리를 다쳐 깁스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청와대도 담장을 허무는데 우리
아파트는 왜 반대로 펜스까지 설치해 어린 아이들
을 차도로 내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출입문 폐쇄를 고집하는 한 주민은 “후문
을 개방하면 등하교시간대 학원 차량 등이 아파트
뒤쪽문 인근에서 학생들을 승하차 시켜 소음은 물
론,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외부차
량의 출입을 막기 위해 등·하교시간 1시간 30분
가량 후문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후문의 개방과 폐쇄를 놓고 주민들이 대
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D아파트 문제는 마땅한 해
결책을 찾을 때까지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사진설명>

김해시 외동 D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인근 초
등학교로 통하는 아파트 내 후문을 폐쇄하자 후문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
아파트 주출입구 일부를 막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아파트 후문 어린이보호를 위해 합리적
절차로 폐쇄해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8일자 사회면에 “아파트 후문 폐쇄 주민 마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없이 일부 주민의 말만 믿고 오보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평소 아이들이 등굣길로 이용하던 아파트 단지 뒤쪽의 출입구를 인근 동 대표와 아파트 대표가 주민들과 상의없이 폐쇄해”라고 보도한 것을 “평소 아이들이 등굣길로 이용하던 아파트 단지 뒤쪽의 출입구를 전주민들에게 찬.반의견 설문조사서를 받은 결과 폐쇄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공고하여 뒷문을 폐쇄하였다”로 정정보도합니다.

• “후문을 폐쇄하자 어린학생들이 2m 높이의 펜스를 넘어다니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을 “후문을 폐쇄하자 어린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인근 아파트와 경계부분인 50cm가량 높이의 펜스를 넘어다니고 있다”라고 정정보도합니다.

• “아이들이 뒤쪽문이 잠겨 펜스를 넘다가 다리를 다쳐 깁스까지 했다”라고 보도한 것을 “아이들이 뒤쪽문이 잠겨 펜스를 넘다가 다리를 다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운동하다가 다친 것으로 탐문되었다”로 정정보도합니다.

• “등·하교시간 1시간 30분 가량 후문을 폐쇄해야 한다.”라고 보도한 것을 “등교시간만 1시간 30분을 후문을 폐쇄해야 한다.”로 정정보도합니다. □

미디어포커스에서 중도 보수 언론 단체의 토론회 및 좌파신문이나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원 군)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1) 『KBS, 사장 경질보다 중요한 것』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8일자 A31면)

내 용 : KBS의 정연주 전 사장은 2003년 4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실제로 정씨는 대선과 총선을 앞둔 2007년 까지도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실패했다.

현 KBS노조는 수신료 인상안의 실패 원인으로 정연주 씨가 노무현 정권과 구 열린우리당의 힘에만 의존한 것을 꼽는다. 2004년 대통령 탄핵 보도 당시 KBS는 언론학회보고서 결과 ‘아무리 느슨한

잣대를 적용해도 편파적’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정권과 여당에 치우쳤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했어도 다수 국민의 동의를 끌어 내지 못해 수신료 인상안 공약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좌우 모두 근본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는 무려 17년간 제자리에 묶여 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 수신료를 인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의 조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특정 정치세력의 나팔수 역할보다는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란 반드시 정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대표적인 불공정 프로그램으로 지적되는 ‘미디어 포커스’는 좌파 언론단체의 지령을 받아 제작되는 수준이다. 중도·보수 언론단체가 아무리 토론회를 열고 성명서를 내도 이제껏 단 한번도 ‘미디어 포커스’에 반영된 바 없다. 이들은 KBS의 공영성을 ‘우리가 우리 패거리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너희는 간섭하지 마라’는 식으로 해석한다. 국민의 세금을 정치 도박의 판돈으

로 쓰고 있는 격이다. 기어코 자신들만의 편협한 정치관을 고집하고 싶다면 다들 사표를 쓰고 자신들의 돈으로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 (후략)

(2) 『KBS, 이탈리아 보고 뺨은 침이 제 얼굴에 떨어지다』 제하의 사실 (2008년 8월 19일자 A31면)
내 용 : KBS 1TV 'KBS 스페셜'은 17일 '언론과 권력-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를 통해 이탈리아 최대 미디어 재벌로 지난 5월 세 번째 총리 자리에 오른 베를루스코니가 공영방송인 라이(RAI)를 장악해 방송들이 공영성을 잃고 표류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KBS 스페셜은 이탈리아 공영방송 경영진이 교체된 후 각종 뉴스 보도에서 먼저 정부의 주장을 내보내고 다음에 이에 대한 야당 비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 입장을 전달하는 '샌드위치 보도 방식'을 채택하는 바람에 정부·여당 주장이 보도 양의 3분의 2를, 야당 주장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보도 불균형으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기울게 했다고 했다.

사돈 남 말하듯 하는 KBS다. 얼굴이 두꺼워도 이 정도로 두꺼울 수는 없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보도 때 KBS '미디어포커스'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7명의 인터뷰를 줄줄이 방송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않았다. KBS의 탄핵 프로그램 전체로 보면 탄핵 반대 22명, 찬성 1명이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7대 0, 22대 1의 비율로 방영한 KBS가 이탈리아 공영방송이 2대 1의 비율로 정부 쪽에 유리하게 보도하게 돼 방송의 공영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정연주 전 KBS 사장이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는 '미디어포커스'는 차베스의 나라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정부 권력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용(御用) 좌파 언론단체들의 앵무새 노릇을 하면서 자유언론, 정부 비판 언론의 입을 봉(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권력의 방망이 노릇을 도맡아 왔다. 미디어포커스는 과거 몇 년간 그렇게 권력 비판 언론을 물어뜯으면서 좌파 신문이나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권력의 충견(忠犬)이란 말은 KBS의 '미디어포커스' 같은 프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KBS를 이렇게 만든 정연주 전 사장의 복심(腹心)들은 이런 속보이는 쓰레기 프로를 만들려고

국민 세금을 축내며 이탈리아까지 유람(遊覽)을 돌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 전 사장을 따라 나가 탄 살림을 차려 자기 돈을 써가며 마음껏 제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KBS 미디어포커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8일자 '시론'에서 KBS 미디어포커스가 '중도 보수 언론단체의 토론회와 성명서를 다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필자의 잘못된 주장을 검증 없이 게재하였습니다. 또 다음 날인 8월 19일자 사설에서도 KBS 미디어포커스가 '좌파 신문이나 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을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했습니다.

확인 결과, KBS 미디어포커스가 관련 내용을 단 한 건도 반영 또는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펼친 일방적 주장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한다.
- 지난 18일자 시론 및 19일자 사설 중 KBS 미디어포커스가 중도보수언론단체의 토론회 및 좌파언론 비판 내용을 단 한 번도 반영·보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미디어포커스에서 올해 4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방송정책토론회를 보도했고, 작년 대선기간 중 언론의 정파성을 비판하면서 보수신문뿐 아니라 진보신문의 문제점도 같이 지적하는 등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우리 조선일보에서는 KBS의 지적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일부 표현이 단정적이어서 과도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언론의 바른 길을 같이 가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해 인천 시내 학교 36곳에 수의계약을 따내 10억 원 이상을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용 근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용근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재산 증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보도내용

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7월 18일 21:00)

내 용 : 서울시의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인천시 일부 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문 모 의원이 지난해 1월 검단지구내 주거지역 1800평방미터를 사들인 뒤, 이중 8백 평방미터를 상업용지로 바꿔 9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인 김 모 의원도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부인 이름으로 바꾼 뒤, 지난해 7월부터 인천 시내 학교 36곳에 경쟁입찰없이 수의계약을 따내 10억 원 이상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의원 직위 이용해 재산증식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18일 MBC 9시 뉴스에 “인천광역시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재산증식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10억 원 이상을 챙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MBC-TV 홈페이지(www.imbc.com)의 아래 사이트에 보관되어 있는 동영상과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에 대한 각 보도부분을 삭제한다.

아 래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89867_2687.html (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189706_2769.html (뉴스와 경제)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를 검색시 나오는 위 항의 동일한 기사에 대해서도 위 항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문화방송을 대표해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한다.

• 문화방송의 7월 18일자 뉴스와 경제 및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하여 문화방송에서는 시 행정을 감시해야 할 지위에 있는 시의원들의 문제점을 다뤄 깨끗하고 공정한 시의회가 되도록 하자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보도하였으며 김 위원장님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시민단체 발표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고통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하고 피신청인 및 담당 기자등 소속 임직원에게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廣州 부시장이 터무니없이 많은 회의를 주재하여 민원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한 대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부일보 : 『업무마비 아랑곳...회의 즐기는(?) 광주 부시장』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0일자 6면)

내 용 : ○...이한대 광주 부시장이 터무니 없이 많은 회의주재로 민원업무가 마비되는 등 공무원들의 원성이 자자함에도 여전히 회의를 즐기고(?) 있어 심각한 상태.

광주 부시장으로 전보되기 전인 팔당수질개선 본부장시절에도 잦은 회의 때문에 본부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던 이 부시장은 광주시에 부임하자마자 매월 수십 여차례의 회의 반복하기를 계속하고 있어 일반 민원업무가 마비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

지난 한달동안 이 부시장은 각종 보고회와 위원회를 20여차례 개최해 역대 부시장 중 가장 많은 회의를 주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 그나마 이 정도는 부임당시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는 평가이고 보면 그 동안 공무원들이 회의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예측가능.

실제 지난달 20일에는 오전 8시에 불합리한 규제개선 보고회, 10시 시정조정위원회, 오후 4시 투자심사위원회 등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시간도 1~2시간 까지 장시간 계속되는 마라톤 회의를 주재해 막강 체력(?)을 과시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과감치. 특히 회의도 업무과외 등 일상적인 일로 알맹이 없는 회의가 대부분이라는 게 중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선 실·과·소에는 회의 자료 준비에 민원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며, 회의 당일에는 과장, 계장의 자리가 모두 비어 있는 등 민원업무 파행이 초래되는 등 심각한 상황. 익명을 요구한 모과장은 “30여년의 공직생활중에 이렇게 회의를 많이해 보기는 처음”이라면서 “가뜩이나 많은 업무에 회의준비 서류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걱정된다”며 불만을 토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회의 즐기는 광주 부시장 관련, 사실과 달라”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0일자 6면에 “업무마비 아랑곳, 회의 즐기는(?) 광주 부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시 부시장이 터무니없이 많은 회의를 주재하여 업무가 파행되고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한대 부시장이 2007년 12월 24일 부임한 이후 회의 개최횟수는 매월 20여 차례가 아닌 월평균 6.3회로서 사실과 다르며, 그 회의도 대부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각종위원회를 개최하였음이 확인 되어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광주시와 광주시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회의 즐기는 광주 부시장 관련,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6월 20일자 6면에 “업무마비 아랑곳… 회의 즐기는(?) 광주 부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시 부시장이 터무니없이 많은 회의를 주재하여 업무가 파행되고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한대 부시장이 2007년 12월 24일 부임한 이후 회의 개최횟수는 매월 20

여 차례가 아닌 월평균 6.3회로서 사실과 다르며, 그 회의도 대부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였음이 확인되어 보도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8년 9월 2일 6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완주군이 봉동2지구 미술장식품 설치작품 선정과 관련 전국공모전 1등 당선작을 석연찮은 이유로 부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완주군 (군수 임 정 업)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1) 『완주 아파트 미술장식품 설치 번복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8일자 7면)

내 용 :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이하 주공 전북지사)가 발주한 완주 봉동2지구 아파트단지 미술장식품 전국 공모전 1등 당선작이 현장 설치를 위한 지방 심의과정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두 차례나 부결, 차점작이 설치작으로 결정되자 1등 당선작가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완주군과 주공 전북지사 등에 따르면 완주군 미술장식품설치위원회는 지난 1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봉동2지구 아파트 미술품 설치와 관련

해 2차 심의회를 열고 이번 공모전 차점작을 설치작품으로 결정, 20일께 1등 당선 작가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심의위는 부결 사유로 △1차 심의 때와 작품 변동이 없고 △후식-도심 속 자연주제와 부적합(작품 제목)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100점 만점에서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1차 심의에서는 작품의 스텐레스 질감 등의 이질감과 총알 형태의 조형물에 혐오감 등을 이유로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국 공모전 1등 당선 작가는 완주군과 주공전북지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완주군 관련조례에 따르면 1등에게 주어지는 10점 가산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제됐고, 1차 심의후 수정·보완 요구에 따라 충실히 이행 했는데도 작품제목에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심의서류를 뜯어잡아 점수를 받지않았고, 주공측과 완주군 담당 직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서로 말을 바꾸고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후략)

(2) 『아파트 미술작품 선정 과정 일원화 필요』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0일자 7면)

내 용 : 완주군이 아파트 전면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선정과 관련 공모에서 1등으로 선정된 작품을 지난해에 이어 연거푸 탈락시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빚고 있다.

미술작품 선정의 기준이 심의위원의 주관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례에 규정된 가점마저 외면하는 바람에 해당 작가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완주군은 주택공사가 공급한 봉동2지구 아파트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공모를 통해 1등으로 올라온 작품에 대해 “작품성이 없다”는 모호한 이유로 탈락시키고, 2위 작품을 결정해 불란을 초래하고 있다. 1등 당선작을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완주군은 1차 심의 때는 조례에 규정된 가점(10점)을 부여했으나 2차 재심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공모 당시 작품과 다르게 작품이 변경돼 1등작에 부여하도록 한 가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미술협회와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점을 인정하지 않는게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2008년 7월 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신청한 완주 봉동2지구 주공아파트 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은 두 차례(7월 3일, 7월 17일)에 걸쳐 완주군미술장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전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 ‘완주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건축주가 공모에 의해 작품을 선정한 경우 심의시 가점(10점)부여”토록 되어 있어 주공에서 신청한 1차 작품(「휴식-도심속자연」)이 공모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적법하다는 점을 고려, 관련규정에 의거해 가점 10점을 부여했으나 완주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되었으며,

• 2차 심의신청한 해당작품(「휴식-도심속자연」)은 1차 심의 시의 작품과 비교할 때 위치, 재질, 모양 등이 변형되었고, 주공 측에서 공모 증빙자료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체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완주군은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공모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아 공모작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심의를 진행한 결과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 주공 측에서는 공모 2순위 작품을 심의신청하였고, 특히 이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접수만 되었을 뿐,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으며, 또한 작가에게 통지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후 작가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08년 7월 29일)되어 위원회를 소집, 수용여부를 심의한 결과 ‘공모 작품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 또한, 완주군미술장식 심의위원들은 차점작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사전교감도 전혀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취하 후 보도문

사전복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2면)

내 용 : 본지 7월 28·30일자 7면 ‘완주 아파트 미술장식품 번복 논란’ 기사와 관련 완주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면 반론보도문을 보내 왔습니다.

군은 건축주가 공모에 의해 작품을 선정한 경우 가점 10점을 부여토록 한 관련 조례에 따라 주공이 신청한 1차 작품 ‘휴식-도심속 자연’에 대해 가점을 주었으나 완주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또 2차 심의에 신청한 해당 작품 ‘휴식-도심속 자연’은 1차 심의때의 작품과 비교할 때 재질 모양이 변형됐고, 주공 측에서 공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공모작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부결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2순위 작품에 대해서는 군에 접수만 되었을 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작가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해 수용여부를 심의해 공모 작

품으로 볼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반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들은 차점작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은 적법한 부동산 개발업체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21세기컨설팅(주) (대표이사 양 ○ ○)
피신청인 : 머니워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머니워크 : 『달콤한 ‘고수익·수집배’의 치명적 유혹 난무』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2일자 46면)

내 용 : “사장님 재테크는 어떻게 하세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필지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지난 5월 기획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막 수집할 무렵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통화로 30여분의 설명을 들은 뒤 마침 잘됐다 싶어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했다.

강남대로변에 위치한 이 회사는 월 임대료가 1000만 원도 넘어 보이는 고급 빌딩의 로열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인사가 끝나자 이 관계자는 별집촌을 방불케 하는 수많은 상담실 사이를 지나 맨 끝방으로 기자를 안내했다. 7㎡쯤 뒹쭈한 상담실 벽면에는 각종 개발계획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관에서 수여한 표창들로 꾸며져 있었다. 다른 한구석에는 개발 예정지로 보이는 판넬 지도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신을 컨설턴트로 소개한 이 남자는 잠시 동영상과 보고 있으라며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 내용은 20분짜리 분량의 회사소개와 개발 계획이었다.

잠시 뒤 나타난 컨설턴트는 강원도 평창의 한 리

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 증거로 이 회사가 지난해 착공식을 가진 한 온천휴양단지 관련 일간지 기사를 내밀었다. 그는 회사 설명만 30분을 소비하는 동시에 ‘기획부동산’과 거리두기에 열을 쏟았다.

“우리 회사는 수십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개발사업도 열 곳이 넘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회장님은 ○○협회 회장도 겸직하고 계시고 ○○부산하기관 ○○연구원장이 우리 회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마치 정부기관에 비호세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계획서만 제출하면 개발이 순식간에 이뤄질 듯한 분위기다. 어느덧 호칭은 사장님에서 선배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선배님, 평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이 당이 3~4년 뒤 300만 원이 된다니까요. 저도 없는 돈 다 털어서 이곳에 투자했어요. 이제 몇 필지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3년만 참아라, 고수익 보장하겠다’

그가 설명하는 내용은 이랬다. 강원도 평창군 일대 약 56만㎡의 면적에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콘도 등을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토지구입 비용이 모자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1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3306㎡(1,000평)에 해당하는 농지나 임야가 투자자의 몫이지만 개발 이후 이 토지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되면 30%에 해당하는 992㎡(300평)만 환지로 보상받게 된다는 식이다. 이 때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상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컨설턴트의 주장이다.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지에서만 적어도 9억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때 환급받은 토지 가운데 595㎡(180평)

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5억 4,000만 원 가운데 33%의 매각대행료를 제외한 3억 6천만 원으로 남은 396㎡(120평)의 토지에 펜션을 세울 경우 건물 가치는 7억 2,000만 원부터 시작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펜션을 운영하면 연간 1억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한 노후대비 투자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1억 2,000만 원을 토지에 투자해 3년 뒤 9억 원의 목돈을 쥐거나 혹은 펜션을 건축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고정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가 소개한 다른 투자도 비슷했다. 제주의 모텔 개발에 3억 원을 투자하면 토지개발 수익으로만 21억 원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모텔 건축을 하게 되면 연간 4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이유는 개발 중인 토지가 상업용지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강원도나 제주도 등 개발에 목말라하는 각 자치단체들이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쉽게 인허가를 내준다는 식이다. 3시간에 가까운 그의 집요한 설명을 부모님과 상의해 연락 주겠다고며 겨우 막아냈다.

‘좋은 물건 나왔다’ 또 다른 투자권유

투자 마감시킨 전까지 매일같이 투자 상황을 물었던 이 회사 컨설턴트는 결국 기자의 “오피스텔에 투자했다”는 대답을 듣고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좋은 물건을 놓쳐서 아쉽다”, “나중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등 아쉬운 소리를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기자의 투자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고 우호적인 인상을 남겼다. 며칠 뒤 ‘○월 ○일 부로 평창의 ○○○개발사업의 투자가 마감됐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획부동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당신이 새가슴이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의식을 심어놓는다”면서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의식이 들면 다음번 투자 때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잘 짜여진 각본과 같다”고 말했다.

해당 컨설턴트는 며칠 뒤 “확정금리 15%대의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또 다른 땅을 소개했다.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확정금리나 원금보장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를 저지르

는 위법 행위다. 만약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에 5년간 근무했다는 정수현(가명·31)씨는 “계약서 상에서는 금리를 확정한다거나 수익에 관한 부분을 빼놓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가더라도 컨설팅업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계약 당시에 전문가와 함께 하거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씨는 이어 “수익 원이 오가는 계약을 대충 확인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공부를 안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2) 『뜬금없는 장밋빛 속삭임, 낚이면 낭패본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2일자 48면)

내 용 : 지난해 서초동에 사는 최선자(가명·59)씨는 10년 지기 이웃 조선헌(가명·62)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15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

평창에 땅을 사면 수십배의 이익이 날 것이라는 말에 계약을 조씨에게 위임했다. 최씨는 삼성그룹이 평창에 땅을 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만큼 2014년 동계올림픽의 유치에 확신이 있었다. 따라서 대출을 포함 남편의 퇴직금과 강남역의 오피스텔을 처분해 마련한 20억 원을 고스란히 남편 몰래 평창에 토지에 투자한 것. 펜션 부지를 구입하면 막대한 이득이 생긴다는 조씨의 권유가 결정적이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는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적법한 부동산개발업체임

•내 용 : 머니투데이의 자매지 ‘머니 위크’는 지난 2008년 8월 12일자(배포는 2008년 8월 4일) 피쳐면과 2008년 8월 11일 ‘머니투데이 인터넷 판’에 ‘치명적 유혹의 덫 기획부동산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가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유혹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사기회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는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간접투자 방식에 의한 테마 파크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획부동산업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기획부동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8월 12일자(제41호) 피처면 「달콤한 ‘고수익·수십배’의 치명적 유혹 난무」, 「뜬금없는 장밋빛 속삭임, 낚이면 낭패본다」 제하의 기사에서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에서 리조트 개발공사와 워터파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21세기건설팅주식회사를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유혹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업체라고 묘사하면서 1. 평창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업체는 사업의지가 없고, 2.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에 투자자가 계약하는 토지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으며, 3. 워터파크 신축공사 증거자료로 내놓은 기술용역도급계약서의 첫 계약금이 무려 5억 2,000만 원이고 실제 설계에 들어가는 금액만 52억 원임에도 실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사업의 진실성이 없어 보이고, 4. 확정금리나 원금보장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르는 위법 행위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언급된 부동산개발 사업계약서는 토지에 대한 매

도인,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은 일반 계약서 양식에 불과하여 계약하는 토지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고, 실제 설계 금액이 52억 원이 아니라 5억 2,000만 원이며, 기술용역도급계약서를 공개하고 있고, 이 업체의 영업행위가 유사수신행위가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21세기건설팅주식회사는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평창군과 협의하여 2008년 5월에 강원도청에서 사전심의를 받고 8월에 조건부 수용 상세제안서를 첨부하여 협의요청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간접투자 방식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3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머니위크> 피처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원 보도 「기획부동산 ‘뺨의 현장’ 르포」의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머니투데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달콤한 ‘고수익·수십배’의 치명적 유혹」, 「뜬금없는 장밋빛 속삭임」 제하의 기사 하단에 각각 위 항의 보도문을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머니위크 : 『기획부동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30일자 5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의 자동차 연료절감기 제품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제품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1
 청구명 : 정정·반론청구
 신청인 : (주)쓰리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KBS-1TV

종재부 : 서울제4종재부
 접수일 : 2008. 8. 20.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KBS-1TV :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2008년 7월 18일 22:00)

내 용 : ▷이영돈 PD :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한 톨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상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름 값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연료 절감기를 무료로 달아준다며 접근한 뒤 돈을 빼 가는 노상 판매상이 있습니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이 연료절감기의 경우 공짜라고 유혹해 우선 차에 달게 한 뒤 온갖 명목으로 돈을 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료절감기를 달고 난 후 기름을 아끼기는커녕 멀쩡하던 차가 고장나버린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돈 버리고 차 버리는 연료절감기의 실체 자동차 교통전문 이○○ PD가 낱알이 파헤칩니다. 매사 공평하고 진지한 우리의 이○○ PD 입니다.

내레이션 : 노상판매 연료절감기 그 실체를 파헤친다. 자동차 교통전문 이○○프로듀서

신청인회사가 제작한 CF 중 일부 방영 : 자동차 연비걱정 끝! 시키면 매연 고민도 끝! 이제 자동차 문화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이○○ PD : 달기만 하면 기름 값도 줄이고 매연도 없애 준다는 혁명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때문에 도리어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김○○ : 단속반 맹글로 해 가지고 옷을 똑같이 입은 사람이야 대여섯명 됐어, 젊은 사람이.

▷윤○○ : 환경청 매연단속이라던가 뭘 걸로 왔다면 이걸 뭐 다짜고짜 무조건 다는 거예요.

▷이○○ PD : 대여섯명의 젊은이들이 도로변에서 매연검사를 하더니 공짜라며 이 제품을 달아줬다고 합니다.

▷박○○ : 뭐뭐 무상이니 어찌니 돈도 뭐 안 받고 뭐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가 많더랬습니다.

▷최○○ : 한 20만 원 정도 되면은 마 돈 내버리는 요량하고 달러니 했거든요. 공짜라고 하길래 뭐 VIP 모신다고 3천대까지.

▷이○○ PD : 하지만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90만 원 가까운 돈이 카드나 통장에 서 빠져나갔습니다.

▷노○○ : 이 핸드폰에 정부 보조금이 89만 원 입금이 됐으니까 정부 보조금은 지네가 빼가야 된 다 이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핸드폰에는 전

혀 10원짜리 하나 입금이 안 됐고 카드대금은 다 빼 가버리고.

피해소비자와 불상 판매상과의 전화통화 내용

▷판매상 :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요 확인하고 전화 드린다고요.

▷피해소비자 : (얼굴 동영상과 함께) 확인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요.

▷판매상 :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요 확인하고 전화 드린다고요.

▷피해소비자 : 네. 확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판매상 :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사장님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PD : 환불은 쉽지 않습니다. 되레 차가 고장 나 자기 돈으로 수리까지 받은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박○○ : 짐을 싣고 서울 올라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버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교환하는데 50만 원주고 했어요마. 내가 그렇게 올라갔다 왔어요.

▷이○○ PD : 피해는 주로 지방국도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매일경제TV 중소기업아이디어 세상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영상자료 방영

신청인 회사 제품 개발자인 최○○ 회장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우수기업 선정 후 중소기업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기업 홍보차 중소기업아이디어 세상에 출연했을 당시의 방영 내용 중 일부 방영

▷이○○ PD : 그런데 이 제품은 획기적으로 연료를 줄여주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체 회장 : 연료를 자동차 주행 속도와 도로의 조건에 의해 다단계의 압력으로 순간순간 전환하여 공급하므로 종전 낭비되던 연료를 20%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시험연구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PD :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까지 받았다는 혁신적인 제품, 그런데 소비자들은 왜 피해를 호소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신청인 회사 카다록에 실린 사진자료 발췌 방영

(자막 : 꿈의 연료절감기, 과연 효과 있을까?)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한국방송공사는 2008년 7월 18일 22:00 방송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 업체의 ‘연료절감기’에 대해 ①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들을 보도하고, ② ‘연료소모량을 재는 측정기’를 달고 한 주행실험 및 ③ 전북대학교 동력발생실험실에서의 실험 등을 방영하면서 해당 제품이 ‘아무 효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꿈의 연료절감기로 신청인이 소비자들을 기만한 기기’라는 내용을, ④ “해당업체는 이○○ PD의 7차례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인터뷰를 못한 것은 해외출장 때문이었으며 만약 방송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을 각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보도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위 ‘○○○○’ 업체의 자동차 연료공급압력 자동조절장치에 대하여 보도하는 기회에 ‘○○○○’ 업체의 제품으로 인한 것인지, 같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및 대리점 영업사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보도되어, 보도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 업체의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고 대리점 영업사원의 과실에 의한 것도 아닐 수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② “연료소모량을 재는 측정기를 달고 한 주행 실험 보도”에 대하여, 방송에서 ‘연료소모량을 재는 측정기’로 소개한 기기는 ㉠ 단순히 시간당 일정한 연료 분사량값에 엔진 인젝터가 열려 있는 시간만을 계산하여 연료소모량을 표시하는 기기에 불과하여, 인젝터가 열리더라도 자동차의 주행속도나 도로의 조건에 따라 연료 분사량 자체가 달라지도록 고안된 ‘○○○○’ 업체의 자동차 연료공급압력 자동조절장치의 자동차에의 장착 후 연료 소모량을 잴 수 없는 기기일 뿐만아니라 ㉡ 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연료비절감, 차량 배출가스 등 공해탈출’ 효과를 선전하며 시중에서 ‘연료절감기’로 유통되고 있는 기기이므로, 동 기기에 의한 ‘○○○

’ 업체의 자동차 연료공급압력 자동조절장치의 연료절감효과 측정실험결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③ “전북대학교 동력발생실험실에서의 실험 보도”에 대하여, ‘○○○○’ 업체의 자동차 연료공급압력 자동조절장치는 각 자동차엔진 및 실험조건에 따라 그 효능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제품이 다르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등 그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동 실험에 의한 ‘○○○○’ 업체의 자동차 연료공급압력 자동조절장치의 연료절감효과 측정실험결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④ “인터뷰 요청 거절 관련” 보도에 대하여, 한국방송공사는 해당업체에 단지 두 차례 취재요청을 한 사실만이 있었고, 해당업체는 실제로 해외출장, 업무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한국방송공사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해당업체가 보내 온 내용증명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요청한 충분한 자료 제공과 함께 취재요청에 응하지 못함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해 보낸 서면이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1

사 건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쓰리엔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사장 이 병 순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조정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

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 및 별지 2.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일로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10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 1. 보도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의 연료공급 압력조절장치인 ‘매직캡슐’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신청인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방송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2008년 7월 18일 22:00부터 방영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꿈의 연료절감기, 과연 효과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이 사건 방송’).

① 이 사건 제품을 구입 및 장착하여 사용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제품의 연료절감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이 사건 제품을 잘못 장착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차량이 고장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제품과 MOSOMOTO사의 iDES(피신청인은 이를 연료소모량 측정기라고 소개하였다)를 자동차에 장착한 후 피신청인의 기자와 카메라맨이 탑승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있는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와 인천공항고속도를 거쳐 공방신도시까지의 도로를 시속 80km로 정속으로 주행한 결과 나온 연료소모량의 수치와 이 사건 제품을 제거하고 같은 도로를 같은 속도로 정속으로 주행한 결과 나온 연료소모량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한 경우 연료소모량이 약 1.5%가 절감되었으나 신청인이 광고하는 연료절감 효과 20% 이상과는 차이가 크다.

③ 교통흐름에 맞춰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주행의 경우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의도 순환도로를 3바퀴 돌면서 이 사건 제품을 제거하고 주행한 경우와 이를 장착하고 주행한 경우의 각 연료소모량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한 경우 오히려 연료소모량이 4.3% 증가되었다.

④ 전북대학교 동력발생실험실에서 같은 대학교수로 하여금 다양한 주행조건에서 이 사건 제품을 자동차에 장착하기 전과 장착한 후의 엔진출력과 연료소모량을 각 측정하는 실험을 하도록 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한 경우 연료소비가 줄지 않았다.

⑤ 위 두 가지 실험(위 ②, ③ 기재 각 도로주행 실험과 위 ④ 기재 동력발생실험실 실험) 모두에서 이 사건 제품의 연료절감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⑥ 신청인이 제시하는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증서는 당시 기술자에게 확인한 결과 배출가스에 대한 시험성적서일 뿐 연료절감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신청인이 한 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연구논문 역시 연료절감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며, 중국 국가자동차제품품질검측센터가 발행한 보고서는 피신청인이 위 센터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동차에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⑦ 신청인은 정부의 시험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⑧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7 차례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이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 것은 해외출장 때문이었으며, 만약 방송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위 보도가 나간 후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위 보도내용 중 ①, ②, ④, ⑧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당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위 ①, ⑥, ⑦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반론보도를 각 구하였다가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위 보도내용 중 ② 부분과 관련하여 정정보도를, 위 ①, ④, ⑥, ⑦, ⑧ 부분과 관련하여 반론보도를 각 구하고 있다.

가. 정정보도 부분

피신청인이 연료소모량 측정기라고 소개한 iDEs는 운전자가 엑셀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인젝터가 열리고 닫히는 정도가 바뀌게 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주행시 운전자로 하여금 인젝터를 열리고 닫히는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여 연료절감 효과를 거두게 하는 기기로서 시중에서 연료절감기로 유통되는 것일 뿐 연료소모량 측정기가 아니다. 반면에, 이 사건 제품은 자동차회사에서 생산·출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처럼 엑셀페달을 밟으면 항상 동일한 압력의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따라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압력을 자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젝터를 통해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의 양 자체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도록 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저감 및 연료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자동차 연료공급압력 자동조절장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면 인젝터로 분사되는 연료 분사량이 달라지므로 인젝터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만으로 연료소모량을 계산하는 iDES로는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연료소모량을 조절해서 엔진으로 공급하는 장치의 연료소모량을 측정할 수 없다. 결국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연료절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주행실험은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한 후의 연료절감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기기로 연료소모량을 측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행실험은 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 실험을 근거로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도한 것은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그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나. 반론보도 부분

(1) 위 ①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였다가 자동차가 고장나는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인 김○○와 윤○○는 2008년 2월 15일 SBS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당시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서도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인터뷰 당시에도 이 사건 제품을 자동차에서 탈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차량의

고장이 이 사건 제품을 잘못 장착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자동차가 고장나는 것은 자동차 자체의 결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신청인은 평소 판매업체가 영업사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의 판매시 장착 및 사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철저히 교육·관리해 왔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위 ① 부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차량이 고장난 것이 정비자격증이 없는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을 잘못 장착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그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고 계약체결을 거절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2. 반론보도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위 ④ 부분과 관련하여

연료절감 효과 실험은 각 자동차엔진 및 실험조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의 엔진은 실제 주행하는 자동차와 많은 차이가 있어 만일 엔진만 떼어 고정시킨 실험실 엔진으로 실험을 할 경우 그 실험에 알맞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동력발생실험실에서 한 실험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상황, 즉 자동차엔진 및 실험조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어서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위 실험을 근거로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은 그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2. 반론보도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3) 위 ⑥, ⑦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은 신청인 회사의 회장 최○○이 13년간 연구·개발 끝에 신청인이 제작·판매하기에 이른 것으로 관련 기술에 대하여 국내 3건의 발명특허와 1건의 실용신안등록이 획득된 바 있고, 북한 정부로부터 기술인정을 받아 북한에서 공장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작성한 자동차 연료압력 자동조절장치 성능평가 보고서에도 이 사건 제품이 연료탱크로 되돌아 오는 연료를 최소화하도록 착안된 것으로 매연의 저감 및 연비 향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기재되는 등 제품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연료와

배기가스에 관한 유동 해석에 대하여 논문(“기계식 연료공급장치의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까지 발표되어 한국자동차공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에도 수록되었으며,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으로도 이 사건 제품의 효과가 입증되었고, 중국 요녕성기계공업무역유한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연료절감 및 배기가스 저감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에서도 이 사건 제품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신청인의 위 ⑥, ⑦ 부분 보도는 이 사건 제품의 연료절감 효과가 공인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그 신뢰와 명예가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2. 반론보도문 제3항과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4) 위 ⑧ 부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8년 6월 말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취재협조 요청을 서면으로 받고 같은 달 30일 내용증명으로 답변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내어 이 사건 제품의 개발자인 최○○ 회장이 해외 출장으로 취재에 응할 수 없음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최○○이 귀국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하에 일정을 정하고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시험방식과 신청인이 제시하는 실제 도로주행 시험방식의 2가지 시험을 양측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뒤인 2008년 7월 1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취재협조 재요청을 서면으로 받고 같은 날 내용증명으로 답변서를 피신청인에게 보내어 당시 진행 중이던 중국 심천시 정부와의 중요한 계약이 체결 직전에 있어 그 협의 및 출국 준비 관계로 피신청인이 요청한 날 취재에 응하지 못함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관련 자료까지 충분히 보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는 2차례 취재요청을 한 사실만이 있고, 신청인은 실제로 해외출장, 회사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취재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이며, 신청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답변서는 피신청인이 요청한 충분한 자료제공과 함께 취재요청에 응하지 못함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이 취재요청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을 핑계대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방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

게 법적 제재를 경고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그 신뢰와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2. 반론보도문 제4항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신청에 대하여

(1) iDES가 연료소모량 측정기가 아닌지 여부

신청인이 제출한 소갑제1호증(iDEs 소개), 소갑제12호증(iDES Community 자유게시판)의 각 기재만으로는 iDEs가 연료소모량 측정기가 아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을제3호증(친환경 경제 운전 유도장치 iDES 평가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iDES는 연료소모량을 표시하는 기기로 보여진다.

나아가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신청인이 한 주행실험이 연료소모량 측정기가 아닌 기기로 연료소모량을 측정한 근본적인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실험의 조건이나 방법이 연료절감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행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iDES가 연료소모량 측정기가 아니라거나 피신청인의 주행실험의 조건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주행실험 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없다고 한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한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신청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없다는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보도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없다는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 즉,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이를 입증하고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발행의 품질확인용 증서(소갑제2호증, 이는 소갑제3호증의 내용의 일부이다), 한국기기유화시험

연구원 작성의 ‘자동차 연료압력 자동조절장치 성능평가’ (소갑제2호증), Car Solution 작성의 ‘car solution 연비성능시험보고서’ (소갑제4호증), 국민대학교산업기술대학원 자동차공학과 유화성이 석사학위논문으로 작성한 ‘대형디젤기관에서 연료공급장치 장착에 의한 기관성능 및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연구’ (소갑제5호증), 한국자동차공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에 실린 전형진 외 4인 공동 작성의 ‘기계식 연료공급장치의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 (소갑제13호증), 요녕성 절약검사소 작성의 ‘상품(Magic Capsule) 성능시험 보고서’ (소갑제1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자료들은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없다는 이 사건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것임을 근거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은 이유 없다.

① ‘자동차 연료압력 자동조절장치 성능평가’ (소갑제2, 3호증) : 이 보고서에는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기 전과 장착 후 부하검사, 엔진회전수, 엔진출력 등을 시험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은 연료를 인젝션펌프에 의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맥동을 흡수하고 미립화를 촉진시켜 분사압력에 요구되는 적정의 연료를 인젝터로 공급하면서 기존의 자동차에서 허용되고 있는 연료탱크로 되돌아오는 연료를 최소화하도록 착안하였고, 과잉 공급되는 연비에서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품은 일종의 배기가스 전처리 장치로서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와 함께 대기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되며, 특히 국내에서 늘어나는 노후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저감 및 연비 향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리라 기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이 시험의 검사항목으로 부하검사, 엔진회전수, 엔진출력만 언급되어 있을 뿐 연료절감의 정도가 검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기 전과 후 엔진출력은 거의 차이가 없으면서 장착 전에 비해 장착 후 매연 발생 수치가 급격히 감소

하였다는 결론만 있을 뿐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결론 부분에서 갑자기 ‘연비 향상’이 언급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함으로써 인하여 연비가 향상되는 근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 사건 보도내용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소속된 기술책임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단순한 시험성적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장은 그 발행의 증서(소갑제2호증) 첫머리에 ‘공인시험기관’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부 작성의 ‘자동차 연료 및 배출가스 절감장치 성능시험제도 안내’ (소을제11호증) 기재에 의하면 환경부가 인정하는 전문위원회관련기관에 위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국가에 의하여 공인된 검사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이 보고서는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거나 그 입증 정도가 부족하다.

② ‘car solution 연비성능시험보고서’ (소갑제4호증) : 이 시험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이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 실차 전문 시험기관인 car solution 소속의 실장과 팀장 등 2인이 충남 당진군 소재 석문방조제에서 대우 레간자에 이 사건 제품을 장착하기 전과 후 각 정속주행과 idle 상태에서 정속 연비시험, 가속 성능시험, 길들이기(Break-in)시 정속 연비시험을 한 결과를 기재하고 이에 국내대학교수 3인과 위 실장이 확인하여 작성한 것이고, 시험결과 시험자의 의견은 연비, 가속성능, 길들이기 모두에 있어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나, 마지막 부분인 시험방법 분석란에는 이 사건 제품의 가장 큰 효과는 연료탱크 내의 연료 유동에 따른 연료공급의 불안정을 개선하는 것인데 시험장비에 연료펌프가 장착되어 이 사건 장착 전·후와 관계없이 연료의 공급이 안정되기 때문에 개선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고, 추후에 시험을 할 경우에는 연료유량 측정장비의 연료라인을 짧게 하여 펌프 작동 없이 측정하여 개선 효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이 시험보고서가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환경부 작성의 '자동차 연료 및 배출가스 절감장치 성능시험제도 안내'(소을제11호증)에 의하면, 환경부 인정의 전문위원회관련 기관에 위 car solution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시험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국가에 의하여 공인된 검사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험보고서 또한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거나 그 입증 정도가 부족하다.

③ '대형디젤기관에서 연료공급장치 장착에 의한 기관성능 및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연구'(소갑제5호증) : 이 석사학위논문에는 이 논문이 이 사건 제품을 염두에 두거나 이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임을 지적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 이 논문은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④ '기계식 연료공급장치의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소갑제13호증) :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이 연구의 결론은 이 사건 제품의 기하학적 특징을 통해 나타난 유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료 분출구를 중시하므로 와류가 발생하여 중심축까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과 향후 실제 차량 실험 및 벤치 테스트를 통해 이러한 유동특성에 관련하여 연비향상 및 배기가스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연구는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연구의 공동저자 중에는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한 신청인 회사의 회장 최○○이 포함되어 있어 이 연구가 객관성을 가졌는지 의심이 가므로, 이 연구는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⑤ '상품(Magic Capsule) 성능시험보고서'(소갑제16호증) : 이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이 보고서는 중국 요녕성기계공업무역유한회사의 위탁을 받은 요녕성 절약검사소 소속 시험인원 3인이 심양 환성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로 주행실험을 하고 작성한 것으로, 실험 결과 이 사건 제품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고, 그 절감 정도는 한 차량은 18.06%, 다른 차량은 22.09%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요녕성 절약검사소가 중국국가가 공인한 자동차 연료절감 관련 시험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그 실험 방법이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제출한 중국 국가자동차제품 품질검사센터의 답변서(소을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연료절감 제품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임의의 국가 및 업계표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험이 적절한 시험기준이나 조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 이 보고서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품이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나. 반론보도 신청에 대하여

(1) 위 ① 부분에 관하여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반론보도를 허용할 수 없다(위 법률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 2, 4호).

김○○와 윤○○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인터뷰 당시에 이 사건 제품을 자동차에서 탈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의하면, 윤○○는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인터뷰 당시 이 사건 제품을 자동차에서 이미 떼내버린 상태였고, 김○○ 또한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인터뷰 당시 당초의 장착 위치가 아닌 화물칸에서 이 사건 제품을 꺼내어 취재 기자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방송에는 이 사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차량이 고장난 것이라는 내용은 없고, 단지 영업사원이 장착을 잘못하여 차량이 고장나게 이른 것이라는 것만 포함되어 있는데, 인터뷰에 응한 소비자들의 차량의 고장이 사건 제품을 잘못 장착한 것 이외에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한국소비자원장이 작성한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소을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이 2007년 1월 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신청인 회사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 것이 8건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차량이 고장난 원인이 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을 잘못 장착하였음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이 부분 반론보도로 구하는 내용 중 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판매업체나 영업사원에 대하여 철저히 교육·관리해 왔고, 인터뷰에 응한 소비자들의 차량의 고장이 이 사건 제품의 잘못 장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반론보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④ 부분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동력발생실험실에서 한 실험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상황, 즉 자동차엔진 및 실험조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어서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⑥, ⑦ 부분에 관하여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작성의 ‘자동차 연료압력 자동조절장치 성능평가’(소갑제3호증), Car solution 작성의 ‘car solution 연비성능시험보고서’(소갑제4호증), 한국자동차공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에 실린 전○○ 외 4인 공동 작성의 ‘기계식 연료공급장치의 유동특성에 관한 연구’(소갑제13호증), 국민대학교산업기술대학원 자동차공학과 유○○이 석사학위논문으로 작성한 ‘대형 디젤기관에서 연료공급장치 장착에 의한 기관성능 및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연구’(소갑제5호증), 요녕성 절약검사소 작성의 ‘상품(Magic Capsule) 성능시험보고서’(소갑제16호증)는 이 사건 제품의 연료절감 효과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신청

인이 구하는 이 부분 반론보도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반론보도 신청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위 ⑧ 부분에 관하여

반론보도를 구하기 위하여는 보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어야 한다(위 법률 제16조 제1항).

이 부분 방송내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으로 보도한 것일 뿐, 그 방송 취지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인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취재 요청을 고의로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을 핑계대고 신청인에게 불리한 방송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법적 제재를 경고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방송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과 동일하여 신청인의 이 부분 반론보도를 받아들일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08. 9. 19.

〈별 지1〉 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 지2〉 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신안군이 군수의 허락 하에 일부 출입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新安군(군수 박 우 량)

피신청인 : 인터넷전남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인터넷전남뉴스 : 『신안군, 일부 출입기자에 수백만 원 돈봉투 돌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2일자)

내 용 : 신안군이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7월말 갯벌축제를 앞두고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한사람당 20만 원 씩 총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돈 봉투는 신안군 박모 홍보계장이 갯벌축제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7월말 기자들을 직접 만나 건넸으며, 갯벌축제 광고를 해당기자 소속 신문에 게재해 주지 않는 대신 줬던 댓가성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돈은 기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무마성 금품이며, 담당공무원이 수십만 원도 아닌 수백만 원을 지출하면서 상급자의 승인없이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종결재권자인 신안군수의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선거법위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신안군 일부출입기자에 수백만 원 돈봉투 돌려...정정 보도

• 내 용 : 본지가 2008년 8월 12일자 보도한 『신안군, 일부 출입기자에 수백만 원 돈봉투 돌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신안군은 지난 7월말 갯벌축제를 앞두고 신안군 박모 홍보계장이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축제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대신 댓가성으로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리, 갯벌축제 이벤트사인 EK사가 신안군 홍보계장에게 부탁하여 지난 7월말 지방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최종결재권자인 신안군수의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내용은 추측과 달리 신안군수와 전혀 무관한 사실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7일 이내에 14일간 그 취지의 추후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무혐의 처분 취지의 보도문을 인터넷 전남뉴스 메인화면 톱기사 하단에 네 번째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추후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신안군, 일부 출입기자...)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미국 간병인 취업이민을 대행하는 신청인 회사가 병원이 아닌 인력 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있고, 이민수속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미 변호사협회에 등록도 되지 않은 등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지아이씨케이 (대표이사 유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 새 출발의 꿈에 부푼 이민신청자 울리는 알선업체를 고발한다」 프로그램 (2008년 7월 25일 22:00)

내 용 : (전략)

우리는 이민을 준비하다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고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어렵게 미국 취업이민을 계획 했다는 김씨한 이민업체에게 수속을 맡겼지만 일이 진행될수록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김지영(가명) : 완전 처음부터 이게 뭔가 다 각본에 짜여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게 완전 사기 당했구나, 이 생각이 팍팍 들었어요.

나레이션

김씨가 업체에 지불하기로한 수수료는 약 3,000만 원 그 중 약 900만 원을 이미 낸 상태에서 김씨는 이민 수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지영(가명) : 이 사람들 더 이상 이런 영업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중도에 포기하게) 됐지만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법이 있어요?

나레이션

이 업체와 이민 수속을 중단하려는 계약자는 김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시켜 준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민호(가명) : 저희는 분명히 ○○○○라는 대형 병원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인당 3천 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하는 건데

나레이션

이 이민업체의 홈페이지 이 곳에도 미국에 있는 한 건강관리 센터의 간병인으로 취업이민을 시켜 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강 관리 센터의 홈페이지까지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건강 관리 센터가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인 취업이민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자들을 더욱 믿게 만든건 미국 현지의 한국인 변호사 정씨, 미국 변호사와 함께 직접 이민수속을 진행한다는 말에 계약자들도 안심하고 맡겼다고 합니다. (중략)

나레이션

계약자들이 받은 안내문에도 이 회사 역시 건강관리센터와 같이 병원 의료시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우리는 업체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민업체 측 말과는 달리 이곳은 병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소개에 따르면 이 곳은 간병인뿐 아니라 특수시설, 학교 등의 다양한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회사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민수속을 담당한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물었습니다.

직접통화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저희는 그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을텐데요.

우리는 어떠한 정보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KBS :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안됩니다.

나레이션

우리는 또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라는 정씨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끝내 통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취재를 피하는 것일까 우리는 정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정씨가 활동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 사이트에서 정씨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색결과 정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던 건강 관리 센터는 어떨까 우리는 이곳에서 취업이민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건강관리센터 관계자 :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취업이민 청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물어봤었죠?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Golden state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방송은 KBS 1TV 2008년 7월 25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59회)이라는 프로에서 '무너진 이민의 꿈, 취업이민 피해'라는 제목으로 A업체가 소비자를 기망하고 이민의 꿈을 무너뜨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민 스폰서로 Golden State는 방송에 제보한 소비자의 취업이민 수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A업체의 스폰서이고, 소비자는 ISS(Integrated Support Solution, Inc)을 통해 취업이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소비

자들의 수속은 닐 스테인(Neil Stein)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가 수속을 담당하여 제보자들의 수속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프로그램의 제보자들과 신청인 회사 간 진행 중

인 민사소송 확정 결과,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밝혀질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후속 보도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후속보도 여부를 제외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두산주류가 생산하는 ‘처음처럼’ 소주에 사용되는 용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내용을 유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소주업계 ‘알칼리수 공방’ 법정으로』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7일 6면)

내 용 : 소주업계의 알칼리수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두산주류(대표 한○○)는 27일 소주 ‘처음처럼’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혐의로 자영업자 김모 씨와 모 주간지 백모 기자를 ‘신용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음처럼’을 생산,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모 씨가 법을 위반한 알칼리 용수를 사용해 제조 인·허가를 받아 유해한 소주를 제조,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고소에 이르렀다고 설명

했다. 주간지 백 기자의 경우 ‘전기 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이 아니다, 두산 처음처럼 불법 면허 의혹’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 두산그룹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켰다고 두산 측은 주장했다.

두산주류는 ‘처음처럼’의 용수 자체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샘플 개발허가를 받은 ‘먹는물’이 분명하고 이를 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용수이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씨가 독단적인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주장하는 ‘처음처럼’의 불법 제조면허와 관계기관과 유착, 부당한 시도 등도 무도 허위사실이라고 두산 측은 반박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두산주류, ‘처음처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주간지 백모 기자·김모 씨 고소 기사에 대한 반론

- 내 용 : 머니투데이는 지난 3월 27일자 사회면에 “소주업계 알칼리용수 공방, 결국 법정으로”라는 제하에 부제목 <두산주류, ‘처음처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주간지 백모 기자·김모 씨 고소>라는 기사에서, (1) 두산주류(대표 한○○)는 26일 소주 ‘처음처럼’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혐의로 자영업자 김모 씨와 모 주간지 백모 기자를 ‘신용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에 의거해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 '처음처럼'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모 씨가 법을 위반한 알칼리 용수를 이용해 제조인허가를 받아 유해한 소주를 제조, 판매한다는 허위내용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히 훼손함에 따라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2) 두산주류는 '처음처럼'의 용수 자체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 샘플개발허가를 받은 '먹는물'이 분명하고 이를 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용수이기 때문에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모 씨가 독단적인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모 씨가 주장하고 있는 '처음처럼'의 불법제조면허와 관계기관과의 유착이나 부당한 시도 등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두산 측은 반박했다. 라고 일반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및 국제청 기술연구소 등의 회신문을 근거로 두산을 서울지방 검찰청에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또 김 씨는 2008년 8월 18일자로 두산의 <처음처럼>소주를 서울지방법원에 <불법면허 취득 제품>으로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하여 8월 29일에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3월 27일자 '소주 업계 알칼리용수 공방, 결국 법정으로' 제하의 기사와 관련, 김모 씨 역시 두산주류를 서울지검에 무고 등으로 맞고 소하였고 서울지방법원에 '처음처럼' 소주의 판매 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머니투데이 사회면에 2008년 9월 12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머니투데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관련 취재·보도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입장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반론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머니투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9일자 2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대통령의 조카·측근 등이 근무하고 있는 맥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인수 주체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인천공항공사 지분인수 유력 맥쿼리그룹 관계·계열사 이대통령 조카·측근 근무』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0일자 2면)

내 용 : 이상득 의원 아들 ○○씨 자산운용사 대표 맡아

정부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력한 지분 인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맥쿼리 금융그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

척과 측근 인사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자산운용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아들인 이○○ 씨는 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가 맥쿼리IMM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송○○ 씨도 맥쿼리 금융그룹 계열인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송 이사는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체류할 당시 송 이사 집에서 한 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진행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장인 현○○ 고려대 교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맥쿼리 금융그룹은 정부 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인수 유력 기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략)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처음부터 맥쿼리 금융그룹을 염두에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맥쿼리 인천공항 지분매수 유력”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0일자 종합면에 “인천공항공사 지분인수 유력 맥쿼리그룹 관계·계열사李大통령 조카·측근 근무”라는 제목으로 “인천공항의 유력한 인수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맥쿼리 금융그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맥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 지분인수 유력기업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0일자 종합면에 「인천공항공사 지분인수 유력 맥쿼리그룹 관계·계열사李大통령 조카·측근 근무」라는 제목으로 “인천공항의 유력한 인수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맥쿼리 금융그룹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인사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맥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 지분인수 유력기업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경향신문>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경향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정부가 맥쿼리 그룹에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영평가점수를 낮게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겨레21 :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8일자 14, 15면)

내 용 :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포함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공항 민영화의 과실을 국민이 아니라 특정 외국 기업과 특정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기업 평가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민영화 천국 미국에서도 국제공항은 국영

정부는 8월11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도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됐다. 정부는 세계적인 전문 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15%)를 포함해 지분의 49%를 매각할 방침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세계적 허브공항이 되려면 전문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배경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보통 민영화는 수익이 낮음에도 과도한 인력으로 방만 경영을 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수익성 △인력구조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민영화할 경우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수익성의 경우,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이 47.4%에 이른다. 지난해는 매출 9,714억 원을 올려 영업이익이 4,606억 원, 당기순이익이 2,701억 원에 이르렀다. 인력구조를 따져보면 더욱 의아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인력의 87%에 이르는 6천여 명을 38개 기업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매출이 1조 원에 이르지만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869명에 그친다. 경쟁력을 놓고 봐도 그렇다. 인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회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다.

인천공항의 짝짤한 매력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쪽은 인천공항공사 개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미국은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항만공사 등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개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내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봐서도 공항 민영화는 생뚱맞다. 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조차 국제공항은 국영이다. 민영화한 공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여객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민영화한 대표적인 공항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다. 시드니 공항은 2002년, 히드로 공항은 2006년 민영화됐는데 여객 이용료를 각각 6~7배, 4~5배 올렸다.

게다가 서비스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 이듬해인 2007년 영국의 항공 관련 컨설팅 기관 ‘스카이트랙스’(Skytrax)의 서비스 평가에서 45위에서 103위로 떨어졌다.

심지어 항공업계에서도 민영화에 반대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기업들이 반대하는 셈이다. 한 항공사 인사는 “항공사도 공항 민영화에 불만이다. 공항이 민영화될 경우 공항 사용료는 물론 사무실 이용료, 카운터 사용료 등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항공사는 그 비용을 요금 인상으로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적에 견줘 평가점수 너무 낮게 나와

그렇다면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전문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전문 공항 운영사가 없다. 결국 외국 기업이 대상이다. 민영화한 시드니 공항에 투자한 곳은 오스트레일리아계 투자은행인 맥쿼리 금융그룹이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에 나설 ‘0순위’로 꼽히는 곳도 맥쿼리다. 이미 맥쿼리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 투자했다. 맥쿼리는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1,550억 원의 이자 및 배당수익과 13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정부도 맥쿼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8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강만수 장관이 ‘호

주 맥쿼리(시드니) 공항과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시드니 공항은 공항 주차료를 올리고 무료 셔틀버스를 유료화해 수익을 내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법인세 782억 원, 배당금 362억 원 등 모두 1,144억 원을 정부에 넘겨줬다. 공항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수 기업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꿀꺽’ 하게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항에서 나오는 수익이 해외 기업에 배당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처럼 ‘인천공항공사 매각 시나리오’도 나돌고 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평가를 낮춰 공기업 매각 대상에 올리고 외국자본인 맥쿼리로 지분을 넘긴다는 것이 뼈대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과 친척 등이 맥쿼리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 때문에 눈길을 끈다.

현재로선 이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올해 3월부터 진행된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공기업 14개 가운데 12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인천공항공사 실적에 견줘 평가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 의외였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기업 특위에서 인천공항공사 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납득할 만한 평가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관료조차 평가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에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잣대가 적용됐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2006년과 견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지표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에는 77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지표에 인건비 인상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포함됐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장을 맡은 현○○ 고려대 겸임교수는 “공기업들이 참여정부 임기 말을 틈타 임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급여를 올리고 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경영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 교수는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LECG의 송○○ 한국대표다. 송 대표는 세

계은행에서 관료로 일한 컨설턴트이자 금융계의 엘리트로, 유명 아나운서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인데, 지난 1990년대 말 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머물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여의도 국제 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보험그룹 AIG의 외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송 대표는 AIG 쪽과 협상을 주도한 일도 있다.

골드만삭스와 맥쿼리의 관계

그런데 송 대표는 바로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맥쿼리 계열로, 주로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규모 투자를 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자본이다. 현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한데,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맥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 씨도 맥쿼리와 인연이 있다. 그는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로 있던 중 골드만삭스가 맥쿼리 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 중이다.

홍희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맥쿼리 자본, 국내 관료집단이 치밀하게 준비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는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순식간에 팔아치워 수조 원의 국부가 유출됐다.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제2의 론스타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 보도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주간지는 지난 8월 18일자 제724호 사회면에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공기업 매각대상에 올리고, 인천공항을 맥쿼리 금융그룹에 넘기는 것이 매각시나리오의 뼈대”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공항 경영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맥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 지분인수 유력기업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 제724호 14~15쪽 「인천공항공사,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인천공항공사에 적용된 2006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2007년의 경영평가 지표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 경영평가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맥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 지분인수 유력기업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한겨레21>의

「독자와 함께」 코너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21>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6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21>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하며, 포털사이트에 위 보도문을 송고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9일자 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의 단식으로 천성산 터널공사가 지연되어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일보 : 『지표보다 현장 챙겨라. 립서비스 경제는 이제 그만』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5일자 E1면)

내 용 : (전략) 2005년 2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환경을 훼손한다며 공사를 반대하던 지율 스님의 단식이 100일을 넘어서면서다. 공사는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그 사이 적지않은 세금이 낭비됐다. 새만금 간척지

와 사패산 터널, 계룡산 관통도로, 경인운하도 비슷하게 세금을 축낸 사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들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이 4조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김○○ 연세대 교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한번 착공하면 좋은 싫든 끝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업 평가와 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25일자 사회면에 『지

표보다 현장 챙겨라』라는 제하의 기사의 4항-“합의없이 우왕좌왕 논란에 끌려다니다 사업 지연, 수조 원 날리지 마세요”라는 소제목으로 천성산 문제를 예시하며 “2005년 2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환경을 훼손한다며 공사를 반대하던 지울 스님의 단식이 100일을 넘어서면서다. 공사는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그사이 적지 않은 세금이 낭비됐다. 새만금 간척지와 사패산 터널, 계룡산 관통도로, 경인운하도 비슷하게 세금을 축낸 사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들 5개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이 4조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 기간 중 공사는 터널발파만 3개월 중지 되었으며 실질적인 손실은 145억으로 현재 천성산 공사는 예상보다 7개월 정도 앞당겨졌으며 천성산 문제로 인한 공기지연은 없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8년 2월 25일자 경제1면 『지표보다 현장 챙겨라, ‘립서비스 경제’는 이제 그

만』 제하의 기사 관련, 천성산 터널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10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시공업체가 입은 직접적인 손실액은 145억 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29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제목 양식에 따라 보도하되,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oins.com)에 조정대상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조정대상기사의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정보과 형사인 신청인이 승진을 위해 특정 종교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5.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기사 잘 봤다, 문정현 신부는 어디 있나”』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2일자

사회면)

내 용 : 사진설명

▲촛불집회 관련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 엠네스티가 파견한 노마 강 무이코 씨가 4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사법국회’를 지켜본 뒤 단식 농성중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찾아 문정현 신부와 얘기를 나눈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정보과 형사가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인사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 종교담당 형사’라고 신

분을 밝힌 최아무개 경위는 22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난 21일자에 게재된 ‘촛불사제 전종훈 신부의 원치 않은 안식년’ 제하의 기사를 거론하면서 “기사 잘 봤다”며 “문정현 신부의 발언이 나오던데 직접 통화하고 쓰신 것이냐”고 물었다.

“문 신부 어디 계시냐... 승진 한번 해보려고”

기자가 ‘경찰이 직접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반문하자 최 경위는 “문 신부가 건강 문제 때문에 최근 일본에 가 계신 걸로 아는데, 일본까지 직접 전화연결을 하신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또 전북 관내에 오셨는지, 최근 군산에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 계신 건지 파악하기 위해 그런다”고 말했다.

“문정현 신부가 전북지역에 있는 해외에 있든, 경찰이 무슨 상관이나”고 재차 따져물으니 “신부님과 잘 아는 사이”라며 “천주교 신자로서 문 신부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게 있어 전화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경찰의 이같은 행위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따져물자 “평소 우리 지역에서는 기자들과 보도내용을 서로 얘기하며 묻는 등 격의없이 지내고 있다”며 “편하게 생각하고 전화했는데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또 말을 뒤집었다.

그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관 20년 인생에서 승진 한 번 해보려고 이러는 것”이라며 “인간적으로 기사화는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신부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경찰 내에서의 승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기사 잘 봤다, 문정현 신부는 어디 있나”경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사는 8월 22일자에 『기사 잘 봤다, 문정현 신부는 어디있나』(이하줄임) 제목으로 정보과 근무 최 경위가 문정현 신부 근황을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특정인사의 동향을 파악, 민간인 사찰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경위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건강이 안좋아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 문 신부님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오자 반가운 마음에 기자에게 전화하여 기사내용에 대해 통화한 것일 뿐 특정 인사 동향 파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비즈니스타워 18층

대표이사 오 연 호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8년 9월 25일 09시부터 9월 26일 0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 인터넷 홈페이지(www.ohmynews.com) 초기화면 주요뉴스 목록 중 상위 20번째 이내에 통상적인 주요뉴스의 편집방식으로 보도하되, 주요뉴스를 클릭하면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제 목 : 경찰의 문정현 신부 사찰 관련 정정

• 내 용 : 본지 2008년 8월 22일 「“기사 잘 봤다, 문정현 신부는 어디 있나” 제하의 기사에서 전북경찰청 정보과 최모 경위가 본지 기자에게 전화해 문정현 신부의 소재 및 안부를 물은 것은 경찰의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이는 최 경위의 승진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최 경위는, 천주교신자(영세 82년 12월 22일)로서 문 신부의 안부가 궁금했을 뿐 사찰 의도는 없었으며, 승진을 위해 문 신부의 안부를 물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도가 이뤄질

경우 승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해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

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오마이뉴스 : 『[정정]경찰의 문정현 신부 사찰 의혹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5일 사회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재개발조합이 자신들이 소유한 땅의 가치는 높게 평가한 반면, 시행사에 땅을 팔지 않은 조합원 소유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앙일보 :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계획 취소』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8일자 2면)

내 용 : (전략)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대의원회 의결만을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은 문제가 제기된 뒤 총회를 열어 개발계획을 재의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시개발법상 같은 의결 사안이라도 행정청 인가를 새로 받은 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양시가 내린 환지 계획(기존의 땅을 새로 구획된 땅으로 교환하는 계획) 인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시 계획이 무효인 이상 후속 행위인 환지 계획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 사업 승인, 분양 승인 절차도 사실상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덕이지구 개발 사업이 즉시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청은 “향소했으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고 측 선○○ 변호사는 “사업 승인 취소에 따른 분양 취소, 입주 지연 등의 손해를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청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시행사인 D사 등이 환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땅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시행사에 땅을 팔지 않은 조합원 소유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D사를 비롯해 덕이지구 내 땅의 80%가량을 갖고 있는 시행사 3곳이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다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소송을 낸 라씨는 “내가 소유한 땅에 대한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게 나와 시청에 의견서를 냈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인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지 계획도 3필지 토지에 대해 2필지 환지를 교부해 환지 등기를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계획 취소에 관

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8월 8일자 종합면에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계획 취소”라는 제목으로 덕이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나왔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시행사인 D사 등이 환지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땅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시행사에 땅을 팔지 않는 조합원 소유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행사인 D사 등이 환지계획을 추진하지 않았음은 물론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자신들이 보유한 땅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시행사에 땅을 팔지 않는 조합원 소유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계획 관련 반론 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8년 8월 8일자 종합면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계획 취소”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

합)은 환지계획을 추진한 것은 시행사 D사가 아니라 조합이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 조합이 보유한 땅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시행사에 땅을 팔지 않는 조합원 소유분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1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면에 게재하되, 중앙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조인스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조합이 일산 덕이지구 개발과정에서 고양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5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고양시, 덕이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9일자 20면)

내 용 :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 덕이지구 택지개

발 과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합에 사업을 인가해 주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나서 고양시의 택지개발 인가 과정과 특혜 의혹을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영룡)는 환지(換地) 계획에 반대하는 일산 덕이지구 택지개발 예정지 토지 소유주 라모 씨 등이 고양시(시장 강현석·56)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덕이지구 개발사업계획을 취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공사가 한창 중인 택지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 판결에서도 취소될 경우 공사 중단 또는 지연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 발생 등 일파만파의

과장이 예상된다.

고양시의 위법 행위

고양시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07년 6월 5일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만든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인가를 내준 것.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시 계획을 세울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실시 계획은 이후 2007년 10월 2일 임시 조합원 총회의 주인을 받아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지만 법원은 총회의 사후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시 계획을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만들었으므로 인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며 “피고의 주장대로 사후 주인을 거쳐 하자가 보완됐더라도 주인은 소송이 제기된 2007년 9월 3일보다 뒤인 10월 2일에 이뤄졌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고양시는 1심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항소했다. 고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실시 계획은 나중에 총회의 주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게 고양시 입장”이라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택지지구 개발계획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고양시, 덕이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8월 9일자 20면에 『고양시, 덕이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을 보도하면서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 덕이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합에 사업을 인가해 주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나서 고양시의 택지개발 인가과정과 특혜의혹을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세울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분양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조합이 고양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세울 때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실시계획인가처분과 주택사업계획 승인처분은 그 근거법령과 요건 및 법률효과가 전혀 달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더라도 주택사업계획 승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법원의 판결은 실시계획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인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거나 새롭게 갱신하면 아파트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고양시 덕이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8년 8월 9일 20면 “고양시, 덕이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 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고양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인가처분이 부적법하다는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면 아파트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사업계획 승인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1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2면에 게재하되, 한국경제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한국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한국경제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1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법원이 조합원 총회 의결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덕이지구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0

청 구 명 : 정정보도

신 청 인 :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2008년 8월 8일 11:25)

내 용 :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일산 덕이지구 내 토지 소유주 라모 씨 등 3명이 “조합원 총회 없이 대의원 회만 거쳐 개발사업을 추진해 위법하다”며 고양시장과 조합을 상대로 낸 개발계획 등 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와 조합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으며, 확정 판결이 나올때까지 덕이지구 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의정부지법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 취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사는 지난 2008년 8월 8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

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경기도 고양시 덕이지구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8월 8일 의정부지법이 고양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고양시가 내린 실시계획 등 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으며,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12일까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오전 10시 40분 <SBS 뉴스와 생활경제 1부> 및 오후 2시 <@2시뉴스>(dmb 방송) 프로그램의 말미에 방송하되, 진행자가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며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뉴스와 생활경제」 프로그램 (2008년 9월 11일 10:5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자신의 집무실 IP로 닉네임을 이용하여 자신을 옹호하는 발언을 게재 하였으며, 다음 아고라에 5월 한달동안 8백여개의 글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심 재 철

피신청인 : 창작과비평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창작과비평 : 『이것이 아고라다』 제하의 기사 (2008
년 가을호 94면~101면)

내 용 : (전략)

여러분은 ‘심스마일’을 아시는가? 이제 ‘심스마일’의 18원짜리 위선을 해부해보겠다.

얼마 전 심모라는 한나라당 의원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스테이크를 해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네티즌들은 즉각 심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때 ‘다사랑’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은 바로 IP주소 추적을 시작했으며, 이 IP가 심의원 집무실의 것임이 밝혀졌다.

물론 심의원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적어도 의원실의 보좌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들의 뻔뻔함에 네티즌은 바로 ‘아고라 CSI(과학 수사대)’를 가동했다. 네티즌은 드러난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심스마일’은 5월 한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대는 과거로 거슬러올라가 수사력을 가동했다. 1980년 치욕의 서울역 회군을 결정하여 민주화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그의 화려한 족적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8월 15일 10만 군중이 서울역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철수했고, 그후의 독재탄압은 80년 봄을 잔혹하게 짓밟았다.

네티즌은 분노했다. 곧바로 심씨 칭찬하기 아이디어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 그중에 채택된 것이 ‘18원 후원금’이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심씨에게 ‘18원’을 후원했다.(강하게 발음해보시라.)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영수증 발급을 반드시 등기로 요구하자는 의견도 올라왔다. 정치인의 후원금은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영수증과 발송비를 등기로 처리할 경우 건당 약 1,800원이 드는 것이다. 수만건 이상의 18원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심씨의 참으로 딱한 처지가 선히 그려진다. (중략)

하지만 아고라는 지금 위기상태다. 아고라에서 생산되고 아고라에 의해 창출된 의제가 현시국의 급소를 날카롭게 찌르자, 모든 부당한 권력의 힘과 억압이 아고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심스마일’을 비롯한 수많은 소위 알바들이 의도적으로 아고라의 물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 명쾌하다. 이명박과 조중동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좌파며 빨갱이이며 반미라는 것이다. 도식화된 메카니즘의 전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심재철 의원에 대한 기고문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책자는 지난 가을호에서 심재철 의원과 관련한 독자 기고문에서 ‘다사랑’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심재철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IP추적 결과 해당 IP가 심의원 집무실의 것임이 밝혀졌다는 내용과, 심재철 의원이 5월 한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다사랑’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은 심재철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적이 없으며, 해당 IP 또한 심의원 집무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의 아이디인 ‘스마일’은 네이버 닉네임으로, 다음 아고라의 악성 누리꾼 ‘스마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단지 닉네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으로 유포된 허위사실입니다.

5,0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IP 추적결과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경찰의 방향지시등 집중 단속에 관해 보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신청인의 초상과 인터뷰 내용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신 ○ ○
피신청인 : 부산KBS-1TV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7.
처리결과 : 취 하

차로에 차량이 줄지어 서있지만 단 한대도 방향지시등을 켜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에게서도 이른바 깜빡이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녹취 (개인택시 운전기사) : “좌회전 신호 켜졌었는데, 저기서 켜었는데...승객하고 얘기하다보니 신호가 빠졌습니다”

▷기자 : 방향지시등 위반은 어느샌가 상당수 운전자들에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녹취 (방향지시등 위반 운전자) : “좌회전 차로에 들어왔길래, 당연히 좌회전 신호를 안켰어요”

보도내용

부산KBS-1TV : 「뉴스9」 프로그램 (2008년 8월 21일 21:00)

내 용 : ▷앵커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운전하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부산에는 난폭 운전자들이 많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경찰이 방향지시등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기자 : 부산 도심의 상습 정체 구간... 좌회전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후 손해배상

〈500,000원 지급〉 □

신청인이 국제결혼을 알선하면서 신랑측의 개인정보를 외국인 신부에게 잘못 제공하여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1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전주KBS-1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주KBS-1TV : 「9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8월 22일 21:30)

내 용 : 국제 결혼, 알선업체만 믿었다간 ‘큰코’

국제결혼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가정불화로 파탄을 맞는 가정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소개비를 받기 위해 결혼 당사자들에게 상대의 신분이나 경제적 상황을 속이는 일이 많아 파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무 살 아래인 방글라데시인 아내와 결혼한 49살 최모 씨. 하지만 결혼 넉 달 만에 최씨의 아내는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인 최씨는 결혼정보업체가 아내에게 자신을 부유한 사업가로 속였던 게 화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모 씨 / 군산시 소룡동 : “결혼정보 회사에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난해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가 최근 파경을 맞은 중국인 45살 단모 씨도 결혼 정보업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녹취〉 단모 씨 / 중국인 : “중국에서 들었을 때는 남편이 재산도 많고 그래서 생활이 괜찮다고 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얘기하고 많이 달랐어요.”

국제결혼에 실패한 당사자들이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결혼을 성사시켜 소개비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결혼정보업체의 태도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이 성사되면 결혼정보업체들은 보통 신랑 쪽에서 천만 원 안팎의 소개비를 받습니다.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는 소개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정보업체들은 결혼 상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결혼정보업체 직원 : “(최씨가)사는 집 모습은 난리에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아파

트에 살고 있고 애가 둘이고 본인이 한 달에 2백 50에서 3백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했어요. 그냥.”

문제는 이런 업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22일 저녁 9시30분 「9시뉴스」 프로그램 중 비뚤어진 상흔 제목으로 결혼정보업체가 결혼당사자들에게 상대의 신분이나 경제적 상황을 속이는 일이 많아 파경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결과 보도내용중 최모 씨의 경우 나이가 49세가 아닌 41세로 신부와의 나이 차이도 20년이 아닌 12년이며, 최씨의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남편 최씨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며 신부를 데리고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신청을 해놓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정보업체가 최씨 아내에게 자신을 부유한 사업가로 속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지에서 현지직원들 및 그 아내와 최씨 면전에서 최씨의 말대로 그의 직업이 운전이며 년수입 및 자녀가 둘 있다는 것 까지 사실대로 가감없이 그 아내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보도내용 중 중국여성의 피해사례 또한 해당 결혼정보업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보도문 : 8월 22일자 “익산시 인화동 모 결혼정보업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방글라데시 신부에게 최모 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도내용 중 “중국여성의 피해사례는 해당 업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전주KBS-1TV 2008년 9월 5일 『9시 뉴스』 프로그램 시간에 위 보도문을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하며, 배경 화면은 '전주시 우아동 소재의 이주여성쉼터' 그림을 사용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KBS-1TV : 「9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9월 5일 21: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KBS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집단구타를 당했음에도 보수단체회원과 서로 주먹다툼을 벌이다 병원에 실려갔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촛불 900명’, ‘보수 20명’에 “죽이겠다” 협박』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4일자 A10면)

내 용 : 촛불시위대 900여명(경찰 추산)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을 둘러싸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했다. 위협을 느낀 보수단체 회원들은 경찰의 보호속에 텐트를 걷고 철수했다. (중략)

한편, 이날 오후 보수단체 회원과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로 주먹다툼을 벌여, 촛불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촛불 시위대의 보수단체 협박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4일자 10면에 〈‘촛불 900명’, ‘보수 20명’에 “죽이겠다” 협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3일 KBS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과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로 주먹다툼을 벌여, 촛불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여성은 촛불 시위대가 KBS 앞에 도착하기 전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일방적인 집단 구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6월 24일자 10면 KBS 앞 폭력사태 기사와 관련, 주먹다툼 끝에 병원에 실려갔다고 보도된 박모 씨(女)는 촛불시위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1인 시위를 하다가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9월 10일까지 조선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단 제목의 글자 수를 줄일 수는 없음),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원의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5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부산대학교가 면허가 없거나 자격 미달 업체에 첨단강의실 구축사업을 발주하고 주요 장비를 최고 3배나 비싸게 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산대학교 (총장 김 인 세)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합뉴스 : (1) 『부산대, 첨단강의실 구축사업 특혜의
혹』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3일 15:50)

내 용 : (부산=연합뉴스) 부산대가 2006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수십억 원을 들여 교내 225개 강
의실을 영상강의가 가능한 첨단강의실로 개조하면
서 부적격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가 계약한 것보다 저가의 제품을 설
치했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부산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2006년 1월 교내 강의실 115곳을
첨단강의실로 개조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 같은
해 5월 (주)이즈커뮤니케이션즈와 11억 7천여만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당시 이 업체는 첨단강의실 구축에 필요
한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즈 측은 해당 면허를 부산대 첨단강의실 구축사
업이 완전히 끝난 2007년 12월에 취득했다. 부산대
는 또 입찰공고에 ‘평가항목 가운데 한 항목이라
도 누락된 경우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고 밝혔
으나 이즈 측이 ‘재무구조 경영상태’ 평가항목에
서 0점을 받았는데도 입찰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
(후략)

(2) 『부산대, 첨단강의실 구축업체 ‘감싸기’ 급
급』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3일 16:57)

내 용 : (부산=연합뉴스) 부산대가 2년간에 걸쳐
수십억 원을 들여 교내 225개 강의실을 영상강의
가 가능한 첨단강의실로 개조하면서 관련 면허도
없는 업체가 사업을 따내 계약보다 저가의 제품을
설치한 의혹이 일고 있는데도 정작 부산대는 해당
업체를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대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3차례
에 걸쳐 첨단강의실 225곳을 구축하면서 정보통신
공사 면허가 없는 (주)이즈커뮤니케이션즈에 공사
를 맡겼다. (중략)

부산대 측은 또 이즈 측이 당초 계약과 다른 저
가의 제품을 상당수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
데도 “계약한 제품이 단종되거나 문제가 있어 더
좋은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이즈 측과 같은 목소
리를 내고 있다. (후략)

(3) 『부산대, 첨단강의실 장비 최고 3배 비싸게
구입』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7일 09:00)

내 용 : (부산=연합뉴스) 부산대가 3차례에 걸쳐
교내 강의실 225곳을 영상강의가 가능한 첨단강의
실로 개조하면서 1차 때 설치했던 것과 같은 장비
를 2, 3차 때 최고 3배나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밝
혀져 구구한 억측이 나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영
상장비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급격하게 떨
어지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게 상식이라고 관련 업
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첨단강의실 구축사업을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
가 모두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의혹이 제기되

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① 연합뉴스는 2008년 7월 23일자 '부산대, 첨단 강의실 구축사업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대는 또 입찰공고에 '평가항목 가운데 한 항목이라도 누락된 경우 부적격 업체로 판정한다' 라고 밝혔으나 이즈 측이 '재무구조 경영상태' 평가항목에서 0점을 받았는데도 입찰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라며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 확인 결과, 낙찰사인 (주)이즈커뮤니케이션즈 외 1개 입찰업체는 중소기업체로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를 증명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없는 업체임을 밝히고,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평가항목을 누락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이즈 외 1개업체는 재무구조 경영상태 평가항목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0점을 받았으며, 「평가항목의 누락사항이 아니므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업체로 간주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은 재무구조 및 재정상태 등에 관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평가등급확인서 소지 여부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 등 일반 해정법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연합뉴스는 2008년 7월 23일자 '부산대, 첨단 강의실 구축업체 '갸짜기' 급급' 제하의 기사에서 「부산대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첨단강의실 225곳을 구축하면서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없는 (주)이즈커뮤니케이션즈에 공사를 맡겼다.」, 2008년 7월 27일자 기사에서 「첨단강의실 구축 사업을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가 모두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혜의혹...」 이라고 제시하며 관련 면허가 없는 회사에 공사를 맡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 확인 결과, 첨단강의실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 통신설비, 인테리어 설비, 무선랜공사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입찰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필요한 통신설비부문은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담당함으로써 관련 면허가 없는 회사에 공사를 맡긴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

졌다.

③ 연합뉴스는 또 「부산대 측은 이즈 측이 당초 계약과 다른 저가의 제품을 상당수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계약한 제품이 단종되거나 문제가 있어 더 좋은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이즈 측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저가물품을 상당수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실 확인 결과, 당초 계약제품은 강의실 구조상 엘리베이션 장착이 불가능하였거나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의 사유로 상위 기종으로 교체됨으로써, 당초 계약금보다 1억 6천여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업체가 부담기로 약약을 받고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저가의 제품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연합뉴스는 2008년 7월 27일자 '부산대, 첨단 강의실 장비 최고 3배 비싸게 구입' 제하 기사에서 「부산대가 3차례에 걸쳐 교내 강의실 225곳을 영상강의가 가능한 첨단강의실로 개조하면서 1차 때 설치했던 것과 같은 장비를 2, 3차 때 최고 3배나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구구한 억측이 나오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실 확인 결과, 첨단강의실 1차 구축사업은 제안공모를 통한 총액입찰로서 전자교탁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무료로 제공받는 등 계약금액 이외의 추가비용 발생분은 계약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2차, 3차 설치 시의 교실당 설치비용이 불합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총액입찰시에는 업체별로 전략품목을 정하여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총액을 낮춰 낙찰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제안공모를 통한 총액입찰방식의 구성품목별 단가를 개별입찰방식의 품목별 단가와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대는 1차 첨단강의실은 제안서 공모를 통한 모델강의실 구축으로 실제 강의실 사용자인 교수, 학생 등의 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2, 3차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7개 품목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2차는 후지테크, 3차는 (주)이즈커뮤니케이션즈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LCD 프로젝트 외 6개 영상제품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달청은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요기관에 물품을 조달해주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합법성과 안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이 확보되는 조달청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의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반박과 입장 등을 최소 1회 이상 보도하되, 제목 「부산대, “첨단 강의실 구축 의혹 사실과 달라”」로 하며, 4가지 쟁점(입찰가격, 면허, 저가 제품 구매, 고가 구입)에 대한 반론이 충분히 실리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보도를 하면서 보도문 내 또는 보도일자에 인접하여 부산대의 입장과 반박을 다시 반박하거나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부산대는 해당 입장이나 반박 부분에서 입찰 탈락 업체 등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합뉴스’ 부산 지역 뉴스란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이상 위 항의 보도문을 게재(제목의 글자 수를 줄일 수 없으며, 제목과 본문은 단락이 구별되어야 하며 각 단락을 1칸씩 띄워 구별할 것)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한다. 또한 연합뉴스가 기사를 전송하는 각종 포털 및 매체 등에도 위 항의 보도문을 전송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여기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를 검색시 나오는 조정대상기사 3개 기사를 모두 삭제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부산대가 앞으로 계획 중인 사업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 등에 대한 부산대 총장의 인터뷰를 보도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량과 내용은 부산대와 상호 협의토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 및 담당 기자 등 소속 임직

원에게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부산대 “첨단강의실 구축 의혹,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9일 00:00)

내 용 : 연합뉴스의 7월 23일「부산대, 첨단강의실 구축사업 특혜 의혹」, 「부산대, 첨단강의실 구축업체 ‘감싸기’ 급급」, 7월 27일「부산대, 첨단강의실 장비 최고 3배 비싸게 구입」제하 기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부산대학교 측의 반론을 보도합니다.

부산대는 연합뉴스가 ‘부산대, 첨단강의실 구축사업 특혜 의혹’ 등 3건의 기사를 통해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먼저 심사 항목 가운데 ‘재무구조 경영상태’에서 0점을 받은 낙찰사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것이 특혜라는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은 0점 처리하도록 한 조달청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대는 또 무면허 업체에 첨단강의실 구축을 맡겼다는 내용과 관련, “첨단강의실 구축은 강의시스템 구축,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7개 부문으로 이뤄졌는데 낙찰사는 관련 규정상 면허가 필요 없는 강의 시스템 구축 부문만 담당했다”면서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부산대는 이어 “당초 계약 내용보다 저가 제품이 설치됐는데도 부산대가 이를 묵인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관해서도 “낙찰사가 변경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낙찰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면서 “1차 사업 때는 응찰업체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품목을 저렴하게 공급하므로, 조달청을 통해 개별 구입하는 2, 3차 사업 단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는 아울러 “입찰 탈락 업체들의 민원과 진정으로 진행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와 부산지방검찰청 조사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안을 놓고 다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

신청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이 건강보조제품을 잘못 가공하여 변질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채 ○ ○
피신청인 : 대전KBS-1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전KBS-1TV : 「생방송 따따부따」 프로그램 (2008년
8월 21일 17:40)

내 용 : 민고 찾아간 건강원, 이럴수가!
운동을 하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동네 건강원을
찾아간 박계원씨. 붕어 24kg과 한약재를 직접 구해
건강원에 맡기고 붕어즙을 부탁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붕어즙을 받아든지 하루가 지나가 모두
부풀어 오른 것. 혹시나 하고 지인에게도 연락을
해보니 모두 부풀어 올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건강원에서는 박씨의 보관탓이라고만 일축하는데...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강원 피해사례. 과
연 박씨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김○○(한국추출가공식품업 대전시지회장) : ○
○건강원의 채○○ 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품이 변질되었으며 이를 업주인 채○○ 씨가 전
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추출식품의 가공과정
에서 100도 이상 끓여야 하는데 100도에 못 미치는
온도로 덜 끓였기 때문에...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고 찾아간 건강원 이럴 수가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1일자 'TV신문고'
편에서 "민고 찾아간 건강원, 이럴 수가"라는 제
목으로 S건강원 C모 대표가 전적으로 잘못된 방법
으로 제품을 가공한 과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또 출연자를 통해 업체
의 상호명과 대표의 실명을 여과 없이 방송하였습
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문제가 된 제품은 100도
이상 끓인 후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될 뿐 덜 끓였기 때문에 상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며 추출과정에 대한 업소 간 방법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해 소비자 측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사전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은 채
가공업체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
를 보았다는 식의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방송되었
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의 아니게 가공업체
의 상호명과 대표의 실명이 거론된 점 사과드립니다.

취하 후 보도문

대전KBS-1TV : 「생방송 따따부따」 프로그램 (2008년
8월 29일 16:05)

내 용 : 지난 8월 21일자 생방송 따따부따 방
송과 관련해 해당 건강원 측으로부터 몇가지 문제
점을 지적해 온 바, 이에 제작진의 입장을 밝힙니
다.

당시 방송 내용은 해당 건강원의 전적인 과실로
방송되었으나 사실을 확인한 바, 해당 건강원 측은
제품을 완전히 끓인 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잠
시 히터를 정지한 후 포장했으며 제품의 냉장보관
을 주의시켰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변질 원인은 소
비자의 보관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작진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방송과 관련해서 해당 건강원이 직간
접적으로 입게 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
며 해당건강원과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표
합니다. □

신청인이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해당 교회의 채무승계계약에 관여하는 등 교회를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증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에클레시안뉴스 : 『경인교회 승낙없이 강성교회 채무
인수는 불가능』 제하의 기사 (2008
년 8월 28일 00:56)

내 용 : 기독교조위원장이자 경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실질적 대표를 행해해 온 이○○ 목사는
강성교회에 대출승계는 자신과 경인교회와는 아무
관계없이 영동농협과 강성교회간에 이루어진 것이
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채무
인수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경인교회 승낙없이 채무인수는 불가능

이를 테면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귀하의
채무자 ○○○에 대한 다음의 채권에 관하여 인수인
○○○은 귀하의 승낙을 조건으로 채무인수인이 되
어 채무자와 같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서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이름을 명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하는 형식을 띠는 것이다.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자와 채무자 사이의
인수의 효력은 채권자의 승락에 의하여 효력이 생
긴다. 민법 454조 1항은 “제 3자가 채무자와의 계
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채권자 일방
적으로 채무인수를 제 3자에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은 “에클레시안뉴스는 2006년 8월 4일자로

영동농협이 경인교회에서 강성교회로 대출승계가
됐으며, 마치 이때도 내가 대표권을 행사한 것 처
럼 보도하고 있으나, 대출 승계는 나와 경인교회와
는 아무관계 없이 영동농협과 강성교회와 이루어
진 것이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인교회의 동의나 승낙이 없이는 영동농협이 일
방적으로 강성교회에 경인교회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 경인교회가 중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승계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
이다. 근저당권자가 영동농협인데 어떻게 경인교회
의 허락없이 채무인수가 가능할 수 있는가.

이 때 이○○은 강성교회가 채무인수할 수 있도
록 경인교회의 대표자로서 채무인수에 동의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자신이 4
억에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목
사가 개입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의 전세
금 4억은 경인교회가 대표자(임시당회장)와 협의
해서 알아서 지불하면 된다.

이미 2006년 11월 30일 사표를 낸 목사가 경인교
회 대표자 행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뿐만아
니라 임시당회장은 설교만 이목사에게 허락을 한
것이지, 교회재정과 행정일체의 사역을 허락한 것
이 아니다. 최근까지도 교회의 통장을 이목사가
관리한 것은 2006년 11월 30일 사표를 낸 이후에도
담임목사로서 역할을 한 증거이다.

에클레시안 뉴스가 지적하는 것은 이○○이 이미
2006년 11월 30일 사표를 냈고, 노회로부터 2008년
4월 22일 사표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경인교회대표
자로서 경인교회의 통장을 관리하고, 경인교회의
매각에 관여하고, 특히 채무인수계약을 한 것은 불
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경인교회 대표자로서 자격
이 없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경인교회 승낙없이 채무인수 불가능 관

런 정정보도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초기화면 상단에 “경인교회 승낙없이 강성교회의 채무인수는 불가능”이란 제목으로 이○○ 위원장이 채무승계와 관련 경인교회대표자 자격도용을 해 채무승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채무승계는 채권자(영동농협)의 승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목사는 3월 16일 채무를 인수교회가 안는 조건의 매매계약의 8월 4일 영동농협과 인수교회 사이의 채무승계를 위한 채무승계계약서 등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나 대표자자격을 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통장관리도 이미 사표낸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전도사의 최근까지 이 목사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 이는 이 목사가 교회통장을 관리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전도사의 사례를 이목사가 준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서 줄 돈이 없어 이 목사 개인이 내놓은 것이며, 경인교회통장은 채무금 이자지급의 연결 계좌이기 때문에 강성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경인교회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 신문 8월 28일자 초기화면 상단의 “경인교회 승낙없이 강성교회의 채무인수는 불가능” 제하의 기사에서 2008년 4월 22일자로 경인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이○○ 목사가 경인교회 대표자격을 도용해 2008년 8월 4일 이뤄진 영동농협과 강성교회 간 경인교회 채무승계계약에 동의하였고, 이모 전도사가 최근까지 이 목사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것을 근거로 경인교회 통장관리를 사퇴한 이 목사가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목사는 대표자격이 있을 때 정당하게 대표권을 행사했고, 사퇴 처리후에는 대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모 전도사에게 준 사례금은 교회 자금이 아닌 개인 돈이므로 자신은 현금과 교회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22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안뉴스>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일반적인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기간 도과후에도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 보도문도 함께 나오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들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클레시안뉴스 : 『경인교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9일 21:31)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악인인 신청인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4

청 구 명 : 정정 · 손해배상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일간스포츠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일간스포츠 : 『“무속인 가족 둔 스타는 누구”』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6일 연예면)

내 용 : 통념상 “우리 가족 중 무속인이 있다”고 고백하는 연예인은 드물다. 대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을 뿐 무속인 가족을 둔 연예인이 적지 않다는 게 방송가의 전언이다. 개그맨 이○○의 아내 김○○ 씨가 신내림을 받았고, 신세대 탤런트 송○○는 엄마가 무속인이라고 밝혔다.

현대 OCN 드라마 ‘리틀맘 스캔들’에 출연 중인 송○○는 인터뷰에서 “엄마 직업이 자랑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고민과 근심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인생의 카운셀러인데 “왜 엄마가 부끄럽냐”며 반문했다.

그는 “어릴 때는 엄마가 충남의 한 사찰에 가서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자신에게 신기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엄마가 모시는 신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럴 일이 없다고 엄마가 말했다고 답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국악인 김○○ 씨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2008년 8월 26일 일간스포츠)

• 내 용 : 2008년 8월 26일 일간스포츠(20판) 연예면에 『무속인 가족 둔 스타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에 코메디언 이○○의 부인 국악인 김○○ 씨가 신 내림을 받았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국악인 김○○ 씨는 신 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여 관련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깊은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일간스포츠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9일자 27면)

내 용 : 일간스포츠는 지난 8월 26일자 연예면에 『무속인 가족 둔 연예계 스타 누구』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코미디언 이○○의 부인인 국악인 김○○ 씨가 신내림을 받았다고 게재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김○○ 씨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씨와 그의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성형외과 의료사고와 관련된 기사에 언급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터뷰 내용을 임의로 각색하고 병원과 신청인의 실명을 언급하여 피해를 입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반 ○ ○
피신청인 : 아임닥터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아임닥터뉴스 : 『여름철 성형특수? ‘의료사고 특수’ 대처법』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일자 병원면)

내 용 : 상담 시 진료기록 필수, 합병증·부작용 정확히 설명해야

지난 2004년 압구정동에서 코를 수술한 윤모 씨(40대·여)는 2년이 지난 어느날 코 속에 숨어있던 실리콘이 제멋대로 움직여 수술했던 병원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진료비를 더 내고 재수술을 했지만 환자는 코끝이 빨개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안게 됐다.

일명 ‘딸기코’를 평생 안고 살게 된 윤씨는 “병원을 믿을 수 없어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영수증도 챙겨주지 않은 이 병원은 뽀뽀스럽게도 300만 원을 170만 원이라고 말하며 170만 원의 반값만 준다고 한다”며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손이 떨린다고 분노했다. (중략)

○○○성형외과 반○○ 원장은 “아무리 유능한 성형외과 의사라도 실수를 한다”며 “나 역시 환자의 부작용을 보게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심경을 털어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런 일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개업 초기의 의원들에게 많이 일어난다”며 “나도 그런 경험들을 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최소한 환자들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조언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물론 사전에 설명을 잘 해준 의사라 하더라도

막무가내인 환자는 있기 마련, 이런 환자에 대해서도 흥분하기 보다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 원장은 “실제로 인터넷에 악성 글을 유포하고, 수시로 병원을 찾아와 난리법석을 부리는 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지만, 판결이 길어지면 양쪽이 모두 피곤해져 웬만해선 합의를 본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성형외과 반○○ 원장의 인터뷰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1일자 병원면에 “여름철은 성형특수? ‘의료사고 특수’ 대처법”이란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반○○ 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실명으로 무단 게재하여 ○○○ 성형외과와 반○○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5,000,000원

□

가발 관련 인터뷰에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6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28.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이하 보도내용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촬영하여 손해배상은 불가하며, VOD삭제 및 프로그램 재방송·재판매 금지 등 신청인 추가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보도내용

KBS-2TV : 「무한지대 큐」 프로그램 (2008년 3월 20일 18:35)

내 용 : “자신감이 팍팍 생기고 너무 좋지요”

신청인이 자동차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정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NBS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NBS뉴스 : 『판매업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7일자 사회면)

내 용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에 소재한 AUTO C&T는 약 330㎡의 판매업 건물에 각종 수입 자동차를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 맞도록 부품을 탈, 부착하여 성능인증을 받아 판매하기 위한 공장으로 불법 사용중에 있어 관할 용인시와 국토해양부의 관리, 감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 업체는 (중략) '자동차안전검사 시설'을 확보하지도 않은채 "건축법(제19조)을 위반"하여 용도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판매시설에서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리프트 3대를 설치하였으며, 공구에 공기를 공급하는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하여 수입차량 부품을 탈, 부착하는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용인시 관할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건축과, 환경과에서는 지도,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어 인근에 소재한 자동차 정비업체로부터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또한 허가관청인 국토해양부도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③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작자등의 시설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등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년 3월 14일>에 의거 현장을 확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현 장소에서 수입 자동차를 인증받아 판매하기위해서 건교부로부터 '자동차 제작자 등록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작업중에 있어 누가 뭐라해도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관할 관청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고, 단지 판매시설을 용도변경 하지 않고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알고 있다.

우리도 정상적으로 자동차 정비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싶으나 현재 건물은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내년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서 정상적인 부분정비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예정이다"고 대답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판매업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8월 27일자) 보도 기사 확인결과 내용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7일자 사회면에 『판매업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이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안전검사시설이 미확보된 업체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그 회사는 자동차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였습니다. 또한 제목에서 "불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임의"라는 단어로 정정합니다. 또한 보도문에 해당업체의 이름을 기사화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임을 인정합니다. 이에 정정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판매업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8월

27일자) 보도 기사 확인결과 내용 달라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7일자 사회면에 “판매업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이라는 제목으로 자동차 안전검사시설이 미 확보된 업체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그 업체는 자동차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이고, 건축법 위반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합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

터넷신문 NBS뉴스 2008년 9월 12일 오후 5시부터 2008년 9월 15일 오후 5시까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NBS뉴스 : 『“판매업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8월 27일) 보도기사 확인 결과 내용 달라』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2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학교 운영위원장인 신청인이 ‘신설 중·고등학교가 개교계획을 맞추지 못해 학생들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의정부버룩시장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의정부버룩시장 : 『의정부 신설 신곡고(가칭)→발곡고 교명선정, 개교시기, 더부살이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3면)

내 용 : 의정부교육청이 중·고 부족에 시달리는 의정부시에 중·고 신설을 추진하고도 제때 개교 계획을 맞추지 못해 더부살이를 되풀이 하는 등 관련 학부모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의정부교육청은 신곡동 248번지 일대에 36학급으로 지난 21일 발곡고로 교명이 선정된 가칭 신곡고를 내년 3월 개교 계획으로 학교 신설에 들어갔으나 지난 26일 공정율이 50%에도 못 미쳐 개교에 맞춰 준공이 불가능하다.

교육청은 준공이 어렵게 되자 이달 준공을 한 인근의 동암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더부살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암중학교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암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는 “동암중학교는 학교 준공이 제때 안 돼 솔피중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한 뒤 이제 겨우 소속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다시 고등학생들과 1학기를 보내야 하느냐”며 “부모로써 참담하다”고 분노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과 개교 계획조차 매년 시행착오로 일관하는 교육행정에 신뢰감이 전혀 가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의정부 신설 발곡고 개교시기, 더부살이 논란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지역종합소식 3면에 “의정부 신설 발곡고 개교시기, 더부살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과 인터뷰를 한 것처럼 사실에 없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청인과 인터뷰 한 사실이 없고 허위 및 추측기사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

신청인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이 부안군수의 측근이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전북일보 : 『김호수 부안군수 측근챙기기, '해도 너무 해'』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5일자 2면)

내 용 : 김호수 부안군수의 자기사람 챙기기 인사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 군수의 정실인사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이른바 '반 김종규세력'이 전면 포진한데 이어 주요 요직에 내사람 심기로 치우치면서 조직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 인사지침에 따라 비서실장, 수행비서, 운전요원, 사무요원 등 4명이 근무해야 될 비서실의 경우 측근들을 배려하다보니 인사지침보다 2명이 더 많은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측근라인에 따라 주요 현안과 정책들이 혼선이 빚어지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느냐”는 얘기가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부안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단일화를 위해 힘을 합쳤던 측근들이 군수 당선 후 제몫 챙기기에 열을 올리면서 비롯된 것.

김 군수는 4명이 근무해야할 비서실에 각 계파에서 한 명씩을 심다보니 6명에 이르렀고, 이들이 각자 딴 목소리를 내면서 부안군 공직사회가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비서실 직원 정원 2명 초과

6급 계약직도 내정후 공모

또 최근 대외협력계를 신설하고 계약직 6급에 또 다시 측근 인사를 심자 공직사회 안팎에선 “주민

들은 뒷전인 채 측근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는 원성이 무성하다. 실제 부안군은 최근 대외협력 6급 계약직을 공모했었다. 하지만 공모는 요식행위일 뿐 사실상 군수 측근인 송모 씨를 내정하고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같이 김 군수는 포용과 화합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을 키워왔지만 비대해진 조직은 각자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공직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안팎에선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는 비서실과 주요 요직 등의 기능과 조직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대해진 조직도 문제지만 군수를 보필해야할 비서진들이 각자 딴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를 음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런 구조에서 부안군이 무슨일을 하겠냐”며 “군수가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하는데 제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조직이 늘어난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호수 부안군수 측근 챙기기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보는 2008년 8월 25일자 2면 “김호수 부안군수 측근 챙기기 해도 너무해”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호수 군수의 자기사람 챙기기 인사를 비판하면서 대외협력계 6급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송모 씨가 사전 내정 후 공모를 통해 채용된 김호수 군수의 측근인사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송모 씨는 장성군 국제협력계장, 안산시장 비서실장, 공무원연수원 강사, 한국능률협회 팀장 등의 경력 등을 가진 대외협력관계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정상적인 절차로 임용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

보성군이 동원 F&B를 보성녹차 가공유통센터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하여 협약체결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업체에 녹차가공공장을 기부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1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성군 (군수 정 종 해)

피신청인 : 보성군민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보성군민신문 : 『생엽 판매, 남는 장사야?』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0일자 1면)

내 용 : 약 53억 원짜리 녹차가공공장 주고 ‘생엽 200t 납품’

4년짜리 군수는 낫내고, 녹차 재배농가는 동원에 굶질거리고, 동원은 누워서 떡먹기

보성군이 녹차가공업체인 (주)동원F&B의 협조를 얻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8곳의 소규모 차 재배농가를 위해 생엽200t(건엽40t)을 수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매는 보성녹차 영농조합법인 등 2개 업체를 통해 이뤄지며 내년도 녹차음료 가공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뒤 (주)동원F&B에 납품될 예정이다. 3번차 수확시기인 8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생엽 수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수매에 앞서 수매량을 오는 15일까지 시료(차 생엽)를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에 의뢰하여 150가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차 생엽만 수매한다.

보성차생산자조합(대표 이○○)에서는 차 생엽 수매를 위하여 읍면분회별로 회의를 통하여 수매방침을 시달 후 농가별 희망량을 접수받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순수생엽 생산농가에 배정했다. 또, 읍면 분회별 채엽팀을 구성하여 위탁가공공장의 수매일정에 따라 농가별로 채엽 후 가공공장에 위탁수매토록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차 수매는 녹차의 품질을 높이고 소규모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액수는 시가 3억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지만 수매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보성군의 눈속임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부지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보성읍 봉산리의 보성녹차가공공장이 약53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정중해 보성군수가 약53억 원짜리 보성녹차가공공장을 (주)동원F&B에 기부하기로 하고 계약체결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군수가 군민들의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써 버리고 있어 시끄럽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생엽판매, 남는 장사야? 사실과 달라 (또는 생엽판매, 남는 장사야?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0일자(제77호) 1면에 『생엽 판매, 남는 장사야?』, 『약 53억짜리 녹차가공공장 주고 ‘생엽 200t납품’』, 『4년짜리 군수는 낫내고, 녹차 재배농가는 동원에 굶질거리고, 동원은 누워서 떡먹기』라는 제목으로 보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위·수탁 관련과 2008년산 차 생엽수매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성군에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거 (주)동원F&B와 위·수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산 차 생엽수매 업무 추진 또한 관내 재다업체에서 생엽수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보성군(군수 정중해)에서는 소규모 차 재배농가들을 위하여 (주)동원F&B로부터 2009년산 녹차음료로 사용할 원료에 대하여 위탁수매를 의뢰받아 가공업체로 등록되지 않는 소규모 차 재배농가들을 중심으로 수매량을

배정하여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의 2개업체의 위탁 가공업체에서 차 생엽수매를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본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0일자 “생엽 판매, 남는 장사야?” 제하의 기사에서 보성군이 최근 약 53억 원을 들여 신축중인 보성녹차가공공장을 (주)동원F&B에 기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군수가 군민들의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보성군은 현재 보성녹차가공유통센터의 운영자를 전국공모를 통하여 (주)동원F&B를 위탁업체로 선정, 상호 협약체결 중에 있는 것으로 ‘기부’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닌 것

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보성군이 이번 생엽 200t을 수매하면서 208곳의 소규모 차 재배농가를 위해 동원에 협조를 얻어 수매하고 판매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협조를 얻은 것인지 차 재배농가가 보성군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보성군은 소규모 차 재배농가의 애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주)동원F&B와 협의를 통해 2008년산 차 생엽수매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소규모 차 재배농가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3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보성군민신문 1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약53억 원짜리 녹차가공공장...)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이 추진한 월남참전기념탑 건립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3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전라북도월남참전전우회(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 ○ ○))

피신청인 : 전일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전일신문 : (1) 『월남참전 기념탑사업비 비리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0일자 1면)

내 용 : 기념탑추진위, 집행부 자금관리 공개 거부로 의혹제기

월남 참전에서 전사한 영령을 기리고 그 업적을 기념탑에 남기기 위해 지난 2005년 발족했던 월남 참전기념탑 추진위원회가 집행부의 석연치 않은 자금관리로 의혹이 제기된다고 회원들이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더욱이 전주시 덕진구 체련공원 안에 건립된 참전탑 옆에 참전용사들의 공적을 기리는 시비의 비문을 문단에 공인되지 않은 추진위원이 직접 써물의를 빚는가 하면 참전탑이 이들 몇몇 추진위원 이름 일색이어서 당초 참전전우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월남)참전 전북참여연대(공동의장 김○○)와 회원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참전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위원장에 남원 출신의 현직 하모 도의원을, 월남참전기념탑 추진위원장에 현모씨를 위촉해 추진케 됐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하씨는 전북도로부터 시책추진비 1억 1,600만 원과 보훈처 사업비 9,000만 원, 참전회원들로부터 록명비 명목으로 받은 성금 등 약 3억 원의 자금을 모아 전주시의 설치예정지를 무상으로 공여 받아 덕진구 체련공원 입구에 지난해 12월 21일 참전기념탑을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념비건립과 관련해 집행부가 자금관리

와 사업비 진행에 대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수많은 회원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 결산보고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념탑에 새겨지지 않은 참전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후략)

(2) 『‘월남참전 기념탑’ 사업비 공개하라』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1일자 13면)

내 용 : 전주시 덕진구 체련공원안에 건립된 ‘월남 참전 기념탑’ 사업비가 수 년째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월남 참전 기념탑’은 전북도로부터 시책추진비 1억 1,600만 원과 보훈처 사업비 9,000만 원, 참전회원들로부터 받은 성금 등 약 3억 원의 자금을 모아 전주시의 설치에 정지를 무상으로 공여 받아 덕진구 체련공원 입구에 지난해 12월 21일 참전기념탑을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신문은 2008년 8월 20일자 1면 월남참전 기념탑사업비 비리의혹제기 제목으로 ‘월남참전기념탑 추진위원회’가 덕진구 체련공원안에 건립된 참전탑 공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자금관리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위 위원회는 보훈처 9천만 원, 전북도 9천만 원 시책추진비 2천만 원, 자체 부담금 4천만 원 등 총 2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모아 2007년 5월 10일 기공식을 하고 2007년 12월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주시의 집행승인을 받은 후 전주시에서 공사 기성에 따라 사용하는 등의 절차를 한 바, 자금집행에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보도된 기사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는 자금 모금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 시군대표 및 참석한 임원 등 추진위원회에 보고 하였음.

시책추진비 1억 1천 600만 원 보도되어 사실과 다르며 사업비 3억 원 이상 이라는 보도 또한 잘못된 보도이며 설계비 2,000만 원이 부풀려 5,000만 원 보도 내용 등 각인수자도 확인 없이 1,000여명

이라고 보도된 내용을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3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사)전라북도월남참전전우회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현 ○ ○

피신청인 : 전일신문 주식회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32

대표이사 장 우 진

조정대리인 강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일신문 2면 우측상단에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기념탑추진위, 집행부 자금관리 공개 거부로 의혹제기) 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동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3.

〈별 지〉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보 2008년 8월 20일자 1면 『월남참전 기념탑사업비 비리의혹 제기』 제목 등의 보도와 관련 “월남참전기념탑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현 ○○, 하○○)가 기념탑 건립을 위해 집행한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이었고, 전주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되었으며, 추진위원회는 자금의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월남참전 전우회 각 시군대표 및 임원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기념탑 사업비 비문과 관련,

위원회가 전문 시인 몇 분에게 작시를 요청하였으나 이들이 월남참전의 정서와 경유를 잘 모른다면 사양하여 불가피하게 석사학위자인 위원 중 1인이 작시를 하고 이를 전문 시인에게 감수 받아 비문이 결정된 것이고, 되도록 많은 참전자를 기념탑에 명각하기 위해 19개월에 걸쳐 도내 6개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명각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기념탑 준공검사일자인 2007년 12월까지 약 1500명이 신청하였고, 본인의 승낙 없이는 절대 참전탑에 이름을

새기지 말라는 보훈청의 권유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신청된 인원만을 명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전일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30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 별지내용 참조> □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신청인들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조 ○ ○ 2. 이 ○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4.

처리결과 : 취 하(중재합의, 2008서울중재8 참조)

보도내용

한국일보 :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 못할 정도”』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1일자 9면)

내 용 : 지난달 26일 오후 6시께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영어학원에서 국제학교 SIS(Sayfol International School)에 다니는 8학년 여학생 3명을 만났다. 한국 학년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이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3명이 조를 이뤄 그룹과외를 받고 있었다. 모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공부했다. 말레이시아로 건너온 지는 각각 7개월, 1년 3개월, 1년 6개월, 출신 지역도 광주 부산 수원으로 서로 달랐다. 홈스테이 어머니 언니 등 현지 보호자도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30명이 한 반인 학급에서 20명이 한국 학생들이다. 한국 학생들이 몰리면서 이 학교는 재학생이 2,000명까지 늘었고, 현재 이 가운

데 45% 정도가 한국 학생들로 채워졌다.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한 반에 절반 이상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중략)

초·중·고 모두 자리가 없다는게 학교측 설명이다. 교민들은 그러나 “조만간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 등에 생길 신생 국제학교도 한국 학생들로 채워질 것이 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략)

명문 국제학교에 자리가 없자 한국인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립학교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필리핀 사립학교는 대부분 중학교 과정이 없는 10학년이나 11학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졸업 후 우리나라 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필리핀 상류층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알라방 빌리지 내 사립학교인 라살(La Salle)이나 우드로즈(Woodrose)같은 학교는 한국 학생들이 이미 정원을 넘어서 입학이 쉽지 않다.

한국학생 입학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사립학교 사우스빌(Southville)의 레미 라게라 입학담당관은 “3년 새 한국 학생들이 3배 정도 늘면서 이제는 정원의 20% 가까이 된다”며 “특히 ESL 과정 대부분은 한국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ESL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과는 별도로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입학한 지 얼마 안된 4학년 김모(11)양은 “교실이 전부 한국 학생이다 보니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를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 학생의 필리핀 행렬이 멈추지 않자 최근엔 필리

편 내 ‘이름 없는’ 사립학교나 한국인이 현지에서 세운 학교까지 한국 학생 특수를 누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원



신청인 업체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부실 시공하여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위더스아이티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가스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과정 중 온압보정기의 센서(압력·온도)부위가 가스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배관에 구멍을 뚫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L초등학교에 설치된 온압보정기 역시 동일한 형태의 설치과정을 통해 부착되었으나 부실시공으로 가스 배관과 온압보정기의 이음새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보도내용

가스신문 : 『초등학교 설치 온압보정기서 가스누출 ‘아찔’』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4일자 천연,도시가스면)

내 용 : 지난 6월부터 알엔에프가 생산, 판매를 시작한 도시가스 온압보정기가 다량 수요처에 설치, 보급되면서 도시가스사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온압보정기의 설치 여부를 놓고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주장하는 도시가스사와 ‘영업방해’라는 제조사측간에 입장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영업 현장에서 잦은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내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한 L초등학교에 설치된 도시가스 온압보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도 하기 전에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온압보정기를 생산, 판매한 알엔에프측의 대리점인 위더스아이티(대표 김○○)가 수요처의 요청으로 L초등학교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했으나 설치 하루 만에 도시가스가 누출돼 도시가스사가 수요처에 시설개선을 요청했다.

도시가스업체에 따르면 알엔에프가 생산, 판매하는 온압보정기의 경우 대부분 도시가스 배관에 직접 탈·부착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설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온압보정기 관련 정정

•내 용 : 1). (기사원문)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한 L초등학교에 설치된 도시가스 온압보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전 가스누출되는 사례

(정정글)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치 않고 아무런 증거 없이 당사의 시공실수라고 보도한 내용

2). (기사원문)L초등학교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했으나 하루만에 도시가스가 누출돼 도시가스사가 시설개선을 요청 내용

(정정글)(주)위더스아이티에서 7월 17일 온압보정기를 설치후 누설검사, 7월 18일 2차 누설검사, 7월 25일 전체 누설 및 작동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스누출 검사 이상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 31일 한진도시가스의 담당자가 가스누설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기사내용의 정정 요구합니다.

3). (기사원문)알엔에프가 생산, 판매하는 온압보정기의 경우 설치 시 센서(압력, 온도)를 배관에 구멍을 뚫어야만 가능하다는 내용

(정정글)담당기자의 전문성이 심히 우려되며 센서는 배관내부에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배관외부의 격리공간에 설치되므로 정정 요구 합니다.

4). (기사원문)부실시공으로 가스배관과 이음새 부분에 가스가 누출 됐다는 보도 내용

(정정글)담당기자의 확인 및 증거도 없이 마치

위더스아이티의 부실시공으로 가스누출이 됐다는 내용 정정 요구합니다.

5). (기사원문)도시가스업계에서는 보정시설물인 온압보정기의 보도 내용

(정정글)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온압보정기는 '보정시설물'이 아니고 '가스용품'으로 분류되어 정정 요구합니다.

6). (기사원문)온압보정기 공급 전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사내용

(정정글)어느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온압보정기 공급 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법조항 없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도 온압보정기를 설치 할 경우 '통보' 할 것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정정 요구합니다.

7). (기사원문)온압보정기가 보급되고 있는 수요처의 대부분이 목욕탕, 학교 등 대량 수요처이고 부차 장소 역시 계량기가 위치한 밀폐된 지하실 같은 곳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 내용

(정정글)폭발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온압보정기가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같은 내용을 정정요구 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8월 14일자 889호 천연가스 ·

도시가스면 「초등학교 설치 온압보정기서 가스누출 '아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온압보정기 시공업체인 (주)위더스아이티(대표 김○○)는 설치 이후 2차례에 걸친 누설검사 및 1회의 전체 작동검사를 실시할 때까지는 가스가 누설된 바 없고, 가스가 누출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L초등학교에서 온압보정기를 설치한지 하루만에 가스가 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가스신문> 천연가스 · 도시가스면 또는 2면에 2단 박스 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보다 큰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12일부터 1일간 <가스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가스신문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어촌계장인 신청인이 어구보관장을 회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어민소득증대사업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을 따내 사업을 독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GTB-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GTB-TV : 「시사터치 현장-E」 프로그램 (2008년 7월 16일 23:05)

내 용 : ▷아나운서 : 동해시의 한 어구보수보관장이 대형회센터로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간 어민들의 그물을 보관하거나 보수해오던 어구보수보관장을 리모델링해서 소득증대사업을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동해시의 도움을 받아 4억 9천 9백만 원을 들여 방파제, 등대를 설치하고 건물외부 수리와 함께 화장실을 새

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된 건물은 시에서 어달동 어촌계로 무상임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제는 공사도 끝나지않은 상황에서 회센터 운영에 대한 입찰까지 마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받은 사람은 공교롭게도 현 어촌계장의 부인이라고 하네요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출동 현장 E가 간다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 맞이에 한창인 동해 어달항, 그런데 관광객이 보기에 의문스런 플래카드들이 붙어있었다.

(화면)여자들이 싸우는 모습

▷권○○(동해시 해양정책과) : 집앞에 화장실을 짓는 문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가요?

▷권○○(동해시 해양정책과) : 아름다운 동해만 돌기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07년 횡집망소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화면)공사중인 내부 건물 안

▷기자 : 이거 지금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나레이션 : 시에 지원을 얻어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으로 벌어지는 회센터,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 내부인테리어가 한창이었다.

▷김○○(어달동 어촌계원) : 아니 이렇게 인테리어 할 정도로 시에서 아무말도 안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어촌계원은 사업내역도 모르고..한번 와보세요.

▷권○○(동해시 해양정책과) : 우리 시에서는요 사장님은 모른다고 하는데요 시에서는 작년부터 회의한 회의록부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어달동 어촌계원) :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이 있어요?

▷여자 주민 : 회의도 안했는데..회의록이 있어요?

▷김○○(어달동 어촌계원) : 보여주세요.

▷남자1 : 사진 갖다드릴게요 어촌계원들이 여기 다모여서.. (싸움하는 화면)

▷권○○(동해시 해양정책과) : 시에서는 외관만 합니다. 시에서는.. 내부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댑니다. 여기 1층을 갖다 활어센터를 만들고 2층은 먹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어느 어촌계 어느분이 입찰을 봐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

만 들어오시는 분이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주민 : 말씀 잘들었는데요 이게 개인의 횡집으로.. 아니 그것만 묻고 싶어요 이게 횡집으로 보입니까 이게 회센터로 보입니까?

▷나레이션 : 회센터로 바뀐 어구보수보관장! 논란의 진실은.. 하루 70여척의 배가 오가는 동해의 작은 항구 어달항. 53명의 어촌계원이 고기잡이를 하며 살고있다.

인터뷰 있음(생략)

▷김○○(대의원. 어달동 어촌계) : 처음에는 어구보수보관장 밑에서 했는데 요즘은 거기서 안하고.. 시에서 지붕시설 비가림시설을 하고부터는 여기서 어망작업을 해요.

▷나레이션 : 시에서 마련해준 차광막 시설 전에 사용하던 어구보수보관장을 회센터로 변경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김○○(어달동 어촌계원) : 총회를 열어야 어촌계원들이 다알지 자세한 거 하나에서 열까지...그런데 소문에는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구요 자세한 건 모르니까 얘기를 할수 없죠.

▷남자주민 : 어촌계원도 알권리가 있는데 총회를 열어야지 알수있죠.

▷유○○(어달동 어촌계원) : 어촌계원은 하나도 모르고 6명만 알지 나머지는 어촌계원이라도 하나도 몰라요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나레이션 : 1998년에 지어진 어구보수 보관장. 시에선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철거명령이 내려졌던 것을 어촌계에서 리모델링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회센터로 바꾸겠다는 것. 1층은 활어센터를 만들어 어민들이 잡은 고기를 팔고 2층은 먹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에선 5억의 예산을 들여 배모양의 외관과 화장실, 두 개의 등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현장소장) : 동해시 공개입찰로 해서 춘천○○건설로 낙찰되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 2층에 회센터 들어오는 것도 인테리어를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장소장) : 인테리어는 들어오는 입주자가 본인이 알아서 하는거고 저희 회사하고는 무관합니다.

▷기자 : 업체가 같은 업체 아니신가요?

▷김○○(현장소장) :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어촌계장 사위 형님이 직접하시는거고 인테리어를... 저희 하는거는 외관만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업자 : 통상 인테리어 비용이 이 정도 자재가 들어가면 평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기자 : 그럼 1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내부 인테리어 업자 : 조금 더 들수도 있어요

▷나레이션 : 지금은 시소유의 건물로 준공검사가 이뤄지면 어촌계에 무상임대돼 어촌계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통해 어촌계장이 낙찰을 받고 내부인테리어까지 진행된 것. 어촌계원들 사이에서 절차를 문제삼는 이들이 있다.

▷김○○ 대의원(어달동 어촌계) : 대의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나 시에서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나니까 '일단해라'

▷김○○(어달동 어촌계) : 유리만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준다는 그 소리 외에 들은 얘기있습니까?

▷주민들 : 없지

▷양○○(어달동 어촌계) : 지금까지 리모델링 비용이 4억 9천 얼마가 나왔다는.. 돈이라는 거는 회의 할 때마다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이○○(어달동 어촌계) : 돈이 얼마가 나왔는지(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름만 명칭만 어촌계원이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모르죠. '십인총대'가 모르는데 회원들이야 알 리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곳을 찾아온 청년회 사람들 어촌계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한다.

▷안○○(어달동 청년회) : 어촌계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앞에 현수막이 걸렸으니까 해결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현수막 건 사람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분한테 와서 '현수막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보니 어촌계장 혼자 똑똑한척 하면서 회센터를 개인이 하려 한단 말예요.

▷김○○(어달동 주민) : 우리집 앞에 정화조 화장실이 생긴다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어민증대 사업을 어촌계장 혼자 독식사업으로 하다보니 말이 많아진 거예요.

(화면)

어촌계원들의 주장

어촌계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어민소득증대 사업 문제 있다.

취재진은 어촌계장을 만났다.

▷기자 : 어촌계원 53명 모두가 이 사업을 알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덕수(가명. 어달동 어촌계장) : 제일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때는 수리가 안된 기둥만 있었는데.. 그 안에서 회의를 하다보니 마을주민이 과반수가 안모이다보니 회의가 무산되었어요 마을주민은 한 20명되고 어촌계원은 40명이 모였어요 어촌계원들이 과반수 모였으니 이 건물 앞으로 용도변경해 횃집으로 바뀐다는 소리도 들리고 시에서 리모델링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여기서 결정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거예요.

▷기자 :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한명도 없었다면서요?

▷김덕수(가명. 어달동 어촌계장) : 아니 3시 오후 정각 3시에 마감을 정했어요. 우리 식구가 오후 3시 10분전 3시에 왔어요. 와서 보증금 4천만에 월 100을 주더라도 보증금 4천만 원만 주면 안되겠냐? 왔는데 대의원들이 공고 다시 부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부치든가 이진 아니다 얘기죠. 다시 붙여놓고 다시 결정해야 되지 여기서선 깎아 줄 수 없다. 이렇게 된거예요.

화면 : 어촌계장의 주장

과반수 이상 모인 어촌계원끼리 즉석 총회를 가졌다. 정상적 입찰 과정 거쳤다.

▷나레이션 : 회센터의 또다른 문제! 방과제와 인접한 지역에 정화조를 지은 것.

▷김○○(현장소장) : 정화조 통 길이가 2m 50cm 이만큼 온다구요. 이 도로 앞으로 오수 사직관로가 지나갑니다. 관은 이미 물어놨습니다. 올 후반기에 오수 사직관이 준공될 예정인데 오수 사직관에 연결하러니 위치가 여기 밖에 없어서요.

▷김○○(사무국장) : 그렇지는 않죠. 관이 이리로 지나간다 하더라도 정화조는 저쪽에 해도 관을 연결하면 되니까. 가깝게 하려는 건 단지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한거 아닙니까?

▷김○○(현장소장) : 아니죠, 이쪽에 하면 나중

에 방파제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차량 진입 문제가 있습니다.

▷김○○(사무국장) : 오수 사직관은 저쪽에도 있잖아요.

▷김○○(현장소장) :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문제가 되죠.

▷김○○(사무국장) : 그럼 정화조 위로 차량이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두께가 두 겹이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김○○(현장소장) : 그렇죠, 위로 차량이 지나 다니게...

▷김○○(사무국장) : 위치는 적당치 않단 말입니다.

▷나레이션 : 방파제와 정화조의 거리는 불과 2m. 현장에선 이곳에 정화조를 묻고 환경미화를 위해 화단을 조성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곳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너울성 파도가 잦은 곳.

▷김○○(현장소장) : 여기가 암석 지역이라 파도가 센 지역이거든요. 콘크리트 삼발이를 방파제에 붙여 보강했는데 그래도 파도가 치면 여기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 방파제에 붙여 인접지역에 정화조를 했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레이션 : 작년에도 너울 파도 때문에 작년에도 피해를 봤다고 한다.

▷여주주민 : 작년에도 파도가 우리 방 안에까지 들어왔거든요. 저기 정화조가 제대로 설치돼 있다고 생각안하고 또 냄새도 날 뿐더러 파도치면 흙 같은 것도 밖으로 넘쳐 엉망으로 되고 그러는데 요즘 파도치면 온갖거 유리에 컨테이너 박스도 마당에 놔뒀다가 물에 떠서 난리쳐서 당장 없앴잖아요. 그 정도로 파도가 쳐서 난리인데 위험해서 안돼요. 저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레이션 : 어달항 주변에 위치한 회센터들... 새로 생기는 회센터에 대해 심각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장○○(Hits집상인) : 요즘에는 장사도 안되고 주말도 그나마 되나 했지만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는데 회센터가 동해시에 또 들어 선다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안들어오게 해야지.. 이렇게 안되는데 회센터만 자꾸 들어서면 장사가 되겠나구.

▷전○○(Hits집상인) : 그 큰 건물이 오천에 월세 백이면 공짜예요 공짜.

▷홍○○(Hits집상인) : 당연히 큰데서 하고 싶죠...

싸고 넓고... 여기는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못 받아요. 많이 받아야 10테이블 인데 넓은 데 가면 손님도 많이 받고 좋죠. 가격도 별 차이 없고 보증금만 더 내면 되는데...

▷김○○(Hits집상인) : 금액보다는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한사람한테 Hits집을 차려준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나레이션 : 우후죽순 생기는 회센터, 결국 가게를 닫는 곳도 있었다. 시의 지원으로 마련되는 회센터 해양 정책과의 입장을 들어봤다. 시가 사업을 지원한 건 총회를 걸친 어달동 어촌계의 건의 사항 때문이라고 한다.

▷기자 : 당초 계획이 1층에 활어회 센터를 만들고 2층에는 음식점을 만들어서 여러 명의 어촌계원들이 이곳에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한다.

▷동해시청 관계자 : 처음에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데 건물의 운용사항은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우리는 외부 리모델링 하고 화장실만 설치해 줘요. 회센터의 운용사항은 전적으로 어촌계에서 관여하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예요.

▷기자 : 건물을 어촌계에 무상 임대 한 게 아니잖아요. 준공도 나지 않았잖아요. 이걸 왜 어촌계에서 입찰 공고를 내서 한 사람이 입찰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까지 들어 갔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왜 안하시나요?

▷동해시청 관계자 : 터놓고 얘기할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 없어요, 어느날 갑자기 들어 와서 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며칠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기자 : 지금이라도 중지를 시켜야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해야지...

▷동해시청 관계자 : “중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어촌계장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한번, 붙었어요....

▷나레이션 : 8월 성수기에 관광객을 맞고자 입찰도 인테리어 사업도 미리 진행된 회센터 어촌계원의 소득증대사업도 당분간 한사람의 이익이 되지않을까?

▷김○○ 씨 : 저도 Hits집을 하지만 앞에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건물이 들어서면 그걸로 인해 저도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민소득 증대 사업인데, 어

민 모두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촌계장 혼자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어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끔 그런 어촌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 시에서 어달동 어촌계로 아직 건물을 무상임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사람이 입찰을 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촌계원의 여름 장사를 위해 편의를 봐준 것 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스스로 절차를 무시한 행정입니다. 개인간의 감정대립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구보수 보관장이 어민 전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7월 16일에 출동 현장E가 간다 코너에서 「동해 어구보수 보관장 횡집센터 변경에 인근 상인 반발」 제목으로 어달동 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이 어촌계장의 독식사업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어촌계장의 독식사업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어달동 어촌계 대의원 회의와 어달동 어촌계원들의 동의 및 확인을 서명으로 받는 등 적법한 입찰절차에 의해 회센터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동해 어구보수보관장 용도 변경 관련 알림
- 내 용 : 지난 7월 16일 「동해 어구보수보관장

횡집센터 변경에 인근 상인 반발」 제하의 방송에서, 동해시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어달항에 추진한 사업을 총회를 거치지 않아 어촌계원들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어촌계장의 부인이 계약하여 이익을 독식하려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민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어구보수보관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동해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어촌계 총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어구보수보관장 용도변경에 사용된 시예산 4억 9천 9백만 원은 어달항 등대 및 공용 화장실 설치 등에 사용된 것으로 회센터 내부 인테리어에 사용된 비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8일까지 GTB-TV 「출동 현장E가 간다」 프로그램 말미(클로징 멘트 전)에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어구보수보관장 경관 노출)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男)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GTB-TV : 「시사터치 현장-E」 프로그램 (2008년 10월 1일 23:05)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정비사업체를 선정하여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송의5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양 ○ ○)

2. 양 ○ ○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신문 :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 위법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5일자 12면)

내 용 : 인천시 남구 송의5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등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전에 개인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송의5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송의동 210-32번지 일대 3만4870㎡ 재개발과 관련, 지난 2006년 8월 24일 남구청으로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현 양모(62) 위원장 등 5명이 재개발추진위가 승인 받기도 전인 지난 2006년 6월 24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커버넌트를 송의5구역 정비업체로 선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해당 구청으로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주민총회 등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양씨 등은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인 2006년 6월 24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 반면 (주)커버넌트측은 2006년 11월 27일 계약을 맺었다고 엇갈린 주장 이어서 정비사

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A씨는 “구청으로부터 재개발추진위가 승인받기 전 송의5구역 재개발추진위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며 “양 추진위원장 등 5명이 무슨 자격으로 정비사업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모를 뿐더러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송의5구역 정비업체 선정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5일자 사회면(12면)에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 위법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송의5구역 위원장 등 5명이 추진위 승인 전 특정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송의 5구역은 2006년 8월 24일 추진위 승인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6년 10월 12일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커버넌트를 선정하였고 2006년 11월 27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양 추진위원장의 인터뷰 중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전인 2006년 6월 24일 계약을 맺었다고 한 부분과 개인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신청인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대학학장의 면담을 방해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강원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강원일보 : 『女교수 퇴진 요구 학생들 집회』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1일자 사회면)

내 용 : 【강릉】속보 = 교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강원도립대학 유아보육과 학생들(본보 지난 8일자 5면 보도)이 10일 교내에서 집회를 갖고 이모 교수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30여 명의 유아보육과 학생들은 이날 오후 집회를 갖고 “이 교수가 그동안 대화를 미룬 채 잘못이 없고 학생들이 무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집회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의 연구실 유리창을 깨고 일부는 연구실에 들어가 서류를 창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어 학생들은 이 교수와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대학본부 관계자들과 오후 늦게까지 대책회의를 가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여교수 퇴진요구 학생들 집회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3월 8일자와 11일자 사회면에 “여교수 퇴진요구 학생들 집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3월 8일자 대학측 주장인 직위해제 사유는 ‘학장의 면담을 방해’하여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교육부소청심사결과 학교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3월 11일자의 내용처럼 학생들이 신청인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지 않고 사퇴를 종용하고 학생들이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협박성의 편지를 받았다. 3월 10일에는 오히려 이○○이 사과문을 연구실 앞에 게시하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연구실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대학당국에 구조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도 구조해 주지 않아 40분 동안 공포에 떨고 있었고 심지어 학생들이 던진 병을 맞아 병원치료를 위해 병원 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 3월 11일자 『女교수 퇴진 요구 학생들 집회』 제하의 기사에서 강원도립대 유아교육과 사태와 관련, 학생들의 집회 원인이 이모 교수가 학생들의 대화 요청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미룬 바 없고 학생들이 대화를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연구실 앞에 게재해두고 있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2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일보>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피신청인의 일반적인 ‘알림’ 부제목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강원일보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일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대학학장의 면담을 방해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강릉MBC-TV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강원MBC-TV : 「뉴스데스크 - 강릉」 프로그램 (2008년 3월 10일 21:00)

내 용 : 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퇴진 요구
강원도립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오늘 교내 집회를 열고 이 모교수가 지난 학기 강의에서 학생

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언어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문제해결을 위해 학장이 학생면담을 추진했으나 해당 교수가 방해했다며 지난 2월 15일자로 이모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4월 15일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모 교수는 대학측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강원도립대학 유아보육과 직위해제 사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 내 용 : 본 방송국은 지난 3월 10일자 저녁 강릉MBC 뉴스데스크에 “강원도립대유아보육과 학생 지도교수 퇴진요구 학내 집회 열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학측의 직위해제 사유는 학장의 면담을 방해하여 직위해제를 한 것이

아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직위해제 한 것으로 밝혀졌고 교육부소청심사결과 학교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MBC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10일자 「도립대 유아보육과 교수 퇴진 요구」 제하로 신청인이 학생면담을 방해하여 직위해제 당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며, 2008년 9월 11일 조정심리 도중 신청인이 학생면담을 방해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피신청인은 향후 강원도립대와 신청인 관련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신중하게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다른 교사 및 학부모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이 600여 건이나 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8.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경향신문 : 『“교사가 특정 종교 강요” 초등생 집단 수업거부』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일자 13B면)

내 용 : 경주초교 학부모 400여 명 반발
경북 경주의 경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특정 담

임교사의 자질을 문제삼아 집단으로 자녀수업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이 학교 학부모 대책위에 따르면 학부모 400여 명이 자녀들과 함께 등교한 뒤 “교직자로서 자질이 없는 4학년 김모 교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김 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며 학생들의 수업을 거부했다. (중략)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고 특정 학생을 ‘왕따’ 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케 하거나 다른 반으로 옮기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또 “해당교사가 다른 교사·학부모·지역상인들을 고소 고발한 건수가 600여 건이나 되는 등 교사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면서 “조용히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학부모들

이 집단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주교육청은 이날 해당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교사가 특정종교 강요”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일자 사회면에 “교사가 특정종교 강요”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학부모·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600여 건의 고소 고발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08년 3월 전에는 해당 교사의 고소 고발은 1건도 없었으며, 2008년 3월 동료 교사와의 폭행 사건 관련하여 2건의 고소 사건만 있었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교사가 특정종교를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교사는 교육부 시행령에 따르면 정규수업 시간외에 종교활동을 권장하고 있어 시행령에서 권장하는 한도 내에서 종교 활동을 권유한 것일 뿐 특정종교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이로 종교 강요로 인해 전학을 간 학생이 있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며, 전학생의 전학 사유는 동생과 가까운 학교를 같이 다니기 위함이었고, 학급을 바꾼 학생 역시 체벌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옮겨 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6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이 영 만

조정대리인 김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8년 10월 31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지역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경주초교 학부모 400여명 반발”)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han.co.kr)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의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1) 제 목 :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 2008년 7월 1일자 13면 「“교사가 특정 종교 강요” 초등생 집단 수업 거부」 제하의 기사에서 경주초교 김모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고 특정 학생을 ‘왕따’시켜 전학하게 했으며, 김 교사의 고소·고발 건수가 600여 건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김 교사의 고소사건은 2건이고, 교육 관련 민원·진정건수는 16건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종교 활동을 권유한 것일 뿐 특정종교를 강요하지 않았고, 학생의 전학은 통학 편의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해당 학생을 ‘왕따’시킨 적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6.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3일자 12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경산축협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취소하게 하여, 억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0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경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최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Y T N : 「YTN24뉴스」 프로그램 (2008년 3월 21일 01:12)

내 용 : ▷앵커멘트 : 농협경북지역본부 소속 한 지점이 업무 착오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억대의 손해를 입혔으면서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 : 대구에 사는 53살 이모 씨는 지난 해 말 경산축산농협 고산지점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대출담당 직원과 법무사의 실수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채권 2억 2,000만 원을 매일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 축산농협 지점이 자신이 채권으로 잡고 있던 부동산에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데 편의를 봐 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면 곧바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이 채무자는 부동산을 또 다른 곳에 저당 잡히고 거액을 빼내 달아났습니다. 사고가 터지자 축산농협 고산지점은 법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경산축산농협 고산지점 직원 :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달라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는데 만 찍어 줬거든요.” 피해자측은 축산농협 지점측이 일방적으로 선정해 업무를 의뢰

한 법무사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받으라는 것도 말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모 씨, 피해자 측 증인) : “은행 담당자가 법무사를 부른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등기 업무를 안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대리로 불러 업무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지점측은 대출담당 직원이 가등기도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 담보 관련 서류를 채무자에게 돌려 준 실수가 확인됐는데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모 씨, 피해자 측 증인) : “우리가 가등기 서류가 없잖아요. (지점)창구에서 가등기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주고 날인을 해주고 나온 것입니다.” 축산농협 고산지점은 말썽이 나자 담당자를 올해 초 서둘러 다른 지점으로 발령내는 등 사고 무마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경산축산농협 고산지점 채권사고 발뺌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21일자 YTN24뉴스에서 “축산농협 고산지점 채권사고 발뺌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제보자의 주장만을 믿고 농협이 대출시 직원의 실수로 채권자가 2억 2천만 원을 매일 처지에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김모 씨)의 채권자로 농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단지 농협의 사무실에서 거래가 있을 뿐, 근저당권을 해제해주면 곧바로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했다는 것은 구두상으로는, 서면으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위 내용에 대해 지난 6월 30일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찰인 신청인이 특정지역 출신이어서 지역 주민과 건설회사 직원간 폭행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호남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호남신문 : 『폭행피해자 경찰청에 진정서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1면)

내 용 : 해남군이 발주한 식수원 개발공사의 현장에 파견된 건설회사 소장이 공사와 상관없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특히 사건발생이 1개월이 지나도록 해남경찰은 피해자 조사 조차 하지 않아 피해자 조모 씨(남·38세)가 지난 26일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조씨는 진정서에서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 식수원 개발사업 현장에 올 2월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중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1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조사를 하지않자 조씨는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이 해남출신이다 보니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전남경찰청장에게 진정서를 발송한 것이라라고 경위를 말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은 “현재 수사를 가해자부터 소환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조씨가 치료중이고 당초 파출소에서 1차로 쌍방 피해자로 발생보고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쌍방 피해자로 된 임모 씨가 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알고있으며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아직까지 미제출상태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집단구타 피해자 경찰청장에게 진정서 제출 파문 피해자 “치아 7개 부러져도 1개월 넘도록 사건방치” “피해자 목격자 조사없이 가해자 소환 거꾸로 간 수사”

• 내 용 :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1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자 조씨는 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이 해남출신이다보니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사실여부에 따라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조씨와 임씨는 상호 쌍방피의자로 파출소에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입건되어 발생즉시 조씨는 파출소 경찰관들이 광주병원에 출장진술조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보고된 사건으로 1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방치하고 조사를 받지 않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해남출신이다보니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현재 진행중인 피의자 조씨, 임씨 목격자 등이 진술이 서로 엇갈려 대질신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을 해남출신이라고 해서 사건을 종결도 하지 않았는데 “사건축소” “1개월 넘도록 사건방치” “거꾸로 간 수사” 등을 보도한 것은 해남경찰서 전체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8일자 “폭행 피해자 경찰청에 진정서 ‘파문’” 제하의 기사에서 해남군 삼마도 식수원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과 관련,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1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서장, 수사과장 등이 해남출신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취지

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남경찰서 수사과장은 해당 사건이 쌍방 폭행사건으로 접수되어, 마을주민, 어촌계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해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안으로 수사과장 등이 해남출신 이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방치하

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23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호남신문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피해자, 목격자 조사없이...)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이 신안군에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지원한 선박건조 사업비 수천만 원을 착복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9.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남도일보 : (1) 『신안군 의원 선박 건조비 착복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7일자 1면)

내 용 : 전남 신안군이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지원한 도선건조 사업비 일부를 현직 지역 군의원이 착복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신안군과 흑산도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6년 흑산면 하태도 주민들의 도선 및 쾌속여객선 종선으로 사용키 위해 7.9t급 FRP 선박 건조비 7천만 원(도비 5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을 지원받아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 주민들의 의견 불일치로 이월된 후 군은 흑산면 다물도에서 쾌속여객선 종선 및 수리, 오리 마을간 도선으로 건조하기 위해 사업을 변경, 군비 4천 100만 원을 증액해 총사업비 1억 1천 100만 원을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흑산면 다물도 마을 이장 김모(52) 씨

등 마을 대표들은 목포 삼진단지 내 D조선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18일 종선 및 도선을 신조로 건조, 진수식을 마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박 신조 건조비 수천만원이 지역 군의원인 P모(49) 씨에게 건네졌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목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후략)

(2) 『신안군 의원 비도덕적 행동 ‘도마위’』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9일자 9면)

내 용 : 행정차량 무단 이용·공무원에 폭언까지 일삼아

〈속보〉 도선건조 사업비 일부를 착복한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군의원이 행정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비도덕적 행동을 일삼고 있어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사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 군의원으로 활동중인 P모(49) 씨는 면사무소 행정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해당 면장에게 폭언을 일삼아 공직사회와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1989년 6월 1일 신안군 행정 9급으로 특채돼 군 업무를 맡다가 2006년 제5대 신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P의원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뒤로한 채 관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군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은 당시 P의원이 공무원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행정경험을 살려 어

는 의원보다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임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전폭 지지했었다.

그러나 P의원은 관료의식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면사무소 행정차량을 멋대로 이용하는가 하면 면장이 보고없이 교육을 갔다며 지역민들 앞에서 폭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남도일보 2008년 5월 27일자 화요일 정정보도문

- 제 목 : 선박건조비 수천만 원 수수 사실무근
- 내 용 : 본 신문은 5월 27일자 제1면 신안군의 회 의원 선박건조비 착복 현지주민들이 수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흑산면 다물도리 조선건조는 신안군에서 당초 흑산면 하태도리 마을대표와 계약체결하였으나 선박이 건조된 후 하태도에서 사업포기함에 따라 다물도리에서 계약을 승계 준공하였기에 신청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제 목 : 가거도2구 향리 경로당 사업시 마을대표와의 결탁의혹은 어처구니 없는 사실
- 내 용 : 당초 95㎡ 설계로 추진하였으나 85㎡로 줄었음에도 2천만 원이 사업비 증액된 내용은 설계도면상 시공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적법하고 확실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제 목 : 다물도 정자 배수로시설사업, 만재도 광장조성사업에 따른 사례비 명목에 대하여
- 내 용 : 흑산면에서 추진한 일상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당마을 주민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사실도, 제공한 사실도 없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남도일보 2008년 5월 29일자 목요일 정정보도문

- 제 목 : 도선건조사업비를 착복한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군의원이 행정차량을 무단으로 이용,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삼고 지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은 터무니 없는 주장
- 내 용 : 도선건조사업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기에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사업장 방문을 위해 행정차량을 이용한 것을 매도하여 공인으로서 품의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로서 정정당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밝혀짐.
- 제 목 : 공무원출신 의원으로서 행정경험을 살려 군정발전에 타의원보다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권위적 자세와 도·군비등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를 착복했다고 비아냥거린 사실에 대하여
- 내 용 : 신청인은 소외된 군민과 저소득층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쌀이 생산되지 않는 도서에 쌀지원, 생활비지원, 65세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도서여객운임비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하는 의원으로서 권위보다는 솔선수범을 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밝혀졌기에 이를 확실하게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손해배상 청구의 취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정보도 수용 불가. □

**축협 직원인 신청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취소하게 하여 억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도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1. 양 ○ ○, 2. 천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0.

처리결과 : 취 하

내 용 : <2008서울조정270의 보도내용 참조>

보도내용

Y T N : 「YTN24뉴스」 프로그램 (2008년 3월 21일 1:12)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8서울조정2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참조> ☐

신청인 상조회사가 자금악화로 인해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신규회원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보람상조개발 (대표 최 ○ ○)
피신청인 : 상조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제정 및 상조업의 새로운 환경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국내대형 B상조회사 자금악화 겪어 파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뉴스는 지는 9월 3일자 게시 기사에 “국내대형 B상조회사 자금악화 겪어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B상조회사가 자금악화를 겪고 있으며, 전월 대비 신규회원 감소, 장례행사시 추가비용 발생시켜 수익, 재가입비율 하락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제하의 기사 표현 중 “국내대형 B상조회사” 및 “무리한 광고”등의 표현은 독자들로 하여금 보람상조로 인식할 소지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람상조는 거래업체 현금결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 사실 또한 없습니다. 신계약 역시 오히려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례행사시 추가 비용발생 내용은 가입시 기나 상조회사별로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이를 간과한 표현이며, 재가입을 하락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보도내용

상조뉴스 : 『국내대형 B상조회사 자금악화 겪어 파장』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3일자)

내 용 :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대형 상조회사인 B사가 지난달 말 주요 거래처 미수금 결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상조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8월 말 B상조는 여름 휴가철 비수기에 신규회원 가입이 그 전달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자금 사정이 아주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B상조는 무리하게 자금 운용을 하는 것은 물론 과거 모집한 고객들에 대한 장례행사도 추가 비용 발생을 시키는 형태로 수익률을 맞추고 있다.

B상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은 상조고객들의 상조회원 재가입 비율 또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가 가장 주시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방만한 자금 운용과 적정 수익률 사이에서 상조회사들이 겪어야 할 여러 형태의 현실적 도전이 상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어 향후 시급한 법안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9월 3일자 “국내대형 B상조회사 자금악화 겪어 파장”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B상조회사는 거래업체와 현금결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신규계약건수 역시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장례 행사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소비자가 추가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계약 외 추가항목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일 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며,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와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9월 25일부터 2008년 9월 26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상조뉴스의 초기화면의 목록에 상기 정정보도문의 제목

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상조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상조뉴스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부여기초푸드뱅크가 기부식품을 빼돌려 교회나 일반 상점 등에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충남광역푸드뱅크 (대표 권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0.
처리결과 : 기 각

보도내용

KBS-1TV : 「취재파일4321」 프로그램 (2008년 3월 9일 21:40)

내 용 : <앵커멘트>

‘푸드뱅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식품업체 등에서 남는 음식들을 모아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는 1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결식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됐는데 요즘 일부 교회에서는 이 푸드뱅크 음식을 싼 값에 사들여 전도용품으로 나눠주거나 심지어 일반 가게에서도 푸드뱅크

음식이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충남 부여군에 처음 들어선 한 푸드뱅크의 창고입니다. 창고 안에는 유명 식품회사의 옥수수 조림 팩을 담은 상자 1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뒤 승합차량 한 대가 들어오더니 취재진을 보자 운전자는 황급히 차에 오릅니다.

<녹취>

“(어디서 오셨어요?) 뭇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왜요? (그러니까 왜 오신 거예요, 여기?) 대답 안할래요.” 끝내 소속을 밝히지 않고 떠나는 차량에는 한 교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몇 시간 뒤 또다른 차량이 들어옵니다.

▷<인터뷰>김○○(목사) : “(누구세요?) 저는 양화에 있는 오랑교회, 김○○ 목사입니다.” 목사는 타고 온 차량에 20상자를 싣습니다.

<녹취>

“(교회에서 가져가시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동

네 노인들 같은 경우 혼자 계신 분들, 주위 장애인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푸드뱅크 식품들을 가져가는지 알아보려고 지난 5년 동안 이 푸드뱅크를 운영해온 구세군 소속 김모 목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취재진이 식품을 제공한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자 인수증 몇 장을 보여줍니다.

▷〈인터뷰〉김○○(구세군 부여푸드뱅크 운영자) : “여기 지금 장별교회..비당교회..원산 신일교회..(왜 전부 교회만 있습니까?) 개인도 줘요, 개인도 가져갔는데 개인은 인수증 안받고 줘요.” 김 목사가 기부받은 음식을 제공해왔다는 곳의 목록입니다. 90% 정도가 교회입니다. 앞서 소속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교회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인터뷰〉김 목사 : “교회니까 전도용으로 쓸 수 없잖아요. 전도용으로 써도 안된다. 그걸 내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주는 거예요.” 목록에 나와있는 한 교회입니다. 목사 사택의 화장실에 조금 전에 본 옥수수 조림 팩 상자들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방 안 창고에는 연말에 제공받은 초콜릿들이 한 무더기 나옵니다.

▷〈인터뷰〉목사 자녀(대학생) : “아빠가 아시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거 먹기 힘들니까 나눠주고 했어요.”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할 푸드뱅크 기부식품이 교회에 간 이유는 뭘까. 부여 지역 한 교회의 이○○목사는 3년 전 지역 목회자 모임에서 푸드뱅크 운영자인 김 목사로부터 푸드뱅크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인터뷰〉이○○(목사) : “자세한 설명은 않고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다고 좀 써보시라고. (어디에 써보라는 거죠?) 가정에 필요하니까 써보라고. 교인들도 나눠주기도 하고 하라고.” 그 후 음식들이 왔으니 어서 신고 가라는 김 목사의 얘기에 창고에 간 이 목사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인터뷰〉이 목사 : “나는 그냥 주는 줄 알고 갔었는데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한 박스당 2천 원씩 그렇게 받더라고요.” 관리비나 운송비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인터뷰〉이 목사 : “이건 3천 원 줘야한다.. 3천 원 주고도 가져오기도 하고, 2천 원.. 그러다 나중에는 5천 원 줘야한다.” 초콜릿 한 상자에 3만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이 목사 : “다 합치니까 한 박스가 3만 원이 돼. 작은 것은 조그마한 포장된 것은 2만원이고..” 또다른 교회의 유 모 목사 역시 기부식품을 가져오면서 돈을 냈습니다.

▷〈인터뷰〉유 목사 : “(한 상자에) 2천 원에서 4천 원 정도. 어떻게 생각하면 비싸다는 감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공짜로 주는 건데 공짜로 주는 게 운송비가 나와도 운송비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운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교회들이 푸드뱅크의 주요 제공처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인터뷰〉유 목사 : “노인들한테 주게 되면은 택배비를 못받으니까 교회에서 후원금 끼면서 많이 내서서 부담 좀 해달라 그렇게 하길래..” 푸드뱅크의 음식들이 일반 가게에 나와 팔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이 가게에서 푸드뱅크 식품들이 판매대에 진열됐다가 손님에게 팔리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게 체보자의 말입니다.

▷〈인터뷰〉박○○(목사) : “이게 3500원 짜리예요. 이걸 5천 원 주고 산 거고.. 이걸 2천 원 주고 산 거고.. 이것도 2천 원 주고 산 겁니다.” 가게 주인 손 모씨는 어려운 이웃이 지나가면 주려고 판매대에 올려놓았을 뿐 팔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날짜에 혼자 가게를 본 손씨의 딸에게 자세히 물어보려 하자 손씨가 이를 막습니다. 그러자 서로 말이 왔다갔다 합니다.

〈녹취〉“(손님에게) 돈 주고 가시면 안된다 그런 말 했어? 아니요, 돈.. 그런 말은 안했는데요, (아빠 : 돈 내면 안된다고 그랬지?) (너가 한 말을 정확히 얘기해..) 돈 안받는다 그렸는데요.” 그렇다면 푸드뱅크에서 나간 식품 내역은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 걸까. 법 대로라면 이용자와 제공된 식품의 종류, 수량 등을 장부에 정확히 적어야 하지만 기록은 허술합니다.

▷〈인터뷰〉김 목사 : “내가 장부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는 얘기에요.” 반면에 각종 비용 부분은 영수증을 꼼꼼히 첨부해 올려 지자체로부터 한해 300만원씩 지원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단위의 상급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가져올 때 운송비가 많이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 목사 : “운송비를 우리가 주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운송비를 안받으면 우리 같은

경우 운영을 못 한다고..” 관련법을 보면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전국에 푸드뱅크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직접 경비로 한 상자에 천 원을 넘기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부장/사회복지협의회 자원개발부) : “만약에 5천 원에서 건당 만 원을 받았다면 너무 과분하게 받은 거 아닌가. 그것도 실비 개념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대다수 지자체가 관할 푸드뱅크에 운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데다 기업들이 직접 운송해주는 경우도 많아 이것저것 따져도 과하다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일선 푸드뱅크의 운영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푸드뱅크의 식품 입출고 내역을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데다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만큼 투명하다는 겁니다.

▷〈인터뷰〉김 부장 : “기부받아서 보관중인 식품을 빼돌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뭐 한 두 개 뜯어 먹을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푸드뱅크가 입력한 내용이 증빙 자료와 맞지 않는 사례가 상당 수 발견됐습니다. 또 푸드뱅크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데도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지도 않았습니 다. 관할 부여군청은 푸드뱅크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뷰〉정○○(계장/부여군 주민생활지원과) : “제가 알기로 이 업무를 인수 받으면서 우리는 지도감독의 권한은 없다.” 단지 군이 지원하는 한해 예산, 300만 원만 정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을 보면 푸드뱅크 사업자가 기부식품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거나 무상 제공의 원칙을 어길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사업 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인터뷰〉정 계장 : “그건 제 불찰입니다. 확실하게.. (다른 데는 언제요?)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푸드뱅크 업무와 관련해 발행한 안내섭니다. 기부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구호 대상인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자 등 저소득층에게 주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수급자한테 먼저 간

게 아니고요, 8, 90 퍼센트가 교회 목사들에게 많이 갔어요.

▷〈인터뷰〉김○○(사회복지협의회) : “그건 명백하게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이고 이 사항은 물론 관할 행정관청이 조치를 하겠습니까만, 고발조치하고 푸드뱅크 관계법에 보면 최대 벌과금으로 4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돼있습니다” 김 목사가 식품을 주고 있다고 내세우는 아동 보육원입니다. 아동 7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이 정리한 목록을 보면 보통 한 번에 다섯 상자만 전달됐습니다. 교회 한 곳이 수십 상자 가져간 데 비해 적은 양입니다. 취재진은 부여군에서 형편이 가장 어렵다는 지체장애인 생활시설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윤○○ 씨는 지난해 푸드뱅크의 음식을 받은 건 두 차례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윤○○ : “(뭐랑 뭐가요?) 감자하고 냉면. (감자는 상태가?) 많이 파랑고 썩어있고 말라있고 그래서 별로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햄이나 과자, 음료.. 홍삼 드링크 많은데.. 못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한번도..(좀 아쉽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나눠먹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 같더라고요.” 부여군 인구 7만 8천여명 가운데 결식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개인 복지대상자만 6천 4백 명이 넘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쓰이도록 사회 곳곳으로부터 기탁받은 푸드뱅크 음식들이 엉뚱한 데로 새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돼버렸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제 목 : 〈푸드뱅크 기부식품 빼돌리기〉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3월 9일자 〈취재파일 4321〉에서 부여군 푸드뱅크가 기부식품을 빼돌려 교회 목회자와 특정슈퍼에 판매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대부분의 푸드뱅크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무혐의 처분되었고 대부분의 푸드뱅크가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3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충남광역푸드뱅크

대표 권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사장 이 병 순

주 문 : 이 사건 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KBS-1TV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와 같은 추후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추후보도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추후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3월 9일 <취재파일 4321> 프로그램을 통해 부여군에 있는 한 푸드뱅크가 기부식품을 빼돌려 교회나 슈퍼 등에 판매하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을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신청인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기부식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취지와 같은 추후보도를 청구한다.

2. 판 단

먼저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도에서는 신청인 단체의 범죄혐의나 형사상 조치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을 위 법률규정 상의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의 청구를 정정보도청구로 가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충남광역푸드뱅크가 이 사건 보도에서 직접 언급된 바 없어(보도 상의 부여푸드뱅크가 신청인의 산하단체도 아니다) 신청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22.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 ○)

피신청인 : 뉴시스

주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시스 : 『촛불 차량시위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4일자

14:44)

내 용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촛불집회에서 차량시위를 벌인 인터넷 다음 카페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정모 씨(34) 등 회원 2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7월 19일 촛불집회에서 오후 8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까지 차량을 이용,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로~을지로~의주로~서울역으로 이어진 거리행진 뒤를 따르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7월 1일 촛불집회에서 차량시위를 할 목적으로 다음에 '촛불자동차연

합'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정팀장과 출정담당, 총무 등 역할을 분담하고 카페 게시판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회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25명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또 다른 불법 차량시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촛불 차량시위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 입건” 기사보도에 따른 반론

• 내 용 : 본 인터넷뉴스는 지난 9월 4일자 사회면에 “촛불 차량시위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 입건”이라는 제목으로 “정씨 등은 지난 7월 19일 촛불집회에서 오후 8시 4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40분까지 차량을 이용,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로~을지로~의주로~서울역으로 이어진 거리행진 뒤를 따르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7월 1일 촛불집회에서 차량시위를 할 목적으로 다음에 ‘촛불자동차연합’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우리 카페는 7월

19일 저녁 11시 이전에 해산을 하였고, 이동경로 또한 사실과 다르며, 차량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카페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시위 현장에서 시민행렬 보호, 교통정리, 카풀 및 긴급구호차량으로의 사용 등 평화적인 활동을 위하여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신청 후 보도문

뉴스스 : 『촛불자동차연합, “차량시위 아닌 자원봉사 활동”』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6일자 07:54)

내 용 : 지난 7월 19일 밤 촛불집회 현장에서 차량시위를 한 혐의(일반교통 방해 등)로 회원 25명이 경찰에 입건된 인터넷 카페 ‘촛불자동차연합’은 25일 “촛불시위 현장에서 차량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펼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카페회원들은 당시 시민 보호와 일반 차량의 교통정리, 카풀 및 비상시 긴급 구호차량으로서 시위에 참여했다”며 “평화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카페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사고 우려가 있어 교통정리를 했고, 경찰지시에도 충실히 따르고 협조했다”고 밝혔다. □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5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주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촛불 차량시위’ 카페 회원 25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4일자 15:45)

내 용 : <2008서울조정27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74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연합뉴스 : 『촛불자동차연합, “차량시위 아닌 자원봉사 활동”』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6일자 07:54)

내 용 : 지난 7월 19일 밤 촛불시위대를 따라 차량시위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회원 25명이 경찰에 입건된 인터넷카페 ‘촛불자동차연합’은 26일

“카페 개설은 시민행렬 보호, 교통정리, 카풀, 긴급구호 등 평화적인 활동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차량시위를 벌이는 것이 목적이었으

면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경찰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협조했다”고 말했다. □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6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 ○)

피신청인 : 노컷뉴스

주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취 하

신청 후 보도문

노컷뉴스 : 『인터넷카페 촛불자동차연합 “차량시위 아닌 교통정리”』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 7월 19일 저녁 촛불 시위대를 뒤따르며 차량 시위를 한 혐의로 회원 25명이 불구속 입건된 인터넷 카페 ‘촛불 자동차 연합’은 경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마치 자신들이 촛불 시위대에 합류해 교통을 방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카페 개설 목적이 교통 정리와 카풀, 긴급 구호 등의 평화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19일 촛불 시위 당시에도 차량 시위를 벌이며 교통을 방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교통 정리를 했으며, 경찰의 지시에도 충실히 따르고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

보도내용

노컷뉴스 : 『촛불 차량시위 카페 회원 25명 불구속입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7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74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 ○)

피신청인 : 민중의소리

주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취 하

민중의소리 : 『‘촛불 차량시위’ 카페 회원 25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7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74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 ○)

피신청인 : 쿠키뉴스

주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쿠키뉴스 : 『‘촛불 차량시위’ 카페 회원 25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7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74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 후 보도문

쿠키뉴스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 9월 4일 쿠키뉴스는 ‘촛불 차량시
위 인터넷 카페 회원 25명 입건’ 제하의 기사에서
“정씨 등이 지난 7월 19일 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뒤를따르
며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씨는 차량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촛불자동차연합’이라는 카페
를 개설해 회원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차량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해
당 카페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시위 현장에서 시
민행렬 보호, 일반 차량의 진입통제 및 교통정지,
대중교통이 끊어진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들과의
카풀 및 비상시 긴급 구호 차량으로서의 사용, 다
른 카페 회원이 시위대에 식료품 공급시 차량지원
등 평화적인 활동을 위해 개설한 것이라고 밝혀왔
습니다. □

보성군이 선심성 사업비가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늑장 제출하여 공무원들의 휴가를 방해하였고, 특정인의 자녀들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2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보성군 (군수 정 종 해)

피신청인 : 보성군민신문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보성군민신문 : (1) 『군수 선심성 사업비 55억 원 편
성』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0일자
1면)

내 용 : 보성군 (군수 정종해)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선심성 성격인 군수 사업비
50억 원 이상을 계상하면서 의원의 지역개발사업비
는 전혀 계상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했다.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입
장이 주목되고 있다. (중략)

한편 군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 17일에서야 의회에 제출해 의회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추경예산 규모 500여 억 원을 편성하기 위해 일년에 단 한번 뿐인 하계휴가도 현실적으로 물건너 갔다고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

(2) 『보성군 공무원 하계휴가 물건너가』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0일자 1면)

내 용 : 제1회 추경예산안 군의회에 즉각 제출

보성군(군수 정중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7월 17일 의회에 제출하였다. 추경예산 규모는 500여 억 원 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예산편성이 너무 늦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유는 2008년도 상반기가 이미 지나버렸고 늦은 예산편성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중요사업을 이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후략)

(3) 『한집 3자녀 군청 앞으로』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0일자 2면)

내 용 : 일용·고용직으로 취직... 사회적 질타

보성군수가 보성읍에 거주하는 모씨의 자녀 2남 1녀를 모두 일용직 또는 고용직으로 고용해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해 모씨의 자녀 1명을 고용한데 이어 올해 2명을 모두 고용했다. 일용직 또는 고용직 선발 기준은 지자체장의 자유임용권에 의한다 하더라도 한집에 3자녀를 출근시킨 행위는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엄연한 직권남용이다.

그간 군에서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또는 고용직이라 할지라도 수백 명의 대기자가 있다 것을 적시해 우선 가정 형편을 고려하는 등 고심하여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정 군수의 직권남용은 불평등의 원칙을 고수하며 소위 먹고 살만한 가정의 자녀를 모두 고용함으로써 공평한 기회를 제공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슴에 돌을 던진 격이다.

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던 A모 씨를 1년 전 주소이전을 하게한 후 최근 득량면에 고용직으로 취직시킨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후략)

(4) 『군수 절대 권한 인사권 선심이나? 능력이냐?』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0일자 1면)

내 용 : 보성군, 경쟁없는 ‘특채’ 논란...지역주민 복잡친다.

최근 본지에 한 집안 3남매가 취직됐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로 인해 군이 주민들의 평등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가 총체적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지역 유지 자녀 3남매가 평생직장이라 할 수 있는 보성군에 공개절차나 시험 없이 특별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기준과 채용배경을 놓고 지역민들은 지금 복잡을 친다.

보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보성읍내 거주하는 경제인 K모 씨의 자녀 2남 1녀를 군청 및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일용직 또는 고용직으로 합당한 공고나 경쟁 없이 군수의 권한으로 특별 채용했다는 것. (중략)

더욱이 3남매를 군에 취업시킨 K모 씨는 지역에서 성공한 재력가로 채용과정과 투명성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배경이나 재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보성군에 입사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보성군은 지난해 또 다른 고용직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타 지역에 거주했던 A모 씨의 주소지를 보성군으로 이전하게 한 후 관내 득량면사무소에 근무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고용직 채용이 원칙 없는 발령권자의 권한이 지나칠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 제 목 : “군수 선심성 사업비 55억 원 편성”, “보성군 공무원 하계휴가 물 건너가” 보도는 사실과 달라(또는 “군수 선심성 사업비 55억 편성”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7월 24일자 인터넷신문 및 같은 달 30일자 1면에, 각 “군수 선심성 사업비 55억원 편성”, “보성군 공무원 하계휴가 물 건너가”라는 제하의 각 보도를 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보성군 예산안에 군수 사업비 55억 원은 아예 편성된 사실이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군의회에 늦장 제출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보성군은 군의회의 요구에 따라 오히려 군의원이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8년 8월 20일 군의회에서 심의의결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 제 목 : “한집 3자녀 군청 앞으로”, “군수절대권한 인사권 선심이나? 능력이나?” 보도는 사실과 달라(또는 “한집 3자녀 군청 앞으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7월 20일자 같은 해 8월 20일자 1면에, 각 “한집 3자녀 군청 앞으로”, “군수절대권한 인사권 선심이나? 능력이나?”라는 제하의 각 보도를 한 바 있으나, 확인결과, 한집 3

자녀는 각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채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간제 근로자에 불과하고, 보성군수가 이들의 채용·발령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전결로 채용되었으며, 득량면 취직자의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사람 역시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채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보성군은 당시 한집 3자녀를 채용함에 있어, 그 채용시기와 부서가 달라 한 가족인 사실을 몰랐고, 이들이 각 대학졸업자로 합당한 자격이 있어 면밀히 심사 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에 반하는 신청인 주장 수용 불가. □

신청인 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7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21세기건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 ○)

피신청인 : 머니위크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머니위크 : 『수천억 투자금, 뭐 했길래 돌려주지 못하
나』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6일자40~42)

내 용 : 21세기건설팅(대표 양○○)이 제안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투자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투자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모 씨는 지난 2000년 21세기건설팅이 진행하는 강원도 정선군 사업에 5,000만 원을, 2001년에는 강릉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자했다.

당시 계약은 2~3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끝나면 개발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상업용지로 환지받아 준다는 것이었다.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준다는 추가사항도 있었다.

당시 전씨는 계약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 흔쾌히 투자에 동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당 개발사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또 사업기간 만료시점인 2003

년이 지나도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지연손해금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 반환 및 지연배상을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는데도 21세기컨설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전씨는 법원에 호소하는 길을 택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전씨의 손을 들어줬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1세기컨설팅은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나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전씨는 결국 21세기컨설팅 사무실 집기에 압류딱지를 붙였다.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받아내겠다는 것이 전씨의 각오다.

투자를 한 지 8년이나 지났는데도 전씨는 투자금 회수는 커녕 끝없는 싸움에 허리가 휘고 있다.

21세기컨설팅은 개인들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다. 보통 3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잡고 이 기간 동안 매년 20% 정도의 수익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사업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연에 따른 비용을 주겠다는 약속도 한다.

그러나 21세기컨설팅이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투자 원금을 되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다.

◆ 뜬 눈으로 밤새는 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은 수년 동안 투자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상황이다.

21세기컨설팅에 투자했던 한 투자자는 "4개월 전에 양○○ 대표와 면담했고 관련 서류를 가져오면 투자금을 환불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회사 영업이 예년의 30%도 안된다는니 횡성땅 회사보유분 59만 4,000㎡(18만평)를 매각하려고 한다느니 하면서 10월쯤에나 어떻게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하며 분개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없는 형편에 남편이 총각 때부터 부은 적금을 타서 아주버님 친구가 직원으로 있는 21세기컨설팅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년간 투자를 했다"며 "그 계약은 6월 말로 끝났는데 그 후 3개월째 기다려달라는 답밖에 얻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6개월째 돈을 못 돌려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투자자는 또 "아직 허가도 안 난 울진 땅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며 "사람만 믿고 투자한

우리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21세기컨설팅이 투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되돌려주지 못하자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투자금 반환소송도 적지 않다.

지난해 21세기컨설팅이 소송을 당한 투자금반환소송은 6건에 총 소송금액은 3억 500만 원이었다.

◆ 유치한 돈 수천억 원대

21세기컨설팅은 자사뿐 아니라 각 사업지별로 별도의 관계사를 설립,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대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금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에게 다시 되돌아간 돈은 극히 미미하다.

21세기컨설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1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끌어 모은 투자자금은 249억여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49억여 원의 투자자금을 모았다. 반면 빠져나간 투자금은 14억여 원.

21세기컨설팅에서 평창, 울진, 횡성 등지의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21세기티엔디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609억여 원의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제주도 한림읍 금악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관광개발제주21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0억여 원 수준이다.

강원도 정선에서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함백종합레저타운은 지난해 모집한 투자금이 279억여원이었으며 되돌려준 투자금은 19억여 원 수준이다.

함백종합레저타운은 지난해 말까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총 670억여 원을 끌어모았다.

보통 개인별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보면 21세기컨설팅이 벌이는 사업에 적어도 수천명의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은 "감사범위의 제한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조회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밝혀 끌어 모은 투자금은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21세기컨설팅이 설립한 특수관계회사는 (주)에프티피에셋컴퍼니, 골든라이프타운(주), 21세기프로젝트(주), (주)강릉온천, (주)관광개발단양21, 생명환경과학기술(주), 한국부동산시장(주) 등이 더 있다.

◆ 회사측 “투자금 안돌려줘도 돼” 발뺌

지금까지 수천억 원의 자금을 개인투자자들로 부터 모집한 21세기컨설팅은 오히려 투자자금을 되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 21세기컨설팅 부장은 “계약서상에 상법상 익명조합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자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부장은 “회사가 개발사업에 성실히 임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규제 변동에 따라 사업이 늦 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사업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투자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아직까지 개발이 완결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 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장○○ 부장은 “그럼에도 고객의 집안사정이나 외국이민 등 사유가 있으면 사장 면담을 통해 투 자금을 돌려주고 있다”며 “다만 올해는 자금사정 이 안 좋아 반환하는 것을 조금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를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금은커녕 당초 회사측이 약속한 연수 익률이나 지연배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처음 투자자들이 계약할 때에는 21세기컨설팅측 에서 3년 안에 사업이 끝난다고 공언했고 3년 이 후에도 사업이 완결되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었다.

한 투자자는 “21세기컨설팅에서는 사장 면담을 한 후에야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양○○ 대표는 이번 주에도 싱가포르 출장 이라며 자리를 비웠고 만나기도 쉽지 않으며 만난 다고 해서 바로 돌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전모 씌처럼 계약 후 3년이 훨씬 지난 후 에도 법정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는 의문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적법한 부동산개 발업체임

• 내 용 : 머니투데이의 자매지 ‘머니 위크’는 지난 2008년 9월 16~23일자(배포는 2008년 9월 9일) 비즈니스면과 2008년 9월 15일 ‘머니투데이 인터넷 판’에 ‘21세기컨설팅, 의문의 부동산개발사업’이란 제목으로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가 투자금을 수천억 원이나 유치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그 수많은 투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으며,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존속 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가 마치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소홀히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회사인 양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는 국토해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로서 간접투자 방식에 의한 테마 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로서 투자금으로 개발사업과 회사운영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으며,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태가 된 것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특성 상 투자금이 회계상 적자로 잡혀서 나타나는 현상 이며, 환지 시 개발완료된 사업용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면 투자자들은 투자금과 투자수익을 회수하게 되어 회계상 부채를 상환하게 되고 회사 몫의 남은 체비지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혀 왔 습니다. □

광명시 사무용품 공급업체로 선정된 신청인 회사가 유령업체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3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골든정보시스템 (대표 권 ○ ○)

피신청인 : 광명일보

증 재 부 : 경기증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광명일보 : 『광명시 사무용품 구입업체 유령업체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일자 정치·행정면)

내 용 : 골든 정보시스템의 사업장 주소의 전경. 담(논)으로 되어 있는 곳에 비닐하우스가 있다.

광명시가 신도리코 재생토너 사건(재생토너를 정품토너로 속여 납품)과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였으나 계약부서에서 실제 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9월 2일(화) 1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문현수 의원은 회계과에서 단가계약 방식으로 낙찰한 골든 정보시스템은 유령업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문현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 감사담당관에게 사무용품 구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계과로 사무용품 구입 시 단가계약을 골자로 하는 “사무용품 구입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단가계약 : 1년동안 구입할 사무용품의 총액 금액에 대하여 공개 입찰하여 조건에 맞는 업체를 낙찰하여 계약을 맺는 방식)

이 후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골든 정보시스템을 낙찰자로 선정하여 2월 20일(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문현수 의원이 영수증에 적시된 주소인 노온사동 340-22번지를 확인하자 등기상 담(논)으로 명기되었다. 이후 문현수 의원이 직접 노온사동 340-22번지를 찾아갔지만 개집과 비닐하우스만 발견하였다.

이후 본청 대부분의 부서와 각 동사무소에서 단가계약 방식으로 골든 정보시스템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5월 15일(목)에 골든 정보시스템은 사업장을 철산동 495-2번지로 옮기게 되고 다시 그 곳

을 확인하자 각종 전산제품을 비롯한 사무용품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문현수 의원은 이 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단가계약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장 주소를 옮겼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또한 입찰 공고시 자본금, 사업실적등 기초적인 내용을 입찰 자격기준에 포함시켰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감사담당관의 좀 더 세심한 업무지침을 아쉬워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명시 사무용품 구입업체 유령업체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일자 정치/행정면에 “광명시 사무용품 구입업체 유령업체 의혹”이라는 제목과 “사무용품 납품계약 업체의 사업장엔 개집과 비닐 하우스만 있어”라는 부제목으로 마치 골든정보시스템이 유령업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골든정보시스템은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고 5월 20일 사업장 이전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광명일보 : 『【정정보도】 “광명시 사무용품 구입업체 유령업체 의혹”에 대하여』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7일자 정치·행정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2일자 정치/행정면에 “광명시 사무용품 구입업체 유령업체 의혹”이라는 제목과 “사무용품 업체의 사업장엔 개집과 비닐하우스만 있어”라는 부제목으로 골든 정보시스템이 유령업체 의혹이 있다는 문현수 시의원의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골든정보시스템은 정상적인 영업을 해온 업체로 확인되어 유령업체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교회목사직과 기독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노조재정업무에 간여하고 모 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0
청 구 명 : 정정·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이○○ 형제, 불법으로 노조 장악』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일자 중
합면)

내 용 : (전략)

이처럼 형 이○○은 노조를 탈퇴했으면서도 노조 간사 신분으로 위장하여 상황에 따라 회계경리담당자로 복귀하여 자금회계관리를 담당했고, 회의할 때는 노조서기로서 회의록까지 작성날인하였으며, 교회담임목사 사표후에도 사용자 목사로서 교회에 배를 인도하고 전도사를 고용하여 월급까지 주는 등,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형 이○○은 사용자 목사로서 교회대표자로서 변신하여, 교회매각과 채무인수에도 관여하였다.

과연, 형 이○○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는 단 한번도 노동자신분에 있던 적이 없었다. 교회에도 사표를 낸 것도 위장사표였고, 노조에도 사표를 낸 것도 위장사표였다. 노회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자기가 사표를 냈으면 사임한 것이라고 제멋대로 유권해석하고, 교회에는 사임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담임목사로서 실제적인 목회를 하면서 현금과 재산, 교인을 관리하고, 노조에는 탈퇴했으면서도 통장과 재정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노조의 공금을 자기멋대로 집행 사용하였다. 최근까지도 기독노조의 수입금과 전임자월급을 받아 챙겨, 그 돈으로 경인교회의 전도사 사례비와 교회임대료로 지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형 이○○의 노조탈퇴와 교회담임목사 사표는 모두 위장사표였고,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마져 속일 수는 없었다.

이미 노조를 탈퇴한 자가 기독노조 재정을 결재없이 멋대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공공횡령이다. 형 이○○이 노조를 탈퇴하면서도 노조통장과 회계장부를 강창식 직무대리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관리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준다.

형 이○○이 노조자금을 입출금하기 위해 3개의 각각 다른 통장으로 자금관리를 직접했다. 즉, 경인교회 통장, 기독노조 통장, 개인통장 등, 세개의 통장이 그 증거이다.

지난번 새벽교회에서 보내온 댓가성 후원금 500만 원과 명예훼손 취하 댓가로 금호장로교회의 류○○○ 장로가 보낸 300만 원도, 형 이○○의 개인통장(농협)으로 들어갔다.

새벽교회에서 댓가성 후원금으로 보낸 500만 원도 역시 형 이○○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갔다. 형 이○○은 노조의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자신의 농협통장의 계좌번호를 새벽교회 부목사에게 적어주었던 것이다. 부천노회에서는 2008년 4월 22일까지 이○○을 경인교회의 담임목사로 인정하였다. 즉, 그당시 이○○의 신분은 노조를 탈퇴한 사람으로, 노조의 이름으로 집회를 하고 받은 노조후원경비를 사용자 신분인 이○○이 받아챙겨서는 안되는 돈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노조돈 횡령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새벽교회 500만 원 관련 횡령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일 초기화면 상단에 “이○○ 형제, 불법으로 노조를 장악하려고 시도”라는 제목으로 “새벽교회 500만 원 받은 것은 명백한 횡령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500만 원은 새벽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2008년 9월 1일자 보도와 관련 500만 원을 횡령죄 혐의로 황○○ 목사가 고소하였으나 이○○ 위원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청인측에 유리하게 종결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의신청할 것이므로 신청인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일부 주민이 택지지구내 학교신설계획이 취소·변경된 것을 항의한 것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대책위가 전문계고 이전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논현휴먼시아단지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경인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인일보 : 『문성정보미디어고 이전 ‘암초’』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2일자 19면)

내 용 : 논현2지구 입주예정자들 “전문계고 이전 반대” 민원

학교측 “지역이기주의 편승한 매도행위 묵과 않을 것”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를 논현2택지내로 이전한다는 계획(경인일보 7월 9일자 19면 보도)이 복병을 만났다. 이전 예정부지의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전문계고 이전 반대’를 외치며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21일 문성정보미디어고에 따르면 문성정보미디어고가 이전할 부지 인근 논현2택지 1블록 휴먼시아 입주예정자 대표 3명은 지난 주 이전 계획

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또 최근 문성정보미디어고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원서를 시 교육청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6월 논현2택지 1블록에 입주할 예정자들로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문성정보미디어고의 논현2택지내 이전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시 교육청에 제출한 민원서에서 “전문계고 이전으로 ‘등·하교길에 돈 뺏기고, 못된 욕설 듣고, 나쁜 행동을 보고’ 이런 우려가 기우나 편견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며 “이전 계획을 수용할 만큼 최소한의 여유도 아랑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성정보미디어고 관계자는 “문성정보미디어고는 전국 최초로 문화콘텐츠 특성화고교로 지정됐고, 매년 70% 이상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인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전문계고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문성정보미디어고 이전 반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22일자 사회면에 <문성정보미디어고 이전 ‘암초’>라는 제목으로 논현 2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전문계고 이전반대 민원을 제출하였고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입주예정자들은 이전반대를 위해 카페를

개설하고 이전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입주예정자들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주택공급시 신설예정이었던 백호초등학교와 백호고등학교가 유보 또는 취소되고 계획에도 없던 전문계고의 이전에 대해 그 경위를 묻고 시교육청에 당초대로 배치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었으나, 시교육청에 전문계고의 반대를 표명한 공식적인 민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내용 중 입주예정자들이 제출하였다는 민원서는 사실확인결과 입주예정자 중 한 개인이 사적으로 인천시교육청 사이트에 올린 비공개 민원글로서 민원글을 올린 사람은 입주예정자 대표가 아니며 글에서 또한 대표권이 있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논현2지구 입주예정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주택공급시점인 2006년 12월 5일로서 문성정보미디어고 이전 결정 이전의 사실이며 카페를 개설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예비입주자들은 문성정보미디어고 이전반대를 위한 어떤 모임도 가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문성정보미디어고 이전 반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22일자 19면에 『문성정보

미디어고 이전 ‘암초’』라는 제목으로 논현 2지구 입주예정자들은 2006년 12월 5일경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논현휴먼시아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나, 위 비대위가 문성정보미디어고 이전을 반대하기 위하여 결성된 것은 아니고, 입주예정자 중 일부가 교육청을 항의방문하여 주택공급시 신설예정이었던 백호초등학교와 백호고등학교가 유보 또는 취소되고 계획에 없던 전문계고의 이전에 관한 경위를 묻은 사실은 있으나 전문계고의 이전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는 민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인천시 교육청에 제출된 민원서는 입주예정자 중 1인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인일보 2008년 9월 23일 19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논현 2지구 입주예정자들 “전문계고 이전반대” 민원)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위 보도문을 인터넷판 초기화면에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가 뜨게하고, 2008년 9월 23일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게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경인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3일자 19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호텔이 투숙객의 세탁물 분실사건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처하고 손님을 강제 체크아웃 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디에스디엘 (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호텔서 세탁물 도난당하고 강제 체크아웃 당해”』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5일자 08:20)

내 용 : 호텔 내에서 분실한 세탁물 피해보상 책임을 둘러싸고 호텔측과 소비자가 팽팽

히 맞서고 있다.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위해 곧 미국에 들어가야하는 정모 씨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이모씨는 지난 6월 중순경 중구 의주로에 위치한 프레이저 플레이스 프레지던스 호텔에 거처를 마련했다.

한달 후 호텔 직원에게 “중요한 촬영용 의상이니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 하며 세탁물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다.

그런데 그날 오후 6시에 호텔 세탁소에서 “세탁물 왜 안주시냐”며 묻는 전화가 왔다. 정씨는 “무슨 소리냐? 9시에 호텔 1층 데스크에 맡겼다”고 말했다.

세탁물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씨는 호텔에 바로 클레임을 제기했지만 호텔 측은 사건이 터진 3일 후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사건 당일 CCTV를 확인해보니 오후 3시께 한 여자가 호텔 카운터에 와 “○○○○호 세탁물 주세요?”라는 말을 했고 호텔 여직원은 “○○○○○세탁소에서 오셨어요?”라는 말과 함께 세탁물을 건네 주었다. 그 여자는 세탁물 걸만 훑더니 어깨에 매고 유유히 호텔 밖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호텔 세탁소는 여직원도 없이 주인이 세탁물을 직접 픽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8월초 제주도 촬영을 위해 비행기 티켓과 호텔예약을 이미 끝낸 상태라 다른 스케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상을 구하러 다니느라 다른 볼일을 거의 볼수가 없었다.

도난당한 옷도 평상복이 아니었다. 900만 원에 상당했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3년 이상 준비해온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소품이었다. 모든 촬영 영상은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그 영상에 맞는 의상 또한 매우 중요했다.

할 수 없이 급하게 의상 몇벌을 샀고 그걸로라도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에 제주도 촬영에 임했다. 그러나 촬영을 하는 일주일 동안 호텔측은 사건 진행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다.

호텔의 일처리에 너무 화가 난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위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 변

호사는 “호텔의 과실이 분명하니 호텔 측에게 투숙객 물건의 도난에 대한 과실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라”고 말했다.

서울에 돌아온 이들 후 호텔 직원을 만났지만 “직원은 보험사에 연락을 했다”며 “잃어버린 의상의 영수증과 함께 투숙비 결제를 요구했다.

정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보상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가 체크아웃 하려면 3일이 남았는데도 투숙비를 내라고 하는 호텔의 처사에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더욱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다 직원은 “협박하는 거냐?”고 되레 큰소리를 치고 “경찰 조서가 있고 진술을 다 했는데 사실확인서까지 써줄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씨와 직원은 언성을 높িয়ে 댔고 직원은 급기야 이씨한테 ‘나가’라며 반말로 소리쳤다. 그러던 중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다음날 이씨가 퇴근을 하고 호텔에 왔는데 룸키로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다. 로비 데스크로 가니 데스크에는 의상을 신원불명의 여자에게 건네준 그 여직원이 있었다.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여직원은 객실 팀장을 불렀고, 팀장은 “오늘까지 사용한 투숙비를 내야 방을 내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날 “주말안에 나가겠다”는 말을 해 왔기에 갑작스런 투숙비 요구가 황당했지만 방법이 없어 투숙비를 결제하고 체크아웃 한 후 다시 체크인을 요청하자 호텔 측은 “더 이상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으니 호텔을 나가라”고 했다.

이씨는 “밤 10시에 강제로 체크아웃 당했다. 다시 체크인을 해준다고 하고선 결제를 하고나니 바로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정말 손발이 떨릴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경찰과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어 답변 드릴게 없다. 저희 잘못이 아니지만 호텔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영수증 등 관련자료도 안 주고, 금액도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으로 말이 바뀌고 있다. 새 옷을 산 영수증만 줬다. 똑같은 옷인지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보 내용에도 잘못된 내용이 많다. 그러

나 하나 하나 따지고 들면 말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잘랐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호텔 세탁물 도난사건에 대한 반론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5일자 종합면에 “호텔서 세탁물 도난당하고 강제 체크아웃 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프레이저 플레이스 호텔이 세탁물 도난사건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대처하였고 손님들을 강제 체크아웃 시켰다고 주장하면서 호텔의 실제 이름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프레이저 플레이스와 손님

은 세탁물 도난이 제3자에 의해 의도된 행위라는 것에 동의하고 경찰조사와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험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손님께서는 별도의 피해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호텔측에서는 손님의 숙박 날짜가 만료되고 다음 손님의 예약 때문에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손님께 퇴실 요청을 드린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40,000,000원



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사진을 게재하고, 기사화하여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엘○○○○○ 도○○

피신청인 : 부천포커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부천포커스 : 『희망과 절망의 한국』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9일자 9면)

내 용 : 부천시는 전국에서 10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로 거주 외국인이 1만 2천 268명 (행자부, 2007)이나 된다.

그러나 ‘부천시거주 외국인지원조례’가 불법체류자 지원문제로 갈등을 겪다 지난해 부결되는 등 부천시는 외국인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동 주민센터가 외국인 결혼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류모임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함께 하는 다문화교류모임에서 이들이 부천에서 사는 기쁨과 아픔을 들어봤다.

◆처음엔 어려워요

외국인 며느리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태국에서 2004년에 시집온 수칸 라야(35) 씨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먹는 자국의 식사예절과 달리 아주 빠르고 소란스럽게(?) 먹는 한국인들을 보고 참 예의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2년 전에 시집온 덩티부이(23) 씨는 시부모님에게 절하는 법을 배우느라 혼줄이 나기도 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외국인 며느리들은 한국의 문화와 습관에 빠르고 훌륭하게 적응하고 있었다.

◆문제는 한국인

그러나 이들이 겪는 문제는 길거리에서 더욱 커진다. 문제는 바로 한국인들.

시장의 아저씨는 가격이 얼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한국인들처럼 좀 깎아달라고 말할라 치면 얼굴도 보지 않고 팔을 뻗어 길가를

가리킨다고 한다.

병원에 갔다가 수간라야 씨가 겪은 차별은 더욱 황당했다.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에게는 ‘○○씨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만 ‘수간라야, 들어와’ 하는 거예요, 진료를 다 받고 너무 불쾌해서 왜 나에게만 반말을 쓰느냐고 했더니 ‘응 그래 미안하다’ 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간라야 씨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다면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 한다.

◆절망의 한국

많은 결혼이주민들이 보통 한국 남자들을 만나 남들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지만 한국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외국인들도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00만 원을 2008년 10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2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인터넷포털사이트 카페인 신청인 단체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촛불시위대를 뒤따라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V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촛불자동차연합 (대표 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촛불시위대 뒤따라 차량시위한 25명 입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5일자 12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7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274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9월 5일자 A12면 『촛불시위대 뒤따라 차량시위한 25명 입건』 기사와 관련, 인터넷카페 ‘촛불자동차연합’은 시위 당시 시민행렬 보호, 교통정리, 시민들의 카풀, 긴급구호 등 평화적 활동을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A2면에 2008년 10월 3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7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조 광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광고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람상조개발 (대표 최 ○ ○)

피신청인 : 상조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상조뉴스 : 『보람, 현대종합상조 TV 광고 심판대에』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1일자)

내 용 : 일부대형 상조회사들 일방적 광고 전부를
중점 심의 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상조 방송
광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하기로 해 해당 상조회
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
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이후, 상조 방송광고가 소
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우선 현행 방송광고 사후 심의 업
무 체계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광고가 개선 여지없이 소비자 정보
오인을 유발하고 정보미고지 등 소비자의 알권리
를 침해하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에 방송사업자와
해당 광고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 엄격
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상조 방송광고의 방통심의 지적 사항

▷ 상품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누락하거나,

▷ 중요정보 고지 시,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짧은
노출시간과 작은 자막 글자 또는 글자와 유사한
배경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 월납입금액 혹은 가입 상품 종류에 따라 보장
(서비스) 내용이 상이함에도 이를 혼재하여 소개
해 오인을 유발하는 등의 사항이 있음.

▷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정보가 사실상 누
락되거나 화면 표시상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해
당 정보 관련 사항을 오인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소지가 있는 사례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보람, 현대종합상조 TV광고 심판대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뉴스는 지난 9월 11일자 게시 기사에
“보람, 현대종합상조 TV광고심판대에”라는 제목으
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조 방송광고에 대해 중점
적으로 심의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
다.

제목대로라면 마치 보람상조의 TV광고에 문제
가 있어 심판대에 오른 것처럼 비쳐질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자료는 TV광고 사전
심의 규정이 폐지되고 방송사 자체 심의로 바뀌에
따라 나온 조치로 상조 뿐 아니라 보험상품 등에도
적용되며, 확인결과 보람상조의 TV광고는 심의 규
정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따라서, 보람상조의 TV광고는 이미 광고심의의 필
한 것으로 밝혀져 본 기사와는 무관하기에 이를 바
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에서 신청인의 상호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 기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사설구급차로 사체를 운구하고 유가족들에게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기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기일보 : 『변사자 운구 장례예식장서 ‘뗏대’』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1일 6면)

내 용 : 안성장례식장이 변사자 보호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보호자 동의없이 사체 검안을 마친 망자를 영구차가 아닌 129 사설구급차로 운구하고 요금을 과다 청구, 말썽을 빚고 있다.

10일 장례예식장측과 보호자들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께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J씨(35)가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안성의료원에서 사인 규명을 위해 사체검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장례예식장측이 사체 검안을 마친 변사자를 자신들이 안성의료원으로 이송시켰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들 영업장으로 이송시켰다.

특히 장례예식장측은 사체를 영구차로 운구 시켜야하나 129 사설구급차로 운구시켜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변사자의 경우 의사가 최종적으로 사망결정을 내리

기 전까지는 129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사체 검안을 통해 사망자로 확인된 뒤에는 반드시 영구차로 옮기고 요금도 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돼 있다.

또 유족들은 장례예식장이 발견지역으로부터 병원까지 약 8km를 운구하면서 거리 환산에 따른 요금이 10만 원 이하인데도 20여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사자 J씨의 형(49)은 “사체를 검안했던 의료원 영안실이 있는데도 장례예식장측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몰래 망자를 빼돌렸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장례식장측은 “1차 검안후 보호자 연락이 수시간동안 안돼 이송하게 됐다”며 “2차 사체검안을 장례예식장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29 사설 구급대 사체운반비 부담요금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9월 11일자 사회면에 기재된 129 사설구급대 사체운반비 유가족에게 부담요금 요구건에 대하여 사실 확인결과 본 신문에 기재된 20만 원의 운반비를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29 사설구급대 안성지점은 이송거리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요금을 받은 것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평택시 공무원인 신청인들이 점심시간 이전부터 식사를 하고, 출장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으며, 빈 사무실에 에어컨을 가동하여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294명
피신청인 : 경기방송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7.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기방송 : (1) 「오후 6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7월 2일 18:00)

내 용 :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사회는 어느 정권교체가 때처럼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사회의 기강도 점점 더 느슨해 지고 있습니다. 경기방송은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나사풀린 평택시의 현주소를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멋대로 근무시간에 대해 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평택시청 신관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도 20여 분이나 남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구내식당 여기저기서 식사를 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5분여가 지나면서 직원들은 더욱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식을 기다리던 직원들 행렬은 양쪽으로 나 있는 출입구 방향으로 길게 줄을 이어 나갔고 급격히 늘었습니다. 12시가 되기전부터 평택시청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꽉 들어차 만 원을 이룬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문제는 이어졌습니다.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대부분은 '외부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시 이전에 집무실에 들어오는 간부공무원들은 별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위직은 2시가 다 되어서 집무실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평택시청 공직사회의 이같은 나사(?) 풀린 행정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데 있습니다. (후략)

(2) 「오후 6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7월 3일 18:00)

내 용 : 자리 비우는 간부공무원들 많아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다반사고 출근도장만 찍고 아예 자리를 비우는 간부공무원들도 많습니다.

[리포트] 평택시청내 A과 사무실. 이 사무실내 책임자인 A모 과장은 오전부터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 민원인은 해당 과장을 만나기 위해 최근 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해당과장은 당시 자리를 비웠고 사무실내에 있던 한 직원으로부터 출장 때문에 밖에 나갔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과장은 출장도 가지 않은채 개인일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중간관리자인 초급간부 등 위로 올라 갈수록 이같은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B모 씨는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가 퇴근시간이 임박해서 들어오는 모습도 목격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공적인 일을 보러간 '출장복명서' 작성 등 그런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시간 이전에 자리를 뜨는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C모 씨는 퇴근시간 이전에 서둘러 자리를 비웠지만 당사자가 무슨일로 나갔는지 아는 직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우편배송 등 매일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을 제외한 여타 공직자들이 출장을 갈때는 반드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평택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출장의 절차가 있어요 제6조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직원

은 부서장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택시청 공직사회가 더 무너져 내리기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3) 「오후 6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7월 4일 18:00)

내 용 :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지만 과연 업무가 밀려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안 OO 기잡니다.

[리포트] 퇴근시간이 임박한 평택시청. 각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퇴근준비에 분주합니다. 컴퓨터 끄기 등 직원들은 각자 책상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고 오후 7시가 넘어서면서 대부분의 사무실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나 10여개 과가 넘는 사무실 곳곳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직원들이 남아서 야근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과연 밀린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야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지만 일부 책상위에 있는 컴퓨터에는 업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켜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지만 해당 사무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와 업무는 뒷전인 채 잡담을 하는 등 시간 때우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에어컨과 전기를 켜놓고 에너지만 낭비한 채 ‘수당’을 챙기기 위한 야근(?)을 하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이상스런 야근(?)이 평택시청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왔다는데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첫째는 공무원들의 의식에 맡기고요 점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도가 있고 시간의 근무를 하는 부서가 많으면 그런 누수가 있지만 최대한 그래도 양심에 맡기면서 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화 도시를 외치고 있는 평택시. 과연 평택시 행정이 국제화에 걸 맞는지 되돌아 볼 시 기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평택시 공직기강 긴급점검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방송이 지난 7월 2일자 나사 풀린 평택시 공직기강 긴급점검(1) “점심시간도 되기 전부터 구내식당 만 원”이란 제목으로 평택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시간 20분 전부터 많은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평택시청 구내식당 배식은 10분 전부터 시작하고 10분 전에 식사하는 사람들은 민원실 교대 근무자나 중식시간 사무실 민원 상담을 위한 대기자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나사 풀린 평택시 공직기강(2) “자리비우는 간부공무원들 많아”라는 제목으로 평택시 초중급 간부들이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출근도장만 찍고 아예 자리를 비웠으며, 과장은 출장도 가지 않은 채 개인일로 자리를 비웠고 또한 퇴근시간 전에 자리를 비우고, 출장복명서는 흔적도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간부 공무원 누구도 개인일 등 여타의 사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수당 챙기기 위한 야근, “빈사무실에 에어컨 썰썰, 전기낭비”라는 제목으로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는 업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켜져 있고, 술 마시고 와 업무는 뒷전인 채 잡담만하며 시간을 때우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됐으며, 사무실에는 에어컨과 전기를 켜놓고 에너지만 낭비한 채 ‘수당’ 챙기기 위한 야근을 한 꼴이며, 이 이상스러운 야근이 평택시청의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에어컨은 중앙 냉·난방식으로 평택시청 개청된 이래로 오후 6시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가동한 사례가 없으며, 업무와 상관없이 ‘수당’만 챙기기 위한 야근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9,4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신청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2004년 일본에서 해당 배우들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 없이 한류스타 사진집이 출간된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3
청 구 머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8.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신동아 : 『초상권 주먹구구 처리로 한류(寒流) 열풍
에 찬물』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호 250
~257면)

내 용 : 지난 3월초, 일본 교도통신이 발행하는 한
류(寒流) 잡지에서 객원기자로 일하는 오○○ 씨
를 인터뷰했다. 오씨는 인터뷰 말미에 “한국의 연
예기획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좀더 신뢰감 있게 일을 추진하면
한류 열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아쉽다”
고 했다.

오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생
각에 실제로 그 같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지난 3월 말, 일본에서 한국 엔터
테인먼트 콘텐츠를 판매하는 지인을 만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었더니 “여러 건 있는데, 조○
○ 씨 건이 가장 컸다”고 했다. 조○○(50) 씨라
면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잘 찍는 작가로 널
리 알려진 인물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 때는 이
회창 후보의 선거용 포스터 사진을 찍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취재에 나선 지 2주쯤 지난 4월 중순, 사무실로
국제우편이 도착했다. 두 건의 판결문과 한 건의
소장, 그리고 일본 유수의 출판사 ‘문예춘추’에서
보낸 보도자료 등이었다. 이들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씨와 문예춘추 사이에 벌어진
일을 재구성해본다.

사진집 ‘the man’

2004년 4월, 조○○ 씨는 ‘the man’이라는 타이
틀로 일본 도쿄도 진보초 소재 올림푸스 갤러리
에서 사진전을 열고 있었다. 그날은 마침 ‘온사
마’ 배우준이 일본을 처음 방문한 날이었다. 그
무렵 NHK에서 드라마 ‘겨울연가’가 ‘겨울 소나
타’라는 제목으로 절찬리에 방영되면서 일본에서
배우준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배우준 등
한국 배우가 여럿 포함된 조씨의 사진전 역시 성
황을 이뤘다. 일본의 몇몇 출판사는 조씨에게 “한
류 스타들을 모아 사진집을 내자”고 제안했다.

조씨는 사진전을 돕고 있던 블레스월드 황○○
대표에게 어떤 출판사에서 사진집을 내는 것이 좋
을지 조언을 구했다. 황 대표는 “돈을 원하느냐,
아니면 명예를 원하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명예”
라고 답했다. 황 대표는 “그렇다면 문예춘추가 가
장 좋겠다”고 했다. 오랜 전통이 있는 출판사로 일
본 내 지명도와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였다. 1923
년 설립된 문예춘추는 현재 ‘월간 문예춘추’와
‘주간문춘’ 등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문고, 전집
등을 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쿠타가와상과
나오키상 등 일본 최고의 문학상을 제정, 수여하는
명성 있는 출판사다.

문예춘추에서 사진집을 내기로 결정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일로 사진집 출판 계약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5월28일에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사진전을 열고
있던 조○○ 씨에게 문예춘추 담당자(요시나가)가
직접 찾아가 구성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황
대표가 동석해 통역을 도왔다. 문예춘추 측은 “배
우준의 사진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조씨는 “한 사람만 넣게 되면 좋지
않으니 그와 동격인 배우들도 같은 페이지로 해줬
으면 좋겠다”고 했고, 문춘 관계자는 조씨의 의견
을 받아들여기로 한 뒤 돌아갔다.

조씨는 5월말 자신이 갖고 있던 사진자료를 블

레스월드를 통해 CD와 웹하드로 문예춘추에 넘겼다. 사진집에 수록할 사진도 골라줬다. 이후 사진집 계약과 출판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6월 9일에는 사진집의 레이아웃 회의를 위해 조씨가 일본의 문예춘추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

문예춘추를 방문하기 전 황○○ 대표는 조씨에게 최종계약서의 한글본을 보여주며 최종 점검을 받았다. 조씨는 문예춘추의 출판권 보유 기간을 당초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초판 발행부수를 3만부에서 5만부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초판 증정 부수도 30부에서 100부로 늘려줄 것과, 저작권료를 당초의 발행부수 1부당 본체 가격의 13%였던 것을 1부당 5만부까지는 13%, 5만1부부터는 15%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 대표가 문예춘추 관계자들에게 조씨의 의견을 전달한 뒤 본격적인 디자인 회의에 들어갔다. 조씨는 가(假)편집된 사진집을 다 펼치게 한 뒤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문예춘추 측이 가편집한 사진집은 120쪽이었다. 배용준과 이병헌 사진이 각각 14장, 장동건 12장, 권상우 11장, 원빈 4장, 그밖에 다른 배우와 문화인 사진이 배치돼 있었다. 디자인 검토 과정에 조씨의 이런저런 요구로 8쪽이 추가됐다. 출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추가 지면이 생기자 문예춘추 측은 '시간이 빠듯하니 만일을 위해 계약서에는 출판 예정일을 7월2일로 확정짓지 말고 7월초로 기록하자'고 제안했다. 조씨도 이에 동의했다.

초상권에 발목 잡힌 사진집

문예춘추와 조○○ 작가, 그리고 블레스월드 3자 계약으로 이뤄진 사진집 'the man' 출판계약서는 일본과 한국을 오간 끝에 6월 29일야 최종 작성됐다. 7월 2일, 사진집도 예정대로 출판됐다. 초판으로 찍어낸 5만부는 매진됐다. 증쇄분 12만부가 곧장 인쇄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사진집에 실린 한국 배우들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조○○ 씨는 한국 배우들 설득에 나섰지만 반발은 예상보다 컸다.

사진집 출간 계약 과정에서 조씨는 해당 배우들로부터 초상권 허락을 받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 약속했다고 한다. 다음은 황 대표의 설명.

“문예춘추 관계자는 일본에 잘 알려진 배용준의

사진만으로 사진집을 내고 싶어했다. 그런데 조씨는 ‘배용준만 페이지가 많아지면 초상권 허락을 받기 어렵다’며 ‘이병헌, 장동건, 권상우도 같은 페이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예춘추가 조씨의 이 같은 뜻을 받아들여 남자배우 5인 중심의 사진집을 제작하게 됐다.”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예춘추는 블레스월드를 통해 초상권 문제에 대해 재차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6월 9일 문예춘추 방문 직전 당시 블레스월드 직원이던 최모 씨는 조씨에게 “각 연예인들로부터 초상권 사용 승낙을 서면으로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조씨는 “한국 연예인은 서면 승낙을 받으려고 하면 대단한 이권이 발생하는 걸로 착각해 거액을 요구하거나 사인을 하지 않는다”며 “연예인과 친분이 깊은 내가 직접 구두로 허락받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후에도 거듭 황 대표 등이 초상권 확인을 요청하자 조씨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묻느냐”며 짜증을 냈다고 한다.

계약서에도 초상권은 조씨의 책임으로 명시돼 있다. 계약서 제2조 2항에 ‘게재하는 사진의 피사체인 인물로부터 초상권의 사용허락은 갑(조○○)이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놓은 것. 이뿐만 아니라 ‘당해 인물(연예인)이 병(문예춘추)에 대해 초상권 및 여러 가지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에도 전부 갑(조○○)이 그 책임을 지며 병(문예춘추)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고 적시했다.

허위 보도자료 소송

초상권을 문제 삼은 배우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조○○ 씨는 2004년 7월 8일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한국 언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출판)계약 당시 사진집의 출판은 7월말로 구두 약정했으며, 사용될 사진의 매수도 제한된 수량만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출판 전에 작품집에 수록될 사진, 책 제목, 레이아웃에 대해 문예춘추와 조○○ 작가가 최종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했다.

일부 유명인에 대해서는 초상 사용에 대한 최종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나, 조작가가 작품집 출판 전까지 초상 사용 허락을 받으려 했고, 끝내 허락하지 않는 유명인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과정에

사진을 삭제할 계획이었다.

조 작가가 러시아로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뜻밖에 일본의 문예춘추가 작품집 내용에 대한 최종 협의과정 없이 작품집 출판을 강행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일본 내의 대리인을 통해 최종 협의과정 없이 예정보다 일찍 출판된 경위를 조사하던 중, 일부 연예인들로부터 사진 사용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됐다.

조 작가는 즉각 문예춘추에 공문을 보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작품집의 인쇄와 판매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 작가는) 문제를 제기한 연예인들에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문예춘추도 작품집의 방송과 신문광고를 비롯한 모든 홍보활동을 즉시 중단했으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〇〇 작가와 진지하게 협의 중이다. 조 작가는 고문 변호사와 함께 금주 말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문예춘추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가 뿌려진 뒤 한국에서는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 ‘한류스타 사진 무단도용…조〇〇 씨 “日 출판사에 속았다”’ (스포츠조선), ‘한류스타 사진집 소송, 누구의 잘못인가’ (스포츠서울), ‘조〇〇 씨 “출판사가 강행…판매중지 요구”’ (일간스포츠)… 일본 매체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배씨 등 5인 문예춘추 제소로’ (마이니치), ‘윤사마 화났다’ (주니치), ‘윤사마 등 사진 무단 사용, 문예춘추에 판매중지 요구’ (스포츠닛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하루 전인 7월 7일, 조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예춘추에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을 받은 문예춘추 측이 황당해하고 있을 때 조씨 측은 문예춘추에 ‘보도자료는 한국의 연예인들을 달래기 위한 퍼포먼스이니 화내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7월 10일경 직접 일본으로 가서 해명하겠다’고 연락을 취했다. 파문이 커지자 계약을 중개한 블레스월드 황 대표가 한국으로 급히 건너왔다. 황 대표가 묵고 있던 호텔방에서 조씨 측 인사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7월 9일 조씨는 변호사 등과 함께 문예춘추를 직접 방문해 문예춘추 및 황대표 회사 직원, 전문통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12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했다. 문춘에서 ‘정정보도를 하라’며 문

서에 사인 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씨는 끝내 사인을 하지 않고 귀국했다. 그러자 문예춘추 측은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국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일본 재판부에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문예춘추가 한국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조〇〇 씨에게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조씨가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문예춘추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일본 도쿄지방법원도 2007년 11월 5일, 조씨가 문예춘추에 9,079만 7,520엔(당시 한화 약 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the man’ 증쇄분 12만부를 폐기한 것과 부대비용, 그리고 이미 판매된 초판 사진집에 수록된 한국 배우들에게 지급한 초상권료 등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민사소송 이어 형사소송으로 비화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두 건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조씨는 한국 재판부 판결(2,000만 원)은 이행한 반면, 일본 재판부의 배상 판결은 2008년 5월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다.

문예춘추 측은 지난 1월 28일, ‘대한민국 보도관계자 제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조〇〇 씨가 (일본 재판부의 배상판결 이후)한국 매스컴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코멘트했다”며 “판결 이후 2개월 반이 지난 2008년 1월 28일 현재까지 문예춘추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배상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건의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하던 ‘the man’ 초상권 파문은 조〇〇 씨 측이 블레스월드 황선용 대표를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문예춘추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 대표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을 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조〇〇)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 대표가 출판계약 전후 사정을 진술하면서 입출국 날짜에 혼선을 빚어 날짜를 잘못 진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야 하고, 그 결과 증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난 4월 3일 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황 대표가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진술이 믿을 만하고 △조○○ 씨가 유명 연예인 등의 사진촬영으로 널리 알려진 영향력이 있는 사진작가라는 점 △조○○ 씨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며 역시 무죄 판시했다. 그러나 황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한 상태다. 5월 7일 기자와 만난 블레스월드 황 대표는 “두 번의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까지 치르게 돼 피해가 크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일본과 한국에서 진행된 두 건의 민사재판에서 조씨의 잘못이 모두 인정돼 배상판결이 나왔다. 그런데도 조씨는 한국 재판부가 선고한 배상금만 내고 일본 재판부가 선고한 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 있던 내가 형사소송에까지 휘말려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나야 내 개인 문제라 그러려니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계약 당사자로서 피해를 본 문예춘추는 어떻게 생각하겠나. 자칫 ‘한국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조○○ 씨 측, 답변 안 보내

조씨 측이 황 대표를 형사 고소하자, 문예춘추 측은 “황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는 자신(조○○)의 책임을 황 대표에게 전가하려 한 것으로 수치스러워해야 할 행위”라며 “(문예춘추에)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경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조씨를 비난했다. 또 “향후에도 조○○ 씨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두 건의 민사재판 결과와 황 대표 형사소송 등에 대한 조○○ 씨의 생각을 듣기 위해 기사는 지난 5월 10일과 13, 14일 세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

했다. 5월 12일에는 조씨가 속한 아이콘스튜디오 e메일 주소로 질문지를 보냈다.

아이콘스튜디오 관계자는 첫 번째 통화에서 “작가님(조○○)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며 “왜 기사를 쓰려고 하느냐”고 반문한 뒤 “묻고 싶은 것을 e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다. 5월 12일 질문지를 e메일로 보낸 뒤 5월 13일 두 번째로 전화를 걸어 “메일을 봤느냐”고 문자 “작가님이 보셔야 답할 수 있는데, 작가님이 촬영 때문에 지방에 있다”며 “(서울로) 올라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했다. 5월 14일에는 조○○ 씨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답신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여러 차례 “꼭 답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결국 답변은 오지 않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진작가 조○○ -일본 “문예춘추” 4년 송사 내막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출판된 한류사진집으로 당했던 누명을 벗게 되었다.

• 내 용 : 본 잡지는 지난 6월 1일자 250p~257p의 지면에 “초상권 주먹구구 처리로 한류 열풍에 찬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진가 조○○이 한류스타들의 초상권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진집을 출판하여, 한류열풍을 막은 장본인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담당 기사는 사진집 출판과 초상권 동의 및 계약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조○○의 입장 확인 없이 당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 황○○의 거짓 인터뷰와 기자의 추측을 근거로, 피해자인 사진작가 조○○을 마치 초상권을 무시하고, 오로지 출판에 따른 개인의 이익 때문에 사진집을 출판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의 재판 결과 한류사진집은 조○○의 책임이 아니라, 피고 황○○의 여러차례에 걸친 거짓말에 의하여 한류 사진집이 출판된 것이라 밝혀졌습니다.

이에 신동아 담당 기자와 편집장은 상기 기사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합니다. 더불어 본 기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동안 한류발전과 사회 소외계층

을 위하여 수십년간 노력해왔던 사진 작가 조〇〇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인정하며, 사진 작가 조〇〇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사실에 입각한 새로운 기사를 심층 취재하여, 지난 2008년 6월호의 관련 기사와 같은 분량과 편집 수준으로 다시 보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유감을 구두로 표명한다.

- 아 래 -

지난 신동아 6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사진작가 조〇〇 님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판결문 및 ‘블레스월드’ 황대표의 진술을 위주로 보도하게 되어 조〇〇 님에게 심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끼치게 되어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조〇〇 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후속보도하게 될 경우, 관련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 및 심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2008. 6월호의 『사진작가 조〇〇-일본 ‘문예춘추’ 4년 송사 내막』 제하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후속보도 하되,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가. 신청인이 ‘블레스월드’ 황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결과 및 이에 대한 신청인 측의 입장

나. 2심 재판 이후의 신청인의 향후 행보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동아> 2008년 11월호 300쪽 이내에 4쪽 이상의 분량으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크기(“초상권 주먹구구 처리로 한류 열풍에 찬물”)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shindonga.donga.com/>)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고, <네이버>, <다음>, <애플스>등 포털사이트에게 조정

대상 기사의 삭제를 요청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동아 : 『조〇〇, ‘초상권’ 침해 억울함 풀 길 열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호 278~281면)

내 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주)는 8월 28일,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블레스월드 황〇〇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했던 원심(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6년 2월 9일 일본의 대표적 월간지 ‘문예춘추’를 발행하는 (주)문예춘추가 사진작가 조〇〇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씨의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검찰의 기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황씨는 당시 “2004년 6월 14일 또는 15일에 조〇〇의 사무실을 방문해 함께 아귀찜을 먹으며 조〇〇 씨로부터 직접 초상권의 사용 승낙 사실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문예춘추에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댓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익명으로 욕설이나 감정적 내용을 유포한 점을 종합해보면 황씨가 조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게시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문예춘추와 조〇〇 씨 간에 4년 동안 이어져온 ‘초상권’ 송사(訟事)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004년 7월, 문예춘추가 사진집 ‘the man’을 출간하면서 불거진 ‘초상권’ 문제로 지금까지 모두 네 건의 송사가 진행됐다.

‘초상권’ 둘러싼 네 번의 재판

첫 번째 송사는 문예춘추가 사진집 발간 이후 ‘조〇〇 씨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2006년 5월 4일 조씨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데에는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 씨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황씨는 ‘조○○ 씨가 (2004년) 6월 14일 또는 15일에 초상권 사용을 승낙했다’고 증언했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문예춘추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문예춘추와 조○○ 씨 간에 4년 동안 이어져온 ‘초상권’ 송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두 번째 재판은 일본에서 열렸다. 문예춘추는 ‘초상권은 작가가 책임진다’고 돼 있는 출판계약서를 근거로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집 초판 5만부에 수록된 배우들에게 지급한 초상권 사용료와 ‘초상권’ 문제 때문에 파기한 증쇄본 12만부의 제작 비용 등을 모두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도쿄지법은 2007년 11월 5일 조○○ 씨에게 9,079만 7,520엔(현재 약 11억 원)을 문예춘추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두 건의 민사재판에서 거듭 패소한 조○○ 씨 측은 황○○ 씨를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문예춘추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씨가 허위 진술을 했으며, 포털사이트에 조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4월 3일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8월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황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황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형은 확정됐다.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초상권’ 문제로 촉발된 네 건의 재판을 관통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초상권 사용 승낙’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출판계약서상 초상권에 대한 책임은 작가인 조○○ 씨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씨는 초상권 사용을 승낙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문예춘추는 사진집을 출간했다.

지금까지는 출판계약서상 초상권에 대한 책임이 명시된 조○○ 씨에게 재판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계기로 국면이 전환됐다.

무엇보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2004년 6월 15일경 문예춘추에 “조○○으로부터 초상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제 인쇄에 들어가도 좋다”고 말했고, 문예춘추가 이 말을 믿고 다른 확인 절차 없이 6월 16일경 사진집 ‘the man’ 인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특히 조씨 측에서 황씨의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주효했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황씨는 2004년 6월 11일 일본에서 태국으로 출국했고, 6월 14일 심야에 태국을 떠나 6월 15일 아침에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6월 14일(또는 15일) 조○○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조○○으로부터 초상권의 사용승낙 사실을 확인했다”는 황씨의 법정 증언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출입국 기록으로 자신의 진술이 모순된 것으로 나타나자 황씨는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이 같은 소명을 받아들여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4월 3일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황씨가 단순한 착오로 날짜를 혼선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고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씨의 손을 들어준 것은 크게 네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황○○ 씨가 가져온 한글계약서의 초안과 수정안 등에 조○○ 씨가 여러 차례 가필을 하면서 출판 시기와 초상권의 사용 승낙을 완료하는 시점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에 주목했다.

둘째로 조○○ 씨로부터 사진집에 실릴 사진을 미리 제공받은 문예춘추는 초상권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인쇄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었고, 문예춘추가 황선용을 통해 조○○이 초상권의 사용 승낙을 완료했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던 점도 고려됐다.

셋째로 황씨가 6월 15일경 문예춘추에 ‘조○○으로부터 초상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을 들었으

니 이제 인쇄에 들어가도 좋다'고 말했고, 문예춘추는 이 말을 믿고 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6월 16일경 사진집의 인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작용했다.

넷째 황씨가 초상권 사용 승낙 사실을 확인했다는 날짜를 6월 14일 또는 15일로 주장하다가, 출입국 사실 등을 확인해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전화상으로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도 조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황씨가 '단순히 착오에 빠져 증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기억에 반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 내린 것. 즉 항소심 재판부는 문예춘추가 사진집 인쇄에 들어가도록 '초상권 사용 승낙'을 확인해 준 이는 조OO이 아니라 황OO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위증 혐의에 대해 황씨의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조OO 씨는 '초상권 침해'라는 억울함을 풀 수 있

는 길이 열렸다.

조씨는 항소심 판결 이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패소한 두 건의 민사 재판 결과를 바로잡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씨는 “한국과 일본에서 패소한 손해배상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로 문예춘추가 사진집을 출간하게 만든 초상권 승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씨는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사건 경위 요약서' 말미에 한국과 일본에서 내려진 두 건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황OO의) 위증을 밝혀야 그동안의 모든 거짓 말에 대한 사실을 문예춘추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피해자다. 중개인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 작가의 명예에, 출판사의 도덕성에도...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

어청수 경찰청장이 추석 연휴기간 중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 간부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울강남경찰서 (서장 정 영 호)
피신청인 :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8.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노컷뉴스 : 『어청수 청장, 이번엔 직원에 ‘폭언’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5일자)
내 용 : 불교계로부터 퇴진압박을 받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전의경 어머니회원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강남서 관계자에 따르면 어청수 경찰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14일 낮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했다.

어청장, “이 ××야, 똑바로 해” 막말

어 청장은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은 뒤 간부, 전의경 어머니회 회원 등과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경찰서장을 향해 “이 ××야, 똑바로 해, 직원들 교육 똑바로 하란 말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상황실장에게는 출신 학교를 언급하며 “이 ××야, 이것도 제대로 몰라”라고 심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 청장은 상황실장 등에게 경력배치 등 현안을 질문했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같은 폭언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어청수 청장 폭언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언론은 2008년 9월 15일 인터넷뉴스

노컷뉴스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추석연휴 기간 중 치안현장 점검 차 강남서를 순시하면서 ○ 경찰서장에게 “이 ××야, 똑바로 해, 직원들 교육 똑바로 하란 말야” ○ 상황실장에게 “이 ××야, 이것도 제대로 몰라” 등 심하게 질타했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강남경찰서장은 물론 강남경찰서 직원 모두가 중대한 업무태만을 행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경찰청장이 추석 연휴기간 중 치안현장을 불시 점검하기 위해 강남경찰서를 순시하면서 경력 배치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한 상황실장에게 “상황실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라고 한 것과 당시 경찰청장

의 일정에도 없는 봉은사 방문 가능성을 사찰에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야기한 정보관의 행동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지적을 받았을 뿐,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인제군청 담당공무원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실시공을 묵인한 채 준공허가를 내주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1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인제군 (군수 박 상 재)

피신청인 : 강원신문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강원신문 : (1) 『수해복구공사 물로 본 간 큰 공무원』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4일자 사회면)
내 용 :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이 하청업자로부터 현금, 양복, 선글라스 및 접대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포장공사 시 보조기층에 규격품이 아닌 바위 통세미로 매립한 것을 묵인하고 준공 허가를 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타 현장은 예산이 삭감되어 지불되었으나, 이 공사는 오히려 중간에 설계변경 등의 명목으로 예산이 초과 지급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는 이 공사는 C건설에서

하청을 맡아 하청회사인 D건설에 넘겨졌는데 26억 원의 공사비 중 약 9억 원이 미지급 된 상태로, 임금 및 자재 문제로 약 5억 7천만 원이 압류되어 있으며 미 압류된 금액은 2억 원 정도라고 한다.

D건설 대표 K씨에 따르면, 압류를 풀어 준공검사를 받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원청 및 하청에서 서로 미루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으로 청와대가 강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방 토착형 비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속보〉 경찰,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6일자 사회면)

내 용 : 〈속보〉 하청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수해복구 현장의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담당 공무원들을 ‘전형적인 지방 토착형 비리’ (본지 2008년 9월 14일) 보도와 관련, 인제경찰서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자 K 씨가 돌연 잠적한 가운데, 하청업체 인부 K모 씨에 따르면 군청의 담당 과장과 계장, 현장 감독관 등에게 현금 및, 접대 골프, 양복, 선글라스 등 5천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중간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초과 지급 받았으며 부실공사 역시 별다른 제재 없이 준공검사를 필했다고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해복구공사 물로 본 간 큰 공무원 사실과 달라 (또는 수해복구공사 물로 본 간 큰 공무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4일자 사회면에 “수해복구공사 물로 본 간 큰 공무원”이라는 제목으로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이 하청업자로부터 현금, 양복, 선글라스 및 접대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포장공사 시 보조기층에 규격품이 아닌 바위 통세미로 매립한 것을 묵인하고 준공허가를 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 공사는 전면책임감리 제도하에 별도의 책임감리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하청업자로부터 현금, 양복, 선글라스 및 접대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기층 시공을 포함하여 각 공정마다 해당 감리단의 검측 및 입회하에 시공하는 등 철저한 품질 관리로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인제군 수해복구공사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9월 14일 사회면 「“수해복구공사 물로 본 간 큰 공무원”」 제하의 기사에서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인제군 담당 공무원이 하청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준공 허가를 내주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제군청은 본 공사가 전면책임감리 제도하에 별도의 책임감리단이 운영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향응의 대가로 부실시공을 묵인하거나 준공 허가를 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신문>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원 보도의 부제목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강원신문> 초기화면의 중앙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일반적인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같은 페이지에 나오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들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경·검찰 수사 결과 허위보도로 밝혀진 경우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강원신문 : 『인제군 수해복구공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전북경찰 내부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북지방경찰청 (청장 김 철 주)
피신청인 : 뉴시스

증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뉴시스 : 『어청수 경찰청장 언행 논란, 경찰 내부 비
판론 꿈틀』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7일
자 14:48)

내 용 : 어청수 경찰청장이 종교편향 문제로 불교
계로부터 끊임없는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가
운데 급기야 최근에는 ‘막말논란’에까지 휩싸이자
경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물론 심지어 용퇴
마저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의 과잉검문 논란에
이어 어 청장의 사진이 기도회 포스터에 기재된
것 등을 놓고 불심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추석연휴 일선경찰서 방문 당
시 간부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
북경찰 내부에서도 어 청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여
부를 떠나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어 청장이 불교계 등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
온 것과 관련, 그동안 최대한 말을 아껴오던 경찰
조직이 막말 논란 이후 경찰 총수의 최근 언행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나서는 등 어 청장의 자성
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북경찰의 A직원은 “부하직원을 향한 청장의
막말 논란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총수 한
명으로 인해 경찰 조직 내부의 균열이 우려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상황인 것만은 사실
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털어냈다.

이어 B 직원은 “경찰 수장의 최근 행보와 언행
에서 비롯된 불통이 이제는 모든 경찰관들에게 튀
는 것을 볼 때 그저 걱정만 앞설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그동안 어 청장을 향한 전
방위 파면 압박을 지켜보며 한편으론 너무 심하다
고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일련
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제는 청장이 전 경찰관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
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어 청장의 막말논란 이후 전북의 일

선 경찰들은 “청장이 국회에서 사퇴를 묻는 질문에
15만 경찰의 사기저하를 크게 걱정한 것은 정말 고
마운 일이지만 오히려 청장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
로 인한 구설수가 전 경찰의 사기를 곤두박질시키
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조직 내부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어청수 경찰청장 언행 논란, 경찰 내부
비판론 꿈틀”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사는 9월 17일자에 “어청
수 경찰청장 언행 논란, 경찰 내부 비판론 꿈틀”이
란 제목으로 전북경찰 내부에서도 어 청장의 발언
에 대한 사실여부를 떠나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어 청장의 발언에 대해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관 3명의 개인의견을 달아 전북경찰
전체 의견인양 기사화 한 것은 언론의 자세가 아
니라고 생각되고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의견이 아닌 것
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북지방경찰청

청장 김 철 주

조정대리인 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뉴시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1-1번지

서원빌딩 7층

대표이사 배 기 철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 익일
오전 9시부터 2일간 「뉴시스」 홈페이지 사회면 초
기 목록에 별지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연결되도록 한다.

2. 별지 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
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뉴시스는 지난 9월 17일 “어청수 경찰청장 언행 논란, 경찰 내부 비판론 꿈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전북경찰 내부에 어청수 경찰청장의 발

언으로 인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은 어 청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전북경찰 내부에서 어 청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뉴시스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5일 08:55)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 내용 참조〉 □

신청인이 신고한 나무도난 사건의 경찰수사 결과, 신청인의 가족들이 나무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광주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광주일보 : 『‘나무 도난’ 알고보니 가족이 처분』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8일자 6면)

내 용 : ○…광주의 한 묘목 농장에서 나무 수천 그루가 도난당해 2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이 나무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한바탕 해프닝.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43) 씨는 10여년 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묘목농장에 심어놓은 4천여 그루가 도난당해 18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4일 신고했다는 것.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나무를 심고 미국으로 간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땅 주인이 김씨의 오빠 등에게 나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가족들이

500여만 원을 받고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보면 피해자의 신고처럼 나무가 도난당한 것 같진 않다”고 설명.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묘목도난 가족 관계 없어”

〈속보〉지난 18일자 사회면 ‘쌍나팔’의 ‘나무도난 알고보니 가족이 처분’의 기사와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 사건은 가족과 관계없는 제3자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에 대해 피해자인 김모(여·43)씨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가족의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하루빨리 범인이 잡혀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18일자 7면 “‘나무도난’ 알고보니 가족이 처분” 제하의 기사와 관련, 현재 경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김모(여·43)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족의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하루빨리 범인이 잡혀서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6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주일보 사회면(제7면) 쌍나팔 인접기사에 속보형식으로 게재하되, 제목(정정)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나무도난’ 알

고보니…)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주일보 : 『정정 보도합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일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복지시설 지도원인 신청인이 시설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묵인·방조하였으며, 임신사실을 숨기고 생활지도원으로 재임사하여 출산 후에는 아이와 함께 근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데일리안 광주전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데일리안 광주전라 :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9일자)

내 용 : 감독청 강진군, 묵인 또는 비호 배경 두고 인사 청탁, 금품수수 등 의혹제기

전남경찰청 여성기동대는 수년 동안 복지시설의 아동을 성폭행 해온 강진군 ○○원의 (전)생활지도원 K모 씨를 입건, 17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강진군은 아동성폭행과 편법적 자금운영, 인권유린행위 등을 묵인, 비호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진군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 ○○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K씨는 시설의 원생 Y양(정신지체장애, 당시 중학생) 등을 수년 동안 내부 시설과 폐가 등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나 수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씨는 지난해 시설의 원생인 미성년자 S양(정신지체장애)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심리중 원장의 지시에 따라 받아 제출된 취하서를 이유로 석연치 않게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국가인권위’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성폭행사건이 발생한 ○○원에는 K씨와 관련된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와 관련, 원장 K(여)씨는 아동성폭행 사건 관련자료 중 아동상담일지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경찰에 제출했다 적발돼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으로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사건 은폐, 축소에 앞장서는 등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행위를 일삼아 오고 있다.

○○원은 원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복지법인으로 지난 수년간 원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설을 지도 감독해야 할 강진군은 성폭행 사건 발생 후 군의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들어온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비호하고 있어 그 배경을 의심받고 있다

생활지도원 L(여)씨의 경우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성폭행 사건이 모두 발생했으나 묵인, 방조했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재입사하여 출산 후 자신의 아이와 함께 근무함으로써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으나 강진군은 오히려 원장의 요청에 의해 생활지도원 L씨에게 건강관리직을 마련해 배려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생활지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L씨를 재입사 시키고 비호하는 배경에는 L씨가 자비원의 자금 흐름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거나 자비원을 관리 감독청 고위공직자의 압력이나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수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진군 담당공무원은 “인사는 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지도원 L씨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9일자 사회면에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생활지도원 L(여)씨의 경우 ① 사무국장으로 재직 시 성폭행 사건이 모두 발생했으나 묵인, 방조 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성폭행 사건은 그 당시 간호조무사(현재 사무국장)에게 은밀하게 정확한 증거와 물증이 없이 구두로만 들은 내용(업무보고형식이 아님)이라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밝혀왔습니다. ②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재입사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으나 채용당시 채용신체검사서에 분명히 의사진단 결과 “임신중” 이라고 적혀있었고 임신한 여성이 취직을 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배와

여성인권 탄압이라고 밝혀둡니다. ③ 출산 후 자신의 아이와 함께 근무함으로써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으나 강진군은 오히려 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제 아이가 매일 함께 근무하는 것처럼 기사화 되었는데 시설의 특수한 근무형태(1일근무, 1일휴무)라 1달에 1번 정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근무를 했으며, 나머지 근무 시간은 어린이집에서 주, 야간 맡아 돌봐주고 있어 시설에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아니라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④ 생활지도원 L씨에게 건강관리직을 마련해 배려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08년 1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아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생활지도원 근무보다는 출·퇴근이 되는 간호조무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했으며, 군청 담당공무원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말만 오고갔을뿐, 마치 건강관리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며, 건강 관리직이라는 직책 자체도 없음을 밝힙니다. 생활지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L씨를 재입사 시키고 비호하는 배경에는 L씨가 자비원의 자금 흐름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거나 ○○원을 ⑤ 관리 감독청 고위공직자의 압력이나 인사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제가 금품수수로 재입사를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그 당시 시설직원 동료에게 ○○원에 생활지도원을 채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화를 미리 받고, 원장을 찾아 뵙고 그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설명하여 서류의 절차를 밟고 정식적인 서류지원을 하여 당당히 재 입사를 하였음을 밝혀왔습니다. □

예총 해남지부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국악협회 지부장을 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지부장 정 ○ ○)

피신청인 : 전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남도민일보 : 『해남한국예총-산하단체 감정 골 깊어간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0일자 6면)

내 용 : (사)한국예총해남군지부(지부장 정○○)와 산하단체인 해남군 국악협회(지부장 김○○)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25일 해남예총 사무국장장과 해남국악협회 지부장 간의 폭력사건으로 인해 한국예총 해남군지부가 국악협회 지부장을 제명처리와 동시에 업무중지 등을 고지하는 공고문을 예총사무실 외벽에 부착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해남국악협회 김○○ 지부장은 ‘예총해남지부의 징계행위가 정당한가’를 한국예총에 문의했고 한국예총은 “‘해남국악협회장 제명은 불법으로 산하단체지부장을 제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며 “개인적인 사건을 빌미로 월권적 제명을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남예총과 국악협회부지부장은 “해남국악협회 지부장은 한국국악인협회 전남도지회장의 권한으로 위촉됐다”며 “국악협회부지부장이 실질적인 해남군 지부장이라고 주장해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악협회 다수 회원들은 “상급기관인 한국예총의 답신을 무시하고 해남예총이 국악협회 지부장 권한대행체제로 예총산하 단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높고 국악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해남예총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전남도민일보는 지난 9월 10일자 사회면에 “해남한국예총-산하단체 감정 골 깊어간다. 국악협회 지부장 제명 놓고 갑론을박 - 지역사회파장우려” 라는 제목으로 한국예총 해남지부가 4월 25일 사무국장 폭행과 관련해 국악협회지부장을 제명처리와 동시에 업무중지 등을 고지하는 공고문을

예총사무실 외벽에 부착하면서 예총해남지부와 국악협회와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 씨는 08년 5월 19일 전남국악협회에서 국악협회 회원제명이 되어 회원 자격이 없었으며 공고 내용 또한 한국예총 해남지부가 7월 28일 신분변동에 대한 통상 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해남국악협회 김○○ 전지부장은 “‘예총해남지부의 징계행위가 정당한가’를 한국예총에 질의했는데 한국예총은 ‘해남예총은 불법으로 산하단체지부장을 제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다”며 “개인적인 사건을 빌미로 월권적 제명을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하였고 한국예총 해남지부 확인결과 한국예총에서는 지부장 제명은 지부의 정당한 권한으로써 불법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남예총과 관련해 예산에서부터 공연 및 갖가지 행사까지 끊임없는 잡음과 함께 의문점들이 나돌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지만 소속단체에 확인결과 국악협회의 독선적 운영이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로 인해 한국예총과 예총해남지부에 심심한 사과를 표하며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0일자 “해남한국예총-산하단체 감정 골 깊어간다”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예총 해남지부가 4월 25일 사무국장 폭행과 관련해 국악협회 지부장 제명처리와 동시에 업무중지 등을 고지하는 공고문을 예총 사무실 외벽에 부착하면서 예총 해남지부와 국악협회 해남지부과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당시 국악협회 해남지부장은 2008년 5월 19일 전남국악협회에서 회원제명이 되어 회원자격을 이미 상실하였고, 그 이후 한

국예총 해남지부가 국악협회 해남지부장의 제명처리 및 업무중지 공고문을 7월 28일에 통상 공고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남 국악협회 지부장의 징계행위 보도와 관련 한국예총 해남지부는 적법하게 제명절차를 진행했고, 한국예총에 대한 국악협회 해남지부장 징계 정당여부의 답신 결과도 한국예총은 회원단체의 회원이 예총의 임원직책을 가졌을 경우에는 임원자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을 뿐, 해당 징계행위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온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한국예총 해남지부에서는 군 지원 예산집행과정에서 보도내용과 달리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1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남도민일보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국악협회지부장 제명 놓고...)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남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3일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예총 해남지부가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보조비를 유용하는 등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항의하는 국악협회 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지부장 정 ○ ○)

피신청인 : 해남타임즈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해남타임즈 : 『사회단체지원보조금 편법 운영』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사단법인 한국예총 해남군지부(지부장 정○○)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남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운영비와 해남 예술제 제작지원비 등 최근 들어 군 보조 사업비를 편법 운영하여 전국예술계와 지역관계자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07년도 해남예술제 행사와 관련해서 연극협회는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질적인 공연은 하지 않고 형식상의 사진자료만 제시하여 정산처리. 해남군에서 지원해준 지원비마저 개인적

으로 유용하였다고 한다.

해남군과 예총 산하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뒤늦게 알고 예총사무국장에게 사업비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연극협회와 담합, 일부를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부당함을 지적, 시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한다.

또한 2008년 5월초 해남군민의 날 해남예술제 지원보조금 2,000만 원을 6개협회(국악, 연예, 연극, 미술, 문학, 음악)로 배분한 후 또 다시 해남군으로부터 추가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여 6개단체 지부에게 배당하면서 지원 목적과는 다르게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

배당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총지부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감사 그리고 외부인사 2인 등 심사자 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인을 포함한 5인이 참여했고 지난해에 편법을 자행하였던 연극협회에 또 다시 지원금을 추가 배정했고 국악협회는 제외시켰다고 국악협회 해남군지부장은 밝혔다.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 국악협회(김○○ 지부장)와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예총사무

국장과 사이에 폭력 사태까지 발생되었으며 공정성을 지켜야 할 예총지부장은 법적인 절차마저 저버리고 지난 4월 25일 국악협회 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처리하고 국악협회지부장의 업무중지와 출입제한을 고지하는 공고문을 지난 7월 말경에 예총사무실 외벽에 부착하여 해남군 국악협회의 분란을 야기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8월19일 해남군에 공문을 보내어 국악협회 전남지회와 해남군지부 사이의 문제를 정식 공문에 의거하지 않고 타인의 민원 답신만을 근거로 국악협회 해남군지부가 제17회 해남명랑대첩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주관해서는 안된다고 건의하여 국악협회의 사업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방해하는 등 예총지부장의 업무수행능력의 한계성과 비도덕성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한국예총 중앙회는 국악협회 해남지부의 “예총해남지부의 징계행위가 정당한가? 하는 질의서를 받고 지난 9월 2일 “예총 해남지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라는 답변서와 함께 해남예총이 지난 4월 25일 자행한 제명결의가 불법임”이라는 정식 회신을 보내왔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해남군지부장과 다수 회원들은 이와 관련해 지부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사 및 조사를 요구, 손해 배상 및 법적처리 절차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해남예총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해남타임즈는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에 “사회단체 보조금 편법운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예총 해남지부가 군 보조 사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및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예총 해남지부의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한 차등지원과정에서 일부단체의 불만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 하였으며, 또한 개인이 유용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소속단체의 업무방해와 함께 해남국악협회의 한국예총 질의 내용도 불법이 아님을 확

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지부장 정 ○ ○

피신청인 : 해남타임즈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73-3

발행인 김 완 규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익일 오전 9시부터 30일 동안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해남타임즈 초기화면 톱기사 중앙 하단에 일곱 번째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사회단체 보조금...)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0월 31일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8일자 『사회단체보조금 편법운영』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예총 해남지부가 2007년도 해남예술제 행사와 관련해서 해남군에서 지원해준 지원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해남군 보조사업비를 편법 운영하였고, 해남예술제 추가지원금이 지원목적과 다르게 배분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한국예총 해남지부는 2007년 해남예술제와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연극협

회 지원금 일부를 해남예술제 홍보비로 사용하였고, 해남예술제 추가지원금도 심의회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한국예총 해남지부가 지난 4월 25일 국악협회 해남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했으며, 한국예총 중앙회가 해남국악협회 지부장에 대한 예총 해남지부의 제명결의는 불법이라는 정식회신을 보내왔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해당 지부장 제명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행되었고, 한국예총 중앙회에서는 보도내용과 같은 회신을 보내온 적이 전혀 없으며, 다만 회원단체의 회원이 예총의 임원 직책을 가졌을 경우에는 임원자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예총 해남지부가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보조비를 유용하는 등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항의하는 국악협회 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지부장 정 ○ ○)

피신청인 : 글로벌타임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글로벌타임즈 : 『해남군예총 “끝없는 갈등, 조장 물의”』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사)한국국악협회 해남군지부(지부장 김○○)와 해남예총지부간의 끝없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해남예총지부가 해남국악협회 김 지부장을 제명하며 국악협회 업무까지 방해하는 등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 지부장은 이와 근거해 “예총해남지부의 징계행위가 정당한가?”라고 한국예술총연합중앙회에 선출직인 산하단체지부장(국악·문인·미술·연극·연예·음악)제명 건에 대해 회신을 보냈다.

한국예총은 지난 2일 국악협회 지부장에게 “예총 전남도지부와 해남지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김○○ 해남국악협회장 ‘제명은 불법’으로 산하단체 지부장을 제명할 수 없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해남예총과 국악협회 부지부장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한국국악협회 전남도지회장의 권한으로 위촉된 만큼 해남국악협회 부지부장이 국악협회지부장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해남예총이 식연찮은 국악협회지부장 권한대행체제로 예총 산하 단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다고 국악협회 회원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개인적인 사건을 빌미해 월권적 제명을 단행한 것”이라고 성토했고 있다.

상위법을 위배하거나 무시한 어떤 행위도 불법임을 한국예총 중앙회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전남도지회 또한 한국예총중앙회의 정관을 따라야 하며 해남예총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편법이 적법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인간사회 크고 작은 모든 조직은 정관을 세우고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었다.

불·탈법은 검은 어떤 것을 얻으려는 과욕에서 눈과 귀를 멀게 한다. 소기의 득을 취한다 하지만 불 상 사납다. 무지는 억지를 무기화해 이성이 없다. 왜 유독 국악협회만 향해 예각을 세우는지 그

배후가 의심스럽다.

지난 2007년 해남예술제 행사와 관련, 한 단체는 300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진자료를 남기기 위해 형식적인 공연을 마치고 남은 금액을 유용했다고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해남예총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글로벌타임즈는 지난 9월 10일자 기사수첩에서 해남군예총 “끝없는 갈등 조장 물의”라는 제목으로 지부간의 갈등이 증폭, 한국예총 질의에 의해 지부장은 제명할 수 없다고 답신을 보내 왔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본기사와 관련해 예총해남지부 회신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부장의 직함은 예총해남지부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의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해남지부가 국악협회 권한대행체제로 국악협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어 국악협회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개인적 사건으로 인하여 빌미를 통해 월권적 제명을 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김○○ 씨는 전남국악협회에서 08년 5월 19일 에 회원자격이 제명되어 전남국악협회에서 지부장 선출 전 대행 체제를 결정하여 부지부장이 해남국악협회 권한대행으로 승인받았음에도 이를 예총해남지부가 조장하여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했지만 예총해남지부는 국악협회 해남지부의 독선적 운영과 각종 민원 제기 등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 법적인 문제에서도 선처하여 사건 취하 등의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남예술제 행사에 사진자료만 남기기 위해 공연을 했고 공연 후 남은 금액을 유용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연극협회의 연극은 정상적 공연이었고 문화예술 수준의 차이 때문에 공연관객 인구가 적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남은 금액을 유용했다는 보도 자료와 달리 자체행사에 사용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번 기사로 인해 한국예총과 예총해남지부에 심심한 사과를 표하며 보도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해남예총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지난 9월 10일자 <기자수첩>에서 한국예총 해남지부와 국악협회 해남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예총중앙회에서 해남예총이 국악협회 지부장을 제명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예총중앙회가 국악협회 해남군 지부 및 한국예총 해남지부에 보낸 공문에는 예총 지부가 회원단체의 회원이 예총의 임원직책을 가졌을 경우에는 임원 자격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으로 제명했다는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한국예총 해남지부는 지부 당연직 임원인 해당 협회 지부장에 대한 징계행위가 징계위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남지부는 2007년 해남예술제 행사시 적법하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0월 10일까지 글로벌타임즈 2면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9월 10일자 조정대상기사(기자수첩)의 부제목(“적법 무시한 산하단체 지부장 제명”, ‘월권남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이 위 기일까지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 및 담당 기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글로벌타임즈 : 『해남예총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예총 해남지부가 해남군으로부터 받은 보조비를 유용하는 등 불법 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항의하는 국악협회 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지부장 정 ○ ○)
피신청인 : 아시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 『해남예총 불법·탈법 ‘얼룩’』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9일자 18면)

내 용 : 한국예총 해남군지부(지부장 정○○)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남군으로부터 지원받
은 운영비와 해남 예술지 제작지원비 등 최근 군
보조 사업비를 편법 운영하여 전국예술계 관계자
들의 염려와 분노가 점증되고 있다.

지난 2007년도 해남예술제 행사와 관련해서 연
극협회는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연은
하지 않고 형식상 사진자료만 제시 정산, 지원비
마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한다.

해남군과 예총산하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뒤늦게 알고 예총사무국장(전○○)에게 사업비 반환
을 요청했으나 연극협회와 담합, 일부를 받아 임의
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듣고 부당함을 지적, 시정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한다.

또한 5월 초 해남군민의 날 해남예술제 지원보조
금 2,000만 원을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 협회로
배분한 후 추가지원금 1,000만 원을 또 다시 군 관
계자에게 증액 요청, 6개단체 지부에게 배당하면서
지원목적을 위배했다고 한다.

배당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총지부장을 비롯
한 사무국장, 감사 그리고 외부인사 2인 등 심사자
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인을 포함한 5인이
참여했고 지난해에 편법을 자행했던 연극협회에

또 다시 지원금을 추가 배정했고 국악협회는 제외
시켰다고 국악협회 해남군지부장은 밝혔다.

이러한 부당성에 대해 국악협회(김○○ 지부장)
와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예총사무
국장과 사이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으며 공정성을
지켜야 할 정 지부장은 법적인 절차를 저버리고
지난 4월 25일 국악협회 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
처리, 김 지부장의 업무중지와 출입제한을 고지하
는 공고문을 지난 7월 말경에 예총사무실 외벽에
부착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또 지난 8월 19일 해남군에 공문을 보내어 국악
협회 전남지회와 해남군지부 사이의 문제를 정식
공문에 의거하지 않고 타인의 민원 답신만을 근거
로 국악협회 해남군지부가 “제17회 해남명량대첩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주관해서는 안된다고 건의
해 국악협회의 사업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방해
하는 등 정 지부장의 업무수행능력의 한계성과 비
도덕성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한국예총 중앙회는 국악협회 해남지부의 “예총
해남지부의 징계행위가 정당인가?” 하는 질의서
를 받고 지난 9월 2일 “예총 해남지부의 불법행
위에 대하여”라는 답변서와 함께 해남예총이 “지
난 4월 25일 자행한 제명결의가 불법임”이라는
회신을 보내 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해남군지
부장과 다수 회원들은 이와 관련해 지부의 명예
를 실추 시켰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사 및 조
사를 요구, 손해 배상 및 법적처리 절차로 강력하
게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심한 갈등양상
이 예고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해남예총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아시아일보는 지난 9월 10일자 사회
면에 “해남예총 불법·탈법 얼룩, 보조금 편법운영

-공연하지 않고 사업비만 골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예총 해남지부가 군 보조 사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유용 및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극협회 해남지부는 2007년 해남예술제에서 "아버지의 노래"라는 연극공연을 하였고 보도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형식상 사진만 제시하고 유용하였다고 보도 하였으나 확인결과 연극공연은 지역예술 수준의 차이로 관객의 숫자가 적게 입장을 하였고 연극의 공연은 충실하였다는 평가를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이 유용했다는 내용도 반환이후 예술제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08년 해남예술제 자금 보도와 관련하여 이는 회의를 거쳐 심의위원을 선정·평가를 한 결과 국악협회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기에 차등지원 규칙에 따라 가장 적은 사업비가 지원 되었으며, 국악협회는 제외시켰다고 하였지만 심사에 의해 적법하게 지원되었고 타 단체의 경우 정산까지 해왔지만 국악협회만 아직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김○○ 씨의 질의에 대한 한국예총의 답신 내용이 '해남예총의 국악협회 해남지부장 제명은 불법'이라고 보도하였지만 한국예총의 확인결과 지부장 제명은 예총해남지부의 당연직 임원이기에 제명이 가능하다고 회신해 왔으며, 김○○ 씨가 당시에 국악협회 지부장이기에 징계는 정당하다고 회신이 왔는데도 이를 불법으로 표현한 바 이번 기사로 인해 한국예총과 예총해남지부에 심심한 사과를 표하며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아시아일보 : 『해남예총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8일자 2면)

내 용 : 본보는 지난 9월 9일자 18면 해남예총 관련 기사에서 한국예총 해남지부가 공연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군 보조 사업비를 편법 운영했고, 이를 항의하는 국악협회 지부장을 불법으로 제명처리하였으며 예총중앙회에서 해남예총이 국악협회 지부장을 제명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공연은 관객 수가 적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예총 해남지부는 2007년 해남예술제와 관련하여 반환되어야 할 연극협회 지원금 일부를 해남예술제 홍보비로 사용하였고, 해남예술제 추가 지원금도 심의회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고 밝혀와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예총중앙회가 국악협회 해남군 지부 및 한국예총 해남지부에 보낸 공문에는 예총 지부가 회원단체의 회원이 예총의 임원직책을 가졌을 경우에는 임원 자격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으로 제명했다는 부분 역시 바로잡습니다. 한국예총 해남지부는 지부 당연직 임원인 해당 협회 지부장에 대한 징계행위가 징계위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혀왔습니다. □

기룡전자 노조원인 신청인들의 파업으로 회사의 적자가 급증하였고,
보상금 문제로 노사합의가 결렬되었으며, 노조위원장은
타 업체에 있을 때도 위로금을 받기 위해 과격한 농성을 한
경력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27명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 『1094일째 천막 농성...그동안 회사는 ‘거덜’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2일자 사회면)

내 용 : 크고 작은 공장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단지대. 20일 오후 9시쯤 검은색 철문 앞에선 각종 악기 소리에 맞춰 ‘바위처럼 살아가보자’는 노래와 “기륭전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구호가 흘러나왔다. 대학생과 40·50대 중년 여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곳은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기륭전자 분회’ 노조원들이 기륭전자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는 곳이다.

농성이 시작된 것은 2005년 7월 5일. 이 날로 1,094일째를 맞았다. 농성을 이끌고 있는 김○○(39·분회장) 씨와 유○○(39) 씨는 67일째 소금과 효소만 먹고 단식 농성을 벌이다 16일 병원에 입원해서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농성 1,000일째를 넘어서며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각종 사회단체와 정당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현재 노동계에선 기륭전자 공장은 ‘비정규직 투쟁의 본산(本山)’처럼 인식되고 있다. (중략)

그해 9월에는 공장 점거에 나섰던 노조원 중 32명에 대해 파견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자 노조는 ‘부당 해고’로 개별적으로 소송 7건을 냈다. (중략)

기륭전자는 위성라디오와 내비게이션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2004년 매출 1711억 원, 220억 원 흑자를 냈다. 그러나 노조 파업으로 인해 지난해 매출은 447억 원으로 급감했고, 269억 원 적자가 났다. 노사 분규 3년 동안 회사가 거덜난 것이다.

그 사이 대주주는 아세아시멘트에서 세 번이나 바뀌었고, 대표이사는 네 명이 바뀌었다. 노조는 회사 정문 앞 천막 농성 외에도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사무실, 집, 고향을 찾아가 데모를 했다. 지난 5월 구로역과 서울광장 철타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이고 6월 광화문 도심에서 3보1배 시위를 벌인데 이어 7월에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점거 투쟁을 벌여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을 아예 중국 상하이로 옮겼다. 현재는 연구소와 영업부문만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70여 명도 희망퇴직 형식으로 사표를 내고 떠났다.

◆분회장은 전문 노동 운동가 출신

대법원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인데도 노동계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데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노조와 시민단체, 정당까지 개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륭전자 분회를 이끌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는 IMF 금융위기 당시(1997년) 부도가 났던 갑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김씨는 2000년 9월 1일부터 부도난 갑을전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파산위로금(6억 원)을 받기 위해 155일간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다.

김씨는 2001년 9월 ‘서울민주노동자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2002년 6월 기륭전자의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1000일 넘게 이어져 오던 기륭전자의 노사 분규는 지난 14일 회사 측과 노조 측이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극적인 타결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주)기륭전자 금속노조 서울지부 기륭분회 관련 기사 사실과 달라(또는 기륭전자 분회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2일자 사회면에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1,094일째 천막농성.... 그동안 회사는 거덜”이라는 제목으로 ①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의 파업, 농성으로 인하여 2007년도 매출액이 447억 원으로 급감하고 269억 원 적자가 발생하였고, ② 노조원의 파업으로, 결국 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을 아예 중국 상하이로 옮겼고, ③ 분회장 김○○ 씨는 부도난 갑을전자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파산위로금(6억 원)을 받기 위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던 인물이고, ④ 8.14 극적인 (노사)타결직전에 이르렀으나, 서명 당일 회사와 노조 측이 보상금 문제로 의견 차이를 보여 결렬되었다고 보

도하였으나, ① 기륭전자(주)의 적자는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들의 파업, 농성과 상관없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이고, ② 모든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고, 생산라인 중 일부는 국내에 사외 하도급 형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조원의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긴 것도 아니며, ③ 분회장 김○○ 씨의 투쟁 행위 또한 위로금을 받기위한 것이 아니었고, ④ 8.14 노사 합의는 신설회사의 지위, 고용보장기간, 임금, (복직, 취업) 대상자 수, 위로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렬되었다고 하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4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8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외 27명

조정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조정대리인 최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 혹은 사회면에 보도(토요일과 공휴일 발행 신문 제외)하되, 제목은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17.

<별 지> 보도문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8월 22일자 A11면 '기륭전자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기륭전자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것은 노조파업과 무관하며, 적자의 주된 이유는 노조파업이 아니라 다른 경영상 이유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륭전자 노조는 노사합의가 결렬된 주된 이유는 보상금이 아니라 재고용 및 고용보장 기간의 문제 때문이었으며, 김○○ 분회장이 2000년 당시 부도난 갑을전자를 상대로 농성한 것은 위로금이 아니라 퇴직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조선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4일자 2면)

내 용 : <결정조서의 별지내용 참조> □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급여금 제도의 급여율이 급락하였고,
대출금리가 시중 은행 금리보다 더 높거나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8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한국교육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교육신문 : 『저금리속 급여율 18.5배에서 2.6배로 하락』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일자 3면)

내 용 : 교직원공제회는 7월 21일자 한국교직원신문에 ‘상반기 4129억 수익’ ‘회원 생애복지 서비스 개발’ 제하의 기사를 쏟아냈다. 본지의 시리즈 기사를 의식해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여전히 여수신금리와 각종 복지사업에 불만스런 목소리다. 공제회는 “그 정도를 벌어야 지급준비율을 100퍼센트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장 유리한 여수신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혜택을 실감하려면 대출 이자를 더 낮추고, 저축급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회원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20년 미만 탈퇴자는 은행보다 불리
군인·행정공제회보다 수익률 낮아

▲저축급여는 신기루(급여율변동표 제시)=96년 가입당시 상한구좌(7만 2,000원)로 가입한 A교사. 30년을 부으면 4억 600만 원을 받는다는 설명에 바로 사인했다. 그러나 올 1월, 한도액을 42만 원으로 증좌한 그는 30년 후 받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건표에는 42만 원씩 30년을 불입해 받는 돈이 3억 9,300만 원으로 되레 줄기 때문이다.

“10년 간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7만 2,000원이 42만 원이 됐는데 받는 돈은 1,000만 원 이상 줄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A교사.

원인은 공제회의 저축급여 배율(30년 가입자 기준)이 10년 새 15.67배에서 2.6배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71년 6월 급여 신설 후, 11번 증좌를 해 오면서 상한 구좌를 5구좌(3,000원)에서 700구좌(42만 원)로 늘려왔다. 반면 30년 새 급여율은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18.41배에서 2.6배로 줄었다. 회원들 사이에서 “기대가 무너졌다” “나중엔 얼마가 될지 불안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제회 급여팀은 “현 금리를 유지한다면 42만 원씩 30년을 부으면 3억 9,3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현가로 1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년을 상한 불입한 퇴직자들이 요즘 수령하는 돈이 1억 원 내외다. 결국 현가 1억 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도구좌는 늘리고 배율은 낮춰 온 셈이다.

A씨는 “가입 당시 눈앞에 보이는 액수는 신기루인 셈”이라며 “현가 1억 원을 받기 위해 30년 이상을 붙는 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물론 1억 원도 가입 내내 한도액을 불입하지 않는다면, 특히 가입 초기에 그랬다면 어렵었다. 71년부터 37년간 가입한 서울 초등학교사 B씨. 불입 원금이 4,095만 8400원인 그가 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은 8,800만 원이다.

공제회 홈페이지 조건표에는 30년 이상이면 배율이 2.6배, 35년 이상은 3.11배로 돼 있지만 “그건 현재 원금 총액에 대한 배율이 아니다”는 게 급여팀의 설명이다. 급여팀은 “71년 최초 가입금액이 3,000원 이면 그 3,000원은 37년에 해당하는 배율을 적용하고, 이후 증좌시점마다 늘어난 증좌액 분은 별도의 기간계산과 배율이 적용되는 등 계산이 좀 복잡해 사람마다 금액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71년~83년 적은 구좌를 불입한 B교사는 그래서 낭패를 봤다. B교사는 “가입 시 그런 말도 없었고, 홈페이지 조건표에도 그런 설명이 없다”며 “속은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0년 미만 가입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상 불리한 점도 문제다. 공제회는 “20년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저축을 깨면 탈퇴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은행 금리보다 못하다”고 설명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자는 부가금의 7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 5년 미만은 40%만 지급하며 해약금 형식의 뭉치돈을 댈다. 물론 탈퇴자가 아닌 ‘퇴직자’는 어느 은행 금리보다 우대 받는다.

서울 M초 H교사는 “막말로 20년 미만자 금리를 떼서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붙여주는 꼴”이라며 “15년, 20년 가까이 기여한 회원들인데 사정상 탈

퇴를 했어도 최소한 은행금리보다는 대우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의 저축급여제도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30년 가입 원금에 대한 배율이 행정공제회 2.7배, 경찰공제회 3.27배, 군인공제회 3.4배로 차이가 크다. 42만 원씩 30년을 부을 경우, 행정공제회는 4억 824만 원, 군인공제회는 5억 1,982만 원을 받아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7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군인·경찰의 평균 재직기간이 교원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감안해도 20년, 25년 불입 시 수령 금액은 역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저축급여는 현재 57만 명이 가입해 평균 320구좌씩, 매월 총 1,100억 원을 납부할 만큼 공제회를 지탱하는 최대 사업이다. 하지만 급여율의 장기전망은 좋지 않다.

KDI가 내 놓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6-2050)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은 2030년까지 완만히 하락해 이후 3%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다. 변동금리인 저축급여 금리가 더 떨어질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급여팀 관계자는 “금리를 더 높이긴 어려워 다른 교직원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하락으로 저축급여의 메리트가 떨어지자 17년을 불입한 교직원 D씨는 최근 해약금을 물면서 탈퇴했다. D씨는 “시골 땅 매입에 보탬이 됐는데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대출’ 자랑하지만 은행권과 엇비슷
“지점도 없으면서...회원한테 돈놀이 하나”

▲대출이자 너무 높다(퇴직금담보대출 표)=공제회 대여의 99%를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여. “연 6.75%, 최저 수준의 이자”를 자랑하며 회원복지사업으로 여기는 종목이다.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6만 7,946명이 2조 1,200억 원을 빌려 쓸 정도다. 1인당 3,000만 원 꼴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기여도에 비해 이자가 너무 높아 서운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은행권의 퇴직금협약대출(5,000만 원 한도)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

국민은행의 ‘공무원가계자금신용대출’은 8월 20일 현재 연 7.09%의 기준금리에 카드 사용, 이체 이용 등으로 최대 0.4%까지 할인이 가능해 최저

금리가 6.69%다. 상환수수료 없이 10년까지 쓸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백리우대대출’, 농협·농협의 ‘공무원생활안정자금’도 이체나 카드 사용 등의 부수거래로 6.79%를 적용받아 별 차이가 없다. (중략)

수십년 회원도 방값 비싸 잠도 못자
50~70% 할인해도 보통 8만~14만 원

▲문턱 높은 회관=공제회는 서울, 경주, 설악교 육문화회관, 지리산 가족호텔, 라마다 제주호텔의 일정 객실을 회원용으로 할당하고 50~7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할인가가 작은방 기준으로 보통 8만~14만 원이나 되다보니 ‘그림의 떡’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08. 9. 1. 한국 교육신문 제3면에 “‘저금리’ 속 급여율 18.5배서 2.6배로 하락”이라는 제목으로 (1)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고 합니다)의 퇴직급여금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30년동안 퇴직급여율이 18.41배에서 2.6배로 급락하여 매월 42만 원씩 30년을 불입할 경우 수령하게 될 금액이 3억 9,300만 원에 불과하다. 공제회의 이익을 위해 한도구좌 증액과 급여율을 하락하였다. 20년미만 가입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군인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보다도 급여율이 낮다. 저금리가 유지되어 공제사업은 한계에 봉착하였다”라는 취지의, (2) “공제회의 대출금리는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더 높거나 별다른 혜택이 없다”라는 취지의, 그리고 (2) “공제회가 제공하는 호텔 등 숙박시설의 이용료가 너무 높아 회원들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1) 현재의 배율 2.6배는 퇴직급여율이 변경된 2003년 8월 이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정가산금으로 차액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한도구좌의 확대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급여율 하락은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공제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20년 미만 가입자가 입는 불이익에 대하여 공제회가 충분히 사전통지하고 있는 사실, 공제회 간에는 자산규모, 고유사업영역, 정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원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사실, 공제회의 사업전망과 관련한 저금리유지 수준은 조사보고서마다 달라 사업전망이 어둡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실, (2) 위 기사에서 교직원 공제회의 대출제도와 비교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의 장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공제회의 대출제도가 적용대상 및 한도금액의 면에서 유리한 사실, 그리고 (3) 현재 많은 회원들이 공제회가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저요금도 숙박시설별로 3만 원에서 8만 원에 불과한 사실, 기사 내용 중 언급된 부산역 앞 숙박시설은 공제회와는 무관한 사실, 화진포 콘도는 군인공제회가 아니라 육군복지단에서 현역군인들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실 확인은 하지 아니한 채 공표된 위 2008년 9월 1일자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9월 1일자 3면 “저금리 속 급여율 18.5배에서 2.6배로 하락”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급여율이 10년 사이에 급락하여 회원들이 수령하게 될 급여액이 급감하였고, 생활자금대여 대출이자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협약대출과 비교해 이익이 거의 없으며,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 요금도 비싸 회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제회는 급여율 2.6배는 전 회원에 공통된 사항이 아니고 급여율이 변경되는 경우

가입자가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저축 당시 해당연도의 배율에 해당하는 조정가산금을 회원의 급여금에 부가함으로써 차액을 보전하여 주고 있으며, 급여율은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나 항상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저축급여 가입한도 구좌의 증액은 세제혜택 수혜를 위한 회원들의 꾸준한 요구와 국정감사에서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에 비해 공제회의 생활자금대여 대출은 이율, 대여한도, 상환수수료 없는 중도상환 등의 측면에서 회원들에게 많은 이점이 있고, 시중은행은 2.66%의 예대마진(2008년 7월 현재)이 있는데 반해, 공제회는 예대마진이 거의 없이(약 6.5%에 자금을 조달하여 6.75%에 대여) 회원복지차원에서 생활자금대여를 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직원복지를 위해 공제회가 운영중인 5개 호텔의 객실요금은 비수수기 기준 3만~8만 4,700원, 성수기 기준 6만~11만 8,580원으로 저렴하고, 제휴숙박시설로부터는 일절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설악교육문화회관과 지리산 가족호텔의 경우 여름 성수기에는 예약경쟁이 치열해 전산추첨을 통해 회원들에게 방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27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 3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부제목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교육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0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학부모단체 핵심 임원들의 자녀가 일기 대회 등에서 대통령상 등을 몰아 받아 대학 특별전형 입학 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으며, 단체 대표가 대입전형위원회 학부모대표로 참여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최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19.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대학특례입학의혹 단체가 대입정책 결정?』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9일자 교육면)

내 용 : 임원 자녀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몰아받아 대학특례입학 특혜 의혹을 받은 단체가 우리나라 대학입시 방법을 사실상 결정하는 대입전형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로 참여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의 고교대표들도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장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과 교장회장들이 교육청, 고교 대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이하 대교협)는 29일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등 다양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대입전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가진 이 위원회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총장 10명,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3명과 고교 교장 3명, 학부모 대표 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고교 교장과 학부모 대표들. 대교협은 고교 대표로 강성화 전국외국어고교장협의회회장, 김길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장, 최수철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등 3명의 교장회 회장을

을 임명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외교교장협의회장을 뺀 2명은 한국교총 산하조직인 교장회 소속이다.

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H단체의 최아무개 대표와 학부모샤프론봉사단(샤프론봉사단)의 권아무개 중앙위원장도 적합성과 대표성을 놓고 도마에 올랐다.

H단체는 전·현직 중앙 상임대표, 서울상임대표, 사무국장, 시도지부장 등 핵심인원 13명의 자녀가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장관상 등을 몰아받은 것으로 2004년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상은 당시 위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은 인사와 관련 있는 ‘사랑의 일기’ 대회 등에서 수여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 상을 받은 상당수 학생은 대학 특별전형을 앞두고 있는 고교생들이어서 특혜의혹까지 일어나는 등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전·현직 교장과 교감이 임원을 나눠 맡고 있는 샤프론봉사단도 학부모 대표성을 놓고 뒷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단체와 고교대표들은 대부분 고교정상화 3대 원칙(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 금지 등 3불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이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대입정책 권한을 위임받은 대교협이 대입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학특례입학 의혹 단체가 대입정책 결정?
- 본 신문은 지난 8월 29일자 교육면에 『대학특례입학 의혹 단체가 대입정책 결정?』이란 대입전형위원회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중 H단체는 전·현직 중앙 상임대표, 서울상임대표, 사무국장, 시도지부장 등 핵심인원 13명의 자녀에게 ‘사랑의 일기’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장관상 등을 수여했다는 기사를 실었으나 핵심인원 13명의 자녀가 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랑의 일기’ 수상 경력은 어느 대학에서도 특례입학전형에 없으며 입학한 사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입학 운운하는 것은 사실 확인도 안 한 잘못된 보도입니다. 또한 H단체의

한 인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라고 했으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 보도합니다.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불가. ☐

충주시의원인 신청인이 수준 이하의 시정질문을 하여 빈축을 샀다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충청매일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충청매일 : 『충주 시의회 한심한 시정질문 빈축』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충주시의회가 수준 이하의 시정 질문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130회 임시회를 열고 김호복 충주시장을 대상으로 모두 17건의 시정 질문을 벌였다.
그러나 시정 질문 내용 대부분이 충주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하는 대승적 질문보단 각 국장들에게 물어볼 만한 소소한 것들로 이뤄져 질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심지어 한 의원은 본회의장에 자신의 소변을 담

은 용기와 각종 발효균을 갖고 나와 제품 설명을 늘어놓는 등 미생물 발효제 ‘관측사원’을 자처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정질문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0일자 사회면에 『시의회 한심한 시정질문 빈축』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미생물발효제 관측사원을 자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정질문을 한 해당 시와 시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5종의 유익한 미생물 종균을 구입하여 친환경 농업생명관 약 120평을 건축하여 쌀겨와 미생물을 첨가한 미생물 발효제를 52호 농가에 보급, 지금까지 1,855리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측사원임을 자처한 것이 오보였음을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잠실2동 상가재건축추진위가 잠실 2단지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저해하는 불법단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잠실2동종합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조 ○ ○)

2 조 ○ ○

피신청인 : 도시개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도시개발신문 : 『조합 발목 움켜잡는 상가추진위』 제
하의 기사 (2008년 9월 9일자 1면)

내 용 : 재건축사업 마무리단계를 밟고 있는
잠실2단지가 종합상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상
가추진위)라는 임의단체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잠실2단지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상
가추진위와 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관리처분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비롯해 여러 차례 법원에서 소
를 다퉈왔다. 결국 조합은 막대한 재산손실과 시간낭
비를 감수했다.

잠실2단지 재건축사업 각종 소송에 시달려 피해
막심

조합측, 상가 추진위원장 및 변호사등 고발 '강
경대처'

이에 조합측은 상가추진위 위원장 A씨를 도시
정비법 위반 및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2일 송파경찰서에 고소하고, 상가추진
위 측 변호사인 B씨 역시 송파경찰서에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조합의 조합
원으로서 조합의 이사겸 잠실2동 조합상가 추진위
원장의 직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정관
에 규정된 대로 조합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데 있어 조합원 전체의 권익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잠실2
단지 종합상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추진위라
는 임의단체를 구성, 재건축사업 추진상 업무를 지
연시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승
인 이후에 추진위 등을 구성해 활동하는 것을 금
지하고 있다"며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추진위를 존속시키며 조합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을 제기해 사업진행에 있어 시간 및 비용 측면
등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설립이
후 일부 조합원이 별도의 추진위나 조합 등의 조
직을 구성해 사업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법 제85조 제5호 및 제86조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를 즉시 조합측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

그러나 잠실2단지 상가추진위는 이를 무시하고
2004년 12월 '종합상가 1차 관리총회'를 개최해 종
합상가 재건축추진위원장 보수승인, 종합상가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임사항 승인, 임원인준, 임원 해임
및 선임의 건, 아파트분·주구중심 부지매입승인, 종
전자산 감정평가 인준안 등을 조합측과 별도로 의
결하는 등 재건축사업의 추진업무를 저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지난 2000
년 12월 경 당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하
던 (가칭)재건축조합장 C씨와 A씨간의 '상가부지
매매'에 대한 합의서 때문이다.

조합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홍인의 관
계자는 "이 합의서는 조합 설립이전단계에 양측이
모두 사업추진단계에서 작성된 문건으로 조합설립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해 결의를 하거나 한
사실이 없어 효력을 발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추진위
원장 A씨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준공(사용승
인)을 마치고 분양 및 입주를 시작한 시점에도 여
전히 상가조합원들만을 상대로 별도 임시총회 개최
를 계획하는가 하면, 상가조합원들에게 조합측과는
별도로 조합원 지분을 과다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
럼 선동하고 또한 일반 분양자들 상대로 분양을 준
비하고 있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자들의 피
해가 예상돼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은 상가 추진위측 변호사인 B씨 역
시 송파경찰서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법 위반
으로 고발, 진정했다.

B씨는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올 2
월경 퇴직 후 법무법인 D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판사로 재직할 당시 지난 2006년부터
잠실2단지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과 상가 추진위원
장 A씨 간의 소송을 맡았었다.

본지 조사결과 B씨가 담당했던 잠실2단지 재건
축사업과 관련한 사건만 5건이 확인됐다. B씨는
담당했던 이 5건의 사건 대부분을 상가추진위 측

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B씨가 변호사 개업 후 올 7월 22일과 8월 12일 각각 상가추진위 측 사건을 수임해 소송을 한 것이다.

현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윤리장정 제17조(수임금지)제1항에서도 '변호사는 자신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정증서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 등에 대한 사건은 수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08년 9월 7일자 기사에서 잠실2단지의 잠실2동종합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상가추진위라 약칭함)를 재건축조합의 발목을 움켜잡는 불법집단으로 표현하고 그 대표자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범법자이므로 재건축조합이 이들에 대하여 형사 고발하는 등 강경대처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상가추진위 측의 다음과 같은 반론을 게재합니다.

먼저 상가추진위의 불법단체성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판결(2008년 9월 4일자 2008나20593 판결)에서 "상가추진위는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집합건물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성립되고 조직되어 활동하여 왔으며 그 대표자 또한 관리단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단체와 대표자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위 판결은 "상가추진위와 재건축조합은 상가재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대외적으로는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가추진위의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상가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재건축조합이 2004년 10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면서 재건축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하여는 상가조합원들이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상가추진위가 행한 관리처분계획 의결 등의 활동

에 대한 적법성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추진위와 그 대표자에 대한 불법성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상가추진위는 본보 기사에 게재된 재건축조합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추진위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던 서울동부지법 2007년 4월 20일자 선고 2007가합468 판결, 서울고법 2008년 1월 10일자 선고 2007나49245 판결 및 대법원 2008년 7월 24일자 선고 2008나20593 판결은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종합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그 분양권한이 상가추진위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상가추진위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재건축상가에 관한 분양절차에 협조하여 송과구청장에게 그 분양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상가추진위와 그 대표자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상가추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종합상가 분양사업에 적극 협조하라는 작위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도 재건축조합은 위 확정판결에서 명하여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가추진위와 그 대표자를 불법집단 또는 범법자로 매도하면서 재건축종합상가의 분양권을 상가추진위로부터 탈취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직접 분양하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를 계획하였다. 즉, 2008년 5월 7일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가추진위를 배제하고 재건축조합이 일방적으로 재건축상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법은 재건축조합의 그와 같은 총회의결은 상가추진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상가추진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5월 6일 자 2008가합920 가처분결정으로서 재건축조합이 계획한 위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재건축조합은 그 목적사항은 그대로 둔 채 총회일자만을 2008년 5월 24일로 변경하여 조합원총회 개최를 공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법이 다시 상가추진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5월 22일자 2008

카합1059 가치분결정에서 위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위와 같은 거듭되는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2008년 5월 24일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사가 관련 안건을 의결한 다음 그 결과를 재건축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나아가 그 조합원 총회 의결의 후속절차로서 다시 조합 대의원회의를 개최한 다음 그 결과 또한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법과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상가추진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울동부지법에 2008카합1604로서 홈페이지 정정공고 가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의 위와 같은 가치분 결정을 무시한 조합원 총회 개최와 의결, 그리고 그 결과의 홈페이지 공고가 법과 법원의 결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서울동부지법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7월 22일자 결정에서 재건축조합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그 위반내용을 삭제하고 정정공고문을 게시함과 동시에 조합 사무실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정정공고문을 게시하라는 내용의 가치분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재건축조합은 상가추진위와 그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변호사까지도 불법행위자 또는 범법자라고 매도하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재건축조합의 법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은 2008년 8월 12일부터 2008년 8월 14일까지 사이에 상가조합원들을 상대로 직접 분양신청을 받겠다며 대대적으로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기간은 상가추진위가 주관하여 상가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 이에 상가추진위는 2008카합1793호로서 재건축조합의 직접 분양신청 접수행위를 금지하는 가치분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08년 8월 13일 '재건축조합은 상가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사에게 관한 분양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층호수를 배정하여서도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분양신청 접수행위 1건당 200만 원을 상가추진위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70여명의

상가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송파구청에 접수하였고 송파구청은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반려 조치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가추진위가 재건축조합의 발목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재건축조합이 종합상가분양에 따른 이득에 눈독을 들이고서 그 분양권 탈취를 목적으로 상가추진위가 추진하는 재건축사가 분양사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의무 지워진 분양절차 신고의무조차도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가추진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조합은 자신들의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에 분양절차를 완료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까지도 모두 납부받아 그 투자액을 전부 회수하였으나, 이에 비하여 상가추진위는 위와 같은 재건축조합의 방해공작으로 인하여 재건축사에게 대한 분양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투자금 회수는 커녕 나날이 늘어나는 이주비 이자 부담 등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가추진위는 재건축조합의 대표자인 이○○을 수사기관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나아가 그가 과거 재건축조합 비상운영위원회라는 임의단체의 대표자로 있을 당시 주식회사 유니크디앤씨와의 사이에 그가 장차 조합장으로 선출될 경우 위 유니크디앤씨를 재건축사업의 컨설팅업체로 선정해 주기로 약속하고서 회사대표 강○○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전수뢰죄)로 고발한 상태이다.

그리고 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상가추진위의 분양업무에 협조하여 송파구청장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1일당 2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여 달라는 간접강제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2008타기864호로서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재건축조합이 위와 같이 법과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한 상당한 액수의 간접강제금이 재건축조합에 부과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상의 잠실2단지 상가재건축과 관련한 정정 및 반론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도시개발신문 : 『“상가분양은 상가추진위 권한…조합은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 따라야”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4일자 10면)
내 용 : 조합과 상가분양문제로 마찰을 빚던
잠실주공2단지 상가추진위원회가 아파트부지에 대한 가압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합이 송파구청에 상가분양신고를 안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가추진위는 분양신고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겠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가압류 금액은 총 70억 원이다.

잠실주공2단지는 내부적으로는 아파트와 상가 각각 ‘독립정산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이 사업주체기 때문에 상가분양신고 역시 조합의 명의로 해야한다.

상가추진위의 조○○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분양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조합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또 “조합은 상가추진위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1월 3일 서울고법 판결을 통해 상가추진위는 그 명칭과는 무관하게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서 유일한 합법적인 단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잠실2단지조합은 1998년부터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2000년 잠실지구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 단지만의 재건축 사업은 허용될 수 없고 단지내 상가를 포함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조합장이었던 정모 씨는 상가변

영회장이던 조○○ 현 추진위원장에게 대외적인 명칭은 조합이 갖고 내부적으로는 상가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상가재건축을 추진하는 이른바 ‘독립정산제’ 방안을 제시했다.

상가 추진위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양자는 2000년 12월 19일 및 2003년 5월 10일 2회에 걸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합의서에는 ▲종합상가는 주구중심(신천역 인접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한다. ▲상가의 설계, 시공, 관리처분에 대한 제반업무를 상가추진위에서 주관한다. ▲ 조합은 아파트 부지 3423.7㎡를 상가 추진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각 시기 및 금액은 상가의 분양시점(조합원 또는 일반분양 중 이른 시점)에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한 산술평균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합의는 2004년 10월 23일 아파트조합 관리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결의를 얻었고 2005년 7월 상가 분양을 위한 한국감정원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은 평(약 3.3㎡)당 3650만 원으로 총액은 378억여 원이다.

그러나 초대 조합장인 정모씨가 갑작스럽게 사망, 두 차례에 걸쳐서 조합장이 바뀌게 됐고 지난 2007년 현 조합장이 선출됐다.

조 위원장은 “전 조합장들은 상가 추진위와의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현 조합장은 이 합의내용에 대해 조합장이 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주도해 왔다”며 “상가추진위와 조합은 무려 20건이 넘는 소송을 벌였으나 상가 추진위가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은 2000년 12월의 합의서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매매대금의 감정시점을 향후 상가분양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가추진위의 분양신고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에서 부지매각 전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고 감정평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의결을 거쳤는데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합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상가추진위는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24일 대법원으로 부터 분양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과 상가추진위와의 합의는 아파트 조합원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2000년 12월 19일자 합의는 2004년 10월 23일 조합의 관리처분 총회에서 추인되었다”고 판시해 조합의 무효주장을 배척했다.

조합이 문제삼은 가격 감정시점에 대해서도 “조합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부

지의 감정시점을 향후 상가분양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조합의 주장은 당초 합의에 반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법원은 그밖에 기부채납이나 상가 소유별도 토지 등에 대해서도 조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상가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후략) □

신청인이 사용자 신분임에도 위조한 허위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노조를 설립하여 활동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클레시아뉴스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에클레시아뉴스 : 『기독교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모임 가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0일자 종합면)

내 용 : 기독교노조 비상대책위원회(직무대리 강창식)는 9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종로 5가 기독교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허위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신분, 문서위조로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이길원씨에 대해서 탄핵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와해된 기독교 노조를 새롭게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앞으로 유니온뉴스에서 기독교노조에 대해 다루지 말 것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근로계약을 토대로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탈퇴시는 동생을 바지위원장으로 앉히고, 자신은 노조간사로 복귀하여 변칙적인 신분으로 위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로서 목회를 하고, 교회매각에도 관여하고, 유니온뉴스도 사실상 대표로서 활동하여 편집장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개인이 고용한 전도사

월급을 주는 등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 신분으로서 활동해왔다. 그는 사용자 노조위원장이었다. 엄격히 말하면 사용자 위조위원장이 더 정확한 말일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이○○ 목사 문서위조와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0일자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기독교노조 비상대책위원회 모임 가져』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가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탈퇴시는 동생을 바지위원장으로 앉히고, 자신은 노조간사로 복귀하여 변칙적인 신분으로 위장하는 등, 엄격히 말하면 사용자 위조위원장이 더 정확한 말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목사는 노조를 설립시 허위근로계약서 및 문서 위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이○○ 목사 문서위조와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에클레시아뉴스가 지난 9월 20일자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기독교노조비상대책위원회 모임 가

저”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가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탈퇴시는 동생을 바지 위원장으로 앉히고, 자신은 노조 간사로 복귀하여 변칙적인 신분으로 위장하는 등, 엄격히 말하면 사용자 위조위원장이 더 정확한 말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목사는 노조를 설립시 허위 근로계약서 및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노동청에서 밝혀왔으며 이○○ 집사의 노조위원장 당선은 이○○ 목사가 앉힌 것이 아니라 노조원의 투표로 된 것이고 변칙적으로 신분을 위장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노조간사로 취임한 것이며 사용자 위조위원장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기독교노조 위

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에클레시아뉴스 2008년 10월 2일 09시부터 10월 5일 09시까지 게재하되, 초기화면 중앙 상단 아래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이 이어서 게재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에클레시아뉴스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금감원이 스피드가 떨어지는 조직문화 때문에 각종 악성 루머 및 공매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금융위기가 확산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금융감독원 (원장 김 종 창)

피신청인 : 한국경제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TV : 「와우뉴스」 프로그램 (2008년 9월 5일 16:00)

내 용 : <앵커> 최근 금융 위기가 확산된 데는 감독당국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자> “각종 악성 루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 지난 3일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의 이같은 뒷북 대응에 증시는 냉담했습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 STX, 두산 등 악성 기업 루머가 두 달간이나 증시를 휩쓸고 지나간 뒤였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의 공매도 문제 대응에도 온통 헛점 투성이입니다. 공매도 제도

의 문제를 지적하는 각종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우리의 제도가 엄격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이 강조해온 선제적 대응은 말뿐이었던 셈입니다. 증시 안팎에선 김종창 금감원장의 리더십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카리스마형 보다는 관리자형 리더에 가까운 김 원장의 특성상 스피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선임된지 3주만에 사임한 증권담당 박광철 부원장의 후임을 인선하는데 한 달이나 걸린 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김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은 조직 개편 회오리에 휩싸이며 넉달간 사실상 업무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사이 한켄에선 금융 위기설이 짙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뒷북 감독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은 스피드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금융감독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5일자 와우뉴스에서 “느려터진 금감원 위기 키워”라는 제목으로 “최근 금융위기의 확산은 감독당국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고, 증시와

관련한 악성 루머 및 공매도에 대한 뒷북 대응에서 보듯이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은 말뿐이었던 셈이다. 증시 안팎에선 카리스마형 보다는 관리자형 리더에 가까운 김종창 금감원장의 리더십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며, 특히 김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은 조직 개편 회오리에 휩싸여 넉 달간 사실상 업무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금감원은 최근 증시와 관련한 악성 루머 및 공매도에 대해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통해 적시 대응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조직문화가 김종창 금감원장의 리더십에 기인한다거나 김종창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이 조직 개편 회오리에 휩싸여 넉 달간 업무공백 상태에 빠진 사실 등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9월 5일 <와우뉴스> 프로그램 중 “느려터진 금감원 위기 키워”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와 관련

한 악성 루머 및 공매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 대응책을 시행하여 왔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감원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조직문화가 김종창 금감원장의 리더십에 기인한다거나 김종창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이 조직 개편 회오리에 휩싸여 넉 달간 업무공백 상태에 빠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9일까지 16시에 방송하는 한국경제TV 「증권금융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한국경제TV : 「증권금융뉴스」 프로그램 (2008년 10월 9일 16:00)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제17회 전국무용제가 예산을 낭비하고 관객이 없어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제집행위원회
(위원장 이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3.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일보 : (1) 『목포 전국무용제 ‘그들만의 잔치’』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2일자 16면)

내 용 : 일반관객 없고 동원된 학생들만... 10명 세미나에 3300만 원 예산 평평
무성의한 준비 비판

전국 무용인의 축제인 전남 목포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17회 전국무용제가 졸속으로 진행돼 ‘그들만의 축제’란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 대표들이 참여, 10일 동안 무용경연을 펼치는 무용제는 무용인만의 축제에서 벗어나 관객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열린 축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해설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대회운영으로 행사장에 일반인은 찾아볼 수 없고 동원된 학생들만 빼곡하다. 또

10여 명이 모인 학술세미나에 3,300만 원을 쓰는 등 상식 밖의 예산집행으로 무용인들 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전국무용제는 출발부터 삐걱댔다. 주최측은 부실한 대회 운영으로 일반 시민의 발길이 끊기자 버스 8~10대를 동원, 목포 시내 5개 여자고등학교 2,500여 명을 매일 실어 나르고 있다. A여고 김모(16) 양은 “야간수업과 학원도 빠지고 무용제에 참석했는데 안내나 해설서 등이 없어 답답했다”면서 “객석에는 동원된 여고생들만 있었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공연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그들만의 잔치라는 것이 더욱 확인해진다. 무용대회와 별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로 구성된 전국단체장회의, 시도관계자회의, 운영집행회의 등 회의비로 1,000만 원을 넘게 쓰였고, 관객 10명도 안 모인 한 학술세미나 개최비용으로 무려 3,300만 원을 집행했다. 여기에 대형 아치 2개 2,000만 원, 애드벌룬 2개 800만 원에다 포스터, 전단지 등에 무려 7,600만 원, 내용이 불확실한 특별행사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집행 내역에 의혹이 일고 있다. 대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상인 대상에 단 2,000만 원만 책정해 놓고 관중 10명도 참가 안 한 세미나에 3,000여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더구나 심사위원들이 노출되면서 로비 의혹이나 사전 등 수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대학에 근무하는 한 교수도 “무용제 안내 팸플릿이 3일 전에 도착해 강의일정과 참가일정을 조정하느라 혼났다”면서 “해마다 제자들과 함께 무용제를 관람하는데 이번 대회처럼 무성의한 대회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국무용제 이윤천 집행위원장은 “일반 관람객들이 예상보다 적어 여고생들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예산은 당초 추진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무용제는 한국무용협회 주최로 12일까지 펼쳐지며, 정부 1억 5,000만 원, 전남도 1억 5,000만 원, 목포시가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일부 대기업이 협찬했다.

(2) 『“심사 비리” 전국무용제 피날레도 시끌』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8일자 16면)

내 용 : 일부 “대상 사전에 낙점… 손배청구 하겠다”

진행 미숙·방만한 예산집행 행사내내 잡음

대회기간중 여학생들 동원과 졸속 진행으로 물의(본보 9월 12일자 A14면)을 빚은 제 17회 전국무용제가 이번에는 지역 무용인들간에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17일 경기도 무용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 대표들이 참여, 지난 3일부터 10일 동안 무용경연을 펼친 전국무용제는 대회 운영 미숙과 방대한 예산집행 등 전남의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최악의 대회로 평가했다. 지난해 전국 무용제를 개최했던 경기도 무용협회 김기배 회장은 “전국무용제는 무용인만의 축제에서 벗어나 관객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열린 축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며 “예산이 지난 대회보다 5,000만 원 넘게 집행돼도 대회 기간동안 전기가 끊어져 공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해프닝도 생겼다”고 비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국무용제 그들만의 잔치 예산 평평 기사 사실과 달라 (전국무용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한국무용협회가 전남 목포에서 지난 9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전국무용제에 대해 2008년 9월 12일 사회면에서 “목포 전국무용제 ‘그들만의 잔치’ 일반관객 없고 동원된 학생들만… 10명 세미나에 3,300만 원 예산 평평 무성의한 준비 비판”이라는 보도를 하였고, 9월 18일 사회면에 “심사 비리 전국무용제 피날레도 시끌, 일부 ‘대상 사전에 낙점… 손배청구 하겠다’ 진행 미숙·방만한 예산집행 행사 내내 잡음”이라고 보도를 하였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습니다.

본보 9월 12일자 보도에서 관객 10명도 안 모인 한 학술세미나 개최비용으로 무려 3,300만 원을 집행했고, 대형 아치 2개 2,000만 원, 애드벌룬 2개 800만 원에다 포스터, 전단지 등에 무려 7,600만 원, 내용이 불확실한 특별행사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집행내역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결과 이 세미나는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와 관계없는 한국무용협회에서 자체 예산 320만 원으로 진행했으며, 대형 아치는 3개(2개 400만 원 - 전국무용제 집행, 1개 후원) 400만 원, 애드벌룬 2개 170만 원, 포스터 전단지 팸플렛 초청장 봉투 등 3,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세미나에는 10명이 아니라 60

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일반인은 찾아볼 수 없고 동원된 학생들만 빼곡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일반인들도 다수가 참여하고 자치단체나 상급기관 등에서 동원한 학생은 없었으며 초대와 신청으로 단체 관람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보는 9월 18일자 보도에서 대회운영미숙과 방대한 예산집행 등 전남의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최악의 대회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다수의 지역 예술단의 부대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이 보도에서 제목으로 '심사비리 전국무용제 피날레도 시끌'이라고 보도했으나, 기사를 쓴 박경우 기자는 심사비리라고 기사에서 단 한 줄도 언급한 사실이 없으나 편집자의 잘못으로 '심사비리'라고 제목이 크게 보도되었으며, 사실 확인결과 전국무용제는 대회가 끝난 일주일이 지난 9월 19일까지도 단 1건의 공식항의와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 중 공식항의를 하겠다고 언급된 경기도 무용협회 김기백 회장은 실제 대회 운영과 상관없으며 대표 선수로 참여한 무용단 소속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백 씨의 말을 인용하여 "대통령상인 대상이 무용인들 사이에서 사전에 낙점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한국일보 : 『목포 전국무용제 1만여 명 방문 '성황'』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7일자 16면)

내 용 : 지난달 3일 전남 목포시에서 열린 전국무용제 보도(본보 9월 12일자 16면)와 관련, 당초 목포시가 언론에 공개된 문건은 지난 2년전 경기도의 대회유치 계획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잘못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회 기간에 열린 학술세미나는 한국무용협회 전남도지회가 3,300만 원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 서울무용협회가 320만 원을 들여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무용협회 전남도지회가 목포시에 제출한 집행내역 결과, 대형아치는 400만 원, 포스터 전단지 3,000만 원, 홍보용 풍선은 170만 원의 비용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남무용협회는 "무용제 기간동안 외지 관광객과 지역민 등 1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 성황을 이루었다"며 "지역민 등 관객들이 무용의 진수를 만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

신청인이 골프장 사업승인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지 주변의 미술관과 주택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4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 스테이트윌서

(대표이사 김 ○ ○,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한겨레 : (1) 『골프장이 공익시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일자 1면)

내 용 : 골프장이 공익시설?

예정지 80% 매립 뒤 사업주에 강제수용권 쥐
안성시 첫 허용...주민들, '위험심판제청' 신청
"안성시가 지난해 12월 공익사업에 따른 것이라며 토지보상 계획공고를 보내왔어요."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에서 11년 동안 작업실을 운영해 온 김지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이 일대를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작업실을 강제 수용하겠다는 안

성시(시장 이동희)의 공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이였다. 김 교수는 “공공도로나 주택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개인 사업자가 골프장을 만드는데, 강제수용권을 주느냐”고 분개했다.

안성시는 골프장 업자의 제안을 받아 지난해 5월 동평리 산11-1 일대 136만여㎡에 27홀 규모의 스테이트윌서골프장(동평골프장)을 짓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골프장 예정터 안에 있는 480여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40여명의 주민들은 매매를 거부했다. 골프장 사업자는 현재 이들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다.

어이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골프장 사업자의 강제수용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 법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는 도시계획 시설인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예정 터의 80%이상을 사들이면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와 건축물까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광역 시·도지사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권을 갖고 있었고, 사업자는 소유자와 협의해 해당 터를 100% 사들여야 했다. 2003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의 승인권과 사업자의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에는 이를 적용한 사례가 이제껏 없었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안성시가 골프장 사업자의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 6곳의 골프장이 있는 안성시에서는 10개 골프장이 건설 중이며, 7개 사업자가 스테이트윌서 골프장처럼 안성시장의 승인과 강제 수용권을 요청한 상태다.

심아무개 씨 등 동평리 주민 23명은 지난 29일 수원지법에 “골프장처럼 이윤추구가 목적인 사업 시행자에게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국토계획법 95조1항 등은 재산권의 수용·보상 시 공공 필요라는 헌법 23조3항을 위배함으로써 개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최재홍 변호사는 “개인

사업자나 사기업에 강제수용권을 주려면 해당 사업의 공익성이 명확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웅 안성시 도시과장은 “국토계획법상 골프장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돼 있어 법적 하자가 없고 골프장이 들어서면 세금수입 증대와 고용창출 등의 공익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 『미술관·주택 숨긴 채 골프장 승인 신청?』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4일자 15면)

내 용 : 안성 스테이트윌서 사전환경성 검토 때 건물 8채 누락

주민토지 강제수용 위헌논란 이어 줄속 사업승인 의혹

골프장 예정지 안 주민들의 토지와 집 등의 강제 수용에 나서 위헌 논란(〈한겨레〉1일치 1면)이 제기된 경기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스테이트윌서골프장(동평골프장)의 사업자가 이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지 바로 옆에 있는 대형 미술관과 주택들을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관과 주택을 포함시켰다면 사업계획승인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경기 안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말을 종합하면, (주)스테이트윌서는 동평리 일대 163만여㎡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과 2006년 8월 2차례 걸쳐 안성시와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골프장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따져 골프장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주)스테이트윌서는 안성시로부터 지난해 5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한겨레〉 취재 결과, 골프장 20개홀과 7개홀을 잇는 지역(지도) 부근에는 2004년 12월 사용승인을 얻은 2층 규모의 회재미술관과 8개의 가옥 등 건축물이 있지만, 1~2차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이 건물들이 모두 빠졌으며, 골프장 예정지에서 멀리 2개의 가옥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재미술관 도예스튜디오 이용필 작가는 “사전에 골프장에 바로 붙은 미술관과 인근의 집들을

감안해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졌다면 현재와 같은 골프장 사업승인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나중에도 알았다면 이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미 미술관 옆으로 골프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도 “미술관 등이 빠져 당혹스러웠지만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업체쪽에 해당 건물을 반영해 추가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문제점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집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정은 사업자가 안다”고 말했다. (중략)

한편, 경기도는 ‘시유지에 골프장 허가 논란’([한겨레 8월 27일치 14면])과 관련해 안성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 의회 의결도 없이 7만 4천여㎡의 시유지를 골프장에 무단 제공하고 임야가 불법 훼손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안성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시에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시유지를 점유해 골프장 조성공사를 벌이면서 시유지를 불법 훼손한 ○골프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승인 신청시 미술관·주택 고의 누락 의혹 없음』
- 내 용 : 본 지는 안성 스테이트월셔가 골프장 인허가 서류에 미술관·주택을 고의로 숨겼고 사전환경영향평가지 건물 8채가 누락되었으며, 안성시는 졸속사업승인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지 골프장 공사로 인하여 미술관·주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되었음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조정대상기사에 이미 신청인의 반론이 포함되어 있고, 공익적 보도이므로 추가적인 반론보도도 수용할 수 없다. □

신청인이 골프장 사업승인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지 주변의 미술관과 주택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 스테이트월셔
(대표이사 김 ○ ○, 이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3.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KBS-1TV : 「뉴스 9」 프로그램 (2008년 9월 2일 21:00)
내 용 : <2008서울조정294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294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2008서울조정294의 피신청인 주장 참조> □

신청인이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찍어달라며 촉근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나 ○ ○

피신청인 : 무등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무등일보 : (1) 『시의장단 선거금품로비설 파문』 제
하의 기사 (2008년 8월 29일자 1면)

내 용 : 최근 북구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불
거진 금품로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
데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도 금품로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의원 내부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금품로비 폭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품로비 대상 의원이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참여
한 전체의원으로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적지 않
은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보궐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주류측 김모 의원은 28일 사석에서 “지난
7월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비주류측 후보로 출
마한 A의원이 한 측근을 통해 ‘자신을 의장이 되
게 해달라’며 수백만 원이 든 돈보따리를 가지고
왔으나 되돌려 보냈다”고 폭로했다.

김의원의 발언은 최근 A의원이 시의회 교사위
원장 보궐선거에서 등록을 포기한 것은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발목이 잡혔기 때
문’이라는 설이 나돈터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목된 A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
다”며 금품로비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김의원이 제기한 금품로비설과 관련된
입장을 조만간 성명서 등을 통해 제기할 계획이
다”며 “김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방

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2) 『주류-비주류 원구성 ‘폭로전’』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9일자 3면)

내 용 : 광주시의회가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
서의 ‘금품로비설’로 또 한번 파란을 예고하고 있
다. 폭로의원은 폭로에서 한발 빼는가 하면 지목된
의원은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당사자간 공방을 떠나 선거 전후로 시의회 주변
에서 나돌던 금품로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
의회는 또 한번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설로 끝나더라도 폭로한 주류측과 지목돼 비주
류측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 흘러나왔나

이번 금품로비설은 지난 27일 치러진 시의회 교
사위원장 보궐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주류측
김의원이 ‘낙선’에 불만을 품은데서 제기됐다.

김의원은 비주류인 A의원이 교사위원장 보선 1
차 투표에서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아 ‘찬성 9, 무
효 9’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자 2차 투표로 이어
져 결국 낙선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지난 7월 의장 후보로 나선 A의원 측
근이 의장단 선거에서 자신을 찍어달라며 500만
원이 든 돈보따리를 들고 왔다가 되돌려 보낸 사
실이 있는데 이번 교사위원장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아야 되겠느냐”며 A의원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그는 또 “교사위원장 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A의
원을 두차례 만나 후보로 나오지 말 것을 설득했
다”며 “A의원은 교사위원장 후보등록 마감 1시간
전에서만 ‘후보로 출마하지 않고 밀어줄테니 잘 하
라’는 말까지 해놓고 표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김의원은 지난 교사위원장 보선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을 확신하며 선거 전부터 지인
들로부터 미리 축하 전화를 받는 등 당선 기대감
에 부풀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설’인가 ‘사실’인가

이번 금품로비 의혹은 시의회 내부에서 단순한 설에 불과했다.

하지만 ‘낙선’에 불만을 품은 김 의원이 자신의 금품 로비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면서 ‘금품로비설’은 설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주시의회 의장단선거 금품로비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9일자 1면 종합, 3면 종합에서 특정인의 말만 듣고 “시의장단 선거 금품로비설 파문, 주류-비주류 원구성 ‘폭로전’”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시의장선거과정에서 마치 상대후보측의 김모의원에게 한 측근을 통해 “자신을 의장이 되게 해달라”며 500만 원이 든 돈보따리를 가지고 왔으나 되돌려 보냈다”고 폭로했다. 라고 보도 했으나, 양 당사자의 대면을 통해 확인 취재한 결과 김모 의원은 부의장선거에 낙선하고, 교육사회위원장 선거에도 단독출마하고도 낙선하자 화가 나서 비주류측의 수장격인 A의원에게 감정적으로 말하다 보니 잘 못 나온 말이며, 지난 8월28일도 분명히 기자들이 확인 취재하자 “나도 떠도는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라고 말 했는데, 기자들이 마음대로 기사를 썼다고 말하고 ‘돈보따리’라는 말은 한 적도 없다’ 부인하며, 자신이 금품제공설을 퍼뜨린 사실 조차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돈보따리를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모 의원은 “명색이 정치인인데 돈보따리라는 말을 사용했겠느냐”라고 말하고 측근을 통한 500만 원 전달 기사와 관련해서는 A모 의원이 직접 찾아왔으며 “당시 제가 사각봉투를 가져 온 것을 봤을 뿐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모른다”며 돈보따리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이며, 제가 “당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져 화답에 봉투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당사자로 지목 된 A모 의원도 “의장선거 당일 9시경 출근하는 길에 의장선거 연설문과 책이 한 권 들어 있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업무용 봉투를 가지고 김모 의원실에 들린 바 있고, 이때 들려서 지지를 호소한 것” 뿐으로 확인 돼,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며 정정 보도합니다.

또한 A의원이 시의회 교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등록을 포기한 것이 ‘의장단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사실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설이 나돈 터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라고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으나, 확인 취재한 결과 “A의원이 의장선거에서도 패했듯이 10대 8로 지는 것이 확실하고, 9대 9로 동점이 나온다 해도 나이론 제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회가 화합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임에도 이 또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특정의원의 발언만을 근거로 한 추측성 왜곡보도로 사실과 다름을 정정보도합니다.

그리고 A의원이 지난 9월 1일 실시 된 상임위원장선거에서 “금품로비설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금품로비설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의 철저한 조사를 스스로 촉구하고 있고 금품로비설을 쓴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은 물론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출입기자단이 지난 9월 1일 기자실에서 A의원과의 김모 의원의 대면을 통해 확인 취재한 결과 김모 의원이 부의장선거에 낙선하고, 교육사회위원장선거에 단독출마하고도 낙선하자 화가 나서 비주류측의 수장격인 A의원에게 감정적으로 말하다보니 잘못 나온 말이며 ‘돈보따리’라는 말은 한 적도 없다’ 부인하며 자신이 금품제공설을 퍼뜨린 사실 조차 없다고 부인하고, 지난 9월 1일 이날 치러진 상임위원장선거 과정에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광주시의회의 위상에 손상을 입히고 의원들의 품위에도 큰 누를 끼쳐 동료 의원과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 정식으로 사과하는 등 광주시의회가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온 김모 의원의 화풀이용 해프닝으로 밝혀져 의장선거과정에서 엉뚱한 ‘금품선거로비설’에 휘말려 곤혹을 치른 A의원은 금품제공 추측과 관련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바로잡으며, 기사는 사실을 쓰고 확인 취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말만 듣고 기사를 써 공인으로써의 명예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8월 29일자 “시의장단 선거 금품로비설 파문” 및 8월 29일자 “주류-비주류 원구성 ‘폭로전’” 제하의 기사에서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보궐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주류측 김모 의원이 ‘지난 7월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비주류측 후보로 출마한 A의원이 한 측근을 통해 자신을 의장이 되게 해달라며 수 백만 원이 든 돈보따리를 가지고 왔으나 이를 되돌려 보냈다’고 폭로했으며, 최근 A의원이 시의회 교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등록을 포기한 것은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의원은 주류측 김모 의원이 ‘나도 떠도는 이야기를 들은 것 뿐’이라며 자신이 최초로 금품제공설을 퍼뜨린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

하고 있고, 2008년 9월 1일 의회 본회의에서 이미 해당사안에 대해 사과발언을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품제공설의 당사자인 A의원은 의장 선거 당일 의장선거 연설문과 책이 한 권 들어 있는 업무용 봉투를 가지고 김모 의원실에 들려 지지를 호소한 적이 있을 뿐, 돈 보따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14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무등일보 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지지부탁...)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무등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4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제17회 전국무용제가 예산을 낭비하고 관객이 없어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제집행위원회
(위원장 이 ○ ○)
피신청인 : 전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전남일보 : (1) 『관객 없는 ‘목포 전국 무용제’』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6일자 9면)
내 용 : 목포시가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 ‘제17회 전국무용제’가 무성의한 대회 운영과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목

포시민문화센터 및 야외 특설무대에서 미래의 춤을 제시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춤의 이해와 세계적인 춤의 경향을 소개하는 전국 무용제가 열렸다.

15개 시·도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무용제는 ‘관객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열린 무용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하루 1~2개 팀씩 창작 무용을 선보이는 경연행사와 시·도 무용단이 참여하는 시·도의 날 행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반 관객이 적어 관내 학생들이 동원되는 등 홍보 부족으로 출품작에 대한 이해도도 빈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무용제 집행위원회는 행사장에서 해설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무성의하게 대회를 운영한데다 버스 10여 대를 동원해 목포시내 5개 여자고등학교 2,500여 명을 매일 실어 나르며 빈축을 샀다.

무용제를 관람한 한 학생(16·여)은 “안내나 해설서 등이 없어 답답했다”면서 “객석에는 나와 같

이 동원된 학생들만 있었고, 때문에 공연에 신경쓰지 않는 등 산만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전국 무용제는 만찬 비용과 자료비, 업무추진비 등을 과도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용대회와 별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로 구성된 전국단체장회의, 시도관계자회의, 운영집행회의 등 회의비로 1,000만 원 넘게 쓰였고, 학술세미나 개최 비용으로는 3,300만 원이 집행됐다. 특히 이 세미나에는 참석자가 10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형 아치 2개 2,000만 원, 애드벌룬 2개 800만 원에다 포스터, 전단지 등에 7,600만 원, 특별행사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집행 내역에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속에 목포시 관계자는 “예산 낭비 논란은 협회로부터 정산을 받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윤천 집행위원장은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야외 공연장 설치에 5,5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관객은 1일평균 1,000여 명이 관람했으며 학생동원은 밤에 공연이 이뤄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무용제는 한국무용협회 주최로 열렸으며 정부 1억 5,000만 원, 전남도 1억 5,000만 원, 목포시가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일부 대기업이 협찬했다.

(2) 『오히려 ‘예향’ 먹칠하는 예술 행사』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7일자 19면)

내 용 : 목포에서 개최된 ‘제17회 전국무용제’가 부실한 대회 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2008광주국제공연예술제’가 논란 끝에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와 목포는 모두 예향으로 일컬어지는 곳이지만 이같은 부실한 예술 행사들은 오히려 예향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국무용제 관객없는 목포전국무용제 기사 사실과 달라 (전국무용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한국무용협회가 전남 목포에서 지난 9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전국무용제에 대해 2008년 9월 16일 “‘관객없는 목포전국무용제’ 해설없어 답답, 회의비 1,000만 원 예산과다 논란도”라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습니다.

본보는 이 기사에서 참석자가 10명도 안 모인 한 학술세미나 개최비용으로 무려 3,300만 원을 집행했고, 대형 아치 2개 2,000만 원, 애드벌룬 2개 800만 원에다 포스터, 전단지 등에 무려 7,600만 원, 내용이 불확실한 특별행사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집행내역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이 세미나는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와 관계없는 한국무용협회에서 자체 예산 320만 원으로 진행했으며, 대형아치는 3개(2개 400만 원 - 전국무용제 집행, 1개 후원) 400만 원, 애드벌룬 2개 170만 원, 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초청장 봉투 등 3,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 세미나에 10명도 되지 않은 참석자가 참석했다고 보도했으나 발표자 사회자 등 행사 관계자만 10여 명, 전국에서 모인 무용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일반인은 찾아볼 수 없고 동원된 학생들만 빼곡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일반인들도 다수가 참여하고 자치단체나 상급기관 등에서 동원한 학생은 없었으며 초대와 신청으로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또 이 보도에서 제목으로 ‘관객없는 목포 전국무용제’라고 보도했으나, 대회기간 동안 1만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설이 없어 답답했다고 보도했으나, 해설 책자 등이 행사장에 배포되었으며, 사회자도 해설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전남일보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일자 9면)

내 용 : 본보 9월 16일자에 보도된 ‘관객없는 목

포전국무용제, 해설없어 답답, 회의비 1,000만 원 예산과다 논란도'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알려드립니다.

기사 중 학술세미나에 3,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했으나, 서울무용협회 자체 예산 32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회측은 대회기간 동안 1만여 명의 시민이 관람하고, 사회자의 해설과 해설 책을 배포하고, 보도된 세부 예산 중 대형아치는 2개 400만 원(1개는 후원), 애드벌룬 2개 170만 원, 포스터 전단지 팸플릿 초청장 봉투 등에 3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인 단체가 주관한 제17회 전국무용제가 예산을 낭비하고 관객이 없어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2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제집행위원회
(위원장 이 ○ ○)

피신청인 : 목포MBC-TV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목포MBC-TV : 「MBC 뉴스테스크」 프로그램 (2008년 9월 12일 20:55)

내 용 : 〈2008광주조정2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국무용제 예산집행 의혹 눈덩이(또는 전국무용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2일자 뉴스에서 “전국 무용제 예산 의혹 눈덩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비로 천여만 원을 쓰고, 학술세미나 개최비용으로 3천 3백만 원을 집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학술세미나는 정부지원금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320만 원이 사용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대형아치 2천만 원, 홍보용 풍선 8백만 원 포스터와 전단지 제작에 7천 6백만 원 등이 편성되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 했으나, 대형아치는 4백만 원, 포스터전단지는 3천만 원, 홍보용 풍선 1백 7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보도 내용과 달랐기에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신청인 주장 수용 불가. □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5.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서울일보 : 『불법건물 스크린 골프연습장 자진철거 위반시 강제이행』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물에서 수년간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편법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 오산시 건축과에 따르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환경관련신문기자)가 수년간 오산시 벌음동 일대에 자신의 신분을 이용 불법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콘테이너 2층을 신문사 사무실로 이용했다는것.

그러나 오산시 건축과에 따르면 이들 시설 등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불법건물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7일자 지면과 인터넷 사회면에 “불법건물 스크린 골프연습장 자진철거 위반시 강제이행금”이라는 제목으로 김모씨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물에서 수년간 기자 신분을 이용해 불법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신분을 이용,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김모 씨는 1987년 7월부터 고물상과 사무실부지로 사용, 건물에 대한 합법화신청을 서면으로 시청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의 부모에게 서울대 음대 진학을 빌미로 접대를 요구하여 3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지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서울음대 보내려면 룸살롱 접대하라?』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교

향악단(서울시향)에서 근무하는 연주자가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의 부모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번도 아니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특히 이 술자리에는 입시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서울대 음대 기악과 교수와 각종 음악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서울대 음대 동문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들은 모두 “입시와 무관한 술자리였고, 학부모가 술값을 계산한 사실도 몰랐다”며 문제로 확산되는 걸 경계하고 있다.

엘리트 음악인과 학부모, 그리고 교수 등 서울음대 동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간을 약 1년 전으로 돌려보자.

왜 서울대 음대 교수와 동문은 립살롱으로 향했나

경기도 모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며 관악기 튜바를 배우던 이모(당시 1학년) 군은 2006년 10월 평택의 A고등학교로 전학을 결심했다.

A고등학교 음악교사 김모 씨는 서울시향 튜바 연주자인 지아무개(34) 씨를 이군에게 새 레슨 교사로 소개했다. 같은 달 말, 이군과 어머니 엄모씨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한 연습실에서 지씨를 처음 만났다. 간단한 시범 테스트를 마친 뒤 엄씨는 자신의 아들을 지씨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튜바 레슨은 그 해 11월부터 시작됐다. 1시간씩 주2회 레슨이었고 교습비는 월 64만 원으로 이 중 8만 원은 학교에서 지원했다. 레슨의 대부분은 흑석동에 마련된 연습 및 교습실에서 이뤄졌다.

다음해인 2007년 5월 이군은 우현음악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했고 8월에는 서울대학교 관악동문회 주최 관악동문콩쿠르에서도 3등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군은 서울대학교 음대 수시전형에 응시할 자격을 갖게 됐다. 서울 음대 수시전형 응시 자격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우현음악콩쿠르·관악동문콩쿠르 등 서울대가 지정된 콩쿠르에서 3위 이내 입상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런데 이군이 서울 음대 수시전형 응시 자격을 획득한 시점부터 어머니 엄씨와 레슨 교사 지씨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

우선 고액의 접대 문제가 불거졌다. 엄씨는 “아들이 서울대 수시전형 응시 자격을 얻은 2007년 8월부터 지씨의 접대 요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엄씨의 말을 더 들어보자.

“아들이 서울대 주최 콩쿠르에서 3등을 한 이후 지씨가 ‘본격적으로 서울대 준비하자, 서울대 아무나 가냐’며 서울대 교수와 동문들 접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바로 위 3학년 선배 한 명이 서울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접대를 해도 그 집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접대를 요구했다. 결국 일식집이나 한식집으로 예약하겠다고 하니, 지씨가 ‘장난하냐, 최소한 립살롱은 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어머니 엄씨 “수시전형 자격 얻자마자 립살롱

요구”

엄씨는 아들이 아직 2학년인데 벌써부터 무슨 접대인가 싶었다. 하지만 엄씨는 결국 그달 말에 자신의 동생이 실장으로 있는 강남의 한 립살롱을 예약했다.

엄씨는 “술값으로만 약 600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수백만 원대 술값이 걱정된 엄씨는 양주 발렌타인을 사서 지씨에게 들고 가게 했다. 이것도 동생의 ‘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씨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이 립살롱을 이용했다. 함께 술집을 찾은 사람은 매번 달랐는데, 모 방송사 관현악단 연주자와 직원, 서울 음대 교수 1명 등 모두 네 명이다. 이들에게는 서울 음대 동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씨는 일단 “서울대 동문·교수와 립살롱을 찾은 건 맞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접대 요구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번엔 지씨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접대를 요구했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다. 어머니가 ‘그동안 가르치느라 고생했다’며 알아서 술집을 잡아줬다. 부담돼서 몇 번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이군의 레슨비도 싸게 받았고, 엄씨의 조카딸도 잘 알고 있어서 술집을 찾았을 뿐이다.”

엄씨의 “접대”와 지씨의 “감사표시”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씨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우선 이군의 레슨비는 A고등학교에서 책정해준 것으로 같은 학교 학생들과 동일하다. 물론 학교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또 지씨는 “조카딸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지씨가 엄씨의 조카딸(초등학교 6학년)을 소개 받은 건 립살롱을 다녀간 뒤 한참 뒤인 2008년 1월경의 일이다. 이 학생도 훗날 지씨에게 튜바 레슨을 받았다.

설령 지씨의 주장이 100% 맞다 해도 수백만 원이 드는 술집을 학부모와 안면도 없는 서울대 동문들과 함께 이용한 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레슨 교사 지씨 “그동안 고생 많았ادم여 어머니가 해준 것”

지씨는 모든 술값을 자신이 계산했다고 동문들에게 허위로 밝혔다.

함께 룸살롱을 이용했던 모 방송사 교향악단의 K씨는 “지씨와 평소 친하지도 않고 안면도 그리 많지 않은데, 계속 술 한 잔 하자고 졸라서 나갔더니 룸살롱이었다”며 “지씨 본인이 산다고 했고 학부모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입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K씨는 각종 콩쿠르에 종종 심사위원으로 나가는 인물이다.

역시 지씨와 함께 룸살롱을 이용한 C 서울대 교수는 “동문이지만 연배가 달라서 지씨와 거의 만난 적도 없다, 지씨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술을 사겠다고 했다”며 “학부모가 술값을 지불했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C교수는 “당시 일은 기억도 잘 안 나고, 기자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했다. C교수는 현악·관악·피아노전공으로 구성돼 있는 서울대 기악과에서 관악 분야의 핵심 인물이다.

특히 지씨는 ‘룸살롱 접대’ 약 2개월 뒤 서울대 튜바 담당 강사로 결정돼 뒷맛이 개운치 않다.

서울대 교수 “구체적인 것 기억 안나”

학부모 엄씨는 룸살롱 접대와 부실 레슨을 주장하며 올해 6월 지씨와 관계를 끊었다. 접대 문제 이후 2007년 겨울부터 지씨가 다른 학생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서울대는 튜바 전공자를 3년에 두 명만 선발한다. 작년에 한 명을 뽑았고, 올해도 한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입시에서 튜바 전공은 뽑지 않는다. 단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명문대 자리’이다 보니 종종 신경이 예민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레슨이 끊길 당시 지씨는 학생 이군에게 “너희 어머니 지금 실수하는 것이다” “너 내 성질 모르냐, 음악세계를 모르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엄씨는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씨는 사건이 커지자 “레슨·술값 등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며 레슨비와 술값 명목으로 지난 7월 1,000만 원을 엄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엄씨는 물려서지 않고 있다.

엄씨는 “지씨는 서울대 간판을 무기로 나와 내 아들을 농락하며 결국 자신의 이익만 챙겼다”며 가슴을 찔다. 지씨는 최근 < 오마이뉴스 >와의 통

화에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서울대 음대 수시 전형 원서접수는 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 음대 진학을 빌미로 한 룸살롱 접대는 사실과 달라 (또는 서울대 출신 강사의 룸살롱 접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에 “서울 음대 보내려면 룸살롱 접대해라?”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기악과 출신의 연주자가 서울 음대 진학을 빌미로 자기 제자의 어머니에게 접대를 요구하여 3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연주자는 제자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접대 요구도 한 바 없으며, 제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각종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사례로 술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외에 서울대 음대 입시 및 연주자의 서울대 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지난 9월 8일 사회면 “서울 음대 보내려면 룸살롱 접대해라?”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본지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모임은 강사 임용이나 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인과의 모임이었으며, 지씨가 접대 후 2개월 뒤 서울대 강사로 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씨는 제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모 콩쿠르에 입상하게 된 데 대한 사례로 술자리를 마련했을 뿐, 제자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접대 요구

도 한 바 없으며, 레슨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와의 관계가 끝났으며 이후 문자메세지 등으로 학부모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협박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9일 9시부터 2008년 10월 10일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 초기화면의 2단 목록의 최상단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오마이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회사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으며 대검이 이를 내사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경원실업 (대표이사 홍 ○ ○) 외 1인

피신청인 : 충청리뷰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충청리뷰 : 『내사 두 달만에 수사팀 배정 ‘급물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6일자 13면)
외 19건

내 용 : (주)경원실업이 청원군 미원면 태신리에 조성하고 있는 이븐데일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해 ‘공직사회를 상대로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한 내사부서는 7월 중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으며,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23일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중략)

대검은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

과 함께 국세청 국장 출신인 경원실업 H회장이 재임시절 저지른 세무비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중견 건설 업체 대표들이 입은 거액의 피해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또 충청리뷰가 지난 4월부터 연속 보도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전방위 금품로비 시도 의혹 (본보 524·525·526·527·530호 보도) 외에 8월 15일(541호) 보도한 분양권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스크린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청리뷰는 541호 기사에서 ‘청원군과 충북도에 서 고위직을 지낸 Q씨가 경원실업의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내용과 ‘골프장 분양권 승인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했던 충북도 공무원이 부인과 함께 제주도로 접대 골프를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이븐데일 골프장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본지는 청원군 미원면에 조성하고 있는 이븐데일 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경원실업과 H회장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정정합니다.

또한 K씨, Y씨, I씨, 또 다른 K씨 등의 주장을 근거로 금품로비설을 기사화하였으나 이들은 (주)경원실업 또는 H회장과 분쟁중인 자들로서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허위 또는 과장의 제보를 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습니다. (주)경원실업과 H회장은 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금품로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8년 7월 16일에는 분양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주)경원실업의 지분 50% 또는 분양대금의 50%를 주장하는 K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H회장은 K회장에게 분양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50대50으로 나누는 제안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다만 H회장이 안면이 있던 K회장이 자신이 분양업무에 경험이 있고 자신이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하며 K회장이 알고 있던 분양전문회사를 분양대행회사로 알선하기에 소개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경원실업이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것은 교통여건 등 입지조건이 좋고 회원에게 좋은 혜택을 부여한 바에 기인한 것으로 K회장의 개인적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골프장 사업은 사업성 검토, 부지확보, 부지확보 및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 및 그 계획의 수립, 인허가 추진, 공사 실시 등 수 많은 업무로 장기간의 노력 및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한 골프장회원권 분양은 아파트 등의 분양과 달리 회원이 분양금을 회사에 예치해 놓는 것에 불과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회원이 탈회 요청을 하면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회계상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K회장이 (주)경원실업의 지분을 50% 소유하여야 하거나 분양대금의 5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븐데일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주)경원실업이 탈법분양을 하고 충청북도가 이를 눈감아 주었다는 보도한 바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이상 진행된 이후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공정율이 50%미만인 때에 대하여만 전체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정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회원권 분양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경원실업은 최초 분양승인신청시 투자금액 한도내에서만 분양신청을 하여 승인 받았으며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상태에서 추가 분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충북도는 공정을 50%가 초과된 상태에서 회원보호를 위하여 신중하게 회원모집승인을 하고자 법규상에는 없지만 추가된 투자비 내에서만 추가로 모집하도록 승인한 것이며(6월13일 100명 추가승인) 8월 7일의 145명 추가승인도 공정을 50% 이상임에도 법령상의 근거없이 투자비 범위내에서만 분양승인을 해주려는 충북도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미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주)경원실업의 입장이 상충되었으나 충북도는 회원보호를 위하여 (주)경원실업의 공정을 및 투자비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한 후 공정율 50%이상임을 확인한 상태에서도 회원보호를 위하여 (주)경원실업의 신청 인원수(당초 250명 승인신청)를 삭감하도록 행정지도한 것입니다.

(주)경원실업은 법적 테두리내에서 분양하여 탈법분양을 한 바 없으며 충북도의 8월 7일자 추가승인으로 (주)경원실업은 아직도 수십 명분에 해당하는 미분양 회원권이 남아 있으므로 이븐데일 골프장이 확보한 회원수와 충북도의 승인구좌수가 정확히 일치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의심받기 충분한 상황이라는 기사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주)경원실업은 9홀 대중골프장 증설, 골프빌리지(숙박시설)건립 등 2차사업 계획을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장광고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주)경원실업은 9홀 증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토지는 이미 매입완료하고 일부토지의 추가매입을 위하여

교섭 중에 있으며 골프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골프장 조성사업에 비하여 그 사업규모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은 큰 어려움이 없는 사업으로서 (주)경원실업은 골프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매매협의 중에 있으며 9홀 대중골프장 증설, 골프빌리지(숙박시설)건립에 관하여 (주)경원실업은 분양팜플릿 등에 2차사업으로서 향후 추진할 사업임을 분명하게 표기하였으며 분양상담과정에서도 완결 또는 확정된 사항이 아닌 향후 추진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1) 정정보도

- 제 목 : 이븐데일 골프장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 및 인터넷 충북인뉴스가 20여 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이븐데일 골프장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주)경원실업의 9홀 대중골프장 증설, 골프빌리지 건립 등 2차 사업계획을 실현가능성이 없는 과장광고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주)경원실업은 9홀 증설에 필요한 대부분의 토지는 이미 매입완료하고 일부토지의 추가매입을 위하여 교섭 중에 있으며 골프빌리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애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주)경원실업은 골프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인근 토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와 매매 협의 중에 있으며 9홀 대중골프장 증설, 골프빌리지 건립에 관하여 이븐데일 골프장은 분양팜플릿 등에 2차사업으로서 향후 추진할 사업임을 분명하게 밝혀 과장광고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경원실업 또는 H회장과 관련한 기사를 총 2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는 바 이는 보도 방식에 있어 적절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2) 반론보도

- 제 목 : 이븐데일 골프장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및 인터넷 충북인뉴스가 20여 차례

에 걸쳐 보도했던 이븐데일 골프장 관련 기사에 대하여 (주)경원실업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이븐데일 골프장은 회원모집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충청북도는 이븐데일 골프장의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븐데일 골프장이 최초 승인받은 인원수 범위 내에서의 모집은 법령상 제한이 없음에도 회원보호를 위하여 이븐데일 골프장에 대하여 골프장 공사 진척도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모집승인인원을 삭감하였 습니다.

충청리뷰는 2008년 7월 16일에는 분양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주)경원실업의 지분 50% 또는 분양대금의 50%를 주장하는 K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H회장은 K회장에게 분양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50대 50으로 나누는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H회장이 안면이 있던 K회장이 자신이 분양업무에 경험이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하며 K회장이 알고 있던 분양전문회사를 분양대행회사로 알선하기에 소개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주)경원실업이 다수의 회원을 확보한 것은 교통여건 등 입지조건이 좋고 회원에게 좋은 혜택을 부여한 바에 기인한 것으로 K회장의 개인적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골프장 사업은 사업성 검토, 부지확보, 부지확보 및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 및 그 계획의 수립, 인허가 추진, 공사 실시 등 수 많은 업무로 장기간의 노력 및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한 골프장회원권 분양은 아파트 등의 분양과 달리 회원이 분양금을 회사에 예치해 놓는 것에 불과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회원이 탈회 요청을 하면 반환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회계상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K회장이 (주)경원실업의 지분을 50% 소유하여야 하거나 분양대금의 5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인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충청리뷰 2008년 10월 17일자 3면 우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이븐데일 골프장...)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청원군 최고위층...)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

이 발행하는 인터넷 충북인뉴스 2008년 10월 15일자 메인화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이븐데일 골프장...)는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청원군 최고위층...)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이 정정보도 청구한 금품로비설 관련 기사는 향후 사법기관의 진행결과에 따라 피신청인

이 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총청리뷰 : 『이븐데일골프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7일자 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으며 대검이 이를 내사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경원실업 (대표이사 홍 ○ ○) 외 1인

피신청인 : 충북인뉴스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2008충북조정9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2008충북조정9의 합의사항 참조>

보도내용

충북인뉴스 : 『미원골프장 대검 수사 본격화』 제하
의 기사 (2008년 9월 24일자 메인면) 외
19건

내 용 : <2008충북조정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이행결과

충북인뉴스 : 『이븐데일 골프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3일
자 종합면)

내 용 : <2008충북조정9의 합의사항 이행결과
참조>



SBS 4부작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프로그램이 이슬람교를 홍보하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 진리를 부정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교회SBS사태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SBS-TV : 「신의 길, 인간의 길」 프로그램 (2008년 6월 29일 23:20)

내 용 : SBS 대기획 '신의 길, 인간의 길' (1부) -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지난 해 11월 어느 날, 평일인데도 순복음교회 안은 아침부터 신도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통성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오늘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 기도하는 목적은 오로지 하나, 수험생 자식이 합격하도록 신께서 특별히 도와달라는 것이다. (중략)

2천 년 전, 예수가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은 또한 무엇을 향한 것이었을까?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아들 예수는 2천 년 전 나사렛의 그 예수일까? 그가 보여준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야기들이 신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인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이 있다. 예수는 신화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예수의 존재는 세계적으로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영국에서 이 책을 쓴 '티모시 프리크' 박사를 만났다. 다신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는 우리로서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뷰-티모시 프리크 / '예수는 신화다' 저자 : 이 모든 이야기가 기독교가 생겨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고대에 존재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입증하는 대답은 아주 명백해요. 누군가 죽었다 부활하는 고대신화 이야기를 유대인 배경으로 재구성한 것이에요. 이것이 복원한 부적인데 예수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죽었다 부활하는 이교도 신 오시리스, 디오니소스예요. 그의 책은 지난 2002년 우리나라에서도 출간 됐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곧 절판됐다.

▷인터뷰-티모시 프리크 / '예수는 신화다' 저자 : 살해위협 같은 것은 없었어요. 다만 무서운 저주를 들었습니다. 지옥의 작은 구석에서 영원히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이었어요. (공동 저자인) '피터 갠디'와 제가 신에 대해 감히 언급 했었니까요.

풍부한 신화를 간직한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의 나라였다. 나일강을 따라 고대 문명이 꽃피웠던 이곳은 로마시대 기독교 발상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오늘 날 이집트엔 교회와 이슬람 사원이 공존한다. '콥트'라 불리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대부분 무슬림이 됐지만 여전히 소수는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다. '콥트'인들은 2천 년 전부터 신앙을 지켜왔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가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멀리 이곳 알렉산드리아로 와서 머물렀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곳곳엔 예수의 가족들이 다녀갔다는 장소가 성지로 남아있고, 많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또한 예수의 제자이자 가장 오래된 신약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의 무덤도 이곳에 있다고 한다. 마가는 이집트로 와서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이것이 콥트교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인터뷰-이만 무니르 / 교회사학자 : 성 마가는 AD61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왔어요.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에 상관하지 않고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기원전부터 고대 이집트에서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었다. 왕들은 평생에 걸쳐 자신의 무덤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죽어서 미라가 됐다. 그렇게 삶과 죽음, 부활에 관한 신화들은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일강을 따라 즐비한 신전 가운데 텐데라 신전을 찾았다. (중략)

1세기 고대 로마의 저술가 플루타루크의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는 악의 신에게 살해된 다음 곳곳에 몸 조각이 뿌려졌는데 아내 이시스가 주워 모아 묻어주자 3일 만에 부활해 지하세계의 신이 된다. 그 후 오시리스는 이시스의 몸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아들 호루스인 것이다.

인터뷰-티모시 프리크 / '예수는 신화다' 저자 : 오시리스 신의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가 이야기 되었고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스 이야기가 되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아도니스나, 아티스, 세라피스 같은 형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포도주로 기적을 보였던 디오니소스, 기원전 페르시아의 태양신이자 풍요의 신

인 미트라스. 고대 신화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다. 그리고 이런 이시스 모자 상이나 미트라스 상들은 고대에 모두 목이 잘리거나 훼손 됐다.

▷인터뷰-티모시 프리크 / '예수는 신화다' 저자 : 고대의 신들은 양치기 또는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굴에서 태어났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당시 현상에 위배되는 사랑이라는 새 종교를 만들어냈고 세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등 다양한 기적을 행했어요.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박물관. 이곳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인 기원전 5세기경에 제작된 항아리가 보관돼있다. 그 안에는 포도주를 만드는 신, 디오니소스의 모습이 있다. 디오니소스가 보여준 물과 포도주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기원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가 어느 결혼식 잔치에서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인 것과 아주 비슷하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성탄절. 강원도의 작은 교회에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아이들의 소박한 무대가 열렸다.

베들레헴의 예수탄생교회. 이곳에서 아기 예수가 2천 년 전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예수 탄생 신화는 디오니소스 이후 로마에 등장하는 미트라스 신앙의 탄생 신화와는 놀랍도록 비슷해진다.

▷인터뷰-배철현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바로 이 미트라스의 생일, 종교 축제인 12월 25일이 바로 그리스도교 예수의 생일이 되는 겁니다. 미트라스라는 신 자체는 기원전 1~2세기 때부터 등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그리스도교하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 발생이 그리고 연대가 상당히 신학적으로 유사한 게 많다는 거죠.

이 외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많다.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요단강. 예수의 행적을 좇아 지금도 많은 신도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기독교에서 세례는 숙제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뷰-베아트리아스 : 나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당신의 생명도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의식 역시 이미 미트라스 신앙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2세기에 살았던 기독교인 테르툴리아누스도 미트라스와 같은 이교도들이 세례를 받으면 죄를 면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해 3월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활절 행사가 열렸다. 교황은 예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로 성스러운 영성체 의식을 거행한다. 그런데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신성한 교섭을 하는 이 영성체 의식 역시 미트라스의 의식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교도의 신화와 예수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닮아있는 것 때문에 기원 1, 2세기 동안 기독교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먼저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중략)

영국에 옥스퍼드 대학의 '게자 버메스' 교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이다. 그는 예수의 존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다.

▷인터뷰-게자 버메스 / 옥스퍼드대 유대학 교수 :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인 플레비우스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 고대사>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는 현명하고 비범한 행적을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는 요세푸스가 서기 93년에 기록한 역사책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 등장한다. 유대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알려진 예수에 대해 요세푸스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같은 유대인인 게자 교수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야도, 신적인 존재도 아니었다고 말한다.

▷인터뷰-게자 버메스 / 옥스퍼드대 유대학 교수 : (예수가 있던 시대나 그 이전에는) 영적인 치료, 악령퇴치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설법자와 성스러운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관련된 글들 속에서 예수가 생전에 당시 아주 유명했던 기적적인 치료사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마을,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예수는 이곳

을 전도의 중심지로 삼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등 많은 기적을 보여줬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곳은 늘 세계 각지로부터 기독교인들의 순례가 이어진다.

▷인터뷰-살리바 바찬 / 스트리우스 정교회 신부 : 다른 사람들이 앓은뱅이를 도와 지붕을 열고 집안에 넣었고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하자 일어섰다는 이야기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근거로 예수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의견에 대해 미국의 종교학자 '로버트 프라이스' 교수는 반론을 제기한다.

▷인터뷰-로버트 프라이스 / 미 성경비평 연구소 교수 : 예수는 몇몇의 다른 인물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로마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중략)

같은 시기, 또 한명의 혁명가가 등장하는데 '사이먼 바기오라'라는 사람이었다. 유대 성전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그는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인식되는데 로마군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유대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처형당한다.

이는 예수가 성전에서 광신도를 쫓아낸 성경내용과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터뷰-로버트 프라이스 / 미 성경비평 연구소 교수 : 플루타르카가 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네스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죽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졌는데 그를 따르는 여자들이 십자가로 모여들어 뱀들이 나타나 새들이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머리를 감싸 안는 장면을 보고 '그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서기 1세기 저술가 플루타르카가 쓴 영웅전 중에 기원전 3세기 시절 왕 클레오메네스 일대기가 있는데 그 내용과도 닮아있다.

(포틀레미는 클레오메네스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채찍질하고 매달아 놓을 것을 명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 / (자막으로 성경과 비교 -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 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다. -마가복음 15장)

(사람들은 클레오메네스에게 영웅과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 / (자막으로 성경과 비교 -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인대장이 이 사람이야 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말했다.)

결국 예수는 여러 이야기의 인물을 짜집기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인터뷰-로버트 프라이스 / 미 성경비평 연구소 교수 : 나는 과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다양한 역사적 존재들로부터 구성된 허구적인 모델로 간주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실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야기는 성서 이외의 기록에서 전해지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인공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라이스' 교수의 주장에 대해 미국에서 만난 저명한 역사학자 '크로산' 교수는, 그 당시 예수는 분명히 존재했었다고 반박한다.

▷인터뷰-존 도미니크 크로산 / 미 성서학회 역사적 예수 연구분야 위원장 : 예수가 존재했었다는 아주 훌륭한 증거가 있습니다. 1세기 말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말고도 2세기 초의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회운동(movement)을 벌인 사람이며 그것 때문에 처형당했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었고 그 운동은 모든 곳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요세푸스뿐 아니라 2세기 초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랜 기간 박해를 받았다. 타키투스는 크리스천 운동을 질병으로 규정했고 유대 사회에 퍼진 이 질병이 근절되지 않아 결국 로마에까지 번졌다고 기록했다. '크로산' 교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가 이후 신격화 된 것이라 말한다.

▷인터뷰-존 도미니크 크로산 / 미 성서학회 역사적 예수 연구분야 위원장 :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가 잉태를 한 것이죠. 사람들이 2천 년 전에 그것을 말했을 때 과연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몽이 되지 않은 그 세상에서는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인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두 남녀 간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수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고 한 겁니다. 이걸 실수도, 거짓말도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난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훨씬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 혹은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키 중부 해안에 있는 프리아니 유적. 이곳엔 화려했던 로마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다. 당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였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도 그랬다.

▷인터뷰-존 도미니크 크로산 / 미 성서학회 역사적 예수 연구분야 위원장 : 도시의 수호자인 아테나 여신과 로마의 황제, 신의 아들, 신,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황제는 신과 동격이라는 의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래서 예수를 황제와 같이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인터뷰-존 도미니크 크로산 / 미 성서학회 역사적 예수 연구분야 위원장 : 1세기에 예수가 존재하기 전 지중해 연안 세상에는 신으로, 신의 아들로, 신이 보낸 신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계시자로, 세상의 구원자로 불리던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지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명칭을 로마 황제로부터 따와서 유대인 농부(예수)에게 붙인 겁니다. 이게 바로 1세기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게서 특수한 기독교인들의 언어일지도 모르지만 모든 동전에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쓰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그 외의 다른 신은 없다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인터뷰-게자 버메스 / 옥스퍼드대 유대학 교수 : 사실 유대인 사이에 인간이 신적인 위치를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이며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중

교적으로 특별한 인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신에 아주 근접한 특별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신의 아들 말입니다.

동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이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2천 년 전 그 때, 혼란스러웠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뛰어난 인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는 그를 따르던 12제자와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그것은 예수의 말과 행동 때문이었다. (중략)

살아서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일까?

터키의 안타키아, 성경에서 안디옥이라 부르는 곳이다. 안타키아에 있는 베드로 동굴교회. 예수가 죽은 다음 베드로가 이곳에 와서 메시아가 나타났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크리스천이란 말도 이곳에서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군의 박해를 피해 절벽의 동굴로 피신을 다녀야만 했다.

(막혔어요. / Q. 언제부터요? / A. 예전엔 산의 끝까지 뚫려 있어서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을 수 있었어요.)

이슬람국가인데도 터키의 거리 곳곳엔 오래된 고대 그리스의 여신상들이 서있다. 안타키아의 모자이크 박물관에는 그리스와 이집트 신화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오래된 벽화들이 보존돼있다.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호루스의 어머니인 이시스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의 모습도 있다. 그렇게 2천 년 전 이곳엔 이교도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신화적인 이야기는 익숙한 것이었다.

▷인터뷰-김덕기 / 대전 신학교 신약학 교수 :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화가 사실이 아닌 것을 넣었다기보다 신화는 그들의 사유방식이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 저 세상의 세계가 관여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고대인들의 사유방식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그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

능 하나 또 부활도 현대인들이 믿기에 어려운 측면이었지만 고대인들에게는 신과 인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그들의 사유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은 곧 고대인들에게는 인간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점이 (믿기) 어려운 것이지 부활은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의 아들은 일반적으로 부활한다고 믿었고..

유대 사회를 개혁하고 지상에 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외쳤던 예수의 이야기를 이교도들에게까지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신화나 우화적 요소를 넣어 복음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인터뷰-존 도미니크 크로산 / 미 성서학회 역사적 예수 연구분야 위원장 : 성경을 믿으세요. 신성한 문헌으로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말입니다. 비유로 의도하고 쓴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화적으로 쓴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우화인지를 놓고 문자 그대로 사실인지 혹은 비유적인 것인지를 놓고 논쟁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신의 세상을 폭력으로부터 장악한 자들로부터 되찾으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을 위해 이 세상을 되찾으라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신에게 속한 것이니까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은 300년이 지난 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이르러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리고 변방의 종교였던 기독교 신앙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까지 인정받게 된 것일까?

로마의 로뎀도 성당. 이곳은 5세기에 지어졌다. 그런데 이곳 지하엔 놀랍게도 이교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는 많은 로마인들이 믿었던 미트라스 신전이 있었던 것이다.

▷인터뷰-성당 관리인 : 여긴 미트라스 신전입니다. 미트라스를 숭배하기 위한 곳이죠. 이곳에서 저기 달 위에 그려진 미트라스를 위해 제물을 바치고 찬양했어요. 그 후 그리스도교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미트라스교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죠.

따라서 이곳의 미트라스 신전도 폐쇄되고 신전 위로는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스에 대한 로마인의 숭배는 기원전부터 시작해 3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 미트라스 신앙은 급격히 쇠퇴하고 말았다. (중략)

우리는 혹시 신화에 가려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예수가 과연 누구이고 그가 가진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왔다. 신학자들은 복음서에서 신화적인 요소나 작의적으로 덧붙여져 보이는 이야기를 뺀 진짜 복음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45년, 이집트에서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 발견됐다. 그 중에 도마 복음서가 있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신화적인 요소도 없고 후대에 가필된 흔적도 없어서 이를 예수가 한 말만 기록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인터뷰-김덕기 / 대전 신학교 신약학 교수 : 누가, 마태 공통어록에 최초로 예수님의 어록집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건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도마 복음이 나오으로써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발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과 예수님의 탄생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부분이 빠져있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마치 눈 어처럼 예수가 하신 그런 말씀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과 유사한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건 사실이죠.

고대 신화와 서양 문명으로 각색된 예수의 겉모습을 거둬내고 2천 년 전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참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우리 스스로 찾아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인터뷰-존 도미니크 크로산 / 미 성서학회 역사적 예수 연구분야 위원장 : 예수의 사상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비폭력 혁명입니다. 그 후의 기독교의 역사는 그 예수의 사상을 침묵시키고 누그러뜨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것은 예수가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그것은 빌라도가 그런 예수의 사상을 똑바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SBS 스페셜 방송내용이 정통 기독교 교리와는 달라
- 본 방송이 지난 6월 29일 방송한 '신의 길 인간 의 길'의 방송 내용은 정통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종교간

대화를 위해서 기획/제작된 방송이 이슬람교에 치중하여, 특정종교를 홍보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기타 기독교 교리인 십자가, 부활, 영생, 인류 구원의 교리에 관계된 것들을 신화와 함께 설명하여 특정종교의 교리를 부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방송하므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상처를 받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

다이어트 후 탈모 및 요요현상을 겪고 있는 여성의 사례를 방송하면서 한의원에서 처방한 '다이어트환약'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29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회장 최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8년 7월 24일 22:00)

내 용 : 본격적인 노출의 계절 여름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사람들 마음까지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키크고 날씬한 사람들, 배에 복근 있는 여자요’

‘바디라인 좀 되는 섹시한 몸매’

올 여름엔 불만녀 권진영도 이런 S라인 몸매 꼭 쟁취하리라.

‘아 그거야’

그래서 떠올린 묘안 바로 한방 다이어트

허준 같은 명의들이 좋은 약재로 내 몸에 맞게 처방해 준 것이라니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약일까.

하지만, 다이어트 한약으로 머리가 몽땅 빠져버린 절박한 제보자

(자막/ 충격적인 부작용 탈모)

게다가 몸은 100킬로그램의 거구로 변했다(자막

/ 요요)

그녀는 원래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였다.

▷제보자 : 도대체 무슨 약이 길래, 얼마나 독하길래, 저건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독약이구나

한의원서 직접 만든다던 다이어트 환 그러나 실상은 완전 달랐다.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마구잡이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다이어트 환약 불법제조 현장

▷한방제약회사 관계자 : 원래 이런데서 의약품을 만들면 불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님들은 제분소를 통하지 않고 약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주고 또 원장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건강한 살빼기를 미끼로 한 한의원의 다이어트 환약 실체를 불만제로가 전격 공개한다.

▷오상진 : 아니 방금 화면 뭘니까 아니 머리카락이 흘러당 다 빠졌다고요. (자막/ 머리카락 모두가 빠졌다?) 아니 다이어트 약을 먹고 저렇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자막/ 다이어트 약 때문예?)

▷김원희 : 머리가 빠졌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이재용 : 하여간 분명한 것은 건강하게 살을 빼주는 한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이어트 환약의 무서운 위력을 충격 속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막/ 무서운 다이어트 환약의 실체 공개)

불만제로가 제보자를 찾은 건 지난 5월.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럴 수가 머리카락 전

체가 모두 빠져버린 상태였다. (자막/ 심각한 탈모 증세)

▷제보자 : 저는 전혀 한약 때문이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누가 한약을 먹어서 머리가 빠졌다고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지난 여름 제보자는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한방 다이어트 광고를 봤다. 체중감량은 물론 건강도 책임져 준다고. (자막/ 알약 형태의 다이어트 한 구입)

처방받은 약은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알약 형태의 다이어트 환, 양을 계속 늘려먹을수록 약 효과는 배가된다 했다. (자막/ 내성이 생기면 복용량을 늘리라는 한의원의 안내 책자)

이대로만 하면 식욕이 확 떨어지면서 지방 살이 쏙 빠진다고 했다. 그리곤 먹은 지 1주일 만에 3킬로그램이 정말 쏙 빠졌는데, 빠진 건 또 있었다. (자막/ 8개월 뒤 시작된 탈모) 바로 정수리의 머리카락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은 점차 퍼지더니 급기야 뺨뺨 빠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제보자 : 처음에 빠질 때는 너무나 무섭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약간 훑기만 해도 한 주먹씩 빠지니까 골름처럼 몇 가닥 안남은 상태가 돼서

게다가 약을 끊으면 식욕은 걸잡을 수 없는 통제불능에 빠졌다. (자막/ 약 부작용으로 식이조절 장애 생겨)

▷제보자 : 오늘 약을 안 먹으면 하루에 통닭 4마리 시켜놓고도 오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라면을 끓여먹고, 슈퍼에 가서 뭘 사면은 저희는 애도 없는데 아저씨가 애들이 굉장히 많으신가 보다고, 그거 제가 다 먹을 건데

결국 다이어트 환 복용 후 제보자의 몸집은 무려 90킬로그램대로 불어난 상태였다. (자막/ 극심한 요요와 다이어트 반복으로 1년 새 체중 급상승) 체중 감량은 커녕 거구의 몸에 민둥머리가 돼 버린 최○○ 씨. 불과 1년 반 전만해도 그녀의 트레이드마크는 긴 생머리였다. 옷 사업을 하는 직업상 자신이 곧 모델이기도 했던 최씨에게 다이어트는 빼놓을 수 없는 자기 관리였는데 이런 부작용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기막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충격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났다. 쓰레기통에 몽땅 버려진 다이어트 환을 이 집 강아지가 열심히 주어먹게 된 것.

▷제보자 : 강아지가 한 3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사지를 사시나무 떨 듯이 막 떨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정말 빨개졌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한 2-3주가 지나니까 강아지가 털이 다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뿔싸 이 집 강아지 엉덩이 털 몽땅 빠졌다. (자막/ 엉덩이 부분 탈모 발생) 어떻게 사람과 강아지 모두 똑같이 털이 빠질 수 있다는 걸까. 선생님 제 몸이 대체 왜 이리 된건가요.

▷강○○(동물의사) : 현재 의심되는 것은 어떤 약물의 과다복용이나 그걸로 인해서 탈모 증상이 나타나지 않나 (자막/ 다이어트 환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다이어트 환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 (자막/ 탈모 부작용 겪은 또 다른 제보자) 한방 다이어트 후 머리털 빠졌다는 제보자는 또 있었다.

▷제보자2 : 사진은 살찌기 전의 증명사진을 붙여서 이력서에 넣었는데 막상 가서 면접을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썽들을 많이 하시죠 “어? 많이 다르네요” 면접 보러 갔는데 어떤 분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남자들한테 대머리가 쥐약인 것처럼 여자들한테 사회생활에 있어 비만이 쥐약이라고.

그래서 시작한 한방 다이어트였는데 생각지도 않은 탈모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결혼식 날 결국 흑채를 뿌리고 식을 올렸다. (자막/ 결혼식 날에는 흑채로 탈모가려)

▷제보자2 : 한약을 먹고 나서 한 10일정도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났는데 평소보다 너무 많이 빠지고 그냥 아침에 빗질하는데 너무 많이 빠지고.

대체 어떤 약이길래 (자막/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길래?) 살아있는 털이란 털은 왕창 뽑아놓을 수 있던 걸까. 검사결과 제보자들이 먹은 다이어트 한약의 주성분은 다름 아닌 마황(자막/ 12개중 9개의 한약에서 마황 검출) 여기에 있는 에페드린이란 물질은 우리 몸에 대사량을 높게 해 양약에선 코감기 약 등으로 한방에서는 비만치료제로 쓰인다. 그럼 부작용은

▷이윤숙 전문의(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

과) : 일단 불안 증상 빈맥이 나타나고요. 용량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고혈압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막/ 제보자가 복용한 환약의 에페드린 양 100g 당 1.08g 검출, 하루기준 70% 초과(양방기준))

과연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였을까 실험실로 달려가 봤다. (자막/ 불만제로 대학 연구소와 함께 독성 실험 실시) 제보자가 먹은 동일한 약을 먹어 본 실험용 개(자막/ 해당 한의원 환약 60g 투약) 딱 한 번 투여에 눈은 충혈 됐고, 온 몸이 벌게지면서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혈액검사 결과 간과 심장에 이상 발생. (자막/ 간수치 두 배 증가, 심장 근육 손상) 다행히도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됐다. (자막/ 일주일 뒤 회복)

만약 한 달을 먹는다면 실험용 쥐 복용기간 장장 25일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자막/ 25일간 해당 환약을 복용량을 기준으로 투약, 가슴샘 손상, 비장크기 축소) 가슴샘과 혈액 등의 세균을 죽이는 비장 모두 손상된 상황. 이리되면 탈모부작용

역시 연관성 생길 수 있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보도 관련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24일자 <불만제로> 프로에서 「다이어트 환약 실제 공개 ‘약이 아닌 독약」이라는 제목으로 비만치료용 환약에 관한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우선 환약을 빗대어 독약이라 칭하는 선정적 제목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환약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내용 중 제보자가 말하는 탈모 현상이 한의원에서 제공한 비만치료용 환약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모든 책임이 한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에게 한방의료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료에 매진하는 대다수 한의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 말씀 드립니다. □

신청인이 쏫불시위 참석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폭행이 없었다는 가담자의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2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27일 새벽, ‘광란의 태평로’는 있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28일자 사회면)

내 용 : 조선일보는 28일 인터넷판인 조선닷컴 톱으로 “27일 새벽 ‘광란의 태평로’... 50대 폭행 피해자의 목격담”이란 기사를 올렸다. 조

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5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공동대표) 씨의 입을 빌려 27일 새벽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폭력 시위대가 연약한 여성을 집단 린치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우연찮게도 본보 기자가 바로 그때 그 현장에서 거의 전 과정을 목격했다. 본보 기자는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사가 왜곡 확대 과장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고 감상을 피력했다. 본보 기자의 목격기를 신는다.

[데일리서프 김○○ 기자] 그 날 본 것에 대해 가감없이 말하겠다.

참고로 조선일보가 이 목격기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진에서 동그라미 표시가 돼있는 고○○ 씨의 앞에 마스크를 입 밑으로 내리고 있는 여성 박모 씨(43)와 사진으로 봤을 때 고씨의 왼쪽에

안경 쓰고 역시 마스크를 입 밑으로 내리고 있는 남성 장모 씨(38)와는 상황 종료후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그들도 이 사건의 한 증인이고 조선일보와 고○○ 씨는 그 자리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27일 새벽 세종로 사거리 일대는 한층 평화로웠다. 26일 오후 11시경 물대포의 등장에 다소 격한 충돌도 있었지만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인간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때문인지 경찰도 무리하게 진압하려 하지 않았고 시위대도 평화롭게 농성중이었다.

새벽 2시경 코리아나 호텔 앞에 50여 명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원모양으로 모여들었다. 자연스럽게 기자도 사람들을 헤치고 다가갔다. 20대 말로 보이는 한 여성이 중앙에 있었다. 기자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 여자가 뉴라이트다” “우리한테 빨갱이라는등 폭도라는등 욕을 한다” “조금전까지 남자가 옆에 있었는데 그 X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기자가 그녀에게 사실이냐고 물었으나 아무 답없이 전화기를 꺼내 여기저기 둘러보기만 했다.

다시 시위대에 그 남자는 누구였냐고 묻자 시위대 중 한 명이 “뉴라이트인가 뭔가에 봉거시기 있죠, 그 X이요”라고 답했다.

설마 봉대표가 왔겠냐고 다시 묻자 “틀림없소 그 X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유도하려고 이 여자와 같이 나타난 것이요”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라이트코리아 봉대표는 전날 KBS와 MBC에 나타나 촛불시위에 폭력을 행사하고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 그가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 나타났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봉대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자 조금전까지 여기 있다가 사라졌다는 답만 들었다.

조선일보에 목격담을 제보한 고○○ 씨가 주장한 대로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그 순간을 보지 못했다. 약간의 시차가 날 수도 있다. 만약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대로 고○○ 씨가 폭행을 당한 게 사실이라면, 시위대는 고씨를 라이트코리아 봉대표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말 폭행을 당했다면 유감이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고씨의 입을 빌려 “시위대가 혼자 남겨진 그 여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사실은

완전한 날조라고 본다. 기사에서 특히 이 부분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코와 입을 수건으로 가리고 눈만 내놓고 모자를 쓴 건장한 남자 10여 명이 여자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듯하더니, 한 남자가 여자의 목을 팔뚝으로 감았다. 다른 남자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또 다른 남자는 여자 뒤에서 여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여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저X 잡아 죽여!” “미친X”... 여자를 둘러싼 시위대는 더 크게 소리쳤다. 여자를 둘러싼 남자들 중 일부가 여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사색이 된 여자는 한 남자의 팔에 목이 감긴 채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과 사진 기자들도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왜 폭행 현장을 찍지 않았고,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왜 기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란의 태평로는 있지 않았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8일자 사회면에 “광란의 태평로는 있지 않았다... 퇴레 여성 시위대가 그녀를 보호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시위대 중 일부 남성에게 목을 졸리고, 여성 시위대에게 팔, 허리 등을 심하게 잡혀 끌려다녀 심하게 멍이 들고, 이후 귀가과정에서 뒤를 따라온 일부 시위대로부터 신체적 안전에 위협감을 주는 언어폭력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데일리서프라이즈는 해당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일부 시위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취재하여 기사화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10,000원



교사인 신청인이 학교측의 교육부 고시 위반을 이유로 학생성적 공개를 반대했음에도 전교조의 정책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울엄마, 전교조보다 세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교육청과 전교조가 협의한 사항이다. 학교는 시험점수를 알려줘선 안 된다.”

“학부모가 참여하지도 않은 협의가 무슨 소용인가. 학부모의 교육권이 더 중요하니 아이들 시험점수를 알려달라.”

지난달 16일 충청남도 아산시 D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이 학교 운영위원회. 한 전교조 소속 여자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학생의 중간시험 점수를 통지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본 중간시험의 점수를 알고 싶어했지만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 전교조 교사의 반발

이 학교의 교장 A씨는 작년 초 학교에 부임하자마자 학부모들의 거센 요구에 부딪혔다.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부모에게 공개해 달라는 요구였다.

원래 충청남도교육청은 관할 초등학교에 “학부모에게 학생의 시험점수를 알려주지 말라”는 지침을 보냈다. 시험성적 위주의 교육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생활통지표에는 “국어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은 우수합니다. 쓰기 능력은 약간 부족하지만, 학생의 자질이 뛰어나 조금만 노력하면 향상될 수 있습니다”라고 서술형으로 적

혀 있었다. 이같은 ‘서술형 성적표’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자녀가 과목을 잘 하는지, 어느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학부모 박모(여·36) 씨는 “근래의 경우 통지표에 문장으로 적힌 설명만 믿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중학교에 진학한 뒤 첫 중간고사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받아와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A교장은 학부모들의 요구 일부를 수용했다. 2007년 1학기 중간고사 후 생활통지표에는 성적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지필평가’라는 이름으로 과목별 점수를 통보했다. 평균이나 석차는 포함하지 않았다. ‘통지표에 점수를 기재하지 말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어기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생각해낸 교육지책이었다.

그런데 전교조 소속의 B교사가 교장의 방침에 반발했다. “시험점수를 공개하면 학생들 사이에 점수경쟁이 일어나 교육환경이 파헤쳐지고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B교사는 작년부터 자기가 맡은 반 학생들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말 학교가 또 시험성적을 통보하려고 하자 B교사는 교무회의에서 “점수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측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뜻을 알아보자”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학생 427명과 그 학부모, 전체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학생들의 학력평가 후 그 결과를 가정에 어떻게 하는 것(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학생 91%, 학부모 98%, 교사 81%가 “통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점수로 통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학생이 84%, 학부모가 66%, 교사가 72%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는 과목별 점수만 기재한 ‘지필평가’ 결과 발송 여부를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난달 16일 오후에 개최한 것이다. 그런데 운

영회의가 예정된 당일 오전 충남교육청이 이 학교에 팩스로 공문을 보냈다. “학습평가를 문장으로 기술할 것을 재차 강조하니 학교장은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교육청은 “이는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협의 사항”이라고 밝혀왔다.

A교장은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에게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지필평가’ 발송방침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누른 학부모의 힘

결국 운영회의는 예정대로 열렸다. B교사와 교장, 학부모 등 12명이 참석했다. B교사가 성적공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논쟁은 1대 11의 양상이었다. B교사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학부모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아무리 교육청이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최소한 자기 자식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교육청과 전교조의 협의 때문에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라 B교사도 “학부모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고, 심의는 통과됐다. 운영회의에서 B교사는 “교육청과 전교조의 협의를 근거로 이 안전을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전교조 충남지부에 건의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D초등학교는 앞으로 중간시험 성적을 ‘지필평가’ 양식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전교조와 일선 초등학교의 성적통지 방식에 대해 정책협의를 했다. 충남교육청의 김동명 장학사는 “정책협의란 교육청이 전교조와 한 약속”이라며 “전교조에서 시정요청이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 시정지시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와의 협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D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만약 충남 교육청에서 다시 개입해 점수공개를 막는다면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과 전교조를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은 점수 공개가 추세

초등학교 점수공개 논란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경우도 이전에는 서울형 통지표가 주류를 이뤘으나 학부모들의 강력한 점수 공개 요청에 따라 대부분 학교가 점수를 학부모들에게 별도로 통지해주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표’라는 이름으로 점수는 물론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그래프로 표시해서 보내주는 초등학교도 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는 ‘학업성취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험 횟수, 시험 방식, 성적 공개 방식 등을 결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울엄마 전교조보다 세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2일자에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진 제목으로 충청남도 아산시 D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 운영위원들과 학교장을 취재하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정정 보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교육부 성적관리 지침인 ‘초등학교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자녀의 학습 수준을 점수로 알려 달라고 요구한 학교운영위원들과 지침을 어기고 점수로 통지한 학교장의 위법 행위가 원인이 된 사건입니다.

첫째, B교사는 전교조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 성적의 점수 통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23쪽,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학업성취관리 시행 지침 제25조,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7호 제15조에 ‘초등학교 학생성적은 간단한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라는 교육법에 따라 반대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둘째, ‘이를 토대로 학교는 과목별 점수만 기재한 ‘지필평가’ 결과 발송 여부를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난달 16일 오후에 개최한 것이다. 그런데 운영회의가 예정된 당일 오전 충남교육청이 이 학교에 팩스로 공문을 보냈다.’ 라는 것은 사실

과 다른 보도입니다.

셋째, 조선일보는 'D초등학교는 앞으로 중간시험 성적을 '지필평가' 양식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날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제출일이었던 6월 10일이었으며 D초등학교 교장은 교사들에게 이미 6월 10일 학생 성적을 통지하라고 지시하여 통지한 상태였습니다.

위 사실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들과 언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훈령 위반과 공문 무시 행위를 정당화 하기 위해 추후에 벌인 일임을 밝힙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보 7월 2일자 사회면 「울 엄마, '전교조' 보다 세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보도에 언급된 전교조 소속 여교사는 전교조와 도교육청이 맺은 정책협의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 공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따른 성적공개를 반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D초등학교는 시험 점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이미 중간시험성적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0월 17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면 혹은 사회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국토해양부가 우호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의 직원을 지리정보 소관부처에 파견근무하게 하고, 정보시스템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피신청인 : 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신동아 : 『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호 신동아 82~95P)

내 용 : 정부기관 전자지도에 불교 사찰을 누락해 불교계 반발을 초래한 지도제작사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의 내부 고발자는 “김인현 사장은 맹형규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해왔고 이명박 정부의 1조 5000억 원 규모 국가 지리정보 국정과제 수립, 국토해양부 조직개편, 지리업무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회사 임원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총리실 산하)을 대상으로 로비 모의(謀議)를 하고 정치권에 용돈 주며 관리해왔다”고 했다. '신동아'는 폭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6월 20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이용 정보시스템 '알고가'에 작은 교회까지 자

세히 표시된 반면 조계사, 봉은사 같은 대규모 불교 사찰은 누락돼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8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교육지리정보시스템'에서도 불국사 등 전국 주요 사찰이 누락된 점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도 사찰이 홀대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이 지도망(網)에서 교회는 쉽게 드러나지만 사찰은 7단계까지 확대해야 나타났다. 8월 13일엔 서울시 GIS 포털의 '내 지도 만들기' 서비스에서 교회는 별도 아이콘을 두고 있는 반면 사찰 아이콘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지도 서비스에서 사찰이 교회에 비해 무시되고 있다는 의혹이 네 차례나 제기되면서 불교계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이명박 정부와 불교계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불교계는 8월 27일 서울광장에서 '헌법과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 대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및 국토해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나라당 대표의 사과에도 불교계 분노는 9월 현재까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불교계 분노 촉발한 '사찰 누락'

그런데 이 4건의 불교 차별 지도는 모두 (주)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제작됐다. 이 회사는 지도 파문으로 정부에 큰 부담을 준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기반 표준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낙찰받았고,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와 이 회사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국토부와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와 관련, A씨는 "국토해양부는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에 우호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까지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 소관 부처에 이 회사 직원이 파견 근무해 업계에서 논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에 맡긴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이 회사 직원을 국토해양부 사무실에 상주시킨 적이 있다. 다른 뜻은 없었다"고 했다.

김경수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국장)은 최근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외

홍보용으로 발행하는 사보('GIS Review' 2008년 여름호)에 '국토정보화의 첨병,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 인터뷰 기사의 앞뒤로는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이 보유한 공간정보기술을 찬양하는 이 회사 김인현 사장과 직원 김모 씨의 글이 실려 있었다. 지도업계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 국장이 특정업체 기술을 홍보하는 데 동원됐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일었다"고 말했다. 김경수 정책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이다.

-한국공간정보통신 측 홍보용 사보와 인터뷰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간정보통신 기술이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민간업체에서부터 인터뷰 요청이 오면 응해주는 편이다."

-전자지도 업계에 3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한국공간정보통신 이외 동종업체와 인터뷰한 적 있다.

"지적공사 측과 인터뷰한 기억이 있다."

-공기업이 아닌 민간업체와의 인터뷰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유일한가.

"아니, 공간정보통신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국장 인터뷰가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고 한다. 매체 성격을 고려했을 때 국장 인터뷰는 '정부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특정 기술을 톡톡히 PR 해준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기사 삭제와 잡지 회수를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에 요구하겠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은 국토해양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 입찰을 준비했으나 막상 제안설명회에 불참하여 입찰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자 국토해양부 측은 이 사업을 낙찰받은 S사 측이 핵심 솔루션 용역을 한국공간정보통신에 주도록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을 적극 배려했다"

한국공간정보통신 윤모 상무는 "업계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보겠다는 차원에서 김경수 정책관의 인터뷰를 추진했다. 김인현 사장이 직접 나서 인터뷰를 성사시킨 것으로 안다. 그러나 '알고 가 사태'가 터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괜히 오해 살 일을 했다'는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김경수 정책관의 해명과는 달리 그의 인터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A씨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은 국토해양부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사업 입찰을 준비했으나 막

상 제안설명회에 불참하여 입찰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자 국토해양부 측은 이 사업을 낙찰받은 S사 측이 핵심 솔루션 용역을 한국공간정보통신에 주도록 한국공간정보통신 측을 적극 배려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김경수 정책관은 펄쩍 뛰며 전면 부인했다. 김 정책관은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사업을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수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국토해양부와 이 회사 간에는 어떤 유착도 없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 회사는 떨어지고 난 뒤 민원을 제기해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S사 측이 자사와 입찰 경쟁을 벌인 경쟁회사에 용역을 떠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공간정보통신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김 정책관의 이런 설명은 사실과 달라 의혹을 가중시킨다. 한국공간정보통신 관계자는 “S사가 KLIS를 낙찰받은 뒤 국토해양부 측은 S사 측에 ‘국산 솔루션을 찾아보라’는 요구조건을 넣었는데, 국산 솔루션은 우리가 맡고 있어서 S사 측은 우리에게 용역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회사 안팎에 여러 문제가 있어 우리가 용역 수주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한나라당 측이 추진 중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관련법 역시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제안한 법률개정안과 거의 똑같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지 10월호의 사찰정보 누락한 지도 제작업체의 전방위 의혹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불고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주)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본지 10월호)’과 관련, 기사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파견된 (주)한국공간통신업체의 직원은 용역발주시 민원처리 등을 위한 계약조건에 따라 근무한 것이며, 특정업체와 우호관계에 있어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도지정보시스템의 핵심솔루션 용역을 (주)한국공간정보통신에 주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국토정보정책관과의 인터뷰 내용중 “공간정보분야”나 “공간정보산업”을 업체명과 유사한 “공간정보통신기술”이나 “공간정보통신”으로 게재하여 독자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커 정정합니다.

또한, 본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은 국토해양부 김경수 국토정보정책관에게 사과드립니다. □

신청인 단체의 이사장 선거에서 전 이사장이 연임되었으나,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선거가 부정하게 치루어진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서울강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정 ○ ○)

피신청인 : 교통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교통신문 : 『서울강남매매조합 ‘내홍’』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0일자 4면)

내 용 : 조합원, 정현준 씨 ‘부정선거’ 제기...이차노 씨 재선출

조합, 이사장 둘러싸고 갈등 심화...법적 분쟁 불가피

서울강남자동차매매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 및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개최된 강남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제1대에 이어 2대 이사장에 ‘추대’된 정현준 씨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최근 32명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이차노(차성모터스 대표이사) 씨를 3대 이사장으로 새로 선출하는 일이 벌어졌

다.

이에 따라 '두 명' 이사장을 둘러싸고 조합원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이사장 선거부터다.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이사장이 3대 이사장에 '추대' 받기 위해 43명의 조합원 중 22명이 '백지 위임장'을 갖고 임시총회에 참석하게 했다는 것. 실제로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43명의 조합원 중 '본인'은 21명 뿐이었다. 22명의 위임장을 갖고 온 참석자들은 직계 가족도, 직원도 아닌 '외부 인사'였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같은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이사장측은 "그런 일이 없었으니, 선거 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하라"는 말로 일축해 왔다. (중략)

지난 6월 3일 김용선 감사 외 32명의 조합원들은 서명을 통해 임시총회를 요구했다. 2007년도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조합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장이 조합원들의 총회 요구를 거절할 경우 소집 요구자가 개최할 수 있다"는 정관대로 6월 20일 54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들은 정이사장의 해임을 가결하고 이차노 씨를 3대 이사장에 선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정이사장은 6월 임시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정이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임시총회 소집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차노 씨 측도 정이사장에 맞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강남매매조합 내홍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08년 7월 8일자 중고차면에 "강남매매조합 내홍"이라는 제목으로 08년 4월 정현준 이사장은 자신이 추대받기 위하여 43명의 조합원 중 22명이 위임장을 갖고 온 외부인사들로 구성하여 이 날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진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또한 임시총회소집 요구자들이 개최한 2008년 6월 총회에 전체 조합원 54명이 모두 참석한 것처럼 보도하여 정이사장의 해임 및 새로 선출된 이차노 씨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4월 총회는 정이사장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되었음은 물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선출되었으며, 임시총회소집 요구자들이 정현준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소집요구자들이 개최한 6월 총회는 총회구성인원 53명 중 "21명"만이 참석한 총회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인천시의원인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용 근

피신청인 : 우리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우리일보 : 『시의원 신분 이용 이권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8일자 2면)

내 용 :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즉 일부 시의원이 자신의 사업이나 재산을 늘리는데 시의원 신분을 이용한 것 같다는 것이다. (중략)

이와 함께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Y마트를 부인명으로 바꾼 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시내 각 급학교 37곳에 수의계약 등을 통해 11억 원 이상의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의원의 신분을 이용 이권개입의 의혹을 받고 있음은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함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진정한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들이 자신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이권에 개입했다면 이는 바로 유권자인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

위이다.

어쨌거나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의원 신분이용 이권개입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8일자 2면에 “시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시의원이 학교 급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용근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급식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인천시의원인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용 근

피신청인 : 인천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인천일보 : 『“건교·문교위 일부 시의원, 신분 이용 이권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7일자 1면)

내 용 : <2008경기조정4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경기조정4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8경기조정46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7월 17일자 1면에 『건교·문교위 일부 시의원 신분 이용 이권개입 의혹』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Y마트를

부인명으로 바뀌고, 다시 처제가 명의를 넘겨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Y마트는 당초부터 부인 명이었고, 현재 Y마트를 운영하는 자는 처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인천일보에 2008년 10월 14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

되,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천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인천시의원인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Ⅲ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용 근

피신청인 : 인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

처리결과 : 각 취하

내 용 : 〈2008경기조정46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경기조정4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인천신문 : 『“시의원 급식업체 선정 개입”』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1일자 4면)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8경기조정46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인천시의원인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V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용 근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경기조정46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8경기조정46의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참조〉

보도내용

중부일보 : 『“시의원이 급식 육류납품 개입”』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1일자 18면)

내 용 : 〈2008경기조정46의 보도내용 참조〉

합의사항

• 제 목 : 시의원의 급식 육류납품 이권개입 제목

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21일자 18면에 『시의원이 급식 육류납품 개입』이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하여 A시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육류납품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에 2008년 10월 14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

되,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촛불집회에 일명 ‘유모차부대’로 참여한 신청인들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박 ○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6.

처리결과 : 취 하

사회면)

내 용 :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가했던 ‘유모차 부대’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모차 시위’의 주도적인 시위자에 대해 불법시위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을 규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원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유모차 부대의 눈물 “미안하다 외치던 시민들도 수사하라”』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2일자

신청후 손해배상

<300,000원 지급>



완주군수가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4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정 엽

피신청인 : 완주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6.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완주신문 : (1) 『임정엽 군수 도당 사무처장 폭행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4일자 1면)

내 용 : 임근상 “임군수가 뒤에서 기습”

임정엽 완주군수가 지난달 28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일식집 인근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임근상 사무처장을 폭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임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9시 30분경 일식집에서 반주를 하고 헤어진 후 혼자 걸어가

보도내용

고 있는데, 임군수가 갑자기 뒤에서 기습해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수차례 구타했다”고 밝혔다.

임처장은 또 “현장에는 나와 임군수, 그리고 군수 수행원까지 세 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임처장의 한 지인이 임군수를 소개 시켜주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변호사 A씨와 당원 B씨도 함께 있었지만, 사건은 참석자들이 식당 앞에서 헤어진 뒤 발생했다.

임처장은 “폭행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해 화산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왔지만 임군수는 자리에 없었고, 수행원만 있었다”며 “둘이서 지구대로가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도당 당직자 인선으로 인한 갈등, 식사 자리에서의 불쾌함 등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근상 사무처장은 강봉균 도당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달 18일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2) 『임군수, 폭행시비에 民心 동요』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4일자 3면)

내 용 : 임정엽 군수가 또 다시 폭행시비에 휘말리자 군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소싸움 대회장에서 일어난 폭행이 있는 지 1년만이라는 점에서 군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폭력이 아예 습관화 된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설마 그랬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인정어린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항상 뒷말에서는 “공인으로서 군수가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군민들이 사건의 전말과 관련 없이 군수에 대한 품격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는 점.

임군수는 취임 2년 여 동안 굼직굼직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사업 추진력은 비교적 인정을 받은 반면 이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한 주민들도 나왔지만, 이 사건으로 계획과 추진력에 앞서 소양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얻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임군수 폭행사건 사실과 달라(또는 임군수 폭행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9월 24일자 1면 및 3면에서 ‘임정엽 군수 도당 사무처장 폭행 파문’ ‘임군수, 폭행시비에 민심 동요’라는 제목으로 임정엽 완주군수가 민주당 도당 임근상 사무처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지난해 소싸움대회에 이어 군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건 당일 4~5명의 친목모임이 파한 후 임정엽 완주군수와 임근상 사무처장이 음식점에 남아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간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가 이를 듣고 말려 즉시 상황이 종료된 것이며 그 직후 쌍방 합의 하에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소싸움 대회시 한 주민이 임정엽 군수에게 오물을 투척하여 소싸움 대회 행사관련자와 위 주민간에 폭행 시비가 발생하였을 뿐 임정엽 군수는 그 폭행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이후 이미 정정성 반론보도를 했기 때문에 정정과 손배로는 합의할 수 없다.

신청 후 보도문

완주신문 : (1) 『임군수, 완주신문에 손해배상 청구』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5일자 1면)

내 용 : 임정엽 완주군수가 지난 6일 <완주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중재부장 정일연, 전주지법 수석 부장판사)에 폭행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및 1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관련기사·논평 1, 3, 5면>

임군수는 조정신청 취지를 통해 지난 9월 24일자 본지 1면 및 3면에 보도된 ‘임정엽 군수 도당

사무처장 폭행 파문' 및 '임 군수 폭행시비에 민심 동요'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임근상 도당 사무처장을 폭행한 내용의 1면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임군수 폭행시비에 민심동요'라는 3면 기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싸움대회에서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 및 단체장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임군수의 조정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21일 오후 전주시 소재 전북중재부에서 열린다.

(2) 『임군수 “뒤에서 기습하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5일자 3면)

내 용 : 임정엽 완주군수는 6일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취지를 통해 임근상 도당 사무처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군수 주장의 핵심은 임처장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뒤를 기습하거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말과는 달리 약간의 몸싸움에 불과했다는 것.

그는 “사건 당일 4~5명의 친목모임이 파한 후 임근상 사무처장과 음식점에 남아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며 “서로 간에 약간의 몸싸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가 이를 듣고 즉시 말렸다”고 주장했다. (후략)

(3) 『임정엽 군수-임근상 처장 엇갈린 주장』 제

하의 기사 (2008년 10월 15일자 3면)

내 용 : 지난 8월 28일 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일식집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놓고 민주당 전북도당 임근상 사무처장과 임정엽 군수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임처장은 7일 임군수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폭행사실을 진술한 인터뷰 및 기자회견 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임군수가 갑자기 기습해 넥타이를 잡아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했다는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습했다고 표현한 것은 임군수가 나에게 폭행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군수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주장했다.

임군수는 “나와 임처장이 음식점에 남아 단둘이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만취해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며 “그러다가 서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임처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임군수는 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가 이를 듣고 즉시 말려 상황이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임처장은 갑작스런 상황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고, 임군수는 단순히 밀고 당기는 수준의 몸싸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기습했다는 임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후략) □

팬들이 연예인에게 고가의 명품선물을 한다고 보도하면서 연예인을 보려고 줄서 있는 신청인들을 동의없이 촬영,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장 ○ ○, 권 ○ ○

피신청인 : MNET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 NET : 「와이드연예뉴스」 프로그램 (2008년 10월 1일 17:00)

내 용 : #팬들 멘트

테잎 3

▷4351 팬들 : 오토바이, 오빠꺼 훔쳐다 해주고 싶어요

▷피디 : 누구 오빠걸

▷팬들 : 저희 오빠꺼요.

가수들 인터뷰

테잎1

▷0502 FT : 명품시계도 있어요 명품시계.

강수진 기자 인터뷰

테잎 8

아마 빌라키를 한번 제의를 받았을 겁니다.

선물 쌓여있는 팬미팅 무대 등

Na> 스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선물. 팬문화가 진화하면서 선물의 수준도 달라지고 있다.

팬들 멘트(얼굴 비공개)

테잎3

▷1754 팬 : 선전기. 선전기능 되는 거랑요.

▷2713 팬들 : 자가용 비행기예다가 명품을 해가지고 일본팬이.

2231 친구들보면 알바해가지고 명품 이런 거 사주는 애들 있어요

매니저 멘트

테잎7

▷0812 매니저 : 우리 오빠가 내가 선물해준 걸 차고 나왔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선물을 더 해주는 경우들도 있구요.

조성훈 멘트

테잎9

0140 퍼보니까 30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어요.

스타에게 선물 전달하는 팬들

- 댄에서 내린 스타에게 전하거나

- 사인회에서 전하거나

Na> 사랑이 커질수록 선물 값도 올라간다? 상상을 초월하는 팬들의 명품선물. 귀신도 모르는 이야기, <하지마>에서 그들의 선물목록을 공개한다! (중략)

명품 제품들

Na> 고가의 명품은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받은 제품을 되팔기가 유용하다고 한다.

방송국 앞, 기다리는 팬들 SK.

Na> 스타가 반드시 착용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선물을 준비하는 팬들. 인기 스타의 스케줄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선물을 들고있는 팬들이 보이는데.

#팬들이 선물 전해주는 현장, 민감한 팬들

테잎6 (얼굴 비공개)

▷피디 : 그 선물이 뭐예요?

▷팬들 : 왜요?

▷피디 : 여기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팬들 : 빅뱅

▷피디 : 아 빅뱅이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0528 팬들 : 네

▷피디 : 그 선물은 뭐예요? 어? 이건 모자다 왜 제지를 하고 그래요. 직접 만드신거예요?

▷팬들 : 아니요

▷피디 : 산거예요?

▷팬들 : 네

▷피디 : 근데 여기 차타고 지나가는데 줄 수 있어요?

▷0633 피디 : 언제 온대요?

▷팬들 : 몰라요.

▷1844 팬 : 왜 파고 드시는데요? 궁금하시면 연예인을 하나 붙잡고 팬질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피디 : 어떤질?

▷팬 : 팬질이요.

▷피디 : 팬질이 뭐예요?

▷팬 : 이렇게 연예인을 따라 다니시라고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요. 저희에게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되요.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8년 10월 31일까지 각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

신안군 공무원노조가 군청과 맺은 단체협약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는 조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민주공무원노조신안군지부
(지부장 윤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종 재 부 : 서울제1종재부
접 수 일 : 2008. 10. 8.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 『전교조 이어 민공노도 ‘월권 단체협약’』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7일자 A14면)
내 용 : 강진군 인사권 침해 논란... 신안군은 근거없는 위원회 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공무원노동조합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임용권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률에도 없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9월 19일자 A1·10면 참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6일 입수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청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단일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반드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사배치는 임용권자의 고유권한 사항이다.

전남 신안군청은 민공노와 맺은 단체협약 31조에 ‘승진, 전보,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부군수와 수석부지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노사동수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이 위원회는 아무런 법령근거가 없는 조직이다.

장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현직 지도부

22명 중 12명이 해직됐거나 계약이 완료된 비정규직으로 이는 현직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월권 단체협약’ 민공노 신안군 근거없는 위원회 구성은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 사회면에 전교조 이어 민공노도 월권단체협약이란 제목으로 신안군은 근거없는 위원회 구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신안군 단체협약 제31조 노사동수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법령 근거 없는 조직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안군의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합법적인 노사협의체이며 근로자인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인사문제를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위원회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민주공무원노동조합신안군지부
지부장 윤 ○ ○
조정대리인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조정대리인 최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8년 11월 14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강진군 인사권 침해 논란…신안군은 근거없는 위원회 구성”)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 제 목 : 알려 왔습니다.

2) 내 용 : 본지 2008년 10월 7일자 A14면 『전교조 이어 민공노도 ‘월권 단체협약’』 기사 관련, 민공노 신안군지부에서는 단체협약 제31조에 대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지적받은 바 없으며,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자채장의 임용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0.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동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6일자 19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방송 촬영장(사직구장)에서 경호수행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내보내며, 야구장 관객들의 착석을 막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7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MBC ESP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8

처리결과 : 취 하 (중재합의, 2008서울중재9 참조)

보도내용

MBC ESPN : 「2008 프로야구」 프로그램 (2008년 9월 19일 18:00)

내 용 : 동영상 내용입니다.

이 장면 좀 봐 주십시오. 관중이 자리로 못 들어 갑니다. 이유는 말이죠. 분명히 관중이 자리가 있는데 자리를 못 앉고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왜그러냐고 하면 연예오락프로그램이 사직야구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관중들을 자리에 못들어오게 하고 촬영하는 거는 어느나라에서 가능한지 상당히 의문스럽구요.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신청인 조합이 광주시로부터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오포신현리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Y T N : 「현장24」 프로그램 (2008년 10월 6일 14:51)
내 용 : [앵커멘트]

대림산업 특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경기도 광주시가 이번엔 산꼭대기에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아파트 사업 계획으로 감사원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정상 근무하고 있고, 개발 예정지는 폐허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시가 지난해 아파트 사업을 계획했던 오포읍의 야산입니다. 광주시의 계획대로라면 295가구의 아파트가 해발 230m 산정상 부근에 들어서게 됩니다. 환경 파괴 우려가 높아 환경부는 산을 9m까지만 깎을 수 있도록 개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시는 환경부 의견을 무시하고 산을 20m 넘게 깎아서 정상 부근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승인되면 10층에서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 동이 산 정상 부근에 들어서게 됩니다. 산이 아파트에 가려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애초 12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300세대로 두 배 이상 확대됩니다.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많이 짓게되면서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산을 많이 깎도록 허용하면 나중에 자연재해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건설업 관계자

“굉장히 위험하죠. 옹벽 절토를 30m 켜 했다면 나중에 사면 붕괴라든지 추후에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인공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광주시의 이런 계획은 막판에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산을 깊게 파도록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광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하지만 광주시는 징계 재심의를 감사원에 신청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다시 협의하도록 처분이 내려졌지만,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어 산지는 폐허처럼 남아 있습니다.

▷녹취:광주시 관계자

“제가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국장님이 교육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인근 지역 주민 100여 명도 산꼭대기 아파트 건설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광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취:인근 주민

“사방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생활하기가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럼 몇 년을 완성될 때까지 있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정 구호를 내건 경기 광주시. 하지만 산꼭대기에 3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슬쩍 허용하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경기도 광주시 ‘산꼭대기 아파트 유착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6일자 「현장 24」 뉴스 보도에서 <경기 광주시 ‘산꼭대기 아파트’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광주시 오포신원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계획이 광주시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 및 건설업체와의 유착에 의하여 산지절토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의 의견인 9미터보다 많은 20미터 이상 절개를 허용함으로써, 애초 120세대의 아파트가 300세대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가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산정상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는데 감사원의 적발에 의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고 사업계획이 중단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건설업체와의 유착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 아파트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

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서 광주시의 특혜로 건설업체가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절토구간이 20미터가 된 것이 광주시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의할 때 방송 대상 아파트 단지의 산지 절토 구간의 건축 계획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매뉴얼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위 아파트는 애초에 336 세대로 조합설립이 준비되었으며, 120세대로 계획된 적이 없으므로, 산지절토구간이 커짐으로써 세대수가 12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지자체가 산을 많이 깎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포 신현리 지역주택조합은 “계단식 공동주택부지 조성 과 최종 절토 사면에 대하여 5.4미터 절토 후 6미터 도로를 설치한 후 9미터 이하의 최대절토구간을 둠으로써 사면안정화가 강화되어 재해위험이 감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이 아파트에 가려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포신현리 지역주택조합은 “본건 아파트 개발계획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도시계획공동심의위 심의를 거쳐 산지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제에 따라 8부 능선 아래로 건축되도록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

신청인이 프로야구 LG구단의 단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파벌을 조성하고 팀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0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9.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이데일리 : 『‘9년간 4명 교체’ LG 단장의 단장사』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3일자 스포츠면)

내 용 : LG 트윈스가 22일 신임 단장 인사를 했다. 성적부진과 구단 감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롯데가 2008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며 이제 LG는 ‘21세기들어 가장 긴 기간동안 가을잔치에 나가보지 못한 팀’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LG 단장 인사는 굴곡많은 구단의 역사만큼 파란만장하다.

그 부진의 터널을 지나오는 동안 LG 단장은 무려 4번이나 바뀌었다. LG 단장 교체의 역사는 LG의 우울한 21세기와 그 궤적을 같이 한다.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매번 실패로 돌아갔다.

▲신교식 단장(재임 기간 1년 : 2000)

신교식 단장은 이광은 감독 체제 출범과 함께 LG 단장에 취임했다. 신단장 시절 LG는 해태(현 KIA)에서 양준혁을 트레이드해 오는 공격적인 운영을 했다. 그 해 LG는 매직리그 1위를 차지하며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고질적인 마운드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플레이오프서 두산에 패하고 만다. 그해 말 다시 터진 선수협 파문에 LG 선수들이 가장 앞장서는 모양새가 되자 신단장에게까지 불뚝이 튀었고 결국 2001 시즌 전, 옷을 벗었다.

신단장의 마지막 작품은 ‘FA 홍현우 영입’이었다. 홍현우 영입은 결과적으로 LG의 대표적인 투자 실패 사례로 남아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충실했지만 선수 가치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부족했던

탓이다.

▲최○○ 단장(재임기간 5년 : 1996~1999, 2001)

최단장은 운영부장 시절부터 LG ‘신바람 야구’를 이끈 인물로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구단 운영에 전권을 쥐고 현장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메이저리그 식 단장’ 스타일의 시초 격 단장이었다.

최단장은 대내외적인 활발한 활동으로도 이름 높았다. “야구단 단장은 ‘단장(斷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뜻)의 미아리 고개’를 넘나든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이 커질수록 어두운 그늘도 함께 늘어났다. 단장의 야구 지식은 시간이 갈수록 비야구인의 한계를 드러냈다. 여기에 LG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은 파벌 조성의 악습이 그 폐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 LG는 2001시즌 초반 꼴찌로 추락했다. 김성근 2군 감독이 감독 대행에 임명된 뒤 6위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팀은 이미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져 있었다. 결국 시즌 뒤 어윤태 사장이 취임하며 최○○ 단장 시대는 막을 내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당 매체에서 2008년 9월 23일자로 보도한 <‘9년간 4명 교체’ LG 단장의 단장(斷腸)사> 제하의 기사내용 중 최○○ 단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명되어서 이에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 합니다.

가. “LG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파벌조성의 악습이 그 폐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은 기사내용의 대상인물인 ‘최○○ 단장’이 직접 파벌조성을 자행한 당사자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 “팀을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었다.”라는 표현 역시 최○○ 단장의 잘못된 구단운영(파벌조성)의 결과로 팀의 전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묘사되었으나 LG구단의 성적이 해당 연도인 2001년의 6위에 이어서 바로 이듬해에는 한국시리즈(최종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기에 적절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정정보도와 유감표명을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할 수 없다. □

기독교신문의 전 사장인 신청인이 신문사 발전기금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승진인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 ○, 김 ○ ○

피신청인 : 기독교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기독교신문 : (1) 『“권○○ 장로는 법정비용 환수하라”』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0일자 2면)

내 용 : 회사발전기금을 자신의 법정비용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권○○ 장로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권 장로가 불법적으로 회사발전기

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권 장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정소송비용 3,700만 원을 지출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독신문사 이사회 문세춘 박충규 전대웅 목사와 박정하 최병철 류성고 장로는 9월 9일 기독신문사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사회는 권 장로에게 회사발전기금을 법정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거나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권○○ 장로는 오임중 장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4월 가처분신청을 통해 사장으로 복귀한 후, 곧 회사발전기금 중 3,7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했다. 기독신문사 노동조합을 비롯해 직원들은 “회사발전기금은 목적현금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권 장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전기금을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사회 회의 확인으로 권○○ 장로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록에 발전기금의 사용을 결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명을 한 후, 법정비용으로 가져간 3,700만 원 중 아직까지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2,200만 원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김○○ 차장을 총무국장 대행으로 인사발령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 장로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며 “감사부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김○○ 차장의 국장대행 임명이 무효임을 지적, 보고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기독신문사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어떤 기관보다 투명하고 정직해야 할 언론기관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 부끄러웠다”며 “이사회와 감사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만큼, 총회를 위해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신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환영했다.

(2) 『“권○○ 장로 발전기금 무단사용”』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7일자 2면)

내 용 : 권○○ 장로가 회사발전기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결의가 공식 확인됐다.

기독신문 이사 황원택 전대웅 박충규 문세춘 서광호 목사와 김원래 최병철 류성고 김주락 장로는 9월 9일 회의를 열어 “이사회는 (회사발전기금을)

권○○ 장로의 재판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결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권○○ 장로는 발전기금사용을 반대하고 환수를 요청한 직원들을 고소고발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발전기금 3,7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했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본보 1691호와 1692호의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0일자와 9월 17일자 2면 기사에서 “권○○ 장로는 법정비용 환수하라” 및 “권○○ 장로 발전기금 무단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본사 이사회 임원회와 감사부 관련 기사에서, 회사발전 기금으로, 자신의 법정 비용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권○○ 장로에 대해 환수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권장로가 불법적으로 회사발전기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권 장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법정소송비용 3700만 원을 지출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사회 확인으로 권○○ 장로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김○○ 차장을 총무국장 대행으로 인사발령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장로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화합을 손상시켰다”며 “감사부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국장대행 임명이 무효임을 지적, 보고토록 했다”고 강조했다.(이하 생략)라고 게재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리, 신청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2008. 1. 21. 이사회 임원회와 2008. 4. 28. 이사회 임원회 회의록 첨부), 신문사 업무를 위하여, 불법 이사장(2007카합2013, 2008카합266, 2008카합293, 2008카합1477, 2008합36195 사건에서 모두 불법으로 판결)과 다투느라 공적으로 비용을 사용했지 개인의 법정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으며, 회사 경영 업무수행 차원에서 정당하게 처리된 내용을 두고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수 만부의 신문과 전세게에 파급되는 인터넷 신문까지 경영하는 본보의 공개되는 언론을 통하여, “신청인의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하여, 총회 부총회장을 지낸 신청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마치 거짓말쟁이로 지목하였으며, 또한 2007년 9월 17일자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2007년 10월 1일자로 정당하게 부장(대우)으로 진급되었으며, 본사 내규 제33조 “국장급 인사는 사장과 이사장이 합의하여 임면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위 2인이 서명하여 임명한 인사권에 대하여도 일체의 확인이나 신중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인사권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여 김○○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심리적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확인 결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당하게 회사 업무 수행 차원에서 법정소송비용이 지불되었으며, 또한 김○○ 국장 역시 인사위원회 소집 후 정당하게 진급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정정보도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4,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권○○ 장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8년 9월 10일자 『“권○○ 장로는 법정비용 환수하라”』 및 17일자 『“권○○ 장로 발전기금 무단사용”』 제하의 기사에서 권 장로가 이사회 결의없이 자신의 법정비용으로 회사발전기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결과 1월 21일 및 4월 28일에 각각 열린 이사회 임원회에서 ‘제반 법률적 비용을 본사가 담당하되 권○○ 사장에게 위임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있었고, 9월 9일자 이사회 결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9월 15일자 결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이

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김○○ 차장을 총무국장 대행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문제라는 보도에 대해, 김○○ 전 국장은 차장에서 부장으로서의 승진 연한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맞으나 “국장급 인사는 사장과 이사장이 합의하여 임면한다”는 본사 내규 제33조에 따라 부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김○○ 목사님과 권○○ 장로님께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되어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1월 13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기독교신문>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2008년 9월 17일자 「권○○ 장로 발전기금 무단사용」) 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idok.com)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2008년 9월 10일자 「“권○○ 장로는 법정비용 환수하라”」)의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독교신문 : 『권○○ 장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기륭전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통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기사수정)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기륭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4년동안 부려먹고 버리겠다? 꿈 깨세요』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사진설명) ▲기륭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문자로 해고를 통지 받았다. 이들은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복직을 요구하며 지금도 농성중이다.

국가 집권자님, 지금 내게 당신은 꼭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여겨집니다. '정부가 현행 2년으로 규정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제한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향신문〉 7일자)' 는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후 직고용'이 지금 법률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그거 지키는 기업주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입법기관(국회)이 비정규직법, 파견법 만들 적에 사용자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권리를 쥐어줬습니다. 그 하나가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써먹은 후 '직접고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년이 되기 하루 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매우 기뻐했고, 노동자는 피눈물 속에 새우잠을 청하며 두려움에 떠는 출퇴근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계약 만료 전날 사용자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날립니다.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라고.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4년동안 부려먹고 버리겠다? 꿈 깨세요'의 첫 번째 페이지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내 용 : 본 인터넷 매체는 지난 10월 8일자 사는 이야기 내용 중 '기륭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문자로 해고를 통지 받았다'는 내용과 사진을 보도하였습니다.

(사진자료 문안 : ▲ 기륭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문자로 해고를 통지 받았다. 이들은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복직을 요구하며 지금도 농성중이다...)

그러나 위 보도내용은 마치 기륭전자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에 이를 삭제하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하 후 보도문

오마이뉴스 : 『4년 동안 부려먹고 버리겠다? 꿈 깨세요』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3일자 사회면)

내 용 : (사진설명) ▲K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문자로 해고를 통지 받았다. 이들은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복직을 요구하며 지금도 농성중이다. (후략) □

황우석 박사가 10개국에 복제배아줄기세포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한 6개국에서 이미 거절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황우석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 6개국에선 거절당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5일자 A12면)

내 용 : 황우석 전(前)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 신청이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는 잇따라 거부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특허청은 황 박사 측이 2006년부터 국내와 해외 10개국에 신청한 복제배아줄기세포 특허 중 한국을 비롯해 유럽·러시아·캐나다·중국·뉴질랜드 6개국은 이미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고 24일 밝혔다. 황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23일 호주에서 복제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 등록이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등 6개국은 황박사가 복제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허 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기술의 재현 가능성이 없다는 '실시 불가능'도 거부 사유로 확인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당 특허청에서 황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조사위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가 황 박사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

세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내 특허청 역시 동일한 이유로 특허 출원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가 2008년 9월 25일자 A12면에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 6개국에선 거절당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오보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호주특허청에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등록이 확정되었고, 그 외 캐나다, 러시아, 중국,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심사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의견에 따른 일부 청구항을 보정하는 심사 단계중에 있으며, 미국, 일본, 브라질, 인도는 심사 미착수 단계, 한국, 유럽은 심사제출 보류단계에 있다. □

맥쿼리 관련 인사가 이명박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어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3

정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 서울지점
(대표 송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3.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건설비 9조 2천억 인천공항 지분 절반 2조미만에 매각"』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7일자 20면)

내 용 :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면서 정부가 공항 건설비의 절반도 안되는 '헐값매각'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과문이 예상된다. 또 호주계 맥쿼리 은행에 공사 지분을 매각한다는 각

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6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오는 2010년까지 1조7000억~1조 9000억 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워 국가중기재정계획(2008~2012)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을 2010년 세외수입으로 책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매각대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 수준을 바탕으로 반영했다'고 밝혀 저평가된 가격으로 매각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현 수준을 바탕으로 매각대금을 재정

계획에 반영했다는 정부 설명대로라면 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에 적용되는 1.3배의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매각대금은 2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9조 2,000억 원대의 공항건설 비용에 비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며, 매각예정 지분이 49%인 점을 감안해도 건설비용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인천국제공항은 2004년 순이익이 발생한 후 4년간 누적순이익이 6,000억 원이 넘고, 올해도 당기순이익 2,32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분 매각을 놓고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당초 1차 선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날 전격적으로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명박 정부, 맥쿼리펀드, 타당성 분석 전문가, 공공투자 분석전문가 등으로 형성된 ‘SOC 마피아’는 맥쿼리의 인천국제공항 인수 추진위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송경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은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유자회사의 감독이사이고, 새로 부임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사위 진동희 씨는 2년 전까지 맥쿼리 은행에 근무했다. 송위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인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현 교수는 맥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며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로 있는 조대연 씨와 고교 동창으로 서로가 관련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민주당 조성식 의원은 “올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시를 방문했을 때 인천시 업무보고

문건에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비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자금이 부족해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근색한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매각 관련)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특정회사에 넘기기 위해 민영화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李정부에 맥쿼리 마피아 포진 특혜 의혹 사실과 달라(또는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맥쿼리 특혜 의혹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7일자 제20면에 게재된 [“건설비 9조 2천억 인천공항 지분 절반 2조 미만에 매각”, 국감서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논란, “李정부에 ‘맥쿼리 마피아’ 포진” 특혜 의혹도]라는 제목으로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맥쿼리가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맥쿼리 연루설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7일자 2면)

내 용 : 본지 10월 7일자 20면 ‘건설비 9조 2천억 인천공항 지분 절반 2조 미만에 매각’ 제하의 기사와 관련, 현재 인천공항의 매각방식,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맥쿼리의 인천공항 특혜 인수설은 근거가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경찰관인 신청인이 자신 소유의 낚시터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임차인들이 개최한 사행성 낚시대회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경기방송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4.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경기방송 : 「6시 저녁뉴스」 프로그램 (2008년 8월 11일 18:00)

내 용 : ▷앵커 : 현직 경찰관이 소유한 화성의 한 낚시터에서 지난 7년동안 온갖 불법 행위들이 만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낚시터 주변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고 임차인들이 수백만 원의 경품을 걸고 불법 사행성 게임을 벌이는 데도 모른 척해 왔습니다.

▷리포트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한 낚시터. 낚시터 입구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진입로가 깔려 있고 낚시터 주변에는 주차장과 식당,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땅주인 A씨가 직접 또는 세를 놓아 7년여동안 낚시터로 운영해 온 곳인데 문제는 낚시터를 제외한 다른 부대시설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 낚시터 주변 임야와 농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화성시청 산림공원과 정○○ 씹니다.

(인터뷰) “불법 사행 확인.. 행위자 진술 받아 검찰 송치 예정”

더욱 놀라운 건, 땅 주인 A씨의 남편은 이 지역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현직 경찰관 소유의 낚시터에선 이 외에도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수백만 원의 경품이 내걸리는 사행성 낚시대회가 열렸지만, 낚시터 소유주인 경찰관은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임차인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낚시터를 임차해 운영해 온 오○○ 씹니다.

(인터뷰) “손님들 앞에서 사행성 이유로 공갈하고... 일행들 중 찾아와 금품 요구하기도”

특히, A씨는 임차인들에게 최근 3년여 동안 지역 낚시협회비 명목으로 한 달에 5만 원씩을 거둬들였지만 A씨 소유의 낚시터는 지난 2006년부터 낚시협회에서 제명된 상태였습니다.

한국낚시업협회 화성지역회 관계잡니다.

(인터뷰) “2006년부터 안 나왔다. 그래서 회의 통해 제명... 그 사람이 회원 아닌 상태에서 끝난 것”

한편, 이 같은 낚시터 불법 운영과 관련해 A씨와 현직 경찰관인 A씨의 남편은 경기도 지역 다른 낚시터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임대차 계약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현직경찰관 소유 화성 쌍봉산 낚시터 불법행위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11일자 저녁뉴스 마이크출동에 “현직 경찰관의 무모한 불법행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현직경찰관이 소유한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쌍봉산 낚시터에서 현직 경찰관이 불법 건축물을 지었고, 임차인들이 수백만 원의 경품이 내걸린 사행성 낚시대회를 모른척하거나 오히려 이를 이용해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 했고, 최근 3년간 임차인들에게 낚시협회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씩을 거둬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이동식 컨테이너들에 불과하고 임차인들이 내건 사행성 낚시대회를 모른척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였다는 내용도 올 7월 30일경 경찰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어 사실이 아니며, 또한 임차계약서에 명시한 바대로 임차인들의 낚시협회 회원권자격을 회복시키고 낚시영업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 밀린 회비 3개월치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혹여 있을 수 있는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돌려준 사실이 있어 3년간 낚시협회비를 거둬들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할 수 있으나 정정·손배 할 수 없다. □

경찰관인 신청인이 자신 소유의 낚시터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임차인들이 개최한 사행성 낚시대회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뉴스리더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뉴스리더 : 『현직 경찰이 7년간 낚시터 불법 운영 물의』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4일 1면, 8면)
내 용 : <2008경기조정5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경기조정5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현직경찰의 무모한 불법행위 논란” 관

련 기사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와

• 내 용 : 뉴스리더가 지난 2008년 8월 14일자 1면, 8면 “현직 경찰이 7년간 낚시터 불법 운영 물의”, “현직 경찰의 무모한 불법행위 논란” 각각 제하의 기사 중 현직경찰관이 소유한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쌍봉산 낚시터에서 현직 경찰관이 임차인들이 수백만 원의 경품이 내걸린 사행성 낚시대회를 이용해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 했고, 최근 3년간 임차인들에게 낚시협회비 명목으로 매월 5만 원씩을 거둬들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낚시터 소유주인 현직경찰관은 사행성 낚시대회를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임차인들에게 협회비 등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뉴스리더 2008년 11월 11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경찰 부부 소유...사행성 낚시 대회까지 목인 비난)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스리더 : 『“현직 경찰의 무모한 불법행위 논란” 관련 기사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대전시의원인 신청인이 남편 명의의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4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형 례
피신청인 : 데일리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5.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데일리안 : 『권형례 시의원 ‘유치원 불법운영’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9일자 전국면)

내 용 : 자격증 대여 받아 수년간 불법경영 의혹
허위 신고로 교육청 지원금 수익 원 받아 내

권형례(44,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구봉사랑 유치원의 불법 운영이 본보 취재에 의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권의원은 구봉사랑 유치원(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의 설립시 교육청 인가를 준수치 않고 허위사실을 신고해 매년 1억 원 대에 이르는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의원이 운영했던 유치원은 2000년 설립 당시부터 유치원 설립의 필수요건인 원장을 채용치 않고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서류상으로만 원장을 임용하는 불법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했던 것.

이는 유치원의 설립 기준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고, 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할 유아교육이 실질적인 교육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권의원은 임용치 않은 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 신고해 2007년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의 지원을 받는 등 매년 1억 원 대의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더욱이 권의원은 대전시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활동으로 보육조례 등 교육 관련 정책을 다루는 교육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대해 권의원은 “의도적인 부분은 없었으며, 시기적으로 바쁘다보니까 대처를 신속히 못했다”며 “100% 상근은 아니었지만, 일정부분 원장이 근무를 했었고 서류정리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사실의 허위사실 보고 시경고 및 학급감축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할 수 있다”며 “불법운영으로 인한 실태를 사실 확인

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봉사랑 유치원은 서부교육청 관내 78개 사립 유치원 중 10위권에 드는 규모로 설립자는 권의원의 남편인 이모(48) 씨이나 권의원이 실질적인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권의원은 지난 2006년 5월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제5대 대전광역시의회에 등원하여 교사위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신문은 2008. 2. 29. “권형례 시의원 유치원 불법운영 파문”이란 제목으로 권형례 의원이 허위신고로 교육청 지원금 수익 원을 받아 내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구봉사랑유치원의 이사장인 권형례 의원의 남편이었고 지원금은 저소득학비지원금으로서 수혜자인 유치원생들일 뿐 구봉사랑유치원은 수령대행자일 뿐이었고, 최근의 수사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구봉사랑유치원이 매년 지급받았다는 교육청의 지원금은 저소득학비 지원금으로서 수혜자인 유치원생들일 뿐 구봉사랑유치원은 수령대행자일 뿐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최근 수사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위 기사는 저희 신문의 지역주재기자가 일부 권형례 의원에 불만을 가진 일부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고 이를 보도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권형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됨을 알게 되어, 위 기사를 위와 같이 추후로 정정하고,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은 권형례 의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보도이므로 중재부의 조정을 수용할 수 없다. □

대전시의원인 신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호화별장을 신축하였고, 인접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형 례

피신청인 : 데일리안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데일리안 : 『권형례 시의원 또 불법?』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5일자 전국면)

내 용 : 논산 탐정지 수변 별장지 편법취득 및 임
야 불법 전용해

권형례 대전시의원이 충남 논산시 소재 탐정지 수변에 호화 별장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취득 등에 각종 편법 및 탈법을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시의원의 자질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권형례(비례 자유선진당) 시의원이 지난 2003년 논산시 탐정저수지 수변에 호화 별장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묘한 편법과 탈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본보 취재에 의해 드러났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증여라는 편법으로 부동산 취득 의혹

권씨는 지난 2003년 논산시 가야곡 소재 탐정저수지 수변 대지 1180㎡와 인접한 임야 310㎡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전 소유주 A씨로부터 증여를 통해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계약에 의해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증여라는 편법을 이용해 취득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권씨가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해당되어 부동산거래 시 관할 행정관청인 논

산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사전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권씨의 경우처럼 부동산 거래 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다 해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위장해 주장한다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 할지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권씨는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증여라는 편법을 이용해 전원 별장지를 매입했으며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략)

별장 미등기 '부동산등기법' 및 '지방세법' 위반

또한 권씨는 증여라는 편법으로 취득한 대지에 2004년 2층 구조의 별장과 정자 등 186.49㎡를 신축하면서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미등기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개월 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법 101조를 비롯 지방세법 제150조의2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권씨는 별장을 신축하면서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무허가로 신축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권씨의 별장은 논산시 건축물대장에 블록구조 200㎡ 이하의 건축물로 2004년 1월 신축한 것으로 돼있지만 본보 취재에 의하면 실제로 200㎡ 이상의 구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만일 권씨의 별장이 200㎡를 초과하는 구조라면 건축법상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신축한 것이 돼 현행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 되는 것이다.

현행법 상 건축물이 200㎡를 초과하는 구조라면 건물 신축 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및 준공을 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논산시청 관계자는 “실사 확인을 거쳐 적법성에 위반이 된다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는 물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야 불법 전용 “고발조치 및 원상복귀 등 행정조치 할 것”

더욱이 권씨는 별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임야 310㎡를 훼손해 대지에 편입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신문은 2008. 7. 15. “권형례 시의원 또 불법?”이란 제목으로 권형례 의원이 논산 탑정지 수변 별장지의 임야를 불법전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권형례 의원의 건물은 200㎡ 이하이고 무허가이거나 불법 산지전용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권형례 의원은 2003년 논산시 가야곡면 소재 탑정저수지 수변의 대지 및 임야상에 2004월 1일경 블록구조의 주택 186.49㎡를 건축법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축하여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 건축과정에서 인접한 임야를 산지전용한 바도 없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 신문의 지역주재기자가 권형례 의원에게 불만을 가진 일부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고 이를 보도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권형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됨을 알게 되어, 위 기사를 위와 같이 정정하고,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은 권형례 의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 7월 15일 ‘권형례 시의원 또 불법?’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문제된 임야는 권형례 의원이 훼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무허가 건물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논산 탑정지 수변 별장은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21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데일리안 홈페이지(<http://www.dailian.co.kr>) 초기화면 상단에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주요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해당 보도문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1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법화중 총무원장이 개인 소유 사찰인 교현사를 종단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탈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중
(이사장 김 ○ ○)

2. 대한불교법화중 (총무원장 김 ○ ○)

3. 김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5.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2008년 9월 27일 16:00)

내 용 : ▷앵커 : 불교계 종단인 법화종의 총무원장이 개인 소유의 사찰을 인력을 동원해 강제 점거한 뒤 빼앗는가 하면, 돈을 받고 팔아 넘기까지 한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리포트 : 20년 역사의 개인 사찰인 교현사. 입구에 가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상한 경고문이 나붙었습니다. 법화종 총무원장인 김모 씨 등이 2년 전부터 갑자기 이 사찰이 종단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총무원장은 한술 더 떠 돈을 받고 사찰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상한(교현사 청년회 회장) : "사용승인이 떨어졌고 이미 공사는 완료 됐는데도 지금 무슨 공사를 한다고... 계약을 했다면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

이 사찰 소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김총무원장이 낸 재항고를 기각 처리해 사찰이 개인 소유라고 판정했습니다. 김씨는 2006년에도 서울노량진의 금불사를 빼앗아 9천여 만 원에 팔아넘겼다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단이 관련돼 최종 패소판결이 난 사건만 3건, 다른 여러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한때 총무원장 밑에서 일했던 김모 씨는 사찰 소유자들에게 겁도 주고 행패를 부리는데 가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 : "절에 가서 스님에게 겁을 줘서 고소를 못하게 해라, 뒤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 소리를 듣고 절에 가서 행패를 부렸죠"

법화종 정화 추진 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법화종 총무원장 사찰 강탈 파장"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27일자 사회면에 "법화종 총무원장 사찰 강탈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법화종 총무원장이 개인 소유 사찰인 교현사를 종단 소유라고 주장하며 강탈하려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유사한 강탈사례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위 교현사는 현 주지 위술환의 개인 소유 사찰이 아니라 대한불교법화종에서 신도로부터 증여받아 대한불교법화종 교현사로 등기한 '교현사' 자체 소유 사찰이고, 강탈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주지 위술환이 대한불교법화종 종단의 결의나 승인 없이 문서를 위조 조작하여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명의로 위 사찰 부지 내에 대형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고, 종단과 협의 없이 사단법인 명의로 대형 납골당을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위술환 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170억 원의 PF 대출을 일으키고, '교현사의 동산 및 부동산은 창건주 위술환의 개인 소유이고 종단에서 관여치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 행사하면서 창건주 위술환의 사유 사암이라 주장하여(위술환은 이건 사찰이 자신의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납골당 설치 허가를 받는 모순된 언동을 보이고 있음) 신도 단체인 보광노인회의 증여로 창건된 이건 교현사를 개인사유화 하고 근거당설정을 임의로 하였으며 나아가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교현사를 처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 법화종 종단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중헌에 따라 위술환에게 '체탈도첩 중권박탈 제적'의 징계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원판결 징계처분무효 등의 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다른 소송이 계류 중일 뿐이고 사람을 동원하여 강탈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9월 27일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 「법화중 총무원장 사찰강탈 파장」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교현사는 개인 소유 사찰이 아니라 대한불교법화중 소속 교현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소유권 관련 소송은 제기된바 없음에도 '강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중단에서 임명한 전 주지에 대한 징계무효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1월 7일까지 오전 6시에 방송하는 KBS-1TV <뉴스광장>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 본 방송 지난 9월 27일 <뉴스광장> 프로그램 중 「법화중 총무원장 사찰 강탈 파장」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대한불교법화중 측에 심적 불편함을 끼쳐드렸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대한불교법화중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불교법화중과 김용대 총무원장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8년 11월 8일 06: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황우석 박사가 10개국에 복제배아줄기세포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한국을 비롯한 6개국에서 이미 거절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이사장 박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 6개국에선 거절 당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5일자 12면)
내 용 : 황우석 전(前)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특허신청이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는 잇따라 거부당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특허청은 황박사 측이 2006년부터 국내와 해외 10개국에 신청한 복제배아줄기세포 특허 중 한국을 비롯해 유럽, 러시아,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6개국은 이미 특허신청을 거절했다고 24일 밝혔다. 황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23일 호주에서 복제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 등록이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등 6개국은 황박사가 복제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생명윤리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허 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기술의 재현가능성이 없다는 ‘실시 불가능’도 거부사유로 확인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당 특허청에서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조사위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가 황박사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내 특허청 역시 동일한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지가 2008년 9월 25일자 A12면에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 6개국에선 거절당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오보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2008년 9월 23일 호주특허청에서 배아줄기세포

에 대한 특허등록이 확정되었고, 그 외 캐나다, 러시아, 중국,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심사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의견에 따른 일부 청구항을 보정하는 심사 단계중에 있으며, 미국, 일본, 브라질, 인도는 심사 미착수 단계, 한국, 유럽은 심사제출 보류단계에 있다. □

AI 가금류들을 매몰한 지역의 지하수에서 각종 세균과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주민들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5.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1TV : (1) 「KBS뉴스9」 프로그램 (2008년 9월 16일 21:00)

내 용 : ▷앵커 : 환경부가 AI 여파로 가금류를 매몰한 곳의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기준치를 넘는 각종 세균과 발암성 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어디에도 통보되지 않았습니

다. ▷리포트 : 지난 봄 발생한 AI의 여파로, 5백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집중 매몰된 지역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수질조사를 한 결과,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지하수를 그대로 마시고 있습니다.

▷임용남 : “공무원들이 오염안됐다고 하니까 그냥 마시지”

환경부가 매몰 처리 직후부터 5차례에 걸쳐 전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릅니다. 전북 김제 금구 옥성의 한 마을의 경우 대장균은 기준치의 무려 72배, 질산성 질소는 5배 이

상 검출됐고, 전남 영암 신북에선 매몰 직후 실시한 1차 조사결과 일반세균이 기준치 28배나 초과된 곳도 있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8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43곳에서 질산성 질소와, 세균,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5번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10곳이 넘습니다. 환경부는 문제의 성분들이 가축의 사체 뿐 아니라 분뇨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금류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종선(환경부 토양지하수와 과장) : “가축 분뇨 등에 의한 요인이 더 큰 걸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단정할 수 없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지만 닭들을 산채로 매장하는 등 기본 지침을 지키지 않은 현재의 매몰 방식은 침출수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형관(전북대 수의대 교수) : “가축 대량 매몰 침출수는 필연적...현재의 매몰처리 방식에선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높다”

특히 질산성 질소는 발암성 물질인데도 환경부는 매몰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 자치 단체들에게는 물론, 해당 주민들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축산과 관계자 : “채수를 때 안 내만 해줬다. 결과는 전해들은 바 없다.”

▷백인숙(전북 익산시 용동면) : “물을 네 번 정도 떠갔는데 검사결과에 대해선 애길 안해주시더라구요.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매몰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

구 한 곳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지하수 오염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전북 익산시 용동면) :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조치를 취하던가, 주민을 담보라도 못하게 생각하는 거지”

주민의 건강을 무시하는 불투명한 행정으로, 매장지 주변 3만 5천 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 「KBS뉴스9」 프로그램 (2008년 9월 16일 21:00)

내 용 : ▷앵커 : AI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 실태를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인근 주민들은 오염사실을 모르고 식수로 마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질검사였을까요?

▷리포트 : 지난 2006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 익산의 한 마을. 환경부가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의 최고 9배 까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채 여태껏 지하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김○○(마을 주민) :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됐으니 먹지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먹었죠”

지난 2004년과 2007년,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한 환경부의 내부 자료입니다. 2007년의 경우 30곳 중 16곳에서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004년에도 237곳 중 28군데에서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조사 결과는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지지 않았고 수질 조사는 종료됐습니다. 그리곤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서둘러 결론냈습니다.

▷정중선(환경부 토양지하수와 과장) : “당시 그

렇게 추정한 것이고, 결론 내린 건 아니다. 모니터링을 다시 하고 있다”

▷임두성(국회 보건복지가족위) : “유해 물질까지 검출이 됐는데 주민이 몰랐다면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려야..”

주민들은 모르는 지하수 수질 검사.

오염의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주민 건강부터 챙겨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AI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16일자 「KBS 뉴스9」 ‘현장추적’ 코너에서 “AI 가금류 매몰지 절반 이상 오염” 및 9월 17일자 「KBS 뉴스9」에서 “AI 매몰지 오염된 지하수, 식수로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부가 AI 매몰지주변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질산성질소 등 발암성물질로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게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환경부는 지난 2004년, 및 2008년 AI 발생 당시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질산성질소는 생활하수, 비료, 농산물, 식품 등을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로서 질산성질소 자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인체발암물질, 발암의심물질, 발암가능물질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며,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도 먹는물중 질산성질소에 의한 암발생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교육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수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7

청 구 명 : 추후 · 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형 레

피신청인 : 데일리안 대전총남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데일리안 대전충남 : 『권형례 시의원, ‘유치원 불법 운영’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권형례(44,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G유치원의 불법 운영이 본보 취재에 의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권의원은 G유치원의 설립시 교육청 인가를 준수치 않고 허위사실을 신고해 매년 1억 원대에 이르는 교육청의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의원이 운영했던 유치원은 2000년 설립 당시부터 유치원 설립의 필수요건인 원장을 채용치 않고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서류상으로만 원장을 임용하는 불법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했던 것.

이는 유치원의 설립 기준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고, 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할 유아교육이 실질적인 교육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권의원은 임용치 않은 원장을 임용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 신고해 2007년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의 지원을 받는 등 매년 1억 원대의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신문은 2008. 2. 29. “권형례 시의원 유치원 불법운영 파문”이란 제목으로 권형례 의원이 허위신고로 교육청 지원금 수억 원을 받아 내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구봉사랑유치원의 이사장인 권형례 의원의 남편이었고 지원금은 저소득학비지원금으로서 수혜자인 유치원생들일 뿐 구봉사랑유치원은 수령대행자일 뿐이었고,

최근의 수사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구봉사랑유치원이 매년 지급받았다는 교육청의 지원금은 저소득학비 지원금으로서 수혜자인 유치원생들일 뿐 구봉사랑유치원은 수령대행자일 뿐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최근 수사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위 기사는 저희 신문의 지역주재기자가 일부 권형례 의원에 불만을 가진 일부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고 이를 보도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권형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됨을 알게 되어, 위 기사를 위와 같이 추후로 정정하고,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은 권형례 의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2월 29일자 『유치원 불법운영 ‘파문’ 허위신고로 지원금 수억 원 받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권형례 시의원이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은 현행 관련법상 위반행위가 아니며, 수사결과 보조금 수령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데일리안 2008년 11월 4일까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바로잡습니다)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유치원 불법운영...)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게시 다음날부터는 조정신청대상 기사에 링크시켜 보여지게 해야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에 제공하며, 포털에 게재된 조정신청대상 기사와 링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청인은 이 합의서를 서울 데일리안 본사를 상

대로 신청한 조정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청구를 포기하며,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안 대전충남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불법으로 임야를 전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8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권 형 레

피신청인 : 데일리안 대전충남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데일리안 대전충남 : 『권형레 시의원, 또 불법? ‘편법 땅 취득에 미등기 별장까지’』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5일자 사회면)

내 용 : 권형레 대전시의원이 충남 논산시 소재 탐정지 수변에 호화 별장을 신축하면서 부동산 취득 등에 각종 편법 및 탈법을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시의원의 자질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중략)

권씨는 증여라는 편법으로 취득한 대지에 2004년 2층 구조의 별장과 정자 등 186.49㎡를 신축하면서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미등기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개월 이내 등기를 해야 하는 부동산 등기법 101조를 비롯 지방세법 제150조의2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권씨는 별장을 신축하면서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무허가로 신축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권씨의 별장은 논산시 건축물대장에 불록구조 200㎡ 이하의 건축물로 2004년 1월 신축한 것으로

돼 있지만 본보 취재에 의하면 실제로 200㎡ 이상의 구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만일 권씨의 별장이 200㎡를 초과하는 구조라면 건축법상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신축한 것이 돼 현행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이 되는 것이다. (중략)

더욱이 권씨는 별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임야 310㎡를 훼손해 대지에 편입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지전용 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산지관리법 14조를 위반한 것으로 53조 및 54조 벌칙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병과해 처벌될 수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 신문은 2008. 7. 15. “권형레 시의원 또 불법?”이란 제목으로 권형레 의원이 논산 탐정지 수변 별장지의 임야를 불법전용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권형레 의원의 건물은 200㎡ 이하이고 무허가이거나 불법 산지전용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권형레 의원은 2003년 논산시 가야곡면 소재 탐정지수지 수변의 대지 및 임야상에 2004년 1월경 블록구조의 주택 186.49㎡를 건축법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신축하여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 건축과정에서 인접한 임야를 산지전용한 바도 없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 신문의 지역주재기자가 권형레 의원에 불만을 가진 일부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고 이를 보도하였고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권형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됨을 알게 되어, 위 기사를 위와 같이 정정하고,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은 권형례 의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15일자 『권형례 시의원 또 불법?』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문제가 된 임야는 권형례 의원이 훼손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도된 논산 탐정지 수변 별장은 미신고 불법 건물인지 여부로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데

일리안 2008년 11월 4일까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바로잡습니다)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권형례 시의원 또 불법?)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게시 다음날부터는 조정신청대상 기사에 링크시켜 보여지게 해야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계약관계에 있는 포털에 제공하며, 포털에 게재된 조정신청대상 기사와 링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청인은 이 합의를 서울 데일리안 본사를 상대로 신청한 조정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청구를 포기하며, 더 이상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안 대전총남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13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옥 ○ ○

피신청인 : 영남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영남일보 : 『차림표엔 한우... 조리실엔 미국산』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8일자 8면)

내 용 : #7일 오후 2시30분 대구시 서구 A쇠고기 전문식당.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찾았다. 업소 벽면

과 차림표에는 “모든 요리에 100% 국내산 순 우리 한우만 취급한다”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단속 공무원들은 쇠고기 구입 영수증을 업주로부터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27일 이후 한우를 단 한차례도 구입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공무원들이 이번엔 조리실로 들어가 냉창고와 냉동고에 보관중인 쇠고기를 유심히 살폈다. 갈비본살과 목심 등 수십kg의 미국산 쇠고기가 무더기로 나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8일자 8면 『차림표엔 한우... 조리실엔 미국산』 제하의 기사에서 “쇠고

기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음식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달서구 송현동의 한 식당을 단속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 나오는 식당(업주 옥○○)은 ‘원산지 속여팔기’로 관계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8일자 8면 『차림표엔 한우… 조리실엔 미국산』 제하의 기사에서 “쇠고기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일부 음식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달서구 송현동의 한 식당을 단속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진 속 식당 업주 옥○○ 씨는 “기사로 인해 손님들로부터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 팔고 있는 업소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단속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영남일보 : 『“자꾸 썩 한우만 찾으려 고급 한우 서울에 다 뺏겨”』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4일자 6면)

내 용 : ◇…한우갈비집 주인은 왜 소를 닮았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우.

한우를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 이는 1천 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주인이 한우라고 하면 한우인줄 알고 먹었습니다. 이젠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직접 소를 키워 도축하고 그걸 유통하고, 마지막엔 식육점과 숯불갈비집을

원스톱으로 동시에 취급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중략)

며칠 전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승마장 맞은편 합천숯불식당 옥○○ 사장(43)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우 아저씨’로 불리는 옥사장, 그는 한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우 마니아들이 알고 있어야 될 한우 상식과 확대시행되기 시작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할 얘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옥사장의 처가는 1987년 송현시장에서 고향 이름을 붙인 식육점을 경영했습니다. 현재 자리로 오기전까지 20여년간 한우만 외쳤습니다. 합천식당은 식재료상과 거래할 때 반드시 확답 받아놓는 게 있습니다. 만약 수입육을 속여 팔면 그때부터 거래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홀서빙하는 2명의 아주머니가 마늘을 직접 까고 있었습니다. 더 감동적인 대목은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한우 해체작업할 때 착용하는 면장갑을 끓는 물에 넣고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벽에 조리기구가 크기 순으로 나란히 걸려있었습니다. 삼성라이온즈의 빅스타 양준혁이 이 식당을 자주 이용합니다. 고기맛 못지않게 칼맛도 일품입니다. 갈비살의 경우 칼질을 잘 해야 맛이 더 납니다. 발골용 칼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18년 경력의 김성수 씨(38)가 듬직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한쪽에 20~30kg 갈비살에서 기름 제거하고 약 8kg짜리 갈비살을 추출하는 것, 일반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은 최첨단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제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파는 주인은 없겠조.

“손님들도 어떤 고기가 맛있는 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우 관련 정보도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이젠 바보가 아니고서 수입육을 한우로 바꿔 팔려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한우 등급 속여팔기’입니다. 아직 이 대목에 대해 단속반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등급 한우를 고등급으로 둔갑시킨다는 말입니까?

“정말 좋은 한우는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선 거의 보기 힘듭니다. 대구에서 소 한 마리가 500만원일 경우 서울로 가면 100만~200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니 어디서 팔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소 관상 보는데 도가 통한 전문가들이 도축하기 전 입도선매하듯 명품 한우를 점검어 서울 등지로 팔아 올립니다. 대다수 한우 최상등급인 일등급 투 플러스, 원 플러스만 운운하는데 기타등급도 있어요. 기타 등급은 병들고 늙은 소입니다. 이들은 너무 질겨 식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최상등급과 비교할 경우 최고 8배 차이가 납니다. 기타 등급도 한우는 한우이죠. 이런 게 막구이로 잘 팔리겠죠. 제대로 된 한우를 먹으려면 1인분에 최소 2만 원은 넘어야 합니다.”

-질긴 걸 부드럽게 만드는 법도 있잖습니까.
“칼집 삼겹살처럼 술한 칼집을 넣고 강력한 연

육제만 이용하면 질긴 것도 부드러운 한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상당수 좋은 한우는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줄 것입니다. 수입육은 상대적으로 부드럽습니다. 고등급으로 둔갑된 한우는 양념을 가미해야겠죠. 그 래야 들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가격이 턱없이 낮은 한우는 기타등급으로 보면 될 겁니다. 이제 한우 둔갑 여부만 조사하지 말고 등급 둔갑 여부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단속만 하지 말고 실제 좋은 고기를 팔고 있는 곳은 그렇다는 마크를 부여하면 좋겠어요.”

현재 옥씨는 갈비살 150g을 2만 원에 팔고 있다.
(후략) □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1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모녀 숨지고 아들은 중태』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10면)

내 용 : 생활고 비관 자살 시도한 듯

30세 어머니가 어린 아들·딸과 함께 지하철역에서 동반 투신자살을 기도해 다섯 살배기 딸 등 모녀가 숨지고 아들은 중태다. 경찰은 어머니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들과 동반 자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7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상일동 방면 승강장에서 홍모씨(30·여)와 홍씨의 아들 여모 군(11·초등 5), 딸(5) 등 3명이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선로에 뛰

어들었다. 사고 이후 어린 딸과 어머니는 숨졌고, 여군은 머리와 척추 등을 크게 다쳤다.

역무실 관계자는 “여성 등 일행 3명이 열차가 역내로 들어온 뒤 제지할 틈도 없이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역내 폐쇄회로(CC)TV 판독결과 이들은 오후 1시47분쯤 승강장에 내려온 뒤 열차 진입구 쪽에 서 있다 3분쯤 뒤 열차가 진입하는 선로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강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등 30명이 출동해 응급조치 등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머리를 크게 다친 딸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어머니 홍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쯤 뒤인 오후 7시 46분 사망했다. 여군은 두개골 함몰,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채 의식불명 상태다.

숨진 홍씨는 경기 고양 명지병원, 여군과 숨진 딸은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겨졌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유서나 사고 원인을 설명할 만한 물품은 없었지만 CCTV 화면을 보면 홍씨가 의도적으로 뛰어내린 게 확인된다”고 말했다. CCTV 판독 결과 홍씨는 자신의 양 옆에 서 있던 자녀들을 먼저 선로 쪽으로 떠민 뒤 자신도 몸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오전 홍씨는 자녀들과 함께 서울 방화동에 사는 시어머니(76)을 만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 남편(42)은 수 년 전 전기 공사를 하다 건물에서 추락,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해 거액의 빚을 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 부부는 이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놓고 생활은 함께 해왔다. 경찰은 홍씨가 많은 빚에 쪼들리다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모녀 숨지고 아들은 중태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8월 28일 10면 “모녀 숨지고 아들은 중태” 제하의 기사에서 30세 어머니가 어린 아들, 딸과 함께 지하철역에서 동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 CCTV 판독 결과 어머니 홍씨가 자신의 양 옆에 서 있던 자녀들을 먼저 선로 쪽으로 떠민 뒤 자신도 몸을 던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CCTV 판독 결과는 홍모 씨가 왼팔로 딸을 안고 오른손으로 아들의 왼쪽 겨드랑이를 잡고 추락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홍씨 부부가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8년 8월 28일자 10면 「모녀 숨지고 아들은 중태」 제하의 기사에서 30세 어머니 홍씨가 남편의 사고로 인한 생활고를 비관해 지하철역에서 자녀들을 먼저 선로로 떠민 뒤 자신의 몸도 던졌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홍씨는 딸을 안고 아들의 팔을 잡은 채 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홍씨의 남편은 사고 이후 산재로 인정받아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달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생활고는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1월 7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면 또는 사회면에 제목은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 제목 양식의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심리적성검사인 ‘유학적합성검사’를 경쟁업체가 개발하였다고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세쿼이아그룹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1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앙일보 : 『유학업체 CEO 인터뷰-지오넷·엘림엔 지오 이남섭 대표』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22일자 P9면)

내 용 : 교실엔 활기가 넘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엔 미소가 번지는 학교. 지오넷 이남섭

대표는 언젠가는 이러한 꿈의 배움터를 만들겠노라 다짐한다. 아시아의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입해 아시아 교육의 메카를 일구겠다는 그의 교육 철학을 들어봤다.

글로벌 인재? 그보다 조금 가까운 미래

지오넷 현지학원 설립을 위해 뉴질랜드의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교실 안은 사방팔방 종이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쉬는 시간인가 했더니 종이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의 통계를 내는 수업이란다. 난장판 같아 보이지만 수업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외국의 학교를 보고 다닐수록 한국처럼 수업하는 곳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수업이 자유롭고 즐거우니 아이들의 표정 역시 밝더군요.”

이미 성공적인 론칭을 끝낸 지오넷 필리핀 학원 설립에 이어 미국과 캐나다·호주·영국에도 진출할 계획이라는 이남섭 대표. 그는 현재의 유학시장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어 자체를 위한 유학일 뿐이죠. 조기유학 후 리턴하는 학생들의 대안학교·국제학교·특목고 진학이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라는 먼 미래를 겨냥해서라기보다는 당장 한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유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성공 여부는 상담과정서 드러나

성인대상 유학사업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대표는 엘림에듀와 손잡고 엘림엔지오라는 법인을 세워 조기유학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실패한 조기유학의 원인부터 분석했다. 아이들은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홈스테이에 지쳐 부모에게 전화로 어리광을 부리기 십상이고, 부모는 별 것 아닌 일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

“외국의 아이들은 중학생 정도의 나이만 돼도 스

스로 생각해 움직입니다. 엄마가 빨래며 밥, 준비물까지 다 챙겨주는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이대표의 성공 철학은 시스템 구축. 일단 학원을 찾은 고객과 리셉션에서 5분 정도 상담한다. 고객의 목적과 취향을 분석하는 정보 수집 단계다.

다음은 전문 상담원에게 연결해 본격적인 면담에 들어가며, 메일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 또 심리 적성검사에 해당하는 유학 적합성 검사를 만들었다. 전문가가 1:1로 상담,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고 잠재된 심리를 분석해 국내 공부 가 좋을지, 유학이 좋을지 조언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지오넷이 유학적합성 검사를 만들었다는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 9월 22일자 유학업체 CEO 인터뷰 기사 중 지오넷 대표 이남섭이 유학적합성 검사는 자신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확인 결과, 이는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세쿼이아 그룹에서 만든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바로 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7일자 프리미엄판)

내 용 : 중앙일보 프리미엄 섹션 9월22일자 P9면 ‘유학업체 CEO 인터뷰-지오넷 엘림엔지오 이남섭 대표’ 제하의 기사중 “(이대표가) 심리 적성검사에 해당하는 ‘유학 적합성 검사’를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 교육컨설팅업체인 (주)세쿼이아 그룹 측에서 “이 검사는 (주)세쿼이아 그룹에서 만든 것”이라고 밝혀왔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기관 소관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엉뚱한 질의로 눈총을 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권택기

피신청인 : 매일경제

종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수 일 : 2008. 10. 2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경제 : 『국감 물 흐리는 한심한 의원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3일자 6면)

내 용 :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던져둔 채 정쟁만 일삼는가 하면 본질과 관계없는 탄죽걸기로 시간을 낭비하는 악습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기본내용도 파악하지 못한채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호통만 쳐대는 ‘공부 안 하는 의원’들의 추태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 ‘연목구어’ 식 억지 부리기

지난 10일 국회 정부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엉뚱한 질의가 눈총을 샀다.

이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백용호 공정위원장에게 ‘비싼 카드 수수료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공정위 개입을 요구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주 업무는 금융감독기관의 소관으로 같은 당 의원들조차 권의원의 주장에 대해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라고 혀를 찼다.

변지수를 잘못 찾은 권의원은 다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낮게 든다. 공정위가 앞장서서 (신용카드 사용체계를) 바꿔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질의가 이어지는 시간 내내 백위원장은 황당하다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결국 “신용카드 정책을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공정위 업무를 도대체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의원 측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공정위 측과 조율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답을 금감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해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질의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3일자 정치면(6면)에 “국감 물흐리는 한심한 의원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연목구어’ 식 억지 부리기 국감을 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추가 현장취재를 해본 결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당일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 내용과 태도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심한’ 또는 ‘연목구어’ 식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의 제한된 발언 시간(질의·답변 포함 10분)으로 인해 그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웠던 점과 추가 취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인정되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10월 13일자 “국감 물 흐리는 한심한 의원들” 제하의 보도에서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기관 소관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연목구어’ 식 억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택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감독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대형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은 카드사와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므로 카드 수수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영국·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도 공정거래담당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하여 ‘연목구어’ 식 억지부리기 국감을 했다는 보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1월 7일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경제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매일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1일자 A1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전주방송이 강성 노조원을 부당 전직시키는 등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방송위원회의 조건부 재허가 추천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의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전주방송 (사장 김 ○ ○)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1.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1) 『“전주방송 사장, 해고자 즉각 복직시켜라”』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6일자 4면)

내 용 :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전주방송(JTV·사장 김택곤)에서 해고된 한 노동조합 간부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JTV 회사 쪽을 압박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해고자를 즉시 복직시키라고 김택곤 JTV 사장에게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수 차례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바로 따를 것’이라고 공언했던 김사장이 약속과 달리 사내게시판을 통해 최종판결까지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방송

의 지역성과 공익성을 퇴보시키고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킨 데에서 더 나아가 허언을 일삼는 것에 할 말을 잇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 사장이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전주방송을 또다시 분란의 장으로 만든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며 “언론노조는 지역 시청자들과 함께 전주방송 사측의 행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JTV는 지난해 1월 당시 언론노조 JTV지부(지부장 홍윤기) 부지부장을 맡고 있던 김춘영 PD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PD가 지난 97년 당시 허위경력이 기재된 위조서류를 제출하고 경력 PD로 입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노조 쪽은 김PD가 2006년 노조 집행부로 활동하면서 김사장과 대립각을 세우다 관계가 악화된 게 해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해 왔다.

김PD는 해고된 직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청구한 재심 신청도 두 달쯤 뒤 다시 기각됐다. 김PD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행정법원이 회사 쪽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 쪽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전주방송 지문인식기 ‘인권침해’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7일자 5면)

내 용 : 전주방송(JTV·사장 김택곤)이 최근 사옥 내 각종 출입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직원들의 지문을 등록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 및 근무태도를 감시·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불멘소리로 나오고 있다.

전주방송은 전주시 서노송동 사옥 각종 출입구에 지문인식 장치를 설치, 지난 1월 중순께부터 운용하고 있다.

직원들의 지문 등록은 지난해 말 파업 철회 직후부터 가동 직전까지 받아냈다. 당시 회사 쪽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출입카드(신분증 겸용)가 낭비 소지가 있는 데다 사옥 내 방송시설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출입관리 장치를 기존 카드식에서 지문식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는 출입통제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전국언론노동조합 JTV지부의 입장이다. 당시 피해고자에 대한 회사 쪽의 접근금지가 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이 기각한 게 교체 방침의 배경이 됐으리란 것이다. 노조는 또 지문 등록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데다 등록 절차가 팀장 급의 중용에 의해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자발적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6일 노조에 따르면 지문인식기가 4개월 가까이 가동되고 있는 현재 JTV 직원들 사이에선 출입할 때마다 감시·통제당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략)

(3) 『전주방송, ‘독단·부당 인사’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14일자 4면)

내 용 : 전주방송(JTV·사장 김택곤)의 최근 인사를 두고 인사권자의 전횡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절차가 무시되거나 보복성으로 이뤄지는 등 독단적이고 부당한 인사라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JTV는 지난달 1일 강형배 전 JTV라디오(매직 FM) 외주제작업체 대표를 새 라디오국장으로 임

명하고 김현민 전 편성제작2팀 PD를 광고사업팀 CM편집실 팀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또 황인호 전 기획관리팀장을 보직 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언론노조 JTV지부(지부장 홍윤기)는 이 같은 인사가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독단 인사’이거나(강 신임 국장) 부당한 ‘보복 인사’(김 전 PD)라는 입장이다. 황 전 팀장의 경우 지난해 파업 당시 사장의 방침에 반발했던 게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란 전언이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먼저 강국장의 경우 ‘경력사원 채용’에 해당함에도 인사위원회나 노사간 논의 등 채용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 쪽이 경력사원을 채용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지만 사장이 이를 독단적으로 무시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또 회사가 김 전 PD 인사와 관련, 발령 전까지 당사자와 협의하지 않은 데다 노조에도 발령 하루 전에야 인사 내용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원의 직종 변경에 대해 노사가 사전 협의토록 돼 있는 단협 위반이란 것이다. 더욱이 노조는 김 전 PD의 인사가 사장과의 갈등 상황에서 단행된 점에 주목, ‘강성’ 노조원에 대한 보복 행위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조 JTV지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PD에 대한 사장의 부정적 평가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인사 기준 및 원칙 복구에 대한 김 전 PD의 질문에 사장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보복성 인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회사 쪽을 ‘부당전직’ 혐의로 노동부 산하 전주지청에 고발해둔 상태다.

이밖에 황 전 팀장 인사와 관련, 이 관계자는 “지난해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직장폐쇄를 주장하던 사장과 일부 간부들에 ‘회사 미래를 위해 직장폐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으로 맞선 뒤 황 전 팀장이 사장의 눈 밖에 났다는 게 사내 증언”이라면서 “황 전 팀장이 3월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보직 해임 명령을 먼저 낸 건 ‘명퇴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냥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후략)

(4) 『전주방송 재허가 추천 조건 미이행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29일자 5면)

내 용 : 전주방송(JTV·사장 김택곤)이 지난해 12월 옛 방송위원회가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을 내줄 당시 부과했던 의무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옛 방송위는 지난해 12월11일 JTV의 재허가 추천을 의결하면서 현 대표이사과 사외이사 임기의 임기가 만료된 뒤 차기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부터 공신력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추천위를 구성·운영해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되 사외이사추천위는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JTV 노사는 두 차례의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통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시안을 도출, 사장에게 제시했지만 사장은 자신이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건 사외이사추천자문위원회지 사외이사추천위가 아니라며 추천위 구성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옛 방송위가 재허가 추천조건을 달면서 자사가 제출한 이행계획서 상의 문구 가운데 ‘자문’이란 표현을 누락시켰으며, 때문에 추천위 구성은 옛 방송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란 것이다.

JTV는 지난 3월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추천위 구성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결국 같은 달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 쪽이 추천한 2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 JTV지부(지부장 홍윤기)는 전했다.

JTV 노조는 이와 함께 회사 쪽이 재허가 추천을 받는 조건으로 약속한 ‘JTV라디오(매직FM) 직영화’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 라디오 소사장(외주제작업체 대표)만 존재하지도 않는 라디오국의 국장으로 지난달 1일 선임하고 아웃소싱 형태로 근무했던 외주제작 PD 2명과 엔지니어 1명은 자회사로 발령했다”면서 “이는 사실상의 아웃소싱을 유지하며 편법으로 라디오를 운영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후략)

(5) 『전주방송 노사 갈등, 법적 분쟁 비화』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30일자 7면)

내 용 : 전주방송(JTV·사장 김택곤)의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지난 3월 JTV 노동조합이 김택곤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김사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사장도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3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전국언론노조 JTV지부(지부장 홍윤기)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와 김사장은 지난 16일 노조 지부장과 사무국장, 피해고자인 김아무개 전 JTV PD를 각각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와 명예훼손·업무방해·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파업 기간 중 노조가 배포한 선전물 등이 회사와 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고, 당시 노조가 김사장 퇴진을 요구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 쪽 주장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김사장은 이 사실을 이틀 뒤인 지난 18일 국장단 회의에서 공개하며 고소 취지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쪽에 따르면 김사장은 회의에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전 PD 부당해고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노조의 고소로 자신이 검찰 기소를 앞둔 데 대해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가 파업 철회 직후 곧바로 회사 앞에 (해고자 복직 시위를 위한) 천막을 쳐 노사간 신뢰를 깎았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김사장이 피해고자의 복직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집행부뿐만 아니라 김 전 PD까지 고소 대상으로 삼은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갈등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계산된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김사장이 ‘파업 중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노사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고도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서에 노조가 피해고자 복직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없기도 하지만 천막은 노조와 관련이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사장이 천막을 문제삼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주방송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①본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전주방송 사장, 해고자 즉각 복직시켜라>라는 제목으로 전주방송 사장이 “방송의 지역성과 공익성을 퇴보시키고, 허언을 일삼는 것에 할 말을 잇을 지경”이라는 언론노조의 성명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사장이 방송의 지역성과 공익성을 퇴보시키지 않았으며, 해고자와 관련하여 행정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말도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해고를 했다고 노조가 주장할 겨우 그러한 고려를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기에 김사장이 허언을 일삼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며 따라서 이를 바로 잡습니다.

②본 신문은 지난 5월 7일 <전주방송 지문인식기 ‘인권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전주방송의 지문인식기 도입이 “출입통제 의도가 명백”하고 “당시 피해고자에 대한 회사 쪽의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전주지방법원이 기각한 게 교체방침의 배경이 됐으리”라는 전주방송 노조의 입장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출입통제 의도가 명백하지 않고, 지문인식기 도입이 전주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시점(2008년 2월 13일) 이전에 기안되고 사내 회람(2007년 10월 18일)된 것으로 밝혀졌기에 피해고자와 관련한 교체 배경은 잘못된 사실이며 따라서 이를 바로 잡습니다.

③본 신문은 지난 5월 14일 <전주방송, 독단·부당인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편성제작2팀 김 모 PD가 CM편집실로 발령이 난 것은 “김 전PD의 인사가 사장과 의 갈등상황에서 단행된 점에 주목, ‘강성’ 노조원에 대한 보복행위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노조의 시각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 전PD의 인사는 소속 팀장, 국장과 방송본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직종 간 순환보직은 현 사장 부임 이후부터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취지로 시행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전 PD에 대한 인사가 ‘강성’ 노조원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④본 신문은 지난 5월 28일 <전주방송 재허가 추천 조건 미이행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전주방송이 조건부 재허가 추천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으며, 그 예로 방송위가 부과한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전주방송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사외이사추천자문위원회를 주장하고 있으며, 라디오 직영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재허가 추천 조건과 주요 이행 약속 사항인 라디오를 회사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사전제작하던 아침뉴스를 생방송으로 전환하는 등 재허가 추천 조건과 주요 이행 약속을 두루 수행하는 과정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가 한 두가지 논란사항을 예로 들어 마치 전주방송이 약속 전체를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아울러 나쁜 인상도 심어질 수 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⑤본 신문은 지난 7월 30일 <전주방송 노사갈등, 법적 분쟁 비화>라는 제목으로 전주방송 사장이 노조집행부를 포함한 3명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고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갈등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계산된 행위로 보인다”라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노사합의문이 체결된 지 이틀 후인 2008년 1월 2일에 회사 정문 앞에 세워진 해고자 천막에서 노조원들이 동조 농성을 벌였고, 3월 31일에는 주총 결과를 문제 삼아 경영진의 인격을 심하게 훼손하는 대형 대자보를 내걸었으며, 4월 3일에는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사장을 고발 하는 등 노조가 신뢰를 저버린데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회사가 조합 집행부를 제소하였기에 “갈등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계산된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일부 반론을 수용할 수 있으나 전체에 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은 어렵다. □

방위사업청 직원인 신청인들이 납품 업체의 부락을 받고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도와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손 ○ ○, 2. 김 ○ ○

피신청인 : 중앙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무자 B씨가 대금을 지출하는 회계 담당 7급 직원 C씨와 짜고 납품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업체에 수천만 원의 이득을 안겨준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당국은 민간인 신분인 관련 방사청 직원들을 금명간 경찰에 이첩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가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 『군납 비리 없애려 만든 방사청 10억 대 납품단가 조작 첫 적발』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3일자 2면)

내 용 :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군납업체에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로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납품과정의 비리 척결을 위해 2006년 1월 출범한 방사청에서 직원들이 연루된 부패사건이 외부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방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소속 급식계약담당 5급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병사용 급식 불고기와 치킨햄버거 패티의 가격이 떨어지자 상부의 지시로 D사 등 8개 업체와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서를 서랍에 숨겨둔 채 방사청의 계약업무 전산시스템에서 실제 가격 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업체의 부락을 받고 계약서 날짜까지 임의로 변경해 올 6월 계약 종료 때까지 높은 가격을 그대로 받게 해줌으로써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다.

A씨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닭값이 폭락했을 때도 같은 수법으로 20여 개 군납업체에 대금을 გადა 지급해줬다.

군 수사당국은 이와 함께 방사청의 6급 계약 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방사청 납품 단가 조작은 사실과 달라 (또는 군납 비리 없애려 만든 방사청 10억 대 납품단가 조작 첫 적발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3일자 2면에 “군납 비리 없애려 만든 방사청 10억 대 납품단가 조작 첫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방위사업청 소속 급식계약담당 5급 직원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닭값이 폭락하였을 때도 같은 수법으로 გადა 지급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같은 방위사업청 6급 계약실무자가 대금을 지출하는 회계 담당 7급 직원과 짜고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이나, 1) 급식계약담당 5급 직원과 2) 6급 계약실무자가 업체에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10월 13일자 2면 “군납 비리 없애려 만든 방사청 10억대 납품단가 조작 첫 적발”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급식계약담당 A씨와 계약실무자 B씨는 회계 업무 처리과정에서 변경 전 계약

금액을 집행한 뒤 정산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었을 뿐, 군납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중앙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앙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중앙일보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보도하도록 한다.

• 수사결과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무혐의 종결사실 및 관련 사실관계를 알리도록 하며 언론사는 신청인들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후속 보도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10월 13일자 2면 “군납 비리 없애려 만든 방사청 10억대 납품단가 조작 첫 적발” 제하의 기

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방위사업청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일반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였으나, 신청인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일부 실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신청인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손○○, 김○○ 씨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들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대중회 소식지의 편집위원장인 신청인이 쓴 칼럼을 총회 회장이 임의로 삭제하고 보도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장수황씨대중회소식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1.

처리결과 : 각 각하

• 내 용 : 〈내용 생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장수 황씨 대중회 소식

서울시 종로구 창신1동 410-5

발행인 황 국 연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장수황씨 대중회 소식지

보도내용

〈조정대상보도가 존재하지 않음〉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문

• 제 목 : 기도하는 마음으로

21호의 9쪽 중하단과 10쪽에 제목과 활자 크기 등 편집된 원고 전문의 원안대로 게재하도록 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제21호 대중회 소식지 발간 과정에서 신청인이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발간하기로 결정한 칼럼을 삭제한 후 편집,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원고가 피신청인 매체에 게재되지 않아 인격이 모독되고 종회원들의 알 권리가 박탈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다시 게재토록 하여달라는 취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면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언론보도에 그 성명

이나 초상이 공표되거나 그 내용에서 자신과의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됨으로써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언론조정중재규칙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보도되지 않은 사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언론중재법이 정한 피해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정신청서에 조정대상 보도와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어느 모로 보나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생산녹지인데도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뒤 대규모 정원을 꾸몄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울산매일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울산매일 : (1) 『생산녹지 수천㎡ 불법형질변경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4일자 6면)

내 용 : 울산 모 종합병원 유명 전문의가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의 생산녹지 1200㎡를 허가도 없이 형질 변경한 뒤 대규모 정원을 꾸민 것으로 알려

져 관할 울주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2일 울주군 상북면 주민들에 따르면 울산 남구 모 종합병원 전문의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는 지난 6일부터 사토를 실은 덤프트럭 수십 대가 드나들면서 약 2m 높이의 석축과 함께 1262㎡ 규모의 부지가 조성된 데 이어 최근 소나무 20여 그루가 이식되는 등 조경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전문의 A씨는 자신의 토지가 개발행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녹지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울주군으로부터 어떠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경작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 관계자는 “생산녹지에서는 50cm 이상 석축을 쌓는 등 형질을 변경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를 얻어야 하지만 A씨 명의로 허가가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또 이 부지 외에 A씨 소유의 주택도 허가 연면적 61㎡보다 2배 가까이 불법 증축됐다는 신고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은 약 10년 전 전문의 A씨가 이 마을주민들로부터 2,000여 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현재는 토지가격만 2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울주군, 원상복구 명령·검찰고발』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5일자 5면)

내 용 : 〈속보〉 울산 모 종합병원의 유명 전문의가 울주군 상북면의 생산녹지 1,200㎡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뒤 대규모 정원을 꾸민 것과 관련해 울주군이 현장을 확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 울주군은 현장 확인 결과 유명 전문의 A씨 소유의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생산녹지 1,262㎡에 무단으로 석축을 쌓아 부지를 조성한 것이 확인됐으며, 최근 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나무 20여 그루도 이식한 것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은 또 인근에 건립된 주택도 당초 허가 연면적 61㎡보다 증축된 것으로 보고 이날 확인 작업을 벌였다. 무단 증축이 확인될 경우 이 역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일단 소유자인 A씨에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며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소유의 토지와 주택은 약 10년 전 이 지역 마을주민들로부터 2,0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현재는 토지가격만 2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4일, 15일자에 울산 모 종합병원 전문의가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의 생산녹지를 허가도 없이 형질 변경한 뒤 대규모 정

원을 꾸몄으며, 2천여 만 원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는 20억 원을 호가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생산녹지를 무단 형질변경한 자는 소유자인 전문의가 아니라 골동품 가게를 하는 임차인이었으며, 대규모 정원이 아니라 장사를 위해 주변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2억여 원에 매입하였으며, 현재 시세도 매입가격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울산매일 : 『울주군 상북 토지 무단 형질변경 - “임차인이 장사위해 꾸민 것”』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1일자 5면)

내 용 : 〈속보〉무단형질변경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 중인 울주군 상북면 모 종합병원 전문의 소유의 토지는 이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골동품 판매를 위해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10월 14일자 6면)

30일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지역 모 종합병원 전문의 A씨 소유지만 무단으로 석축을 쌓고 부지를 조성한 것은 A씨로부터 토지를 빌린 B씨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토지소유자인 전문의 A씨 측은 “생산녹지를 무단 형질변경한 사람은 골동품 가게를 하는 임차인이었으며 대규모 정원이 아니라 장사를 위해 주변을 꾸민 것이다”고 밝혔다.

또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토지매입시 2억여 원을 주었고 지금도 매입 당시의 가격과 비슷하다”며 “10년 전 2,000여만 원에 매입했고 현재는 20억 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행위자인 B씨에 대해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다만 무단 증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A씨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무단증축된 주택은 허가면적보다 2배 가까이 증축됐고 내달 20일까지 철거 등 시정을 명령했다”며 “소유자 행위인 것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의 제기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신청인이 폐기물재활용허가를 받아 이를 구실로 각종 폐기물을 불법 반입·매립하고 있으나 시청에서 이를 봐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세이프코리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세이프코리아뉴스 : 『포천시청 법적 처분 받은 곳 재
허가』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3일자 종합면)

내 용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개인이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재활용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아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관련 시는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곳은 포천시청에서 지난 2007년 2월 각종 불
법행위를 인지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원상복
구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주는 이에 불복, 법적 대응
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하였으며, 반입할 수 없는
산업폐기물과, 축산폐기물 등을 반입 매립하는 불
법사실이 시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 지역 주민들과 관할 시 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체육공원 조성을 조건으
로 시로부터 실제 운영자의 전 부인과 아들의 공
동 명의로 석분과 폐석재만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
재활용허가를 받아 이 허가를 빌미로 각종 폐기물
을 반입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영평천 기설제방고(EL)에 대한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폐기물을 기준점보다 10m이상
높이 쌓아 올리는 등 토피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경우
모두 하천으로 쓸려내려 하천을 오염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
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원상복구도 안된 상
태에서 골프연습장부지조성을 한다는 명분하에 폐
기물재활용허가가 재 수리되었고, 이 또한 관련 시
가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곳 체육공원은 사업주인 최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05년 고발돼 구속(본인
주장)되면서 매립이 중단되었다가 출소 후 또 다
시 폐기물재활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관과
의 유착에 대한 의혹도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당시 담당부서의 강
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재활용신고가 수리
된 것은 무엇인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간 것 아니냐”며 “지난해 반입중지 기간에도 계
속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여 또다시 시로부터 고
발조치 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본지 취재 결과 반입중지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07
년 5월 의정부지법에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
청 후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이 건에 대한 시
와의 소송에서 지난 3월 28일 원고패소 하였고, 이
에 관한 포천시청에서는 재활용금지처분을 내려 5
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되어야 하고,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는커녕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다.

더구나 최씨는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불법 폐기
물을 매립하여 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법적 대응을 하였으나 패소하였으
며, 이를 항소한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9월 3
일 취하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실을 원상 복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
금까지 이를 방치하는 등 포천시의 폐기물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불법매립으로 사업
이 중단되고 사업주가 구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불법매립현장에 또다시 허

가를 내준 것”과 “관할 시청에서 무려 3일동안 현장을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조치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조사 결과가 무혐의 처분”되는 등 일련의 처리결과이다.

과거 낚시터이던 곳이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명분하에 10여년 전부터 각종 폐기물로 매립을 하면서 사업주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는 등의 사실이 있던 곳에 또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원상복구는 커녕 시로부터 재 허가를 받아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폐기물산을 만들어 놓아 2급하천인 인근 영평천과 이어져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10월 13일자 종합면에 『포천시청 법적처분 받은 곳 재허가, 불법폐기물 매립사실 그냥 넘어가나』라는 제목으로 개인이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사진의 업체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포천시청 법적처분 받은 곳 재허가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 신문 10월 13일자 종합면 “포천시청 법적처분 받은 곳 재허가” 제하 기사와 관련해, 해당 업주는 보도 당시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시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3일 오전 9시부터 11월 6일 오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세이프코리아뉴스> 메인화면에 팝업창을 이용하여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원보도문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미 제기한 고소를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포천시청 법적 처분 받은 곳 재허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3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협회가 회원들에게 분배해야할 저작권료 및 공탁금 이자 등을 횡령하고, 분배를 조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지 ○ ○)

피신청인 : 시사저널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시사저널 : 『‘남의 음악’으로 뱃속 채운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8일자 사회면)

내 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부정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고구마 줄기처럼 당기면 당길수록 새로운 것이 뿔뿔히 나오고 있다.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가지고 협회와 특정 임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들린다.

〈시사저널〉은 지난 7월 22일자(제978호)에 음저협의 분배 조작 실상을 특집으로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후 음저협에 대한 각종 제보가 잇따랐고,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음저협에 대해 '20억 원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경제범죄특수수사대 이범해 반장은 "경찰에서는 사건을 종결하고 지난 9월 29일에 검찰로 송치했다. 사안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할지는 검찰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음저협은 음악 창작자들을 대신해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광범위하게 회원들의 저작권료를 빼돌리고 횡령했다. 여기에는 협회의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회장 선거 때 회원들에게 거액의 돈이 뿌려졌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해에만 총 6억 9천 6백 46만 원의 공탁금(8건) 이자를 일반회계로 전용함으로써 사실상 회원 저작권료를 횡령했다. 예를 들어, 엠넷미디어(과거 도레미, GM기획)와 회원 69명이 법원에 20억 원을 공탁한 후 이자 6억 6천 5백만 원이 발생했다. 음저협은 이자로 발생한 금액 중 10%(약 6천 6백 50만 원)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약 6억여 원을 회원들에게 분배했어야 하는데도 분배하지 않았다.

공탁금 이자 6억 9천여 만 원 일반회계로 전용

음저협은 신탁법에 따라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회원의 권익과 저작권 사용료의 공정한 징수와 분배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협회 발전기금이나 복지기금, 장학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무단 도용 관련 소송을 하면서 벽스로부터 7억 원의 복지기금을 받았다. 이 돈에 대해 어떤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음저협의 회원은 총 7천여 명이다. 이 중 선거권, 피선

거권을 가진 정회원은 6백여 명으로 10%가 채 안 된다. 음저협의 운영 시스템은 종신 회원인 정회원에 의해 결정되며, 정회원의 70~80%는 60세 이상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회원 위에는 25인의 평의원회가 있다. 평의원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하고 변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저협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25명의 평의원회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협회 집행부는 평의원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다수의 회원들이 소수의 정회원이나 평의원회를 위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희생당하는 일이 반복 되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음저협의 분배 조작은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 보고서 조작, 가짜 저작권자를 내세워 저작권료 챙기기, 협회임원 등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분배하기 등 분배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지난 2006년 문화관광부가 낸 한국저작권협회 '지도 감독 보고서'에 의하면 음저협 직원들에 의한 분배 조작 금액이 6억 7천만 원에 이른다. 음저협 직원이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보낸 '분배 조작 진술서'에는 "협회의 주요 업무인 분배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 규정대로 분배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인데, 협회의 사무총장은 (분배 조작을) 지시하고 분배 부장은 실행하고 협회장은 묵인하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서 엉터리 분배를 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음저협의 관리·감독 기관은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이다. 그동안 협회 회원 일부는 음저협의 방만한 운영과 분배 조작, 저작권료 횡령 등에 대해 문광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광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난해 1월과 7월에야 두 번에 걸쳐 음저협에 대한 업무 점검과 감사를 진행했다. 그런 정황을 들어 음악저작권자들 사이에서는 문광부와 음저협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유영건 전 회장 때 문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에 5억 원을 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1회에 한해 5억 원을 주기로 했으나 지명길 회장 체제가 들어선 뒤에도 1억 원을 줄여서 4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로 결정했다고 한다.

강영철 전 음저협 감사는 “4억 원은 결국, 협회 회원들의 저작권수수료에서 만들어진 돈이다. 한번만 5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인데 전임 회장이 계약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회원들의 피 같은 돈을 협회 집행부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 또, 지회장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등 신탁계약약관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회장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런데도 문광부가 이런 것을 왜 묵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명길 회장 선거 참모 “내가 보는 앞에서 봉투 건넸다” (중략)

지난 2005년 회장 선거 당시 지명길 회장의 선거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지회장의 선거 참모는 10여 명이다.

선거 참모로 활동했던 A씨는 “지회장이 선거 자금으로 2억 원 이상을 썼다. 핵심 참모가 5명 정도 되었는데 이들이 정회원들을 만나면서 돈을 뿌렸다”라고 밝혔다. A씨는 그 증거로 지회장이 선거 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통장 사본을 제시했다. 통장 사본에는 2005년 11월 23일과 28일 두 번에 걸쳐 각각 100만 원씩 2백만 원이 입금되었다. A씨는 이 돈을 회원 6명에게 30만~60만 원씩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또 “나한테는 2백만 원만 입금했지만 최측근 2~3명에게는 수천만 원의 뭉치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계좌 추적을 하면 곧바로 나온다. 내가 보는 앞에서 지회장이 회원들에게 봉투를 직접 건네기도 했다. 지회장은 음저협 회장에 세 번을 나와 두 번 떨어진 후 당선되었다.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알거지가 되었을 텐데 선거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의문이다. 음저협 회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지부장 출신의 A씨가 선거자금을 댔다는 말이 있고, 그 대가로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지부장 자리에 앉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시사주간지는 지난 제990호 발행분 사회면에 「‘남의 음악’으로 뱃속 채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엠넷미디어(과거 도레미, GM기획)와 회원 69명이 법원에 공탁한 20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 6억 6천 5백만 원 중 수수료를 제한 약 6억여 원을 회원들에게 분배했어야 함에도 분배하지 않아 사실상 회원 저작권료를 횡령했다는 부분은 음저협의 규정(정관 제43조 경비의 지면, 신탁계약약관 제9조 관리경비의 징수 4항, 신탁회계 경리규정 제32조 수입의 인식기준 4항)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상당한 업무임이 밝혀졌다.

또한, 음악저작물 무단 도용 관련 소송을 하면서 벅스로부터 받은 7억 원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복지항목으로 전용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한 결정문(피고는 원고 회원들의 복지자금으로 7억 원을 다음과 같이 7회 분할하여 지급한다)에 따른 것이며, 음저협의 회원복지기금규정에도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음저협의 정회원은 700여 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의 회원은 300명이 안되는 40%의 수준으로 지난 보도에 60%~70%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음저협 평의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회원들이 소수의 정회원이나 평의원회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음저협 정관에 의거, 평의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및 수지 결산 심의,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의안 심의, 정관 개정(안) 심의만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이외의 어떠한 경영사항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됐다.

한편, 음저협 직원이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보낸 ‘분배조작 진술서’에는 “협회의 주요 업무인 분배 업무는 가장 주요한 업무로서 규정대로 분배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인데, 협회의 사무총장은 (분배조작을) 지시하고, 분배부장은 실행하고, 협회장은 묵인하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서 엉터리 분배를 하고 있다”는 지난 보도는 확인 결과, 최문순 의원에게 진술서를 보낸 직원은 현직에 있는 직원이 아니었으며, 분배 또한 분배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음저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저협 문제로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접수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난해 1월, 7월에야 두 번에 걸쳐 업무 점검과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과 음저협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자 문광부의 저작권 관련 업무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일괄 교체)한 것처럼 보도된 것도 사실과 달랐다.

음저협은 2005년 12월 5일부터 4일간 업무점검을 받았으며, 2007년 1월 19일부터 5일간, 동년 8월 13일부터 10일동안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문광부의 저작권 관련 업무자들의 인사이동 역시 문광부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의 일부에 불과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분담금 문제와 관련,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단체들이 연합해서 설립한 단체로 센터의 운영비는 각 단체가 분담하는 분담금과 국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 동 비용을 예산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총회의 승인 하에 집행하므로 집행부 임의로 집행한 것이 아니며, 지난 보도와 같이 매년 4억 원씩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3억이 지원된 바 있다.

음저협 지부장의 인사 청탁을 받아 지부장을 채용했다는 제보자의 말만을 믿고 부정한 인사를 단행한 것처럼 보도된 것과, 위의 여러 문제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아울러 음저협 회장님의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무단으로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10월 14일자 사회면 「‘남의 음악’으로 뱃속 채운 사람들」 제하 보도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정회원 7백 명 중 60세 이상은 약 40%이고, 2007년(3억 원)과 2008년(1억 원)에 저작권 보호센터에 지원한 금액은 총회 승인을 거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음저협은 법원 공탁금에서 발생한 6억여원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신탁회계 경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일반회계로 처리가 가능하고, 벽스와 저작물 도용 소송과정에서 받은 복지기금 7억 원은 회원복지기금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시사저널> 사회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음악저작권협회 임직원들, 조직적으로 저작권료 빼돌려)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나머지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시사저널 :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치과 병원의 80%가 건강보험료를 부당 청구하였다는 보도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30개 병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이므로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10월 18일 20:00)

내 용 : >앵커 : 정부가 국내 치과병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무려 80%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도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속이거나, 환자가 치료받은 일수를 늘리는 등 수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기자 : 서울의 한 치과의원은 지난 해 찍지도 않은 방사선 촬영 비용 백여만 원을 건강 보험공단에 청구했습니다. 필수적인 방사선 촬영도 하지 않은 채 환자들의 치아를 뽑은 뒤 허위 서류로 보험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치과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개 병원 가운데 무려 80%인 24곳이 허위로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0%에 이르는 치과의 부당수령 비율은 일반 병원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 치과의 특성상 환자가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로 어떤 치료를 했는지는 환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과랑 달라서요.

유형별로는 환자가 병원에 온 날을 부풀리거나 레이저 치료나 치석제거, 치아교정등 비급여대상 항목을 대상 항목으로 바꿔 신청해 본인 부담 치료비와 보험금을 이중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80%의 병의원들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일반화되고 상습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해야될 것이고 단순한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치과로 환산하면 수십 억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새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치과 건강보험료 청구와 관련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18일자 8시 뉴스에서 “치과 80% 부당청구”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30곳의 표본조사 결과 80%의 치과 병,의원이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는 표본조사가 아닌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치과 병,의원 30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현지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내용 중 “치과의 부당수령 비율이 일반 병의원보다 30% 포인트 높다”고 밝혔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로 2008년 일반 병의원의 부당청구 내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중 “단순한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미 단순환수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의 말미에 “모든 치과로 환산하면 수십 억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새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는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14,000여 치과 병의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보도한 것은 옳지 않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론보도
- 내 용 : 지난 10월 18일자 8시뉴스가 ‘80%가 부당청구’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기사가 인용한 조사는 부당청구가 의심이 가는 30곳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로 모든 치과에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22일 또는 11월 23일 SBS-TV 8시뉴스 기상정보 앞부분에 앵커가 위 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시청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위 보도문의 제목(대한치과의사협회 반론보도)을 게

속 표시한다.

• 피신청인이 보도당일 뉴스내용을 SBS 홈페이지(www.sbs.co.kr)에 게재할 때 위 반론보도 기사내용 및 다시보기도 함께 게재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2008년 11월 22일 20: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대화-식사지구’로 사실상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고양경량전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홍 ○ ○, 이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2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고양시, 경전철 2015년 완공』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5일자 15면)

내 용 : 고양시 경전철 노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시(市)는 일산서구 대화동~식사지구 구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빠르면 연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도>

한국교통연구원이 13일 시에 제출한 ‘고양시 경량전철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5개 노선안 가운데 ‘일산서구 대화동~백마로~식사지구 (11.09km)’ 구간이 가장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노선에 대해서는, 호수로~웨스턴돔~뉴코아 백화점을 경유하는 1안, 호수로~중앙로~정발산역~일산동구청~뉴코아 백화점을 통과하는 2안, 호수로~장항지하차도~뉴코아 백화점을 지나는 3안을 검토한 결과, 1안이 한류우드,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상가 지역과 접근성이 높아 최적의 노선으로 분석됐다. 차량시스템으로는

고무차륜(AGT), 철제차륜(AGT), LIM, 모노레일, 도시형 자기부상, 노면전차 등 5개안을 교통 수요, 경제성, 환경성, 안정성 등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모노레일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비 5,115억 원은 민간 50%(2,558억 원), 개발분담금으로 한류우드 20%(1,000억 원), 정부 18%(934억 원), 고양시·경기도 12%(623억 원)를 분담하고, 차량기지 건설에 필요한 용지비 388억 원은 고양시가 별도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연구원은 주민들이 제기해왔던 경제성과 환경 문제에 대해선, 소음·진동 문제는 없고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측은 “민간사업 시행을 위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는 등 절차를 거치면 예정보다 1년 정도 늦어진 2011년에 착공하고 2015년 초에 완공할 계획”이라며 “한 차례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여론 수렴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고양시, 경전철 2015년 완공”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10월 15일자 15면 ‘고양시, 경전철 2015년 완공’ 제하의 기사에서 고양시의 경전철 노선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연내, 늦으면 내년 상반기

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2011년에 착공하여 2015년 초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고양 경량전철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경전철 사업이 아직 확정된 바 없고, 고양시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으며, 대책위와의 대화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혀와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고양시, 경전철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
市 ‘대화~식사지구’ 노선 선정 가능성 높아
하지만 작년에 이어 총 40여개 단지의 주민들이 적자노선으로 인한 세금 증가, 호수공원·노래하는 분수대·백마로의 환경파괴, 미관훼손·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반대해 대책위를 구성해 대규모 경전철 반대 집회 및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신청인 단체가 영세가구 집수리 등에 사용되어야 할 39억여 원의 지원금을 부당 집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임 ○ ○)
피신청인 : 광남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10. 30.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광남일보 : (1) 『‘목포자활센터’ 관리부실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5일자 23면)
내 용 : 부실 시공·공사금액 과다 청구 등 잡음 일어

국비 등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전남목포지역 자활센터가 영세가구의 집수리사업을 하면서 부실 시공과 함께 공사금액 과다 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국비 80%·도비 10%·시비 10% 등 연간 39억 9,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집수리, 푸드사업, 간병사업, 재활용사업 등 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200가구에 가구당 150만 원 이하의 공사를 무료로 시행해 주고 있으며 추가 비용은 집수린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공사는 자활센터내 집수리팀과, 자활을 마치고 공동체를 결성한 일반사업자 M종합건축에서 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집수리 공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집수리를 한 A씨는 “10평도 안된 스텔트집을 양철판넬로 덮어씌우기만 했는데 추가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청구해왔다”며 “개인이 직접 업자를 선정해 시공하면 150만 원 이면 충분한데, 무료 공사비를 포함해 270만 원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슷한 공사를 했다는 B씨도 “एं터리 공사로 바람이 불면 지붕이 들썩 거려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추가공사비로 75만 원을 지급했으나 영수증에는 지급 내역서도 없이 50만 원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공사기간 내내 단 한번도 자활센터 관계자나 시 관계자를 본 적이 없다”며 감독기관의 탁상행정예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자활센터 관계자는 “일반 업자들과 공사비를 비교하면 약 30%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공사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해주고 있어 문제가 없

다”고 말했다.

관할 기관인 목포시 담당자는 “공사비 과다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목포지역자활센터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과 시청 감사를 통해 일등 자활센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 『목포자활센터 부실의혹 내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3일자 20면)

내 용 : <속보>본보 10월 15일자 23면 ‘목포자활센터 관리부실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목포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다.

목포경찰서는 22일 “국비등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전남목포지역 자활센터의 영세가구 집수리사업과 관련,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목포지역자활센터 관리부실 의혹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15일자 사회면에 “목포지역자활센터 관리부실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목포지역자활센터가 국비 등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면서 영세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부실시공과 함께 공사금액 과다 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간 39억 9,900여만 원이라는 예산지원은 사실과 다르며, 연간 16억여 원(현물급여집수리사업비 2억 8천 6백여만 원 포함)을 지원받아 집수리 사업 외 11개 사업에서 인건비(87%), 자재비(13%)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최근 집수리를 한 A씨는 “10평도 안된 스투트집을 양청판넬로 덮어 씌우기만 했는데 추가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청구해왔다”며 “개인이 직접 업자를 선정해 시공하면 150만 원이면 충분한데, 무료 공사비를 포함해 270만 원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며 확인 결과 대지 24평에 건평 23평이며 실제 지붕공사 평수는 30평으로 개인업자를 선정해 시공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B씨의 경우 “영터리 공사로 바람이 불면 지붕이 들썩거려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추가 공사비로 75만 원을 지급했으나 영수증에는 지급 내역서도 없이 50만 원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말한 부분은 지붕공사비 추가비용으로 50만 원을 수령했었고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나중에 처마 공사(텐조)를 하려면 25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추가 공사를 하였음.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15일자 “‘목포자활센터’ 관리부실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목포지역자활센터는 연간 39억 9,9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영세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부실시공과 함께 공사금액을 과다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지역자활센터는 센터예산과 관련, 보도내용과 같이 연간 39억 9,900여만 원이 아니라 자활센터 운영비, 집수리사업 현물급여,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등을 포함해 연간 23억여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보도내용 가운데 A씨의 경우 10평도 안되는 스투트집 지붕개조 공사에 추가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청구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에는 39㎡(12평) 정도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측결과 73.1㎡(22평) 정도로 확인되어 추가공사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1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광남일보 지역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부실시공...)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광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3일자 2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출판사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직원 대부분을 내보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2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중앙북스(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인 중앙북스는 지난달 부도설에 휩싸인 끝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회사는 최근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뒤 그들이 회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내는 임프린트 방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보도내용

동아일보 : 『‘독서의 계절’ 사라진 출판계 ‘위기의 계절’』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3일자 A20면)

내 용 : ■ 불황 장기화에 신음

종이 가격 - 인쇄비용 급증에 고환율까지 충격 올해 신간 발행부수 지난해보다 22%나 줄어 잇단 매각설에 뒤숭숭... “매출 50%감소 최악” “이런 불황은 처음입니다. 올해 내내 그래요. 여름 특수(特需)는 아예 없었고 지금으로선 겨울 특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이 예년보다 30~50% 줄었어요. 대부분 출판사들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주○○ 은행나무 대표)

올해 출판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출판계 불황설은 최근 몇 년간 줄곧 나왔지만 올해는 그 실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출판사 구조조정과 서점 부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발행부수 등 출판 관련 통계에서도 위기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게다가 출판사들은 종이 값과 인쇄비가 오른 데다 환율까지 뛰여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현재의 불황을 지나가는 소나기로 보기엔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중앙북스 구조조정 단행

최근 들어 대형 출판사의 구조조정과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의 출자로 출범한 출판사

• 제 목 : 중앙북스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2008년 10월 23일(목)자 기획면(A20면)에 게재된 ‘독서의 계절 사라진 출판계 위기의 계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북스 구조조정 단행’이란 소제목을 달고 “중앙일보의 출자로 출범한 출판사인 중앙북스는 지난달 부도설에 휩싸인 끝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회사는 최근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중앙북스는 최근 부도와 관련된 위급한 경영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며, 기사에서처럼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에 본지는 독자 여러분과 중앙북스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보 2008년 10월 23일자 A20면 「출판계 위기의 계절」 기사와 관련, 중앙북스가 부도설에 휩싸인 끝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중앙북스는 최근 위급한 경영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며, 부도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 중앙북스는 직원 대부분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 직원을 기획출판 방식인 임프린트 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경영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A20면에 2008년 11월 21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게재 위치는 향후 협의하도록 하고,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정정 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동아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0일자 A1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수원시가 매각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도유지를 대상으로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 경기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시 (시장 김 용 서)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중부일보 : (1) 『道 농기원 “부지매각 못한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7일자 1면)

내 용 : 수원시가 매각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도유지에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 경기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박지성 선수(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김용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12 일대 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부지 1만 5천 658㎡에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또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 착공,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이곳을 체육시설 부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도 농업기술원은 시가 축구센터 부지로 확정된 곳이 종자관리소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현재 재배 중인 작물생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부

지 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시가 축구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 등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양해각서 체결 등 일련의 사업절차 역시 상의없이 기습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략)

(2) 『박지성 축구센터 불허 결정』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8일자 1면)

내 용 : <속보>수원시가 사전에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 박지성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부지를 매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는 27일 수원시가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부지로 확정된 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일부 부지에 대한 매각을 요청할 경우 매각을 반대해온 도 농업기술원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4차례에 걸친 부지매각 협상에서 종자생산과 공급차질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농업기술원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사실상 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후략)

(3) 『엇박자 빚은 박지성 축구센터』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8일자 17면)

내 용 : 수원시가 아직 매각여부조차 확정되지 않

은 부지에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 반발은 물론 앞으로의 방향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수원시의 이러한 발표에 내심 유소년들의 축구발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행정절차마저 엇박자를 빚으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발표한 수원시의 행정 부실에 실망하고 있다. 알려졌다고피 수원시는 지난 7일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와 김용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선수의 이름을 딴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도농기원 “부지매각 못한다”』, 『박지성 축구센터 불허 결정』, 『엇박자 빚은 박지성 축구센터』의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보 10월 27일자 1면 보도된 『도농기원 “부지매각 못한다”』, 10월 28일자 1면 『박지성 축구센터 불허 결정』, 17면 『엇박자 빚은 박지성 축구센터』라는 보도는 사실 확인결과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 협약식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원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왜곡된 보도를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원시는 박지성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2007년 8월 13일부터 경기도에 도유지 매각검토 요청을 하였고, 경기도에서는 농업경영과, 농림수산식품부, 한강유역환경청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8년 7월 28일 수원시에 매각가능 회신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가능 회신공문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수원시는 2008년 10월 7일 박지성 선

수와 축구센터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지는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10월 27일 1면 『도농기원 “부지매각 못한다”』, 10월 28일 1면 『박지성 축구센터 불허 결정』, 17면 『엇박자 빚은 박지성 축구센터』라는 제목의 기사를 왜곡 보도하였기에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앞으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무책임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 일간지로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도농기원 부지매각 관련 정정보도

• 내 용 : 10월 27일자 1면 보도된 『도농기원 “부지매각 못한다”』, 10월 28일 1면 『박지성 축구센터 불허 결정』, 17면 『엇박자 빚은 박지성 축구센터』 제목의 기사와 관련, 경기도가 수원시 영통구 망토동 212번지 일대 도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부지에 대해 매각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없어 이를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부일보 2008년 11월 17일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10월 27일자 1면 - 道 “수원시서 내년 5월 착공계획 일방 발표”)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부일보 : 『정정』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7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9,900원짜리 정장을 산 후
상품후기와 함께 올린 신청인의 양복 착용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저작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다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0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스포츠동아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스포츠동아 : 『9,900원짜리 정장으로 안보이는데...』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8일자 11면)

내 용 : 양복 정장 한 벌에 9,900원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 가격만 보고 일부 누리꾼들은 “한 번밖에 입을 수 없는 1회용 정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1회용이라면 정말 그럴듯해 보인다. 면접을 보러 갈 일이 생겼는데 정장이 없다면 싼 값에 미리 살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정장 한 벌의 가격은 단돈 9,900원이다. 그러자 쇼핑몰 게시판에 누리꾼들의 상상력이 펼쳐졌다. ●한 번 빨면 바로 구제 양복이 되는 거 맞죠? ●재질 면에서 뭔가 숨겨놓은 것이 있는 듯 보이는데요, 얼른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싼 제품을 많이 찾는다지만 정장 한 벌이 9,900원이라면 말도 안되죠, 뭔가 있는게 틀림없어요.

누리꾼들은 대부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정작 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한 누리꾼의 진심어린(?) 착용기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 누리꾼은 직접 입은 모습(사진)을 올리면서 “9,900원치고는 대단한 품질은 맞다”고 상품을 받았을때의 첫 소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생활하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하면 광택이 흐를 것 같긴 하다. 또한 정장의 안감은 좀 허술하게 되어 있는 듯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나 “정장 맵시는 생각보다 잘 잡혀있다”고 덧붙였다.

착용기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던 선입견과 비교해 확 달라졌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와우~ 9,900원짜리 정장이 생각보다 훨씬 맵시도 나고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28일자 11면 「9,900원짜리 정장으로 안보이는데...」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화제가 되는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하는 취지의 보도였으나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드렸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의 사진 등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신청인은 본건 합의서 자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는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인이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인상하고 비리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대전조정19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황 ○ ○

피신청인 : 충청투데이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충청투데이 : 『“관리소장 비리 못참아... 업체 바뀌라”』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1일자 5면)

내 용 : 대전 유성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임금을 임의대로 올리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관리사무소와 비대위 측에 따르면 올 초 부임한 관리소장은 동대표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1일부터 시설관리 직원 1명을 퇴사시키는 대신 관리소장의 월 급여를 250여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직원 전체의 임금을 인상했다. 이는 인근 10여 개 아파트 관리소장 가운데 최고 액수다.

비대위 측은 “동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이 주공이 당초 필요하다고 설계한 직원까지 해임하면서 인근 대형 민영아파트보다 많게는 수십만 원이나 높게 소장의 급여를 올렸다”며 “관리사무소는 이것도 모자라 인상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전체 관리비도 1.5% 올렸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반석마을 8단지 아파트 관리소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31일자 사회면에 『“관리소장 비리 못참아...업체 바뀌라”』제목으로 관리소장이 비리가 있다고 보도하고 임금을 임의대로 올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리소장 비리라고 보도된 내용은 관리소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임금을 임의대로 올렸다고 보도된 내용도 확인 결과 임차인대표 정기회의시 임차인대표들의 제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인상되었음이 밝혀져 이

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직원 1명을 퇴사시켰다’, ‘인근 10여개 아파트 관리소장 가운데 최고액수다’라고 보도된 내용은 임차인대표들이 임금 인상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제안하였던 사항으로서 임금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측이 협의하여 구조조정 하였던 것이고, ‘임금이 최고액수다’라고 보도된 내용도 사실이 아닌 몇몇 인근 아파트보다 낮은 수준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사실상 해체 상태다 라고 보도된 내용도 구성원 6명 중 2명이 사퇴한 경우로서 존재여부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6,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충청투데이 : 『반석마을 8단지 아파트 관리소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7일자 5면)

내 용 : 충청투데이는 지난 10월 31일자 사회면에 “관리소장 비리 못참아... 업체 바뀌라”는 제목으로 관리소장이 비리가 있다고 보도하고 임금을 임의대로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리소장 비리라고 보도된 내용은 관리소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임금을 임의대로 올렸다고 보도된 내용도 확인 결과 임차인대표회의 제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상됐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직원 1명을 퇴사시켰다. 인근 10여개 아파트 관리소장 가운데 최고액수다’라고 보도된 내용은 임차인대표들이 임금인상 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제안했던 사항으로써 임금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을 최소로 하기 위해 대표회의와 관리소 측이 협의, 구조조정했던 것이고, 임금이 최고액수다라고 보도된 내용도 사실이 아닌 몇몇 인근 아파트보다 낮은 수준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광명시 공무원인 신청인이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농협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3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중부일보 : 『입찰 참가 은행에 수천 만 원 요구』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3일자 1면)

내 용 : 광명시금고 선정관련...당사자 “사실 아니다”

〈속보〉광명시금고 선정과정에서 평가 순위 1등과 2등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시장 측근들이 시금고 선정 직전 ‘시장의 뜻’임을 강조하며 입찰 참가은행 측에 수천 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광명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효선 광명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시 산하 사회단체 회장 조모 씨와 사업가 김모 씨는 시금고 선정을 불과 보름여 앞둔 지난달 중순께 농협 광명시지부 측에 수천 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지난 13일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 참가한 시 선수단을 격려차 다녀오던 중 곡성 휴게소에서 동행했던 농협 광명시 지부장 A씨를 한

적한 곳으로 불러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조씨는 “어음이 돌아와 오늘까지 막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5천만 원만 빌려 달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부장 A씨가 “지금 돈도 없을 뿐더러 (정상적인 대출형식이 아닌) 사적인 금전 거래는 농협 규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된다. 죄송하다”며 거절했다.

조씨는 5분여 뒤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다시 밖으로 불러내 “그러면 3천만 원이라도 해달라”며 요구했고 A씨는 “해드릴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거절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중부일보가 지난 11월 3일자 1면 「시장 측근 “시금고 선정에 도움될 것이다. 시장 뜻이다”」 제하의 기사에서 광명시 산하 사회단체 회장 조모 씨가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농협 광명시지부 측에 수천 만 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조모 씨는 어음과 관련하여 농협 지부장 A씨에게 대출관련 자문을 구한 것일 뿐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대출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조모 씨의 친구 김모 씨가 농협 지부장에게 시금고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돈을 건넬 것을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경고사태로 인해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들이 부산소재 초중고 축구팀 경기를 보이콧하고 부산시의 전국대회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회장 백 ○ ○)

피신청인 : 국제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수 일 : 2008. 11. 4.
 처리결과 :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국제신문 : (1) 『부산 실버축구, 전국을 휩쓸다』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2일자 19면)

내 용 : 부산축구의 자존심을 어르신들이 살렸다.
 부산의 초중고 축구가 지리멸렬한 상태로 예년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부산대표팀이 올해 4개 전국대회에서 우승 3회, 준우승 1회의 위업을 달성했다. (중략)

부산의 실버축구는 부산진구팀이 장관기대회 50대 부문에서 우승했고 70대로 이루어진 골드축구단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산의 초중고 축구에 대해 문자 김 단장은 "예전에는 경남의 뛰어난 어린 선수들이 부산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입을 단았다.

부산 초중고 축구의 부진은 부산축구협회의 책임이 크다. 협회는 백〇〇 회장 체제 이후 백회장의 모교인 부경고만 돋보일 뿐 나머지 학교는 고사 상태다. 지금 부산의 실버축구가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것은 예전 부산 중고고 축구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축구붐 탓이 크다. 이 상태로 간다면 부산의 실버축구도 전국 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다. (후략)

(2) 『심판위, "부산대회 모두 불참"』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5일자 24면)

내 용 : 대한축구협 상별위 중징계 방침

부산서 전국대회 개최 어려워져
 초·중·고 축구팀 불이익 덤터기
 부산축구협 독선운영 경고성도

부산축구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분과위원회(위원장 최〇〇)에서 부경고가 출전하는 모든 경기는 물론 부산에서 열리는 3개 전국대회에 심판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산에서 전국대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부산의 초중고 팀들이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직접적인 발단은 부경고 축구부를 둘러싼 잡음 때문이다.

부경고는 지난 8월 제주의 백록기 대회에서 동북고와의 경기 도중 심판 판정 시비가 있었다. 부경고가 0-1로 뒤지는 상황에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내려진 것. 부경고는 항의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경고는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국제축구연맹(FIFA) 정관 64조는 'FIFA 가맹협회들은 협회 관련 각종 분쟁을 일반법원이 아니라 각국 축구협회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규정에서 인정하는 독립적인 중재기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경고의 경우 대한축구협회 상별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스포츠중재재판소를 상대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후략)

(3) 『어수선한 부경고 축구, 첫판에 '집으로'』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1일자 17면)

내 용 : 정명고에 2-3 역전패 1회전 탈락... 심판협회의, 불만담긴 플래카드 내걸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어기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부경고 축구팀(본지 9월 25일, 10월 8일자 보도)이 10일 열린 제89회 전국체전 고등부 1회전에서 정명고(경기 대표)에 2-3으로 져 탈락했다.

부경고는 올 시즌 정명고와 한 차례도 붙은 적이 없다. 정명고가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는 등 전국 정상권 전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되지만 지난해 전국대회 2관왕 부경고의 초반 탈락은 의외다. 그만큼 최근 팀과 관련된 어수선한 사태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축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이 같은 정황은 이날 경기장의 분위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 제 목 : 부산실버축구, 전국을 휩쓸다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9월 12일자 스포츠면에 『부산실버축구, 전국을 휩쓸다』라는 제목으로 부산시 생활체육축구연합회 실버축구단과 부산시 축구협회를 연계하여 부산시 축구협회를 비난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부산시 생활체육축구연합회와 부산시 축구협회는 전혀 다른 별도의 조직으로 밝혀져 부산시축구협회와 연계하여 비난성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

• 제 목 : 심판위 “부산대회 모두 불참”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9월 25일자 스포츠면에 심판위 『부산대회 모두 불참』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 축구협회 백현식 회장과 부산시 축구협회를 부경고와 연계하여 사실과 다른 음해성 기사를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부경고 문제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상벌위원회 개최 문제는 부산시 축구협회 백현식 회장과 부산시축구협회와는 전혀 무관하며 심판위 “부산대회 모두 불참” 부분도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3)

• 제 목 : 어수선한 부경고 축구, 첫 판에 ‘집으로’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0월 11일자 스포츠면 좌측 하단에 어수선한 부경고 첫 판에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부산팀의 1회전 탈락을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경기진행을 책임져야 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와 심판들이 부산대표인 부경고에 심판원의 검찰고발에 대한 앙심을 품고 경기진행을 방해하며 어린선수들을 불모로 38분이나 경기를 지연시킨 것이 본질인데 마치 부산시 축구협회와 부경고가 잘못된 것처럼 비난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심판들의 경기지연 사

태로 부산시체육대회,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축구협회, 부경고가 모두 다 피해자로 대한축구협회가 비난받아야 할 내용을 잘못 판단하여 부산축구협회를 비난한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축구협회

회장 백 ○ ○

조정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국제신문

부산 연제구 거제1동

76-2 국제신문빌딩

대표이사 이 정 섭

조정대리인 김 ○ ○

주 문 :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국제신문> 스포츠면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부경고, FIFA규정 어기고 판정시비 검찰 제소 무리수”)과 같은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7.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2일, 9월 25일, 10월 11일자에 부경고 사태(부경고 감독 및 부산축구협회 K이사가 심판 판정을 검찰에 제소)를 악화시킨 것은 부산축구협회 책임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축구협회는 부경고 사태와 부산축구협회는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 건설사가 베트남 사업에 대한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지급하고 아파트 내부 옵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벽산건설 (주)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스포츠서울닷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5.
처리결과 : 각 각하

보도내용

스포츠서울닷컴 : 『벽산건설 직원에 돈 잔치?』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14일자)

내 용 : 벽산건설이 ‘아파트 성과급 논란’에 휩싸였다.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방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지급했다는 것. 게다가 아파트 내부의 옵션 역시 무료로 받았다는 주장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의혹의 무대는 천안에 위치한 천안 벽산블루밍 아파트. 1,647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천안지역 최대규모의 단일단지를 자랑하며 분양당시 1:10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벽산건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다. 주택청약관련법률에 의거 공정하게 진행했으며,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 베트남 사업 성과급 논란

논란을 낳고 있는 아파트 성과급 의혹은 벽산건설이 베트남 사업의 성과급으로 자사 직원들에게 천안 지역 아파트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의혹은 이미 입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상황. 한 입주민에 따르면 “외부에 조망권을 형성하고 있는 로얄층이 벽산건설 직원 부인명의로 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로얄층은 옥탑방을 끼고 있는 세대로, 분양당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이

로얄층에 대해 “현재 시세가 2억 8,000만 원대 정도로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당시 보다 가격은 내려간 상태지만, 매물은 상당히 드물다”고 말했다.

벽산건설 직원 명의로 알려진 세대는 모두 8곳. 이곳은 모두 단지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 높은 조망권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현재 이 아파트를 팔았으며, 새로운 입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벽산건설측은 이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분양을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어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 “아무리 일을 잘했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벽산건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매체는 지난 2008년 8월 14일자 라이프 핫 이슈 고발 면에 “벽산건설 직원에 돈 잔치? 수익대 아파트 성과급 지급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벽산건설이 베트남 사업의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수익대 아파트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논란이 일고 있고, 옵션 무상설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벽산건설은 베트남 사업의 성과급으로 아파트를 지급 한 사실도, 무상옵션을 제공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벽산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스포츠서울미디어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씨동 201호
대표이사 김 상 규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스포츠서울닷컴(<http://www.sportsseoul.com>)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8월 14일 『벽산건설 직원에 돈잔치? 수억대 아파트 성과급 지급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사업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지급했으며 아파트 내부 옵션비용도 신청인이 대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업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지급하거나 무상옵션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우선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그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하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체(이하 이 사건 매체라 한다)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하는 인터넷 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건대, [별지 2.] 공문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체는 자체 생산 기사

가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등록관청에 ‘인터넷신문’으로서 등록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체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매체인 일간신문 <스포츠서울>과 별도의 독립적인 매체로 볼 수 없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대상인 매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신청은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2.

<별지 1>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별지 2>

- 제 목 : 인터넷신문 등록 여부에 대한 회신
-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당사 (주)스포츠서울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서울닷컴>은 주간 게재 기사 건수 중 자체 생산 기사가 100분의 30 이상을 넘지 않고, 인터넷 신문으로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바 없음을 확인합니다. □

신청인 연합회 사무처장이 불링코리아 발행인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국민생활체육전국불링연합회
(회장 유 ○ ○) 외 2인

피신청인 : 불링코리아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5.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불링코리아 : 『비틀거리는 국생불 집행부』 제하의 기

사 (2008년 10월호 19면)

내 용 : 지난 1997년 출범한 국민생활체육협회의는 정관 제40조에 의거,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 도모, 명랑하고 밝은 사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 역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체육 문화창달, 볼링 동호인 조직활동의 체계적 지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주요 사업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회장 유○○)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 볼링 전문지 발행인에게 음주폭행을 가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기간 중인 지난 9월 9일 저녁 10시경 경기도 수원시 S 호텔 2층 레스토랑에서 유○○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장, 지○○ 사무처장과 본지 이○○ 발행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생활체육 볼링과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하던 중 본지 이발행인이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 일부 현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하여 지사무처장이 탁자 위 유리병을 깨 위협하는가 하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일관하며 동석했던 경기도 김모 이사에게 '손을 봐줘야 한다!' 라고 지시, 김모 이사가 본지 발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가. 볼링코리아 10월호 BOKO 기자석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 관련기사 사실과 달라

나. 볼링코리아 홈페이지의 2008년 10월 8일자 최신투스란의 「국생볼 집행부 본지 발행인에 음주폭

행」 기사 사실과 달라.

•내 용 : 본 볼링코리아 월간지는 지난 10월 12일 발행 10월호 19면 BOKO 기자석 란 및 볼링코리아 홈페이지(<http://www.bowling.co.kr>) 2008년 10월 8일자 최신 뉴스란에 “비틀거리는 국생볼 집행부” 및 “국생볼 집행부 본지 발행인에 음주폭행”라는 제목으로 ①“최근 국민생활 체육전국볼링연합회(회장 유○○)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 볼링전문 발행인에게 음주폭행을 가하여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②“유○○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장, 지○○ 사무처장과 본지 이○○ 발행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생활체육 볼링과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하던 중 본지 이발행인이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 일부 현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하여 지 사무처장이 탁자 위 유리병을 깨 위협하는가 하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일관하며 동석했던 수원의 김모 이사에게 ‘손을 봐줘야 한다!’ 라고 지시, 김모 이사가 본지 발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③ 특히, 수하의 이사를 시켜 ‘손을 봐줘야 한다’며 볼링전문지 발행인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전국100만 생활체육 볼링 동호인을 대변하는 집행부 위상에도 큰 흠결이 될 것이며, 음주폭행을 자행하고 지시한 임원은 공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 및 홈페이지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신청인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레이저 미용기의 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알마레이저스아시아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아임닥터뉴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아임닥터뉴스 : (1) 『알마레이저 개원가에 이는 가격
거품, 저가마케팅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4일자 제약산업면)

내 용 : 포탈사이트 제모 비용 2만 원, 시술
과다청구 매도

제모레이저로 유명한 알마레이저에 대한 개원의
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알마레이저스아시아는 세계 3대 레이저 회사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알마사로부터 레이저 미용기
기를 독점수입하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들도 많이 사
용하고 있는 기기.

그러나 개원의들은 우리나라에서 고가로 판매되
고 있는 알마레이저에 거품이 크게 끼어 있으며,
저가 마케팅에까지 나서 일선 의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사 커뮤니티의 A개원의는 알마레이저의 러
블리IPL을 구입할 시 3만 샷까지는 별 무리 없을 거
라 했지만 2만 샷 시술 후 효과가 급격히 감소했고
정기적인 점검이나 AS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개원의는 알마레이저의 제품이 외국의 고급 메
이저 브랜드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을 받고 있
어 거품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미국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매
년 발표하는 Editor's choice award 미용 레이저 부
문에 최근 5년 동안 알마레이저가 판매하는 소프
라노가 이름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다른 레
이저기기보다 알마레이저의 가격이 훨씬 비싼 이
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C 개원의는 알마레이저가 값비싼 레이저
기기를 팔고 포털 사이트 등에 제모 비용 1회 시술
2만 원 등을 홍보하는 마케팅을 펼쳐 자사 제품을
이용한 값싼 시술 이외에는 모두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뷰레인 또는 이레이저FX라

는 독일 Wavelight 사의 통펄스 & 프렉셔널 어븀
야크 레이저 기기를 1억 7,000여만 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 또한 동급의 Foton사가 OEM 생산하는
똑같은 수준의 기기가 9,000여만 원에 판매될 예정
으로 있어 상당한 거품이 의심된다는 것.

알마레이저스아시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시장에서 책정된 가격에 맞추어 원장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 구매한 것”이라며 가격거품 의혹을
일축했다.

시장가격과 병의원에서 원하는 퀄리티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해 정
기점검에 대한 불신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는 “영업사원 등이 병의원을 방문해 정
기적인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AS팀도 파
로 운영돼 필요시 바로 투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케팅 부분에는 대해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시술비
등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다며 저가마
케팅으로 개원가를 어렵게 한다는 의혹에 대해 근
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장비를 사면서 데모 사용도 해
보지 않는 의사들은 없을 것”이라 언급하며 “실제
사용과 가격적인 측면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구
매하는 것”이라 다시 한 번 강조해 개원의들의 불
만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2) 『환율 급등, 골치 아픈 ‘외산 의료기기’ 왜
쓰나』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3일자 제약산업면)
내 용 : 알마레이저 등 불만 속출...국내 의료기기,
AS 쉽고 제품 질 높아

경제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환율 상승이 지속
되면서, 일선 병의원에서도 외국의료기기 제품의 구
매와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에 따르면, 외국산 의료기기는 업체가 통관
비, 물류비, 적정이윤 등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기
기의 가격이 국내 의료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
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외국 의료기기 업체들은 최근 계속되는 환
율 증가세로 인해 수입이 힘들어 소유하고 있는 의료
기기만 파는 것에 그칠 수 없는 상태여서 제품의 내

구성이나 연식을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기기 전문업체 써포메디 관계자는 “기기를 수입한 업체들이 작년보다 60~70% 환율이 올라 인건비나 기타 비용을 빼고나면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분위기에서도 의사들은 외국기기가 첨단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외국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외국제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사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의료기기는 제품 자체의 가격 거품에도 문제지만 혹여 제품에 이상이 생겨 부품 교체 등 AS가 오래 걸려 부담스럽다는 단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일례로 최근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제모레이저로 유명한 알마레이저에 거품이 크게 끼어 있으며, 저가 마케팅에까지 나서고 있다는 불만이 적잖다.

한 개원의는 알마레이저의 리블리IPL을 구입했을 당시 3만샷까지는 별 무리 없음을 거라 했지만 2만샷 시술 후 효과가 급격히 감소했고 정기적인 점검이나 AS도 없었다는 불만을 의사커뮤니티에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이 개원의에 따르면, 제품판매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마케팅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3~400만원의 홈페이지만 구축해주고 몇십만 원 정도의 인터넷마케팅을 몇 달 해주는데 그쳤으며 “기기 사용에 따른 (이익창출) 노하우를 알려준다더니 마케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알마레이저, 개원가에 이는 가격거품·저가마케팅 의혹’ ‘환율 급등, 골치 아픈 ‘외국산 의료기기’ 왜 쓰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23일자 제약·산업면에

“알마레이저, 개원가에 이는 가격거품·저가마케팅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주)알마레이저아시아社가 개원의를 상대로 레이저장비의 거품과 저가마케팅, A/S의 미비에 대한 보도 및 11월 3일자 제약·산업면에 “환율 급등, 골치 아픈 ‘외국산 의료기기’ 왜 쓰나”에서 (주)알마레이저아시아社의 레이저의료장비를 비롯해 외국산 장비와 국산 의료장비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외국산 장비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비판적인 보도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알마레이저아시아社는 시장형성에 따른 통상적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아임닥터뉴스가 일부 의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확대해석한 부분을 기사에 게재함을 인정하고, 본지가 일부 불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일축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아임닥터뉴스 : (1) 『알마레이저스아시아에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4일자 제약산업면)

내 용 : 위 보도와 관련하여 알마레이저스아시아는 아임닥터뉴스의 기자와 알마레이저스아시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개원의들의 ‘자사 제품에 대해 제기한 불만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고 사후 A/S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2) 『알마레이저스아시아에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3일자 제약산업면)

내 용 : 위 보도와 관련하여 알마레이저스아시아는 자사제품의 가격은 병의원에서 원하는 수준에 따라 상호간에 가격을 책정했고, 영업사원 및 A/S 팀 등이 병의원을 방문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A/S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신청인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레이저 미용기의 가격이 턱없이 높게 책정되었고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알마레이저스아시아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6.
처리결과 : 취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3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환율급등, 골치 아픈 ‘외국산 의료
기기’ 왜 쓰나』 제하의 기사 (2008
년 11월 3일자 산업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3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 후 보도문

메디컬투데이 : 『알마레이저스아시아에서 알려왔습
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3일
자 산업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33의 신청 후 보도문
참조〉 □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판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5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7.
처리결과 : 각 취하

하는 순간 투신했다”고 말했다. 홍씨의 남편(30)은
경찰에서 “평소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경제
적 어려움을 비판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홍씨의 남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 『생활고 비판한 30대 주부, 아들 · 딸과
전동차 투신』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6면)
내 용 : 생활고를 비판한 30대 주부가 아들, 딸과
함께 전동차에 동반 투신했다.

27일 오후 1시 52분쯤 서울 방화동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상일동 방면 승강장에서 홍모(30) 씨 등
일가족 3명이 선로에 뛰어들어 홍씨의 딸(5)이 전
동차에 치여 숨지고 홍씨와 아들(11)은 중상을 입
었다. 이들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하철 역내 CCTV 화면을
판독한 결과 오후 1시 47분쯤 승강장에 내려온 뒤
승강장 끝부분에 서 있다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생활고 비판 30대 주부 아들, 딸과 전동
차 투신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8월 28일 6면 “생활고 비판한
30대 주부 아들, 딸과 전동차 투신” 제하의 기사에
서 홍씨의 남편(30) 경찰조사에서 평소 사업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비판해 왔다는
진술을 한 적도 없으며 더욱이 기사작성시간엔 경
찰을 만나지도 않았었습니다. 또한 홍씨부부는 빚
이 하나도 없으며 꾸준한 직장 생활을 통한 안정
적인 수입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보도는 사실
과 다르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국민일보 : 『알림』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8일자 2면)
 내 용 : 지난 8월28일자 본보 6면 ‘생활고 비판한 30대 주부, 아들·딸과 전동차 투신’ 제하의 기

사와 관련, 홍모 씨의 남편은 경찰에서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진술한 바 없고, 꾸준히 직장생활을 해 안정된 수입이 있었으므로 생활고에 시달린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판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Ⅲ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동아일보 : 『생활고 비판한 30대 주부 자녀들과 지하철 투신』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A14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3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8월 28일자 14면 ‘생활고 비판 30대 주부 자녀들과 지하철 투신’ 제하의 기사와 관련, 홍씨의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적도 없고 꾸준한 직장생활을 통해 안정된 수입이 있었으므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동아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 기사를 동아일보 DB에서 삭제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판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Ⅳ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여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증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세계일보 : 『생활고 비관 30대 주부 두자녀 안고 지하철 투신』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9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3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8년 8월 28일자 9면 「생활고 비관 30대 주부 두 자녀 안고 지하철 투신」 제하의 기사와 관련, 여모(42)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부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여씨는 빚이 없고 가정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므로 부인이 생활고를 비관해 투신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5일까지(토요일 제외) 세계일보 2면 혹은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세계일보의 통상적인 ‘알려드립니다’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5일까지 원 조정대상기사를 세계일보 DB에서 삭제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에 협조 요청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블로그, 카페, 웹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V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여 ○ ○
피신청인 : 조선일보
증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조선일보 : 『어린 아들·딸 데리고 지하철에 몸 던져』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12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3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8년 8월 28일자 12면 「어린 아들·딸 데리고 지하철에 몸 던져」 기사에서, 홍씨의 남편 여모 씨는 부인과 두 자녀는 평소 환승하던 지점에서 선로로 떨어진 것이며, 생활고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5일까지(토요일 제외) 조선일보 2면 혹은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선일보의 통상적인 정정 및 반론보도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5일까지 원 조정대상 기사를 조선일보 DB에서 삭제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에 협조 요청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블로그, 카페, 웹 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판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Ⅵ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서울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7.

처리결과 : 각 기각

〈2008서울조정33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3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서울일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3-1

대표이사 김 기 수

주 문 :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보도내용

서울일보 : 『생활고 비판한 일가족 3명 지하철역 투신』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내 용 : 〈위 제목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DB에서 삭제하고, 인터넷 게재를 하지 않는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일보 2008년 8월 28일자 11면 「생활고 비관 일가족 3명 지하철역 투신」 제하의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정정보도,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 청구는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서울일보 2008년 8월

28일자 11면에는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린 바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4.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거액의 빚과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투신자살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Ⅷ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을 후속 보도하되,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알려진 사실관계와는 다른 신청인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 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보도 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 기사를 매일경제신문 DB에서 삭제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 『생활고에 시달린 30대 주부 아들, 딸과 지하철 투신』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31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3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아내 자살오명 벗겨주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9일자 28면)

내 용 : 개화산역 모녀사망 사건

남편 “경찰이 허위 공표”

“딸을 죽이고 아들을 살인미수했다는 오명을 못 벗는 한 아내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승강장. 가녀린 체구의 주부 홍모 씨(31)가 한 손에 25kg이 넘는 6세 딸을 안은 채 12세 아들과 서 있다가 열차가 진입하는 순간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추락시 엉겁결에 팔을 붙잡고 있던 아들도 선로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홍씨와 딸이 사망했고 아들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언론은 경찰 발표를 인용해 ‘생활고 비관한 일가족 3명 전동차 투신’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남편인 여모 씨가 사업을 하다 부도를 냈고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불황기 세태 풍속도로 여러 차례 인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씨는 “평생 전기기술자였고 사업엔 손대본 적도 없다”며 “지난해 10월 전기공사 중 추락 사고를 당한 뒤 월 250만 원씩 휴직 급여를 받고 있었고 아내도 맞벌이를 해 월평균 350만 원

정도 가게 소득이 있었으며 빚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생활고로 자살할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씨는 본인 급여명세서와 금융정보 내용, 아내가 죽기 전까지 받아온 근로소득 명세서도 내밀었다.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잃은 것보다도 가혹한 것은 아내 죽음을 자살로 모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인터넷에는 여씨 부부를 ‘무능한 가장, 잔인한 모정’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랐다.

홍씨 사건이 사고사나, 자살이냐는 당사자와 가족 명예를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만 경찰은 사고조서도 작성하기 전에 자살로 단정하고 언론에 알렸다.

여씨는 “강서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을 끝냈을 때는 28일 새벽 5시였는데 조서 작성을 시작도 하기 전인 전날 저녁 TV 뉴스에 경찰이 ‘사업을 해서 부도를 내고’라고 말한 인터뷰가 나왔다”며 어이없어 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TV 기자는 “인터뷰한 사람은 강서서 관계자”라고 말했으나 강서서 측은 이에 대해 “조서 작성 전 개략적 경위라도 알려 달라고 해 이야기한 것을 허락 없이 녹음해 보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씨가 거듭 제소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말 홍씨 사건을 자살로 종결 처리했다. □

신청인 기업이 순이익을 냈으면서도 위장 폐업하고 새로 공장을 열어 비정규직을 뽑으려 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인해 폐업한 것이고 새로 공장을 가동할 계획도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주)콜텍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7.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KBS-2TV : 「생방송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2008년 10월 22일 24:15)

내 용 : ▷박○○ : 콜트기타로 유명한 악기제조 회사의 노동자들이 100미터가 넘는 위험한 송전탑에 올랐습니다.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회사는 경영악화를 그 이유로 내세웠지만 노동자들은 엄청난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위장 폐업을 했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

악) 지난 화요일 청계광장에서는 보기도문 통기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명○(가수) : 저도 콜트 콜트기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그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사실 관심을 갖지 못했었는데 그런 투쟁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 기자 : 한 기타제조업체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위로하기위해 통기타 가수들이 만든 자리였습니다. 양화대교 옆 100미터 높이의 철탑위에서는 통기타를 생산하는 콜트 대전공장 노조위원장님이 9일째 농성 중입니다. 150,000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철탑이지만 복직이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이○○ 노조위원장 콜텍노동조합 : 그동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했던 이 회사가 이렇게 한순간 배신한 것에 대하여 울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고픈 간절한 마음에서 이 송전탑에 올라오게 됐고

▷우○○ 기자 : 해고노동자들이 일해온 콜트악기 인천공장입니다. 전자기타를 생산하던 이 공장은 지난 8일 문을 닫았습니다. 세계기타시장 1위를 차지하고, 지난 30년간 매년 수익의 흑자를 기록해온 콜트악기가 왜 갑자기 폐업을 한 것일까. 회사는 지난 2007년 4월 생산직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경영악화로 회사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건비가 싼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옮겨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방○○ 지회장 콜트악기노동조합 : 인도네시아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연수받으러 왔는데 저희들이 뭐 회사에 협조 뭐 이런 차원에서라도 잘 가르쳐줬죠.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는 몰랐고 기술지도하면 할수록 이쪽은 더 더 줄어들었고 없어진 거죠

▷우○○ 기자 : 1973년 콜트악기에서 시작한 회사는 인도네시아 중국에 해외법인을 세우며 생산공장을 늘려왔습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한명의 사장이 주식을 모두 갖고 있는 1인 소유 기업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전체의 경영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수십억 대라며 경영악화는 핑계라고 주장 합니다.

(중략)

▷우○○ 기자 : 콜트악기 노동자들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노조를 해체하고 새로이 공장을 열거라고 주장합니다.

▷정○○ 부장 금속노조 인천지부 : 합의 되서 끝나버리면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 공장을 재가동한다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을 떨어버리고 비정규직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숙련공들이지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기타가공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 기자 :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오해라고 말합니다. 생산비를 맞추기 위해 해외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노조와의 갈등으로 오히려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콜트, 콜텍 노사갈등 불공정 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22일자 12시 시사투나잇에 “콜트기타 노동자, 100M 송전탑에 오른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콜트, 콜텍의 금속노조 노조원들과 회사와의 노사갈등에 대해보도한 바 있습니다.

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사측과 노동자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여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한쪽만 부각시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들의 주장 중 인건비가 싼 해외공장으로 물량을 옮기고 공장 문을 닫았다는 내용과 노조를 해체하고 새로이 공장을 가동할 거라는 내용은 노동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생산은 회사가 임의로 판단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와의 상담과정에서 단가 및 품질에 따라 생산이 결정되는 것이고 공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이어의 국내공장 오다가 2005년부터 급격히 줄면서 지금까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으며 결국에 2007년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바이어의 이탈과 항의와 소송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국내공장을 가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공장을 새로이 가동할지 여부는 사측에서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들의 주장하는 조기출근과 연장근로 및 회사의 처우에 관한 내용과 근무시 천식, 근육통,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상 조기출근이 필요하여 작업을 시킨 경우나 연장근로를 시킨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산재 환자가 간혹 발생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혜택 등 근로자들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회사가 세계1위의 기타업체로 성장하면서 거둔 열매들은 사실 최저임금과 산업재해 등의 열악한 조건을 감내해온 노동자들 덕분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방송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후 보도문

KBS-2TV : 「생방송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2008년 11월 13일 24:50)

내 용 : '본 방송 지난 10월 22일 '콜트기타 노동자, 100M 송전탑에 오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방송과 관련하여, (주)콜텍과 콜트악기는 국내 공장의 문을 닫은 이유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었으며, 최근 법적으로도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이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김포문화원장 선거에서 신청인이 금전 및 향응을 제공해 표를 매수했고, 당선되면 1천만 원을 내놓겠으며, 김포 언론이 모두 써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김포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7.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김포신문 : 『강○○ 문화원장 “김포언론 모두 써었다” 발언 진의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0일자 1, 3면)

내 용 : 당선직후 본지 공식방문 석상서 막말, 의도적 행태 분명

“반성·사과 않고 괴변 일관할시 명예훼손 등 강력 대처”

요즘 강○○(65) 신임 김포문화원장에 대한 선거전·후, 취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첫째는 강원장이 지난 7일 선거 당일 정견발표(후보자 소견발표)에서 자신이 문화원장에 당선 되면 1천만 원을 내놓겠다고 한 발언이 공명선거를 해쳤다는 것이고 둘째는 강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을 살포하며 향응 등을 통해 표를 매수했다는 것, 셋째는 문화원장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전면 감사를 실시, 조○○ 전 원장이 채용한 이모 과장 등 직원 2명을 물러나게 하는 등 현 원장이 퇴임도 하기전에 문화원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각 뒤집어 놓은 것, 이는 극히 이례적이고 또한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강원장 스스로가 관내 언론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막말을 남발, 문화원장 자격마저 의심케하는 사건을 노정 시켰다.

지난 7일 오후 4시경 문화원장 선거 직후 본지

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의 언론 즉 “지방지와 지역신문이 모두 썩었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강원장은 이와 더불어 과거 경기도 지방지 이모, 박모 기사를 내가 혼냈다고 부언, 마치 자신에게 잘못 보이면 본지도 혼내겠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 뱉었다.

참여정부 시절 이모 국무총리가 사석에서 “조선, 동아 내 손안에 있다. 까불면 다 죽여 버리겠다”는 식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모멸감을 받았지만 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삭히고 역사 속에 묻기로 하였다.

그리고 후일 그의 행보를 지켜보며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강원장은 이같은 우리의 대응적 뜻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을 또 이어 나갔다.

지난 25일 언론편파 발언 진의를 확인하려는 모 신문 K기자에게 “그런 사실이 전혀없고 유언비어 일뿐”이라며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본지를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트린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다. 이는 강원장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해명은 커녕 “김포의 언론이 모두 썩었다”고 말한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임이 분명, 본지는 더 이상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더 큰 화를 키울 뿐이라고 판단하고 진실에 근거한 해명 촉구 등 명명백백하게 그 발언 근거와 저의를 묻기로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김포신문 강○○ 문화원장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8년 10월 30일자 1면 『강○○ 문화원장 제정신인가 “김포 언론 다 썩어” 망발』, 3면 『강○○ 문화원장 “김포 언론 모두 썩었다” 발언 진의 밝혀야』 각각 제하의 기사에서 강원장이 선거 당일 정견 발표에서 자신이 문화원장에 당선되면 1천만 원을 내놓겠다고 한 발언이 공명선거를 해쳤다. 강원장이 선거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을 살포하며 향응을 통해 표를 매수했다. 문화원장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전면 감사를 실시 전 원장이 채용한 이모 과장 등 직원 2명을 물러나게 하는 등 문화원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강문화원장

이 선거 직후 본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의 언론이 모두 썩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 경기도 지방지 이모, 강모 기사를 내가 혼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위 내용은 당선 되든 안 되든 발전기금을 문화원에 내놓겠다. 금전을 살포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감사는 전직 감사의 권한 사항이므로 강원장 취임 직후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전 원장이 채용한 이모 과장 등은 전 원장이 자신의 재임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한 비정규직이고, 다른 한 명의 직원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임한 것이다. 또한 김포의 언론이 모두 썩었다는 것은 김포신문을 자칭한 것이고, 경기도 지방지 이모, 강모 기사를 혼냈다는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라는 내용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김포신문 강○○ 문화원장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8년 10월 30일자 1면 『강보희 문화원장 제정신인가 “김포 언론 다 썩어” 망발』, 3면 『강○○ 문화원장 “김포 언론 모두 썩었다” 발언 진의 밝혀야』 각각 제하의 기사에서 강원장이 선거 당일 정견 발표에서 자신이 문화원장에 당선되면 1천만 원을 내놓겠다고 한 발언이 공명선거를 해쳤다. 강원장이 선거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을 살포하며 향응을 통해 표를 매수했다. 문화원장에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전면 감사를 실시, 전 원장이 채용한 이모 과장 등 직원 2명을 물러나게 하난 등 문화원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강문화원장이 선거 직후 본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포의 언론이 모두 썩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 경기도 지방지 이모, 강모 기사를 내가 혼냈다는 내용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위 내용은 당선 되든 안

되든 발전기금을 문화원에 내놓겠다고 한 사실이
나 금전을 살포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는 전직 감사의 권한 사항이므로 강원
장 취임 직후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한명의
직원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사임한 것이며, 김포의
언론에 관한 발언 부분은 다소 와전된 것으로 밝
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김포신문 2008년 12월 4일 1면에 하단 광고란에 상
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는 붉은색으로 조정
대상기사의 중간제목(당선직후 본지 공식방문 석

상서 망발, 의도적 행태분명)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김포신문 인터
넷판(www.igimpo.com)에 2008년 12월 4일 오전 9
시부터 2008년 12월 11일 오전 9시까지 게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김포신문 : 『강○○ 문화원장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역술인들이 성형을 권한다는 보도에서 특정 병원을 소개하는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반론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2

청 구 명 : 정정 · 반론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2008년 11월
2일 21:45)

내 용 : >내레이션 : 인근에 다른 철학원 관상
을 보며 성형수술이 필요하겠냐고 문자 수술날짜
를 정해주면서 눈과 코를 성형하라고 말합니다.

>내방객 : 눈과 코를 성형

>관상가 : “11월에 입동 절기가 그래도 성형이
잘 되는 쪽이에요. 근데 주변 친구 말 듣고서 의사
선택하지 말고요 같이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눈
하고 코하고, 눈만 따로 하면 균형이 깨질 것 같은
데.”

>내레이션 : 그리고는 병원까지 추천합니다.

>관상가 : 병원은 알아보셨고요?

>내방객 : 아니 몰라서요.

>관상가 : ○○성형외과에 가보세요. 거기가 잘

해요

>내방객 : ○○성형외과요?

>관상가 : 예, 압구정역에. 저 개인적으로 아는건
아닌데요.

>내레이션 : 운명이 바뀔 거라며 관상가는 다시
한번 성형을 권합니다.

>관상가 : 새로 바꾸고 인생을 바꿔보세요.

>2580 : 성형하면 뭐가 좋아질 것 같으세요? 관
상학적으로.

>관상가 : 관운이, 남자운이 좋아지잖아요. 그래
서 성형하라는 거예요.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관상 성형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일자 시사매거진
2580 ‘관상성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신청
인이 병원과 결탁하여 병원 소개를 한 것처럼 보
도되었으나 사실확인 결과 상담 내용 중에 특정
병원이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 그것을 전달했던 것
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 자료의 일부로
특정병원을 거론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11월 2일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중 「관상의 비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한 역술인이 특정 성형외과를 소개해주었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역술인은 병원과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1월 16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하는 MBC-TV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1월 21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 내 용 : 본 방송 지난 11월 2일자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중 「관상의 비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현대사회에서 관상학이 가지는 의미와 성형에 대한 관상학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의 보도였으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취재 및 촬영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렸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2008년 11월 16일 21:4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연합회 집행부가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불링코리아 발행인에게 음주폭행과 막말을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국민생활체육전국불링연합회
(회장 유 ○ ○)

2. 유 ○ ○

3. 지 ○ ○

피신청인 : 불링코리아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불링코리아 : 『비틀거리는 국생불 집행부』 제하의 기

사 (2008년 10월 12일자 19면)

내 용 : 지난 1997년 출범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정관 제40조에 의거,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 도모, 명랑하고 밝은 사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불링연합회 역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체육 문화창달, 불링 동호인 조직활동의 체계적 지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주요 사업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생활체육 전국불링연합회(회장 유○○)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 불링 전문지 발행인에게 음주폭행을 가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기간 중인 지난 9월 9일 저녁 10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S호텔 2층 레스토랑에서 유○○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장, 지○○ 사무처장과 본지 이○○ 발행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생활체육 볼링과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하던 중 본지 이 발행인이 국민생활체육전국볼링연합회 일부 현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하여 지사무처장이 탁자 위 유리병을 깨 위협하는가 하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일관하며 동석했던 경기도 김모 이사에게 '손을 봐줘야 한다!' 라고 지시, 김모 이사가 본지 발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금번 사건은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 집행부 자질을 의심케 할뿐만 아니라 과연 이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체육 볼링 동호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언론을 상대로 마구잡이 음주폭행을 일삼는 단체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하의 이사를 시켜 '손을 봐줘야 한다!' 며 볼링 전문지 발행인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전국 100만 생활체육 볼링 동호인을 대변한다는 집행부 위상에도 큰 흠결이 될 것이며, 음주폭행을 자행하고 지시한 임원은 공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본 사건과 관련, 이는 볼링 전문지 발행인 개인에 대한 폭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볼링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 볼링인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가. 볼링코리아 10월호 BOKO 기사석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 관련기사 사실과 달라나. 볼링코리아 홈페이지의 2008년 10월 8일자 최신투스란의 「국생볼 집행부 본지 발행인에 음주폭행」 기사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볼링코리아 월간지는 지난 10월 12일 발행 10월호 19면 BOKO 기사석란 및 볼링코리

아 홈페이지(<http://www.bowling.co.kr>) 2008년 10월 8일자 최신투스란에 “비틀거리는 국생볼 집행부” 및 “국생볼 집행부 본지 발행인에 음주폭행”라는 제목으로 ①“최근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회장 유○○) 집행부가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 볼링전문 발행인에게 음주폭행을 가하여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②“유○○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장, 지○○ 사무처장과 본지 이○○ 발행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 생활체육 볼링과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하던 중 본지 이발행인이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 일부 현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하여 지사무처장이 탁자 위 유리병을 깨 위협하는가 하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로 일관하며 동석했던 수원의 김모 이사에게 ‘손을 봐줘야 한다!’ 라고 지시, 김모 이사가 본지 발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③특히, 수하의 이사를 시켜 ‘손을 봐줘야 한다’며 볼링전문지 발행인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전국100만 생활체육 볼링 동호인을 대변하는 집행부 위상에도 큰 흠결이 될 것이며, 음주폭행을 자행하고 지시한 임원은 공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 및 홈페이지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즉 「2008년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었던 2008년 9월 9일 저녁 9시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의 실크로드 모텔 2층 레스토랑에 신청인 유○○, 신청인 지○○, 유청희 프로볼링선수겸 프로볼링협회이사, 서용훈 프로볼링선수, 배대권 프로볼링선수, 김○○ 수원시볼링연합회 사무장, 피신청인 이○○ 볼링코리아 발행인, 김○○ 및 표○○이 함께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30분도 채 안된 시간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 자리에서 신청인 지○○가 신청인 유○○에게 당일 있었던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정도의 대화가 오고가는 도중, 경기장 사용료에 대하여 보고하는 부분에 이르러서 피신청인

이○○와 유○○ 프로가 비꼬는 말투로 끼어들면서 서로 서먹한 분위기 형성되었다가 잠시 후 모임이 종료되었을 뿐이며, 볼링코리아 월간지가 지난 10월 12일발행 10월호 19면 BOKO 기사석란 및 볼링코리아 홈페이지(<http://www.bowling.co.kr>)의 2008년 10월 8일자 최신뉴스란에 각 기사 내용은 전혀 없었던 허위내용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2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반론보도는 가능하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

신청인 회사가 고객돈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법인을 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허위광고 등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또한 확정되었다고 잘못 보도되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라상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피신청인 : 상조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상조뉴스 : (1) 『H상조 위장법인 설립 고객돈 빼돌린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5일자 종합면)

내 용 : 최근 영업자들의 본사 집단 항의 후 노골적 행태보여

H 상조가 위장으로 법인을 설립 고객돈을 빼돌리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 관심이 상조업계 전체에 증폭 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H상조가 지난 6월 서울 구로동에 상당히 큰 규모의 사무실을 얻어 “J모 종합상조”라는 법인을 설립 운영중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본지에 H상조 한 임원의 제보로 확인 취재에 들어가면서 일부는 확인되었고 확인 중에 있는 것도 있다. 현재 후속 보도를 위해 집중 취재중에 있으며 전 H 상조 임원을 지낸 A씨가 현 J종합상조를 실제 운영하며 자금 일체는 H상조

P대표가 차명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위장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 법인 대표는 전 H상조 A임원 부인의 H모 씨의 이름으로 자본금 1억 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 하므로써 일반인들과 H상조 직원들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H상조는 큰 내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달에는 H상조 전국 사업자들 특히 지사장급들이 본인들의 수당에 대해 불만을 품고 울산의 본사에 집단으로 항의 방문 이 일대가 일시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2) 『한라상조와 박○○ 대표 검찰 재고발-공정위』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일자 종합면)

내 용 : 한라상조 9월 9일자 대검찰청 재 고발 - 재심요청 수용했으나 재심결과도 일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한라상조(주)가 상조업 광고를 하면서 계약실적, 회사연혁을 허위광고하고, 소속 방문판매원의 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한라상조(주)(울산시 중구 성안동 소재)에 대해 지난 9월 9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다.

지난 6월 17일자 공정위가 똑 같은 이유로 고발과 시정안을 조치하자 한라상조(주) (대표 박○○)는 시정조치와 검찰 고발에 대해 재심을 요청 공정위가 재심을 받아드려 3개월여 동안 심도 있는 심의 결과 8월 30일에 최종 확정 6월 17일자

조치와 똑같은 결과로 나와 지난달 9월 9일에 대검찰청에 다시 한라상조(주)와 박○○ 대표를 고발하였다.

공정위 조석진(부산공정위소비자과) 조사관에 의하면 재심을 공정위가 다시 받아들인 건 충분한 시간으로 다시 재심을 하여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 예상되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재심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한라상조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초기화면에 지난 9월 5일자 “H상조 위장법인설립 고객돈 빼돌린 의혹”, 10월 1일자 “한라상조와 박○○ 대표 검찰 재고발-공정위”라는 제목으로 한라상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9월 5일자 “H상조 위장법인설립 고객돈 빼돌린 의혹”의 제목으로 한라상조가 대리인을 내세워 고객돈을 빼돌리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J모 종합상조라는 법인을 설립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J모 종합상조와 한라상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0월 1일자 “한라상조와 박○○ 대표 검찰 재고발-공정위”의 제목으로 한라상조가 지난 9월 9일에 재심결과에 따라 대검찰청에 다시 고발당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한라상조가 지난 6월에 시정명령을 받았던 의결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공정위의 고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8월 18일 공정위에서는 한라상조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일부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현재 재심되는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고발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각하되어 6월에 의결되었던 시정명령 내용에 따라 재고발이 아니라 처음으로 고발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가) 보도문

- 제 목 : 한라상조 관련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5일자 「H상조 위장법인설립 고객돈 빼돌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한라상조가 고객돈을 빼돌리려는 시도로 ‘J모 종합상조’ 법인을 설립하여 한라상조 대표가 차명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한라상조에서는 ‘J모 종합상조’ 법인의 실질 대표가 한라상조 전직 임원일 뿐 ‘J모 종합상조’와 한라상조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나) 보도문

- 제 목 : 한라상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내 용 : 10월 1일자 「한라상조와 박○○ 대표 검찰 재고발-공정위」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 취재후 공정위가 지난 6월 17일에 허위광고 및 방문판매법 위반과 관련해 한라상조에 대해 내린 시정조치가 확정되어 한라상조주식회사와 박대표를 재고발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공정위의 고발은 지난 9월 7일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더불어, 한라상조에서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은 지난 2006년 9월과 2008년 4월에 이뤄진 시정조치로,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미 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각 보도문을 2008년 11월 28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상조뉴스> (가)보도문을 2008년 9월 5일자 조정대상기사(「H상조 위장법인설립 고객돈 빼돌린 의혹」)의 페이지 하단에, (나)보도문을 2008년 10월 1일자 조정대상기사(「한라상조와 박○○ 대표 검찰 재고발-공정위」)의 페이지 하단에 각각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상조뉴스 : 『한라상조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8일자 종합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교회가 담임 목사의 전횡으로 인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교회 신축을 강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전주교회
(당회장 백 ○ ○)

피신청인 : 전북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D목사가 교회법을 어기고 전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D목사가 교회 신축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재산 3억 원을 기탁, 교인과 교회의 재정적 부담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교회를 금융기관에 저장잡힌 후 ‘교회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해 간 사실이 드러났다”며 D목사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후략)

보도내용

전북일보 : 『무리한 교회신축에 재정횡령 의혹까지, 목사 전횡에 일부 교회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8일자 2면)

내 용 : 도내 일부 교회가 목사의 전횡 문제때문에 구성원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주노회 소속인 전주 남전주교회가 교회 신축을 둘러싼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4년째 상고 고소를 불사하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6일 남전주교회 A장로(46)에 따르면 담임목사인 D목사(68)는 지난 2004년부터 교회 신축을 추진했으며, 자신의 사재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6억 원을 들여 건축한 교회를 지난해 말 완공했다.

이와 관련 D목사는 “대학 등 공직에서 물러난 뒤 목회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짓고 싶었다. 높이 짓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낮게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D목사는 성전 신축 초기부터 장로들의 “교회 재정사정으로 볼 때 무리”라는 지적을 외면한 채 신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회 구성원간 갈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A장로는 “B장로가 D목사의 신축계획에 반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C장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당회에서 성전신축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남전주교회 신축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 2008년 08월 08일자 2면 『무리한 교회신축에 재정횡령 의혹까지, 목사의 전횡에 일부 교회 ‘시끌시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전주교회(통합) 담임목사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교회가 30여 년간 무허가 건물 상태로 있었으며 그나마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천장에서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등 예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던 차에 ① 남전주교회는 당회에서 (별첨회의록) 당회의 의결을 통해 교회 신축을 결정하였기에 목사 단독으로 교회 신축을 강행한 것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② 갑작스러운 계획으로 교회 신축을 한 것이 아니라 (자료별첨) 3년 전부터 교회 신축을 계획하여 모든 성도들의 정성어린 성전 건축 헌금으로 2억 원 정도의 헌금을 적립해오면서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 왔음이 밝혀졌으며, ③ 담임목사가 3억 원을 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기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담임목사로서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④담임목사가 2억 원을 횡령했다는 C장로의 고소조차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이 이미 밝혀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남전주교회 신축관련 후속 보도
- 내 용 : 본보 8월 8일자 2면 『무리한 교회신축에 재정횡령 의혹까지, 목사의 전횡에 일부교회 ‘시끌시끌’』 제목의 기사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전주교회는 “교회신축은 건물이 낡아 비가 조금만 와도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등 예배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당회의 의결을 통해 신축을 결정하고 3년간 성도들의 성전 건축헌금을 2억 원 정도 적립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담임목사는 교회 신축과 관련하여 3억 원을 기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현금하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가 2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21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북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를 근거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피신청인은 이 보도문을 기사체 형식으로 변형할 수 있으나, 완성된 기사에 대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북일보 : 『남전주교회 신축관련 후속 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어린이집 교사들의 회식비 영수증을 아이들의 간식비로 지출한 것처럼 부정 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구립 로아어린이집 (원장 허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2

처리결과 :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9월 26일 21:00)

내 용 : ▷ANC : 서울의 일부 구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간식비가 교사들 회식비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로부터 걷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빼돌린 곳도 있습니다. 신○○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

▷VCR :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이 아이들 간식비로 썼다며 제출한 영수증

입니다.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스파게티와 치킨 등 약 10만 원 어치를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회식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급식비 4천만 원 가운데 교사들 회식 등으로 천만 원 가량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김○○/어린이집 학부모 : “(아이가) 맨날 반찬이 깎두기래요. 나중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애들 먹여야 되다 보니까...”

불우이웃을 돕는다며 아이들에게서 5백 원에서 천 원씩 걷은 성금도 퇴직 교사를 위한 선물로 금반지를 사는 데 사용한 곳도 있습니다.

동작구 구립 어린이집 27곳 가운데 3곳에서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손○○ 의원/서울시 동작구 의회 : “원장이...운영비나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어야 하는 돈을 급간식비로 다 지출을 해 왔던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 “그건 저뿐만 아니라 동작구 시설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한테만 따지지 마십시오.”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공개되자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줄줄새는 어린이집 급식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5일자 구립어린이집 원장 간식비 유용의혹 보도 이후, 9월 26일자 사회면에 “줄줄새는 어린이집 급식비”라는 제목으로 동작구 구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간식비가 교사들 회식비로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고 방송하면서 스파게티, 치킨 등에 대한 지출영수증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고 동작구내 어린이집 건물화면을 내보내면서 자막에 ‘간식비로 회식’이라고 보도하는 등 아이들 급식비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회식을 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자료화면으로 나왔던 영수증에 서명된 어린이집은 아동급간식비로 교사 회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서상 교사당직자 급식비로 책정되어 지출된 영수증이며 아이들 급간식비로 지출한 영수증이 아니었으며, 방송에 보도된 어린이집 건물과 증거자료로 제출된 영수증의 어린이집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구립 로아어린이집

원장 허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 기 영
조정대리인 송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을 2008년 12월 5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기상정보 전)에 보도하되, 화면은 조정대상보도 중 신청인 관련 화면(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장면 등)이 나오도록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1) 제 목 : 동작구 어린이집 관련 반론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26일 「줄줄 새는 어린이집 급식비」 제하의 보도에서 서울 동작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이 교사들의 회식비 영수증을 아이들의 간식비로 쓴 것처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보도된 영수증은 교사들의 야근 식사비에 대한 것으로 예산서상 ‘당직근무자 급간식비’ 항목에서 집행된 것이며, 아이들의 간식비로 교사들이 회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해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7.

□

노인복지시설 간호사인 신청인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5인
피신청인 : 인천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인천신문 : 『“영락원 사태 市가 해결해야”』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1일자 4면)

내 용 :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인천시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 부도 이후 2년 4개월째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시 역시 손을 놓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30일 영락원 노조 관계자들이 김〇〇 시 여성복지보건국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태다.

영락원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락원 부도의 원인이 된 노인전문병원 건립 과정에서 건립비 은행대출을 승인, 사실상 영락원의 보증을 서 준 시도 책임을 면키 어려워 방만한 회계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관청들이 현재 영락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영락원은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채권압류를 당한 상태인데다 설상가상으로 영락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6명이 집단사표를 내 31일부터 지병이 있는 노인들을 돌봐줄 의료인도 없다.

영락원 관계자는 “시설종사자 200여 명의 임금은 물론, 580여 명의 노인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급해졌다”며 “누구든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〇〇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영

락원 현지조사에 나섰지만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시가 영락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다. 영락원의 채무는 둘째치고라도 노인들의 생활문제가 시급하지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렇다할 대안이 없다”며 “영락원 이사회가 급하게 다른 출연자를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영락원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0월 30일자 사회일반면에 『영락원 사태 市가 해결해야』라는 제목으로 영락원 간호사 6명이 집단 사표를 내 31일부터 지병이 있는 노인들을 돌봐줄 의료인도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 영락원 간호사들은 사표를 내지 않았으며 현재 계속 근무중임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인천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9일자 2면)

내 용 : 본보 지난 10월30일자 사회면에 ‘영락원 사태 시가 해결해야’라는 제목으로 영락원 간호사 6명이 집단사표를 내 31일부터 지병이 있는 노인들을 돌봐줄 의료인도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영락원 간호사들은 사표를 내지 않았으며 현재 계속 근무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서울예고가 일부 지원자의 지도강사를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위촉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으나, 문제가 된 강사의 채점결과를 제외하는 등 입시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서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3.

보도내용

한겨레 : 『췌! 레슨선생님이 입시 채점관이래』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1일자 9면)

내 용 : 서울예고 신입생 선발 실기시험 관리 ‘구멍’ 학교쪽 뒤늦게 두 명 채점 빼고 합격자 발표 탈락한 학생·학부모 “점수공개” 항의 빗발
예술계 특목고인 서울예술고가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 실기시험에서 지원자들을 개인지도했던 강사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이들이 매긴 점수를 제외하고 합격자를 선발했으나,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학교는 전국 예술고 가운데 서울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10일 서울예고 관계자와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5일 치러진 서울예고 성악·첼로 부문 실기시험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학생들을 개인지도해 온 최아무개 씨와 남아무개 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각각 27명씩을 뽑는 성악·첼로 부문 지원자 가운데는 최씨와 남씨에게서 성악과 첼로 개인교습을 받은 학생들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시험일에 학교에 찾아와 ‘지원자 일부를 개인교습한 강사가 채점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선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문제가 된 두 사람의 채점 결과를 제외하고 합격자를 선발했다. 서울예고는 이 때문에 애초 7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를 늦춰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 학교 조아무개 교감은 “실기시험 선곡은 6월에 이뤄지고 심사위원 위촉은 7월에 한다”며 “심사위원 위촉 전 ‘지난 6월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레슨을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성악 부문의 최씨는 7월 이후에도 계속 학생들을 지도해 왔으며, 첼로 부문의 남씨도 한 중학교의 레슨 강사로 등록하고 활동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가 사태 수습에만 급급해 두 채점관의 점수를 제외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선발관리위에서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외면당했다”며 “공정해야 할 입학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고 말했다. 탈락자 학부모들도 이날 학교를 찾아와 강하게 항의했다. 한 학부모는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 떨어진 학생들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채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몇 명의 학생이 해당 강사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았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입시부정 등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학교에서 사후 조치를 적절히 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 목 : 췌! 레슨선생님이 입시채점관이래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1월 11일자 사회면에 “췌! 레슨선생님이 입시채점관이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입시요강에 공지된 대로 2008년 11월 10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일정을 늦춘 것으로 오보하여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심사위원 위촉은 10월말에서 11월 초 입시 임박해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위촉하였다고 오보 하였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도 하였으나 2명의 채점자를 제외하고도 6명의 심사결과가 있었으므로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였고, 학부모들이 불공정 입시라고 항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2008년 11월 11일 9면 『췌! 레슨선생님이 입시 채점관이래』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예고는 입시요강을 통해 11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공지한 데 따라 예정대로 합격자를 발표했으

며, 심사위원은 통상 시험 3~4일 전에 위촉하기 때문에 7월에 심사위원을 위촉한 바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5일까지 (토요일 제외) 한겨레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위 보도문을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를

를 검색하면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이 함께 나타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비판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에 투신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Ⅷ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3.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생활고 비판, 일가족 3명 지하철역 투신』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8일자 11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3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

- 내 용 : 본지 2008년 8월 28일자 11면 「생활고 비판 일가족 3명 지하철역 투신」 제하의 기사와 관련, 가장인 여모 씨는 꾸준한 직장생활을 통해 안정된 수입이 있었으므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1월 21일까지 (토요일 제외) 서울신문 2면 혹은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서울신문의 통상적인 반론보도 제목의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21일까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 기사를 서울신문 DB에서 삭제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협조 요청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블로그·카페·웹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

니한다.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0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I (정정보도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7

청 구 명 :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 육○○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일보 : 『최진실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일자 연예면)

내 용 : [최진실 자살] 또...상처받은 별들 '극단적 선택' 신드롬

악성루머·악플에 예민해 우울증 빠지기 쉬워
최근 연예인 잇단 자살에 모방자살 확산 우려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소식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스타들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너머 '베르테르 효과'로 불리는 모방자살 현상까지 우려된다. 무엇이 그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가.

최진실의 죽음은 탤런트 안재환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준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일어났다. 두 스타의 자살에 앞서 지난해 초에도 가수 유니와 탤런트 정다빈이 연이어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었다. 유니는 2007년 1월 21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외할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스물여섯이던 유니는 섹시미를 강조했던 2집 발표 이후 성형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따른 인터넷 악플로 심적인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0일에는 귀여운 이미지로 사랑받던 배우 정다빈이 서울 삼성동 친구 집 목욕탕에서

목을 매 숨져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평소 활발한 이미지로 드라마에서도 주로 사랑스러운 역할을 맡아왔던 정다빈 또한 정신적 압박을 못 이겨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별한 자살 원인이 드러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을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신을 부검하기도 했지만 끝내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2005년 2월 22일에는 영화배우 이은주가 경기 분당의 자택에서 역시 목을 매 숨졌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태극기 휘날리며' 등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이은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자살과 우울증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은주의 자살 원인은 연기 부담, 경제적 압박 등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1995년 11월 그룹 듀스의 멤버인 김성재가 호텔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자살 추정)했고, 1996년 1월에는 가수 김광석과 서지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 지난 10월 3일자 연예면 '최진실 자살 충격' 제하의 기사에서 1995년 그룹 듀스의 멤버인 김성재 씨가 호텔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자살 추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확인 결과 듀스 그룹의 멤버였던 김성재는 숙소에서 오른쪽 팔목 윗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국과수의 사체 부검 결과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동물 마취제가 검출 되었고, 문제의 주사바늘 자국과 그 당시 사건 피고인이 동물 마취제 '졸레틸'을 모 동물 병원에서 사간 적이 있으며,

그 피고인이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어느 날 찾아와 약물을 사간 사실을 숨겨 달라고 했다는 동물 병원장의 자진신고로 타살이라는 의심이 짙어졌었고,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판사는 무기징역을 언도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관계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자살이라고 잘못 보도되어 고인에게 불명예를 끼쳤으며 그 유족들에게 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시인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정보도합니다. 저희 신문사에서는 차후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좀 더 세세한 면까지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면서도 바른 기사를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연예인 자살’ 관련 알립니다
- 내 용 : 본지 10월 3일자 연예면 ‘최진실 자살 충격’ 기사 관련, 95년 사망한 듀스 전 멤버 김성재 씨의 자살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검결과 일반약물이 아닌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있어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기소되었고,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12월 17일까지 한국일보 2면에 위 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는 한국일보의 통상적인 정정/반론보도문 크기로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을 이행하면서 일반인이 피신청인이

청인이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면에 ‘듀스 김성재’로 검색하는 경우 위 항의 기사를 포털 자체에서 도는 아웃링크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저희 한국일보는 지난 10월 3일자 연예면 보도와 관련해 故 김성재 씨의 유족께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예계 톱스타인 최진실 씨의 갑작스런 자살을 계기로 최근 2-3년간 계속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자살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기사를 기획·보도하였습시다만, 단순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고인의 사건에 대해 다소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유족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예부에서 연예인 자살사건과 고인을 연관시키지 않는 등 고인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6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하루 4시간에 불과하다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SBS-TV : 「뉴스추적」 프로그램 (2008년 9월 10일 23:05)

내 용 : ▷기자 : 지난 7월 1일 노인요양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총 비용의 80%를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서 경제적 부담없이 어르신들을 댁에서 혹은 시설에서 요양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자 : 중풍과 치매등 노인성 질환이 가정해체로까지 이어지면서 가정의 고통을 사회가 떠안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시행 두달.

▷남자 : 지금도 힘들지만은 앞으로 더 힘들겠지만 힘들어도 참고.

▷여노인 : 너 좀 와봐라. 엄마 와서 얼굴 좀 봐야지 나 죽겠다.

▷기자 : 과연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자리 잡아가고 있을까?

▷여자 : 일반이시면 본인부담금 20%해서 한 50-60만 원 예상하시면 돼요.

▷남노인 : 오고 싶긴 하지만 뭐 돈이 안 되니까.

▷기자 : 하루벌이도 빠듯한 서민에겐 그림의 떡인 본인부담금. 법 시행된 문을 닫은 시설도 생겼습니다.

▷여노인 : 나가라고 거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밥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여자 : 연세도 많으신데 갈데라고는 거기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시설을 닫게돼서. 너무 가슴 아프고 죄스럽고 그러네요.

▷기자 : 각종 불법 편법도 성행합니다.

▷교육원 여자 : 출석은 딱 반이죠. 실습도 저희가 좀 조정을 해드려서 3-4일만 나가실 수 있게끔. 서류 조작이 들어가잖아요.

▷여자 : 2시간 서비스 대상자인데 4시간을 신청해서 수가 나온 돈을..

▷여자 : 이거 공단이 알면 뒤집어질 애기지. 보

험 재정 누수잖아.

▷기자 : 무엇이 문제인지 또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제479회 나라가 효자다?

▷손○○ 기자 : 평소 건강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고 거동도 불편해지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7월부터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4.05% 올려 마련한 돈으로 중풍이나 치매에 걸린 어르신을 우리 사회가 돌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얘기해보겠습니다.

▷기자 :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미용실.

▷유○○/서울 수유동 : 벌써 몇 년을 이렇게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진짜 생활에도 진짜 힘들어요.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디서 생활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일도 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기자 : 예순살이 다 된 한 남편이 병에 걸린 부인을 4년째 매일같이 하루 온 종일 돌본다는 얘기였습니다. 돈을 벌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형편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 : 장기요양 그것도 지금 여기 1등급으로 이게 됐는데 불구하고도 이 아저씨가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자 : 다른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이 부부가 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버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취재진 : 노인장기요양보험 생기면서 혜택이 많이 늘었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서울 수유동 : 그런 것 있으면은 뭐해요? 이 사람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는데.

▷취재진 : 정부는 잘되고 있다고 하던데.

▷여자/서울 수유동 : 하하하. 뭘 잘되고 있어요? 그렇게 까지는.

▷여자/서울 수유동 : 실질적으로는 안되요. 전혀 안되요. 진짜 안 됐어요 진짜.

▷기자 : 가장 몸 상태가 안 좋아 가장 많은 지원이 있다는 1등급. 그런데 이 부부는 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 취재진은 이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루게릭 병. 근육에 점점힘이 없어져 결국에는 모든 근육을 움직일 수 없

게 되는 병입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눈. 때문에 부인은 눈으로 말을 합니다.

▷고○○/서울 수유동 : 내가 이런 것 마음 같은 걸 주다가 잘못 다른 걸 하잖아요. 눈으로 저기 하거든요. 잘 못한다고.

▷기자 : 남편은 부인 옆을 잠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부인이 24시간 의지하고 있는 호흡기에 물이나 가래가 차게 되면 자칫 목숨이 위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 : 죽을 고비를. 병원에서 퇴원시켜서 있으면서도 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기자 : 이렇게 딱 붙어 있기를 4년째, 도저히 돈을 벌러 나갈 수가 없는데 생활비는 줄지 않았습시다. 부인의 식사는 환자용 미음입니다. 근육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먹지 못합니다.

▷취재진 : 하루 세끼를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하신 거죠?

▷고○○ : 지금 한 3년동안. 아무도 없으면은 못하는 거지요, 식사를.

▷기자 : 환자용 미음은 한 달치 한 박스에 4만원짜리 일본 제품입니다. 부인이 아프기 전 제법 살만할 때에 장만한 집은 용자금 상환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고 병원에 다닐 장애인 차량 할부금, 증류수, 식염수, 휴지등 호흡기에 들어 가는 비용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식들의 도움은 없을까? 모두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도움이 넉넉지 못 하다고 합니다. 같이 사는 딸이 벌어드는 월급 100여만 원이 유일한 수입입니다.

▷고○○ : 아들 둘은 지금 나가서 살고 있는데, 결혼해서 먹고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힘들고, 딸이 직장 다니면서 와서 쌀 사다줘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기자 :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장기간 요양에 따른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해 준다고 설명해 왔습시다. 식사 도움, 화장실 도움, 목욕, 간호 서비스도 지원해 준다고 밝혀왔습시다. 그런데 왜 이 부부는 이 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걸까? 1등급인 부인의 경우 요양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을 시설에 보내기 미안해 몇 날 몇일을 고민했고 몸은 안 움직이지만 정신은 멀쩡한 부인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봤다고 합니다.

▷고○○ : 집사람한테도 이야기를 병원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꺼내기가 무섭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구요. 그래서 가슴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내가 울길래 내가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눈물을 그치더라고요.

▷기자 : 알아본 시설의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80%를,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에 해당하는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은 고씨에게는 버거운 수준입니다.

▷고○○ : 보내도 내가 여기 나와서 만약에 일이라도 옛날처럼 일이 많은 것 같으면은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충당할 수 있는데, 내가 일을 한다 해도 내가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자 : 그렇다면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돌봐주는 제가 서비스는 어떨까? 부인을 맡겨 놓고 일을 하러 가면 되지 않을까?

▷고○○/서울 수유동 : 하루에 4시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일할 여건도 안 되고 그것 받아도 어차피 저는 같이 생활을 여기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자 : 정부가 지원해 주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는 하루가 4시간이 한도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노부부. 중산층이었던 이 부부는 사회 밑바닥으로 아주 빠르게 쓸려내려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고씨가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다는 얘기를 듣고 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시다. 복지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실습교육이 한창이었습니다.

▷박○○/서울시립 중계노인복지관 :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욕창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주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게 좋은데 그게 몇 시간 간격이요? 2시간.

▷고○○/서울 수유동 : 예 2시간.

▷기자 : 올해 59인 고○○ 씨 요양 보호사에 도전을 한 겁니다.

▷취재진 :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고○○/서울 수유동 : 그냥 할만해요.

▷취재진 : 조심스럽다거나 쉽지 않다거나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고○○/서울 수유동 : 집에서도 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부담이 안 됩니다.

▷기자 : 고씨가 뒤늦게 요양보호사에 나선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씨가 집을 비운 동안 누가 부인을 돌봤을까? 부인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나온 요양보호사들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고씨가 부담스럽다는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될까.

▷임○○/요양보호사 : 지금은 저희들이 이 가정 형편에 너무 힘들어서 받을 수가 없구요. 일어나가지고 이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다달이 적어 놓을테니까 일어나서 갚으라고. 그럴 거지?

▷기자 : 게다가 이들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무료간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본인 부담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도 계약한 4시간을 초과해 돌봐주는 것도 새 법에 따르면 모두 불법입니다.

▷임○○ : 삭막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지요. 그 시간 되면은 그냥 딱 멈추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밥시간이 넘었는데도 그냥 밥을 안 쥐버리고 딱 가버리고. 만약에 똥을 썼는데 기저귀도 안 채워주고 4시간 딱 되면은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방문요양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하루 4시간. 비용은 4시간에 39,500원인데 이 가운데 85%는 정부가, 1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문제는 4시간을 넘으면은 100% 본인 부담이라는 겁니다. 고씨처럼 온 종일 간병을 받으면 개인 부담금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씨가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면은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본인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씨는 규정상 그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이른바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무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고 결국 보다 못한 요양보호사 3명이 봉사에 나선 겁니다. 새로 시작된 제도를 통해 결국 자신이 요양보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원래대로 아내를 돌보고 요양보호사로 봉급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족을 돌볼 경우 하루 2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남짓 벌 수 있습니다. 고씨는 보호가 필요한 83살의 노모를 함께 모시고 삽니다. 늦은 저녁시간 고씨가 노모와 앉아 식사를 합니다. 노모는 혼자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83) : 그거 뭐, 말로 못하지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병이 더 됐지. 이렇게 며느리 때문에 더군다나 신경 쓰고 노심초사를 하니까 몸이 낫지를 않고 점점 더 허약해지는 거지.

▷기자 : 식사 내내 모자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고○○ : 지금 자기한테 못해 준 것 미안해.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간병해 줄 게.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지금도 힘들지만은 앞으로 더 힘들겠지만은 힘들어도 참고, 하지 못한 것을 자기도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제일 걸리는 게 자기한테 해주지 못 했기 때문에, 더 미안해.

▷기자 : 부인은 오늘도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기자 :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고씨 부부가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지만 국민의 돈인 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도 민간에만 맡겨버린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자라는 요양보호사를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해 신고만 하면은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국가인증자격증인 요양보호사는 교육만 이수하면 시험 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한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에 전화 상담을 해봤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의 문제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사에서는 2008년 9월 10일 뉴스 추적에서 “나라가 효자다?”라는 제목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본 방송사의 방송은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바로 잡습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이용을 1일 4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없으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충주시 소재 요양시설인 중원 실버빌리지의 폐쇄는 아무 관련이 없고, ③정부가 모자라는 요양보호사를 단기간에 양성하기 위해 신고

만 하면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며, ④ 복지부는 녹화·녹음방식의 인터뷰만 사절하였을 뿐이며 취재기자를 직접 면담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반론보도문
- 내 용 : 저희 뉴스추적에서는 지난 9월 10일 「나라가 효자다?」 제하의 방송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시간·횟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의 11월 현재 월 평균 본인부담액은 약 8만 원 수준으로 외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8월 조사결과 이용자의 8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11일까지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 말미(스텝 스크롤이 나오기 전 이어야 함)에 위 항의 내용을 진행자(기자) 중 1인으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송하되, 화면은 진행자(기자)를 비춰주는 동시에 제목(노인장기요양보험 반론보도문)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계속 명기하고, 조정대상방송(「나라가 효자다?」) 화면이 상단 좌측 또는 우측 박스 안에 계속 표시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내용과 같이 해명한다.

본 방송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행 초기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보험)의 허와 실을 취재 보도함으로써 실시 초기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좀 더 개선 보완해보자는 공익적인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방송이 애초 보험의 취지 자체에 공감하고 제도가 잘 정착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기획되었고, 서민, 저소득층, 몰락한 중산층처럼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대책과 함께 요양보호사, 요양시설 등 새로 짜여진 '시스템'의 문제를 적절히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양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보호자의 24시간 간병을 받고있는 루게릭 환자의 사례가 재가서비스제도의 취지와 다소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뉴스추적에서는 복지수요자의 권리 향상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도 중장기 개선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요양서비스 질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향후 저희 프로그램에서 노인복지문제를 다룰 경우 책임있는 복지부 관계자의 진지한 반론과 해명을 자세히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 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뉴스추적」 프로그램 (2008년 12월 10일 23:05)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포천등기소가 법인인감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규정에도 없는 개인인감증명서를 수 년 동안 요구해 왔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소장 정 경 환)

피신청인 : 현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현대일보 : 『제 업무도 모르는 포천등기소』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5일자 1면)

내 용 : 의정부 지방법원 포천등기소가 수 년 동안 법인 인감을 바꾸려는 시민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개인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요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상업등기법 규칙 제36조에 의하면 법인 인감을 바꾸고자 할 때는 ‘새 도장, 옛 도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존 등기부등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인감개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근에 법인인감을 바꾸러 포천등기소에 들른 장모(56, 포천 D실업 대표이사) 씨는 “본인이 왔는데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며 “수차례 문의하고 나서야 담당 직원이 고압적인 자세로 ‘등기절차총론’을 보여줬는데 뭐가 뭔지 몰라 그냥 개인인감증명서를 떼다 줬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 업무도 모르는 포천등기소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5일자 사회면에 “제 업무도 모르는 포천등기소”라는 제목으로 포천등기소에서 법인이 법인인감을 바꾸려고 할 때 규정에도 없는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를 수 년 동안 요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도와 당시 담당직원이 고압적인 자세로 대표이사 개인(個人)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인감증명서를 떼다줬다는 보도와 피신청인이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결과 포천등기소의 잘못을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상업등기규칙 제 36조 제3항에 보면 개인(改印)신고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대표이사 개인(個人)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을 경

우 신청서에 종전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인데, 2008년 11월 5일 보도한 기사의 D실업의 경우 첫째에 해당하여 종전 법인인감을 분실하여 개인(改印)신청을 하겠다는 경우로 대표이사의 개인(個人)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포천등기소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안내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個人)인감증명서를 떼다줬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08년 10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법인인감 개인(改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인(個人)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위의 첫 번째 경우로 대표이사의 개인(個人)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법원행정처에 질의를 할 때 두 번째의 경우로 질의를 하여 포천등기소가 절차 안내를 잘못된 것처럼 보도한 잘못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제 업무도 모르는 포천등기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5일자 사회면에 『제 업무도 모르는 포천등기소』라는 제목으로 포천등기소에서 법인이 법인인감을 바꾸려고 할 때 규정에도 없는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를 수년 동안 요구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도와 당시 담당직원이 고압적인 자세로 대표이사 개인(個人)인감증명서를 요구해서 인감증명서를 떼다줬다는 보도와 피신청인이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결과 포천등기소의 잘못을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상업등기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改印)신고서 신청방법이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종전 법인인감이 분실 등으로 없을 경우 개인(改印)신고서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대표이사 개인(個人)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이 있을 경우 신청서에 종전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인데, 2008. 11. 5. 보도한 기사의 D실업의 경우 첫째에 해당하여 종전 법인인감을 분실하여 개인(改印)신청을 하겠다는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個人)인감증명서가 첨부

부되어야 하므로 포천등기소는 상업등기규칙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안내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해하는 현대일보 2008년 11월 25일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법인 인감갱신 때 규정에도 없는 개인인감증명서 요구)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현대일보 : 『제 업무도 모르는 포천등기소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울산지방경찰청 직원간담회가 청장의 일방적인 훈시와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울산지방경찰청 (청장 윤 시 영)

피신청인 : 울산신문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울산신문 : 『눈 높이 못 맞추는 울산경찰청장』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2일자 5면)

내 용 : 사회 전문야에 걸쳐 탈권위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여전히 권위적인 전시성 행사를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장과 직원간의 간담회 좌석배치의 경우 청장을 단상 위에 앉도록 하고 직원들은 아래에 앉도록 해 수평적 소통이 이뤄져야 할 간담회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남부경찰서에서 ‘새로운 자세와 다짐’을 위한 ‘지방청장, 현장 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보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치안성과지표와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일방적 훈시로 끝나 ‘간담회’라는 이름을 무색케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준비단계부터 ‘현장직원과의 간담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새로 지어진 넓은 강당에는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과 계장, 지구대장, 방순대장, 소대장 등 무려 16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해 청장과 직원들간의 소탈한 대화 자체가 힘들었다.

또 청장의 자리는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강당 단상에 따로 마련돼 수평적 대화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간담회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 청장의 권위를 높이는데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90여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 중 80여 분 동안 청장의 훈시로 진행됐고, 나머지 10여 분도 모처럼 찾아온 청장과의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고충을 털어놓기 보다는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는 등 계급사회 특유의 모습을 그대로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직원들과의 간담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말연시 검거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청장님의 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은 “연말연시에 치안을 좀 다잡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급사회 특성상 명석을 깔아주면 말을 잘 못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8년 11월 12일자 5면에 『눈높이 못 맞추는 울산경찰청장』이라는 제목 및 <수직·일방적 훈시... ‘직원과의 간담회 무색’』이라는 부제로 울산경찰청이 권위적인 전시성 행사를 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강당 단상에 따로 청장의 자리를 마련하여 청장의 권위를 높이는데만 치중했으며, 직원들이 고충을 털어놓기 보다는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는 등 계급사회 특유의 모습을 그대로 내비쳤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선진일류경찰을 향한 새로운 자세와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 역동적인 울산치안 활동상을 구현하기 위해, 일선 직원들과의 만남을 가짐으로써 성과지표 향상 및 연말치안을 완벽하게 하여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짐의場과 직장훈련을 겸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1)성과지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세와 다짐을 위한 일선경찰서 방문이었으며, 2)좌석배치와 관련하여 회의장 공간구조상 울산경찰청장이 단상자리에 위치한 것이 권위적인 것과는 무관한 것이며, 3)회의 중 직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권위적이거나 전시성 행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2일자 5면 “눈높이 못 맞추는 울산경찰청장” 제하의 기사에서 울산경찰청과 직원간의 간담회가 청장의 일방적인 훈시와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장은 해당 간담회는 성과 지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자세와 다짐을 위한 일선경찰서 방문을 겸한 것으로, 회의 중 직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12월 8일까지 울산신문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수직·일방적 훈시... ‘직원과의 간담회’ 무색”)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울산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5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국시사정보신문 창간 3주년을 기념하는 발행인의 인사말에서 기존 지역신문사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협박을 극복하였다고 표현하여 거창지역 신문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2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거창신문사 (대표 민 ○ ○) 외 4인

피신청인 : 한국시사정보신문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8.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시사정보신문 : 『창간 3주년에 즈음하여...』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2일자 3면)

내 용 : 정론직필이란 언론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명실상부한 서북부경남 대변지를 자처하며 출발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창간 3주년을 맞아 독자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본지를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는 애독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지역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디디려 할 무렵 주위의 만류와 두려움도 많았던 게 사실이나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역을 대표하는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과 정론 직필을 통한 언론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독자여러분들에게 올곧은 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비

록 가시밭길의 험로인줄 알면서도 이 길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출발과 함께 일부 기존 지역신문사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본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본지가 창간 3주년을 맞이까지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던 게 사실이며 독자 여러분께 다소나마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시사정보신문은 창간 3주년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호의 글자가 많아 혼돈되는 경우가 많다는 상당수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시사”로 개명,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역최초로 지역을 넘어 전국지를 지향하는 유일한 지역신문답게 각 읍면을 연결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이들 지역과 연계해 폭 넓은 읽을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사과)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22일자 3면(인터뷰)에 “창간 3주년에 즈음하여...”란 제목의 발행인(백강희) 인사말을 통해 “일부 기존 지역신문사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이라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거창신문을 비롯한 거창의 지역신문사(아림신문, 서경신문, 경서신문, 군민신문)들은 피신청인인 한국시사에 대한 어떠한 견제나 협박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거짓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각 지역신문사와 대표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사과하고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한국시사정보신문 : 『사과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일자 3면)

내 용 : 한국시사는 지난 9월 22일자 3면(인터뷰)에 ‘창간 3주년에 즈음하여...’란 제목의 발행인(백강희) 인사말을 통해 “기존 지역신문사들이 끊임없는 견제와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이라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거창신문을 비롯한 아림신문, 서경신문, 경서신문, 군민신문 등 지역신문사들은 한국시사에 대해 어떠한 견제나 협박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신문사와 대표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사과하고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회관 신축공사와 관련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채 대의원 대회를 열고, 특정업체와 결탁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강 ○ ○)
피신청인 : 경기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기신문 : 『경기교총 회관 신축 결탁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7일자 1면)

내 용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사업추진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채 공사추진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경기교충은 신축공사 대의원회의 이전에 이미 이 회관 신축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와 결탁의혹을 사고 있다.

16일 경기교육청과 수원시 팔달구 등에 따르면 경기교충은 지난 9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42-98 4천521㎡부지에 도지원비 30억과 경기교충 회비 32억 등 총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해 내년 11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교충은 지난해 10월 22일 경기교충 신축공사추진 찬반결의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제83회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신축공사와 시공사 동인(주)을 결정했다.

당시 대의원회의의 표결결과 총대의원 111명 중 51명이 참석했고 그중 36명이 찬성, 1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는 결과가 나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적법한 절차에 의거 경기교충회관 신축 중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17일자 1면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충)가 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기 이전에 특정업체와 결탁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고, 대의원회의의 진행과정에서도 정관14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반수 출석이 안 되는 데도 15명의 위임출석을 인정해 출석인원으로 바꿔 추진했으며 이는 부당한 행동이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17일 개최된 경기교충 대의원회의는 재적대의원 110명 중 출석의원 59명, 출석위임 7명 등 총66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위임출석은 정관 21조에 의거 적법하게 인정되는 사항입니다.(정관 14조, 21조) 표결진행시에도 출석위임 7명을 포함 58명이 표결에 참석하여 찬성 36명, 반대 14명, 기권 1명(출석위임은 출석인원으로 치나 표결권이 없으므로 표결에 있어선 무효에 해당됨)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와 투표대의원의 과반수인 29명을 넘는 36명의 찬성으로 “경기교충회관 신축추진계획(안)승인”건은 적법한 의결절차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또

한 시공업체 사전선정과 결탁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보도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102,89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경기교충 회관 신축 업체 결탁 의혹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7일자 1면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충)가 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대의원회의 승인이 있기 이전에 특정업체와 결탁해 시공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고, 대의원회의 진행과정에서도 정관14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반수 출석이 안된 상태에서 경기교충회장과 사무총장 및 대다수 대의원들이 위임출석이 안 되는 데도 15명의 위임출석을 인정해 출석인원으로 바꿔 추진했으며 이는 부당한 행동이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 17일 개최된 경기교충 대의원회의는 재적대의원 110명 중 출석의원 59명, 출석위임 7명 등 총66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위임출석은 정관시행세칙 21조에 의거 적법하게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표결진행시에도 출석위임 7명을 포함 58명이 표결에 참석하여 찬성 36명, 반대 14명, 기권 1명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와 투표대의원의 과반수인 29명을 넘는 36명의 찬성으로 “경기교충회관 신축추진계획(안)승인”건은 적법한 의결절차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또한 시공업체 사전선정과 결탁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보도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 2008년 11월 26일까지 1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측의 경기교충회관 신축관련 기고문을 요청이 있을 경우 1회 게재해 주는 것으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기신문 : 『경기교총 회관신축 업체 결탁 의혹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

년 11월 25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에 투신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Ⅸ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49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합뉴스 : 『‘생활고’ 주부, 두 자녀와 지하철역서 투신』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3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지하철역 ‘투신’ 관련 국민권익위 진정

• 내 용 : 지난 8월 27일 개화산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홍모(30.여) 씨 ‘투신’ 사망 사고와 관련, 남편인 여모 씨는 최근 국민인권위원회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경찰이 예단을 갖고 사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여씨는 “빛이 전혀 없고 사고 당시 월 수입이 230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투신했다’고 경찰이 언론에 말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사고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신이 아니라 실족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홍씨 투신 사건을 자살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사건 종결 처리를 의뢰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10일 이전에 연합뉴스 홈페이지 사회면에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원 조정대상 기사를 연합뉴스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합뉴스 : 『지하철역 ‘투신’ 관련 국민권익위 진정』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에 투신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X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Y T N : 「뉴스 창 5부」 프로그램 (2008년 8월 27일
18:00)

내 용 : 〈2008서울조정3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3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지하철역 투신’은 실족 사건”
- 내 용 : 지난 8월 27일 개화산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홍모 씨 ‘투신’ 사망 사고와 관련해 남편인 여모 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경찰이 예단을 갖고 사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씨는 “빛이 전혀 없고 사고 당시 월수입이 230

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투신했다’고 경찰이 언론에 말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사고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투신이 아니라 실족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홍씨 투신 사건을 자살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사건 종결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10일까지 YTN 뉴스 프로그램에 자막으로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원 조정대상 기사를 YTN DB에서 삭제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에 협조 요청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블로그, 카페, 웹 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Y T N : 「YTN 24」 프로그램 (2008년 12월 8일
12:00, 14: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거액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비관한 신청인의 부인이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에 투신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우발적인 사고였을 뿐 자살이 아니다 X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여 ○ ○
피신청인 : 뉴스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0.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뉴스앤뉴스 : 『생활고 30대 주부, 두 자녀와 지하철
투신』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7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3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3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의 입증자료를 참조하여 후속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5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뷰스앤뉴스 홈페이지(www.viewsnnews.com) 사회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

상기사를 뷰스앤뉴스 DB에서 삭제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뷰스앤뉴스 : 『[정정]“<연합뉴스>의 ‘30대 주부, 두 자녀와 투신’은 오보”』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8일자 사회면)

내 용 : 본지가 지난 8월 27일 게재(현재 기사 삭제)한 <연합뉴스>의 <생활고 30대 주부, 두 자녀와 지하철 투신> 기사에 대해, 피해자 홍 모씨의 남편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아래와 같이 알려왔다.

피해자 홍모씨의 남편 여모 씨는 28일 당시 사고를 당한 홍모 씨와 자녀들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게 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비관’이 아닌 단순 실족으로서 <연합뉴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

신청인들이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용의자의 말을 듣고 강력사건을 단순 음주사건으로 축소 처리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외 5인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경찰 ‘단순 음주사건’ 처리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경찰이 20대 남자가 야구방망이로 동승한 여성을 협박해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새벽 3시 14분쯤 서울 도곡동 W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이 곳에 살고 있는 김모(29) 씨가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협박해 뒤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주차장 한바퀴를 돌았다.

이 행각은 자신의 차에서 당뇨약을 찾던 A씨가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중략)

경비원은 “도곡지구대 소속 경찰 4명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자가 트렁크 안에 있었고, 김씨는 여전히 찌그러진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김씨가 경찰을 발견하자 ‘내가 국회의원 ○○○의 아들이다.’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의 말을 들은 경찰은 30분도 안돼 현장을 정리하고 떠나려 했다.”면서 “갑에 질려 차 안에 숨어 있다가 경찰의 행태를 참을 수 없어 차 밖으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CCTV를 보고 확인하자고 했고, 경찰들도 CCTV 장면을 분명히 함께 봤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오히려 ‘음주 측정만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CCTV에는 김씨가 여자를 트렁크에 태우는 장면이 원거리로 포착돼 있으며, 주차장 내 주행과 사고 후 야구방망이를 들고 확인하는 장면까지 찍혀 있다.

경찰에 인계된 김씨는 단순 음주운전 피의자로 분류돼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트렁크에 실렸던 여성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았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의원아들’ 봐주기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지는 2008년 11월 16일자 인터넷판에 『여성감금 ‘의원아들’ 봐주기 의혹』, 2008년 11월 17일자 사회면에 『경찰 ‘단순 음주사건’ 처리 파문』이라는 제목에 『피의자 ‘의원아들’ 밝혀 의혹』이라는 부제로 112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용의자가 자신을 모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말하자, 경찰관들이 국회의원 아들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축소하여 단순 음주 사건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도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 및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신청인들은 물론 도곡

지구대가 중대한 업무태만을 행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납치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단지 용의자가 현장에서 음주 교통사고(현장 경비실 CCTV 확인 결과)를 야기한 단서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음주 교통사고로 입건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출동현장에서는 확인할 사항이 아니었고, 서울신문의 의혹 보도 이후) 확인된 사실이지만 당시 용의자는 국회의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여성감금 ‘의원아들’ 봐주기 의혹』 기사에서 ‘국회의원 아들’ 봐주기라는 서울신문의 의혹제기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지난 2008년 11월 17일자 사회면 『경찰 ‘단순 음주사건’ 처리 파문, 피의자 ‘의원아들’ 밝혀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 납치협박 용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말하자 단순 음주사건으로 축소 처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치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추후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국회의원 아들이 아니었으며, CCTV 확인결과 음주 교통사고 단서를 확인하여 입건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26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서울신문 (2면/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서울신문의 통상적인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 크기로 게재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co.kr)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며,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엠파스, 네이트온 등)에 협조 요청하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블로그·카페·웹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 가판 및 인터넷판 기사(제목: 여성감금 ‘의원아들’ 봐주기 의혹)가 삭제될 수 있도록(제목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6일자 2면)

내 용 : 본지 11월 17일자 가판 『여성감금 ‘의원아들’ 봐주기 의혹』 및 본판 『경찰 ‘단순 음주사건’ 처리 파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관할 도곡지구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감금 사건이 아닌 단순 음주 교통사고라고 판단하고 이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당시 국회의원 아들인 것으로 전해져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부분은 본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콜트악기사가 신청인 노조의 파업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공장을 폐업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지회장 방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1.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보도내용

동아일보 : 『7년 파업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08년 8월 2일자 11면)

내 용 : 전기-통기타 매출 세계 1위 흔들... 부평공장 문닫기로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주) 부평공장.

회사 정문에는 경영진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회사에 들어가 보니 정리해고자들이 농성하는 천

막이 설치됐고, 공장 곳곳에 경영진에 대한 욕설과 투쟁구호가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다.

이한수 생산부장은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왔게 됐다”며 쓸쓸해했다. (중략)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가 누적돼 더는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게 된 것. 노조는 2002년 금속노조연맹에 가입한 뒤 매년 임금인상, 노조활동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잦은 파업을 했다.

박사장은 노조가 44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2005년 8월 사실상 공장에 대한 미련을 접었다. 세계적인 전기기타업체이자 최대 바이어인 미국 팬더사 관계자가 공장을 방문하기로 해 파업하던 노조에 “하루만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 달라”고 애원했으나 노조는 이를 묵살했다. 일부 노조원은 그에게 욕설과 함께 승용차에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줬다.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해외 바이어들이 고개를 돌렸다. 팬더사를 비롯한 주요 바이어들이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바꿨다. 경영은 적자로 돌아서

2006년 18억 원, 2007년 25억 원으로 적자액이 늘어났다.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액은 52억 원에 이른다.

결국 박사장은 지난달 경영진 회의를 소집해 해외 공장은 놔두고 부평공장은 폐업하기로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인천 두 기업 엇갈린 운명 중 7년 파업의 ‘눈물’』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8월 2일 11면 『인천 두 기업 엇갈린 운명 중 7년 파업의 ‘눈물’』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콜트악기가 한국공장의 문을 닫은 이유는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가 누적돼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콜트악기는 수 년간 국내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싼 임금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중국 공장만을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회가 파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부분파업이었기에 생산성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매년 매출액이 증가했고, 10년 간 평균 1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다만 부평공장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물량을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노조원이 욕설하고 차에 침을 뱉는 등 도욕을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본지 기사로 인해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3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지회장 방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 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 A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동아일보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2. 피신청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본지 2008년 8월 2일자 11면 「7년 파업의 ‘눈물’」 제하의 기사와 관련, 신청인 노조 측에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의 취재 과정에서 신청인 측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관련 보도에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측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5.

<별 지>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8년 8월 2일자 11면 「7년 파업의 ‘눈물’」 제하의 기사와 관련, 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며, 지회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파업으로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전체의 매출은 확대되어 왔고, 바이어들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노조원이 바이어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콜트악기사가 신청인 노조의 파업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공장을 폐업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지회장 방 ○ ○)
피신청인 : 한국경제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경제 : 『“7년째 파업·투쟁가만 불러대니... 세계
1위 기타업체 한국 떠난다”』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28일자 2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5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53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2008년 7월 28일자 2면 “7년째 파업·투쟁가만 불러대니... 세계1위 기타업체 한국 떠난다” 제하의 기사에서 노조의 파업 때문에 해외바이어들이 떠나고 폐업하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는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경제> A2면에 2008년 12월 12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경제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경제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1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6
청 구 명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전주 MBC-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4.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전주MBC-TV : 「6시저녁뉴스」 프로그램 (2008년 9월 18일 18:00)

내 용 : 중국 유학생들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준 브로커와 가짜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중국 유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익산시 팔봉동 58살 최모 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학생 22살 김모 군 등 33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재중동포 33명에게 대학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한 사람당 70만 원씩 2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재중동포들은 도내 5개 대학과 충청지역 대학에 입학했지만 일부는 학교를 그만두고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MBC 전주방송국은 지난 2008년 9월 17일 저녁 뉴스에서 익산 팔봉동 58세 최모 씨가 재중동포 학생 33명에게 대학에 필요한 위조서류를 만들어 주고 한 사람당 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고 방송한 바 있었으나 검찰 조사결과

이는 사실과 달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정보도 하는 것이며 당사자에 확인 없이 잘못 보도 한 것에 대하여는 정중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5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중국유학생 관련, 최모 씨 ‘무혐의’
- 내 용 : 지난 9월 18일에 보도한 “익산시 팔봉동 58세 최모 씨가 재중동포 학생 33명에게 대학에 필요한 위조서류를 만들어 주고 한 사람당 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것과 관련,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전주MBC-TV 2008. 12. 3. 「6시저녁뉴스」 프로그램 시간에 위 보도문 내용을 방송진행자에게 낭독하게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주MBC-TV : 「6시저녁뉴스」 프로그램 (2008년 12월 3일 18: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교역자 퇴직연금을 운용할 보험사를 독단적으로 선정한데다 손실까지 보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이사장 신 ○ ○)

피신청인 : 기독교타임즈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기독교타임즈 : (1) 『꼬리무는 의혹, 선정과정~리베이트까지』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8일자 7면)

내 용 : 지난달 30일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안산1대학을 방문한 총대들은 한참을 기다리고 받은 회의 자료집에 두 페이지(171, 172)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 문제의 페이지에는 신은급법과 관련된 감사보고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국은 왜 신은급과 관련된 목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본지는 신은급법과 관련된 의혹의 진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은급 관련 기사를 기획했다.<편집자>

감리회 전체 5,500여 명 목회자의 노후와 미래가 달린 신은급법의 보험상품과 보험사 결정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회사간의 경합과 입찰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3년 전부터 준비된 보험사 선정과정에서 회사와 회사간의 공정한 계약이 아니라 전문 중개업체(일명 브로커)가 개입돼 사실상 보험사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본부의 실행위와 이사회는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감리회 교역자 은급재단 제 38회 정기이사회가 지난해 12월 4일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제27회 입법회의에서 의결된 교역자 은급법 및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연금구조 측면(은급법령 적합성)과 교역자 연금 수혜시 수령액 측면(연금수익성) 모두에서 미래에셋 생명의 감리연금 및 감리변액 상품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사무국 의견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신은급법’ 시행자를 ‘미래에셋’으로 최종 확정했다. 각 사가 제출한 연금 및 변액 연금상품 제안서 비교표에 따른 종합평가 의견은 미래에셋(A), 교보생명(B-), 푸르덴셜생명(C-), PCA생명(C)로 미래에셋이 ‘절대 우위’의 평가를 받았다.

전문 브로커 개입...이사회는 방망이만 (중략)

미래에셋 담당자가 알려준 원모 부장은 자신을 (주)세이버스라는 금융컨설팅 회사의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원씨는 “3년 전 성결교회에 보장성 보험 컨설팅 업무를 맡았다가 그 담당자로부터 본부 김모 부장을 소개받아 감리회 은급법을 맡게 됐다”며 “당시 메트로와 미래에셋 등에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타진해 올해 초 공청회가 끝난 후 미래에셋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감리회 본부와 세이버스 측이 이미 지난 해 초 보험사 결정을 끝냈다는 얘기다.

‘천문학적’ 리베이트? ... “두 대표 이미 만났다”

미래에셋은 회사 차원에서 감리회 신은급법 사업에 관여해왔다. 원 부장은 “대표이사가 감독회장

을 방문했고 상무 차원에서 회사 전체가 달라붙어 업무를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며 “이 정도 규모면 일반 상품으로도 큰 사업이라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20년 만기 3,000억, 연간 보험료 납입금만 1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은급법의 수수료 인하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금액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이에 대해 원 부장은 “수수료를 쟁길 문제가 아니라 감리회 목사님들의 은퇴가 달린 문제인 만큼 수수료를 낮춰 최대한 보험금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면서도 “미래에셋에서 얼마의 수수료를 얘기했는지는 얘기하기 곤란하다. 두 대표(미래에셋, 감독회장)가 이미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에셋 최대 경쟁사로 꼽히는 S보험사 이사급 간부에게 현재 감리회 연금에 들어있는 자금이 보험으로 계약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수료 인하혜택, 즉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S보험사는 “회사 내부 기밀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계약금 200억 정도 규모로 가정할 때 약 13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귀뜸해 주었다. (후략)

(2) 『초록빛 신은급 미래에 빨간불』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5일자 5면)

내 용 : 본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의 페이지에는 신은급법으로 확정된 미래에셋의 ‘무배당 라이프 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계약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 전날 본사가 자료입수를 위해 수차례나 행정기획실에 총회 자료요청을 했지만 행정실 관계자들은 매번 “잠시 후 올라오라”며 시간을 미뤘다. 결국 퇴근 무렵이 되어서야 “자료집은 총회장소로 바로 송부될 것”이라며 자료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행정실에 있던 사무국 김○○ 총무는 자료를 요청하는 본사 기자에게 “나가라”며 언성을 높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에까지 했다.

결국 문제의 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감추기 위해 행정기획실과 사무국이 조직적으로 총회자료를 손채했다는 얘기다.

경제 관련 소송으로 잘 알려진 한 법무법인의 경제팀 변호사는 “이유가 어찌됐건 ‘문서손괴’는 결

코 가볍지 않은 죄로 ‘형사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처벌불구 문서손해...왜? (중략)

본부 은급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새로 시행하는 신은급제도는 2040년 1천 45억의 흑자를 낸다는 초록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부는 신은급제도를 승인하면서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총회 보고서에 누락됐던 문제의 ‘고역자 은급재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무국이 이사회 승인을 무시한 채 은급기금을 간접투자한 상품으로 오히려 지난 2년간 손실을 입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은급재단이 변액연금에 은급기금 투자를 승인할 당시는 2004년이었지만 시행은 2006년이 되어야 시작됐고 이 때문에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4년 주가지수는 900선이었으나 2006년은 1,450선이었다. 사무국 은급부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지난 2004년 투자시행을 했다면 현 시점으로도 수익이 예상됐지만, 2년이나 지난 2006년 이사회 승인을 받지도 않고 자금을 집행해 11월 현재 1,100선에 머무르는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볼 경우 최소 30%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은급기금 2년간 최소 30% 손실...원금만 200억?

이를 감사자료에 제시된 표를 근거(감사자료에 ‘누계’가 아닌 ‘계’로 표기된 것)로 2006년과 2007년의 운용수익을 추정해 보면, 2006년과 2007년 각각 167억 9,300만 원, 218억 1,000만 원의 운용자금이 투입돼 각각 9억 5,742만 8,000원, 23억 4,782만 원의 운용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이사회가 투자 승인한 2004년에 투자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운용수익에서만 약 38%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환산해 보면 2006년과 2007년 두 해만 12억 5,600만 원 정도의 운용수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 시점인 2006년과 이사회 승인 시점인 2004년 대비 34.4%의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사보고서에 기록된 616억 9,200만 원에서 약 34% 정도의 손실을 가정하면 운용자금에서만 약 200억 상당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기획/특집 I, II 신은급법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11월 6일 『I.신은급법, ‘짜고치는 고스톱?’』 꼬리 무는 의혹 선정과정 ~리베이트까지』와 2008년 11월 14일 『II.총회 자료집, 사라진 감사보고서』 초록빛 신은급 미래에 빨간불』이란 제목으로 신은급법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잘못 보도된 내용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① 총회 회의자료집에서 신은급법과 관련된 감사보고 자료 두 페이지(171, 172)가 사라졌으며, 내용은 “신은급법으로 확정된 미래에셋의 무배당 라이프 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계약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사라진 회의 자료집의 내용은 2004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은급기금의 운용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 상품에 대한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것이며, 운용사는 신은급의 감리연금 운용사인 미래에셋생명이지 아니라 ING생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② 신은급법의 보험상품과 보험사 결정과정이 전문 중개업체(일명 브로커)가 개입돼 사실상 보험사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신은급법의 연금운용사의 선정과정은 은급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미래에셋생명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외부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③ 신은급법 사업과 관련하여 두 대표(미래에셋, 감독회장)가 이미 만나 천문학적인 리베이트가 오고 간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공식적인 후원금과 광고비 외에는 일체의 금품이나 선물이 오간 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④ 은급기금이 2년간 최소 30% 손실이며, 원금만 200억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이는 추정에 의한 보도일 뿐 2006년, 2007년 수익을 내었고 이는 동기간 공격기금 운용수익을 상회하는 수익이고,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투자되어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⑤ 모든 감리연금 가입자가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으며 법적 보호도 못 받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전체 감리연금의 84%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안정적인 운용방식이며, 나머지 변액연금의 경우도 납입액의 30% 이내에서만 주식 및 수익증권에 편입되고 70% 이상이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신은급법’ 관련 정정 및 반론
- 내 용 : 본지 2008년 11월 8일자 및 15일자 ‘신은급법’ 기획기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총회의 자료집에서 누락됐다고 보도된 171쪽과 172쪽의 각 내용은 총회 산하 서부연회의 감사자료(171쪽)와, 감리연금이 아닌 은급기금 투자 상품인 ‘ING 생명’ 「(무) 라이트 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에 관한 감사결과자료(172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재단은 해당 자료에 대해 편집상의 실수로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삭제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신은급법’의 보험사 선정과정에 브로커가 있었고 재단과 미래에셋생명 간에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보도에 대해 은급재단에서는, 감리연금 운용사 선정과정은 외부 개입 없이 은급재단 운영 위 및 이사회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됐고, 운용사 선정 이후 ‘미래에셋생명’ 으로부터 받은 ‘이주민 여성 친정보내기 행사’ 후원금 1천만 원과, 〈기독교타임즈〉 광고비 900만 원 이외에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더불어, ‘미래에셋생명’의 감리연금 상품은 원금이 보호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일

반연금’과 그렇지 않은 ‘변액연금’ 두 가지가 있고, 2008년 10월 현재 감리연금 가입자 1,350명(감리연금 가입대상자 5천명)중 219명만이 ‘변액연금’ 상품에 가입했으며, ‘변액연금’ 또한 납입액 중 30% 이내에서만 주식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도록 돼 있어 여타 변액연금 상품에 비해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은 2004년 이사회에서 은급기금의 간접투자에 대해 승인한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자금을 투입하여 꾸준히 수익을 나타내고 있어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투자돼 있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22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기독교타임즈〉 사회·경제면(7면 이내)에 상가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2008년 11월 8일자 「보험사 결정해 놓고 형식적 절차...연간 100억 보험료 수수료는?」)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하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mctimes.com)에 게재된 각 조정대상기사(2008년 11월 8일자 및 11월 15일자)의 페이지 하단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이어서 게재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해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기독교타임즈 : 『‘신은급법’ 관련 정정 및 반론』 제
하의 기사 (2008년 12월 20일자 6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아파트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공해 및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400m이상 떨어져 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판교LIG 건영예비입주자협의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증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경향신문 : 『‘판교 로또’ 이제 보니 ‘애물단지’』 제하
의 기사 (2008년 11월 19일자 17면)

내 용 : 고가 고속도로 단지 관통 소음피해 우려
분당·용인 집값 하락 영향 역전세난 걱정
판교신도시가 ‘로또’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신도시를 관통하면서 소음피해가
우려되는가 하면 높은 옹벽으로 ‘반지하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입주를 앞두고 인근
분당·용인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자부담과 역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입주민들도 증가하고 있
다.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판교 지역은 고속
도로로 둘러싸인 ‘섬’과 같은 주거단지가 됐다. 분
양당시 주거환경이 좋아 쾌적한 보금자리가 될 것
이라는 기대와 전혀 다르다.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로 조성하겠다는 호언과는 달리 정부가 세밀한 검
토없이 밀어붙이기식 신도시 개발로 생긴 결과다.
이에 따른 피해는 3.3㎡당 1,300만~1,800만 원을
지불하는 입주민들이 당한다.

A1-1블록에 들어서는 LIG건영아파트는 30m 높
이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판과 20m 정도 떨
어져 있다. 이에 따라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소음에 창을 제대로 열지 못할 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될 정도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판교신도시 A1-1블럭(LIG건영) 아파트
주거환경 기사와 달리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8일 경제/부동산
면에 ‘판교 로또’ 이제 보니 ‘애물단지’라는 제목
으로 판교신도시 주거환경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

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판교신도시 A1-1블럭 LIG
건영아파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400미터 이
상 이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자동차소음과 사생
활 침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단지주변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모두 최신 방음터
널로 시공되어 소음과 사생활침해 우려가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경향신문 : 『아파트 입주민 ‘입김’ 세졌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2일자 19면)

내 용 : 판교신도시에 방음벽 설치
송전탑 지하화도 이끌어내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들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건설
사들의 사후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다.

내년 초 본격적인 입주를 앞둔 판교신도시가 대
표적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울~용인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서판교 일대는 입주민들의 노력으로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 사업자가 150억 원을 들여 방
음효과와 경관이 더 좋은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
했다. 또 고속도로와 단지 사이에도 소나무를 심
어 완충지대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당초 신도시
개발 계획에 없던 도서관도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다.

시공사 역시 입주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
용해 단지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판교 산운마을에 222가구 입주를 앞두
고 있는 LIG건영은 단지의 차별화를 위해 개선했
던 디자인을 응용한 석재 출입문을 설치하고, 저
층부에는 고급석재를 붙여 외관을 고급화시켰
다. 헬스클럽, 멀티미디어실, 도서실 등 주민공
동시설 특화 공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후략) □

교사인 신청인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항의하러 온 학부모에게 무성의하게 답변해 주고, 학부모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59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유 ○ ○

2. 박 ○ ○

피신청인 : 수도권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수도권일보 : 『딸 다니는 학교 찾아가 교사 폭행 코뼈
부러져』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2
일자 사회면)

내 용 : 자신의 딸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며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 교사가 코뼈가 부러지고 자신도 머리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 40분경 인천시 계양구의 B중학교 교무실에서 이 학교 한문선생인 A(40·교사)씨가 학부모 B(41)씨에게 얼굴을 폭행 당해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자신의 딸인 B(14)양이 13명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교무실에서 교감과 학생부장 등에게 “자신의 딸이 폭행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며 폭행한 학생들의 명단을 건네주며 교무실로 학생들을 불러 올 것을 요구하자 교감 등이 학교에서 “알아서 할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난 B씨가 A교사에게 다가가 먹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A교사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하자 B씨가 찾아가 자신이 미안하다며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20여만 원을 건넸으나 화가 풀리지 않은 A교사는 B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왔고 출두요구를 받은 B씨는 이에 맞서 “자신도 교무실에서 교감 등 3명에게 머리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학부모의 교사폭행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2일자 사회면에 『딸 다니는 학교 찾아가 교사 폭행 코뼈 부러져』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1) ‘폭행한 학생들의 명단을 건네 주며 교무실로 학생들을 불러 올 것을 요구하자 교감 등이 학교에서 알아서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B씨가 A교사에게 다가가 먹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교감과 담임 교사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전담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가해 학부모에게 설명하던 와중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알아서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2) 기사 중에 “교감 등 3명에게 머리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감과 3명의 선생님이 가해 학부모와 본교 교사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며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고 학부모의 머리를 잡는 행동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이 아닙니다. □

교사인 신청인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항의하러 온 학부모에게 무성의하게 답변해 주고, 학부모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0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유 ○ ○
2. 박 ○ ○

피신청인 : 중부일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6.

처리결과 : 취 하

중부일보 : 『학부모, 중학교 찾아가 교사 폭행』 제하
의 기사 (2008년 11월 13일자 18면)

내 용 : <2008경기조정59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경기조정59의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참조> □

보도내용

마을 이장인 신청인이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공공운영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제주조정3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제주프레스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6.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제주프레스 : 『주민의 고통 행정이 방치해도 돼나』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2일자 사회
면)

내 용 : '간' 큰 마을이장, 주민 상대로 고소고
발 밥먹듯

산림법 위반·배임 등 혐의, 주민들이 사문서위조
로 고발수사 중

4개 시·군을 통합하는 행정구조개편 및 행정시

의 출범 이후 도지사 시장 등 공직자들이 참석하
는 읍 단위 각종 잔치격인 행사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잘못된 읍 행정행위나 마을행정으로 빚어진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고통 받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애월읍 고내리 주민들에 의하면, 이 마을 이장 강
모 씨가 국공유지 자연석 훼손으로 피고인이 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액의 마을 공공 훼손 혐
의를 받고 있으며, 직전 이장 등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 및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현금 4억 원의 마을공금 자산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애월읍·제주시·도청
의 해당부서에 이장 임명권자로서 더 이상 마을
자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
하였으나 행정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를 방치
해 마을내 민심은 꺾혀지고 문제의 심각성은 수
습하기 힘든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의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도무지 알 수 없

다고 토로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 강모 이장 등이 훼손한 자연석 채취현장 이라는 사진보도는 자연석 채취현장 사진과는 사실과 달라.

(2) 강모 이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 및 고소·고발을 일삼아 주민들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현금4억 원의 마을공금 자산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마을재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행정기관은 이를 방치해 마을 민심은 폐해해지고 문제의 심각성은 수습하기 힘든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보도를 한 것이고,

(3)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 보도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강모 이장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수사가 종결되기 이전 및 재판받기 이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11월 12일자 사회면에 “주민의 고통 행정이 방치해도 되나 간 큰 마을 이장 주민상대로 고소·고발 밥 먹듯”이라는 제목으로 강모 이장의 명예 등을 훼손하여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마을회 기금은 2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4억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지어 왜곡되게 잘못 보도하였고, 또한 마을소유 부동산들은 고내리 새마을회 명의로 가등기하여 이전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어 왜곡보도 하였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주민의 고통 행정이 방치해도 되나 간 큰 마을이장 주민상대로 고소·고발 밥 먹듯 이라는 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은 2008년 11월 12일자 사회면에 “주민의 고통 행정이 방치해도 되나 간 큰 마을 이장주민상대로 고소·고발 밥 먹듯”이라는 제목으로 특히 금 4억 원의 마을 공금 자산관리에 문제

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모 이장은 위 금액 4억 원을 전 이장 김모 씨로부터 인수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마을회 소유 부동산들은 고내리 새마을회 명의로 가등기하여 이전관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고내리 이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11월 12일자 사회면 “‘간’ 큰 마을 이장, 주민 상대로 고소고발 밥 먹듯” 제하의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결과 고내리 강모 이장은 현대오일뱅크 저장고 설치 시 관련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직전 이장으로부터 4억 원을 인수받은 바 없으며, 마을회 소유 부동산은 새마을회 명의로 가등기하여 이전관리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24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주프레스 3면 우측 상단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중간제목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또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프레스 인터넷사이트 (www.upress.co.kr)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후속 취재하여 보도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 음〉

① 11월 12일자 “‘간’ 큰 마을이장, 주민 상대로 고소고발 밥 먹듯” 제하의 보도 언급

② 신청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내용

• 수사결과 해당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무혐의 종결사실 및 관련 사실 관계를 알리도록 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이를 후속 보도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명하며, 제1항의 보도문 게재시 그 하단에 이어 게재하며, 유프레스 인터넷사이트(www.upress.co.kr)에도 보도하도록 한다.

「지난 11월 12일자 사회면 “‘간’ 큰 마을이장, 주민 상대로 고소고발 밥 먹듯” 제하의 일부 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강○○ 이장님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고내리 주민간의 갈등상황에 대해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였으나,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고내리 마을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강창호 이장님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1월 12일자 제주프레스 배포지와 동일한 곳과 고내리 전 250가구(신청인이 교부해주는 고내리 주민 명단 기준)에 위 해당 정정보도문이 실린 제주프레스를 배포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후속보도를 제외하고는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제주프레스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K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T사를 설립하면서 K사의 사업제안서를 빼돌렸다고 보도되었으나, T사의 사업안은 K사의 사업제안서와 무관하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테크온팜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2. 백○○

피신청인 : 아시아경제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 『“사업제안서 영업기밀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2일자 사회면)

내 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전직 회사를 퇴사하며 들고 나온 ‘휴대폰 MP3 노래방기능’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타 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백모(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씨는 2003년 8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피해회

사인 K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거래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수금, 기획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백씨는 K사에서 퇴사하기 두 달 전인 2005년 8월 T사를 설립해 이사로 취임했다.

백씨는 이후 K사의 ‘휴대폰 MP3 노래방 자판 반전 기능’과 ‘마이크믹싱 기능’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이용해 T사 명의의 ‘디지오케(DigiOke)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1월 모 대기업 상품기획부에 넘겼다.

이에 K사는 “백씨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들고 나가 타 회사에 넘겼다”며 고소했고, 백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백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디지오케(DigiOke)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0월 22일자 사회면에 『법원-사업제안서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백씨가 전 직장인 K사의 ‘휴대폰 MP3 노래방 자간반전 기능’과 ‘마이크믹싱 기능’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이용해, T사 명의의 디지오케(DigiOke)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후, 이를 모 대기업 상품기획부에 넘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T사 명의의 디지오케(DigiOke) 사업제안서는 백씨의 전 직장인 K사의 사업제안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T사에 의해 독창적으로 작성된 사업제안서이고, 백씨가 이를 모 대기업에 넘긴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의 업무제휴를 위하여 관련부서인 상품기획부의 담당자들에게 사업설명(소위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8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사업제안서 영업비밀 아니다” 제하의 보도에 대해 T사는 대기업과의 업무제휴를 위하여 상품기획부의 담당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한 것이며, T사의

사업제안서는 K사의 사업제안서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12일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시아경제 사회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부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아시아경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위 항의 보도와 함께 조정대상기사의 내용 중 ‘모 대기업 상품기획부에 넘겼다’는 표현을 ‘모 대기업 상품기획부에 제출했다’로 수정한다.

• 피신청인은 다음, 야후, 코리아, 엠파스, 네이트닷컴에 전제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의 내용 중 ‘디지오케(DigiOke)’라는 브랜드명을 삭제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경제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일자 2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GMO 표시제 확대를 막기 위해 GMO 수입가공업체 가동율과 근로자 해고위기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 및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농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7.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농민신문 : 『식약청의 애절한 GMO 사랑』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3일자 7면)

내 용 : 광우병과 멜라민이라는 충격적인 사안에 가려서 그렇지 최근 농식품 관련 핵심 쟁점은 ‘유전자변형(GM)식품’이다.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 입장은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가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 여부를 떠나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만들었는지를 최종제품에 표시해달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요구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관련 법안이 입안예고 중이다. 이런 때에 식약청이 ‘GMO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와 함께 GMO식품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예상대로 10월 28~29일 행사는 GMO 찬양 일색의 분위기였다. 심지어 다국적 종자업체인 몬산토의 관계자까지 초청, 식사 대접을 했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워크숍 개회사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을 한다면 안전성 논란과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GMO 안전성 논란을 소비자들의 무지 탓으로 돌렸다. ILSI Korea 회장인 이○○ 고려대 교수는 한술 더 떴다. GMO표시제 확대가 식품업계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강변했다. 게다가 GM옥수수를 수입하겠다고 선언했던 전분당업체들의 현재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1만명의 근로자가 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까지 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전분당업체들은 GM옥수수 수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으며, 가동률과 해고 이야기도 이교수가 지어낸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농민신문 2008년 11월 3일자 기사수정 정정보도

• 내 용 : 본지가 『식약청의 애절한 GMO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중에서 ‘ILSI Korea 회장인 이○○ 고려대 교수는 한술 더 떴다. GMO 표시제 확대가 식품업계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강변했다. 게다가 GM옥수수를 수입하겠다고 선언했던 전분당업체들의 현재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1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까지 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전분당업체들은 GM옥수수 수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으며, 가동률과 해고 이야기도 이교수가 지어낸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는 바, 이○○ 교

수가 한 말은 사실이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와 “이 교수가 지어낸 것이다”는 음해성 조작 보도이므로 정정하며 이 오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국민에게 사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3일 『식약청의 애절한 GMO 사랑』 제하의 보도에서 ILSI Korea 회장인 이○○ 교수가 전분당업체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고 1만명의 근로자가 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지어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위 내용은 본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관련 업종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교수가 업체 가동률과 해고 인원수를 지어냈다고 보도하면서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점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12일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농민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논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농민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농민신문 :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신청인이 컴퓨터를 훔쳐서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했다고 보도되었으나 절도물품인지 모르고 구입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다 (기사삭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5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CNBNEWS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2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CNBNEWS : 『훔친 컴퓨터 되팔던 30대 불잡혀』 제하
의 기사 (2008년 8월 29일자 광주전남
CNBNEWS 종합면)
내 용 : 컴퓨터를 훔쳐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해
온 컴퓨터 판매업자가 경찰에 불잡혔다. 전남 영광경
찰서는 27일, 영광군 법성면에 사는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자 강 아무개(37) 씨를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27일 밤 9시경,

같은 마을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등
100여 만 원 상당을 훔쳐 자신이 운영하던 컴퓨터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훔친 컴퓨터를 되팔 걸로 조사중이던 30
대 조사결과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8월 29일자 사회면에
“훔친 컴퓨터 되팔던 30대 불잡혀”라는 제목으로 컴
퓨터를 훔쳐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해 온 컴퓨터 판
매업자가 경찰에 불잡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강 아무개 씨는 장물인
줄모르고 매입한 부품을 이용해서 재판매한 것으
로 판명되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잘못된 기사내용을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광주전남 CNBNEWS의 기존 기사내
용을 정정보도문대로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다. □

일부 컴퓨터 출장수리점들이 서비스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다고 보도하면서 ‘사기’라고 표현해 관련 종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사단법인 한국컴퓨터판매인협회
(회장 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8년 8월 28일

23:00)

내 용 : [소비자가 기가막혀] - 컴퓨터 AS
특하면 바뀌고, 뺑뺑이, 심지어 사라지기까지! 요
지경 컴퓨터 AS수리
전화 한 통화면 저렴한 가격에 확실한 서비스로
컴퓨터 AS를 책임진다는 출장AS 업체들. 그런데,
컴퓨터 AS를 맡긴 후 불신만 쌓였다는 제보자, 한
둘이 아니다! 컴퓨터 AS를 받은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원래 있던 것의 절반가격도 안 되는 값싼 하
드디스크가 끼워져 있었다는 제보자 A씨! 8차례에
걸쳐 뺑뺑이된 부품 값을 지불했다는 제보자 B씨.
아예 컴퓨터 부품 값만 12만 원을 받아가고 정작

교체는 안했다는 황당 경험자, 제보자 C씨. 도대체 AS센터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전직 AS센터 기사의 충격 양심고백! 컴맹인 고객을 표적으로 수리비 과다청구, 업계에 만연한 컴퓨터AS 사기 실태!

불만제로 제작진을 찾아와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준 전직 AS센터 기사, D씨. 고객들에게 과다청구를 해 남는 이익을 챙기는 관행에 회의를 느껴 일을 그만두었다는 D씨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노리는 AS 사기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 주로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보이는 나이든 어르신이나, 가정주부, 컴퓨터 부품이나 관련 용어에 무관심한 젊은 층 여성이 바로 그 집중표적이 된다는 것. 불만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컴퓨터 AS실험을 실시했다.

3명의 컴퓨터 전문가 투입! 2달 동안 20여 차례 걸쳐 펼쳐진 끈질긴 AS 실험! 과연, 그 결과는? 고가의 컴퓨터를 구입한 제작진, 관련 전문가 3인의 도움을 받았다. 실제로는 아무런 고장도 나지 않은 컴퓨터에 부품을 연결하는 선을 살짝 빼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연출. AS를 맡겼을 때, 업체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분명 멀쩡했던 부품이 수차례 바뀌는 건 기본이요, 성능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교체되는 것도 총 25차례 실험에서 10회! 심지어 부품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수리비만 30여만 원을 지불하라는 경우까지. A/S 기사가 다녀갈 때마다 돈 먹는 애물단지로 변한 불만제로 컴퓨터. 결국 실험은 컴퓨터의 주요 부품들을 모조리 교체하고서야 끝이 났는데...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컴퓨터 출장 수리의 두 얼굴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28일자 불만제로 방

송에 “컴퓨터 출장수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컴퓨터수리점들이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수리컴퓨터들은 브랜드PC의 컴퓨터 들고 브랜드PC와 일반컴퓨터 수리점이 다른데도 이를 혼동하게 방송하였고, 과다청구에 대하여도 해당 업체가 아닌 타 업체 또는 온라인업체의 가격비교를 해당업체와 비교를 한 것이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99년 9월 1일부로 오픈프라이스 가격제를 도입하여 상품의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픈프라이스제도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도와 달리 생산자가 아닌 최종판매자가 가격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서비스가격에 대하여 업계의 기준이 아닌 모호한 기준으로 컴퓨터업계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청구한 듯 방송을 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방송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31일까지 불만제로 내 <불독코너>를 통해 신청인 협회의 개선 노력을 방송하되, 진행자의 통상적인 멘트로 일부 출장수리업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한국컴퓨터판매인협회가 컴퓨터수리 인증제 도입 등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신청인은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에게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교통카드 운영사인 신청인 업체가 국감 자료에서 교통카드 과·오납 환불현황을 실제보다 축소 보고한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고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집 수 일 : 2008. 12. 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고뉴스 : 『서울시 국감자료 ‘엉터리’』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8일 종합면)

내 용 : (전략) 서울시 매년 ‘개선됐다’ ...국정감사에 엉터리 보고

시, “의도적 아닌 업무적 실수”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과·오납 등 오류율 전체를 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는 쪽으로 올해 국정감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6년 국감 자료보다 올해 국감에 제출한 통계수치가 크게 줄어 있어, 업체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는 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가 올해와 2006년에 각각 제출한 ‘교통카드 과·오납 환불현황’에는 월별로 환불된 건수를 집계했는데, 이 수치가 줄어 있어 마치 시스템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작성돼 있다.

실제 2006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올해 장광근 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자료에는 2005년 1월 7천여 건에서 3천여 건으로 표기돼 있는 등 월별로 수치가 모두 줄었다.

2006년 수치도 마찬가지로, 1월 2,600여 건이던 통계가 올해 제출한 자료에는 7백여 건으로 줄어 있는 등 2006년 국감 전인 9월까지 모두 크게 줄었다.

결국 두 번 제출한 국감자료를 비교하면 2005년 전체 4만 1천여 건이던 것이 1만 8천여 건으로, 2006년에는 9월까지만 집계 1만 8천여 건인데 2006년 전체 9천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와 관련,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수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 “2006년 심재철 의원 제출 자료는 ‘환불접수건수’ 기준이고, 올해 장광근 의원 제출 자료는 ‘환불지급건수’ 기준이다. 서로 다른 항목임으로 비교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류율이 1백만 건에 1건?

문제는 또 있다. 서울시와 업체가 오류율의 집계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시는 올해 국감자료에서 ‘1백만 건에 1건’에 불과할 정도로 보고했다.

서울시가 말한 ‘1백만 건에 1건’은 과·오납으로 잘못 부과된 금액을 환불해준 수치이다.

서울시는 이를 갖고 2008년 국감에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에게 ‘환불발생비율이 0.000132%로 1백만 건 당 1.32건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선진지표인 6시그마 수준’이라고 밝혔다.

즉, GPS 오류 등으로 시민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환불 절차가 불편해 신청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집계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환불건수가 교통카드 오류율인 것처럼 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시는 2004년 27건이던 오류가 2005년 11.6건, 2006년 1.37건, 2007년 1.47건에 이어 올해에는 1.32건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중략)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가 (환불내역을)잘 모르기 때문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맡고 있는 한국스마트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적어냈다”며 “체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한 것은 아니며 업무적 미스”라며 “스마트에서 낸 자료의 잘못된 점과 신빙성 여부를 따지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시 국감자료 ‘엉터리’” 기사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입장

• 내 용 : 본 매체는 지난 11월 18일자에 “서울시 국감자료 ‘엉터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가 국감에 제출한 2006년 제출 자료와 2008년 제출 자료가 수치가 서로 틀리며, 축소해서 보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류율’이 아니라 ‘환불율’인데 ‘오류율’로 표기를 하여 사실관계를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고의적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이미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2008년 11월 17일 “두가지 제출 자료의 수치가 왜 틀린가?”라는 고뉴스 서○○ 기자의 문의에 대해, 2006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환불민원건수’이고, 2008년 장광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환불지급건수’로서 서로 동일한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므로 당연히 수치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해명한 바 있습니다.

2006년 국감에서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국감이 개최되기 이전 심재철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 자료로 제출되었으며, 심재철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환불민원건수’를 월별로 집계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

다. 심재철 의원이 질의한 ‘환불민원건수’에는 시스템 오류와 함께 이용고객의 착오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서-이 수치에 대해 실제 ‘환불지급건수’를 따로 명기하지 않고, 환불민원건수를 그대로 제출한 바-이용자 착오로 판명되어 환불이 되지 않았던 사안들도 포함되어 실제보다 더욱 많은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국감에서 장광근 의원

으로부터 ‘과오납환불현황’을 요청받았기에 ‘환불민원건수’ 중에서 심사를 통해 실제 시스템 오류로 환불을 한 건수만을 집계하여 요청자료에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 매체의 11월 18일자 기사에는 2006년 제출 자료와 2008년 제출 자료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비교대상이 되는 동일항목이 아니라는 사실이 누락됨으로 인해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고의로 수치를 축소했으리라는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주)한국스마트카드는 고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2006년 제출 자료와 2008년 제출 자료는 서로 다른 항목이다 ▲동일한 항목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수치를 줄여서 제출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정정 보도를 통해 명확히 하고 기사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감 제출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환불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앞으로도 축적한 기술,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시켜 고객 편의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충주대 차기 총장선거 주요 이슈를 보도하면서 특정후보의 사진과 이력만을 상세히 적시해 타후보들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충북조정1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충주대학교 제5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정 ○ ○)

피신청인 : 충북넷

중 재 부 : 충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충북넷 : 『충주대 차기 총장선거 ‘핫 이슈’ 등장』 제
하의 기사 (2008년 11월 20일자 사회면)

내 용 : 서○○ 전 ○○부차관(57)이 국립 충주대의 차기 외부영입 총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치러지는 충주대 총장선거전이 본격 시작됐으며, 지역의 가장 큰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중략)

서 전 차관이 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충주대 선거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열린 총장 입후보 설명회에는 현직 교수 7명이 참석하면서 치열한 경쟁률을 예고했다.

그러나 서 전차관이 사전서명을 받기 시작한 첫날인 20일 7명의 예비 후보자중 한 명이 출마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종 후보자 등록에는 서 전 차관을 포함

해 3~4명만이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학교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등 후보자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출신인 서 전 차관은 ○○고와 ××대 ○○과, 미 △△대 대학원 교육학과(석사), ××대 ○○대학원 ○○학과(석사)를 거쳐 □□대학교에서 △△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22회 행정고시를 합격한후 △△부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 ○○정책관 및 △△정책기획관, △△부 대학지원국장, ××대 사무국장, △△부 차관보, ○○시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지난 2월 △△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충주대 차기 총장선거 핫 이슈 등장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0일자에 『충주대 차기 총장선거 핫 이슈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충주대학교 제5대 총장후보자 선거에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기사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은 충주대학교 제5대 총장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1) 기사 내용 중 ‘국립 충주대의 차기 외부영입 총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표현은 단지 영입추진모임에서 확정된 것일 뿐, 아직 후보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 기사 내용 중 ‘사전서명을 받기 시작한 첫날인 20일 7명의 예비 후보자 중 한 명이 출마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표현도 학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비후보자 가운데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없는 상황에서 외부영입자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도기사의 객관성, 사실보도, 인용보도 등의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3) 기사 내용 가운데 ‘고등분야의 전문가이며, 충북지사 및 전 정부부지사와 행시 동기인데다 정부부처간에 폭넓은 인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표현은 투표 및 추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속하는 것임을 밝

힙니다.

4) 본 기사에서는 내부 출마 예정자에 대하여는 하나의 언급도 없이 외부영입자에 대하여 이력, 경력, 사진을 게재한 것은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배하였습니다.

위의 기사는 충주대학교 모 교수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당사가 검증 없이 기사화함으로써 제5대 충주대학교 총장후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하고, 충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이러한 잘못된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신청 후 보도문

충북넷 : 『충주대 차기 총장선거 핫 이슈 관련』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지난 11월 20일자에 ‘충주대 차기 총장선거 핫 이슈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충주대학교 제5대 총장후보자 선거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기사 내용 중 ‘국립 충주대의 차기 외부영입 총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표현은 영입을 추진하는 소수 교수들 간에 합의한 것일 뿐이며, 아직 후보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한 ‘사전 서명을 받기 시작한 20일 7명의 예비후보자 중 한 명이 출마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표현은 학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비후보자 가운데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없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이었습니다.

기사 내용 가운데 외부 영입을 추진하는 후보가 ‘고등교육 분야의 전문가이며, 정부 부처 간 폭넓은 인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 기사내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제5대 충주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가 특정인에게 편향되게 받아드릴 소지가 있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주대학교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당사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

신청인 업체의 주름개선 화장품을 치료제로 인식시키기 위해 의사처방하에 연고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치료보조제로 판매할 뿐 의약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2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엔프라니(주) (대표이사 유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영동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등, 주름
개선 화장품 판매』 제하의 기사 (2008
년 12월 1일자 산업면)

내 용 : 최근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주름개
선 화장품을 마치 치료제인 것처럼 의사가 처방한
후 원내 약국에서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8일 메디컬투데이가 서울시내 대학병원
10여 곳을 확인한 결과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만
레티닐레티노 에이트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의
사가 처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화장품을 의사가 처방한다?

‘엔프라니’에서 출시한 ‘테스베’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원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중략)

K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가 화장품을 처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주름개선 화장품도 처방이
가능하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그러나 영동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이 제품은 피
부과에서 의사가 처방 한 뒤 원내 약국에서만 판
매한다”며 “주름 치료제로 보고 있으며 주름치료
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
요하다”고 밝혔다.

엔프라니 측에 따르면 병원용 테스베는 레티닐레
티노 에이트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의사 처방이
필요한 노화 개선 화장품으로까지 인정받았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국·내외 특허획득과 국제 논
문 발표를 통해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했
다.

하지만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사한 결
과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인 것으로 밝혀
졌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주름개선 화장
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며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이 마치 주름 치료제인 것처럼 판
매되고 있는 건 과대광고이며 이런 행위는 위법
이다”고 덧붙였다.

◇ 연고 형식의 화장품, 소비자들 속기 십상

‘테스베’ 용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일
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이 제품의 용기가 화장품
보다는 의약품 연고로 착각하기 쉬운 모습이다.

엔프라니 홍보팀 관계자는 “연고 아닌 화장품
인데 병원에 입점 되는 제품이다 보니 연고 모형으
로 디자인 했다”며 “현재 영동세브란스병원에만
입점 되고 곧 신촌세브란스병원에도 입점 준비 중
이다”고 말했다.

테스베는 15ml에 6만 원 선으로 용량에 비해 비
교적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전문가들은 병원에 입점되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타 주름개선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점과 성분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대형종합병원 화장품 판매 관련 정정보
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일자 메디컬투데
이 산업면에 “대형종합병원 이젠 화장품 장사도

하나?”라는 제목으로 영동세브란스 병원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그러나 영동세브란스 병원 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인 ‘테스베’는 병원 내 약국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화장품 중의 하나로 식약청으로부터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제품을 개발한 엔프라니(주) 및 영동세브란스 병원 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언급한 바가 없으며, 주름 및 광노화를 위해 치료제가 아닌 치료 보조제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본 기사가 문제삼고 있는 테스베라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피신청인 측은 영동세브란스 피부과 측과 엔프라니(주)가 공동개발 하였다고 썼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제품에 함유된 레티닐 레티노에이트 성분은 자사가 독자개발 한 신물질이며, 상품화 시 보건복지부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서강대

화학과 및 원주 세브란스 피부과와 공동 연구하여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마치 영동세브란스 측과 엔프라니(주)가 공동 개발하여 또 다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형태의 표현은 잘못되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제품의 연고 형태 용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착각하기 쉽다며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들로 제품 및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태는 잘못됐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고 형태의 튜브 용기는 화장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디자인인데도 마치 신청인측인 엔프라니(주)에서만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내놓은 제품으로 표현하여 제품은 물론 브랜드와 회사가 쌓아온 그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킨 바이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5,000,000원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 ‘요석궁’이 유적지인데도 식사를 하지 않는 관광객의 출입을 막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유적지도 아니고 사유지에 대한 출입통제이므로 정당하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부산조정1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경상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상일보 : 『신라 뒤흔든 세기의 로맨스 이곳에서 탄생하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5일자 12면)

내 용 : 경주 교동에 있는 요석궁은 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로맨스가 남아 있는 유적이다. 그러나 요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요석궁을

관람할 수가 없다. 이곳은 1~2년 전만 해도 식당이긴 했지만 방문객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는데 지난해 식당 주인이 바뀌면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이곳을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요석궁의 관광객 출입문제와 친일 관련 문제는 사실과 다릅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5일자 문화면에 “[경주를 읽는다] 신라 뒤흔든 세기의 로맨스 이곳에서 탄생하다 요석궁”이라는 제목으로 식당내 관광객 출입문제와 친일문제, 신라시대 우물터로 추측되는 우물터 훼손문제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유적지나 사적지가 아니며, 개인 소유의 사유지이자 생계를 위해 영업을 하고 있는 영

업장이며 몇 대에 걸쳐 그 터를 지키고 있고 현재도 3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주인이 바뀌면서 영업 위해 관광객 출입 차단이란 글과 친일 관련 글, 신라시대의 우물터 관련 글은 사실이 아니며, 읽는 이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 근거나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기사 대부분의 내용은 취재대상과는 인터뷰나 취재요청 없이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쓴 글이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위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당사자와 영업장에 피해를 입혀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요석궁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5일자 12면 “신라 뒤흔든 세기의 로맨스 이곳에서 탄생하다” 제하의 기사에서 경주 교동에 있는 식당 요석궁이 유적지인데도 식사를 하지 않는 관광객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최부잣집 장손 최준 씨의 동생 최윤 씨가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파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요석궁은 유적지가 아닌 사유지로 개인 영업장에 대한 출입통제는 정당하며, 최부잣집 일가는 중추원에 이름만 걸었을 뿐 아무런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8년 12월 22일까지 경상일보 문화면 중단 이상의 위치에 위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무열왕 주선으로 결혼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보금자리”)과 같은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기고자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상일보 : 『요석궁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7일자 1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춘천시가 건설도시국장을 춘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강원조정11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안 ○ ○)

피신청인 : 춘천시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3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춘천시보 : 『사장 선임 문제 있다는 지적에 대한 춘천시 일문일답』 제하의 기사 (2008년 11

월 10일자 4면)

내 용 : 최근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춘천경실련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뽑지 않고 심규호 춘천시 건설도시국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겸임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의 입장을 들었다.

Q. 사장 임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A. 낙하산 인사라 할 수 없다. 지금 맡고 있는 건설도시국장도 하고 사장 업무도 같이 하라고 지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 업무를 국장 업무와 겸임하라고 했다. 당장 유능한 전문가를 사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선 2억여원의 연봉을 줘야 하는데 예산에 큰 걸림돌이 됐다. 그렇다고 추천사정도 잘 모르는 능력없는 사람을 우선 데려다 도시개발공사를 세운다면 공사설립의 의미가 없다. 공사가 자리를 잡는 1년여 동안 유능한 전문가를 찾아 사장에 임명할 것이다.

Q. 돈만 쓰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 않나?

A.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은 돈을 쓰는 곳이지만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공사는 ‘돈을 버는 곳’이다. 캠페이지 개발이나 택지 개발 등을 춘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돈을 다시 지역개발과 공공사업에 재투자할 것이다.

Q. 공사 설립과 사장 임명은 적법했나?

A.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절차에 따라 세워졌다. 현직 공무원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상의 공무원의 파견·겸임 조항을 적용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춘천의 빠른 발전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진다” 기사에 대한 반론 보도문
• 내 용 : 본 시보는 지난 11월 10일자 “춘천의 빠른 발전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진다”란 기사를 통해 “우선 1년만 겸임,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춘천시에 하달한 10월 16일자 공문에 의하면 “춘천시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보고사항 중 사장임명, 조직기준, 설립보고 등의 사항이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보완요구”조치를 하였음을 춘천경실련이 밝혀 왔습니다.

본 시보는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절차에 따라 세워졌다. 현직 공무원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상의 공무원 파견, 겸임 조항을 적용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춘천시에 하달한 공문에 의하면 보완요구 사항 중 “사장 임명시 지방

공기업법 제58조 규정 및 지방공기업 임원공모제 운영매뉴얼 (04. 6)에 따른 사장 채용 절차 (공모,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등)를 거쳐 임명”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춘천경실련은 밝혀 왔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및 관계법령에는 ‘공무원 파견조항과 사장선임 조항은 별개의 조항’으로서 춘천시의 일방적 주장으로서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춘천도시개발공사 관련 춘천경실련 반론
• 내 용 : <춘천시보> 2008년 11월 10일자 4면 『사장 선임 문제 있다는 지적에 대한 춘천시 일문일답』 제하의 기사에서 춘천도시개발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무원 파견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춘천시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춘천경실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월 16일자 공문을 통해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보고사항 중 ‘사장임명’, ‘조직기준’ 등의 사항이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공모 및 사장추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29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춘천시보> 4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사장 선임 문제 있다는 지적에 대한 춘천시 일문일답”)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춘천시보 : 『춘천도시개발공사 관련 춘천경실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9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주가 폭등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이 증권사 객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5.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서울신문 : 『‘국가 부도위기 공포’ 벗어나...금융시장 함박웃음』 제하의 기사 중 사진설명(2008년 10월 31일자)

내 용 : 한국과 미국간 원·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진 30일 서울 목동의 한 증권사 객장에서 한 투자자가 폭등하는 주가에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2월 26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

감을 표한다.

- 내 용 : 지난 10월 31일자 <‘국가 부도위기 공포’ 벗어나...> 제하의 기사 중 사진보도에서 동의 없이 박○○ 님의 모습을 촬영·게재하여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보도는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간 원·달러통화 스와프 체결소식이 전해졌고, 이날 금융시장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소폭 해소시키고 있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문제를 성찰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초상을 동의 받지 않고 촬영하여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차후에 본인임이 특정되지 않도록 온라인기사 중 사진을 삭제하고 PDF파일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기술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편집과정의 미숙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박○○ 님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를 통해 공익적인 사안의 보도에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며, 기사 작성과정에서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며,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및 사과>



영광문화원 창립자인 신청인이 36년간 1인 독재체제를 유지,
전횡을 일삼았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3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영광신문

증 재 부 : 광주증재부

접 수 일 : 2008. 12. 8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영광신문 : (1) 『영광문화원 엉터리 정관으로 폐쇄적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9일자 1면)

내 용 : 회원 972명 3천여만 원 회비 결산서 공개 거부

정관에도 없는 조항 들먹이며 회원 참여제한 전횡

영광문화원이 회원 수백 명의 회비 결산서를 회원에게 조차 공개를 거부한 채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수 년 동안 엉터리 정관으로 회원의 대의원 참여를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정관을 개정하라는 상위기관의 조치도 방치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6일 영광문화원 회원 A씨는 문화원 측에 회원 972명의 회비(연 3만 원) 결산서를 공개 요구했으나 문화원은 회원이라도 개인에게는 결산서를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관내 한 문화단체 대표 격이었던 B씨는 영광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에 가입해 대의원으로 활동하고자 했으나 문화원 측이 5년 이상을 유급회원으로 활동해야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들자 포기했다. 또한 문화원장도 이사회(16명)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대의원(70명)이 선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올 초(본지 556호 2월 1일 보도) 문화원 측이 직접 주장한 내용이다.

하지만 영광문화원 정관 어디에도 5년 이상 유급회원이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원장 및 임원도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화원 측 주장은 정관과는 전혀 다르다.

특히 영광문화원 정관은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조)고 명시해놓고 의결 정족수(23조) 부분에는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규정했다.

정관대로라면 총회는 회원 487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고 의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화원 측이 대의원제로 운영했다면 그간의 모든 총회 의결사항은 무효가 되는 셈이다.

더 이상한 것은 이사회를 뒤 총회의 거의 모든 기능을 이사회 기능(30조)에 동시에 뒀다. 이는 이사 16명이 총회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상 또 하나의 오류거나 특정인들의 폐쇄적 운영 근거일 수 있다. (중략)

이에 문화단체 관계자 B씨는 “과거 영광문화원이 1인 독재 36년을 거치면서 영광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엉터리 정관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영광문화원은 치외법권 단체인가』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9일자 11면)

내 용 : 영광문화원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문화단체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문화원이 엉터리정관에 회비 결산서 공개 거부, 회원참여도 제막 대로인 무소불위 단체로 존재 가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1면(앞면)영광문화원 엉터리 정관으로 폐쇄적 운영논란

11면 여론마당(사설) 영광문화원은 치외법권 단체인가

• 본 문 : 제 587호의 주간 본 영광신문은 지난 9월 19일(금) / 음력 8월 20일, 제목 내용문과 같이 회원 972명 3천여만 원의 회비결산서 공개 거부와 정관에도 없는 내용 들먹이며 회원 참여 제한 전횡운운 보도사실과 전혀 다르게 972명의 회비 3천여만 원의 공금을 부정(횡령)한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영광문화원이 1인 독재 36년을 거치면서 영광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광문화원은 표준정관개정은 지역문화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

(2009년 3월중)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는 구정관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공금을 부정(횡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과거 영광문화원장이 1인 독재 36년을 거치면서 영광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두가 아는 사실의 보도문도 전 문화원장과 취재한 바도 없이 신문 간행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이의 보도문이 명예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광명시장이 철망산 공영주차장을 대형마트에 매각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목변경을 미루어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어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명시 (시장 이 호 선)

피신청인 : 수도일보

종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수도일보 : (1) 『광명, 철망산 공영주차장 ‘특혜의혹’, 1년 넘도록 지목변경 미뤄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일자 1면)

내 용 : 광명시가 버스회사의 차고지로 사용하던 부지를 거액을 들여 사들인 후 여기에 또다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더욱이 시가 지목변경을 하지않은 공영주차장 부지는 최근 대형마트의 입주여부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가 공영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을 할 경우 향후 현행법에 위배돼 대형마트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 결국 부지를 대형마트에 매각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목변경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일고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목이 잡종지로 돼 있는 구 한성운수 5168㎡의 부지에 대해 도비 30%, 시비 70%를 들여 90여억 원에 매입한 후 이곳에 4천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아스콘으로 포장, 지난 2007년 10월 철망산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철망산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뒤 잡종지로 돼 있는 부지에 대해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는가 하면 공영주차장의 운영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찰을 통해 1억 5천여만 원에 개인에게 위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적법 제 21조에 보면 지목변경을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것으로 확인돼 시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공영주차장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가 지목변경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준공서류를 첨부해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지목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데도 이를 1년이 넘도록 지연시킨 이유는 최근 국내 대형마트가 이 부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주차장법 제20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주차장외에는 어떤 건물도 들어설 수 없어 사실상 대형마트의 입주가 불가능해져 시가 고의적으로 이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후략)

(2) 『光明市, 다른 주차장은 이례적으로 곧바로 지목변경...특혜의혹 확산』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5일자 1면)

내 용 : <속보> 광명시가 철망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대형마트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1년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지목변경을 미뤘다는 의혹(본보 4일자 1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가 조성한 다른 공영주차장에 대해선 주차장 조성 후 이례적으로 곧바로 주차장 부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돼 철망산 공영주차장에 대한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중략)

이처럼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다른 공영주차장에 대해선 현행법인 지적법을 위반하지 않고 곧바로 지목변경을 한 반면 철망산 공영주차장만 1년이 넘도록 지목변경을 미룬 것에 대한 특혜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략)

(3) 『광명시의 황당한 답변』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8일자 2면)

내 용 : 광명시가 철망산 공영주차장에 대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잠종지에서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논란이다. 특히 지목변경을 미룬 이유가 최근 대형마트의 입주가 거론되는 등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부지인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하지만 더욱 황당한 것은 본보의 보도이후 시 관계자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다. 시 관계자는 본보의 보도 이후 공문을 통해 '지목변경은 토지의 형질 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하도록 하며, 철망산 공영주차장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접하는 두개의 도로 확장공사 시, 도로확보가 완료된 후 지목변경을 진행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간략히 설명하면, '철망산 공영주차장은 도로확장 후 지목변경을 하려 했을 뿐 특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다. 현 공영주차장은 시가 매입한 후 철산로와 오리로 연결되는 부분의 일부 부지는 재건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조합측에서 매입, 도로확장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지금 도로확장 공사 부분에 편입된 부지는 주차장

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지다. 그렇다면 도로확장에 포함이 안된 부지는 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또한 시는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고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말이 아닌가. (중략)

철망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잡음이 일었던 부지다. 대형 H마트가 들어서기 위해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가 하면 이 때문에 집행부와 시의회가 마찰까지 빚었던 부지다.

심지어 대형마트 입주를 주선하겠다고 "누가누가 몇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는 말에서부터, "누가누가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대형마트와 연결시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게 시의회에 두번이나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됐다"는 설명까지 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의 행위에 참으로 화가 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명 철망산공영주차장 지목변경관련 '특혜의혹'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4일(광명 철망산 공영주차장 '특혜의혹' 1년 넘도록 지목변경 미뤄 '논란'-대형마트에 매각키 위해 고의적(?)), 12월 5일(광명시, 다른 주차장은 이례적으로 곧바로 지목변경... 특혜의혹 확산), 12월 8일자에(사설-광명시의 황당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대형마트에 매각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목변경을 미루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지목변경과 관련없이 주차장부지는 매각이나 양도할 수 없는 토지임이 밝혀져 '특혜의혹'은 법적으로 불가사행이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12월 4일 『광명 철망산 공영주차장 ‘특혜의혹’ 1년 넘도록 지목변경 미뤄 ‘논란’-대형마트에 매각키 위해 고의적(?)』, 12월 5일 『광명시, 다른 주차장은 이해적으로 곧바로 지목변경...특혜의혹 확산』, 12월 8일 『사설-광명시의 황당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대형마트에 매각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지목변경을 미루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는 주차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지목변경과 관련 없

이 주차장부지는 매각이나 양도할 수 없으며, ‘특혜의혹’ 과도 관련이 없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수도일보 2008년 12월 23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가 보도된 일자 2면 우측 하단(얼어붙은 취업시장 녹이는 경기청년뉴딜)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수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지방과는 달리 서울 및 수도권에서 1일 8시간 굴삭기 장비임대가 정착되지 않은 것은 신청인 연합회 때문이라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굴삭기연합회 (회장 김 ○ ○)
피신청인 : 한국건설기계신문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건설기계신문 : (1) 『임대단가와 작업시간을 지키자』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5일자 2면)

내 용 : 지난 4월 25일 공정위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공포되어 건설노조를 시작으로 경남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 강원도굴삭기연합회, 광주·전남굴삭기연합회, 대전 등 충청권협의회 등 많은 단체에서 1일 8시간 장비임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경남지역, 강원도지역, 광주·전남지역, 충

청권 지역 등에서 1일 8시간 장비임대가 정착되고 있다.

특히 타이어 굴삭기의 1일 8시간 건설기계 임대 정착률은 높은 반면 궤도 굴삭기는 타이어 굴삭기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기름을 넣어준 원인도 있지만 월대 장비이다 보니 결속력이 떨어지고 있다. 진주건설기계경영인협의회 백충승 회장의 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들은 굴삭기 회원들의 이면계약을 통해 와해 작전과 더불어 타지역 장비를 1일 10시간에 쓰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끝까지 막을 수도 있지만 같은 동업자 정신을 망각하고 장비를 파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동료로서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 파업을 풀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최소한 동업자 정신을 살려 타지역으로 장비를 임대할 때에는 그 지역 임대단가와 작업시간을 지켜주어야 한다. 현재 굴삭기만 1일 8시간 장비임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또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들도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과 서울의 굴삭기 임대업자들로 1

일 8시간 장비임대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은 조직이 미미하다 보니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만 있고 타지역의 1일 8시간 장비임대를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후략)

(2) 『굴삭기 축중 14.9톤으로 상향 조정 운행허가』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5일자 3면)

내 용 : “굴삭기 24톤이하는 32톤 교량 통행허가해야”

서울자주식굴삭기협회, 현장까지 노선도 확대해야
서울자주식굴삭기협회(회장 김○○)는 지난 7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시와 중차량 문제론의 끝에 자주식 굴삭기의 운행허가를 최대 축중 13.9톤에서 14.9톤으로 상향조정하여 운행허가를 신청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협회 회원 140명은 운행허가를 신청해 14.9톤으로 상향 조정된 운행허가를 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서울연, 8시간제 결정 못해’ 사설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15일자 사설에서 “경남, 강원, 광주전남 등에서 1일 8시간 장비임대가 정착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은 조직이 미미해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서울굴삭기연합회는 10월 7일 회원들에게 ‘건설기계 임대차 일일 표준계약서 준수’ 안내공문을 보냈으며, 이보다 전인 10월 1일 긴급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서울연과 관련자에게 피해를 끼쳤기에 사과하고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짜 신문 3면 오른쪽 머리박스에서 ‘굴삭기 축중 14.9톤으로 상향조정 운행허가’ (제목과 본문)라고 보도했는데 ‘...예정’을 오보했기때고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지난 11월 15일자 기사 내용 중, 자주식 굴삭기의 축중을 14.9톤으로 상향조정하여 운행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은 12월 3일 운행허가가 나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월 9일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한국건설기계신문 2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건설기계신문의 통상적인 부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 양 당사자는 향후 굴삭기 사업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기사를 작성하기로 약속합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를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건설기계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2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한국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인도네시아의 혼혈 아동들에 대한 보도에서 신청인의 사례가 언급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 (기사삭제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5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9.

보도내용

MBC-TV : 「W」 프로그램 (2008년 11월 21일 22:50)

내 용 : (전략)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 중학교, 인도네시아 아이들 사이에 한국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다. 15살의 대한이. 대한이는 한국인 아버지와 인도네시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나 대한이에게 한국인 아빠는 낯선 존재일 뿐이다.

(자막) 대한 / 15세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보살핌만 받았고 아빠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한 번도 아빠와 생일을 보낸 적이 없어 아빠와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어요. 자카르타 시내에는 대한이의 이름을 내건 미용실이 있다. 대한이의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이다. 자카르타에 파견된 K씨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하나씨에게 자신의 일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고 만남은 교제로 이어졌다.

▷ (자막)하나 리아와나티 / 대한 어머니

애 아빠와 2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는 혼자고 부인도 없다고 말했어요.

▷ 그러나 파견근무가 끝나자 K씨는 한국의 아내에게 돌아가버렸다. 당시 임신중이었던 하나씨는 홀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의젓하게 자란 대한이. 그러나 아빠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아이의 우유조차 살 형편이 되지 못해 함께 굶어야 했던 날들도 많았다는 하나씨. 결국 하나씨는 한국에 있는 아이 아버지를 어렵게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다. K씨는 대한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우리돈 약 10만 원의 양육비를 약속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조건도 함께였다. 그러나 12년 동안 지급하겠다는 양육비는 4년만에 끊겼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중 ①신청인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②하나씨가 홀로 아이를 낳았다는 부분이 재방송되지 않도록 하며, MBC 인터넷 사이트(www.imbc.com)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VOD에서도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 내 용 : 본 방송 지난 11월 21일자 「W」 프로그램 중 「인도네시아 버려진 한국핏줄」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 여러분께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인도네시아에 버려지고 있는 한국 혼혈아동들의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으나 인도네시아 여성의 입장만을 취재하였고, 신청인에게 사전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이후 피신청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일체 추가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합의사항 참조〉

□

임대아파트 통장인 신청인이 ‘업무상 불법행위’로 고발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것이고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2

청 구 명 : 반론·추후청구

신 청 인 : 서 ○ ○

피신청인 : 양주동두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양주동두천신문 : 『‘운동본부’ 전 임차인대표등 4인 검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12일자 사회면)

내 용 : ‘최초 분양가로 내 집 갖기 운동본부’가 동두천 송내주공 분양전환과 관련해 전 임차인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이에 전 임차인대표 등은 반론문을 발표하고 명예훼손혐의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 김초형 상임이사, 홍순연 이사, 차광철 이사, 김영 이사 등은 10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내 주공 4단지 전 임차인대표 조모 씨와, 주공 5단지 임차인대표 조모 씨, 임대련 정책국장 김모 씨, 주공 4단지 통장 서모 씨등 4명을 고발하는 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주공 4단지 전 임차인 대표 조모 씨가 분양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신청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을 우롱했다”며 “임대주택법 제38조 2에 근거하여 공시를 원칙으로 함에도 주민들을 속였다. 또,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알뜰시장을 개최해 자금을 받았으며,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통과된 중요사안들을 추진함에 있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련 정책국장 김모 씨는 현직 A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어 이권과 관련한 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주택공사가 시행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2.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공식발표가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5%인상 저지를 위해 주민 총궐기를 주장했다. 또, 주공 4. 5단지 임차인 대표들에게 활동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명백한 불법인 알뜰시장을 열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2008년 8월 송내 주공 5단지 주민설명회에서 소송준비를 위해 한 세대당 10만원씩 낼 것을 요구했으며, 임차인대표들에게 법적인 절차를 알선해 허위공문서를 배포하는 등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 및 추후보도문

• 제 목 : “‘운동본부’ 전임차인대표 등 4인 검찰에 고발” 기사 관련 반론 및 추후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9월 12일자 사회면에 “전 임차인 대표등 4인 검찰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동두천 송내주공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전 임차인 대표들과 주공4단지 서모 통장이 최초분양가로 내집갖기 운동본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건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공4단지 통장 서모 씨는 자신에 관한 진정내용은 운동본부에 대한 명예훼손과 4단지 주공아파트 분양 자격에 관한 것이었는데, 동두천 송내주공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양주동두천신문 : (1) 『송내주공 분쟁 새 국면, ‘봉합’ 급선무』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9일자 7면)

내 용 : 주민간의 진정 등으로 얼룩졌던 송내주공 4단지가 분양전환을 마치고도 주민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아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최초분양가로 내 집 갖기 운동본부’측 이사진이 전국임대련 소속 김모 씨, 4단지 임차인대표 조모 씨, 5단지 임차인대표 다른 조모 씨, 통장 서모 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가 최근 사법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임차인대표 측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쟁의 불씨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 김초형 상임이사, 차광철, 홍순연, 김영 이사 등은 지난 9월 10일 의정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공 4단지 분양전환 과정과 관련해 전 임차인 대표 측이 주민을 기만하고 불법으로 알뜰시장을 개최하는 등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위치의 사람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4명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조사한 양주경찰서는 지난 11월 17일 진

정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사를 종결하고 법원으로 송치했다.

양주경찰서의 의견서에 따르면 “진정인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다”며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진술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뚜렷한 증거물도 제시하지 않는 상태로 의혹만 제기할 뿐”이라고 설명하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가치가 없는 사안으로 내사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중략)

한편, ‘운동본부’ 측으로부터 진정 당했던 주공 4단지 서모 통장은 임차인대표 측과는 상관없는 인물이며, 운동본부가 제기한 단체에 대한 방해사실이나,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에 입주를 했다는 의혹 역시 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으며, 입주 후 2007년 경

인근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했으나, 이는 임대주택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전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주공으로부터 확인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주민들은 진정결과가 무혐의로 결정난 상황에 ‘운동본부’의 주장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9일자 7면)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2일자 동두천신문 616호 7면 상단에 보도한 ‘운동본부, 전 임차인 대표 등 4인 검찰에 고발’ 기사와 관련해 ‘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정정하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은 관련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동두천신문은 정확한 보도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서울 음대 강사가 과외학생의 부모인 신청인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에 대해 ‘접대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정정보도가 나갔으나 이 정정보도문은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엄 ○ ○
피신청인 : 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0.
처리결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오마이뉴스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9일자)

내 용 :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 “서울 음대 보내려면 룸살롱 접대해라?”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본지의 사실 확인 결과 당시 모임은 강사 임용이나 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인과의 모임이었으며, 지씨가 접대후 2개월 뒤 서울대 강사로 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씨는 제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모

콩쿠르에 입상하게 된 데 대한 사례로 술자리를 마련했을 뿐, 제자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접대 요구도 한 바 없으며, 레슨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와의 관계가 끝났으며 이후 문자메시지 등으로 학부모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협박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룸싸롱 접대 등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실태에 대해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에 “서울대 음대 보내려면 룸살롱 접대해라?”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15일 “룸싸롱에서의 술자리는 단순한 지인 모임이었고, 지씨가 접대가 있는 후 2개월 후 서울대 강사로 임용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인 엄씨 측이 제출한 증거나 지씨 측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씨가 3차례에 걸쳐 학부

모인 엄씨로부터 룸싸롱 접대를 받았고 이를 위해 엄씨가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그리고 룸싸롱 접대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서울음대 동문 출신들로 그중 서울 음대 교수 C씨는 엄씨의 아들이 전공하는 튜바와 같은 관악기 부분을 관장하는 기악부 교수이며, 이 사건 룸싸롱 접대 후 지씨가 6개월 후에 서울대 음대 강사로 채용되었다는 것은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씨는 단순한 지인모임이었고 룸싸롱 접대와 강사채용은 하등 상관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제보자인 엄씨는 엄마로서 아들의 콩쿠르 입상에 감사하기 위해 선물을 하면 했지 누가 룸싸롱 접대를 하겠냐고 항변하면서 룸싸롱 접대는

지씨의 강권에 의한 것이며 지씨가 서울대 강사로 간다고 하면서 서울 음대 출신 선후배간 관계를 자랑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피신청인 주장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

공식인준이 안된 단체는 (가칭)이라는 명칭을 써야함에도 표기 없이 보도되어 일부 단체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정을 구함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과천문화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1.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과천문화신문 : 『향촌마을재건축추진위 신임위원장 선출』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9일자 1면)

내 용 : 별양동 향촌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박익서, 강은주 씨가 새로 선임되어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2월 4일 저녁 7시 과천시청대강당에서 열린 향촌마을 주민총회에서 그동안 추진위를 이끌었던 김동관, 신영자 씨를 이어 박익서, 강은주 씨가 신임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박익서 씨는 현재 과천환경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에 재직중이며, 강은주 씨는 과천어머니폴리스

회장을 맡고 있다.

강은주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별양동 향촌마을 재건축을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 되며, 2종 주거지역이 아니라 반드시 3종 주거지역으로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바로 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8년 12월 9일자 1면에 향촌마을재건축추진위 신임 위원장 선출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칭)향촌마을재건축추진위로 바로 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가 지난 12월 9일자 1면에 향촌마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신임 위원장을 향촌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는 (가칭)향촌마을재건축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주민들의 주민총회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과천문화신문 2009년 1월 30일 이전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에 비해 큰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과천문화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2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워크샵 비용을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7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최 ○ ○
피신청인 : 한국건설기계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집 수 일 : 2008. 12. 12.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한국건설기계신문 : 『언론테러를 한 대한건설기계협회 각성하라』 제하의 사설 (2008년 11월 1일자 2면)

내 용 : (전략)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2월 1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게 건설기계 검사 때 불법회비 징수에 대한 근절지시에 대한 입장을 최소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에게 지금까지 검사소에서 불법으로 부당하게 회비를 징수했던 것을 사과하는 것이 옳다.

그 이후로 본지는 협회비 불법 징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도했는데도 협회에서는 검사소에서 불법 징수하고 있는 협회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체로서의 할 일은 아니다.

계속 불법적으로 회비를 징수하겠단 말이 아닌가. 또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B씨는 지난 9월 24일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을 제공받아 ‘평택’ 불보에서 펌프카 임대업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했다.

수십 년 동안 펌프카임대업자가 검사소에서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이 얼마일까?

이제 와서 워크샵 비용을 제공받고 대한건설기계협회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펌프카협회 수장이라면 최소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 때 불법으로 회비 징수한 실태가 잘못됐다고 제기하며, 불법으로 펌프카 임대사업자에게 징수한 회비에 대해 반환·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 받은 적 없다(또는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받았다는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1일자 제2면 사설에 “언론테러를 한 대한건설기계협회 각성하라”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내용 중에서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B씨는 지난 9월 24일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을 제공받아 평택 불보에서 펌프카 임대업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은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워크샵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관련 반론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8년 11월 1일자 2면 「언론테러를 한 대한건설기계협회 각성하라」 제하의 사실에서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B씨가 지난 9월 24일에 열린 협회의 워크샵 비용을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은 해당 워크샵은 참가자들이 교통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워크샵 주최 측에서 부담했을 뿐 대한건설기계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월 15일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건설기계신문〉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사설의 제목과 동일한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건설기계신문 :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회장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제공 중인 2,500여 권의 도서요약서비스 중 단 3권만 문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마치 모든 서비스가 불법인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북코스모스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2.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뉴시스 : 『북코스모스, 도서요약 서비스 ‘저작권 위반’...손해배상 청구 이어질 듯』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9일자 11:17)

내 용 : 무분별한 출판물 요약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위반’ 판결을 내려,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국내 온라인 도서요약 서비스 회사 중 하나인 북코스모스(대표 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상고심에서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북코스모스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북코스모스는 전국의 관공서와 일반기업체를 대상으로 150여 회원 및 단체를 유치해 불법 도서요약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들 회원 및 단체들의 무더기 중도 계약 해지됐다. 현재도 70여 회원단체들에게 도서요약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출판사의 동의 없이 도서요약을 제작·판매한 사실에 대해 북코스모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단체를 대상으로 출판업계는 민사 소송을 예고한 바 있어 자칫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사태로 변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 도서요약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업체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도서 베스트셀러와 국내 신간도서 요약을 제공해오고 있는 네오넷코리아(www.bookzip.co.kr)

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서관 서비스 받을 때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업계 내에서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나 기업 담당자 등 소비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 과

정에서, 북코스모스 불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받은 관공서의 경우, 해당 도서관 자료가 저작권자나 출판사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문제 삼은 곳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

수입한약재 검사기관들이 시험결과를 조작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와 무관한 서울약령시 아치문을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처 인 : 시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 (회장 박○○)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KBS-1TV : 「930뉴스」 프로그램 (2008년 11월 28일 09:30)

내 용 : 수입한약재의 검사기관으로 선정된 한약재 제조업체입니다. 여기서 중금속과 잔류농약 등을 검사해 적합관정을 내리면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됩니다. 현재 수입한약재를 검사하는 기관은 모두 13곳, 이중 6곳이 시험결과를 조작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중금속 시험보고서를 엉터리로 써 불량한약재에 적합관정을 내려주거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통과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6곳 가운데 5곳이, 지난 3월 식약청이 시험기관으로 지정해준 곳입니다. 하지만 5곳 모두가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시험기관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험기관을 선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습니다. 수입한약재를 자체 검사하던 제조업체들을 서류검사만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해 준 겁니다. 심지어 불량한약재를 유통시켰다가 적발된 업체가 이름을

바꿔 검사기관에 선정됐지만 식약청은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식약청 한약품질과 김춘래 사무관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더 보충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이런 이력들에 대한 감안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적발된 일부 업체는 검찰에 기소됐고 나머지는 행정처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수입한약재는 해마다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23,000여 톤이 수입됩니다. (자료화면 중 서울약령시 입구 방송)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수입한약재 시험결과 조작” 보도시 서울약령시 2번 아치문 방영은 시험결과 조작과는 달라 정정보도 요청

• 내 용 : 2008. 11. 28(금) KBS-1TV 930뉴스 “수입한약재 시험결과 조작” 보도시 서울약령시 명칭이 새겨진 2번 아치문 방영보도는 시험결과 조작과는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보도내용으로 서울약령시 명예훼손과 약령시장 1,000여 회원 상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치명적인 경제적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드리게 된 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정보도 합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서울약령시협회와 관련된 내용을 취

재하여 보도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가. 서울약령시의 환경정비 사업내용 포함

나.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한 노력(원산지 표시 등)

다. 관계자 인터뷰

• 피신청인은 2009년 2월 28일까지 KBS-1TV 저녁 7시 네트워크 뉴스 수도권 코너에 위 항의 내용이 포함된 후속보도를 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월 16일까지 KBS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 협회명이 기재되어 있는 아치의 방영 부분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KBS-1TV : 「뉴스네트워크」 프로그램 (2009년 2월 12일 19:00)

내 용 : 국내 최대의 한약재 시장인 서울 약령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변신하고 있

습니다. 안전한 한약재 유통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방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현대화 사업을 마친 서울 약령시장입니다. 간판은 한방의 특성을 살려 일괄적으로 정비됐고, 어지럽게 공중에 널려있던 전선도 모두 지하로 묻었습니다. 지난 2005년 한방 특구로 지정된 약령시장은 2년여에 걸쳐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인 끝에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면서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지태 (약재 가게 주인) :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약재보다는 차 다려 드시는거 위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그러나 약령시는 협회 차원에서 자구책 노력에 나섰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에 나서는 한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약재는 아예 유통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궁청완 (서울약령시협회 회장) : “규격화된 제품 사용하시면 안전성, 효능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선 초기 빈민 치료기관인 ‘보제원’을 복원을 추진하고 한방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

신청인 개발업체가 성남시와 사전에 결탁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4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엔에스아이 (대표이사 안 ○ ○)

피신청인 : 성남투데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2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성남투데이 : 『1공단, 녹지공원화 여론 ‘재점화’』 제

하의 기사 (2008년 9월 25일자 20:13)

내 용 : 성남 제1공단 특혜성 용도변경에 따른 과밀개발이 점차 가시화 되면서 개발업자가 성남시에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사실상 반려되자, 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조직 재정비를 통한 주민여론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성남 제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하동근)는 최근 성남시민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특혜성 용도변경에 이은 초고층 주상복합 과밀개발에 맞서 1공단 부지에 녹지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진영의 단

결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총력 대응을 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하동근 대표는 “1공단 부지를 싸뜩이 매입한 개발업자가 최근 4차 사업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해 시의회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사실상 반려결정이 내려졌지만, 시가 자문위원회 개최 등 사업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대표는 이어 “1공단 부지가 개인업자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도시개발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주민여론작업을 통해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창근 시의원도 이날 총회에 참석해 “시의회에서도 특혜시비가 일고 있어 시가 주도로 공영개발을 하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3억 원이나 편성을 해 주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의원은 “개발업자가 지금 21.7%의 녹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공원(6%)과 광장(2%)을 제외한 녹지는 연결녹지, 완충녹지로 사실상 주상복합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불과한 사기”라며 “개발업자가 녹지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여 용적을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얻는 등 개발업자의 사업제안서는 결국 녹지공원화를 요구하는 시민적인 여론을 우롱하는 것이고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공단 녹지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가 이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상근자들을 중심으로 비상총회를 개최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시민사회 진영이 강력히 맞서지 않으면 ‘주민제안’이라는 형태로 시에 접수된 개발업자의 개발계획에 대해 일부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녹지공간 비율을 이대엽 성남시장의 1/3 공원조성이라는 공약수준인 30% 정도로 제한을 할 경우 시와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방문 취재하여 성남시 제1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신청인의 입장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도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성남투데이 :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때”』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1일자 19:10)

내 용 : 본 기사는 1공단 부지 개발업체인 (주)NSI가 성남투데이를 상대로 1공단 개발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편파보도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제소를 하였으나, 지난 12월 22일에 개최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주)NSI의 입장에 대해 반론권 차원의 방문취재 보도를 하는 것으로 중재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NSI의 입장을 담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임을 독자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1공단 부지 개발업체인 (주)NSI의 안○○ 대표이사는 “성남시의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업체와 성남시와 사전에 결탁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특히 안대표는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성 폭로로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다 볼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그 동안 업체의 입장 발표를 차례하고 참고 인내하면 진실을 알아주겠지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향후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부당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안대표는 최근 본지에 ‘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1공단 부지 매입배경을 비롯해 사업면적 축소 논란, 도시계획위원회 일정담합 의혹 등에 대한 해명과 함께 1공단 부지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적 측면과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그 의미를 부여했다.

안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1공단 전면공원화를 요구하며 개발을 반대하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량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안대표는 먼저 '1공단 부지의 매입 배경'에 대해 "1998년 5월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개발계획이 제시되었고, 2004년 5월 시가 수립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도 성남제1산업단지를 상업 및 주거시설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획안을 입안했다"며 "당사는 성남시의 이러한 계획과 정책적인 흐름 및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군인공제회 및 기타 관련 투자자들을 설득했고, 그 결과 운 좋게도 1공단 부지 매입을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대표는 "당사가 1공단 부지를 매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성남시는 1공단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 상태였고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사전에 시와 결탁해 부지를 매입했고, 당사와 성남시가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너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주)NSI가 성남 1공단 부지를 매입하기 전의 1공단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의 정책적 흐름을 보았고, 이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성남 1공단 부지를 성남의 랜드마크로서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상업 및 주거시설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는 것이다.

안 대표는 '사업면적 축소 논란'에 대해서도 "1공단의 용도지역상 일반공업지역의 면적(도시계획현황면적)은 106,500㎡(32,272평)이었는데 이 면적 중 22,265㎡(6,735평)는 중앙로 등의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면적으로 시는 2007년 7월 28일 1공단 전체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두는 동시에 2007년 12월~2008년 01월경 도시계획상 면적이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변경하면서 중앙로 등 실제 도로로 사용 중인 면적 22,265㎡에 대하여 자연녹지로 변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공단 개발사업을 위해 (주)NSI가 매입하여야 할 가용부지 면적은 84,235㎡ (사유지:

80,534㎡, 국공유지: 3,701㎡)이고 이 면적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성남시가 요구하는 3분의 1은 바로 이 면적의 33.3%인 28,049㎡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제 현황도로(중앙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해야 한다는 발상자체가 모순이고 당연히 (주)NSI가 실제 쓸 수 있는 땅(가용부지)에서 기부채납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대표는 "성남시가 일반공업지역 중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전이든, 변경 후이든 단지 도시관리계획의 진행과정의 기술상의 문제일 뿐 가용부지의 면적은 변함이 없고 부지의 3분의1 면적도 역시 28,049㎡로 변함이 없다"며 "시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밝혔다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남시의 모르쇠 행정을 비판했다.

안대표는 "아무리 이대엽 시장이 3분의1 공원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벌어진 논란이라고는 하지만 왜 아무런 죄가 없는 개발업체가 그런 (축소)의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대엽 시장의 3분의1 공원화 공약에 업체를 꿰어 맞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안대표는 또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을 제안한 민원인으로서 당사가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과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담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대민행정을 위한 당연한 행정서비스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청한 민원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당연히 관계공무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민원 처리내용에 대해 민원인과 친절히 협의하고 향후 계획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안대표는 그러면서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행정 알리미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그렇게도 극비사항이냐"며 "성남시가 민원인을 배제한 채 밀실행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안대표는 '전방위 로비설 의혹'에 대해서도 "로비사실은 추호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반드시 누구에게 언제 로비를 받

았는지 구체적으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안대표는 이어 “1공단 부지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1공단부지의 용도를 현재의 일반 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는 것이므로 특혜성 용도변경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가

맞지만 의혹은 없다”고 일축했다.

안대표는 “용도지역이 종상향이 되면 용적율과 건폐율이 높아지므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해 혜택을 받아 이를 ‘특혜’라고 한다면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용도변경 과정을 통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주가 받는 혜택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특혜’라는 말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후략) □

오산중앙재래시장 상인회장이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중복 실시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정된 사업구역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오산중앙재래시장 상인회

(회장 유 ○ ○)

2 유 ○ ○

피신청인 : 위클리아이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2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위클리아이 : 『오산중앙재래시장 그들이 싸운 이유?』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6일자 7면)

내 용 : 아케이드사업구역 변경설치 의혹제기
사업명 변경 중복투자 혈세투자 주장

오산중앙재래시장(이하 중앙시장) 아케이트 사업
선정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중앙시장 일부 상인
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26일 중앙시장에서 KBS-1TV ‘내 고향
6시’ 촬영 중 중앙시장변영회 유○○ 회장과 상인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

중앙시장상인회의 불법, 비리 근절과 시장정상화
를 위한 추진위원회(임시회장 조백현, 이하 추진위
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중소
기업청에서 지원한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관련, 시

와 변영회가 본래 사업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5년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실시한 구역에
대해 지난 2007년 같은 구간에 사업명만 다르게 해서
중복사업을 실시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

실제로 2005년도 사업과 관련, 당시 시관계자가 지
역구역변경서류를 경기도중소기업청에 제출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추진위 조백현 회장은 “2005년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 반대한 상인이 몇 명되지 않았는데도
구역을 100%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아케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 원래 중
앙시장 중심상권이었다. 그러나 아케이트 사업이
두번이나 추진되는 동안 기존 상권이 죽었다”며 억
울함을 전했다.

또한 그는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취지대로라면
2007년 아케이트사업실행시 민원을 제기한 구역에
설치됐어야 한다며 아케이트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변영회 유○○ 회장은 “최초 사업구역
을 변경한 것은 본래 구역 상인들이 반대했기 때
문”이며 “아케이드사업과 관련, 민원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후 예산신청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8년 12월 6일자 7면 “오산중앙재래시장 그들이 싸운 이유? ‘아케이드사업 구역 변경설치 의혹제기, 사업명 변경 중복 투자 혈세낭비 주장’”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시장 상인회의 불법비리 근절과 시장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임시회장 조백현)의 주장을 빌어 오산중앙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선정 과정에서 2005년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실시한 구역에 대해 2007년 같은 구간에 사업명만을 다르게 해서 중복사업을 실시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도하고, 2005년 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에 대해 반대한 상인이 몇 명 되지 않았는데도 구역을 100%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2007년도 아케이드설치사업은 기존의 간이 비닐 설치막이 5년의 효용기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의 아케이드 설치막으로 재설치한 것으로 중복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2005년에 현재 구성된 중앙시장 상인회의...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점포의 위치에 처음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당시 그 구역 본래 상인들의 반대가 강해 다른 곳으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위클리와의 : (1) 『누가 진실인가? 오산중앙재래시장 분쟁 검찰로』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0일자 2면)

내 용 : 오산시의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 오산중앙재래시장 상인간 분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고 있다.(본보 12월 6일자 7면 보도)

특히 지난 16일 중앙재래시장 정상화 추진위원회(회장 조백현·이하 추진위)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오산시와 상가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동안 오산시의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는 총 129억 원이며 이중 아케이드 설치 사

업비는 5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지난 2004년 추진된 20억 원 규모의 아케이드 설치사업에서 오산시가 임의적으로 사업구역을 변경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됐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 “재래시장 육성 사업비가 일부 구역에만 편중 지원됐다”며 “오산중앙재래시장 변영회(회장 유제현·이하 변영회)와 오산시의 유착 및 정부보조금 불법수령 등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진정서에 △오산시의 사업계획 무단변경 △일부 상인들 자부담금(10%) 미수령 △시장 이외 구역에 대한 투자 △아케이드 사업비 횡령 의혹 및 중복투자로 인한 세금낭비 △시장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변영회의 폐쇄적 운영 등 변영회와 오산시의 온갖 불법과 비리의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영회 유○○ 회장은 “당시 사업구역을 변경하게 된 원인 제공은 추진위 측 상인들의 극렬한 반대 때문이었다”며 “지금에 와서 다른 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히고 “반대 민원으로 인해 재래시장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정부지원도 끊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 인원은 극소수였다는 것.

추진위 조백현 회장은 “변영회에서 반대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 위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골목당 대략 70%와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케이드 설치에 찬성했고 자부담까지 걸어 상인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산시 연순옥 계장은 “행·재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라며 “상인간 분쟁에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2) 『“억울한 쪽은 우리”』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0일자 2면)

내 용 : 오산중앙재래시장 상인 간 분쟁으로 인해 시장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변영회 측에서는 “검찰 수사를 환영한다. 억울한 쪽은 오히려 우리”라고 밝혔다.

변영회 유○○ 회장(사진)은 “아케이드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던 것이 사업구역 변경을 불러온 이유”라며 “그 때는 아케이드 이전 설치에 대해 아무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번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희장에 따르면 당시 정상화추진위 조백현 회장의 부친을 중심으로 아케이드 설치 반대 움직임이 강했으며 대상구역 상인 80%가 반대했다. 당시 반대 이유는 상가건물 가치 하락과 조망권 등이었다.

유희장은 “이 사실은 번영회 이사회 회의록에도 기록돼 있다”며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해당 상인들의 반대로 돈을 반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현재 설치된 장소를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조희장과 뜻을 함께하는 양원석 씨가 번영회를 찾아와 철회된 구역에 아케이드 설치를 요청해 화해모드로 전환됐으나 또 다시 자존심 싸움으로 대화가 단절됐다”고 말했다.

조희장은 또 “추진위 측은 (구)교육청 광장사업에 쓰일 예산을 아케이드 설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며 “이제는 시의 (구)교육청 활용 사업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이 있다면 단지 시장 전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 뿐”이라며 “하나의 시장인데 함께 힘을 모아 상인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같이 상생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조희장은 끝으로 “현재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그나마 어려운 재래시장에 상인 간 분란으로 정부지원도 어렵게 됐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화해 의지를 밝힌다면 그쪽이 원하는 아케이드 설치 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I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0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경향신문
종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경향신문 : 『연예인 잇단 자살 왜 - 인기 집착·약물
고통이 우울증 키워』 제하의 기사 (2008
년 10월 3일자 9면)

내 용 : 최근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던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탤런트 안재환 씨 자살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톱스타 최진실 씨가 또다시 목을 매 국민들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 같은 자살 도미노는 인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불안에다 네티즌들의 악플과 루머가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진실 씨의 죽음에 앞서 탤런트 안재환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노원구 하계1동 주택가 골목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안씨의 죽음은 거액의 사채에 따른 중압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안씨가 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중략)

여배우 이은주 씨도 2005년 2월 22일 분당 자택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던 때여서 연예계 뿐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자살 이유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우울증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에도 연예인 자살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90년 2월 가수 장덕 씨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숨졌고, 95년 11월에는 전성기를 누리던 그룹 듀스의 김성재 씨가 호텔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96년 1월 1일에는 가수 김광석 씨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듀스 김성재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10월 3일자 9면 ‘연예인 잇단

자살 왜 - 인기 집착·약물 고통이 우울증 키워'
제하의 기사에서 '1990년대에도 연예인 자살 사건
은 끊이지 않았다...95년 11월에는 전성기를 누리
던 그룹 듀스의 김성재 씨가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확인 결과
듀스 그룹의 멤버였던 김성재는 숙소에서 오른쪽
팔목 윗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국과수의 사체 부검 결과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동물 마취제가 검출되었고, 문제의 주사바
늘 자국과 그 당시 사건 피고인이 동물 마취제
'줄테일'을 모 동물 병원에서 사간 적이 있으며,
그 피고인이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어
느 날 찾아와 약물을 사간 사실을 숨겨 달라고
했다는 동물 병원장의 자진신고로 타살이라는
의심이 짙어졌었고,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판
사는 무기징역을 언도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관계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로 선
고 되었습니다.

자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자살이라고
잘못 보도해 고인에게 불명예를 끼쳤으며 그 유족
들에게 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시인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정 보도 합니다. 또한 유족들은 과
거 13년간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
소해 오셨습니다. 저희 신문사에서는 차후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좀 더 세세
한 면까지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속
하면서도 바른 기사를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드립니다
- 내 용 : 「듀스(Deux) 김성재 씨 자살보도 관련」 =
본지 10월 3일자 9면 '연예인 잇단 자살 왜' 기사
에 대해 95년 사망한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 씨의
부검결과 일반약물이 아닌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있어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기소
되었고,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
죄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고인의 자살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
향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항의 보도와 함께
경향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
대상 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
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
월 25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Ⅲ (정정보도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1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매일경제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매일경제 : 『‘한국판 CSI’ 국과수 첫 여성소장 탄생』

제하의 기사 (2008년 7월 11일자 37면)

내 용 :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증거만이 사인을 말해 주지요. 그런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이 미재로 남으면 피해자에게 죄스러워 며칠간 잠도 못 이뤄요.”

범죄수사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감정·연구를 하는 ‘한국판 CSI’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가 1955년 설립된 후 첫 여성 소장을 맞았다.

개방형 직위인 이원태 전 소장 임기가 10일 만료됨에 따라 직위공모를 통해 이날 임기 3년인 신임 국과수 소장으로 임명된 정희선 법과학부장(53·사진)은 “대학 재학 당시 국과수 소장이 한 강연에 매료돼 1978년 국과수에 들어온 뒤 30년 세월이 흘렀고, 남자들도 되기 힘들다는 소장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약독물과장 마약분석과장을 거쳐 2002년부터 법과학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독물·마약분석 감정 분야에서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해 우리나라에 과학수사가 뿌리 내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략)

그런 반면 1995년 가수 듀스 멤버 김성재 돌연사 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금도 자부심을 느낀다.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세인들에게 관심을 끌었고, 한때 타살공방이 있었으나 결국 그는 동물마취약 과다 투입에 의한 자살로 결론이 내려져 타살설을 잠재웠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제 목 : 듀스 김성재 관련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7월 11일자 인물면 “‘한국판 CSI’ 국과수 첫 여성소장 탄생” 제하의 기사에서 1995년 가수 듀스 멤버 김성재 씨가 동물마취약 과다 투입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이 내려져 타살설을 잠재웠다고 보도했으나 사실확인 결과 듀스 그룹의 멤버였던 김성재는 숙소에서 오른쪽 팔목 윗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

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국과수의 사체 부검 결과 사람에게 쓰이지 않는 동물 마취제가 검출되었고, 문제의 주사바늘 자국과 그 당시 사건 피고인이 동물 마취제 ‘줄레틸’을 모 동물 병원에서 사간 적이 있으며, 그 피고인이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어느 날 찾아와 약물을 사간 사실을 숨겨 달라고 했다는 동물 병원장의 자진신고로 타살이라는 의심이 짙어졌었고,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판사는 무기징역을 언도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관계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자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자살이라고 잘못 보도해 고인에게 불명예를 끼쳤으며 그 유족들에게 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시인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정 보도 합니다. 또한 유족들은 과거 13년간 잘못된 언론보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해 오셨습니다. 저희 신문사에서는 차후로 이런 실수를 저질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좀 더 세세한 면까지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신속하면서도 바른 기사를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듀스 김성재’ 정정보도문

• 내 용 : 7월 11일자 국과수 신임 소장 인터뷰 관련, 95년 사망한 듀스 김성재 씨 죽음은 지금까지 자살로 결론난 바 없어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살인죄로 기소돼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정희선 소장은 직접 사망원인이 된 약물이 주사용 동물마취제인 줄레틸임을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9년 1월 6일까지 매일경제 2면에 위 보도문을 박스 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의 활자는 매일경제의 통상적인 정정/반론보도문 크기로 동일하게 하고

(단, 제목의 글자 수를 줄일 수는 없음),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피신청인은 자체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한국판 CSI’ 국과수 첫 여성소장 탄생) 본문 하단에 위 항의 보도문을 첨부한다. 또한 위 항을 이행하면서 일반인이 피신청인이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면에 ‘듀스 김성재’로 검색하는 경우 위 항의 기사를 포털 자체에서 또는 아웃링크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이 위 이행기일까지 위 항의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시하도록 한다.

저희 매일경제에서는 지난 7월 11일자 연예면 보

도와 관련해 故 김성재 씨의 유족께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다소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유족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매일경제에서는 고인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경제 : 『‘듀스 김성재’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6일자 28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IV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고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고뉴스 : 『연예인들 잇따른 자살 ‘또다시 주목’』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8일자)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고뉴스 : 『‘듀스 김성재’, 타살 의혹있는 의문사』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9일자)

내 용 : 본보 10월 2일자 〈최진실 자살, ‘자살 연예인들’ 다시 관심〉, 9월 8일자 〈연예인들 잇따른 자살 ‘또다시 주목’〉 등 보도에서 인기그룹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 씨가 자살했다고 보도한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김성재 씨는 솔로 데뷔 무대를 가진 다음날인 1995년 11월 20일 새벽 숙소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당시 부검결과 일반약물이 아닌 주사용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있어 유력한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기소되었고, 1심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약물과

다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보도한 것을 바로 잡으며, 아울러 유족들께 정중한 사과와 말씀을 드립니다.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V (정정 및 사과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3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네이션코리아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네이션코리아 : 『의원입법으로 ‘자살예방법률안’ 발의된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일자 13:28)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네이션코리아 : 『[정정보도] ‘듀스 김성재’ 타살 의혹 있는 의문사』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6일자 16:55)

내 용 : 본지는 지난 10월 3일자 <의원입법으로 ‘자살예방법률안’ 발의된다>제하의 기사에서 인기 정상의 그룹 듀스의 김성재 씨가 자살했다고 보도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김성재 씨는 솔로 데뷔 무대를 가진 다음날인 1995년 11월 20일 새벽 숙소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당시 부검결과 일반약물이 아닌 주사용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있어 유력한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기소되었고, 1심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상고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지는 이미 관련 기사에서 故 김성재 씨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보도한 것을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유족들께 정중한 사과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오해의 소지를 드린 점도 정중히 사죄를 드립니다. □

신청인 농협이 군납대금 90여억 원을 편취했으며, 납품식자재와 관련된 말썽을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3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나비골농협 (조합장 윤 ○ ○)
피신청인 : 호남매일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6.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호남매일 : (1) 『군납 비리업체 납품신청 말썽』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일자 1면)

내 용 : <속보> 군부대 납품비리와 관련 최근 검찰이 함평나비골 농협 조합장 윤모 씨(5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가운데(본보 10/2일자) 문제의 농협이 또 이 지역 향토사단 등 각 군부대를 상대로 납품 입찰에 나서고 군부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사안이 이러함에도 해당 부대들은 문제 발생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납품거래를 계속하는데다 예하부대에서 조차 납품식자재 불량 문제를 거론, 입찰자격 배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간끌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군 급양관계자들과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김치 납품의 경우 농협과의 직거래가 원칙임에도 지역내 하청 업체를 선정해 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4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기소된 나비골 농협 윤조합장은 서류를 조작해 국방부로부터 고춧가루 납품대금 91억여원을 편취 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위반혐의로 지난달 기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농민들과의 계약재배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천 600만 원을 나비골 농협에 대한 제3자의 연체이자 결제 명목으로 사용, 횡령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조합장은 농민들과의 계약재배 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점을 이용 불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그 중 상당 액수가 편취 또는 횡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군부대와의 계약상 반드시 해당 재배농가의 물품을 구입해 납품해야 함에도 시중에서 사 들이는 바람에 엉뚱한 도매상들의 배만 볼리우게 했다. (후략)

(2) 『군부대 ‘먹을거리’ 과연 안전한가』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일자 6면)

내 용 : <최근 함평 나비골 농협의 고춧가루 군납품비리(본보 10/2일자)가 검찰 수사에 덜미가 잡히는데 이어 그같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최근 문제 농협과 또 다시 재계약하려는 이 지역 향토사단(본보 12/4일자)을 보면 참담스럽기 그지 없다.

입찰자 자격도 이미 취소된 업체이거나와 이를 떠나 전체 군 장병들의 전력을 송투리 채 날려 버릴수도 있는 중대 사안을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처리하려 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수사에서 드러난 대로 문제의 농협은 계약재배 농가들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시중에 나도는 값싼 중국산 고추를 가공해 납품 했다고 한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군납비리업체 납품신청 말썽 사실과 달라 (나비골농협군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보는 오늘 12월 4일자 1면 헤드라인에 『군납비리업체 납품신청 말썽』이라는 제목으로 함평나비골농협 조합장 91억 편취, 횡령혐의 기소 향토사단, 비리사건 알고도 재계약 추진 의혹증폭이란 기사를 사실과 함께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편취금액 91억 원은 03년-05년 사이에 군에 고춧가루 총 납품대금으로 밝혀졌고, 김치납품은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소재류원품(배추)납품 계약에의해 김치임가공 업체에 납품하고 김치완제품은 임가업체에서 군으로 직접 납품 하고 있으며, 더욱이 견고추를 중국산을 사용했다는 사실무근한 기사를 실었던 바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호남매일 : 『정정합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9일자 14면)

내 용 : 본보 12월 4일자 1면 '군납업체...' 기사와 관련 김치납품 임가공업체 납품은 적법한 것으

로 확인됐고 관련시설에 언급된 중국산 고춧가루는 한국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한센인 보호시설인 신청인 단체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이사회 결정으로 임대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1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대구애락원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대구MBC-TV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6.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대구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0월 31일 21:30)

내 용 : ▷앵커 : 한센인 보호시설인 대구 애락원 병원에서 오랜 기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센인들은 진료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십 차례 그것도 똑같은 병명으로 진료비가 청구됐습니다.

▷기자 : 서른 명 가량의 한센인이 모여 사는 대구 애락원. 설립당시부터 이곳에는 한센인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김모 씨의 건강보험급여 내역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부 관련 질병으로 거의 매일 애락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 부터는 상세 불명의 척추증, 고혈압 등으로 수십 차례 진료를 받았고, 당뇨병도 진료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후략)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1월 3일 21:30)

내 용 : ▷앵커 : 지난주 보도를 통해서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이 붙어진 대구 애락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의 자산이 무려 1,000억 원을 넘는다

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곳의 한센인들은 보기에 도 눈물겨운 처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자 : 지난 1913년 미국인 선교사가 한센인 보호시설로 설립한 대구 애락원. 한때 천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예순 살에서 아흔 다섯 살 까지 늙고 병든 한센인 서른 명 정도만 처절한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 된 이들의 숙소는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일까? 싶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문을 열자 칸막이도 없는 공간에 변기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가 절규에 가까운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후략)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1월 4일 21:30)

내 용 : ▷앵커 : 대구문화방송이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대구 애락원 문제, 오늘은 이 재단의 임대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애락원에 있는 한센인들은 이루 말로 다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재단의 자산 운용 실태를 보면 애락원이 과연 한센인 보호시설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 애락원 바로 옆 3층 건물, 애락원 재단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복지관입니다. 낡고 황량한 애락원 건물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 복지관터 2300제곱미터는 애락원 소유지만 재단이사들은 지난 2003년 경북노회에 무려 100년 동안 무상 임대해줬다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후략)

(4)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1월 5일 21:30)

내 용 : ▷앵커 : 대구애락원 사태에 관한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재단이사회의 방만한 운영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전 대형비리로 이사장

이 구축됐는데도, 폐쇄적인 운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자 : 애락원재단이 직원기숙사로 쓰다며 지난해 말 완공한 6층짜리 건물입니다. 하지만 직원도 한센인도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사용승인이 난 건 지난해 12월. 재단이사회는 당초 이 건물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임대가 여의치 않자 몇 달 뒤 매각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한센인을 위해 지은 건물을 매각한다는 비난 여론의 의식해 다시 임대하기로 결정했다가 또 다시 매각수순을 밟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터 4000제곱미터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이곳은 여러 개의 점포가 땅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재단 이사회는 지난 2005년 무려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밀린 임대료를 전액 탕감해줬습니다. 이사회에 구성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꾸러지고 있는 새 이사진 가운데는 이사선임에 탈락하고도 유지이사라는 명목으로 이사가 된 사람이 있고 역시 이사에 탈락한 김모 씨는 감사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후략)

(5)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1월 7일 21:30)
내 용 : (전략)

▷기자 : 애락원 재단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곳에 이르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면서도 수입금이 얼마인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아 원생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단소유 일부 부동산은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나는 등, 임대사업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재단법인의 독립성에 위배된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대구MBC뉴스데스크에서 10월 31일에서 12월 2일까지 6차례에 걸쳐 보도한 내용이 재단의 운영과는 다르게 보도되어 애락원측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① 10월 31일 - 진료비 과다청구는 한센환자들의 특성상 상처가 발생되면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같은 상병으로 수십 차례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혈압측정과 당뇨검사는 원생들의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또한 검사료 청구시 상병코드를 입력한 것을 당뇨병 진단명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② 11월 3일 - 칸막이도 없는 공간에 변기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지만 중증 거동불편자들은 숙소에 칸막이가 있으면 오히려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타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에도 중증 거동불편자의 화장실 칸막이, 문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먹다 남은 보리밥과 쓰레기로 난장판이 된 방 외부 간병인 없이 홀로 생활하는 원생이라 보도했지만 애락원에서는 1기에 2,400원의 부식비로서 원생들이 직접 최우량 부식을 구입하는 등 전국에서 최우량 처우를 하고 있으며 보리쌀은 재단에서 현재까지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재단에서는 외부 간병인을 두려고 하였으나 건강한 원생들이 동료 중증 원생들의 청소·간병을 맡음으로써 본인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서 원생복지차원으로 내부간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11월 4일 - 폐쇄적인 이사회 결정만으로 불투명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임대결정은 정관에 의한 이사회 결정사항이며 임대 전 공인된 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임대가를 결정하며 모든 임대료는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고 100% 부가세 납부를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원생생활지원금으로 전액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임대하고 있는 재단소유 부동산은 없으며, 일부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④ 11월 5일 - 과거 집행부에서 재단이전을 위하여 원생임시거주목적상 건립한 건물이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현재에는 원생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매각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물활용에 대한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⑤ 11월 7일 - 대구시는 지원금 6천만 원에 대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손을 놓고 있다고 보도 하였지만 애락원에서 사용한 당해년도 보조금은 시에서 정한 사용기준표에 의거 익년도 1월 항목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주무관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

습니다. 기숙사는 과거 집행부에서 재단이전을 위하여 원생임시거주목적상 건립한 건물이지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현재에는 원생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매각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물활용에 대한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⑥ 12월 2일 - 4개 노회에서 현 이사진에 대해서 불신임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천 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

재 대구에락원 운영과 관련한 기독교계의 서명은 동은 확인된 바 없으며 기자가 제기한 그 구성원 또한 3개 노회에서 공식인가 된 구성원이 아니며 사적인 모임입니다. 진료비 부당청구 의혹과 관련한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 합동감사단이 집중조사하였다고 했지만 정부합동감사단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감사를 과대 표현한 것입니다. □

도시개발 조합장인 신청인이 수억 원의 경비를 로비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조합원의 동의없이 사업시행사를 선정·계약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대구조정1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일간 대구경북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6.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

보도내용

일간 대구경북 : 『포항 곡강지구 개발 ‘파란’』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9일자 1면)
내 용 : 포항시 흥해읍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추진위원회와 이에 반발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립 양상을 빚으면서 서로 맞고소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지출한 수억 원에 달하는 경비내역 사용처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로비사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흥해읍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3월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업이 시작됐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비상대책위가 설립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시행사와 계약하고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비지 매각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으며, 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변조 하는 등 비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할시청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2006년도에 도시개발사업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조합원들의 동의용으로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난 11월 15일 정관과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에 제출하고 2006년도 위임장을 2008년도에 작성한 것처럼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당시 추진위원장이 체비지 매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가도 받지 않은 체비지 매각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포항 곡강지구 개발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9일자 제1면에 “포항 곡강지구 파란”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장이 로비비용으로 경비를 사용했고,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시행사와 계약하고 인가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비지 매각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합장은 조합의 단체에서는 자금이 없는 상황으로 전혀 경비를 지출한 적이 없으며, 공사의 시행사와 계약을 하였거나 조합의 체비지를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포항 곡강지구 개발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9일자 1면『포항 곡강지구 개발 ‘파란’』제하의 기사에서 ‘도시개발조합장이 로비비용으로 수억 원대의 경비를 사용했고’,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시행사와 계약하고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비지 매각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장모 씨 측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곡강지구 도시개발조합장은 “조합단체에는 보유자금이 없어 지출할 경비라고 할 것이 없으므로 로비운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합장은 “도시개발 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비지라는 말은 아예 성립할 수도 없는 것으로 시행사와 계약을 하거나 체비지 매각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장모 씨 측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 경북신문 2면에 2단 상자기사로 2008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게재하되 제목(포항 곡강지구 개발 관련 반론보도문)의 활자와 크기는 28급 고딕체로 하고, 본문의 활자와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일간 대구경북 : 『포항 곡강지구 개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1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교회 교인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고발을 접수한 노회가 이를 불기소처리하여 고소인이 기탁한 재판비용을 노회재산으로 귀속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대한예수교장로회 시온교회
2. 이○○ 외 8인

피신청인 : 에클레시안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에클레시안뉴스 : 『시온교회 성도, 억울합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9일자 종합면)

내 용 : 1. 본 질의안(문정국)은 예장통합 용천노회 (북시찰)시온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시온교회 시무장로 5인(박○○, 최○○, 신○○, 신○○, 안○○ 장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2007년 4월에 당회를 통해 노회위탁으로, 그리고 시온교회

담임목사(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2007년 5월에 용천노회 앞에 직접 제출하였으나, 당시 용천노회가 기소위원회는 고발 접수된 2건 모두에 대하여 同年 6월과 8월에 각 불기소 처리한 바,

2.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용천노회는 규정에 따라 본 고발인에게 기탁금 1,500,000원(장로고발건-당회로부터의 위탁 500,000원 및 목사고발건 1,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용천노회는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리가 “패소판결”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현재까지 기탁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본인이 제기한 고발건과 관련하여 고발인과 피고발인 모두 어떠한 재판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패소판결” 자체가 事實不在한데, 용천노회가 본인에게 “패소한 것과 같다.”하여 기탁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심히 몰상식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4. 용천노회 기소위원회가, 교회를 더럽히는 여러 범죄를 일삼아 온 시온교회 당회원들의 범죄행

위에 대하여 헌법 절차에 따른 기초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일방적으로 불기소 처리(각하)해 버린 것만 해도 不義한데, 한 술 더 떠 기탁금마저 노회 재산으로 귀속 처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교회의 법질서 확립과 公義를 요구하는 교인(본 질의인)에게 꾀죄를 물어 재산상의 징벌적 손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법통” 최병곤 목사의 견해는 “반환”

5. 본인이 본 교단 증경총회장이며, 총회헌법개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신 최병곤 목사님께 2008년 04월 24일자 전화통화로 문의하였을 때, 최목사님께서 “노회 기소위원회가 사건을 불기소 처리했다면, 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것이기 때문에 재판비용 용도로 낸 기탁금은 당연히 고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시온교회 성도, 억울합니다.”는 정정보도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1월 29일자 메인화면 중앙에 “시온교회 성도 억울합니다.”라는 제목과 “불기소 처리한 용천노회는 기탁금 15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라는 부제로 기사를 올렸으나, 제목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시온교회와 시온교회 당회장과 당회원들의 실명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용천노회 기소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고,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끝난 사건이며, 또, 기탁금 문제는 용천노회가 상회(총회)에 확인하여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소인이 기탁금 반환을 위

해 용천 노회장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의 죄로 강북경찰서에 형사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고소인은 항고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와, 시온교회와 당회원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3,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에클레시아뉴스 : 『시온교회 사건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9일자 종합면)

내 용 : 2008년 11월 29일 게재한 “시온교회 성도 억울합니다.”라는 제목과 “불기소 처리한 용천노회는 기탁금 15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라는 부제로 기사를 올렸었는데, 이는 시온교회 한 교인이 당회원들을 노회에 고발 하면서 재판비용으로 150만 원을 기탁하였으나, 노회에서 이를 불기소 처리하고 기탁금을 노회재산으로 귀속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시온교회와, 시온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의 실명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기탁금의 귀속은 총회의 헌법해석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고발인은 기탁금 반환과 관련해 용천노회장을 상대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정정보도를 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와, 시온교회와 시온교회 담임목사 및 당회원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

신청인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기금을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광주조정3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5.18기념재단 (이사장 윤 ○ ○)

피신청인 : 남도일보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수 일 : 2008. 12.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남도일보 : (1) 『5·18재단 기금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일자 1면)

내 용 : (전략)

김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부터 총 기금 81억 원 중 A은행 투자증권 펀드에 7억 2천 580만 원을 투자했으며, A은행과 B은행에 27억 7천 420만 원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했다.

또한 법인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 1항에서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념재단은 기금의 예치자료를 요구한 김의원의 제안을 묵살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허가도 없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펀드 및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거액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이 밝힌 A은행 투자증권 펀드 현황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부터 이 은행에 7억 2천 580만 원 상당의 기금을 투자했으나 이날 현재 펀드 평가금액은 6억 원으로 하락해 1억 2천 500만 원 상당의 손실액 발생이 확인됐다.

또한 같은 은행에 확인한 결과 후순위 채권에 투자한 기금에서도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손실됐다는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후략)

(2) 『‘5·18기금 유용 의혹’ 규명돼야』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일자 15면)

내 용 : 5월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할 ‘5·18 기금’이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광주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5·18기념재단이 5월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조성한 기금 일부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해 지역사회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광주시 자치행정국 예산 심 의에서 “5·18 기념재단이 지난해부터 A은행에 7억

2천 580만 원 상당의 기금을 투자했으나 이날 현재 펀드 평가금액은 6억 원으로 하락해 1억 2천 500만 원 상당의 손실액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뿐만 아니라, 법인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 1항에서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재단은 이를 무시하고 기금을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김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다른 기금도 아닌 5월 정신을 담보로 마련된 5·18기금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수억 원의 기금까지 날렸다고 하니, 지역민들의 공분은 클 수밖에 없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5.18재단 기금유용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3일자 1면 탐뉴스를 통해 “5·18재단 기금 유용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5·18기념재단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불법으로 유용하였고, 기금 가운데 수십억 원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억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후순위 채권에도 투자해 거액의 손실액이 발생했고,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자 합법적인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12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 김성숙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또 12월 4일 사실에는 김성숙 의원의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여 보도하였고, 기금 투기목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5·18기념재단의 기본재산은 자체 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 결을 거쳐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겼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닌데도 이를 지 키지 않았다고 잘못 보도하여 5·18기념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기금 가운데 수십억 원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니다. 5·18기념재단의 기본재산 중 주식형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7억여 원이며 발생한 손실도 1억여 원입니다. 그런데도 수십억 원이 투자되어 수 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잘못된 보도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이 아닐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순위 채권 및 주식형 펀드 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도 없이 했다고 잘못 보도하였습니다.

후순위채권 매입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도 후순위채권의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임을 인정합니다. 후순위채권은 만 기 시 원금이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본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뒤늦게 들통나자 합법적인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재단은 광주시의회의 김성숙 의원이 요구한 대부분의 자료를 전달했으며, 기본재산 운용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 신문은 사실 확인 없이 김성숙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사실을 통해서는 기금이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합법적인 투자와 투기도 구분하지 못한 채 5·18기념재단의 기본재산 운용을 비난하여 5·18기념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하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3일자 1면 “5·18재단 기금 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및 4일자 “5·18 기금 유용 의혹’ 규명돼야” 제하의 사설에서 5·18 기념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투기목적으로 불법 유용하였으며, 후순위채권 매입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5·18기념재단의 기금운용 기본재산 매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기금을 투기목적으로 불법 유용한 사실은 없었으며, 후순위채권의 경우는 확정금리 상품이므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월 9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남도일보 1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행안부 허가 없이…)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며, 본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남도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9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군산수협 조합장인 신청인이 친척을 조합 상임이사에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5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임 ○ ○
피신청인 : 한국수산경제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7.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한국수산경제신문 : 『현직 조합장, 상임이사 선거에 사전개입 파문』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5일자)

내 용 : 현직 조합장이 상임이사 사전선거 논란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G조합 L조합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 되는 현 상임이사 대신 친척인 S씨(전 직원)를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들을 동원, 강제적으로 추천 서명을 받고 있어 지구별 수협 임원선거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L조합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선출문제에는 조합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데도 이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의원들을 미리 동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선출은 수협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조(선거일)이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15일 사이를 두고 있는 데도 조합장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친인척을 뽑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관련 규정 이외에도 훈시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미리 찬반투표로도 선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측은 “관련규정을 어

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며 “L조합장의 행위는 사전선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15일자 『현직 조합장, 상임이사 선거에 사전개입 파문』 제하의 기사에서 G수협 L조합장이 조합장의 친척을 조합 상임이사에 당선시키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합장의 친척으로 보도된 S씨는 L조합장의 친척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장은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개입이나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L조합장 및 해당 수협, 그리고 관련 대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물사랑연합회가 불법으로 남양호에 양어장 및 농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사)한국물사랑연합회
(회장 염 ○ ○, 이 ○ ○)

피신청인 : DBS-TV

피신청인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7.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DBS-TV : 「HOT 인기뉴스」 프로그램 (2008년 12월 9일 22:10)

내 용 : (전략)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유지인 이 하천에서 불

법으로 농지와 양어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제보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들은 이곳에서 생계를 잇고 있는 어민들입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어로행위가 방해를 받아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어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제의 현장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하천 유수지 등에 들어서고 있는 양어장과 경지정리가 되고 있는 듯한 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규모가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대형 포크레인이 동원된 것을 보니 양어장과 농지 규모를 봐서는 하루 이들 운영해온 것이 아닌 듯 보입니다. (중략)

비닐하우스 안을 살펴보니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이었고, 그 옆 비닐하우스는 대형 냉장고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관계기관에 알아보니 농가용 주택도 아니었고, 창고도 아니며, 더욱이 농

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다른 컨테이너를 살펴보니 4개의 환경 단체이름이 적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남양호의 환경보호를 위해 들어선 단체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환경단체에 대한 그다지 신뢰하는 모습이 아닌 듯 싶습니다. 어민들의 호소를 정리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불법으로 양어장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조성하고 있는 주체가 이곳에 컨테이너를 둔 환경단체라는 것입니다.

둘째, 3년 전에 불법으로 조성된 양어장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그 규모가 기업적으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유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농지나 양어장 등이 금전 1천만 원에 거래됐거나 거래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불법 양어장 운영주체가 어민들의 합법적인 어로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섯째, 어업계원이 최고 4~5척의 배를 사들여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면세유를 부당하게 타서 사용하거나 팔아왔다는 주장(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남양호의 불법 양어장 및 농지조성에 환경단체는 무관하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9일자 HOT 인기뉴스란에 “남양호, 불법 농지와 양어장 조성 위험수위”란 제목의 보도에서 “현재 불법으로 양어장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조성하고 있는 주체가 이곳에 컨테이너를 둔 환경단체라는 것입니다.”란 내용

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곳의 환경단체는 불법으로 양어장 및 농지조성에 무관함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이 보도로 인해 사단법인 물사랑연합회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보도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남양호의 불법 양어장 및 농지조성 관련 환경단체 반론보도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9일자 HOT 인기뉴스란에 “남양호, 불법 농지와 양어장 조성 위험수위”란 제목으로 보도에서 ‘현재 불법으로 양어장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조성하고 있는 주체가 이곳에 컨테이너를 둔 환경단체라는 것입니다’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환경단체가 불법으로 양어장 및 농지조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DBS동아방송(www.dbstv.co.kr) 2008년 12월 30일 오전 9시부터 2009년 1월 6일 오전 9시까지 팝업창을 통해 위 보도문을 게시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DBS-TV : 『남양호의 불법 양어장 및 농지조성 관련 환경단체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0일 09: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이슬람교의 한국진출과 관련된 토론 내용 중 이슬람교가 폭력적인 종교라고 표현해 신자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6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CTS-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CTS-TV : 「이슬람의 한국 진출, 이대로 좋은가」 프로그램 (2008년 8월 18일 23:30)

내 용 : ▷이만석 : 이슬람선교에 저해되는 사람들은 자생테러단체들이 해결해주고 자기들은 평화를 얘기한다.

▷소기천 : 이슬람이 알라를 믿고 유일신이라지만 알라신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황산성 :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들이 믿는 알라는 다르다는 얘기죠?

▷소기천 : 그렇죠. SBS에서 “알라”라는 아랍어를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 표기, 잘못된 표현입니다. 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하기 위해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왔다는 혼합주의적 측면으로 접근

▷소기천 : 평화는 절대복종을 통해 이교도를 거부하고 9·11테러라는 엄청난 파괴앞에 현실화...

▷소기천 : 이슬람은 극단주의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집단.

▷이만석 : 코란은 두 권으로 나뉘었다. 초기 힘을 없을 때는 평화로운 계시가, 메디나 이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이 생겨 타종교를 핍박하고 힘의 논리가 들어간 과격한 내용이 계시.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 만수호 교리라고 하여 코란 2장 106절에 보면 더 나은 계시를 위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평화의 구절은 취소된 구절이다.(자료화면)

인천의 중동 문화원은 이슬람문화의 교두보 역할. (인터뷰) ‘다와’는 문화가 아니라 선교로 ‘다와센터’는 ‘선교센터’로 봐야 한다.

▷소기천 :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저변확대. (외국의 예를 들어) 일부다처로 인해 이슬람 남성이 1명의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5년 후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같이 5년 동안 살다가 이혼하는 식으로 4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이론적 근거.

▷소기천 : 이슬람의 가르침 가운데 구체적인 것은 선지자에게 헌신한 여성은 결혼할 수 있다.

▷황산성 : 코란에서 진리는 바뀔 수 있다고 한

다. 진리는 안바뀌는데...

▷이만석 : 무함마드가 죽을 때까지만 바뀌고 죽은 후엔 절대 안바뀐다는 얘기.

삼촌의 딸과 이모의 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무함마드한테만 허용되고, 일부다처에서 일반인 4명까지 허용되고 무함마드 선지자는 이런 여인까지 허용된다. 이중적 모습을 코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황산성 : 2020년 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하겠다는 전략의 배경이 무엇인지?

▷김도훈 : 2005년 11월 한남동 모스크에서 이슬람 전래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 쿠웨이트 종교성 장관도 오고 우리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는데, 한국의 이슬람화 전략이 비전 2020이라하여 다와센터 전략, 홍보 전략, 결혼전략으로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단계별 전략이 숨어있다.

1단계 : 무슬림 수가 1% 내외일 때 우리나라는 내외국인 포함 비공식 통계가 0.4%이고, 미국, 호주가 이에 해당하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그룹으로 수면 아래 잠복 전략.

2단계 : 2~3% 일 때, 감육의 재소자를 집중적으로 개종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시도.

3단계 : 5% 이상일 때, 무슬림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다산을 통한 방법.

4단계 : 20% 이상일 때, 폭동과 소요가 시작되고 성전(지하드)을 일으킬 테러단을 조직적으로 만들고, 산발적으로 살해사건도 발생. 교회에 대한 방화 시도.

5단계 : 40% 이상일 때, 광범위한 학살이 자행. 상습적인 테러가 발생. 조직화 된 체제에 의해 전시체제와 내전 발생.

6단계 : 기독교와 타종교 박해, 인종청소 시작. 샤리아(이슬람법)를 근간으로 배교자에 압박.

7단계 : 80% 이상일 때, 국가 주도로 무슬림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매우 잔인한 폭력

8단계 : 100%

▷황산성 : 비밀리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광시켜주고, 유학생을 위장하여 선교활동.

▷김성태 : 한국 중앙성원에서 2020년 한국을 이슬람화 하는 목표로 삼는다. 대학에 오일머니가 막대한 기금 기부. 이슬람 연구센터 건립. 호감을 주는 전략. 이슬람 문화센터가 인천에 있는데 이는

이슬람화의 포석이고 추후 정당설립 추진.

57:05(자료화면) :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기 위한 이슬람의 전략이 결혼 정책이다. ▷황산성 : 악마같은 소행을 저들은 종교의 교리에 의해 실행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김성태 :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다. 호전적이다.

▷소기천 : 강력한 사탄의 영이다. 타종교인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무기를 갖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CTS 스페셜 2008, “이슬람의 한국 진출 이대로 좋은가?”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8월 18일자에서 “이슬람의 한국 진출 이대로 좋은가?” 이라는 제목으로 토론 형식을 방영하였습니다. 토론의 내용 중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비하하여 폭력적인 종교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비전 2020’을 선포하여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국가로 만든다는 전략으로 외국인 무슬림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을 통하여 무슬림 수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

신청인 단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에서 부정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징계 또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현재 이의신청 및 소명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7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 ○ ○)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8.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동아일보 : 『공금으로 술먹고 호텔숙박 내부추천자 몇대로 채용도』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일자 10면)

내 용 : 행정안전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감사한 결과 사업회가 회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사적으로 예산을 쓰는 등 20건의 예산과 인사부정 사례가 발견됐다. ▶본보 11월 5일자 A10면 참조

감사를 신청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3일 공개한 행안부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문국주 상임이사의 부정 사례가 많았다.

문 이사는 호텔 유홍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숙박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임원 조찬간담회 명목으로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문이사는 업무추진비로 23차례에 걸쳐 호텔 및 여관 숙박비로 251만 원, 유홍주점 및 호프집에서 215차례에 걸쳐 1122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문이사는 인사위원장을 맡아 승진 최저 소요연수 미달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직 3명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을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2006년부터 3년 동안 상임이사에게 1777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 사업회는 지난해 3월 인사 총원 때 득점 1순위자를 이유 없이 불합격 처리한 뒤 시험에 응시도 하지 않은 내부 추천자를 채용하고, 공개채용합격자가 퇴직하자 서류전형 불합격자인 이모 씨를 단독 면접으로 임용하는 등 특혜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사업회 예산의 1% 이상을 전용할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2006년 3억 4,000만 원, 2007년 2억 8,000만 원을 전용할 때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았다.

행안부는 감사 후 사업회 관계자 2명을 징계하고 17명을 경고했다. 또 문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해임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회는 2004년 10월 함○○ 이사장 취임 이후 측근 인사 기용 의혹과 측근들의 사적인 행사기획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행안부는 감사보고서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감 부족, 인사관리 부적절, 예산 임의전용, 국외출장 관리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특히 문 이사는 민주화운동을 한 인사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회 이난현 기획실장은 “감사 결과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행안부에 소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4일자 사회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서 곳곳 부정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2월 3일 공개한 행안부 ‘감사결과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인용 보도한 ‘감사결과서’라는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감사결과보고서’가 아니었으며, 자료에서 인용한 감사의견들은 현재 이의신청 및 소명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아울러 “행안부가 감사 후 사업회 관계자 2명을 징계하고 17명을 경고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협의되지 않은 예술제 기획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축제위원들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된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7

청 구 명 : 반론 · 손배청구

신 청 인 : 1.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가평지부 (회장 정 ○ ○)

2 정 ○ ○

피신청인 : 경기매일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8

처리결과 : 조정성립 (반론)

취 하 (손배)

보도내용

경기매일 : (1) 『가평예총 3개지부 탈퇴선언, 정 지부장 독단적 언행 원성』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26일자 13면)

내 용 : 오는 27일 제2회 가평종합예술제를 앞두고 가평예술총연합회(이하 예총)소속 세개 단체가 예총의 일방적인 행사기획안과 정명수 지부장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다며, 탈퇴 성명서를 내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평예총에는 미술협회 · 국악협회 · 연예협회 · 문인협회등 4개 단체가 모여 2007년 5월경, 사실상의 개소식을 갖고 현재의 예술문화회관에 상주하게 됐다.

탈퇴를 선언한 이들 3개 단체는 2008년 제2회 가평종합예술제와 관련 “협의되지 않은 예술제 기획안을 정지부장이 일방적으로 통보 하는가 하면, 축제위원들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 때마다 일부사람들이 육두문자가 섞인 언어폭력을 일삼아 회의가 번번이 무산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져 여성 회원들의 경우 무섭고 불안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정지부장의 자질에 문제를 제기 · 예총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후략)

(2) 『가평예술단체, 예총지부장 형사고발』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0일자 14면)

내 용 : 가평군 예총산하 세 개 예술단체는 지난 3일 ‘제2회 시와 노래를 그리다’로 개최된 가평종합예술제 보조금과 관련 가평예총지부장을 사문서 위조로 관계당국에 형사고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가평 예총지부장 정모 씨가(서울거주·남) 지난 9월 26·27일 개최한 제2회 가평종합예술제와 관련, 당시 문·협에서 제출한 행사계획서가 너무 걸치레적이라 반대해 온 세 개 지부들(미협·국악·연합)에 의사를 철회하고 사업계획서를 독단적으로 작성, 군에 보조금 2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가평예총지부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경기매일이 지난 2008년 9월 26일자 13면 『가평예총 3개지부 탈퇴선언 정지부장 독단적 언행 원성』, 2008년 11월 10일자 14면 『가평예술단체, 예총지부장 형사고발』 각각 제하의 기사에서 가평예총 소속에서 탈퇴를 선언한 3개 단체가 2008년 제 2회 가평종합예술제와 관련 ‘협의되지 않은 예술 기획안을 정지부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축제위원들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과 가평예총 산하 3개 단체가 가평종합예술제 보조금신청서류와 관련해 정지부장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예총(지부장 정○○)은 예술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 협회의 이사진을 주축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두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각 협회에서 정지부장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 각서를 썼고 지부장의 면밀한 검토 후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예술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축제위원들도 당초 위촉된 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협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준비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예술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였기에 지부장이 예술제 기획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거나 축제위원들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가평예총소속 단체가 정지부장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정지부장은 본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사법당국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에 관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가평예총지부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경기매일이 지난 2008년 9월 26일자 13면 “가평예총 3개 지부 탈퇴선언 정지부장 독단적 언행 원성”, 2008년 11월 10일자 14면 “가평예술단체, 예총지부장 형사고발” 각각 제하의 기사에서 가평예총 소속에서 탈퇴를 선언한 3개 단체가 2008년 제2회 가평종합예술제와 관련 ‘협의되지 않은 예술 기획안을 정지부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축제위원들까지 마음대로 바꾸는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과 가평예총 산하 3개 단체가 가평종합예술제 보조금신청서류와 관련해 정지부장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예총(지부장 정○○)은 예술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 협회의 이사진을 주축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두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일부 협회에서 정지부장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합의 각서를 썼고 지부장의 면밀한 검토 후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예술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축제위원들도 당초 위촉된 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협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준비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예술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였기에 지부장이 예술제 기획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거나 축제위원들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으며, 또한 가평예총소속 단체가 정지부장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정지부장은 본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사법당국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에 관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매일 2009년 1월 9일까지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9월 26일자 13면 - “예술제 기획안 일방적 통보...언어폭력난무”)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

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경기매일 : 『가평예총지부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
하의 기사 (2009년 1월 9일자 2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이 군부대에 납품하는 국산 양파를 중국산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정 ○ ○

피신청인 : YT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9.

처리결과 : 취 하

갑한 제품은 가락시장은 물론 심지어는 군부대에
까지 납품됐습니다.

▷양파 유통업자 : “가락시장에서 판매도 하고 4
개 군부대는 물류센터로 갖다 주고 있어요. 일주일
에 3번 씩 가고 있어요.”

중국산과 국산의 가격차이가 2배 가까이 나는 점
을 노린 것입니다. (후략)

보도내용

Y T N : 「12시 정오뉴스」 프로그램 (2008년 12월 14
일 12:00)

내 용 : ▷앵커 : 중국산 양파와 단무지가 국산으
로 둔갑하는 현장 단속에 YTN이 동행취재했습니
다. 이렇게 국산으로 둔갑한 먹거리는 가락동 농수
산물 시장에서 팔리거나 군부대로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서울 방이동의 비닐하우스촌에 세관원
들이 들이닥칩니다. 내부에선 양파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부분 중국산이지만 껍질을
벗겨 포장할 때는 국내산으로 감쪽같이 둔갑합니
다. 왼쪽이 중국산이고 오른쪽이 국내산입니다. 유
통업자들은 양파 껍질을 벗길 경우 국내산과 중국
산을 구별하기 힘든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렇게 둔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제 목 : 중국산 양파 국산 둔갑 보도에 대한 반
론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14일자 12시 정오
뉴스에서 “중국산 먹을 거리 국산 둔갑”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산 양파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가락
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팔리거나 군부대로 납품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파 유통업자는 “취재 당일 중국산 양
파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위탁받아 작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같은 중국산 양파를 가락시장과 4
개 군부대에 납품한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양파 납품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가락시장과 4
개 군 부대 라고 답변한 것으로 가락시장과 군부
대에 납품한 것은 모두 국산 양파이다”라고 밝혔
습니다. ☐

탈북자인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없이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새전북신문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새전북신문 : 『“할 일 있어 정말 다행”』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0일자 6면)

내 용 : 사진설명 : 9일 전주에 정착해 북한인
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자(가명·오른쪽)
씨가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정치범 수용소’에
서 겪었던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략)

새터민 김정자(여·41·가명) 씨는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김씨가 탈북을 처음 마음먹게 된 것은 남한 방
송을 들으면서다. 그는 남한에서 띄어 보낸 속칭
‘빠라’에서 우연찮게 라디오를 습득하면서 탈북을
마음먹게 됐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극동방송’이었다. 라
디오에서 들려오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란 찬송
가를 듣고 노랫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처지와 똑같
았다고 생각한 그는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생각
에 탈북을 시도했다.

지난 1999년 첫 탈북 시도에서 실패한 김씨는 이후
2005년 또 다시 탈북을 감행, 중국과 몽골을 거쳐 한
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해 지난해 3월의 일이다.

처음에는 남한에서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씨는 ‘하나원(남한사회적응 교육을 실
시하는 통일부 기관)’을 나온 뒤 인천에서 무역회
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18년 동안이나 간

호사로 일했지만 남한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
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도 그는 아무렇
지도 않았다. 남한에 온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던 그는 우연찮게
북한 인권문제를 알리는 단체를 알게 됐고, 일과 단
체활동을 병행하다 지금은 다른 일을 제쳐두고 북한
사회의 인권침해를 알리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9년 2월 2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의 편집국장은 2009년 2월 2일까지 편
집국장실에서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
한 부분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인터넷 게재 사진 포함)를 포
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및 사과표명〉



양산시가 특정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경남조정2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양산시 (시장 오 근 섭)

피신청인 : 경남도민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19.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경남도민일보 : 『양산시, 아파트 건설승인 특혜 시비』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8일자 7면)

내 용 : 아파트 건설 허가 조건으로 터널건설 등 과중한 조건부 허가로 일관하던 양산시가 최근 특정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는 10여억 원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해 특혜·형평성 시비를 빚고 있다.

7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양산시 북부동 국도 35호선과 북부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신기빛물펌프장까지 이어지는 제방 위에 길이 290m, 너비 8m 규모의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기택지지구와 연결되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시는 실시설계비 5000만 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지난달 초 공사에 들어갔다.

양산시가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신기택지지구 내 연결도로는 지난 5월 사업승인을 받은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512가구)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게 되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박말태 시의원(무소속, 물금·원동)은 “신기택지지구에서 북부천 제방을 이용해 개설하려는 도시계획도로는 이용도가 낮은데다 인근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 도로개설 후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는데도 시가 10여억 원을 들여 도로개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아파트 건설승인 때는 터널개설과 진입로 개설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는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될 도시계획도로를 시가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시의회 건설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때 인근 이곡지역에 각기 지난 2006년 5월 허가된 새록아파트(1337가구·미착공)와 양지 아파트(1061가구·미착공)는 사업비 300억 원 가량 추정되는 이곡 제2터널 개설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줬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교동지구 일동미라주 아파트(925가구) 역시 사업비 94억 원을 들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5년 12월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양산시, 아파트 건설승인 특혜 시비』 사실과 달라

본지는 2008년 12월 8일(월)자 7면에 <양산시, 아파트 건설승인 특혜 시비>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건설 허가 조건으로 터널건설 등 과중한 조건부 허가로 일관하던 양산시가 최근 특정 아파트 건설사업자에게는 10여억 원에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해 특혜·형평성 시비를 빚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바 있는 도로는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산교~영대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예정 구간 중 교량이 설치되는 신기빛물펌프장~종합운동장 구간이 과도한 사업비의 투자가 불가피하여 지체됨에 따라 우선 단절된 도로의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구간의 끝 지점인 신기빛물펌프장부터 35호 국도선과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6층 이상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사업승인을 하고 있어 양산시와는 무관하며, 경상남도에서 2008년 5월 26일 주택건설사업승인 시에도 아파트단지의 주 출입구는 양산시에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아니라 국도 35호선에서 아파트부지 입구까지 4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사실상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초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시에도 아파트 부지를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 인가 시에는 주택건설사업 신청 전에 512세대의 차량진·출입(4차선)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2007년 4월에 신청되어 2008년 3월에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회를 통과하여 인가되었으므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양산시, 아파트 건설승인 특혜 시비’라는 기사 제목을 달아 마치 양산시에서 특정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듯이 보도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기빛물펌프장 옆 도로와 35호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신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사업승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신청인이 폭행사건 피해자로서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7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2.
처리결과 : 조정성립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월 2일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17일자 '출발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중 「연말 지구대 25시」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심적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사건, 사고가 잦은 연말 시즌을 맞아 각종 범죄사건의 양상을 살펴보고 예방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으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렸습니다. 향후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다하여 국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보도내용

SBS-TV : 「출발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8년 12월 17일 18:00)

내 용 : ▷앵커 : 1년 중 각종 사건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연말! 그 중 취객들로 인한 사건 사고는 전체 사고건수의 60%에 달합니다. 취객들의 무법천지로 변한 밤거리, 시민의 안전을 사수하라! 송년의 밤거리를 지키는 경찰 지구대 25시가 시작됩니다. (중략)

▷내레이션 : 비슷한 시각 ○○ 경찰서 ○○ 지구대. 그런데 피해자는 이 분입니다.

▷내레이션 : 길 가던 행인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해놓고 피의자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피의자 : 나가 살아봐야 할 일도 없고 집어넣어라 제발.

▷내레이션 : 사과는 커녕 오히려 안하무인!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막무가내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내레이션 : 만취 상태의 취객 때문에 벌어진 한밤의 소동.... 지구대를 발각 뒤집어 놓고 경찰서에 연행되고 나서야 겨우 일단락됩니다. (후략)

합의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및 사과>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이 유령단체이며, 신청인이
자격증 없이 수화통역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이○○
 피신청인 : iDBN
 종재부 : 서울제1중재부
 접수일 : 2008. 12. 2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iDBN :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불법 개원 반대시위』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일자 종합면)

내용 : 지난 11월 29일 광주에서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회’라는 유령단체가 청각장애인복지관을 개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6시간 30분의 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200여명의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은 유령단체 회원이며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준비위원회 위원인 이○○과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이○○은 대화에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은 정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개원식을 진행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한국농아인협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이라는 현판식을 거행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은 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회’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니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찰 조사과정에 수화 통역사 자격증도 없이 개입을 하여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정직한 수화통역사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만행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일삼는 이○○의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전국의 한국농아인 협회의 회원 35만 명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농아인 협회의 회원들은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개관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광주사랑나눔회 청각장애인복지관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2월 3일자 메인면 TV 프로그램 U수화뉴스에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회 유령단체가 청각장애인복지관을 개원하는 것을 반

대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회는 유령단체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사랑나눔회로 밝혀졌으며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회라는 약칭을 사용한 적법한 사회복지기관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유령단체 회원이며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준비위원회 위원인 이○○과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이○○은 대화에 응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원장은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의 의뢰를 받고 대화 장소에 도착 하였으나 농아인협회가 경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경찰이 요구한 내용과 일치 하지 않았고 전웅섭(준비위원회 청각장애 2급 명예관장)이 청각장애인 복지관장이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려 했는데 변승일 씨와 김상완 씨가 참석을 거절하여 임호연 목사님의 동의 하에 이○○은 되돌아 왔습니다”

‘이○○은 정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개원식을 진행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한국농아인협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이라는 현판식을 거행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은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거에는 허가에서 현재는 신고절차에 의해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이 늦게 승인되어 연말 안에 복지관 개원식을 진행하기로 후원자 측과 약속이 되어있어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가칭)청각장애인복지관이라는 현판에 대해서는 개원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은 이름뿐인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회’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니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찰 조사과정에 수화 통역사 자격증도 없이 개입을 하여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정직한 수화통역사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만행도 자행하였다’라고 보도 했으나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회’ 원장이라는 직책에 어울리게 협회에서 통역이 미진한 장애인들의 통역을 의뢰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온 자이며 이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2006년 검찰에 이를 고소하였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로 밝혀졌으

며 협회 수화통역사의 통역과정이 미진하여 장애인들의 인권을 고려치 않은 통역인들에게 충고를 하는 등의 가장 이상적인 통역을 통해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통역인으로, 자격증은 없으나 청각장애인 교회 전도사 직책으로 수화로 설교하고 진행하는 전문적인 통역인으로 한국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중 사랑나눔회라는 시설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일삼은 이○○의 광주 청각장애인 복지관 개관을 전국의 한국농아인 협회의 회원 35만 명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국농아인 협회의 회원들은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개관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은 35만 명이 아니며 이에 10% 정도인 3만 5천여 명이며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도 아니고 일부의 임원들이 고의적으로 이○○을 중상모략해서 협회장 선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켓을 통해 사기꾼 등으로 무고한 불법에 대하여 이○○이 집회관련자들 중 중앙회 변○○ 회장, 사무처장 이○○, 남○○ 목사, 이○○ 목사, 김○○ 목사, 김○○ 목사, 김○○ 목사 등 60여명을 경찰에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0

청 구 명 : 정정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iDBN)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회장 변 승 일

조정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의 제목을 2009년 2월 1일 09:00부터 2009년 2월 2일 09:00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iDBN>의 「U수화뉴스」

섹션의 주요뉴스 목록에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연결되도록 하되, 아래 보도문의 내용을 수화로 통역한 동영상도 함께 게재하도록 한다.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아래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조정대상보도 페이지 하단에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동영상과 함께 게재한다.

1) 제 목 :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반대시위 관련 정정 및 반론

2) 내 용 : 본 방송의 작년 12월 3일 「광주청각장애인복지관 불법 개원 반대시위」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아래 사항에 대해 이○○ 씨의 반론을 전해드립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회’가 유령단체라는 보도에 대해, ‘사랑나눔회’는 2004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업을 승인받아 법인에 소속된 적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이 씨가 복지관 개원을 반대하는 한국농아인협회 회원들과의 대화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씨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단상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약속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주변 목사들의 만류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씨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은 없으나 충분한 수화능력을 갖추고 장애인들의 통역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 회원수는 35만명이 아닌 3만 5천명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2.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i D B N :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반대시위 관련 정
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9년 2월 1

일자 종합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이 유령단체이며, 신청인이 자격증 없이 수화통역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에이블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3.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2008서울조정38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2008서울조정380의 결정조서 참조>

보도내용

에이블뉴스 :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불법 개원 반
대시위』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4
일자)
내 용 : <2008서울조정380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에이블뉴스 : 『광주 청각장애인복지관 반대 시위관
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9
년 1월 31일자)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신청인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하의 기사 (2008년 12월 10일자 3면)

내 용 :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
난 언론인이나 가족이 수령한 언론인이나 의혹에
대한 해명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인이나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해명이
가장 많았다.

본인수령자 가운데 경향신문 윤전실 장 아무개
차장은 “윤전 쪽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있다. 하루
건너 쉰다.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었다.
3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다. 현지 있는 사람과
같이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도내용

미디어오늘 : 『본인 수령자, “직접 논농사” 해명』 제

○○신문 독자서비스국 김아무개 차장은 “아버님이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농약은 아버님이 구입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냈다”면서 “매주는 못 내려 가지만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12월 10일 「‘본인 수령자, “직접 논 농사” 해명’ 제하의 기사에서 ○○신문 독자서비스국 김아무개 차장은 “아버님이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땅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아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고,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알려왔습니다

• 내 용 : 지난 12월 10일 「‘본인수령자, “직접 논 농사” 해명’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신문 독자서비스국 김아무개 차장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합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월 14일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미디어오늘 2면에 게재하되, 미디어오늘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미디어오늘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약사회의 관계자가 ‘종근당처럼 타 제약사들도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송 ○ ○)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펜잘’ 자발적 리콜, ‘게보린’은 모르쇠』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6일자 산업면)

내 용 : 15일부터 종근당이 안전성 논란이 야기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이 든 진통제 ‘펜잘’에 대해 전격적으로 자발적 리콜조치를 시행하

고 있는 가운데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 같은 성분이 든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의 소극적인 대처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삼진제약의 게보린과 종근당 펜잘, 바이엘헬스케어 사리돈에이 등이다. 각 제약사 홈페이지 제품정보에 따르면 이 약들에는 각각 이소프로필안티피린 (Isopropylantipyrine)이 150mg씩 들어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이 성분은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이다.

건약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의약품 적색경보 6호’를 통해 게보린, 사리돈에이, 펜잘 등의 진통제

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종근당이 15일 펜잘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지만 정작 진통제시장에서 점유율 1위 제품을 판매하는 삼진제약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의견 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어 국민 건강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제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삼진제약이 게보린 홈페이지를 통해 “변함 없는 자세로 게보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생산과 판매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열진통제 시장의 리더로써 고객 행복에 대한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건약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두 달이 넘게 조사만 하고 있다는데 발매된 지도 오래된 약인데 조사할 것이 많지도 않을 것”이라며 “종근당처럼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펜잘 리콜 관련 기사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입장 정정보도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6일자 산업면에 “펜잘 자발적 리콜, 게보린은 모르쇠”라는 제목으로 건약 관계자가 ‘종근당처럼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의 내용은 해당 관계자와의 인터뷰 도중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으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주장도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메디컬투데이 : 『(고침) ‘펜잘’ 자발적 리콜, ‘게보린’은 모르쇠』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0일자 산업면)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V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4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각 취하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국민일보 :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일자 1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2일자 2면)

내 용 : 본보는 2008년 10월 3일자 1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제하 기사의 표에서 1995년 사망한 듀스 김성재 씨를 자살한 연예인 중 한 명으로 예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씨의 죽음과 관련,

타살 가능성이 있어 용의자인 여자 친구가 살인죄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기징역, 2심과 3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졌으며, 고인의 자살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Ⅷ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5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연합뉴스 : (1) 『끊이지 않는 연예인 자살사건』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8일자 14:22)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2)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예인 자살사건』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일자)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연합뉴스 : 『故 김성재 母 “아들 명예 되찾고 싶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1일자 09:00)

내 용 : 지난 1995년 11월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로 활약하다 솔로로 데뷔한 김성재가 숙소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그 후로 만 13년이 넘게 흘렀지만 고(故) 김성재의 어머니 육○○(63) 씨의 눈에서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 풀리지 않은 의문에 속이 타는데다 연예인의 자살 사건마다 아들의 이름이 오르내려 더 가슴이 찢어진다. 지난해에도 최진실과 안재환 등 연이은 연예인의 충격적인 자살 사건이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냈다.

육씨는 “그동안 일부러 TV와 신문 등을 안 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안재환, 최진실 씨 사건에 너무 가슴이 아파 인터넷을 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성재의 이름이 다시 너무 많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자살로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든 언론이 합세한 듯 자살로 몰아가고 있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못 알려져 있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왜 연예인의 죽음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명칭으로 바뀌며 성재의 이름이 거론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족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를 절대 아물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처럼 생각될 때마다 있습니다”

육씨는 “안재환, 최진실 씨의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충분히 알 거 같다”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

어주고 싶었다. 연예인의 죽음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그는 아들의 죽음과 관련해 왜곡된 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난 13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왔으나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아들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뜻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다.

“성재는 당시 스태프와 숙소로 사용하던 호텔에서 서 오른쪽 팔목 윗부분 안쪽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긴 채 사망했는데 성재는 오른손잡이예요. 오른팔 주사바늘 자국이 있는 그 부분에는 스스로 주사할 수 없다는 거죠. 어찌다 간신히 한 번 정도는 스킨듯 잘못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28바늘을 자기가 놓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다 부검 결과 주사용 동물 마취제가 몸에서 나왔는데 그게 약물중독, 복용

으로 둔갑했어요. 성재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요”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듀스의 김성재는 팬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우상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점점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육씨가 그동안 수없이 마음속으로 삭여온 분을 이제라도 풀고자 하는 것은 변함없이 성재를 사랑해주는 이들 때문이다.

그는 “성재는 절대로 자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으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내가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사실로 각인되어질까 두려워 꼭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싹텄다”고 밝혔다. (후략)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Ⅶ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6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브레이크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각 취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브레이크뉴스 : 『최진실 죽음 계기 긴급점검』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8일자 연예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Ⅷ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유에프오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유에프오뉴스 : 『잇따르는 연예인 자살사건』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유에프오뉴스 : 『<정정보도>김성재, 타살 의혹 짙은
의문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8
일자 사회면)

내 용 : UFO뉴스는 지난해 10월 2일자 연
예란에 '잇따르는 연예인 자살사건' 기사를 게재하
면서 '1995년 11월에는 그룹 듀스의 김성재 씨가 호
텔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재 씨는 당시 솔로 데뷔 무대를 가
진 이튿날 새벽 숙소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
으며, 부검결과 동물용 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
혐의가 짙어 유력한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살인 혐
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 피고인은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
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는 증거가 불충
분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김성재 씨
가 구하기조차 어려운 동물용 마취제로 자살할 이
유가 없는 등 그의 죽음을 둘러싼 타살의혹은 여
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사실 확인없이 김성재 씨의 사
망을 자살로 보도한 오류를 바로잡으며, 유족께 심
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

동료의사가 개발한 심장질환 관련 수술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신청인이 부작용의 원인은 주입기구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 ○ ○
피신청인 : 데일리메디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데일리메디 : (1) 『○○근 수술법 공론화시킨 건대
심장내과』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2일자 뉴스면)

내 용 : [초점 상]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칼
잡이로 통하는 송○○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가 근래 화두의 정점에 서 있다. 그가 고안한
'CARVAR 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
술)'이 의료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쟁점은 이 수술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보험
을 적용시킬 것인가 여부. 당사자인 송○○ 교수는
10여 년 이상된 수술 결과물을 통해 이를 입증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흉부외과학회 내에서
소위 '안티 송○○'으로 알려진 교수들의 필사적인
반대와 저지가 뒤따르고 있다. 데일리메디는 이와

관련, 금번 송○○ 교수 수술법의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시킨(금년 추계 심장학회서 구연 발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A교수와 과장인 B교수를 어렵게 만나봤다. (중략)

최근 보험 적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 교수의 CARVAR(카바) 수술법에 대해 당사자적인 건대병원 심장내과 A교수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10월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송○○ 교수에게서 'CARVAR 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을 받은 후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인해 재수술 받은 환자 4건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CARVAR 수술의 부작용을 학회에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일이어서 어찌보면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 됐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송○○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위를 해명했다.

실제로 데일리메디가 취재한 결과 그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 A교수는 "CARVAR 수술 후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한 것은 송 교수가 말했듯이 '폴리스탄 심정지액 주입기구'(이하 폴리스탄) 사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 수술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송교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CARVAR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수술 후 관상동맥이 좁아져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4명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독특한 경험이어서 심장학회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학회에 발표하는 것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교수 주장대로 폴리스탄을 사용해서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며 "이유는 관상동맥협착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4명 모두 폴리스탄을 사용했고 폴리스탄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 중 부작용을 보인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카바수술법이 더욱 확실한 예측을 위해서는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평가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오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 교수의 CARVAR 수술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사망률이 없다는 등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해 많은 의사들이 '어떻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A교수는 "카바수술의 경우 수학적 계산과정 없이 정답을 푼 격이어서 일반인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송○○ 교수가 계산과정을 풀어줬으면 의문이 많이 풀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심장내과 B교수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그는 "송○○ 교수가 시행하고 있는 CARVAR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폴리스탄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면 그런 것"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2) 『부담 커진 건대병원 심장내과 '입장 번복』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8일자)

내 용 : (전략)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 피력한 A교수. 그는 타 매체(코메디닷컴)에 데일리메디가 자신의 입장을 왜곡했다는 인터뷰를 했다. 데일리메디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 A교수와 이틀간 접했던 모든 내용, 즉 첫째 날과 달라진 그의 일문일답을 기재한다.[편집자주]

▲12월 1일 첫째날(사안 중 CARVAR 수술 부작용 원인에 관련된 것만 게재)

Q: CARVAR 수술법에 대한 안전성과 논란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수술 후,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한 환자 4명의 사례를 학회에 보고했다. 송○○ 교수는 폴리스탄 심정지액 주입기구(이하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수술한 후 환자 4명에서 관상동맥협착증이 나타나 재수술했다. 이 과정에서 흉부외과 신○○ 교수가 심장내과에 와서 부작용 원인에 대해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말 폴리스탄에 의한 것인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오래 두고 봐야 한다.

Q: 송○○ 교수는 폴리스탄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CARVAR 수술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설명했다. 실제로 부작용이 나타난 이들 환자 4명은 모두 폴리스탄을 사용한 환자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폴리스탄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 부작용 사례가 없는가?

A: 관상동맥협착증이 나타난 4명 환자 모두 송교수가 말한 것처럼 폴리스탄을 사용한 시기에 수술 받은 것이 맞다. 그리고 아직까지 폴리스탄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는 부작용을 보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Q: 그렇다면 폴리스탄에 의한 부작용으로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

A: 관상동맥협착증이 발생한 것은 독특한 경험인데 그 원인에 대해 어떤 한 가지로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해봐야 하는데 오래 두고 봐야 한다.(장기관찰 필요성 주장)

데일리메디는 이 같은 질의 응답을 통해 송○○교수와 A교수간 공통 분모를 확인했고 확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그 해답을 ‘폴리스탄’으로 추측했다. 이번 송○○교수 CARVAR 수술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부분인 만큼 독자들에게 정확한 문제 원인을 제공하고자 폴리스탄 위주로 내용을 게재했다.

▲12월 2일 둘째날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기자는 오전 A교수로부터 “추가 설명할게 있으니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날 오후 늦게 만난 A교수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나갔으니 수정해 반영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하면서 CARVAR 수술 부작용 원인에 대해 전날 설명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을 소개했다.

Q: 보도된 기사에 대해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싶은가?

A: CARVAR 수술 후 발생하는 관상동맥 협착이 모두 폴리스탄 카테터(폴리스탄)에 의한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지를 수 없다. 이번 심장학회에 발표한 내용도 혈관 내 초음파 소견을 근거로 과도한 이물질에 대한 염증반응 등 관상동맥 외부의 압박으로 인한 문제로 협착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즉,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 맞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모두 삭제해야 하며, 폴리스탄 이외 또 다른 기전에 의한 협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전 날 말했던 입장과 180도 달라진 표현. 그날 A교수는 외부 압박

가능성은 제기하지 않음)

Q: 그럼 송○○교수가 말한 것처럼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모두(부작용 4건) 폴리스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매우 전문적인 얘기라서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다만 관상동맥협착증 부작용을 보인 4명 환자 모두 폴리스탄처럼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바깥에서 눌린 관상동맥 압박소견’도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서 중요한 것은 A교수가 첫 날에는 전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음 날 기사가 나간 후 새롭게 말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현재 의료계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두번에 걸쳐, 특히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말이 바뀌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CARVAR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견해, 본보의 보도내용에 오류”

• 내 용 : 본 데일리메디는 지난 12월 2일 『송○○수술법 공론화시킨 건대 심장내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가 CARVAR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이 합병증은 폴리스탄 심정지액 주입기구에 의한 것이고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는 이 합병증이 폴리스탄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를 계속 견지해 왔으며 취재과정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대한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정정 요구에 대해 본 매체는 12월 8일 『부담커진 건대병원 심장내과 입장번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는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으며 잘못 게재된 기사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것 뿐입니다. 본 매체는 이 기사들로 인해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는 취재과정에서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진의 의견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오류의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인이 촬영한 자연 다큐멘터리 영상을 동의없이 방송에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89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모 ○ ○
피신청인 :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1,00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2009년 1월 20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본 사건의 조정대상 프로그램이 이후에 재방송, 인터넷 방송 등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스크롤에 <영상협조 : 모○○>라고 표시한다.
-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해 피신청인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도내용

KBS-1TV : 「환경스페셜」 프로그램 (2008년 10월 8일 22:00)
내 용 : 『둥지, 경이로운 건축술』 제목의 방송 중 검은딱새의 번식 장면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개발한 심장판막성형술(CARVAR)의 안전성에 관해 의료계의 비판이 있고, 관련 수술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코메디닷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월 11일자 뉴스면)

내 용 : 자신이 개발한 심장 의료기구의 예상 수익 200억 원을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발표해 일부 언론에 의해 '시대의 양심'으로 떠오른 의사에 대해 다른 의학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기구를 이용한 수술이 동물실험도 거치지 않은 채 시행돼 환자들을 '위험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것.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의학자들은 '언론의 선정적 보도 → 환자 급증 → 모르모트식 수술'의 후진국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황우석 사태'일까, 아니면 '스타 의사

보도내용

코메디닷컴 : (1) 『'200억 기부' 심장수술 명이가 '왕따' 된 까닭?』 제하의 기사 (2008년 11

에 대한 판촉 걸기' 일까?

건국대병원 심장혈관외과클리닉의 송○○ 교수는 지난해 말 '자녀 2명에게 갈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재산을 사후 사회에 내 놓겠다'는 유언장을 공개했다. 송교수는 1988년 심장병 환자에게 뇌사자의 판막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고 1992년에는 국내 최초로 심장이식 수술에 성공해 의료계에서는 잘 알려진 의사다. (중략)

송교수의 수술법은 CARVAR(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 성형) 수술로 불리며 판막 주변에 특정한 링을 끼워 근육을 고정하는 방법이다. 송교수는 기존의 인공판막 이식에 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획기적 수술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린 대한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주 한라병원 흉부외과 조○○ 박사는 “동물실험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송교수는 이에 대해 “특허와 관련됐기 때문에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학술대회에서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안○ 교수는 “송교수의 수술법은 최소 4%에게서 대동맥이 좁아지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기존 방법의 수술은 1% 정도”라며 안전하지 않을 수술을 고집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앞서 4월 관상동맥연구회 심포지엄과 10월 심장학회 등에서도 CARVAR 수술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김○○ 교수는 이 수술을 받은 환자 1명의 심장동맥이 좁아져 재수술했다고,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한○○ 교수는 이 수술을 받은 환자 4명의 심장동맥이 좁아졌다고 보고한 것. (중략)

코메디닷컴(www.kormedi.com)의 취재 결과 송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1명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이식을 기다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CARVAR 수술의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의 가족은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흉부외과학회에서 안전성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송교수는 사망사고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흉부외과 의사는 “CARVAR 수술과 관련해 2명이 숨진 것으로 알

고 있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CARVAR 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의료 기술 결정 신청을 해놓았다. 본보가 입수한 '신의료 기술 결정신청 관련 학회 의견 회신'에 따르면 흉부외과학회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3~5년 이상의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새로운 수술법이라기보다는 기존 판막 수술 방법들을 조합한 수술법이며 △비용면에서도 장점이 없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송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CARVAR 수술을 계속하다 사고가 잦아 병원 측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를 제재하려는 병원에 반발해 2007년 여름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의 한 교수는 “이 수술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심장내과가 공동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송교수가 사표를 내고 나가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스타의사’ 송○○ 200억 기부?...“글쎄?”』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17일자 뉴스면)

내 용 : (전략)

송교수는 “200억 원이 넘는 전 재산 중 자녀의 결혼자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내가 개발한 심장판막 보조장치 덕분에 갑자기 재산이 늘어 마음이 흔들릴지 몰라 썰기를 박으려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개발한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CARVAR)’ 수술 기구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수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메디닷컴 취재진의 확인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랐다.

2007년 12월 7일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송교수는 자신이 만든 의료기기가 날개 돋친 듯 팔려 200억 원의 수익이 생겼고 조만간 재산이 1,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사이언씨티가 강원중소기업청(강원중기청)에 신고한 2007년 매출은 33억 원이었다. 신제품뿐 아니라 이전부터 판매하고 있었던 수입제품을 합쳐 20가지 의료기구의 총매출이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수익은 3억~4억

원 정도다.

송교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 수출 문의가 폭주했다고 밝혔지만 이 보도가 나간 지 11개월이 지난 2008년 11월 현재 수출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또 2007년 12월 7일 기사에서는 CARVAR 수술 기구와 수술법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특허를 받았다고 소개됐지만 지난 12일 송교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에서는 특허를 받았지만 정작 세계적 준거가 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받지 못한 것으로 돼 있다. (중략)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냉담했다. 일부는 격앙했다. 언론에 첫 보도된 당시는 송교수가 개발한 CARVAR 수술의 안전성을 놓고 의료계에서 비판이 불거져 나올 때였고 송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CARVAR 수술의 보험 적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송교수의 순수성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송교수는 최근 지난해의 언론보도와 달리 당시 CARVAR와 무관한 기존재산이 200억 원 이상이었으며 이를 기증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는 “CARVAR와 상관 없이 이미 개인재산은 200억 원 정도 된다”며 “CARVAR로 버는 돈은 200억 원에 더해지는 돈이며 나중에 돈을 벌게 됐을 때 그 돈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묶이기 싫어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해 언론 보도에서는 송교수의 기존 재산이 40억 원이었고 의료기구 수익으로 2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돼 있다. 송교수는 지난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동일한 보도가 나갔지만 이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어 일반인들은 △수술기구가 국내외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렸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는 송교수가 일정액을 기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까지 하다.

그는 또 지난 6일 열린 홍부외과학회에서 CARVAR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공격 당하자 “혹시라도 돈벌이 하려고 했다고 생각할까 봐 개인재산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공증해서 보냈다”며 “전 재산을 다 내놨고 CARVAR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가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3) 『수술법 개발, ‘佛 도둑’ - ‘韓 명의’ 이렇게 달랐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1월 20일자 뉴스면)

내 용 : (전략)

코메디닷컴의 취재결과 송교수에 의해 줄지에 ‘도둑 의사’로 몰린 프랑스 파리병원의 엠마뉘엘 랑삭 박사는 그동안 새로운 수술법에 대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동료 의사들의 객관적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랑삭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새 수술법을 환자에 적용하기에 앞서 새 수술법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려 준 뒤 어떤 방법으로 수술 받을 것인지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송교수에 앞서 유럽 특허를 따냈고, 미국에서는 올 연말 이전에 끝날 예정인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며 수술을 하지 않고 있다. (중략)

우선 송교수가 개발한 CARVAR(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 성형) 수술 검증과 관련, “동물실험과 지난 10여 년 간의 수술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학계의 요구에 대해, 송교수는 “데이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지만, 특허 도용 우려 때문에 학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송교수는 지난 6일 대한홍부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장에서 동료 의사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요구하자 “내년 7월쯤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교수는 19일 의학전문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2년간의 CARVAR 수술 데이터를 만들어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면서도 “학계나 언론에는 당장 제공할 의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학적 논의의 첫 출발점인 ‘피어 리뷰’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랑삭 박사는 유럽홍부학회 학술지에 자신의 수술법에 대한 데이터를 ‘수술 중 사망자’ ‘부작용 발생률’ ‘재수술을 해야만 했던 케이스’ 등으로 상세히 분류해 제출했다. 유럽홍부학회는 이를 학회지와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여러 동료 의사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송교수가 학계에 제출한 CARVAR 관련 국제 논문으로는 지난 2006년 유럽홍부학회 학회지에 실린 논문(제목 ‘Novel technique of aortic valvuloplasty’)이 있다.

이 논문에서 송교수는 “1997~2004년 모두 69명

을 CARVAR로 수술했으며, 수술 중 사망자는 없었고 모두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송교수는 장점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술 환자가 5~10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다.

송교수는 지난 8월 건국대병원에서 CARVAR 수술법을 공개 시연하는 자리에서 이 수술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처음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114명의 환자에게 CARVAR 수술을 했고, 그중 4명에게 관상동맥 협착증이 발생했는데, 이는 수술 방법의 잘못이 아닌 심장수술시 사용하는 심마비액 투여장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중략)

반면 송교수와 다른 대학병원의 심장 전문 의사에게 번갈아 진료를 받았던 한국 환자들은 “송교수로부터 두 가지 수술방법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4) 『‘홍부외과 스타’ 송명근, 절차 무시하고 임상시험?』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일자 뉴스면)
내 용 : (전략)

송교수는 지난해 말 자녀 2명의 결혼비용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사후 사회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공개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떠오른 의사. 그가 개발한 CARVAR 수술법의 안전성에 대해 학계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유언장의 순수성 여부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송교수는 유럽홍부외과학회지 2006년 4월호에 발표한 ‘대동맥 판막성형술의 새 테크닉(Novel technique of aortic valvuloplasty)’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수술이 서울아산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거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송교수의 CARVAR와 관련한 유일한 국제논문이다.

그러나 코메디닷컴의 확인 결과 송교수는 임상시험 중간에 서울아산병원의 IRB 심사를, 임상시험 막바지에 식약청의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교수가 법적, 윤리적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처럼 논문을 작성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건국대 송○○ 교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1. 본 신문은 지난 2008년 11월 11일에 “200억 기부 심장수술 명의가 왕따된 까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가. 본 신문은 이 기사에서 “이 기구를 이용한 수술이 동물실험도 거치지 않은채 시행되어 환자들을 위험지대로 내몰고 있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의학자들은 ‘언론의 선정적 보도 → 환자 급증 → 모르모트식 수술’의 후진국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었습니다만, 사실 확인 결과 송○○ 교수는 CARVAR 수술법과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 또한 본 신문은 이 기사에서 “코메디닷컴의 취재결과 송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1명이 심장기능이 떨어져 이식을 기다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명을 요구한 한 흉부외과 의사는 “CARVAR 수술과 관련해 2명이 숨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하였었습니다만, 사실 확인 결과 CARVAR 수술법으로 인하여 심장기능이 떨어지거나 사망한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 또한 본 신문은 이 기사에서 “이에 앞서 송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CARVAR 수술을 계속하다가 사고가 잦아 병원측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를 제재하려는 병원에 반발해 2007년 여름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었습니다만, 사실 확인 결과 송교수가 서울아산병원을 사직한 것은 CARVAR 수술의 안전성 논란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각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 본 신문은 2008년 11월 20일에 “수술법 개발, ‘佛 도둑’-‘韓 명의’ 이렇게 달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신문은 이 기사에서 “송교수에 의해 줄지에 ‘도둑 의사’로 몰린 프랑스 파리병원의 엠마뉘엘 랑삭 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였었습니다만,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송교수 측은 ‘도둑 의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랑삭 박사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으며, 송교수가 개발한 제품의 한국 특허 출원일(2003년 3월 28일)이 랑삭 박사의 프랑스 특허 출원일(2003년 8월 8일)보다 앞서므로 송교수의

특허권이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본 신문은 2008년 11월 17일에 “스타의사 송○○ 200억 기부? ... 글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신문은 이 기사에서 송교수 의 200억 원 기부발표와 CARVAR 수술법과 관련한 논란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송교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본지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피신청인 주장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에 서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므로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음. □

하남시가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사전고지도 없이 건축물 철거를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 · 반론보도 및 사과)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하남시 (시장 김 황 식)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4.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1월 6일 21:00)

내 용 : ▷앵커 : 경기도 하남시의 그린벨트 주민들이 갑자기 철거를 당해 어렵고 어설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몰랐노라 변명하고 주민들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기자 :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그린벨트 공터에 멀쩡한 가구와 냉장고 등 세간살이가 나뒹굴고, 이불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밥을 지으려 했는지 쌀을 안쳐놓은 밥솥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5가구 주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지만 갑작스런 철거작업으로 이처럼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민 : “된장이랑 이거.. 어떻게 사느냐고, 애들 책 좀 봐 애들 책, 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기자 : 철거 작업을 하면서 끄집어낸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땅바닥에 널브러져 이게 살림살이 인

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지난 2004년 이후 장애인 가정을 포함해 모두 35가구 주민들이 조립식 주택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철거로 비록 무허가였지만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주민 : “내동댕이 쳐가지고 어떻게 해 살림을.. 어떻게 하라고..”

▷기자 : 철거 이후 갈 곳이 없게 된 주민들은 전기, 수도마저 끊긴 이곳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빨래를 못해 옷은 갈아입지도 못합니다. 밤이 되면 촛불을 켜놓고 저녁을 먹어야 하고, 잠자리는 천막에 스티로폼이 전부입니다.

▷주민 : “밤에 춥다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고 깬다 또 누웠다 또 깨어나고.. 아기들도 있고 같이 자니까..”

▷기자 : 고물을 줍거나 하루 하루 품을 팔아 생 활하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2004년 당시 하남시장이 살 곳이 없는 자신들을 위해 이 땅을 내주며 살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난 달 1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철거를 통보한 뒤 주민들이 시장을 만나 철거연기를 요구했는데도 다음 날 바로 철거를 해 주민들이 오갈 곳이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중략)

▷기자 :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도 했고, 지난 4년 동안 우편물도 받았으며 전기요금도 납부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법에 따라 집행한 강제철거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곧 닥쳐올 겨울을 어디

서 보내야 할지 막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8년 11월 7일 18:00)

〈보도내용 (1) 참조〉

(3)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 (2008년 11월 10일 08:30)

〈보도내용 (1)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하남시 철거현장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6일자 뉴스데스크, 11월 7일자 뉴스투데이, 11월 10일자 오늘 아침에서 “막무가내 철거”와 “날벼락 철거에 주민들 난민 신세”라는 제목으로 2004년 당시 하남시장이 이 땅을 내어주어 살게 했었고, 하남시의 급박한 철거 작업으로 하루하루 품을 팔아 생활하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도 한 35가구 주민들이 전기와 수도가 끊겨 난민신세가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전 하남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인 사유지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하여 주민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장애인 재활용품 작업장으로 활용되었던 지역이 당시의 장애인 작업장 종사원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인 현재의 철거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여 입주한 것이고 주민들을 위하여 하남시에서는 수도를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2) 거주자는 2006년 5월 주민등록 전입자와 그 동거인 8명이며 그 중에 2명만 장애인으로, 실제 거주자도 35가구가 아니라 5가구 정도에 불과하며, (3) 하루하루 품을 팔아 생활하는 생계형 거주자라기보다는 최신형 고급승용차와 고가 양주,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골프채, 고급 가전제품과 가구를 소유하며 고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재산축재형 거주자 할 것이고, (4) 하남시는 2004년 이후 계고 4회, 고발 3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 거주민에게 충분히 위법사항과 철거대집행 실시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알려주었고, 최근에는 불법 건축물을 분양하려고 시도하는 등 사기분양으로 제3의 피해자가 발생도 우려되고 또한 행위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사유지내에서 불법 건축물이 신축 중에 있어 입주자들의 사회적 안전성과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당하게 철거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 방송 지난 11월 7일 〈뉴스투데이〉 「날벼락 철거에 주민들 '난민 신세'」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전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인 해당 지역을 주민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하남시에서는 2004년 이후 계고 4회, 고발 3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충분히 위법사항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월 5일에 방송하는 MBC-TV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 피신청인 대리인은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 내 용 : 본 방송 지난 11월 6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중 「거리로 내몰린 그린벨트 주민들」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에 심적 불편함을 끼쳐드렸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9년 1월 5일 06: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의료포털사이트가 실시중인 의사평가-찾기 프로그램이 제약사의 주도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코리아메디케어 (대표이사 이○○)
피신청인 : 메디컬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각 조정결정

보도내용

메디컬투데이 : 『논란 속 병원평가, 이제는 제약사가
병원평가?』 제하의 기사 (2008년 10
월 6일자 산업면)

내 용 : 정부가 시행하는 병원평가에서도 효
용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약회
사 계열사가 3개월째 병원평가를 주도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병원평가로 인해 현행법상 환자유인·알
선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의료법에 위반소지가 있
는 데다, 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병·의원들의 원성
도 만만치 않은 상태라 문제다.

분유 등 유제품으로 인지도가 높은 '일동후디스'
는 한 의료정보사이트와 함께 지난 7월부터 병원
평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매달 회
를 달리해 벌써 3회째에 이르고 있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 따르면 '내가 다니는 병원, 만족도 평가
하고 건강 선물받자'는 모토로 환자들이 직접 동
네 병의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후기를 남기
도록 하고 있다.

환자는 평가할 병원을 직접 검색해 찾아내 직접
'환자만족도 평가와 후기'를 작성하면 추후 추천
을 통해 뮤지컬초대권, 귀चे온게, 생리대 등 경품
을 제공받을 수 있다.

환자만족도 평가는 ▲의사의 친절도 ▲치료결과
만족도 ▲병원시설 만족도 ▲간호서비스 만족도

▲병원의 추천여부 등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 별점
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용 후기는 환자가 직접 병원 진료후 받은 느낌
을 여과없이 적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해 병
원종합평가 점수를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평가가 지극히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평가를 좋게 받은 병
원은 둘째치고 점수를 낮게 받은 병원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2일 해당 병원평가에 따르면, 전체 병원 평균 평
점이 71.45점이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병원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 돼 자칫 '나쁜 병원'
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중략)

특히 이번 평가가 일동제약의 계열사인 일동후
디스가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병·의원들의 불만이 적잖다.

일동후디스는 일동제약 회장인 이○○ 회장이 겸
직하고 있는 회사로, 사실상 한 CEO 밑에서 운용
되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제약사가 병원평가까지
나서면서 평가를 받는 입장인 의료기관의 의사들의
불쾌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제약사가 직접 나서면 구설수에 오를까
싶어 병원평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동후디스
를 내세운 저의도 의심스럽다는 의혹까지 제기되
고 있다.

전남 광주의 C내과 원장은 "병원평가의 취지가
환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인데, 환자
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어폐가 있다"며
"더구나 이를 주관하는 곳이 제약사라는 것이 웬
지 찜찜하다"고 말했다.

대구 D피부과 관계자도 "제약사 계열사가 왜 하
필 병원평가를 하는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일
동 측의 실익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혹여
영업망을 넓히려는 전략은 아닌지, 평가의 목표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 속에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와 관계자는 “정부도 일선 병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매년 의료기관 평가 점수를 세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평가점수를 공개하면 점수가 높은 병원을 밀어준다는 의혹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특정 병원명이 공개되고 이를 통해 병원 매출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환자 유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법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는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한다.
- 코메디닷컴에 대한 왜곡 보도를 정정합니다.
- 내용 : 메디컬투데이는 10월 6일 기사 ‘논란 속 병원 평가, 이제는 제약사가 병원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의료 포털 사이트 코메디닷컴(www.kormedi.com)이 실시 중인 주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Web 2.0 기반 의사 평가-찾기 솔루션’(이하 “병원평가 프로그램”)이 마치 제약사의 주도 아래 환자 유인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적 프로그램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코메디닷컴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본보의 왜곡 보도로 코메디닷컴이 국내 최초로 받은 인터넷혼코드(HonCode) 인증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합니다. 혼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웹사이트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로 본사는 해당 기사들을 본보의 웹사이트에서 완전히 제거했으며, 네이버, 마이데일리 등 포털 사이트에 본보가 올린 기사도 본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10일 이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삭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보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사 작성 전 반드시 해당 취재원에게 사실 확인을 할 것이며, 의도적 왜곡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2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

대표이사 이 ○ ○

조정대리인 최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메디피플(메디컬투데이)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06-25

육성빌딩 3층

대표이사 김 상 원

조정대리인 윤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아래 보도문 제목을 2009년 1월 23일 09:00시부터 24시간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메디컬투데이>의 메인화면 주요뉴스 상위 10번째 이내에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제목과 본문이 검색되도록 한다.

1) 제 목 : 병원평가 관련 ‘코메디닷컴’ 반론

2) 내 용 : 본지는 작년 10월 6일 「논란 속 병원 평가, 이제는 제약사가 병원평가?」 제하의 기사에서 제약회사 계열사인 ‘일동후디스’가 2008년 7월부터 3개월째 병원평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코메디닷컴(www.kormedi.com)’은, 해당 병원 평가 프로그램인 ‘Web 2.0 기반 의사 평가-찾기 솔루션’은 ‘코메디닷컴’이 2007년 6월부터 주도적으로 실시해온 것으로, ‘일동후디스’는 단순 협찬사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의료진 2천여 명과 의료 소비자들 각 병원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과 직접 치료를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2007년 10월 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5.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메디컬투데이 : 『〈반론보도〉논란 속 병원 평가, 이제는 제약사가 병원평가?』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3일자 의료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

신청인 의료포털사이트가 실시중인 의사평가-찾기 프로그램이 제약사의 주도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I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코리아메디케어 (대표이사 이○○)

피신청인 : 아임닥터뉴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각 각하

보도내용

아임닥터뉴스 : (1) 『논란 속 병원 평가, 이제는 제약사가 병원평가?』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6일자 병원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9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아임닥터뉴스는 10월 6일 기사 ‘논란 속 병원 평가, 이제는 제약사가 병원평가?’와 10월 8일 기사 ‘웹사이트서 병원 점수 매기기, 믿을만 한가’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왜곡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의료 포털 사이트 코메디닷컴(www.kormedi.com)이 실시 중인 주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Web 2.0 기반 의사 평가-찾기 솔루션’(이하 “병원평가 프로그램”)이 마치 제약사의 주도 아래 환자 유인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적 프로그램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코메디닷컴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본보의 왜곡 보도로 코메디닷컴이 국내 최초로 받은 인터넷혼코드(HonCode) 인증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합니다. 혼코드는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웹사이트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에 대해 시정 조치로 본사는 해당 기사들을 본보의 웹사이트에서 완전히 제거했으며, 네이버, 마이데일리 등 포털 사이트에 본보가 올린 기사도 본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10일 이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삭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보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사 작성 전 반드시 해당 취재원에게 사실 확인을 할 것이며, 의도적 왜곡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3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

조정대리인 최○○

피신청인 : 주식회사 아임닥터뉴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6-25

육성빌딩 3층

대표이사 박재균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1. 아임닥터뉴스(http://www.iamdoctornews.com)는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

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08년 10월 6일자 『논란 속 병원 평가, 이제는 제약사가 병원평가?』 및 2008년 10월 8일자 『웹사이트서 병원 점수 매기기, 믿을만한가』 제하의 기사에서 제약회사 계열사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의료정보사이트와 함께 병원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평가가 의료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객관성 및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제약회사 계열사는 단순 협찬사로 참여한 것뿐이고 신청인이 주도로 병원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계로부터 인정받은 프로그램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9조제2항 및 「언론조정중재규칙(이하 ‘규칙’)」 제12조제1항 등에 따라 조정신청이

접수된 때에 중재부는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정신청의 경우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피신청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2008년 12월 30일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2008년 12월 31일에 ‘이사감’을 이유로 반송되어, 2009년 1월 5일 16:30 이 사건 조정심리 당시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보정하여 줄 것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2.

〈별 지〉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짜짓기’ 산행의 폐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Q 채널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Q 채널 : 「천일야화」 프로그램 (2008년 11월 3일 24:00)

내 용 : 최근 웰빙의 바람을 타고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인터넷에 등록된 수백 개의 산악회 카페는 수 만명의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평일,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의 산으로 등산객들이 개미떼처럼 모이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산행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일부 수상한 산악회가 눈총을 받고 있다. 짜짓기, 음주가무, 문지마 산행 등으로 얼룩진 산악회의 모습들.. 산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산바람의 천대만상을 천일야화에서 들여다본다!

문지마 산행의 현장!

평일 아침 7시. 충북의 한 실내체육관 앞에 모여 있는 수십 대의 버스들, 그리고 배낭을 둘러 맨 수십 명의 사람들. 버스의 차창에 붙은 산악회의 이름과 행선지로 보아, 산악회의 정기 산행집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버스에 오르자 상황은 달라졌다. 출발 전부터 산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출발과 동시에 버스 안에서는 술잔이 돌고, 질펀한 춤판이 벌어졌다. 더불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중년 남녀의 짜짓기까지! 문지마

관광에서 묻지마 산행으로 변질된 현장! 천일야화가 밀착 취재했다.

싱글, 독신자 산악회의 실체!

- 여성 환영, 초보자 환영 싱글중매산악회

생활정보지에 “여성 환영”, “초보자 환영”, “웰빙 산행” 수상한 광고 글. 해당 광고는 산악회원을 모집하는 글이었지만, 광고를 올린 곳은 다름 아닌 결혼정보업체! 알고 보니, 산악회원 모집 광고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시키기 위한 모집행위에 불과했다. 산악회에 가입하기 위해 찾아간 취재진에게 끊임없이 가입비와 중매비용에 대한 얘기만을 얘기하는 산악회 회장! 산악회를 빙자한 상술을 들여다 본다.

2:2 부부 산행의 실체!

산행을 즐긴다는 한 부부, 평범한 40대의 부부로 보이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부교환 섹스, 스와핑!! 1차 등산, 2차 음주, 3차 모텔로 이어지는 2:2 산행 실태! ‘산악회’, ‘산행’을 빙자해 위험한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을 천일야화가 취재했다.

40,000,000원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2009년 1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합의 이후 「천일야화 89화 - 위험한 산바람」편의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편집 사용이나 재방송 등 일체의 상영 행위를 하지 않으며, 관련 영상물을 판매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은 조정합의 이후 신청인과 관련한 사진 및 영상을 큐체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손해배상금 지급〉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5

청 구 명 :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서울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각 취하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서울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보도내용

서울신문 : 『악몽같은 2008년 연예계』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일자 4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7일자 2면)

내 용 : 듀스(Duex) 김성재 씨 자살 보도 관련, 서울신문 2008년 10월3일자 4면 '악몽같은 2008년 연예계' 기사의 내용 가운데 1995년 사망한 듀스의 전 멤버 김성재 씨의 자살 여부는 지금

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 일반약물이 아닌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있어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기소되었고 1심은 무기징역, 2심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I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6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각 취하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보도내용

세계일보 : 『연예인 또 자살 '쇼크' 청소년 모방 부추길라』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3일자 9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세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10일자 2면)

내 용 : 본지는 지난해 10월 3일자 9면 〈연예인 또 자살 '쇼크' 청소년 모방 부추길라〉 제하의 연예인 자살 관련 기사와 함께 '연예인 사망일지'를 게재하면서 그룹 듀스의 김성재 씨가 95년도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부검 결과 다수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고 체내에서 주사용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연예인 자살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II (후속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7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민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각 취하

보도내용

민주신문 : 『화려한 유리상자 속 삶 그들은 외롭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2일자 8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취하 후 보도문

민주신문 : 『가슴에 묻은 아들, 편히 잠들게 해줬으
 면...』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2일자
 15면)

내 용 : “이유도 모르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사막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유족 둘이 13년
 이란 세월을 아직도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줄지
 에 자식 잃은 슬픔과, 한 순간에 사랑해주던 형이
 사라진 현실의 고통과 그리움을 아십니까? 어째서
 바로 지금 받은 ‘비보’처럼 생생하게 그 괴로움을
 떠오르게 하는지요.”

지난 6일,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육○○ 씨
 는 자신의 아들인 고 김성재 씨의 죽음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살’로 왜곡돼 잘못 알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1995년 11월,
 아들이 영문도 모르는 죽음을 맞은 후 세상과의
 단절 속에 살았다는 그는 최근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사건과 관련, 대다수 언론에서 김성재 씨를
 ‘자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겠
 다고 털어냈다.

“자살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수십 년
 이 넘도록 ‘자살’로 보도되고, 왜곡된 사실이 여
 전히 ‘진실’인양 잘못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피
 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성재는 오른손잡이
 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오른팔 팔꿈치에서
 바로 아래쪽 안쪽부분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지
 요.”

고 김성재 씨는 솔로 데뷔 무대를 가진 다음날
 인 1995년 11월 20일 새벽, 숙소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결과 일반약물이 아닌 주사
 용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연예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어
 났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기소되었고,
 1심에서 검사는 사형을, 판사는 무기징역을 언도했
 지만 상고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
 다.

육○○ 씨는 특히 유족에게 생지옥과도 같았던
 지난 13년간을 ‘연예계 11월의 괴담’이라고 들먹
 여 대고, 연예인의 사망사건이 생기면 ‘찍어내듯’
 앞다투어 쏟아내는 기사 속에 양념처럼 김성재 씨
 의 사망사건이 거론되는 사실이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성재의 억울한 죽음을
 ‘자살’로, ‘약물과다복용’으로 심지어 ‘마약’으로
 까지 둔갑해서 방송과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제 더 이상은
 외면 하거나 좌시할 수 없습니다.”

육○○ 씨는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도서관을 드나
 들며 고 김성재 씨와 관련한 최근 보도들을 죄다
 뒤졌고, 김성재 사망내용을 다룬 언론 중 ‘자살’
 로 처리하거나 자살로 오해할만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을 모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유력 일간지들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이 하나둘
 씩 정정보도를 올렸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았
 다.

그는 앞으로 절대 숨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남아있는 아들(고 김성재 씨의 동생인 김성욱
 씨)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것이
 다. (후략) □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III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주간현대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각 취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주간현대 : 『긴급점검 연예인 왜 자꾸 자살하나?』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12일자 30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95년 사망한 그룹 듀스의 김성재가 타살의혹이 있는데도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고 보도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XIV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399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육 ○ ○
피신청인 : 한국재경신문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각 취하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008서울조정370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보도내용

한국재경신문 : 『안재환 자살 추정, 이은주·정다빈
등 자살연예인 주목』 제하의 기사
(2008년 9월 8일자 연예면)
내 용 : 〈2008서울조정370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신청 후 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한국재경신문 : 『[바로잡습니다] '안재환 자살 추정,

이은주·정다빈 등 자살연예인 주막' 기사』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3일자 연예면)

내 용 : 본지의 지난해 9월 8일자 <안재환 자살 추정, 이은주·정다빈 등 자살연예인 주막>제하의 기사에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그룹 '듀스'의 김성재 씨가 자살했다고 보도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김성재 씨는 1995년 11월 20일 숙소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부검결과 일반약물이 아닌 주사용 동물마취제가 검출되는 등 타살

가능성이 있어 유력한 용의자인 여자친구가 기소돼 1심은 무기징역형,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고인의 자살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지는 이미 관련 기사에서 故 김성재 씨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였고 충분한 사실 확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보도한 것을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유족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부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오해의 소지를 남긴 점도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

연수구의 동 축제장이 정치인 유세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구의회 의장이 행사장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1. 인천연수구의회 (의장 궐 종 배)
2. 궐 종 배

피신청인 : 연수신문

종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조정성립

보도내용

연수신문 : 『동 축제 정치 유세장 변질 우려』 제하의 기사 (2008년 10월 29일자 1면)

내 용 : 연수구 동 축제들이 주민화합을 위한 장으로 거듭 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참석한 뒤 바로 빠져 나가는 행태가 반복되는 한 축제의 의미는 퇴색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7-18일 양일간 올해 9회째를 맞는 연수2동의 술안말축제를 비롯해 4회째의 연수3동 새터말주민화합축제, 2회째인 송도동 해돋이축제가 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0-11일에도 연수1동 머그축제(16회), 선학동 가족사랑축제(12회), 청학동 청학골축제(4회), 동춘2동 복재축제(6회)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축제가 열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연수구의회 궐의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구의원들이 각 축제장 마다 찾아가 축하 및 내빈 소개로 일어나서 인사 등을 한 뒤 바로 빠져 나가는 행태를 보였다.

실제로 S, Y, D동 축제에서는 이름을 알리는 소개가 끝난 뒤 내빈석에 있던 구의원을 비롯해 지역유지 20-30여명이 한꺼번에 빠져 나가는 바람에 내빈석이 텅텅 비는 상황이 연출되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구의회 의장, 전용 승용차가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본 주민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회 의장이 인근도로 한 가운데 전용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축제하는 곳을 찾아 어떤 언행을 보이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을 지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 G씨는 “동에서 심혈을 기울여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무지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자기를 알린 뒤 바로 빠져 나가버려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보고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H씨는 “주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축제가 일부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로 변질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러다가는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가 아닌 정치인들을 알려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H씨는 “축제다운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얼굴 알리는 장이 될거라면 아예 축제를 없애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N동 주민센터 동장은 “축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려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정치인, 지역유지분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구의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구의원들은 주민들과 어울리고도 했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동 축제 정치 유세장 변질 우려」보도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2008년 10월 29일자 제1면에 「동 축제 정치 유세장 변질 우려」라는 제목으로 연수구의 동 축제가 시 정치유세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와 구의회 의장이 행사장에서 불법주차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같은 날짜에 여러 동의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폐단으로써 몇 년 전부터 동료의원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개 동을 하나의 권역별로 묶어 개최하는 방안과 격년제로 하는 방안 등을 무수히 관계부서에 제기하는 등 동 축제 개선에 대하여 노력해왔으며 동 축제가 정치 유세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불법주차차량으로 더 이상 행사장 입구로 들어갈 수 없어 도중에 내리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 차량과 함께 잠시 정차를 하고 다 같이 행사장으로

로 이동하여 인사를 하고 다음 행사장으로 또다시 내빈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였을 뿐으로, 그 많은 행사참여자 및 관계자의 주차차량 속에 유독 의장 차량만이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구민들이 사실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 보도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동 축제 정치 유세장 변질 우려」 보도 관련

• 내 용 : 본 신문 지난 2008년 10월 29일자 제1면 「동 축제 정치 유세장 변질 우려」라는 제목으로 연수구의 동 축제가 시 정치유세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같은 날짜에 여러 동의 축제가 동시에 열리는 폐단으로써 몇 년 전부터 동료의원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개 동을 하나의 권역별로 묶어 개최하는 방안과 격년제로 하는 방안 등을 무수히 관계부서에 제기하는 등 동 축제 개선에 대하여 노력해왔으며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연수신문 2009년 1월 21일 1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구의원 등 인사 시키는 관례 여전, 예비 정치인들 까지도 얼굴 비추기)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연수신문 : 『동 축제 정치유세장 변질우려 보도관련』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1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동료의원에게 욕설 및 인격적 모독을 주고,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1. 광 종 배

2. 이 창 환

피신청인 : 연수신문

중 재 부 : 경기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29.

처리결과 : 조정결정

보도내용

연수신문 : 『구의장 ‘욕설’ 도덕성 제기론』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17일자 1면)

내 용 : 연수구의회 의장이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덕 및 자질론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구의원 S씨에 따르면 최근 구의장이 모 식당에서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왕따를 당할 것이며 뺨지를 당해도 싸다. XX야”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목별생활체육 지원 예산과 관련해 불거진 것으로 일부 의원들의 해당 예산을 각 종목별 협회에 직접 전달하라는 주장에 동참하지 않자 이 같은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의장이 S의원에게 노골적으로 염탐꾼 및 정보탐사꾼으로 몰아 인격적인 모독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의장과 함께 있던 H의원은 S의원에게 “형님 다음에 구의원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잘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동조 하고 나섰다는 것.

이에 대해 S의원은 “민주주의 뿌리는 기초의회에서부터 생성되는 것인데 구의장이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구의장의 전횡은 자신이 공천권이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낡 행동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S의원은 “의장실에 들어갔더니 동료 의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의장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며 “누구보다 의정에 공정을 기해야 할 의장이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며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이 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행동이냐”면서 성토했다.

아울러 S의원은 예산을 어디에 쥐라 마라 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의장은 “본인이 S의원을 상대로 도덕적으로 욕설 등 잘못된 발언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구의장 ‘욕설’ 및 인격적 모독 발언」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2008년 12월 17일자 제1면에 「구의장 ‘욕설’ 도덕성 제기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수구의회 의장이 구의원 S씨를 상대로 욕설 및 인격적 모독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생활체육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S의원이 모 식당에서 욕설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장이 제126회 정례회 관련하여 그동안 S의원과 한 번도 식당에 합석한 사실조차 없었고, 의장실에 함께 한 동료의원에 따르면 의장이 S의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H의원이 S의원에게 차기 구의원 출마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건번호 : 2008경기조정69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광 종 배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인천연수신문사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592-6번지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대표이사 김 경 래

조정대리인 임 ○ ○

주 문 : 피신청인은 [별지] 보도문을 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수신문> 1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당론 위배하면 왕따 등 인격적 모독...)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12.

<별 지> 보도문

• 제 목 : 「구의장 ‘욕설’ 도덕성 제기론」 보도와

관련

•내 용 : 본 신문이 지난 2008년 12월 17일자 제1면에 「구의장 ‘욕설’ 도덕성 제기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수구의회 의장이 구의원 S씨를 상대로 욕설 및 인격적 모독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구의장은 126회 정례회의 기간동안 S의원과 한 번도 식당에서 합석한 사실이 없으며,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1시경 수인역사 관련 설명회 참석 후 S의원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어떠한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또 한 예결위의 종목별 생활체육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이 해당 예산을 각 종목별 협회에 직접 전달하라는 주장에 동참하지 않자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나 동료의원들이 보는 가운데 의장실에서 폭언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조정결정에 의한 보도문

연수신문 : 『구의장 욕설 도덕성 제기론 보도관련』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1일자 1면)

내 용 : <결정조서 참조>



신청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과 후원금 횡령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8전북조정28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송 ○ ○

피신청인 : 전주 MBC-TV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30.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결정

보도내용

전주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2008년 12월 4일 21:30)

내 용 : 모범적인 장애인 복지시설로 알려지면서 독지가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줄을 이었던 한 재활원의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합니다. 밤새도록 손과 발이 묶인 채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의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의사나 감정표현도 어려운 중증 장애우들이었습니다. 전북도내 한 복지시설, 원생들을 위한 침대는 모두 한 권으로 치워진 채 2십여 명이 방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부 원생들은 애완견을 묶을 때 쓰는 줄로 묶여 있습니다. 채 잠이 들지 못 한 한 원생은 1미터 남짓한 줄에 발이 묶인 채 바닥을 기어 다닙니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잠이 든 원생을 돌려 눕혀 보니 수갑을 찬 듯 양

손이 모두 결박돼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포로처럼 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원생은 다른 원생과 줄이 꼬여 힘겨운 듯 연신 신음소리를 냅니다. 네 차례나 방문해 확인해 봤지만 상황은 매일 마찬가지. 밤이 새도록 결박된 원생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시설을 다시 찾아가 물었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펄쩍 뛩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내 말을 바꾸어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킬 때 일시적으로 묶기는 하지만 치료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었을까? 관할 행정기관인 완주군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묵인해 왔습니다. 전문의들은 이같은 결박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현직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이 복지시설에 수용된 원생은 49명으로 모두 중증 정신지체 장애우들입니다.

[CG]정부에서 한 달에 지원되는 돈은 생계급여 2천만 원과 장애수당, 부양수당을 합해 3천만 원. 연간 3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S/U)장애우 개개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원장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원장은 이 돈 가운데 10%를 자기 교회의 헌금으로 징수하고 별도로 수백만 원을 자신의 월급으로 댄다고 말합니다.

이 복지시설이 세상에 알려진 때는 불과 수년전.

스스로 장애를 가진 현직 목사가 폐가와 다름없는 농가주택에서 장애우들을 돌본다는 사실이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자원봉사와 독지가의 손길이 줄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만에 현재의 장소로 재활원이 옮겨졌는데 [CG]현재 과표상만으로도 15억 원에 달하는 땅과 건물은 모두 원장의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서야 개인신고시설로 전환돼 제도권으로 흡수됐지만 완주군은 법적으로 통제하도록 돼있는 후원금마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지가들에게 공개된 낮시간과 달리 몸이 묶인 채 잠들어야 하는 폐쇄된 밤시간의 이중생활로 제대로 의사나 감정표현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우들의 고통은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 년째 자원봉사를 해 왔다는 한 여성은 실상을 알고 난 뒤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2)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8년 12월 5일 06:00)

내 용 : 장애우에 대한 인권유린 현장이 폭로된 문제의 재활원에서 이미 숨진 원생에게도 정부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치단체에 신고도 안된 채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알려진 것보다 수십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예수재활원 원생 인권유린과 원장의 공금횡령사실 없다

• 내 용 : 본 방송사는 2008년 12월 4일 21:00 뉴스데스크, 같은 달 5일 06:00 뉴스투데이, 같은 달 9, 11, 15, 18일 각 21:00 뉴스데스크에서 재활원의 실태 등에 대하여 ‘보육인가 사육인가?’ 등의 제하로 집중 취재하여 시리즈 형태로 방송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방송내용 중 재활원의 인권유린행위, 정부 지원금 부당수령의혹, 교회헌금 부당징수 및 원장 급여 과다수령의혹, 복지법인 전환유도불응 및 재산형성과정의혹, 후원금 및 기부물품 전용의혹, 원생호적 생성과정의혹, 자원봉사자 자책감에 대한 보도 등 방송내용의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제보자 등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거나 방송 편집 과정상의 잘못으로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피신청인 주장

보도 내용은 사실에 의한 것으로, 보도내용에 문제가 없어 신청인 주장을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 □

신청인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수 억의 불법자금을 전달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40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최 철 국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12. 30.

처리결과 : 취 하

보도내용

조선일보 :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박연차 씨가 수억

전달”』 제하의 기사 (2008년 12월 30일자 1면)

내 용 : 박연차(63·구속)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전달한 단서를 일부 잡은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회장의 자금 수억 원이 민주당 최철국(경남 김해울) 의원에게 전달된 정황을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사저(私邸)

가 있는 경남 김해읍 지역구에서 17대에 이어 올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민주당 내에서 당(黨)과 노 전 대통령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다.

김해는 박희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 본사와 골프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박희장을 상대로 최의원 등에게 전달한 자금의 성격을 추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김해를 기반으로 한 박희장의 사업을 도와 주고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과 함께 정치자금 명목 또는 단순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 정치인이 박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도 잡고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지난 2월 박희장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확보해 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 차용증은 국세청이 올 7월부터 박희장 기업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확보했던 것이다. 국세청은 박희장의 소환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농촌환경활동과 관련해 돈을 차용해 갔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박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납세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이 차용증 등 세무조사 자료 일부를 넘기지 않았다가 뒤늦게 검찰에 제출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민주당 최철국 의원 불법 자금 받은 적 없어 (또는 민주당 최철국 의원 불법 자금 수수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2월 30일자 종합 1면에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박연차 씨가 수억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최철국 의원이 박희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철국 의원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 후 보도문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9년 1월 23일자 A2면)

내 용 : 본보 2008년 12월 30일자 A1면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박연차 씨가 수억 전달’ 제하의 기사 등과 관련해 최의원 측에서 박희장 측으로부터 전세금 가압류 해제를 위해 7,000만 원을 수표로 빌려 가압류 해제 후 법원에서 돌려받은 수표를 그대로 반환한 것 외에 불법정치자금은 물론 합법적인 후원금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언론중재신청사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닭꼬치에 비둘기 고기를 사용한다는 제보에 대한 취재 보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14.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MBC-TV : 「불만제로」 프로그램 (2007년 12월 27일 18:50)
내 용 : <2008서울조정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 건 번 호 : 2008서울중재1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박 ○ ○
피 신청 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대표이사 최 문 순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는 신청인 박○○에게 2008년 2월 5일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는 2007. 12. 27. 18:5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TV의 「불만제로」 프로그램 내 “송년특집 닭고기 괴담”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닭꼬치에 비둘기 고기를 사용한다는 제보를 취재하면서 요리교실 강사인 신청인이 유력한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질문과 대답을 하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된 상태에서 20여 초 정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요리교실 강의실에 들어온 PD가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이 사건 방송을 내보내 정신적 피해 및 수강생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8. 1. 2.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3)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방송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1. 14.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

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은 공익을 위해 식품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프로그램의 연말특집으로 편성되었다면서 본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이 사건 방송에서 요리교실 강의실 외부 명패를 보여주는 장면 및 신청인이 PD의 질문에 대답하는 장면에서 앞치마와 썸크대 등 강의실 내부 구조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여주는 장면 등을 요리교실 수강생 등 주위 사람들이 본다면 영상에 나온 인물이 신청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방송 내용에서 나온 바 대로라면 신청인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수강생들한테 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직접적인 신상 공개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담당 PD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강의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촬영·녹음한 것은 신청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방송에 관하여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명패 및 신청인 모습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신청인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영한 행위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적 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기획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 신청인의 나이, 직업, 방송 시간 및 신청인 초상의 노출 시간, 방송 내용 및 인터넷 다시보기 방송, 재방송의 해당부분 삭제 조치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6.

□

눈길 교통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 버스 운전기사인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2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1. 3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8년 1월 11일 20:00)

내 용 : 〈2008서울조정18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2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윤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BS-TV)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하 금 열, 김 수 웅

중재대리인 양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2월 15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신청인이 위 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은 2008. 1. 11. 20: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의 〈8시뉴스〉 프로그램에서 「종일 미끄럼 사고」 제하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옆 차선을 달리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 버스 운전기사인 신청인이 코에서 피를 흘리며 사고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채 실명과 함께 방송하였다.

신청인은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경찰차에 탑승해 있던 중 카메라 기자와 함께 다가온 피신청인 소속 기자가 사고경위에 대해 질문하여 이에 답변하였을 뿐, 인터뷰 당시 카메라 촬영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부상당한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리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였는데, 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이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관광버스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8)을 하여 2008. 1. 30. 본 중재부에서 조정을 진행하다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로 인한 이 사건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손해배상 채권의 성립

가.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 음성, 성명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 사람이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이나 기타 신체적 특징, 음성, 성명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 및 수집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권리이고,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언론이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나 음성, 성명을 촬영 및 수집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촬영 및 수집 과정에서 본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표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표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위 권리들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초상, 음성, 성명을 촬영 및 수집하여 이를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및 이니셜 표기 등의 조치 없이 방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보도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촬영과 수집 그리고 그 공표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양 당사자의 진술과 위 보도자료로 인정되는 위 촬영 및 수집의 경위, 신청인이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고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는 모습 등에다가, 통

상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는 기자가 사고경위에 관한 설명을 구하면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기자가 이를 언론에 보도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신청인은 위 촬영과 수집 및 그 공표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것이나, 나아가 신청인이 코피를 흘리는 흉한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TV에 방영하고, 신청인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임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신청인의 음성과 성명을 변조나 이니셜 표기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방영하여 공표하는 것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통상 교통사고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으로서의 사고의 발생경위나 사고 후 모습을 보도함에 있어 사고 관련자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하며 성명을 이니셜로 표기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사고 관련자로서는 언론의 보도로 시청자에 의하여 본인임이 인식되거나 사고로 입은 흉한 모습이 노출되거나 사고에 본인이 관련되어 있음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신청인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으로서의 피신청인이 촬영 및 수집한 신청인의 초상, 음성, 성명을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 이니셜 표기 등 신청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없게 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초상, 음성, 성명이 방영되는 것 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위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벗어나서는 이유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촬영 및 수집한 신청인의 초상, 음성, 성명을 신청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없게 하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영하여 공표한 것은 신청인의 공표에 관한 묵시적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으로서 그 공표에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초상, 음성, 성명이 그대로 방영되어 신청인의 위와 같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과실로 인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신청인은 위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 또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그 보도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보도가 교통사고의 원인과 발생 경위를 알림으로써 눈길에 차량을 운전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에 있어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위 방영 목적을 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피신청인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초상, 음성, 성명을 그대로 방영한 행위까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신청인의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이 침해됨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위 보도의 목적과 경위 및 내용, 방송시간대, 신청인의 초상 등의 노출시간, 신청인의 나이, 직업, 피신청인의 규모 및 사회적 위치 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신청인은 위 보도로 인하여 관광버스 이용객이 감소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나 위 보도와 이용객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이용객 감소의 정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주문 4.항 기재와 같이 이행할 것을 추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30.

□

일부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치료비 등에 대해 불법 신용대출을 알선하고 있다면서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내부를 공개하고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5.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KBS-2TV : 「VJ 특공대」 프로그램 (2008년 3월 7일
21:55)
내 용 : <2008서울조정7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3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KBS-2TV)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사장 정 연 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 4. 20.까
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
는 경우에는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
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은 2008. 3. 7. 21:55경 피신청인이 운영
하는 KBS-2TV의 「VJ 특공대」 프로그램 내 “위험
천만, 성형대출의 덫”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일부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치료비가 부족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신용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는 제보를 취재하면서 속칭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상태에서 강남 모 치과의
상당실장인 신청인의 상담장면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된 상태(단 “안녕하세요”부분은 변조
안함)에서 40여초 정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 방송에서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 로비 전경과 치과
의 CI(Corporate Identity)를 노출하고 신청인의 음
성 일부를 변조하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본인임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 및 병원을 계속 다니기
힘들게 된 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8. 3. 17.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액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8
서울조정77)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방송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적
인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
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
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
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
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
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
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

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등 참조).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3. 판단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이 성형 열풍에 편승한 대출알선과 이로 인한 피해사례를 짚고자 기획되었다면서 편집상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근무처와 음성이 일부 노출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먼저 당사자 특정에 대해 판단컨데, 이 사건 방송에서 자막으로 <‘ㅎ’ 치과/서울 강남구>라고 표시하면서 상담의뢰인으로 가장한 방송사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장면(2초), 신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 전경(특히 천장의 둥근 원모양의 인테리어와 카운터의 흰색 W 로고를 노출함)을 보여주는 장면(3초), 해당 치과의 유니폼을 입은 신청인이 책상에 앉으면서 “안녕하세요~ 으차”라고 말하는 것이 음성변조되지 않은 장면(3초) 및 해당 치과의 전체 직원 수가 50명 내외인 점과 상담직원 수가 10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치과를 이용한 사람이나 신청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방송에 나온 치과가 어디인지와 방송

에 나온 사람이 신청인임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방송 중 몰래카메라 사용 보도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인격권의 침해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원 판례, 위원회 조정·중재사례 등에 비춰볼 때 언론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여 공인이 아닌 특정 개인의 초상권·음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취재대상의 불법·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보도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클 것(중대한 공익성 원칙), 둘째, 취재대상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설명이 허위라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잠입취재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보도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을 것(필요성과 효과성 원칙), 셋째, 취재 당시를 기준으로 다른 취재방법이 없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졌을 것(보충성, 긴급성 원칙)을 들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상술에 눈먼 일부 병원의 행태를 고발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병원이 어디이고 그 종사자가 누구인지를 노출하는 것까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피신청인이 성형외과 뿐 아니라 치과에서도 신용대출을 알선한다는 제보에 따라 취재한 것으로써 해당 치과와 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의 주된 비판 대상인 일부 악덕 병원 내지 사람들(여성들을 사설대부업체와 연결해서 고리대금의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유흥업소에 취업시키는 일부 업체 및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방송 내용 전반을 보면 취재 당시 전화문의 등 다른 취재기법을 따로 시도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방송사 직원이 취재대상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로 음성과 초상을 녹음·촬영하는 식으로 취재한 점 및 취재 대상에 대한 추가 취재없이 단순히 신청인의 음성만 편집하여 마치 해당 치과가 신용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과 신청인이 특정될

정도로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미흡하게 해서 방송된 본 사건의 경우에는 보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초상권 음성권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방송에 관하여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의 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치과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신청인의 음성 전체를 변조하는 등 신청인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영한 행위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기획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 신청인의 나이, 직업, 방송 시간, 음성과 초상의 노출 시간, 피신청인의 사후조치(인터넷 다시보기 방송 삭제조치 및 심심한 위로 및 사과를 표명) 및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4

30,000,000원

청 구 명 : 손해청구

결 정 문

신 청 인 : (주) 코엔비아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2.

처리결과 : 중재결정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4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코엔비아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5번지

대표이사 고 광 현

보도내용

한겨레 : 『아파트단지 영어마을 대부분 불법』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4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31의 보도내용 참조〉

주 문 : 1. 피신청인 한겨레신문주식회사는 신청인 주식회사 코엔비아(대표이사 김○○)에게 2008년 6월 20일까지 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한겨레신문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2008. 4. 24.자 한겨레 3면(종합면)에 「영어광풍 업고 ‘분양 미끼상품’ 남발」 및 「아파트단지 영어마을 대부분 불법」 제하의 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게재하면서 최근 건설사들이 앞다퉈 아파트 단지 내에 개설 운영 중인 소위 ‘아파트 영어마을’이 대부분 학원법 위반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는데, 기사 중 경기도 광명시 소재 두산 위브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선 영어마을 건물(코엔비아 로고 4개 노출) 사진과 코엔비아가 학원법 위반으로 관할 교육청에 의해 고발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아파트 공용시설물에서 불법으로 영어 교습행위를 벌여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주체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인데도, 수업을 진행한 신청인 업체인 것처럼 보도되고 신청인 회사의 로고 사진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8. 5. 13.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31)을 하였고, 조정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보도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3일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는 사회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품 논란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 건설업체의 과잉 마케팅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인 취지에서 취재되었다면서 피고발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정보도를 해주었고, 신청인 회사의 로고가 노출된 데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만 그 액수는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사건 보도의 취재 경위와 과정, 학원법의 제 규정, 교육청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에서 불법 논란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을 설립 운영하고 있

는 아파트 단지의 이름과 위치를 명기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부합하다고 봐서 가능할 것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을 맺어 단지 내에 영어마을 교실을 운영 중인 신청인 회사의 이름과 로고를 공개하는 것은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대상(“영어마을을 조건으로 내걸고 분양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름과 로고를 공개할 정도의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반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기사 및 사진의 구성방식 등을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보면 신청인 회사가 불법 영어마을 교실의 대표적인 업체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도와 같이 법인인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관하여 신문을 발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업체의 로고를 가리는 등 방지조치를 취한 후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한 신문을 전국에 배포한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의 취지 및 공익성의 정도, 취재 경위, 법익침해의 고의성 정도, 피신청인 언론사의 규모, 신청인 회사의 규모 및 피신청인이 이미 정정보도를 게재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7.

□

신청인 업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당국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II (정정 및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5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 코엔비아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5. 26.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이데일리 : 『아파트 영어마을 ‘불법’ ..건설업계 ‘당혹’』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5일자 산
업면)
내 용 : <2008서울조정125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2008서울조정1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5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코엔비아
대표이사 김 ○ ○
중재대리인 원 ○ ○
피신청인 : 이데일리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J빌딩 13층
대표이사 김 봉 국
중재대리인 남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별지1기재 보도문을 2008
년 5월 30일 09시부터 이데일리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 사이트 초기화면에 5번째 기사로 게재한
다.

2. 피신청인은 별지1기재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링크시켜, 조정대상 기사를 클릭하
면, 별지1기재 보도문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2008
년 6월 9일까지 지급하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
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취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
의 민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중재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이데일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2 기재의 보도
문을 게재하라.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
급하라.

이 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
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8. 5. 26.

<별 지1> 보도문

• 제 목 : “영어마을- ‘코엔비아’ 고발” 관련 정정
보도문

• 내 용 : 본 지의 지난 4월 25일자 “아파트 영어
마을 ‘불법’ ..건설업계 ‘당혹’” 제하의 기사에서
광명시 철산동 D아파트 단지 내에서 영어마을을
운영한 ‘코엔비아’가 학원법 위반으로 교육청으로

부터 고발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교육청이 고발한 곳은 영어마을 운영주체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별지 2〉 보도문

〈2008서울조정125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문 참조〉

중재결정에 의한 보도문

이데일리 : 『(정정보도문) “영어마을- ‘코엔비아’ 고발” 관련』 제하의 기사 (2008년 5월 30일자 산업면)

내 용 : 〈결정문 별지1의 보도문 참조〉

□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탑승인원을 초과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하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 통학버스 및 신청인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MBC-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6. 5.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2008년 5월 7일 06:45)

내 용 : 〈2008서울조정143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5,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6

청 구 명 : 손배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대표이사 엄 기 영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는 신청인 이○○에게 2008년 6월 30일까지 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MBC-TV)는 2008. 5. 7. 06:45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TV의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내 “통학버스 ‘위험’”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탑승인원을 초과하고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위험하다고 1분 53초 동안 보도하면서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의 한 어린이집 버스를 소개하는 장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는 장면, 버스 안의 아이들을 보여주는 장면, 신청인의 하반신을 보여주면서 음성변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하는 장면 및 아이들이 버스에 올라타는 장면 등을 1분여 정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어린이집의 통학버스가 임대 차량이 아니라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경찰서에 적법하게 등록된 어린이보호차

량인데도 마치 불법 임대차량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 음성을 녹음 공개해 정신적 피해 및 어린이집 대기 인원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8. 5. 26.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액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43)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방송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종국적인 중재로 합의하고 6. 5.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참조 판례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방송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여러 어린이집을 취재하는 중에 기사가 실수를 해서 잘못 방송되었다면서 본 방송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심적으로 불편함을 끼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이 사건 방송에서 춘천시 소양로라는 자막을 보여주는 장면(확인 결과 춘천시 소양로에는 어린이집이 2곳임) 및 어린이집이 위치한 도로변에 세운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보호 교사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는 장면, 어린이집 소속 아이들의 체육복(회색 바탕에 연분홍색 세로 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장면, 신청인이 음성변조가 안된 상태에서 기자에게 말하는 장면 등을 어린이집 학부모 등 주위 사람들이 본다면 영상에 나온 버스와 인물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통학 버스와 신청인임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일반의 시청자들이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편집방식, 기자의 멘트 등을 고려하여 그 보도내용이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보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불법 임대

차량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처럼 인식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 방송에서 언론사가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이 과거에 안전사고가 났거나 현재 안전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있거나 또는 어린이 보호차량 표시, 외부 경광등 부착 등 현재 차량 시설을 봤을 때 위험성이 상당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거나 위반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이나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방송 중 해당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2인승이 아니라 성인 기준 15인승 차량인 점, 방송 중 기자의 멘트("3명이 앉아야 할 자리에 4, 5명이 앉아 보니 안전벨트를 땔 공간조차 없어")와 방송 화면(한줄에 어린이 1, 2명이 앉아 있음)이 서로 맞지 않는 점, 신청인 소유 통학 버스가 경찰서에 적법하게 등록된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방송은 신청인의 명예, 신용 및 음성 등 전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방송과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방송에 관하여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 으로서는 방송을 하기 전에 해당 방송 내용 중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12인승 버스 등)이 있는지 확인함과 아울러 보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및 취재 당시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신청인을 특정할 만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 변조하는 등 신청인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을 전국에 방영한 행위는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 및 어린이집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방송 포

로그래의 성격, 보도의 공익성 정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경위, 방송 시간, 해당 어린이집의 규모 및 인지도, 해당 어린이집 및 신청인 음성 노출 시간, 신청인이 춘천MBC를 상대로 한 조정사건에서 정정보도 및 PR보도로 합의한 점(2008강원조정 3), 신청인이 이 사과를 거둬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1.

□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이 협박성 전화를 받겠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얼굴사진을 동의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유 ○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8. 8. 12.

처리결과 : 중재결정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 ○, 모 박 ○ ○

3. 마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마 ○ ○, 모 전 ○ ○

피신청인 : 데일리서프라이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29-7번지
401호

대표이사 서 영 석

주 문 : 1. 피신청인 데일리서프라이즈 주식회사는 신청인들에게 2008년 9월 12일까지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 서프라이즈」(www.daily-seop.com)를 운영하는 피신청인 데일리서프라이즈 주식회사는 2008년 6월 10일 데일리서프라이즈 홈페이지에 「촛불시위 유모차 부대 ‘아이납치’ 협박 받았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유아인 신청인들이 유모차에 타고 있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협박성 전화가 왔

보도내용

데일리서프라이즈 :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 ‘아이납치’ 협박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0일자 사회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22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유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유 ○ ○, 모 심 ○ ○

2. 박 ○ ○

다는 보도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신청인들의 친권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면서 2008. 7. 30.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각 손해배상액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222)을 하였고, 조정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기사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8. 12.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본 건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진을 내보내면서 신청인들의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판단컨대 첫째로 신청인들이 각 부모에 이끌려 집회에 참가한 유아들이긴하나 헌법에 보장된 초상권의 주체로 당연히 인정되는 점, 둘째로 비록 공개된 집회이고 기존 집회 양상과 달리 부모와 유모차에 탄 유아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집회이긴 하나 해당 집회의 전체 참여자들 중 다른 유사한 참가자들이 많은 상태이고 신청인들이 해당 집회의 선두에 선다든지 하는 두드러진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의 초상권이 부인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셋째로 비록 자료사진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기사 내용

인 협박 부분과 신청인들이 전혀 무관한데도 독자들이 통상의 주의로 이 기사를 접하는 경우 이 사건 사진에 등장하는 신청인들과 이 사건 내용이 서로 관련있다고 볼 개연성이 커서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됨으로 인해 유아인 신청인들의 친권자들이 불안감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보면 결과적으로 친권자들을 포함하여 신청인들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한 점이 인정되며 단순한 집회 참가자인 신청인들의 얼굴을 공개할 만한 공익성 및 필요성, 보충성 등이 별도로 인정될 만한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 보도와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초상권 및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보도에 관하여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보도를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인들의 친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신청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등 신청인들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진을 보도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달리 정당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초상권 및 명예 침해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피신청인 언론사의 규모, 이 사건 사진 보도의 성격, 취재 의도, 보도 경위, 신청인들의 연령, 이 사건 사진이 게재된 후 삭제되기까지의 시간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및 친권자들에게 보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점과 각종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 있는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14.

□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신청인들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조 ○ ○ 2. 이 ○ ○ ○

피신청인 : 한국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9. 4.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한국일보 :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 못할 정도”』 제하의 기사 (2008년 6월 11일자 9면)

내 용 : 〈2008서울조정26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8,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조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 ○ ○, 모 소 ○ ○

2. 이 ○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 ○, 모 소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한진빌딩 신관 15층

대표이사 이 중 승

주 문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신청인들에게 2008년 10월 1일까지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에게 금 5,000,000원을, 이○○에게 3,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2008년 6월 11일자 한국일보 9면에 동남아 조기유학 열풍과 실태에 대한 심층 기획보도의 일부분으로 “한국말로 잡담해도 교사가 통제 못할 정도”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현재 말레이시아에 유학 중인 신청인들이 학교 교실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기사에 미성년인 신청인들의 초상을 친권자들의 동의 없이 내보내 출국한지 얼마 안되는 신청인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2008. 9. 4.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각 금 500만원(신청인 조○○)과 금 300만원(신청인 이○○)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267)을 하였으며, 2008. 9. 11. 위 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하고 조정신청을 취하한 후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합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무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미성년인 신청인들의 친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의 초상을 촬영하고 이를 모자이크 등의 조치 없이 주변에서 식별 가능할 정도로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보도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단컨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사가 동남아 조기유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의 보도를 함에 있어 신청인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신청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해도 될 만큼의 긴급성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조기유학에 대한 부정적 취지의 보도에 통상적으로 본인의 얼굴이 직접 공개되기를 원치 아니하리라는 점, 신청인들이 공적인 존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친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게재, 배포한 것은 신청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한국 학생들이 많아 조기유학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정적 보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한 후 하단에 ‘온통 한국 학생들’, ‘한국 학교 교실인지, 외국 학교 교실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등의 설명을 달아 놓아 이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들이 이 기사의 부정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진 보도와 같이 공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초상권 및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보도에 관하여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

을 업무로 하는 피신청인으로서 보도를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인들의 친권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신청인들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등 신청인들의 법익침해를 방지할 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진을 보도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과실로 인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사진 보도의 취지와 경위 및 내용, 신청인들의 나이, 피신청인 언론사의 규모 및 사회적 위치, 피신청인이 신청인 친권자들에게 이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된 이 사건 사진을 즉시 삭제한 점 등 이 사건 심리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11.



방송 촬영장(사직구장)에서 경호 수행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방송에 내보내며, 야구장 관중들의 착석을 막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9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강 ○ ○

피신청인 : MBC-ESPN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8. 11. 10.

처리결과 : 중재결정

보도내용

MBC-ESPN : 「2008프로야구」 프로그램 (2008년 9월 19일 18:00)

내 용 : 〈2008서울조정307의 보도내용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결 정 문

사건번호 : 2008서울중재9

청 구 명 : 손해배상

신 청 인 : 강 ○ ○

중재대리인 이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이에스에스스포츠

(MBC ESPN)

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

MBC 경영센터

대표이사 장 근 복

중재대리인 이 ○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11월 24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중재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이 사건 방송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피신청인은 2008. 9. 19. 18: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MBC ESPN>의 『2008 프로야구』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 두산’ 경기를 중계방송하면서, 타 방송사가 경기장 내에서 연예오락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관중들의 객석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멘트와 함께, 관중석에서 해당 방송사의 촬영팀을 경호했던 신청인의 모습을 클로즈업하여 약 20여초 동안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방송사의 촬영이 이뤄진 곳은 지정석 구역이었기 때문에 일반석 티켓을 소지한 관중이 자리 위치를 물어와 이를 안내한 것이었는데, 촬영을 위해 관중의 진입을 막았다고 보도되면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방송되어 초상권이 침해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8. 10. 8. 본 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2008서울조정307)을 하였고, 조정 계류 중에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방송 관련 분쟁을 본 중재부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11. 10. 이 사건 중재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손해배상 채권의 성립

가.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 할 것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 등 참조),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방송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 및 수집하여 이를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방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보도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날 열린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과 사전협의 없이 경기장 내에서 연예오락프로그램 촬영을 진행한 타 방송사 및 롯데 구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신청인에 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신청인의 초상 역시 3시간 30여분의 전체 방송 시간 가운데 약 16초 정도 노출된 것에 불과하며, 야구 경기장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촬영 및 수집한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모자이크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위 방송 목적을 달성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방법으로 초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함으로써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초상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신청인이 얼마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손해의 범위는 위 방송의 목적과 경위 및 내용, 방송 시간대, 신청인의

초상 등의 노출시간,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의 회사 규모 및 사회적 위치, 위 방송 이후 피신청인이 취한 조치 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0.



시정권고사례

시정권고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언론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아울러 제3자에 의한 신청도 심의하여 그 시정을 해당 언론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사례를 자체심의 및 신청심의로 구분하고,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의 보도 내용만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실명 및 주소 등이 보도되어 문제가 된 부분은 당사자의 명예를 위하여 ○○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자체심의 시정권고

정합니다.

2008. 1. 21.

〈시정권고 2008자심1〉

- 경남일보 2007년 12월 12일자 6면 『무허가 낚시선 음주운항 적발』

보도내용

「통영해양경찰서는 1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5%의 만취상태에서 낚시객을 태우고 운항 중 다른 낚시어선 선원을 흥기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통영선적 2.82t급 유자망 어선 선장 이모(52·○○면○○리) 씨를 음주운항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선장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까지 밝히면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특징 등을 함께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

〈시정권고 2008자심2〉

- 서울신문 2008년 1월 7일자 9면 『은행들 범죄 타깃 자초』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현금인출기에 이물질 등을 끼워넣어 기기오류가 발생하도록 한 뒤, 관리센터의 지령을 받고 보안업체 직원 이모(26) 씨가 출동하자 흥기로 이씨의 오른 다리를 찌른 뒤 청테이프를 묶고 30분만에 현금인출기에 있던 돈 통 3개를 통째로 가져갔다. 이들은 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한 뒤 CC(폐쇄회로)TV와 하드디스크(저장장치)의 연결선을 뽑고 하드디스크에 물을 부었다. CCTV 기록 복구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들이 하드디스크 본체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물을 부었기 때문에 훼손 정도가 낮아 이르면 7일쯤 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은행 강도 사건 관련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 21.

〈시정권고 2008자심3~4〉

- 아시아투데이 2008년 1월 30일자 27면 『지하철역서 격투 끝에 강도 잡은 시민 ‘포상’』
- 연합뉴스 2008년 1월 29일자 사회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격투 끝에 강도 잡아』

보도내용

「... 화제의 주인공들은 유○○(31·영화배우), 김○○(29·매니저), 박○○(25·대학3년)씨. 29일 경찰에 따르면 설모(25)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충신대역 안에서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방모(24)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현금 수천만 원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 중략 ... 마침 집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유○○ 씨와 동료인 김○○ 씨는 한 남자가 두툼한 가방을 가지고 급히 도망치는 것을 보고 뒤쫓기 시작했다. 전철을 기다리고 있던 박○○ 씨 역시 승강장 반대편에서 ‘강도야’라는 시민의 절박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고 곧이어 설씨가 두툼한 가방을 가슴에 안고 자신쪽으로 달려오자 무의식적으로 설씨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특정강력범죄)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밝혀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5〉

- 전북중앙신문 2007년 1월 17일자 15면 『만취 경찰관 노래방 불 질러』

보도내용

「현직 경찰관이 애인 관계인 노래방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노래방에 불을 질러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16일 새벽 2시 30분께 군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한모 경사(41)가 전주시 ○○구 ○○동 지하 1층 최모씨(여·43) 노래방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러 한 경사와 업주인 최씨가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과 내연관계에 있음을 밝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6〉

- 데일리경인 2008년 1월 14일자 사회면 『고소장 원본』

보도내용

『고소장 원본』 제하의 기사에 실린 고소인과 피고 소인의 개인 정보

이 유

위 기사는 비록 해당 형사사건의 내용이 공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고소장 원본을 그대로 적시하여 고소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및 피고소인들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을 노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7~8〉

- 서울일보 2008년 1월 24일자 19면 『모텔에서 필로폰 투약』
- 충남시사신문 2008년 1월 29일자 23면 『여관에서 필로폰 투약자 검거』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경 천안시 두정동 소재 천안경륜장에서 50세 가량으로 추정되는 김사장으로부터 필로폰 ○○○g을 ○○만원에 구입한 뒤, 여관에 투숙해 ○○○g을 ○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회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필로폰(마약류)의 구입가격, 1회 사용량,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9~12〉

- 고뉴스 2008년 1월 28일자 사회면 『동성애자 성적 흥분 마약 ‘고메오’ 유통 사범 검거』
- 일요시사 2008년 1월 20일자 18~19면 『철없는 20대, ‘성폭행 피해여성’이 전리품?』
- 일요서울 2008년 1월 20일자 31면 『“있는 집 자식이 더해” 타락한 강남 보이즈』
- 헤럴드경제 2008년 1월 25일자 10면 『신종마약에 ‘몽롱한 한국’』

보도내용

「... 수원지방검찰청 마약 조직 범죄수사부(부장 검사 김학석)는 수원세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신종환각마약인 ○-○○○-○○○○, 일명 ○○○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구매해 투약한 마약사범 총 68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 중략 ... 구속된 김모 씨는 2007년 11월 서울 은평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KTX 특송화물을 이용해 정모 씨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캡슐 6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7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중략 ... 한편 ○○○는 숫자 5를 일본어 발음으로 고라고 표시함으로써 알려졌고, 유럽지역에서는 ○○라는 파티용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다. ... 중략 ... ○○○가 동성애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항문 성관계시 고통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적흥분을 느끼게 해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환각적 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는

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3〉

• 국제신문 2008년 1월 30일자 8면 『위조된 바코드 범죄 이용 속수무책』

보도내용

「대구에 사는 김모(42)·이모(여·38) 씨 부부는 전국 대형할인마트를 돌아다니면서 3만 원대인 분유에 1만 원짜리 위조 바코드를 부착해 계산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분유를 빼돌려 오다 29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중략 …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의 범행 수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바코드 생성기를 구입, 자신들이 직접 집에서 바코드를 위조한 뒤 이를 대형할인마트에 있는 상품에 몰래 부착해 계산대를 통과한 것이다. … 중략 … 바코드 위조는 사기 범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악용되고 있다. 바코드 위조의 가장 흔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나돌고 있는 바코드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쉽게 바코드 복사만으로 변조가 가능한 대학 학생증 위조가 대표적이다. 대부분 대학들은 바코드 학생증으로 도서관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이 바코드를 종이에 복사해 다른 카드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학생증이 대학가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바코드 위조'라는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4, 31〉

• 연합뉴스 2008년 1월 31일자 사회면 『'심지박기', '커튼치기'… 밀수는 진화한다』
• 스포츠칸 2008년 2월 1일자 21면 『밀수 수법이 가막혀!』

보도내용

「... '심지박기'는 합판이나 대리석 등을 여러 장 쌓은 뒤 속을 파내고 밀수품을 숨기는 수법.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밀수에 사용되지만 마약처럼 부피가 작은 물품은 책이나 작은 상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심지박기'는 대표적인 밀수수법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 컨테이너용 X-RAY검사가 도입되면서 점차 시도횟수가 줄고 있다. 화물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 밀도차를 이용해 밀수여부를 검사하는 X-RAY에 거의 100% 적발되기 때문이다. '커튼치기' 역시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밀수에 주로 이용된다. 컨테이너의 뒷 부분에 밀수품을 싣고 앞 부분에는 마치 커튼을 치듯이 수입신고한 화물을 쌓아 밀수품을 가리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주로 PVC파이프 등이 '커튼'으로 사용됐으나 X-RAY검사가 도입된 뒤 밀수품과 유사한 재질의 화물이 '커튼'으로 사용되고 있다. '짜퉁' 명품의류를 밀수할 경우 중국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의류를 '커튼'으로 사용하는 식이다. '품명위장'은 화물 자체를 다른 품목으로 속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마른고추와 냉동고추처럼 X-RAY 검사로는 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마른고추의 관세율은 270%지만 냉동고추는 27%에 불과해 '품명위장'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밀수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

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5〉

• 내외일보 2008년 1월 21일자 7면 『태안 어민 잇단 자살 민심은 ‘폭풍전야’』

보도내용

『태안 어민 잇단 자살 민심은 ‘폭풍전야’』 제하 기사의 보도 사진

이 유

위 보도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참혹한 모습은 비록 그 대상이 공적관심사와 관계된 분신자(焚身者)라 할지라도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6〉

• 시사포커스 2008년 1월 21일자 사회면 『강남에 부활한 홀딱쇼 실제 쫓아가보니...』

보도내용

『강남에 부활한 홀딱쇼 실제 쫓아가보니...』제하 기사의 보도 사진

이 유

성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이는 위 보도 사진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2. 18.

〈시정권고 2008자심17~24〉

- 기호일보 2008년 2월 22일자 18면 『마약사범 ‘덤터기’』
- 경기매일 2008년 2월 22일자 19면 『마약범죄 누명씩은 일당 검거』
- 경기신문 2008년 2월 22일자 6면 『“운영권 안 준다” 마약 누명 씌워』
- 경향신문 2008년 2월 22일자 12면 『“공원 운영권 안 준다” 양심 몰래 마약 타 먹인 뒤 신고』
- 인천신문 2008년 2월 22일자 4면 『사업 갈등 ‘마약범’ 누명 씌워』
- 뉴시스 2008년 2월 21일자 사회면 『인천지검, 마약범죄 뒤집어씌운 일당 구속기소』
- 연합뉴스 2008년 2월 21일자 사회면 『“마약을 먹어라” 사주한 2명 구속』
- 노컷뉴스 2008년 2월 21일자 사회면 『필로폰 먹이고 마약사범 누명 씌우다 탈미』

보도내용

「...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는 전 ○○공원 대표이사인 김모(56) 씨와 전 공동운영자의 형인 다른 김모(61)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지시를 따라 범행을 실행한 조직폭력배 배모(3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로 있던 前 근무처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25~28〉

- 인천일보 2008년 2월 20일자 19면 『침몰선박 ○호 선장 구속』
- 뉴시스 2008년 2월 19일자 사회면 『인천 ○○○호 침몰사고 선장 구속』
- 연합뉴스 2008년 2월 19일자 사회면 『인천해경 ‘침몰사고’ ○호 선장 구속』
- 노컷뉴스 2008년 2월 19일자 사회면 『인천해경, ‘침몰’ ○호 선장 구속』

보도내용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안전운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로 ○○해운 소속 ○○○○호 선장 윤모(65) 씨를 구속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속해 있는 해운 회사의 명칭과 운항했던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29〉

- 국제신문 2008년 2월 2일자 6면 『미궁에 빠진 곰창집 살인사건 인근 주민 제보로 용의자 검거』

보도내용

「... 부산 남부경찰서는 1일 식당에 침입해 여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43) 씨를 구속했다. ... 중략 ...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 사건은 ○○음식점 주인의 결정적 제보로 실마리가 풀렸다. 그는 “최근 가게에 찾아와 외상으로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갔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곧 음식점 주인이 지목한 사람의 추적에 나섰다. ...」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강도살인)의 피의자가 자신을 지목한 제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보자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30〉

- 한라일보 2008년 2월 4일자 4면 『전투경찰 음독 시도』

보도내용

「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제주○○경찰서 ○○○대 소속 이모 상경(22)이 자택에서 농약을 마시고 음독을 시도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속 부대 및 계급 등을 함께 적시하여 본인과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32〉

• 제주타임스 2008년 2월 1일자 4면 『마약 매매 알선 등 2명에 실형』

보도내용

「... 장 피고인은 지난해 2월 21일 부산시내 승용차 안에서 김모 씨에게 필로폰 〇〇g 상당을 〇〇〇만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 중략 ...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께 제주시내 모텔에서 필로폰 〇〇〇g 상당을 〇회용 주사기에 넣고 〇〇로 희석한 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

위 기사는 필로폰(마약류)의 구입가격, 1회 사용량,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33, 34〉

• 주간현대 2008년 2월 3일자 제548호 44~45면

『“오늘밤에도 당신 노린다”』

• 주간현대 2008년 2월 17일자 제549호 28~29면

『신종마약 무섭게 확산... 대한민국은 ‘몽롱’』

보도내용

「... 대표적인 마약 필로폰이나 강한 성분의 성홍분제 등을 상대의 술이나 커피에 몰래 타는 이른바 ‘풍당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지난 1월 7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마약류인 ‘〇〇(〇〇〇)’을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유층 자제들의 경우도 같은 맥락이다. ... 중략 ...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신종마약 〇〇〇는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최음제의 일종으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기도 한다. 무색무취로 〇〇에 몇 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10~15분 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3~4시간 지속된다. 약물효과로는 그 효과가 견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정신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물뽕이 데이트 강간약물로 악명이 높은 이유는 24시간 내에 체내에서 빠져나가 증거 찾기가 힘들고 가해자를 찾는 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잃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〇〇〇)의 명칭,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이용한 실제 범죄 사례까지 소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3. 18.

〈시정권고 2008자심35〉

• 시대일보 2008년 3월 24일자 19면 『살인미수 인

도네시아인 용의자 검거』

보도내용

「... 인도네시아 ○○출신인 ○○○ ○○○○(29세 남)은 구미 모 화섬산업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2003년 8월 5일 도주불법체류하여 경산시 ○○읍 모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3월 16일 밤 8시 25분 경 경산시 ○○읍 ○○리 ○○○○ 매장 앞 노상에서 약 2개월 전에 동료가 폭행을 당하자 보복을 위해 마음을 먹고 귀가하던 피해자 같은 인도네시아 ○○○ 출신인 ○○(25세 남)을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도주, 피해자는 중태를 입고 동료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 국가명과 출신지를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을 추지할 수 있도록 직장의 유형과 소재지를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36〉

• 제주타임스 2008년 3월 15일자 4면 『필로폰 매매·투약 2명 구속』

보도내용

「... 강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길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g을 ○○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또, 같은 달 10일 오후 8시께 제주시 내 모 전화방에서 매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

g을 ○○에 희석해 투약하는 등 2차례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37~41〉

- 국민일보 2008년 3월 28일자 10면 『과천 정부청사서 전경 투신자살』
- 수도권일보 2008년 3월 31일자 14면 『과천, 전경 정부청사서 투신자살』
- 연합뉴스 2008년 3월 27일자 사회면 『전경, 과천 정부청사서 투신 자살』
- 쿠키뉴스 2008년 3월 27일자 사회면 『과천 정부청사서 전경 투신자살』
- 뉴스한국 2008년 3월 27일자 사회면 『과천정부청사 옥상서 갓 자대 배치 받은 전경 투신자살』

보도내용

「전경이 정부과천청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7일 경기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던 ○○○ 전경대 소속 김모(21) ○경이 정부청사 5동 건물 7층 옥상에서 투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존 시 소속 부대 및 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

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42, 43〉

- 나주21 2008년 3월 12일자 사회면 『○○농협 김모 씨 스트레스로 음독자살』
- 예스TV 2008년 3월 12일자 사회면 『○○농협 김모 씨 스트레스로 음독자살』

보도내용

「○○ ○○농협에 근무하던 김모(30) 씨가 재고량 부족 등의 스트레스로 음독자살 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존 시 근무처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44~46, 71, 145~146〉

- 광주매일신문 2008년 3월 27일자 7면 『‘약물로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남편·내연녀 검거』
- 무등일보 2008년 3월 27일자 8면 『대학병원 간호사 약물 살인』
- 전남일보 2008년 3월 27일자 8면 『간호사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
- 노컷뉴스 2008년 4월 5일자 사회면 『보험금 타내려고 내연녀와 짜고 아내에게 약물 먹여』
- 뉴시스 2008년 8월 13일자 사회면 『간호사와 짜

고 아내 약물살해 ‘엽기 남편’ 무기징역』

- 경제풍월 2008년 8월호 87면 『보험범죄 도덕적 해이』

보도내용

「... 조씨 등은 지난달 16일 밤 7시께 남구 지석동 포충사 인근 조씨 승용차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아내 박모(36) 씨의 손등 정맥에 주사기로 ○○○○ ○○cc를 주입시켜 심정지로 사망케 한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47〉

- 일간스포츠 2008년 3월 31일자 19면 『권태 해방구? 위험한 대리전!』

보도내용

「...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갱년기 비슷하게 싫증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와이프 바뀌서 했는데 와이프는 하고 나서 아주 좋았대요. 애무도 잘해주고...”(37세·가명 박정수) ... 중략 ... “바람 안피우고 노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남자는 항상 뭔가 새로운 놀이를 찾는 심리가 있는데 몰래 노는 것보다 같이 노는게 맞다 이거죠.” 결국 몰래 외도를 하느니 차라리 보는 데서 하고, 합법적으로 하자는 간단한 논리에 다름 아니다. ... 중략 ... 부부들이 일단 스와핑에 빠져들면 좀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속성상 변태 가학적 성

행위(SM)로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내의 나체를 인터넷에 노출시키거나 폭력적인 성관계로 치달는다. ... 중략 ... 스와핑이 일반화하면서 요즘에는 스와핑으로 불임치료를 했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 중략 ... 그는 “여자분이 저하고 섹스하는 모습을 보고 무정자증 남편이 관전하면서 오르가슴을 느꼈죠. 미국에는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라고 밝혔다. ...」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 사진

이 유

위 기사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건전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합리화하여 보도하는 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48, 49〉

- 일요서울 2008년 2월 24일자 제721호 28~29면 『신종 변태 업소 페티쉬 클럽 등장』
- 데일리선 2008년 2월 20일자 세태면 『신종 변태 업소 페티쉬 클럽 등장』

보도내용

「... 그 뒤 고객취향에 맞게 엿보기, 냄새 맡기, 발로 자위해주기 등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도우미아가씨가 손에 로션을 바른 뒤 엉덩이와 항문을 애무해주고 손으로 자위를 해준다. ... 중략 ... 페티쉬 매니아들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는 ‘뷰 서비스’다. 이것은 엿보기를 응용한 것이다. 시각적으로 여성이 남성손님이 원하는 자세나 행위를 취하면 고객이 이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또 냄새 맡기는 ‘스멜’이라 불린다. 여성의 발 냄새를 남성이 맡음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는 행위를 뜻한다.

이밖에 발로 자위해주기는 ‘풋잡’이라 불린다. 남성 성기를 여성이 발로 비벼주면서 자위를 해주는 행위를 나타낸다. ... 중략 ... 그는 또 “어떤 손님은 제 엉덩이를 자신의 얼굴 위에 올려두고 비벼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손님은 거칠게 팬티 스타킹을 찢으며 자기를 짓밟아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며 “일반상식이 아닌 좀 가학적이고 특이한 성적 특색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 중략 ... “처음에는 여느 업소처럼 손으로만 애무하더니 점점 입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발전했다. 나체 상태로 제 몸 구석구석을 애무하고 또 손이 아닌 입으로 애무하며 성관계를 하도록 만든다.” ... 중략 ... 또 한씨는 “하드코어 셉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기본으로 69체위까지 허락해야 하는데 삼입만 하지 않는다 뿐이지 그제 실제 섹스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가 싶기도 했다. 물론 콘돔을 손님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고 뒤처리를 업소측에서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게 불안하긴 하지만...”이라고 전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4. 22.

〈시정권고 2008자심50〉

- 경남일보 2008년 4월 24일자 6면 『80대 노모 살인범은 아들』

보도내용

「... 고성경찰서는 박모(68·무직) 씨를 긴급 체

포하여 존속살해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폭력 등 전과 3범인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고성군 ○○면 ○○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 이모 씨(87)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 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 권고 2008자심51〉

• 부산일보 2008년 4월 22일자 8면 『경마장은 비리 복마전』

보도내용

「… 부산 중부경찰서는 22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보다 부상 정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경마기수 김모(39) 씨와 병원 직원 오모(37)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교사 박모(44) 씨와 손해사정사 정모(40) 씨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중략 … 동부화재 등 8개의 보험에 가입했던 ○○○○공원 소속 기수 이모(34) 씨의 경우 2002년 9월 훈련 중 말에서 떨어져 엉덩이뼈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병원 측의 재수술 권유에도 이를 거부해 입원일수를 늘려 200일씩 2곳의 병원에 모두 400일간 입원하며 8천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정수급했다. … 중략 … 이들의 비리 행각은 ○○○○○○공원 기수 김씨가 지난 2006년 5월 발목 부상으로 경남 김해시 소재 S병원에 허위 입원 중 보험금을 타내오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꼬투리가 잡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이 기수로 근무하고 있는 경마공원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 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 권고 2008자심52〉

• 제주일보 2008년 4월 23일자 5면 『보험금 사기 경마장 기수 등 무더기 적발』

보도내용

「… 부산중부경찰서는 22일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경마공원 소속 장모씨(30)와 김모씨(24) 등 경마기수 11명을 포함해 ○○, ○○, ○○경마공원의 경마 기수와 마필조련사 6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들이 기수로 근무하고 있는 경마공원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 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 권고 2008자심53, 54〉

• 연합뉴스 2008년 4월 1일자 사회면 『일산 초등

생 납치미수 용의자 “자수하려 했었다”』

• 데일리안 2008년 4월 1일자 사회면 『일산 초동생 납치미수 용의자, 사우나서 목욕하다 체포』

보도내용

「...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동의 한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던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지하철 수서역 일대에 형사들을 급파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었으며 형사 3명이 사우나 직원에게 사건 당일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현행범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진을 본 사우나 직원 정모(○○) 씨는 “사진이 워낙 흐리게 나와 정확하지는 않지만 손님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사우나 내부로 들어가 확인한 뒤 “탈의실 옆 흡연실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이 사진에 나오는 용의자와 비슷하다”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 흡연실에서 옷을 벗은 채 담배를 피던 용의자 이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인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제보자의 성과 나이, 제보내용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55〉

• 제주타임스 2008년 4월 1일자 4면 『40대 마약 피의자 구속』

보도내용

「... 강씨는 지난 달 초순 대구에서 필로폰 약 ○g을 현금 ○○○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같은 달 제주 시내에서 필로폰 약 ○○○g을 ○○에 희석시켜 주사해 투약하는 등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투약 또는 다른 사람에게 투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 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56, 57〉

• 충북일보 2008년 4월 7일자 2면 『영동 ○○사 주지 음독 자살』

• 뉴시스 2008년 4월 6일자 사회면 『영동 ○○사 주지 농약 마시고 숨겨』

보도내용

「5일 오전 9시30분께 영동군 ○○리 ○○사에서 주지스님 김모(59)씨가 농약을 마신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6일 새벽 0시30분께 숨졌다. 스님을 처음 발견한 최모(57·여)씨는 “‘동생이 제초제를 마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안방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생존 시 주지로 있던 절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

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58~70〉

- 경향신문 2008년 4월 5일자 8면 『성칼럼 연재 유명 여의사 우울증 앓다 집에서 자살』
- 문화일보 2008년 4월 4일자 17면 『성칼럼으로 유명한 여의사 자살』
- 스포츠서울 2008년 4월 5일자 23면 『성 칼럼 유명 여의사... 숨져』
- 일요시사 2008년 4월 17일자 제639호 45면 『‘아한 칼럼’ 유명 여의사 자살』
- 일요서울 2008년 4월 17일자 제729호 31면 『‘명기’ 꿈꾸다 ‘짝사랑’에 괴로워했다』
- 뉴스웨이 2008년 4월 4일자 사건/사고면 『‘성(性)’칼럼 과감히 다룬 유명 여의사 자살』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년 4월 4일자 연예면 『충격, 과감한 성 칼럼으로 유명한 여의사 자살』
- 데일리선 2008년 4월 16일자 사회면 『‘40대 미모의 여의사’ 자살 미스터리』
- 데일리안 2008년 4월 4일자 정치면 『‘명기 꿈꾸는...’ 여의사, 죽음을 꿈꾸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년 4월 4일자 사회면 『‘무엇’이 성 전문 여의사를 자살로 몰고 갔나?』
- 이뉴스투데이 2008년 4월 4일자 사회면 『성칼럼 니스트 민○○ 원장 자살 왜?』
- CNBNEWS 2008년 4월 4일자 사회면 『‘성 칼럼’ 여의사 자살, 미스터리?』
- 프리존뉴스 2008년 4월 4일자 사회면 『40대 미혼 여의사 돌연 자살, ‘○○○○’ 투여... 애정문제로 추정』

보도내용

「... 발견 당시 주변에는 주사기와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사용하는 ○○○○ 1병이 놓여 있었고, 손목

에는 수차례 주사를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 및 도구의 명칭 등을 나열하여 독자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72, 73〉

- 일요서울 2008년 5월 1일자 제730호 18~19면 『충격르포 북창동식 립살롱 영업 상무와 아가씨 솔직 대담』
- 데일리선 2008년 4월 22일자 사회면 『전투가 북창동을 특별하게 만든다』

보도내용

「... 뿐만 아니라 성기의 외형 자체가 때로 문제가 될 때도 있다고 한다. 지나치게 굵은 경우는 마치 오징어를 씹고 난 다음에 턱이 얼얼해지듯이 입 전체의 감각이 다소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의 얼얼함을 느낀다고 한다. 지나치게 긴 것도 문제다. 길면 긴만큼 목구멍에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는 ‘불상사’까지 생긴다는 것. ... 중략 ... 일명 ‘인테리어’를 한 성형수술 성기를 가진 남성들을 대하는 것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혹시나 상처가 날까 조바심도 나고 툭툭 걸리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의 그곳에는 좋은지 몰라도 오를 때는 별로 좋지 않다.” ...」

이 유

위 기사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5. 19.

〈시정권고 2008자심74〉

• 경기신문 2008년 5월 22일자 8면 『반말 한다고 청원경찰 폭행 농협중앙회 ○○본부 과장 입건』

보도내용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이모(31)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6. 16.

〈시정권고 2008자심75~77〉

- 거제신문 2008년 5월 8일자 제806호 3면 『필로폰 투약자 알선책 경찰에 달미』
- 거제중앙신문 2008년 5월 8일자 제318호 7면 『필로폰 투약·판매 40대 검거』
- 새거제 2008년 5월 8일자 제404호 7면 『필로폰 투약자·판매상 알선 40대 검거』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3

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모 호텔에서 현금 ○○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g을 1회용 주사기로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6. 16.

〈시정권고 2008자심78〉

• 브레이크뉴스 2008년 5월 23일자 사회면 『“영구장애 아들 치료비 못내, 집 가압류!”』

보도내용

『“영구장애 아들 치료비 못내, 집 가압류!”』 제하의 보도사진

이 유

위 사진의 보도가 사실 전달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여주고 있는 참혹한 모습은 독자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6. 16.

〈시정권고 2008자심79〉

• 경기일보 2008년 6월 6일자 6면 『납치 위기사 빛

난 ‘아동 안전지킴이 집’ 위력』

보도내용

「... 평택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평택시 ○○동 ○○초교 앞에서 사촌관계에 있는 초등생 여자 어린이 2명에게 접근해 삼촌을 사칭하며 납치하려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미수)로 차모씨(28)를 붙잡아 5일 구속영장을 청구.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내가 삼촌이다. 나와 같이 가자”며 100m 가량을 따라오는 차씨를 피해 아동 안전지킴이 집(○○문구)으로 피신했고, 상황을 전해들은 지킴이집 업주 오모 씨(54)의 즉각적인 신고로 차씨를 붙잡는데 성공。」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인 미성년자 약취 유인미수 사건의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신고자의 성과 나이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문구점의 위치 및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0〉

• 부산일보 2008년 6월 11일자 10면 『부산○○청과(주) 대표 사전 영장』

보도내용

「허위물량 상장 거래에 따른 위탁수수료 편취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본보 4월 3일자 8면·12일자 4면 보도) 부산 해운대구 ○○농산물○시장 부산○○청과(주) 대표 주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청과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와 당직비 등을 부풀리고 생산지 출하주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 등을 과다계상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주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1〉

• 중부일보 2008년 6월 16일자 18면 『휴가나온 군인 취객지갑 훔쳐』

보도내용

「... 수원 서부경찰서는 15일 제○○전투비행단 ○○○○대 조모(19) ○병을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공범 이모(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속 부대 및 계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2〉

• 일간아침신문 2008년 6월 23일자 5면 『동료 선원 망치로 때린 40대 긴급체포』

보도내용

「22일 8시 40분경 신안군 ○○면 ○○도 남서 13km 해상에서 조업을 준비중이던 10톤급 자망어선 ○○호(승선원 5명)에서 같이 타고 있던 선원끼리 싸우다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 중략 ... 해경은 망치로 김씨를 때린 ○○호 동료 선원 박모(49·목포시 ○○동) 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같은 동료 선원들과 선장인 임모(52·목포시 ○동)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원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3~88〉

- 경남매일 2008년 6월 12일자 6면 『생계위해 선박 기름 훔쳐 통영서 선원 3명 검거』
- 거제중앙신문 2008년 6월 12일자 제323호 7면 『통영해경, 유류 절도사범 검거』
- 새거제 2008년 6월 12일자 제409호 7면 『선주 몰래 유류 훔친 선원 검거』
- 고성인터넷뉴스 2008년 6월 11일자 사회면 『유류 절도사범 검거』
- 모닝뉴스 2008년 6월 10일자 사회면 『유가급등, 선주 몰래 유류훔친 선원 검거』

• 통영뉴스발신지 2008년 6월 10일자 사회면 『기관장이 어선 기름 빼돌리다 ‘덜미’』

보도내용

「고유가 현상으로 영세어민들의 출어포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자신이 근무하는 선박의 기름을 훔친 선원 신모(51)씨 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11일 통영해경에 따르면 신씨는 자신이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어획물운반선 제○○○호(49t·○○선적)를 지난 9일 오후 9시경 통영에서 거제지역으로 이동시켜 기관실에 보관중인 면세 경유 10드럼(200만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기관장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권고 2008자심89~94〉

- 세계일보 2008년 6월 24일자 10면 『나사 폴린 군·경』
- 시민일보 2008년 6월 24일자 18면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경찰관 구속』
- 전국매일 2008년 6월 24일자 7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경찰관 구속』
- 중부일보 2008년 6월 24일자 18면 『경찰이 음주 운전 치사 뺑소니』
- 쿠키뉴스 2008년 6월 23일자 사회면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경찰관 구속』
- 연합뉴스 2008년 6월 23일자 사회면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경찰관 구속』

보도내용

「...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23일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 등)로 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김모(28) 순경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중략 ... 김 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였으며 지난달 9일 순경에 임용된 뒤 ○○지구대로 같은 달 20일 발령받아 순경 시보기간(임용 후 1년)에 사고를 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직업, 근무처 및 발령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 권고 2008자심95, 96〉

- 뉴스웨이 2008년 6월 21일자 사회면 『‘생활고’ 고심한 부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2008년 6월 20일자 사회면 『영암서 ‘사료값 폭등’ 고민 부부 숨진채 발견』

보도내용

「... 전남 영암경찰서는 20일 오전5시40분경 전남 영암군 ○○면 ○○리 김모(62) 씨의 집에서 김씨의 부인 정모(61)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 중략 ... 김씨 부부는 집에서 농약을 먹고 김씨는 집 앞 저수지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으며, 김 씨의 부인 정씨는 가족이 발견해 119구급대에 의해 광주 ○○대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7. 21.

〈시정 권고 2008자심97~119〉

- 국민일보 2008년 7월 28일자 8면 『범인 잡다 얻은 지병 비관 ‘의협경찰’ 자살』
- 동아일보 2008년 7월 28일자 22면 『어느 열혈 경관의 죽음』
- 경기도민일보 2008년 7월 29일자 15면 『의협심 강한 경사 뇌경색 비관』
- 경기매일 2008년 7월 28일자 14면 『경찰, 범인 잡다 얻은 지병 비관해 자살』
- 경기신문 2008년 7월 28일자 12면 『‘의협경찰’ 먼 곳으로...』
- 경인매일 2008년 7월 28일자 15면 『아무도 지켜주지 못한 경찰』
- 기호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8면 『절도범 검거 중 부상 후유증 힘겨운 생활』
- 내외일보 2008년 7월 28일자 7면 『40대 경찰 권총 자살』
- 서울일보 2008년 7월 29일자 19면 『의욕만큼 안 되니까』
- 수도권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5면 『경찰관 파출소서 권총 자살』
- 시민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8면 『인천 40대 경관 파출소서 권총 자살』
- 인천신문 2008년 7월 28일자 4면 『‘근무 중 부상’ 경찰 후유증 비관 자살』
- 인천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9면 『신변 비관 경찰관 근무 중 권총 자살』
- 일간투데이 2008년 7월 28일자 7면 『경찰, 파출소서 권총 자살』
- 제주일보 2008년 7월 28일자 2면 『경찰관 권총 자살』

- 뉴시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40대 경찰 파출소 안에서 권총 자살』
- 연합뉴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의협심 경찰’ 범인잡다 얻은 지병 비판 자살』
- 인터넷경기매일 2008년 7월 28일자 사회면 『경찰, 범인잡다 얻은 지병 비판해 자살』
- 노컷뉴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의협심 경찰’ 범인 잡다 얻은 지병 비판 자살』
- 뉴스웨이21 2008년 7월 28일자 사건/사고면 『주말·휴일 전국 사건사고 잇따라』
- 인천뉴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병비관 경찰관, 파출소 내에서 권총자살』
- 쿠키뉴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휴무 중 강도 잡은 경찰, 검거 과정에서 얻은 지병 비판 권총 자살』
- 한국푸른섬터신문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병비관 자살 경찰관 발생』

보도내용

「휴무 중에도 흥기에 쫓리면서까지 강도를 격투 끝에 붙잡아 화제가 됐던 경찰이 근무 중 얻은 지병을 비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전 5시 58분쯤 인천중부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근무를 서던 A경사(45)가 권총으로 자신을 쏘아 숨겨 있는 것을 동료 경찰이 발견했다. ... 중략 ... 지난 26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당번이었던 A경사는 오전 4~7시 파출소내 근무 도중 3.8구경 권총을 이용,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경사는 2002년 8월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에 끼인 채 500m를 끌려간 뒤 뇌진탕 증세를 보여 최근까지도 매월 1차례 경찰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뇌경색 약물을 복용했다.」

이 유

위 기사가 비록 자살자의 자살원인을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에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얻고자 하는 보도라고 할지라도 자살자의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직장 및 직위 등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사자들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0〉

- 경주조은뉴스 2008년 7월 16일자 사회면 『자살 기도자 귀가 길 경찰이 발견 소중한 생명 되찾아...』

보도내용

「경주경찰서 ○○지구대(경사 서○○)는 08. 07. 12. 22:00경 경주시 ○동 ○○○번지 김○○(남, 61세)가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통을 비판해오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유서 4장을 남겨놓고 집을 나간 자살기도자를 발견 후 동국대 병원응급실에 후송 귀중한 인명을 구조했다. ... 중략 ... 자살기도자 김○○은 7월 12일경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없이 집을 나간 후 선친묘소가 있는 ○○읍 ○○리 야산에 은둔하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약 20정, ○○○ 30정, ○약1봉지를 그곳에서 먹고도 자살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재차 ○○읍 ○○리 소재 ○○못 주변으로 이동, 인적이 드문 곳에서 2차로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자살에 실패를 하자 08. 07. 14. 09:20경 경주시 ○동 소재 ○○시장 내에 있는 농약사에서 제초제를 구입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1, 122〉

- 조선일보 2008년 7월 28일자 A10면 『필리핀서 한국인 여성 3명 살해당해』
- 경향신문 2008년 7월 28일자 10면 『필리핀 한인 일가족 3명 피살』

보도내용

「... 필리핀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올롱가포시 ○○○ 마을에 있는 한국인 장○○ (여·54) 씨의 집에 27일 새벽 강도가 침입해 장 씨와 장 씨의 딸, 그리고 10세짜리 손녀 등 3명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고 AP통신이 현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 중략 ... 경찰은 장 씨의 딸과 손녀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살인(특정강력범죄) 사건 피해자의 신원 및 거주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3〉

- 천안신문 2008년 6월 30일자 17면 『수면제 먹여

강간한 30대 쇠고랑』

보도내용

「... 천안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손모(39) 씨는 ○○○○관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로 평소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 박모(25) 씨를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강간을 계획, 수면제와 드링크제를 미리 준비한 다음 ○○읍 소재 D여관에서 피해자 모르게 먹인 뒤,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가 있다는 것. ...」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 및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처 및 직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4~126〉

- 전국매일 2008년 7월 4일자 6면 『술 마신다고 꾸짖어서...』
- 뉴시스 2008년 7월 3일자 사회면 『어머니 꾸지람에 집 불태운 40대 입건』
- 연합뉴스 2008년 7월 3일자 사회면 『방화로 90대 노모 다치게한 아들 검거』

보도내용

「강원 속초경찰서는 3일 자신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 노모가 꾸지람을 하자 화김에 불을 질러 노모를 다치게 한 혐의(건조물 방화치상)로 김모 씨

(42)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께 양양군 ○○면 ○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을 어머니 이모(95)가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느냐”며 꾸지람을 했다는 이유로 화김에 불을 질러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7〉

• 고향신문 2008년 8월 14일자 7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대마) 피의자 검거』

보도내용

「영덕경찰서(서장 이○○)는 08' 4월부터 8월 12일 10:00경 사이 경북 영덕군 ○○면 ○리 ○○-1번지 소재 피의자 소유 약 6㎡ 크기의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대마 240포기를 재배한 피의자 P씨(남, 70세, 영덕군 ○○면 거주)를 검거하여 입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 성의 영문 이니셜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경작지의 주소를 상세하게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8〉

• 중부일보 2008년 8월 9일자 5면 『치한 퇴치해 여대생 구조』

보도내용

「… 과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18) 양이 그 주인공. 이 양은 지난달 26일 새벽 귀가하던 중 ○○동 ○○산 등산로 인근 굴다리에서 대학생 김모(28) 양이 피한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 중략 … 이양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공황상태에 빠진 김양을 안정시켰다. …」

이 유

위 기사는 보복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 사건 신고자의 성명·나이·소속 학교·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29〉

• 동양일보 2008년 7월 15일자 3면 『○○공사 간부 내연녀 방화』

보도내용

「… 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화김에 내연남이 사

는 관사에 불을 지른 이모 씨(44·여)에 대해 현
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5분께 청주시
○○구 ○○동 모 아파트 15층 한국○○공사 ○○지
사 권모 씨(56)의 숙소에서 권씨와 말다툼을 벌이
다 1회용 라이터로 안방침대에 불을 질러 집안 내
부 82.5㎡와 옆집 등을 태워 5000만 원 상당(소방
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

이 유

위 기사는 방화 사건 피의자와 내연 관계에 있
는 특정인의 근무처 및 거주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헌법 제
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30~134〉

- 서울일보 2008년 7월 17일자 19면 『신종 마약 유통 모델 · 가수 등 적발』
- 아시아일보 2008년 7월 17일자 19면 『신종 마약 ‘○○○○○○’ 유통』
- 일간아침신문 2008년 7월 17일자 4면 『신종 마약 ‘○○○○○○’ 국내 반입』
- 일요시사 2008년 7월 27일자 제654호 41면 『가수도 모델도 얹히고 설켜 ‘해룡해룡’』
- 뉴시스 2008년 7월 16일자 사회면 『부산지검, 신종 마약 ‘○○○○○○’ 유통 연예인 구속』

보도내용

「… 검찰조사 결과 ○○○○○○은 최근 들어 마약
투여자들 사이에 색다른 느낌을 주면서 스피디
(speedy)하다고 알려지면서 엑스터시보다 비싼 가격
인 한 알 당 ○만~○만원에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중략 … 살충제 성분으로 사용
되고 있는 ○○○○○○은 ○○○보다 ○○배의 강력

한 도취감, 각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벤질피페라진)의 명칭, 구
입가격, 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
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35, 136〉

- 노컷뉴스 2008년 7월 25일자 사회면 『‘작대기, 도리도리’ 인터넷 채팅사이트 통해 마약 유통』
- 제주투데이 2008년 7월 25일자 사회면 『인터넷 채팅사이트 통해 마약 유통』

보도내용

「… 이른바 ○○(○○○ : ○○○○○○○ acid)은
물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무색무취의 액체로 대
부분 성범죄에 악용되는 신종 마약이다. 또, 작대기
는 필로폰 주사기, 도리도리는 엑스터시 등을 의미
하는데, 이처럼 각종 마약은 은어를 통해 인터넷 채
팅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거래된다. … 중략 … 결국
박 씨는 마약의 유흥을 떨치지 못하고 지난 10일 새
벽 4시쯤, ○○ 해수욕장에 있는 주차장에서 인터넷
에서 구입한 ○○○를 이용해 필로폰 1회분 ○○○g
을 투약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

이 유

위 기사는 마약과 관련된 은어 등을 소개하고 마
약 중 하나인 GHB의 사용법 및 필로폰의 1회 사용
량과 사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
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37~140〉

- 경기도민일보 2008년 7월 28일자 14면 『무료급식단체 총무가 마약판매』
- 경기매일 2008년 7월 28일자 15면 『마약판매 무료급식단체 총무 영장』
- 매일신보 2008년 7월 28일자 4면 『마약 판매한 무료급식단체 총무 구속』
- 뉴시스 2008년 7월 27일자 사회면 『마약 판매한 무료급식단체 총무 구속』

보도내용

「...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7시 45분경 ○○ KTX열차 광장 옆 노상에서 ○○○○○○ Og을 B씨에게 ○○○만원에 판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만원 상당의 ○○○○○○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12일 오전 1시경 부산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 ○○○g을 일회용 주사기에 ○○와 함께 넣고 자신의 ○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의 구입가격, 1회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41~143〉

- 경향신문 2008년 8월 1일자 8면 『‘포토샵 도사’

60대 위조범』

- 한국일보 2008년 8월 1일자 10면 『환갑의 ‘포토샵 달인’ 수표 초정밀 위조』
- 연합뉴스 2008년 7월 31일자 사회면 『‘포토샵 달인’ 60대 홀로 초정밀 수표 위조』

보도내용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10만원권 수표 296장을 위조해 유통하려 한 김모 씨(60·무직)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31일 구속했다. ... 중략 ... 김씨는 종이 종류를 연구하면서 수표 제작용지와 비슷한 재질이면서도 값싼 중국산 ‘면종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조선족 동포로부터 A4용지 크기만한 면종이 수백 장을 수입했다. 위조수표 뒷면에 잉크 수정액(화이트)과 지방질 기름을 혼합한 액체로 무궁화 도장을 찍어 얼룩이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수법으로 무궁화 문양의 숨은 그림을 만들었다. ...」

이 유

위 기사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등의 범죄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질서를 침해할 개연성이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44〉

- 인터넷경기매일 2008년 7월 16일자 스포츠/연예면 『힙합가수·모델, 마약 혐의 구속』

보도내용

「힙합가수·모델, 마약 혐의 구속」제하 기사의 보

도 사진

이 유

위 기사가 마약 밀수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9. 8.

〈시정권고 2008자심147~149〉

- 남도일보 2008년 9월 18일자 6면 『‘집단구타’ 의경 3명 입건』
- 일간아침신문 2008년 9월 19일자 5면 『‘집단구타’ 의경 3명 입건·경찰관 직위해제』
- 뉴시스 2008년 9월 17일자 사회면 『‘집단구타’ 의경 3명 입건... 경찰관 2명 직위해제』

보도내용

「... 광주경찰청은 17일 광주 ○○경찰서 의경 구타사건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디오 판독 결과 적극 가담자로 확인된 류모(22) ○경 등 고참 의경 3명을 폭력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추후 징계 위원회에 회부기로 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무중인 군부대의 명칭, 계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50, 151〉

- 광주일보 2008년 9월 29일자 7면 『선장 폭행치사 갑판장 영장』
- 연합뉴스 2008년 9월 28일자 사회면 『선장 때려 숨지게 한 갑판장 영장』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은 28일 말다툼 끝에 선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군 선적 9t급 자망어선 ○○호의 갑판장 황모(33)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갑판장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52, 153〉

- 전국매일 2008년 9월 25일자 7면 『신종마약 ‘○’ 국내 유통 적발』
- 연합뉴스 2008년 9월 24일자 사회면 『부산경찰, 신종마약 ‘○○’ 공급조직 적발』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B씨는 태국에서 유행하는 신종마약인 ‘○○’를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대량으로 밀반입한 뒤 일당들과 함께 부산과 경남지역의 태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1알에 4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말처럼 힘이 솟는다’는 뜻의 ‘○○’는

히로뽕과 카페인, ○○○을 섞어 알약 형태로 만든 신종마약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간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된 마약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반입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 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의 명칭은 물론 마약 1알당 가격, 마약의 성분 및 투약의 용이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54~184>

- 경향신문 2008년 8월 29일자 8면 『‘긴급출동...’ 20대 방송작가 방송국 옥상서 의문의 투신』
- 내일신문 2008년 8월 29일자 20면 『여성 방송 작가 사옥 옥상서 투신』
- 조선일보 2008년 8월 29일자 A12면 『야근하던 방송보조작가 투신 자살』
- 매일경제 2008년 8월 29일자 A10면 『SBS 여성 작가 투신』
- 스포츠서울 2008년 8월 29일자 27면 『‘긴급출동~’ 방송 작가 SBS 사옥서 투신자살』
- 스포츠조선 2008년 8월 29일자 23면 『SBS 보조작가 투신 자살』
- 스포츠칸 2008년 8월 29일자 23면 『SBS 방송작가 투신자살』
- 수도권일보 2008년 8월 29일자 15면 『SBS 작가 투신 자살』
- 시대일보 2008년 8월 29일자 19면 『SBS 20대 막내 작가 투신 자살』
- 아시아투데이 2008년 8월 29일자 11면 『SBS 여성 작가 사옥 옥상서 투신』
- 일간투데이 2008년 8월 29일자 7면 『SBS 20대 막내 작가 투신 자살』

- 중도일보 2008년 8월 29일자 10면 『‘긴급출동 SOS24’ 작가, SBS 사옥서 투신자살』
- 뉴시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SBS 20대 막내 작가 투신 자살』
- 연합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SBS 여성 작가 사옥 옥상서 투신』
- 고뉴스 2008년 8월 29일자 사회면 『SBS 보조작가, 업무 스트레스로 투신자살』
- 노컷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24’ 작가, SBS 사옥에서 투신자살』
- 뉴스엔 2008년 8월 28일자 방송엔면 『SBS 작가 28일 목동 사옥서 투신 사망』
- 뉴스원 2008년 8월 29일자 사회면 『SBS 작가 사옥 옥상서 투신』
- 뉴스웨이21 2008년 8월 28일자 사건/사고면 『‘긴급출동 SOS 24’ 보조작가 SBS 옥상서 자살』
- 뉴스캔 2008년 8월 29일자 연예면 『20대 작가 투신자살!!』
- 더데일리 2008년 8월 28일자 사건/사고면 『SBS 20대 작가, 사옥서 투신 자살』
- 데일리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SBS 20대 막내 작가 투신 자살』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보조작가 SBS 건물서 투신, 원인에 관심 집중』
- 리뷰스타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 보조작가 투신자살』
- 브레이크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 24 작가, 야근 중 투신자살』
- 시큐리티뉴스 2008년 8월 28일자 사건/사고면 『SBS여성 막내 작가 23층 옥상에서 투신』
- 오에스이엔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 작가, SBS 목동 옥상서 투신자살』
- 이뉴스투데이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방송인 성공 꿈꾸던 SBS 여성작가 투신』
- 제주투데이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긴급출동 SOS 24’ 작가, SBS사옥에서 투신자살』
- 투데이코리아 2008년 8월 28일자 사회면 『SBS 보조작가 투신자살 ‘충격’』
- 호남인터넷뉴스 2008년 8월 29일자 종합면 『20대 작가 투신자살!!』

보도내용

「28일 오전 2시35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이 방송국 작가 김모 씨(22·여)가 투신해 숨졌다. ... 중략 ... 김씨는 SBS 프로그램 '○○○○○○○○'의 작가로 전달 밤 사무실에 남아서 야근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작가로 일하던 담당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85〉

• 경북매일신문 2008년 9월 10일자 5면 『학교폭력·성적비관 청소년들 잇단 자살』

보도내용

「... ○○○중 3학년 ○모(16) 양은 지난달 28일 학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조퇴를 한 후 자신의 집에서 과수용 살충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양은 자신의 메모장에 '부모님께 미안하다, 학교와 친구들에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고 과수용 살충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학중이던 학교 및 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86~190〉

- 글로벌타임스 2008년 9월 26일자 1면 『경찰관 신병비관 권총자살』
- 신아일보 2008년 9월 26일자 5면 『근무 중 경찰관 신병비관 권총자살』
- 아시아일보 2008년 9월 26일자 18면 『신병비관 경찰, 권총자살』
- 뉴시스 2008년 9월 25일자 사회면 『경찰관 신병비관 권총자살』
- 더데일리 2008년 9월 26일자 사건/사고면 『경찰관 신병비관, 검문소에서 권총자살』

보도내용

「...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7분께 서울 종로구 ○○동 ○○○검문소 2층 상황실에서 이모 경위(50)가 3.8구경 권총으로 왼쪽 관자놀이를 쏘 자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법 등을 밝혀 독자들이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91〉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년 9월 9일자 스포츠연예면 『故안재환, 日 카와타 아나운서 자살 방식과 동일』

보도내용

「... 당시 일본 경찰은 카와다가 운전석에서 상체를

조수석으로 둔 채 엎드려 있었고 뒷 좌석에는 연탄 난로 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연탄가스 질식사로 인한 자살 방식은 일본 내에서 죽은 모습이 자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는 이미 많은 자살자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안재환 역시 카니발 차량에 연탄 화덕과 2장의 연탄이 발견 됐다. ...」

이 유

유명인 자살의 경우, 이를 접한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일명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는 여타 다른 기사들과 달리 그가 취했던 자살 방법을 ‘죽은 모습이 자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92~195〉

- 대전일보 2008년 8월 27일자 6면 『일가족이 수십억대 마약밀수』
- 서울일보 2008년 8월 27일자 18면 『필로폰 2만 4600명분 압수』
- 뉴시스 2008년 8월 26일자 사회면 『필로폰 수십억대 밀반입 일가족, 조폭 무더기 덮임』
- 특급뉴스 2008년 8월 26일자 사회면 『공주서, 필로폰 수십억대 밀반입 일당 검거』

보도내용

「... 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먹지와 은박지로 싸 뒤 일명 ‘구리스 오일’을 바르고 납으로 된 양수기 모터 안에 넣어 반입을 시도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유

위 기사는 마약 밀수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196~229, 241~249, 282〉

- 경향신문 2008년 9월 19일자 10면 『항문 괄약근 힘줘 ‘고혈압’ 모델 ○○○ 軍입대 기피』
- 중앙일보 2008년 9월 19일자 12면 『병역 기피 ○○○·○○○ 기소』
- 스포츠칸 2008년 9월 19일자 23면 『‘괄약근 조작’ 軍기피 ○○○ 기소』
- 아시아일보 2008년 9월 19일자 17면 『검찰, ‘군입영 기피’ ○○○·○○○ 불구속 기소』
- 우리일보 2008년 9월 19일자 7면 『‘괄약근 조절’ 현역 입대 기피 ○○○ 등 3명 기소』
- 뉴시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檢, ‘일시적 혈압 상승 이용’ 입영 기피 ○○○·○○○ 기소』
- 연합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괄약근 조절’ 현역 입대 기피 ○○○ 기소』
- 고뉴스 2008년 9월 18일자 방송/연예면 『‘병역기피’ ○○○, 비난 봇물... ‘괄약케이 별명까지’』
- 네이션코리아 2008년 9월 18일자 사건사고면 『병역법 위반 ○○○-○○○ 등 3명, 불구속 기소』
- 노컷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모델 ○○○ 등 병역기피 혐의 기소』
- 뉴데일리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똥꼬’에 힘줘 병역기피한 ○○○와 ○○○』
- 뉴스보이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면 『‘병역비리 ○○○’ 덕에 옛 연인 손○○은 ‘호감’ 반전』
- 뉴스엔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허패 ○○○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 뉴스웨이21 2008년 9월 18일자 연예종합면 『손○○ 옛 연인 ○○○ 불구속 기소』
- 더데일리 2008년 9월 18일자 연예일반면 『○○○, ‘병역 비리’ 혐의 불구속 기소』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연예인 ○○○·○○○ 등 브로커 고용 병역비리 혐의 불구속 기소』

- 데일리안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검찰 ‘연예인 병역비리’로 ‘○○○’ 등 3명 기소』
- 메타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뉴스면 『‘항문에 힘주면 병역면제?’ ○○○는 불구속인데 의사는?』
- 보안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 등 연예인 3명, 병역비리 혐의 불구속 기소』
- 부채질닷컴 2008년 9월 19일자 사회면 『연예인 병역비리, ○○○ ○○○ “괄약근 조여 혈압 높여 위장?!”』
- 브레이크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병역비리로 기소된 ○○○-○○○, 네티즌들 “실망스럽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년 9월 18일자 스포츠연예면 『○○○ 등 연예인 병역비리에 ‘괄약근’이 왜 나와?』
- 씨앤비뉴스 2008년 9월 19일자 스포츠연예면 『○○○, 커피먹고 괄약근 힘줘 군대 면제』
- 아시아경제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면 『연예인 병역비리 또 발생, 도덕적 해이 언제까지?』
- 아이비타임즈코리아 2008년 9월 18일자 연예일반면 『연예인 병역비리, ○○○ ○○○ 등 “괄약근에 힘 주었지만...”』
- 이뉴스투데이 2008년 9월 18일자 연예스포츠면 『병역법 위반 ○○○ 등 연예인 3명 불구속 기소』
- 이데일리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면 『○○○, 병역법 위반 불구속 기소... ‘괄약근 조절, 현역 기피’』
- 이슈제주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제주출신 뮤직비디오 감독 군 입대 기피로 기소』
- 조이뉴스24 2008년 9월 18일자 문화연예면 『○○○,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괄약근’ 조절 고혈압 판정받아』
- 쿠키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검찰, 병역비리 ○○○ 등 3명 기소』
- 프런티어타임스 2008년 9월 18일자 연예면 『‘항문죄기 달인(?)’... ○○○, 병역기피 피소』
- 프리존뉴스 2008년 9월 18일자 사회면 『○○○, 괄약근 조절로 병역기피.. 결국 기소』
- 한강타임즈 2008년 9월 19일자 연예면 『검찰, 병

역 비리 ‘○○○’ 등 3명 기소』

- 헬스코리아뉴스 2008년 9월 18일자 방송/연예면 『연예인 병역비리, ○○○·○○○ 등 건강상태위장 ‘불구속 기소’』
- 남도일보 2008년 10월 30일자 13면 『법원, ‘병역기피’ ○○○ 집행유예 2년』
- 시민일보 2008년 10월 30일자 9면 『‘현역기피’ ○○○, 집유 2년 선고』
- 전주일보 2008년 10월 30일자 11면 『○○○?○○○ ‘병역기피’ 집유 2년 선고』
- 충남일보 2008년 10월 30일자 16면 『법원, 병역기피 ○○○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 호남신문 2008년 10월 30일자 13면 『법원, ‘병역기피’ ○○○ 등 집행유예 2년』
- 뉴시스 2008년 10월 29일자 사회면 『법원, ‘병역기피’ ○○○ 집행유예 2년』
- 더데일리 2008년 10월 29일자 연예일반면 『法 ‘병역기피’ ○○○ 집행유예 2년』
- 브레이크뉴스 2008년 10월 29일자 연예일반면 『군입대 기피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비즈플레이스 2008년 10월 29일자 연예면 『손○○ 전 남친 ○○○ 병역법 위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동아일보 2008년 11월 12일자 B11면 『병역법 위반 ‘○○○-○○○’ 어제 군입대』

보도내용

「... 1~3급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이들은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신체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신 뒤 괄약근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

위 기사는 유명인의 병역 기피를 보도하면서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아내는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

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230〉

• 시사포커스 2008년 9월 19일자 사회면 『잠입취재 천태만상 변태클럽 이야기』

보도내용

「... “제일 황당한 거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혹시 ‘스캇’이라는 서비스 아세요? 여자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즐기거나 혹은 그 대변을 가지고 페티시를 즐기는 분야죠.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직접 경험한 도우미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남자가 업소에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스캇을 해달라고 했죠. 이쪽 분야의 아가씨들은 별의 별 남자들을 다 만나 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스캇 마니아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번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용기를 내서 대변을 봤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걸... 그 도우미는 기겁을 했죠. 그런데 가지고 온 비닐 등에 대변을 받아가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업소에서는 모르게 손님과 아가씨의 목인 아래 행해지는 곳도 있겠지만.” ...」

이 유

위 기사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변태적 행위 등을 보도하는 등 독자로 하여금 불쾌감 및 수치심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8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231, 232〉

• 브레이크뉴스 2008년 9월 26일자 사건/사고면 『내연녀 무시에 쌓여 있던 분노 폭발 “낮으로 그 녀 입 짹~ 찢어”』

• 주간현대 2008년 9월 21일자 제579호 34~35면 『내연녀 무시에 쌓여 있던 분노 폭발 “낮으로 그 녀 입 짹~ 찢어”』

보도내용

「... 쇠파이프로 여성을 가격해 기절시킨 뒤 낮을 이용해 입과 복부, 등을 난자한 것.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는 고아무개(55)는 지난해 자신이 즐겨 찾던 카바레의 여종업원 장아무개(45)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 중략 ... 겁에 질린 장씨의 모습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고씨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고씨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장씨는 이내 기절했다. 고씨의 엽기 살인행각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 동안 장씨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욕설과 무시에 대해 복수라도 하려는 듯 고씨는 낮을 집어 들고 장씨의 입을 양 옆으로 찢었다.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장씨의 배와 등을 낮을 이용해 찢고 찢르기를 수차례, 장씨는 곧 숨을 거뒀다. ...」

이 유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표현을 사용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독자로 하여금 불쾌감 및 혐오감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0. 20.

〈시정권고 2008자심233~236〉

• 내외일보 2008년 10월 8일자 7면 『목포해경, 음

주 운항 선장 적발』

- 일간아침신문 2008년 10월 8일자 5면 『술 마신 채 선박 운항 선장 적발』
- 호남신문 2008년 10월 8일자 6면 『목포해경, 술 마신 채 선박 운항 선장 검거』
- 뉴시스 2008년 10월 7일자 사회면 『목포해경, 술 마신 채 선박 운항 선장 적발』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항하던 9급 전남 목포선적 연안자망 제200호 선장 김모 씨(41·전남 목포시 00동)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선장으로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1. 17.

〈시정권고 2008자심237〉

- 거창군민신문 2008년 10월 13일자 제124호 6면 『암체족의 주차 방법, 이래서야…』

보도내용

「암체족의 주차 방법, 이래서야…」 제하의 보도 사진

이 유

위 보도사진은 비록 해당 기사의 취지가 계도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주차된 차량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개인 차량의 번호판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자이크 처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보도한 것은 차량 소유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17조 및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2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1. 17.

〈시정권고 2008자심238, 239〉

- 노컷뉴스 2008년 10월 1일자 사회면 『입대 두 달 된 의경, 경찰서 건물서 투신?사망』
- 제주투데이 2008년 10월 1일자 사회면 『입대 두 달 된 의경, 경찰서 건물서 투신자살 왜?』

보도내용

「입대한 지 두 달 된 의경이 경찰서 건물에서 투신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쯤 대구 00경찰서 방법순찰대에서 근무하는 정모(20) 이경이 경찰서 건물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 중략 … 경찰은 일단 정 이경이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동료 의경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를 캐묻는 등 정확한 투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숨진 정 의경은 지난 8월 입대해 지난달 11일 대구 00경찰서 방법순찰대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속 부대 및 계급, 전입시기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1. 17.

〈시정권고 2008자심240〉

• 중도일보 2008년 10월 24일자 5면 『전 연기군수 아들 자살』

보도내용

「23일 낮 12시20분께 청원군 ○○면 고가 다리 아래 공터에 주차돼 있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이모(39) 씨가 목을 매 숨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숨진 이씨는 이○○ 전 ○○군수의 셋째 아들로 조치원에서 ○○면 집을 운영해 왔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전직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1. 17.

〈시정권고 2008자심250~276〉

- 스포츠서울 2008년 11월 27일자 27면 『간통 혐의 ○○○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스포츠조선 2008년 11월 27일자 23면 『“박○ 외도는 정당한가” ○○○ 눈물 항변』
- 스포츠칸 2008년 11월 27일자 2면 『“박○, 100명 넘는 여성들과 성 관계”』
- 일간스포츠 2008년 11월 27일자 23면 『“제가 박○보다 죄질이 무겁습니까”』
- 내외일보 2008년 11월 28일자 15면 『검찰, ‘간통’ ○○○ 1년 6월 구형』
- 매일신보 2008년 11월 28일자 15면 『○○○ “이혼 할 수 있어 홀가분”』
- 새전북신문 2008년 11월 27일자 13면 『○○○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 인천일보(경기판) 2008년 11월 27일자 19면 『○

○○씨 징역 1년 6월 구형』

• 호남신문 2008년 11월 27일자 7면 『검찰, ‘간통’

○○○ 1년 6월 구형』

• 경기조은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간통죄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미니홈피 통해 박○과 이혼 후련하다 심정고백』

• 고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방송/연예면 『○○○ 심정고백, ‘네티즌 응원 이어져’』

• 뉴데일리 2008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간통남 “○○○ 문란한 여자 아니다” 주장』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년 11월 27일자 연예면 『○○○ 심경 밝힌 미니홈피 응원글 북적북적』

• 데일리정경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문화면 『텔런트 ○○○, 간통죄로 징역 1년 6월 구형받아』

• 베타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연예면 『○○○ 구형 ‘징역 1년 6월’… 또 핑계? “아직도 반성 덜했나”』

• 부채질닷컴 2008년 11월 26일자 사회면 『○○○ 진술, “박○ 100명 넘는 여성들과 문란한 성생활 했다!”』제목의 보도와 11월 27일자 동면 『○○○ 심경 박○ 100명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 ‘충격!’』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년 11월 26일자 스포츠연예면 『○○○ 출두, “박○ 100명 넘는 여성과 문란한 생활했다” 진술』

• 시사플러스 2008년 11월 26일자 사회면 『간통 혐의 ○○○, ‘박○은 100명도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 했다’』

• 시큐리티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사건/사고면 『○○○ 간통 징역, “박○은 나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

• 씨앤비뉴스 2008년 11월 26일자 스포츠연예면 『검찰, ‘간통’ ○○○ 1년 6월 구형』

• 아시아투데이닷컴 2008년 11월 26일자 문화·연예면 『○○○, 정씨와 ‘간통’ 아닌 ‘운명’ … “박○ 죄질 더 무거워”』제목의 보도와 11월 27일자 동면 『○○○, 면사포 벗으며 “행복하다”』

• 아이비타임즈코리아 2008년 11월 26일자 연예면 『○○○ 진술 “박○보다 죄질이 무겁다면 감수하겠다”』

• 조이뉴스24 2008년 11월 26일자 연예면 『검찰, ‘간통’ ○○○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프런티어타임스 2008년 11월 26일자 연예면 『“관사님, 박○은 100명과도 외도했는데 왜 나만...”』
- 투데이코리아 2008년 11월 27일자 연예면 『○○○ 진술 “박○ 유흥생활 너무 문란했다”』
- 한국재경신문 2008년 11월 27일자 연예일반면 『○○○ 진술 박○ 증거물보다 호소력 떨어지나?』
- 헬스코리아뉴스 2008년 11월 27일자 방송/연예면 『○○○ 심경 “당신에게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 행복해”』

보도내용

「... 그러나 “○○은 결혼 생활 11년 동안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전전하며 수백 명의 여자와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나를 기만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그에 비해 나와 정씨의 짧은 3개월간의 만남이 더 많은 지탄을 받을 만큼 나쁜 죄질이라면 모든 죄값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는 내용의 기사와 보도사진

이 유

위 기사는 간통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탤런트 ○○○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사생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고소인 ○○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연남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여 그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시정권고 2008자심277〉

- 전주일보 2008년 11월 6일자 5면 『복지시설 대표, 원생 성폭행』

보도내용

「... 김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김제시 ○○동에 사회복지법인 ‘○○교 ○○의 집 ○○○ ○○’을 설립해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시설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김모(25·여) 씨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했으며 김모(26·여)씨도 같은 시기에 시설 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중략 ...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김씨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려왔으나 시설을 벗어나 전주 장애인복지재단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지내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인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전 생활지인 사회복지법인의 명칭 및 현 거주지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장애가 있음을 밝히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하였으므로(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6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시정권고 2008자심278〉

- 일간아침신문 2008년 11월 18일자 5면 『어업허가증 위조 40대 어민 영장』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업허가증을 위조해 불법조업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채모(42)씨에 대

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채씨는 자신의 소유인 8.55t ○○호의 연안복합 허가증을 연안안강망 어업허가증으로 위조, 불법 조업을 통해 5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명칭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시정권고 2008자심279〉

• 중도일보 2008년 11월 20일자 5면 『가축 훔치다 주인 쫓러』

보도내용

「서천경찰서(서장 김헌기)는 19일 새벽 시간대에 농가를 돌며 개, 염소 등 가축을 훔치다 이를 알아차린 주인을 흥기로 찌르고 달아난 나모(31)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13일 서천군 ○○면 ○○리 이모(42)씨 집에 몰래 들어가 개를 훔치다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도축용 칼로 이씨를 찌른 후 도주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상해 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소를 리 단위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시정권고 2008자심280, 281〉

• 뉴스핌 2008년 10월 22일자 사회면 『증권맨 이어 보험사 지점장 자살… 증권가 ‘슬렁’』
• 브레이크뉴스 2008년 10월 23일자 사회면 『주식 시장 패닉… 금융권 직원 자살 도미노?』

보도내용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금융권 직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 중략 …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의 한 야산에서 ○○○○생명 금융프라자 ○○○점에서 일 하던 지점장 유모 씨(42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 중략 … 경찰 측의 차량 조회결과, 차량 소유주가 지난 16일 가출신고를 해둔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숨진 유모씨 주변에는 독극물 병이 놓여 있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일하던 직장명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08. 12. 8.

신청심의 시정권고

〈사건번호 2008신심13〉

신청취지

SBS-TV 2008. 7. 27. 「8시뉴스」프로그램에서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SBS-TV 2008. 7. 27. 「8시뉴스」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시 옹진군 ○○파출소에서 ○○살 박모 경사가 38구경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경사는 지난 2002년 차량 절도범을 쫓다가 차문에 매달린 채 500m를 끌려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 중략 ... 경찰은 일단 박 경사가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동기를 신병비관으로 단정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이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해당보도에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근무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자살자가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경찰의 주장과 함께 신병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을 모두 담고 있어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14〉

신청취지

YTN-TV 2008. 7. 27. 「YTN24」프로그램의 “뇌경색 앓던 경찰관 권총 자살” 제하의 보도에서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YTN-TV 2008. 7. 27. 「YTN24」프로그램의 “뇌경색 앓던 경찰관 권총 자살” 제하의 방송을 통해 “인천 ○○도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살 박모 경사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중략 ... 지난 2002년 차량 검문검색 도중

머리를 크게 다친 박경장은 그 뒤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동기가 처지비관으로 밝혀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해당보도에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원인을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보도로 인해 자살자의 자살원인이 일정정도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 건 보도를 통해 자살자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점과 자살원인이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는 점 등을 공중에 알림으로써 자살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

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15〉

신청취지

연합뉴스 2008. 7. 27. 「무더운 주말… 익사·자살로 얼룩(전국종합)」제하의 기사에서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연합뉴스 2008. 7. 27. 「무더운 주말… 익사·자살로 얼룩(전국종합)」제하의 기사를 통해 “27일 오전 5시58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근무중이던 A(45) 경사가 권총으로 자신을 쏘 숨진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사가 2002년 차량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최근에도 뇌경색 약을 복용하는 등 지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동기가 처지비관으로 밝혀진 것처럼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에서 자살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자살자의 나이, 근무하는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근무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원인을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보도로 인해 자살자의 자살원인이 일정정도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 건 보도를 통해 자살자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점과 자살원인이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는 점 등을 공중에 알림으로써 자살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16〉

신청취지

조선일보 2008. 7. 28일자 A10면「車절도범 잡다

머리 다친 경찰관, 결국... 뇌경색 후유증 비관 자살」제하의 기사를 통해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2008. 7. 28.자 A10면「車절도범 잡다 머리 다친 경찰관, 결국... 뇌경색 후유증 비관 자살」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절도범을 잡으려다 머리를 다친 경찰관이 뇌경색 후유증을 비관하다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파출소에서 박모(45) 경사가 38구경 권총 한 발을 자신의 오른쪽 머리에 쏘고 숨져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 (중략) ... 박경사는 2002년 중부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차량 절도범이 검문 중인 그를 차에 매단 채 500m를 달려 달아나는 바람에 차에 끼여 끌려가다가 땅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뇌진탕에 따른 뇌경색 후유증이 생겨 지금까지 경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박 경사의 가족과 동료들은 박 경사가 평생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들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동기가 처지비관으로 밝혀진 것처럼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이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해당보도에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근무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원인을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보도로 인해 자살자의 자살원인이 일정정도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 건 보도를 통해 자살자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점과 자살원인이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는 점 등을 공중에 알림으로써 자살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17〉

신청취지

한국일보 2008. 7. 28.자 10면 「병마는 ‘체포’ 못하고… 범인 잡다 부상 경찰관 뇌경색에 시달리다 자살」제하의 기사를 통해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살이유가 지병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한국일보 2008. 7. 28.자 10면 「병마는 ‘체포’ 못하고… 범인 잡다 부상 경찰관 뇌경색에 시달리다 자살」제하의 기사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후유증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7일 오전 5시58분께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박모(45) 경사가 38구경 권총으로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발사해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박 경사는 2002년 중부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차량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에 매달린 채 500m를 끌려간 뒤 땅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이 사고 이후 뇌경색증을 앓아 최근까지 경찰병원에서 매월 1차례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중략)… 동료들과 유족들은 박경사가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과 최근 심해진 뇌경색 증세로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 경사가 지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언론은 자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살자의 명예와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자살동기를 처지비관으로 밝혀진 것처럼 보도하여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만큼 이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대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먼저 자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에 의하면 언론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경우 자살자(자살미수자 포함)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며, 자살장소 및 자살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해당보도에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근무하던 직장 및 계급, 개인적 병력, 근무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살원인을 단정하여 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보도로 인해 자살자의 자살원인이 일정정도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이 건 보도를 통해 자살자가 경찰관 신분이라는 점과 자살원인이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한 처지비관이라는 점 등을 공중에 알림으로써 자살자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곧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추지가 가능하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8.

〈사건번호 2008신심22〉

신청취지

일간스포츠 2008. 10. 6.자 12면 「말벌 술에 번데기 튀김 최고 정력제 소문 자자」제하의 기사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특정 술에 대해 '최고 정력제', '정력을 부르는 묘약'이라고 표현하는 등 선정적이고 과장되게 보도하였으므로 시정권고 하라.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일간스포츠 2008. 10. 6.자 12면 「말벌 술에 번데기 튀김 최고 정력제 소문 자자」제하의 기사에서 “불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1600배가 넘는 먹이를 끌고 다닌다. 스테미너는 물론 악성종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약술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하며 불개미주를 소개함은 물론, “노봉방주는 말벌로 담근 술로 정력에는 최고라는 소문을 듣고 만난 이모 씨가 ‘말벌은 꿀벌의 550배에 달하는 치명적 맹독을 갖고 있어 말벌집은 예로부터 산삼보다 귀한 영양식품으로 취급돼 왔다. 이 술 한 잔 마시면 너무 세져서 주체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변강쇠 비결을 밝혔다”고 보도하였고, “무후주는 여자의 정력주로 1년에 300개의 알을 낳는 정력의 화신인 메추리로 만든 술로 중국 최초의 여황제인 측천무후가 이 술을 마시고 남자 열명과 성생활을 즐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독자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자사와 연관 있는 케이블 방송의 특정 프로그램을 홍보할 욕심에 분별력을 잃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술들을 ‘최고 정력제’, ‘정력을 부르는 묘약’이라고 표현하는 등 선정적이고 과장되게 기사를 작성하여 해당기사를 접한 독자들이 기사에서 언급된 술들을 ‘최고 정력제’라고 현혹당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해당기사는 피신청인과 계열사 관계에 있는 케이블방송 Q채널에서 방송예정인 내용을 요약 보도하면서 의학적·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특이한 재료로 담근 술을 ‘최고 정력주’로 소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지나치게 호평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게재한 바, 해당기사를

접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술을 마시게 되면 왕성한 정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해되도록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해당기사는 안전성 및 그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술 등을 '최고 정력주', '정력을 부르는 묘약'이라고 선정적이고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이런 술들에 대한 주의사항 내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 기사를 접한 독자들로 하여금 여기에 소개된 '정력주'를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독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선정적이면서 과장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판단되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0.

〈사건번호 2008신심25〉

신청취지

조은뉴스(<http://www.egn.kr>) 2008. 11. 20.자 「조성민 악플러의 입, 재봉틀로 박아버릴 수만 있다면…」이라는 기사의 제목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선정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권고하라.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조은뉴스(<http://www.egn.kr>) 2008. 11. 20.자 「조성민 악플러의 입, 재봉틀로 박아버릴 수만 있다면…」제하의 기사에서 '故 최진실의 자살 이후 현행민법에 따라 조성민의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자동 부활되면서 네티즌들은 조성민이 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수작부리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내자 조성민은 고인의 재산을 모두 유족들에게 넘겼으며 친아버지로서 본능적 사랑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씨의 이 같은 심경을 왜곡하지 않는 따뜻한 배려와 용서를 네티즌에게 주문하면서 아울러 조씨의 부정(父情)을 외면한 고인의 돈에만 목매달았던 일부 악플러의 자기반성도 함께 주문한다. 더 이상 무책임한 악플로 제2, 제3의 안재환과 최진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입들을 재봉틀로 들들 박아버리고 싶은 게 필자의 심정이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가급적 건전하고 순화된 어휘를 사용해야 할 언론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기사의 제목 등을 작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시정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언론은 순화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을 도모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보도는 "악플러의 입, 재봉틀로 박아버릴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과 "입들을 재봉틀로 들들 박아버리고 싶다"는 기사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이를 접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순화된 언어사용 습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여과되지 않은 선정적 표현으로 기사제목 등을 작성한 피신청인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8.

□

색 인

언론조정신청사례 색인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면
(ㄱ)						
21세기건설팅(주)	머니위크	2008서울조정250	정정·손배	각 조정성립	중재합의	573
21세기건설팅(주)	머니위크	2008서울조정279	반론	취하		640
(재)518기념재단	남도일보	2008광주조정33	정정	조정성립		868
강○○외 5명	J - T V	2008전북조정4	손배	취하		133
강○○	m b c e s p n	2008서울조정307	손배	취하		726
강○○	경북e-조은뉴스	2008대구조정6	추후	조정성립		406
강릉영동대학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63	반론	취하		203
강○○	충청매일	2008충북조정8	정정·손배	각 취하		680
강○○	김포신문	2008경기조정54	정정·손배	조정성립, 취하		789
강봉균	전북매일신문	2008전북조정13	손배	조정성립		275
강○○	M B C - T V	2008서울조정101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중재합의	286
강○○	일간대구경북	2008대구조정15	정정·손배	각 조정성립		866
강○○, 김○○	K B S - 2 T V	2008서울조정77	정정·손배	각 취하		231
강○○	C N B N E W S	2008서울조정359	정정	취하		831
강○○	제주프레스	2008제주조정3	정정·반론·손배	각 조정성립		826
거창신문사외 4인	한국시사정보신문	2008경남조정20	정정·손배	각 취하		810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메디컬투데이	2008서울조정383	정정	취하		884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신문	2008경기조정58	정정·손배	조정성립, 취하		811
경산축산업협동조합	Y T N	2008서울조정270	추후	취하		627
(주)경원실업외 1	충북인뉴스	2008충북조정10	정정·손배	조정성립, 취하		703
(주)경원실업외 1	충청리뷰	2008충북조정9	정정·손배	조정성립, 취하		700
경주온정마을	일간경북신문	2008대구조정8	정정·반론	각 조정성립		457
경주온정마을	경상매일신문	2008대구조정9	정정·반론	각 조정성립		459
경찰청	매일경제	2008서울조정70	정정	취하		211
고양경량전철반대주민대책위원회	조선일보	2008서울조정328	정정	취하		766
고양일산택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중앙일보	2008서울조정258	정정	조정성립		594
고양일산택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259	반론	조정성립		595
고양일산택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S B S - T V	2008서울조정260	정정	조정성립		597
고○○	제민일보	2008제주조정2	정정·반론·손배	각 조정성립		277
고○○	머니투데이	2008서울조정11	손배	취하		107
고○○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서울조정188	정정	조정성립		455
고○○	부산KBS-TV	2008부산조정2	추후·손배	각 취하		132
곡성군	호남신문	2008광주조정1	정정	조정성립		190
골든정보시스템	광명일보	2008경기조정39	정정	취하		642
공○○	경상일보	2008부산조정3	정정·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153
(주)공연마루	남도일보	2008광주조정17	정정	취하		448

신 청 인	피신청인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투데이	2008서울조정135	정정	취하		346
○ ○	대전일보	2008대전조정7	정정·손배	조정성립, 취하		270
○ ○	아산투데이	2008대전조정8	정정·손배	조정성립, 취하		271
광종배, 이창환	인천연수신문	2008경기조정69	정정	조정결정	동의	906
명 시	수도일보	2008경기조정61	정정	조정성립		842
광주 시	중부일보	2008경기조정4	정정	취하		128
교과서포럼	M B C - T V	2008서울조정141	정정	조정성립		365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일보	2008서울조정126	정정	취하		332
(주) 구 들	인터넷한경일보	2008서울조정89	추후	취하		253
구립로아어린이집	M B C - T V	2008서울조정344	정정	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797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신문	2008서울조정142	정정	조정성립		369
국립현대미술관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100	정정·반론	각 취하		281
국민생활체육전국보령연합회	보령코리아	2008서울조정332	정정·손배	각 취하		778
국민생활체육전국보령연합회외2	보령코리아	2008경기조정55	정정·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792
국민생활체육제주특별자치도축구연합회	제주타임스	2008제주조정1	정정	조정성립		150
국토해양부	서울신문	2008서울조정245	정정	취하		561
국토해양부	경향신문	2008서울조정254	정정	조정성립		587
국토해양부	한겨레 21	2008서울조정255	정정	조정성립		588
국토해양부	신동아	2008서울조정302	정정	취하		715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전라일보	2008전북조정16	정정	취하		446
군인공제회	월간디앤디포커스	2008서울조정157	정정·손배	각 조정성립		394
권 ○ ○ 외 4인	새전북신문	2008전북조정11	정정	취하		268
권 ○ ○ 외 4인	전주MBC-TV	2008전북조정12	정정	취하		270
권 ○ ○	전북일보	2008전북조정14	정정	조정성립		381
권 ○ ○	기독교보	2008서울조정144	정정·손배	각 조정성립		372
권 ○ ○, 김 ○ ○	기독교신문	2008서울조정310	정정·손배	각 조정성립		729
권 택	매일경제	2008서울조정321	반론	조정성립		750
권 형	데일리안대전충남	2008대전조정17	추후·손배	각 조정성립		743
권 형	데일리안대전충남	2008대전조정18	정정·손배	각 조정성립		745
권 형	데일리안	2008서울조정314	추후·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736
권 형	데일리안	2008서울조정315	정정·손배	각 조정성립		738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월간조선	2008서울조정118	정정·손배	조정결정, 취하	피신청인 이의신청	316
(주) 그 린 투	평안신문	2008경기조정13	정정·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245
금융감독원	한국경제TV	2008서울조정292	정정	조정성립		686
금천패션발전협의회	매일경제	2008서울조정2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96
(재)기독교대한감리회교역자운영재단	기독교타임스	2008서울조정355	정정	조정성립		820
기륭전자주식회사	오마이뉴스	2008서울조정311	정정	취하		731
길 ○ ○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236	정정·손배	각 조정성립		535
김 ○ ○	경기일보	2008경기조정3	정정	취하		109
김 ○ ○	합평신문	2008광주조정11	정정·손배	조정불성립결정, 조정결정	양당사자 이의신청	302
김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19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134
김 ○ ○	춘천MBC-TV	2008강원조정6	손배	조정불성립결정		540
김 ○ ○	충청매일	2008충북조정4	정정·손배	각 조정성립		400
김 ○ ○	울산매일	2008부산조정15	정정	취하		758
김 ○ ○	경기신문	2008경기조정2	손배	조정성립		107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김 ○ ○	머 니 투 데 이	2008서울조정253	반 론	조 정 성 립	동의	586
김 ○ ○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269	정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625
김 ○ ○	광 주 일 보	2008광주조정23	정 정	조 정 성 립		664
김 ○ ○	G T B - T V	2008강원조정7	정 정	조 정 성 립		618
김 ○ ○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217	반 론	조 정 성 립	동의	497
김 ○ ○ 외 27명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288	정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673
1.김 ○ ○, 2.이 ○ ○	한 겨 레	2008서울조정117	반 론	취 하		315
김 ○ ○	일 간 스포츠	2008서울조정264	정정 · 손배	각 취 하		607
김 ○ ○	서 울 일 보	2008서울조정296	정정 · 손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동의	696
김 ○ ○	S B S - T V	2008서울조정379	손 배	조 정 성 립		880
김 ○ ○	전 국 매 일	2008경기조정30	정정 · 손배	각 취 하		537
김 ○ ○	굿 모 닝 논 산	2008대전조정13	정정 · 손배	각 취 하		533
김 ○ ○	충 청 신 문	2008대전조정14	정정 · 손배	각 취 하	동의	534
김 ○ ○	해 동 일 보	2008대전조정15	정정 · 손배	각 취 하		534
김 ○ ○	금 천 뉴 스	2008서울조정33	손 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54
김 용 근	우 리 일 보	2008경기조정46	정정 · 손배	각 취 하		718
김 용 근	인 천 일 보	2008경기조정47	정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동의	719
김 용 근	인 천 신 문	2008경기조정48	정정 · 손배	각 취 하		720
김 용 근	중 부 일 보	2008경기조정49	정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720
김 용 근	M B C - T V	2008서울조정249	정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569
김 ○ ○	사 하 신 문	2008부산조정6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동의	257
김 ○ ○	동 양 일 보	2008충북조정5	정정 · 손배	각 취 하		429
김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9	손 배	조 정 성 립		103
김 ○ ○	마 산 M B C - R	2008경남조정1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05
김 ○ ○	국 제 신 문	2008부산조정1	정 정	취 하	동의	131
김 ○ ○	식품환경신문	2008서울조정7	정 정	취 하		101
김 ○ ○	이 중 앙 닷 컴	2008서울조정8	정 정	조 정 성 립		103
김 ○ ○	미 디 어 오 늘	2008서울조정382	정 정	조 정 성 립		883
김 인 규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216	정 정	조 정 성 립	동의	496
김 제 경 찰	전 북 일 보	2008전북조정18	정 정	취 하 간 주		524
김 ○ ○	전 자 신 문	2008서울조정102	정 정	취 하		287
김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13	손 배	취 하		115
김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49	손 배	조 정 성 립	동의	181
김 ○ ○	M B C - R	2008서울조정50	손 배	조 정 성 립		181
김 ○ ○ 외 5인	인 천 신 문	2008경기조정56	정 정	취 하		798
김 ○ ○ 외 294명	경 기 방 송	2008경기조정44	정정 · 손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652
김 충 환	시 민 일 보	2008서울조정36	정정 · 손배	조 정 결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동의	159
김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107	손 배	취 하		293
김 태 기	해 릴 드 경 제	2008서울조정37	정 정	조 정 성 립		162
김 ○ ○ 외 5인	서 울 신 문	2008서울조정352	정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815
김 ○ ○ 외 16인	대 전 투 데 이	2008대전조정6	정 정	조 정 성 립	동의	215
김 ○ ○ 외 17인	아 산 투 데 이	2008대전조정2	정 정	조 정 성 립		110
김 ○ ○	레 디 앙	2008서울조정226	정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515
김 ○ ○	레 디 앙	2008서울조정227	정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518
김 ○ ○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228	정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519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김 ○ ○ 외 1인	시 사 I N	2008서울조정229	정정·반론·손배	각 조 정 성 립		519
김 ○ ○ 외 1인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169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411
김 ○ ○ 외 1인	t v N	2008서울조정97	손 배	조 정 성 립		274
김 ○ ○ 외 1인	M B C - T V	2008서울조정342	정정·반론·손배	각 조 정 성 립		791
김 ○ ○ 외 1인	국 민 일 보	2008서울조정119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성 립		319
김 ○ ○ 외 1인	경 남 여 성 신 문	2008경남조정2	정 정	정 취 하		133
김 ○ ○ 외 1인	일 요 신 문	2008서울조정194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성 립		466
김 ○ ○ 외 1인	Q 채 널	2008서울조정51	손 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85
(L)						
나 비 골 농 협	호 남 매 일 신 문	2008광주조정32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동의	862
나 ○ ○ 외 1인	무 등 일 보	2008광주조정27	정 정	조 정 성 립		692
나 주 시	나 주 뉴 스	2008광주조정14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387
나 주 시	전 남 저 널	2008광주조정15	정 정	조 정 결 정		388
1.나 주 시, 2.신 정 훈	아 시 아 일 보	2008서울조정184	정 정	조 정 성 립		441
나주축산농업협동조합	무 등 일 보	2008광주조정4	정 정	정 취 하		214
나주축산농업협동조합	나 주 투 데 이	2008광주조정7	정 정	정 취 하		238
남 경 필	일 요 서 울	2008서울조정185	정 정	조 정 성 립		443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전 일 신 문	2008전북조정15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성 립		427
노 무 현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34	정 정	조 정 성 립		155
노 승 중 외 6인	괴 정 신 문	2008부산조정4	정 정	조 정 성 립		160
(주)녹채원푸드시스템	M B C - T V	2008서울조정145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피신청인 이의신청	374
논현후면시아1단지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	경 인 일 보	2008경기조정41	반 론	조 정 성 립		645
농 립 식 품 수 산 부	M B C - T V	2008서울조정123	정 정 · 반론	각 조 정 결 정		324
(C)						
다 나 의 약 주 식 회 사	데 일 리 팜	2008서울조정106	정 정 · 손 배	조 정 성 립, 취 하		292
(제) 대 구 애 락 원	대 구 M B C - T V	2008대구조정14	반 론	취 하		864
대상컨설팅 주식회사	한 국 일 보	2008서울조정95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성 립		26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 전 시 티 저 널	2008대전조정1	정 정 · 손 배	조 정 성 립, 취 하		93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M B C - T V	2008서울조정299	정 정	정 취 하		709
(사)대한불교법화종 외2인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316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성 립		739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제판국	목 회 자 신 문	2008서울조정212	정 정	조 정 성 립		489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전주교회	전 북 일 보	2008전북조정25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성 립		796
대 한 의 사 협 회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156	정 정	정 기 각		391
(사)대한치과의사협회	S B S - T V	2008서울조정327	정 정	조 정 성 립		764
텔 리 팜 상 사 (주)	S B S - T V	2008서울조정110	정 정	정 취 하		297
(주)동인개발 외 3인	시 사 I N	2008서울조정219	정정·반론·손배	각 조 정 성 립		501
두 메 푸 드 시 스 템 (주)	광 주 드 립	2008광주조정2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192
드 립 리 츠 (주)	K B S - 1, 2 T V	2008서울조정206	반 론	조 정 성 립		477
드 립 리 츠 (주)	노 컷 뉴 스	2008서울조정237	반 론	조 정 성 립		541
디 에 스 디 엘 (주)	소 비 자 가 만 드 신 문	2008서울조정280	정 정 · 손 배	각 취 하		646
(주) 디 엔 디 전 자	전 주 M B C - T V	2008전북조정5	정 정 · 손 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39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ㄹ)						
류 ○ ○	한국농어민신문	2008서울조정153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387
류 ○ ○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154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387
(ㄱ)						
맥 섬 섹 지 엠 (주)	M B C - T V	2008서울조정114	정 정 · 반론	각 조정불성립결정	동의 패신청인 이의신청 동의	305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 서울지점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313	정 정	취 하		733
모 ○ ○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389	손 배	조 정 성 립		891
문 국 현	한 겨 레	2008서울조정223	정 정	조 정 성 립		51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138	정 정 · 반론	각 조 정 결 정		351
(주)미소래산후조리원	M B C - T V	2008서울조정68	손 배	조 정 결 정		209
민주공무원노조신안군지부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306	정 정	조 정 결 정		725
민 주 당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246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56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377	정 정	취 하		874
민 ○ ○	서 울 신 문	2008서울조정129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36
민 ○ ○	서 울 신 문	2008서울조정139	정 정	취 하		352
(ㄴ)						
박 ○ ○ , 박 ○ ○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서울조정304	손 배	취 하	동의	721
박 ○ ○	서 울 신 문	2008서울조정363	손 배	조 정 성 립		840
박 ○ ○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261	정 정	조 정 성 립		601
박 ○ ○	청주MBC-TV	2008충북조정7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526
박 ○ ○	전북연합신문	2008전북조정1	반론 · 손배	조정결정, 취하		104
박 ○ ○	일간아침신문	2008광주조정13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337
박 ○ ○	남 도 일 보	2008광주조정21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629
박 상 원	U B C - T V	2008부산조정5	정 정 · 반론	각 취 하		216
박 ○ ○	Q 채널	2008서울조정394	손 배	조 정 성 립		900
박 ○ ○ 외 2인	예 향 진 도 신 문	2008광주조정9	정 정 · 손배	조정성립, 취하		259
박 ○ ○	울 진 타 임 즈	2008대구조정7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22	
박 ○ ○	의정부벼룩시장	2008경기조정37	정 정 · 손배	각 취 하	611	
박 ○ ○	경 인 일 보	2008경기조정16	정 정 · 반론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34	
박 ○ ○	전주KBS-TV	2008전북조정21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599	
박 ○ ○	서 울 신 문	2008서울조정132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동의	341
박 ○ ○	경 인 일 보	2008경기조정5	정 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152	
박 ○ ○	월 간 조 선	2008서울조정130	정 정	조 정 성 립	중재합의	338
박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3	손 배	취 하	97	
박 ○ ○	서 울 일 보	2008서울조정38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163	
박 ○ ○	서 울 신 문	2008서울조정104	정 정 · 손배	각 취 하	290	
1.박 ○ ○ , 2.이 ○ ○	경 기 일 보	2008경기조정20	정 정	취 하	357	
박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231	정 정 · 반론	각 조정불성립결정	527	
박 ○ ○	K B S - 2 T V	2008서울조정266	손 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609	
박 ○ ○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112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신청인 이의신청	299
박 ○ ○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195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69	
박 ○ ○	국 민 일 보	2008서울조정196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70	
박 ○ ○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197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70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박 ○ ○	○	○	세 계 일 보	2008서울조정198	정 정 · 손배	각 취 하	피신청인 이의신청	471
박 ○ ○	○	○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199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71
박 ○ ○	○	○	한 국 일 보	2008서울조정200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72
박 ○ ○	○	○	일 요 시 사	2008서울조정201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72
박 ○ ○	○	○	스 포 츠 칸	2008서울조정202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75
박 ○ ○	○	○	뉴 시 스	2008서울조정203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475
박 ○ ○	○	○	M B N	2008서울조정204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76
박 ○ ○	○	○	S B S - T V	2008서울조정205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476
박 ○ ○	○	○	t v N	2008서울조정176	손 배	조 정 성 립		423
박 ○ ○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108	정 정 · 반론 · 손배	각 조 정 성 립		294
반 ○ ○	○	○	아임닥터뉴스	2008서울조정265	정 정 · 손배	각 취 하		608
방 위 사 업 청	○	○	한 국 일 보	2008서울조정17	정 정 정	조 정 성 립		127
배 ○ ○	○	○	한국교회신보	2008경기조정25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49
배 ○ ○	○	○	CDN크리스천데일리뉴스	2008경기조정26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50
배 ○ ○	○	○	서 울 일 보	2008서울조정179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30
배 ○ ○	○	○	장로교연합신문	2008서울조정187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454
백 ○ ○	○	○	경 인 일 보	2008경기조정19	정 정 정	취 하		357
백산의료재단 강동가톨릭병원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189	정 정 정	취 하		456
벽 산 건 설 (주)	○	○	스포츠서울닷컴	2008서울조정331	정 정 · 손배	각 취 하		777
보 건 복 지 가 족 부	○	○	S B S - T V	2008서울조정348	정 정 정	조 정 성 립		803
보 건 복 지 가 족 부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73	정 정 정	조 정 성 립		217
보 건 복 지 부	○	○	문 화 일 보	2008서울조정46	반 론	조 정 성 립		176
보 람 상 조 개 발	○	○	상 조 뉴 스	2008서울조정272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631	
보 람 상 조 개 발	○	○	상 조 뉴 스	2008서울조정282	정 정 정	조 정 성 립	650	
보 성 군	○	○	남 도 일 보	2008광주조정16	정 정 정	조 정 성 립	389	
보 성 군	○	○	보성군민신문	2008광주조정19	정 정 정	조 정 성 립	613	
보 성 군	○	○	보성군민신문	2008광주조정22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638	
보 성 군	○	○	해 동 일 보	2008서울조정159	정 정 정	조 정 성 립	398	
보위터코리아노동조합	○	○	한 국 경 제	2008서울조정175	정 정 정	취 하	420	
부산광역시축구협회	○	○	국 제 신 문	2008부산조정16	정 정 정	조 정 결 정	774	
부 산 대 학 교	○	○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262	정 정 정	조 정 성 립	602	
(주) 북 코 스 모 스	○	○	뉴 시 스	2008서울조정368	손 배	취 하	851	
(ㄱ)								
사 천 기 업 도 시 (주)	경 남 신 문	2008경남조정15	정 정 · 반론 · 손배	각 조 정 결 정	동의	358		
사 천 기 업 도 시 (주)	부 산 일 보	2008부산조정10	정 정 · 반론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55		
사 천 시 민 참 여 연 대	S B S - T V	2008서울조정192	반 론	기 각		462		
사회복지법인 민재경주푸른마을	M B C - T V	2008서울조정140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63		
사회복지법인 삼원	마산MBC-TV	2008경남조정14	반론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신청인 이의신청	331		
(주) 서 경 중 합 개 발	수 도 일 보	2008경기조정10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225		
서 ○ ○	농 업 인 신 문	2008경기조정7	반 론	취 하		184		
서 산 시	서 해 안 신 문	2008대전조정10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86		
서울강남경찰서	노 컷 뉴 스	2008서울조정284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660		
서울강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교 통 신 문	2008서울조정303	정 정 · 손배	각 취 하		717		
서울굴삭기연합회	한국건설기계신문	2008서울조정364	정 정 정	조 정 성 립		844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면
서울대학교병원	한겨레	2008서울조정85	정정	조정성립		246
서울대학교총학생회	뉴시스	2008서울조정173	정정	조정성립		417
(사)서울약령시협회	KBS-1TV	2008서울조정369	정정	조정성립		852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겨레	2008서울조정345	정정	조정성립		799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겨레	2008서울조정103	정정	취하		288
서울특별시	한겨레	2008서울조정124	정정	취하		328
서울특별시	경향신문	2008서울조정55	정정	조정성립		192
서○	양주신문	2008경기조정62	반론·추후	각취하		846
선한목자재단	한겨레	2008서울조정64	반론	조정성립		204
사회복지법인 성림재단	한국일보	2008서울조정32	정정	조정성립		149
성지건설(주)	한국경제TV	2008서울조정78	정정·손배	각취하		232
세광종합건설(주)	용인신문	2008경기조정12	정정	취하		233
(주)세쿼이아그룹	중앙일보	2008서울조정320	정정	취하		749
손○	한겨레	2008서울조정215	반론	조정성립		494
손○	조선일보	2008서울조정221	반론	기각		508
1.손○○, 2.김○○	중앙일보	2008서울조정323	정정	조정성립		756
송○	전주MBC-TV	2008전북조정28	반론	조정불성립결정		908
송○	코메디닷컴	2008서울조정390	정정	조정불성립결정		891
송○	경기일보	2008경기조정24	정정	조정성립		423
송○	전북일보	2008전북조정22	정정	취하		612
1.송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외2인	의정부신문	2008경기조정23	정정·손배	조정성립, 취하		413
송영선	MBC-TV	2008서울조정61	정정·손배	각취하		201
수도약품공업(주)	헬스코리아뉴스	2008서울조정98	정정·반론·손배	각조정성립		27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신문	2008서울조정158	정정	취하		396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조선일보	2008서울조정317	정정	취하		741
수원남부소방서	시민일보	2008서울조정65	정정	취하		206
수원서부경찰서	고뉴스	2008서울조정105	정정	조정성립		291
수원시	중부일보	2008경기조정52	정정	조정성립		770
송의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외1인	경기신문	2008경기조정38	정정	취하		622
(주)스마텔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서울조정243	정정·반론	각취하		551
(주)스테이트월서	한겨레	2008서울조정294	정정·손배	각조정불성립결정		689
(주)스테이트월서	KBS-1TV	2008서울조정295	정정·손배	각조정불성립결정		691
시민권리연대	메디컬투데이	2008서울조정178	정정	취하		428
대한예수교장로회 시온교회 외8인	예클레시아뉴스	2008서울조정374	정정·손배	각취하		867
신○	부산KBS-1TV	2008부산조정14	손배	취하		599
신○	GTB	2008강원조정1	반론·손배	조정성립, 취하		123
신○	KBS-1TV	2008서울조정48	손배	취하		180
신안군	인터넷전남뉴스	2008광주조정18	정정	조정성립		583
심재철	창작과비평	2008경기조정35	정정·손배	각조정불성립결정		598
심재철	MBC-TV	2008서울조정136	정정	조정성립		348
(주)쓰리씨스포츠	한겨레	2008서울조정211	반론·손배	각조정성립		485
(주)쓰리엔테크놀로지	KBS-1TV	2008서울조정251	정정·반론	각기각		575
(주)쓰리엔테크놀로지	SBS-TV	2008서울조정80	정정·손배	조정성립, 취하		235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						
아 시 아 종 묘 (주)	한국농어민신문	2008서울조정151	정 정	취 취 하	동의	385
아 시 아 종 묘 (주)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152	정 정	취 취 하		386
아이파크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한 겨 레	2008서울조정75	정 정 · 손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220
안 병 만	국 민 일 보	2008서울조정220	정 정	취 취 하 간 주		507
안산주공그린빌입주자대표	안 산 제 일 신 문	2008경기조정21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375
안 상 원	합 안 신 문	2008경남조정13	반 론	조 정 결 정		272
안 양 평 강 교 회	M B C - T V	2008서울조정79	정 정	취 취 하		234
안 ○ ○	계 명 대 신 문	2008대구조정5	손 배	취 취 하		402
(주)알마레이저스아시아	아 임 닥 터 뉴 스	2008서울조정333	정 정	취 취 하		779
(주)알마레이저스아시아	메 디 컬 투 데 이	2008서울조정334	정 정	취 취 하		781
양 산 시	경 남 매 일 신 문	2008경남조정18	정 정	조 정 성 립		561
양 산 시 청	경 남 도 민 일 보	2008경남조정21	정 정	취 취 하		878
양 ○ ○ , 천 ○ ○	Y T N	2008서울조정271	추 후	취 취 하		630
양 ○ ○	광 주 일 보	2008광주조정8	손 배	취 취 하		258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쿠 키 뉴 스	2008서울조정84	정 정	취 취 하		244
엄 ○ ○	오 마 이 뉴 스	2008서울조정366	정 정 · 손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848
(주)엔에스아이	성 남 투 데 이	2008경기조정64	손 배	조 정 성 립		853
엔 프 라 니 (주)	머 니 투 데 이	2008서울조정362	정 정 · 손배	각 취 하		836
엘○○○○○○도○○	부 천 포 커 스	2008경기조정42	손 배	조 정 성 립		648
엠비케이파트너스사모투자주식회사	머 니 투 데 이	2008서울조정213	정 정	취 취 하		492
여 ○ ○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319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748
여 ○ ○	국 민 일 보	2008서울조정335	정 정 · 손배	각 취 하		782
여 ○ ○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336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783
여 ○ ○	세 계 일 보	2008서울조정337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783
여 ○ ○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338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784
여 ○ ○	서 울 일 보	2008서울조정339	정 정 · 손배	각 기 각		785
여 ○ ○	매 일 경 제	2008서울조정340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786
여 ○ ○	서 울 신 문	2008서울조정346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801
여 ○ ○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349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813
여 ○ ○	Y T N	2008서울조정350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813
여 ○ ○	뷰 스 앤 뉴 스	2008서울조정351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814
여 ○ ○	t v N	2008서울조정238	손 배	조 정 성 립		542
여 주 대 학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82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241
영 화 진 흥 위 원 회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47	정 정 · 반론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78
(재)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중 앙 일 보	2008서울조정232	정 정	취 취 하		529
오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365	손 배	조 정 성 립		845
오산중앙재래시장상인회 외1	위 클 리 와 이	2008경기조정65	정 정 · 손배	각 취 하		856
오 ○ ○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301	정 정	조 정 성 립		713
오 ○ ○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96	반론 · 손배	각 조 정 성 립		273
오폐신현리지역주택조합	Y T N	2008서울조정308	정정 · 반론 · 손배	각 취 하		726
오 ○ ○	호 남 신 문	2008광주조정20	정 정	조 정 성 립		628
옥 ○ ○	영 남 일 보	2008대구조정13	정정 · 반론 · 손배	각 취 하		746
(주) 옥 전 비 료	오 늘 신 문	2008경기조정27	정 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483
(유) 완 도 신 문	청 해 진 신 문	2008광주조정10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279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면
완주군외동동성아파트입주대표회의	새전북신문	2008전북조정20	반론	취하		571
우석대학교	경남매일신문	2008경남조정19	정정	취하		566
우제창	전주KBS-TV	2008전북조정9	정정	조정성립		261
(주)울산광역시뉴스	뉴스리더	2008경기조정14	반론·손배	각조정불성립		311
(주)울산광역시뉴스	울산신문	2008부산조정7	정정	조정성립		303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제일일보	2008부산조정8	정정	조정불성립	결정	304
(가칭)원미10구역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울산신문	2008부산조정17	정정	조정성립		809
(주)웰컴정보시스템	부천포커스	2008경기조정6	정정	조정불성립	결정	174
(주)웰컴정보시스템	매일신문	2008대구조정10	정정·반론·손배	각조정성립		553
(주)위더스아이티	매일신문	2008대구조정11	정정·반론·손배	각조정성립		554
유○	가스신문	2008서울조정268	정정	조정성립		617
유○	경기방송	2008경기조정50	정정·손배	각조정불성립	결정	734
유○	뉴스리더	2008경기조정51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736
1.유○○, 2.박○○	수도권일보	2008경기조정59	반론	취하		825
1.유○○, 2.박○○	중부일보	2008경기조정60	반론	취하		826
유○	국민일보	2008서울조정83	반론	취하		243
유○○외3인	SBS-TV	2008서울조정128	정정·손배	각조정불성립	결정	335
유○○외2인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서울조정222	손배	취하	중재합의	511
유천동4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	충청타임즈	2008충북조정3	정정	취하		308
유○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서울조정300	정정·손배	각취하		711
육○	한국일보	2008서울조정347	정정·반론	각조정성립		802
육○	경향신문	2008서울조정370	정정·반론·손배	각조정성립		858
육○	매일경제	2008서울조정371	정정·반론·손배	각조정성립		859
육○	고뉴스	2008서울조정372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861
육○	네이션코리아	2008서울조정373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862
육○	국민일보	2008서울조정384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885
육○	연합뉴스	2008서울조정385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886
육○	브레이크뉴스	2008서울조정386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887
육○	유에프오뉴스	2008서울조정387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887
육○	서울신문	2008서울조정395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901
육○	세계일보	2008서울조정396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902
육○	민주신문	2008서울조정397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902
육○	주간현대	2008서울조정398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904
육○	한국재경신문	2008서울조정399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904
윤○	문화일보	2008서울조정26	반론	조정성립		145
윤○	중앙일보	2008서울조정27	반론	조정성립		146
윤○	한국일보	2008서울조정28	반론	조정성립		147
윤○	매일경제	2008서울조정29	반론	조정성립		147
윤○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30	반론	조정성립		148
윤○	연합뉴스	2008서울조정31	반론	조정성립		148
윤○	SBS-TV	2008서울조정18	손배	취하	중재합의	132
윤○	부산MBC-TV	2008부산조정11	추후	각		420
의정부지방법원포천등기소	현대일보	2008경기조정57	정정	조정성립		807
이○	강릉KBS-TV	2008강원조정5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393
이○	국민방송	2008서울조정224	손배	조정성립		512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이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69	손 배	조 정 결 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211
이	광	철	세 계 일 보	2008서울조정57	정 정	취 하		195
이	○	○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193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465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8경기조정40	정 정 · 추후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동의	644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8경기조정45	정 정 · 손배	조정성립, 취하		685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8서울조정12	정 정 · 반문 · 손배	각 기 각		108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8서울조정263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동의	606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8서울조정4	정 정	조 정 성 립		98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8서울조정40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165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8서울조정5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동의	99
이	명	박	오 마 이 뉴 스	2008서울조정174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418
이	○	○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23	손 배	조 정 성 립	동의	138
이	○	○	Y T N	2008서울조정127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333
이	○	○	일 간 스 포 츠	2008서울조정35	정 정 · 손배	조정성립, 취하		157
이	○	○	일 간 스 포 츠	2008서울조정60	정 정	조 정 성 립	동의	200
이	○	○	스 포 츠 동 아	2008서울조정330	손 배	조 정 성 립		771
이	○	○	Q 채 널	2008서울조정52	손 배	조정불성립결정		186
이	○	○	강 원 일 보	2008강원조정8	정 정	조 정 성 립	동의	623
이	○	○	강릉MBC-TV	2008강원조정9	정 정	조 정 성 립		624
이	○	○	iDBN(한국농아방송)	2008서울조정380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880
이	○	○	에 이 블 뉴 스	2008서울조정381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동의	883
이	○	○	데일리안광주전라	2008광주조정24	반 론	취 하		665
이	○	○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149	반문 · 손배	각 취 하	동의	382
이	○	○	춘 천 시 보	2008강원조정2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353
이	○	○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88	손 배	조 정 성 립		252
이	익	성	인 천 신 문	2008경기조정22	정 정	취 하	동의	402
이	○	○	경 북 도 민 일 보	2008대구조정1	정 정 · 손배	각 취 하		222
이	○	○	굿 뉴 스 강 남	2008서울조정170	정 정 · 손배	조정성립, 취하		412
이	○	○	N B S 뉴 스	2008경기조정36	정 정 · 손배	조정성립, 취하	동의	610
이	○	○	에클레시아뉴스	2008서울조정42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172
이	○	○	경 기 일 보	2008경기조정43	정 정	취 하		651
이	○	○	대전KBS-TV	2008대전조정11	정 정 · 손배	각 취 하	동의	488
이	○	○	T J B	2008대전조정12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88
이	천	축 산 업 형 동 조 합	하 나 로 신 문	2008경기조정9	정 정 · 손배	조정결정, 취하		223
이	○	○	농 민 신 문	2008서울조정358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동의	829
이	○	○	새 전 북 신 문	2008전북조정27	손 배	조 정 성 립		877
이	○	○	테 일 리 팜	2008서울조정116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310
이	○	○	약 사 공 론	2008서울조정120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동의	320
이	한	대	중 부 일 보	2008경기조정34	정 정 · 손배	조정성립, 취하		570
이	○	○	t v N	2008서울조정134	손 배	조 정 성 립	동의	343
이	○	○	민 중 의 소 리	2008서울조정172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415
이	○	○	춘천MBC-TV	2008강원조정3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중재합의	361
이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143	정 정 · 손배	각 취 하		371
이	화	여	대정부지강제매입반대대책위원회	2008경기조정31	정 정 · 손배	각 취 하	중재합의	538
이	회	창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111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298

신청인	대상매체	사건번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고	면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소통뉴스	2008전북조정19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557
인제군	전국매일	2008경기조정17	정정·손배	각취하		349
인제군	인터넷강원신문	2008강원조정10	정정	조정성립		661
인천연수구의회	인천연수신문	2008경기조정68	반론	조정성립		905
인천전문대학	서울신문	2008서울조정122	정정·손배	각조정불성립결정		323
인테고소프트	매일신문	2008대구조정12	정정	조정성립		555
임○	한국수산경제신문	2008서울조정375	정정·손배	각취하		870
임○	전주MBC-TV	2008전북조정6	반론	조정성립		141
임정업	완주신문	2008전북조정24	정정·손배	각조정불성립결정		721
(ㄴ)						
잠실2동종합상가재건축추진위의	도시개발신문	2008서울조정291	정정·손배	각취하		680
장○○외5인	충청신문	2008대전조정4	정정	조정성립		183
장○○, 권○○	Mnet	2008서울조정305	손배	조정성립		723
전○	한겨레	2008서울조정235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532
전국금속노동조합	동아일보	2008서울조정161	정정	취하		403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일보	2008서울조정162	정정	취하		404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일보	2008서울조정163	정정	조정성립		404
전국금속노동조합	매일경제	2008서울조정164	정정	취하		405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165	정정	취하		406
전국금속노동조합	동아일보	2008서울조정180	정정·반론·손배	각조정불성립결정		432
전국금속노동조합	매일경제	2008서울조정181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435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일보	2008서울조정182	정정·반론·손배	각조정성립		436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183	정정·반론·손배	각취하		438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일보	2008서울조정186	정정·반론·손배	각조정성립		451
전국금속노동조합인천지부	동아일보	2008서울조정353	정정·손배	각조정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817
전국금속노동조합인천지부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354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819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차지부	중앙일보	2008서울조정207	정정	취하		479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차지부	중앙일보	2008서울조정208	정정	취하		480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차지부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209	정정	조정성립		481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차지부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210	정정	조정성립		482
한국무용협회	목포MBC-TV	2008광주조정29	정정·손배	각조정불성립결정		696
전국민주화학습유노동조합	동아일보	2008서울조정166	정정·손배	각조정결정	동의	408
전국민주화학습유노동조합	서울경제	2008서울조정167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409
전국민주화학습유노동조합	한국경제	2008서울조정168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411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	2008서울조정1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94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YTN	2008서울조정115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308
전국한우협회	보은군지부	2008충북조정1	추후·손배	조정성립, 취하		112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광남일보	2008광주조정30	정정	조정성립		767
(사)전라북도월남참전전우회	전일신문	2008전북조정23	정정·반론	각조정결정	동의	614
전○	연합뉴스	2008서울조정160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399
전북지방경찰청	뉴스시스	2008서울조정285	정정	조정결정	동의	662
전○	광남일보	2008광주조정12	추후·손배	조정성립, 취하		321
전○	연합뉴스	2008서울조정121	추후·손배	각취하		320
전여옥	뷰스앤뉴스	2008서울조정137	정정·손배	각조정성립		349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주) 전주 방송 (J T V)	미 디 어 오 늘	2008서울조정322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중재합의	752
(주) 전 주 방 송	전주KBS-1TV	2008전북조정8	정 정	취 하		224
전주서부신시가지아파트입주자카페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71	정 정	취 하		212
전주서부신시가지아파트입주자카페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72	정 정	취 하		213
전주서부신시가지아파트입주자카페	새 전 북 신 문	2008전북조정7	정 정	조 정 성 립		214
전 주 시	J - T V	2008전북조정17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47
전 주 완 산 경 찰 서	J - T V	2008전북조정3	정 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130
전 ○ ○ 외 13인	M B C - T V	2008서울조정87	정 정	조 정 불 성 립 결 정		249
전 ○ ○ 외 4인	충 청 신 문	2008대전조정3	정 정	조 정 성 립		182
정 ○ ○	노 컷 뉴 스	2008서울조정155	손 배	조 정 성 립		391
정 ○ ○	Y T N	2008서울조정378	반 론	취 하		877
정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62	추 후 · 손배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결 정		202
조 ○ ○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15	반 론	기 각		119
조 ○ ○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16	손 배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22
조 ○ ○	중 앙 일 보	2008서울조정256	정 정	조 정 성 립		591
조 ○ ○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190	추 후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460
조 ○ ○	아파트관리신문	2008서울조정191	추 후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461
조 ○ ○	영 광 신 문	2008광주조정31	정 정 · 손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840
조 ○ ○	중 부 일 보	2008경기조정53	반 론	취 하		774
조 ○ ○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146	추 후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378
조 ○ ○	S B S - T V	2008서울조정147	정 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379
조 ○ ○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148	정 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379
조 ○ ○	신 동 아	2008서울조정283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654
조 ○ ○	사 하 신 문	2008부산조정13	정 정	조 정 성 립		500
1. 조○○, 2. 이○○○	한 국 일 보	2008서울조정267	손 배	취 하		616
조 ○ ○	합 께 결 음	2008서울조정6	정 정 · 손배	각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00
(주) 좋 은 세 상	창원KBS-1TV	2008경남조정4	추 후	취 하		144
주 ○ ○	경 인 일 보	2008경기조정18	정 정	취 하		356
주 ○ ○	호 남 신 문	2008광주조정3	정 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207
주 호 영	이 데 일 리	2008서울조정14	정 정	조 정 성 립		118
중 앙 북 스 (주)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329	정 정	조 정 성 립		769
중앙일보 엔아이이연구소	미 디 어 오 늘	2008서울조정233	정 정	조 정 성 립		530
중앙일보 엔아이이연구소	미 디 어 오 늘	2008서울조정234	반 론	조 정 성 립		531
지 ○ ○	오 마 이 뉴 스	2008서울조정297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697
(주) 지 아 이 씨 케 이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252	정 정	조 정 성 립		584
지 역 신 문 발 전 위 원 회	충 청 매 일	2008충북조정2	정 정	조 정 성 립		282
지 ○ ○	한 국 일 보	2008서울조정43	손 배	취 하		173
지 ○ ○	뉴 시 스	2008서울조정44	손 배	취 하		174
진 ○ ○ 외 3인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150	정 정 · 반론 · 손배	각 취 하		383
진 주 시	경 남 일 보	2008경남조정10	반 론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98
진 주 시	경 남 일 보	2008경남조정11	반 론	조 정 불 성 립 결 정		199
진 주 시	경 남 일 보	2008경남조정12	반 론	조 정 성 립		250
진 주 시	경 남 일 보	2008경남조정16	반 론	기 각		505
진 주 시	경 남 일 보	2008경남조정3	반 론	조 정 성 립		143
진 주 시	경 남 일 보	2008경남조정6	반 론	조 정 성 립		168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진 주 시	경 남 일 보	2008경남조정7	반 론	조 정 성 립		170
진 주 시	경 남 일 보	2008경남조정8	반 론	조 정 성 립		171
진 주 시	경 남 일 보	2008경남조정9	반 론	조정불성립결정		197
채 ○ ○	대 전KBS-TV	2008대전조정16	정 정	취 하		605
채 ○ ○	인 천 일 보	2008경기조정33	정 정 · 손배	조 정 성 립, 취 하		556
천 ○ ○	무 카 스 뉴 스	2008경기조정1	정 정	취 하		97
(사) 청 소 년 복 지 마 을	중 부 일 보	2008경기조정8	정 정	조 정 성 립		219
(ㄴ)						
1. 청주광역시소각시설주민협의회외1	청주KBS-TV	2008충북조정6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521
촛불자동차연합	뉴 시 스	2008서울조정274	반 론	취 하		635
촛불자동차연합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275	반 론	취 하		636
촛불자동차연합	노 컷 뉴 스	2008서울조정276	반 론	취 하		637
촛불자동차연합	민 중 의 소 리	2008서울조정277	반 론	취 하		637
촛불자동차연합	쿠 키 뉴 스	2008서울조정278	반 론	취 하		639
촛불자동차연합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281	반 론	조 정 성 립		649
최 ○ ○	경향신문(지역weekly)	2008부산조정12	정 정	조정불성립결정		424
최 ○ ○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171	정 정	취 하		414
1. 최규엽, 2. 민주노동당	세 계 일 보	2008서울조정225	반 론	조 정 성 립		514
최 ○ ○	S B S - T V	2008서울조정10	정 정	기 각		106
최 대 수	부산KBS-1TV	2008부산조정9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40
최 ○ ○	한국건설기계신문	2008서울조정367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850
최 ○ ○	진주KBS-TV	2008경남조정5	반론 · 손배	각 조 정 성 립		167
최 ○ ○	M B C - T V	2008서울조정24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142
최 ○ ○	K B S - R	2008서울조정58	추 후 · 손배	각 조 정 성 립		196
최 ○ ○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59	추 후 · 손배	각 조 정 성 립		197
최 ○ ○	전주MBC-TV	2008전북조정26	추 후 · 손배	각 조 정 성 립		819
최 ○ ○	세이프코리아뉴스	2008서울조정325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760
최 ○ ○	경 상 일 보	2008부산조정18	정 정	조 정 성 립		837
최 ○ ○	오 마 이 뉴 스	2008서울조정257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동의	592
최 ○ ○	연 합 뉴 스	2008서울조정76	정 정 · 반론	각 조 정 성 립		230
최 ○ ○	이 데 일 리	2008서울조정309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728
최 철 국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400	정 정	취 하		909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춘 천 시 보	2008강원조정11	반 론	조 정 성 립		838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춘 천 시 보	2008강원조정4	반 론	조 정 성 립		362
충남광역푸드뱅크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273	추 후	기 각		632
충주대학교제5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	충 북 넷	2008충북조정11	정 정	취 하		834
(ㄷ)						
칼로스엠에이대학	중 앙 일 보	2008서울조정66	반 론	취 하		208
칼로스엠에이대학	노 컷 뉴 스	2008서울조정67	반 론	취 하		209
(주)코리아메디컬케어	메 디 컬 투 데 이	2008서울조정392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동의	897
(주)코리아메디컬케어	아 임 닥 터 뉴 스	2008서울조정393	정 정 · 손배	각 각 하		899
(주) 코엔비아	경 기 일 보	2008경기조정15	정 정 · 손배	각 조정불성립결정		330
(주) 코엔비아	이 데 일 리	2008서울조정125	정 정 · 손배	각 취 하	중재합의	329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주) 코엔비아 주식회사 콜텍	한 거 레 K B S - 2 T V	2008서울조정131 2008서울조정341	손 배 반 론	취 취 하 하	중재합의	341 787
(주) 크린나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서울조정25	정 정 취 취	하 하		143
(주) 크린나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008서울조정45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175
(㉔)						
(주) 태글리쉬 (주) 테크세움	태 권 도 신 문 호남인터넷뉴스	2008서울조정86 2008광주조정6	반 론 정 정	조 정 취 취	성 성 립 립	247 237
1.테크온팜(주), 2.백○○ 통영초등학교총동창회	아 시 아 경 제 창원KBS-1TV	2008서울조정357 2008경남조정17	정 정 · 손배 반론 · 손배	각 조 기 각	정 성 립 립	828 552
통영초등학교총동창회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242	반론 · 손배	취 취	하 하	550
(㉕)						
판교LIG건영예비입주자협의회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경 향 신 문 경 기 일 보	2008서울조정356 2008경기조정29	정 정 · 손배 정 정	각 취 조 정	하 성 립 립	823 523
(주) 프리준미디어	M B C - T V	2008서울조정214	손 배	조 정	불성립결정	493
(주) 프리첼	스 포 츠 월 드	2008서울조정81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립	239
(㉖)						
하 남 시 하남시주민소환추진위원회	M B C - T V	2008서울조정391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895
하 ○ ○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S B S - T V	2008서울조정113	정 정 · 손배	각 조	정 불성립결정	301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전 주 K B S - T V	2008전북조정10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267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문 화 일 보	2008서울조정22	정 정	조 정	불성립결정	137
학교법인 도개학원	오 마 이 뉴 스	2008서울조정290	정 정	조 정	불성립결정	679
한 국 교 직 원 공 제 회	영 남 일 보	2008대구조정2	정 정 · 반론 · 손배	각 취	하 하	265
한국교회SBS사태대책위원회	한 국 교 육 신 문	2008서울조정289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립	675
한국교회SBS사태대책위원회	S B S - T V	2008서울조정298	정 정	취 취	하 하	703
한국대중음악상선정위원회	뉴 시 스	2008서울조정41	정 정	취 취	하 하	166
한국무역협회노동조합	문 화 일 보	2008서울조정109	정 정	취 취	하 하	296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계집행위원회	한 국 일 보	2008서울조정293	정 정 · 손배	각 취	하 하	687
한국무용협회 전국무용계집행위원회	전 남 일 보	2008광주조정28	정 정 · 손배	각 취	하 하	694
(사)한국물사랑연합회	D B S 동 아 방 송	2008경기조정66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871
한 국 방 송 공 사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239	정 정 · 반론	조 정	불성립결정, 조정결정	544
한 국 방 송 공 사	서 울 신 문	2008서울조정240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547
한 국 방 송 공 사	세 계 일 보	2008서울조정241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548
한 국 방 송 공 사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247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564
한 국 방 송 공 사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248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567
한 국 방 송 공 사	동 아 일 보	2008서울조정39	정 정	취 취	하 하	164
한 국 방 송 공 사	경 향 신 문	2008서울조정53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186
한 국 방 송 공 사	디 지 털 타 임 스	2008서울조정54	정 정	취 취	하 하	188
한 국 방 송 공 사	새 전 북 신 문	2008전북조정2	정 정	조 정	성 성 립 립	116
(사)한국샘물협회	서 울 신 문	2008서울조정90	정 정 · 반론 · 손배	각 조	정 성 립 립	254
(주)한국스마트카드	고 뉴 스	2008서울조정361	정 정	취 취	하 하	832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O B S - T V	2008경기조정28	정 정	취 취	하 하	510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218	정 정	취 취	하 하	499

신 청 인	대 상 매 체	사 건 번 호	청구명	처리결과	비 고	면
(사)한국예총 가평지부	경 기 매 일	2008경기조정67	반 론 · 손배	조정성립, 취하	신청인 이의신청	875
(사)한국예총 해남지부	전 남 도 민 일 보	2008광주조정25	정 정 · 손배	조정성립, 취하		666
(사)한국예총해남지부	해 남 타 임 즈	2008광주조정26	정 정 · 손배	각 조 정 결 정		668
(사)한국예총해남지부	글 로 벌 타 임 스	2008서울조정286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670
(사)한국예총해남지부	아 시 아 일 보	2008서울조정287	정 정 · 손배	각 취 하		672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한 국 일 보	2008서울조정133	정 정	조 정 성 립		342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시 사 저 널	2008서울조정326	정 정	조 정 성 립		761
(재)한국이슬람교중앙회	기 독 교 T V	2008서울조정376	정 정	취 하		872
(주)한 국 인 삼 공 사	충 청 신 문	2008대전조정5	정 정	조 정 성 립		188
1.(주)한국일보, 2.유○○	김천인터넷뉴스	2008대구조정3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288
(주)한 국 일 보 사	김 천 뉴 스	2008대구조정4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345
한국자동차유해환경개선국민운동본부	환 경 일 보	2008서울조정20	정 정 · 손배	각 취 하		134
(사)한 국 청 소 년 쉼 터	M B C - T V	2008서울조정99	정 정	조 정 성 립		279
(사)한국컴퓨터판매인협회	M B C - T V	2008서울조정360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831
한국 학술 진 흥 재 단	한 국 경 제	2008서울조정177	정 정	조 정 성 립		425
한 라 상 조 (주)	e 상 조 뉴 스	2008서울조정343	정 정	조 정 성 립		794
한 ○ ○	데 일 리 메 디	2008서울조정388	정 정	취 하		888
한 ○ ○	과 천 문 화 신 문	2008경기조정63	정 정	조 정 성 립		849
(주)해 립 바 이 오	완 도 신 문	2008광주조정5	반 론	조 정 성 립		227
현 대 환 경 산 업 (주)	중 합 법 률 신 문	2008서울조정244	정 정 · 손배	각 조 정 성 립		559
홍 사 광	경 인 일 보	2008경기조정11	정 정 · 반론	조정성립, 취하		226
홍 사 광	프 리 존 뉴 스	2008서울조정91	정 정	조 정 성 립		255
홍 성 군	충 남 일 보	2008대전조정9	정 정 · 손배	각 취 하		431
홍 희 덕 외 6 인	시 사 I N	2008서울조정230	정 정 · 반론	각 취 하		524
(주)화 이 트 벡 스트	국 민 일 보	2008서울조정56	반 론	조 정 성 립		194
(주)화 이 트 벡 스트	내 일 신 문	2008서울조정74	반 론	취 하		218
(주)화 이 트 벡 스트	S B S - T V	2008서울조정92	반론 · 손배	각 조 정 성 립		258
환 경 부	K B S - 1 T V	2008서울조정318	정 정	취 하		742
황 ○ ○	뉴 스 앤 조 이	2008서울조정93	정 정	기 각		262
황 ○ ○	뉴 스 앤 조 이	2008서울조정94	정 정	기 각		265
황 ○ ○	충 청 투 데 이	2008대전조정19	정 정 · 손배	각 취 하		772
황우석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조 선 일 보	2008서울조정312	정 정	취 하		732
황 ○ ○	파 주 타 임 즈	2008경기조정32	정 정 · 손배	각 취		539
황 ○ ○	장수황씨대종회소식	2008서울조정324	정 정 · 손배	각 기 각		757
황 ○ ○	환 경 일 보	2008서울조정21	정 정 · 손배	조정성립, 취하		135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

2008년도 조정중재 · 시정권고 사례집 (언론중재 통권 110호 부록)

2009년 3월 20일 인쇄

2009년 3월 30일 발행

편저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제 도 연 구 팀

발행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 화 : •대 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 담 센 터 02)397-3089

<http://www.pac.or.kr>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